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1000-001578-01

조선왕조 궁중음식 고문헌 아카이브 구축

조선왕조 궁중음식 고문헌 자료집 24
조선왕조실록 기사자료집 (14)

2012. 9.

- 목 차 -

1. 숙종실록 <3> 기사자료집: 숙종 44년 1월 ~ 숙종 46년 6월 1
2. 경종실록 기사자료집 165
3. 영조실록 <1> 기사자료집 : 영조 즉위년 ~ 영조 16년 12월 267

1. 숙종실록 <3> 기사자료집

숙종실록 <3> 기사자료집: 숙종 44년 1월 ~ 숙종 46년 6월

출처	내용	원문
<p>숙종 61권, 44년 (1718 무술 / 청 강희 (康熙) 57년) 1월 1일 (경술) 1번째기사</p>	<p>충청 감사 윤헌주(尹憲柱)가 연해 고을의 재해를 입은 상황을 정장(呈狀)하여 아뢰고, 이어서 지난 봄에 꾸어 준 안흥(安興)의 미곡과 강도(江都)18577)의 미곡은 모두 본고을에 거두어 유치하게 할 것과 각색의 신포(身布)는 거두는 것을 정지시킬 것과 군병(軍兵)의 대도안(大都案)은 가을까지 기다렸다가 거행할 것을 청하였는데, 비국(備局)에서 복주(覆奏)하니, 허락하였다.</p>	<p>朔庚戌/忠淸監司尹憲柱狀陳沿海邑被災狀，仍請前春所貸安興米及江都米，竝捧留本邑，各樣身布停捧，軍兵大都案，待秋舉行，備局覆奏，許之。</p>
<p>숙종 61권, 44년 (1718 무술 / 청 강희 (康熙) 57년) 1월 3일 (임자) 3번째기사</p>	<p>왕세자가 승정원에 하령(下令)하기를, “우리 성상께서 백성들을 걱정하고 농사를 중하게 여기는 뜻은 더없이 극진한 데에서 나온 것으로 이에 대한 십행(十行)18579)의 운음(綸音)을 언제나 세수(歲首)에 내리셨다. 지금 이미 해가 바뀌어 백성의 일이 바야흐로 급한 때이니, 성상의 뜻을 우러러 몸받아 특별히 방백(方伯)들을 신칙(申飭)하는 일을 늦출 수가 있겠는가? 작년에 삼남(三南)의 농사 형편이 비록 조금 좋았다고는 하나 극심한 재해를 입은 곳에는 장차 진휼(賑恤)하는 일이 있어야 할 형편이다. 서북 지방은 해마다 거둬 기근이 들었는데, 관서(關西)의 청북(淸北)18580)은 더욱 참혹하기 그지없다. 말과 생각이 여기에 이르니, 괴로운 마음 견딜 수 없다. 반드시 마음을 다하여 구제할 다음에야 인명이 손상되는 참혹함을 면할 수가 있을 것이다. 또 농사는 천하의大本(大本)이니, 농사를 권장하는 정치를 마땅히 우선으로 해야 한다. 아울러 본원(本院)에 신칙하여 모름지기 나의 뜻을 몸받아 특별히 어구(語句)를 만들어 팔도의 감사와 양도</p>	<p>王世子下令于政院曰：“我聖上憂民重農之意，出尋常萬萬，十行綸音，每下於歲首矣。目今歲色已改，民事政急，仰體聖意，另飭方伯，其可緩乎？昨年三南農形，雖曰稍勝，被災最甚處，將有賑賑之舉。至於西北，連歲荐饑，而關西淸北，尤極慘然。言念至此，若恫在已。必須盡心濟活，然後可免捐瘠之慘。且農者，天下之大本，則勸課之政，在所當先。竝宜申飭本院，須體余意，別爲措辭，下諭于八道監司、兩都留守。”於是，政院達曰：“恤民重農之意，藹然於文字之表，雖</p>

	<p>(兩都)의 유수(留守)에게 하유하라.” 하였다. 이리하여 정원에서 계달하기를, “백성을 구휼하고 농사를 중하게 여기는 뜻이 글의 내용에 넘쳐 흐르니, 비록 한문제(漢文帝)의 관대한 글(18581)이라 하더라도 이에서 더할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바로 이 휘지(徽旨)에 의거 세자에게 반유(頒諭)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의 따랐다.</p>	<p>漢文寬大之書，無以加茲。請直以此徽旨頒諭。”世子從之。</p>
<p>숙종 61권, 44년 (1718 무술 / 청 강희 (康熙) 57년) 1월 4일 (계축) 2번째기사</p>	<p>임금이 회정당(熙政堂)에 나아가서 청나라 사신을 접견하였다. 우의정 조태채(趙泰采)가 승지(承旨)·사관(史官) 등과 함께 입시(入侍)하였다. 예(禮)가 끝나자 청나라 사신이 나가고, 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다. 조태채가 아뢰기를, “진위 겸진향사(陳慰兼進香使)를 지금 임명하여 보내야 하는데 《등록(瞻錄)》을 가져다가 상고하니, 대군(大君)이나 대신(大臣)을 보내기도 하고 종반(宗班)이나 정경(正卿)을 차임하여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계묘년(18582) 이후에는 연달아 아경(亞卿)을 가함(假卿)으로 차임하여 보내었습니다. 지금은 정경에 사람이 부족하고 아경으로 보내는 것도 구차스러우니, 신의 생각에는 종반의 중 1품이나 정2품 중에서 차임하여 보내는 것이 사의(事宜)에 합당할 것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좋다고 하였다. 조태채가 또 아뢰기를, “근래 당론(黨論)이 점차 고질이 되어 선정(先正)을 무고하여 헐뜯는 데 있어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행히 성상께서 호오(好惡)를 밝게 보여 주시고 시비(是非)를 굳게 정하심에 힘입어 간사한 말이 멋대로 행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사림(士林)의 더없는 다행입니다. 무릇 공의(公議)에 득죄한 자는 그 경중을 구분하여 벌을 주어 징벌과 권려를 이미 엄하게 하였습니다. 문외 출송(門外黜送)의 형벌에 이르러서는 처음에 이미 말감(末減)한 것이고 3년 동안 죄척(罪斥)당하였으니, 형벌이 이미 시행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홍우행(洪禹行)은</p>	<p>上御熙政堂，接見清使。右議政趙泰采與承旨、史官等入侍。禮畢，清使出，藥房入診。泰采曰：“陳慰兼進香使，今當差送矣。取考瞻錄，則或以大君、大臣，或以宗班、正卿差送，癸卯以後，則連以亞卿假銜差送矣。卽今正卿乏人，亞卿亦苟簡，臣意以宗班從一品、正二品中差送，似爲合宜。”上可之。泰采又曰：“近來黨論漸癩，誣詆先正，無所不至。幸賴聖上，明示好惡，堅定是非，使諛說不得肆行，士林幸甚。凡係得非公議者，分輕重施罰，懲勵既嚴。至於門黜之罰，初既未減，則三年罪斥，罰已行矣。其中洪禹行，方在憂服中，今當歲首，門黜罪人等，特爲疏釋，以示維新之意，實合寬大之典。”上命放釋。清北監賑御史金雲澤請對，上召見。雲澤言：“清北災荒孔慘，賑穀劃得者甚少，不</p>

	<p>바야흐로 상복을 입고 있는 중이니 지금 세수(歲首)를 당하여 문출당한 죄인 등을 특별히 석방함으로써 유신(維新)의 뜻을 보인다면, 실로 관대한 법전에 합치될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명하여 석방하게 하였다. 청북(淸北) 감진 어사(監賑御史) 김운택(金雲澤)이 청대(淸對)하니, 임금이 불러서 접견하였다. 김운택이 아뢰기를, “청북의 재황(災荒)은 매우 참혹한데 진곡(賑穀)의 마련이 매우 적어 접제(接濟)할 곡식이 부족하니, 남한(南漢)·해서(海西)·안흥(安興)·양진(楊津) 등 여러 곳의 미곡을 각각 5천 석씩 보내주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조태채와 도제조(都提調) 이이명(李頤命)에게 하문하였다. 모두 아뢰기를,</p> <p>“그 반만을 허락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p> <p>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김운택이 또 청하기를,</p> <p>“관서 지방의 노비에게 미곡을 바치고 속량(贖良)하도록 허락함으로써 진제(賑濟)할 밀천을 보충하도록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진청(賑廳)으로 하여금 품지(稟旨)하여 격식을 정하여 거행하게 하였다.</p> <p>【그후 진청(賑廳)에서 복주(覆奏)하여 15세에서 30세까지는 미곡 50석을 바치고, 31세에서 40세까지는 미곡 40석을 바치고, 41세에서 50세까지는 미곡 30석을 바치고, 51세에서 55세까지는 미곡 20석을 바치고, 56세에서 60세까지는 미곡 10석을 바치게 하였다.】 김운택이 또 청하기를,</p> <p>“서로(西路)의 교생(校生)과 군관(軍官) 가운데 응강(應講)하거나 시재(試才)할 수가 없는 자는 탈안(頤案)으로 조처하여 미곡을 바치게 해서 진제할 밀천을 보충하게 하며, 권분(權分)18583)에 의거 사사로이 진제한 자는 진제를 끝마치기를 기다리지 말고 그 이름을 열거해서 장문(狀聞)하게 하고, 즉시 그에 상당하는 관직을 제수하게 하소서. 서로(西路)의 각종 곡식 가운데 조[粟]가</p>	<p>足以接濟。請得南漢、海西、安興、楊津諸處米各五千石。” 上問於秦采及都提調李頤命，皆以爲：“宜許其半。” 上從之。雲澤又請關西奴婢，許其納米贖良，以補賑資。上令賑廳稟旨，定式舉行。【其後賑廳覆奏，以十五歲至三十歲，納米五十石，三十一歲至四十歲，納米四十石，四十一歲至五十歲，納米三十石，五十一歲至五十五歲，納米二十石，五十六歲至六十歲，納米十石。】雲澤又請許西路校生、軍官之不能應講、試才者，納米頤案，以補賑資，勸分私賑者，不待畢賑，指名狀聞，卽除相當職。西路各穀中，粟尤被災，種子無措備之路。請得海西附近邑耗穀中，皮粟五六百石，以爲分給之地，上竝許之。是後雲澤又馳狀請，移轉畿湖所在軍餉、還米三四萬石，射軍木、江都木四五百同，取利以補賑資，備局覆奏不許，只給木五十同。</p>
--	--	--

	가장 재해를 많이 입어 종자를 준비할 길이 없습니다. 청컨대, 해서(海西) 부근 고을의 모곡(耗穀) 중에서 피속(皮粟) 5, 6백 석을 나누어 주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모두 허락하였다. 이후에도 김운택이 또 치장(馳狀)하기를, “경기와 호서 지방에 있는 군량미·환곡미 3, 4만 석과 사군목(射軍木)의 강도목(江都木) 4, 5백 동(同)을 이전시켜 그 이식을 취하여 진제할 밀천을 보충하게 하소서.” 하니, 비국(備局)에서 복주(覆奏)하였으나, 임금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다만 포목(布木) 50동(同)만 주게 하였다.	
숙종 61권, 44년 (1718 무술 / 청 강희 (康熙) 57년) 1월 8일 (정사) 1번째기사	청나라 사신이 돌아가니, 세자가 서교(西郊)에 나아가 전송하였다. 세자는 천담복(淺淡服)을 입고 접견하였는데 배종(陪從)한 여러 신하들의 복색도 같았다. 청나라 사신이 전별연(餞別宴)을 받지 않았으므로 다례(茶禮)만을 행하고 파하였다.	丁巳/清使歸，世子出餞于西郊。以淺淡服接見，陪從諸臣，服色亦同。清使不受餞宴，只行茶禮而罷。
숙종 61권, 44년 (1718 무술 / 청 강희 (康熙) 57년) 1월 9일 (무오) 2번째기사	개성 유수(開城留守) 송정명(宋正明)이 장계(狀啓)로 민간의 가장 급박한 상황을 아뢰면서 본부 산성(山城)의 군량미와 본부 창고의 적곡(糶穀)을 거두는 것을 일체 모두 정지하고, 가을걷이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청하였는데, 비국(備局)에서 복주하니, 허락하였다.	開城留守宋正明，狀陳民間切急狀，請本府山城軍餉及府倉糶穀，一併停捧，以待秋成，備局覆奏，許之。
숙종 61권, 44년 (1718 무술 / 청 강희 (康熙) 57년) 1월 10일(기미) 1번째기사	호조(戶曹)에서 경비로 쓸 미곡이 절핍되었다고 하면서 아산창(牙山倉)에 소속된 정유년(18589) 조의 전삼세(田三稅) 18590) 와 황해도 각 고을의 세곡을 반드시 3월 이전에 상납하기를 청하고, 아울러 흑시라도 기한이 지나면 차사원(差使員)·해운 판관(海運判官)과 해당 수령을 각별히 논죄하게 하도록 청하니, 세자가 그대로 따랐다. 이때 각도에 해마다 잇따라 흉년이 들어 세입(稅入)이 크게 줄었으므로 호조의 경비가 고갈되어 백관들의 반록(頒祿)과 군병들의 산료(散料)를 모두 계속하여 지급할 수가 없었다. 이보다 앞서 이미 품계하여 선혜청(宣惠廳)과 어영청(御營廳)의 미곡을 가져다 사용하였으나 그래도 부족하였기 때문에 또 이러한 청이 있었다.	己未/戶曹以經用米穀絕乏，請牙山倉所屬丁酉條田三稅及黃海道各邑稅穀，必於三月以前上納，或過限，則差使員、海運判官及當該守令，各別論罪，世子從之。時，各道連年失稔，稅入大縮，戶曹經用匱竭，百官頒祿、軍兵散料，皆不能繼用。先已稟啓，取用宣惠廳及御營廳米穀，而尙不足，又有此請。
숙종 61권, 44년	동래 부사(東萊府使) 조영복(趙榮福)이 장계로 말하기를,	東萊府使趙榮福狀言：

<p>(1718 무술 / 청 강희 (康熙) 57년) 1월 19 일(무진) 2번째기사</p>	<p>“대소 차왜(差倭)들이 우리 나라에 나올 적에 먼저 하선연(下船宴)을 행하여 먼길을 온 것을 위로하는데, 왜인들은 즉시 초량(草梁)에 와서 전패(殿牌)18595) 에 숙배(肅拜)하고 방물(方物)을 봉진(封進)하면 이어서 하선연을 행하고 왜관(倭館)에 머물게 하여 기한이 찬 다음에는 또 상선연(上船宴)을 행하여 돌려보내는 것이 왜인을 접대하는 변함없는 규칙입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저들이 흥판(興販)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급선무로 삼은 나머지 돌아갈 때에 임박하여서야 방물을 봉진하여 바치니, 조정을 업신여기는 것이 저절로 그 가운데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마땅히 다시 법식을 정하여 먼저 진상(進上)하고 숙배(肅拜)하는 등의 예절을 행하게 하소서.”</p> <p>하였는데, 비국(備局)에서 복주(覆奏)하여 이에 의하여 법식을 정하자고 청하니, 세자가 좋다고 하였다.</p>	<p>大小差倭之出來，先行下船宴，以慰遠來，則倭人卽來草梁，肅拜殿牌，封進方物，仍行下船宴，留館限滿後，又行上船宴而歸，乃是接倭恒規，而近來則渠輩興販諸事，乃爲先務，臨歸封進方物，輕侮朝廷，自在其中。自今以後，宜更定式，先行進上肅拜等節。備局覆奏，請依此定式，世子可之。</p>
<p>숙종 61권, 44년 (1718 무술 / 청 강희 (康熙) 57년) 1월 19 일(무진) 3번째기사</p>	<p>장령(掌令) 이완(李浣)이 상소하여 청하기를, “계사년18596) 이전에 회부한 환곡(還穀)과 각색 잡곡(雜穀)을 허위로 기록한 것은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일일이 조사하여 탕감(蕩減)하게 하고, 양정(量政)18597) 의 기일을 조금 물려서 농사가 풍년이 들어 백성들이 소생할 때까지 기다리게 하소서. 그리고 수령 가운데 진휼(賑恤)을 잘 하는 자는 모두 직질(職秩)을 올려주는 은전을 내리소서.”</p> <p>하였는데, 세자가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니, 묘당에서 이는 채택해서 시행할 것이 없다고 복주하였다.</p>	<p>掌令李浣上疏請癸巳以前，會付還穀，各色雜穀之虛錄者，令道臣，一一查出蕩減，差退量政，以俟歲豐民蘇，守令之善賑者，竝加陞秩之典。世子令廟堂稟處，廟堂覆奏，無所採施者。</p>
<p>숙종 61권, 44년 (1718 무술 / 청 강희 (康熙) 57년) 1월 20 일(기사) 2번째기사</p>	<p>왕세자가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재신(宰臣)을 불러서 접견하였다. 우의정 조태채(趙泰采)가 아뢰기를, “경기 수사(京畿水使) 장한상(張漢相)이 장계로 말하기를, ‘군민(軍民)들이 심한 기근에 시달려 도중(島中)이 바야흐로 끼니를 잇지 못하는 가운데 있으니, 청컨대 강도(江都)의 개색미(改色米) 1천 석을 얻고자 합니다.’ 하니, 마땅히 청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황해 병사(黃海兵使) 원휘(元徽)가 장계로 말하기를 ‘칙사(勅使)의 행차가 계속되므로 책응(策應)을 감당하기가 어려우니, 병사(兵</p>	<p>王世子引接大臣、備局諸宰。右議政趙泰采曰：“京畿水使張漢相狀言：‘軍民飢甚，島中方在絕火中，請得江都改色米一千石。’宜從其所請。黃海兵使元徽狀言：‘勅行連續，策應難堪，請於兵使瓜限二周年內，一勅之需，自本營料理，而或有再勅三勅，則以詳定餘</p>

使)의 과한(瓜限)18598) 2주년 안에 있어서는 한 번의 칙사에 대한 수요(需要)는 본영(本營)에서 요리하게 하되, 혹은 두 번 세 번의 칙사가 있게 되면 상정 여미(詳定餘米)18599) 로 회감(會減)하게 하여 주소서.’ 하였는데, 이는 본영이 목(牧)으로 나누어진 뒤로 물자와 인력이 조폐(凋弊)한 탓이니, 또한 마땅히 허락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한번 칙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감영(監營)으로 하여금 참작하여 정하여 지급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세자가 모두 따랐다. 우참찬 이견명(李健命)이 아뢰기를, “신이 새로 관서(關西)에서 왔는데, 이미 연로(沿路)에서 들은 바가 있어서 감히 이와 같이 우러러 진달합니다. 관서의 관방(關防)이 폐이(廢弛)된 지가 오래 됩니다. 지난번 북로의 자문(咨文)에 마음을 기울여 방수하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평양과 정주(定州)는 모두 이미 신축(新築)하였습니다. 황해의 병영 또한 수축하도록 하였으나 물자와 인력이 조잔(凋殘)하여 능히 거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병사 원휘(元徽)가 말하기를, ‘본영의 지세가 앞으로는 평야를 끼고 있어 방어에 어려운 점이 있으니, 먼저 극성(棘城)을 쌓는 것이 가장 적당할 것 같습니다’ 하였으니, 마땅히 수신(帥臣)과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서로 상의하여 긴요한 곳에다 금년 가을까지 기다렸다가 역사(役事)를 시작하게 하소서.”

하니, 세자가 좋다고 하였다. 이견명이 또 아뢰기를, “해서 지방 다섯 곳의 산성(山城)이 모두 외파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다만 피난하는 장소로서는 좋습니다. 오직 평산(平山)의 태백 산성(太白山城)은 부치(府治)에서 가깝고 형세가 험하여 일로(一路)의 요충지이지만 폐기된 지가 이미 오래어서 매우 애석합니다. 그리고 평산 한 고을은 양향(糧餉)은 대흥산성(大興山城)에 두고 군기(軍器)는 재령 산성(載寧山城)에 두었으니, 위급할 때에 이를 믿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태백 산성을 수축하고 군기와 영향을 모두 거기에다 둔다면 일이 매우 편하고 좋을 것입니다.”

米會減.’ 蓋本營分牧之後，物力凋弊，亦宜許之，而一勅所入，令監營，參酌定給宜矣。”世子竝從之。右參贊李健命曰：“臣新自關西來。既有沿路所聞，敢此仰陳矣。關西關防之廢弛久矣。頃因北咨，有用意防守之語，平壤、定州，皆已新築。黃海兵營，亦令修築，物力凋殘，不能舉行，而兵使元徽以爲：‘本營地勢，前帶平野，有難防禦，不若先築棘城之爲宜’云。宜令帥臣，與道臣相議，就其緊要處，待今秋始役矣。”世子可之。健命又言：“海西五處山城，皆在僻遠，只可爲避亂之所。惟平山太白山城，近府治，形勢險阻，爲一路要衝，而廢棄已久，殊甚可惜。且平山一邑，糧則餉置于大興山城，軍器則置于載寧山城，緩急難恃。今若修築太白山城，軍器糧餉，竝置其中，則事甚便好矣。”世子問於泰采。泰采曰：“臣亦於西路往來，見此城，在於大路邊。麗將壯節公申崇謙鐵像在此，基址宛然。平山物力，若可修治，則從容措置，待年舉行好矣。”世子曰：“所達是矣。依此分付。”大司諫李箕翊申前達，世子不

하니, 세자가 조태채에게 문의하였다. 조태채가 아뢰기를,
 “신도 서로(西路)를 왕래할 적에 이 성을 보았는데 대로(大路) 변에 있습니다. 고려의 장수 장절공(壯節公) 신숭겸(申崇謙)의 철상(鐵像)이 여기에 있고, 그 기지(基址)도 완전합니다. 평산의 물자와 인력으로 수축할 수가 있다면 조용하게 조치하여 해를 기다렸다가 거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세자가 이르기를,
 “계달한 것이 옳다. 이에 의하여 분부하라.”

하였다. 대사간 이기익(李箕翊)이 전에 계달한 것을 다시 아뢰었으나, 세자가 따르지 아니하였다. 장령 이완(李浣)이 전에 계달한 것을 다시 아뢰었으나, 세자가 따르지 아니하였다. 응교 홍계적(洪啓迪)이 아뢰기를,
 “작년에 옥당(玉堂)에서 대조(大朝)께 품지하여 열성(列聖)의 지장(誌狀)18600 을 한결같이 실록(實錄)에 기재된 것에 의하여 개간(改刊)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만 지장의 구본(舊本)이 실록의 등본(謄本)도 빠진 것이 있으니, 무엇을 따라야 할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조태채는 아뢰기를,
 “조종(祖宗)의 성훈(聖訓)이 지장(誌狀)에 기재된 것을 실록에 기재하지도 않고 삭제하여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니, 세자가 좋다고 하였다. 홍계적이 또 아뢰기를,
 “근래 시기(時氣)가 절후를 여겨 번개가 치고 비가 오는 것이 여름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과 외방에 역질(疫疾)이 날로 성하니, 저하께서 이처럼 정사를 대리하는 때를 당하여 하늘을 대하는 마음이 마땅히 다시 어 떤하겠습니까? 옛날 우리 문종 대왕(文宗大王)께서 청정(聽政)할 때를 당하여 상약(嘗藥)18601 과 시선(視膳)18602 을 반드시 모두 몸소 행하셨고 그 사이에 빈우(賓友)를 불러들여 경서(經書)와 사서(史書)를 강론하였는데, 하루도 잠시나마 거른 적이 없었으니, 이것은 문종의 훌륭한 덕이 천고에 아주 뛰어

從。掌令李浣申前達，世子不從。應教洪啓迪曰：“昨年，玉堂稟于大朝，列聖誌狀，有一依實錄所載改刊之命，而第誌狀舊本，有漏於實錄謄本者，未知何所適從矣。”泰采曰：“祖宗聖訓之載於誌狀者，不可以不載實錄而刪沒矣。”世子可之。啓迪又曰：“近來時氣失節，雷雨無異夏月。京外癘疫日熾，邸下當此代理之日，對越之心，當復如何？”昔我文宗大王，當聽政之時，嘗藥、視膳，必皆躬執，而間引賓友，講論書史，一日之間，未嘗少間。此文宗盛德所以度越千古也。《書》曰：‘視乃烈祖，無時豫怠。’伏願邸下，必以文宗爲師，以體大朝憂勤之念。”世子曰：“所達是矣。當各別留意焉。”

	<p>났던 까닭입니다.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너의 열조(烈祖)를 본받아 언제나 평안하고 게으르지 말라.’고 하였으니, 삼가 원하건대, 저하께서는 반드시 문종을 사표(師表)로 삼아 대조(大朝)께서 나라를 걱정하고 정치에 부지런했던 생각을 몸받도록 하소서.”</p> <p>하니, 세자가 이르기를, “계달한 바가 옳다. 마땅히 각별히 유의하겠다.”</p> <p>하였다.</p>	
<p>숙종 61권, 44년 (1718 무술 / 청 강희 (康熙) 57년) 2월 1일 (경진) 3번째기사</p>	<p>지사(知事) 강현(姜覲)이 청나라 사신을 접반(接伴)하고 돌아와서 관서 지방 백성들의 폐단에 대해 상소하고, 나서 도내(道內)에서 지난해에 거두어들이지 못한 것 가운데 조적(糶糶)과 신포(身布)를 막론하고 하나같이 모두 탕감(蕩減)하거나 풍년들 때까지 기한을 물려서 거두기를 청하고, 또 아뢰기를, “이번 칙사(勅使)의 행차 때에는 연향 다담(宴享茶啖)·청마 유양(淸馬留養) 등의 일을 일체 모두 감면하여 없었으므로 여러 고을의 폐단은 줄었으나, 역로(驛路)에서는 그 폐단을 갑절로 받았습니다. 대개 연향(宴享)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길에서 지체함이 없어 길을 갑절이나 빨리 달리게 되었으며, 청마(淸馬)를 머물러 두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의 역마를 몰아서 그대로 봉황성(鳳凰城)으로 향하였으므로 따라서 역기(驛騎)가 길에서 없어져 죽지 않으면 병이 나고 역졸(驛卒)도 많이 길에서 쓰러졌습니다. 마땅히 도신(道臣)에게 신칙하여 역로(驛路)를 구휼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소생하여 편안하게 하소서. 양서(兩西) 지방의 여러 고을은 거둬 기근이 든 나머지 연이어 객사(客使)의 행차가 있어서 공사(公私)가 모두 탕진되었습니다. 앞으로 또 칙사의 행차가 있다면 실로 접대할 만한 형세가 못되니, 마땅히 여러 고을에 환곡(還穀)을 나누어 주어서 불시의 수용에 대비하게 하소서. 기전(畿甸) 지방의 장단(長湍)·과주(坡州)·고양(高陽)의 세 고을에서는 이러한 흉년을 당하였고 또 두 차례나 칙사의 행차를 겪었는데다가 역질(疫疾)마저 또 성행하여 마을이 모두 텅</p>	<p>知事姜覲，償淸使歸，上書陳關西民瘼，請道內上年諸般未收，勿論糶糶、身布，或一併蕩減，或待豐退捧。又言：“今此勅行宴享茶啖、淸馬留養等事，一併減除，列邑則省弊，而驛路倍受其弊。蓋不受宴享，故無所遲滯，倍道疾馳。不留淸馬，故驅我驛蹄，仍向鳳城，驛騎不斃則病，驛卒亦多顛仆於道。宜飭道臣，優恤驛路，使得蘇安。兩西列邑，荐飢之餘，連有客使，公私蕩竭。前頭又有勅行，則實無接待之勢。宜劃給還穀於列邑，以爲不時之需。畿甸長湍、坡州、高陽三邑，值此凶歲，又經兩勅，癘疫且熾，村里盡空。今春大同，宜許蠲減。關西直路定安、平壤，則城郭重新，有關防貌樣，而至於黃州，處要衝之地，頽垣廢堞，鞠爲茂草。宜自朝家，各別</p>

	<p>비었으니, 금년 봄의 대동미(大同米)는 마땅히 견감(緡減)하도록 허락하여야 합니다. 관서 지방의 직로(直路)인 정안(定安)·평양(平壤)에서는 성곽을 다시 신축하여 관방의 모양새를 갖추었으나, 황주(黃州)에 이르러서는 이곳이 요충지에 처해 있으면서도 담장이 무너지고 성첩(城堞)이 황폐하여 잡초가 무성하니, 마땅히 조정에서 각별히 유념하여 그 수선(修膳)을 책임지워야 합니다.” 하니, 세자가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였다.</p>	<p>顧念，責其繕修。”世子令廟堂稟處。</p>
<p>숙종 61권, 44년 (1718 무술 / 청 강희 (康熙) 57년) 2월 7일 (병술) 6번째기사</p>	<p>예조에서 아뢰기를, “빈궁의 상사(喪事)에는 고묘(告廟)하는 일이 있어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종묘(宗廟)·영녕전(永寧殿)·영소전(永昭殿)·경녕전(敬寧殿)의 고문(告文)을 오는 초 9일에 설행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좋다고 하였다.</p>	<p>禮曹言：“嬪宮喪，似當有告廟之舉。宗廟、永寧殿、永昭殿、敬寧殿告文，請於來初九日設行。”上可之。</p>
<p>숙종 61권, 44년 (1718 무술 / 청 강희 (康熙) 57년) 2월 10일(기축) 5번째기사</p>	<p>조석전(朝夕奠)에서 상식(上食)의 그릇 수를 모두 간략하게 감소하도록 명하였다. 예조(禮曹)에서 그 숫자를 작정하여 바치니, 임금이 계하(啓下)하여 준행하게 하였다.</p>	<p>朝·夕奠、上食器數，皆命略減，禮曹酌定以入，啓下遵行。</p>
<p>숙종 61권, 44년 (1718 무술 / 청 강희 (康熙) 57년) 2월 11일(경인) 4번째기사</p>	<p>약방(藥房)에서 아뢰기를, “중궁전(中宮殿)과 세자궁(世子宮)과 각사(各司)의 공상(供上)을 모두 소선(素膳)으로 진배(進排)하기 때문에 반드시 옥체를 손상할 염려가 있으니, 청컨대 내일부터는 상선(常膳)으로 진공(進供)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p>	<p>藥房以中宮殿、世子宮、各司供上，皆以素膳進排，必有傷損之慮，請自明日，以常膳進供，上許之。</p>
<p>숙종 61권, 44년 (1718 무술 / 청 강희 (康熙) 57년) 2월 17일(병신) 1번째기사</p>	<p>예장 도감(禮葬都監)에서 아뢰기를, “이번에 도감(都監)의 모든 일은 실록(實錄)과 을유년(18624) 의 의궤(儀軌)를 참고하여 거행하는데, 그 가운데 시책(諡冊) 이하 여덟 가지를 뒤에 조목별로 열거하여 세자께서 휘람(徽覽)하시는 데에 대비할까 합니다. 또 한두 가지 품지하여 결재할 단서가 있으면 마땅히 하령(下令)이 있기를 기다려 거행하겠습니다. 길흉(吉凶)의 의장(儀仗)·복완(服玩)·명기(明器)에 이르러서는 실록과 을</p>	<p>丙申/禮葬都監言：“今此都監凡事，參考實錄及乙酉儀軌舉行，而其中諡冊以下八條，條列于後，以備徽覽。且有一二稟裁之端，當待下令舉行。至於吉凶儀仗、服玩、明器，則實錄及乙酉、辛巳儀軌中，有無多少，互相不</p>

유년·신사년18625) 의 의례 중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여 서로 같지 아니하므로, 도감에서 그 숫자를 마음대로 정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모두 별단(別單)을 만들어 열거하여 기록하고 주석을 달아서 바치니, 청컨대 예조로 하여금 품지(稟旨)하게 하고 참작하여 정하여서 분부하시면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별단에 열거하여 기록한 것은 이러합니다.

시책(諡冊) 【애책(哀冊)도 같습니다. 실록과 등본(謄本) 가운데에는 시책과 애책이 있다고 되어 있으나 대나무[竹]를 사용하거나 옥(玉)을 사용한다고 말하지는 않았는데, 을유년의 의례에서는 대나무를 사용한다고 하였으니, 지금도 이를 준용해야 합니다.】 시인(諡印) 【실록과 등본 가운데에는 시인이 있다고 되어 있으나 금·은·옥을 사용한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을유년의 의례에 처음에 은을 사용하여 주조하도록 정탈(定奪)하였지만 뒤에 내상(內上)의 인이라는 것으로 옥으로 새겼기 때문에 남양(南陽)의 옥을 사용하도록 고쳤으니, 지금도 이를 준용해야 합니다. 또 시인(諡印)의 척도(尺度)에 대해서는 을유년의 의례에서는 사방이 3촌 5푼이고 두께가 7푼이고 귀부(龜趺)의 높이가 1촌 5푼이었습니다만, 병자년 가례(嘉禮) 때의 의례를 가져다가 상고하니, 옥인(玉印)은 사방이 3촌 6푼이고 두께가 8푼 5리이고 귀부의 높이가 2촌 1푼이었습니다. 이번의 시인은 길이·너비·높이·두께를 가례 때의 옥인과 같게 하면 생시(生時)를 상징하는 뜻에 합치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체가 중대하여 감히 마음대로 결단하지 못하겠으니,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를 감히 품지합니다.】 증옥(贈玉) 【실록과 등본 가운데에는 증옥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을유년 의례에는 증옥은 단천(端川)의 심청옥(深靑玉)을 사용하였으니, 지금도 이를 준용해야 합니다.】 증백(贈帛) 【실록과 등본 가운데에는 증백으로 검정색 6필과 분홍색 4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을유년 의례에는 증백은 검은 대단(大緞) 6필과 붉은 대단(大緞) 4필을 사용하였고 각각 길이가 18척이었으며

同, 自都監有難擅定其數, 故竝爲別單列錄, 懸注以入。請令禮曹稟旨, 酌定分付, 以爲舉行之地。其別單列錄。諡冊、【哀冊同。實錄、謄本中有諡、哀冊, 而不言用竹用玉, 乙酉儀軌用竹, 今亦當遵用。】諡印、【實錄、謄本中, 有諡印而不言用金、銀、玉。乙酉儀軌, 初以用銀, 鑄成定奪, 後以內上之印, 乃是玉刻, 故改用南陽玉, 今亦當遵用。且諡印尺度, 乙酉儀軌, 則方三寸五分, 厚七分, 龜高一寸五分, 而取考丙子嘉禮時儀軌, 則玉印方三寸六分, 厚八分五釐, 龜高二寸一分。今此諡印, 長、廣、高、厚, 倣嘉禮時印, 似合於象生時之義, 而事體重大, 不敢擅便, 何以爲之? 敢稟。】贈玉、【實錄、謄本中, 有贈玉, 乙酉儀軌贈玉用瑞川深靑玉, 今當遵用。】贈帛、【實錄、謄本中, 有贈帛, 玄六、纁四, 乙酉儀軌贈帛用黑大段六疋、紅大段四疋, 各長十八尺, 尺數用造禮器尺, 今亦當遵用。】嬰扇、【實錄、謄本中, 用黼嬰二、黻嬰二、畫嬰二, 乙酉儀軌同, 今亦當遵用。辛巳儀軌, 又有行喪嬰扇六部, 初度習

척수(尺數)는 조례기척(造禮器尺)18626) 을 사용하였으니, 지금도 이를 준용해야 합니다.】 삽선(髮扇) 【실록과 등본 가운데에는 보삽(黼髮) 2부, 불삽(黻髮) 2부, 화삽(畫髮) 2부를 사용하게 되어 있고 을유년 의궤에서도 이와 같았으니, 지금도 이를 준용해야 합니다. 신사년 의궤에서도 행상(行喪)에 삽선 6부가 있었는데, 첫번째 습의(習儀)할 때를 비롯해 산릉(山陵)에까지 배열하여 두었다가 하현궁(下玄宮)한 뒤에는 불에 태워버렸으니, 지금도 이를 준용해야 합니다.】 만장(輓章) 【실록과 등본 가운데에는 발인 반차(發靛班次)에서 만사 30장을 좌우에 나누어 세우게 되어 있는데, 을유년 의궤에는 80장을 사용하였습니다. 지금은 만장의 많고 적은 숫자를 어떻게 정해야 할는지 감히 품지 않습니다.】 우주(虞主) 【을유년 의궤에는 예조의 계사(啓辭)로 인하여 우주(虞主)는 뽕나무를 사용하고 연주(練主)는 밤나무를 사용하는지의 여부를 대신들에게 의논하게 하였는데, 우주에 바로 밤나무를 사용하기로 정하였으며, 우주의 법식은 한결같이 《주자가례(朱子家禮)》에 의거하였습니다. 또 종묘의 제도에 의하여 분면(粉面)은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먹으로 쓴 글씨 위에 칠을 사용하여 장식을 더하였는데, 지금도 이를 준용해야 합니다.】 지석(誌石) 【을유년 의궤에는 지석이 2편이었는데 길이가 4척 2촌 4푼이고 너비가 2척 9촌 5푼이고 두께가 5촌 9푼으로 조례기척(造禮器尺)을 사용하였으니, 지금도 이를 준용해야 합니다.】 ”

하였다. 세자가 하령(下令)하기를,
“길흉에 관한 의장(儀仗) 따위의 일은 예조로 하여금 품지하게 하여 참작해서 정하자는 한 가지 조문은 계달한 대로 하도록 하라. 그 나머지 일은 대조(大朝)께 품지하였더니, 말씀하시기를, ‘세자빈을 책봉(冊封)할 때에 책문(冊文)은 대나무를 사용하였고 글자를 쓰는 데에는 금을 사용하였고 인(印)은 옥을 사용하였는데 옥은 으레 남양(南陽)의 옥을 채용하였으니, 지금 이 시책(諡冊)에서도 대나무를 사용하고 금으로 글자를 쓰도록 하라. 애책(哀冊)도 대나무를

儀爲始，排列詣山陵，下玄宮後燒火，今亦當遵用。】輓章、【實錄、謄本中，發靛班次挽詞三十，左右分立，乙酉儀軌用八十張。今則輓章多少，何以爲定？敢稟。】虞主。【乙酉儀軌，因禮曹啓辭，虞主用桑，練主用栗與否，議于大臣，以虞主直用栗木爲定，而主式則一依《家禮》。且依宗廟制，不設粉面墨書，上用柒加飾，今亦當以此遵用。】誌石。【乙酉儀軌，誌石二片，長四尺二寸四分，廣二尺九寸五分，厚五寸九分，用造禮器尺，今亦當遵用。】令曰：“吉凶儀仗等事，令禮曹稟旨，酌定一款，依達。他餘事，稟于大朝，則冊世子嬪時，冊用竹，填字用金，印用玉，玉則例採南陽玉，今此諡冊用竹填金。哀冊亦用竹，諡印用玉無疑，而國恤時哀冊，以朱填字，今則填青似疑。輓章依實錄、謄本，定以三十，諡印尺度，倣嘉禮時印亦宜。此外諸條，依達辭爲之可也，爲教，以此舉行。”【其後因禮葬都監達辭，哀冊依乙酉例填紅，輓詞改定五十張。】後，禮曹又參互酌定，別單列書吉儀仗以入。烏仗，【依乙酉儀軌用十

사용하고, 시인(諡印)은 옥을 사용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국휼(國恤) 때에 애책(哀冊)은 붉은 글자를 썼는데 지금은 푸른 글자를 쓰는 것이 의심스러운 것 같다. 만장(輓章)은 실록과 등본(謄本)에 의해 30장으로 정하고 시인(諡印)의 척도(尺度)는 가례(嘉禮) 때의 옥친(玉印)과 같게 하는 것이 또한 마땅하다. 이밖에 여러가지 조문은 계달한 내용에 의하여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교(下敎)하셨으니, 이에 의거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그 뒤에 예장 도감에서 계달한 내용에 따라 애책은 을유년의 예에 의하여 붉은 글씨로 쓰고 만사(輓詞)는 50장으로 고쳐서 정하였다.】 그 뒤에 예조에서 또 예제를 서로 참고하여 참작해서 정한 다음 별단(別單)으로 열거하여 썼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길의장(吉儀仗)에 들어가는 것은 오장(烏仗) 【을유년 의궤에 의하여 14개를 사용하였다.】 ·백택기(白澤旗) 【실록에 의하여 2개를 사용하였다.】 ·금등자(金鐙子)·은등자(銀鐙子)·금립과(金立瓜)·은립과(銀立瓜)·모절(旄節) 【을유년 의궤에 의하여 각각 2개씩을 사용하였다.】 ·금장도(金粧刀)·은장도(銀粧刀) 【을유년 의궤에 의하여 각각 1개씩을 사용하였다.】 ·작선(雀扇) 【실록에 의하여 2개를 사용하였는데 그뒤에 예조에서 계달한 내용으로 인하여 4개로 바꾸어 사용하였고 청선(靑扇)은 2개를 사용하였다.】 ·청개(靑蓋) 【을유년·신사년의 의궤에 의하여 2개를 사용하였다.】 ·청양산(靑陽繖) 【실록과 을유년 의궤에 의하여 1개를 사용하였다.】 ·마궤(馬机) 【을유년·신사년의 의궤에 의하여 2개를 사용하였다.】 ·홍촉롱(紅燭籠)·청촉롱(靑燭籠)·백촉롱(白燭籠) 【실록과 을유년·신사년 의궤에 의하여 각각 2개씩을 사용하였다.】 ·금횡과(金橫瓜)·은횡과(銀橫瓜) 【신사년 의궤에 의하여 각각 1개씩을 사용하였다.】 ·은교의(銀交椅)·각답(脚踏)·좌자(坐子)·의자(倚子) 【신사년 의궤에 의하여 각각 1개씩을 사용하였다.】 이고, 흉의장(凶儀仗)에 들어가는 것은 우보(羽葆) 【실록과 을유년·신사년 의궤에 의하여 1개를 사용하였다.】 ·화철롱(火鐵籠) 【실록과 을유년

四。】白澤旗, 【依實錄用二。】金·銀鐙子、金·銀立瓜、旄節, 【依乙酉儀軌各用二。】金·銀粧刀, 【依乙酉儀軌, 各用一。】雀扇, 【依實錄用二, 其後因禮曹達辭, 改用四, 靑扇用二。】靑蓋, 【依乙酉、辛巳儀軌, 用二。】靑陽繖, 【依實錄及乙酉儀軌, 用一。】馬机, 【依乙酉、辛巳儀軌用二。】紅·靑·白燭籠, 【依實錄及乙酉、辛巳儀軌, 各用二。】金·銀橫瓜, 【依辛巳儀軌, 各用一。】銀交椅、脚踏、坐子、倚子, 【依辛巳儀軌, 各用一。】凶儀仗羽葆, 【依實錄及乙酉、辛巳儀軌, 用一。】火鐵籠, 【依實錄及乙酉儀軌, 用二十。】方相氏, 【依實錄及乙酉儀軌, 用四。】竹散馬, 【依乙酉、辛巳儀軌, 用二。】竹鞍馬, 【依實錄及乙酉、辛巳儀軌, 用四。】靑繡·紫繡鞍馬, 【依實錄, 各用二。】服玩、首飾, 【依辛巳儀軌, 用一。】紅綾袂長衫、藍羅袂裳、白綾袂襪裙、白苧布苔衣、手巾、白布襪、粉紅段子同段, 【依實錄及辛巳儀軌, 各用一。】溫鞋, 【依實錄, 粉紅段用一。】藍段子履, 【依辛巳儀軌,

의례에 의하여 20개를 사용하였다.】·방상씨(方相氏)【실록과 을유년 의례에 의하여 4개를 사용하였다.】·죽산마(竹散馬)【을유년·신사년 의례에 의하여 2개를 사용하였다.】·죽안마(竹鞍馬)【실록과 을유년·신사년 의례에 의하여 4개를 사용하였다.】·청수안마(靑繡鞍馬)·자수안마(紫繡鞍馬)【실록에 의하여 각각 2개씩을 사용하였다.】입니다. 복완(服玩)과 수식(首飾)은【신사년 의례에 의하여 1개를 사용하였다.】·홍릉겹장삼(紅綾袂長衫)·남라겹상(藍羅袂裳)·백릉겹말군(白陵袂襪裙)·백저포태의(白苧布笮衣)·수건·백포말(白布襪)·분홍단자동화(粉紅段子同靴)【실록과 신사년 의례에 의하여 각각 1벌씩을 사용하였다.】·온혜(溫鞋)【실록에 의하여 분홍단을 1벌 사용하였다.】·남단자리(藍段子履)【신사년 의례에 의하여 1벌을 사용하였다.】·홍단자의(紅段子衣) 1벌,【신사년 의례에 의하여 홍저사(紅苧紗) 1벌을 사용하였다.】·홍단자대(紅段子帶)【실록에 의하여 1벌을 사용하였다.】·홍단자(紅段子) 5벌, 지수(指手) 1벌,【신사년 의례에 의하여 백초수의(白綃手衣)를 사용하였다.】분홍저사수보로(粉紅苧絲繡甫老) 1벌, 고비룡(高飛籠) 1개,【신사년 의례에 의하여 이를 사용하였다.】·자칠목잠채(紫漆木簪釵)·황칠목잠채(黃漆木簪釵) 각각 1개씩【신사년 의례에 의하여 흑칠잠(黑漆簪) 1개를 사용하였다.】·소함(梳函)【실록에 의하여 1개를 사용하였다.】·토등상자【신사년 의례에 의하여 1개를 사용하였다.】·간자(竿子)【신사년 의례에 의하여 흑칠 1개를 사용하였다.】·거울[鏡]【신사년 의례에 의하여 구대갑(具台匣) 1개를 갖추었다.】·지분통(脂粉筒)【신사년 의례에 의하여 1개를 사용하였다.】입니다. 명기(明器)는 소(筭)【실록에 의하여 5개를 사용하였다.】·영(罌)【을유년·신사년 의례에 의하여 3개를 사용하였다.】·무(甗)【실록에 의하여 1개를 사용하였다.】·와조(瓦竈)【실록에 의하여 1개를 사용하였다.】·와정(瓦鼎)【실록에 의하여 4개를 사용하였다.】·와부(瓦釜)【실록에 의하여 1개를 사용하였다.】·와증(瓦甗)【실록에 의하여 1개를 사용하였다.】·포작(匏勺)【실록에 의하여 1개를 사용하였

用一。】紅段子衣一,【依辛巳儀軌, 用紅苧絲一。】紅段子帶,【依實錄用一。】紅段子五指手一,【依辛巳儀軌, 用白綃手衣。】粉紅苧絲繡甫老一、高飛籠一,【依辛巳儀軌用之。】紫·黃柒木簪釵各一,【依辛巳儀軌用黑柒簪一。】梳函,【依實錄, 用一。】土簾箱子,【依辛巳儀軌, 用一。】竿子,【依辛巳儀軌, 用黑柒一。】鏡,【依辛巳儀軌, 具臺匣一。】脂粉筒,【依辛巳儀軌, 用一。】明器筭,【依實錄, 用五。】罌,【依乙酉辛巳儀軌, 用三。】甗,【依實錄, 用一。】瓦竈,【依實錄, 用一。】瓦鼎,【依實錄, 用四。】瓦釜,【依實錄, 用一。】瓦甗,【依實錄, 用一。】匏勺,【依實錄, 用一。】磁杯,【依乙酉、辛巳儀軌, 用三。】籩豆,【依實錄, 各用十。】簋簋,【依實錄, 各用一。】樽,【依乙酉儀軌, 沙樽三。】食鉢、羹鉢、匙楪,【依實錄, 各用一。】蔬菜、脯醢楪,【依實錄, 用七。】炙楪,【依實錄, 用一。】饌楪,【依辛巳儀軌, 用九。】酒甗,【依乙酉、辛巳儀軌, 用一。】食托、匙[筯]、食卓、盥

	<p>다.】·자배(磁杯)【을유년·신사년 의궤에 의하여 3개를 사용하였다.】·변(邊)·두(豆)【실록에 의하여 각각 10개씩을 사용하였다.】·보(篋)·궤(篋)【실록에 의하여 각각 10개씩을 사용하였다.】·준(樽)【을유년 의궤에 의하여 사준(沙樽) 3개를 사용하였다.】입니다. 식발(食鉢)은 갱발(羹鉢)·시접(匙楪)【실록에 의하여 각각 1개씩을 사용하였다.】·소채포해접(蔬菜脯醢楪)【실록에 의하여 7개를 사용하였다.】·적접(炙楪)【실록에 의하여 1개를 사용하였다.】·찬접(饌楪)【신사년 의궤에 의하여 9개를 사용하였다.】·주건(酒甄)【을유년·신사년 의궤에 의하여 1개를 사용하였다.】·식탁(食托)·숟가락[匙]·젓가락[筯]·식탁(食卓)·관반(盥盤)·관이(盥匱)·향함(香盒)【실록과 의궤에 의하여 각각 1개씩을 사용하였다.】·향완(香椀)【을유년·신사년 의궤에 의하여 향로(香爐) 1개를 사용하였다.】·타우(唾盂)·혼기(溷器)·수기(洩器)【을유년·신사년 의궤에 의하여 각각 1개씩을 사용하였다.】입니다. 와중(瓦鍾)·와경(瓦磬)【실록에 의하여 각각 4개씩을 사용하였다.】·와훈(瓦熏)·소(簫)·생(箎)·지(觜)·축(祝)·어(敵)·금(琴)·슬(瑟)·우(竽)【실록과 신사년 의궤에 의하여 각각 1개씩을 사용하였다.】·목경(木卿)·당악인와(唐樂人瓦)【실록에 의하여 10인을 사용하였다.】·특종와(特鍾瓦)·특경와(特磬瓦)·방향(方響)·관(管)·당적(唐笛)·당필률(唐鬻栗)·향필률(鄉鬻栗)·대금(大琴)·당비파(唐琵琶)·향비파(鄉琵琶)·현금(玄琴)·가야금(伽倻琴)·대쟁(大箏)·아쟁(牙箏)·박화(拍和)·절고(節鼓)·장고(杖鼓)【신사년 의궤에 의하여 각각 1개씩을 사용하였다.】·목안마(木鞍馬)·목산마(木散馬)【을유년 의궤에 의하여 각각 1개씩을 사용하였다.】·목노(木奴)·목비(木婢)【을유년 의궤에 의하여 각각 40인씩을 사용하였다.】입니다.”</p>	<p>盤、盥匱、香盒，【依實錄儀軌，各用一。】香椀，【依乙酉、辛巳儀軌，用香爐一。】唾盂、溷器、洩器，【依乙酉、辛巳儀軌，各用一。】瓦鍾、瓦磬，【依實錄，各用四。】瓦熏、簫、笙、箎、觜、敵、琴、瑟、竽，【依實錄及辛巳儀軌，各用一。】木卿、唐樂人，【依實錄，用十。】瓦特鍾、瓦特磬、瓦方響、管、唐笛、唐鬻栗、鄉鬻栗、大琴、唐琵琶、鄉琵琶、玄琴、伽倻琴、大箏、牙箏、拍和、節鼓、杖鼓，【依辛巳儀軌，各用一。】木鞍馬、木散馬，【依乙酉儀軌，各用一。】木奴、木婢，【依乙酉儀軌，各用四十。】</p>
<p>숙종 61권, 44년 (1718 무술 / 청 강희 (康熙) 57년) 2월 24 일(계묘) 2번째기사</p>	<p>예장 도감(禮葬都監)에서 빈궁(嬪宮)의 지문(誌文)을 시기보다 앞서 찬진(撰進)해야 하였는데, 경신년(18631)과 신사년(18632) 의궤에 모두 임금이 행록(行錄)을 써서 내렸던 일이 있었다고 계품(啓稟)하니, 세자가 드디어 빈궁의 행실(行實)을 써서 정원에 내렸다. 그 글에 이르기를,</p>	<p>禮葬都監，以嬪宮誌文，所當前期撰進，而庚申、辛巳儀軌，皆有自上書下行錄之事啓稟，世子遂書下嬪宮行實于政院。其文曰：</p>

“빈(嬪)의 성(姓)은 심씨(沈氏)인데, 가계(家系)는 청송(靑松)이다. 청성백(靑城伯) 심덕부(沈德符)는 개국(開國)의 원신(元臣)으로 바로 13대 선조이다. 영의정 안효공(安孝公) 청천 부원군(靑川府院君) 심온(沈溫)은 곧 청성의 소출로 바로 12대 선조이다. 영의정 충혜공(忠惠公) 심연원(沈連源)은 바로 8대 선조이고, 영의정 익효공(翼孝公) 심강(沈綱)은 곧 충혜공의 소출로 7대 선조이다. 영의정 충정공(忠靖公) 심열(沈悅)은 5대 선조이다. 홍문관 교리 심희세(沈熙世)는 고조부인데, 청양군(靑陽君) 심의겸(沈義謙)의 손자로서 충정공의 후사가 되었다. 관찰사 심권(沈權)은 증조부이고, 의금부 도사 심봉서(沈鳳瑞)는 목사 심추(沈樞)의 아들로서 관찰사의 후사가 되었다. 아버지는 첨정(僉正) 심호(沈浩)이고, 어미는 고령 박씨(高靈朴氏)인데, 아버지는 군수 박빈(朴鑣)이고, 조부는 이조 판서 증 영의정 문효공(文孝公) 박장원(朴長遠)이고, 증조부는 직장(直長) 증 이조 판서 박환(朴煥)이다.

을축년(1863)에 관찰사가 가족을 거느리고 양근(楊根)에 있는 선영 아래에 가서 살았는데, 그해 8월 충정공의 무덤에서부터 거주하던 동리 밖에 이르기까지 밤마다 연달아 빛이 있어 십리 정도까지 뻗었으므로 동리가 대낮처럼 환히 밝아서 산 위의 새와 짐승을 모두 볼 수가 있었다. 그 다음날 어떤 중이 용문산(龍文山)에서 와서 말하기를, ‘이 곳에 날마다 연달아 서기(瑞氣)가 있으니, 어떤 이상한 일이 있을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였었다. 이달부터 그 어미가 비로소 임신하여 문득 연달아 꿈을 꾸었는데, 달빛이 환하게 비추고 오색의 상서로운 구름이 현란하여 마치 비단과 같았고 또 여러 마리 봉황새가 쌍쌍이 하늘로 날아 올랐었다.

병인년(1864) 5월 21일에 이르러 회현동(會賢洞) 우사(寓舍)에서 탄생하였는데, 어려서부터 빼어나게 슬기롭고 의젓하고 유순하였으며 아직 첫돌을 지나기 전에 능히 말을 하였다. 비록 유희(游嬉)하는 일이라도 반드시 법도가 있었고 일찍이 섬돌 아래로 내려와 마당을 밟지 아니하였다. 겨우 3세에 조모

嬪姓沈氏，系出靑松。靑城伯名德符，開國元臣，寔爲十三代祖。領議政安孝公、靑川府院君名溫，卽靑城出也，寔爲十二代祖。領議政忠惠公名連源，寔爲八代祖，領議政翼孝公名綱，卽忠惠出也，寔爲七代祖。領議政忠靖公名悅，寔爲五代祖。弘文館校理名熙世，寔爲高祖，以靑陽君名義謙之孫，爲忠靖後。觀察使名權，寔爲曾祖，義禁府都事名鳳瑞，以牧使名樞之子，爲觀察後。考僉正名浩，母高靈朴氏，父郡守名鑣，祖吏曹判書贈領議政文孝公名長遠，曾祖直長贈吏曹判書名煥也。乙丑歲，觀察使挈家往居於楊根先壙之下。其八月，自忠靖公墓，至所居洞外，連夜有光，彌亘十里，洞明如晝，山上禽獸皆可見。翌日有僧龍門山來言：“此地連日有瑞氣，未知有何異事？”云。自是月，母始有身，而輒連夢，月光照耀，五色祥雲，絢爛如錦，又有群鳳雙雙飛翔。至丙寅五月二十一日，誕生於會賢洞寓舍。幼而英慧婉順，未周甲，已能言語。雖游嬉之事，必有法度，足未嘗下階庭。甫三歲，養于祖母鄭氏，誠孝篤至，能

정씨(鄭氏)를 공양하는데 정성과 효도가 돈독하고 지극하여서 능히 어른[長者]의 기색을 살필 줄을 알았고, 뜻보다 먼저 받들어 모셨고, 기뻐하거나 노여워하는 것을 함부로 드러내지 아니하였고, 언어는 반드시 단정하고 조심스럽게 하였다. 모든 물건을 처음 보면 희귀한 것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어른에게 먼저 바쳤고, 어른이 먹으라고 명하지 아니한 음식은 먹지 않았다. 매양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부모가 계신 곳에서부터 증조모가 계신 곳과 조모가 계신 곳까지 문안한 다음에 비로소 물러났다. 5세 때에 관찰사가 여름철을 당하여 술에 취하여 자면서 그로 하여금 부채를 잡고 파리를 쫓게 하였더니, 명령을 따라서 오로지 부지런히 부쳐 저녁 때가 되도록 끝내 감히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가 깨기를 기다렸으므로 관찰사가 매우 기특하게 여기고 사랑하여 항상 가인(家人)들에게 이것을 말하였다고 한다. 천성이 간소한 것을 좋아하여 남이 좋고 호화로운 옷을 입는 것을 보고 일찍이 흠선하거나 부러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비록 호화롭고 아름다운 물건을 얻더라도 반드시 여러 아우들에게 모두 나누어주고 담담하게 물욕(物欲)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구차스레 얻으려고 하는 마음도 없었다. 오로지 아버지를 사랑하고 친족에게 화목하게 하는 데에만 돈독하였었는데, 이것은 모두 타고난 것이요 억지로 꾸며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다.

11세에 처음으로 간택(揀擇)에 참여하였다가 귀가한 뒤에 문득 비감한 말을 하고 손수 술과 음식을 장만하여 집안 여러 사람들에게 두루 먹였다. 두번째 간택하던 때에 이르러서는 종일토록 눈물을 흘렸는데, 부모 곁을 길이 떠나는 것을 슬퍼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때 마침 본집을 피하여 떠나게 됨에 사묘(私廟)에 하직하지 못함을 더욱 한스럽게 여겨 부모에게 청하여 가서 하직하려 했으나 집안이 부정(不淨)하였기 때문에 끝내 그 소원대로 할 수가 없었다. 별궁(別宮)에 들어와 거처하게 되자 하루 종일 단정하게 앉아서 잠시라도 함부로 기대거나 나태한 모양을 짓지 아니하였고, 시녀들이 혹시 유관(遊觀)하

知長者氣色，先意承奉，喜怒不妄形，言語必端慎。凡物有初見，雖非稀貴者，必先獻於長者，長者不命之食，則不食。每朝起，必自父母所，適曾祖母所及祖母所兩處問安，然後始退。五歲時，觀察使當暑月醉寢，使之抱扇揮蠅，則遵命惟謹，至暮終不敢離側，以俟其醒。觀察使甚奇愛，恒以語於家人云。天性喜簡素，見人被服鮮華，未嘗有欽艷希慕之色，雖得華美之物，必盡分於諸弟，淡然無物欲之累，無苟得之心。惟篤於愛親睦族，此皆得之天賦，非有資於矯揉勉強而然也。十一歲，初與揀擇，歸家之後，出言輒悲傷，手辦酒食，遍饋家衆。及再揀，終日涕泣，以永離父母爲悲。時適避離本第，尤以未得辭訣於私廟爲恨，請於父母，欲爲往辭，以家內不淨，竟不能如其願焉。及其入居別宮，終日端坐，未嘗暫時欹跛設惰容，侍女或請遊觀，亦不應唯，取《小學》置案上，恒愛讀。至大禮日，肚疼猝劇，父母親黨，皆遑遑不知所爲，則輒曰：“豈可以我病而誤大禮？”遂勉自持，行禮不愆，禮罷而疼復如初。既入大內，

	<p>기를 청하더라도 선선히 따르지 않았으며, 《소학(小學)》을 가져다가 책상 위에 두고 항상 애독하였다. 대례(大禮)하던 날에 이르러 복통이 갑자기 심하여 부모와 친족들이 모두 황급하여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였으나 문득 말하기를, ‘어찌 제 병 때문에 대례(大禮)를 그르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고, 드디어 힘써 스스로 견디면서 탈이 없이 행례(行禮)하였는데, 혼례가 파하자 복통의 증세가 다시 처음과 같이 아팠으나 이미 대내(大內)에 들어오자 문득 능히 스스로 힘써 예로 뵈어 위로 대전과 중궁 양전(兩殿)을 받들어 모심에 지극히 즐겁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해이하지 않았다. 나를 섬기는 데에 반드시 공경하고 반드시 조심하였다. 불행히도 기이한 질병에 걸려 신사년(1863)에 이르러 병이 위독했는데, 병이 조금 나아지자 매양 인현 왕후(仁顯王后)의 상사에 병 때문에 예를 다하지 못한 것을 매우 애통해 하였다. 갑오년(1866)에 성상의 환후가 명령하여 상하가 초조하고 황급했을 적에는 빈(嬪)이 음식을 폐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밤낮으로 자기 몸으로 대신하기를 원했고, 작년 온천에 행차할 때에는 더욱 연모하는 마음이 간절하였다. 정성과 효도로 사람들을 감동시킨 것이 이와 같았으니, 아! 천도(天道)는 선한 자에게 복을 주는 것이므로 빈의 덕으로서는 반드시 오래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한 번 질병에 걸려 갑자기 사람의 세상을 하직하였으니, 어찌 도리가 이치에 어긋나는 것이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는가? 이것이 내가 통곡하고 슬퍼하는 까닭이다.”</p> <p>하였다.</p>	<p>又輒能自強禮見。上奉兩殿，克盡怡愉，終始匪懈，事余必敬必慎。不幸中罹奇疾，至辛巳彌篤，及少間，每以仁顯先后之喪，病未盡禮爲至痛。歲甲午，聖候違豫，上下焦遑，嬪廢食涕泣，日夜願以身代，昨年溫幸，尤切戀慕。誠孝之感動人，類如此者。噫！天道福善。以嬪之德，必永年，而一疾遽厭人世，何理之反常至此耶？是余所以痛悼者也。</p>
<p>숙종 61권, 44년 (1718 무술 / 청 강희 (康熙) 57년) 2월 30 일(기유) 1번째기사</p>	<p>왕세자가 대신(大臣)들과 비국(備局)의 여러 재상들을 인접(引接)하였다. 영의정 김창집(金昌集)이 아뢰기를, “함경도 감사 이탄(李坦)의 장본(狀本)에 ‘내시(內寺) 18665)의 노비들에게 바치고 면천(免賤)하게 하여 그 곡식을 진제(賑濟)할 밀천에 보충하게 해주소서.’ 하였으니, 그 청을 허락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강원도 감사 김상직(金</p>	<p>己酉/王世子引接大臣、備局諸宰。領議政金昌集言：“咸鏡監司李坦狀本，乞令內寺奴婢，納米免賤，以補賑資。宜許其請。江原監司金相稷狀本言，目今賑政方張，請姑停鬱陵島年例搜</p>

	<p>相稷)의 장본에 ‘지금 진흙하는 정사가 바야흐로 확장되고 있으니, 잠시 울릉도(鬱陵島)를 연례로 수토(授討)하는 것을 정지시켜 주소서.’ 하였으니, 또한 허락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동래 부사(東萊府使) 조영복(趙榮福)의 장본에 통신사(通信使)를 시기에 맞추어 차출(差出)하라는 내용으로 호소하였으니, 마땅히 해조(該曹)에 분부하소서. 그리고 우선 접위관(接慰官)의 보고서를 기다렸다가 사신(使臣)을 차출하게 하소서.”</p> <p>하니, 세자가 모두 그대로 따랐다. 사간(司諫) 조명봉(趙鳴鳳)이 전에 계달한 것을 다시 아뢰었으나, 세자가 따르지 않았다. 장령(掌令) 한이원(韓以原)이 전에 계달한 것을 다시 아뢰었으나, 세자가 따르지 않았다.</p>	<p>討。亦宜許之。’ 東萊府使趙榮福，狀陳通信使及期差出之意。宜分付該曹。姑待接慰官文報，差出使臣。” 世子竝從之。司諫趙鳴鳳申前達，世子不從。掌令韓以原申前達，世子不從。</p>
<p>숙종 61권, 44년 (1718 무술 / 청 강희 (康熙) 57년) 3월 9일 (무오) 2번째기사</p>	<p>숙빈 최씨(淑嬪崔氏)가 졸(卒)하였다. 임금이 예장(禮葬)18668) 등의 일을 예에 의하여 거행하게 하였다. 관판(棺板)을 수송하게 하고 또 제수(祭需)를 넉넉히 보내도록 명하였다.</p>	<p>淑嬪崔氏卒。上命禮葬等事，依例舉行。輸送棺板，又命優送祭需</p>
<p>숙종 61권, 44년 (1718 무술 / 청 강희 (康熙) 57년) 3월 11일(경신) 1번째기사</p>	<p>태학(太學)의 재생(齋生)들이 권당(捲堂)18669) 하였다. 대개 태학에서는 언제나 대정(大政) 때를 당하면 반드시 재생 중에 관직의 제수를 감당할 만한 자를 택하여 ‘공천(公薦)’이라고 일컬어 이조에 보내면 이조에서는 즉시 이를 채용하였었다. 그러나 근년 이래 공천된 사람은 거개가 향곡(鄉曲)의 비루하고 미천한 사람들로 재임(齋任)18670) 에게 부탁하고 이로 인연하여 참여하게 되었으므로, 이미 공천의 본의가 아님은 말할 것도 없고 그저 조금하게 다투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습속을 조장하기에만 족하였다. 이 때문에 선부(選部)에서 혹 그 법을 폐하고 쓰지 않기도 했다. 이때에 이르러 판서 송상기도 태학에서 보내온 공천인을 등용하지 않았는데, 재생 등이 ‘현관(賢關)18671) 을 경멸한다.’고 일컫고 식당(食堂)에 들어가지 않았다. 임금이 본관 당상(本館堂上)을 보내어 며칠 동안 권유하니, 재생들이 그제서야 도로 들어가서 수재(守齋)하였다.</p>	<p>庚申/太學齋生捲堂。蓋太學，每當大政時，必擇齋生中可堪除職者，名曰公薦，送于吏曹，吏曹隨即用之，而近年以來，公薦之人，率皆鄉曲鄙瑣之輩，圖囑齋任，夤緣得參，已非公薦之本意，而適足以長其躁競無恥之習。以故選部或廢閣不用。至是判書宋相琦，亦不用太學所送之薦，齋生等稱以輕蔑賢關，不入食堂。上遣本館堂上，勸諭累日，諸生乃還入守齋。</p>
<p>숙종 61권, 44년</p>	<p>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다. 평안도 감사(平安道監司) 김유(金樛)가 관찰</p>	<p>藥房入診。平安監司金樛，使所管成</p>

<p>(1718 무술 / 청 강희 (康熙) 57년) 3월 14 일(계해) 3번째기사</p>	<p>하에 있는 성천 별장(成川別將)을 시켜서 공청(空靑)을 동(銅)을 채굴할 때에 구하게 하였는데, 정말로 1매(枚)를 얻어서 올려보냈으므로 약방에서 이를 쪼개어 장즙(漿汁)을 얻었다. 이리하여 약방에서 입진(入診)하기를 청하였고 시험삼아 안부(眼部)에 몇 방울을 넣었다.</p>	<p>川別將，求空靑於採銅之時，果得一枚上送，藥房剖之，得漿汁。於是，藥房請入診，試點眼部。</p>
<p>숙종 61권, 44년 (1718 무술 / 청 강희 (康熙) 57년) 3월 25 일(갑술) 2번째기사</p>	<p>헌부(憲府)에서 아뢰기를, “지난번 이어(移御)하는 거동이 있을 적에 어보(御寶)를 신고 가던 말이 넘어져 막중한 보갑(寶匣)을 손상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보를 실은 말의 마부[牽手]는 으레 태복시(太僕寺)의 거달(巨達)들을 【거달이라는 것은 태복시의 마부를 이르는 말이다.】 정하여 세우는데, 공공연히 그 역(役)을 면하기를 도모하여서 본시(本寺)의 공물인(貢物人)의 말과 사람으로 대신시키기 때문에 말이 넘어져 쓸어지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해당 내승(內乘)은 과직하는 것으로만 그칠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잡아다가 문초하고 죄를 정하게 하고 역을 회피하기를 도모한 거달과 대신 들어간 마부도 아울러 구금하고 죄를 주도록 명하소서. 나라의 큰 일은 제사(祭祀)에 있는데, 제향하는 물품을 태상시(太常寺)에서 봉치(捧置)하는 법규가 없으므로 제사에 임하여 갑자기 공물 주인(貢物主人)에게 책임지우므로 급한 때 임하여 봉진(封進)하다 보니 외람되고 설만한 일이 많습니다. 이제부터는 본시에서 미리 날짜를 정하여 봉치(封置)해 두었다가 기일에 이르러 제때에 진배(進排)하게 하소서. 대궐에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오는 폐단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대소 관원들의 근수(跟隨)18678) 는 전부터 법례(法例)가 정해져 있는데도 지금은 한 사람의 관원이 출입하는 데 대동하는 겸종(兼從)18679) 이 6, 7명이나 되어 조반(朝班)에서 기거할 때에는 마치 봄비는 저자와 같으니, 특별히 신칙하여 한결같이 정한 법식대로 따르게 하소서. 만약 금법을 범하는 자가 있으면 전례에 의하여 죄를 주소서. 작년에 추천된 이덕봉(李德朋)과 김시좌(金時佐)는 이미 아무런 명망이 없고</p>	<p>憲府論：“向日移御舉動時，御寶載持馬顛蹶，莫重寶匣，至於傷損。載寶馬牽手，例以太僕巨達【巨達者，太僕牽夫之名也。】定立，而公然圖免，以本寺貢物人入把，以致墜蹶，當該內乘，不可罷職而止。請拿問定罪，圖避巨達及換入牽手，竝命囚禁科罪。國之大事在祀，而享需，太常既無捧置之規，臨祭卒責於貢物主人，臨急封進，事多猥褻。請自今自本寺，預爲定日封留，以爲趁期進排。闕中闕入之弊，日甚一日。大小官跟隨，自有法例，而今則一官員出入，所帶僉從，多至六七，朝班起居之時，殆同街市。請別樣申飭，一從定式，如有犯禁者，依例科罪。昨年被薦人李德朋、金時佐，既無名稱，且乏學識，遽登薦章，不可仍置。請刊去。薦中左尹李宇恒，三年久據，一味怠慢，聽事之際，昏謬亦多，請罷職。安東府使柳重茂，手拙才短，不能堪任，務劇事繁，一任</p>

	<p>또 학식도 부족한데도 갑자기 천장(薦章)에 올랐으니,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청컨대 천장에서 삭제하소서.</p> <p>천거된 자 중에서 좌윤 이우항(李宇恒)은 3년 동안 오래도록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한결같이 태만하였으며, 정사를 청리할 적에도 혼매(昏昧)하여 잘못된 것이 또한 많았으니, 청컨대 파직시키소서.</p> <p>안동 부사(安東府使) 유중모(柳重茂)는 아무런 재능도 없어 직임을 감당할 수가 없으므로 긴급하고 번다한 사무를 한결같이 지체시키고 있으니, 청컨대 파직시키소서.</p> <p>공주(公州)는 영하(營下)의 큰 고을로 가장 다스리기가 어렵다고 일컬어졌는데, 새로운 목사(牧使) 이만선(李萬選)이 여러 번 주목(州牧)을 맡았었으나 치적(治績)이 있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기부(圻府)에 재임하였을 적에는 관속(官屬)들이 다 흩어졌었으니, 청컨대 개차(改差)하소서.</p> <p>중부시 정(宗簿寺正) 박행의(朴行義)는 일찍이 봉명 사신(奉命使臣)으로 갔을 때에 해괴한 행동과 비루한 잔단 짓을 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근래에 또 자기의 사채(私債)를 징수하기 위하여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구속하였으며 낭사(廊舍)의 이웃에다 하나의 영어(囹圄)를 지었는데, 가까운 근방에 사는 소민(小民)들이 지탱하여 감당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니, 청컨대 파직시키고 서용하지 마소서.</p> <p>양국(兩國)이 교제(交際)하는 일은 사체가 지극히 중한데, 일전에 재판 차왜(裁判差倭)가 동래 부사(東萊府使)와 상견(相見)할 때에 갑자기 분노를 터뜨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앞으로 나가서 맞닥대질한 것은 비상한 짓으로 우리 나라를 가볍게 여겨 모욕한 것이 심하였습니다. 훈도(訓導)와 별차(別差)가 잘 주선하여 조정시키지 못해서 이와 같이 해괴한 일이 있기에 이르렀으니, 청컨대 해당 훈도와 별차를 잡아다가 문초하고 죄를 정하소서.</p> <p>강릉 부사(江陵府使) 박희진(朴熙晉)은 전후 관직에 있을 적에 명성과 치적이</p>	<p>曠滯，請罷職。公州，營下劇邑，最稱難治，而新牧使李萬選，累典州牧，治績無聞。曾莅圻府，官屬盡散，請改差。宗簿正朴行義，曾於奉使之日，怪駭之舉，鄙瑣之事，不一而足。近又爲徵私債，任自拘人，廊舍隣比，作一囹圄，傍近小民，殆難支堪，請罷職不赦。兩國交際，事體至重，而乃者裁判差倭，與東萊府使相見時，猝然發怒，離席前進，作拏非常，其輕侮國家甚矣，而訓導、別差，不能周旋調娛，致此駭舉。請當該訓導、別差，拿問定罪。江陵府使朴熙晉，前後居官，聲績俱乏，及莅雄府，多拋政務，吏緣爲奸，民怨滋興，請罷職。典簿朴宗陽，本出寒徵，且乏名稱，曾由部官，遽躋此任，請改差。義州呼訴人朱益桓臬示之請，方有諫院之達，而第念此事，實前古所未聞之大變怪，歸咎朝廷。要惠賣國，名在聯狀者，皆可伏法，而今日諫院之只請狀頭臬示，猶出於太寬。請益桓亟令臬示。關西官奴婢自願納贖之令，遂出意外，適副率畜官妓者之願。托名補賑，虛張穀數者，指不勝擣，請還寢西路官奴婢自願</p>
--	--	---

모두 부족했는데, 웅부(雄府)에 재임하게 되어서는 정무를 돌보지 않는 것이 많아 아전[吏緣]들이 농간을 부리므로 백성들의 원망이 크게 일고 있으니, 청컨대 파직시키소서. 전부(典簿) 박종양(朴宗陽)은 본래 한미한 출신이고 또 명망도 부족한데, 일찍이 부관(部官)을 거쳐서 갑자기 이 직임에 올랐으니, 청컨대 개차하소서.

의주(義州)에서 호소한 사람인 주익환(朱益桓)을 효시(梟示)하자는 청을 마야흐로 간원에서 계달하였습니다. 생각건대 이 일은 실로 전고(前古)에 듣지 못하던 큰 변고(變故)로 해괴하게도 허물을 조정에 돌리면서 은혜를 바라 나라를 팔았으니, 이름이 연장(聯狀)에 오른 자는 모두 복주(伏誅)하는 것이 가합니다. 그런데 이제 간원(諫院)에서는 다만 장두(狀頭)18680) 만을 효시(梟示)하자고 청할 뿐이었으니, 이는 오히려 지나치게 관대한 데서 나온 조치입니다. 청컨대 주익환을 빨리 효시하도록 하소서.

관서(關西) 지방의 관노비(官奴婢)에게 스스로 자원하여 속미(贖米)를 바치게 하라는 명이 갑자기 뜻밖에 나왔는데, 이는 마침 관기(官妓)를 거느리고 축첩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는 격이 되었습니다. 진흙하는 데 미곡을 보탠다는 미명에 아래 곡물의 수량을 헛되이 과장한 것을 지목하여 가리키자면 이루 말할 수가 없으니, 서로(西路)의 관노비들에게 자원하여 속미를 바치라는 명을 도로 중지하소서. 장단부(長湍府)에서 잡은 사주인(私鑄人)18681) 을 포도청에 이송하였는데도 포도청에서 철저히 문초하지 않고 곧바로 먼저 석방하여 보낸 것은 지극히 미안한 일입니다. 장단 부사의 직임은 토포사(討捕使)의 직임을 겸하고 있는데, 스스로 추문하여 다스리지 않고 바로 포도청으로 보낸 것도 일을 허술하게 처리한 실책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청컨대 해당 포도대장(捕盜大將)과 장단 부사를 아울러 추고(推考)하여 무겁게 다스리고, 사주인을 다시 잡아 가두고 각별히 추핵(推覈)하게 하소서.

권무(勸武)18682) 는 곧 인재를 뽑아서 장수의 후보자로 배양하려는 것입니

納贖之令。長湍府所捉私鑄人，移送捕廳，則捕廳不加究問，經先放送，極爲未安，而長湍，職兼討捕，則不自推治，徑送捕廳，亦難免踈緩之失。請當該捕盜大將、長湍府使，竝從重推考，私鑄人，更爲捉囚，另加推覈。勸武，乃所以拔人才儲將望者也。近來毋論人地之高下，倖其科程之捷路，百計投入，皆是冗雜之類。請申飭各軍門，不合者一併刊汰。”世子只從內乘及享需事。

	<p>다. 근래 인물과 문지(門地)의 높낮음을 막론하고 이것이 과정(科程)의 지름길임을 요행으로 여겨 사람들이 온갖 계책으로 투입하여 들어오지만, 이들은 모두 쓸데없는 잡류들입니다. 청컨대 각 군문(軍門)에 신칙하여 합당치 못한 자는 일체 모두 도태(陶汰)시키게 하소서.”</p> <p>하니, 세자가 다만 내승과 제향의 물품에 대한 일만을 그대로 따랐다.</p>	
<p>숙종 61권, 44년 (1718 무술 / 청 강희(康熙) 57년) 4월 1일 (기묘) 6번째기사</p>	<p>강화 유수(江華留守) 권성(權聃)이 소장을 올려 본도(本島)의 형편을 논하기를,</p> <p>“갑진(甲津)의 수어(守禦)는 방책이 대강은 준비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지(草芝) 이서(以西)와 장곶이[長串] 이남까지의 바닷가 빨흙이 있는 땅은 조수가 밀물일 때에도 짐을 무겁게 실은 배들은 뜨기가 어려운데 장봉(長峰)과 주문(注文) 사이에 만약 향도(鄉導)가 있다면, 또한 어찌 마음을 편히 놓을 수 있을 정도뿐이겠습니까? 정포(井浦)에서 인화(寅火)·철곶이[鐵串]를 거쳐 승천보(昇天堡) 서쪽에 이르기까지 교동(喬桐)의 해로(海路)에 있는데, 그 동북쪽은 곧 경강(京江)의 하류로 설치한 것이 지극히 허술합니다. 전에 있었던 수신(守臣)들이 전의 일에 크게 징계되어 오로지 갑진(甲津)에만 힘을 기울이느라고 서북쪽에는 돌볼 겨를이 없었는데, 고(故) 상신(相臣) 이완(李滄)이 효종[孝廟]에게 고하기를, ‘적인(敵人)들이 해빙(海氷)할 때를 당하여 삼강(三江)18695)의 배를 거두어 강의 흐름을 따라 내려온다면 승천보가 가장 염려스러운데, 어찌 갑곶이만이 적병의 요로이겠습니까?’라고 하였으니, 상신이 먼 장래를 염려하는 식견이 이와 같았습니다. 지난해 삼군문(三軍門)18696)에서 축성(築城)한 뒤에 거류(居留)하는 신하들이 차차로 축성하도록 할 것으로 일찍이 정탈(定奪)한 적이 있었습시다만 그 뒤 흉년이 들었고, 또 내성(內城)의 역사(役事)가 있었으므로 성명(成命)이 드디어 중지되었습니다. 지금 강화의 서북 지역에 축성하는 것을 한결같이 조정의 명령에 따라 동쪽 지역에서 축성한 것과 같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시다만, 신의 얕은 식견은 이것</p>	<p>江華留守權聃, 上疏論本島形便曰: 甲津守禦之方, 蓋云粗備, 草芝以西, 長串以南, 海濱淤泥之地, 雖在潮生之時, 難泛重載之舟, 而長峰、注文之間, 倘有鄉導, 亦安得晏然而已也? 自井浦歷寅火、鐵串, 至昇天堡西, 有喬桐, 海路東北, 是京江下流, 而所以設置者, 極其踈虞。在前守臣, 深懲前事, 專力於甲津, 而西北則有所未遑, 故相臣李滄告于孝廟曰: “敵人當解冰之時, 收三江之船, 順流而下, 昇天最爲可慮。 豈獨甲串爲敵兵要路乎?” 相臣慮遠之見, 蓋嘗如此。 頃年三軍門築城後, 居留諸臣, 次次築城事, 曾有定奪, 而厥後歲歉, 且有內城之役, 成命遂寢格矣。 今此西北築城, 一遵朝令, 當如東面之爲, 而臣之淺見, 有異於是。 蓋長城橫築, 外面雖好, 守卒單弱, 女牆易越, 而若其築城之費, 不可勝言。 臣聞自古設墩, 宜密而不</p>

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대저 장성(長城)은 가로로 축성하면 외면은 보기가 좋지만 수졸(守卒)이 단약하게 되어 여장(女牆)을 쉽게 넘게 됨은 물론이고 축성하는 데 드는 비용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신이 듣건대, 옛부터 돈대(墩臺)를 설치할 적에는 마땅히 조밀하게 할 것이요 소루하게 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두 돈대 사이에 시석(矢石)이 서로 미치게 만든 다음이라야 우리의 수비가 공고하게 되고 저들은 오더라도 꺼려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물을 타고 감히 경솔하게 나아오지 못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해안에 올라오더라도 뚫고 지나가기가 어려울 것이니, 이것이 진실로 적을 방어하는 승산(勝算)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돈대의 간격이 넓어서 적선(賊船)이 정박하는 장소에 알맞으니 장성을 축조하지 말고 흙돈대[土墩]를 증수(增修)하되 높이를 4, 5장(丈)이 되게 한다면, 일이 줄어들어 만들기가 쉽고 수비가 온전하여 방어가 튼튼해질 것입니다. 이는 장성의 축조에 비하여 물력과 노동의 비용을 동일하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두포(船頭浦)의 좌우와 갈곳이[葛串]·양암(陽巖) 두 돈대에 이르러서는 한 번 포(浦)를 막아 통(筒)을 쌓은 뒤로는 포구(浦口)에 진흙뻘이 가로질러 있게 되어 큰 배들이 통행하기가 어려우므로 양암과 갈곳이 이 두 돈대는 실지로 무익하게 되니, 설치해야 할는지 혁파해야 할지의 편의(便宜)를 중신(重臣)을 보내어 자세히 살피고서 품정(稟定)하게 하소서. 월곶이[月串] 이상에서 휴암(鶴巖) 이하까지에 축조한 성은 조수에 충격을 받아 여장(女牆)과 더불어 파괴되어 떨어져 나갔으니, 개축하거나 부서진 곳을 보완하는 일은 결단코 중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농사일이 바야흐로 한창이어서 백성들을 동원하기가 실로 어려우니, 지금 각창(各倉)의 회계(會計) 이외의 나머지 미곡을 가지고 백성들을 모아서 역사를 일으키되, 먼저 토성(土城)을 쌓아 그것이 완고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여장(女牆)을 쌓는 것이 마땅합니다. 신은 문수 산성(文殊山城)의 일에 대해 삼가 개탄스럽게 여기는 점이 있습니다.

宜疎。兩墩之間，矢石相及，然後我守而固，彼來而忌。乘流不敢輕進，登岸難於穿過，此固禦敵之勝算也。今於墩臺間闕，賊船宜泊處，勿築長城，增修土墩，其高可四五丈，則事省而易就，守專而備固。比於長城之築，物力、勞費，不可同日語也。至於船頭浦左右，葛串、陽巖兩墩臺，則一自塞浦築(筒) [坵] 之後，浦口泥橫，大舟難通，陽、葛兩墩，實爲無益。宜設宜罷之便宜，遣重臣審察而稟定。月串以上鶴巖以下，所築之城，爲潮水衝破，竝與女牆而破落。改築補缺，斷不可已，而農務方殷，動民實難。今以各倉會外剩米，募民興作，先築土城，待其完固，更築女牆宜矣。臣於文殊山城事，竊有慨然者。此城之設，初出睿算，而築城之後，更無措置，軍兵不多，器械不備，糧餉不足，無一可恃。目今閑丁，最爲難得，添給軍兵，實無善策，而仁川、金浦之竝屬富平，無大關繫。今以金浦，移屬通津，以爲協守之地，則似有一分之助。至於糧餉，則朝家之前所劃給，亦至一千餘石，而斂散失宜，奸吏用事，以致太半

다. 이 성의 설치는 처음 임금의 계책에서 나온 것이지만 축성한 뒤에 다시 조치(措置)한 적이 없어 군병(軍兵)도 많지 않고 기계(器械)도 준비되지 않고 양향(糧餉)도 부족한 등 어느 한 가지도 믿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한 정(閑丁)을 얻기가 제일 어렵기 때문에 군병(軍兵)을 첨가하여 주는 데 있어 실로 좋은 계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천과 김포를 아울러 부평(富平)에 예속시키는 것은 크게 긴요한 데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니, 지금 김포를 통진(通津)에 이속시켜 협력하여 수비하게 한다면 일꾼이나마 도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양향에 이르러서는 조정에서 전에 지급한 것이 또한 1천여 석에 이르렀습니다만, 염산(斂散)이 마땅하게 되지 못하고 간리(奸吏)들이 용사(用事)한 탓으로 그 태반이 귀록(鬼錄)에 기입되어 있어 성에 속한 요미(料米)가 지금 바야흐로 부족한 형편이므로 형세가 숫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통진에 맡긴다면 구투(舊套)를 그대로 답습할까 염려됩니다. 산성 별장(山城別將)을 각별히 선택해서 임명하고 인신(印信)을 만들어 주어 조적(糶糶)과 기계(器械)를 수리하고 보충할 수 있게 한다면 본부(本府)에서 미곡과 금전을 적당하게 헤아려 별장(別將)에게 내주고 그로 하여금 본전은 그대로 두고 이식을 취하여 요량하여 개수(改修)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화포(火砲) 등의 물건은 본부(本府)에서 참작하여 이급(移給)하는 것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그 소장을 묘당(廟堂)에 내렸는데, 묘당에서 복주(覆奏)하기를,

“흙돈대[土墩]를 더 설치하고 양암과 갈곳이를 혁파하자는 의논에 대해서는 그 유례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따로 중신을 파견하여 다시 간심(看審)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파괴되어 떨어져나간 구성(舊城)은 더욱 급히 먼저 수리 보수해야 하는데, 이는 본부에서 수시로 살펴 선처하여 완전하고 공고하게 만들기를 도모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문수 산성에 대해 논의한 것은 진실로 의견

在鬼錄中，城屬料米，今方告乏，其勢不得不加數劃給，而專委通津，則舊套之仍襲可慮。山城別將，各別擇差，造給印信，得專糶糶，器械之可以修補者，則本府米錢，量宜出給於別將，使之存本取贏，料理修改，火砲等物，自本府參酌移給，亦似無妨。

上下其疏于廟堂，廟堂覆奏言：“土墩加設，陽、葛革罷之議，其來已久，不必別遣重臣更審。舊城之破落者，尤宜急先修補，惟在本府相時善處，俾爲完固之圖。文殊山城，所論儘有意見，宜以富平所屬金浦割移，而山城別將，自兵曹，各別擇差，造給印信，使管糶糶，及凡事軍餉、器械，竝自本府善處。”上從之。

	<p>이 있는 것이니, 마땅히 부평에 소속한 김포를 떼어내어 이속시키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성 별장(山城別將)은 병조에서 각별히 선택하여 임명하게 하소서. 인신을 만들어 주어 조적(糶糶)과 군항(軍餉)·기계(器械) 등 제반 일을 관리하게 하는 것은 모두 본부(本府)에서 선처하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의 그대로 따랐다.</p>	
<p>숙종 61권, 44년 (1718 무술 / 청 강희(康熙) 57년) 4월 3일 (신사) 4번째기사</p>	<p>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다. 영의정 김창집(金昌集)이 같이 들어왔는데 임금이 침맞기를 끝마치자, 김창집이 아뢰기를,</p> <p>“헌신(憲臣)이 제물(祭物)의 물종(物種)을 미리 봉류(捧留)해 두자는 일을 논달(論達)하여 준하(準下)받았었는데, 대저 제물을 미리 받아들여 창고에 납입할 수 없는 것은 그 물종이 상하거나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대간에서 말한 것이 이와 같지만, 이는 이미 증험해 본 일입니다. 다만 1개월을 기한으로 삼아 미리 받아서 창고에 납입해 두는 것이 사의에 맞을 것 같습니다.”</p> <p>하고, 제조 민진후(閔鎭厚)는 아뢰기를,</p> <p>“제물을 미리 봉류(捧留)할 경우 시일이 조금 오래 되면 상하거나 부패하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편포(片脯)와 건시(乾柿)와 같은 물건을 이르러는 색깔과 맛이 더욱 쉽게 변하는데, 비록 1개월을 기한으로 삼더라도 또한 반드시 난처한 걱정이 있게 될 것입니다. 신의 생각에는 기한을 정하지 말고 다만 기일보다 며칠 앞서 골라서 봉진(封進)하게 함으로써 임시하여 구차스레 충당하는 걱정을 면하게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할 것 같습니다.”</p> <p>하니, 임금이 좋다고 하였다. 김창집이 또 아뢰기를,</p> <p>“통신사(通信使)를 지금 차출(差出)하여야 하는데 연로(沿路)에서 접대(接待)하는 것이 다른 사객(使客)에 비하여 지극히 우대하기 때문에 작은 고을에서 들어가는 경비도 수백 냥에 이르니, 마땅히 감생(減省)하는 방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p> <p>하고 민진후는 아뢰기를,</p>	<p>藥房入診，領議政金昌集同入。上受鍼訖，昌集曰：“憲臣以祭物物種，預爲捧留事，論達準下，而大抵祭物，不得預捧入庫者，蓋以物種傷變故也。臺言雖如此，此是已驗之事。只以一朔爲限，預捧入庫，恐爲得宜。”提調閔鎭厚曰：“祭物預爲捧留，日月稍久，則多致傷敗。至如片脯、乾柿之屬，色味尤爲易變，雖以一朔爲限，亦必有難處之患。臣意則勿爲定限，只於先期數日，擇捧封進，俾免臨時苟充之患，最爲得宜矣。”上可之。昌集又言：“通信使今當差出，沿路接待，比他使客，極爲優異，小邑所費，亦至數百兩。宜有省減之道矣。”鎭厚曰：“信使經過處，如經亂離。今雖減省，亦必豐侈矣。”都提調李頤命曰：“通信使之奴子，亦令三重席云，其他可以推知矣。”上曰：“越海之行，實關死生，故有此侈待之例。辛卯年亦有裁</p>

	<p>“통신사(通信使)가 지나가는 곳은 마치 난리를 겪은 것과 같으니, 지금 경비를 감생하더라도 또한 반드시 풍성하고 사치스러워질 것입니다.”</p> <p>하고, 도제조 이이명(李頤命)은 아뢰기를,</p> <p>“통신사의 노자(奴子)도 삼중(三重)으로 된 자리를 칸다고 하니 그밖의 것은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p> <p>하니, 임금이 이르기를,</p> <p>“바다를 건너는 사행(使行)은 실로 사생(死生)과 관계되기 때문에 이처럼 사치스럽게 접대하는 예가 있는 것이다. 신묘년(1870)에도 경비를 억제하여 줄이자는 청이 있었으나 끝내 허락을 받지 못하였던 것은 또한 뜻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신들의 계달이 이와 같으니, 경비를 감생하도록 분부하되 너무 매몰한 지경에 이르지 말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p> <p>하였다.</p>	<p>省之請，而終不聽許者，蓋亦有意矣。大臣所達如此，分付減損，而無至埋沒宜矣。”</p>
<p>숙종 61권, 44년 (1718 무술 / 청 강희 (康熙) 57년) 4월 8일 (병술) 3번째기사</p>	<p>공조 판서 민진원(閔鎭遠)이 상서(上書)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p> <p>“본청(本廳)에 【민진원이 바야흐로 진휼청(賑恤廳) 당상관의 관직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본청이라고 말한 것이다.】 본디 저장되어 있던 12만 곡(斛)의 미곡을 작년의 진휼(賑恤)에서 다 허비하였으므로 그 나머지는 단지 1만 7천여 곡뿐입니다. 그러나 지금 도하(都下)의 기근의 참상은 작년과 다를 바가 없어 이번 달에 들어선 뒤로는 집집마다 끼니를 잇지 못하여 사람들마다 굶주림을 호소합니다. 게다가 여역(癘疫)까지 크게 성행하여 사망하는 사람이 잇따랐으니, 보고 듣기에 진실로 슬프고도 가슴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제 자신이 정승의 직임에 있으면서도 소매에 손을 넣은 채 멀뚱히 보고만 있으면서 우리 성상의 적자(赤子)들이 물과 불 가운데 빠져 아우성치는데도 이를 구제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는 신의 죄입니다. 작년에 진휼하는 정사를 베풀 때 매순차 때마다 발매(發賣)하는 곡식이 으레 6, 7천 곡이 듭니다. 지금 한 차례 발매하였으나 남은 것이 1만여 곡이니 이것은 후일 시급할 때의 수용에</p>	<p>工曹判書閔鎭遠上書。略曰：本廳【鎭遠方帶賑恤廳堂上，故曰本廳。】宿儲十二萬斛之米，費盡於昨年賑政，所餘只是一萬七千餘斛，而見今都下飢荒之慘，無異昨年，入此月後，家家絕火，人人告饑。加以癘疫大熾，死亡相繼，耳目所及，誠可愁痛，而身居賑任，袖手愒視，使我聖上之赤子，宛轉叫呼於水火之中，而莫之救濟，臣之罪也。昨年賑政時，每巡發賣，例費六七千斛。今雖一次發賣，所餘萬斛，可備日後時急之用，至於士夫家尤甚饑餒者，亦以某樣穀推移，限千斛散</p>

	<p>대비할 수 있습니다. 사대부의 집들 가운데 더욱 심하게 굶주리는 자들에게는 또한 어떤 곡물이든지 미루어 옮겨다가 1천 곡을 한정하여 나누어서 대여해 준다면 급한 사정을 조금이나마 풀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본청에서는 원래 응당 받아들여야 할 세미(稅米)가 없기 때문에 미곡을 모으는 방도가 매우 어렵습니다. 십여 년 이래 삼남(三南)의 월과미(月課米)의 값을 받기를 청하여 그 잉여곡을 가져다가 진휼할 곡식으로 보충해 온 것이 매년 수천 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대신이 아뢰는 차자(筭子)로 인하여 훈국(訓局)에 빼앗겼으므로 본청에서는 이것을 잃은 뒤에 더욱 손을 쓸 방도가 없습니다. 진휼할 밀천의 중요함도 군수(軍需)에 못지 않은 것인데 더구나 지금은 피차에 완급(緩急)이 다르니, 진휼청에 환속시키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p> <p>하니, 세자가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였다.</p>	<p>貸，則庶可少紓其急矣。且本廳元無應入之稅，故聚穀之道甚艱。十餘年來，請得三南月課價，取剩補賑者，每年爲數千斛矣，頃因大臣陳筭，見奪於訓局。本廳失此之後，尤無措手處。賑資之重，不下於軍需，而矧今彼此緩急自別，恐不可不還屬賑廳也。世子令廟堂稟處。</p>
<p>숙종 61권, 44년 (1718 무술 / 청 강희 (康熙) 57년) 4월 9일 (정해) 1번째기사</p>	<p>왕세자가 하령(下令)하기를, “지난해 역질(疫疾)이 치성하였을 때 경중(京中)에서 바야흐로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상께서 특별히 진념(軫念)하시어 의사(醫司)에 명하여 의원(醫員)을 따로 정하고 약물(藥物)을 넉넉히 주어 구료하게 하였다. 지금도 이에 의하여 거행할 것으로 분부하고 또한 제도(諸道)에 신칙하여 각 고을로 하여금 상당한 약물을 지급하고 각별히 구료하게 하라.”</p> <p>하였다.</p>	<p>丁亥/王世子下令曰：“上年癘疫熾盛時，京中方痛者，聖上特加軫念，命醫司，別定醫員，優給藥物救療矣，今亦依此舉行事分付。亦爲申飭諸道，令其各邑，題給相當藥物，各別救療。”</p>
<p>숙종 61권, 44년 (1718 무술 / 청 강희 (康熙) 57년) 4월 21일(기해) 2번째기사</p>	<p>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다. 판부사(判府事) 서종태(徐宗泰)가 같이 들어와서 임금의 수부(手部)에 있는 어제(魚際)와 족부(足部)에 있는 연곡(然谷)의 좌우혈(左右穴)에 침을 맞기를 끝마치자, 서종태가 아뢰기를, “빈궁(嬪宮)의 상사(喪事) 때에 대소 목물(木物)을 동협(東峽)·해서(海西) 지방에 나누어 정한 숫자가 많았는데, 민간이 몹시 가난하고 또 여역을 만났으므로 벌목(伐木)하고 운반하여 내려올 즈음에 백성들의 힘이 지쳐 능히 지탱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소문을 들으니 실로 너무도 슬프고 불쌍합니다. 앞으로 또 복호 도감(復號都監)의 역사(役事)가 있을 터인데, 묘소를 옮기고 묘소</p>	<p>藥房入診，判府事徐宗泰同入。上手部魚際、足部然谷左右穴受針訖，宗泰言：“嬪宮喪事時，大小木物，分定於東峽、海西者數多。民間赤立，且值癘疫，伐木運下之際，民力困悴，不能支堪。聞之實甚慘憐。前頭又有復號都監之役，未知移墓與封墓，將何爲定，而民事如此，有難多數分定。卽</p>

	<p>를 봉하는 것을 장차 어떻게 정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일이 이와 같으니, 많은 숫자를 분정(分定)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묘소에 소용되고 남은 잡물(雜物)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둔 것이 상당히 많은데, 목물(木物) 가운데 옮겨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기록하고 납입시켰습니다. 그러나 모든 여러 가지 분정(分定)한 물종(物種)도 반드시 수량을 참작하여 납입하게 함으로써 절약하고 줄이도록 힘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p> <p>하고, 제조 민진후(閔鎭厚)는 아뢰기를, “물종(物種)을 외방에 분정하는 것이 구례(舊例)이긴 합니다만, 수납할 즈음에 폐단이 많으니, 만약 호조에서 바로 무역(貿易)하여 사용하게 하고 거기에 드는 가본(價本)을 각 고을에 분정한다면, 폐단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도감에 명하여 품처하게 하였는데, 그뒤 도감에서 서울에서 무역하여 사용하도록 복주(覆奏)하였다. 민진후가 또 아뢰기를, “지금 여역과 기근이 겹하였는데 도성에도 길거리에서 굶주려 죽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축한 곡식이 바닥이 나서 구제할 방도가 없으니, 매우 슬프고 가련합니다. 비록 진휼청을 설치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지난해의 예에 의해서 여역을 앓는 사람에게만이라도 지급한다면, 그 숫자가 매우 많지 않을 것이어서 준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p> <p>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p>	<p>今墓所用餘雜物留置者頗多，木物之可以移用者，既已書入，而凡諸分定物種，必須參量容入，務爲節省似好矣。” 提調閔鎭厚曰：“物種之分定外方，雖是舊例，輸納之際，自多弊端。若自戶曹，直貿用之，以其所入價本，分定於各邑，則似有省弊之効。” 上命都監稟處。是後，都監覆奏，自京貿用。鎭厚又言：“卽今癘疫飢饉兼行，城中亦有道殍，而蓄儲蕩竭，無以救濟，深可哀憐。雖不得設賑，若依上年例，只爲題給於癘疫人，則其數不至甚多，似可辦得矣。” 上從之。</p>
<p>숙종 61권, 44년 (1718 무술 / 청 강희(康熙) 57년) 5월 1일 (기유) 2번째기사</p>	<p>정언(正言) 이명익(李明誼)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임금이 스스로 잘 다스릴 수는 없는 것이므로 믿는 것은 오로지 재상뿐인데, 만약 적격자를 얻지 못한다면 국가가 그 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정승[鼎席]들 가운데 우두머리에 있는 자가 한번 사화(士禍)를 빚어낸 뒤로 스스로 사류(士類)에 용납되지 못할 줄 알고서 염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권세</p>	<p>正言李明誼上疏。略曰： 人君不能自治，所恃者惟相耳。苟非其人，國受其禍。卽今居鼎席之首者，一自釀成士禍之後，自知不容於士類，弁髦廉恥，貪戀權勢，廣開賂門，苞苴</p>

를 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널리 뇌물을 받는 길을 열어 놓았으므로 뇌물 꾸러미가 사제(私第)에 폭주하였고, 힘써 사당(私黨)을 심었으므로 벼슬 임명이 일체 그의 입에서 나왔으며, 군문(軍門)의 은화(銀貨)는 곧 위급할 때 소용되는 것인데도 연행 사신(燕行使臣)이 있을 적마다 마음대로 상인(商人)과 역관(譯官)에게 가져가도록 허락하였으며, 변방 곤수(關帥)의 천망(薦望)에는 그 사람이 어떠한지는 따지지 않은 채 과궐(窠闕)이 나면 채수(債帥)18744)를 승진 임용하였습니다. 전리(箭里)의 진장(陳場)은 본디 친림(親臨)하여 열무(閱武)하는 곳인데도 이제는 소용이 없다고 여겨 멋대로 점거하기 위해 동소문(東小門) 밖에 남아 있는 소나무를 베어내고 날마다 교외(郊外)의 백성 수백명을 동원하여 사역시켜 보(淤)를 막아 전지를 만든 다음 이를 자기의 재물로 만들었습니다. 종남(終南)18745)의 바깥 기슭에 별장[別墅]을 새로 짓고서 부근의 부민(富民)들을 불러모아 함께 교결할 것을 약속하고는 후한 이익으로 편 다음 혜민국(惠民局)에 저장된 수백석의 조곡(租穀)과 2백 관의 돈[錢]을 지급해 주고서 그 이식을 취하고 본전은 납입함으로써 모리(牟利)하는 계책을 세웠습니다. 지난 가을 사관(史官)이 성상의 비답을 전하고 유지하였을 적에는 몸이 병이 났다고 핑계하면서 막중한 왕언(王言)을 외당(外堂)에 버려두고 가게 하였으므로 사관이 곧 왕언은 조복(朝服)을 입고 받아야 한다는 뜻을 인용하여 서너 차례 다시 힐난하였더니, 사관과 하인에게 질책을 가하여 돌아가게 하였으므로 사관이 끝내 왕명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대간에서는 전혀 사실을 모르고 도리어 사관을 논박하여 공격함으로써 한마디도 변명할 수 없게 만들었으니, 이 한 가지 일에서도 그의 기염(氣焰)이 하늘에 닿고 한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는 일단(一端)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권요(權要)를 멀리 피하라는 것이 곧 그의 이름난 아버가 남긴 훈계인데, 다른 사람들도 이 말을 듣고 오히려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약 아버지의 말과 임금의 명령이 때로 서로 어긋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힘써 벼슬에 종사하는

輻輳於私第，務樹私黨，差除一出於其口。軍門銀貨，乃是緩急之所需，而每當燕行，擅許商譯之帶去，邊關薦擬，不問其人之如何，而凡有窠闕，只令債帥而晉用。箭里陳場，自是親臨閱武之所，而謂今無用，肆然圖占，仍伐東小門外餘存松木，日役郊民，動以百數，防淤作田，以爲己物。新營別墅於終南外麓，招集旁近富民，約與交結，陷以厚利，仍給惠局所儲數百石租、二百貫錢，取息納本，以爲牟利之計。至於前秋，史官之傳諭聖批也，托以身病，要使莫重王言，委諸外堂而去，史官乃引加朝服之義，覆難數四，則叱責史官、下人，使之還歸，史官終不得傳命。其時臺官，全沒事實，乃反駁擊史官，使不得一言自辨。於此一事，可見其氣焰薰天，頤指一世之一端也。噫！遠避權要，乃其名父之遺戒，他人聞之，尙覺涕洟。若親旨君命，有時互奪，則黽勉從仕，分義固然，而及據大位，病國家敗世道之舉，無所不爲。近來搢紳、章甫之疏，皆斥以士林禍首，則苟有一分人心者，唯當逡巡退縮之不暇，而放倒廉隅，忘忽先

것이 분의(分義)에 있어 진실로 당연한 것인데, 대위(大位)에 오르게 되어서는 국가를 병들게 하고 세도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근래 진신(摺紳)과 장보(章甫)들의 소장에서 모두 사림(士林)에게 화를 끼친 우두머리라고 배척하고 있으니, 진실로 일꾼이나마 사람의 마음을 가진 자라면 망설이면서 위축되어 물러가기에도 겨를이 없어야 할 터인데, 염치를 내팽개치고 아버지의 훈계도 잊은 채 더욱더 멋대로 날뛰면서 조금도 돌아보고 꺼리는 바가 없음은 물론이고 마음대로 위복(威福)을 농락함이 끝이 없습니다. 대저 정축(鼎軸)18746)의 지위에 있으면서 염치를 내팽개친다면 세도가 좀먹어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사람의 자식으로서 아버지의 훈계를 잊는다면 임금을 섬김에 있어 무상(無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도리로서 책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국가에 있어 어떠하겠습니까? 작년에 온천의 행궁(行宮)에 행행한 것은 만부득이한 데에서 나온 것인데, 성상께서 백성들의 폐단을 곡진히 염려하여 여러가지 어선(御膳)의 종류를 일체로 모두 줄이고 감하였으니, 진실로 신자(臣子)가 된 자는 마땅히 임금의 명을 받들 것을 생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종(陪從)한 대소 관원들은 거개가 물건을 토색하여 일로(一路)에 짐을 실은 짐바리가 두루 서로 잇달았는데, 우사(寓舍)에 쌓아두었다가 서울의 집으로 실어 보내기도 하고 시장에서 화매(和賣)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본도(本道) 병마(兵馬)의 우두머리만이 【이건명(李健命)이었다.】 여러 고을에서 보내 온 물건들을 훔쳐서 장사(將士)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포식하였고 다투어 서로 칭송하였습니다. 따라서 뇌물을 받는 것이 절제가 없었음을 이 사실로 미루어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정은 사방의 근본인데 왕을 무시하는 것이 이와 같으니, 상천(上天)이 어찌 진노하지 않겠으며 재이(災異)가 어찌 거듭 일어나지 않겠으며, 생령(生靈)들이 어찌 곤폐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조종(祖宗)의 3백 년 사직이 어찌 위기일발의 늪연(凜然)한 상황에 이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서원(書院)을 철

戒，益復縱肆，無少顧忌，擅弄威福，罔有紀極。夫居鼎軸而放倒廉隅，則世道之蠹敗固也，爲人子而忌忽先戒，則事君之無狀可知。如此之人，雖不足責之以道，其如國家何哉？昨年溫宮之行幸，出於萬不得已，聖上曲軫民弊，御膳諸種，一併省減，苟爲臣子者，宜思奉承，而從幸大小之官，舉皆求索，殆遍一路，輶載相續，積置寓舍，或輦輸於京第，或和賣於場市。其時本兵之長，【李健命。】獨散出諸邑饋遺之物，俵給將士，人皆飫飽，爭相稱頌。其苞饋之無節，推此可知。朝廷，四方之本，而不王若是，則上天胡不震怒，災異胡不荐降，生靈胡不困瘁，而祖宗三百年社稷，胡不凜然如一髮乎？至於毀院一節，尤其是前古所無之舉。惟彼鄭滸壽正之心，老猶不悛，突然赴朝，攘臂擔當，卒以毀院爲請，其亦無忌憚之甚者也。日昨大臣，請寢(威) [成] 命，其一脈公心，猶足可見，而玉堂之筭，乃以請寢毀院，謂致貫虹之變，其爲奇怪可笑，奚異於童駮之言也？吏曹參判李喜朝，以儉邪之性，挾詞辯之才，巧言令色，欺世盜名，

폐하자는 한 가지 절목에 이르러서는 더욱 전고에 없던 일인데, 저 정호(鄭澐)가 정인(正人)을 해치려는 마음을 늙어서도 오히려 뉘우치지 않고 돌연히 조정에 나와 팔을 걷어붙이고 담당하고 나서서 마침내 서원을 철폐하자고 청하였으니, 그 또한 기탄하는 마음이 너무도 없는 자입니다. 어제 대신이 성명(成命)을 정지하자고 청하였으니, 한 가닥 공심(公心)을 그래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옥당(玉堂)의 차자(筓子)에서는 곧 서원을 철폐하는 일을 정지하자고 청한 것이 무지개가 해를 가로지른 이변(異變)을 가져왔다고 일컬었으니, 기괴하고 가소로운 것이 어린아이들의 유치한 말과 다를 바가 뭐 있겠습니까? 이조 참관 이희조(李喜朝)는 음흉하고 사악한 성품으로 사변(詞辯)18747)의 재능을 지니고서 공교한 말과 좋은 얼굴빛으로 세상을 속이고 이름을 도둑질하였는데, 산림(山林)의 길을 걷는다고 가탁(假託)하였으면서도 외람되이 현직(顯職)에 올랐으므로 일세(一世)의 비웃음과 손가락질을 당한지 진실로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지난번 책자(冊子)를 써서 봉진할 적에 마치 밀계(密啓)와 같이 하였으므로 물의가 분분하여 오래도록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직명이 대신(臺臣)인 사람이 이를 비호하기 위해 사관(史官)에게 내어주어 역사[汗青]에 기록하게 할 것을 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 이것은 상자 속에 간수된 일개 사사로운 기록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이것은 그 스승의 본원(本源)에 무슨 빛나는 점이 있다고 이에 감히 성조(聖朝)의 청사(靑史)를 더럽히고자 한다는 말입니까? 평안도 감사 김유(金樛)는 유문(儒門)에 발을 들여놓았다고 평계하고 있지만 그 스승의 본지(本旨)는 전혀 몰각한 채 두찬(杜撰)하고 거짓 인용하여 오로지 시론(時論)에 아부하기만을 일삼았는데, 지난번의 상소에서 극도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그의 평생의 기량(伎倆)은 오로지 탐오에 있었으므로 일찍이 해고(海臯)18748)로 있을 때에는 부고(府庫)를 탕진시켰고, 비선(碑船)에 재화(財貨)를 실었다가 증로에 침몰되었다는 말이 여러 사람의 입에 떠들썩하게 전해졌습니다. 서관(西關)으로 관직을 옮

假步山林，濫躋華顯，一世之嗤點，固已久矣。向者之囊封冊子，殆同密啓，物議譁然，久而未已，彼名爲臺臣者，意在掩護，至請出付史官，撮錄汗青。噫！是不過箱篋中一私記，是何有光於其師本源之地，而乃敢欲汗聖朝之靑史耶？平安監司金樛托迹儒門，全沒其師之本旨，杜撰誣引，唯以媚悅時論爲事，至於曩日之疏而極矣。但其平生伎倆，只在於貪饕，曾按海臯，府庫蕩然，碑船載貨，中路臭載之說，萬口喧傳。及移西關，舊習益痼，大小各庫，徒擁虛簿。以兩西豐侈之地，作一己肥潤之資，臣竊痛之。刑政者，王者之大柄。李師命罪惡，何等關係，聖上之平日痛疾，又何如也？雖以其家之勢力，日夜經營，而莫敢生意於伸雪者，蓋畏天威也，畏國法也。及今至親，盤據崇顯，柄用益專，無所顧憚之後，乃敢乘時擊鼓，王府之臣，知有巨室，而不知有國法艱難，下語屈曲奏讞，而聖上猶且曲從，故其所以徒恃寵靈，益肆無嚴者，無所不至。臣恐昨年獨對之失，此有以啓之也。方今可言之事，不止於此，而居三司之列者，

겨서도 옛날의 습성이 더욱 고질화되어 크고 작은 각 창고가 빈 장부만 남아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양서(兩西) 지방의 풍요로운 땅을 하나같이 자기의 사복을 채우는 밀천으로 삼았으니, 신은 삼가 통탄스럽게 여깁니다. 형정(刑政)이라는 것은 왕자(王者)의 큰 권병(權柄)인 것입니다. 이사명(李師命)의 죄악은 그것이 어떠한 죄에 관계되는 것이고 성상께서 평일 통렬하게 미워하시는 것이 또한 어떠한 죄였습니까? 그 집안의 세력으로 밤낮으로 경영하면서 감히 신원(伸冤)시킬 마음을 내지 못하였던 것은 천위(天威)를 두려워하고 국법(國法)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지친(致親)들이 조정의 높은 관직에 도사리고 있어 권병을 더욱 오로지하고 아무 꺼리는 바가 없게 된 뒤에 이르러서는 이에 감히 때를 타고 격고(擊鼓)하였는데, 왕부(王府)의 신하들은 거실(巨室)이 있는 줄은 알면서도 국법이 있는 줄은 모른 채 어렵게 말을 만들어 사리에 어긋난 언의(讞議)를 주달하였는데도 성상께서는 오히려 이를 굽혀 따르셨기 때문에 그들이 임금의 총애만을 믿고서 더욱 마음대로 무엄한 것을 못하는 것이 없게 된 것입니다. 작년에 독대(獨對)한 잘못이 이런 계기를 열어놓은 것이 아닌가 신은 생각합니다. 지금 바야흐로 말해야 할 일이 이에 그치지 않습니다만 삼사(三司)의 반열에 있는 자들은 한 사람도 전하를 위하여 말하는 이가 없으니, 신은 삼가 통탄스럽게 여깁니다.”

하였다. 상소가 들어갔으나 임금이 비답을 내리지 않고 특별히 명하여 우선 먼저 그를 체차(遞差)시키게 하였다. 곧바로 하교하기를,

“한재(旱災)가 더욱 극심하고 독한 여역(癘疫)이 더욱 참혹하게 번지니, 백성들이 다 죽어 없어진다면 나라는 어디에 의존하겠는가? 이러한 때를 당하여 대소 신료들이 마음을 합하여 함께 구제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잘하지 못할까 염려스럽다. 그런데 이명(李明)의(李明誼)가 밖으로는 재이(災異)를 만난 것을 가탁하여 진언(進言)하면서 안으로는 조정을 괴란시킬 계책을 품고서 여러 신하들을 거짓말로 모함하려 꾀하는 것이 끝이 없다. 그러나 소장 전편의 정신(精

無一人爲殿下言之，臣竊痛之。

疏入，上不賜批，特命姑先遞差，旋下教曰：“旱災尤棘，毒癘尤慘，民將盡劉，國其奚依？當此之時，大小臣僚，雖協心共濟，猶恐不克，而李明誼外托遇災進言，內懷壞亂之計，構捏諸臣，罔有紀極，而一篇精神，專在領相，白地做出萬不近理之許多罪名，直驅之於罔測之科。噫！領相前後筭語，一則爲聖祖也，一則爲斯文也，渠雖無狀，何敢嫉如仇讎，爲宣學父子有若立節者然哉？論其情狀，萬萬絕痛。至於醜辱吏曹參判，【李喜朝】誣詆原任大臣，【李頤命】亦無所不至，極可駭惋。沈綿之中，少有思索，則輒困繭，火升膈煩，故不得逐段辨破，而若不痛懲，則末後之害，國不爲國。李明誼遠竄。”於是，配明誼于密陽府。

	<p>神)은 오로지 영상을 헐뜯는 데에 있는데, 까닭없이 만가지 이치에 당치 않는 허다한 죄명을 만들어 내어 망칙한 죄과(罪科)에다 막바로 몰아붙이고 있다. 아아! 영상이 전후 올린 차자(笱子)의 내용은 한편으로는 성조(聖祖)를 위한 것이고 한편으로는 사문(斯文)을 위한 것이었는데, 저자가 아무리 무상(無狀)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감히 영상을 원수처럼 질시(嫉視)하면서 윤선거(尹宣擧) 부자를 위하여 마치 절개를 세우는 것처럼 할 수가 있겠는가? 그 정상을 논하면 너무나 통분하다. 이조 참판 【이희조(李喜朝)이다.】 에게 추욕(醜辱)을 가하고 원임 대신(原任大臣) 【이이명(李頤命)이다.】 을 무함하여 헐뜯는 데에도 이르지 않는 것이 없으니, 지극히 해괴하고 통분하다. 병석에 있는 중이라 조금 골똘히 생각하면 그때마다 피곤하여 불화살이 가슴을 치받는듯이 번뇌스럽기 때문에 단락에 따라 시비를 분별하여 간과할 수가 없다. 만약 통렬히 징벌하지 않는다면 말후(末後)에 피해는 나라가 나라꼴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이명의를 멀리 유배하라.”</p> <p>하였다. 이리하여 이명의를 밀양부(密陽府)에 유배하였다.</p>	
<p>숙종 61권, 44년 (1718 무술 / 청 강희 (康熙) 57년) 5월 1일 (기유) 3번째기사</p>	<p>영의정 김창집(金昌集)이 이명익(李明諠)의 상소로 인하여 도성문을 나가서 교외로 갔고, 판부사 이이명(李頤命)도 약방(藥房)의 직속하던 집에서 사양하고 물러났다. 임금이 연달아 승지를 보내어 두 신하에게 돈유하였다.</p>	<p>領議政金昌集， 因李明諠疏， 出往郊外， 判府事李頤命， 亦自藥房直廬， 退出。 上連遣承旨， 敦諭兩臣。</p>
<p>숙종 61권, 44년 (1718 무술 / 청 강희 (康熙) 57년) 5월 11일(기미) 2번째기사</p>	<p>경기 감사 김연(金演)이 상서(上書)하여 경기의 굶주리고 곤폐한 상황을 말하고 곡식 5, 6만 곡(斛)을 옮겨다가 구제해 주기를 청하니, 세자가 비국(備局)에 내렸다. 그때 대신(大臣)들이 모두 도성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복주(覆奏)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예조 판서 송상기(宋相琦)가 상서하여 강도(江都)·북한성(北漢城)·양진(楊津)의 창고에 있는 곡식 각각 2천 석씩과 남한성(南漢城)에 있는 미곡과 콩 7천 석을 지급하기를 청하였는데, 세자가 좋다고 하였다.</p>	<p>京畿監司金演上書， 言畿內飢困狀， 乞得移粟五六萬斛以救之， 世子下之備局。 時， 大臣俱在城外， 覆奏無人， 禮曹判書宋相琦上書， 請以江都、北漢、楊津倉米各二千石， 南漢米太七千石割給， 世子可之。</p>
<p>숙종 61권, 44년</p>	<p>훈련 도감(訓練都監)에서 아뢰기를,</p>	<p>訓練都監言：“軍兵染癘者， 多至四百</p>

<p>(1718 무술 / 청 강희 (康熙) 57년) 5월 11 일(기미) 3번째기사</p>	<p>“군병(軍兵)들 가운데 여역(癘疫)에 걸린 자가 4백 60여 명이나 됩니다. 도감(都監)에서 전부터 포수(砲手)의 자제들을 정부에 기록하여 두었다가 나이가 차기를 기다려 처음에는 4두(斗)의糯米(稟料)를 주고 그뒤 재주에 따라 糯米를 올려주는데, 7두(斗)에 이른 다음에야 비로소 闕中(闕中)의 숙위(宿衛)에 충당합니다. 근래 여역으로 인하여 사망하는 자가 서로 잇따라서 군사의 액수(額數)가 점차 줄어들어 번갈아 숙위하는 것도 매우 구차스러우니, 청컨대 6두(斗) 이하의 자제들도 실직(實職)에 올리도록 허락하소서.”</p> <p>하니, 임금이 주문(奏本)을 읽어보고 즉시 의사(醫司)에 명하여 약물을 지급해서 구료하게 하고 사망한 자에게는 시체를 수습하는 물건들을 지급하게 하였다. 본 도감(本都監)에서 병자들에게는 미곡을 각각 5승(升)씩 지급하고 죽은 자에게는 포목을 각각 3단(端)씩 지급하였는데, 그 뒤 여러 군문(軍門)에서 모두 이 예(例)에 준하였다.</p>	<p>六十餘名。 都監舊以砲手子枝置錄待年，初付四斗料，隨才陞料，至七斗後，始充闕中宿衛。 近因癘疫，死者相續，軍額漸縮，輪直甚苟。 請六斗以下，亦許陞實。” 上覽奏，即命醫司，給藥物救治，死者命給收屍之物。 本監題給病者米各五升，死者布各三端。 此後諸軍門，並準此例。</p>
<p>숙종 61권, 44년 (1718 무술 / 청 강희 (康熙) 57년) 5월 13 일(신유) 2번째기사</p>	<p>간원에서 전에 계달한 것을 다시 아뢰고, 또 아뢰기를,</p> <p>“삼도감(三都監)의 잡물(雜物)을 각 고을에 분정(分定)하였는데, 그 숫자가 지나치게 많습니다. 그런데 각 고을에서 수납(輸納)할 적에 도감의 하리(下吏)들이 한결같이 퇴짜를 놓고 모두 전화(錢貨)로 거두어 받는데, 심지어는 아령(鵝翎) 몇 편의 값으로 10여 냥의 전화를 징수하기에 이르고 날배[生梨] 1개의 값으로 혹 2, 3냥의 전화를 받기도 합니다. 해당 낭청(郎廳)이 한결같이 조종(操縱)하는 것을 그대로 맡겨두었으니, 직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죄를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청컨대 해당 낭청은 파직시키고 하리들을 엄하게 핵문하여 처단하소서. 충훈부(忠勳府)에서 향을 바칠 때에 각도에 관문(關文)을 보내어 부조(扶助)라고 일컬으면서 전포(錢布)와 시탄(柴炭) 등의 물건을 요구하였는데, 각 왕릉의 참봉(參奉)에 대해서도 강제로 징수하였습니다. 향을 바치고 남은 나머지 재물은 도리어 당상관(堂上官)과 낭청(郎廳)이 사사로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청컨대 충훈부의 당상관·낭청은 모두 아울러 파직시키소</p>	<p>諫院申前達。 又言：“三都監雜物，分定於各官，其數過濫，而各官輸納，都監下吏，一併退斥，皆以錢貨收捧，甚至鵝翎數片之價，至徵十餘兩錢，生梨一介，或捧二三兩。 當該郎廳，一任其操縱，難免不職之罪。 請該郎罷職，下吏嚴覈處斷。 忠勳府進香時，發關於各道，稱以扶助，徵求錢布，柴炭等物，勒徵於各陵參奉，進香餘財，反歸於堂郎私分。 請忠勳府堂上郎廳，並罷職。” 世子不從。</p>

	<p>서.” 하였으나, 세자가 따르지 않았다.</p>	
<p>숙종 61권, 44년 (1718 무술 / 청 강희 (康熙) 57년) 5월 18 일(병인) 1번째기사</p>	<p>훈련 도감(訓練都監)에서 아뢰기를, “봉묘 도감(封墓都監)에서 본영(本營)의 미곡 2백 석과 포목 5동(同)을 얻기 를 청하였는데, 포목은 이미 수송하였지만 미곡은 경비가 넉넉지 못하니, 다 른 관사로 옮겨서 배정하게 하소서.” 하니, 세자가 그대로 따랐다. 이때 큰 역사가 너무 자주 있어서 나라의 저축 이 고갈되었다. 훈국(訓局)은 본래 경비의 풍부하기가 여러 군문(軍門)에서 최 상이라고 일컬었는데, 근래 장수가 적격자가 아니어서 쓸데없는 비용을 많이 허비한 탓으로 군수 물자가 크게 모자라 2백 곡(斛)의 미곡도 준비하지 못할 지경이었으므로 식자들이 한심하게 여겼다.</p>	<p>丙寅/訓練都監言：“封墓都監，請得本 營米二百石、木五同，木則已輸送，而 米則經用不敷，請令移定於他司。”世 子從之。時，大役稠疊，國儲匱竭。 訓局素稱饒厚，爲諸軍門最，而近來將 非其人，冗費多濫，軍需大縮，二百斛 米，尙不得辦，識者爲之寒心。</p>
<p>숙종 61권, 44년 (1718 무술 / 청 강희 (康熙) 57년) 5월 19 일(정묘) 3번째기사</p>	<p>간원에서 전에 계달한 것을 다시 아뢰고, 또 아뢰기를, “부사직(副司直) 오명준(吳命峻)은 간사한 성품으로 아침하는 작태를 지니고 양생법(養生法)이라 핑계대고 결의 사람들을 턱으로 가리키면서 번갈아 음식 을 먹여주게 하였습니다. 지위가 아경(亞卿)의 반열에 있으면서도 가동(家僮) 들을 인도하여 술과 국수를 판매하도록 하고 사채(社債)를 주어 모리(牟利)하 게 하면서 이웃 마을에 가혹한 짓을 두루 자행하였습니다. 먹고 남은 음식이 라고 성을 내어 가혹한 형벌을 원례(院隸)에 가하였으며, 외방의 아전 가운데 경사(京司)에 일이 있는 자가 사적으로 축탁하면 대신 인정의 뇌물을 받게 하 였으므로 낭저(廊底)18769) 가 곧 저가(邸家)18770) 를 이루었으며, 경사(京 司)의 아전들 가운데 그 부(府)의 소속된 자들에게 혼인·제사라고 일컫고 물 품을 징수하였으므로 하인배들이 원망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면서 침을 뱉고 욕하지 아니하는 자가 없으니, 청컨대 사판(仕板)에서 삭제시키소서. 양익표(梁益標)를 석방한 은전도 이미 대단한 실형(失刑)인데 탄장(彈狀)에 먹물이 마르기도 전에 갑자기 장관(將官)의 계하 (啓下)하는 일이 있으니, 나라의 기강이 해이해짐이 여기에 이르러 더욱 심해</p>	<p>諫院申前達。 又言：“副司直吳命峻， 以奸黠之性，挾諂佞之態，托以養生之 法，而頤指傍人，替使喫着。 位在亞 卿之班，而教導家僮，販賣酒麪。 給 債牟利，苛虐遍於隣里，發怒食餘，酷 刑及於院隸。 外方吏之有事京司者， 曲逕圖囑，替受情債，廊底便成邸家。 京司吏之爲其府屬者，稱以婚祭，徵捧 饋遺，而下輩莫不嗟怨。 萬口一談， 無不唾罵，請削去仕版。 梁益標放釋 之典，既是大段失刑，而彈墨未乾，遽 有將官啓下之舉，國綱之解弛，至此益 甚，臺閣之見輕，更無餘地。 請御營 大將金錫衍，從重推考。 李明誼之遠 竄也，金吾初定於昌寧，適值國忌，單</p>

	<p>졌고 대각(臺閣)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다시는 말할 여지가 없게 되었으니, 청컨대 어영 대장(御營大將) 김석연(金錫衍)을 종종 추고(從重推考)하소서. 이 명의(李明誼)를 먼 곳에 유배할 적에 금오(金吾)에서 처음 창녕(昌寧)으로 정하였습니다만, 마침 국기(國忌)를 당하여 단자(單子)를 간원에 이틀동안 머물러 둔 뒤에 다시 밀양(密陽)으로 바꾸어 정하였습니다. 왕부(王府)에서 갑자기 정배할 장소를 바꾸고 후사(喉司)에서 단자를 바꾸어 바쳤으니, 모두 사체가 뒤바뀐 죄를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청컨대 의금부의 당상관과 해당 승지를 아울러 추고하게 하소서.”</p> <p>하니, 세자가 다만 말단의 일만을 따랐다.</p>	<p>子留院兩日之後，改配密陽。王府之輒易配所，喉司之改捧單子，俱不免事體之顛倒。請禁府堂上及當該承旨，竝推考。”世子只從末端事。</p>
<p>숙종 61권, 44년 (1718 무술 / 청 강희 (康熙) 57년) 5월 25일(계유) 1번째기사</p>	<p>왕세자가 하령(下令)하기를, “지금 이 가뭄 또한 심하기가 지독하다. 봄철부터 여름철까지 큰비가 내린 적이 없고 간혹 이슬비가 내리기는 하였으나 금방 그쳐 버렸으며, 바람이 서늘하고 햇빛이 쨍쨍하니 비가 올 가능성이 더욱 아득하다. 보리도 이미 실농하였고 파종(播種)도 시기를 어겼는데 절기의 차서가 더욱 늦어져 가고 있다. 지금 비가 오지 않으면 나의 적자(赤子)들의 시체가 장차 구렁을 메우게 될 것이 슬프다. 게다가 지독한 여역(癘疫)이 날로 번성하여 제로(諸路)가 모두 같은 현상이어서 사망한 자를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 마치 병란을 입은 것과 같으니, 놀라운 마음과 참혹한 광경을 차마 말로 형언할 수가 없다.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고 잠자리에 들어도 잠이 오지 않는다. 더구나 내가 만기(萬機)를 대리(代理)한 이후부터 한재(旱災)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걱정과 두려움이 배로 더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나는 문사(文辭)가 짧고 치졸하여 능히 내 마음을 시원하게 드러내지 못하겠으니, 승지는 대신 글을 초잡아서 널리 직언(直言)을 구하여 나의 미흡한 점을 보필하게 하라. 말이 중도에 맞지 않더라도 내가 너그럽게 수용하겠다. 근일의 일과 같은 것에 대해서라면, 성상께서 밝게 결단하시어 그 시비(是非)를 크게 밝혔으며 작년에 나의 두번</p>	<p>癸酉/王世子下令曰： 今茲之旱，亦孔之酷矣。自春徂夏，尙靳霈澤，間有霰霖，曾不崇朝，風淒日杲，雨意愈邈，麥既失稔，播種愆期，節序漸晚。失今不雨，哀我赤子，舉將填壑。加以毒癘日熾，諸路同然，死亡無算，殆同兵燹，驚心慘目，有不忍言，當食無味，當寢無眠也。況自余代理萬機之後，災旱至此，倍切憂懼，罔知攸措。文辭短拙，不能通暢，承旨代草，廣求直言，以補不逮。言雖不中，余則優容，至若近日事，聖斷赫然，是非大明，昨年余再疏批旨，不啻丁寧，如有假託應旨，變亂黑白者，斷不容恕。咨爾！大小臣僚，體余不遑之意，一乃心力，恪勤職事，小答天</p>

	<p>째 상소에 대한 비지(批旨)가 정녕(丁寧)할 뿐만 아니니, 성지(聖旨)에 응한다고 가탁하여 흑백을 변란시키는 자가 있다면 단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아! 그대 대소 신료(大小臣僚)들은 나의 겨를이 없이 애쓰는 뜻을 몸받아서 한결같이 마음을 다하여 직사(職事)를 삼가고 부지런히 함으로써 조금이나마 하늘의 견책에 보답하도록 하라. 감선(減膳)하고 철약(撤樂)하고 금주(禁酒)하는 따위의 일은 해조(該曹)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라.”</p> <p>하니,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십행(十行)의 사지(辭旨)가 정녕하고 간측하시어 한재를 만나 도움을 구하는 뜻이 문자 사이에 차고 넘칩니다. 신 등은 문사(文辭)가 짧고 졸렬하여 만분의 일도 잘 드러내어 선양하지 못하겠습니다. 곧바로 이 영지(令旨)를 가지고 중외(中外)에 널리 포고하도록 하소서.”</p> <p>하였으나, 세자가 허락하지 않았다. 재차 청하니, 비로소 따랐다.</p>	<p>謹。 減膳撤樂禁酒等事， 令該曹舉行。</p> <p>政院言：“十行辭旨， 丁寧懇惻， 遇災求助之意， 溢於文字之間。 臣等文辭短拙， 不能揄揚其萬一。 請直以此令旨， 播告中外。” 世子不許， 再請， 始從之。</p>
<p>숙종 61권, 44년 (1718 무술 / 청 강희 (康熙) 57년) 5월 25 일(계유) 2번째기사</p>	<p>임금이 하교하기를, “지독한 가뭄이 이같이 참혹하니 백성들의 일이 너무나 가련하다. 동궁이 이제 영지(令旨)를 내려 구언(求言)하고 있으니, 나도 금일부터 정전(正殿)을 피하고 감선(減膳)할 것을 해조로 하여금 거행하도록 하라.”</p> <p>하였다.</p>	<p>上下教曰：“亢旱斯酷， 民事渴悶。 東宮纔下令旨求言矣， 自今日避正殿減膳事， 令該曹舉行。”</p>
<p>숙종 61권, 44년 (1718 무술 / 청 강희 (康熙) 57년) 5월 27 일(을해) 3번째기사</p>	<p>민진후(閔鎭厚)가 일찍이 경연(經筵)에 임금에게 아뢰기를, “국기(國忌) 때 소선(素膳)을 바치는 것에 6시(時)와 3시의 구분이 있습니다. 기년상(基年喪)·대공(大功)·소공(小功)·시마(總麻)에서도 마땅히 이러한 예를 채용하여 소선(素膳)하는 일수를 정하도록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예조에 명하여 품처(稟處)하게 하였다. 예조에서 청하기를, “기년상·대공은 6시로 하고 소공과 시마는 3시로 하는 것으로 법식을 정하소서.”</p> <p>하니, 임금이 좋다고 하였다.</p>	<p>閔鎭厚嘗於筵中， 白上曰：“國忌進素膳， 有六時、三時之分。 基、功、總麻， 亦宜用此例， 定素膳日數。” 上命禮曹稟處。 禮曹請以基、大功， 六時， 小功、總， 三時定式。” 上可之。</p>
<p>숙종 61권, 44년</p>	<p>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다. 진후를 끝마치자, 도제조 이이명(李頤命)이</p>	<p>藥房入診。 診候畢， 都提調李頤命言：</p>

<p>(1718 무술 / 청 강희 (康熙) 57년) 6월 3일 (경진) 3번째기사</p>	<p>아뢰기를, “기우제(祈雨祭)를 지냄에 있어 어떤 귀신에게 고하지 않은 데가 없다고 할 만한데, 신령의 감응이 아직도 늦고 비가 올 조짐은 갈수록 아득합니다. 이러한 때에 상궁(上躬)께서 친히 기도하시기가 어려우니, 마땅히 동궁에게 명하여 대신 행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좋다고 하였다. 며칠 뒤에 비가 왔으므로, 드디어 실행하지 않았다. 제조 민진후(閔鎭厚)가 아뢰기를, “광주 부윤(廣州府尹)과 함경도 감사가 결원인데, 대신(大臣)들이 유고(有故)하기 때문에 아직 천망(薦望)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효종조(孝宗朝) 때에는 원임 대신(原任大臣) 김욱(金堉)으로 하여금 대신 의논하여 천거하게 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래 시임 대신(時任大臣)들이 많이들 자리를 편안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으니, 이와 같은 길을 열어 그대로 후일의 선례(先例)가 되게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좋다고 하였다. 민진후가 또 아뢰기를, “평안도 감진 어사(監賑御史) 김운택(金雲澤)은 정장(呈狀)하여 청북(淸北) 여러 고을 가운데 보리의 조곡(糶穀)을 더욱 거두어들이기 어려운 곳은 3분의 2를 감하여 가을철까지 기다렸다가 대납(大納)하게 하기를 청하였고, 경기도 감사 김연(金演)은 정장하여 여러 방어사(防禦使)와 대흥(大興)의 중군(中軍)은 역마를 타는 것을 허락하지 말고 양도(兩都)의 유수(留守)가 왕래할 때에도 가과(加把)하는 것을 금하도록 청하였으니, 허락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모두 따랐다.</p>	<p>“祈雨之祭，可謂靡神不舉，而靈應尚遲，雨意愈邈。此時上躬，既難親禱，宜命東宮替行。” 上可之，後數日得雨，遂不果行。提調閔鎭厚言：“廣州府尹、咸鏡監司缺，因大臣有故，尙未薦望。曾在孝廟朝，使原任大臣金堉替行議薦云。近來時任多不得安其位，若開此路，仍爲後例則似好矣。” 上可之。鎭厚又言：“平安道監賑御史金雲澤狀請，淸北諸邑麥糶尤甚難捧處，減三之二，待秋代納，京畿監司金演狀請，諸防禦使及大興中軍，勿許騎馱，兩都留守往來時，亦禁其加把，宜許之。” 上竝從之。</p>
<p>숙종 61권, 44년 (1718 무술 / 청 강희 (康熙) 57년) 6월 6일 (계미) 2번째기사</p>	<p>교리(校理) 박사익(朴師益)·수찬(修撰) 김상옥(金相玉)이 교지에 응하여 차자(筭子)를 올렸는데, 대략 이르기를, “재변(災變)이 헛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른 바가 있는 것이니, 인사(人事)에 잘못이 없는데도 재앙이 스스로 이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하</p>	<p>校理朴師益、修撰金相玉應旨上筭，略曰： 災不虛生，必有所召。未有人事無失，而咎徵自至者。 邸下誠能惕然警懼，</p>

께서 진실로 놀라와 두려워하시어 고식적인 정치를 하지 마시고, 잘 진작(振作)할 방도를 생각하는 것을 항상 재변을 당하여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때처럼 시종 한결같이 한다면, 이 어찌 화를 복으로 전이(轉移)시키는 하나의 큰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상제(上帝)가 너에게 임하여 있으니, 너의 마음을 두 가지로 갖지 말라.’라고 하였으니, 천하의 만 가지 일이 인주(人主)의 한 마음에서 비롯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한 마음을 바로 가지면 천하의 일이 바로되지 않는 것이 없는데, 마음을 바로 가지는 방도는 반드시 거경(居敬)하고 궁리(窮理)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전하께서 마음으로 깨달은 묘리와 체험(體驗)의 요체를 가지고 저하께 면계(勉戒)하신 것입니다. 첫째는 ‘경건과 태만에 흥성과 쇠망이 판별되는 것이라.’고 한 것이고, 둘째는 ‘생각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학문에서 두라.’고 한 것이니, 진실로 저하께서는 이 두 가지 말씀을 부지런히 힘써 복행(服行)하여 학업과 덕성이 아울러 증진되어 성정(誠正)의 경지에 이르게 하소서. 옛말에 이르기를, ‘사치의 폐해가 천재(天災)보다도 심하다.’라고 하였는데, 삼가 살피건대, 오늘날 사치하는 습성이 날로 하루가 다르게 심하여져 아름답고 화려한 옷과 진수성찬의 음식을 더욱더 서로 흠모하고 본받아 상하(上下)에 법도가 없어진 탓으로 인심이 더욱 방탕하고 편벽한 데로 쏠리고 백성들의 힘은 점점 소모되어 없어지기에 이르렀습니다. 만약 위에 있는 사람이 몸소 솔선하여 교화하지 않는다면 이미 고질화된 폐단을 실로 고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검소하고 절약하는 제도는 처음 궁액(宮掖)에서 시작하여 소박하게 하는 것을 일국의 모범이 되게 한다면, 그것을 보고 감동하여 본받는 효과는 장차 그렇게 되기를 기약하지 않아도 절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수령(守令)이 현부(賢否)에 생민(生民)의 휴척(休戚)이 달려 있습니다. 조정에서 신칙하여 신중하게 간택(揀擇)하도록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공(公)이 사(私)를 이기지 못하여 이미 사람을 위하여 벼슬자리를 가리는 폐단

毋爲姑息之政，克思振作之方，常若遇災憂畏之時，無有終始，則此豈非轉移之一大機乎？《詩》云：“上帝臨汝，毋貳爾心。”天下萬事，無一不本於人主之一心。一心正，則天下之事，無有不正，而正心之道，必資於居敬、窮理。此所以我殿下，以心得之妙，體驗之要，勉戒於邸下，而一則曰：“敬怠，興喪之所判也。”二則曰：“念終始，典于學也。”誠願邸下，於斯二者，勉勉服膺，交修並進，以臻誠正之域焉。古語曰：“奢侈之害，甚於天災。”竊觀今日侈靡之習，日甚一日，美麗之衣，珍盛之饌，轉相慕效，上下無章，人心益趨於放僻，民力漸至於耗竭。若非在上之人，躬率而化之，則已痼之弊，實無以變易也。必儉約之制，始自宮掖，以朴爲一國先，則其觀感取則之效，將有不期然而然者矣。守令之賢否，而生民之休戚係焉。朝家申飭，使之慎揀，非止一再，而公不勝私，已多爲人擇官之弊。今宜另飭銓官，勿襲舊套，必選慈詳謹飭之人，無或以冗雜之類，參錯於其間，則惟被積困之民，庶有解懸之望矣。日昨疏

이 많습니다. 지금 마땅히 전관(銓官)들에게 특별히 신칙하여 옛 태도를 답습하지 말고 반드시 자상하고 근면한 사람을 고르게 하여 혹시라도 용잡한 무리들이 사이에 잘못 끼어 들지 못하게 한다면, 저처럼 지칠대로 지친 백성들이 고통에서 풀려날 수 있는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어저께 소결(疏決)할 때 대신들이 서울과 외방의 옥에 갇힌 죄수들 가운데 적체된 자가 많다고 진달한 바 있었으므로, 형관(刑官)에게 신칙하여 특별히 팔로(八路)에 유시하게 하였습니다. 대저 형옥(刑獄)이란 범죄가 가볍거나 무거운 것을 막론하고 결단해야 하는데도 결단하지 않은 채 하나같이 지체시킨다면, 죄수들의 억울한 기운이 족히 하늘의 화기(和氣)를 손상시킬 수 있는 것인데, 하물며 옥사의 정상에 원통하고 억울한 자가 세월을 하릴없이 보내면서 오래도록 신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말해 뭐하겠습니까? 특별히 조칙하여 권려하는 방도가 없을 수 없습니다. 각 고을에서 청(廳)을 설치하여 모리(牟利)하는 일은 실로 빈민들에게는 지탱하기 어려운 폐단인 것인데, 심지어 경청(京廳)에서 헤아려 마련하는 일에 이르러서도 백성들과 이익을 다투게 되니, 이미 나라의 체모에도 마땅하지 않습니다. 또 파견하는 차인(差人)들이 모두 거간꾼의 무리여서 헤아려 거두고 나누어줄 즈음에 백성들에게 폐해를 끼치는 것을 면하기가 어려우니, 마땅히 일절 정지하도록 하소서. 인족(隣族)의 침해와 백골(白骨)의 징수는 실로 우리 나라의 고질적인 폐단인데, 양역(良役)을 변통하는 방도를 묘당(廟堂)에서 강구한 지가 지금 몇 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책임을 질 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러저럭 범연하게 날짜만 보내고 있습니다. 호포(戶布)와 구전(口錢)의 편리 여부는 신의 얄은 소견으로 일일이 조목별로 나열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지금의 백성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요컨대 이 두 가지 법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빨리 묘당으로 하여금 선택해서 이를 시행하게 하여 지연시키거나 포기하지 말게 하소서. 작년에 내인(內人)의 무리가 혹 여염집의 아이들을 데리고 드러가 대내(大內)의 깊고 지엄한 곳에 머물러 두기도 하고,

決時，大臣以京外獄囚之積滯者，多有所陳達，申飭刑官，別諭八路。大抵刑獄，毋論罪犯之輕重，當斷不斷，一任淹滯，則幽鬱之氣，有足以感傷天和。況其獄情之冤愍者，閱歷歲月，久未伸暴乎？不可無別樣勸勵之道也。各邑設廳牟利之舉，實爲貧民難支之弊。至於京廳料辦之舉，與民爭利，既非國體所宜。且所送差人，皆是駟(驢)〔儉〕之類，斂散料理之際，未免有害及於民者，宜令一切停止也。隣族之侵，白骨之徵，實爲我國痼弊。良役變通之方，講究於廟堂者，今幾年矣，而擔荷無人，悠泛度日。戶布、口錢之便否，以臣淺見，雖不敢一一條列，而目今救民之策，要不外於此兩法。亟令廟堂，擇而行之，無使遷就拋置焉。昨年内人輩，或率入閭家之兒，留置於大內深嚴之地，或私自釀酒，潛相沽於清禁咫尺之處。論其罪狀，萬萬絕痛，而貸死之典，已是失刑，定配之請，亦未蒙許。勿謂臺論之已停，亟正其罪焉。闈豎之設，只在於供灑掃傳教令，而如或有凌蔑朝紳之習，則宜有嚴防之道矣。近年以來，

혹 사사로이 술을 빚어서 청금(淸禁)의 지척 지간에서 몰래 술을 매매하였으니, 그 죄상을 논하면 너무나 통절합니다. 사형을 용서한 법전도 이미 실형(失刑)인 것인데 정배(定配)하자는 정도 윤희를 받지 못하였으니, 대간의 논죄가 이미 정지되었다고 이르지 마시고 빨리 그 죄를 바로잡도록 하소서. 엄수(嚴竪)18782)의 설치는 단지 쇄소(灑掃)에 이바지하고 교령(敎令)을 전하는 데에 있을 뿐인데, 만약 혹시라도 조정의 관리를 능멸하는 습성이 있다면 마땅히 엄하게 방지하는 방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년 이래 승전색(承傳色)이 곧 후원(喉院)의 기거(起居)하는 반열에게 어명을 가지고 왕래할 즈음에 반열의 관리들과 충돌하여도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승선(承宣)18783)의 신하가 도리에 의거하여 말하였는데도 아직도 전의 습관을 답습하고 끝내고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선정신(先正臣) 이이(李珥)가 말하기를, ‘날로 새롭게 검칙하여 초당(貂璫)18784)의 무리들로 하여금 사대부를 엄히 두려워하게 한 다음이라야 선왕(先王)의 가법(家法)을 길이 지킬 수가 있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어찌 후환을 염려하는 진실로 간절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또 이들은 봉명(奉命)의 행차가 아니면 으레 감히 추종(騶從)을 거느리고 벽인(辟人)18785) 할 수가 없는 법인데, 지금은 길을 갈 때 웅위하고 길을 비키게 하는 것을 곧 외조(外朝)의 신하들과 똑같이 하니, 보고 듣는 사람은 한심하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그들의 교만과 전횡이 이와 같으니, 그 폐습을 징계해야 합니다. 저하께서 서리가 내리면 얼음이 언다는 경계를 깊이 진념(軫念)하시어 방한(防閑)을 엄하게 하소서.”

하니, 세자가 답하기를,
“그대들의 직책이 논사(論思)하는 것인데, 진실로 깊이 나라를 걱정하고 나를 아껴 누누이 진계(陳戒)한 것에 진실한 말이 많아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그 가운데 품쳐할 만한 일은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다시 계달하게 하겠다. 나인에 관한 일은 대조(大朝)께서 처분하신 것이 실로 여러 가지로 참작

承傳色，乃於喉院起居之列，將命往來之際，衝突班行，不少顧憚。承宣之臣，據理言之，而猶踵前習，終不知改。先正臣李珥曰：“日新檢勅，使貂璫輩，嚴畏士大夫，然後可以永守先王家法。”此豈非慮患真切之言乎？且此輩，除非奉命之行，例不敢率騶辟人，而今則在道呵擁，便同外朝貌樣，聽聞所及，莫不寒心。驕橫若此，弊習可懲。惟邸下深軫履霜之戒，以嚴防閑焉。

世子答曰：“爾等職在論思，誠深憂愛，縷縷陳戒，言多切實，余甚嘉尙。其中可以稟處事，令廟堂覆達。內人事，大朝處分，實出參酌。承傳色政院候班往來之時，切勿多率別監，曾有聖教，而筭辭得宜。更加申飭，毋得呵擁。衝突班行，殊甚駭然，當該承傳色，從重推考。”

	<p>한 데에서 나온 것이다. 승전색이 승정원의 후반(候班)18786) 을 왕래할 때에 절대로 별감(別監)을 많이 거느리지 말라는 성상의 하교가 일찍이 있었으니, 차자(箚子)의 말이 사의에 맞는다. 다시 신칙하여 옹위하고 가면서 길을 비키게 하지 말게 하라. 반행(班行)과 충돌하는 것은 너무도 해괴하니, 해당 승전색을 종종 추고(從重推考)하라.” 하였다.</p>	
<p>숙종 61권, 44년 (1718 무술 / 청 강희 (康熙) 57년) 6월 10 일(정해) 2번째기사</p>	<p>필선(弼善) 조언신(趙彦臣)이 호남 지방에서 명소(命召)를 받들고 조정으로 나왔는데, 상서하여 경기와 호남 지방의 기근과 여역의 상황을 자세히 아뢰고 관가의 적곡(糶穀) 가운데 응당 거두어야 할 액수의 반을 정지시키자고 청하고, 또 제로(諸路)의 방백(方伯)과 수령들에게 신칙하여 궁민(窮民) 가운데 여역에 걸린 자를 구료하도록 조치하자고 하였다. 세자가 그 아래 조목에 진달한 적곡의 일만 그대로 따라 묘당(廟堂)에 내렸다.</p>	<p>弼善趙彦臣，自湖南，承召赴朝，上書備陳圻湖飢癘狀，請停官糶應捧之半。且飭諸路方伯、守令，着令救療窮民之邁癘者。世子從其下款所陳，糶事下于廟堂。</p>
<p>숙종 61권, 44년 (1718 무술 / 청 강희 (康熙) 57년) 6월 16 일(계사) 2번째기</p>	<p>세자가 하령(下令)하여 동교(東郊)와 서교(西郊)에 여역으로 출막(出幕)한 사람들에게 미곡과 공석(空石)을 내려 주었는데, 문학(文學) 유복명(柳復明)이 소대(召對)할 적에 아뢰었기 때문이다.</p>	<p>世子下令賜東西郊癘疫出幕人米糧及空石。文學柳復明，於召對白之也。</p>
<p>숙종 61권, 44년 (1718 무술 / 청 강희 (康熙) 57년) 6월 21 일(무술) 1번째기사</p>	<p>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다. 진후를 끝마치자 제조 민진후(閔鎭厚)가 아뢰기를, “황해도 감사 이덕영(李德英)이 정장(呈狀)하여 양맥(兩麥)을 실농(失農)하여 환상(還上)을 거두기가 어렵다고 아뢰고 해주(海州) 등 여섯 고을에서는 모맥(牟麥)만을 거두기를 청하였는데, 전에 대홍년이 들었어도 적곡(糶穀)을 모맥만 거두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으니, 허락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경상도 감사 이집(李堦)이 정장하여 ‘양맥의 환상을 거두기가 어려우니, 재해를 입은 것이 더욱 심한 고을은 사정을 참작하여 반만 거두고 그 나머지는 가을 철까지 기다렸다가 조세로 바꾸어 바치게 한다면, 유용한 곡식이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 재해를 입은 고을에 분부하고 한편으로는 사유를 갖추어 치문</p>	<p>戊戌/藥房入診。診候畢，提調閔鎭厚言：“黃海監司李德英狀陳，兩麥失稔，還上難捧，請海州等六邑，只捧耗麩矣，雖曾前大凶之年，糶穀之只捧其耗，曾所未聞，不宜許之。慶尙監司李堦狀言：‘兩麥還上難捧，被災尤甚邑，參酌半捧，其餘待秋，換租代捧，則爲有用之穀。一邊分付災邑，一邊具由馳聞’云。還上事體不輕，非有朝令，則監司不敢擅許減捧，自是法</p>

	<p>(馳聞)합니다.’ 하였는데, 환상은 사체가 가볍지 않고 또 조정의 명령도 있지 않았는데, 감사가 감히 마음대로 감하여 거두는 것을 허락할 수는 없습니다. 감하여 받아들이는 것은 본래의 법례(法例)인데, 근래 번신(藩臣)들이 마음대로 하는 습성이 점차 고질화되었습니다. 지금 한편으로 분부하였다고 말하였으니, 마땅히 종종 추고(從重推考)하고 그로 하여금 일체 준봉(準捧)하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의 아올러 좋다고 하였다.</p>	<p>例，而近來藩臣專擅之習漸痼，今乃以一邊分付爲言。宜從重推考，使之一體準捧。”上竝可之。</p>
<p>숙종 62권, 44년 (1718 무술 / 청 강희 (康熙) 57년) 7월 1일 (무신) 1번째기사</p>	<p>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다. 진후(診候)를 마치자, 제조(提調) 민진후(閔鎭厚)가 말하기를,</p> <p>“도성(都城)의 백성으로 전염병에 죽은 자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 강시(殭屍)18794) 가 도로에 서로 잇대어 있습니다. 그 시체의 주인이 없는 경우는 모름지기 말할 필요가 없지만, 비록 주인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집안 사람들이 바야흐로 모두 전염되어 앓고 있으므로, 시체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러는 아주 내버려 두거나 더러는 짚으로 덮어둔 것이 반쯤 드러나기도 하여 더러운 냄새가 사람을 핏박하므로, 다니는 길이 거의 막히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한성부(漢城府)로 하여금 한 사람의 낭관(郎官) 및 부장(部將)을 정하여 전담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일일이 금지 표지 밖에다 묻게 하되, 비록 각기 무덤 모양을 만들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한 곳의 큰 구덩이에 다 함께 묻는 것도 불가함은 없을 것입니다. 이른바 매에 감관(埋瘞監官) 및 군인을 각별히 모집하여 진휼청(賑恤廳)에서 요포(料布)18795) 를 제급(題給)하도록 하고, 자주 단속과 경계를 가하는 것이 적당할 듯합니다.”</p> <p>하니, 임금의 말하기를,</p> <p>“들으니 참으로 매우 슬프다. 특별히 거둬 타일러 착실히 거행하도록 하라.”</p> <p>하였다. 민진후가 또 말하기를,</p> <p>“동래 부사(東萊府使) 조영복(趙榮福)이 장계(狀啓)하기를, ‘장기(長鬢)의 표류</p>	<p>朔戊申/藥房入診。診候畢，提調閔鎭厚言：“都城民人，死於癘疫者，不可數計，殭屍相屬於道路。其無主者，固不須言，而雖有主者，家人方皆染痛，不能收屍。或全然委棄，或藁殯半露，穢氣逼人，行路幾不通。宜令漢城府，定一郎官及部將專管，一一埋於禁標外，雖不能各成墳形，同埋一大坎，亦無不可。所謂埋瘞監官及軍人，各別募得，自賑廳，題給料布，頻加檢飭，似爲得宜。”上曰：“聞來誠極慘然。另加申飭，着實舉行。”鎭厚又言，“東萊府使趙榮福狀言，‘長鬢漂人領來差倭，情狀可駭，請勿爲接待，只給過海糧，故以此傳令訓別，使之責諭差倭，則差倭引丙申年南海漂民領來接待例，強爭不已，至於拔劍肆毒，牢閉門戶，挽執訓別，鷄鳴後始出送。大</p>

한 사람을 데리고 온 차왜(差倭)18796)의 정상(情狀)이 놀랄 만한데, 접대하지 말고 단지 과해량(過海糧)18797)만 지급하도록 청하였으므로, 이로써 훈별(訓別)에게 명령을 전달하여 그로 하여금 차왜를 책유(責諭)하도록 하였더니, 차왜가 병신년(18798) 남해(南海)의 표류민을 데리고 왔을 적에 접대한 예를 인용하며 억지로 다투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니다. 그리고 심지어 칼을 빼어 표독하게 굴며 문을 굳게 닫은 채 훈별(訓別)을 붙잡아 두었다가, 닭이 운 뒤에야 비로소 내보냈습니니다. 대체로 왜인은 교활하여 일마다 오로지 억지로 다투는 것을 주무(主務)로 삼는데, 조정에서는 대체(大體)를 보존하려고 힘써 매번 굽혀서 따라주었기 때문에 왜인들의 마음이 날로 더욱 교만해졌습니니다. 이번에 바다를 건너가는 역관(譯官)이 들어갈 때에 따로 서계(書契)를 만들어 임술년(18799)의 약조(約條)를 거듭 환기시켜 다투는 단서를 그치게 해야 합니다. 비록 이들이 당연히 접대할 차왜라 하더라도 감히 조정의 차관(差官)을 붙잡아 두고 칼을 뽑아 협박하였다면, 결단코 전례대로 접대하기 어렵다는 뜻을 각별히 서계 내용 가운데 적어 넣어 조정의 위령(威令)을 보이는 것이 진실로 사의(事宜)에 합당하겠습니니다.’고 하였습니니다. 앞으로 통신사(通信使)18800)가 떠날 때에 별도로 서계를 만들어 거듭 약속을 설명하도록 하되, 그 전에는 결단코 차왜를 접대할 수 없다는 뜻을 다시 책유(責諭)하고, 단지 과해량(過海糧)만 지급하여 들여보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대신(大臣)들의 뜻도 그러하였습니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민진후가 또 말하기를,
 “황해 감사(黃海監司) 이덕영(李德英)이 장계(狀啓)하여 도내(道內)에 기근(飢饉)이 든 참혹한 정상을 진달하고, 군포(軍布)18801)를 바치지 못한 사람에게 독촉하여 거두게 하는 일을 정지시켜 그들로 하여금 오로지 농사일을 다스리는 데에만 마음을 기울일 수 있게 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몇 달 사이의 일에 불과하니, 신포(身布)18802)와 신공(身貢)18803)을 모두

概倭人狡黠，每事專以強爭爲主，而朝家務存大體，每每曲從，故倭情日以益驕。今此渡海譯官入去時，別爲書契，更申壬戌約條，俾息爭鬪之端，而雖是應爲接待之差倭，敢有拘執朝廷差官，發劍脅迫，則決難依例接待之意，各別措辭於書契中，以示朝廷威令，實合事宜。’云。前頭通信使行時，別爲書契，申講約束，而其前則決不可接待差倭之意，更加責諭，只給過海糧入送爲宜。大臣之意，亦然矣。”上可之。鎮厚又言：“黃海監司李德英，狀陳道內飢饉之慘，乞停軍布未捧者徵督之舉，使得專心治農云。此不過數月間事，身布、身貢，宜竝許退捧。”上許之。

	<p>기한을 물려서 바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p>	
<p>숙종 62권, 44년 (1718 무술 / 청 강희 (康熙) 57년) 7월 4일 (신해) 2번째기사</p>	<p>예조(禮曹)에서 중궁(中宮)의 환후(患候)가 평복되었다 하여 신묘년(18805) 두환(痘患)18806) 때의 전례대로 종묘(宗廟)에 고하고 반교(頒敎)하며 진하(陳賀)하도록 청하자, 임금이 여러 도(道)에 명하여 진하하게 하고 방물(方物)은 절반을 줄이기를 하였는데,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었다.</p>	<p>禮曹以坤候平復，請依辛卯年痘患時例，告宗廟，頒敎陳賀，上命諸道陳賀方物減半。以年荒也。</p>
<p>숙종 62권, 44년 (1718 무술 / 청 강희 (康熙) 57년) 7월 17 일(갑자) 2번째기사</p>	<p>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다. 진후를 마치자, 제조(提調) 민진후(閔鎭厚)가 말하기를, “통제사(統制使) 오중주(吳重周)가 장계(狀啓)하기를, ‘농사가 흉년이 들어 군사 백성이 모두 곤궁하니, 수군의 조련(操鍊)을 물리도록 바랍니다.’고 하였는데, 허락하는 것이 마땅하며, 다만 우후(虞候)로 하여금 각 고을을 순찰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안 병사(平安兵使) 조이중(趙爾重)이 장계하기를, ‘잇따라 칙사(勅使)의 행차를 맞아 접대하느라 물력(物力)이 쇠잔하고 피폐하여 주전(鑄錢)하는 한 가지 일을 거행하기 어려운 형세입니다.’고 하였습니다. 조이중은 임기가 차서 체임될 날도 멀지 않았으나, 우선 정지하게 함이 마땅하겠습니다. 지난번 암행 어사(暗行御史) 김운택(金雲澤)의 서계(書啓)로 인하여 청북(淸北)18838)의 수령(守令)은 문관·무관을 번갈아가며 차임(差任)하도록 청했었는데, 그때 묘당(廟堂)에서 복주(覆奏)하여 이조(吏曹)로 하여금 문관을 보내야 적당한 고을을 가려서 아뢰도록 하였으나, 아직까지 거행하지 않고 있으니, 독촉하여 가려서 들이도록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모두 옳게 여겼다. 민진후가 또 해마다 거둬 기근(飢饉)이 들어 저축했던 곡식이 모두 떨어져 국가(國家)의 형세가 대단히 위태로운 지경에 처해 있다고 상세히 진달하고, 더욱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절약하고 검소한 정치를 힘써 행하되, 이로써 춘궁(春宮)을 인도하여 하늘의 큰 명(命)을 맞아 계속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가납(嘉納)하였다. 당시 대신(大臣)으로 공무를 집행하는 이가 없었는데, 민진후(閔鎭厚)가 비국 당상(備局堂上)으로</p>	<p>藥房入診。診候畢，提調閔鎭厚言：“統制使吳重周狀言：‘年事失稔，兵民俱困，乞退水操。’宜許之，而只令虞候，巡歷各邑。平安兵使趙爾重狀言：‘連經勅行，物力凋弊，鑄錢一事，勢難舉行。’云。爾重瓜遞，亦不遠，宜令姑寢。頃因暗行御史金雲澤書啓，請淸北守令，文武交差，其時廟堂覆奏，令吏曹抄啓當送文官之邑，而尙不舉行，宜促令抄入。”上竝可之。鎭厚又備陳連歲荐飢，蓄積罄竭，國勢方在百尺竿頭，請益篤寅畏之念，務行節儉之政，于以導率春宮，迺續景命，上嘉納之。時，大臣無行公者，鎭厚以備局堂上，每因入診，稟定一二時急公事，事體之苟簡，機務之叢脞，甚矣。</p>

	<p>매번 입진(入診)하여 한두 가지 시급한 공사(公事)를 품정(稟定)하였으나, 사체(事體)의 구간(苟簡)함과 기무(機務)의 번잡함이 심하였다.</p>	
<p>숙종 62권, 44년 (1718 무술 / 청 강희 (康熙) 57년) 7월 18 일(을축) 2번째기사</p>	<p>예조(禮曹)에서 지난해 흉년으로 인해 헤아려 감(減)한 여러 도(道)의 방물(方物)·물선(物膳)을 회복시키도록 청하니, 임금이 모두 명년 가을을 기한하여 우선 감해 주도록 명하였다.</p>	<p>禮曹請復諸道方物膳之因前年凶歉量減者，上命竝限明秋姑減。</p>
<p>숙종 62권, 44년 (1718 무술 / 청 강희 (康熙) 57년) 7월 21 일(무진) 2번째기사</p>	<p>관동(關東)의 세공삼(歲貢蔘)18840) 을 감하도록 명하였다가 얼마 되지 않아 그전대로 환원시켰다. 관동은 모두 산(山)이어서 삼(蔘)이 생산되는 것으로 나라 안에 이름이 났으며, 봄·가을 및 납약재(臘藥材)로 바쳐지는 인삼(人蔘)의 합계가 60근(斤)이나 되었다. 중세(中世)로 내려오면서 화전(火田)을 경작하는 일이 점차로 성해졌는데, 태우고 난 지역에는 인삼이 문득 나지 않아 묘종(苗種)이 점점 드물게 되어 채취하기가 아주 어렵게 되었다. 여러 군(郡)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밭에서 수확되는 값을 계산하여 상인(商人)에게 부탁하여 사다가 바치게 되니, 인삼 값은 날마다 오르게 되고 백성들의 세금이 해마다 증가되어 한 도(道)의 큰 폐단이 되었었다. 그러다가 무자년(1884)에 어사(御史)의 서계(書啓)로 인하여 봄·가을에 바칠 인삼 합계 15근(斤)을 감하도록 허락하였는데, 관동의 백성들은 그래도 명령(命令)을 감당하지 못했었다. 내의원 제조(內衣院提調) 민진후(閔鎭厚)가 일찍이 연중(筵中)에서 그 상황을 갖추 진달하여 먼저 납약재인 인삼 10근을 감하게 하고, 뒤에 또다시 5근을 감하도록 청하자, 단지 봄·가을로 각기 15근만 남겨두게 하였는데, 임금이 처음에는 어렵게 여기다가 억지로 칭한 뒤에야 비로소 허락하였다. 얼마 있다가 특교(特敎)를 내리기를, “어약(御藥)으로 쓰이는 다소(多小)는 미리 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관동의 인삼은 감해 준 그 수량이 이미 적지 않은데, 제조(提調)가 또 감해 주기를 청하니, 일이 미안(未安)한 데 관계된다. 그대의 거조(擧條)18842) 는 효주(爻周)18843) 하도록 하라. 또 침(鍼)을 맞은 뒤에 생맥산(生脈散)18844) 을 달</p>	<p>命減關東歲貢蔘，未幾還仍。關東，皆山也。以產蔘，名於國中。春秋及臘藥材，所貢人蔘，合爲六十斤。中世以來，火耕寢盡，經燒之地，蔘輒不生，以致苗種漸稀，採取絕艱。諸郡不得已算田收價，付商貿貢，而蔘價日聳，民賦歲增，爲一道巨弊。戊子，因御史書啓，許減春秋蔘合十五斤，東民猶不堪命。內醫提調閔鎭厚，嘗於筵中，備陳其狀，先減臘蔘十斤，後又請更減五斤，只存春秋各十五斤，上初難之，強請而後始許。既而下特敎曰：御藥所用多少，不可預定。而東蔘所減，厥數已自不少，提調又請減，事涉未安。其時擧條爻周。且受鍼後，煎入生脈散，厥惟舊哉，經提調幾人，而莫之減去，上年因提調言減之，亦未穩當。今後依前煎入。初鎭厚以爲鍼法爲疏通經絡，而生脈散，入人蔘主補，有乖醫理，請除其規，</p>

여서 들인 지 오래 되었다. 제조(提調)를 지낸 사람이 몇 사람이었지만 감해 준 적이 없었는데, 지난해에 제조의 말로 인해서 감해 주었으니, 역시 온당(穩當)하지 못하였다. 이 뒤로는 그전대로 달여서 들이도록 하라.” 하였다. 처음에 민진후(閔鎭厚)가 침법(鍼法)은 경락(經絡)18845) 을 소통(疏通)시키는데, 생맥산(生脈散)은 인삼(人蔘)이 들어가서 주로 〈원기(元氣)를〉 보충하므로, 의학(醫學)의 이론상 어긋남이 있다고 여겨, 그 규정을 제거하도록 청하여 없앤 지 여러 해가 되었으나, 인삼을 감하는 일로 인하여 갑자기 옛날대로 회복하도록 명하였다. 대체로 내국(內局)에서 약재(藥材)를 내주거나 받아들이는 일이 단지 장의(掌醫)와 서리(胥吏)의 손에 달려 있으므로, 용도(用度)가 지나치게 잡다하여 제한과 절도가 없었다. 그런데도 도제조(都提調) 이하가 그 수량을 물어 보지도 않았고, 심지어 납약재인 인삼은 아예 창고에 들이지도 않은 채 곧장 수의(首醫)18846) 의 개인 주머니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해마다 상례(常例)가 되었으며, 만약 국용(國用)이 부족하면 번번이 상례로 바치는 외에 더 징수하도록 했던 것이다. 민진후가 그 폐단을 깊이 알고 맨 먼저 납약재로 바치는 인삼을 없애도록 하고, 새로운 규정을 정하여 인삼·우황(牛黃) 등속은 사용하는 대로 회계(會計)하여 매월 그믐에 임금에게 아뢰도록 하니, 의원과 서리의 무리가 그들의 간사함을 용납할 데가 없어 원망과 비방이 대단히 시끄러웠는데, 액정(掖庭)18847) 에까지 알려지게 되었다. 이때에 이르러 책망하는 내용의 전지(傳旨)를 받고 오래되지 않아 제조에서 해임되었으므로, 물정(物情)이 성조(聖朝)를 위하여 애석하게 여기는 자가 많았다. 그 뒤에 도제조(都提調) 이이명(李頤命)이 조용히 임금에게 아뢰기를,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백성이 화합하지 못함은 보잘것 없는 음식으로 허물을 삼는다.’ 하였습시다. 이미 임시로 감하여 준다는 뜻을 본도(本道)에 행회(行會)18848) 하였으므로, 백성들이 모두 이미 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그전대로 회복시킨다면 실신(失信)을 면하지 못하니, 금년

罷之有年，因減蔘之事，遵命復舊。蓋內局藥材出入，只在掌醫與胥吏之手，用度濫屑，無有限節，而都提調以下，不問其數，甚至臘蔘，初不入庫，直歸首醫之私囊，歲以爲常。若國用匱乏，則輒又加徵於例貢之外。鎭厚深知其弊，首罷臘封，創立新規，人蔘、牛黃之屬，隨用會計，以月晦上聞，醫吏輩，無所容其奸，怨謗頗騰，流聞掖庭。至是被責旨，未久解提調，物情多爲聖朝惜之。其後都提調李頤命從容白上曰：“詩云：‘民之失德，乾糶以愆。’既以權減之意，行會本道，民皆認爲已減矣。今遽復舊，未免失信，今年則依前下教許減，徐議復舊亦未晚矣。”上不從。

	<p>에는 지난번의 하교(下敎)에 의거하여 감하도록 허락하고, 예전대로 회복하는 것은 천천히 의논하여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p> <p>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아니하였다.</p>	
<p>숙종 62권, 44년 (1718 무술 / 청 강희 (康熙) 57년) 8월 19 일(을미) 1번째기사</p>	<p>사옹원(司饗院)에서 번소(燔所)18876) 를 양근군(楊根郡) 우천(牛川) 강가로 옮겨서 설치하도록 청하였다. 인하여 본원(本院)의 시장(柴場)18877) 과 세미(稅米)를 갈라서分院(分院)18878) 에 소속시키되, 절반은 시목(柴木)을 바꾸어 번역(燔役)을 돕도록 하고 절반은 공장(工匠)의 급료(給料)로 지급하며, 공장이 받는 여정포(餘丁布)18879) 는 본원에서 받아들여 사용하도록 해서 운반하는 노고를 없애도록 청하니, 세자(世子)가 이를 허락하였다.</p>	<p>乙未/司饗院請移設燔所於楊根郡牛川江上。仍以本院柴場、稅米，割屬分院，一半貿取柴木，以資燔役，一半充工匠料給，而工匠所受餘丁布，自本院捧用，以除運輸之勞，世子許之。</p>
<p>숙종 62권, 44년 (1718 무술 / 청 강희 (康熙) 57년) 8월 23 일(기해) 1번째기사</p>	<p>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는데,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이유(李濡)가 함께 들어갔다. 진후(診候)를 마치자 이유가 말하기를,</p> <p>“북한 산성(北漢山城)은 바로 국가의 대계(大計)를 보존하는 곳이고, 탕춘대(蕩春臺)가 그 밖에서 보호하는 격이 되니, 성을 쌓는 것은 형세로 보아서 그 만들 수 없습니다. 원컨대 성상께서 신충(宸衷)으로 결단하시어 다른 의논에 흔들리지 마시고, 빨리 대신(大臣)과 장신(將臣)에게 명하시어 가서 성지(城址)를 살펴보도록 한 뒤에 기한을 정하여 역사를 시작하게 하소서. 그리고 경리청(經理廳)에서 판비(辦備)한 역사에 필요한 식량은 대강 지용(支用)할 만하나, 전포(錢布)가 부족하니, 청컨대 금위영(禁衛營)과 어영청(御營廳) 두 곳의 영(營)에 저축된 포(布) 및 비국(備局)에서 관할하는 영남(嶺南)의 사군목(射軍木)18894) 합계 3, 4백 동(同)을 빌리도록 하고, 겸하여 돈을 만들어 재력(財力)을 보충하게 하소서.”</p> <p>하고, 또 말하기를,</p> <p>“탕춘대(蕩春臺)를 경기 감영(京畿監營)으로 옮겨 설치하도록 이미 성명(成命)이 있었는데, 아직도 거행하지 않고 있으니 거듭 신칙(申飭)함이 마땅하겠습니까. 그리고 총융청(摠戎廳)이 소격동(昭格洞)에 있어 창의문(彰義門)과 거리가 편리하게 가까우니, 탕춘대·수문(水門) 일대를 총융청의 신지(信地)로 정하</p>	<p>己亥/樂房入診，判中樞府事李濡同入。診候畢，濡曰：“北漢，即國家大計所存也。蕩春臺爲其外護，則因而設築，勢不可已。願上斷自宸衷，毋撓異議，亟命大臣與將臣，往審城址後，定期始役。且經理廳所辦役糧，粗可支用，而錢布不足，請貸得禁、御兩營所儲布及備局所管嶺南射軍木合三四百同，兼令鑄錢，以補財力。”又言：“蕩春臺移設畿營，既有成命，而尙不舉行，宜更申飭。摠戎廳在昭格洞，與彰義門，相距便邇。蕩春臺、水門一面，定爲摠廳信地，使之專管守護，實爲便當。”上獎其區畫得宜，竝許之。濡又言：“我國一年稅入，本不足爲一年經用，緩急所恃，惟各邑糶穀也。遇荒歲，則爲賑資，值兵亂，則</p>

	<p>여 총융청으로 하여금 전적으로 관리하며 수호(守護)하게 하는 것이 진실로 편리하고 마땅하겠습니다.”</p> <p>하니, 임금이 그가 구획(區劃)한 것이 적합하다고 권장하고 모두 허락하였다. 이유(李濡)가 또 말하기를,</p> <p>“우리 나라는 1년의 세입(稅入)이 본래 1년의 경비로 쓰기에 부족하므로, 급할 때 믿는 것은 다만 각 고을의 조곡(糶穀)인데, 흉년을 만날 경우에는 그것을 진자(賑資)로 삼고, 병란(兵亂)을 만날 경우에는 군향(軍餉)18895) 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런데 근년에는 재해(災害)를 입은 고을에 분등(分等)하는 규정으로 인하여 혹 받아들이거나 정지하는 것 또한 재실(災實)의 등급을 비교하는데, 그 구년조(舊年條)의 받아들이는 시기를 늦춘 것은 저절로 끌어 미루게 되어 마침내 탕감(蕩減)해 주는 데로 돌아가게 되니, 국가의 곡식이 이로 말미암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만약 먼저 각 고을의 민호(民戶)와 곡물(穀物)의 수량을 가지고 그것을 골고루 알맞게 배정한 뒤에 연조(年條)의 신구(新舊)를 구분하지 않고, 오로지 바치는 것의 근만(勤慢)을 비교하여 수령의 출척(黜陟)을 시행한다면, 포흠(逋欠)의 염려는 없을 것입니다. 신이 임진년 18896) 에 정승의 직임에 대죄(待罪)하면서 한 책자(冊子)를 만들어 품재(稟裁)를 거치려 하였으나, 미처 하지 못하였습니다. 청컨대 비국(備局)에 보내어 참작하고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제조(提調) 조도빈(趙道彬)이 바야흐로 병조 판서(兵曹判書)의 직임을 맡고서 진달하기를,</p> <p>“본조(本曹)는 물력(物力)이 조잔(凋殘)한데, 군색 낭관(軍色郎官)으로 삼사(三司)에 드나드는 자가 많아 옮기거나 임명하는 일이 일정함이 없어 수습(收拾)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구임(久任)18897) 시키는 규정을 정하여 그 성과를 책임지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이 뒤로는 병조 판서(兵曹判書)가 해당 낭관을 자백(自</p>	<p>爲軍餉，而近因災邑分等之規，或捧或停，亦視災實之等第，而其舊年條之退捧者，自致延拖，終歸蕩減，國穀由此耗縮。今若先將各邑民戶與穀物之數，使之均適，然後不分年條新舊，惟視所捧勤慢，而行黜陟於守令，則可無逋欠之慮。臣於壬辰，待罪相職時，作一冊子，欲經稟裁而未及。請送于備局，參酌定式施行。”上可之。提調趙道彬，方帶兵判陳：“本曹物力凋殘，而軍色郎，多出入三司者，遷除無常，不能收拾。請定式久任，以責其效。”上命今後兵判自辟，該郎限三四年勿遷，而若不免舉擬，則以軍色懸註以入。是後，築城議不一，既始還輟，鑄錢移營等事，竝歸寢止，而糶穀均定及兵郎久任，亦不克行。</p>
--	---	--

	<p>辟)18898) 하여 3, 4년을 한정해서 옮기지 못하게 하되, 만약 거의(學擬)를 면하지 못하면, 군색(軍色)으로 주(註)를 달아 들여보내도록 명하였다. 이 뒤로 성을 쌓는 의논이 일치하지 않아 이미 시작하였다가 도로 중지시켰으며, 돈을 만들고 영(營)을 옮기는 등의 일도 모두 점차로 중지하는 방향으로 돌아가고, 조곡(糶穀)을 균등하게 배정하는 일 및 병조 낭관(兵曹郎官)을 구임(久任)시키는 일도 시행되지 않았다.</p>	
<p>숙종 62권, 44년 (1718 무술 / 청 강희 (康熙) 57년) 윤8월 3일(무신) 1번째기사</p>	<p>정언(正言) 유복명(柳復明)이 상서(上書)하였는데, 이르기를, “요즈음 삼사(三司)에서 사주(使嗾)를 받았느니 원한을 푼다느니 하는 말은 크게 뒷날의 한없는 폐단에 관계됩니다. 피차(彼此)가 추잡하게 헐뜯은 것이 전후(前後)에 어찌 한정이 있겠습니까마는, 일찍이 이러한 말로 상대방에게 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처음으로 발설하여 대각(臺閣)에서 한 마디 하면 사주받았다고 말하고, 옥당(玉堂)에서 한 마디하면 원한을 갚는다고 하며, 기타 서로 헐뜯는 습관과 도로 꾸짖는 기풍이 또 따라서 잇따라 일어나니, 이제부터 삼사(三司)에 있는 사람들이 혐오(嫌惡)하고 원망하는 지목을 두려워하여 피하려고 해서 모두가 앞으로는 입을 닫고 있어야 할 뿐입니다. 선진(先進)과 후진(後進)이 유인(誘引)하여 농락(籠絡)한다는 말과 같은 것은 진실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곧바로 진달하지 않고 이러한 애매한 말을 만들어 의심하고 어지럽히는 곳으로 몰아넣으려 합니까?” 하고, 【이는 조관빈(趙觀彬) 등의 일을 지목한 것이다.】 또 말하기를, “며칠 전 이상성(李相成)이 상서하여 성진령(成震齡)을 배척할 때에 그가 추잡하게 욕을 한 것은 곧 한 편의 탄핵하는 글이었으며, 심지어 비오는 밤에 구걸(求乞) 하였다고 말하여 마치 떠돌아다니는 거지가 밤을 구걸하다가 얻지 못하자 도리어 화를 낸 것처럼 은연중 원한을 갚으려는 투(套)로 돌리니 이미 지극히 해괴(駭怪)합니다. 추조(秋曹)18918) 에 뇌물을 주고 청탁하였다는 지적(指斥)에 이르러서는 분변하여 드러낼 것이 없으면서도 도리어 혼돈(混沌)</p>	<p>戊申/正言柳復明上書, 有曰: 近來三司受嗾、逞憾之說, 大關日後無窮之弊。彼此醜詆, 前後何限, 而未嘗以此等說加之。今乃猝然創發, 臺閣出一言, 則謂之受嗾, 玉堂出一言, 則謂之逞憾, 其他交詆之習、反詈之風, 又從而繼起。從今居三司之人, 畏避嫌憾之目, 舉將緘結而已。若夫先進、後進誘引籠絡之說, 誠有其人, 則何不直陳, 而作此叵圖之言, 驅之於疑亂之域哉? 【此指趙觀彬等事也。】 又曰: 日昨李相成之書斥成震齡也, 其所醜辱, 便一彈文, 而至以雨夜求乞爲辭, 有若行丐之人, 乞食不得, 反以致慍者然, 隱然歸之於逞憾之套, 已極駭怪, 而至若秋曹賄賂請托之斥, 則無所辨暴, 而反欲以混圖脅勒之說, 讓與言</p>

시켜 위협하는 말로써 함께 말한 자를 꾸짖으려고 하였고, 또 흉당(凶黨)의 남은 부류라는 죄목(罪目)으로써 공연히 억지로 덮어씌워 오로지 남의 오명(汚讒)을 일삼고 있으니, 논박받은 자가 도리어 말한자를 공격하는 경우가 이와 같이 참혹하고 각박함은 전에는 듣지 못했습니다. 마땅히 견책(譴責)하는 형벌을 실시하여 다른 사람을 면려(勉勵)해야 하겠습니까.”

하였다. 인하여 요즈음의 시폐(時弊) 20여 조목을 언급하였었는데, 그 첫째는 경리청(經理廳)의 요(料)를 판비(辦備)하는 폐단에 대해 이르기를, “근본 없는 사내가 1만 냥(兩)에 가까운 은화(銀貨)를 청하여 얻고서 아직까지 수납(收納)하지 않았고, 무뢰(無賴)한 사람이 9백 포(包)의 미곡(米穀)을 맡았다가 모두 화소(花消)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더러 덕통미(德筒米) 4천 석(石)을 주었는데 태반(太半)도 징수하지 않았고, 더러 환곡(還穀)을 사대부(士大夫)에게 널리 지급하여 그 수량이 과다(過多)해졌습니다. 연분(年分)과 호적(戶籍)에 쓰이는 지지(紙地)의 값과 전세(田稅)·대동(大同)의 선운가(船運價)는 얼마나 잔단 일인데, 당당한 국가에서 소민(小民)들의 조그마한 이익을 빼앗는 데 이르러서는 그들과 다투어 겨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산성(北漢山城)에 있는 중의 무리[僧徒]는 바로 모두 죄를 짓고 도망한 자들이 모인 소굴인데, 팔도(八道)에 두루 돌아다니며 폐해를 일으키는 일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공물연조(貢物年條)18919) 를 싼값으로 미리 사들이는데 그것을 싸게 사들이는 때를 당하여 중간에서 강제로 빼앗으니, 그 폐해가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빚으로 주는 재물도 갑리(甲利)18920) 로 서울과 지방에 두루 지급하였다가, 징수(徵收)를 독촉하는 때에 이르러서는 전토(田土)의 문권(文券)도 빼앗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도의 의승(義僧)18921) 이 많은 경우에는 3백 50명에 이르는데, 번(番)을 면제해 준 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누암 별장(樓巖別將)은 명목 없는 선세(船稅)를 바치게 하였고, 양서(兩西)18922) 와 교동(喬桐)에서는 강제로 지지(紙地)를 방납(防納)18923) 하도

者, 又以凶黨殘孽之目, 公然勒加, 專事污讒。 被論者之反攻言者, 若是僭刻, 殆未前聞。 宜施責罰, 以勵他人。

仍及近日時弊二十餘條。 其一, 經理廳料辦之弊也。 有曰: 無根之漢, 請得近萬兩銀貨, 而尙未收納, 無賴之人, 逢授九百包米穀, 而盡歸花消。 或給德筒米四千石, 而太半未徵, 或廣給還穀於士夫, 而其數過多。 年分、戶籍紙地之價, 田稅、大同船運之價, 何等瑣屑, 而堂堂國家, 至乃奪小民之小利, 與之爭較? 北漢僧徒, 卽一逋逃之藪, 而遍行八路, 作弊無算。 貢物年條, 以輕價而預爲買得, 當其輕買之際, 從中勒取, 不無其弊。 諸般債物, 以甲利而遍給京外, 及其督徵之時, 田土文券, 亦多見奪。 諸道義僧, 多至三百五十名, 而徵以除番之錢。 樓巖別將, 濫捧無名之船稅, 兩西、喬桐, 勒定紙地之防納。 其他空名之帖、防雇之事, 或多繹騷, 或涉零碎。 大抵任事之輩, 憑藉侵虐, 雖其多辦債殖, 廣占厚利, 而不歸公家, 半入私橐, 昔之貧乏者, 今則暴富, 昔之

록 정하였습니다. 기타 공명첩(空名帖)18924) 과 품사는 것을 방지하는 일들이 더러 잇따라 소란스러움이 많기도 하며, 더러 자질구레한 데 관계되기도 합니다. 대저 일을 맡은 무리들이 빙자하여 침학(侵虐)하는데, 비록 그들이 빚을 주어 늘리거나 후한 이익을 널리 차지한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도 공가(公家)에 돌리지 아니하여 절반이 개인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가난하던 자가 오늘날에는 갑자기 부자가 되었으며, 옛날에 집이 없던 자가 지금은 큰 집을 가졌으니, 통탄(痛歎)스러움을 금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그 둘째는 탕춘대(蕩春臺)에다 성(城)을 쌓는 폐단인데, 이르기를, “역사(役事)에 소용되는 식량이 비록 쓰기에 넉넉하다고 말하나, 이것이 어찌 공중에서 떨어진 물건이겠습니까? 기내(畿內) 또한 진황지(陳荒地)가 많은데 이것을 어찌 조금 풍년이 들었다고 말할 수 있겠으며, 가을철의 일이 바야흐로 바쁘고 일조(日照) 시간은 짧은데 어찌 봄철의 일조 시간이 긴 때와 같겠습니까? 양군문(兩軍門)18925) 에서 청하여 빌린 포(布)가 4백 동(同)에 이르니, 필경에는 도로 갠아야 할 터인데, 또한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지부(地部)18926) 에서는 경상비용(經常費用)의 늘 지탱하기 어려움을 걱정해야 하고, 기조(騎曹)18927) 에서는 전포(錢布)가 아주 부족하며, 진휼청(賑恤廳)에서는 원곡(元穀)이 11만 석(石)인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은 겨우 2만 석에 이르고 있습니다. 태창(太倉)18928) 에서는 모든 관리들의 녹봉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데도 제대로 모양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군사감(軍資監)에서는 해마다 누적된 포흠(逋欠)이 역시 1만 석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금위영(禁衛營)에서는 행용(行用)하는 포(布)가 겨우 수백(數百) 동(同)인데, 1백 50동을 빌려 주고 그 나머지는 거의 없습니다. 백성들의 재력이 곤궁하고 소모된 것이 저와 같고, 국가에서의 저축도 다 떨어진 것이 이와 같은데, 이러한 시기가 어떻게 성(城) 쌓는 역사를 해야 할 때이겠습니까?”

無家者，今則廣室，可勝痛哉？
 其二，蕩春臺築城之弊也。 有曰：
 役糧雖曰足用，而此豈空中之物乎？畿
 內亦多陳荒，則此豈稍豐之謂乎？秋務
 方殷日晷且短， 則豈若春和日長之時
 乎？兩軍門請貸布，至於四百同，則畢
 竟還報，亦豈容易事乎？地部經用，常
 患難支，騎曹錢布，全然見乏，賑廳元
 穀十一萬石， 卽今所餘， 僅至二萬。
 太倉則百官頒料， 無以成樣，軍監則積
 年逋欠， 亦近萬石。 禁衛營行用布，
 僅爲數百同，而又貸其百五十同，其餘
 無幾矣。 民力之困耗如彼，國儲之罄
 竭如此，此豈城役之時乎？
 其三，論移營之弊則曰：
 畿營之設置京中，前輩之意，夫豈偶
 然，而移建雖便，物力雖優，其在謀事
 之道，宜念舉羸之誚。 況便否之議既
 岐，掣肘之事反多，則今何可不復深
 量，必欲輕移乎？
 其四，論鑄錢之弊則曰：
 自夫錢貨之行，風俗日渝，物價日湧，
 甚至萊嫗鹽豎，亦皆棄穀而索錢。 農
 民有穀，交易莫通，故不得已賤穀價而
 售錢路，欲換一疋之布，已費數石之

하고, 세째 군영(軍營)을 옮기는 폐단을 논하였는데, 이르기를,
 “경기 감영(京畿監營)을 서울 안에 설치한 전배(前輩)들의 뜻이 어찌 우연한 것이겠습니까? 옮겨서 세우는 것이 아무리 편리하고 물력(物力)이 아무리 넉넉하다 하더라도 일을 도모하는 도리에 있어서는 마땅히 사치스럽다는 비난을 염려해야 합니다. 더구나 편리하다 편리하지 않다는 의논이 벌써 갈래가지고 간섭하여 제지하는 일이 도리어 많은데, 지금 어떻게 다시 깊이 헤아려보지 않고 반드시 경솔하게 옮기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네번째 돈 만드는 폐단을 논하였는데, 이르기를,
 “대체로 전화(錢貨)가 행해지면서부터 풍속이 날로 경박해지고 물가가 날마다 뛰어올라 심지어 나물 캐는 할미와 소금 굽는 아이도 모두 곡식을 버리고 돈을 구하려 합니다. 농민(農民)은 곡식이 있어도 교역(交易)을 통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곡물이 값이 천해지고 돈이 유통되는 길이 행해져 한 필(疋)의 포(布)를 바꾸려면 이미 몇 석(石)의 곡식을 소비해야 하니, 돈 없는 농민들이 어떻게 거둬 곤궁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부자집에서는 돈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빌려주는데, 춘궁기(春窮期)에는 1백 전(錢)의 빚을 내어야 겨우 쌀 한 말의 식량을 얻을 수 있지만, 가을에 이르러서는 몇 말의 쌀을 가져야 겨우 1백 전의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그 갑리(甲利)까지 논한다면 빌려 준 것은 한 말인데 갚는 것은 여섯 일곱말에 이릅니다. 만약 곡식으로 빌려 주고 곡식으로 갚게 한다면, 이식(利息)이 갑절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중외(中外)의 백성들이 모두 그것을 혁파하도록 원합니다. 지금 비록 이미 만든 돈을 녹여 버릴 수는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 까닭없이 더 만들어 그 무궁한 폐단을 더 보태려 합니까?”

하고, 기타 논한 바에 이르기를,
 “경악(經幄)의 신하를 돌려가며 대각(臺閣)에 임명하는 것은 언론(言論)을 책임지게 하는 것이며, 내한(內翰)18929)의 직임을 빨리 옮기도록 허락하지

穀，無錢農民，安得不重困乎？富家積錢如山，而假貸貧民，窮春出百錢之債，纔得斗米之糧，至秋用數斗之米，僅償百錢之債。竝其甲利而論之，則所貸一斗，所償至於六七斗。若令貸之以穀，償之以穀，則息不過一倍而已，中外民庶，皆願其罷。今雖不能銷已鑄之錢，何可無端加鑄，以益其無窮之弊乎？

其他所論則有曰：
 經幄之臣，輪除臺閣，以責言論也；內翰之職，勿許速遷，以重史局也；中庶雜岐之類，宜減其員數，俾不淆濫也；醫官酬勞之典，宜施以米布，毋差縣邑也；官無大小，必久於職任，可以責成也；吏之廉貪，必慎其用舍，可以勸懲也。

又曰：
 守令之畏戢，莫過於御史。八道之中，抽牒其一二邑，擇人委寄，暗行廉察，而臧污狼藉，負犯重大者，永置錮籍，切勿甄滌。軍器別備賑穀多聚者，毋輒陞資，以靖躁競焉。

又曰：
 試士之文，以表爲先，故剽竊成篇，僥

	<p>얕음은 사국(史局)을 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인(中人)과 서얼(庶孽) 출신이 담당하는 잡기(雜岐)18930)의 종류는 당연히 그 인원을 줄여 어지럽히거나 지나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관(醫官)에 대하여 노고를 갚는 은전(恩典)은 마땅히 미(米)·포(布)로써 주어야 할 것이며, 현(縣)·읍(邑)에 차임(差任)하지 말아야 합니다. 관직(官職)에는 크고 작은 구분없이 반드시 직임에 구임(久任)시켜야 성과를 책임지울 수 있으며, 관리의 청렴과 탐욕스러움은 반드시 그 기용하고 버리는 것을 신중하게 해야 권면하고 징계할 수 있습니다.”</p> <p>하고, 또 말하기를,</p> <p>“수령이 두려워하여 불법을 그치는 방법은 어사(御史)를 <과견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팔도(八道) 가운데 한두 고을을 뽑아 적당한 사람을 가려서 위임시키고 몰래 다니면서 염찰(廉察)하되, 장오(贓汚)한 사실이 낭자(狼藉)하고 범(犯)한 것이 중대한 자는 영원토록 금고(禁錮)시키는 명부에다 기재해 두고 일체 다시 죄를 용서해 주지 말 것이며, 군기(軍器)를 특별히 준비하거나 진곡(賑穀)을 많이 모은 자에게 자급(資級)을 번번이 올려 주지 말아서 조급하게 권세를 다투는 조짐을 안정시키소서.”</p> <p>하고, 또 말하기를,</p> <p>“선비를 시험하는 문체(文體)는 표문(表文)으로 우선을 삼기 때문에, 표절(剽竊)하며 성편(成篇)18931) 하고서도 요행히 뽑히기도 하니, 문득 과장(科場) 가운데서 지름길로 삼습니다. 근년(近年) 이래로 과거 시험이 너무 잦아 나이가 젊고 학식이 없는 부류들이 어지럽게 과거에 응시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지금 만약 과거 베풀기를 드물게 하고 표문(表文)으로 시험하는 방법을 정지시킨다면, 그 폐단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p> <p>하고, 또 말하기를,</p> <p>“단의빈(端懿嬪)18932)의 상환(喪患) 때 행동한 일이 잘못되어 너무나 모양</p>	<p>倖被選，便爲科場中捷徑，而近年以來，科試太數，年少學蔑之類，莫不紛然而應舉。今若罕設科而寢試表，則可以矯其弊矣。</p> <p>又曰：</p> <p>端懿嬪喪患時，觸事差誤，殆不成樣，蓋由於前例、禮書之無可援證也。《五禮儀》，卽我世宗大王命纂之書，而告成於成廟乙未。宜令大臣、儒臣，博考乙未以後國朝儀文及故實，設廳纂修，參量填補，仰取上旨，定爲一代之完書，俾作後來之典則焉。</p> <p>又以譯官所納御筆之捧入，請推喉司，仍寢賞典；又論義州府尹李聖肇之耽色多謗，請罷其職；又論湖西公都會之考試行私，請罪都事及參考官，世子答曰：“身居言地，憂時進言，深用嘉賞，可不留心？今茲北城，大計已定，設廳主管，其事不得不爾，則革罷之論，實是意外。受命大臣，竭誠區畫，而語多侵逼。綱繆之策，宜及閒暇，則蕩春繼築，不容少緩，而又請寢止，俱極未便。移營既甚便好，鑄錢亦無不可，不必更議也。李相成事，書語是矣，罷職。其他條件，令廟堂、春秋館稟</p>
--	---	---

을 이루지 못했었는데, 전례(前例)의 예서(禮書)로 원용(援用)하여 증거 삼을 만한 것이 없는 데 말미암은 것입니다. 《오례의(五禮儀)》는 바로 우리 세종대왕(世宗大王)께서 명하여 편찬한 책인데, 성종(成宗) 을미년(1893) 에야 완성을 알리게 되었으니, 당연히 대신(大臣)과 유신(儒臣)으로 하여금 을미년 이후의 국조(國朝)의 의문(儀文) 및 고실(故實)(1894) 을 널리 상고하도록 하고, 청(廳)을 설치하여 찬수(纂修)하되, 참고하고 헤아려 보충하여 우리 성상의 교지를 받아 한시대의 완전한 책으로 정하여 뒷날의 전칙(典則)으로 만드소서.”

하고, 또 역관(譯官)이 바친 어필(御筆)을 받아들인 일로써 승정원의 관원을 추국하고 인해서 상(賞)주는 은전을 정지하도록 청했다. 또 의주 부윤(義州府尹) 이성조(李聖肇)가 여색(女色)에 빠져서 비방받은 것이 많다고 논하고, 그의 직임을 파면하도록 청하였다. 또 호서(湖西)의 공도회(公都會)(1895) 고시(考試)에 사정(私情)을 쓴 일을 논하고, 도사(都事)와 참고관(參考官)을 죄주도록 청하니, 세자(世子)가 답하기를,

“자신이 언관(言官)의 지위에 있으면서 시사(時事)를 근심하여 진언(進言)한 바가 대단히 가상(嘉賞)하니, 유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지금 북한 산성을 쌓는 것은 큰 계획이 이미 결정이 되어 청(廳)을 설치하여 주관(主管)하고 있으니, 그 일은 어쩔 수 없는 것인데, 혁파해야 한다는 의논은 실로 뜻밖이다. 명을 받은 대신(大臣)들이 정성을 다하여 구획(區劃)하고 있는데, 말이 침해하여 핍박함이 많다. 그리고 미리 주무(綱繆)(1896) 하는 계획은 마땅히 한가할 적에 해야 하므로, 탕춘대(蕩春臺)를 잇따라 쌓는 일은 조금도 늦출 수 없는데, 또 정지하기를 청하였으니, 모두가 매우 미편(未便)하다. 그리고 군영(軍營)을 옮기는 것은 이미 매우 편리하다고 하였으며, 돈을 만드는 일도 불가한 것이 없다고 하였으니, 다시 의논할 필요가 없다. 이상성(李相成)의 일은 상서한 내용이 옳으니 파직(罷職)하도록 하라. 그리고 기타 조건은 묘당

處。”復明，又以徽批頗示未安，而所言多不見用引避，處置出仕。

	<p>(廟堂)과 춘추관(春秋館)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겠다.” 하였다. 유복명(柳復明)이 또 휘비(徽批)18937) 에 자못 미안(未安)한 뜻을 보이고, 말한 것이 채용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하여 인피(引避) 하였는데, 처치(處置)하여 출사(出仕)하게 하였다.</p>	
<p>숙종 62권, 44년 (1718 무술 / 청 강희 (康熙) 57년) 윤8월 25일(경오) 1번째기사</p>	<p>정사(正使) 임창군(臨昌君) 이훈(李焜)과 부사(副使) 예조 판서(禮曹判書) 민진원(閔鎭遠) 등을 보내어 세자빈(世子嬪)의 납채례(納采禮)를 별궁(別宮)에서 행하고, 승지(承旨)를 보내어 일을 관장한 여러 신하에게 선운(宣醞)18976)을 내렸다.</p>	<p>庚午/遣正使臨昌君焜、副使禮曹判書閔鎭遠等，行世子嬪納采禮于別宮。遣承旨，宣醞於掌事諸臣。</p>
<p>숙종 62권, 44년 (1718 무술 / 청 강희 (康熙) 57년) 9월 1일 (병자) 3번째기사</p>	<p>헌납(獻納) 윤석래(尹錫來)가 남쪽의 고을에서 부름을 받고 조정으로 돌아와 상서(上書)하기를, “금년의 농사가 지난 몇 해와 비교하여 비록 조금 낫기는 하지만, 전야(田野) 사이에 황폐한 곳이 많아 실제 수확은 거의 작년만 못합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쇠잔한 백성들은 이미 소식(蘇息)할 희망도 끊어졌으며, 해마다 환곡(還穀)18979)의 쌓인 포흙(逋欠)도 그 수량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 연조(年條)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전체의 수량을 내도록 독촉하여 한꺼번에 거두어 바치게 한다면, 당초에 얻어 먹던 백성들도 이제 모두 죽거나 옮겨갈 것이니, 그 형세가 친족과 이웃에 침해가 미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한갓 백성들을 소란하게 하고 원망을 사는 데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금년에 새로 나누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의당 모두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정유년18980)에 거두어들이지 못한 것은 재해(災害)를 입었거나 충실(充實)한 고을을 구분하여 더러 기준대로 바치게 하거나 더러 절반만 바치게 하고, 오래도록 거두어들이지 못한 것에 이르러서는 가장 오래 된 연조(年條)를 특별히 탕감(蕩減)해 주도록 허락하여 조정에서 은덕(恩德)을 베푸는 뜻을 보이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그리고 양전(量田)18981)하는 일은 바로 기근(飢饉)과 전염병을 만난 나머지 일시에 두루 시행하여 경요(驚擾)하여 원망하고 괴로와하는 근심을 초래(招來)하게 해서는 안 되니,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농</p>	<p>獻納尹錫來，自南邑，承召還朝，上書言： 今年年事，比數歲雖似稍勝，而田野之間，荒廢居多，所(獲) [穫] 之實，殆不如昨年。予遺殘民，已絕蘇息之望，而年年還穀之積逋者，其數極夥然。今若不限年條，全數出督，一併徵納，則當初受食之民，今皆死耳、徒耳，其勢不得不侵及族隣，而徒爲擾民斂怨之歸矣。臣意則今年新分給，宜可畢捧，而丁酉未收，則分災實邑，或準捧或折半，至於久遠未收，則特許蕩減其最多年條，以示朝家德意，似得宜矣。量田之舉，正當飢癘之餘，不可一時通行，以致驚擾怨苦之患。宜令道臣，參量穡事之災實，稍稍舉行，期以數年竣役。蕩春設樂之利害，臣不欲索言，而但城或未完，財若告罄，則將何以措</p>

	<p>사의 재실(災實)을 참작해서 점차 거행하되, 수년(數年)을 기한하여 역사(役事)를 마치도록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탕춘대(蕩春臺)에다 성을 쌓는 이해(利害)에 대해서는 신이 말을 다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성을 혹시 완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비용이 만약 떨어졌다고 보고한다면 장차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이러한 경우를 염려하여 바로 주전(鑄錢)하여 이익을 취하려는 계책을 삼았던 것인데, 돈의 폐해를 사람들이 모두 말하고 있으니, 이미 만든 돈을 비록 갑자기 없애기는 어려울 것이나, 그것을 더 만들어 농민(農民)에게 손해를 더 끼칠 수는 없습니다.”</p> <p>하니, 세자(世子)가 답하기를,</p> <p>“제2건(第二件)의 일은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겠다. 환상(還上)을 탕척(蕩滌)하는 것은 내가 일찍이 성교(聖敎)를 들어서 그 폐해를 깊이 알고 있으나, 결단코 시행을 허락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성(城)을 쌓는 일은 국가의 큰 일이므로 지연시킬 수 없으며, 돈을 만드는 일은 경연(經筵)에서 주달(奏達)했던 본래의 뜻과 다르다.”</p> <p>하였다.</p>	<p>置耶? 爲是之慮, 而乃爲鑄錢取贏之計, 錢之爲害, 人皆有言。 既鑄之錢, 雖難猝罷, 今不可加鑄, 以益農民之害。</p> <p>世子答曰: “第二件事, 令廟堂稟處, 而還上蕩滌, 余嘗聞聖敎, 深知其弊, 決難許施。 築城, 國之大事, 不可遷就, 鑄錢事, 與筵奏本意異矣。”</p>
<p>숙종 62권, 44년 (1718 무술 / 청 강희(康熙) 57년) 9월 4일 (기묘) 3번째기사</p>	<p>태안 군수(泰安郡守) 안서우(安瑞羽)가 상서(上書)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p> <p>“안흥진(安興鎭)에다 군향(軍餉)을 유치(留置)시켜 강도(江都)를 지원하게 한 것은 진실로 매우 치밀한 것이었으나, 지금 수만 석의 군량을 바닷가 한 모퉁이에다 유치시켜 두었는데, 본진(本鎭)의 입방(入防)한 군사는 십수 명에 불과하니 적선(賊船)이 갑자기 정박한다면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난리를 당하여 군량을 운반하는 때에 이르러서는 장차 진(鎭)에 딸린 약간의 군졸로서 조운(漕運)할 계책을 삼으려 하나, 선인(船人)의 무리는 흥판(興販)을 일삼아 각처로 떠돌아다니므로 평상시에도 갑자기 모우기 어려운데, 난리를 당하여 어찌 수습하기가 쉽겠습니까?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본진(本鎭)에 1천 석(石)을 유치시키도록 하는 외에는 바닷가 각 고을에 나누어 주어 평상시에는 조</p>	<p>泰安郡守安瑞羽上書。 略曰: 安興鎭之留置軍餉, 以爲江都之援者, 固極詳密, 而卽今則累萬石軍餉, 留置於沿海一隅, 本鎭入防之軍, 不過十數, 賊船猝泊, 何以守之? 至於當亂運餉之時, 將以鎭下若干之卒, 爲輸漕之計。 船人輩興販爲事, 各處浮游, 平時亦難猝合, 當亂豈易收拾? 臣愚以爲, 本鎭留置一千石外, 分給沿海各邑, 平居則糶糴, 當亂則轉漕, 可免齎</p>

적(糶糶)하게 하고, 난리를 당해서는 조운하여 옮기도록 하면 적에게 양식을 대주는 근심은 면할 수 있을 것이니, 이것이 기필코 변개해야 할 것의 첫째입니다. 우리 나라의 전선(戰船)은 몸체가 무겁고 커서 조수(潮水)가 크게 이른 후에야 운용(運用)할 수 있으므로, 만일 적선(賊船)이 갑자기 이른다면 그것을 대적할 수 없음이 필연적인 일입니다. 또 이른바 수군(水軍)은 반드시 부근(附近)의 백성이 아니고, 평상시 점열(點閱)18982) 하여 점고를 거친 자도 아주 적은데,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수합(收合)하겠습니까? 지금의 형세로는 전방 병선(戰防兵船)의 수군(水軍)·주사(舟師)·능로군(能櫓軍)을 모두 혁파(革罷)하고 백성들을 모아 전선(戰船)이 정박한 곳으로 이사하게 하되, 3백 명을 한정하여 모두 둔전(屯田)18983) 과 급복(給復)18984) 을 허락하고 근처의 어염(魚鹽) 또한 굶거나 채취하도록 허락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거둬 들이지 말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떠나갈 수 없게 해서 연변(沿邊)을 지키도록 하고, 곳곳마다 15명이 각기 자기의 재물을 내어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한 척의 배를 만들게 하되, 평상시에는 그 둔군(屯軍)으로 하여금 마음대로 사용하게 하고, 난리를 당해서는 일시에 장비를 싣고 복을 치고 함성을 지르면서 함께 진격하게 합니다. 따라서 자손(子孫) 대대로 영구히 둔군(屯軍)을 삼는다면, 각자가 그의 부모(父母)와 처자(妻子)를 돌아보아 염려하여 나아가 용감하게 대적할 것이니, 이것이 기필코 변개해야 할 것의 둘째입니다. 해서(海西)의 대흥 산성(大興山城)과 호남(湖南)의 입암 산성(笠巖山城)을 당초에 창설(創設)한 것은 대체로 요충(要衝)을 중하게 여겨서인데, 임진왜란과 병자 호란 때 적병(賊兵)이 마치 사람이 살지 않는 지경처럼 침입하였습니다. 마땅히 대흥산성과 입암 산성을 큰 진(鎭)으로 삼아 일찍이 곤수(閫帥)를 지낸 무신(武臣)을 가려서 육군 방어사(陸軍防禦使)로 차임(差任)할 것이며, 호서(湖西)의 충주(忠州)와 청주(淸州)는 삼남(三南)의 요해지(要害地)이니 두 곳 가운데 별도로 육군 통제사(陸軍統制使)를 두어 별영(別營)을 지휘

盜糧之患。此其必可變一也。我國戰船，體樣重大，潮水大至，然後乃可運用，萬一賊船猝至，其不可敵必矣。且所謂水軍，未必附近之民，常時點閱逢點者絕少，猝然有急，其何以收合？以即今形勢，戰防兵船水軍、舟師、能櫓，一併革罷，募民徙戰船所泊處，限以三百名，竝許屯田、給復，而近處魚鹽，亦許煮採，勿令收稅，使之無得移去，把守沿邊，每處十五名，各出己力，造船一隻，可容五十人，平居則使其屯軍，任意使用，當亂則一時裝載，鼓噪竝進，而子子孫孫，永爲屯軍，則各自顧慮其父母、妻子，勇於赴敵矣。此其必可變者二也。海西之大興山城、湖南之笠巖山城，當初創設，蓋重要衝，而壬、丙賊兵，如入無人之境。宜以大興、笠巖爲大鎭，以武臣之曾經闕帥者擇差，爲陸軍防禦使，湖西之忠州、淸州，三南咽喉之地，兩處中別置陸軍統制使，指揮別營，分兵往救，然後可保無虞矣。此其必可變者三也。禦敵之道，莫過於淸野。使列邑，各築其城，大不過十里，小不過七里，然後各樣糶糶，諸般軍餉，盡擡城中，則

	<p>하게 해서 군사를 나누어 가서 구원하도록 한 후에야 근심이 없게 됨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니, 이것이 기필코 변개해야 할 것의 세째입니다. 적(敵)을 방어하는 방법은 청야(淸野)18985) 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 고을로 하여금 각기 성(城)을 쌓게 하되, 커도 10리(里)를 넘지 않게 하고 작아도 7리를 넘지 않게 한 후에 각양(各樣)의 조적(糶糴)과 여러 군향(軍餉)을 모두 성 안으로 바치게 한다면, 백성들이 틀림없이 죽기를 각오하고 지킬 것이니, 이것이 기필코 변개해야 할 것의 네째입니다. 지금의 고치기 어려운 폐단은 이웃이나 친족을 침해하여 징수하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 군영(軍營)의 군포미(軍布米) 및 각 보포미(保布米)를 모두 없애고, 1년에 꼭 감해야 할 수량을 계산하여 경외(京外)의 가호(家戶)에 돈으로 징수하게 하되, 위로 삼공(三公)으로부터 아래로 사(士)와 서인(庶人)에 이르기까지 대(大)·중(中)·소(小)의 가호(家戶)로 나누어 그 돈의 수량을 올리거나 낮추게 하고, 여러 고을의 각항(各項)의 보인(保人)18986) 을 원군(元軍)으로 채우게 한다면, 여러 고을에서는 군사가 없으면서 군사가 있는 것이 되고, 국가에서는 돈이 없으면서도 돈이 있을 것이 될 것이니, 이는 기필코 변개해야 할 것의 다섯째입니다.”</p> <p>하니, 세자(世子)가 그 소(疏)를 묘당(廟堂)에 내렸으나, 끝내 채택하여 시행한 것은 없었다.</p>	<p>民必抵死而守之。 此其必可變者四也。 今之痼弊，莫如侵徵隣族。 悉罷諸營軍布米及保米布，計其一年應下之數，徵錢于京外戶，上自三公，下至士庶，分其大、中、小戶，上下其錢數，而以列邑各項保人，充其元軍，則列邑無軍而有軍，國家無錢而有錢。 此其必可變者五也。</p> <p>世子下其疏於廟堂，終無採施者。</p>
<p>숙종 62권, 44년 (1718 무술 / 청 강희(康熙) 57년) 9월 5일 (경진) 2번째기사</p>	<p>세자(世子)가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재신(宰臣)들을 인접(引接)하였다. 우의정(右議政) 이건명(李健命)이 말하기를, “경상 감사(慶尙監司) 이집(李堧)이 장계하여, 늦게 이양(移秧)18987) 하여 이삭이 패지 아니한 곳과 목화전(木花田)에 대하여 분재(分災)18988) 를 주도록 청하였는데, 영남(嶺南)은 올해에 대체로 조금 풍년이 들었으니, 잇따라 변통(變通)할 수는 없습니다.”</p> <p>하니, 세자(世子)가 옳게 여겼다. 이건명(李健命)이 또 말하기를,</p>	<p>世子引接大臣、備局諸宰。 右議政李健命言：“慶尙監司李堧狀請，晚移秧未發穗處及木花田，給分災，而嶺南，今年大抵稍稔，不可續續變通矣。” 世子可之。 健命又言：“諸道農形，參以聞見，亦可略知。 三南雖稍稔，各年未收糶穀，若一時督捧，則民必不堪。</p>

“여러 도(道)의 농사 형편은 듣고 본 것으로 대략 알 수가 있습니다. 삼남(三南)은 비록 조금 풍년이 들기는 했다고 하나, 각년(各年)의 거둬들이지 못한 조곡(糶穀)을 만약 한꺼번에 독촉하여 바치게 한다면, 백성들이 틀림없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니, 새로 나누어 준 것은 진실로 당연히 준례(準例)대로 받아들이게 하되, 옛 포핍(逋欠)은 아무 연조(年條)의 것임을 논하지 말고 단지 그 거둬들이지 못한 것중에 가장 많은 것을 모두 군향(軍餉)으로 이전(移轉)시키고 일년조(一年條)만 거두어 들이게 하소서. 그리고 관동(關東)과 서북(西北) 지방은 흉년을 면하지 못하였으니, 금년에 받아들일 조곡(糶穀)과 군량을 이전하도록 하는 것이 아마도 적합할 듯합니다.”

하니, 세자(世子)가 그대로 따랐다. 이견명(李健命)이 또 말하기를, “헌납(獻納) 윤석래(尹錫來)가 상서하여 양전(量田)에 대한 일을 논하였습니 다. 작년에 명년 가을이 되기를 기다려 거행하라는 전교가 있었으므로, 이미 분부(分付)를 하였는데, 조정의 명령은 자주 고칠 수 없습니다.”

하니, 세자(世子)가 그대로 따랐다. 이견명(李健命)이 또 말하기를, “북평사(北評事) 김운택(金雲澤)의 조모(祖母)인 서원 부부인(西原府夫人) 【바로 인경 왕후(仁敬王后)의 어머니이다.】 은 나이 80세가 넘었는데, 김운택의 두 형(兄)은 벌써 죽고 장손(長孫)이 바야흐로 시봉(侍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차 멀리 떠나게 되었으니 정리(情理)가 불쌍히 여길 만합니다.”

하니, 세자(世子)가 말하기를, “마땅히 대조(大朝)18989) 께 계품하여 처분(處分)하겠다.”

하였다. 예조 판서(禮曹判書) 민진원(閔鎭遠)이 아뢰기를, “신이 옛날에 춘방(春坊)에 대죄(待罪)하면서 6년 동안 모시고 강독(講讀)하였었는데, 그 뒤에 벌써 18년이 되었습니다. 삼가 듣건대, 예학(睿學)18990) 이 장차 진보하여 성취되어 간다고 하니, 구구한 하정(下情)18991) 은 솟구치는 기쁨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정자(程子)가 말하기를, ‘현명(賢明)한 사

新分給，固當準奉，而舊逋欠，則勿論某年條，只就其未收最多者，並移轉軍餉，一年條收捧，關東、西北，未免失稔，只令捧今年糶穀及軍餉移轉，恐爲合宜。”世子從之。健命又言：“獻納尹錫來書論量田事，而昨有待明秋舉行之教，故纔已分付。朝令不可數改。”世子從之。健命又言：“北評事金雲澤祖母西原府夫人，【卽仁敬王后妣。】年過八十，雲澤兩兄既死，便是長孫，見方侍奉，而今將遠離，情理可矜，宜遞之。”世子曰：“當稟于大朝而處分矣。”禮曹判書閔鎭遠曰：“臣昔年待罪春坊，侍講六年，而其後已十八年矣。伏聞睿學將進成就，區區下情，不勝欣聳。程子曰：‘接賢士大夫時多，親宦官、宮妾時少，則可以涵養氣質，薰陶德性。’倘邸下，體念于此，頻接宮僚，或講經義，或論國事，至於諸宰職掌，如有可議者，亦必召見面議，視群臣如家人父子，則其裨益弘多矣。”世子曰：“當留意矣。”訓練大將李弘述言：“今年癘疫，前古所無，都監軍兵，死亡甚多，禁、御兩營軍兵，連歲停番，各處入直，皆以都監軍

	<p>대부(士大夫)를 접견하는 때가 많고, 환관(宦官)과 궁첩(宮妾)을 가까이하는 때가 적으면, 기질(氣質)을 서서히 기르고 덕성(德性)을 닦을 수 있다.’ 하였습니다. 만약 저하(邸下)께서 이에 깊이 생각하셔서 공료(宮僚)들을 자주 접견하여 더러 경의(經義)를 강론하거나 더러 국사(國事)를 의논하시고, 여러 재신(宰臣)들의 직무 분장에 이르러서는 만일 의논할 만한 것이 있으면, 또한 반드시 불리서 접견하여 대면해서 의논하시되, 못 신하 보기를 집안 사람과 부자(父子)처럼 한다면 그 보탬이 됨이 넓고 많을 것입니다.”</p> <p>하니, 세자(世子)가 말하기를, “마땅히 유의(留意)하겠습니다.”</p> <p>하였다. 훈련 대장(訓練大將) 이홍술(李弘述)이 말하기를, “금년의 전염병은 옛날에 없던 바로 도감(都監)의 군병(軍兵)으로서 사망한 자가 매우 많은데, 금위영(禁衛營)과 어영청(御營廳) 두 군영(軍營)의 군병이 해마다 번(番)을 정지하게 되니, 각처에 입직(入直)하는 일을 모두 도감의 군병이 혼자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감의 군병이 휴식할 시간이 없으니, 마땅히 위로하고 즐겁게 하는 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중순(中旬)18992) 시재(試才)를 내일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많은 상포(賞布)를 장만하지 못했습니다. 청컨대 금위영과 어영청 두 군영에서 바친 정번포(停番布) 각 20동(同)을 빌어서 옮겨다 나누어 주게 하소서.”</p> <p>하니, 세자(世子)가 옳게 여겼다. 집의(執義) 윤봉조(尹鳳朝)가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세자가 따르지 않았다. 그리고 원산(元山)의 일에 대해서는 여러 신하들에게 물은 뒤에 정배(定配)하도록 하였다.</p>	<p>兵專當，故都監軍，無休息之時，合有慰悅之舉。 中旬試才，自明日爲始，而許多賞布，無以拮据。 請貸得兩營所捧停番布各二十同，推移分給。” 世子可之。 執義尹鳳朝申前達，世子不從。 元山事，問於諸臣後，令定配。</p>
<p>숙종 62권, 44년 (1718 무술 / 청 강희(康熙) 57년) 9월 13일(무자) 1번째기사</p>	<p>정사(正使) 임창군(臨昌君) 이훈(李焜)과 부사(副使) 예조 판서(禮曹判書) 민진원(閔鎭遠)을 보내어 어씨(魚氏)를 세자빈(世子嬪)으로 책립(冊立)하게 하고, 인하여 승지(承旨)를 보내어 일을 관장한 여러 신하들에게 선운(宣醞)을 내렸다.</p>	<p>戊子/遣正使臨昌君焜、副使禮曹判書閔鎭遠，冊魚氏爲世子嬪。 仍遣承旨，宣醞于掌事諸臣。</p>
<p>숙종 62권, 44년</p>	<p>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는데, 우의정(右議政) 이건명(李健命)도 함께 들</p>	<p>庚寅/藥房入診，右議政李健命同入。</p>

(1718 무술 / 청 강희
(康熙) 57년) 9월 15
일(경인) 1번째기사

어왔다. 진후(診候)를 마치자, 이견명이 말하기를,
“지난번에 진흥청 당상(賑恤廳堂上) 민진원(閔鎭遠)이 전주(全州)의 건지산(乾止山)을 진흥청에 소속시킬 것을 청하였었는데, 전라 감사(全羅監司) 홍석보(洪錫輔)가 장계(狀啓)하기를, ‘옛날부터 금양(禁養)19005) 하는 지역은 절수(折受)19006)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도로 정지시키기를 극력 청하였습니다. 그 뒤에 민진원이 다시 연중(筵中)에서 진달하여 그전처럼 절수하기를 청하였고, 홍석보도 지금 또 상소하여 다투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 산은 바로 풍쾌(豐沛)19007) 의 주맥(主脈)으로 북방(北方)을 가리고 있는데, 전주(全州)는 진전(眞殿)19008) 이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영부(營府)19009) 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이므로, 저절로 대도회(大都會)가 되었으니, 이 산은 금양(禁養)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진흥청에서 그것의 절수를 청하는 것은 그 의도가 산의 높은 곳은 금지시킬 만하지만, 평지(平地)는 경작을 금지시킬 필요가 없다고 여겨서입니다. 그리고 근래에 진흥청의 저축을 죄다 써 버렸으므로, 진흥청에 소속시켜 세금을 거둬 들이는 바탕으로 삼는다면 그 곡식을 모으는 방법에 있어서 보탬이 없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건지산(乾止山)은 본고을의 사용(私用)으로 삼는 데 불과하고, 그 평지의 개간할 만한 곳에는 간사한 백성으로서 함부로 경작하는 자가 영원히 자기 소유물로 만들려 하니, 비록 진흥청에 돌리지 않더라도 귀속시키는 곳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만약 타량(打量)하여 경계를 정해서 경작할 만한 곳은 원장(元帳)에서 떼어내어 호조(戶曹)에다 붙이되, 영남(嶺南)의 화전(火田) 사례(事例)에 의거한다면, 민전(民田)에 비하여 그 세금을 갑절로 징수할 수 있으니, 백성들이 간혹 세금이 많은 것을 싫어하여 묵히고 버려두는 데 이르더라도 해로울 것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大臣)의 진달한 바가 참으로 옳다. 금지시킬 만한 곳은 금지시키고, 금

診候畢，健命言：“頃者賑廳堂上閔鎭遠，以全州乾止山，請屬賑廳，全羅監司洪錫輔狀奏以爲：‘自古禁養之地，不可折受’，力請還寢。厥後鎭遠復陳白於筵中，請依前折受，而錫輔今又陳疏爭之矣。大抵此山，乃是豐沛主脈，而蔽遮北方。全州不但眞殿所在，營府人民之居，自是大都會，則此山不可不禁養矣。然今自賑廳，請其折受者，其意以爲山之高處則可禁，而平地則不必禁耕。近來賑儲蕩然，屬之賑廳，以爲收稅之地，則其在聚穀之道，不爲無益故也。卽今乾止山，不過爲本官之私用，而其平地可墾處，奸民冒耕者，永作己物，雖不歸賑廳，不可無屬處。今若打量定界，可耕處出付元帳付，自戶曹依嶺南火田例，比民田倍徵其稅，則民或厭其稅重，至於陳棄，亦無所害矣。”上曰：“大臣所達誠是。可禁處禁之，不當禁處許耕，而歸之地府，依嶺南火田例，收稅宜矣。”健命又曰：“卽今憂虞多端，人才眇然，而位著不備。至如大臣去就，與他自別。原任大臣，雖無職事，若在京輦，則國家可以倚仗，而庶務亦可咨詢矣。

지시킴에 마땅하지 않은 곳은 경작하도록 허락하되, 지부(地府)에 돌려서 영남(嶺南)의 화전(火田) 사례에 의거하여 세금을 거두는 것이 적당하겠다.” 하였다. 이견명(李健命)이 또 말하기를,

“지금 우려할 만한 단서는 많고 인재(人才)는 모자라서 위치(位著)19010)가 갖추어지지 못했습니다. 대신(大臣)의 거취(去就)와 같은 데 이르러서는 다른 일과 저절로 다르니, 원임 대신(原任大臣)은 비록 직사(職事)가 없다 하나, 만약 경련(京輦)에 있으면 국가에서 의지하고 믿을 수 있으며, 온갖 업무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서종태(徐宗泰)는 별로 편안치 못한 단서가 없는데, 오래도록 도성(都城) 밖에 살고 있으며, 판중추부사 조태채(趙泰采)는 정승에 임명[爰立]된 지 오래 되지 않아 벼슬을 버리고 도성 밖으로 나가 그대로 고향의 집에 머물고 있으면서 끝까지 올라오지 않고 있으니, 마땅히 이 두 대신에게 돈소(敦召)하는 일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서 판중추부사(徐判中樞府事)는 원래 대단하게 인혐(引嫌)할 일도 없었으며, 조 판중추부사(趙判中樞府事) 또한 대관(臺官)의 말로 인하여 물러갈 뜻을 결정하고 끝내 들어 오지 않으니 어찌 지나치지 않겠는가? 대신(大臣)이 진달한 바가 옳다.”

하였다. 이견명이 또 말하기를,

“근래에 부유한 백성들의 이식(利殖)을 늘리는 방법이 갑리(甲利)에 이르러서 지극합니다. 이식을 늘리는 것이 한정과 절제가 없어 더러 달마다 그 이식(利殖)을 받아들여 한 해가 되지 않아 갑절에 이르게 되는데, 심지어 곡식이 귀(貴)할 때에는 한 말[斗]의 쌀이 돈으로 환산하여 한 냙(兩)인데, 가을에 이르러 두 냙을 돌려받아 쌀로 계산하면 거의 5, 6갑절이 되니, 소민(小民)이 어떻게 곤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부터 제도를 정하여 관화(官貨)인 경우에는 은전(銀錢)을 논할 것 없이 경외(京外)의 각 아문(衙門)에서 일체로 환

判府事徐宗泰，別無難安之端，久處城外，判府事趙泰采，爰立未久，去位出城，仍住鄉庄，終不上來。此兩大臣，宜有敦召之舉矣。” 上曰：“徐判府事，元無大段引嫌之事，趙判府事，又因臺言，決意退去，終不入來，豈不過乎？大臣所達是矣。” 健命又言：“近來富民生殖之道，至於甲利而極矣。生殖無有限節，或有月捧其殖，歲未周而至倍者，至於穀貴之時，一斗米折錢一兩，至秋索二兩。以米計之，殆過五六倍，小民安得不困耶？自今定制，官貨則勿論銀錢，京外各衙門一從還上例，什一生殖，民間則米穀則用什五，銀錢、布用什二生殖，如有違越者，官吏則論以制書有違，私家則施以杖一百之律，而使報償者，詣官自告，則貧民庶可支保，而法令均平矣。” 上可之。

	<p>상(還上)의 예(例)를 따라 10분의 1로 이식(利殖)을 늘리게 하고, 민간(民間)의 경우에 미곡(米穀)은 10분의 5를 적용하고, 은전(銀錢)과 포(布)는 10분의 2를 적용하여 이식을 늘리도록 하소서. 만일 어기는 자가 있으면 관리(官吏)는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19011)로 논죄(論罪)하고 사가(私家)는 장(杖) 1백 대의 율(律)을 시행하게 하여 값을 자로 하여금 관(官)에 나아가 스스로 신고하도록 한다면, 가난한 백성이 거의 지탱하며 보전할 수 있을 것이고, 법령(法令)은 균등하고 공평해질 것입니다.”</p> <p>하니, 임금(世宗)이 옳게 여겼다.</p>	
<p>숙종 62권, 44년 (1718 무술 / 청 강희 (康熙) 57년) 9월 25 일(경자) 3번째기사</p>	<p>비국(備局)에서 경기 감사(京畿監司)의 장본(狀本)으로 인하여 복주(覆奏)하기를,</p> <p>“금년에는 기근(飢饉)이 들고 전염병을 만난 나머지 국역(國役)이 거듭되었으니, 마땅히 진휼(賑恤)하는 도리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청컨대 지난해 온천(溫泉)에 거동하셨을 때의 전례에 의거하여 봄철 대동미(大同米) 6두(斗) 가운데 2두(斗)를 감(減)하여 주도록 허락하소서.”</p> <p>하니, 세자(世子)가 옳게 여겼다.</p>	<p>備局，因京畿監司金演狀本，覆奏言：“今年飢癘之餘，國役稠疊，宜有軫恤之道。請依上年溫幸時例，春大同六斗中，許減二斗。”世子可之。</p>
<p>숙종 62권, 44년 (1718 무술 / 청 강희 (康熙) 57년) 10월 16 일(경신) 1번째기사</p>	<p>비국(備局)에서 황해 감사(黃海監司) 이덕영(李德英)의 장본(狀本)으로 인하여 청하기를,</p> <p>“군포(軍布)·군보미(軍保米) 및 각사(各司) 노비 신공(奴婢身貢)으로 옛날의 미수(未收)는 받아들이는 것을 정지하게 하고, 당년조(當年條)는 단지 재해가 더욱 심한 고을에 3분의 1을 감하여 주도록 할 것이며, 환상미(還上米)는 다른 곡식으로 미루어 대신 바치게 하되, 환상 모곡(還上耗穀)은 재해가 더욱 심한 고을에 나누어 주어 진휼하는 자본으로 보충하게 하소서. 그리고 세초(歲抄)는 물고(物故)한 자를 대신 정하는 외에는 모두 정지시키도록 하고, 공명첩(空名帖)은 5백 장(張)을 한정하여 만들어 보내게 하소서.”</p> <p>하니, 세자(世子)가 옳게 여겼다.</p>	<p>庚申/備局，因黃海監司李德英狀本請：“軍布、軍保米及各司奴婢身貢，舊未收則停捧，當年條只於尤甚邑減三分之一，還上米，以他穀推移代捧，劃給還上耗穀於尤甚邑，以補賑資。歲抄物故代定外，並爲停止，空名帖限五百張成送。”世子可之。</p>

<p>숙종 62권, 44년 (1718 무술 / 청 강희 (康熙) 57년) 10월 29 일(계유) 2번째기사</p>	<p>비국(備局)에서 경상 감사(慶尙監司) 이집(李堧)의 장본(狀本)으로 인하여 복주(覆奏)하여 청하기를, “군포(軍布)와 공목(貢木)19080) 은 조금 충실한 고을은 당년조(當年條) 및 그전의 미수(未收) 1년조를 전부 바치게 하고, 재해가 더욱 심한 고을은 다만 당년조만 바치게 하며, 재해가 더욱 심한 고을의 조곡(糶穀)은 절반을 감해 주도록 하소서.” 하니, 세자(世子)가 그대로 따랐다.</p>	<p>備局，因慶尙監司李堧狀本，覆奏請：“軍布、貢木，稍實邑，全捧當年條及舊未收一年條，(尤甚) [之次] 邑，只捧當年條，尤甚邑，糶穀減半。”世子從之。</p>
<p>숙종 62권, 44년 (1718 무술 / 청 강희 (康熙) 57년) 12월 16 일(기미) 1번째기사</p>	<p>사헌부(司憲府)에서 지난번에 아뢴 바를 거듭 아뢰고, 또 말하기를, “잡직(雜職)으로 일정한 달수가 차서 천전(遷轉)하는 자는 정직(正職)19131)을 임명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무리를 이미 경사(京司)의 결송관(決訟官)이나 지방의 수령[守宰]으로 임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 관사(官司)에 벌여 있어 이동시킬 방법이 없는데다 점차로 승륙(陞六)19132) 하는 자들이 앞뒤로 서로 잇달고 있으므로 항상 막힐 것이 염려되니, 변통(變通)하여 편리하게 소통시키는 방법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청컨대, 잡과(雜科)나 잡기(雜歧)로 승륙(陞六)한 사람은 모두 송서(送西)하여 【송서(送西)하는 것은 서전(西銓)에 보내어 군함(軍銜)19133)을 부여하는 일인데, 이조(吏曹)를 동전(東銓)이라 하고 병조(兵曹)를 서전(西銓)이라 한다.】 사과(司果)를 부여하고, 동반(東班)의 정직(正職)으로는 임명하지 말도록 하소서. 그리고 요즈음에 와서 공물 연조(貢物年條)를 매매(買賣)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심지어 진휼청(賑恤廳)과 경리청(經理廳)의 차인(差人) 또한 연조를 많이 사들여 이익을 남기는 자료로 삼고, 주모자의 이름을 바꿔가면서 책판(責辦)하는 데에 현혹되어 있습니다. 또 더러는 수삼 년의 가미(價米)를 미리 주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변통하여 바꾸게 하면서 그전의 값은 빼놓고 있으니, 청컨대, 과조(科條)를 엄중하게 세워 연조를 매매할 수 없도록 하소서. 왕정(王政)에 있어서 시급히 해야 할 바는 언제나 이익이 생기는 근원을 막는 것인데, 해마다 흉년이 들어 공사간</p>	<p>己未/憲府申前達。 又言：“雜職之準朔遷轉者，得授正職，此類既不可任以京司決訟官、外方守宰。 布列各司，轉動無路，而漸次陞六，前後相續，常患窒礙。 不可無變通疏利之道，請雜科、雜歧陞六人， 竝送西，【送西者，送于西銓，付軍銜。 吏曹爲東銓，兵曹爲西銓。】 付司果，毋授東班正職。 近來多有貢物年條買賣之事， 至於賑廳、經理廳差人，亦多買取年條，以爲贏利之資，以致主名之換，眩於責辦。 且或預授數三年價米，多方變質，沒其前價。 請嚴立科條，毋得買賣年條。 王政所急，常防利源，而連歲凶荒，公私赤立，率以征利爲務。 各上司攬取監·兵營、州縣防納之利，監、兵營又攬取小民興賑之利，甚至爲守宰者，俵散錢穀於民間，以殖利取贏，爲能事，</p>

	<p>에 텅 비었으나, 모두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업무를 삼고 있습니다. 각 상사(上司)에서는 감영(監營)·병영(兵營)과 주현(州縣)의 방납(防納)하는 이익을 잡아채고, 감영과 병영에서는 소민(小民)들의 흥판(興販)하는 이익을 잡아채며, 심지어 수령이 된 자들은 전곡(錢穀)을 민간(民間)에 나누어 주고서 이익을 늘리고 나머지를 취하는 것으로 능사(能事)를 삼고 있는데 관청의 위엄을 빙자하여 강제로 이자를 감절이나 바치게 합니다. 청컨대,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사목(事目)을 명백히 반포하여 일체 금단(禁斷) 시키도록 하소서.”</p> <p>하니, 세자(世子)가 따르지 않고, 잡직(雜職)을 6품(品)으로 승진시키는 일 이하 3건(件)은 전조(銓曹)와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였다. 이 뒤에 잡직을 송서(送西)하는 일은 과연 시행되지 않았고, 연조(年條)를 매매하는 일 및 이익을 늘리는 일은 모두 거듭 금지시켰지만, 끝내 그 폐단을 근절시킬 수가 없었다.</p>	<p>藉其官威，勒捧倍息。請令廟堂，明頒事目，一切禁斷。”世子不從。雜職出六事以下三件，令銓曹、廟堂稟處。是後，雜職送西事，不果行，年條買賣及殖利事，皆申禁，而終不能絕其弊。</p>
<p>숙종 62권, 44년 (1718 무술 / 청 강희 (康熙) 57년) 12월 28 일(신미) 1번째기사</p>	<p>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다. 진후(診候)를 마치자, 제조(提調) 민진원(閔鎭遠)이 말하기를,</p> <p>“외방이 각 고을에서 진휼청(賑恤廳)에다 당연히 납부해야 할 전곡(錢穀)을 관문(關文)을 보내어 재촉하였으나, 한 고을도 거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청컨대, 전화(錢貨)는 두 달을 기한하고, 미곡(米穀)은 넉 달을 기한하되, 수송(輸送)하지 않는 경우 해당 감색(監色)19150) 을 영문(營門)에서 엄중하게 형벌을 가하고, 수령(守令)은 파출(罷黜)하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도제조(都提調) 이이명(李頤命)이 말하기를,</p> <p>“성(城)을 쌓는 데 대한 회의(會議)는 성상의 환후(患候)가 조금 차도가 있기를 기다려 해가 바뀐 뒤에 거행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그런데 3품(品) 이상의 관원이 1백여 인(人)에 이르도록 많으니, 하루 동안에 마음에 품은 바를 적어 올리면 수응(酬應)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니, 지금 만약 날짜를 나누어 행하여 첫날에는 3품의 관원이 헌의(獻議)하고, 다음날에는 2품 이상의 관원</p>	<p>辛未/樂房入診。診候畢，提調閔鎭遠言：“外方各邑應納賑廳之錢穀，發關催促，無一舉行者。請錢貨則限二月，米穀則限四月，不爲輸送者，當該監色，自營門嚴刑，守令罷黜。”上可之。都提調李頤命言：“築城會議，當待聖候稍間，舉行於歲後，而三品以上，多至百餘人，一日書進所懷，酬應甚難。今若分日行之，初日則三品獻議，次日二品以上獻議，則似爲便好。”上可之。</p>

	이 현의한다면, 편리하고 좋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옹계 여겼다.	
종 62권, 44년(1718 무술 / 청 강희(康熙) 57년) 12월 30일(계 유) 1번째기사	황해 감사(黃海監司) 이덕영(李德英)이 상소(上疏)하여, 본도(本道)의 기근(飢饉)과 전염병의 상황을 말하고, 진휼청(賑恤廳)의 돈 3, 4만 냥(兩)과 호조(戶曹)의 공물가미(貢物價米)를 얻어서 요리하여 진휼(賑恤)에 보충하기를 원하고, 또 본도의 상정미(詳定米)는 절반을 돈으로 대신 바치게 할 것을 청하자, 세자(世子)가 묘당(廟堂)에 내렸는데, 묘당에서 복주(覆奏)하니, 다만 재령(載寧)·신천(信川)·봉산(鳳山) 등 세 고을의 재해가 더욱 심한 곳의 적곡(糶穀)만 절반으로 감하도록 허락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癸酉/黃海監司李德英上疏言本道饑癘狀，乞得賑廳錢三四萬兩、戶曹貢物價米，料理補賑。又請本道詳定米，折半以錢代捧，世子下之廟堂。廟堂覆奏，只許載寧、信川、鳳山等三邑尤甚處糶穀減半，餘皆不許。 肅宗顯義光倫睿聖英烈章文憲武敬明元孝大王實錄卷之六十二終
숙종 63권, 45년 (1719 기해 / 청 강희 (康熙) 58년) 1월 1일 (갑술) 3번째기사	세자(世子)가 영(令)을 내리기를, “농사(農事)는 천하(天下)의大本(大本)인데, 올해에는 절후(節候)가 조금 빨라서 동작(東作)19151) 이 멀지 아니하니, 권과(權課)하는 정사가 마땅히 먼저 있어야 할 것이다. 혹독하게 재황(災荒)을 입은 도(道)는 또 장차 진휼(賑恤)을 베풀어야 하니, 진정(賑政)을 신칙(申飭)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겨울철에 접어든 이후 여역(癘疫)이 다시 치성(熾盛)하여 가라앉을 기약이 없으니, 백성들의 일을 생각하면 진실로 매우 민망스럽다. 혹 약물(藥物)을 구해 주거나 혹은 곡물(穀物)을 제급(題給)하여 구활(救活)하는 데 뜻을 두고 조금도 느슨하게 하지 않도록 하라. 본원(本院)에서는 특별히 조사(措辭)하여 팔도(八道)의 감사(監司)와 양도(兩都)19152) 의 유수(留守)에게 하유(下諭)하도록 하라.” 하였다. 승정원(承政院)에서 곧바로 휘교(徽敎)19153) 를 반포하도록 청하였는데, 여러 번 청해서야 이에 허락하였다.	世子下令曰：“農者，天下之大本，而今年節候差早，東作不遠，勸課之政，在所當先。酷被災荒之道，又將設賑，賑政不可不申飭。昨年入冬以後，癘疫復熾，寢息無期，言念民事，誠甚渴悶。或覓給藥物，或題給穀物，着意救活，不容少緩。自本院，別爲措辭，下諭于八道監司、兩都留守。” 政院請直以徽教頒布，屢請乃許。
숙종 63권, 45년 (1719 기해 / 청 강희 (康熙) 58년) 1월 9일	지평(持平) 이중협(李重協)이 재이(災異)로 인하여 상서(上書)하였는데, 대략에 이르기를, “저하(邸下)께서는 하늘로부터 예지(睿智)를 이어받으셨고 인자하고 공손하고	壬午/持平李重協，因災異上書。略曰： 以邸下天縱睿智，兼之以仁恭、溫粹之

(임오) 1번째기사

은화하고 순수하신 자질(資質)을 겸하여 갖추셨는데, 하지 않으신다면 그만이었지만, 진실로 하고자 하신다면 이제 삼왕(二帝三王)19170) 이 곧 분내(分內)19171) 의 일이니, 이제 삼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을 바르게 하고 그 천성(天性)을 다한 데 지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다만 이러한 날마다 쓰는 사려(思慮)와 동작(動作)이 모두 마음에 달려 있는데, 그 나타나는 바는 공변되거나 사사로운 것과 진실되거나 망령됨의 구별이 있으니, 반드시 천리(天理)는 항상 능가하고 인욕(人慾)은 항상 물러가도록 하여 오랫동안 정숙(精熟)해져서 혼연(渾然)히 순일(純一)해지도록 해야만, 만사(萬事)를 처리하고 만물(萬物)을 다스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고뇌(苦惱)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고, 다만 나의 마음의 본래 가지고 있는 바로 인하여 뜻을 더할 따름입니다. 또 인군(人君)은 모름지기 활달(豁達)한 기상(氣像)을 가지고서 숨기고 드러내는 것을 한결같이 하고 안팎으로 환하게 통해야 하니, 송(宋)나라 태조(太祖)가 중문(重門)을 활짝 열어 놓아야 한다고 한 것이야말로 참된 왕자(王者)의 말입니다. 진실로 원하건대, 저하(邸下)께서는 서연(書筵)에서 강독(講讀)하실 적에 반드시 반복하여 토론(討論)하시고, 몸과 마음에 이르기까지 조금이라도 순수(純粹)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또한 모름지기 일일이 개설(開說)하게 하여 그 다스릴 방책을 구(求)하시며, 대신(大臣)과 군료(群僚)를 인접(引接)하실 때에는 상의(商議)할 만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여러 사람의 말을 채택하셔서 감추거나 속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옛날 제 선왕(齊宣王)이 맹자(孟子)를 대하였을 때 여색(女色)과 재화(財貨)를 좋아한다고 직언(直言)하였는데, 선유(先儒)는 맹자가 당시 열국(列國)의 임금 가운데 제 선왕을 가장 사모한 것은 이러한 직설(直說)을 할 수 있는 영기(英氣)가 있다고 여긴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합니다. 군신(君臣)의 교제(交際)는 이와 같은 후에야 마음에 새겨두고 알게 되는 일이 실제로 효험(效驗)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국사(國事)는 진실로 조정(朝廷)의 기강(紀綱)이 크게 무너진 데에 말

質, 不爲則已, 苟欲有爲, 則二帝三王, 卽是分內事。 二帝三王之爲二帝三王者, 不過曰正其心而盡其性耳。 只此日用間思慮動作, 皆心也, 而其出有公私眞妄之別。 必使天理常勝, 人慾常退, 久久精熟, 渾然純一, 可以處萬事而宰萬物矣。 此非苦惱難堪之事, 只是因吾心之所固有, 而加之意而已。 且人君, 須有豁達氣像, 隱顯如一, 表裏洞徹。 如宋太祖洞開重門, 眞王者之言也。 誠願邸下, 於書筵講讀之際, 必須反復討論, 至於心身上, 有些未粹, 亦須一一開說, 求其克治之術, 引接大臣、群僚之際, 事有可商, 必採衆說, 不可有藏蓄欺隱之事。 昔齊宣王對孟子, 直言好色、好貨, 先儒謂孟子於當時烈國之君, 最眷眷於齊宣者, 以其此等處直說, 爲有英氣云。 君臣交際, 如此然後, 存心致知之事, 實有效驗矣。 今日國事, 實由於朝綱之大頹, 而其所警動, 一變偷惰之習者, 其責實在大臣, 而近日大臣, 其權輕而自任亦淺, 不以國事爲自己擔當, 而若其簿書細瑣, 循例舉行之事, 雖勤不足貴矣。 臣願邸下, 必以責勵大臣, 而召而教

미암는데, 게으른 풍습을 경동(警動)하여 일변(一變)시키는 것은 그 책임이 진실로 대신(大臣)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대신은 그 권한(權限)이 가벼워지고 자신의 임무 또한 알아서 국사(國事)를 자기가 담당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있는데, 그 부서(簿書)의 자질구레한 사무를 전례에 따라 거행(舉行)하는 일이야 비록 부지런히 하더라도 귀하게 여길 것이 못됩니다. 신은 원하건대, 저하께서는 반드시 대신을 책려(責勵)하시고, 불려서 하교(下敎)하시기를, ‘무릇 나의 과실(過失)을 충분히 말하여 광정(匡正)하도록 하고, 경대부(卿大夫)를 유능하고 무능한 데에 따라 엄중하게 출척(黜陟)을 더하여 체면과 인정에 구애받아 부동(附同)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사사로운 청축에 따라 그릇되게 천거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신다면, 대신 또한 반드시 감격해서 분발하여 힘쓰면서 감히 아부하여 고식적인 행위를 못하고 친히 국가(國家)의 책무(責務)를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육관(六官)의 장관(長官)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인재(人才)를 골라서 구임(久任)시켜야 합니다. 또 관원(官員)이 봉직(奉職)하는 규례(規例)를 만들어 10일에 2일 동안 휴가를 주되, 밤에는 윤번(輪番)으로 입직(入直)하게 하고 낮에는 모두 관사(官司)에 있으면서 직사(職事)를 다스리도록 하고, 관물(官物)을 출납(出納)할 적에는 장부에 기록하고 삭제하면서 몸소 검찰(檢察)하게 하며, 또 이서(吏胥)를 옮겨 차임(差任)하는 규례를 거듭 밝히신다면, 이서(吏胥)의 간사한 짓을 금제(禁制)하여 직무를 진작(振作)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청컨대, 감사(監司)와 수령(守令)은 가려서 차임(差任)해야 하며, 육경(六卿)과 번곤(藩閫)19172) 을 제배(除拜)할 때에는 반드시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재신(宰臣) 및 삼사(三司)의 신하들을 불려서 하문(下問)해 보시고 임용(任用)하도록 하소서. 국자감(國子監)과 삼사(三司)는 반드시 정밀하게 가려서 그 직임(職任)에 오래 있도록 하소서. 궁위(宮闈)19173) 에 계칙(戒飭)하여 분수에 지나친 사치의 풍습을 엄중히 제거하시고, 궁인(宮人)·환시(宦寺)·액예(掖隸)의 무리로부터 어선(御膳)·복식(服

曰：“凡予過失，極言匡正，卿大夫之能否，嚴加黜陟，無拘顏情以數同，無循私囑以謬舉”，大臣亦必感發淬礪，不敢依阿姑息，身擔國家之責矣。至於六官之長，必擇人久任，而且立官員勤仕之規，一旬給暇二日，夜則輪番入直，晝則皆令在官治事，官物出納，札簿錄削，躬自檢察，又申明吏胥移差之規，則可以禁抑吏奸，而振舉職務矣。又請擇差監司、守令，而六卿、藩閫，除拜之時，必召大臣、備局諸宰、三司之臣，詢問而用之，國子、三司，必精擇而久其任，戒飭宮闈，痛去侈靡之習，自宮人、宦寺、掖隸之類，至於膳服、器用之費，亦皆裁省。又召大臣、六官，凡係浮文、濫費之事及吏胥、徒隸之應掌公簿·應行公役之外，或減其數，外方飲食、雜費，亦皆申飭，毋使過侈。減大同加定之數，以復當初十斗之制，省冗兵雜額，以救逃故役布之急，廣求直言而誓衷之。

末言：
州縣之號爲善賑者，不過料理販貿，克剝民費，殆如割肉充腹，而又以爲藉口營私之計，朝廷之所區畫，亦不過令富

飾)·기용(器用) 등의 비용(費用) 또한 모두 헤아려 줄이도록 하소서. 또 대신(大臣)·육관(六官)을 불러서 무릇 부문(浮文)·남비(濫費)에 관계된 일 및 이서(吏胥)와 도예(徒隸)가 응당 관장(管掌)해야 하는 공부(公簿)와 응당 행해야 하는 공역(公役) 외에는 혹은 그 액수(額數)를 줄이고, 외방(外方)의 음식(飮食)과 잡비(雜費) 또한 모두 신칙(申飭)하여 너무 사치스럽게 하지 못하게 하소서. 대동미(大同米)의 가정(加定)된 수량을 견감하여 당초에 10두(斗)의 제도를 회복시키소서. 쓸데없는 군사의 액수를 줄이고, 도망하였거나 죽은 사람에게 거두는 역포(役布)의 위급함을 구제하소서. 널리 직언(直言)을 구하여 절충(折衷)하소서.”

하고, 마지막으로 말하기를,

“주현(州縣)에서 진휼(賑恤)을 잘했다고 일컫는 자는 판무(販貿)를 요리(料理)한 데에 지나지 않으니, 백성의 재물을 빼앗아 거의 할육충복(割肉充腹)19174) 한 것과 같으며, 또 진휼을 핑계하여 사리(私利)를 꾀할 계책으로 삼은 것입니다. 조정(朝廷)에서 구획(區劃)한 바 또한 부호(富戶)로 하여금 사사로이 진휼(賑恤)하게 하고는 녹사(祿仕)19175) 를 허락한 데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공명첩(空名帖)19176) 을 주어 억지로 백성들에게 팔게 하였으나, 한갓 군정(軍丁)만 잃고 단지 백성들의 원망만 더욱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사롭게 진휼한 사람에게 벼슬을 주는 것도 미처 시행되지 못하였으므로 신의(信義)를 잃는 데로 돌아감을 면하지 못하였고, 원망과 비방이 떼지어 일어났으니, 매우 절통(切痛)하게 여길 만합니다.”

하니, 세자가 답하기를,

“재이(災異)를 당하여 몹시 두려워한 나머지 편안히 있을 겨를이 없었는데, 그대가 언지(言地)19177) 에 있으면서 마음속에 품었던 바를 소장(疏章)으로 올려 힘써 경계(警戒)하니, 진실로 나라를 근심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데에서 나온 것이다. 내가 매우 가상(嘉尙)하게 여기니, 유의(留意)하지 않을 수 있겠

戶私賑，許以祿仕，又給空名帖，以抑賣於民，而徒失軍丁，祇益招怨，私賑付仕，亦未見施，不免失信之歸，而謗讒朋興，甚可痛也。

世子答曰：“遇災危凜，不遑寧處。爾身居言地，有懷陳章，其所勉戒，亶出憂愛。余甚嘉尙，可不留心？其中可以議處事，令廟堂稟處。”是後，卒無採施者。

	<p>는가? 그 가운데 의논하여 처리할 만한 일은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도록 하겠다.”</p> <p>하였으나, 이후 끝내 채택하여 시행한 것이 없었다.</p>	
<p>숙종 63권, 45년 (1719 기해 / 청 강희 (康熙) 58년) 1월 20 일(계사) 2번째기사</p>	<p>궁궐의 담장을 넘은 죄인 차원(次元)을 용서하였다. 처음에 서소(西所)에서 입직(入直)하던 군사(軍士) 차원이 집에 돌아가서 양식을 가지고 궐문(闕門)에 도착하였는데, 궐문이 이미 닫혔으므로 취한 김에 몰래 궁성(宮城)을 넘다가 다른 군졸(軍卒)에게 붙잡혔던 것이다. 형조(刑曹)에서는 대벽(大辟)19199)에 해당된다고 하였으나 세자(世子)는 그 범한 바가 술에 몹시 취하여 인사불성(人事不省) 상태에서 나왔다 하여 특별히 감사(減死)하여 유배(流配)시키도록 하였다.</p>	<p>有踰越宮牆罪人次元。初，西所入直軍士次元，歸家取糧，值闕門已閉，乘醉潛越宮城，爲他卒所執。刑曹當以大辟，世子以其所犯，出於泥醉不省人事之致，特令減死，流之。</p>
<p>숙종 63권, 45년 (1719 기해 / 청 강희 (康熙) 58년) 1월 22 일(을미) 2번째기사</p>	<p>여러 승지(承旨)들이 동궁(東宮)에 입대(入對)하였는데, 지춘추(知春秋) 민진후(閔鎭厚)가 함께 입대하였다. 대개 태조(太祖)가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을 때의 사실을 상고해 내기 위하여 조정(朝廷)에서 춘추관(春秋館)의 당상(堂上)과 낭청(郎廳)을 보내어 강화도(江華島)에 소장된 실록(實錄)에서 상고해 내도록 하였는데, 민진후가 명(命)을 받들고 가서 이를 상고하고 돌아와 입대를 청한 것이다. 민진후가 말하기를,</p> <p>“신이 사각(史閣)에 도착하여 《태조실록(太祖實錄)》을 받들어 꺼내 놓고 첫째 권(卷)부터 세종(世宗) 기해년(19200) 까지 모두 34책을 상세히 고열(考閱)하였으나 끝내 출처(出處)를 볼 수가 없었으니, 헛걸음으로 돌아옴을 면하지 못하게 되어 탄식(歎息)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지난날 절목(節目)을 의논하여 정하라는 명이 있었으나 실록(實錄)에는 이미 의거할 만한 것이 없고, 다만 신의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군주(君主)가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가는 것은 진실로 이전에는 없던 성대한 일이니, 특별히 일소(一所)를 설치하는 것이 혹시 옳을 수도 있으나, 군하(群下)의 기로소에 낮추어 들어가실 수는 없으며, 아래에서 들어가시도록 청하는 경우는 더욱 외람된 데에 관계됩니다. 실록에 기재된 것을 보건대, 혹은 대신(大臣)에게 잔치를 내려준 때가 있었고 혹은</p>	<p>諸承旨入對於東宮，知春秋閔鎭厚同入。蓋爲考出太祖入耆老時事實，朝廷遣春秋館堂上、郎廳，考江華所藏實錄，鎭厚奉命往考還，求對也。鎭厚曰：“臣到史閣，奉出《太祖實錄》，自初卷至世宗己亥凡三十四冊，詳細考閱，而終無見出處，不免空還，不勝悚歎。頃日有節目議定之命，而實錄既無可據者。第以臣之愚見，人君之入耆所，實是無前盛事，別設一所，容或可也，而不可降入於群下之耆社。至於自下請入，尤涉猥越矣。以實錄所載見之，或有大臣賜宴之時，或有承旨、六曹賜宴之時，又有政府、百官賜宴之時。今若稍待日暖，進宴于便殿，則似好矣。且中宮殿患候，已向差復</p>

	<p>승지(承旨)와 육조(六曹)에 잔치를 내려준 때가 있었으며, 또 의정부(議政府)와 백관(百官)에게 잔치를 내려준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 만약 날씨가 따뜻해 지기를 조금 기다려 편전(便殿)에서 진연(進宴)하게 한다면 좋을 듯합니다. 또 중궁전(中宮殿)의 환후(患候)가 이미 차도(差度)가 있어 회복되어 가는 지경에 있으니, 저하(邸下)께서 만약 한 잔치를 베풀어 양전(兩殿)께 헌수(獻壽)하신다면, 어찌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p> <p>하였는데, 세자가 말하기를, “명백하게 상고해 보았는가?”</p> <p>하자, 민진후가 말하기를, “신이 검열(檢閱) 박사성(朴師聖)과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함께 상고해 보았으니, 어찌 빠뜨릴 리가 있겠습니까? 이 일은 갑작스럽게 결정하기 어려우니, 대조(大朝)께 품의(稟議)하여 전교(傳敎)가 다시 내려진 후에 예관(禮官)이 절목(節目)을 거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p> <p>하니, 세자가 말하기를, “그렇다.”</p> <p>하였다.</p>	<p>之境，邸下若設一宴，上壽于兩殿，則豈非美事乎？”世子曰：“明白考見乎？”鎮厚曰：“臣與檢閱朴師聖，晝夜不息，同爲考見，安有落漏之理乎？茲事有難倉卒決定，稟于大朝，更下傳敎，然後禮官當舉行節目矣。”世子曰：“唯。”</p>
<p>숙종 63권, 45년 (1719 기해 / 청 강희 (康熙) 58년) 1월 25 일(무술) 2번째기사</p>	<p>세자(世子)가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재신(宰臣)들을 인접(引接)하였다. 영의정(領議政) 김창집(金昌集)이 말하기를, “평안 감사(平安監司) 이조(李肇)가 의주 부윤(義州府尹) 김유경(金有慶)의 문보(文報)로 인하여 책문 후시(柵門後市)19209 하도록 고쳐 허락하기를 청하였습니다. 팔포(八包)19210 의 수(數)를 정한 이후 개시(開市)하고도 수세(收稅)할 길이 끊어져 관청(官廳)의 용도(用度)는 구간(苟艱)하고 백성들은 이득(利得)을 잃고 있는데, 이제 만약 이를 허락한다면 본부(本府)에는 보탬이 없지 않을 것이나 잠상(潛商)의 폐단은 금할 수가 없을 듯합니다.”</p> <p>하였는데, 우의정(右議政) 이건명(李健命)·이조 참판(吏曹參判) 김유(金樛)가</p>	<p>世子引接大臣、備局諸宰。領議政金昌集言：“平安監司李肇，因義州府尹金有慶文報，請改許柵門後市矣。八包定數之後，開市收稅路絕，官用苟艱，民人失利，今若許之，則在本府，不無所益，而潛商之弊，恐不可禁。”右議政李健命、吏曹參判金樛皆言：“不可輕許。”世子令勿許。健命請：“京外全家，死於癘疫，未得收瘞者，</p>

	<p>모두 말하기를, “경솔히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 세자가 허락하지 말도록 하였다. 이진명이 계청(啓請)하기를, “경외(京外)에서 온 가족이 여역(癘疫)에 몰사(沒死)하였으나, 미처 거두어 장사하지 못한 경우 호(戶)마다 곡식 1석(石)씩을 주소서.” 하니, 세자(世子)가 이를 옳게 여겼다. 예조 판서(禮曹判書) 민진후(閔鎭厚)가 말하기를, “지난번 실록(實錄)을 보았더니, 국초(國初)에는 도성(都城)을 다 쌓은 후 각 문(各門)에 모두 누각(樓閣)을 지었는데, 이름이 ‘수구문(水口門)’이라는 구호(舊號)가 있었으니, 바로 광희문(光熙門)입니다. 그러니 각 해당 군문(該當軍門)에 분부하여 그 액호(額號)를 써서 걸게 하고, 서소문(西小門) 앞에는 누각(樓閣)을 설치한 후 또한 액호를 걸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세자가 이를 옳게 여겼다. 훈련 대장(訓練大將) 이홍술(李弘述)이 말하기를, “근래에 각궁(角弓)19211) 은 종자가 멸절(滅絶)되어 각 군문(軍門)의 군기(軍器)와 궁자(弓子)19212) 를 만들 수가 없으니, 청컨대, 통신사(通信使)의 행차 때 금령(禁令)을 늦추어 그로 하여금 많은 수량을 무역해 오게 하소서.” 하니, 세자가 이를 허락하였다. 지평(持平) 박필정(朴弼正)이 전에 계달(啓達)했던 것을 거듭 아뢰고, 또 말하기를, “상주 목사(尙州牧使) 박희등(朴彙登)은 본래 치적(治蹟)이 없으며, 또 농병(農病)이 심하여 아전이 이로 인해 농간(弄奸)을 부렸으나 전혀 깨달아 살피지 못하였으니, 청컨대, 파직(罷職)하소서. 태안 군수(泰安郡守) 김덕중(金德重)은 밤낮으로 경영(經營)하여 침탈(侵奪)하지 않는 일이 없었으니, 청컨대, 파직하소서. 감찰(監察) 고우추(高友樞)는 지위(地位)가 본래 한미(寒微)하여 공의(公議)가 이를 놀라와하니, 청컨대, 태거(汰去)하소서.”</p>	<p>每戶給穀一石。”世子可之。禮曹判書閔鎭厚言：“頃見實錄，則國初都城畢築後，各門皆作樓閣，而有名號。水口門舊號，乃是光熙門。分付各該軍門，書揭其額，而西小門前頭設樓後，亦爲揭額似好矣。”世子可之。訓練大將李弘述言：“近來角弓絶種，各軍門軍器及弓子，無以造成。請於信使之行，弛禁而使之多數買來。”世子許之。持平朴弼正申前達，又言：“尙州牧使朴彙登，素蔑治蹟，農病又甚，吏緣爲奸，全不覺察。請罷職。泰安郡守金德重，日夜經營，罔非侵漁之事，請罷職。監察高友樞，地本寒微，公議駭之，請汰去。”世子不從。</p>
--	--	---

	<p>하였으나, 세자가 따르지 않았다.</p>	
<p>숙종 63권, 45년 (1719 기해 / 청 강희 (康熙) 58년) 1월 29 일(임인) 1번째기사</p>	<p>통신 정사(通信正使) 홍치중(洪致中)·부사(副使) 황선(黃璿)·종사관(從事官) 이명언(李明彦) 등이 청대(請對)하자, 세자(世子)가 불러 보았는데, 홍치중이 말하기를, “옛부터 통신사(通信使)의 행차에는 으레 충주(忠州)·안동(安東)·경주(慶州)에서 잔치를 베푸는 일이 있었는데, 을미년(19217) ·임술년(19218) ·신묘년(19219) 의 행차 때에는 모두 흉년이 들어 세 곳에서 모두 잔치를 정지하였으나, 동래(東萊)는 저 사람들에게 보였으므로 유독 잔치를 베풀었다 합니다. 영남(嶺南)은 해마다 잇따라 흉년이 든 나머지 여역(癘疫)이 다시 치성(熾盛)하니, 비용을 허비하여 폐해(弊害)를 끼치는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래 외에 세 곳은 모두 정감(停減)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세자가 이를 허락하였다. 황선이 말하기를, “훈련 대장(訓練大將) 이홍술(李弘述)이 지난번에 흑각(黑角)을 무역해 오는 일을 진달(陳達)하였습니다. 흑각은 바로 금지하는 물건이므로 사신(使臣)이 돌아올 때 왜인(倭人)들이 으레 수검(搜檢)하는 일이 있다 하는데, 만약 흑시라도 드러난다면 일이 지극히 난처(難處)할 것입니다. 바라건대 무역해 오라는 명령(命令)을 정지하소서.” 하니, 세자가 이를 옳게 여겼다. 이명언(李明彦)이 말하기를, “잠상(潛商)으로 현장에서 붙잡힌 자는 자연히 그 죄(罪)가 있는데, 그 가운데 정범(情犯)이 더욱 무거운 자는 청컨대 곧바로 효시(梟示)하고 추후에 계문(啓聞)하게 하소서.” 하니, 세자가 이를 허락하였다.</p>	<p>壬寅/通信正使洪致中、副使黃璿、從事官李明彦等請對，世子召見。致中曰：“自前信使之行，例有忠州、安東、慶州設宴之舉，而乙未、壬戌、辛卯之行，皆因年歲凶荒，三處竝皆停宴，東萊則爲彼人所見，故獨爲設宴云。嶺南連歲荐飢之餘，癘疫復熾，糜費貽弊，不可不念。東萊外三處，竝宜停減矣。”世子許之。璿言：“訓練大將李弘述，頃以黑角貿來事陳達矣。黑角，乃是禁物，而使臣還來時，倭人例有搜檢之事云。如或見露，事極難處。乞寢貿來之令。”世子可之。明彦曰：“潛商現捉者，自有其罪，而其中情犯尤重者，請直爲梟示，追後啓聞。”世子許之。</p>
<p>숙종 63권, 45년 (1719 기해 / 청 강희 (康熙) 58년) 1월 29 일(임인) 3번째기사</p>	<p>영의정(領議政) 김창집(金昌集)이 차자(筭子)를 올렸는데, 대략 이르기를, “나라의 치란(治亂)은 서관(庶官)19220)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해 이래로 별천(別薦)된 사람들이 또한 많은데, 비록 반드시 모두 출륜(出倫)한 무리는 아니지만 인아(姻婭)의 잔단 무리보다 현명한 것은 서로 멀 뿐만이 아닙니다.</p>	<p>領議政金昌集上筭。略曰：國之治亂，在於庶官。年來別薦之人，其數亦多。雖未必盡出倫類，其賢於姻婭猥瑣之流，則不啻相遠，而銓曹多</p>

그런데도 전조(銓曹)에서는 많이 수습(收拾)하지 않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조정(朝廷)에서 널리 인재(人才)를 구하는 뜻이겠습니까? 중외(中外)에서 보례불식(簠簋不飾)19221) 의 책망이 날로 심해지고 극성(極盛)해지고 있으니, 어사(御史)의 서계(書啓)와 대신(臺臣)의 탄장(彈章)에 오른 자로서 사적(事迹)이 현저한 자는 마땅히 양전(兩銓)에 특별히 하교(下敎)하여 조용(調用)하지 못하게 하셔서 장리(贓吏)로 하여금 징계(懲戒)하는 바를 알게 하소서. 경사(京司)의 포핍(褒貶)19222) 이 문득 문구(文具)19223) 만 이루고 있으므로, 각사(各司)의 관원들 가운데 근신(謹慎)하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공물(貢物) 아문(衙門)에 이르러서는 백성을 침탈(侵奪)하는 폐단(弊端)으로 비루하고도 잔단(殿最)19224) 의 법(法)을 거둬 엄중하게 하여 한결같이 외관(外官)과 같게 하도록 하소서. 기강(紀綱)이 해이해져서 감사(監司)는 조정(朝廷)의 명을 행하지 않고 수령(守令)은 상사(上司)의 명령을 준수(遵守)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록 양전(量田)하는 일로써 이를 말해 보더라도, 수령은 사사롭게 누락된 결복(結卜)을 쓰는 것에 욕심을 내고 호우(豪右)19225) 는 그 재실(災實)을 현란(眩亂)시키는 것을 이롭게 여기는데, 수령의 훼손(毀譽)19226) 가 호우의 입에서 나오므로, 호우가 불편(不便)하다고 하면 수령은 이를 편들어 감사(監司)에게 보고하고, 또 뒤따라 치계(馳啓)하면서 갖가지로 추탁(推託)하여 일부러 지연[遷延]시키고, 마지막에는 양척(量尺)의 장단(長短)과 민간(民間)의 여역(癘疫) 때문이라고 핑계를 삼고 있으니, 신은 처음부터 일을 피한 감사를 견책(譴責)해서 파직(罷職)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령은 도리(道理)를 어기고 명예를 구하면서 오로지 포상(褒賞)을 희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불법(不法)을 많이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자기를 비난할까 두려워하므로, 간활(奸猾)함을 만나도 감히 그 입락(立落)을 밝히지 못하고, 응당 받아들여야 할 물건도 감생(減省)하는 것을 덕색(德色)19227) 으로 여

不收拾，此豈朝家旁求之意哉？中外簠簋之諫，日盛月甚，其登於御史書啓、臺臣彈章，而事迹顯著者，宜特教於兩銓，毋得調用，使贓吏知所懲畏也。京司褒貶，便成文具，各司之官，多不謹慎，至如貢物衙門，則侵漁之端，鄙瑣之事，不可殫記。宜令各司，申嚴殿最之法，一如外官之爲也。綱紀解弛，監司不用朝命，守令不遵上司之令。雖以量田事言之，守令貪於私用漏卜，豪右利其眩亂災實，守令毀譽，出於豪右之口，故豪右倡爲不便，則守令私之，而論報監司，又從而馳啓，百般推託，故爲遷延，末乃以量尺長短、民間癘疫爲諉。臣謂自初避事之監司，不可不譴罷也。守令之違道干譽，非惟希望褒賞，亦由多行不法，畏民議已，故遇奸猾而不敢明其立落，減省應捧之物，以爲德色。從前御史書啓，朝家論賞者，不外於大同、田稅之防納，雉、雞、柴草之減捧，每人悅之之類，此國家勸其要譽也。今後御史封書，宜以七事爲主，廉問之時，守令雖有浮謗，得其正道者，別爲超擢，雖得純譽，苟有一分要名之迹，勿加賞典，

기고 있습니다. 전에 어사(御史)가 서계(書啓)하여 조정(朝廷)에서 논상(論賞)한 것이 대동(大同)19228)·전세(田稅)의 방납(防納)19229)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며, 썩·닭·시초(柴草)19230)을 견감하여 받아들이는 등 사람들마다 이를 좋아하는 종류였으니, 이는 국가에서 그 명예 구하는 것을 권장(勸獎)하고 있는 탓입니다. 이후 어사의 봉서(封書)는 칠사(七事)19231)를 위주로 하여 염문(廉問)할 때 수령에게 비록 떠도는 비방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正道)를 얻은 자는 특별히 초탁(超擢)하고, 비록 순수한 명예를 얻었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명예를 구한 흔적이 있는 자는 상전(賞典)을 더하지 않는다며, 사대부(士大夫)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알게 하여 하지 않게 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과장(科場)의 중요함이 문과(文科)·무과(武科)에 어찌 다름이 있겠습니까 마는, 근래에 무과(武科)에서 사정(私情)을 쓰는 일이 낭자하여 세력(勢力)도 없고 뇌물(賂物)도 없는 자는 비록 재주가 있다고 일컬어져도 대부분 낙방(落榜)을 면하지 못하고 있으니, 일의 놀라움이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만약 드러나는 자가 있으면 전례(前例)에 의거하여 충군(充軍)19232)하고, 거자(舉子)는 영구히 부거(赴學)를 허락하지 말 것이며 차비관(差備官)은 영구히 서용(敍用)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일을 사목(事目)에 첨가해 만들어서 법식(法式)을 정하여 시행한다면, 혹 징계(懲戒)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일에 대간(臺諫)들이 매번 정사(呈辭)19233)하는 것을 일삼아 다시(茶時)19234)에서의 전개(傳啓)를 변모(弁髦)19235)와 같이 보고, 정원(政院)에서 날마다 청하여 불러도 패초(牌招)19236)를 어기고 있으며, 또 어지럽게 편복(便服)으로 드나들며 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제일 큰 일은 하직(下直)하는 수령이 여러번 가도 만나지 못하여 행차의 시기를 여러 차례 늦추므로 인부와 말이 오랫동안 지체하게 되어 그 폐해(弊害)가 크니, 마땅히 신칙(申飭)을 더하고, 처음 수령에 제수(除授)된 자 외에 일찍이 수령을 지낸 사람이라면 여러번 가서 만나지 못할 경우에는 명함을 두고 부임(赴任)하게 하여 행차가 지체되어

使士夫知恥而有所不爲也。科場之重，文武何殊，而近來武科，用情狼藉，無勢無賂者，雖稱抱才，多不免落榜，事之可駭，莫此爲甚。如有現露者，依前充軍，而舉子則永勿許(付) [赴] 試，差備官則永勿許敍用事，添作事目，定式施行，則或可懲戢也。近日臺諫，每以呈辭爲事，茶時傳啓，視若弁髦，政院逐日請招，違牌又復紛紜，便服出入，無處不往。最是下直守令，屢往不遇，行期屢退，夫馬久滯，其弊大矣。宜加申勅，而初除守令者外，若曾經之人，屢往不遇，則許令留刺赴任，俾無滯行曠官之患也。夜禁，所以調察非常，而近來朝士、儒生，姑舍勿論，至如掖庭及上司所屬、宰相·名官之僮從，尤甚橫行，邏卒一有所問，又輒詬辱毆打。今後雖掖庭上司所屬，勿用進來，【各司將治上司所屬，則必申報其司，謂之進來。】直令該軍門，依法決棍也。頃日金城之賊，以戎服進薄官門，肆然接戰。其徒之招，又有至凶之謀，而前後監司，過加平反，臺臣又從而劾其守令。守令宜有功，而反坐微文，賊徒宜卽誅，而反傅生議。

직무(職務)를 게을리하는 걱정이 없게 하소서. 야금(夜禁)은 비상(非常)을 형찰(巡察)하는 것인데, 근래에 조사(朝士)와 유생(儒生)은 우선 버려두고 논하지 않더라도 액정(掖庭)과 상사(上司)의 소속(所屬) 및 재상(宰相)·명관(名官)의 겸종(僉從)19237) 에 이르러서는 횡행(橫行)함이 더욱 심합니다. 그리고 나졸(邏卒)이 한 번 묻는 일이 있으면 또 문득 꾸짖어 욕하며 구타(毆打)하니, 이후로는 비록 액정이나 상사(上司)의 소속이라 하더라도 진래(進來)를 【각사(各司)에서 상사(上司)의 소속을 다스리려면, 반드시 그 상사에 신보(申報)해야 하는데, 이를 진래라 한다.】 적용하지 말고, 직접 해당 군문(軍門)으로 하여금 법(法)에 의거하여 곤형(棍刑)을 집행하게 하소서. 지난날 금성(金城)의 적(賊)이 용복(戎服)을 입고 관문(官門)에 진격(進擊)하여 방자하게 접전(接戰)하였는데, 그 무리들의 공초(供招)에 또 매우 흉악한 모계(謀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후의 감사(監司)가 지나치게 평변(平反)19238) 을 더하고, 대신(臺臣)은 또 따라서 그 수령(守令)을 탄핵(彈劾)하였으니, 수령은 마땅히 공(功)이 있어야 하는데도 미문(微文)에 반좌(反坐)19239) 되었고, 적도(賊徒)는 마땅히 주살(誅殺)되어야 하는데도 도리어 살리자는 의논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적을 토벌하여 잡은 사람을 【조하기(曹夏奇)이다.】 굴복시켜 욕보이고 흉당(凶黨)을 위해 원수를 갚은 것이니, 이후 비록 극적(劇賊)이 있다 하더라도 누가 기꺼이 나아가 죽을 힘을 다해서 나라를 위해 근심을 제거(除去)하겠습니까? 신이 생각하건대 감사는 경책(警責)이 없을 수 없고 적당(賊黨)은 포도청(捕盜廳)에 나치(拿致)하지 않을 수 없으니, 특별히 좌우 포도 대장(左右捕盜大將)으로 하여금 일제히 모여서 엄중하게 신문(訊問)하여 그 법을 바로잡게 할 것이며, 해당 수령은 논상(論賞)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인하여 가만히 생각하건대, 국가(國家)가 승평(昇平)한 지 80여 년이 되었으므로 태어나는 사람은 날로 늘어나나, 토지(土地)는 한정이 있어서 생계(生計)의 간고(艱苦)함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는데, 더욱이 위에 있는 자들은

是乃(掘)〔屈〕辱勦捕之人, 【曹夏奇。】爲凶黨報仇, 此後雖有劇賊, 誰肯出死力爲國除患乎? 臣謂監司, 不可無警責, 而賊黨不可不拿致捕廳, 特令左右大將, 齊會嚴訊, 以正其法, 當該守令, 不可不論賞也。 仍竊惟念, 國家昇平八十餘年, 生齒日繁, 而土地有限, 生計之艱, 愈往愈甚, 況在上者, 又復侵削, 彼無恒心, 何所賴而不爲盜乎? 近來增設軍門, 比祖宗時凡幾所矣。 以此收布、斂米之路日廣, 椎剝之慘、愁恨之聲, 足以感傷和氣。 及其收斂之後, 又不量入爲出, 浚民膏血, 滲洩無用之地, 使國家日趨於危亡之域, 而上下恬然, 莫之覺悟, 臣竊痛之。 伏乞邸下, 稟于聖上, 痛省浮費, 務爲簡略, 若在圍城之中, 亟降哀痛之教, 特罷軍門, 以其軍丁, 移補他軍門闕額, 以爲固結人心, 祈天永命之本也。 又言私屠犯禁之濫雜, 閭家奪入之紛紜, 世子優批嘉納, 令廟堂商議覆達。 是後右議政李健命, 以昌集筭中, 論及兩南監司推托量事之罪, 而全羅監司洪錫輔, 乃其甥姪, 不得覆奏陳筭, 世子

	<p>또 거듭하여 침삭(侵削)하고 있으니, 저 항심(恒心)이 없는 무리들이 무엇을 의뢰하여 도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래에 군문(軍門)을 증설(增設)한 것이 조종조(祖宗朝)에 비하여 무릇 몇 곳이나 더 되니, 이 때문에 포(布)를 거두고 쌀을 거두는 길이 날로 넓어져서 억지로 빼앗는 참상(慘狀)과 근심하여 한탄하는 원성(怨聲)이 화기(和氣)를 감상(感傷)시키기에 넉넉합니다. 수렴(收斂)한 후에 미처서는 또 수입(收入)을 헤아려 지출(支出)하지 않으므로 백성의 고향(膏血)을 짜내어 쓸데없는 곳에 새어 나가게 하니, 국가(國家)는 날로 위망(危亡)한 지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상하(上下)는 편안하게 여긴 채 각오(覺悟)함이 없으니, 신은 가만히 이를 통한(痛恨)해 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저하(邸下)께서는 성상(聖上)께 계품(啓稟)하시어 쓸데없는 비용을 엄중하게 줄여서 힘써 간략하게 하도록 하시되, 포위된 성 안에 있듯이 빨리 애통(哀痛)해 하는 교지(教旨)를 내리시어, 특별히 군문(軍門)을 혁파(革罷)한 다음 그 군정(軍丁)을 다른 군문의 꺾액(闕額)에 옮겨 보충해서 굳게 인심(人心)을 결집(結集)시키고 하늘에 영명(永命)을 기구(祈求)하는 근본(根本)으로 삼으소서.”</p> <p>하고, 사사롭게 도살(屠殺)의 금제(禁制)를 범하는 것의 남잡(濫雜)함과 여가(閭家)를 빼앗아 들어가는 분운(紛紜)함을 말하니, 세자(世子)가 우악(優渥)한 비답(批答)을 내려 가납(嘉納)하고,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상의(商議)하여 복계(覆啓)하도록 하였다. 이후에 우의정(右議政) 이건명(李健命)이 김창집(金昌集)의 차자(劄子) 가운데 양남(兩南)19240 의 감사(監司)가 양사(量事)를 추탁(推托)한 일을 논급(論及)하였는데, 전라 감사(全羅監司) 홍석보(洪錫輔)가 바로 생질(甥姪)인 까닭에 복주(覆奏)하여 차자를 올릴 수 없다고 하니, 세자가 특별히 양남의 감사를 파직(罷職)하도록 명하였다.</p>	<p>特令罷兩南監司。</p>
<p>숙종 63권, 45년 (1719 기해 / 청 강희</p>	<p>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다. 진후(診候)를 마치자, 도제조(都提調) 이이명(李頤命)이 말하기를,</p>	<p>丙寅/藥房入診。診候畢，都提調李頤命言：“東宮春秋已踰三十，而尙無益</p>

<p>(康熙) 58년) 2월 23 일(병인) 1번째기사</p>	<p>“동궁(東宮)의 춘추(春秋)가 이미 30세를 넘었는데, 아직 종사(螽斯)19276)의 경사(慶事)가 없습니다. 혹 근력(筋力)이 미치지 못하는 바가 있으면, 약물(藥物)로써 자양(滋養)하는 도리가 없지 않으니, 청컨대, 명일(明日)에 여러 의관(醫官)을 거느리고 동궁께 입진(入診)하여 약이(藥餌)를 의논해 정하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이를 옳게 여겼다. 제조(提調) 민진원(閔鎭遠)이 말하기를, “선인(船人)으로서 화수(和水)19277) 한 자는 강가에서 효시(梟示)하는 것이 그 사목(事目)이었는데, 국가(國家)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어렵게 여겨 형조(刑曹)에 이송(移送)하게 하고, 그 시일이 오래 되면 마침내 소석(疏釋)하게 되므로, 선인의 무리는 징계(懲戒)되는 바가 없습니다. 청컨대, 이제부터 이후로 발각되는 자는 형조에 보내지 말고 곧바로 효시하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이를 윤허(允許)하고, 인하여 대동목(大同木)19278)의 품질이 거칠어 나쁜 것도 아울러 신칙(申飭)하게 하였다.</p>	<p>斯之慶。筋力或有不逮，則藥物滋補，不無其道。請於明日，率諸醫入診於東宮，議定藥餌。”上可之。提調閔鎭遠言：“船人和水者，江頭梟示，自是事日，而國家以殺人爲難，移送刑曹，及其日久，終歸疏釋，故船人輩，無所懲畏。請自今後發覺者，勿送刑曹，直爲梟示。”上許之。仍命竝與大同木品麤劣者而申飭。</p>
<p>숙종 63권, 45년 (1719 기해 / 청 강희 (康熙) 58년) 2월 24 일(정묘) 1번째기사</p>	<p>약방(藥房)에서 동궁(東宮)에 입진(入診)하였다. 도제조(都提調) 이이명(李頤命)이 말하기를,</p> <p>“저하(邸下)의 춘추(春秋)가 이미 30세가 넘었는데, 아직 후사(後嗣)를 잇는 경사(慶事)가 없으니, 신민(臣民)의 근심이 어찌 그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근력(筋力)이 미치지 못한다면 약물(藥物)로 자양(滋養)하는 방도가 없지 않으니, 명백(明白)히 하교(下教)하더라도 진실로 불가(不可)함이 없을 것입니다. 혹 노의(老醫)를 머물러 두고 상세하게 병증(病證)을 의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p> <p>하고, 제조(提調) 민진원(閔鎭遠)이 말하기를,</p> <p>“이는 바로 종사(宗社)의 대계(大計)이니, 한때 부끄러워 머뭇거리면서 숨긴 채 묵묵히 계셔서는 안됩니다.”</p> <p>하였다. 이이명이 말하기를,</p>	<p>丁卯/藥房入診于東宮。都提調李頤命曰：“邸下春秋，已踰三十，而尙未有嗣續之慶，臣民之憂，曷有其已？如其筋力不逮，則藥物滋補，不無其道，明白下教，固無不可。或留置老醫，詳論病證好矣。”提調閔鎭遠曰：“此乃宗社大計，不可以一時羞澁，有所隱默也。”頤命曰：“胎產有時，非專由於筋力，而萬一筋力不逮，則當退與諸醫，議進藥物耳。”世子曰：“不足之候，與初無異矣。”頤命曰：“問寢代理，固爲無暇，而進御藥物，亦豈無時</p>

	<p>“태산(胎産)은 때가 있어 오로지 근력(筋力)에 말미암지는 않으나, 만약 근력이 미치지 못한다면 마땅히 물러가서 여러 의관(醫官)들과 의논하여 약물(藥物)을 바쳐야 할 따름입니다”</p> <p>하였는데, 세자가 말하기를, “원기(元氣)가 부족(不足)한 증후(症候)는 처음과 다름이 없다.”</p> <p>하자, 이이명이 말하기를, “성상을 문안(問安)하고 대리(代理)하시느라 진실로 여가가 없겠지만, 약물을 진어(進御)하는 것 역시 어찌 드실 때가 없겠습니까? 약을 복용(服用)하는 도리는 평상시에 항상 정해 놓고 중간에 끊어지지 않아야만 바야흐로 효험을 얻을 수 있을 따름입니다.”</p> <p>하니, 세자가 말하기를, “그렇다.”</p> <p>하였다.</p>	<p>乎? 服藥之道, 鎮日恒定, 不至間斷, 方可責效耳。” 世子曰: “唯。”</p>
<p>숙종 63권, 45년 (1719 기해 / 청 강희 (康熙) 58년) 2월 28 일(신미) 3번째기사</p>	<p>임금이 흥정당(興政堂)에 나아가 청사(淸使)를 접견(接見)하였는데, 우의정(右議政) 이건명(李健命)·판중추부사(判中樞府使) 조태채(趙泰采) 및 약방(藥房)의 세 제조(提調)가 입시(入侍)하였다. 청사가 장차 들어오려 하니, 먼저 임금이 병이 들어서 일어나 움직일 수 없다는 뜻을 청사에게 말하자, 청사가 답하기를, “국왕(國王)의 병환(病患)을 우리들이 아는데, 어떻게 일어나 움직일 수 있겠는가?”</p> <p>하였다. 이에 청사가 들어오자, 임금이 곁에서 부축받은 채 나란히 앉아서 청사에게 황제(皇帝)의 기거(起居)를 묻고, 다례(茶禮)를 거행한 후 파(罷)하였다.</p>	<p>上御興政堂, 接見淸使。 右議政李健命、判中樞府事趙泰采, 與藥房三提調入侍。 淸使將入, 先以上有疾, 不能起動之意, 言於淸使, 淸使答曰: “國王病患, 俺等知之, 何可起動乎?” 於是, 淸使入, 上扶掖離坐, 問皇帝起居, 行茶而罷。</p>
<p>숙종 63권, 45년 (1719 기해 / 청 강희 (康熙) 58년) 3월 2일</p>	<p>청사(淸使)가 별지(別紙)를 내보이면서 황제(皇帝)의 뜻임을 일컫고, 본국(本國)에서 오래 증유(贈遺)하는 물건 가운데 그 물종(物種)을 줄여서 본국의 기민(飢民)을 진휼(賑恤)하게 하니, 임금이 대신(大臣)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p>	<p>淸使出示別紙, 稱皇帝旨意, 就本國例贈中, 減其物種, 使賑本國飢民, 上命議于大臣。 領議政金昌集以爲: “所謂</p>

<p>(을해) 2번째기사</p>	<p>다. 영의정(領議政) 김창집(金昌集)이 말하기를, “이른바 정액(定額) 이외의 예물(禮物)에 있어서 이는 이전부터 응당 주던 물건인데, 비록 이번에는 잠시 면제(免除)한다는 말이 있으나 우리의 도리에 있어서 폐지(廢止)하는 것은 마땅하지 못합니다. 마땅히 답하기를, ‘지금 이 별지(別紙)에 써서 보여 준 것은 진실로 황상(皇上)께서 소방(小邦)의 재황(災荒)을 진념(軫念)하시는 지극한 뜻을 우리러 본받은 것이므로 진실로 감격(感激)하였으나, 다만 종전에 퀘신(醜驢)19288) 하던 예물도 본래 박략(薄略)하였는데, 이제 또 따라서 폐지(廢止)한다면 황제의 사신(使臣)을 접대(接待)하는 도리에 있어서 더욱 매몰(埋沒)하는 데 관계됩니다. 유시(諭示)하는 바가 비록 이와 같으나, 결단코 봉행(奉行)하기 어렵습니다. 재해(災害)를 입는 지방의 기민(飢民)은 마땅히 미곡(米穀)을 가지고 따로 진휼(賑恤)할 것입니다.’라고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를 옳게 여기고, 마침내 도감(都監)으로 하여금 이런 뜻으로 써 청사(淸使)에게 거듭 말하도록 하였다.</p>	<p>額外禮物，自是從前應給之物，雖有這次暫免之語，在我之道，不當廢閣。宜答以今此別紙書示，固出於仰體皇上軫念小邦災荒之至意，實爲感激，而第從前餽驢禮物，本來薄略，到今又從而廢閣，則其在接待使華之道，尤涉埋沒。所諭雖如此，決難奉行。被災地方飢民，則當以米穀，別爲賑賑云。”上可之。遂令都監，以此意復淸使。</p>
<p>숙종 63권, 45년 (1719 기해 / 청 강희 (康熙) 58년) 3월 27 일(경자) 2번째기사</p>	<p>임금이 하교(下敎)하기를, “여러 기로신(耆老臣)들에게 잔치를 내려 주는 것은 노인(老人)을 공경하는 뜻에서 나온 것인데, 앞으로 증후(症候)에 조금 차도가 있을 때가 또한 없지 않을 것이므로, 천기(天氣)가 매우 더워지기 전에 이를 좇아 해야 마땅할 듯 하니, 다음달로 좋은 날을 가려서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는데, 예조(禮曹)에서 4월 13일을 길일(吉日)로 가려서 아뢰었다.</p>	<p>上下敎曰：“耆老諸臣錫宴出於敬老之意。前頭證候，亦不無少間之時，似當趁此天氣未甚熱而爲之。以開月擇日舉行。”禮曹以四月十三日，擇吉以奏。</p>
<p>숙종 63권, 45년 (1719 기해 / 청 강희 (康熙) 58년) 3월 28 일(신축) 1번째기사</p>	<p>예조 관서(禮曹判書) 민진후(閔鎭厚)가 청대(淸對)하니, 임금이 불러 보았다. 민진후가 잔치를 내릴 곳을 품의(稟議)하니, 임금이 경현당(景賢堂)에서 베풀도록 명하였다. 민진후가 말하기를, “왕세자(王世子)께서 마땅히 잔치에 배석(陪席)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p>	<p>辛丑/禮曹判書閔鎭厚淸對，上召見。鎭厚稟錫宴處所，上命設於景賢堂。鎭厚曰：“王世子當陪宴乎？”上曰：“然矣。”鎭厚曰：“此舉專爲耆老諸臣而設，雖大臣及藥房諸臣，亦不當入參，而如承旨侍衛諸臣，亦無排床之事</p>

	<p>하였다. 민진후가 말하기를, “이 일은 오로지 여러 기로신(耆老臣)들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니, 비록 대신(大臣)과 약방(藥房)의 여러 신하들일지라도 입참(入參)함은 마땅하지 못한데, 승지(承旨)와 같이 시위(侍衛)하는 여러 신하들도 상전(床前)에 늘어서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민진후가 말하기를, “잔치에 참여하는 여러 신하들은 나이에 차이가 있고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간 것도 선후(先後)가 있는데, 지금 이 잔치에서의 좌석의 차례는 마땅히 작질(爵秩)에 중점(重點)을 두어야 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작질로 차례를 매기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p>	<p>乎?” 上曰：“唯。” 鎮厚曰：“與宴諸臣，年齒有差，入於耆所，亦有先後，而今此坐次，則似當歸重於爵秩矣。” 上曰：“以爵秩序次宜矣。”</p>
<p>숙종 63권, 45년 (1719 기해 / 청 강희 (康熙) 58년) 4월 9일 (신해) 2번째기사</p>	<p>여러 기로신(耆老臣)들에게 잔치를 내려 줄 날이 며칠밖에 남지 않았는데, 갓 졸(卒)한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서종태(徐宗泰)의 관(棺)이 아직 빈소(殯所)에 있으므로, 부응교(副應教) 황귀하(黃龜河)와 부교리(副校理) 김운택(金雲澤)이 차자(筭子)를 올려 두궤(杜龔)19325의 말을 인용하면서 대조(大朝)에게 계품(啓稟)하여 대신(大臣)의 상(喪)이 발인(發靱)한 후에 물려서 길일(吉日)을 가릴 것을 청하였다. 그리고 예조(禮曹)에서도 이를 말하자 임금이 물려서 거행하도록 명하였는데, 이에 18일로 고쳐서 좋은 날을 가렸다.</p>	<p>耆老諸臣錫宴之期，只隔數日，而新卒判中樞府事徐宗泰之喪，尚在殯，副應教黃龜河、副校理金雲澤上筭引杜龔說，乞稟于大朝，退涓吉日於大臣喪發靱之後。禮曹亦以爲言，上命退行，於是，以十八日改卜。</p>
<p>숙종 63권, 45년 (1719 기해 / 청 강희 (康熙) 58년) 4월 10일(임자) 3번째기사</p>	<p>세자(世子)가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재신(宰臣)들을 인접(引接)하였다. 우의정(右議政) 이건명(李健命)이 말하기를, “지난날 영상(領相)이 올린 차자(筭子) 가운데에서 군문(軍門)을 변통(變通)할 일을 논하였는데, 근래에 양역(良役)의 폐해는 이미 갑자기 변통할 수가 없으</p>	<p>世子引接大臣、備局諸宰。右議政李健命曰：“頃日領相筭中，論軍門變通事矣。近來良役之弊，既不能猝變，則救急之道，惟有革罷一軍門，以充逃故。曾前欲罷禁衛營，議論不一，纔</p>

니, 구급(救急)하는 방도는 다만 한 군문을 혁파(革罷)하여 도고(逃故)19326)를 채우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일찍이 전에 금위영(禁衛營)을 혁파하고자 하였으나, 의논이 일치(一致)하지 않아서 겨우 혁파하자마자 곧 복구(復舊)하였으니, 이는 갑자기 결정(決定)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하(邸下)께서 시탕(侍湯)하시는 여가에 대조(大朝)께 우러러 계품(啓稟)하시고 여러 신하들에게 물으신 다음 조용히 강구하셔서 변통하는 바탕을 삼으심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세자가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이조 판서(吏曹判書) 권상유(權尙游)가 말하기를, “근래에 수령(守令)들이 명예를 구하는 폐단(弊端)은 진실로 지난날 수상(首相)의 차자(笥子)와 같습니다. 서울의 각사(各司)에서 응당 상납(上納)해야 하는 여러 가지의 미포(米布)를 혹은 견감(蠲減)해 주기도 하고 혹은 기한을 늦추어 주기도 하면서 백성의 칭찬을 요구하고는 미처 수습(收拾)하지 못한 채 빨리 체차(遞差)되어 돌아가기만 피하므로, 월등(越等)19327) 으로 법식(法式)을 정하여 이 폐단을 막고자 하였는데, 일찍이 전에 사맹삭(四孟朔)19328)으로 1등을 삼았을 때에는 수령(守令)들이 착념(惕念)하여 거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번 근년에 봉료(俸料)를 발급(頒給)한 후부터 월등(越等)하는 것을 매달 등급에 준거(準據)하므로 사람들이 모두 가볍게 범하고 있으니, 이제부터 이후로 전의 사맹삭에 등급을 계산하던 것에 의거하면 반드시 징외(懲畏)하는 방도가 있을 것입니다.”

하였는데, 김창집·이건명이 모두 권상유(權尙游)의 말이 옳다고 칭찬했으나, 세자가 따르지 않고, 그대로 전에 매달 등급을 계산하던 것에 의거하도록 하였다. 이건명이 또 말하기를, “헌납(獻納) 이봉익(李鳳翼)이 상서(上書)하여, 경리청(經理廳)을 혁파하고 일을 맡았던 사람을 논죄(論罪)하도록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산성(北漢山城)

罷旋復，此非造次可決之事。邸下於侍湯之暇，仰稟大朝，俯詢諸臣，從容講究，以爲變通之地，恐爲得宜。”世子曰：“唯。”吏曹判書權尙游曰：“近來守令要譽之弊，誠如首相頃日之筭。京各司應上納各樣米布，或蠲或退，以沽民譽，未及收拾，徑圖遞歸，越等定式，欲防此弊，而曾前以四孟朔爲一等時，則守令惕念舉行矣。一自近年頒料之後，越等者逐朔準等，故人皆輕犯。自今以後，依前四孟朔計等，則必有懲畏之道矣。”昌集、健命皆稱尙游言是，世子不從，仍令依前以月計等。健命又言：“獻納李鳳翼上書，以經理廳革罷，任事人論罪爲請矣。北漢設築時，三軍門分授，不相統攝，故置經理廳，以大臣兼帶矣。衙門不尊，則不可號令三軍門。經理廳名號，似難革罷，而至於料辦一節，任事之人不善奉行，斂怨耗財，人言喧藉。固當一切停罷，而任事人，若遽囚治，則已散之財，無以收拾。自本廳，定限督捧，恐或無妨。”世子曰：“經理廳勿罷，而差人料辦等事，一併停罷。”健命又言領相筭中，以臺諫出入無常，下

을 설축(設築)하려 하였을 때 세 군문(軍門)에 나누어 맡겨 서로 통섭(統攝)이 되지 않았으므로 경리청을 설치하여 대신(大臣)으로 겸대(兼帶)하게 하였습니다. 아문(衙門)이 존엄(尊嚴)하지 못하면 세 군문을 호령(號令)할 수 없으니, 경리청의 명호(名號)는 혁파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그리고 봉료(俸料)를 관비(辦備)한다는 한 절목(節目)에 이르러서는 일을 맡은 사람이 잘 봉행(奉行)하지 못하여 원망을 불러들이고 재물을 소모시켰다고 사람들의 말이 퍼져 소란하므로 진실로 일체 정파(停罷)함이 마땅하나, 일을 맡았던 사람을 만약 갑자기 가두어 죄를 다스린다면 이미 흠어진 재물을 수습(收拾)할 수 없을 것이니, 본청(本廳)에서 기한을 정하여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아마도 무방(無妨)할 듯합니다.”

하니, 세자가 말하기를,
“경리청은 혁파하지 말고, 차인(差人)의 봉료(俸料)를 관비하는 일은 일체 정파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견명이 또 말하기를,
“영상(領相)의 차자(筭子) 가운데 이르기를, ‘대간(臺諫)의 출입(出入)이 일정하지 아니하여 하직(下直)하는 수령(守令)이 여러 번 찾아가도 만나지 못해서 길 떠나는 기한을 여러 차례 늦추니, 청컨대, 신칙(申飭)을 더하도록 하고, 명함을 두고 부임(赴任)하도록 윤허하소서.’ 하였는데 대간(臺諫)이 만일 이 차자를 보면 반드시 경칙(警飭)하는 도리가 있을 것이니, 따로 정식(定式)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하였다. 영의정(領議政) 김창집(金昌集)이 말하기를,
“수령의 하직은 뜻한 바가 있으나 여러 번 찾아가도 만나지 못하여 그 폐단이 매우 많으니, 삼사(三司)에서 만약 이 폐단을 알고서 다시 과실을 책망하지 않는다면 좋겠습니다.”

하니, 세자가 말하기를,

直守令，屢往不遇，行期屢退，請加申飭，許令留刺赴任，而臺諫若見此劄，必有警飭之道，不必別爲定式矣。” 領議政金昌集曰：“守令下直，意有所在，而屢往不遇，其弊不費。 三司若知此弊，勿復督過，則好矣。” 世子曰：“唯。” 昌集曰：“近來守令，要譽成習，應捧之物，一切不捧，甚至大同田稅，亦不以時捧納，或自官防納，以此沽名，而民俗日渝，御史廉問書啓褒獎之語，反以此爲先，其流之弊不少。 今後守令治績，只論七事，其他干譽之政，俾勿舉論於書啓，實爲合宜。” 世子可之。 健命言：“量田都監堂上，始以閱鎮遠、權尙游差下，而二人分管三道，未免苟簡。 請戶曹判書宋相琦，亦差量田堂上。” 世子許之。 健命曰：“領相筭中，以武科用情差備官、舉子事，有所論列矣。 近來降定水軍之類，許令赴試，得參則頃下，故奸弊難防。 依領相言，舉子本罪外，永爲停舉，差備官，本罪外，永勿付職，誠爲合當矣。” 入侍諸臣，皆以爲是，世子可之。 健命又言：“領相筭中，又論：‘京各司褒貶，只歸文具，殊無嚴明之意’

	<p>“옳다.” 하였다. 김창집이 말하기를, “근래에 수령이 명예를 구하는 것이 풍습(風習)을 이루어 응당 받아들여야 할 물건을 일체 받아들이지 않으며, 심한 경우는 대동 전세(大同田稅)까지도 또한 제때에 봉납(奉納)하지 않고서 혹 관청(官廳)에서 방납(防納)하여 이로써 명예를 구하고 있어 민속(民俗)이 날로 변하고 있으나, 어사(御史)의 엄문(廉問)하는 서계(書啓)에 포장(褒獎)하는 말은 도리어 이것을 앞세우니, 그 전해 내려온 폐단(弊端)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수령의 치적(治績)은 다만 칠사(七事)만 논하고, 그밖의 명예를 구하는 정사(政事)는 서계(書啓)에 거론(舉論)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진실로 합당합니다.” 하니, 세자가 이를 옳게 여겼다. 이진명이 말하기를, “양전 도감 당상(量田都監堂上)을 처음에 민진원(閔鎭遠)과 권상유(權尙游)로 차하(差下)하고, 두 사람으로 하여금 세 도(道)를 나누어 관장(管掌)하게 하였는데, 구간(苟簡)함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청컨대, 호조 판서(戶曹判書) 송상기(宋相琦)를 또한 양전 당상(量田堂上)으로 차임(差任)하소서.” 하니, 세자가 이를 옳게 여겼다. 이진명이 말하기를, “영상(領相)이 올린 차자(筭子) 가운데에 무과(武科)에서 간계(奸計)를 쓰는 차비관(差備官)과 거자(擧子)의 일을 논열(論列)한 바가 있습니다. 근래에 강정(降定)19329 한 수군(水軍)의 무리를 시험에 나아가 참여할 수 있게 되면 탈하(傾下)19330 하도록 허락하셨으므로, 간사한 폐단을 막기가 어렵게 되었으니, 영상의 말에 의거하여 거자는 본죄(本罪) 외에 영구히 정거(停擧)시키고 차비관은 본죄 외에 영구히 벼슬을 임용하지 않게 하는 것이 진실로 합당합니다.” 하였는데, 입시(入侍)한 여러 신하들이 모두 옳다고 하니, 세자가 이를 옳게 여겼다.</p>	<p>云。 自今以後，京中錢穀、詞訟衙門褒貶等第，一依外方例，以爲黜陟之地宜矣。” 工曹判書俞集一曰：“依外方例，竝爲題目似好矣。” 世子可之。 持平金鎭商申前達，世子不從。 正言魚有龍申前達，又言：“軍威縣監朴泰鎮，終日酩酊，處事顛妄，至與嬖妓對舞，遂爲隣邑笑罔，請罷職。” 世子不從。</p>
--	---	--

	<p>이건명이 또 말하기를, “영상의 차자 가운데 또 논하기를, ‘경중(京中) 각사(各司)의 포핍(褒貶)이 다만 문구(文具)로 돌아가고, 엄중하게 밝히는 뜻이 전혀 없다.’고 하였으니, 이제부터 이후로 경중의 전곡 아문(錢穀衙門)이나 사송 아문(詞訟衙門)의 포핍(褒貶)의 등제(等第)는 한결같이 외방(外方)의 전례에 의거하여 출척(黜陟)하는 바탕을 삼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p> <p>하였는데, 공조 판서(工曹判書) 유집일(兪集一)이 말하기를, “외방(外方)의 전례에 의거하여 모두 제목(題目)으로 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p> <p>하니, 세자가 이를 옳게 여겼다. 지평(持平) 김진상(金鎭商)이 전일에 계달(啓達)했던 것을 거듭 아뢰었으나, 세자가 따르지 않았다. 정언(正言) 어유룡(魚有龍)이 전일에 계달했던 것을 거듭 아뢰고, 또 말하기를, “군위 현감(軍威縣監) 박태진(朴泰鎭)은 종일 술에 몹시 취하여 일을 처리하는 것이 전도(顛倒)되고 망령되었으며, 총애하는 기생(妓生)과 마주 춤추기까지 하여 마침내 인근 고을에서 비웃음을 샀으니, 청컨대, 파직(罷職)하소서.”</p> <p>하였으나, 세자가 따르지 않았다.</p>	
<p>숙종 63권, 45년 (1719 기해 / 청 강희(康熙) 58년) 4월 10일(임자) 4번째기사</p>	<p>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다. 진후(診候)를 마치자, 제조(提調) 민진원(閔鎭遠)이 말하기를, “검무하고 있는 진휼청(賑恤廳)에서 오래 된 저축을 탕진[蕩竭]하였으므로 올해 정월(正月) 이후로 응당 치러야 할 공물(貢物)을 헤아려 주지 못하고 있으니, 일이 지극히 민망스럽습니다. 일찍이 계해년(19331)에 선신(先臣) 19332)과 고(故) 상신(相臣) 이단하(李端夏)가 명(命)을 받들어 공물을 헤아려 줄이면서 너무 지나친 것은 약간 줄이고 부족(不足)한 것은 헤아려 증가시켜 그 수량(數量)을 통계(通計)해 보니, 전에 건주어 줄인 것이 1만여 석(石)이나 되었는데, 별단(別單)을 계하(啓下)하여 준행(遵行)하였으므로 본청(本廳)에서 잇</p>	<p>藥房入診。 診候畢， 提調閔鎭遠言：“所帶賑恤廳， 宿儲蕩竭， 今年正月以後， 應下貢物， 不得計給， 事極悶切。 曾在癸亥年， 先臣與故相臣李端夏承命裁省， 貢物過濫者略減， 不足者量加， 通計其數， 比前所減萬餘石， 別單啓下遵行， 故本廳得以繼用矣。 己巳年相臣及主管之人， 稱以慰悅都民， 盡爲復舊， 且近來連值凶荒， 歲入大縮， 而新</p>

	<p>대어 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기사년(1933)에는 상신(相臣)과 주관(主管)했던 사람이 도민(都民)을 위로하여 기쁘게 한다고 핑계하고서 죄다 복구(復舊)시켰는데, 또 근래에 잇따라 흉년(凶年)을 만나 세입(歲入)이 크게 줄었고, 새로 창출(創出)해 낸 공물마저 각처의 제향(祭享)과 응사(鷹師) 등의 명목(名目)이 또 매우 많았으니, 어찌 궁색(窘塞)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만약 묘당(廟堂)에서 계해년의 별단(別單)을 가져다가 참작하여 재생(裁省)해서 시행한다면 거의 수용(需用)에 보탬이 있을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묘당(廟堂)에 명하여 품처(稟處)하게 하였다.</p>	<p>出貢物，各處祭享及鷹師等名目，又甚夥然，安得不窘乎？今若自廟堂，取考癸亥別單，參酌裁省施行，則庶可有補於需用矣。” 上命廟堂稟處。</p>
<p>숙종 63권, 45년 (1719 기해 / 청 강희 (康熙) 58년) 4월 11 일(계축) 2번째기사</p>	<p>임금이 하교(下教)하기를,</p> <p>“도승지(都承旨) 임방(任墜)은 지금 나이 80세인데, 사람이 중수(中壽)19334) 하는 것은 옛부터 드물게 있는 일이다. 여러 기로신(耆老臣)들에게 친히 나가서 잔치를 내려 줄 기일이 가까와졌는데, 특별히 지중추(知中樞)를 제수(除授)하여 함께 잔치에 참여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일이니, 서전(西銓)19335) 에 말하도록 하라.”</p> <p>하였다.</p>	<p>上下教曰：“都承旨任墜，年今八十。人生中壽，古來稀有。耆老諸臣，親臨錫宴，期日在邇，特授知樞，俾共參宴，亦一好事。言于西銓。”</p>
<p>숙종 63권, 45년 (1719 기해 / 청 강희 (康熙) 58년) 4월 11 일(계축) 6번째기사</p>	<p>통신 정사(通信正使) 홍치중(洪致中)·부사(副使) 황선(黃璿)·종사관(從事官) 이명언(李明彦) 등이 하직하고 일본(日本)으로 떠나는데, 세자가 불러 보았다. 홍치중이 말하기를,</p> <p>“우리 나라 사람이 표류(漂流)하다가 대마도(對馬島)에 이르면 왜인(倭人)들이 내보낼 때 차왜(差倭)를 보내어 폐단이 많이 있었으므로, 예조 관서(禮曹判書) 민진후(閔鎭厚)의 계달(啓達)로 인하여 통신사(通信使)의 행차에 따로 서계(書契)를 만들어 약조(約條)를 개정(改定)하도록 명하셨습니다. 다만 서계란 곧 예조 참의(禮曹參議)의 서계이니, 사신이 가지고 가는 것은 사체(事體)가 미안(未安)하고, 역관(譯官)이 가지고 가는 것은 섬에 도착한 후 왜인들이 다투어 고집한다면 형편이 내버려 두기가 어려울 것이며, 사신의 행차에 앞서 가서 체류(滯留)하게 하는 것은 중난(重難)합니다. 이번에는 서계를 쓰지 말고 사신</p>	<p>通信正使洪致中、副使黃璿、從事官李明彦等，辭赴日本，世子召見。致中曰：“我國人漂至對馬島，則倭人出送時，仍送差倭，多有弊端，故因禮曹判書閔鎭厚所達，命於信使行，別爲書契，改定約條矣。第書契者，卽禮曹參議書契也。使臣齎去，則事體未安，譯官持去，則抵島後，倭人若有爭執，則勢難捨置，隨使行前進，爲此滯留，亦重難。今番則勿用書契，使臣言于島主，而書契則從後成送，恐爲得</p>

	<p>(使臣)이 도주(島主)에게 말하도록 하고, 서계는 훗날 만들어 보내는 것이 아마도 마땅할 듯합니다.”</p> <p>하니, 세자가 이를 옳게 여겼다. 홍치중(洪致中)이 말하기를, “동래(東萊)의 왜인에게 지공(支供)하는 쌀이 매년 화수(和水)19338) 의 폐단이 있음을 왜인들이 여러 번 말하였는데, 신 등의 행차에 저들이 또 반드시 신칙(申飭)하기를 요구할 것이니, 또한 저들의 말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조정(朝廷)에서 거듭 금제(禁制)한다면 저들도 반드시 감동하여 기뻐할 것입니다.”</p> <p>하고, 이명언이 말하기를, “공작미(公作米)19339) 를 거두지 않는 폐단을 저들이 또한 매년 말하는데, 이는 대개 동래부(東萊府)에서 그 수표(手標)를 사서 봉료(俸料)를 판비(辦備)하는 밀천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며, 동래부 뿐만 아니라 경상 감영(慶尙監營)과 경아문(京衙門)에서도 또한 그러하므로, 이로 인하여 폐단이 되었다고 하니, 또한 마땅히 금단(禁斷)을 가해야 할 것입니다.”</p> <p>하니, 세자가 이를 허락하고, 이내 유시(諭示)하기를, “수로(水路)가 험하고 먼데, 무사히 갔다 오도록 하라.”</p> <p>하였다.</p>	<p>宜。”世子可之。致中曰：“東萊倭供米，每有和水之弊，倭人屢以爲言。臣等之行，彼必又要申飭。亦不待彼言，而直自朝廷申禁，則彼必感悅矣。”明彦曰：“公作米未收之弊，彼亦每以爲言。蓋由於萊府買其手標，以爲料辦之資，而不但萊府，慶尙監營及京衙門亦然，仍成弊端云。亦宜另加禁斷矣。”世子許之。仍諭曰：“水路險遠，無事往返。”</p>
<p>숙종 63권, 45년 (1719 기해 / 청 강희 (康熙) 58년) 4월 15 일(정사) 3번째기사</p>	<p>세자(世子)가 승지(承旨)를 보내어 특교(特敎)를 가지고 가서 영부사(領府事) 이유(李濡)에게 유시(諭示)하게 하기를, “경(卿)이 평일(平日)에 나라를 다스린 순수한 정성은 내가 환히 알고 있다. 지금 북한산성(北漢山城)은 이미 대계(大計)를 정하여 경에게 주관(主管)하도록 명하였는데, 경기(經紀)하는 즘음에 비록 논의(論議)는 같지 않은 바가 있었으나 첫째도 국사(國事)이고 둘째도 국사이다. 일을 맡았던 자가 근신하지 않은 경우는 더욱 경(卿)이 알 바가 아니므로 조금도 불안(不安)해 할 단서가 없는데, 도성(都城) 밖으로 물러가서 들어올 기약이 없으니, 성상께서 섭섭하</p>	<p>世子遣承旨，齎特敎諭領府事李濡曰：“卿之平日體國純誠，余所洞知。今茲北漢，已定大計，而命卿主管，經紀之際，雖有論議之不同，一則國事，二則國事。至於任事者之不謹，尤非卿所知，少無不安之端，而进出都門，入城無期，聖上之缺然思想，曷有其極？矧今親臨錫宴，實是稀有之盛舉，則卿以</p>

	<p>게 여기는 사상(思想)이 어찌 한정이 있겠는가? 더욱이 지금 친히 나가서 잔치를 내려주시는 것은 진실로 드물게 있는 성대한 일이니, 경은 기로소(耆老所)의 반수(班首)로서 결단코 물러가 있을 수 없음이 명백하다.”</p> <p>하고, 인하여 함께 오도록 하니, 이유가 마침내 도성으로 들어왔다.</p>	<p>耆所班首，決不可退在也明矣。”仍令偕來，濡遂入城。</p>
<p>숙종 63권, 45년 (1719 기해 / 청 강희 (康熙) 58년) 4월 18 일(경신) 1번째기사</p>	<p>임금이 경현당(景賢堂)에 나아가 여러 기로신(耆老臣)들에게 잔치를 내려 주었다. 왕세자(王世子)의 좌석(座席)을 어좌(御座) 왼쪽에 설치하고, 기로(耆老)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이유(李濡)·영의정(領議政) 김창집(金昌集)·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김우항(金宇杭)·행 지중추부사(行知中樞府事) 황흠(黃欽)·강현(姜覲)·행사직(行司直) 홍만조(洪萬朝)·이선부(李善溥), 한성 판윤(漢城判尹) 정호(鄭濤)·우참찬(右參贊) 신임(申銍)·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임방(任墜)이 잔치에 참여하였다. 이날 사시(巳時)에 임금이 익선관(翼善冠)과 곤룡포(袞龍袍)를 갖추고 소여(小輿)를 타고 승덕문(崇德門)을 거쳐 나가니, 고취(鼓吹)가 시작하여 여민락(與民樂)을 연주하였다. 여(輿)에서 내려 경현당(景賢堂)에 나가니, 내시(內侍)가 췌장(几杖)을 받들어 어좌(御座) 곁에 두고 상서관(尙瑞官)이 어보(御寶)를 받들어 안(案)에 놓았다. 근시(近侍)와 시위(侍衛)하는 장사(將士)들이 각각 자리에 나아가고, 왕세자(王世子)가 여러 기로신들을 거느리고 모두 네 번 절하고 자리에 나아갔다. 예조 판서(禮曹判書) 민진후가 말하기를,</p> <p>“이번에 석연(錫宴)19346)의 음악 절차는 한결같이 진연(進宴) 때의 예에 의거하였는데, 다만 진연 때에는 제1작(第一爵)과 2작(二爵) 때 탕(湯)을 바치는 절차가 없이 단지 만두(饅頭)만 바치고 2작을 마친 후에야 비로소 탕을 바치는 절차가 있었으나, 이번에는 여러 신하들을 위하여 내려주는 잔치이므로 1작(爵)부터 5작(爵)까지 잇따라 탕을 다섯 차례나 바치도록 하였으며, 음악 절차는 당초에 장악원(掌樂院)에서 마련한 것과 조금 다르게 하였습니다.”</p> <p>하니,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옹원 제조(司饗院提調)가 주기(酒器)를 바치</p>	<p>庚申/上出御景賢堂，錫耆老諸臣宴。王世子設座于御座之左，耆老領中樞府事李濡、領議政金昌集、判中樞府事金宇杭、行知中樞府事黃欽·姜覲、行司直洪萬朝·李善溥、漢城判尹鄭濤、右參贊申銍、知中樞府事任墜與宴。是日巳時，上具翼善冠、袞龍袍，乘小輿，由崇德門出，鼓吹作，奏《與民樂》。降輿御景賢堂，內侍奉几杖，置于座側，尙瑞官捧寶，置于案。近侍及侍衛將士，各就位，王世子率耆老諸臣，皆四拜就位。禮曹判書閔鎮厚曰：“今番錫宴樂節，一依進宴時例，而但進宴則第一爵、二爵，無進湯，而只進饅頭，二爵既卒之後，始有進湯之節矣。今番則爲諸臣錫宴，故自一爵至五爵，連進湯五次，而樂節與當初樂院所磨鍊小異矣。”上頷之。司饗院提調進酒器，樂作，王世子以下，離位俯伏。進訖，樂止。提調捧揮巾函，詣座前，樂作，內侍跪進揮巾訖，樂</p>

자 음악이 시작되고, 왕세자 이하의 관원들이 자리를 나란히 하여 부복(俯伏)하였다. 바치기를 마치자 음악이 그쳤다. 제조가 휘건함(揮巾函)을 받들어 어좌(御座) 앞에 나아가자 음악이 시작되고, 내시(內侍)가 꽃어얏아 휘건(揮巾)을 바치기를 마치자 음악이 그쳤다. 제조가 찬안(饌案)을 바치자 음악이 시작되었는데, 또 별행과(別行果)를 바쳤다. 집사자(執事者)가 여러 기로신(耆老臣)들의 찬탁(饌卓)을 배설(排設)하니 음악이 그쳤다. 임금이 시위(侍衛)하는 여러 장수에게 자리를 내려주도록 명하였다. 근시(近侍)가 화반(花盤)을 받들어 어좌(御座) 앞으로 나아가자 음악이 시작되었다. 왕세자 이하의 관원들이 자리를 나란히 하여 부복(俯伏)하고 내시(內侍)가 꽃을 바치기를 마치니 음악이 그쳤다. 제조가 염수(鹽水)를 바치자 음악이 시작되고, 제조가 공안(空案)을 찬안(饌案)의 오른쪽에 놓으니 음악이 그쳤다. 왕세자 이하의 관원들이 도로 자리에 돌아갔다. 제조가 공안을 왕세자의 오른쪽에 놓고, 보덕(輔德)이 왕세자에게 꽃을 올리고, 집사자(執事者)가 여러 기로신(耆老臣)들에게 꽃을 나누어 주었다. 내시가 교지(教旨)를 선포하기를, ‘전내(殿內)의 시위(侍衛)에게 모두 자리를 내려 주도록 하라.’하였다. 제조가 소선(小簋)을 바치자 음악이 시작되고 왕세자 이하의 관원들이 자리를 나란히 하여 부복하였으며, 바치기를 마치니 자리에 돌아갔다. 부제조(副提調)가 왕세자에게 선(簋)을 올리고 집사자(執事者)가 여러 기로신(耆老臣)들에게 선(簋)을 베푸니 음악이 그쳤다. 내시가 교지(教旨)를 선포하기를, ‘별운검(別雲劍) 이하의 관원에게 자리를 내려주어 보검(寶劍)을 체대(遞代)하게 하라.’하였다. 전악(典樂)이 창(唱)하기를, ‘악장(樂章)을 존숭(尊崇)하라.’하여 유천지곡(維天之曲)을 마치자, 제조가 제1작(爵)에 술을 따르고 내시가 전해 받들어 안(案)에 놓으니, 음악을 천년만세(千年萬歲)를 연주하고 무동(舞童)이 들어와서 춤을 추었다. 부제조가 왕세자에게 술을 올리고 집사자가 여러 기로신들에게 술을 돌리자 임금이 술잔을 들어 세 번 마셨다. 제조가 나아가서 작(爵)을 받아 점(坫)에 놓으니 음악이

止。提調進饌案，樂作，又進別行果。執事者設耆老諸臣饌卓，樂止。上命侍衛諸將賜座。近侍捧花盤，詣座前，樂作。王世子以下，離位俯伏。內侍進花訖，樂止。提調進鹽水，樂作，提調以空案，置於饌案之右，樂止。王世子以下，還就位。提調以空案，置王世子之右，輔德供王世子花，執事者散耆老諸臣花。內侍宣教：“殿內侍衛，皆賜席。”提調進小簋，樂作，王世子以下，離位俯伏。進訖，還位。副提調供王世子簋，執事者設耆老諸臣簋，樂止。內侍宣教：“別雲劍以下賜席，寶劍遞代。”典樂唱尊崇樂章《維天之曲》訖，提調酌酒第一爵，內侍傳捧置于案，樂奏《千年萬歲》，舞童入作。副提調供王世子酒，執事者行耆老諸臣酒，上學爵，三吸。提調進受爵，復於坫，樂止。提調割肉跪進于饌案之右，樂奏《五雲開瑞朝》，王世子以下，離位俯伏。提調進饅頭，進訖，樂止。王世子以下，還就位。提調進湯，樂作，王世子以下，離位俯伏。進訖，樂止，王世子以下還就位。第二、第三、第四進爵，

그쳤다. 제조가 고기를 베어 꿰어앉아 찬안(饌案)의 오른쪽에 바치자 음악은 오운개서조(五雲開瑞朝)를 연주하고, 왕세자 이하의 관원이 자리를 나란히 하여 부복하였다. 제조가 만두(饅頭)를 바치기를 마치자 음악이 그치고, 왕세자 이하의 관원이 자리에 돌아갔다. 제조가 탕(湯)을 바치자 음악이 시작되고 왕세자 이하의 관원이 자리를 나란히 하여 부복하였다. 바치기를 마치자, 음악이 그치고 왕세자 이하의 관원이 자리에 돌아갔다. 제2작·제3작·제4작을 바칠 때 탕을 바치는 의식(儀式)은 모두 전과 같게 하였는데, 제2작 때에는 음악을 정읍만기(井邑慢機)를 연주하고 아박무(牙拍舞)를 무동(舞童)이 들어와서 추었으며, 탕(湯)을 바치자 음악은 청평곡(淸平曲)을 연주하였다. 제3작 때에 음악은 보허자령(步虛子令)을 연주하고 향발무(響鉢舞)를 무동이 들어와서 춤추게 하였으며, 탕을 바치자 음악은 하운봉(夏雲峰)을 연주하였다. 제4작 때 음악은 천년만세(千年萬歲)를 연주하고 무고(舞鼓)를 무동이 들어와서 추었으며, 탕을 바치자 음악은 낙양춘(洛陽春)을 연주하였다. 마침내 어좌(御座) 앞에 푸른 휘장을 내리고 임금의 조금 쉬었다가, 잠시 후에 휘장을 걷어치웠다. 내시가 한 은배(銀杯)를 받들어 내놓고 임금의 교지(教旨)를 선포하기를, “제5작은 이것으로 술을 돌리고, 인하여 술잔을 기로소(耆老臣)에 내릴 것이니, 술잔 가운데에 ‘사기로소(賜耆老所)’ 네 글자를 새기도록 하라.”

하자, 여러 기로신들이 돌러가며 구경하고 머리를 조아려 사례하였다. 제조가 제5작을 바치자, 음악은 여민락(與民樂)을 연주하고 광수무(廣袖舞)를 무동이 들어와서 춤추었다. 바치기를 마치자 제조가 소선(少膳)을 물리고 대선(大膳)을 바치니, 음악은 태평년(太平年)을 연주하고, 인하여 여민락(與民樂)을 연주하였는데, 처용(處容)이 들어와서 춤을 추었다. 무릇 술잔을 바치고 탕을 바치면 왕세자 이하의 관원이 자리를 나란히 하여 부복하고, 바치기를 마치면 자리에 돌아갔다. 제조가 임금 앞에 탕(湯)과 선(膳)을 바치고, 부제조가 왕세자에게 탕과 선을 올렸다. 집사자가 여러 기로신들의 찬탁(饌卓)을 거두어 치

進湯，竝如前儀，而第二爵，樂奏《井邑慢機》，牙拍，舞童入作。進湯，樂奏《淸平曲》。第三爵，樂奏《少虛子令〔步虛子令〕》，響鉢，舞童入作，進湯，樂奏《夏雲峰》。第四爵，樂奏《千年萬歲》，舞鼓，舞童入作。進湯，奏《洛陽春》。遂垂青帳於御前，上少休，頃之撤帳。內侍捧出一銀杯，宣上教曰：“第五爵，以此行酒。”仍以杯，賜耆老所，杯心鐫賜耆老所四字。耆老諸臣，傳玩叩謝。提調進第五爵，樂奏《與民樂》，廣袖，舞童入作。進訖，提調退小膳，進大膳，樂奏《太平年》，仍奏《與民樂》，處容入作。凡進爵進湯，王世子以下，離位俯伏，進訖，還位。提調進上前湯膳，副提調供王世子湯膳。執事者撤耆老諸臣卓訖，禮曹判書閔鎮厚言：“中宮患候，今已快復，宜有稱慶之節。”上曰：“內殿患候，既不設議藥廳，則告廟頒赦之節，不宜舉行矣。”耆老諸臣遂進前，各陳感祝之辭，上亦慰勉甚渥。耆老領議政金昌集奏曰：“今日自上特施異恩，耆老諸臣，欲更以所賜之杯，就耆司小集，以

	<p>우기를 마치자, 예조 판서(禮曹判書) 민진후(閔鎭厚)가 말하기를, “중궁(中宮)의 환후(患候)가 이미 완쾌(完快)되었으니, 마땅히 경사(慶事)를 치르는 절목(節目)이 있어야 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전(內殿)의 환후(患候)는 이미 의약청(議藥廳)을 설치하지 않았으니, 고묘(告廟)하고 반사(頒赦)하는 절차를 거행함은 마땅하지 못하다.”</p> <p>하였다. 여러 기로신들이 마침내 어전(御前)에 나아가 각각 감축(感祝)하는 말을 올리니, 임금 또한 위로하고 면려하기를 매우 우약(優渥)하게 하였다. 기로(耆老) 영의정(領議政) 김창집(金昌集)이 아뢰기를, “오늘은 성상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셨으니, 여러 기로신(耆老臣)들은 다시 내려주신 은배(銀杯)를 가지고 기로소의 작은 모임에 나아가 남은 기쁨을 다하여 성상의 은혜를 자랑하고자 합니다. 이원(梨園)19347)의 법악(法樂)은 감히 청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지만, 다시 한 번의 승사(勝事)를 도모하고자 할 따름입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악부(樂部)를 데려가는 것이 좋겠다.”</p> <p>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물러나 자리에 돌아가자, 왕세자 이하의 관원이 모두 네 번 절하였다. 통례(通禮)가 예(禮)를 마쳤음을 아뢰자, 공인(工人)이 축(祝)을 두드리고 음악이 시작되었다. 통례가 여(輿)에 오르기를 계청(啓請)하고 내시(內侍)가 궤장(几杖)을 받들어 따르자, 공인(工人)이 어(敵)를 두드리고 음악이 그쳤다. 임금이 숭덕문(崇德門)을 지나 궐내(闕內)로 돌아오니, 고취(鼓吹)가 여민락(與民樂)을 연주하였다. 왕세자 이하 여러 신하들이 모두 나가니, 해엄(解嚴)19348) 하고 의장(儀仗)을 해산하였다.</p>	<p>盡餘歡而侈上恩。梨園法樂，非敢請之物，而欲更圖一番勝事耳。”上曰：“樂部帶去好矣。”諸臣退復位，王世子以下，皆四拜。通禮啓禮畢，工鼓祝樂作。通禮啓請乘輿，內侍奉几杖隨之，工戛敵樂止。上由崇德門還內，鼓吹奏《與民樂》。王世子以下諸臣皆出，解嚴放仗。</p>
<p>숙종 63권, 45년 (1719 기해 / 청 강희</p>	<p>정언(正言) 홍현보(洪鉉輔)가 상서(上書)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나라의 대사(大事)는 제사(祭祀)에 달려 있으니, 진실로 한결같이 예제(禮制)</p>	<p>正言洪鉉輔上書。略曰：國之大事在祀，則固當一遵禮制，而忌</p>

(康熙) 58년) 4월 30
일(임신) 3번째기사

를 준수(遵守)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기신제(忌辰祭)와 오명일(五名日) 절사(節祀)의 선품(餼品)을 단지 유과(油果)와 포탕(泡湯)만을 가지고 설행(設行)하니, 매우 미안(未安)합니다. 전해 들건대, 국초(國初)에 예제(禮制)를 정한 대신(大臣)이 훗날의 폐단(弊端)을 염려하여 이로써 정식(定式)을 삼았다고 하는데, 소선(素餼)의 제도를 경전(經傳)에서 상고하고 사전(祀典)에서 질정(質正)해 보았으나 모두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는 우리 나라가 처음 창건(創建)하던 초기에 멸망된 나라[高麗]의 불교(佛敎)를 숭상하던 여습(餘習)19361)을 인습(因襲)한 데 지나지 않는데, 막중(莫重)한 사전(祀典)을 이 제도로 준용(遵用)하고 있으니, 어찌 혈식(血食)19362) 하는 뜻이 있겠습니까? 만약 소선(素餼)이 예의(禮意)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태묘(太廟)의 제사도 마땅히 이 제도를 준용(遵用)해야 할 것인데, 태묘는 삭망제(朔望祭)와 대제(大祭)에 모두 희생(犧牲)을 바치는 제전(祭典)을 쓰고 있으니, 이는 진실로 예제(禮制)에 없는 예(禮)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의논하는 자가 말하기를, ‘소선(素餼)을 고쳐 육선(肉餼)을 쓰면 경비(經費)를 지탱하기 어렵다.’ 하나, 또한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신이 들건대, 봉상시(奉常寺)에서 봉진(封進)하는 소선(素餼)의 공물가(貢物價)는 그 액수가 매우 많지마는, 반수 이상은 유밀과(油密果)에 들어간 유청(油淸)·진말(眞末)19363)의 값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유밀과는 예가(禮家)에서 숭상하는 것이 아니고, 실로 승려(僧侶)와 속인(俗人)이 귀하게 여기는 것인데, 또 태묘(太廟)에 올리고 있으니, 이를 줄이는 것이 옳습니다. 만약 선조(先祖)에서 쓴 것이 유래가 이미 오래 되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완전히 폐지할 수 없다면 그 그릇의 수효를 반감(半減)하고, 그 줄인 값을 계산하더라도 오히려 적지 않으니, 육선(肉餼)의 값을 족히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혹시 대뢰(大牢)에 부족(不足)하더라도 오히려 소뢰(小牢)는 판비(辨備)할 수 있을 것이니, 이와 같이 하고서도 부족(不足)할 경우에는 단지 장포(長脯)만 쓰더라도 소선(素餼)을 베풀어 불교(佛敎)의 습속에 따르는 그릇

辰祭及五名日節祀餼品, 只以油果、泡湯設行, 其爲未安甚矣。 傳聞國初定禮之大臣, 爲慮後弊, 以此定式, 而素餼之制, 考之經傳, 質諸祀典, 皆無所據。 此不過我國新創之初, 因襲勝國崇佛之餘習, 莫重祀典, 遵用此制, 惡在其血食之義哉? 若曰素餼不悖於禮意, 則太廟之祭, 當用此制, 而太廟則朔望暨大祭, 皆用薦牢之典, 此誠無於禮之禮也。 議者以爲: “改素用肉, 經費難支”, 亦有不然者。 臣聞奉常寺封進素餼貢物之價, 其數夥然, 而大半入於蜜果所入油淸、眞末之價云。 蜜果非禮家所尙, 實是僧俗之所貴, 而又薦於太廟, 減之可也。 若以先朝所用, 其來已久, 不可猝然全廢, 則半減其器數。 以其所除之價計之, 猶且不少, 足當肉餼之價。 雖或不足於大牢, 猶可辦小牢, 此而不足, 只用長脯, 其不愈於設素餼從佛習之爲謬乎? 雪冤伸枉, 有國之先務。 皇甫仁、金宗瑞等, 當我世祖大王受禪之際, 自爲其主, 不早攀附, 俱被極禍, 尙在罪籍。 聖祖誅鋤諸人之舉, 蓋出於定危疑行大權之義, 而既於登極之後, 製訓辭以示睿宗

된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벗겨 원한을 풀어주는 것은 나라를 보유(保有)하는 선무(先務)입니다. 황보인(皇甫仁)·김종서(金宗瑞) 등은 우리 세조 대왕(世祖大王)께서 선위(禪位)를 받을 즈음에 스스로 그 군주(君主)를 위해 일찍이 반룡부봉(攀龍附鳳)19364) 하지 않고 모두 극화(極禍)를 입고서 아직도 죄적(罪籍)에 있습니다. 성조(聖祖)19365)께서 여러 사람을 죽인 일은 대개 위의(危疑)를 평정(平定)하고 대권(大權)을 행하려는 뜻에서 나왔는데, 이미 등극(登極)하신 후에 훈사(訓辭)를 지어 예종(睿宗)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험난(險難)함을 당하였으나 너는 태평(泰平)함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일은 세상을 따라 변하는 것인데, 네가 나의 한 일에 구애받아 변통(變通)할 줄을 모른다면, 이른바 둥글게 뚫은 구멍에 모난 장부[柄]를 끼우려 하는 것이다.’ 하셨으니, 성조(聖祖)께서 그 뜻을 칭찬하시고 그 죽음을 불쌍히 여기신 큰 뜻을 이에게 볼 수 있습니다. 성조(聖祖)의 뜻을 오늘날에 비로소 시행하여 그 관직을 회복시킨다면 어찌 계술(繼述)하는 아름다움이 더욱 성조께 빛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글의 말미에 벼슬을 팔아 진휼(賑恤)에 보태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과, 조정(朝廷)의 상전(賞典)을 믿지 않는다는 것, 문관(文官)·음관(蔭官) 출신의 수령(守令)으로서 도둑을 막지 못한 자는 마땅히 논죄(論罪)해야 된다는 것, 윤장(尹樟)·남세진(南世珍)이 춘방관(春坊官)에 의망(擬望)된 것은 외람되다는 것, 유집일(兪集一)이 연경(燕京)에 사신(使臣)으로 갔을 때 까다롭고 잔달았다는 등의 여러 일들을 덧붙여 논핵(論劾)하였는데, 세자(世子)가 그 글을 해조(該曹)에 내렸다. 이후에 향사(享祀) 할 때의 선품(饌品)에 대한 일은 예조(禮曹)에서 갑자년(19366)의 판부(判付)를 【무릇 공사(公事)에서 글을 내려 상교(上教)를 낸 것을 판부라고 일컫는다.】 끌어대고는 복주(覆奏)하여 쓰지 않았다. 김종서(金宗瑞)·황보인(皇甫仁)에 대한 일은 이조(吏曹)에서 대신(大臣)에게 의논하기를 청하였는데, 행 판중추부사(行判中樞府事) 이이명(李頤命)

曰：“予當屯，汝當泰。事隨世變，汝拘於吾跡而不知變，所謂圓鑿而方柄也。” 聖祖之嘉其志、憫其死之大旨，此可見矣。 聖祖之意，始行於今日，使復其官，則豈非繼述之美，而益有光於聖祖耶？

書末附論賣爵補賑之不可，朝家賞典之不信，文、蔭守令之不能止盜者宜論罪，尹樟、南世珍見擬春坊之濫，兪集一燕行時苛瑣諸事，世子下其書于該曹。 是後，享祀饌品事，禮曹援甲子年判付，【凡公事下書，出上教者，稱判付。】覆奏不用。 金宗瑞、皇甫仁事，吏曹請議于大臣，行判中樞府事李頤命以爲：“丙子諸臣，殆甚於永樂之方、鐵，而聖教乃曰：‘三問等，今日之亂臣，後世之忠臣。’此而尙然。況於癸酉諸臣乎？是以，東宮參決庶務，則首釋其緣坐二百餘人，若非聖志所及，何以有此？且臣伏聞公州東鶴寺，光廟所嘗臨幸，而世傳：‘伊時寺僧設齋，以慰其冤死之魂。’所謂招魂記者尙存，而皆錄諸臣之名云。死者如有知也，諸臣已識聖祖惻恒之仁矣。今者諫臣所引光廟所示睿宗之訓辭，有

이 말하기를,
 “병자년(1936)의 여러 신하들은 거의 영락 때 방효유(方孝儒)·철현(鐵鉉)보다 심하나, 1936년 성교(聖敎)에 이르기를, ‘성삼문(成三問) 등은 오늘날의 난신(亂臣)이나, 후세(後世)에는 충신(忠臣)이다.’ 하셨습니다. 이 일도 오히려 그러한데, 더욱이 계유년(1936)의 여러 신하들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동궁(東宮)께서 서무(庶務)를 참결(參決)하시려면 먼저 연좌(緣坐)된 2백여 인을 용서해야 할 것이니, 만약 성지(聖志)의 미치는 바가 아니라면 어찌 이러한 성교(聖敎)가 있었겠습니까? 또 신이 삼가 듣건대, 공주(公州) 동학사(東鶴寺)에 세조 대왕(世祖大王)께서 일찍이 거둥하셨는데, 세상에서 전하기를, ‘그 때 절의 중이 재(齋)를 베풀어 원통하게 죽은 혼령(魂靈)을 위로하고 있었고, 이른바 초혼기(招魂記)라는 것이 아직도 보존되어 있는데, 모두 여러 신하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이다.’라고 하니, 죽은 이가 만약 알고 있다면 여러 신하들도 이미 성조(聖祖)의 불쌍히 여기신 어짐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간신(諫臣)이 인용(引用)한 세조(世祖)께서 예종(睿宗)께 보이신 훈사(訓辭)에 이르기를, ‘나는 험난한 때를 당하였으나 너는 태평한 때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일은 세상을 따라 변하게 되는 것인데, 만약 네가 나의 자취에 구애받아 변통(變通)할 줄 모른다면, 이른바 둥글게 판 구멍에 네모난 장부를 끼우려 하는 것이다. 너는 모름지기 잊지 말도록 하라.’ 하셨는데, 우리 성조(聖祖)의 유교(遺敎)가 명확하여 막힘이 없으니, 지금 어찌 반드시 그 뜻을 이어받지 않고 도리어 그 자취에 구애받겠습니까? 신설(伸雪)하는 것이 계술(繼述)하는 효도(孝道)에 진실로 합당합니다.”

하고, 행 판중추부사(行判中樞府事) 조태채(趙泰采)는 말하기를,
 “장릉(莊陵)을 복위(復位)한 후 의리(義理)를 지킨 여러 신하들은 모두 포장(褒獎)의 은전(恩典)을 받았는데, 유독 두 신하만 지금까지 억울함을 품은 채 누명(陋名)을 벗지 못하고 있으니, 진실로 매우 민망스럽고도 불쌍합니다. 억

曰: ‘予當屯, 而汝當泰。 事隨世變, 若汝拘於吾迹, 而不知變通, 則所謂圓鑿而方柄矣。 汝須毋忘。’ 我聖祖遺敎, 洞然無礙, 則今何必不承其志, 而反拘其迹? 伸而雪之, 允合繼述之孝。” 行判中樞府事趙泰采以爲: “莊陵復位之後, 守義諸臣, 舉蒙褒獎之典, 而獨二臣, 至今抱冤, 未得昭雪, 誠甚憫傷。 伸枉復爵, 實爲成德事。” 領議政金昌集、行判中樞府事金宇杭、右議政李健命, 與頤命議同。 領中樞府事李濡以爲: “莊陵復位, 守義諸臣, 亦加褒獎, 既是千古聖德事, 則獨此兩人, 尙在罪籍, 宜乎輿情之久而愈鬱。 臣於此, 無容別議。” 上又命更問于六卿、三司。 行工曹判書閔鎭厚以爲: “臣於頃年, 敢以此事, 仰達前席, 旋因宰臣, 陳章【鎭厚於年前, 以此事陳請, 金鎭圭上疏, 言其不可, 事遂寢。】駁議, 遂寢不行, 不敢更爲容喙。” 兵曹判書趙道彬以爲: “聖祖當日之訓, 既以當屯當泰爲諭, 則有以見惻怛之仁, 已示毋拘之微意。 今若體聖祖之志, 推聖祖之仁, 特賜愍典, 以雪幽冤, 恐無歉於諱尊之義。” 吏曹

을함을 풀어 주어 관작(官爵)을 회복시키는 것이 진실로 성덕(盛德)의 일이 될 것입니다.”

하였다. 영의정(領議政) 김창집(金昌集)·행 판중추부사(行判中樞府事) 김우항(金宇杭)·우의정(右議政) 이건명(李健命)은 이이명(李頤命)의 의논과 같았다.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이유(李濡)는 말하기를,

“장릉(莊陵)을 복위(復位)하고, 의리(義理)를 지킨 여러 신하들에게도 또한 포장(褒獎)을 가하신 것은 이미 천고(千古)의 성덕(盛德)의 일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두 사람만 아직도 죄적(罪籍)에 있으니, 마땅히 여정(輿情)이 오래 갈수록 더욱 답답해 할 것입니다. 신은 이에 대해서 별다른 의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또 육경(六卿)과 삼사(三司)에 다시 묻도록 명하였다. 행 공조 판서(行工曹判書) 민진후(閔鎭厚)가 말하기를,

“신이 근년에 감히 이 일을 전석(前席)에서 우러러 계달(啓達)하였는데, 곧 재신(宰臣)이 소장(疏章)을 올려 논박(論駁)한 의논으로 인하여 【민진후가 지난해에 이 일을 진청(陳請)하였는데, 김진규(金鎭圭)가 상소(上疏)하여 불가(不可)함을 말하였으므로 일이 마침내 정지되었다.】 마침내 정지되고 시행되지 않았었으니, 감히 다시 참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병조 판서(兵曹判書) 조도빈(趙道彬)은 말하기를,

“성조(聖朝)께서 당일의 훈사(訓辭)에 이미, ‘나는 험난한 때에 당하였으나 너는 태평한 때를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유시(諭示)하셨으니, 불쌍히 여기시는 인덕(仁德)을 보이심으로써 이미 구애받지 말라는 미의(微意)를 보이신 것입니다. 지금 만약 성조의 뜻을 본받고 성조의 인덕(仁德)을 미루어 특별히 불쌍히 여기는 은전(恩典)을 내려서 유원(幽冤)을 풀어주는 것이 존엄(尊嚴)한분의 일을 숨기는 뜻에 부족함이 없을 듯합니다.”

하였다. 이조 판서(吏曹判書) 권상유(權尙游)와 예조 판서(禮曹判書) 이관명

判書權尙游、禮曹判書李觀命，無別白語。副校理金雲澤以爲：“此事儘有可以商量者。宗瑞等當初罪案，既坐於推戴瑢、謀不軌，而我世祖實策其勳名。今若以宗瑞等之死，稱其冤枉，至於復官，則其於聖祖之勳名，豈不大有所妨礙耶？雖以莊陵追復後言之，比諸六臣及守義諸臣，其體段，自有不同，故臣仲父故判書鎭圭，嘗於重臣之建白此事也，疏論其不便，仍及官助遺祠，甄拔後孫之請，蓋以爲復官，則有不可輕議，而若其兩臣之樹立功伐，皆不宜泯沒，特施隱恤之典，且錄其遺息，俾得齒於士族，則愍隱寬宥之意，自寓於其間耳。”副修撰趙尙健以爲：“皇甫仁、金宗瑞名留罪籍，冤結泉壤者，殆將二百有餘年，輿情愍鬱，愈久愈甚，則伸枉復鬱，實是不可已之舉。且兩臣之罪，以推戴瑢爲名，今若以兩臣爲冤，則瑢亦不宜異同。”兩司諸臣，皆有故不得獻議。該曹具聞，世子下令曰：“更以此事，仰稟大朝，則兩臣之事，今將數百餘年，而幽冤未雪，嗟傷不已。諫臣論列，可謂切至，而第念靖難之勳，大有所妨礙，復官一

(李觀命)은 특별히 아뢰는 말이 없었다. 부교리(副校理) 김운택(金雲澤)은 말하기를,
 “이 일은 모두 상량(商量)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김종서(金宗瑞) 등은 당초의 죄안(罪案)에 이미 이용(李瑢)19370) 을 추대(推戴)하여 불궤(不軌)19371) 를 모의(謀議)한 것으로 연좌되었고, 우리 세조(世祖)께서는 실제로 그 훈명(勳名)이 책록(策錄)되었는데, 지금 만약 김종서 등의 죽음을 억울하다고 일컬어 복관(復官)하기에 이른다면 그것이 성조의 훈명에 어찌 크게 방해(妨碍)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장릉(莊陵)을 추복(追復)한 후라고 말하더라도 육신(六臣)과 의리(義理)를 지킨 여러 신하들에게 견주어 본다면 그 체단(體段)19372) 이 자연히 같지 않으므로, 신의 중부(仲父)인 고(故) 판서(判書) 김진규(金鎭圭)는 일찍이 중신(重臣)이 이 일을 건백(健白)한 데 대해 그 불편(不便)함을 상소(上疏)하여 논박(論駁)하고, 인하여 관청에서 유사(遺祀)를 짓는 데 도와주고 후손(後孫)을 건발(甄拔)하라는 청에 미치었으니, 대개 복관(復官)은 경솔히 의논할 수 없는 바가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만약 두 신하가 수립(樹立)한 공적(功績)을 모두 마땅히 민물(泯沒)시킬 수는 없으니, 특별히 불쌍히 여기는 은전(恩典)을 베풀어야 하고, 또 남아 있는 자손들을 채용(採用)하여 사족(士族)에 낄 수 있게 한다면 가엾게 여겨 용서하는 뜻이 저절로 그 사이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고, 부수찬(副修撰) 조상건(趙尙健)은 말하기를,
 “황보인·김종서는 이름이 죄적(罪籍)에 남겨져 있어서 억울함이 저승[泉壤]에 맺혀져 있는 지 거의 2백여 년이나 되어 여정(輿情)의 근심하고 답답해 함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으니, 억울함을 풀어주고 관작(官爵)을 추복(追復)시키는 일을 진실로 그만둘 수가 없는 일입니다. 또 두 신하의 죄는 이용(李瑢)을 추대(推戴)하려 했다는 것으로 명분(名分)을 삼았으니, 이제 만약 두 신하의 일을 억울하다고 여긴다면 용(瑢)도 또한 마땅히 두 신하와 다름이 있게

節，終涉重難。着令銓曹，收用兩臣後裔，以示愍冤慰枉之意爲宜，爲教。依此舉行。”

	<p>해서는 안될 것입니다.”</p> <p>하였다. 양사(兩司)의 여러 신하들은 모두 연고가 있어서 헌의(獻議)하지 못하였는데, 해조(該曹)에서 상세히 계문(啓聞)하니, 세자(世子)가 영(令)을 내리기를,</p> <p>“다시 이 일을 가지고 대조(大朝)께 우러러 계품(啓稟)하였더니, ‘두 신하의 일은 이제 장차 수백여 년이 되어 가는데도 유원(幽冤)을 씻지 못하고 있으니, 탄식과 슬픔을 금하지 못하겠다. 간신(諫臣)이 논열(論列)한 바는 지극히 절실(切實)하다고 이를 만하지마는, 다만 정난(靖難)의 훈공(勳功)을 생각하건대, 이에 크게 방해(妨碍)되는 바가 있으니, 복관(復官)하는 한 가지 일은 마침내 중난(重難)한 데에 관계된다. 전조(銓曹)에 명하여 두 신하의 후예(後裔)를 거두어 임용(任用)해서 억울함을 불쌍히 여겨 위로하는 뜻을 보임이 마땅하다.’고 하교(下敎)하셨다. 이에 의거하여 거행하도록 하라.”</p> <p>하였다.</p>	
<p>숙종 63권, 45년 (1719 기해 / 청 강희(康熙) 58년) 5월 15일(정해) 1번째기사</p>	<p>세자(世子)가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재신(宰臣)들을 인접(引接)하였다. 우의정(右議政) 이건명(李健命)이 말하기를,</p> <p>“동래 부사(東萊府使) 서명연(徐命淵)이 장계(狀啓)하기를, ‘이전부터 도주(島主)가 새로 임무를 맡아 강호(江戶)에 가서 조현(朝見)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고환 차왜(告還差倭)를 보내었으며, 이로부터 또한 사람을 보내어 보문(報問)하는 예(禮)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마도(對馬島)에서 폐해(弊害)를 끼친다고 핑계하고서 차왜(差倭)를 보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였습니다. 그 뜻이 폐해를 줄인다는 뜻인 듯하나, 묘당(廟堂)에서는 의논하기를, ‘비록 한때의 폐해를 줄인다 하나, 모든 일은 스스로 규례(規例)가 있는 것인데, 그 말로써 폐지한다면 이후에는 반드시 이것을 가지고 말썽을 부림이 있을 것이니, 경솔히 규례를 고치는 폐단을 곧이들을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고환 차왜(告還差倭)를 정지할 수 없다는 뜻으로 분부(分付)하는 것을 그만둘 수 없을 듯</p>	<p>丁亥/世子引接大臣、備局諸宰。 右議政李健命曰：“東萊府使徐命淵狀言：‘自前島主新立，往朝江戶，歸則必遣告還差倭，而自此亦有遣人報問之禮矣。今番馬島，稱以貽弊，不送差倭’云。其意似是省弊之意，而廟議以爲：‘雖爲一時省弊，凡事自有規例，而以其言罷之，則此後必有執此爲言，輕改規例之弊，不可信聽。宜以告還差倭，不可停止之意分付，恐不可已。’”世子可之。 兵曹判書趙道彬曰：“忠清左道御史趙尙綱書啓以爲：‘明火賊指捕者</p>

합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세자가 이를 옳게 여겼다. 병조 판서(兵曹判書) 조도빈(趙道彬)이 말하기를,

“충청 좌도 어사(忠淸左道御史) 조상경(趙尙綱)의 서계(書啓)에 이르기를, ‘명화적(明火賊)을 지시 체포(逮捕)한 것이 5명 이상이면 바야흐로 가자(加資)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충주(忠州) 사람 심약휘(沈若輝)는 두 번에 나누어 포착(捕捉)하였으나, 또한 가자(加資)받았습니다. 매우 외람되고 지나친 데에 관계되니, 한결같이 환수(還收)함이 마땅합니다.’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종류가 매우 많으니, 지금부터 이후에는 정식(定式)을 삼아 모두 가자(加資)하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일찍이 전에 가자했던 자도 마땅히 환수해야 하겠습니까?”

하였는데, 이견명이 말하기를,

“1년 동안에 두서너 사람을 체포한 것은 이미 기한이 차지 않았어도 미포(米布)를 받았는데, 그후 5, 6년이 지나 또 두서너 사람을 체포하였을 경우 모두 계산하여 가자(加資)한다면, 전에 받았던 미포(米布)의 상(賞)과 겹쳐 받게 되니, 어사(御史)의 말이 옳습니다. 이제 해가 오래 된 후를 당하여 비록 일일이 환수(還收)하기는 어렵지마는, 이후에는 정식[法式]하여 다만 한 번 순행(巡行)해서 5명 이상을 체포한 자에게만 가자(加資)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세자가 이를 옳게 여겼다. 조도빈이 또 말하기를,

“본조(本曹)의 기병(騎兵)·보병(步兵)의 납포(納布)를 외방 고을에서 전혀 척념(惕念)하지 않아서 미처 거두지 못한 것이 매우 많으니, 청컨대 6개월을 한정해서 거두어들여 올려 보내되, 기한에 미치지 못한 자는 모두 영문(營門)에서 장형(杖刑)을 집행하도록 하소서.”

하였는데, 이견명이 말하기를,

五名以上，方許加資，而忠州人沈若輝，分二次捕捉，而亦得加資，極涉猥越。一併收還爲宜’云。如此之類甚多，自今以後定式，竝勿加資耶？曾前加資者，亦當收還耶？”健命曰：“一年捕數人，既以不滿限，受米布，而其後過五六年，又得數人，若竝計加資，則與前米布之賞，爲疊受，御史言是矣。今當年久之後，雖難一一收還，此後定式，只以一巡捕五名以上者加資，似爲得宜。”世子可之。道彬又言：“本曹騎、步兵納布，外邑全不惕念，未收甚多。請限六月，使之收捧上送，而不及期限者，竝自營門決杖。”健命曰：“今年節早，難趁六月之限。宜退以九月，而只杖其居末一邑。”世子從其言。執義尹陽來申前達，世子不從。正言金礪申前達，又言：“軍資監正金萬胄，曾以不合掌試，重被臺劾。在其自處之道，固當斂避是任，而今番文所，晏然冒赴，至與當初劾論之人，抗顏同考，恬不知愧。請罷職。”世子不從。

	<p>“올해는 절기(節氣)가 일러서 6월의 기한에 맞추기가 어려우니, 마땅히 9월로 늦추어야 합니다. 단지 거말(居末)19389) 인 한 고을만 장형(杖刑)을 집행하소서.”</p> <p>하니, 세자가 그 말을 따랐다. 집의(執義) 윤양래(尹陽來)가 전일에 계달(啓達)했던 것을 거듭 아뢰었으나, 세자가 따르지 않았다. 정언(正言) 김여(金礪)가 전일에 계달(啓達)했던 것을 거듭 아뢰고, 또 말하기를,</p> <p>“군자감 정(軍資監正) 김만주(金萬冑)는 일찍이 시험을 관장(管掌)하는 데 적합하지 못하다 하여 거듭 대간(臺諫)의 탄핵(彈劾)을 받았으므로, 그가 자처(自處)하는 도리에 있어서 진실로 이 직임(職任)에 몸을 움추려 피해야 할 것인데, 이번의 문소(文所)에 태연한 태도로 무릅쓰고 나아가 당초에 핵론(劾論)한 사람들과 뻔뻔스러운 얼굴로 함께 고과(考課)하기까지 하면서 조금도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니, 청컨대, 파직(罷職)하소서.”</p> <p>하였으나, 세자가 따르지 않았다.</p>	
<p>숙종 63권, 45년 (1719 기해 / 청 강희(康熙) 58년) 6월 25일(병인) 1번째기사</p>	<p>세자가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채신(宰臣)들을 인접(引接)하였다. 우의정(右議政) 이건명(李健命)이 말하기를,</p> <p>“북병사(北兵使) 백시구(白時耆)가 장계(狀啓)하기를, ‘호조(戶曹)에서 이관(移關)19431) 하여, 내노(內奴) 3분의 1을 한정해서 숙오군(東伍軍)을 정한 외에는 모두 공물(貢物)을 징수(徵收)하여 주창(州倉)에 머물러 두게 하였는데, 북관(北關)은 인물(人物)이 매우 적어서 한정된 정원(定員) 외에 이미 군액(軍額)에 보충한 내노(內奴)를 도로 파(罷)한다면 그 수요가 3천여 명에 이르므로 보충할 수요가 없습니다. 청컨대, 삼수(三水)와 갑산(甲山)의 예에 의거하여 그대로 보존(保存)시키게 하소서.’ 하였는데, 대개 남병사(南兵使)가, ‘삼수·갑산의 내노는 이미 군액(軍額)을 정한 자가 비록 한정된 이외라 하더라도 예전 그대로 두기’를 겨우 청하자마자 받아들였으므로, 북병사 또한 이를 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노 3분의 1을 군액(軍額)에 정한 것은 이것이 사목(事目)</p>	<p>丙寅/世子引接大臣、備局諸宰。 右議政李健命言：“北兵使白時耆狀言：‘戶曹移關內奴，限三分之一，定東伍外，皆令徵貢，留州倉，而北關人物甚稀，若以限外，還罷內奴之已充軍額者，則其數至三千餘名，無以充數，請依三、甲例還存矣。’蓋南兵使，纔請三、甲內奴，已定軍額者，雖限外，仍存而準請，故北兵使，亦爲此請，而內奴三分之一定軍，自是事目，南北道皆如此，則內司收貢，將至大縮，不可許矣。”世子可之。 健命又言：“臣方帶</p>

이고, 남도(南道)와 북도(北道)에서 모두 이와 같이 한다면 내사(內司)에서 거두는 공물(貢物)이 장차 크게 줄어들게 될 것이니,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 세자가 이를 옳게 여겼다. 이견명이 또 말하기를, “신이 바야흐로 장악원 제거(掌樂院提學)를 겸무하고 있으므로, 《악학궤범(樂學軌範)》의 도형(圖形)을 살펴보니 의심스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축(柷)과 어(敔)로 음악(音樂)을 합주(合奏)하게 하고, 그치게 한다.’ 하였는데, 축(柷)이란 시작하는 데 쓰는 것이고 어(敔)란 끝나는 데에 쓰는 것이니, 한 가지를 빠뜨리면 음악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태묘(太廟)에서 쓰는 악공(樂工)은 이미 태반(太半)을 줄였고, 또 축(柷)은 있어도 어(敔)는 없으니, 전란(戰亂)이 끝난 후에 미처 갖추지 못한 것에 말미암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태평(泰平)하던 때의 고제(古制)를 모두 회복하고자 하면, 갑자기 의논하기 어려움이 있겠으나, 축(柷)은 있어도 어(敔)가 없는 경우는 갖추어지지 못한 것이 심합니다. 또 대악(大樂)의 법은 팔음(八音)19432 이 조화(調和)를 이루어야 악장(樂章)을 이룰 수 있는데, 종묘(宗廟)·영녕전(永寧殿)에서 쓰는 것은 훈(熏)과 생(笙)이 없으니, 또한 인원(人員) 수를 줄일 때에 뒤섞어 줄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훈(熏)이란 토음(土音)이고 생(笙)이란 포음(匏音)인데, 사람 수효는 비록 줄일 수 있으나 팔음(八音)은 줄일 수가 없으므로, 전악(典樂)의 무리에게 물어 보았더니, 다만 두 사람만 늘리면 훈(熏)과 생(笙)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등가(登歌)는 축(柷)과 어(敔)는 있어도 훈(熏)과 생(笙)이 없고, 현가(懸架)는 축은 있어도 어는 없는데, 이는 진실로 흠결(欠缺)이 되니 마땅히 변통(變通)하는 도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였는데, 세자가 말하기를, “어(敔) 1부(部)를 더 내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이견명이 말하기를,

樂院提學，而考見《樂學軌範》圖形，有可疑者。《書》曰：‘合止柷敔。’柷者，用之於始，敔者用之於終，闕一則樂不成，而即今太廟所用樂工，既減其太半，又有柷而無敔，想由於亂後未備也。今欲盡復升平古制，則有難遽議，而至於有柷無敔，則不備甚矣。且大樂之法，八音克諧，乃可成章，而宗廟、永寧殿所用，無塤與笙，想亦於減人數時，混減，而塤者，土音也，笙者，匏音也。人數則雖可減，八音則不可減。問於典樂輩，則以爲只加二人，可復塤笙云。登歌則有柷、敔而無塤、笙，懸架則有柷無敔，誠爲欠缺。合有變通之道矣。”世子曰：“敔一部加出宜矣。”健命曰：“塤、笙，亦一體加出乎？”世子曰：“唯。”健命又曰：“永昭、敬寧兩殿大祭時，用宗廟樂矣。蓋宗廟則不用宴禮，永昭殿似異於宗廟之故，饌物皆用常食，禮用宴禮，而樂則混用宗廟所用《基命》、《歸仁》等章，是雜用祭禮、宴禮也。敬寧殿則純用宴禮樂章。兩殿宜一體，而如是各異，事殊不可矣。且既用宴禮，則宜有歌，而有聲無調，議者以爲：

	<p>“훈과 생도 일체로 더 내도록 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세자가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이견명이 또 말하기를, “영소전(永昭殿)·경녕전(敬寧殿)의 두 전(殿)은 대제(大祭) 때 종묘악(宗廟樂)을 씁니다. 대개 종묘에서는 연례(宴禮)를 쓰지 않는데, 영소전은 종묘와 다르기 때문인 듯하며, 찬물(饌物)은 모두 상식(常食)을 쓰고, 예(禮)는 연례(宴禮)를 쓰며, 음악은 종묘에서 쓰는 기명(基命)·귀인(歸仁) 등의 악장(樂章)을 섞어 쓰니, 이는 제례(祭禮)와 연례(宴禮)를 섞어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녕전에서는 순전히 연례의 악장만 씁니다. 양전(兩殿)은 마땅히 똑같이 해야 할 것인데도 이와 같이 각각 다르니, 일이 자못 옳지 못합니다. 또 이미 연례를 썼으면 마땅히 노래가 있어야 할 것인데, 소리만 있고 곡조(曲調)는 없으므로, 의논하는 자가 말하기를, ‘양전(兩殿)에 모두 존호(尊號)를 올렸을 때 새로 지은 악장(樂章)이 있으니, 참신(參神)19433) 하고 사신(辭神)19434) 할 때에 쓴다면 편하고 좋을 듯하다.’ 하였습니다. 또 양전(兩殿)에 노래는 없고 음악만 있으므로, 음악의 일절(一節)이 끝나도 음악이 끝나지 않는 바가 있어서 노자(臚者)19435)가 그치라고 창(唱)할 때에 일이 자못 미안(未安)하니, 예관(禮官)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심이 마땅할 듯 합니다.” 하니, 세자가 예관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였다. 이견명이 또 전일에 승선(承宣)을 책망하여 물리친 일과 문묘(文廟)의 회목(檜木)에 벼락이 떨어진 이변(異變)으로써 되풀이하여 진계(陳戒)하고, 또 말하기를, “가만히 보건대, 저하(邸下)께서는 신료(臣僚)가 진달(陳達)하는 말에 대해 한결같이 연묵(淵默)하시고 응답하실 때가 매우 드뭅니다. 군신(君臣) 사이의 분의(分義)가 본래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외방(外方)에서 열 가지 일을 헤아려 진달(陳達)한 경우에 들어와서 상달(上達)되는 것은 겨우 한두 가지 뿐인데,</p>	<p>‘兩殿皆有尊號時新製樂章，用於參、辭神，則似便好’云矣。且兩殿無歌有樂，故樂止一節，亦有樂未卒而臚者唱止之時，事殊未安。令禮官稟處，恐爲得宜。”世子令禮官稟處。健命又以前日責退承宣事及文廟檜木雷震之異，反覆陳戒，又曰：“竊觀邸下於臣僚所陳之言，一味淵默，酬答甚罕。君臣間分義，本自迥隔，在外擬陳十事者，入來僅達一二，而邸下不賜酬答，誰敢盡其所懷耶？”工曹判書閔鎮厚繼言之，世子曰：“當各別體念矣。”大司諫尹鳳朝申前達，世子不從。鳳朝又以責退承旨，陳所懷，請治心戒怒，世子許以留意。</p>
--	--	---

	<p>저하께서 응답을 내리지 않으시니, 누가 감히 생각한 바를 다 말하겠습니까?” 하였는데, 공조 판서(工曹判書) 민진후(閔鎭厚)가 이를 잇따라 말하니, 세자가 말하기를, “마땅히 각별히 체념(體念)하겠다.” 하였다. 대사간(大司諫) 윤봉조(尹鳳朝)가 전일에 진달(陳達)했던 것을 거듭 아뢰었으나, 세자가 따르지 않았다. 윤봉조가 또 승지를 책망하여 물리친 일로 생각한 바를 진달(陳達)하고, 마음을 다스려 분노(忿怒)를 경계하기를 청하니, 세자가 유의(留意)하겠다고 답하였다.</p>	
<p>숙종 64권, 45년 (1719 기해 / 청 강희 (康熙) 58년) 7월 11일(임오) 2번째기사</p>	<p>경강(京江)의 백성 김세만(金世萬)에게 절충 장군(折衝將軍)의 품계(品階)를 주었다. 김세만은 경도(京都)의 서강(西江)에 사는데, 장사를 위해 쌀 1백여 석(石)을 사서 배에 싣고 황해도(黃海道) 용매진(龍媒鎭)에 이르렀을 때 배가 뒤집혀 거의 물에 빠져 죽을 뻔하였는데, 다른 사람에 의해 구조되었다. 때마침 흉년이 들어 본진(本鎭)에서 바야흐로 진휼(賑恤)하고 있었는데, 곡식을 잇대지 못하여 장차 먼 곳에서 사려고 하던 참이었다. 김세만이 말하기를, “내가 만약 물에 빠져 죽었다면 가지고 온 쌀은 곧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었을 것인데, 지금 다행히 살아났으니, 이 쌀로 진졸(鎭卒)을 구제하여 하늘이 목숨을 소생시켜 주신 호생지덕(好生之德)에 사례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드디어 그 쌀을 모두 희사(喜捨)하였다. 진장(鎭將)이 그 값을 돈으로 계산하여 주었지만 또한 받지 않으니, 진장이 의롭게 여겨 감사(監司)에게 보고하였고, 다시 조정(朝廷)에 진달하자, 이 명(命)이 있었던 것이다.</p>	<p>○授京江民金世萬階折衝。世萬居京都西江，爲興利，質米百餘石，舟至黃海道龍媒鎭，覆溺幾死，賴人拯救。時值年荒，本鎭方設賑，而穀不繼，將質於遠地。世萬以爲：“我若溺死，所齎米，卽他人有也。今幸得生，願以此米救鎭卒，以謝上天活命好生之德。”遂盡捨其米。鎭將計直酬錢，亦不受。鎭將義之，報聞于監司，轉達朝廷，有是命。</p>
<p>숙종 64권, 45년 (1719 기해 / 청 강희 (康熙) 58년) 7월 12일(계미) 3번째기사</p>	<p>예조(禮曹)에서 말하기를, “지난해 흉년으로 인하여 제도(諸道)와 제주(濟州)의 삼명일(三名日)19474)의 방물(方物)을 올가을까지 한정하여 임시로 감해 주었습니다. 이제 가을이</p>	<p>○禮曹言：“上年因年荒，諸道及濟州三名日方物，限今秋權減矣。今則秋節已屆，莫重享上之物，不宜久廢，請自冬至，依舊例封進。”上命限明秋姑</p>

	<p>되었고, 막중한 향사(享祀)의 제물(祭物)을 오랫동안 폐지하는 것도 마땅하지 못하니, 청컨대 동지(冬至)부터 구례(舊例)에 의거하여 봉진(封進)하게 하소서.”</p> <p>하니, 임금(上)이 내년 가을까지 한정하여 감면해 주라고 명하였다.</p>	<p>減。</p>
<p>숙종 64권, 45년 (1719 기해 / 청 강희 (康熙) 58년) 7월 14 일(을유) 2번째기사</p>	<p>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는데, 우의정(右議政) 이건명(李健命)이 함께 입시(入侍)하였다. 진후(診候)를 마치자, 이건명이 말하기를,</p> <p>“근년에 흉년으로 인하여 수군(水軍)과 육군(陸軍)의 조련(操鍊)을 해마다 정지하였으니, 일이 자못 미안합니다. 청컨대 올해는 각도(各道)에 분부(分付)하여 설행(設行)하게 하소서.”</p> <p>하니, 임금(上)이 말하기를,</p> <p>“용사(戎事)를 다스림은 큰 정사(政事)인데, 잇따라 정지함은 자못 미안한 데 관계된다. 설행함이 마땅하다.”</p> <p>하였다. 이건명이 또 말하기를,</p> <p>“봄 사이에 양전(量田)의 역사를 우선 정지하라는 명(命)이 있었는데, 지금 이미 가을이 되었습니다. 만약 양전을 폐해(弊害)가 있다 하여 폐지해 버린다면 오히려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성명(成命)이 있는 지 이제 이미 3년이 되도록 아직 거행하지 않았으니, 국체(國體)가 이로 말미암아 존엄(尊嚴)하지 못하게 되고, 외방(外方)에서는 반드시 더욱 조령(朝令)을 가볍게 여길 것입니다. 10월 이후에 곧 거행하되, 먼저 균전사(均田使)를 차출(差出)해서 양정(量</p>	<p>○藥房入診，右議政李健命同入。診候畢，健命言：“近因凶歉，各處水陸操，連年停止，事殊未安。請今年則分付各道，使之設行。”上曰：“詰戎大政，連爲停止，殊涉未安。設行宜矣。”健命又言：“春間量田之役，有姑停之命，而今者秋事已屆矣。若以量田爲有弊而罷之，則猶可，不然則自有成命，今已三年，尙未舉行，國體由此而不尊，外方必益輕朝令。十月後卽爲舉行，而均田使，先爲差出，使之預講量政，恐爲合宜。”上許之。健命曰：“當初不差均田使，只出均田堂上、郎廳，以爲堂上在京，而下送郎廳之地矣。今將差出均田使，亦當各出郎廳耶？”上曰：“癸未年，有從事官耶？”健命曰：“差出從事官，似有弊。使均田使，另擇軍官，以曾經守令解事者帶去，時急摘奸及看審之事，並令察視則好矣。”上命擇帶軍官以去。健</p>

	<p>政)을 미리 강구(講究)하게 하는 것이 아마도 합당할 듯합니다.”</p> <p>하니, 임금의 허락하였다. 이견명이 말하기를,</p> <p>“당초에는 균전사를 차출하지 않고 단지 균전 당상(均田堂上)과 낭청(郎廳)만 차출하여 당상은 서울에 있고 낭청은 내려 보내게 하였는데, 이제 장차 균전사를 차출할 때 또한 각 낭청을 차출해야 하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계미년(19475)에는 종사관(從事官)이 있었는가?”</p> <p>하였다. 이견명이 말하기를,</p> <p>“종사관을 차출하면 폐단이 있을 듯합니다. 균전사로 하여금 군관(軍官)으로 일찍이 수령(守令)을 거쳐 일에 능숙한 자를 특별히 가려서 데리고 가게 하고, 시급히 적간(摘奸)할 일과 간심(看審)하는 일을 아울러 살펴보게 하면 좋겠습니다.”</p> <p>하니, 임금이 군관을 가려서 데리고 가도록 명하였다. 이견명이 또 말하기를,</p> <p>“금위영(禁衛營)과 어영청(御營廳) 두 군문(軍門)의 군사들이 입번(入番)을 정지한 지 이미 2년이 되어 경사(京師)의 숙위(宿衛)가 단약(單弱)해졌습니다. 또 두 군문의 입번을 도감(都監)에서 대신 담당하므로 도감군(都監軍)은 번차(番次)가 빈번하여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니, 10월부터 상번(上番)하게 해도</p>	<p>命又言：“禁衛、御營兩軍停番，今已二年，京師宿衛單弱。且兩軍門入番之代，都監當之，都監軍番次頻數難堪云。自十月，使之上番，恐無不可。”上許之。提調閔鎮遠言：“所帶賑廳穀物，本十三萬餘石，而已盡於各處移賑，即今只存二萬餘石。以此何所充用乎？散在外方者，欲爲收拾，而外方於賑廳穀物，輒欲不償，雖屢催促，而不爲上送。此後請自本廳，直爲推治各邑監色。”健命曰：“外方監色，捉致京司，大弊也。不但京司，雖捉致巡營，亦甚有弊，故監司之欲治監色，而慮其貽弊者，則付過置之，以待巡歷時到該邑治罪云。尤甚不納者，論責其守令，而監色則令營門推治似好矣。”上曰：“予意亦然矣。監色之捉致京師有弊，令營門治罪，守令尤甚者，論罪可也。”</p>
--	--	--

불가함이 없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제조(提調) 민진원(閔鎭遠)이 말하기를,

“신이 맡고 있는 진청(賑廳)의 곡물(穀物)은 본래 13만여 석이었는데, 이미 죄다 각처(各處)로 옮겨 진휼(賑恤)하고, 지금 단지 2만여 석만 남아 있으니,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충당해 쓸 수 있겠습니까? 외방에 흩어져 있는 것을 수습(收拾)하려고 하였으나, 외방에서는 진청의 곡물에 대해 언제나 갚지 않으려 하여 비록 여러번 재촉하였지만 올려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청컨대 이후로는 본청(本廳)에서 직접 각 고을의 감색(監色)19476) 을 추치(推治)하게 하소서.”

하자, 이견명이 말하기를,

“외방의 감색을 경사(京司)로 잡아오는 것은 큰 폐해가 됩니다. 경사뿐만 아니라 비록 순영(巡營)으로 잡아오는 것도 몹시 폐해가 있으므로, 감사(監司)가 감색을 다스리고자 하나 그 폐해를 끼칠 것이 염려스러운 경우 부과(附過)19477) 해 두었다가 순력(巡歷)할 때 해당 고을에 이르러 죄를 다스린다고 합니다. 바치지 않은 것이 가장 심한 자는 그 수령(守令)을 논책(論責)하고, 감색은 영문(營門)으로 하여금 추치(推治)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뜻도 그렇다. 감색을 경사에 잡아오는 것은 폐해가 있으니, 영문으로 하여금 죄를 다스리게 하고, 수령으로서 더욱 심한 자는 논죄(論罪)함이 옳을

	<p>것이다.”</p> <p>하였다.</p>	
<p>숙종 64권, 45년 (1719 기해 / 청 강희 (康熙) 58년) 7월 20 일(신묘) 1번째기사</p>	<p>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다. 진후(診候)를 마치자, 체조(提調) 민진후(閔鎭厚)가 말하기를,</p> <p>“서원 부부인(西原府夫人)의 병이 오랫동안 낫지 않고 있는데, 약물(藥物)을 잇대기가 어렵다고 합니다.”</p> <p>하니, 임금(上)이 다시 어의(御醫)를 보내어 약(藥)을 가지고 가서 살펴도록 명하였다.</p>	<p>○辛卯/藥房入診。診候畢，提調閔鎭厚言：“西原府夫人病久未愈，藥物難繼。”上命更遣御醫，齎藥看視。</p>
<p>숙종 64권, 45년 (1719 기해 / 청 강희 (康熙) 58년) 7월 28 일(기해) 3번째기사</p>	<p>이날 밤 파루(罷漏) 때 임금의 환후(患候)가 갑자기 도져 호흡이 고르지 못하므로, 약방(藥房)에서 흥정당(興政堂)에 입진(入診)하니, 임금이 종모(鬢帽)를 쓰고, 작은 옷을 입고 이불을 두르고 베개에 기대어 침상(寢床) 위에 앉아 있었다. 도제조(都提調) 이이명(李頤命)이 나아가 엎드려 문후(問候)하자, 임금이 말하기를,</p> <p>“밤중에 잠이 들어 겨우 눈을 붙이자마자 어떤 물건이 꿈에 나타났는데, 보기에 지극히 헤이(駭異)하였다. 그 때문에 깜짝 놀라 깨어났는데, 이처럼 호흡이 고르지 못하여 진정시킬 수가 없다.”</p> <p>하였다. 이이명이 말하기를,</p> <p>“의법(醫法)에 꿈 때문에 병을 얻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본 것이 두려운 일이었습니까? 추악(醜惡)한 일이었습니까?”</p>	<p>○是夜罷漏時，上候猝加，呼吸不平，藥房入診，於興政堂，上御鬢帽，着小衣，擁衾倚枕，坐於床上。都提調李頤命進伏問候，上曰：“夜來乍寢纔交睫，有何物現夢，所見極其駭異。故因以驚覺，呼吸如是不平，不能鎮定矣。”頤命曰：“醫法有以夢寐執病症者。所見是可怕事耶？醜惡事耶？”上曰：“可怕事耳。”諸醫診候畢，調進安神丸，上命諸臣退，翌日始得鎮定。</p>

	<p>하니, 임금의 말하기를,</p> <p>“두려운 일이었다.”</p> <p>하였다. 여러 의관(醫官)들이 진후(診候)를 마치고 안신환(安神丸)을 조제(調劑)하여 바치니, 임금이 여러 신하들에게 물러가도록 명하였는데, 이튿날 비로소 진정되었다.</p>	
<p>숙종 64권, 45년 (1719 기해 / 청 강희 (康熙) 58년) 8월 13 일(계축) 2번째기사</p>	<p>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다. 진후(診候)를 마치자, 도제조(都提調) 이이명(李頤命)이 말하기를,</p> <p>“성상의 환후(患候)가 요사이 점차 전만 못하니, 청컨대 약원(藥院)을 주원(廚院)19497) 으로 이설(移設)하여 가까운 곳에서 승후(承候)하는 바탕으로 삼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하루 이틀쯤 살펴보고 하도록 명하였다. 제조(提調) 민진원(閔鎭遠)이 말하기를,</p> <p>“지난해에는 균전사(均田使)를 보내지 않고 따로 양전청(量田廳)을 설치하였으므로 신이 또한 그 당상(堂上)이 되었는데, 지금은 이미 균전사를 차출(差出)하였습니다. 균전사가 내려갔으니 큰 일은 자연히 묘당(廟堂)에 곧장 보고할 수 있고, 작은 일은 호조(戶曹)와 왕복할 따름입니다. 따로 경청(京廳)을 설치함은 무익(無益)하니 양전청(量田廳)은 혁파(革罷)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p> <p>하고, 민진원이 또 말하기를,</p>	<p>○藥房入診。診候畢，都提調李頤命，以上候近日漸不如前，請移設藥院於廚院，以爲在近承候之地，上命姑觀一兩日爲之。提調閔鎭遠曰：“上年不遣均田使，別設量田廳，故臣亦爲其堂上矣，今則均田使既已差出，均田使下去，則大事自可直報廟堂，小事與戶曹往復而已。別設京廳無益，量田廳似當革罷矣。”鎭遠又言：“臣主管賑廳，已半年矣。國家連值凶荒，用度甚廣，而無一石穀入來之規。月課火藥，專屬本廳，則每年所剩，爲三千餘石，而大臣移送軍門。臣又以乾支山，請屬本廳，而大臣又防塞。臣晝思夜度，他無措手之道。臣見外方多廢堰。此蓋祖宗朝重水利，坊坊谷谷，多築堤堰，以爲農民蒙利之地，而歲久漸至堙塞。爲守令者，不思利民之道，專爲</p>

“신이 진청(賑廳)을 주관한 지 이미 반 년이 되었는데, 국가에서 잇따라 흉년을 만나 용도(用度)는 몹시 넓으나 1석(石)의 곡식도 들어올 규정(規程)이 없습니다. 월과 화약(月課火藥)을 본청(本廳)에 전속(專屬)시키면 매년 남는 것이 3천여 석이 될 것인데, 대신(大臣)이 군문(軍門)에 이송(移送)시켰습니다. 그래서 신이 또 건지산(乾支山)을 본청에 소속시키기를 청하였으나, 또 대신이 막았습니다. 신이 밤낮으로 생각하고 헤아려 보았으나, 달리 손을 쓸 방도가 없었습니다. 신이 보건대, 외방(外方)에 허물어진 제언(堤堰)이 많은데, 이는 대개 조종조(祖宗朝)에서 수리(水利)를 중요하게 여겨 방방 곡곡(坊坊谷谷)에 제언을 많이 쌓아 농민(農民)이 이익을 얻는 바탕으로 삼았던 것이나, 해가 오래되어 막히고 통하지 않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수령(守令)이 된 자가 농민을 이롭게 하는 방도는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한때의 명예만 구하여 전혀 백성을 동원해서 수축(修築)하지 않으니, 이로 인하여 폐기되었습니다. 이번 양전(量田) 때에 각각 허물어진 제언을 일일이 타량(打量)19498) 하여 수축해야 마땅한지의 여부(與否)를 살펴서 성책(成冊)하여 본청에 올려 보내게 하되, 그 가운데에서 수리(水利)를 입을 수 있는 곳은 본청에서 해당(該道)에 분부하여 여러 고을의 백성을 동원해서 수축한 다음 수세(水稅)를 헤아려 받아들일도록 하고, 수리를 입을 수 없는 곳은 백성들이 경간(耕墾)하도록 허락하여 그대로 그 세(稅)를 받는다면, 1년에 수천 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신의 말을 불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묘당(廟堂)에서 해마다 호조와 병조의 전포(錢布)를 획급(劃給)하거나 혹 어떤 모양의 재화(財貨)를 해마다 본청에 들여 주어 그 수량을 정한 후에야 지용(支用)할 수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였다. 이이명이 말하기를,

一時要譽，絕不動民修築，因以廢棄。今番量田時，各其廢堰，一一打量，察其修築當否，成冊上送於本廳，其中蒙利處，自本廳分付該道，諸邑發民修築，量捧水稅，不可蒙利處，許民耕墾，仍受其稅，歲可得數千石矣。如以臣言爲不可，則自廟堂每歲劃給戶、兵曹錢布，或某樣貨財，定爲逐歲應入之數，然後可以支用矣。” 上令廟堂稟處。 頤命曰：“三軍門，自初設時，大將有故，則有中軍代行操鍊之規矣。當宁甲子、乙丑年間，亦有此例，而丙寅年，申汝哲爲大將，以爲：‘軍門重事，以中軍〔替行〕，已涉未安。中軍有故，則至以假中軍替行，事極不當。’大臣亦以爲然，遂有勿以中軍替行之命，而其後又以大將有故，則都提調替操定式，而都提調多是老病人，不能每每行之。都監則乃是京軍，雖或停操，亦得間間行之，而禁、御兩營，皆是鄉軍，上番時大將有故，則或未經一番習陣而去，戎政之疎虞，誠甚可慮。外方兵使習操時，營將必前一日私行操鍊，稱以私操。京軍門，亦有把摠、哨官大私習之例矣。若以中軍

“삼군문(三軍門)은 창설(創設)하였을 때부터 대장(大將)이 유고(有故)하면 중군(中軍)이 조련(操鍊)을 대신 거행한다는 규례(規例)가 있었습니다. 당저(當寧)19499) 갑자년19500) ·을축년19501) 사이에도 이런 전례(前例)가 있었는데, 병인년19502) 에 신여철(申汝哲)이 대장(大將)이 되어 말하기를, ‘군문(軍門)의 중대한 일을 중군(中軍)으로 함은 이미 미안(未安)한 데 관계됩니다. 그런데 중군이 유고하면 심지어 가중군(假中軍)으로써 대신 거행하도록 하니, 일이 지극히 마땅하지 못합니다.’ 하고, 대신(大臣) 또한 옳게 여기니, 마침내 중군으로써 대신 거행하지 말라는 명(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후 대장이 유고하면 도제조(都提調)가 조련을 대신 거행하는 것을 정식(定式)으로 삼았는데, 도제조는 늙고 병든 사람이 많아서 매번 거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도감(都監)은 바로 경군(京軍)으로, 비록 더러 조련을 정지하더라도 또한 가끔 거행할 수 있으나, 금위영(禁衛營)과 어영청(御營廳)의 두 군영(軍營)은 모두 향군(鄉軍)으로서, 상번(上番)할 때 대장이 유고하면 혹 한 번의 습진(習陣)도 거치지 않은 채 그만두니, 용정(戎政)의 소우(疏虞)함이 진실로 염려스럽습니다. 외방에서는 병사(兵使)가 습조(習操)할 때 영장(營將)이 반드시 하루 전에 개인적으로 조련(操鍊)을 거행하는데, 이를 사조(私操)라고 일컫고 있으며, 경군문(京軍門)에서도 파총(把總)과 초관(哨官)이 개인적으로 습진(習陣)하는 전례가 있습니다. 만약 중군으로 습조(習操)를 대신 거행하는 것이 미안(未安)하다고 여긴다면, 모두 대사조(大私操)라고 이름하여 중군으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완전히 폐지하는 것보다 나은 것입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신여철(申汝哲)의 말은 의견이 없지 않으므로 그 당시 중군이 대신 거행하지

之代行習操，爲未安，則皆以大私操爲名，使中軍爲之，猶勝於全然廢闕矣。” 上曰：“申汝哲之言，不無意見，故其時有中軍勿爲代行之命矣。 外方則私操後，兵使卽爲正操，而此則無正操，而但行私操，果何如耶？” 頤命曰：“一朔之內，定行三操。 大將雖未行前操，猶可爲後操，便是正操，恐無所妨，而第臣一人之見，未必合宜，宜令廟堂稟處矣。” 上命廟堂商議稟處。

	<p>말라는 명이 있었다. 외방(外方)에서는 사조(私操)한 후에 병사(兵使)가 곧 정조(正操)한다고 하는데, 이는 정조 없이 단지 사조만 거행하는 것이니, 과연 어떠하겠는가?”</p> <p>하자, 이이명이 말하기를,</p> <p>“한 달 안에 3조(三操)를 정하여 거행하면, 대장이 비록 전조(前操)를 거행하지 않더라도 오히려 후조(後操)를 거행할 수 있는데, 이것이 문득 정조(正操)이니 아마도 무방할 듯합니다. 단지 신(臣) 한 사람의 견해가 반드시 합당한 것은 아니니, 마땅히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묘당으로 하여금 상의하여 품처하도록 명하였다.</p>	
<p>숙종 64권, 45년 (1719 기해 / 청 강희 (康熙) 58년) 9월 3일 (임신) 3번째기사</p>	<p>평안 감사(平安監司) 이택(李澤)이 폐사(陞辭)하니, 세자(世子)가 불러서 보고 칙유(勅諭)하였다. 이택이 본도(本道)에서 입은 수재(水災)의 참상(慘狀)을 진달(陳達)하고, 청하기를,</p> <p>“연전(年前)에 본도에서 얻은 이전곡(移轉穀)은 우선 남겨 두었다가 진자(賑資)에 쓰고, 명년 가을을 기다려 도로 갚도록 허락하소서. 그리고 본도에서 응당 상납(上納)해야 하는 세미(稅米)·세태(稅太)는 은(銀)으로 절가(折價)19535 하여 상납하되 그 나머지와 태가(駄價)를 취(取)하여 진정(賑政)에 보태도록 허락하소서. 그리고 조적(糶糶)의 모곡(耗穀) 또한 바라건대 올해에 한하여 가져다 쓰게 하고, 병사(兵使)의 순력(巡歷) 또한 정지하게 하소서.”</p> <p>하니, 세자가 모두 허락하였다.</p>	<p>○平安監司李澤陞辭，世子召見勅諭。澤陳本道水災之慘，請年前本道所得移轉，姑許留用於賑資，以待明秋還償；本道應上納稅米、太，許令折銀上納，取其剩餘及駄價，以補賑政；糶糶耗穀，亦乞限今年取用；兵使巡歷，亦請停止，世子並許之。</p>
<p>숙종 64권, 45년 (1719 기해 / 청 강희</p>	<p>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다. 진후(診候)를 마치자 도제조(都提調) 이이명(李頤命)이 말하기를,</p>	<p>○藥房入診。診候畢，都提調李頤命言：“日晷漸短，天氣且涼，上候未寧</p>

<p>(康熙) 58년) 9월 8일 (정축) 2번째기사</p>	<p>“낮이 점차 짧아지고 천기(天氣)도 서늘해졌는데, 정상께서 환후(患候)가 미령(未寧)하신 가운데 종일 바깥에 계실 수는 없으니, 청컨대 구작(九酌)을 줄여 7작으로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p>	<p>中，不可終日於外。請減九酌爲七酌。”上可之。</p>
<p>숙종 64권, 45년 (1719 기해 / 청 강희 (康熙) 58년) 9월 12 일(신사) 2번째기사</p>	<p>예조(禮曹)에서 말하기를, “문묘(文廟)에 전알(展謁)하여 작헌례(酌獻禮)를 거행할 때에는 청컨대 태묘(太廟)에서 행례(行禮)할 때의 예에 의거하여 계성사(啓聖祠)19537) 에도 관원을 보내어 전작(奠酌)하게 하소서.”</p> <p>하니, 세자가 옳게 여겼다.</p>	<p>○禮曹言：謁聖酌獻禮時，請依太廟行禮時例，啓聖祠亦遣官奠酌。”世子可之。</p>
<p>숙종 64권, 45년 (1719 기해 / 청 강희 (康熙) 58년) 9월 28 일(정유) 1번째기사</p>	<p>사시(巳時)에 임금이 경현당(景賢堂)에 나아가 진연(進宴)을 받았다. 임금이 곤룡포(袞龍袍)에다 익선관(翼善冠)을 갖추고 대여(大輿)를 타고 나가니, 내시(內侍)가 췌장(几杖)을 받들고 따랐는데, 산선(繖扇)과 시위(侍衛)는 의장(儀仗)과 같이 하였다. 고취(鼓吹)를 울려 진작(振作)하자 여민락(與民樂)을 연주하고, 임금이 경현당(景賢堂)에 들어가자 고취가 그치고 헌가악(軒架樂)을 연주하였다. 임금이 어좌(御座)에 오르자 내시가 췌장을 받들어 어좌 곁에 두고, 상서원(尙瑞院)의 관원(官員)이 어보(御寶)를 받들어 안(案)에 놓으니 음악이 그쳤다. 근시(近侍)와 여러 집사관(執事官)들이 전(殿)에 내려와 먼저 사배례(四拜禮)를 행하고, 예를 마치자 다시 입시(入侍)하였다. 약방 도제조(藥房都提調) 이이명(李頤命)이 나아가 엎드려 문후(問候)하고, 물러나 자리에 돌아갔다. 왕세자(王世子)가 종친(宗親)과 문무 백관(文武百官)을 거느리고 배위(拜位)에 나아가자 음악이 연주되고, 사배례를 행하고 마치니 음악이 그쳤다.</p>	<p>○丁酉/巳時，上出御景賢堂，受宴。上具袞龍袍、翼善冠，乘輿出，內侍奉几杖從之，繖扇、侍衛如儀。仗動鼓吹振作，奏《與民樂》，上入堂，鼓吹止，軒架作。上升座，內侍奉几杖，置座側，尙瑞院官奉寶置案，樂止。近侍及諸執事下殿，先行四拜禮訖，還入侍。藥房都提調李頤命，進伏問候而退，復位。王世子率宗親、文武百官，入就拜位，樂作，行四拜訖，樂止。提調進酒器，樂作，進訖，樂止。王世子以下，皆跪，提調進揮巾，</p>

제조(提調)가 주기(酒器)를 바치자 음악이 연주되고, 바치기를 마치자 음악이 그쳤다. 왕세자 이하가 모두 꿇어앉고, 제조가 휘건(揮巾)을 바치자 음악이 연주되고, 내시가 휘건을 받아 바치기를 마치니 음악이 그쳤다. 제조가 찬안(饌案)을 바치자 음악이 연주되고, 바치기를 마치니 음악이 그쳤다. 제조가 행과(行果)를 바치자 음악이 연주되고 바치기를 마치니 음악이 그쳤다. 승지(承旨)가 꿇어앉아 꽃을 바치기를 청하여 화반(花盤)을 바치자 음악이 연주되고, 내시가 꽃을 받아 바치기를 마치니 음악이 그쳤다. 제조가 염수(鹽水)를 받들자 음악이 연주되고, 내시가 받아 바치기를 마치니 음악이 그쳤다. 왕세자 이하가 부복(俯伏)·흥(興)·평신(平身)하고, 다시 꿇어앉았다. 제조가 소선(小簋)을 바치자 음악이 연주되고, 바치기를 마치니 음악이 그쳤다. 왕세자 이하가 부복·흥·평신하였다.

전악(典樂) 2인이 동서로 나누어 서서 존숭 악장(尊崇樂章)을 창하여 유천지곡(維天之曲)을 바치자, 상례(相禮)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동계(東階)로부터 올라가 동문(東門)을 거쳐 들어가서 제1작을 올려 제조에게 주고 배위(拜位)에 나아가 꿇어앉으니, 종친과 문무 백관이 모두 꿇어앉았다. 치사관(致詞官)이 서계(西階)로부터 올라가 서문(西門)을 거쳐 들어가서 어좌(御座)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치사(致詞)하고 물러났다. 임금이 작(爵)을 들자 음악은 천년만세곡(千年萬歲曲)이 연주되고, 제조가 나아가 빈 작(爵)을 받아 다시 점(站)에 놓으니 음악이 그쳤다. 왕세자 이하가 부복·흥·평신하고 다시 꿇어앉았다. 제조가 고기를 베어 꿇어앉아 찬안(饌案)의 오른쪽에 바치자 음악은 청평곡(淸平曲)이 연주되고, 제조가 만두(饅頭)를 바치고, 이를 마치니 음악이 그쳤다. 왕세자 이하가 부복·흥·평신하였다. 영의정(領議政) 김창집(金昌集)이 제2작을 바치고 치사관(致詞官)이 치사를 바치기를 전의 의식(儀式)과 같이 하였다. 전교관(傳敎官)이 동문(東門)을 거쳐 나가서 계단에 임하여 서쪽을 향해 서서

樂作，內侍受揮巾進訖，樂止。提調進饌案，樂作，進訖，樂止。提調進行果，樂作，進訖，樂止。承旨跪請進花，供花盤，樂作，內侍受花，進訖，樂止。提調捧鹽水，樂作，內侍受進訖，樂止。王世子以下，俯伏興平身，復跪。提調進小簋，樂作，進訖，樂止。王世子以下，俯伏興平身。典樂二人，分東西立，唱尊崇樂章，《維天之曲》訖，相禮引王世子，陞自東階，由東門入，進第一爵，授提調，出就拜位跪，宗親、文武百官皆跪。致詞官陞自西階，由西門入，進當座前跪，致詞而退。上舉爵，樂作，奏《千年萬歲》，提調進，受虛爵，復於站，樂止。王世子以下俯伏興，復跪。提調割肉，跪進于饌案之右，樂作，奏《淸平曲》。提調進饅頭，〔樂作〕進訖，樂止。王世子以下，俯伏興平身。領議政金昌集進第二爵，致詞官進致詞，如前儀。傳敎官由東門出，臨階西向立，傳敎曰：“敬舉卿等之爵。”上舉爵，樂奏《五雲開瑞朝》。王世子以下行三叩頭、山呼禮，樂奏《桓桓曲》。王世子以下四拜，樂作。相禮

전교(傳敎)하기를, ‘공경히 경들은 작(爵)을 들라.’ 하고, 임금이 작을 들자 음악은 오운개서조(五雲開瑞朝)가 연주되고, 왕세자 이하가 삼고두(三叩頭)와 산호(山呼)의 예(禮)를 거행하니 음악은 환환곡(桓桓曲)이 연주되었다. 왕세자 이하가 사배하니 음악이 그쳤다. 상례(相禮)가 왕세자를 인도하고, 인의(引儀)가 종친과 문무 백관을 나눠 인도하여 전(殿)에 올라 자리에 나아갔다. 임금이 시위(侍衛)하는 제장(諸將)에게 명하여 자리에 나아가게 하였다. 전악(典樂)이 가자(歌者)와 금슬(琴瑟)을 인도하여 동서(東西)로 나누어 계단에 올라가 서게 하였다. 부제조가 왕세자의 찬탁(饌卓)에 별행과(別行果)를 바치고, 보덕(輔德)이 꽃을 바쳤으며, 부제조가 왕세자에게 찬(饌)을 바쳤다. 집사자(執事者)가 종친과 문무 백관의 찬탁(饌卓)을 배설하였다. 산화(散花)를 마치고, 제조가 탕(湯)을 바치자 음악이 연주되고, 왕세자 이하가 자리를 떠나 부복하였다가 바치기를 마치니 도로 자리에 나아갔다. 부제조가 왕세자에게 탕(湯)을 바치고, 집사자가 종친과 문무 백관에게 탕을 배설하기를 마치자 음악이 그쳤다.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이이명(李頤命)이 제3작을 바쳤는데, 의식은 전과 같이 하였으며, 음악은 보허자령(步虛子令)이 연주되고, 무동(舞童)이 들어와서 춤을 추었다. 부제조가 왕세자에게 술을 바치고, 집사자가 종친과 문무 백관에게 술을 돌렸다. 이하 작(爵)을 바칠 때에는 다 전의 의식과 같게 하였는데, 바치기를 마치니 음악이 그쳤다. 탕을 바치고, 전성군(全城君) 이혼(李混)이 제4작을 바치자 음악은 정읍만기(井邑慢機)가 연주되었으며, 무동이 들어와서 춤을 추었다. 금평위(錦平尉) 박필성(朴弼成)이 제5작을 바치자 음악은 보허자령(步虛子令)이 연주되고, 무동이 들어와 춤을 추었고, 천년만세곡(千年萬歲曲)이 연주되었다.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김주신(金柱臣)이 제6작을 바치자 음악은 정읍만기(井邑慢機)가 연주되고, 무동이 들어와서 춤을 추었으며, 청평곡(淸平曲)이 연주되었다. 행 호조 판서(行戶曹判書) 송상기(宋相琦)가 제7작을 바치자 음악은 여민락령(與民樂令)이 연주되고 무동이 들어

引王世子，引儀分引宗親、文武百官，升殿就位。上命侍衛諸將，就座。典樂引歌者及琴瑟，分東西陞階立。副提調供王世子饌卓，別行果，輔德供花，副提調供王世子饌。執事者設宗親、文武百官饌卓。散花訖，提調進湯，樂作，王世子以下離位伏，進訖，還就位。副提調供王世子湯，執事者設宗親、文武官湯訖，樂止。判中樞府事李頤命進第三爵，如前儀。樂奏《步虛子》，令舞童入作。副提調供王世子酒，執事者行宗親、文武官酒。此下進爵時皆如之，進訖，樂止。進湯。全城君混進第四爵，樂奏《井邑慢機》，舞童入作。錦平尉朴弼成進第五爵，樂奏《步虛子》，令舞童入作，奏《千年萬歲》。領敦寧府事金柱臣進第六爵，樂奏《井邑慢機》，舞童入作，奏《淸平曲》。行戶曹判書宋相琦進第七爵，樂奏《與民樂》，令舞童入作。提調退小饌，進大饌，樂作，奏《太平年之曲》。仍奏《與民樂》，鄉、唐樂交作，處容舞入作。副提調供王世子饌，執事者設宗親、文武官饌訖，樂止。頃之，提調進撤案，

와 춤을 추었다. 제조가 소찬(小饌)을 물리고 대찬(大饌)을 바치자 음악은 태평년지곡(太平年之曲)이 연주되고, 이어서 여민락(與民樂)이 연주되었으며, 향악(鄕樂)과 당악(唐樂)을 잇따라 연주하고, 처용무(處容舞)가 들어와 춤을 추었다. 부제조가 왕세자에게 찬을 바치고, 집사자(執事者)가 종친과 문무 백관에게 찬을 배설하고, 이를 마치니 음악이 그쳤다. 조금 후에 제조가 나아가 찬안(饌案)을 거두고, 부제조가 왕세자의 찬탁을 거두었으며, 집사자가 종친과 문무 백관의 상(床)을 거두었다. 이를 마치자 여러 대신(大臣)들이 함께 나아가 경축(慶祝)하는 말을 아뢰었다. 우의정(右議政) 이견명(李健命)이 말하기를,

“신민이 너무 다행스럽게도 오늘의 경사를 볼 수 있었는데, 조정(朝廷)에 있는 여러 신하들은 비록 함께 즐길 수 있었으나 팔도(八道)의 소민(小民)에게는 은혜가 고루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옛날부터 이와 같은 큰 경사에는 매년 추은(推恩)하는 일이 있었는데, 한 가지 정사(政事)와 한 가지 일을 시행함은 큰 은혜를 베풀기에 족하지 않습니다. 양역(良役)을 변통(變通)하는 의논은 이제까지 결정하지 못하였는데, 춘궁(春宮)이 대리(代理)한 지 오래 되어 점차 더욱 밝게 익혀가고 있으니, 만약 한가로운 가운데에 백성들의 질고(疾苦)를 더욱 익숙히 알게 하시고 추후로 인은(仁恩)을 시행하게 하신다면, 팔도의 생령(生靈)들이 장차 반드시 수역(壽域)19549)에서 함께 살게 될 것이니, 은혜가 더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진계(陳啓)한 바가 절실하니, 마땅히 유의(留意)하겠다.”

副提調撤王世子卓，執事者撤宗親、文武官床訖，諸大臣同進，陳慶祝之辭。右議政李健命曰：“臣民何幸，獲觀今日之慶。在廷諸臣，雖得同樂，八域小民，獨未均霑。自前如此大慶，每有推恩之事，而一政一事之施，未足爲大惠矣。良役變通之議，至今未決，春宮代理既久，漸益明習，若於燕閑之中，教以黎庶之疾苦，使益熟諳，而推行仁恩，則八路生靈，必將同囿於壽域之中，惠莫大矣。”上曰：“所陳切實，當留意焉。”領議政金昌集曰：“春宮謁聖之日已迫。臣於前日，筭請教諭諸生矣，第今番與謁聖後，仍爲試士於其處有異，旋詣春塘臺，仍爲設場，則其間似不及宣諭矣。”判府事趙泰采、右議政李健命皆以爲：“一邊聽諭，一邊赴學，忙急應文，殊不誠實。”上曰：“今番紛沓，不可爲矣。”諸大臣退就位。王世子降就拜位，率宗親、文武官，行四拜禮，樂作拜訖，樂止。通禮跪啓禮畢，工鼓祝樂作，上乘輿還內，工戛敵樂止。王世子還內，放仗。

	<p>하였다. 영의정 김창집이 말하기를,</p> <p>“춘궁이 알성(謁聖)할 날이 이미 임박하였습니다. 신이 전일에 차자(笥子)를 올려 여러 유생(儒生)들에게 교유(教諭)하시기를 청하였습니다만, 이번에는 알성(謁聖)한 뒤 그대로 그곳에서 시사(試士)하는 것과 다르고, 곧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서 시장(試場)을 베풀어야 하니, 그 사이에 미처 선유(宣諭)하지 못하게 될 듯합니다.”</p> <p>하였는데, 관중추부사 조태채(趙泰采)와 우의정 이건명이 모두 말하기를,</p> <p>“한편으로 유시(諭示)를 듣고 한편으로 부거(赴舉)하려면 글을 짓는 데 급한 나머지 자못 성실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p> <p>하자, 임금이 말하기를,</p> <p>“이번에는 분답(紛沓)해서 할 수가 없겠다.”</p> <p>하니, 여러 대신들이 물러나 자리에 나아갔다. 왕세자가 내려가서 배위(拜位)에 나아가 종친과 문무 백관을 거느리고 사배례(四拜禮)를 행하자 음악이 연주되고, 이를 마치자 음악이 그쳤다. 통례(通禮)가 끊어앉아 예(禮)가 끝났음을 아뢰자 공인(工人)이 축(祝)을 두드려 음악이 연주되었으며, 임금이 여(輿)를 타고 궐내(闕內)로 돌아가니 공인이 어(敵)를 두드려 음악이 그쳤다. 왕세자가 대궐로 돌아가고, 의장(儀仗)을 해산하였다.</p>	
<p>숙종 64권, 45년 (1719 기해 / 청 강희</p>	<p>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다. 진후(診候)를 마치자, 제조(提調) 민진원(閔鎮遠)이 말하기를,</p>	<p>○藥房入診。診候畢，提調閔鎮遠言：“頃以濟州鑄錢補賑事陳白，而廟堂覆</p>

<p>(康熙) 58년) 10월 17 일(병진) 3번째기사</p>	<p>“지난번에 제주(濟州)에서 주전(鑄錢)하여 진휼(賑恤)에 보태는 일을 진백(陳白)하였는데, 묘당(廟堂)에서 복주(覆奏)하여 시행하기를 청하였으나, 여러 사람들이 모두 의논하기를, ‘절도(絶島)에서 주전하면 간교한 폐단이 발생하기 쉽다.’ 하였으므로, 대신(大臣)들이 이 때문에 지난(持難)하여 아직 주전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복주하여 시행하도록 허락한 일이라 하나, 묘당의 의논이 귀일(歸一)되지 못하였으니, 도로 정지하는 것이 또한 무방(無妨)할 듯합니다.”</p> <p>하였는데, 임금이 도제조(都提調) 이이명(李頤命)에게 묻기를,</p> <p>“제주에서 주전하는 의논을 나는 좋다고 생각하였고, 여러 의논이 이와 같다고 한다. 경의 뜻은 어떠한가?”</p> <p>하자, 이이명이 말하기를,</p> <p>“섬에서 폐단이 발생할 것이라는 말은 소견이 없지 않으나, 옛부터 전화(錢貨)를 폐지했던 세상은 없었으니, 만약 없앨 수 있다면 그만이었지만, 이미 갑자기 폐지할 수도 없고 또 더 주전하려 들지 않으면 점차 더욱 용귀(踊貴)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도(道)의 신포(身布)를 목화(木花)가 참혹한 흉작이라 하여 전화(錢貨)로 대신 바치도록 허락하였는데, 전화 또한 아주 귀해져서 소민(小民)이 곡물(穀物)을 가지고 전화를 바꾸려 할 즈음에 비용(費用)이 무한(無限)할 것입니다. 그러니 제주에서는 비록 주전할 수 없다 하더라도 만약 경아문(京衙門)에서 더 주전하여 널리 통용시키는 것은 불가(不可)함이 없을 듯합니다. 시험삼아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함</p>	<p>奏請施矣，諸議皆以爲：‘絶島鑄錢，易生奸弊。’ 大臣以此持難， 姑不始鑄矣。 雖是覆奏許施之事， 廟議既不歸一， 則還寢亦恐無妨。” 上問都提調李頤命曰：“濟州鑄錢之議， 予則以爲好矣， 諸議如許云。 卿意何如？” 頤命曰：“島中生弊之說， 不爲無見， 而自古無廢錢之世。 若能絶之則已， 既不能猝廢， 又不肯加鑄， 漸益踊貴。 諸道身布， 以木花慘凶之故， 許以錢代納， 錢亦絶貴， 小民以穀物換錢之際， 所費無限。 濟州則雖不可鑄， 若就京衙門加鑄流行， 則似無不可。 試令廟堂稟處好矣。” 上許之， 翌日， 下教曰：“錢之爲弊， 罔有紀極， 決不可加鑄。”</p>
---	---	--

	<p>니다.”</p> <p>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가, 이튿날 하교(下敎)하기를,</p> <p>“전화(錢貨)가 폐단이 되는 것은 한정이 없으니, 결코 더 주전할 수가 없다.”</p> <p>하였다.</p>	
<p>숙종 64권, 45년 (1719 기해 / 청 강희 (康熙) 58년) 10월 17 일(병진) 4번째기사</p>	<p>승지(承旨)가 동궁(東宮)에 입대(入對)하였다. 좌부승지(左副承旨) 황귀하(黃龜河)가 제주목(濟州牧)에서 곡식을 청한 장계를 읽고 나서 말하기를,</p> <p>“신이 병신년(19568)에 감진 어사(監賑御史)로 제주에 왕래하였기 때문에 도중(島中)의 일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흉년(凶年)을 만났으니, 반드시 시기(時期)에 맞추어 곡식을 수송(輸送)한 후에야 먹여 주기를 바라는 백성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인데, 조정에서 부응(副應)하는 것은 매년 시기에 늦는 한탄이 있습니다. 이번의 곡식은 반드시 이전(移轉)하는 관원들에게 각별히 엄중하게 신칙하여, 만약 시기에 맞추어 들여보내지 않으면 반드시 더욱 무겁게 허물을 추궁하겠다는 뜻으로 미리 신칙(申飭)함이 마땅합니다.”</p> <p>하니, 세자가 옳게 여겼다. 황귀하가 또 제주목에서 장론(狀論)한 김세화(金世華)의 격쟁(擊錚)한 일을 읽고 나서 말하기를,</p> <p>“일찍이 선조조(先祖朝)에 김만일(金萬鎰)이 1만 필의 말을 바친 공로로 산둔감목관(山屯監牧官)을 세습(世襲)하도록 허락하였는데, 그후 자손 가운데 더러 불초(不肖)한 자가 있어 목졸(牧卒)을 가혹하게 부리는 바람에 원고(怨苦)를 초래하여 본시(本寺)에 정소(呈訴)하는 데 이르니, 그 세습(世襲)을 폐지하고</p>	<p>○承旨入對于東宮。左副承旨黃龜河，讀濟州牧請穀狀訖曰：“丙申年，臣以監賑御史，往來濟州，熟諳島中事矣。即今凶年如此，必趁期輸粟，然後可救望哺之民，而朝家應副，每有後時之歎。今番穀物，則必須各別嚴飭於各其移轉官，若不趁期入去，則必加重究之意，預爲申飭宜矣。”世子可之。龜河又讀濟州牧狀論金世華擊錚事訖曰：“曾在先朝，金萬鎰以納馬萬匹之功，許其世襲山屯監牧官，而其後子孫中或有不肖者，虐使牧卒，致有怨若，至於呈訴本寺，罷其世襲，而以旌義縣監兼監牧矣。今因萬鎰子孫世華之擊錚，自司僕，問其便否於濟州，故有此狀聞，而此事不難知矣。若無私利害，則渠豈千里越海，至於擊鼓乎？此事宜令勿施矣。”世子從之。</p>

	<p>정의 현감(旌義縣監)이 감목관을 겸임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만일의 자손 김세화의 격쟁으로 인하여 사복시(司僕寺)에서 제주에 그 편부(便否)를 물었으므로, 이러한 장문(狀聞)이 있었던 것이나, 이 일은 알기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 사사로운 이해(利害)가 없다면 그가 어찌 바다를 건너 천 리의 먼 길에 와서 격고(擊鼓)하는 데 이르겠습니까? 이 일은 시행하지 않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p> <p>하니, 세자가 그대로 따랐다.</p>	
<p>숙종 64권, 45년 (1719 기해 / 청 강희(康熙) 58년) 10월 18일(정사) 3번째기사</p>	<p>비국(備局)에서 계청(啓請)하기를,</p> <p>“제도(諸道)의 여러 가지 군포(軍布)와 신공(身貢)으로 미처 받아들이지 않은 그 고을에서 가장 오래된 1년 조를 탕감(蕩減)하소서.”</p> <p>하니, 세자가 그대로 따랐는데, 대개 진연(進宴)한 후에 추은(推恩)하는 것이었다.</p>	<p>○備局啓請諸道各樣軍布、身貢，隨其邑未捧最久一年條，蕩減，世子從之。蓋爲進宴後推惠也。</p>
<p>숙종 64권, 45년 (1719 기해 / 청 강희(康熙) 58년) 10월 20일(기미) 1번째기사</p>	<p>세자가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재신(宰臣)들을 인접(引接)하였다. 우의정(右議政) 이건명(李健命)이 말하기를,</p> <p>“지난번에 예조 판서(禮曹判書) 민진후(閔鎭厚)가 북로(北路)에 흉년이 들었다 하여 글을 올려 영남(嶺南)의 곡식 1만 5천 석을 옮겨 줄 것을 청하였는데, 함경 감사(咸鏡監司) 김상직(金相稷)이 장계(狀啓)하기를, ‘북도(北道)에 비록 배가 있다 하나 생김새가 매우 작아서 2, 30석을 싣는 데 지나지 않으니, 1만여 석의 곡식과 3백 석의 소금을 이것으로 운반해 가고자 한다면, 형세가 미치지 못할 바가 있습니다. 이전에 병신년(19569)·정유년(19570)에 영남의 곡식을 이전(移轉)하였을 때에는 본도(本道)에서 스스로 수송(輸送)해 간 것은</p>	<p>○己未/世子引接大臣、備局諸宰，右議政李健命曰：“頃者禮曹判書閔鎭厚，以北路凶荒，上書請移給嶺南穀一萬五千石矣。咸鏡監司金相稷狀言：‘北道雖有船隻，體樣甚小，不過載二三十石。萬餘石穀及三百石鹽，欲以此運去，則勢有不及。前於丙、丁年，嶺穀移轉時，本道所自輸去者，不過三四百石，其外皆自嶺南輸送。請今亦用此例矣。’北道船制果如此，則欲搬萬</p>

3, 4백 석에 불과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영남에서 수송하였으니, 청컨대 지금도 역시 이 예를 쓰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북도의 선제(船制)가 과연 이와 같다면 1만여 석을 운반하고자 해도 그 형세가 반드시 어려울 것이니, 5천 석은 마땅히 북도로 하여금 수송해 가게 하고, 1만 석은 마땅히 영남으로 하여금 북도의 계수관(界首官)19571)에게 수송해 주게 하소서.”

하니, 세자가 그대로 따랐다. 이견명이 또 말하기를,

“전일에 대간(臺諫)이 상소(上疏)하여 남솔(濫率)을 금지시킬 것을 거듭 청하였는데, 전규(前規)에 남솔한 자로 일찍이 2품의 벼슬과 시종(侍從)을 지낸 경우는 파직(罷職)하고, 그 외에는 결장(決杖)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염우(廉隅)를 중대하게 여기므로, 결장(決杖)한 후에는 결코 그대로 재직(在職)하지 않아 반드시 사면(辭免)하고자 하는 즘음에 직사(職事)가 오랫동안 폐지됩니다. 삼남(三南)의 수령 또한 반드시 이 죄를 범한 자가 있을 것인데, 지금 바야흐로 양역(量役)이 한창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일이 있을까 염려되니, 지금은 비록 자수(自首)하는 자가 있더라도 우선 장문(狀聞)하지 말고 양전(量田)의 일을 마치기를 기다린 후에 장문(狀聞)하게 하는 것이 무방(無妨)할 듯합니다.”

하니, 세자가 옳게 여겼다. 이견명이 말하기를,

“신이 구구한 소회(所懷)가 있어서 감히 이를 우러러 진달(陳達)하고자 합니다. 천재(天災)와 시변(時變)이 없는 달이 없는데, 올해의 경우를 말해 보건대 정월(正月) 세수(歲首)에 일식(日蝕)·월식(月蝕)이 있었고, 근일에는 겨울 천둥이 심상(尋常)하지 않았으며, 지금은 일기가 따뜻하고 안개가 끼지 않는 날이

餘石，其勢必難。五千石則宜令北道輸去，一萬石則宜令嶺南輸付北道初面官矣。”世子從之。健命又言：“前日臺疏，請申濫率之禁，而前規濫率者，曾經二品職及侍從者罷職，其外決杖矣。我國以廉隅爲重，決杖後決不仍在，必欲辭免之際，職事曠廢。三南守令，亦必有犯此科者，而卽今量役方張，此爲可憫。今則雖有自首者，姑勿狀聞，待量事畢後，使之狀聞，似無妨矣。”世子可之。健命曰：“臣有區區所懷，敢此仰陳。天災時變，無月無之，以今年言之，正月歲首，而日月剝蝕，近日冬雷非常，卽今日氣溫暖，霧氣無日無之。雖當治平之時，變怪如此，則君臣上下，宜加驚動，而人情狃於見聞之習熟，不知其異如此，而何事可做耶？邸下聽政踰年，明習庶務，生民疾苦，刑政得失，必常留意，而自外見之，臣僚所達之言，只爲循例依下。若使輔導之人，算無遺策，豈不好矣，而不然而循例而已，則卽今時勢，豈可以循例挽回耶？人君尊臨億兆之上，淵默，固是美事，而以天地言之，高下雖迥隔，必須天氣下降，地氣上

없습니다. 비록 치평(治平)한 때라 하더라도 변괴(變怪)가 이와 같으면 군신(君臣) 상하가 마땅히 더욱 경동(驚動)해야 할 것인데, 인정(人情)이 보고 듣고 서로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풍습에 더욱 익숙해져 그 괴이함을 알지 못함이 이와 같으니,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하께서 정사(政事)를 청단(聽斷)하신 지 1년이 넘어 서무(庶務)를 밝게 익히셨으니, 생민(生民)의 질고(疾苦)와 형정(刑政)의 득실(得失)에 항상 유의하셔야 할 것인데, 밖에서 보건대 신료(臣僚)들이 진달(陳達)하는 말을 단지 예에 따라 하라고 하교(下教)하십시오. 만약 보도(輔導)하는 신하들이 헤아린 책략(策略)에 빈 틈이 없다면 어찌 좋지 않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은데도 예에 따라 할 따름이니, 지금의 시세(時勢)가 어찌 예에 따르는 것으로써 만회(挽回)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군(仁君)은 억조 창생(億兆蒼生) 위에 군림하니, 연묵(淵嘿)이 진실로 아름다운 일이겠지마는, 천지(天地)로써 말하건대 높고 낮음이 비록 현격(懸隔)하다 하더라도 천기(天氣)가 하강(下降)하고 지기(地氣)가 상승(上升)하여 음양(陰陽)이 섞인 후에야 만물이 생성(生成)되는 법이니, 인군이 한결같이 연묵할 따름이라면 신하의 정리(情理)가 어디로 말미암아 상달(上達)되겠습니까? 신등(臣等)뿐만 아니라, 비록 지극히 벼슬이 낮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모든 일을 반드시 더불어 정성스럽게 상확(商確)한다면 거의 교부(交孚)하는 방도가 될 것입니다. 탕왕(湯王)은 덕(德)이 지극하여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니다. 삼가 바라건대 체념(體念)하소서.”

하니, 세자가 말하기를,

“마땅히 체념하겠다.”

하였다. 훈련 대장(訓練大將) 이홍술(李弘述)이 말하기를,

升，陰陽交而後，萬物生成。人君一向淵默而已，則臣下之情，何由上達耶？不但臣等，雖至官卑之人，凡事必與之諄諄商確，則庶爲交孚之道。湯德至矣，而不恥下問。伏望體念焉。”世子曰：“當體念耳。”訓練大將李弘述曰：“前日義州守臣狀言：‘彼人加築瀋陽城’云。此必有所由然，而我國連值凶歉，兩西軍政，全然拋棄，軍兵或散或死，徒存虛簿，如或有不虞之變，何以禦之耶？三南則另置營將，故軍兵不至全拋，而兩西則只以守令兼之，故凡諸檢飭之事，不過守令關文，誰肯動念耶？若於兩西，別設營將，則必有其效矣。”健命曰：“兩西設營將固好，而第兩西田稅甚少，若出營將，則須給廩料，而所率亦必不少，此無措置之道矣。”弘述曰：“兩西不緊僉使、萬戶甚多，量減其額，而設置營將，則無新創之弊，而事必着實矣。”健命以爲：“不可倉卒決之，請令廟堂稟處。”世子可之。持平洪龍祚申前達，又言：“日昨玉堂筭批，有‘有難鎮定，證候添加’八字，必是內官誤傳之教。夫內官之口傳聖教，何等重大，

“전일에 의주(義州)의 수신(守臣)이 장계(狀啓)하기를, ‘피인(彼人)이 심양성(瀋陽城)을 더 쌓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반드시 까닭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잇따라 흉년을 만나 양서(兩西)의 군정(軍政)을 완전히 포기하였으므로, 군병(軍兵)이 혹은 흩어지고 혹은 죽어 빈 장부만 있으니, 만약 혹시라도 뜻하지 않은 변고(變故)가 있다면 어떻게 방어(防禦)하겠습니까? 삼남(三南)은 영장(營將)을 더 설치하였으므로 군병(軍兵)을 완전히 포기하는 데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양서(兩西)는 단지 수령(守令)으로 하여금 이를 겸임하게 하였으므로, 여러 검칙(檢飭)하는 일들이 수령(守令)의 관문(關文)에 지나지 않으니, 누가 기꺼이 생각을 기울이겠습니까? 만약 양서(兩西)에 따로 영장(營將)을 설치한다면 반드시 그 공효(功效)가 있을 것입니다.”

하였는데, 이진명이 말하기를,

“양서에 영장을 설치하는 것이 진실로 좋습니다. 다만 양서는 전세(田稅)가 매우 적은데, 만약 영장을 내보내면 반드시 누료(廩料)를 주어야 할 것이고, 거느리는 병졸도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니, 이것을 조치(措置)할 방도가 없습니다.”

하자, 이홍술이 말하기를,

“양서에는 긴요하지 않는 첨사(僉使)와 만호(萬戶)가 매우 많으니, 그 액수(額數)를 헤아려 줄이고 영장을 설치하면 새로 창설(創設)하는 폐단이 없고 일도 반드시 착실해질 것입니다.”

而乃有此誤傳之舉？後弊所關，不可不嚴懲。請當該承傳色拿問定罪。”世子只從末端事。

	<p>하므로, 이견명이 말하기를,</p> <p>“갑자기 결정할 수는 없으니, 청컨대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p> <p>하니, 세자가 옳게 여겼다. 지평(持平) 홍용조(洪龍祚)가 전에 진달(陳達)했던 것을 거듭 아뢰고, 또 말하기를,</p> <p>“일전에 옥당(玉堂)의 차자(筵子)에 대한 비답(批答)에, ‘「진정하기 어려운 바가 있고, 다른 증후(證候)가 첨가될 것이다.[有難鎮定 證候添加]」 라는 여덟 자는 반드시 내관(內官)이 잘못 전한 것이다.’라고 하교(下敎)하셨습니다. 대저 내관이 성교(聖敎)를 구전(口傳)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이러한 잘못 전하는 일이 있었으니, 뒷날의 폐단에 관계되는 바라 엄중히 징치(懲治)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해당 승전색(承傳色)을 나문(拿問)하여 정죄(定罪)하소서.”</p> <p>하였는데, 세자가 단지 말단의 일만 따랐다.</p>	
<p>숙종 64권, 45년 (1719 기해 / 청 강희 (康熙) 58년) 11월 10 일(무인) 1번째기사</p>	<p>세자가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재신(宰臣)들을 인접(引接)하였다. 영의정(領議政) 김창집(金昌集)이 말하기를,</p> <p>“충청 감사(忠淸監司) 권엽(權聃)은 장청(狀請)하기를, ‘군항(軍餉)은 단지 새로 나누어 준 것만 받아들이소서.’ 하였고, 강원 감사(江原監司) 유승(兪崇)은 장청(狀請)하기를, ‘경자년(19578) 의 식년(式年)에 노비(奴婢)를 추쇄(推刷)하는 일과 삼군문(三軍門)의 도안(都案)을 고치는 일을 늦추어 거행하소서.’ 하였습니다. 호서(湖西)는 올해 양역(量役)이 한창 벌어지고 있으니, 민간(民間)</p>	<p>○戊寅/世子引接大臣備局諸宰。 領議政金昌集言： “忠淸監司兪崇狀請， 庚子式年奴婢推刷及三軍門改都案退行矣。 湖西今年量役方張， 民間必多騷擾。 推刷、都案等事， 因年凶停寢， 亦有舊例。 兩道之請， 竝宜許之。” 世子可之。 昌集又曰：“頃者藥房入診時， 都提調李頤命， 以軍門習操多廢，</p>

에 반드시 소요(騷擾)함이 많을 것입니다. 추쇄와 도안 등의 일은 흉년으로 인하여 정지했던 구례(舊例)가 또한 있으니, 양도의 청은 아울러 허락함이 마땅합니다.”

하니, 세자가 옳게 여겼다. 김창집이 또 말하기를,

“지난번 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을 때 도제조(都提調) 이이명(李頤命)이 군문(軍門)에서 습조(習操)를 많이 폐지한다 하여 외방(外方)의 사조(私操)의 예에 의거하여 대사습(大私習)을 설행(設行)하되, 중군(中軍)으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기를 청하였습니다. 근래에 이를 장신(將臣)들과 상의(相議)하였더니, 모두 말하기를, ‘중군이 대신 거행하는 것이 비록 고사(故事)가 있긴 하나 신여철(申汝哲)이 건백(建白)하여 혁파(革罷)하기에 이르렀으니, 지금 와서 다시 중군으로 하여금 대신 거행하게 하는 것은 마침내 미안(未安)한 데 관계된다. 만약 대장이 유고하면 반드시 도제조(都提調)가 대신 거행하되, 간헐적으로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하였습니다. 이는 대조(大朝)께 취지(取旨)해야 하는 일이니, 대조께 품의(稟議)하여 하교(下教)하시는 것이 아마도 합당할 듯합니다.”

하니, 세자가 허락하였다. 우의정(右議政) 이건명(李健命)이 말하기를,

“지난번에 좌참찬(左參贊) 민진후(閔鎭厚)의 진달(陳達)로 인하여 남병사(南兵使)의 술권(率眷)을 제외시키는 일도 품처(稟處)하라는 명령이 있었는데, 이는 본도(本道)에 물어서 그 회보(回報)를 기다려 품처(稟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외방(外方)의 폐단은 병사(兵使)·수사(水使)의 술권 한 가지 일뿐만이 아니니, 제도(諸道) 감사의 지공(支供)은 술권의 여부를 물론하고 폐단이

請依外方私操例，設行大私習，令中軍舉行矣。近與將臣相議，則皆以爲中軍代行，雖云有故事，申汝哲至於建白革罷，則到今復令中軍替行，終涉未安。若大將有故，則必須都提調代行，毋令間歇似好云，而此取旨大朝之事。奉稟于大朝而下教，恐爲合宜。”世子許之。右議政李健命曰：“頃因左參贊閔鎭厚所達，南兵使除挈眷事，有稟處之令。此則問于本道，當待其回報而稟處，而外方之弊，不但兵、水使挈眷一事而已，諸道監司支供，勿論挈眷與否，弊端非細矣。朝家旣爲監司支供，劃給營需一日米一石，則非不優矣，而監司不爲自辦，必令判官支供，下官接待上官之際，不可埋沒，務爲豐侈，故以平壤一處言之，監司一年支供，殆過二萬兩，而猶患不足。公州、全州兩處，則除出田結千餘結，以供監司，眷率一事，猶爲第二件，而支供之弊，不可不變通矣。”昌集曰：“或云監司體貌尊重，支供不可自辦，而此則有不然者。兩都留守，其體貌之尊重，與監司無異，而支供一節，皆自爲取辦，監司何獨不可自辦乎？誠宜變通，以營需

작지 않습니다. 조정에서 이미 감사의 지공을 위하여 감영(監營)의 수용(需用)에서 하루에 쌀 1석씩을 획급(劃給)하고 있으니 넉넉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 감사는 스스로 판출(辦出)하지 않고 반드시 판관(判官)으로 하여금 지공하게 하니, 하관(下官)은 상관(上官)을 접대(接待)하는 즘음에 매몰(埋沒)할 수가 없어 풍성하고 사치스럽게 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양(平壤) 한 곳으로 말하자면, 감사의 1년 지공이 거의 2만 냥(兩)을 넘는데도 오히려 부족함을 근심하며, 공주(公州)·진주(全州) 두 곳에서는 전결(田結) 1천여 결을 덜어내어 감사의 지공에 쓰므로 권술의 한 가지 일은 오히려 제2의 건이 되었으니, 지공의 폐단은 변통(變通)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는데, 김창집이 말하기를,

“혹자의 말에 감사는 체모(體貌)가 존귀하고 엄중하여 지공을 스스로 판출할 수가 없다고 하나, 이는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양도(兩都)의 유수(留守)는 그 체모의 존귀하고 엄중함이 감사와 다름이 없으나 지공의 일절(一節)을 모두 스스로 판출하고 있으니, 어찌 감사만 유독 스스로 판출할 수 없겠습니까? 진실로 변통하는 것이 마땅하니, 감영의 수용(需用)에 쓰이는 쌀을 감사에게 부쳐서 스스로 공급하게 하되, 만약 부족하면 마련하여 더 주는 것은 불가(不可)하지 않습니다. 청컨대 명년(明年) 정월부터 이에 의거하여 정식(定式)을 삼아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세자가 옳게 여겼다. 지평(持平) 김고(金槲)가 전에 진달(陳達)했던 것을 거듭 아뢰고, 또 말하기를,

“괴원 분관(槐院分館)19579) 을 취사(取舍)하는 즘음에 사의(私意)에 일임하

米，付監司，使自供給，如有不足，則磨鍊加給，未爲不可矣。請自明年正月，使之依此定式施行。”世子可之。持平金槲申前達，又言：“槐院分館取舍之際，一任私意，才地恰當者，亦多見漏，至於增廣一榜，竟有焚圈罷坐之舉。請上博士、掌務官，竝拿問，使之改圈。”世子只從朴光世事。正言鄭宅河申前達，世子不從。

	<p>므로, 재주와 지망(地望)이 아주 합당한 자도 누락되는 일이 많습니다. 증광시(增廣試)의 한 방(榜)에 이르러서는 마침내 분권(分圈)19580) 을 불태우고 파좌(罷坐)하는 일이 있었으니, 청컨대 상박사(上博士)와 장무관(掌務官)을 나문(拿問)하고 분권을 개정하게 하소서.”</p> <p>하였는데, 세자가 단지 박광세(朴光世)의 일만 따랐다. 정언(正言) 정택하(鄭宅河)가 전에 진달했던 것을 거듭 아뢰었으나, 세자가 따르지 않았다.</p>	
<p>숙종 64권, 45년 (1719 기해 / 청 강희 (康熙) 58년) 11월 14 일(임오) 2번째기사</p>	<p>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조태채(趙泰采)가 휴가를 얻어 성묘(省墓)하고 돌아왔는데, 차자(筭子)를 올려 연로(沿路)에서 본 바를 말하기를,</p> <p>“안성(安城)·양성(陽城)·천안(天安)·직산(稷山) 등지에 도둑이 일어나 겁략(劫掠)하는 환난이 많으니, 청컨대 무취(武倅)를 차견(差遣)하여 기포(譏捕)하게 하소서.”</p> <p>하고, 또 말하기를,</p> <p>“농사가 흉작인데 양역(量役)이 바야흐로 한창이니, 옛 환곡(還穀)과 신포(身布)를 거두어 들이는 것을 일체 정지하소서. 상당성(上黨城)의 역사(役事)를 마치지 못하였는데, 생수(生手)19585) 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병사(兵使)가 개만(簡滿)19586) 이 되더라도 대신할 사람을 우선 차출(差出)하지 말고 성효(成效)를 책임지우소서.”</p> <p>하니, 세자가 모두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였다.</p>	<p>○判中樞府事趙泰采，請由省墳歸，上筭陳沿路所見，以安城、陽城、天安、稷山等地，多竊發劫掠之患，請差遣武倅，使之譏捕。 又言：</p> <p>穡事不登，量役方興，舊糴、身布，宜一併停捧。 上黨城役未畢，不可付之生手。 兵使簡滿之代，亦宜姑勿差出，以責成效。</p> <p>世子竝令廟堂稟處。</p>
<p>숙종 64권, 45년 (1719 기해 / 청 강희 (康熙) 58년) 11월 20</p>	<p>세자(世子)가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재신(宰臣)들을 인접(引接)하였다. 영의정(領議政) 김창집(金昌集)이 말하기를,</p>	<p>○戊子/世子引接大臣、備局諸宰。 領議政金昌集曰：“湖西均田使金雲澤狀言：‘朝家節目，筆墨、紙地及供饋</p>

일(무자) 1번째기사

“호서 균전사(湖西均田使) 김운택(金雲澤)이 장계(狀啓)하기를, ‘조정의 절목(節目)에 필묵(筆墨)·지지(紙地) 및 감색(監色)을 공궤(供饋)하는 수용(需用)은 모곡(耗穀)을 가져다 쓰도록 하였는데, 모곡(耗穀)은 원래 수량이 적고 또 피곡(皮穀)이므로 쥘어 먹기에 부적절합니다. 본 고을에서 공궤(供饋)하고 대신 피곡을 받게 하면 비록 수량에 준하여 대신 준다 하더라도 주채(酒債)와 찬가(饌價)로 돌아가는 데 불과하여 한갓 낭비만 됩니다. 그러므로 각 고을에서 결(結)마다 1두(斗)씩을 거두고 명년 봄에 이 수량을 헤아려 대동미(大同米)에서 감제(減除)하기를 원하고 있으니, 모곡을 낭비하는 근심이 없을 것이고, 대동의 부족한 수량은 모곡을 가지고 수를 채운다면 진실로 무방할 것입니다. 만약 대동미를 중난(重難)하다고 생각한다면, 감관이 먹는 것은 저치미(儲置米)로 충급(充給)해도 또한 좋습니다.’ 하였는데, 그 말이 매우 편호(便好)할 듯합니다. 다만 호서 뿐이 아니라, 삼남(三南)에서 일체로 저치미를 취(取)하여 쓰고 모곡으로써 상환(償還)하도록 허락함이 마땅합니다.”

하니, 세자가 옳게 여겼다. 우의정(右議政) 이건명(李健命)이 말하기를,

“근래에 외방(外方)에서 조정의 명령(命令)에 대해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오로지 천연(遷延)을 일삼아 봉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신이 호남(湖南)의 새로 설치한 진보(鎭堡)에 방군(防軍)을 주지 않고 회부미(會付米)를 획급(劃給)한 까닭에 환곡(還穀)의 일이 실로 지탱하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도내(道內)의 각 진보(鎭堡) 가운데 전선(戰船)을 겹쳐 배치한 곳에서 새로 설치한 곳에 옮겨주는 일의 편부(便否)를 도신(道臣)과 통제사(統制使) 및 좌수사(左水使)·우수사(右水使)에게 물었으나, 아직도 회보(回報)가 없습니다. 유복명(柳復明)이 북평사(北評事)에서 체차(遞差)되어 돌아와 상서(上書)하기를, ‘강원도(江原道) 은계역(銀溪驛)은 말의 수량을 줄인 후 보존(保存)할 도리가 없

監色之需，令以耗穀取用，而耗穀元來數少，又是皮穀，故不及春食，自本里供饋，代受皮穀。雖準數代給，不過歸於酒債饌價，徒爲浪費，故各邑皆願每結收一斗，明春以此數計減於大同，則耗穀無浪費之患，大同不足之數以耗穀充數，固不妨。若以大同爲重難，則監官所食，以儲置米充給，亦可’云。其言似甚便好。不特湖西而已，三南一併許以儲置米取用，以耗計償宜矣。”世子可之。右議政李健命曰：“近來外方，於朝家命令，勿論事之大小，惟事遷延，不爲奉行。今夏臣以湖南新設鎭堡，未給防軍，而劃給會付米，還穀事實難支，故道內各鎭堡中，戰船疊置處，多移給新設處便否，問於道臣及統制使、左·右水使，而尙無回報。柳復明北評事遞歸，陳書言：‘江原道銀溪驛馬減數後，無以保存，請令加立。’故問于道臣，亦無回報。慶尙道射軍，本守令貸用者，使道臣，催促收捧，而尙不舉行。事事如此，做得何事耶？三道監司及湖南帥臣，竝宜推考，而使之卽速回報宜矣。”世子從之。掌令朴弼正申前達，又言：“監察

<p>숙종 64권, 45년</p>	<p>어졌으니, 청컨대 더 세우도록 하소서.’ 하므로 도신에게 물었더니, 또한 회보가 없습니다. 경상도(慶尙道)의 수령으로서 사군목(射軍木)19588) 을 빌어 쓴 자에게 도신으로 하여금 재촉해서 수봉(收捧)하도록 하였으나, 아직 거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마다 이와 같으니,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 도의 감사와 호남의 수신(帥臣)을 아울러 추고(推考)하고, 곧 속히 회보하게 함이 마땅합니다.”</p> <p>하니, 세자가 그대로 따랐다. 장령(掌令) 박필정(朴弼正)이 전에 진달(陳達)했던 것을 거듭 아뢰고, 또 말하기를,</p> <p>“감찰(監察) 정귀서(鄭龜瑞)는 본래 용렬하고 잔단 무리인데, 외람되게 전중(殿中)19589) 의 벼슬을 제수하였으니, 청컨대 태거(汰去)하소서. 훈련 대장(訓練大將) 이홍술(李弘述)은 지극히 삼가야 할 자리에서 높은 소리로 사사로운 말을 하였으니, 청컨대 추고하소서.”</p> <p>하였으나, 세자가 따르지 않았다. 정언(正言) 정택하(鄭宅河)가 전에 진달했던 것을 거듭 아뢰고, 또 말하기를,</p> <p>“행 대사성(行大司成) 이집(李堦)은 일찍이 추조(秋曹)19590) 의 이석(貳席)19591) 에 있었을 때 병조(兵曹)의 서리(書吏)로서 인신(印信)을 몰래 찍어 본조(本曹)에 이관(移關)한 자를 구류(拘留)하지 말게 하였고, 조율(照律)하기에 미처서는 반드시 수속(收贖)하고자 하였으니, 청컨대 파직(罷職)하소서.”</p> <p>하였으나, 세자가 따르지 않았다.</p>	<p>鄭龜瑞，本以庸瑣之徒，濫授殿中之職，請汰去。訓練大將李弘述，乃於至敬之地，高聲私語，請推考。”世子不從。正言鄭宅河申前達，又言：“行大司成李堦，曾在秋曹貳席，騎省書吏之盜踏印信，移關本曹者，使之勿爲拘留，及其照律，必欲收贖，請罷職。”世子不從。</p> <p>○辛卯/諫院申前達，又言：“直講申混，</p>
--------------------	---	--

<p>(1719 기해 / 청 강희 (康熙) 58년) 11월 23 일(신묘) 1번째기사</p>	<p>“직강(直講) 신혼(申混)은 일찍이 해주(海州)를 맡았을 때 군보미(軍保米)를 가지고 사사롭게 장사를 하여 취리(取利)한 것이 셀 수가 없으며, 지난해에 급재(給災)가 자그마치 3백 80결에 이르렀는데도 민간에 나누어 급제한 것은 60여 결에 지나지 않았으니, 청컨대 사판(仕版)에서 삭제하소서. 광산 군수(郭山郡守) 이천익(李天翊)은 본래 비천(卑賤)한 사람으로서 연줄을 타고 출세 하여 일찍이 강동(江東)을 맡았을 때 오로지 사복(私腹)만 채웠으니, 청컨대 개차(改差)하소서.”</p> <p>하였는데, 세자가 말단의 일만 따랐다.</p>	<p>曾任海邑時，軍保米私自興販，取利無算，上年給災，至於三百八十結之多，而民間所分給，不過六十餘結。請削去仕版。郭山郡守李天翊，本以卑賤之人，夤緣發跡，曾任江東，專事肥己。請改差。”世子只從末端事。</p>
<p>숙종 64권, 45년 (1719 기해 / 청 강희 (康熙) 58년) 12월 9 일(정미) 1번째기사</p>	<p>세자가 하령(下令)하기를,</p> <p>“‘광성 부원군(光城府院君)의 연시(延諡)19600) 를 이달 19일로 정하였다고 하니, 1등의 음악을 내리고 연수(宴需) 및 내연(內宴)·외연(外宴)의 선운(宣醮)19601) 등의 일은 전례에 의거하여 거행하라.’고 하교(下敎)하셨는데, 이는 응당 거행해야 하는 은전(恩典)이므로 성교(聖敎)가 이와 같았던 것이다. 다만 시호(諡號)를 내릴 때 음악을 내리는 일은 폐지할 수 없으나, 지금 성상의 환후(患候)가 더하여 상하(上下)가 애를 태우고 어쩔 줄 모르고 있는 때에 선운(宣醮) 등의 일을 한결같이 평소와 같이 한다면 본가(本家)에서도 반드시 불안(不安)해 할 것이니, 어떻게 하는 것이 알맞겠는가? 해조(該曹)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라.”</p> <p>하자, 예조(禮曹)에서 복주(覆奏)하기를,</p> <p>“단지 반시(頒諡)할 때에만 음악을 내리고 내연(內宴)과 외연(外宴)의 선운(宣</p>	<p>○丁未/世子下令曰：“光城府院君延諡，定於今月十九日云。一等賜樂，宴需、內外宣醮等事，依例舉行，爲敎。此是應行之典，聖敎固應如此矣。第賜諡時賜樂，不可廢，而卽今聖候有加，上下焦遑，宣醮等事，一如常時，則本家亦必不安，何以則得中耶？令該曹稟處。”禮曹覆奏言：“但於頒諡時賜樂，至於內外宣醮及宣醮時賜樂，竝皆停減，以示上下同憂之意，恐爲得宜。”世子答曰：“竝停內外宣醮，太涉埋沒。只設外宣醮，延諡時本家如有所需，參酌輸送。”</p>

	<p>醜) 및 선은 때 음악을 내리는 것은 아울러 모두 정감(停減)하여 상하가 함께 근심하는 뜻을 보이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p> <p>하니, 세자가 답하기를,</p> <p>“내연과 외연의 선은을 아울러 정지하는 것은 너무 매몰(埋沒)하는 데 관계되니, 단지 외연의 선은만 베풀고, 연시(延諡)할 때 본가의 수용(需用)을 참작해서 실어 보내도록 하라.”</p> <p>하였다.</p>	
<p>숙종 64권, 45년 (1719 기해 / 청 강희 (康熙) 58년) 12월 20 일(무오) 1번째기사</p>	<p>세자가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재신(宰臣)들을 인접(引接)하였다. 우의정(右議政) 이건명(李健命)이 말하기를,</p> <p>“일찍이 전에는 춘첩자(春帖子)19606)의 영상시(迎祥詩)를 지어 바칠 때 대제학(大提學)이 패초(牌招)받아 대궐에 나아가 운(韻)을 내면 뽑힌 자들도 대궐에 나아가 지어서 바쳤는데, 근래에는 모두 집에서 지어서 보낸다 하니, 이 또한 태만한 습관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번부터 춘첩자는 마땅히 궐중(闕中)에 나아가서 지어 바치게 하소서.”</p> <p>하니, 세자가 옳게 여겼다. 지돈녕(知敦寧) 민진원(閔鎭遠)이 말하기를,</p> <p>“근래에 기강(紀綱)이 해이해져서 각 고을의 공부(貢賦)·군포(軍布) 등의 물건을 모리배(牟利輩)들이 중간에서 모두 방납(防納)하여 외방(外方)에서 받아 내고는 경중(京中)에 도착하면 곧 상납(上納)하지 않으므로 각 아문(衙門)의 용</p>	<p>----- ----- ----- --</p> <p>○戊午/世子引接大臣、備局諸宰。 右議政李健命曰：“曾前春帖子迎祥詩</p>

	<p>도(用度)가 구간(苟簡)하니, 일이 지극히 한심합니다. 이후로 방납하는 무리를 포청(捕廳)에 이송(移送)시켜 엄중하게 다스려 독촉해서 받아들이되, 기한 안에 바치지 않는 자는 바로 강도(強盜)와 다름없으니, 형조(刑曹)에 보내어 부대시 참형(不待時斬刑)19607) 에 처하소서. 그리고 수령으로서 알면서도 모르는 체하는 자도 또한 마땅히 나문(拿問)하소서.”</p> <p>하자, 영의정(領議政) 김창집(金昌集)이 말하기를,</p> <p>“근래에 방납의 폐해(弊害)가 한정이 없으나, 부대시 참형에 처하는 데 이르러서는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포청으로 하여금 장형(杖刑)으로 다스려 죄를 징계해도 또한 뒷날의 폐단을 막을 수 있습니다.”</p> <p>하자, 민진원이 말하기를,</p> <p>“국가(國家)의 재물 4, 5천 금을 중간에서 도둑질해 먹은 자는 곧 도둑 중에서도 큰 도둑이니, 부대시 참형에 처하는 것이 지나친 줄을 모르겠습니다.”</p> <p>하였는데, 이견명이 말하기를,</p> <p>“이러한 무리는 장물(贓物)을 계산하여 많을 경우 비록 사율(死律)에 이르더라도 또한 불쌍히 여길 것이 못 되나, 곧바로 부대시 참형으로 감단(勘斷)하는 것은 끝내 너무 지나친 듯합니다.”</p> <p>하니, 세자가 장물을 계산하여 논단(論斷)하게 하였다. 병조 판서(兵曹判書) 이만성(李晩成)이 말하기를,</p>	<p>製進時，大提學承牌詣闕出韻，則被抄者亦進闕中製述矣。 近來則皆在家製送云，此亦出於怠慢之習。 自今番春帖，宜令竝詣闕中製進矣。” 世子可之。 知敦寧閔鎮遠曰：“近來紀綱解弛，各邑貢賦、軍布等物，中間牟利輩，盡爲防納，受出於外方，而來到京中，不卽上納，故各衙門用度苟簡，事極寒心。 此後防納之徒，移送捕廳，嚴治督捧，而限內未納者，便是強盜，送于刑曹，不待時處斬，守令之知而不知者，亦宜拿問矣。” 領議政金昌集曰：“近來防納之弊，罔有紀極，而至於不待時處斬，未知如何。 令捕廳，亂杖懲罪，亦可杜後弊矣。” 鎮遠曰：“國家財物四五千金，中間偷食者，卽盜之大者，不待時處斬，未知其過矣。” 健命曰：“此類計贓多者，雖至死律，亦不足恤，而直勘以不待時處斬，終似太遽。” 世子令計贓論斷。 兵曹判書李晩成言：“武士之有承傳而久滯者，年前上言訴冤，而兵曹窠闕甚少，故未盡霑恩，以爲抑鬱矣。 兩西屯別將、山城別將、津渡五處別將等任，猶勝於全未蒙恩云，故曾以此定</p>
--	--	---

	<p>“무사(武士)로서 승전(承傳)하여 오랫동안 정체(停滯)된 자가 근년에 상언(上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였는데, 병조(兵曹)는 과궐(窳闕)이 매우 적기 때문에 미처 은혜를 입지 못하여 억울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양서(兩西)의 둔별장(屯別將)·산성 별장(山城別將), 진도(津渡)의 다섯 군데 별장 등의 직임(職任)은 그래도 전혀 은혜를 입지 못한 것보다 낫다고 하므로, 일찍이 이로써 정탈(定奪)하였으나 아직 절목(節目)을 정하지 못하였으니, 청컨대 이제부터 시작해서 절목을 만들어 달하(達下)해서 거행하게 하소서.”</p> <p>하니, 세자가 옳게 여겼다. 이만성이 또 말하기를,</p> <p>“내삼청(內三廳)의 말사(末仕)를 옛날에는 이조에 보내어 승륙(陞六)시켰는데, 근래에 대신(大臣)이 ‘이조(吏曹)에서 승륙시킨 후 대부분 그대로 작산(作散)19608) 하니, 억울하게 여긴다.’ 하고, 다시 이조에 보내지 않는 것으로 품정(稟定)하였습니다. 대저 수문장(守門將) 등속은 감찰(監察) 등의 벼슬을 할 수 없어서 쉽게 작산(作散)되지만, 선전관(宣傳官) 등속은 감찰·수령(守令) 등의 벼슬을 삼을 수 있는데도 이조에서 저지받는다 하여 도리어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선전관과 부장의 말사(末仕)는, 청컨대 전례에 의거하여 이조에 보내고 훈련원 수문장은 병조에 보내소서.”</p> <p>하니, 세자가 옳게 여겼다. 지평(持平) 김민택(金民澤)이 전에 진달(陳達)했던 것을 거둬 아뢰었으나, 세자가 따르지 않았다.</p>	<p>奪，而尙未定節目。請自今爲始，作爲節目，達下舉行。”世子可之。晚成又言：“內三廳未仕，昔則送于吏曹陞六矣，近來大臣以爲：‘吏曹陞六後，仍多作散爲冤’，稟定不復送吏曹，而大抵守門將之屬，不得爲監察等職，固易作散，而宣傳官之類，可爲監察、守令等職，以見阻吏曹，反爲稱冤。此後宣傳官、部將末仕，請依前送于吏曹，訓練院守門將，送于兵曹。”世子可之。持平金民澤申前達，世子不從。</p>
<p>숙종 64권, 45년 (1719 기해 / 청 강희 (康熙) 58년) 12월 21</p>	<p>예조(禮曹)에서 계청(啓請)하기를, “정월(正月) 초8일 진하(陳賀)할 때에 각도의 방물(方物)과 물선(物膳)을 전례에 의거하여 거행하소서.”</p>	<p>○禮曹啓請於正月初八日陳賀時，各道方物物膳，依例舉行，上命勿爲封進。禮曹復達于東宮曰：“此雖出於聖上軫</p>

<p>일(기미) 3번째기사</p>	<p>하였으나, 임금이 명하여 봉진(封進)하지 말도록 하였다. 예조에서 다시 동궁에 진달하기를, “이것이 비록 성상께서 불쌍히 여겨 절생(節省)하는 지극한 뜻에서 나왔으나, 폐지할 수는 없으니, 전례에 의거하여 봉진하게 하소서.” 하니, 세자가 봉진하도록 하였다.</p>	<p>恤節省之至意，而不可廢闕，請依例封進。”世子令封進。</p>
<p>숙종 65권, 46년 (1720 경자 / 청 강희(康熙) 59년) 1월 5일 (임신) 2번째기사</p>	<p>세자가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재신(宰臣)들을 인접(引接)하였다. 영의정(領議政) 김창집(金昌集)이 말하기를, “호남 균전사(湖南均田使) 김재로(金在魯)가 양안(量案)을 수정(修正)하는 일 때문에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해야 할 것을 원하였습니다. 균전사가 체류하면서 다 수정하기를 기다린다면 폐해를 끼치는 것이 반드시 적지 않을 것이고, 서울로 올라온 뒤에 균전청(均田廳)을 설치하여 수정한다면 폐해를 덜 수가 있을 것이니, 마땅히 허락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우의정(右議政) 이건명(李健命)이 말하기를, “김운택(金雲澤)이 진달한 바에 의거해서 균전사가 본도(本道)에 있을 때 각 고을의 문서(文書)를 양전(量田)을 끝마치는 대로 즉시 수정하되, 미처 수정하지 못한 것들은 올라온 뒤에 마감(磨勘)하는 것이 편리하고 좋을 듯합니다.” 하니, 세자가 옹계 여겼다. 김창집이 또 말하기를, “김운택이 양전하는 일이 바야흐로 한창이라 하여 호적(戶籍)을 늦출 것을 원하였는데, 삼남(三南)을 모두 가을쯤으로 늦추어서 시행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무방하겠습니다.”</p>	<p>○世子引接大臣、備局諸宰。領議政金昌集曰：“湖南均田使金在魯，以修案事，乞令廟堂稟處矣。均田使留待畢修，貽弊必不貲，上京後設廳修正，可以省弊，宜許之矣。”右議政李健命曰：“依金雲澤所達，均田使在本道時，各邑文書，隨其畢量，旋即修正，而未及修正者，上來後磨勘，似爲便好矣。”世子可之。昌集又言：“金雲澤以量役方張，乞退戶籍，三南竝許待秋退行無妨矣。”世子許之。昌集又曰：“東萊守臣狀言：‘倭公木作米，年限既盡之後，不可復許之意，據理責諭，則倭人等以爲：「對馬一島，有山無野，生(穀) [穀] 無地，故本島人民，只仰此米。得之則生，不得則飢，關係甚重。況七十年作木之米，一時停罷，則島中生涯，自此絕矣。」縷縷懇請’云，而請令廟堂稟處矣。馬島既非產穀之地，因其所請，公作米許給，其來</p>

	<p>하니, 세자가 허락하였다. 김창집이 또 말하기를,</p> <p>“동래 부사(東萊府使)가 장계(狀啓)를 올리기를, ‘왜(倭)의 공목 작미(公木作米)19621) 는 연한이 이미 다한 뒤에는 다시 허가할 수 없다는 뜻으로 사리에 의거해 책유(責諭)하였더니, 왜인(倭人) 등이 말하기를, 「대마도(對馬島)는 산만 있고 평야가 없어 곡식이 생산되는 곳이 없기 때문에, 본도(本島)의 인민(人民)들은 다만 이 쌀만 바라고 있습니다. 이 쌀을 얻으면 생존할 수 있지만 얻지 못하면 굶주리게 되니, 관계가 매우 중대합니다. 더구나 70년 동안의 작목미(作木米)를 일시에 정파(停罷)해 버리면 섬에 사는 사람들의 목숨은 이로부터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면서 누누이 간청하였습니다.’ 하며,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할 것을 청하였습니다. 대마도는 이미 곡식을 생산하는 지역이 아니라 그들의 청에 따라 공작미를 지급하도록 허락한 것이 그 유래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한이 이미 다 되면 번번이 연한을 늦출 것을 청하곤 하니, 이는 실로 계속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시종 막아버리는 것도 곤란하니, 다시 5년을 한정하여 허락하는 것이 또한 무방할 듯합니다.”</p> <p>하니, 세자가 옳게 여겼다. 김창집이 말하기를,</p> <p>“신(臣)이 생각한 바가 있어서 감히 진달합니다. 저하(邸下)께서 대리(代理)하신 지 지금 이미 4년이 되었습니다. 국사(國事)에 대해서 아마 이미 명백히 익히셨을 듯한데, 언제나 신료(臣僚)를 인접(引接)할 때면 너무 심하게 침묵을 지키시고, 수작하는 즈음에 간혹 분명함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신하들이 마음속으로 자못 답답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이 점에</p>	<p>已久。 年限既盡， 則輒以退年爲請， 實是難繼之道， 而有難終始防塞， 更以限五年許之， 亦或無妨。” 世子可之。</p> <p>昌集曰：“臣有所懷， 敢達耳。 邸下代理已四年于茲矣。 國事想已明習， 而每當引接臣僚之時， 淵默太甚， 酬酢之際， 或欠分明， 故群情頗以爲憫鬱。 伏望留意於斯， 雖承旨入對時， 大小章牘， 必論其可否， 聽其所陳， 上下論難， 則所益豈小耶？” 世子曰：“當留意焉。” 健命曰：“領相所陳， 誠甚切實矣。 以否、泰卦言之， 天地不交爲否， 而萬物不遂， 天地相交爲泰， 而陰陽升降， 二氣相流， 萬物和泰矣。 人君體天行道， 虛己翕受， 則上下交孚， 而群情無壅矣。 目今民生之困瘁極矣， 國政之解弛甚矣。 邸下每思之曰：‘何以則可以求得一分？’ 孜孜不怠， 念念在茲， 則其於爲治之道， 豈無效乎？ 方當歲首， 尤宜克體上天， 布施德政矣。”</p> <p>昌集曰：“臣先陳大略， 而右相又如是陳達， 乞加體念。 至於學問工夫， 尤不可須臾放過， 近在侍湯之中， 久廢書筵。 雖其勢固然， 亦於少暇時， 輒披閱書史， 則自有沈潛融會之益矣。” 知</p>
--	---	--

유의하시어 비록 승지가 입대(入對)할 때라도 크고 작은 장독(章牘)에 대해 반드시 그 가부(可否)를 논하시고 그 진달하는 바를 듣고서 논란(論難)에 대해 분별해 주신다면 보탬이 되는 바가 어찌 적겠습니까?

하니, 세자가 말하기를,

“마땅히 유의(留意)하겠습니다.”

하였다. 이견명이 말하기를,

“영상(領相)이 진달한 바가 진실로 매우 절실합니다. 비괘(否卦)와 태괘(泰卦)를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천지(天地)가 교합(交合)하지 못하는 것이 비(否)로서 만물(萬物)이 이루어지지 않고, 천지가 교합하는 것이 태(泰)로서 음양(陰陽)이 승강(升降)하고 두 기운이 서로 유행하여 만물이 화태(和泰)하게 됩니다. 인군(人君)이 하늘을 본받아 도(道)를 행하고 자신을 비우고 합하여 받아들인다면 위아래가 서로 믿고 못 사람의 마음이 막힘이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 민생(民生)이 극도로 곤궁하고 지쳐있으며, 국정(國政)이 극도로 해이해져 있습니다. 저하께서 언제나,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구제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어 부지런히 노력하며 게을리하지 않으시고 모든 생각을 여기에 두신다면, 정치를 하는 방도에 있어 어찌 효험이 없겠습니까? 바야흐로 한 해의 첫머리를 당하였으니, 더욱 마땅히 상천(上天)을 본받아 덕정(德政)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하고, 김창집이 말하기를,

敦寧閔鎮遠曰：“凡事會精而後，是非所在，自可知之。勿論大小事，採聽群下之言，審察是非，權衡事宜，則知慮漸長矣。”世子曰：“當留意矣。”應教金相玉曰：“俄者兩大臣所達，懃懇切實，邸下既許留意，無容更達，而第自前筵中，有陳戒者，邸下每以留意答之，而其後未見有另加留意之效。且聞承旨入對時，大小章奏，泛然一讀，則邸下曾不留意，輒多循例下答云，此尤群情之所悶也。此後願勿如前泛聽，有未及領會處，則使承旨更讀，雖至屢讀，亦無妨。然則國事幸甚，而可慰大朝付托之意矣。且伏見邸下對臣僚之際，殊欠嚴毅，而時或疲倚。況大臣今方入侍，其在敬待之道，尤不宜若是。伏望加意於九容之義。”世子曰：“當留意矣。”

“신이 먼저 대략(大略)을 진달하였는데, 우상(右相)이 또 이와 같이 진달하니, 원컨대 깊이 유념을 더하소서. 학문과 공부에 이르러서는 더욱 잠시라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일인데, 요사이 시탕(侍湯)하는 중에 있으시어 오랫동안 서연(書筵)을 폐하였습니다. 비록 사세가 참으로 그렇긴 하지만, 또한 조금이라도 여가가 있을 때 곧 서사(書史)를 펼쳐 읽는다면, 절로 침잠(沈潛)·융회(融會)의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지돈녕(知敦寧) 민진원(閔鎭遠)이 말하기를,

“모든 일은 정신을 모은 뒤에야 시비(是非)의 소재를 스스로 알 수 있으니, 크고 작은 일을 물론하고 여러 신하들의 의견을 거두어 들어 보셔서 시비를 살피고 일의 정당함을 저울질한다면 지려(智慮)가 점차 증진될 것입니다.”

하니, 세자가 말하기를,

“마땅히 유의하겠다.”

하였다. 응교(應敎) 김상옥(金相玉)이 말하기를,

“조금 전에 두 대신(大臣)이 진달한 바는 근간(勸懲)하고 절실하며, 저하께서는 이미 ‘유의하겠다.’고 허락하셨으니, 다시 더 진달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다만 종전부터 연중(筵中)에서 진계(陳戒)하는 것이 있으면 저하께서 언제나 ‘유의하겠다.’고 답하였으나, 그 뒤에 특별히 ‘유의’를 더하는 실효가 있음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듣건대 승지가 입대할 때에 크고 작은 장주(章奏)를 대충 한 번 읽고 나면 저하께서는 일찍이 유의하지 않으시고 번번이 예에

	<p>따라 답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이점은 더욱 여러 신하들이 마음에 민망하게 여기는 바입니다. 이 뒤부터는 종전처럼 대충 듣지 마시고, 채 이해되지 않는 곳이 있으면 승지로 하여금 다시 읽도록 하여 주시길 바라며, 비록 여러 차례 읽게 된다 하더라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국사(國事)는 매우 다행스러워질 것이고, 대조(大朝)19622) 께서 부탁하신 뜻도 위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삼가 보건대 저하께서는 신료를 대하는 즘음에 자못 엄하고 굳센 태도가 결여되어 있고, 때로는 간혹 피곤하여 기대시기도 하십니다. 더구나 대신이 지금 바야흐로 입시하고 있으니 그 공경히 대우하는 도리에 있어서 더욱 마땅히 이와 같이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구용(九容)19623) 의 의미에 대하여 더욱 유의하도록 하소서.”</p> <p>하니, 세자가 말하기를,</p> <p>“마땅히 유의하겠습니다.”</p> <p>하였다.</p>	
<p>숙종 65권, 46년 (1720 경자 / 청 강희(康熙) 59년) 1월 25일(임진) 2번째기사</p>	<p>세자가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들을 인접(引接)하였다. 우의정(右議政) 이건명(李健命)이 말하기를,</p> <p>“경기 감사(京畿監司) 이조(李肇)가 장계(狀啓)를 올리기를, ‘지난해에 참혹한 수재(水災)를 입은 해변(海邊)과 강변(江邊)은 종자(種子)와 농사철의 양식을 나누어 줄 수가 없으니, 청컨대 남한 산성·북한 산성과 강도(江都)의 쌀 각 3천 석(石)과 진휼청(賑恤廳)의 경창(京倉) 쌀 5천 석 및 새로 받는 환상(還上)의 모곡(耗穀)19645) 을 얻었으면 합니다.’ 하였습니다. 기내(畿內)는 토질이 척박하고 백성이 빈곤합니다. 더욱이 재앙을 당한 해에는 마땅히 별도의 고흘</p>	<p>○世子引接大臣、備局諸臣。右議政李健命曰：“京畿監司李肇狀言：‘上年濱海沿江，慘被水災處，種子農糧，無所分給，請得南·北漢、江都米各三千石，賑恤廳京倉米五千石及新還上耗穀矣。畿內土瘠民貧。況當被災之歲，宜有別樣顧恤之舉，而北漢則自有元定之邑，不可舉論。賑廳米所貯不敷，只許江都、南漢米各二千石，耗穀則使</p>

(顧恤)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 산성은 원래 정해둔 고을이 있으니 거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흥청에 저축된 쌀도 넉넉하지 못하니, 단지 강도와 남한 산성의 쌀 각각 2천 석을 허락하고, 모곡은 절반을 취해서 쓰도록 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하고, 강화 유수(江華留守) 어유귀(魚有龜)는 말하기를,

“본부(本府)의 곡식 수량이 크게 줄어들어 실로 지급을 허락하기 어렵습니다.”

하니, 세자가 수량에 따라 나누어 주도록 하였다. 병조 판서(兵曹判書) 이만성(李晩成)이 말하기를,

“지난번 강화의 전(前) 유수(留守) 심택현(沈宅賢)이 본부(本府) 각진(各鎭)·보(堡)의 급대목(給代木)을 병조에서 곧바로 내려 보내지 않는다고 하여, 이 다음부터는 병조로 하여금 군정(軍丁)을 본부(本府)에 떼어 주도록 하고, 본부에서 거두어 들여 급대(給代)할 것을 청하자, 묘당(廟堂)에서 복주(覆奏)하여 시행을 허락하였습니다. 대저 ‘급대’의 규정은 종전에는 비국(備局)에서 여정(餘丁)의 목면으로 계산해 지급했습니다. 그러다가 병인년(1964)에 고(故) 상신(相臣) 김수항(金壽恒)이 비국에서 상하(上下) 19647) 하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여 병조로 이송(移送)했고, 병조로 하여금 징수하여 급대하게 하였습니다. 한 달 동안에 지급하는 것은 7동(同)이며, 이를 통계하면 84동이 되는데, 여정은 대정(代定)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점차 세월이 흐르자 축이 나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부득이 이군색(二軍色) 19648) 이 받는 것을 가지고 그때그때 보내 주다 보니 자연히 시일을 지체하게 되었습니다. 군정(軍丁)을 떼어주

之折半取用爲宜。” 江華留守魚有龜言：“本府穀數大縮，實難許給。”世子令依數割給。 兵曹判書李晩成曰：“頃者江華前留守沈宅賢，以本府各鎭堡給代木，兵曹不爲趁卽下送，請自今後，令兵曹割給軍丁于本府，自本府收捧給代，而廟堂覆奏許施矣。 大抵給代之規，曾前則備局以餘丁木計給矣，丙寅年，故相臣金壽恒，以自備局上下爲未安，移送兵曹，使本曹徵捧給代。一月所給乃七同， 通計則爲八十四同，而餘丁無代定之規， 年久漸至耗縮。不得已以二軍色所捧，隨得隨送，自致遷就矣。 至於割給軍丁，則終有所重難， 他無變通之道。 卽今備局餘丁，尙有七百餘名，若令廟堂，盡數移送于兵曹，以爲添補給代之地，而且江華船頭浦收稅之穀，曾以隨捧給代定式，而本府亦有若干除撥木及年終會錄餘米，一月給代，自本府足以辦出。 自今後，一朔給代，本府擔當，十一朔給代，自本曹下送， 似爲便好矣。” 健命曰：“所謂除撥木，不過五六同。 江華本無木布出處，試射賞格之際，例多用處。 年終餘米， 其數無多， 上年沈宅賢所

는 문제에 있어서는 끝내 어려운 바가 있으므로 달리 변통할 방도가 없습니다. 지금 비국의 여정이 아직도 7백여 명이나 있으니, 만일 묘당으로 하여금 있는 수대로 병조로 이송하게 한다면 급대를 더 보충하는 바탕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의 선두포(船頭浦)에서 수세(收稅)하는 곡식을 일찍이 ‘거두는 대로 급대하는 것’으로 정식(定式)하였고, 본부(本府)에도 또한 약간의 제발목(除撥木)과 연말 회록(會錄)19649)의 잉여 미곡[餘米]이 있으니, 한 달의 급대는 본부(本府)에서 충분히 마련해 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후로는 한 달의 급대는 본부에서 담당하고 열한 달 동안의 급대는 본조(本曹)에서 내려 보내는 것이 편리하고 좋을 듯합니다.”

하자, 이견명이 말하기를,

“이른바 제발목이란 5, 6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강화는 본래 포목이 나오는데가 없지만, 활쏘기를 시험하고 상전(賞典)을 내리는 즈음에 으레 사용처가 많습니다. 연말에 가서 남은 쌀이라야 그 수량이 많지 않아 지난해 심택현이 보고한 것이 50석에 불과하였으니, 어디에 보태 쓸 수가 있겠습니까? 비국의 여정을 있는 수대로 병조로 이송해 추이(推移)하여 보충해서 지급하게 하는 것이 무방할 것입니다.”

하니, 세자가 말하기를,

“연속해서 보충해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이만성이 말하기를,

報, 不過五十石, 何所補用乎? 備局餘丁, 則盡數移送于兵曹, 使之推移充給無妨矣。”世子曰: “連續充給可也。”晚成曰: “武兼五十窠內, 十二窠乃參下, 而壬子年因參上積滯, 其中六窠陞作參上矣。即今出身、取才之類甚多, 無以調用, 請參上六窠, 更作參下, 推移擬差。”世子許之。禮曹判書權尙游曰: “頃因李晚成所達, 各處津渡別將, 以承傳人差出事定奪矣。松坡屯、三田渡, 與他津有異, 故自前屬之守禦廳, 以守禦將校爲別將, 而津夫子枝及江邊人募得, 俾成一哨。松坡近處所謂甲士屯, 亦有一哨之軍, 爲千摠所領, 津夫亦一體屬之, 每於春後, 出送千摠於津頭點閱, 使知信地, 守堞軍官之在傍近者, 亦爲抄出, 使之同參於點閱時。今若以承傳之人, 自兵曹差送別將, 則此等事, 將至廢闕。松坡、三田別將, 則依前自守禦廳差送, 不然則兵曹承傳人膽來, 擇其可合者, 自本廳擬望以送, 自兵曹入達, 似好矣。”世子可之。持平洪龍祚申前達, 至長湍松西面事, 世子未及答, 有慶進白: “茲事臣於自西關上來時, 目見其

“무겸(武兼)19650) 50자리 안에서 12자리가 참하(參下)19651) 인데, 임자년 19652) 에 참상(參上)19653) 이 적체되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여섯 자리를 올려 참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출신(出身)19654) ·취재(取才)19655) 의 무리가 매우 많아 조용(調用)할 수가 없으니, 청컨대 참상 여섯 자리를 다시 참하(參下)로 만들고 추이(推移)해 의차(擬差)하게 하소서.”

하니, 세자가 허락하였다. 예조 판서(禮曹判書) 권상유(權尙游)가 말하기를,

“지난번 이만성의 진달로 인해 각처의 진(津)·도(渡)의 별장(別將)을 승전(承傳)하는 사람으로 차출(差出)하는 일로 정탈(定奪)19656) 하였습니다. 그런데 송파둔(松坡屯)과 삼전도(三田渡)는 다른 진(津)과 다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전부터 수어청(守禦廳)에 소속시켜 수어청의 장교(將校)를 별장으로 삼고, 진부(津夫)19657) 의 자지(子枝)19658) 와 강변(江邊)에 사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한 초[一哨]를 만들게 하였습니다. 송파 근처에 이른바 갑사둔(甲士屯)이라는 곳에도 또한 한 초의 군대가 있는데, 천총(千摠)의 관할로 되어 있고, 진부도 또한 일체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매년 봄이 지난 뒤에 천총을 진두(津頭)에 내보내어 점열(點閱)하여 신지(信地)를 알게 하고, 근방에 있는 성가퀴를 수비하는 군관(軍官)들도 또한 초출(抄出)하여 점열한 때 같이 참가하도록 해왔는데, 지금 만일 승전하는 사람을 병조에서 별장으로 차송(差送)한다면, 이러한 일들은 장차 폐기될 것입니다. 송파와 삼전의 별장은 종전처럼 수어청에서 차송하든가, 그렇지 않을 경우 병조의 승전하는 사람을 베껴와서 사람을 고르고 본청(本廳)에서 의망(擬望)하여 보내면, 병조에서 들어가 주달(奏達)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세자가 옳게 여겼다. 지평(持平) 홍용조(洪龍祚)가 종전에 진달했던 것

形勢矣。松都自滿月臺以下，盡爲空廣，操鍊之場，無處不可。且一時陣場，雖或可惜，豈可因此，以土地人民，公然割給乎？今此臺達，不可不從矣。”世子從之。龍祚又言：“閭閻之間，巫風日盛，風俗之壤亂，財產之耗蠹，未必不由於此。請令漢城府，查出巫女之在城中者，盡爲驅出城外。”世子只從巫女驅逐事。文學申諭言：“雖在嘗藥中，講學何可廢，而書筵、召對，久輟。請今後五日之中，四日承旨持公事入對，一日召對宮官，以爲定規，則似爲兩便矣。”健命曰：“文學所達是矣。帝王家爲治之本，專在於學問，而近來講劄之功，未免全廢。雖在侍湯中，間行召對，何妨乎？卽今承旨逐日入對，可謂勤政矣，而邸下一向淵默，無講究之事，入對之臣，一遍讀過，書出依下而已，有勤政之名，無勤政之實。今後召對，則與儒臣，反復論難，深求誠正、格致之功，入對時，則軍國事務、生民休戚，反復咨詢，則既可以開發聰明，亦可知群下之能否矣。”世子曰：“當加意焉。”

을 거듭 아뢰고, 장단(長湍) 송서면(松西面)의 일을 언급하였는데, 세자가 미처 답하기 전에 김유경(金有慶)이 나아가 아뢰기를,

“이 일은 신이 서관(西關)에서 올라올 때에 그 형세를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송도(松都)는 만월대(滿月臺)로부터 그 이하가 죄다 텅텅 비어 조련(操鍊)의 장소로서 어느 곳도 불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때 진장(陣場)이 되는 것이 비록 혹시 아깝다 하더라도 어찌 이것으로 인하여 토지(土地)와 인민(人民)을 공연히 떼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 대간(臺諫)의 진달은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세자가 그대로 따랐다. 홍용조가 또 말하기를,

“여염(閭閻)에 무속(巫俗)이 날로 성하니, 풍속이 무너지고 어지러워지는 것과 재산의 손실이 여기에서 말미암지 않는다고 기필할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한성부(漢城府)로 하여금 무녀(巫女)로서 성중(城中)에 있는 자를 조사해 내어 모조리 성 밖으로 내쫓도록 하소서.”

하였는데, 세자가 다만 무녀를 내쫓는 일만 따랐다. 문학(文學) 신태(申燾)이 말하기를,

“비록 상약(嘗藥)19659) 하는 중에 있을지라도 강학(講學)을 어찌 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서연(書筵)·소대(召對)를 오랫동안 정지하였습니다. 청컨대 이 뒤로부터는 5일 가운데 4일은 승지가 공사(公事)를 가지고 입대(入對)하고, 하루는 궁관(宮官)을 소대하여 이것을 정규(定規)를 삼는다면, 두 가지가 다 편리할 듯합니다.”

	<p>하였는데, 이견명이 말하기를,</p> <p>“문학(文學)이 진달한 바가 옳습니다. 제왕가(帝王家)의 정치하는 근본은 오르지 학문에 있는데, 근래에 강마(講磨)의 공부를 전폐(全廢)함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비록 시탕(侍湯)하는 중에 있을지라도 간간이 소대하는 것이야 무슨 해될 것이 있겠습니까? 지금 승지가 날마다 입대하고 있으니, 정사에 부지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하(邸下)께서는 한결같이 침묵만을 지키시어 강구(講究)하는 일이 없으시고, 입대하는 신하가 한 번 읽고 나면 답서가 의례적으로 내려질 뿐이니, 정사에 부지런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정사에 부지런한 실상이 없습니다. 이 뒤로부터 소대하면 유신(儒臣)과 더불어 반복해 논란(論難)하여 깊이 성의(誠意)·정심(正心)·격물(格物)·치지(致知)의 공부를 탐구하시고, 입대 때는 군국(軍國)의 사무(事務)와 생민(生民)의 휴척(休戚)에 대해 반복해서 자문을 구하신다면, 이미 총명(聰明)을 개발할 수 있고, 또한 여러 신하들의 유능 여부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p> <p>하니, 세자가 말하기를,</p> <p>“마땅히 더 유의하겠습니다.”</p> <p>하였다.</p>	
<p>숙종 65권, 46년 (1720 경자 / 청 강희(康熙) 59년) 1월 27일(갑오) 2번째기사</p>	<p>사간원(司諫院)에서 말하기를,</p> <p>“각 고을과 각진(各鎭)·포(浦)의 수군의 쌀을 절반을 창고에 남겨 두는 것은 법의 근본 취지가 있는 것인데, 담당 관원들이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전량을 모조리 나누어 주거나 또는 이익을 좋아하는 자가 전량을 모조리 판매하므로,</p>	<p>○諫院言：“各邑各鎭浦舟師米，一半留庫，法意有在，而爲官守者，不遵令憲，盡數俵給，或有嗜利者，沒數興販，罄庫無儲。請每趁六七月，發遣備局</p>

	<p>창고에 하나도 비축된 것이 없습니다. 청컨대 매년 6, 7월 경에 비변사의 낭관(郎官)을 보내어 부정(不正)한 짓을 적발하도록 하소서.”</p> <p>하니, 세자가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였다.</p>	<p>郎摘奸。”世子令廟堂稟處。</p>
<p>숙종 65권, 46년 (1720 경자 / 청 강희 (康熙) 59년) 2월 4일 (신축) 2번째기사</p>	<p>우의정(右議政) 이건명(李健命)이 차자(筴子)를 올렸다. 그 대략에 이르기를,</p> <p>“지난번에 감영(監營)에 내린 분공(分供)하라는 명령은 실로 경비를 절감하자는 의도에서 나온 것인데, 여러 도(道)에서 대부분 종전 그대로 할 것을 청하면서 모두가 체모(體貌)의 손상을 말했습니다. 이번에 분공(分供)하라는 뜻은 대개 하관(下官)의 진공(進供)이 사치스럽고 자기(自己)의 취양(取養)이 절제가 있음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절제가 있는 것에 대해 꺼리어 반드시 체모에 핑계를 대니, 그렇다면 두연(杜衍)19662)의 면(麵) 한 그릇, 밥 한 사발은 진실로 취할 것이 없고, 하중(何曾)19663)의 날마다 만전(萬錢)을 먹는 것이라야 바야흐로 체모를 얻었다고 이를 수 있겠습니까? 일전에 대피(臺避) 가운데, ‘국운(國運)은 장구하게 열리고 기로(耆老)는 조정에 가득하다.’ 한 것은 실로 성세(聖世)의 드물게 있는 경사입니다. 그런데, 허윤(許琿)의 근력(筋力)은 아직 쇠패(衰敗)하지 않았는데 탄핵을 받았으니, 진실로 뜻밖입니다. 이로부터 이후로 기로(耆老)의 신하가 모두 불안한 생각을 품고 사퇴하는 사태가 시끄럽게 일어날 것이니, 신은 실로 개탄스럽습니다. 무녀(巫女)가 성(城) 안에 거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비록 옛 제도라고 하지만, 이미 일시에 완전히 거주하는 것을 개혁할 수 없다면 수백 명이 살 곳을 잃는 것에 대한 근심도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필몽(朴弼夢)의 처사(處事)는 비록 매우 정당함을 잃은 것이기는 하지만, 이미 가부(可否)를 물어놓고 그의 말이 나오자마자 뒤따라 문책을 했으니, 만일 후일의 폐단을 염려한다면 그 벌(罰)을 중지해야 마땅합니다. 후사(喉司)의 직책은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고생하는 자리인데, 날마다 입대(入對)한 뒤로부터는 사람들이</p>	<p>○右議政李健命上筴。略曰：</p> <p>頃日監營分供之令，實出於省費之意，而諸路多請仍舊，皆以體貌之傷損爲言。今此分供之意，蓋慮下官之進供易侈，自己之取養，有節故也，而憚於有節，必藉重於體貌。然則杜衍之一麪一飯，固不足取，而何曾之日食萬錢，方可謂得體耶？向日臺避中，運啓靈長，耆老盈庭云者，實是聖世稀有之慶，而許琿筋力，尙不衰敗，彈劾之來，誠是意外。自此以後，耆老之臣，舉懷不安，辭退紛紜，臣實慨然。巫女之不許住接城內，雖曰舊制，既不能一時痛革，則屢百人失所之患，亦不可不念。朴弼夢之處事，雖甚乖當，既問可否，言出而隨責之，若慮後弊，宜寢其罰也。喉司之職，夙夜勞苦，而自夫逐日入對之後，人多厭避，少有事端，輒事違牌，開政相續，勤仕無人。在前堂上違召不能，則特有禁推之令者，蓋欲其警飭也，亦願澄省焉。</p>

	<p>대부분 다 싫어하여 피하고, 조그만 사단(事端)이라도 있으면 번번이 일마다 소패(召牌)를 어기니, 정사(政事)는 계속 이어지는데 근무(勤務)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전에 당상관(堂上官)이 소패(召牌)를 어길 경우 과직을 시키지 않으면 특별히 금추(禁推)19664)의 명령이 있었던 것은 대개 경칙(警飭)하고자 함이었으니, 또한 조용한 마음으로 살펴보시길 원합니다.”</p> <p>하니, 세자가 답하기를,</p> <p>“차자의 내용이 마땅하다. 허윤의 일은 대간(臺諫)의 말이 마땅한지 알지 못하겠다. 박필몽의 일과 아래 조항의 일은 마땅히 아뢴 대로 시행하라.”</p> <p>하였다. 이날 밤에 다시 하령(下令)하기를,</p> <p>“우상(右相)이 차자로 진달한 일은 모두 아뢴 대로 시행하라.”</p> <p>하였다.</p>	<p>世子答曰：“筭辭得宜。許琬事，臺言未知得當。朴弼夢事及下款事，當依施。”是夜，復下令曰：“右相筭陳之事，竝依施焉。”</p>
<p>숙종 65권, 46년 (1720 경자 / 청 강희(康熙) 59년) 2월 15일(임자) 1번째기사</p>	<p>세자가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재신(宰臣)들을 인접(引接)하였다. 우의정(右議政) 이건명(李健命)이 말하기를,</p> <p>“정언(正言) 김고(金槲)가 상서(上書)하여, ‘연해(沿海) 수군의 쌀에 대해 비국(備局)의 낭관(郎官)을 보내 부정을 적발할 것’을 청하였습니다. 수군의 쌀은 조적(糶糶)보다 더욱 중대한 것인데, 근래에 각읍(各邑)과 진(鎭)에서 정식(定式)을 따르지 않고 창고를 죄다 기울여 나누어 주는 폐단을 초래하였으니 대간(臺諫)의 말이 옳습니다. 하지만 비국의 낭관을 보내면 주진(廚傳)19670)의 폐해가 적지 않을 것이니,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군관(軍官)을 보내어 불</p>	<p>壬子/世子引接大臣、備局諸宰。右議政李健命曰：“正言金槲上書請沿海舟師米，發遣備局郎摘奸矣。舟師米比糶糶尤重，而近來各邑、各鎭，不遵定式，致有傾庫俵散之弊。臺言是矣，而發遣備郎，則廚傳之弊，不貲。令道臣，發遣軍官，不時摘奸，似爲便好。統制使李壽民狀本，以量役方張，乞停春操，亦宜許之。”世子竝可之。</p>

	<p>시에 부정을 적발하도록 하는 것이 편리하고 좋을 듯합니다. 통제사(統制使) 이수민(李壽民)의 장본(狀本)에 양전(量田)의 역사(役事)가 바야흐로 한창이므로 봄철의 조련(操鍊)을 정지할 것을 청하였으니, 또한 허락해야 마땅합니다.”</p> <p>하니, 세자가 모두 옳게 여겼다. 사간(司諫) 조명겸(趙鳴謙)이 말하기를,</p> <p>“공주(公州)의 영장(營將) 남태징(南泰徵)은 외람되고 망령되어 도적을 다스리는 즘음에 뇌물이 낭자하였으니, 청컨대 파직하고 서용(敍用)하지 마소서.”</p> <p>하였으나, 세자가 따르지 않았다가, 세 번 진달하니, 비로소 따랐다.</p>	<p>司諫趙鳴謙言：“公州營將南泰徵，愚濫狂妄，治盜之際，賄賂狼藉。請罷職不敍。”世子不從，三達，始從。</p>
<p>숙종 65권, 46년 (1720 경자 / 청 강희 (康熙) 59년) 3월 11일(무인) 1번째기사</p>	<p>설서(說書) 김용경(金龍慶)이 상서(上書)하기를,</p> <p>“태묘(太廟)에 경건히 고유하는 절차와 대정(大庭)에 하례를 드리는 예식은 좋은 날을 이미 가려 성대한 의식을 장차 거행하려 하며, 온 나라의 신하와 백성들은 모두가 발돋음을 하고 목을 늘어 다투어 강릉(岡陵)19681)의 축하를 분받고 있습니다. 다만 삼가 생각하건대 대조(大朝)의 환후(患候)가 근래에 다시 덧쳐 온 조정이 마음을 줄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있으니, 지금은 바로 저하(邸下)께서 다니실 때 활개치고 다니지 않으시고 웃으실 때 잇몸을 드러내고 크게 웃지 않으시며, 대조(大朝)께서 한술 드시면 전하께서도 한술 드시는 시기로서, 칭경(稱慶)·헌축(獻祝)하는 것은 지금으로선 적절한 시기가 아닙니다. 장차 문후(問候)를 드리는 반열(班列)이 하례를 드리는 반열로 바뀌어 순식간에 근심과 기쁨이 뒤섞이어 행해질 것이니, 정례(情禮)로 헤아려 볼 때 결단코 이런 이치가 없습니다. 태묘(太廟)에 고유하고 진하(陳賀)하는 것이 비록 대조(大朝)의 성명(成命)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면류관을</p>	<p>○戊寅/說書金龍慶上書曰：</p> <p>太廟虔告之節，大庭獻賀之禮，吉日既涓，盛議將舉，一國臣民，莫不跂足延頸，爭效岡陵之祝，而第伏念大朝患候，近復添加，舉朝煎灼，罔知攸措，此正邸下行不翔笑不矧，一飯亦一飯之時。稱慶獻祝，此非其時，而將見候班，變爲賀班，頃刻之間，憂喜錯行，揆諸情禮，斷無是理。告廟陳賀，雖因大朝成命，而凝旒受慶，恐非邸下今日事也。伏願邸下，稟于大朝，竝姑停止，稍俟聖候有間，更爲舉行。如不獲命，則邸下是日，獨不受賀，一以</p>

단정히 하고 경하를 받는 것은 아무래도 저하께서 오늘 하셔야 할 일이 아닌 듯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저하께서는 대조께 품하여 모두 우선 정지했다가 성상의 환후에 조금 차도가 있기를 기다려 다시 거행하도록 하소서. 만일 허락하는 분부를 얻지 못한다면 저하께서는 이날 홀로 하례를 받지 마시어 한편으로는 대조의 기쁨을 표시하는 생각에 부응하시고 한편으로는 병환을 걱정하는 태도를 보이소서.”

하니, 세자가 해조(該曹)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였다. 교리(校理) 홍정필(洪廷弼)이 상서해서 김용경의 말을 배척하여 말하기를,

“성상의 병환이 깊고 오랜 가운데 이런 막대한 경사를 만났으니 이는 더욱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

하니, 세자가 대신(大臣)에게 의논하도록 하였다. 영의정(領議政) 김창집(金昌集)과 우의정(右議政) 이건명(李健命)이 모두 말하기를,

“우리 저하께서 회복되신 경사는 실로 종사(宗社)의 한없는 기쁨이니 태묘에 고유하여 진하하는 일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성상(聖上)께서 오직 병이 날까 걱정하시던 조바심을 놓으셨으니, 아버이의 경사에 잔치를 베푸는 전례를 거행해야 마땅합니다. 다만 옥후(玉候)의 여러 증후에 더함이 있고, 저하께서는 바야흐로 상약(嘗藥)하며 걱정하고 경황없는 가운데 계시니, 조정 백관(百官)이 대조에 하례를 드리는 것은 준례에 따라 거행하되, 저하께서 하례를 받는 절차는 우선 정지하는 것이情理(情理)와 예(禮)에 합당할 듯합니다.”

副大朝志喜之念，一以示邸下以色之憂焉。

世子令該曹稟處。校理洪廷弼上書斥龍慶之言，以爲：“聖患沈綿中，見此莫大之慶，此尤可賀。”世子令議于大臣。領議政金昌集、右議政李健命皆以爲：“我邸下平復之慶，實是宗社無疆之休，則告廟陳賀，不容少緩。況聖上寬惟疾之憂，宜舉飾喜之典，而第玉候諸節有加，邸下方在嘗藥憂遑中，廷僚之獻賀大朝，則依例舉行，而邸下受賀之節，姑爲停止，似合情禮。”世子從之。

<p>숙종 65권, 46년 (1720 경자 / 청 강희 (康熙) 59년) 3월 16 일(계미) 4번째기사</p>	<p>하니, 세자가 그대로 따랐다. 황해 감사(黃海監司) 이덕영(李德英)이 상서(上書)하여 도내(道內)에 기황(饑荒)이 든 상황을 진달하고, 본도(本道)의 공물(貢物)의 값으로 바치는 쌀 2천 섬을 얻기를 원하였다. 또 장산(長山) 이북의 각 고을의 전세미(田稅米)를 돈으로 바꾸어서 바칠 것과, 선마(船馬)의 값을 취해서 진흥하는 자금에 보충할 것을 청하니, 세자가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였다.</p>	<p>○黃海監司李德英上書陳道內飢荒狀，乞得本道貢物價米二千石。又請長山以北各邑田稅米，以錢換納，取其船馬價，以補賑資，世子令廟堂稟處。</p>
<p>숙종 65권, 46년 (1720 경자 / 청 강희 (康熙) 59년) 4월 5일 (신축) 1번째기사</p>	<p>세자가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재신(宰臣)들을 인접(引接)하였다. 영의정(領議政) 김창집(金昌集)이 말하기를, “외방(外方)의 봉수군(烽燧軍)은 본래 고역(苦役)이기 때문에 이미 복호(復戶)19690) 를 주었고, 또 세 사람의 보인(保人)을 정하였는데, 근래에 한정(閑丁)을 얻기 어려우며, 경기 고을은 더욱 심하여 군정(軍丁)의 결원을 뽑아 메울 수가 없습니다. 봉수군에게 보인을 주는 수를 비록 줄일 수는 없으나 세 사람의 보인을 굳이 다 양정(良丁)으로 채울 것은 없으니, 그 중에 일배(一倍)는 공사천(公私賤)으로 정해 준다면 양정을 거의 추이(推移)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병조 판서(兵曹判書) 이만성(李晩成)은 말하기를, “이름은 비록 세 사람의 보인이지만 숫자를 채우는 경우는 아주 적어 간혹 보인 한 사람이나 보인 두 사람의 경우가 있습니다. 대신(大臣)이 진달한 바가 이와 같으니 양정인 보인으로서 세 사람의 보인을 채우는 경우는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의 보인을 공사천으로 바꾸어 정하는 것이 아마도 무방할 듯합니다.” 하니, 세자가 옳게 여겼다. 지돈녕(知敦寧) 민진원(閔鎭遠)이 말하기를,</p>	<p>○辛丑/世子引接大臣、備局諸宰。領議政金昌集曰：“外方烽燧軍，自是苦役，故既給復戶，又定三保，而近來閑丁難得，畿邑尤甚，軍丁闕額，無以簽補。烽燧給保之數，雖不可減，三保不必盡以良丁充定，其中一倍，以公私賤定給，則良丁庶可推移矣。”兵曹判書李晩成曰：“名雖三保，充數者絕少，或有一保二保者矣。大臣所達如此，良保滿三者，其中一保，以公私賤換定，恐無所妨。”世子可之。知敦寧閔鎭遠曰：“外方各邑之貸去賑廳錢穀者，或過十餘年，而覈其去處，則或出給官吏，料理見失，或散俵民間，指徵無處。其間守令，亦多身死，有難憑問。至於礪山府，則貸去本廳錢，近四千兩，付諸一官吏，盡數失之，故年前移關，推治徵捧於該吏之一族者，僅止二千餘兩，而該吏累年在囚，終至杖斃。此事雖非即今守令之罪，而其</p>

“외방(外方) 각 고을에서 진휼청(賑恤廳)의 전곡(錢穀)을 빌어간 것들이 더러는 10여 년이 지났는데, 그것의 간 곳을 조사해 보면 혹은 관리(官吏)에게 내어주어 요리(料理)를 잃었고, 혹은 민간(民間)에 나누어 주어 지적해 징수할 곳이 없습니다. 그 사이에 수령(守令)들이 또한 사망한 이들도 많아서 어디에 물어보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산부(礪山府)에 있어서는 본청(本廳)의 돈을 빌어간 것이 4천 냥에 가까운데, 이를 한 명의 아전에게 맡겨 깡그리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연전에 관문(關文)19691) 을 보내어 추치(推治)하고 그 아전의 일족에게 징수해 받은 것이 겨우 2천 냥에 그쳤는데, 해당 관리는 여러 해 동안 갇혀 있다가 결국 장형(杖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일이 비록 지금 있는 수령의 죄는 아니지만 그 책임은 전적으로 그 고을에 있으니, 그 고을에서 징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매달의 월름(月廩)을 가지고 4, 5 섬을 참작해 계산하여 덜어 낸 다음 본래의 수량을 다 채우고 그친다면, 백성은 다시 납부하는 원망이 없고 국가는 영원히 잃어버리는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다른 고을의 납부하지 않은 곳도 일례(一例)로 시행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하였는데, 김창집이 말하기를,

“사건은 전관(前官) 때에 있었는데 후관(後官)의 월봉(月俸)을 감해 그 숫자를 채운다는 것이 비록 원통한 것 같기는 하지만 달리 징수해 낼 방도가 없으니, 참작해서 계산해 덜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령 중에 현재 생존한 자에 대해서는 조사하여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자, 민진원이 말하기를,

責專在本邑，不可不徵於本邑。若以每朔月廩，四五石參酌計減，滿其本數而止，則民無更納之怨，國無永失之弊矣。他邑之未納處，一例施行，似爲合宜矣。”昌集曰：“事在前官，而減後官月俸，以充其數，雖似冤悶，他無徵出之道，不可不參酌計除，而至於守令之見方生存者，不可不覈治矣。”鎖遠曰：“礪山吏雖死，而有妻子云，如此之類，有沒入爲官奴婢之法。此亦屬之本廳爲奴，似不可已。”世子竝可之。

	<p>“여산의 관리는 비록 죽었지만 처자가 있다고 하니, 이와 같은 무리는 재산을 몰수하고 잡아들여 관청(官廳)의 노비(奴婢)로 삼는 법이 있습니다. 이들도 또한 본청(本廳)에 소속시켜 노비로 삼지 않을 수 없을 듯합니다.”</p> <p>하니, 세자가 모두 옳게 여겼다.</p>	
<p>숙종 65권, 46년 (1720 경자 / 청 강희 (康熙) 59년) 5월 7일 (계유) 2번째기사</p>	<p>시약청에서 입진하였다. 이때 성상의 환후는 복부가 날이 갈수록 더욱 팽창하여 배꼽이 볼록하게 튀어 나오고, 하루에 드는 미음이나 죽의 등속이 몇 홉도 안되었으며, 호흡이 고르지 못하고 정신이 때때로 혼수 상태에 빠지니, 중외(中外)에서 근심하고 두려워하였다.</p>	<p>○侍藥廳入診時，上候腹脹日加，臍房突高，一日所進糜粥之屬，不能數合。呼吸不平，精神有時迷替，中外憂遑。</p>
<p>숙종 65권, 46년 (1720 경자 / 청 강희 (康熙) 59년) 6월 7일 (임인) 2번째기사</p>	<p>시약청에서 입진하였다. 영의정(領議政) 김창집(金昌集),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조태채(趙泰采), 우의정(右議政) 이건명(李健命), 국구(國舅) 경은 부원군(慶恩府院君) 김주신(金柱臣)이 같이 들어갔다. 임금이 해역(咳逆)·견식(肩息)·혼수상태 등의 증상이 더욱 심해져 여러 대신(大臣)들이 모두 억지로라도 약(藥)을 드실 것을 청하였으나, 임금이 혹은 답을 하기도 하고 혹은 답을 하지 못하기도 하였다.</p>	<p>○侍藥廳入診。領議政金昌集、判中樞府事趙泰采、右議政李健命、國舅慶恩府院君金柱臣同入。上咳逆、肩息、昏沈等證益甚，諸大臣皆請強進藥物，上或答或不能答。</p>
<p>숙종 65권, 46년 (1720 경자 / 청 강희 (康熙) 59년) 6월 7일 (임인) 4번째기사</p>	<p>술시(戌時)에 시약청에서 세번째로 입진하니, 임금의 혼수상태가 더욱 심하였다. 도제조(都提調) 이이명(李頤命)이 어榻(御榻) 아래로 나아가 큰 소리로 말하기를,</p> <p>“신 등이 의관(醫官)을 인솔하고 입시(入侍)하였습니다. 전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p> <p>하니, 임금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답하기를,</p> <p>“알고 있다.”</p>	<p>○戌時，侍藥廳三入診。上昏沈益甚。都提調李頤命進御榻下高聲曰：“臣等率醫官入侍。殿下知之耶？”上微答曰：“知之矣。玉音刺促，殆不成聲。醫官權聖微舉匙流進蓼茶，上或命止之，或不省覺。咳逆、肩息、痰響益甚。世子坐御床西，延初君捧御手，諸臣環侍，靜以俟之，間間流進竹瀝、蓼茶之屬。中宮出臨，則諸臣退伏楹外，中宮還內，則諸臣復入環侍。</p>

	<p>하였는데, 목소리가 빠르고 짧아서 거의 음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의관(醫官) 권성징(權聖徵)이 손가락을 들고 삼차(蔘茶)를 흘려넣으니, 임금이 혹은 그만두라고 명하고 혹은 깨닫지 못하였으며, 해역(咳逆)·견식(肩息)·담향(痰響)이 더욱 심하였다. 세자는 어상(御床)의 서쪽에 앉고 연잉군(延昞君)은 어수(御手)를 붙잡고 있었으며, 여러 신하들은 피시고 빙 둘러서서 조용히 기다리며 간간이 죽력(竹瀝)19705)·삼차(蔘茶) 등속을 입에 흘려넣었다. 중궁(中宮)이 나와 보면 여러 신하들은 기둥 밖으로 물러가 엎드려 있고, 중궁이 안으로 돌아가면 여러 신하들은 다시 들어가 피시고 빙 둘러서 있었는데, 이와 같이 하기를 여러 차례 하여 밤을 새우기에 이르렀다.</p>	<p>如是者屢，以至徹夜。</p>
<p>숙종 65권, 46년 (1720 경자 / 청 강희(康熙) 59년) 6월 8일 (계묘) 1번째기사</p>	<p>임금이 승하(昇遐)하였다. 시약청(侍藥廳)의 세 제조(提調)와 사관(史官) 등이 어제 저녁부터 입시(入侍)하여 밤을 새우고 기둥 밖으로 물러나왔는데, 조금 후에 날이 밝았다. 도제조(都提調) 이이명(李頤命)이 환시(宦侍)로 하여금 중궁(中宮)께 아뢰기를,</p> <p>“날이 이미 밝았으니, 신 등이 잠시 물러갔다 문안(問安)드릴까 합니다.”</p> <p>하였다. 이윽고 빠른 걸음으로 걸어 나오자 사관(史官)이 뒤따라 나왔는데, 막 시약청에 이르자 환관(宦官)이 급히 나와 내교(內教)를 전하기를,</p> <p>“우선 문안드리지 말고 빨리 들어오라.”</p> <p>하였다. 이이명 등이 사관과 함께 황급히 달려들어가니, 연잉군(延昞君)이 이이명을 맞으며 말하기를,</p>	<p>○癸卯/上昇遐。 侍藥廳三提調及史官等，自昨夕入侍徹夜，退出楹外，已而天明。 都提調李頤命，使宦侍，啓于中宮曰：“天已明矣，臣等將暫退問安矣。” 仍趨出，史官隨之。 纔到侍藥廳，宦官急出傳內教曰：“姑勿問安，卽速入來。” 頤命等，與史官顛倒趨入，延昞君迎謂頤命曰：“所進藥物，盡爲吐出矣。” 諸臣入臥內，上喉中痰響洪大。 宦侍高聲奏朝廷、政院、玉堂問安，上不能省聽。 都承旨尹憲柱告世子曰：“監軍單子，上候如此，不能落點。 以昨日落點，仍爲施行何如?” 世子許之。 延昞君自內出曰：</p>

	<p>“드셨던 약물(藥物)을 모조리 토해 내셨습니다.”</p> <p>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와내(臥內)19706) 로 들어가니, 임금이 목구멍 속에 담(痰) 끓는 소리가 크게 났다. 환시(宦侍)가 큰소리로 조정(朝廷)·승정원(承政院)·옥당(玉堂)이 문안드린다고 아뢰었으나, 임금이 알아듣지 못하였다. 도승지 윤헌주(尹憲柱)가 세자에게 고하기를,</p> <p>“감군(監軍)19707) 의 단자(單子)는 성상의 환후가 이와 같으시니 낙점(落點)할 수가 없겠습니다. 어제 낙점한 것으로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니, 세자가 허락하였다. 연잉군이 내전(內殿)으로부터 나와 말하기를,</p> <p>“다만 부원군(府院君)만 남아 있고 도제조 이하의 관원들은 조금 물러가 있으라.”</p> <p>하였다. 세 제조와 사관이 물러나 기둥 밖에 엮드려 있었는데, 이때 궁녀(宮女)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렸고 환시들도 눈물을 흘리며 몹시 바쁘게 다녔다. 조금 후에 부원군 김주신(金柱臣)이 나와 기둥 밖에 이르러 이이명에게 말하기를,</p> <p>“내전(內殿)께서 그래도 만에 하나 성상의 병세가 회복되기를 기대하시므로, 방금 다시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다는 뜻으로 주달(奏達)하였습니다.”</p>	<p>“只留府院君， 而都提調以下少退。” 三提調及史官退伏楹外， 是時， 宮女輩號泣之聲徹外， 宦侍輩亦涕泣奔走。 頃之， 府院君金柱臣出至楹外， 謂頤命曰：“內殿猶望上候之萬一回蘇， 故纔以無復可爲之意， 奏達矣。” 已而內侍招諸臣還入， 中宮使延祔君傳教曰：“曾聞明聖王后患候時， 只有胸前一點微溫， 而能得回陽云。 上候雖重， 胸腹俱有溫氣， 慎用藥物， 期於回陽也。” 頤命對曰：“如有可爲之道， 敢不盡誠乎？” 中宮又使延祔君， 出傳教：“錦平尉朴弼成、東平尉鄭載崙、臨昌君焜、御營大將金錫衍【卽上內舅。】及時任、原任大臣， 竝令稟于東宮， 而使之入侍。” 又使延祔君問頤命曰：“元命龜、【淑敬公主之子。】 鄭健一、【淑徽公主之子。】 金道浹、【錫衍之子。】 一併招入何如？” 頤命對以太廣。 延祔君入奏， 復出命召沈廷輔。【淑明公主之子。】 又命招入魚有龜、金東弼兩人， 頤命曰：“此時何必盡招姻婭乎？ 須以此意稟奏。” 延祔君入奏， 而出傳內教曰：“所達是矣。” 於是， 時任、原任諸大臣， 皆同</p>
--	--	--

하였다. 이윽고 내시(內侍)가 여러 신하들을 불러서 도로 들어가니, 중궁(中宮)이 연잉군으로 하여금 전교(傳敎)하게 하기를,

“일찍이 듣건대 ‘명성 왕후(明聖王后)께서 병환이 나셨을 때는 단지 가슴 앞에 한 점(點)의 미지근한 온기(溫氣)가 있을 뿐이었는데도 능히 회복을 하셨다.’ 한다. 성상의 병환이 비록 위중하기는 하지만 가슴과 배에 모두 온기(溫氣)가 있으니, 약물(藥物)을 신중히 써서 기필코 회복을 기약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이명이 대답하기를,

“만일 할 수 있는 방도만 있다면 감히 정성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중궁이 또 연잉군으로 하여금 나와 전교하게 하기를,

“금평위(錦平尉) 박필성(朴弼成)·동평위(東平尉) 정재륜(鄭載崙)·임창군(臨昌君) 이혼(李焜)·어영 대장(御營大將) 김석연(金錫衍) 【바로 주상의 내구(內舅)이다.】 과 시임(時任)·원임(原任) 대신(大臣)들을 모두 동궁(東宮)에게 품하여 입시(入侍)하게 하라.”

하고, 또 연잉군을 시켜서 이이명에게 묻기를,

“원명귀(元命龜) 【숙경 공주(淑敬公主)의 아들이다.】 ·정건일(鄭健一) 【숙휘 공주(淑徽公主)의 아들이다.】 ·김도협(金道浹) 【김석연(金錫衍)의 아들이다.】 등을 모조리 같이 불러 들이는 것이 어떻겠는가?”

入臥內。 頤命就御榻下高聲奏曰：“時任、原任大臣入來矣。” 領議政金昌集， 又高聲奏曰：“小臣昌集等入來矣。” 上不能聽。 延祔君捧御手而泣曰：“手指已盡青矣。” 醫官進按鼻梁， 仍診脈而退曰：“右脈先絕， 左脈方浮搖不定矣。” 中宮使宦侍， 傳教曰：“從前藥路差失， 已至此境。 此時用藥尤難， 必詳審用之。” 頤命涕泣對曰：“臣等在保護之地， 雖無下教， 豈不欲十分詳審， 而素昧藥理， 至於此境， 死有餘罪。 卽今藥路多岐， 方審慎擇用， 而未知其當否矣。” 已而， 臨昌君焜、東平尉鄭載崙、錦平尉朴弼成、御營大將金錫衍、原州牧使沈廷輔入來。 頤命問延祔君曰：“向者侍藥設廳日， 以殯殿事， 有所下教， 而宣政殿在昌德宮， 有掣肘難行之端。 其時欲達而不忍仰陳矣。” 延祔君曰：“此是遺教， 何忍違之乎？” 時， 諸臣俱靜伏榻前。 上氣息、痰響漸微， 忽大吐， 遂昇遐。 時卽辰正二刻。 北夾室內一時叫哭， 欲排戶出來， 延祔君拒門禁止， 而宦侍整手足。 中宮使延祔君傳教曰：“初喪凡事， 中宮主管之意， 親承聖教矣。”

	<p>하니, 이이명이 대답하기를,</p> <p>“너무 광범위합니다.”</p> <p>하였다. 연잉군이 들어가 아뢰고, 다시 나와 심정보(沈廷輔) 【숙명 공주(淑明公主)의 아들이다.】 를 부르라고 명하였다. 또 어유귀(魚有龜)·김동필(金東弼) 두 사람을 불러 들이라고 명하니, 이이명이 말하기를,</p> <p>“이런 때에 어찌하여 반드시 인척을 다 불러들이겠습니까? 부디 이런 뜻으로 품주(稟奏)하소서.”</p> <p>하였다. 연잉군이 들어가 아뢰고 나와 내교(內敎)를 전하기를,</p> <p>“진달한 바가 옳다.”</p> <p>하였다. 이에 시임·원임의 여러 대신이 다 같이 와내(臥內)로 들어왔는데, 이이명이 어榻(御榻) 아래로 나아가 큰 소리로 아뢰기를,</p> <p>“시임·원임 대신이 들어왔습니다.”</p> <p>하고, 영의정(領議政) 김창집(金昌集)이 또 큰소리로 아뢰기를,</p> <p>“소신(小臣) 창집 등이 들어왔습니다.</p> <p>하였으나, 임금의 알아듣지 못하였다. 연잉군이 어수(御手)를 붙들고 울면서</p>	<p>今當依此行之，大臣須知此意。” 昌集俯伏曰：“謹當奉教矣。” 時，在外諸承旨、宗戚，皆入來。 大臣以下涕泣蒼黃，莫知所爲，披閱《五禮儀》及瞻錄。 上昇遐時刻頗久，而不卽行屬續。 承旨韓重熙，以甲寅日記，示禮曹判書李觀命曰：“其時張善激，以禮判行屬續。 今日君當屬續矣。” 觀命曰：“張善激乃戚屬故也，吾則不可。” 諸議，欲使朴弼成及焜行之，未決。 右議政李健命，手持儀註，入房中曰：“屬續之節，內戚當行之，可使沈廷輔行之。” 時，廷輔出闕外，不卽入來，尋覓紛鬧之際，內侍已屬續矣。 中宮使延祔君傳教曰：“聖上平日，每以襲斂諸節，務使整齊之意，縷縷下教矣。 大臣須體此意，大事則稟于內間，細節則斟酌行之，而必須致精。” 昌集與健命對曰：“敢不盡心乎？” 大臣使內侍二人，呼復，內侍二人，以函盛絳紗袞龍袍，升殿屋，三呼上尊號。 內侍扶出王世子於南夾室，去笠及紗袍，散髮舉哀，延祔君釋服散髮，舉哀於楹外。 大臣以下俯伏舉哀於寢門外，而雜難無序。 哭訖，昌集使注書，書上大漸三</p>
--	---	---

	<p>말하기를,</p> <p>“손가락이 이미 다 푸른 색으로 변했습니다.”</p> <p>하였다. 의관(醫官)이 나아가 콧마루를 살피고, 이어서 진맥(診脈)을 한 뒤 물러나와 말하기를,</p> <p>“오른쪽 맥(脈)이 먼저 끊어졌고, 왼쪽의 맥은 바야흐로 들떠 흔들리며 안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p> <p>하였다. 중궁이 환시를 시켜서 전교하기를,</p> <p>“종전에 약(藥)을 쓰는 길이 잘못되었기에 이미 이런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런 때에 약을 쓰기란 더욱 어려우니, 반드시 상세히 살펴서 쓰라.”</p> <p>하니, 이이명이 울면서 대답하기를,</p> <p>“신 등이 보호(保護)하는 처지에 있으니, 비록 하교(下敎)가 없으시더라도 어찌 십분 상세히 살피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본래 약리(藥理)에 어두운 까닭으로 이런 지경에 이르렀으니, 죽어도 여죄(餘罪)가 있습니다. 지금 약을 쓰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기에 바야흐로 세심하고 신중히 골라쓰고는 있으나 그것이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p> <p>하였다. 조금 후에 임창군(臨昌君) 혼(焜)·동평위(東平尉) 정재륜(鄭載崙)·금평위(錦平尉) 박필성(朴弼成)·어영 대장(御營大將) 김석연(金錫衍)·원주 목사(原</p>	<p>字, 出示外庭。 時, 大雨如注。 百官分聚三處, 注書遍走舉示, 百官皆哭。 大臣遂退外庭易服, 率百官舉哀, 會于崇政殿東月廊, 政院、玉堂、春坊、翊衛司, 會于興泰門外。</p>
--	--	---

	<p>州牧使) 심정보(沈廷輔)가 들어왔다. 이이명이 연잉군에게 묻기를,</p> <p>“지난번 시약청을 설치할 때 빈전(嬪殿)의 일로 하교한 바가 있었는데, 선정전(宣政殿)은 창덕궁(昌德宮)에 있어서 불편하여 시행하기 어려운 단서가 있습니다. 그때 진달하고자 하였으나 차마 아뢰지 못하였습니다.”</p> <p>하니, 연잉군이 말하기를,</p> <p>“이것은 바로 유교(遺敎)이니, 어찌 차마 어기겠는가?”</p> <p>하였다. 이때 여러 신하들이 모두 조용히 탑전(榻前)에 엎드려 있었는데, 임금이 기식(氣息)과 담향(痰響)이 점차 가늘어지다가 갑자기 크게 토한 뒤 드디어 승하(昇遐)하였다. 이때가 바로 진정(辰正)19708) 2각(二刻)19709) 이었는데, 북쪽 협실(夾室) 안에서 일시에 울부짖고 곡(哭)하며 문을 밀치고 나오려 하다가 연잉군이 문을 막고 금하자 환시가 수족(手足)을 정돈하였다. 중궁(中宮)이 연잉군을 시켜 전교(傳敎)하기를,</p> <p>“초상(初喪)에 있어서의 모든 일들을 중궁이 주관하라는 뜻으로 직접 성상의 하교를 받았다. 이제 마땅히 이것에 의거하여 시행할 것이니, 대신(大臣)은 모름지기 이 뜻을 알아야 할 것이다.”</p> <p>하니, 김창집이 부복(俯伏)하여 말하기를,</p> <p>“삼가 마땅히 전교를 받들겠습니다.”</p>	
--	---	--

하였다. 이때 밖에 있던 여러 승지와 종척(宗戚)들이 모두 들어왔다. 대신(大臣) 이하가 흐느껴 울면서 허둥지둥 어쩔 줄을 몰랐다. 《오례의(五禮儀)》와 등록(贈錄)을 들추어 열람하면서 임금이 승하하신 시각이 꽤 오래 되었는데도 곧바로 속광(屬纊)19710) 을 하지 않았다. 승지 한중희(韓重熙)가 갑인년 19711) 의 일기(日記)를 예조 판서(禮曹判書) 이관명(李觀命)에게 보이며 말하기를,

“그때는 장선징(張善澁)이 예조 판서로서 속광을 행하였으니, 오늘은 그대가 마땅히 속광하여야 합니다.”

하니, 이관명이 말하기를,

“장선징은 바로 척속(戚屬)이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불가하다.”

하였다. 여러 의론이 박필성(朴弼成)과 혼(焜)으로 하여금 하게 하려고 하였는데, 결정이 나지 않았다. 우의정(右議政) 이건명(李健命)이 손에 의주(儀註)를 들고 방(房)으로 들어와 말하기를,

“속광의 절차는 내척(內戚)이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니, 심정보(沈廷輔)로 하여금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이때 심정보가 대궐 밖으로 나가서 곧 들어오지 않았으므로 찾느라고 어수선한 사이에 내시(內侍)가 이미 속광하였다. 중궁이 연잉군을 시켜 전교하기를,

	<p>“성상께서 평일에 매양 습렴(襲殮)19712) 등의 여러 가지 절차를 기필코 정제(整齊)하게 하라는 뜻으로 누누이 하교하셨다. 대신(大臣)들은 부디 이 뜻을 깊이 체념하여 큰 일은 내간(內間)에 품하고 세세한 절차는 짐작하여 시행하되, 반드시 꼭 정성을 쏟도록 하라.”</p> <p>하니, 김창집과 이견명이 대답하기를,</p> <p>“감히 마음을 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p> <p>하였다. 대신(大臣)이 내시 두 사람으로 하여금 호복(呼復)19713) 을 하게 하니, 내시 두 사람이 함(函)에다 강사 곤룡포(絳紗袞龍袍)19714) 를 담아 대궐 지붕으로 올라가 세 번 주상의 존호(尊號)를 불렀다. 내시가 남쪽 협실(夾室)에서 왕세자(王世子)를 부축하고 나와 입(笠)과 사포(紗袍)를 벗기고 머리를 풀고 거애(擧哀)19715) 하였다. 연잉군이 옷을 벗고 머리를 풀고 기둥 밖에서 거애하였다. 대신 이하가 침문(寢門) 밖에서 부복(俯伏)해 거애하였는데, 뒤죽박죽으로 질서가 없었다. 곡이 끝나자 김창집이 주서(注書)로 하여금 ‘상대점(上大漸)’이란 세 글자를 써서 외정(外庭)에 내다 보이게 하였다. 이때 비가 퍼붓듯 크게 쏟아졌다. 백관(百官)들이 세 곳에 나뉘어 모여 있었는데, 주서가 두루 돌아다니며 들어보이니, 백관들이 모두 곡하였다. 대신이 마침내 외정으로 물러나와 옷을 바꿔입고 백관을 인솔하여 거애한 뒤 승정전(崇政殿)의 동쪽 월랑(月廊)에 모였다. 승정원(承政院)·옥당(玉堂)·춘방(春坊)19716) ·익위사(翼衛司)19717) 등은 흥태문(興泰門) 밖에 모였다.</p>	
<p>숙종 65권, 46년 (1720 경자 / 청 강희 (康熙) 59년) 6월 8일</p>	<p>미시(未時)에 습례(襲禮)를 행하였다. 시임(時任)·원임(原任) 대신(大臣)과 종신(宗臣)·외척(外戚)·의빈(儀賓)·승지(承旨)·삼사(三司)·춘방(春坊)·사관(史官)이 모두 입시(入侍)하였고, 대신 이하의 관원이 차례대로 전(殿)에 올라갔다. 환</p>	<p>○未時，行襲禮。 時任・原任大臣、宗臣、外戚、儀賓、承旨、三司、春坊、史官，竝入侍，大臣以下，以次上</p>

(계묘) 10번째기사

시(宦侍)가 중궁(中宮)의 언교(諺敎)를 원상(院相) 김창집(金昌集)에게 나와 전달하였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성상의 평상시의 거룩한 덕(德)을 대신(大臣)과 조신(朝紳)이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대로 오히려 다 알지 못함이 있다. 호다(浩多)한 공사(公事)를 수응(酬應)하실 때에는 심지어 침식(寢食)을 폐하기까지 하셨으며 밤낮으로 쉬지 않으셨다. 공경히 하늘을 섬기시어 비록 소소한 재앙과 변괴를 만나더라도 두려워하는 가운데 봄·여름·가을·겨울의 기후를 살피시고, 혹시라도 우설(雨雪)이 적기를 놓치거나 바람과 햇볕이 조화(調和)되지 않으면 잠시도 염려를 놓지 않으셨다. 만약 몸소 살피기 어려우면 반드시 날씨의 흐리고 맑음과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부터 불어올 것인지를 내시(內侍)와 궁인(宮人)에게 물으셨다. 만일 농사에 해롭지 않고 시기에 어긋나지 않으면 반드시 기뻐하셨고, 혹시 비의 많고 적음이 농사에 적합하지 않으면 반드시 근심하시어 잠시라도 해이하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비록 여러 해 동안 몸을 손상해 오는 가운데 계셨으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나라일과 민폐(民弊)에 대하여 미처 미치지 못할 듯이 하셨다. 지금 비록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지경을 당했지만, 성덕(聖德)의 만분의 일이나마 대강 서술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국사(國事)에 부지런히 수고하시다가 병마에 걸리기에 이르러 끝내 성수(聖壽)가 단축되고 말았다. 오늘날 상장(喪葬)의 제구(諸具)에 있어서 경(卿) 등이 극진함을 다해 예(禮)대로 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반드시 성상의 덕의(德意)를 본받고, 이어서 민생(民生)의 병폐(病弊)를 살피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근래에 해조(該曹)의 저축이 모두 바닥이 나지 않음이 없었으므로 성상께서 진념(軫念)하셨다. 무릇 빈전(殯殿)과 산릉(山陵)의 기명(器皿) 등의 물품과 거기 넣는 은자(銀子)는 순은(純銀)으로 정련(精鍊)해서 계자(啓字)를 찍어 봉(封)해 두었다. 앞으로 빈전과 산릉에 넣는 은그릇은 대내(大內)에서 마땅히 봉해 둔 은

殿。宦侍以中宮諺敎，出傳于院相金昌集。其書曰：

自上平日盛德，大臣、朝紳，非不知之，而猶有所不能悉者矣。浩多公事酬應之時，至廢寢食，晝夜不休。敬事上天，雖遇小小災異，恐懼之中，察春夏秋冬之候，或雨雪愆期，風日不和，則無一時弛慮。若難親察，則必以日之陰晴，風起何方，問諸內侍、宮人。若不愆於農事，不乖於時氣，則必喜，或雨多少不適於農時，則必憂，未嘗一刻暫弛。故雖多年積傷之中，至于今日，大小國事與民弊，若不遑及。今雖當天崩地坼之境，可不略敘聖德之萬一哉？勤勞國事，至爲病祟，致損聖壽矣。至於今日，喪葬諸具，卿等不可不致極如禮，而必體聖上之德意，仍察民生之弊瘼宜矣。近來該曹儲蓄，無不蕩竭，故自上軫念。凡殯殿、山陵器皿等物所入銀子，以純銀打鍊，踏啓封置。前頭殯殿、山陵所入銀器，自內當下，所封置銀子，但如樣造納可也。殯殿所用金盞三具、瓶一坐，三四年前，已爲造置，今欲以此用

자(銀子)를 내려줄 것이니, 다만 양식대로 만들어 올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빈전에서 사용하는 금잔(金盞) 3구(具)와 병(瓶) 1좌(坐)는 3, 4년 전에 이미 만들어 두었으니, 지금 이것을 사용하고자 한다. 성상께서 말씀하시기를, ‘근래에 여러 도(道)에 해마다 흉년이 들었으니 이번에 통신사(通信使)가 가지고 온 은자는 호조(戶曹)에 내어주고, 그 나머지는 강계(江界)와 내수사(內需司)의 노비 공포(奴婢貢布) 대신 받는 은자와 합해서 함께 계자를 찍은 뒤 봉해 두어 장차 앞으로의 진휼(賑恤)할 때의 수요(需要)에 대비하라.’ 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만약 해마다 풍년이 들어 이것을 번거롭게 사용하지 않게 된다면 다행이겠다.’ 하셨다. 오늘날 나라일이 불행하고 죄역(罪逆)이 깊고 무거워 갑자기 이런 변고를 당하였는데, 이런 등의 일을 어찌 대신(大臣)들로 하여금 알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성덕(聖德)을 우러러 믿고 삼가 무강(無疆)의 수(壽)를 기원하며 윤월(閏月)의 의대(衣櫛)19752) 를 일찍이 이미 만들어 두었고, 평상시에 입으시는 의대도 지금 또 대령하고 있다. 그러니 해조(該曹)에서는 비록 의대 등속일지라도 굳이 일일이 관례와 같이 준비할 것이 없으며, 다만 내간(內間)에서 써서 보이기를 기다려 비로소 준비해 올리도록 하여 성상께서 평소 절약하신 뜻을 따라서 성덕(聖德)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면 다행이겠다.”

하니, 김창집(金昌集)이 대답하기를,

“평소 대행 대왕(大行大王)께서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들을 구제하신 것이 지극한 정성에서 나왔으니, 무릇 군하(群下)로서 누군들 성덕(聖德)을 흠양(欽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해에 걸친 근로(勤勞)로 인해 성수(聖壽)를 줄게 만들어 이러한 하늘이 무너지는 애통함을 만났으니, 슬프고 망극(罔極)함을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하교(下敎)를 받드니 더욱 가슴이 찢

之耳。自上以爲：“近來諸道，年年凶荒，今番通信使所來銀子，出給戶曹，而其餘數，則并江界、內司奴婢貢布代銀子，同爲踏啓封置，將以備前頭賑恤時所需”，而仍曰：“若得年年豐登，不煩用此則幸矣。”今日國事不幸，罪逆深重，遽遭此變，而此等事，豈可不使大臣知之乎？仰恃聖德，竊祈無疆之壽，閏月衣櫛，曾已製置，常時所御衣櫛，今又待令。該曹則雖衣櫛之屬，不必一一如例準備，只待內間書示，始爲備納，務遵平日省約之意，毋爲虧損聖德之地幸矣。

昌集對曰：“平日大行大王，敬天恤民，出於至誠，凡在群下，孰不欽仰聖德，而以積年勤勞，致損聖壽。遭此天崩之痛，呼號罔極，何可盡達？今承下敎，尤爲痛裂。舉行凡事，敢不竭盡情禮而爲之乎？”沐浴時，延祔君及戶曹參議金雲澤【卽仁敬王后之姪。】執事，襲時，密豐君坦及金雲澤、金道浹執事。中宮欲親行飯舍，諸大臣齊聲以爲不可，乃止。使延祔君，傳教于金昌集曰：“世子行飯舍時，院相在

	<p>어지는 듯합니다. 모든 일을 거행함에 있어서 감히 정리와 예절을 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p> <p>하였다. 목욕(沐浴) 때 연잉군(延昞君) 및 호조 참의(戶曹參議) 김운택(金雲澤) 【곧 인경 왕후(仁敬王后)의 조카이다.】 이 집사(執事)하였고, 염습(殮襲)할 때는 밀풍군(密豐君) 이탄(李坦)과 김운택·김도협(金道浹)이 집사하였고, 중궁(中宮)이 친히 반함(飯舍)19753 을 행하려 하자 여러 대신(大臣)이 일제히 같은 목소리로 불가하다고 하였으므로, 이에 그만두었다. 연잉군으로 하여금 김창집에게 전교하게 하기를,</p> <p>“세자가 반함을 거행할 때 원상(院相)이 곁에 있으면서 세자를 도와 예를 거행하라.”</p> <p>하였다.</p>	<p>傍，助而行禮焉。”</p>
<p>숙종 65권, 46년 (1720 경자 / 청 강희(康熙) 59년) 6월 9일 (갑진) 1번째기사</p>	<p>중궁(中宮)이 언서(諺書)로써 원상(院相) 김창집(金昌集)에게 하교(下教)하기를,</p> <p>“진휼(賑恤)할 때 드는 은자(銀子)를 봉해 둔 이유를 어제 이미 하교하였다. 근래 해조(該曹)의 재정이 바닥이 난 가운데 지금 국휼(國恤) 초상(初喪) 때의 모든 물품과 산릉(山陵)의 공역(工役)을 모두 다 감당하게 되니, 모든 일에 반드시 부족할 염려가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은자를 내보내니, 해조에 분부하여 이것을 보태 쓴다면 또한 민폐(民弊)를 더는 일단(一端)으로서 실로 진휼에 보태 쓴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이며, 또한 성상의 뜻에도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3천 7백 53냥을 내보내니, 이 은자를 가지고 국장(國葬)에 보태 쓰는</p>	<p>○甲辰/中宮以諺書，下教于院相金昌集曰：</p> <p>賑恤時所需銀子，封置之由，昨已下教矣。近來該曹蕩竭中，卽今國恤初喪時，凡物及山陵工役，舉皆當之，凡事必多不足之患，故此銀出送，分付該曹，以此補用，則亦是除民弊之一端，實無異於補用賑恤，而亦無違於聖意矣。三千七百五十三兩出送，以此銀</p>

	<p>것이 옳을 것이다. 성상(聖上)께서는 나라 일을 부지런히 노력하신 외에 서사(書史)를 매우 좋아하시었다. 그러므로 베껴 쓰거나 제출하신 것이 아주 많았다. 마땅히 조정에 내어 보여야 할 것들은 일찍이 이미 기록하여 갈무리해 두셨다. 이러한 천지 망극(罔極)을 당한 가운데 이것은 동궁(東宮)에게 보내어 내보이는 자료로 삼는다.”</p> <p>하니, 김창집이 구전(口傳)으로 대답하기를,</p> <p>“다시 하교하심을 받으니, 하정(下情)이 더욱 찢어지는 듯 아픔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은자는 삼가 마땅히 하교에 따라 보태 쓰겠으며, 어제(御製)에 대해서는 내려 보인 뒤에 마땅히 곧바로 품처(稟處)하겠습니다.”</p> <p>하였다.</p>	<p>子，添用國葬可也。聖上勤勞國事之外，甚嗜書史，故所寫、所製者甚多。所當出示朝廷者，曾已記識以藏。當此天地罔極之中，此則送于東宮，以爲出示之地矣。</p> <p>昌集口傳對曰：“又承下教，下情尤不勝摧裂。銀子謹當依教補用，而至於御製，則下示後，當卽稟處矣。”</p>
<p>속보 65권, 46년 (1720 경자 / 청 강희(康熙) 59년) 6월 8일 (계묘) 1번째기사</p>	<p>임금이 승하(昇遐)하였다. 이날 밤 반함(飯含)할 때 중궁(中宮)이 원상(院相)으로 하여금 세자를 도와 행례(行禮)하도록 하였다. 김창집(金昌集)이 손을 씻으려고 하니, 우상(右相) 이건명(李健命)이 혼자 담당하는 것에 가깝다고 하여 저지하였다. 바야흐로 반함하려고 할 때 세자가 숟가락을 잡고 쌀을 퍼내는데 손이 약간 떨렸다. 내시(內侍)가 붙잡자 세자가 물리치고 석미(浙米)와 실주(實珠)를 입에 넣고, 이를 마치자 자리로 나갔으며, 김창집은 두 손을 마주잡고 상(床)의 남쪽에 서있을 뿐이었다. 반함은 대절(大節)이므로 내전(內殿)의 하교(下教)가 있었던 것은 본디 세자의 애호(哀號)·경동(驚動)을 염려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김창집은 손을 씻고 자기가 담당하려고 하였으니, 몹시도 어리석었다. 반함을 행하게 되자 세자가 내시(內侍)를 물리치고 조용히 예(禮)를 다하여 끝내 김창집이 옆에서 도와주는 데 힘입은 바가 없었다. 초사(初史)가 대체로 상세히 기술하여 환시(宦侍)의 호읍(號泣)한 것까지도 상세히</p>	<p>○癸卯/上昇遐。是夜飯含時，中宮令院相，助世子行禮。昌集欲盥手，右相李健命，以其近於專當止之。方飯含，世子執匙抄米，而手微戰。內侍奉持，世子却之，納浙米，實珠訖，就位，昌集拱手立床南而已。飯含，大節也。內殿下教，固慮世子之哀號、驚動，而昌集欲盥手自當，其蠢愚甚矣。及其行含也，世子却內侍，從容盡禮，卒無資於昌集之傍助。初史大抵纖悉，如宦侍號泣，無不備載，而此等大節，專不謹書，竝大漸時，東宮涕</p>

	<p>기재되지 않은 것이 없었는데, 이러한 대절(大節)은 전혀 기록하지 않고 대점(大漸) 때 동궁(東宮)이 체읍(涕泣)한 일까지 빼버렸다. 그 한 가지를 삭제(削除)하고 한 가지를 가필(加筆)하는 사이에 심장(心腸)을 숨기기가 어려우니, 통탄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있겠는가?</p>	<p>泣事而闕焉。 其一削一筆之間，心腸難掩，可勝痛哉？</p> <p>肅宗顯義光倫睿聖英烈章文憲武敬明元孝大王實錄補闕正誤卷之六十五終</p>
--	---	--

2. 경종실록 기사자료집

경종실록 기사자료집

출처	내용	원문
경종 1권, 즉위년(1720 경자 / 청 강희(康熙) 59년) 6월 17일(임자) 4번째기사	<p>지평(持平) 홍현보(洪鉉輔)가 상소(上疏)하기를,</p> <p>“능침(陵寢)에 소제(素祭)33 를 올리는 것은 오로지 고려(高麗) 때에 불교(佛敎)를 숭상하는 풍속에서 나온 것인데, 하물며 상식(上食)에 소찬(素饌)을 쓰는 것은 더욱 의의(意義)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부터 빈전(殯殿)의 조석전(朝夕奠)과 그 나머지 사전(祀典)에 한결같이 예경(禮經)의 뜻을 따라서 육선(肉膳)으로써 집행하고, 각릉(各陵)의 절사(節祀)와 기신제(忌辰祭)에도 또한 변통(變通)함이 마땅합니다. 이제 이 참취(斬衰)의 복제(服制)는 실로 수천 년 동안 없었던 거조(舉措)이니, 신민(臣民)의 복제에 대하여 일찍이 전일이 미비(未備)된 고사(故事)를 이끌어 전례(前例)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삭망(朔望)의 성대한 제수를 올리는 날에 파산관(罷散官) 및 관학 유생(館學儒生)이 외반(外班)에서 망곡(望哭)하는 절차는 성복(成服)의 의식(儀式)처럼 함이 마땅합니다.”</p> <p>하니, 임금이 예관(禮官)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였다. 예관이 인하여 대신에게 문의하니, 영의정(領議政) 김창집(金昌集)의 의논하기를,</p>	<p>○持平洪鉉輔疏曰：</p> <p>陵寢素祭，專出於勝國崇佛之餘風，況上食設素，尤極無義。自今殯殿朝夕奠及其餘祀典，一遵禮意，以肉膳設行，各陵節祀與忌辰祭，亦宜變通。今此斬衰之制，實數千載所無之舉，臣庶服喪，不可以曾前未備之故事，援以爲例。朔望殷奠之日，罷散官及館學生望哭外班，宜如成服儀。</p> <p>上令禮官稟處。禮官因議于大臣，領議政金昌集議曰：“魂殿素膳，誠若不合于古禮，而自內旣用供上魚肉，兼設素膳，何至大害？陵寢素膳，先臣曾獻議，數百年遵行之禮，一朝難變之意，</p>

	<p>“혼전(魂殿)에 소선(素膳)을 올리는 것은 진실로 고례(古禮)에 합당하지 않은 듯하나, 안에서 이미 공상(供上)의 어육(魚肉)을 썼으니, 소선을 겸용(兼用)함이 어찌 큰 해로움에 이르겠습니까. 능침(陵寢)에 소선을 올리는 것은 선신(先臣)들이 일찍이 헌의(獻議)하여 수백 년 동안 준행하던 예절로서, 하루아침에 변경하기 어려운 뜻을 반복하여 진달한 것이니, 어찌 감히 다른 의견이 있겠습니까? 삭망(朔望)의 제전(祭奠)을 올리는 날에 파산관 및 관학 유생들이 외반(外班)에서 망곡(望哭)하는 것은 정리(情理)와 예절에 마땅할 듯합니다.”</p> <p>하고, 판부사(判府事) 이이명(李頤命)은 의논하기를,</p> <p>“빈전(殯殿)과 혼전(魂殿)은 문소전(文昭殿)34)의 옛 전례(典例)를 참조(參照)할 수 있으며, 또 듣건대 안에서 공상(供上)의 어육(魚肉)을 겸용(兼用)한다 하는데, 이는 또한 송(宋)나라 때 종묘(宗廟)이 제향(祭享)에 아반식(牙盤食)35)을 아울러 올린 뜻에 의거한 것이니, 우선 변통함을 허락함이 마땅할 듯합니다. 외반(外班)에서 망곡(望哭)하는 것은 비록 전례(前例)가 없으나, 예절은 돈후(敦厚)함을 좇는 것이 좋으니, 또한 인산(因山) 전까지 시행하도록 허락함이 마땅할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대행 대왕의 효성으로서선 선조(先朝)에서 시행하지 않던 육선(肉膳)을 지금에 이르러 시행한다면, 하늘에 계신 영혼이 반드시 불안해 할 것이니, 조종조(祖宗朝)의 전례(前例)에 의하여 시행할 것이며, 망곡(望哭)은 영상(領相)의 의논에 따라 시행하라.”</p>	<p>反復敷陳，何敢別有他見？殷奠日罷散官及館學生望哭外班，似合情文。”判府事李頤命議：“以殯殿、魂殿，則文昭殿舊例，可以旁照。且聞自內兼用供上魚肉，此亦得宋朝宗廟竝薦牙盤食之義，恐當先許變通。外班望哭，雖無前例，禮宜從厚，亦當許行於因山之前。”上命以大行誠孝，先朝不行之肉膳，到今爲之，在天之靈，必不安矣。依祖宗朝例施行，望哭，依領相議行之。”</p>
--	---	---

	<p>하였다.</p>	
<p>경종 1권, 즉위년(1720 경자 / 청 강희(康熙) 59년) 7월 15일(경진) 2번째기사</p>	<p>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備局堂上)을 인견(引見)하였다. 공조 판서(工曹判書) 민진원(閔鎭遠)이 아뢰기를,</p> <p>“선왕(先王)의 성덕(盛德)은 대략 하늘을 공경하고 치민(治民)에 부지런하며 어진이를 높이고 유도(儒道)를 숭상하며 도의(道義)를 소중히 여기고 검소(儉素)함을 숭상하며 용도(用度)를 절약하는 것이었으니, 전하께서 반드시 근면(勤勉)을 더한 연후에야 백성의 도탄(塗炭)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고, 계술(繼述)하는 효도에 합당할 것입니다. 선혜청(宣惠廳) 공물(貢物) 가운데 이른바 기인(其人)83) 은 각처의 제향(祭享) 및 궐내(闕內)의 각전(各殿)과 여러 상사(上司)에 진배(進排)하는 공물을 맡은 자입니다. 갑인년84) 에 선왕(先王)이 즉위한 후 세자궁(世子宮)과 빈궁(嬪宮)에 진배(進排)하는 시탄(柴炭)을 특히 혁파하지 말라고 명하였으니, 대개 그 때에 궁중의 용도가 부족한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전하께서 사위(嗣位)한 후에 세자궁과 빈궁의 시탄을 그대로 진배하게 하였는데, 앞뒤에 진배한 값이 자그마치 쌀 1만 1천 석에 이르렀으니, 그 형세가 반드시 장차 백성에게 더 부과(賦課)하여야 될 것입니다. 세자궁과 빈궁의 진배는 다만 시탄 뿐만이 아니라 어느 물건을 물론하고 모두 감제(減除)하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감제하도록 명하였다. 집의(執義) 조성복(趙聖復)이 전번의 계사를 거듭 아뢰고, 또 논하기를,</p> <p>“서릉 도정(西陵都正) 이욱(李煜)은 하루 걸러 소를 잡아 한 도사(屠肆)를 만들면서 나라에 큰 상사(喪事)가 있는 날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으니, 그 몸가</p>	<p>○上引見大臣、備局堂上。 工曹判書閔鎭遠曰：“先王盛德，大要曰，敬天勤民，尊賢崇儒重道，尚儉節用。 殿下必須加勉，然後可救斯民之塗炭，允合繼述之孝也。 宣惠廳貢物中，所謂其人者，即各處祭享及闕內各殿諸上司進排之貢物也。 甲寅年，先王即位後，世子宮、嬪宮進排柴炭，特命勿罷，蓋其時闕中用度不足故也。 今日殿下嗣位後，世子宮、嬪宮柴炭，仍爲進排，通前後進排之價，多至米一萬一千石，其勢必將加賦於民。 世子宮、嬪宮進排，非但柴炭，勿論某物，宜盡數減除。” 上命減除。 執義趙聖復申前啓，又論：“西陵都正煜，輪日宰牛，作一屠肆。 國有大惑之日，略無顧忌，其行已悖惡，不齒人類，而若有一分嚴畏之心，安敢若是？ 請遠地定配。” 上不從，只罷沈廷輔職。 大司諫金雲澤啓曰：“銀臺之職，不但奉行命令，必須隨事掾正，乃其任也。 日昨有百歲老人招入之命。 聖上方在諒闇哀疚之中，此等命令，恐涉非時，而居出納之地</p>

	<p>짐이 패악(悖惡)하여 사람 축에 낄 수도 없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찌 감히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청컨대 멀리 정배(定配) 하소서.”</p> <p>하니, 임금의 따르지 않고, 다만 심정보(沈廷輔)만 과직시켰다. 대사간(大司諫) 김운택(金雲澤)이 아뢰기를,</p> <p>“은대(銀臺)85)의 직책은 다만 명령을 받들어 시행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일에 따라 바로잡는 것이 그 임무입니다. 일전에 백세 노인을 불어들이라는 명령이 있었는데, 성상(聖上)께서 바야흐로 거상(居喪)의 슬픔 가운데 있으므로 이런 명령은 때가 아닌데도 출납(出納)의 자리에 있는 자가 몽연(朦然)히 받들어 행했으니, 논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해당 승지(承旨)를 종종 추고(從重推考)하소서.”</p> <p>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p>	<p>者，矇然奉行，不可不論。請當該承旨，從重推考。”上允之。</p>
<p>경종 1권, 즉위년(1720 경자 / 청 강희(康熙) 59년) 8월 7일(신축) 2번째기사</p>	<p>사간(司諫) 김제겸(金濟謙)이 상소하기를,</p> <p>“혼전(魂殿)의 진향(進香)은 신자(臣子)의 추모(追慕)하는 정리에서 나왔으나, 또한 물건의 풍성으로써 예를 삼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듣건대 각 아문(衙門)과 여러 궁가(宮家)에서 마련하는 비용이 수백 냥에서 천 냥에 이르러 서로 시샘을 하여 구차한 일과 바르지 않은 음식이 많이 있다고 하니, 오직 예경(禮經)의 간소(簡素)함을 귀중히 여기는 뜻이 아닐 뿐만이 아닙니다. 선대왕의 검소한 덕의(德義)는 전고(前古)에 뛰어나서 계사년(108) 여름에 어진(御眞)을 모사(摸寫)할 때 날마다 드시는 찬품(饌品)이 지극히 간소하여 입시한 여러 신하들이 지금까지 흠탄(欽歎)하고 있는데, 오늘날 스스로 그 정성을 다</p>	<p>○司諫金濟謙上疏曰：</p> <p>魂殿進香，出於臣子追慕之情，而亦不可以物之豐盛爲禮也。聞各衙門、諸宮家營辦之費，至於數百千兩之錢，務以相高，多有苟且之事。非正之食，不惟非禮經貴少之義而已。先大王節儉之德，卓出前古，癸巳夏，模寫御眞，日所進膳羞，極其菲薄，入侍群臣，至今欽歎。今所以自盡其誠者，有乖大</p>

	<p>하는 자가 대행 대왕의 평일 간직한 마음에 어긋남이 있으니, 각처의 진향과 찬품을 마땅히 삭감하게 하소서. 오늘날 능(陵)·전(殿)에 배치한 참봉이 조종조(祖宗朝)에 비교하면 그 수효가 갑절이나 많으며, 나이 젊은 유생들이 모두 벼슬길에 들어와 분경(奔競)109) 이 날로 심합니다. 지난해에 각릉(各陵)에 직장(直長)과 봉사(奉事)를 임시로 설치하였다가 얼마 후에 혁파하였으니, 바라건대 다시 각능에 참봉 한 자리를 취하여 혹은 직장(直長)을 삼고 혹은 벼슬을 옮겨 승륙(陞六)110) 하는 계제(階梯)를 삼을 것이며, 음관(蔭官)과 승문원(承文院) 및 성균관(成均館)의 참하관(參下官)으로서 융통하여 차제(差除)111) 하소서. 또 승문원관 성균관의 참하관으로서 차출(差出)한 찰방(察訪)의 자리를 취하여 전함(前銜) 음관의 견복(牽復)하는 자리를 만든다면 그 순편한 점은 한 가지뿐이 아닐 것입니다. 만일 시행할 일이라면 해조(該曹)에서 마땅히 다소(多少)의 절목을 마련할 것이니, 바라건대 재처(裁處)를 내리소서.”</p> <p>하니, 임금이 답하기를,</p> <p>“진향(進香)에 대하여는 선대왕(先大王)의 성덕(盛德)을 알지 못함이 아니며, 또한 오늘날 시작한 것이 아니니, 조종조(祖宗朝)에서 이미 시행한 법을 비록 전보다 더 할 수는 없으나, 또한 삭감해서도 안될 것이며, 여러 궁가(官家)에서 진향하는 일은 밖에서 참견할 바가 아니다. 아랫 조항의 일은 전조(銓曹)로 하여금 복주(覆奏)하도록 하라.”</p> <p>하였다.</p>	<p>行平日之心，各處進香饌品，宜令剋減。今之陵殿參奉，視祖宗朝，其數倍多，年少儒生，皆入仕路，奔競日甚。頃年權設各陵直長、奉事，未幾而罷。望更取各陵參奉一窠，或爲直長，或爲遷轉陞六之階，以蔭官與承文、成均參下官，通融差除。又取承文、成均參下所差察訪之窠，爲前銜蔭[官]牽復之地，則便宜非一。如以爲可行，則該曹自當有多少節目，乞賜裁處。</p> <p>上答以進香，非不知先大王盛德，而亦非今日創始，祖宗朝已行之法，雖不加於前，亦不克減，而諸宮家進香事，非自外之所知矣。下款事，令銓曹覆奏。</p>
<p>경종 1권, 즉위년(1720 경자 /</p>	<p>대신과 비국 당상(備局堂上)을 인견(引見)하였다. 영의정(領議政) 김창집(金昌集)이 아뢰기를,</p>	<p>○甲寅/引見大臣、備局堂上。領議政金昌集曰：“清恩君韓配夏，頃被劾</p>

<p>청 강희(康熙) 59년) 8월 20일(갑인) 1번째기사</p>	<p>“청은군(淸恩君) 한배하(韓配夏)는 저번에 탄핵을 입어 파직되었는데, 대간(臺諫)이 논의한 가운데 배반(盃盤)이 낭자(狼藉)한 일에 대하여는 남들이 매우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또 훈부(勳府)에서 진향하는 일도 주관하는 당상(堂上)이 없을 수 없으니, 한배하를 서용함이 어떻겠습니까?”</p> <p>하니, 임금(上)이 말하기를,</p> <p>“서용함이 옳다.”</p> <p>하였다. 또 진달하기를,</p> <p>“이덕영(李德英)은 해서(海西)에 있을 때의 치적(治績)으로 인하여 북백(北伯)에 발탁(拔擢)되었는데, 명론(名論)이 원래 가볍다는 대계(臺啓)의 탄핵을 받았으니, 너무 애석합니다. 내려 준 자급(資級)을 도로 거두지 말도록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p> <p>하니, 임금(上)이 말하기를,</p> <p>“자급을 도로 거두지 말고 그대로 두도록 함이 옳다.”</p> <p>하였다. 우의정(右議政) 이건명(李健命)이 아뢰기를,</p> <p>“도정(都政)113) 의 천연(遷延)됨이 염려되는데, 이조 판서(吏曹判書) 민진원(閔鎭遠)은 척완(戚畹)114) 으로서 인혐(引嫌)하여 행공(行公)할 뜻이 없습니</p>	<p>罷，而臺論中盃盤事，人頗稱冤。且勳府進香，不可無主管堂上，韓配夏敍用何如?” 上曰：“敍用可也。” 又陳：“李德英，因海西時治績，擢北伯，而臺言劾以名論素輕，可惜。所授資級，勿爲還收何如?” 上曰：“勿爲還收，仍存可也。” 右議政李健命曰：“都政遷就可慮，而吏曹判書閔鎭遠，以戚畹引嫌，無意行公。雖是戚臣，若有才望，固無不可用之道。況嗣服之初，首被擢用，倚毗之心，似非偶然。唯在聖上，各別敦勉，期於行公矣。” 上曰：“催促察任可也。” 又陳：“金演以在哭班，飲酒被劾，而演之素不飲，通朝所知。適其時氣不平，以一勺行氣云，宜有寬恕之道。” 上曰：“一體敍用。” 昌集又陳：“金相玉、趙尙健等，別爲敦迫，速完新錄好矣。” 上曰：“速完事，申飭可也。” 掌令朴弼正，以劾論韓配夏，而大臣救解，引避，翌日，處置出仕。韓配夏、金演事，全出於異己者吹覓，語皆爽實，而方大喪未殮之日，配夏雖一器薄饌，不當自官府徵供，演雖一勺行氣，不當在班行引盃，無情之過，同歸於無識，惜哉! 德英北</p>
---	--	---

	<p>다. 비록 척신(戚臣)이라 하더라도 만약 재능과 명망이 있다면 채용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데, 하물며 즉위(卽位)의 초두(初頭)에 첫머리로 탁용(擢用)되었으니, 의지하여 믿는 마음이 우연하지 않은 듯합니다. 오직 성상(聖上)께서 각 별히 권면하여 기필코 행공하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의 답하기를,</p> <p>“재촉하여 임무를 살피도록 함이 옳다.”</p> <p>하였다. 또 진달하기를,</p> <p>“김연(金演)이 곡반(哭班)에서 술을 마셨다 하여 탄핵을 받았는데, 김연이 원래 술을 마시지 못하는 것은 온 조정이 모두 아는 바입니다. 마침 그때에 신기(身氣)가 불평하여 한 잔 술로써 기운을 소통시켰다 하니, 너그러이 용서함이 마땅합니다.”</p> <p>하니, 임금이 일체 서용(敍用)하라고 분부하였다. 김창집이 또 진달하기를,</p> <p>“김상옥(金相玉)·조상건(趙尙健) 등에게 별달리 재촉하여 신록(新錄)115) 을 빨리 완성(完成)함이 좋을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빨리 완성하도록 신칙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장령 박필정(朴弼正)이 한배하(韓配夏)를 탄핵하였다가, 대신이 구해(救解)하였다 하여 인피하였는데, 다음날 처치(處置)하여 출사(出仕)하게 하였다. 한배하와 김연에 대한 일은 전혀 자신과 취향(趣向)이 다른 자를 취모(吹毛覓疵)116) 한 데</p>	<p>伯之擢，既因臺劾，還收資級，亦皮不存之毛，而昌集牽於私好，至請仍授，略無顧忌，而臺閣暗無一言，其亦駭矣。</p>
--	--	---

	<p>에서 나와 말이 모두 사실과 어긋나지마는, 바야흐로 국상(國喪)이 나서 미처 염습(殮襲)도 하지 않은 날인데, 한배하가 비록 한 그릇 박찬(薄饌)이라 하더라도 관부(官府)로부터 징공(徵供)하는 것은 온당한 일이 아니며, 김연은 비록 한잔 술로써 불평한 신기(身氣)를 소통시켰다 하지마는 곡반(哭班)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인데, 무정(無情)한 허물을 같이 무식한 데로 돌리니, 애석한 일이다. 이덕영은 북백(北伯)에 발탁되었다가 이미 대간(臺諫)의 탄핵으로 인하여 자급(資級)이 회수(回收)되었는데, 이는 또한 사실이 없는 일이지마는, 김창집이 사정에 끌려 자급을 되돌려 주기를 청하기까지 하면서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으나 대각(臺閣)에서는 묵묵히 한 마디 말조차 없었으니, 또한 해괴한 일이다.</p>	
<p>경종 1권, 즉위년(1720 경자 / 청 강희(康熙) 59년) 8월 27일(신유) 1번째기사</p>	<p>간원(諫院)에서 전번의 계사를 거듭 아뢰고, 또 논하기를,</p> <p>“공물 연조(貢物年條)120) 의 매매(買賣)는 도민(都民)이 피폐(疲弊)해진 원인이 되었습니다. 선조(先朝) 때에 금지함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경리청(經理廳) 차인(差人)들이 조금도 거리낌없이 전날의 폐습(弊習)을 오히려 답습(踏襲)하고 있습니다. 청컨대 차인 및 매매를 주관하는 공물 주인(貢物主人)121) 을 모두 가두어 치죄하소서.”</p> <p>하였는데, 다만 말단의 일만 윤택하였다.</p>	<p>○辛酉/諫院申前啓，又論：“貢物年條買賣，爲都民凋敝之源。先朝申禁，非止一再，而經理廳差人，略無顧忌，猶踵前習。請差人及主賣貢物主人，竝囚禁科罪。”只允末端事。</p>
<p>경종 2권, 즉위년(1720 경자 / 청 강희(康熙) 59년) 9월 20일(갑신) 5번째기사</p>	<p>대신(大臣) 및 비국 당상(備局堂上)을 인견(引見)하였다. 영의정(領議政) 김창집(金昌集)이 호서(湖西)의 재황(災荒) 때문에 각 고을의 군향(軍餉) 및 상당성(上黨城)으로 수송할 안흥(安興)의 미곡(米穀)을 우선 반액은 진곡(賑穀)으로 남겨 두고 반액만 수납(輸納)할 것을 청하고, 또 상고(商賈)와 역관(譯官)에게 대출(貸出)한 평안 감영(平安監營) 천류고(泉流庫)의 은화(銀貨)를 잡물(雜物)로 대상(代償)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것을 청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p>	<p>○大臣、備局堂上引見。領議政金昌集，以湖西災荒，請各邑軍餉及安興米之當輸上黨城者，姑許一半留賑，一半輸納。又請平安監營泉流庫銀貨，爲商譯輩所貸者，禁不得以雜物代償，竝從之。工曹判書閔鎮遠，更申虛錄者，</p>

	공조 판서(工曹判書) 민진원(閔鎭遠)이 허록(虛錄)한 자는 5년을 한정하여 금고(禁錮)의 영을 내릴 것을 다시 아뢰니, 그대로 따랐다.	限五年禁錮之令，從之。
경종 2권, 즉위년(1720 경자 / 청 강희(康熙) 59년) 9월 25일(기축) 2번째기사	대신(大臣) 및 비국 당상(備局堂上)을 인견(引見)하였다. 영의정(領議政) 김창집(金昌集)이 강도(江都)의 흉황(凶荒) 때문에 신환곡(新還穀)은 정해진 수량에 의하여 징수(徵收)하고 구환곡(舊還穀)은 정봉(停捧)할 것을 청하였으며, 또 어영청(御營廳)의 초관(哨官)은 금위영(禁衛營)의 예에 의하여 38원(員)으로 감축할 것을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우의정(右議政) 이건명(李健命)이 황해 병영(黃海兵營)의 수영패(隨營牌)에 원액(元額) 밖에 함부로 투속(投屬)한 자를 금지하여 모두 본고을에 되돌려 줄 것과 양보(良保)는 군역(軍役)에 옮겨 보충(補充)하고 그 대신에 공사천(公私賤) 2명을 정급(定給)할 것을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大臣備局堂上引見。 領議政金昌集，請江都凶荒， 新還穀， 準徵舊還穀停捧。 又請御營哨官， 依禁營例， 減爲三十八員， 從之。 右議政李健命， 請禁黃海兵營隨營牌， 元數外投屬冒濫者， 一併還給本邑， 良保則移充軍役， 其代以公私賤二名定給， 從之。
경종 2권, 즉위년(1720 경자 / 청 강희(康熙) 59년) 10월 21일(갑인) 2번째기사	제주(濟州) 세 고을의 백성 1백여 인이 올라와 인산(因山)에 집역(執役)하기를 청하고, 또 네 가지 토산물(土產物)을 올렸으나, 예조에서 퇴각(退却)하고 받지 않았다. 정원에서 계문(啓聞)하니, 임금이 해조(該曹)로 하여금 회로(回路)의 양식을 주어 보내게 하였다. 이에 앞서 제주에 여러 해 연달아 큰 흉년이 들자 대행 대왕(大行大王)이 여러 차례 선곡(船穀)을 보내어 구제하라고 명하였고, 심지어 어사(御史)를 보내어 진휼(賑恤)을 감독(監董)하게 하였으므로, 섬 백성들이 이에 힘입어 완전히 소생했으니, 북쪽으로 머리를 굽혀 성덕(聖德)을 칭송한 지 오래였다. 휘음(諱音)을 듣자 바다를 건너 먼 길에 발을 싸매고 올라와 이런 소박(素朴)한 정성을 바쳤으니, 거룩한 성덕이 변방의 백성에게 미치지 않았다면 저 어리석은 무리들이 어찌 이와 같을 수 있었겠는가? 아! 거룩하도다.	景宗 2卷， 卽位年(1720 庚子 / 청 강희(康熙) 59年) 10月 21日(甲寅) 2번째기사
경종 2권, 즉위년(1720 경자 / 청 강희(康熙) 59년) 11월 1일(갑자)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備局堂上)을 인견(引見)하였다. 영의정(領議政) 김창집(金昌集)이 청하기를, “경기(京畿) 각 고을의 군향(軍餉)에 대하여 예전의 미수(未收)는 수봉(收捧)	○大臣、備局堂上引見。 領議政金昌集請：“京畿各邑軍餉舊未收， 停捧， 新分給畢捧， 收納本所。 高陽以山陵地方官， 凡百責應， 比他邑有倍， 春大

<p>2번째기사</p>	<p>을 정지하고, 새로 분급(分給)한 것은 모두 수봉하여 본소(本所)에 수납(收納)하게 하소서. 고양(高陽)은 산릉(山陵)이 있는 지방관(地方官)으로서 온갖 책응(責應)이 다른 고을에 비하여 갑절이 되니, 봄에 낼 대동미(大同米) 3두(斗)를 양감(量減)하여 덕의(德意)를 보이소서.”</p> <p>하니, 임금(上)이 그대로 따랐다. 또 청하기를,</p> <p>“남병사(南兵使)는 이미 가족을 동반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북청(北靑)은 마땅히 분목(分牧)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판관(判官) 권부(權孚)는 직임과 품질(品秩)이 서로 맞지 않지만, 듣건대 그 치적(治績)이 가장 우수(優秀)하여 백성들 중에 그가 떠나는 것을 애석히 여기는 자가 많다 하니, 권부를 그대로 부사(府使)로 승차(陞差)함이 어떻겠습니까?”</p> <p>하니, 임금(上)이 말하기를,</p> <p>“부사로 승차함이 옳다.”</p> <p>하였다. 좌의정(左議政) 이견명(李健命)이 임금(上)께서 너무 지나치게 침묵하는 것에 대해 《주역(周易)》의 천지 교태(天地交泰)183)의 의(義)를 인용하여 졸곡(卒哭) 후에 강연(講筵)을 열어 대신과 유신(儒臣)으로 더불어 문의(文義)를 논란하고 치도(治道)를 강구하기를 청하였으나, 임금(上)이 발락(發落)이 없었다. 호조 판서(戶曹判書) 민진원(閔鎭遠)이 말하기를,</p> <p>“전하께서 동궁(東宮)에 계실 때에 시탄(柴炭)을 감제(減除)하도록 이미 허락하셨다가 도로 예전대로 환원(還元)하시니, 듣는 자들이 두려워하며 의혹하고</p>	<p>同量減三斗，以示德意。” 上從之。又請：“南兵使，既除挈眷，北靑當分牧矣。判官權孚，職品未準，而聞其治績最著，民多惜去。權孚仍陞府使何如？” 上曰：“府使陞差可也。” 左議政李健命，以上淵默太過，引《周易》天地交泰之義，請卒哭後開講，與大臣、儒臣，論難文義，講求治道，上無發落。戶曹判書閔鎭遠曰：“殿下在東宮時，炭柴既許減還仍，恐惑聽聞。且見惠廳文書，顯宗大王殿炭柴，尙今仍進，事體極未安。許減其一爲宜。請詢大臣。” 昌集、健命，皆請二者中減一，上曰：“數小者減去可也。” 鎭遠又言：“永徽殿內人米饌仍給，無前例，不可創行。此右議政趙泰耆，任本曹時，請罷卽從者，今復有仍進之命。上方敦召泰耆，而其所建請，既從還寢，恐有歉於聖德。” 上曰：“折半減之可也。” 鎭遠曰：“田稅、大同，稽緩不納。百石以上守令拿問，軍門月課、鳥銃價，更爲權減，待年豐出給。賑廳錢穀，守令以賑資貸去，不卽還納者，定期督償，而慢不奉令者，亦各別論罪。” 竝從之。掌令任洞申</p>
--------------	--	---

	<p>있습니다. 또 선혜청(宣惠廳) 문서를 보니, 현종 대왕전(顯宗大王殿)의 시탄을 지금까지도 그대로 올리고 있어 사체가 지극히 미안합니다. 그 한 가지를 강제함이 마땅합니다.”</p> <p>하고, 대신에게 순문(詢問)하기를 청하였는데, 김창집과 이견명이 모두 두 가지 가운데에서 한 가지는 강제할 것을 청하니, 임금의 말하기를,</p> <p>“숫자가 적은 것을 강제함이 옳다.”</p> <p>하였다. 민진원이 또 말하기를,</p> <p>“영휘전(永徽殿)의 나인[內人]에게 쌀과 찬(饌)을 예전대로 지급하는 것은 전례에 없던 일이니, 신규(新規)를 만들어 시행함은 옳지 못합니다. 이는 우의정 조태구(趙泰耆)가 본조(本曹)에 있을 때에 혁파하기를 청하여 즉시 따랐던 것인데, 이제 또 다시 예전대로 올리라는 명이 있습니다. 성상께서는 바야흐로 조태구를 돈소(敦召)하셨는데, 그가 건청(建請)한 바를 이미 따랐다가 도로 정침(停寢)한다면 아마도 성덕(聖德)에 부족함이 있을 듯합니다.”</p> <p>하니, 임금의 말하기를,</p> <p>“절반을 강제함이 옳다.”</p> <p>하였다. 민진원이 말하기를,</p> <p>“전세(田稅)와 대동미(大同米)의 수납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미납(未納)이 1백</p>	<p>前啓，又論：“水原府使李森，年少望輕，資歷且淺，除授之後，將有駁論，而汲汲辭朝，尤極可駭。請罷職。”</p> <p>上曰：“勿煩。”森，素多才能，而不附其黨，故洞劾之。</p>
--	--	---

	<p>석(石) 이상 되는 수령(守令)은 나문(拿問)하고, 군문(軍門)의 월과 조총(月課鳥銃)184) 값은 다시 임시로 감손하였다가 풍년을 기다려 출급(出給)하게 하소서. 진휼청(賑恤廳)의 전곡(錢穀)을 수령들이 진자(賑資)로서 대출(貸出)을 받고 기한 안에 도로 바치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상환(償還)을 독촉할 것이며, 한만하게 명령을 받들지 않는 자는 또한 각별히 논죄(論罪)하소서.”</p> <p>하니, 아울러 그대로 따랐다. 장령(掌令) 임형(任炯)이 앞서의 계사를 거둬 아뢰고, 또 논하기를,</p> <p>“수원 부사(水原府使) 이삼(李森)은 젊고 명망이 가벼우며 또 이력(履歷)이 얕으므로 제수한 후에 곧 논박(論駁)이 나왔는데, 급급히 사조(辭朝)했으니, 더욱 지극히 해괴합니다. 청컨대 파직하소서.”</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번거롭게 하지 말라.”</p> <p>하였다. 이삼은 원래 재능이 많았는데 그 당(黨)에 아부하지 않았으므로, 임형이 탄핵한 것이었다.</p>	
<p>경종 2권, 즉위년(1720 경자 / 청 강희(康熙) 59년) 11월 23일(병술) 2번째기사</p>	<p>하교하기를,</p> <p>“자전(慈殿)의 전교에 의하면, ‘자전에 진상할 각도의 삭선(朔膳) 및 물선(物膳)은 전일 중궁전(中宮殿)으로 있을 때의 예에 의하여 봉진(封進)하고, 방물진상(方物進上)은 전례에 의하여 봉진하지 말라.’고 하였다. 자전의 전교가 이</p>	<p>○下教曰：“慈殿進上各道朔膳及物膳，依前中宮殿時例，封進方物進上，依前勿爲封進事有教。慈教至此，不得不奉行。以此分付該曹。”</p>

<p>경종 2권, 즉위년(1720 경자 / 청 강희(康熙) 59년) 11월 27일(경인) 1번째기사</p>	<p>에 이르러 받들어 시행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를 해조(該曹)에 분부하라.”</p> <p>임금이 재실(齋室)에 나아가니, 영의정(領議政) 김창집(金昌集)·좌의정(左議政) 이건명(李健命)·어전 통사(御前通事) 김재로(金在魯) 등이 입대(入對)를 청하였다. 김창집이 아뢰기를,</p> <p>“칙사가 황지(皇旨)라 일컫고 특별히 대신을 보내어 산릉에 치제(致祭)하고 종실(宗室)의 자질(子姪)을 만나 본 후에 급급히 돌아간다고 말하였으므로, 우의정(右議政) 조태구(趙泰耇)가 이 소식을 듣고 차자(劄子)를 올렸습니다. 칙사가 만나기를 청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는 못하겠으나, 종실을 만나 보는 것은 원래 전례가 없었으니, 사리(事理)에 의거하여 거절해야 할 뿐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종실은 모두 소원(疏遠)한 친족이요, 다만 왕제(王弟) 한 사람이 있으나, 병세가 위중하여 출입을 하지 못하니, 오늘 제전(祭奠)을 베푸는 데에도 또한 병을 무릅쓰고 와서 참여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 하고, 준엄한 말로 막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p> <p>하고, 이건명은 말하기를,</p> <p>“당초 원접사(遠接使)의 장계에 이 말이 있었는데, 만약 막으려면 왕복할 즈음에 반드시 말이 많을 것입니다. 칙사가 와서 조문(弔問)할 때에 만약 과연 물을 경우에, ‘왕자는 다만 한 사람이 있을 뿐인데 병 때문에 제전에 참여할 수 없다.’고 대답한다면, 이는 전례에 따른 문답(問答)이 되어 염려할 필요가 없을 것이요, 설혹 강제로 청하더라도 또한 사리에 의거하여 다투고 고집할 뿐입니다.”</p> <p>하였다. 김창집이 청하기를,</p>	<p>○庚寅/上出御齋室， 領議政金昌集、 左議政李健命、 御前通事金在魯等請入對。 昌集奏：“勅使稱以皇旨， 特遣大臣， 致祭山陵， 邀見宗室子姪後， 急急還歸爲言， 故右議政趙泰耇聞此報陳劄矣。 勅使之請見， 未知何意， 而當以宗室相見， 元無前例， 據理爭執。 且言：‘卽今宗室， 皆是踈遠之親， 只有王弟一人， 病勢甚重， 不能出入， 今日設奠， 亦無強病來參之勢。’ 而峻辭防塞， 似爲得宜矣。” 健命曰：“當初遠接使狀啓， 有此語， 而若使防塞， 則往復之際， 必多辭說。 勅使來弔之時， 若果問之， 以王子只有一人， 而病未參祭爲答， 則便是循例問答， 不必致慮。 設或強請， 亦當據理爭執而已矣。” 昌集請於接見勅使之時， 自上親爲下教， 使通事， 傳諭於勅使。 健命仍言：“延接之時， 一動一靜， 彼人無不致察， 請於酬應之際， 勿爲泛忽。” 在魯亦陳先朝接待勅使之節， 仍請回顧臣等， 使依笏記往傳之意， 親賜下教， 使彼人見殿下親自有言。 健命等又請茶禮及宴享時， 親自下箸， 以示彼人。 上竝許</p>
---	---	---

	<p>“칙사를 접견할 때에 성상께서 친히 하교하시고 통사(通事)로 하여금 칙사에 게 진유(傳諭)하게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p> <p>하자, 이견명이 이어 말하기를,</p> <p>“연접(延接)할 때에 일동 일정을 저들이 살피지 않는 것이 없으니, 청컨대 수응(酬應)할 때에 범홀(泛忽)히 하지 마소서.”</p> <p>하였다. 김재로가 또한 선조(先朝) 때 칙사를 접대한 절차를 진달하고, 이어 청하기를,</p> <p>“신 등을 돌아보고 홀기(笏記)204) 에 의해 가서 전달할 뜻을 친히 하교하여 저들로 하여금 전하께서 친히 말하는 것을 보게 하소서.”</p> <p>하였다. 이견명 등이 또 청하기를,</p> <p>“다례(茶禮) 및 연향(宴享)할 때에 친히 수저를 드시어 저 사람들이 보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아울러 허락하였다. 대개 임금이 지나치게 침묵하니, 대리(代理)를 맡았을 때에 교영(郊迎)205) 을 섭행(攝行)하여 호차(胡差)를 접견(接見)하였는데, 통사(通事)가 왕복할 즈음에 한 마디 말이 없어서 아래에서 홀기(笏記)에 의해 말을 전했을 뿐이므로, 김창집 등의 말이 이와 같았던 것이다.</p>	<p>之。 蓋上淵默太過，在代理時，替行郊迎，接見胡差，而通事往復之際，一不親出玉聲，自下依笏記傳言而已，故昌集等之言如此矣。</p>
--	---	---

<p>경종 2권, 즉위년(1720 경자 / 청 강희(康熙) 59년) 11월 29일(임진) 2번째기사</p>	<p>임금이 관소(館所)에 거둥하여 현관복(玄冠服)을 착용하고 문후례(問候禮)를 거행했으며, 시복(時服)으로 갈아 입고 청사(淸使)를 접견하였다. 청사가 다례(茶禮)를 행할 것을 청하고, 이어 말하기를, “황제의 말씀에, ‘선왕(先王)이 50년 가까이 왕위에 있으며 정성을 다하여 직무(職務)를 받들었다.’ 하고, 우리들이 나올 때에 선왕이 백성을 애호한 덕의(德義)를 추념(追念)하여, 이 뜻을 작은 종이에 등출(膺出)해서 연로(沿路)에 반포(頒布)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모두 선왕의 덕의를 알게 하였으니, 이는 황제의 특지(特旨)입니다. 또 백성들이 모인 곳에는 우리들이 매양 다과(茶菓)를 흩어 주었습니다.”하니, 임금이 치사(致謝)하였다. 청사가 또 물기를, “선왕의 아들이 몇 사람입니까? 우리들이 만나 보고 이 뜻을 고루 유시(諭示)하고 돌아가고자 합니다.”하니, 임금이 통사(通事)로 하여금 전언(傳言)하기를, “왕자는 다만 한 사람이 있는데 질병으로 인하여 출입을 하지 못한다.”하였다. 청사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마음이 아니라 황제의 뜻입니다. 봉행(奉行)하지 못하겠다면 이 뜻으로써 돌아가 주달(奏達)할 것이니, 상세히 사유를 써 줘야 마땅할 것입니다.”하고, 다만 차만 마시고 자리를 꺾(罷)하였다.</p>	<p>○上幸館所，以玄冠服，行問候禮，改着時服，與淸使接見。淸使請行茶禮，仍曰：“皇帝以爲：‘先王五十年卽位，恪謹奉職。’俺等出來時，追念先王恤民之德。使以此意，膺出小紙，頒布一路，使百姓，皆曉知其先王之德，此乃皇帝特旨也。且百姓聚會處，俺等每散給茶啖矣。”上致以謝意。淸使又問：“先王諸子幾人？俺等欲與邀見，均諭此意而去。”上使通事傳言：“王子只有一人，病不能出入。”淸使曰：“此非我心，乃皇帝旨意。不得奉行，則當以此歸奏，仔細書給宜矣。”只點茶而罷。</p>
<p>경종 2권, 즉위년(1720 경자 / 청 강희(康熙) 59년) 12월 23일(을묘) 1번째기사</p>	<p>도목정(都目政)을 25일로 정하도록 명하고, 친히 정사하겠다고 하였는데, 이 조(吏曹)에서 계품(啓稟)하기를, ‘당상과 낭청이 채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포폄(褒貶)의 개탁(開拆)과 승륙(陞六)의 고강(考講) 등의 일을 미처 주선할 도리가 없다.’고 하니, 내년 초봄으로 물려 거행하라고 명하였다. 일전에 또 대제학(大提學)을 불러 장차 감제(柑製)225) 를 설행하려 하였는데, 대제학 이관명(李觀命)이 옥당(玉堂)이 모두 비어 대독(對讀)할 사람이 없다고 소를 올려 진달하니, 또한 물려 거행하라고 명하였다.</p>	<p>○乙卯/命都政，定於二十五日，而爲親政，吏曹啓稟堂、郎未備，褒貶開拆，陞六考講等事，未及周旋，命退行於春初。日前，又命招大提學，將設柑製，而大提學李觀命疏陳玉堂俱空，對讀無人，亦命退行。</p>
<p>경종 3권, 1년(1721 신축 / 청 강희(康熙) 60년) 2월 4일(을미)</p>	<p>여러 도(道)의 이양(移秧) 및 소의 도살을 금하였다. 대사성(大司成) 김운택(金雲澤)의 건백(建白)으로 인한 것인데, 묘당(廟堂)에서 아뢰어 시행하였다.</p>	<p>○禁諸道移秧及屠牛。因大司成金雲澤所白，廟堂奏行之。</p>

2번째기사		
<p>경종 3권, 1년(1721 신축 / 청 강희(康熙) 60년) 3월 20일(신사) 3번째기사</p>	<p>반궁(泮宮)에 글을 반사(頒賜)하고 선비에게 시험을 보여 수위(首位)를 차지한 유생(儒生) 목천임(睦天任)에게 사제(賜第)335 하였다</p>	<p>○頒柑于泮宮，試士，居首儒生睦天任賜第。</p>
<p>경종 3권, 1년(1721 신축 / 청 강희(康熙) 60년) 5월 3일(계해) 2번째기사</p>	<p>좌승지(左承旨) 이정익(李禎翊)이,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이이명(李頤命)이 선릉(先壙)371) 으로 돌아서 간다며 서계(書啓)하니, 임금(上)이 온화한 유시(諭示)로 답을 내리고 이어 말[馬]과 요전상(澆奠床)을 주도록 명하였다.</p>	<p>○左承旨李禎翊，以判府事李頤命，轉往先壙書啓，上溫諭賜答，仍命給馬及澆奠床。</p>
<p>경종 3권, 1년(1721 신축 / 청 강희(康熙) 60년) 5월 11일(신미) 1번째기사</p>	<p>우의정(右議政) 조태구(趙泰耆)가 성묘(省墓)하고 교서(郊墅)401) 로 돌아와 다시 소를 올려 해면을 원하였다. 이어 기호(畿湖)의 민폐(民弊)를 진달했는데, 그 대략에 이르기를, “이제 신이 경유(經由)한 각 고을은 마을이 폐허가 되어 쓸쓸해졌고, 평소 부유하고 충실하던 마을이 아주 쇠잔해지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물어보면, ‘모두 죽었습니다.’, ‘도망가 흩어졌습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기사년402) 이후로 기근(飢饉)이 든 끝에 무술년403) 의 혹독한 여역(癘疫)이 겹쳐 거의 모든 백성이 없어졌는데도, 도고(逃故)한 군민(軍民)에게서 거들 것을 모두 일족(一族)에게서 거두고, 족징(族徵)으로도 그치지 않아 이징(里徵)에 이르니, 강자(强者)는 흩어져 도적이 되고 약자(弱者)는 중이나 노비가 되어 양민(良民)이 거의 절종(絕種)할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백성들은 삶을 즐기는 뜻이 없어 양전(良田) 미답(美畝)을 분토(糞土)처럼 버리니, 한 사람이 열 사람의 역(役)에 응하는데 그 형세상 어찌 이렇게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폐단을 구제하는 방도는 별다른 계책이 없습니다. 성상께서 절생(節省)에 힘쓰시고 서울의 각 관사(官司)의 용도를 적절하게 헤아려 수량을 줄인 연</p>	<p>○辛未/右議政趙泰耆，省墓還郊墅，復疏乞解，仍陳湖畿民弊。略曰： 今臣所經各邑，墟落蕭然，常時富實之村，無不殘敗。問之則曰：“皆死也。”“逃散也。”蓋自癸巳以後，飢贏之餘，重以戊戌毒癘，死亡殆盡，而軍民逃故，皆徵於一族，徵族之不已，至於里徵，强者散而爲盜，弱者爲僧爲奴，良民殆將絕種矣。以此民無樂生之意，棄良田美畝如糞土。蓋以一人應十人之役，其勢安得不如此也？即今掇弊之道，無他別策。自上務存節省，京各司用度，量宜減數，然後少紓徵族之令，勿行擾民之事。另飭守令，勤行勸農之政。游食之徒，盡緣南畝，</p>

후에 족징(族徵)의 정령(政令)을 조금 늦추고 백성을 괴롭히는 일을 행하지 말도록 각별히 수령(守令)을 신칙(申飭)해 농사를 권장(勸獎)하는 정사(政事)를 부지런히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놀고 먹는 무리가 모두 논밭에서 일하고 물고(物故)의 대역(代役)이 점차 보충되어 세월이 흘러간다면, 그래야 복구(復舊)되기를 바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각 고을의 진정(賑政)은 곡식이 적은데도 백성은 많아, 보리가 채 수확되기도 전에 진홀이 먼저 끝이 납니다. 보리 수확 뒤의 진홀도 유념(留念)하지 않을 수 없는데, 각 고을의 곡식이 바닥이 나서 손댈 곳이 없으니, 바라는 것은 오직 저치미(儲置米) 중에서 남아 있는 것 및 채 상납(上納)하지 않은 대동미(大同米) 중에서 진홀을 위해 남겨둔 것뿐입니다. 청컨대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충분히 상량(商量)하여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하고, 또 말하기를,

“환상(還上) 보리는 결코 정해진 대로 거둘 수 없으니, 청컨대 반을 갈라 버려 환산하고 가을을 기다려 거두어 들이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온화한 비답(批答)을 내리고 진달한 일은 묘당으로 하여금 상환하여 품처하게 하였다. 비국(備局)에서 복계(覆啓)하기를,

“전부터 위로는 어공(御供)에서 아래로는 여러 관사(官司)에 이르기까지 용도(用度)를 이미 많이 줄이고 절약했는데도 징포(徵布)의 폐단은 오히려 전일과 같으니, 위 문공(衛文公)의 대포(大布)·대백(大帛)404과 같은 일대 경동(警動)과 일대 변통(變通)이 없다면, 사소한 재감(裁減)으로는 끝내 실효(實效)가 없을 것입니다. 대저 양역의 폐단은 말한 지 이미 오래 되었지만 아직도 잘

而物故之代，漸次充補，磨以歲月，猶可望其復舊。且各邑賑政，穀少而民多，麥未登場，而賑事先畢。麥後之賑，不可不留意。各邑穀盡，着手無地，所望惟在於儲侍之遺在者及未上納大同之留賑。請令廟堂，從長稟處焉。

又言還麥，決不可準捧，請令折半作租，待秋收捧，上賜溫批，條陳事，令廟堂商確稟處。備局覆啓曰：“曾前上自御供，下至諸司用度，已多減省，而徵布之弊，猶夫前日。如非大警動大變通，如衛文之大布、大帛，則些少裁減，終無實效。大抵良役之弊，言之已久，而尚未得善變之策。物故之代，若不趁即充定，則白骨徵布之弊，無以掄正。亦望聖上，深究弊源。且考歷代規制，詢咨諸臣，必以革弊安民爲意，然後庶可有效矣。即今京外畜積，先已匱竭，他無推移之路。未上納大同，則本廳形勢，決難許留，儲侍米，則計其前頭應需之外，或有餘數，則改色分給，趁秋收捧，似爲得宜。牟麥還上，本爲民間種子，則令道臣，參量

	<p>변통하는 계책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물고(物故)의 대역(代役)을 만약 즉시 충정(充定)하지 못하다면 백골 징포(白骨徵布)의 폐단도 구제하여 바로잡을 수 없으니, 또한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폐단의 근원을 깊이 구명(究明)하소서. 또 역대(歷代)의 규제(規制)를 상고하고 여러 신하들에게 자문하시어 반드시 폐단을 혁파하고 백성을 편안히 할 것을 생각하신 뒤에야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과 지방의 저축이 먼저 이미 바닥나서 달리 추이(推移)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상납하지 않은 대동미는 본청(本廳)의 형세(形勢)로 보아 결코 남겨 두기를 허락하기 어려우나, 저치미(儲置米)는 앞으로 수요(需要)에 응(應)하는 것 외에 혹은 남는 수량이 있다면 개색(改色)하여 나누어 주고 가을에 이르러 거두어 들이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모맥(牟麥)의 환상(還上)은 본디 민간(民間)의 종자를 위한 것이니,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각 고을의 전결(田結)을 참작하고 헤아려 종자로 만들 만한 것을 덜어낸 뒤 그 밖의 것은 혹은 절반을 혹은 3분의 1을 베풀어 환산하여 거두어 들이게 하는 것이 또한 무방하겠습니다.”</p> <p>하니, 임금의 윤허하였다.</p>	<p>各邑田結， 除出可作種子之外， 或折半、或三分之一， 換租收捧， 亦無所妨。” 上允之。</p>
<p>경종 3권, 1년(1721 신축 / 청 강희(康熙) 60년) 5월 21일(신사) 1번째기사</p>	<p>약방 도제조(藥房都提調) 김창집(金昌集) 등이 ‘소선(素膳)을 들지 말 것’을 계청하고, 또 왕대비전(王大妃殿)에 계품(啓稟)하여 상선(常膳)을 올릴 것을 권하게 하였으나, 임금이 번거롭게 굴지 말라고 명하였다. 대비전에 청하니, 권하여 올리라고 분부하였다. 연제(練祭)의 달이 이미 박두하였는데도 임금이 소선(素膳)을 들고 있었기 때문이다.</p>	<p>○辛巳/藥房都提調金昌集等， 啓請勿御素膳， 且啓稟王大妃殿， 勸進常膳， 上命勿煩。 請大妃殿， 教以奉勸。 蓋練月已迫， 自上御素膳故也。</p>
<p>경종 4권, 1년(1721 신축 / 청 강희(康熙) 60년) 6월 5일(을미) 2번째기사</p>	<p>임금이 대신과 비국(備局)의 여러 재신(宰臣)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영의정 김창집(金昌集)이 지평(持平) 이정소(李廷燾)의 상소 내용을 채택(採擇)하여 시행할 것을 진달하니, 호조 판서 민진원(閔鎭遠)이 말하기를,</p>	<p>○上引見大臣及備局諸宰。 領議政金昌集， 以持平李廷燾疏， 陳稟採施， 戶曹判書閔鎭遠曰：“良役之弊， 甚於水火， 民皆逃散， 村落已空。 盜賊之熾</p>

	<p>“양역(良役)의 폐해(弊害)는 수화(水火)보다 심하여 백성들은 모두 도산(逃散)하고 마을들은 이미 텅 비어 버렸습니다. 도둑들이 극성을 부린 것도 모두 이것 때문이므로 변통할 방도를 숙의(熟議)하여 온 지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만, 혹자는 호포(戶布)460) 로, 혹자는 구전(口錢)461) 으로, 혹자는 곁포(結布)462) 로, 혹자는 유포(遊布)463) 로 대신하자 하여 각자 자기 소견을 고집하기 때문에 끝내 의견 일치를 못보았습니다. 신이 생각 같아서는 각도(各道)의 감사와 각읍(各邑)의 수령들로 하여금 최선책을 강구케 하고 백성의 의견도 수렴하되, 그 일을 논열(論列)하여 계문(啓聞)하게 하여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한다면 거의 변통할 길이 있을 것입니다.”</p> <p>하고, 좌의정 이견명(李健命)은 아뢰기를,</p> <p>“묘당에서 먼저 구분하고 계획하여 외방(外方)에 반포해 보이는 것이 사체(事體)에 맞는 일인데, 줄곧 미뤄오기만 하니 언제 결정될지 모르는 일이므로 민진원의 말이 좀 구차하기는 하지만 각도(各道)로 하여금 곧바로 장문(狀聞)케 하고, 또 승정원(承政院)에서는 별도로 삼남(三南)464) 의 어사(御史)들에게 하유(下諭)하여 이 안(案)의 편부(便否)를 잘 알아보고 돌아와 아뢰게 함이 어떻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김창집이 또 아뢰기를,</p> <p>“황당선(荒唐船)465) 의 출몰은 해마다 있는 일이지만, 금년처럼 방사(放肆)한 때는 없었을 것입니다. 연달아 올라온 황해 수사(黃海水使)의 장계(狀啓)를 보면, 쫓아버리려 하면 더러는 칼을 뽑아 사람을 찌르기도 하고 더러는 장막을 치고 술을 걸어놓고 달아날 뜻이 없다 하며, 또 황해도 수령들의 말을 들</p>	<p>發, 皆由於此。 變通之道, 熟講已久, 或曰戶布, 或曰口錢, 或曰結布, 或曰游布, 各執所見, 終不歸一。 臣意則令各道監司與各邑守令, 從長講究, 且採民情, 論列啓聞, 自廟堂稟處, 則庶有變通之道矣。” 左議政李健命曰: “廟堂先爲區畫, 頒示外方, 事體則當然, 而一向悠泛, 決定無期。 閱鎮遠之言, 雖似苟簡, 令各道, 趁卽狀聞, 而又自政院, 別爲下諭三南御史處, 使之酌量便否而歸奏何如?” 上可之。 昌集又奏: “荒唐船逐歲去來, 而未有如今年之放肆者。 連見黃海水使狀啓, 欲爲驅逐, 則或拔刀刺人, 或結幕設鼎, 無意避去。 又聞海西守令之言, 出入村家, 至有劫掠之舉。 浦邊居民, 至廢農業, 事甚可慮。 今宜定送一譯, 善爲責諭, 且彼咨既有射砲從事之語, 以此兼示恐喝之色, 猶不動念, 則更將此意, 移咨禁斷何如?” 上允之。 又言: “國綱解弛, 民習凶悖, 詬辱土主, 不但泰仁、懷仁兩邑爲然。 卽今榮川, 又有此變, 土民李台翊、茂翊等, 通文一鄉, 使不得受糶, 率無賴輩, 自執稜杖, 突入倉庭, 驅逐鄉所。 本官論報</p>
--	--	---

	<p>으면 촌가(村家)에 드나들면서 약탈(掠奪)하는 일까지 있어 해변의 주민들은 농사를 걷어치우는 일까지 있다 하니, 매우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마땅히 역관(譯官) 한 사람을 차송(差送)하여 잘 타이르게 하고 또 그들의 자문(咨文)에 이미 총포(銃砲)를 쏘는 것을 일삼는 말이 있었으니, 이런 식으로 아울러 공갈(恐喝)하는 기색(氣色)을 보이면서 그래도 생각을 움직이지 않는다면 다시 이런 사실을 가지고 그들의 관원에게 통보하여 금지시킴이 어떻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의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p> <p>“나라의 기강이 해이(解弛)하여지니 백성들의 습성이 흉패(凶悖)하여져서 토주(土主)466)에게 꾸짖어 옥을 보임이 다만 태인(泰仁)과 회인(懷仁) 두 고을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영천(榮川)에도 이런 변고(變故)가 생겼는데 토민(土民)467)인 이태익(李台翊)·이무익(李茂翊) 등이 한 고을에 통문(通文)을 돌려 조곡(糶穀)468)을 받지 못하게 하고 무뢰배(無賴輩)들을 이끌고 능장(稜杖)469)을 갖고서 창고마당에 갑자기 뛰어들기도 하며, 향소(鄉所)470)를 쫓아냈다 합니다. 본관(本官)이 감영(監營)에 보고하여 바야흐로 수포(搜捕)중이라 합니다. 대개 송사(訟事)에 패소(敗訴)한 데 대한 원한을 품고 그랬다 하지만 태인이나 회인 두 고을 백성들의 죄과(罪過)에 비한다면 훨씬 심한 점이 있습니다. 비록 효수(梟首)의 형률을 적용한다 하여도 조금도 과중(過重)할 것이 없으니, 청컨대 도신(道臣)에게 신칙하여 기어코 잡아서 각별히 중죄로 다스리도록 하여야 합니다.”</p> <p>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민진원(閔鎭遠)이 아뢰기를,</p>	<p>營門，方爲搜捕，蓋因其落訟含怨，而視泰、懷兩邑民人罪犯，殆有甚焉。雖施以梟示之律，少無過重。請飭道臣，期於必捕，各別重究。”上從之。鎭遠曰：“安東火災孔慘。因監司狀聞，蕩滅其燒燼之穀，而移轉他邑穀五六百石，使之賑救矣，還捧與白給，不爲區別。今許折半白給似宜矣。”健命曰：“有身役者，特蒙蠲減之惠，而如無役之類，不得均沾。依滄死人恤典例，每戶題給皮穀一石宜矣。”上從之。校理李重協言：“判府事權尙夏，以兩朝禮遇之臣，致位三事，當依例推恩矣。”遂引程子不請封典事，請自朝家，特命推恩贈職，上允之。又言：“日昨連有召對之命，此實盛舉也。凡在瞻聆，孰不欽仰？自古有爲之君，皆尊賢禮士，以致做治之效。卽今在外儒臣權尙夏、李喜朝、鄭齊斗、金榦、金昌翁、魚有鳳，皆國家禮遇之臣也。令政院，別爲措辭，懇惻下教，以示求助之意，則彼皆以世祿之臣，豈有終始不來之理？且練祀時，似必上來于京城近處，自上特爲招延，卽賜引見，下詢講學爲治之方，仍使勉留，出</p>
--	--	---

	<p>“안동(安東)의 화재는 매우 참혹하였다 합니다. 감사의 장계에 따라 불에 탄 곡식은 탕감(蕩減)해 주고 다른 고을의 곡식 5, 6백 석을 옮겨 실어다가 구호케 하였습시다만, 환수할 것인지 거저 줄 것인지를 구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절반씩은 거저 주기로 함이 좋을 듯합니다.”</p> <p>하고, 이견명(李健命)이 아뢰기를,</p> <p>“신역(身役)이 있는 자는 특별히 견감(鑷減)의 혜택을 입고 신역(身役)이 없는 무리들은 고른 혜택을 입지 못할 것이니, 물에 빠져 죽은 자에게 내리는 구호의 예(例)에 따라 매호(每戶)마다 피곡(皮穀) 한 섬[石]씩을 제급(題給)함이 마땅할 것입니다.”</p> <p>하니, 임금(上)이 그대로 따랐다. 교리(校理) 이중협(李重協)이 아뢰기를,</p> <p>“판부사(判府事) 권상하(權尙夏)는 양조(兩朝)에서 예우(禮遇)했던 신하로 삼사(三事)471) 까지 벼슬이 올랐으니, 마땅히 예(例)에 따라 추은(推恩)하여야 할 것입니다.”</p> <p>하고, 마침내 정자(程子)472) 가 봉전(封典)을 청하지 않았던 일을 인용하면서 나라에서 추은 증직(增職)을 특명해 줄 것을 청하니, 임금(上)이 윤택하였다. 또 아뢰기를,</p> <p>“옛것저것부터 연일 소대(召對)의 명을 내리시니, 이는 참으로 성대한 일입니다. 무릇 듣고 보는 이에 있어 누군들 흠양(欽仰)하지 않겠습니까? 옛날부터 훌륭한 군주는 모두 어진이를 존경하고 선비를 예우(禮遇)함으로써 선치(善</p>	<p>入講筵，則必有所大補益矣。” 上許之。 鎮遠言：“慶州討捕使崔道章，再被臺彈，有罷職之命，而以臣所聞，道章以善治盜，大得名譽。 臺啓被彈者，事體不當還仍，而輕遞可惜，請詢大臣處之。” 昌集亦言其仍任爲宜，上允之。 執義金樺申前啓，上竝不從。 樺以李鳳徵、樾、煥、懾、燦及睦來善、李玄逸等職牒還收事， 因大臣陳達， 既許允從， 而乃以勿煩下教爲言， 上始從之。 昌集、健命等， 纔於筵席， 力請其還收， 而上以允從爲答故也。 又論：“官吏上京蜚語， 逐去本俸， 是無前之變， 而得售者頗多。 興陽吏申百源等得罪本官， 重賂臺官之僉人， 備言疵謗， 圖其彈劾， 而適會見覺， 移送秋曹， 尙未輸情。 令該曹， 嚴刑得情， 依律勘斷。” 上從之。</p>
--	---	---

治)의 효과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지금 밖에 있는 유신(儒臣) 권상하(權尙夏)·이희조(李喜朝)·정제두(鄭齊斗)·김간(金幹)·김창흡(金昌翕)·어유봉(魚有鳳) 등은 모두 나라에서 예우했던 신하들입니다. 승정원(承政院)으로 하여금 각별히 문장을 만들어 간곡하게 하교(下敎)하여 도움을 청하는 뜻을 보이면 저들이 모두가 대대로 국록(國祿)을 타는 신하로서 어찌 끝내 오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또 연제(練祭) 때에는 반드시 서울 근처에 올라올 듯하니, 주상께서 특별히 불러서 바로 인견(引見)하시고 강학(講學)과 다스리는 방편을 물으시면서 그대로 머물면서 강연(講筵)에 출입하라 하시면 반드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민진원이 아뢰기를,

“경주 토포사(慶州討捕使) 최도장(崔道章)은 재차 대간(臺諫)의 탄핵을 받아 파직의 명을 내렸습시다만, 신이 듣기로는 최도장은 도둑을 잘 다스리기로 큰 명성을 얻고 있다 합니다. 대계(臺啓)의 탄핵을 받은 자를 사체(事體)로 보아 그대로 영임(仍任)시킬 수는 없는 일이나 경솔히 파직시키는 것도 애석한 일이니, 청컨대 대신에게 물어서 처리하소서.”

하자, 김창집(金昌集)도 영임시킴이 마땅하다고 말하므로 임금이 윤허하였다. 집의(執義) 김고(金樞)가 전일의 계사(啓辭)를 거듭 아뢰었으나, 임금이 모두 따르지 않았다. 김고가 이봉징(李鳳徵)·이연(李漣)473) ·이환(李煥)474) ·이혁(李赫)475) ·이찬(李燦)476) 과 목내선(睦來善)·이현일(李玄逸) 등의 직첩을 환수(還收)하는 일로 대신을 통하여 진달하여 이미 윤중(允從)을 허락받았는데 이제는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하교(下敎)하셨음을 말하니, 임금이 비로소 그대로 따랐다. 김창집과 이견명 등이 조금전 연석(筵席)에서 환수할 것을

	<p>힘껏 청하여 임금이 윤중한다고 답하였기 때문이다. 또 논핵(論劾)하기를,</p> <p>“관리가 서울에 올라와 비어(蜚語)를 퍼뜨려서 본취(本俸)477) 를 쫓아낸 것은 전고에 없었던 변고(變故)인데, 뜻을 이룬 자가 자못 많다고 합니다. 흥양(興陽)의 아전 신백원(申百源) 등이 본관에게 죄를 범하게 되자 대관(臺官)의 하인에게 후한 뇌물을 주고 본관의 허물과 비방을 모조리 말하여 탄핵을 도모하다가 마침 발각이 되어 추조(秋曹)478) 로 이송되었으나 아직 자백을 앓는다 하니, 해조(該曹)로 하여금 엄형(嚴刑)으로 실상을 캐어 법에 따라 처단토록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p>	
<p>경종 4권, 1년(1721 신축 / 청 강희(康熙) 60년) 6월 25일(을묘) 2번째기사</p>	<p>집의(執義) 김고(金樞)가 상소하여 한재(旱災)를 아뢰며 임금께서 친히 기도(祈禱)할 것을 청하고, 또 전 지평(持平) 박필주(朴弼周)를 정소(旌召)498) 할 것을 청하였으며, 또 이만성(李晩成)을 유소(諭召)할 것을 청하였는데, 임금이 윤허하였다. 예조의 계사(啓辭)로 인하여 이미 사직(社稷)에 친히 기도(祈禱)할 것을 명한 바 있었는데, 또 좋은 날을 가리지 않고 앞당겨 정하라고 명하였다. 예조에서 경인년·기묘(己卯) 양년의 국휼(國恤) 때에 임금이 친히 기도한 전례를 인용하면서 음악(音樂)을 사용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p>	<p>○執義金樞疏陳旱災，請行親禱，又請旌召前持平朴弼周，又請諭召李晩成，上許之。因禮曹啓辭，已命親禱社稷，而又命不卜日進定。禮曹引庚寅、己卯兩年國恤時親禱前例，請用樂，上允之。</p>
<p>경종 4권, 1년(1721 신축 / 청 강희(康熙) 60년) 윤6월 10일(기사) 1번째기사</p>	<p>임금이 자전(慈殿)의 하교(下敎)한 뜻을 승정원에 전하면서 이르기를,</p> <p>“옛그제 연중(筵中)에서 좌상(左相)이 계달한 일로 자성(慈聖)에게 앙품(仰稟)하였더니 작년에 유교(遺敎)를 받들어 모든 일을 반드시 검약(儉約)해야겠다는 뜻으로 하교하려고 하셨다 한다. 또 대내(大內)에도 국휼(國恤) 때의 등록(瞻錄)이 모두 있고 평상시 찬수(饌需)마저 절약하시던 성의(聖意)를 따르려고 제향(祭享) 등의 일에도 전보다 많이 줄여왔으며, 이전 같아서는 연제(練祭)</p>	<p>○己巳/上以慈敎，下于政院曰：“日昨筵中，左相所達之事，仰稟于慈聖，則前年欲奉遺敎，凡事必以儉約之意下敎矣。且於大內，俱有國恤時瞻錄，而欲遵常時饌品節損之聖意，祭享等事，比前頗減，練祭時，在前則四宮各有錢文輸來戶曹之規，而今番則下敎四宮，</p>

	<p>때에 사궁(四宮)508) 에서 각각 호조로부터 돈을 실어오는 전례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사궁에 하교하여 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 한다. 이로써 살펴본다면 제물인들 어떻게 풍부히 마련했겠느냐? 진연(進宴)할 때 배치(排置)한 화룡촉(畫龍燭)이 궁중에 남아 있기에 탄일(誕日)이나 다례(茶禮) 및 대내(大內)에서 진향(進香)할 때에 당겨다 썼으며 새로 만든 일은 없었으며 홍촉(紅燭)에 있어서도 다만 명일(名日)에만 쓰도록 하교하셨다 한다. 또 호조 판서(戶曹判書)가 전달한 첩금의 일도 지금 처음 들이게 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대내(大內)에서 쓸 데가 있어서 그랬다 하며, 황랍(黃蠟)은 제사에만 쓰인 게 아니라 또 한 이날마다 쓰이는 것이니, 불사(佛事)란 말은 천만 뜻밖이라 하셨다.”</p> <p>하였다. 이때에 내수사(內需司)의 수용(需用)이 크고 번다한 데다 저축이 탕진 되어 잇대지 못하니, 경상비(經常費)에서 끌어다 쓰는 것이 또한 잦아 더러는 ‘훈전(魂殿) 제향의 제수(祭需)가 전보다 배로 늘었고 산릉(山陵)에 육찬(肉饌)을 쓰는 것도 구례(舊例)에 없었던 일이라서 비용이 점점 늘게 된 것이며, 또 궁속(宮屬)들이 여러 명찰(名刹)을 나누어 찾아가게 되어서 불공(佛供)이 너무 성대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견명(李健命)과 민진원(閔鎭遠)이 전번 제향의 찬품(饌品)을 자전(慈殿)에게 양품할 것을 청했으나, 도리어 거절하는 전교를 내렸으니, 탄식을 견딜 수 있겠는가?</p>	<p>使不輸來。 以此觀之， 祭物豈可豐備乎？ 進宴時所排畫龍燭， 留在宮中， 故誕日茶禮及自內進香， 推移用之， 而無新造之事， 至於紅燭， 只用於名日爲教。 且戶判所達貼金事， 非今創入， 前頭自內有可用處， 黃蠟則不但用於祭燭， 且是日用矣。 佛事之說， 千萬意外也。” 時， 內司需用浩繁， 所儲蕩然， 不能繼， 取入經用者亦頻數。 或言魂殿祭享饌品， 比前倍加， 山陵用肉饌， 亦非舊例， 故所費漸廣， 且掖屬分詣諸名刹， 供佛甚盛云。 李健命、 閔鎭遠， 頃以祭享饌品， 仰稟慈聖爲請， 而反下拒絕之教， 可勝歎哉？</p>
<p>경종 4권, 1년(1721 신축 / 청 강희(康熙) 60년) 7월 24일(계축) 3번째기사</p>	<p>경은 부원군(慶恩府院君) 김주신(金柱臣)이 졸(卒)하였다. 천수(天壽)는 61세 요, 시호는 효간(孝簡)이니, 김주신은 숙종(肅宗) 계비(繼妃)의 아버지이었다. 천품이 염정(恬靜)하고 의도(儀度)가 단아(端雅)하였으며, 소시(少時)적부터 문사(文辭)를 좋아하여 사우(士友)들이 추앙하고 허여하였다. 국구(國舅)가 되어서는 더욱 근신하는 마음을 가져 평소에 검약(儉約)함이 한사(寒士)와 다름이 없었고, 벼슬길에 나아가 일을 처리할 적에는 자신을 낮추기에 힘썼으며, 가</p>	<p>○慶恩府院君金柱臣卒。 壽六十一， 諡孝簡。 柱臣， 肅廟繼妃父也。 稟姿恬靜， 儀度端雅， 自少喜文辭， 士友推許之。 及爲國舅， 益存謹慎之心， 平居儉約， 無異寒素。 當官處事， 務加節損， 內行又篤， 至事叔母如事母， 率</p>

	<p>내(家內)의 행위도 독실하여 숙모를 어머니처럼 섬겼고, 형의 자부(子婦)를 거두어 집을 지어주고 생계를 꾸려 주었다. 조정의 일에는 일찍이 간섭함이 없었고 또한 부탁하는 일도 하지 않았으니, 시론(時論)이 칭찬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러나 평소의 친구들도 혐의를 받을까봐 왕래를 끊었지만 김창집(金昌集)만은 척의(戚誼)가 있다 평계하고 아무때나 거리낌없이 왕래하였는데, 간혹 그에게 피여 그릇된 방면으로 인도되기도 하였다. 말년에는 세상이 점점 말 못할 지경에 빠져들어 힘으로 만회(挽回)할 수가 없음을 보고서 근심과 울분으로 어찌할 바를 몰랐으며, 날마다 전국 술[醇酎]만 마시고 여자를 가까이 하여 수명을 재촉하였다 한다.</p>	<p>育兄子婦，營屋而廩之。未嘗參涉於朝議，亦不爲干澤之事，時論莫不稱之。然平日親舊，遠嫌而絕跡，金昌集諉以族誼，往來無常，間爲其所誣誤。末年見時勢漸至難言之域，力不能挽，憂憤不知所出，日飲醇酎，多近婦人，以至於促壽云。</p>
<p>경종 4권, 1년(1721 신축 / 청 강희(康熙) 60년) 7월 24일(계축) 4번째기사</p>	<p>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 “방금 경은 부원군(慶恩府院君)이 졸서(卒逝)하였다고 들었습니다. 대비진(大妃殿)에서는 당연히 거애 절차(舉哀節次)가 있어야 하겠지만, 주상께서도 거애하는 예(禮)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청컨대 예관(禮官)으로 하여금 속히 마련하라 하여 거행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대전(大殿)에서 거애(舉哀)하는 절차는 예문(禮文)이나 등록(謄錄)에 모두 기록된 일이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청풍 부원군(淸風府院君)559) 이 졸서하였을 때의 전례를 상고해 보라 명하였다. 예조에서 또 아뢰기를, “이번은 그때와 차이가 있기에 마련하지 아니하였습디만, 성교(聖敎)가 이</p>	<p>○政院啓曰：“卽聞慶恩府院君卒逝。大妃殿當有舉哀節次，自上似當有舉哀之禮。請令禮官，速爲磨鍊舉行。”上從之。禮曹啓大殿舉哀一節，禮文及謄錄，俱無載錄之事。”上命考淸風府院君卒逝時前例。禮曹又啓：“今番則與其時有差殊，故不爲磨鍊，聖敎如此，自內舉哀儀註，磨鍊以入，而自上方在諒闇中，以視事服磨鍊矣。”答曰：“知道。”遂舉哀于別殿。仍下敎曰：“慶恩府院君，雖有感暑之疾，精力尙健，年齡未暮，神明所扶，冀幸其勿藥之喜矣，遽然天奪，歛爾長逝。慈候哀毀之中，又遭罔極之痛，興言及此，悲悼難抑。禮葬等事，自該曹舉行，而初喪時凡百，一應雜物，各司官</p>

	<p>러하시니 대내(大內)에서 거애(擧哀)하시는 것으로 《의주(儀註)》 560) 를 마련하여 들입니다. 그러나 주상께서 바야흐로 상중(喪中)에 계시기에 옷은 시사복(視事服)으로 마련하였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답하기를,</p> <p>“알았다.”</p> <p>하고, 마침내 별전(別殿)에서 거애(擧哀)하였다. 이어 하교하기를,</p> <p>“경은 부원군은 비록 서질(署疾)은 있었으나 정력이 아직 건강(健壯)하였고 나이도 늙지는 않았으므로神明(神明)께서 도와서 약을 쓰지 않아도 병이 낫기만을 바랐었는데, 갑자기 하늘이 목숨을 빼앗아 영원히 세상을 떠났다. 자전(慈殿)께서 애훼(哀毀) 중에 또 망극 지통(罔極之痛)을 당하셨으니, 말이 이에 미치매 비통함을 억제 하기 어렵다. 예장(禮葬) 등에 관한 일은 해조(該曹)에서 거행하고 초상시의 모든 소용 물품은 각사(各司)의 관원이 직접 나가서 주선하라.”</p> <p>하고, 이어서 녹봉(祿俸)은 3년을 기한하고 그대로 지급할 것과 백목(白木)561) ·마포(麻布) 각 5동(同), 쌀 50석, 각종 비단 10필, 장생전(長生殿)의 관판(棺板) 한 벌을 실어보내라 명하였다.</p>	<p>員，躬親進排。”仍命祿俸限三年仍給，木布各五同、米五十石、各色段十匹、長生殿棺板一部輸送。</p>
<p>경종 4권, 1년(1721 신축 / 정 강희(康熙) 60년) 7월 27일(병진) 2번째기사</p>	<p>약방 도제조(藥房都提調) 김창집(金昌集) 등이 따로 대비전(大妃殿)에 계품(啓稟)하여 나라일을 생각해서 억지로 미음(米飮)이라도 드시고 기력을 부지할 것을 청하니, 답하기를,</p>	<p>[○] 藥房都提調金昌集等，別爲啓稟于大妃殿，請以國事爲念，強御粥飮，以爲扶持氣力之地，答曰：“上爲國家祭祀，次爲主上之至誠懇勸，下以追恩</p>

	<p>“위로는 나라의 제사가 있고, 다음에는 주상의 지성스런 간권(懇勸)이 있으며, 아래로는 사친(私親)께서 생시에 늘 음식에 대하여 걱정하시던 일을 생각하여 정리(情理)를 억제하고 자주 미음을 들고 있으니, 염려치 말라.”</p> <p>하였다.</p>	<p>私親生時， 食飲慮念之事， 強抑情理， 頻進粥飲， 勿爲慮念焉。”</p>
<p>경종 4권, 1년(1721 신축 / 청 강희(康熙) 60년) 7월 29일(무오) 2번째기사</p>	<p>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이유(李濡)가 졸(卒)하였다. 나이는 77세요, 시호는 혜정(惠定)이었다. 임금이 하교하기를,</p> <p>“새로 또 원로(元老)를 잃었으니, 슬픔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는가?”</p> <p>하고, 녹봉(祿俸)을 3년을 기한하고 그대로 지급하며, 관판(棺板) 한 벌을 또한 해조(該曹)로 하여금 골라 보내라고 명하였다. 이유는 마음씨가 화이(和夷)하여 각박하게 의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 젊은 나이에 조정에 나와 큰도(道)를 역임하였지만 명성과 치적이 없다가 영상(領相)의 자리에 올라서야 곧 사공(事功)이 있는 것으로 자처(自處)하면서 북한산(北漢山)에 성을 쌓을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니, 나라를 위하는 원대한 계획에서 나온 것이라 말하였지만 재주나 모유(謨猷)가 본디 짧았으며, 식견과 사려도 어두워 일 처리에 실수가 많았고, 임용(任用)이 정당하지 못한 사람이 많았으니, 나라를 좀먹고 백성을 병들게 하여 해를 끼친 것이 한정이 없었다. 그가 존호(尊號) 올리기를 청한 것도 자신을 잘 보이기 위한 것으로 사대부(士大夫)의 기풍과 절의를 여지없이 무너뜨린 것이니, 이로써 그의 평생을 단정할 수가 있다. 주상께서 사위(嗣位)함에 있어서 일찍이 3공(三公)의 소임을 받지 못했으니 사업은 진실로 논할 것이 없지마는, 제우(際遇)567) 도 말할 만한 것이 없었는데 다만 당인(黨人)들의 사호(私好) 때문에 묘정(廟庭)에 배식(配食)까지 하였으니, 공론이 해괴하게 여겼다.</p>	<p>○領中樞府事李濡卒。 年七十七， 諡惠定。 上下教曰：“新喪元老， 震悼曷勝？” 命祿俸限三年仍給， 棺板一部， 亦令該曹擇送。 濡處心和夷， 不喜爲刻核之論。 早歲立朝， 歷守大藩， 而未有聲績， 至登元輔， 乃以事功自居， 力主築北漢之議。 謂出於爲國經遠之謨， 而才猷素短， 識慮又闇， 區畫失宜， 任使匪人， 耗國病民， 流害無窮。 其請上尊號， 自爲求媚計者， 壞盡士夫風節， 此可以斷其平生矣。 逮上嗣服， 未曾受任三事， 事業固非可論， 際遇亦無可言， 而只以黨人之私好， 至於配食廟庭， 公議駭之。</p>

<p>경종 4권, 1년(1721 신축 / 청 강희(康熙) 60년) 8월 5일(계해) 3번째기사</p>	<p>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조태채(趙泰采)가 연경(燕京)에 다녀올 때 경유한 연도(沿途)의 민막(民瘼)을 차자(筭子)로 진달하고, 양서(兩西)577)의 재해를 입은 고을에는 제반 신포(身布)와 각 아문(各衙門)의 채무를 금년을 한하여 정봉(停捧)할 것과 경기(京畿)의 재해를 입은 고을에는 남한(南漢)·북한(北漢)의 진휼청(賑恤廳)에서 가져간 곡식도 모두 정봉(停捧)해 줄 것을 청하고, 또 말하기를,</p> <p>“의주 부윤(義州府尹) 이명언(李明彦)이 읍치(邑治)를 국내성(國內城)으로 옮길 것을 소청(疏請)하였기에 신도 가서 형편을 보았더니 참으로 천작(天作)의 땅으로 힘을 얻을 수 있을 듯하니, 청컨대 도신(道臣)과 수신(帥臣)으로 하여금 다시 살펴서 장문(狀聞)케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사관(史官)을 보내서 ‘차자(筭子)로 진달한 것이 타당한 일이니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케 하겠다.’고 하유(下諭)하였다.</p>	<p>判中樞府事趙泰采，筭陳燕行所經沿途民瘼，請兩西被災邑諸般身布，各衙門貸債，限今年停捧，畿內災邑南、北漢賑聽移轉穀，竝許停捧。又言：“義州府尹李明彦，疏請移邑於國內城，臣亦往見形便，信是天作之地，可以得力。請令道臣、帥臣，更加看審狀聞。”上遣史官，諭以筭陳得宜，令廟堂稟處。</p>
<p>경종 4권, 1년(1721 신축 / 청 강희(康熙) 60년) 8월 16일(갑술) 1번째기사</p>	<p>사옹원(司饗院)의 감선 제조(監膳提調) 민진원(閔鎭遠)이 설리 내관(薛里內官)579)이 공물(貢物)을 바치는 사람에게 뇌물을 요구하다가 되지 않으니 어공(御供)의 생선을 점퇴(點退)580) 하였다 하여 내관의 죄를 다스리고 이제부터는 정식(定式)을 삼아서 주원(廚院)581)에서 받아들인 물건을 설리가 감히 다시 물리치지 못하도록 할 것을 계청(啓請)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않았다.</p>	<p>甲戌/司饗院監膳提調閔鎭遠，以薛里內官，索賂貢物人，點退御供生魚，啓請治內官罪，自今定式，廚院捧入，薛里無敢更退，上不從。</p>
<p>경종 4권, 1년(1721 신축 / 청 강희(康熙) 60년) 8월 24일(임오) 4번째기사</p>	<p>예조에서 왕세제(王世弟)의 책례(冊禮)를 진하(陳賀)하던 날에 임금과 백관의 복색(服色)에 관한 일로 전례(前例)를 취고(取考)하였다. 경오년(611)의 책례(冊禮)도 또한 장렬 왕후(莊烈王后)612)의 국휼(國恤) 3년 안에 있었는데, 그때의 대신이 종사(宗社)의 대례(大禮)이니, 차길(借吉)613) 하지 않을 수 없</p>	<p>禮曹以王世弟冊禮陳賀日，上及百官服色，取考前例。庚午冊禮，亦在莊烈王后國恤三年內，而其時大臣，以宗社大禮，不可不借吉，獻議，教以冕服行</p>

	<p>다고 헌의(獻議)하자 면복(冕服)으로 행례하라고 하교(下教)하였었다. 이번의 책례도 마땅히 이에 의거하여 마련해야 할 듯하였으므로, 대신에게 의논케 할 것을 청하니, 영의정 김창집(金昌集) 등이 예조의 말과 같이 헌의하여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우리 나라에서는 상례(喪禮)가 가장 엄중하므로 국恤(國恤) 3년 안에는 가사(嘉事)나 길례(吉禮)를 거행하지 않았기에 《오례의(五禮儀)》에는 거기에 대한 의절(儀節)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만일 꼭 부득이하여 행례를 한다면 소복(素服)으로 임석(臨席)한들 무엇이 불가할 것인가? 경오년(庚午年)의 일은 그때의 대신이 무식하여 임금을 비례(非禮)로 인도한 것인데, 지금도 또 따라 계승하여 마침내 전장(典章)처럼 되고 말았으니, 탄식을 금할 수 있겠는가?</p>	<p>禮。今此冊禮，似當依此磨鍊，請議于大臣。領議政金昌集等議，如禮曹言，上從之。我朝喪禮最嚴，國恤三年之內，不舉嘉事、吉禮，故《五禮儀》，未嘗具儀節。若必不得已而行禮，則素服臨軒，亦何不可，而庚午之事，其時大臣無識，導君上以非禮，今又循襲，遂成典章？可勝歎哉！</p>
<p>경종 4권, 1년(1721 신축 / 청 강희(康熙) 60년) 9월 26일(갑인) 2번째기사</p>	<p>사포서(司圃署)에 불이 나서 서사(署舍)와 전곡(錢穀)이 죄다 탔다.</p>	<p>司圃署失火，盡燒署舍及錢穀。</p>
<p>경종 4권, 1년(1721 신축 / 청 강희(康熙) 60년) 9월 27일(을묘) 2번째기사</p>	<p>중외(中外)에 반교(頒敎)하기를, “임금은 이르노라. 금중(禁中)644) 에서 대책(大策)을 정하니 경사(卿士)도 따르고 서민(庶民)도 따르며, 저이(儲貳)의 이름이 정해지니 국본(國本)이 정해지고 만품(萬品)645) 도 안정되었다. 이에 마음을 펴보이는 고문(誥文)을 가지고 연경(延頸)646) 의 바램에 답하노라. 생각해 보건대 옛날 선왕(先王)647) 께서 하늘의 경명(景命)648) 을 받으니, 조공 종덕(祖功宗德)649) 의 높고 빛남은 삼대(三代)650) 의 융성할 때보다 뛰어났고, 문소(文昭)·무목(武穆)651) 의 계승은 백세(百世)의 경사(慶事)에 널리 퍼졌다. 나의 고독한 시대에 이르니 항상 깊은 진념(軫念)에 잠기게 되었다. 주창(主</p>	<p>頒敎中外： 王若曰，禁中決策，卿士從而庶民從；儲貳定名，國本定而萬品定。肆將敷心之誥，用答延頸之望。念昔先王，受天景命。祖功宗德之巍煥，軼三代隆；文昭、武穆之繼承，衍百世慶。逮予嬛嬛之日，恒軫昧昧而思。主鬯之位久虛，疇與奉宗廟事；監國之任靡托，無以繫億兆心。眷茲介藩之賢，幸叶橫庚之吉。聰明孝友，令譽夙彰，</p>

<p>경중 5권, 1년(1721)</p>	<p>鬯)652) 의 자리가 오래 비었으니 누구와 종묘(宗廟)의 일을 받들 것이며, 감국(監國)653) 의 소임(所任)을 물려줄 곳이 없으니 수많은 백성의 마음을 매들 곳이 없었다. 이 개번(介藩)654) 의 현명함을 돌아보니, 다행하게도 횡경(橫庚)655) 의 길경(吉慶)에 부합하였다. 총명하고 효우(孝友)하여 영예(令譽)가 일찍부터 드러났으며, 검약하고 온공하여 아조(雅操)를 더욱 신칙했도다. 자달(紫闈)656) 에 주선(周旋)하면서 몇해나 상약(嘗藥)657) 을 함께 걱정했으며, 청위(靑闈)658) 에서 가까이 지내면서 어릴 때 삭엽(削葉)659) 으로 희롱도 했다. 친(親)으로 말한다면 영고(寧考)660) 의 사랑을 받은 바요, 명령으로서 자성(慈聖)께서 밝게 선포한 바이다. 이는 나의 뜻에도 잘 맞는 일이고, 또한 중모(衆謀)가 끝까지 협찬한 바이다.</p> <p>중리(重離)661) 가 드러낸 빛은 신명(神明)의 묵우(默佑)한 휴경(休慶)을 힘입었고, 보록(寶籙)662) 에 미치는 상서는 또한 사직(社稷)이 영장(靈長)663) 할 기회로다. 이미 옥의(縟儀)664) 의 행사를 치루었으니, 어찌 쾌택(霽澤)665) 의 방류(旁流)666) 를 늦출 수 있겠는가?本月(本月) 27일 새벽으로부터 그 이전의 잡범(雜犯)으로 사죄(死罪) 이하는 모두 용서하여 제죄(除罪)667) 하고, 관직에 있는 자는 각각 한 자금(資級)을 올려 주되 자금(資窮)668) 이 된 자는 대가(代加)669) 해 주도록 하라. 아! 하늘과 사람의 마음이 귀속(歸屬)하니 많은 백성의 향대(嚮戴)가 모두 간절하고, 별이 빛나고 바다도 윤택(潤澤)하니 팔역(八域)의 구가(謳歌)가 한창 이는구나. 마땅히 동경(同慶)의 은택을 미루어 무강(無疆)한 복을 함께 누리리라. 그러기에 이에 교시(教示)하는 바이니, 모두가 자세히 알 것이다.”</p> <p>하였다. 【대제학(大提學) 이관명(李觀命)이 지어 올렸다.】</p>	<p>儉約溫恭，雅操愈飭。周旋紫闈，幾載嘗藥之同憂，密邇靑闈，童年削葉之相戲。以親則寧考之所親愛，以命則慈聖之所明宣。茲予意之允諧，亦衆謀之畢協。重離闈曜，賴神明默佑之休；寶籙延祥，抑社稷靈長之會。既經禱儀之備舉，詎緩霽澤之旁流？自本月二十七日昧爽以前，雜犯死罪以下，咸有除之，在官者各加一資，資窮者代加。於戲！天與人歸，萬姓之嚮戴咸切；星輝海潤，八域之歌詠方興。宜推同慶之恩，竝囿無疆之福。故茲教示，想宜知悉。【大提學李觀命製進。】</p> <p>辛未/藥房請入診議藥，上教曰：“病根，</p>
------------------------	---	--

<p>신축 / 청 강희(康熙) 60년) 10월 14일(신미) 1번째기사</p>	<p>를,</p> <p>“병근(病根)은 단지 한때의 증세가 아니다. 만약 나의 소원에 따라 안심하고 조치(調治)하면 혹 조금이나마 효력이 있을 것인데, 이렇게 하지 않고 한갓 마음과 생각을 허비하여 밤낮 근로한다면 비록 기묘한 약이 있다 해도 장차 어디에 쓰겠는가? 지금 약을 쓰지 아니하고도 병이 나을 방법이 있는데, 경등은 입에 쓴 약을 시험하려고 하니, 또한 어렵지 아니한가? 쾌히 내 소원을 따르는 것이 병을 다스리는 만전의 길이다. 입진(入診)하여 의약하지 말라.”</p> <p>하였다.</p>	<p>非特一時之症。若從吾願，安心調治，或有一分之效，不此之爲，徒費心慮，晝夜勤勞，則雖有奇藥，將焉用哉？今有勿藥差病之道，而卿等欲試苦口之藥，不亦難乎？快從吾願，是治病萬全之道也。勿爲入診議藥。”</p>
<p>경종 5권, 1년(1721 신축 / 청 강희(康熙) 60년) 12월 15일(신미) 1번째기사</p>	<p>사간원에서 이조 판서 심단(沈檀)을 개정(改正)하라는 계사를 정지하고, 또 말하기를,</p> <p>“예조 참판(禮曹參判) 이재(李緯)는 근교(近郊)의 땅에 살고 있고, 직임은 옥서(玉署)848)의 장관(長官)을 띠고 있는데, 전날 비망기(備忘記)를 내렸을 적에 조금도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시종일관 굳게 드러누워 있었으니, 인신(人臣)의 분의(分義)가 땅을 쓴 듯이 남음이 없었습니다. 윤각(尹愨)은 권문(權門)에 빌붙어 몰래 심복이 되었고 어두운 밤에 출입하여 정상(情狀)이 간악하니, 인심이 놀라고 분해 합니다. 형조 참판 이유민(李裕民)은 흉적(凶賊) 김창집(金昌集)에게 아첨하여 심복이 되었는데, 외람되게도 아경(亞卿)이 되고 장천(將薦)에 올랐습니다. 청컨대 이재(李緯)는 삭출(削黜)하고, 윤각(尹愨)은 원찬(遠竄)하고, 이유민은 사판(仕版)을 깎아 버리소서.”</p> <p>하고, 또 말하기를,</p>	<p>辛未/諫院停吏曹判書沈檀改正之啓，又言：“禮曹參判李緯，居在莽蒼之地，職帶玉署之長，而頃日備忘之下，略不動念，終始堅臥，人臣分義，掃地無餘。尹愨附麗權門，密作心腹，昏夜出入，情狀奸惡，人情駭憤。刑曹參判李裕民，諂事凶集，作爲心腹，猥忝亞卿，濫登將薦。請削黜緯，遠竄愨，削裕民仕版。”又言：“李弘述載去訓局米布也，色郎許源，受其分付，移送新營。撲殺陸玄，雖云屏去左右，其時從事官，萬無不知之理，請該色郎官、捕廳從事，並命拿覈。”上皆從之。憲府啓言：“李禎翊頃年一疏，以市恩徼福之說，筆之於書，尹趾完丁酉</p>

	<p>“이홍술(李弘述)이 훈국(訓局)의 쌀과 포(布)를 신고 갈 적에 색랑(色郎) 허원(許源)이 그 분부를 받아서 신영(新營)으로 옮겨 보냈습니다. 육현(陸玄)을 처 죽일 적에 비록 좌우 사람을 물리쳐 버렸다고 하지만, 그때 종사관(從事官)이 알지 못했을 리가 만무하니, 청컨대 그 색랑관(色郎官)과 포청 종사(捕廳從事)를 아울러 나포(拿捕)해서 핵실하도록 명하소서.”</p> <p>하니,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p> <p>“이정익(李楨翊)이 지난해 한 장의 상소로 ‘은혜를 팔고 복(福)을 구한다.’는 말을 글에 썼으므로, 윤지완(尹趾完)이 정유년(849)의 상소로 그 죄상을 논하자, 갑자기 상소하여 원로(元老)를 침욕(侵辱)하였습니다. 그리고 윤지술(尹志述)은 군부(君父)를 핍박해 욕하였으니 왕법(王法)을 면하기 어려운데, 서명균(徐命均)은 상소에다 ‘사기(士氣)가 저상(沮喪)된다.’며 죄가 없는 선비를 죽여 여정(輿情)에 깜짝 놀라는 것처럼 하였으니, 지위에 벗어난 혐의는 일이 월조(越俎)850)에 가깝고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 많습니다. 유학(幼學) 이희지(李喜之)는 이사명(李師命)의 아들이니 천성이 요사(妖邪)하여 대를 이어 그 악함을 이루었는데, 진사(進士) 유택기(兪宅基)·좌랑(佐郎) 심상길(沈尙吉)·직장(直長) 홍의인(洪義人) 등과 더불어 아주 치밀하게 결탁하여 어두운 밤에 왕래하니, 천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나라에 말이 떠들썩 합니다. 청컨대 이정익은 극변(極邊)으로 멀리 귀양보내고 서명균은 파직시키며 이희지 등은 먼 곳에 정배(定配)하소서.”</p> <p>하니,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p>	<p>之疏，論其罪狀，而渠乃突然上章，侵辱元老。志述逼辱君父，王法難逃，而徐命均疏，謂之士氣沮喪，有若非辜殺士，輿情驚駭者然，出位之嫌，事涉越俎，語多無脊。幼學李喜之，以師命之子，賦性妖邪，世濟其惡，與進士兪宅基、佐郎沈尙吉、直長洪義人等，締結綢繆，昏夜往來，千人所指，國言喧藉。請禎翊極邊遠竄，命均罷職，喜之等遠地定配。”上竝從之。</p>
<p>경종 6권, 2년(1722) 임인 / 청 강희(康熙)</p>	<p>영남(嶺南) 사람 노세재(盧世梓)란 자가 투소(投疏)하여 서명균(徐命均)을 공격하고 아울러 조태구(趙泰耇)를 배척하였는데, 장령(掌令) 정운주(鄭雲柱)도</p>	<p>庚申/嶺南人盧世梓者，投疏攻徐命均，竝斥趙泰耇，掌令鄭雲柱，亦以徐命均</p>

<p>61년) 2월 5일(경신) 1번째기사</p>	<p>또한 서명균을 사직(史職)에 잉임(仍任)시킨 데 대하여 상소하고 조태구를 배척하였다. 우의정 최석항(崔錫恒)이 비국(備局)의 차대(次對) 때 임금에게 엄중한 말로 힘껏 배척하여 수규(首揆)943) 를 안심시킬 것을 청하고, 또 말하기를,</p> <p>“세제(世弟)께서 잠저(潛邸)에 계셨을 때에는 사친(私親)의 신주(神主) 방제(旁題)944) 에, ‘효자 모 봉사(孝子某奉祀)’라고 썼었지만, 이제 이미 저위(儲位)에 오르셨으니, 마땅히 고쳐 쓰도록 명하셔야 합니다.”</p> <p>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호조 판서(戶曹判書) 김연(金演)이 말하기를,</p> <p>“각도(各道) 각읍(各邑)에서 지부(地部)945) 에 응당 납부해야 할 물건을 얻을 것을 청하고 방납(防納)946) 하여 이익을 취하기 때문에, 세입(歲入)이 크게 줄어들고 경비(經費)가 바닥이 납니다. 이후로 평안(平安)·황해(黃海)·영남(嶺南) 등의 도(道)에서 세금으로 거두어 들이는 미두(米豆)와 노비 공포(奴婢貢布) 및 양남(兩南)의 염세(鹽稅)·선세(船稅)를 각 아문(衙門)이나 각도의 청으로 인하여 서로 바꾸어 방납(防納)하는 것을 일체 방색(防塞)하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대관(臺官) 조원명(趙遠命)이 좌윤(左尹) 황일하(黃一夏)가 조정 신하들은 구함(構陷)한 죄를 논핵하여 삭출(削黜)할 것을 청하고, 또 김운택(金雲澤) 등 16인을 원배(遠配)하기를 다시 거듭 청하였다. 대신(大臣)과 교리(校理) 이정제(李廷濟)도 또한 그렇게 말하자, 임금이 윤희하였다. 조원명이 또 논하기를,</p>	<p>仍任史職，上疏斥泰耆。 右議政崔錫恒，於備局次對，請上嚴辭痛斥，以安首揆，又言：“世弟在潛邸，私親神主旁題，書孝子某奉祀，今既升儲，宜命改題。” 上從之。 戶曹判書金演言：“各道各邑，請得地部應納之物，防納取利，故歲入大縮，經費匱竭。 今後平安、黃海、嶺南等道稅收米豆，奴婢貢布及兩南鹽、船稅，因各衙門各道所請，相換防納者，一切防塞。” 上從之。 臺官趙遠命論左尹黃一夏構陷廷臣之罪，請削黜，且申金雲澤等十六人遠配之請。 大臣及校理李廷濟，亦以爲言， 上允之。 遠命又論鄭雲柱疏，傾軋廟堂，敲撼銓地，請罷職，上亦從之。</p>
---------------------------------	--	--

	<p>“정운주의 상소는 묘당(廟堂)을 경알(傾軋)하고, 전지(銓地)를 쳐서 뒤흔드는 것이니, 청컨대 파직(罷職)하소서.”</p> <p>하니, 임금의 또한 그대로 따랐다.</p>	
<p>경종 7권, 2년(1722 임인 / 청 강희(康熙) 61년) 4월 5일(기미) 4번째기사</p>	<p>경기도(京畿道)에 기근(飢饉)이 들었으므로, 진청(賑廳)의 쌀 2천 석을 획급(劃給)하였는데, 감사(監司) 조태억(趙泰億)의 청을 따른 것이다.</p>	<p>京畿道飢饉，劃給賑廳米二千石。從監司趙泰億所請也。</p>
<p>경종 7권, 2년(1722 임인 / 청 강희(康熙) 61년) 4월 13일(정묘) 4번째기사</p>	<p>역적(逆賊) 이천기(李天紀)가 물고(物故)되었다. 잡혀온 처음에 목호룡(睦虎龍)의 조사(招辭)를 점출(拈出)하여 국문(鞫問)하니, 그 공초(供招)에 발명(發明)하기를,</p> <p>“허다한 사설(辭說)은 모두 제가 알지 못하는 바입니다. 절대로 근거가 없습니다.”</p> <p>하였다. 국청(鞫廳)에서 승두선(僧頭扇)1061) 50자루와 대간지(大簡紙) 1백 폭(幅)을 지 상궁(池尙宮)에게 전해 주었다는 말을 가지고 이천기의 청지기 노미(老味)에게 추문(推問)하였더니, 대답하기를,</p> <p>“재작년에 부채와 간지(簡紙)를 같이 봉한 하나의 큰 뭉치를 이천기가 시켜서 목호룡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제가 체부청(體府廳) 안의 목호룡의 집에 찾아 갔더니, 목호룡은 집에 없었으므로, 그 계집종에게 주었습니다…….”</p> <p>하였다. 목호룡이 바친 이천기의 편지는 세 통이었는데, 그 첫 번째 것에는</p>	<p>逆天紀物故。被拿初，拈虎龍招以鞫之，其供發明日：“許多辭說，俱是身所不知。千萬無據。”云。鞫廳以僧頭扇五十柄、大簡紙一百幅，傳給池尙宮之說，推問於天紀廳直老味，則對曰：“上上年扇簡同封一大塊，天紀使傳給虎龍。身往體府廳內虎龍家，則虎龍不在，故給其奴婢云云。”虎龍所納天紀札三度，其一略曰：“久也所傳何言？所謂鼓舞者何事耶？所謂魯史欲送，而此冊於君不繫，故不送之。明早必須來見至望。(穴) [冗] 臣如出，則必須往見如何？讀書吟詩，決非其時，君可謂便作別人，誠非細慮云云。”其二略曰：“此間所遭，何可言？已往雖不允從，前頭必難免，情理痛</p>

	<p>대략 이르기를,</p> <p>“구야(久也)가 전한 바는 어떤 말입니까? 그리고 이른바 ‘고무(鼓舞)’란 어떤 일입니까? 이른바 노사(魯史)를 보내려고 했으나, 이 책이 그대에게는 긴요하지 않기 때문에 보내지 아니합니다. 내일 일찍 모름지기 꼭 오셔서 보기를 지극히 바랍니다. 용신(冗臣)이 만약 나온다면 반드시 꼭 찾아가 만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책을 읽고 시(詩)를 읊조리는 것은 결코 그 시기가 아닌데, 그대는 곧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으니, 진실로 작은 염려가 아닙니다…….”</p> <p>하였고, 그 두 번째 것에는 대략 이르기를,</p> <p>“요사이 당한 바를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지나간 일은 비록 운종(允從)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면하기 어렵게 되었으니 정리(情理)가 절통(絶痛)합니다. 남쪽이라고 말한 것이 몹시 부럽습니다. 몸은 비록 만 리(萬里) 밖에 있어도 마음은 서로 환하게 알고 있고, 단지 이러한 따름인데, 이러한 때에 어찌 왕래할 수 있겠습니까? 모름지기 잘 있기를 바랍니다. 신중하게 하는 것은 모두 잠자코 기다리며 깨닫는 데 있으니, 남쪽으로 보내는 계획은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속히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대와 나는 아직 늙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다시 만날 날이 없겠습니까? 다른 날 한 번 웃으며 만나는 것이 묵묵히 바라는 바입니다.”</p> <p>하였으며, 그 세 번째 것은 겉면에다 ‘구유겸상(久儒兼上)’이라 썼는데, 대략 이르기를</p>	<p>切。南爲云云，健美。身雖萬里，心則相照，只此而已，此時何可來往？須望好在，慎之。都在默會，南計得矣。速作爲可。君我尙未老，豈無相見之日？他時一笑而逢，所默禱也。”</p> <p>其三，外面書久儒兼上，略曰：“久也昨日入去，有何所聞耶？昨日意有所報，終日無所問，路濶而然耶？菀菀。兩賢中，乘隙來見如何？”鞫廳以老味直招及虎龍所納手札，更推天紀，其供曰：“扇、簡傳給尙宮之說，千萬無據，而似有曲折。年前夏月，以僧頭一柄、別扇數三柄、數十簡幅，使老味傳送于虎龍家，虎龍不在，故留置而來。虎龍以此一事，張大其數，欲以證成逆節。書札之說，亦甚無據。今見所謂手筆，則字畫雖略彷彿，要其體法，決是他人僞造。明是僞造，則書辭之殊常與否，非身所知。其中臨謫時答札，果是身之筆跡云云。”鞫廳啓曰：“天紀更推時，一無辨明，囹圄爲說。虎龍所納手札三度，一則尋常問訊之書，二則語多陰秘。天紀想以爲問訊一書，果是渠筆，陰秘二札，乃是他人之筆云，而筆畫字樣，明是一人所書，故膽</p>
--	---	--

	<p>“구야(久也)가 어제 잡혀들어 왔는데, 무슨 들은 바가 있습니까? 어제 알리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종일토록 묻는 바가 없었으니, 길이 질책거리게 된 것입니까? 아름답고 상냥한 두 현인(賢人) 중에서 틈을 타서 찾아오심이 어떠한지요?”</p> <p>하였다. 국청(鞫廳)에서 노미(老味)의 직초(直招)와 목호룡이 바친 수찰(手札)을 가지고 이천기를 다시 추문(推問)하였더니, 그 공초(供招)에 이르기를,</p> <p>“부채와 간지(簡紙)를 상궁(尙宮)에게 전해 주었다는 말은 절대로 근거가 없습니다만, 곡절은 있는 듯합니다. 두서너 해 전 여름철에 승두선(僧頭扇) 한 자루와 별선(別扇) 몇 자루, 간지(簡紙) 수십 폭을 노미(老味)를 시켜 목호룡의 집에 전해 보냈는데, 목호룡이 집에 없었으므로 그대로 두고 왔습니다. 목호룡은 이 일을 가지고 그 수를 확대시켜 역절(逆節)의 증거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찰(書札)에 관한 말 또한 매우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이른바 수필(手筆)을 보았더니 자획(字劃)은 비록 대략 비슷하였으나, 요컨대 그 체법(體法)은 결코 다른 사람이 위조(僞造)한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위조한 것이라면 편지 내용이 수상(殊常)한지의 여부는 제가 알 바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유배갔을 때 답한 서찰은 과연 제 필적(筆跡)입니다…….”</p> <p>하였다. 국청에서 아뢰기를,</p> <p>“이천기를 다시 추문(推問)하였을 때 한 마디도 변명함이 없었으나, 우물쭈물하며 말하였습니다. 목호룡이 바친 수찰(手札) 세 통 가운데 첫 번째 것은 보통으로 문신(問訊)1062) 하는 것이었으나, 두 번째 것은 음비(陰秘)한 말이 많았습니다. 이천기는 문신(問訊)한 첫 번째 편지는 과연 그의 글씨이고 음비</p>	<p>出粘付於天紀招末，以備睿覽。且僧頭扇五十柄、大簡紙一百幅，天紀使老味傳給，池尙宮事，虎龍明白現告，故老味捉來推問，則無辭自服，違端觸處綻露云云。”及天紀與虎龍面質，虎龍曰：“簡幅、扇柄，送池尙宮，使之探問，此則小小事也。”曰：“其時老味隨汝傳給扇簡，則汝所往處，卽池尙宮家云也。”虎龍曰：“汝使老味，買龍腦作藥以給尙宮。又給銀、書札往復，何謂不知?”曰：“不知也。汝平生，以應犀、羊甲事，不以爲非，其時已抱此心矣。”虎龍曰：“羊甲事，吾不知之，而汝每以斬李适者，反被害之事，戒我告變不可爲也。”曰：“汝果於論文時，偶及此事矣。”虎龍曰：“汝不曾往張世相家乎? 閔鎖遠之家，與張家對門，故恐逢汝之同壻，故爲隱避往來之際，率磊石者非乎? 汝言：‘趙松處，送李宇恒之銀，而疑趙松之除食。’李濇時爲驪牧，爲給世相官穀，貿錢六百餘兩以給，而平兵李尙籛送來銀四百兩，移用於李濇官糶耗欠之數，汝不言之乎?”曰：“吾曾以買家事，往張世相家。此家在於閔判書家前，此言則吾</p>
--	---	---

	<p>(陰秘)한 두 번째 것은 곧 다른 사람의 글씨라고 생각하여 말하였으나, 필획(筆劃)이나 글자의 모양이 분명히 한 사람이 쓴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베껴 내어 이천기의 초사 끝에 점부(粘付)하여 예람(睿覽)에 대비하였습니다. 또 승두선 50자루와 대간지 1백 폭을 이천기가 노미(老味)를 시켜 지 상궁에게 전해 주게 한 일을 목호룡이 명백하게 현고(現告)하였으므로, 노미를 잡아다 추문하였더니, 아무 말 없이 자복(自服)하여 어긋난 단서가 닿는 곳마다 드러났습니다.”</p> <p>하였다. 이천기가 목호룡과 면질하자, 목호룡이 말하기를,</p> <p>“간지(簡紙) 몇 폭과 부채 몇 자루를 지 상궁에게 보내어 탐문(探問)하게 하였는데, 이것은 소소한 일이다.”</p> <p>하니, 말하기를,</p> <p>“그때 노미(老味)가 너를 따라서 부채와 간지(簡紙)를 전해 주었으니, 네가 간 곳은 곧 지 상궁의 집이었다고 하였다.”</p> <p>하였다. 목호룡이 말하기를,</p> <p>“네가 노미를 시켜 용뇌(龍腦)1063) 를 사서 약을 만들어 상궁에게 주고, 또 은과 서찰을 주어 왕복하게 했는데, 어찌하여 모른다고 하는가?”</p> <p>하니, 답하기를,</p>	<p>亦說道， 而李、趙銀、穀事， 孟浪矣。” 虎龍曰：“初頭汝裹銀二百五十兩， 率恣石掛鞍來訪， 招給白望。 其後二百兩， 則汝貸於金錫慶， 至今未償矣。” 曰：“蓮洞家舍放賣後， 移買金鎭商家， 而價本不足， 故貸用於錫慶家矣。” 虎龍曰：“趙洽之銀千餘兩， 何處用之?” 曰：“給吾之親戚， 而無情分矣。” 鞫廳以語多窘遁， 請刑。 刑問二次後， 以鄭麟重招， 有盤問之端， 停刑。 問目曰：“麟重招以爲：‘天紀、龍澤， 有聚銀內嬖行用之事， 故心不樂蹙頰云云。’ 若虎龍之言， 則每以告者爲諉， 而麟重則腹心之交， 而所供如此。 沈尙吉與虎龍招以爲：‘錢五十兩、銀一百兩， 送于天紀處’ 云， 而金龍澤， 亦以爲：‘道峰書院扶助輸送’ 云。 白望家聚置銀子一千三百餘兩、錢一百四十餘兩， 今已搜得， 聚銀行賂之狀， 雖欲掩諱， 有不可得云云。” 供曰：“永平玉屏書院， 有修理事， 全羅兵營所送銀四十兩， 送于龍澤家。 白望與龍澤最親， 虎龍與身最親， 麟重輩以虎龍告變之故， 謂身必有此事。 麟重稱以尙奇虎龍， 稱以英雄、豪傑， 爲</p>
--	--	---

	<p>“모른다. 너는 평생 동안 박응서(朴應犀)·서양갑(徐洋甲)의 일(1064) 을 잘못 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 그때 이미 이런 마음을 품었던 것이다.”</p> <p>하였다. 목호룡이 말하기를,</p> <p>“서양갑의 일은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너는 언제나 이괄(李适)을 참(斬)한 자가 도리어 해(害)를 입은 일을 가지고 내가 고변(告變)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계하였다.”</p> <p>하니, 말하기를,</p> <p>“네가 과연 문장(文章)을 논할 때 우연히 이 일을 언급하였다.”</p> <p>하였다. 목호룡이 말하기를,</p> <p>“네가 일찍이 장세상(張世相)의 집에 가지 아니하였느냐? 민진원(閔鎭遠)의 집이 장가(張家)와 문을 마주하고 있으므로, 너의 동서(同婿)를 만날까 두려워 하여 일부러 숨고 피하며 왕래할 즈음에 맞돌이[磊石]를 데리고 가지 않았더냐? 그리고 네가 말하기를, ‘조송(趙松)에게 이우항(李宇恒)의 은을 보냈는데 조송이 덜어 먹을까 의심스럽다.’고 하였다. 이현(李瀾)이 그때 여주 목사(驪州牧使)가 되어 장세상에게 관곡(官穀)을 주자 돈 6백여 냥으로 바꾸어 주었고, 평안 병사(平安兵使) 이상집(李尙畚)이 은 4백 냥을 보내 오자 이현의 모 흠(耗欠)된 관조(官糶)의 수량에다 옮겨 썼는데, 이것을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는가?”</p>	<p>不可聞不可道之說。 言既入耳之後，不可猝然告變，因循荏苒，以至於此耳。 虎龍既與身深言，必除去身然後可以展足，故有此告變，知情不告，固知同罪。 所謂不可聞、不可道之說，自可推知，何必復問？掌中書字事，其時身自狎鷗亭入來，麟重曰：‘昨日吾及喜之、白望輩，會于德雨家，各書掌中字，白望掌中所書字，極其妄悖。德雨云：「吾亦悔見其人也。」」云云。” 鞫廳以其陰凶情節，既已自服，而遲晚二字，特不發口，加刑至六次，遲晚猶拒逆徑斃。 龍澤、天紀於春澤，或爲再從兄弟，或爲同生姊妹，並受頤命之卵育，薰習黠染，視惡逆爲常事，眞是梟獍異類，不可化者也。 因其徑斃，未及正法，輿情憤恨。</p>
--	--	--

	<p>하니, 말하기를,</p> <p>“내가 일찍이 집을 사는 일 때문에 장세상의 집에 간 적이 있었다. 이 집은 민판서(閔判書)의 집 앞에 있으므로, 이 말은 내가 또한 한 적이 있으나, 이 현이니 조송이니 은이니 관곡이니 하는 일은 맹랑한 것이다.”</p> <p>하였다. 목호룡이 말하기를,</p> <p>“처음에는 내가 은 2백 50냥을 싸서 맞돌이를 데리고 안장에 싣고 찾아왔으므로 백망(白望)을 불러 주었었다. 그 뒤 2백 냥은 네가 김석경(金錫慶)에게 빌려 주었는데, 지금까지 갚지 못하고 있다.”</p> <p>하니, 말하기를,</p> <p>“연동(蓮洞)의 집을 판 뒤에 김진상(金鎭商)의 집을 샀는데, 값이 본래 부족하였으므로 김석경에게 빌어서 쓴 것이다.”</p> <p>하였다. 목호룡이 말하기를,</p> <p>“조흡(趙洽)의 은 1천여 냥은 어디에 썼는가?”</p> <p>하니, 말하기를,</p> <p>“나의 친척에게 주었는데 정분(情分)은 없다.”</p>	
--	--	--

하였다. 국청에서 군색하고 빠져 나가고자 꾸며대는 말이 많다 하여 형신(刑訊)하기를 청하였다. 두 차례 형문한 뒤 정인중(鄭潑重)의 조사(招辭)에 반문(盤問)할 단서가 있다 하여 형신을 정지하였다. 문목(問目)에 이르기를,

“정인중의 조사에, ‘이천기·김용택이 은을 모아 내폐(內嬖)에게 두루 쓰는 일이 있었으므로, 마음속으로 달갑게 여기지 아니하여 이맛살을 찌푸렸다.’고 하였는데, 만약 목호룡의 말이라면 매번 고한 것으로 핑계대겠지만, 정인중은 지극히 친밀한 교분(交分)인데도 공초한 바가 이와 같았으며, 심상길(沈尙吉)은 목호룡과 더불어 공초하기를, ‘돈 50냥과 은 1백 냥을 이천기에게 보냈다.’고 하였으며, 김용택(金龍澤) 또한 ‘도봉 서원(道峰書院)에 부조(扶助)로 실어 보냈다.’고 하였다. 그리고 백망의 집에 모아둔 은자(銀子) 1천 3백여 냥과 돈 1백 40여 냥을 지금 이미 수색해 냈으니, 은을 모아 뇌물을 쓴 정상을 비록 엄취(掩諱)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하였는데, 공초하기를,

“영평(永平)의 옥병 서원(玉屏書院)에 수리할 일이 있어 전라 병영(全羅兵營)에서 보낸 은 40냥을 김용택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백망은 김용택과 가장 친밀하였고 목호룡은 저와 가장 친밀하였는데, 정인중의 무리는 목호룡이 고변(告變)하였기 때문에 저에게도 반드시 이런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정인중은 목호룡을 높여서 기이하다고 일컬고 영웅 호걸이라고 일컬으면서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말을 하였는데, 말이 이미 귀에 들어간 뒤에 갑자기 고변(告變)할 수가 없어서 인순(因循)하며 세월을 끌다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뿐입니다. 목호룡이 이미 저와 더불어 속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반드시 저를 제거한 뒤에라야 발을 뺄 수 있을 것이므로 이

	<p>렇게 고변(告變)한 것이니, 그 정상을 알고도 고하지 아니한 것은 진실로 죄가 같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이른바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말이란 스스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이니, 어찌 다시 물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손바닥에 글자를 쓴 일은 그때 제가 압구정(狎鷗亭)에서 들어오자, 정인중이 말하기를, ‘어제 나와 이희지(李喜之)·백망이 무리가 덕우(德雨)1065)의 집에 모여 각각 손바닥에 글자를 썼는데, 백망이 손바닥에 쓴 글자가 지극히 망령되고 패리(悖理)하였다. 그리고 덕우(德雨)도 말하기를, 「나 또한 그 사람을 만난 것을 후회한다.」고 하였다.’ 하였습니다.”</p> <p>하였다. 국청에서 그 음흉한 정절(情節)은 이미 자복(自服)하였지만, ‘지만(遲晚)’이란 두 글자는 유독 입에 올리지 않는다 하여 형신(刑訊)을 더하여 6차에 이르렀으나, 그래도 지만(遲晚)이란 말을 거역(拒逆)하고 경폐(徑斃)하였다. 김용택과 이천기는 김춘택(金春澤)에게 혹은 재종 형제(再從兄弟)가 되기도 하고 혹은 동생 남매(同生娚妹)가 되기도 하는데, 모두 이이명(李頤命)이 양육[卵育]하여 점염(黑染)1066)의 습관에 물들어 악역(惡逆)을 예삿일로 보았으니, 진실로 효경(梟獍)과 같은 이류(異類)이어서 교화(教化)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경폐(徑斃)하였기 때문에 미처 정법(正法)하지 못하였으므로, 여정(輿情)이 분한(憤恨)해 하였다.</p>	
<p>경종 8권, 2년(1722) 임인 / 청 강희(康熙) 61년) 5월 2일(병술) 1번째기사</p>	<p>송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p> <p>“영단(靈壇)에 규벽(圭璧)1150)을 꿋고 친히 기도하신 것이 두 번에 이르렀으나, 비가 올 듯하다가 오지 않는 채 하늘의 감응(感應)이 막연합니다. 청컨대 중신(重臣)과 대신(大臣)을 보내어 차례로 비를 빌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윤택하고 특교(特敎)를 내리기를,</p>	<p>丙戌/政院啓曰：“靈壇植璧，親禱至再，而欲雨不雨，冥應漠然。請遣重臣大臣，次第祈雨。”上允之。下特敎曰：“旱災至此，民事渴悶。鞫囚一向遷就，刑推獄囚，減死定配，其餘獄囚放送。”政院以自古恤囚時，逆獄未有徑先疏釋之舉。聖教不敢奉承之意，陳</p>

	<p>“한재(旱災)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민사(民事)가 갈민(渴悶)하다. 국청 죄수를 한결같이 시일을 끌고 있으니 옥수(獄囚)를 형추(刑推)해서 감사(減死)하여 정배(定配)하도록 하라. 그리고 그 나머지 옥수는 방송(放送)하라.”</p> <p>하였다. 승정원에서 예로부터 죄수를 구출할 때 역옥(逆獄)을 경솔하게 앞질러 소식(疏釋)한 일은 없었으므로, 성교(聖敎)를 감히 봉승(奉承)할 수 없다는 뜻을 진계(陳啓)하니, 임금이 답하기를,</p> <p>“번거롭게 하지 말라.”</p> <p>하였다.</p>	<p>啓, 上答曰: “勿煩。”</p>
<p>경종 8권, 2년(1722) 임인 / 청 강희(康熙) 61년) 5월 3일(정해) 2번째기사</p>	<p>역적 이영(二英)이 복주(伏誅)되었다. 처음에 목호룡(睦虎龍)이 공초(供招)하기를,</p> <p>“아무개가 은 2천 냥을, 아무개가 은 5백 냥을, 아무개가 은 70냥을 내었는데, 백망(白望)이 이영(二英)에게 주어 그 사촌인 궁녀(宮女) 이씨(李氏)와 같은 성(姓)인 궁인(宮人) 백씨(白氏)와 지 상궁(池尙宮)에게 바치게 해서 독약을 쓰는 일을 도모하게 하였습니다…….”</p> <p>하였으므로, 국청(鞠廳)에서 이것을 가지고 문목(問目)을 내었더니, 발명(發明)하여 공초를 바쳤다. 다시 추문(推問)하는 문목에 이르기를,</p> <p>“은자(銀子) 1백 냥을 백망이 봉(封)해 둔 정상을 목호룡이 눈으로 직접 보았</p>	<p>逆二英伏誅。初，虎龍招曰：“某人出銀二千兩，某人出銀五百兩，某人出銀七十兩，白望給二英，納於其四寸宮女李氏、同姓宮人白氏，與池尙宮處，圖爲行藥之事云云。”鞠廳以此發問目，則發明納供。更推問目曰：“銀子百兩，白望對置之狀，虎龍目見，池氏自是白望平生藉口之人，既是宮中第一尙宮，則豈有不知之理？白望自謂暗結於李氏、白氏，且使二英暗通，箇箇直告。前招中以元無四寸李氏之爲宮人，泛然發明，欲爲掩諱之狀，萬萬奸巧云云。”招辭猶牢諱。遂請刑，刑問一</p>

	<p>고, 지씨(池氏)는 원래 백망이 평생 구실로 삼던 사람으로 이미 궁중의 제일 상궁(尙宮)이었으니, 어찌 알지 못할 이치가 있겠느냐? 백망이 스스로, ‘이씨(李氏)·백씨(白氏)와 몰래 결탁하고, 또 이영(二英)을 시켜 몰래 내통하게 하였다.’고 낱낱이 직고(直告)하였는데, 전일의 초사 가운데, ‘원래부터 사촌(四寸) 이씨(李氏)가 궁인이 된 일이 없다.’고 범연하게 발명하였으니, 덮어 숨기 고자 하는 정상이 너무 간교하다.”</p> <p>하였으나, 초사(招辭)를 여전히 굳게 은휘(隱諱)하였다. 드디어 형문(刑問)하기를 청하여 한 차례 형문하였으나, 자복(自服)하지 않았다. 그 어미 업이(業伊)가, ‘이씨 궁녀는 이영(二英)의 사촌(四寸)이 아니고 곧 육촌(六寸)으로, 그 이름이 목세(墨世)인데, 바야흐로 대전(大殿)의 궁인이 되었습니다.’라고 공초하고, 목세가, ‘과연 육촌이며, 이영이 계집종 철이(鐵伊)를 시켜 부르기에 재차 가서 만나고 백망과 수작하였습니다.’라고 공초하자, 이것을 가지고 다시 추문하였더니 공초하기를,</p> <p>“백망이 목세(墨世)를 만나 보고자 했으므로 서로 만나게 해 주었습니다. 수작(酬酢)한 뒤 저에게 누설하지 말라고 경계하였으므로, 처음 초사에 감히 직고(直告)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 비로소 실토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무렵에 백망이 목세에게 말하기를, ‘내간(內間)에 어떤 기별(奇別)이 있으면 이렇게 저렇게 서로 통하여 판(板)을 바꾸도록 하라. 내가 서로 친하게 지내는 양반이 좋은 벼슬을 하면 나 또한 요(料)를 먹을 수 있다.’고 하자, 목세가 답하기를, ‘어찌 이런 말을 하느냐? 내인[內人]이 어떻게 나랏일을 알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은자(銀子)는 백망이 언제나 책권(冊卷)이라고 일컬으며 출입할 때 소매 속에 넣고 왔다가 소매 속에 넣고 나갔으니 몹시 비밀스러웠으며, 그 처남(妻男)이 모은 돈이라고 일컬었습니다.”</p>	<p>次不服。及其母業伊招以爲：“李氏宮女，非二英四寸，乃六寸。其名墨世，方爲大殿宮人。”墨世招以爲：“果是六寸，而二英使婢鐵伊邀來，再次往見，與白望酬酢”云。以此更推，則供曰：“白望欲見墨世，故要使相見酬酢後，戒身勿泄，故初招不敢直告，今始吐實。上年十一月間，白望言于墨世曰：‘內間如有某樣奇別，這這相通，使之換板。使吾相親兩班，爲好爵，則吾亦可以食料。’墨世答云：‘何爲此言？內人何知國事乎？’銀子，白望每稱冊卷，出入，或袖來袖去，甚爲秘密，稱以其妻甥所聚之錢。”鞫廳以前後所供變幻，情狀巧詐，加刑。及與水賜勝業面質，勝業曰：“上年八月及十二月，汝以酒瓶及小札，凡三次分送於白氏、李氏兩宮人，使吾及鐵伊母傳給者，非耶？”二英默然良久。勝業叱曰：“汝何不直告，使我遭此境也？”二英曰：“果有是事，而初不直告者，白氏非白望之族屬故也。白烈來宿事，書札往復、酒瓶出入等說，汝言皆是矣。”至受刑五次，第二度始遲晚。其結案曰：“白望以趙洽銀二千兩，尙</p>
--	---	--

	<p>하였는데, 국청에서 전후로 공사(供辭)를 변환(變幻)한 정상이 교사(巧詐)하다 하여 형신(刑訊)을 가하였다. 무수리[水賜] 승업(勝業)과 면질(面質)시키자 승업이 말하기를,</p> <p>“지난해 8월과 12월에 네가 술병과 작은 서찰을 무릇 세 차례나 백씨·이씨 두 궁인에게 나누어 보내고는 나와 철이(鐵伊)의 어미로 하여금 전해 주게 한 것이 사실이 아니냐?”</p> <p>하니, 이영(二英)이 한참 동안 잠자코 말이 없었다. 승업(勝業)이 꾸짖기를,</p> <p>“너는 어찌하여 직고(直告)하지 않고서 나로 하여금 이런 지경을 당하게 하느냐?”</p> <p>하니, 이영이 말하기를,</p> <p>“과연 이런 일이 있었으나, 처음에 직고(直告)하지 아니한 것은 백씨가 백망의 족속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백열(白烈)이 와서 자던 일과 서찰을 왕복하고 술병을 출입했다는 등의 말은 네 말이 모두 옳다.”</p> <p>하였다. 다섯 번째의 형신에서 제2도(度)에 이르러 비로소 지만(遲晚)하였는데, 그 결안(結案)에 이르기를,</p> <p>“백망이 조흡(趙洽)의 2천 냥, 심상길(沈尙吉)의 은 2백 냥, 홍의인(洪義人)의 은 50냥, 이희지(李喜之)의 은 70냥을 저에게 주어 궁녀 이씨·백씨에게 바치</p>	<p>吉銀二百兩，義人銀五十兩，喜之銀七十兩，給於身，納於宮女李氏、白氏，轉給池尙宮，使之行藥。白望欲見墨世，故身要使相見，白烈，四次留宿於身家，與白望相面。小札頻頻往復之狀，白烈既已直招，白望及望之女與妹，皆與池尙宮相親往來，池尙宮亦頻頻往來於白望家。身以賣酒爲業，故每有好酒，望輒以酒壺，入送于池尙宮及其子昌貴家。白望所佩囊中，常有丸藥三箇，則蘇合元，渠自和月經飲之，黃色丸藥，則名不知，而密密糊封，納于筆匣，又藏囊中。其囊子常時秘封，夜寢之時，必置之枕褥之下，不令身見之，故身不知其幾九，而年月不記，池尙宮出來渠家時，白望親自齎往，仍爲給送事，與知的實云。”</p>
--	--	--

	<p>게 하고, 다시 지 상궁에게 전해 주어 독약을 쓰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백망이 묵세(墨世)를 만나 보고자 하였으므로 제가 서로 만나게 해 주었으며, 백열은 네 차례 저희 집에 유숙(留宿)하며 백망과 상면(相面)하였습니다. 소찰(小札)을 자주 왕복한 정상은 백열이 이미 곧바로 공초하였는데, 백망 및 백망의 딸과 누이가 모두 지 상궁과 서로 친하게 지내며 왕래하였고, 지 상궁 또한 자주 백망의 집에 왕래하였습니다. 저는 술을 파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었으므로 언제나 좋은 술이 있었는데, 백망은 번번이 술단지(酒單)를 지 상궁과 그 아들 창귀(昌貴)의 집에 보냈습니다. 백망이 차고 있는 주머니 속에는 항상 환약(丸藥) 3개가 있었는데, 소합원(蘇合元)은 그가 스스로 월경(月經)에 타서 마셨고, 황색 환약은 이름은 알 수 없으나 단단히 풀로 봉하여 필갑(筆匣)에 넣고 또 주머니 속에다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 주머니는 평상시에 비봉(秘封)하였고, 밤에 잘 때면 반드시 이부자리 밑에다 두어 저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저는 그것이 몇 알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연월(年月)은 기억하지 못하나, 지 상궁이 그의 집에 나왔을 때 백망이 직접 가지고 가서 그대로 주어 보낸 일을 참여해 알았음은 적실(的實)합니다.”</p> <p>하였다.</p>	
<p>경종 8권, 2년(1722 임인 / 청 강희(康熙) 61년) 5월 14일(무술) 1번째기사</p>	<p>역적 서덕수(徐德修)가 복주(伏誅)되었다. 서덕수는 애초에 조흠(趙洽)의 초사(招辭)에서 나왔는데, 이정식(李正植)·김창도(金昌道)가 승복한 초사에서도 모두 서덕수가 독약을 쓰는 흉모(凶謀)에 동참(同參)하였다고 말하였다. 1차의 형문(刑問) 제6도(度)에 지만(遲晚)하였는데, 그 결안(結案)에 이르기를,</p> <p>“지난해 5월에 제가 장세상(張世相)과 소훈(昭訓)을 독살(毒殺)하는 일을 상</p>	<p>戊戌/逆德修伏誅。德修，初出於趙洽招，而李正植、金昌道承款之招，皆言德修同參於行藥之凶謀。刑問一次，第六度遲晚。其結案曰：“上年五月，身與世相相議，毒殺昭訓之事，六月間以銀三兩，使正植入送于世相處，使之圖行。毒藥，則以二百金買得於白望</p>

의(相議)하고, 6월 무렵에 은 3냥을 이정식을 시켜 장세상에게 들여보내어 도모해 행하게 하였으니, 독약은 2백 금(金)으로 백망(白望)이 산 곳인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장씨(張氏) 성의 역관(譯官)에게 사서 동궁(東宮)의 주방 나인[廚房內人] 이씨(李氏)로 하여금 음식에 섞어 쓰게 하였습니다. 역관(譯官)과 나인[內人]에 대해서는 다만 장세상의 말만들었으므로 상세히 알 수 없으나, 소훈(昭訓)을 독살(毒殺)한 뒤 이정식이 와서 장세상의 말을 전하기를, ‘계획대로 일이 이루어졌으니, 과연 좋다. 그 독약은 효과가 있으므로 다른 곳에 시험해 보려고 하는데, 은자(銀子) 1천 냥이 있고 난 뒤에야 쓸 수 있으니, 반드시 꼭 얻어내도록 도모하라.’고 하였으므로 제가 조흡의 집에 가서 이 뜻을 언급하고 인하여 은 2백 냥을 구했습니다. 또 심상길(沈尙吉)의 집에서 들건대 은 1백 냥과 대호지(大戶紙) 15권(卷), 부채 30자루가 김민택의 집에 있다고 하므로, 인하여 김민택의 집으로 가서 더불어 독약을 쓰는 일을 모의하고 은자와 종이·부채를 먼저 가져다 쓸 뜻을 언급하였더니, 김민택이 말하기를, ‘심상길이 보낸 것은 나 또한 쓸 곳이 있으나, 그대의 일이 이와 같으니 먼저 가지고 갈 만하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즉시 종을 시켜 장세상의 집에 전하여 보내고, 장세상에게, ‘이것이면 또한 넉넉히 쓸 수 있겠는가?’ 하자, 장세상이 말하기를, ‘이 밖에 또한 다른 물건이 있어야만 거의 쓸 수 있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제가, ‘모름지기 조심하고 신중하고 치밀하게 해야 할 것이다.’하였더니, 장세상이 말하기를, ‘나는 이미 늙었고, 또 일을 많이 겪어보았으니, 어찌 잘하지 않겠는가? 전일에 썼던 독약이 아직도 남아 있으니, 추이(推移)해 쓸 수 있다.’ 하였습니다. 저는 김창도·이정식과 일찍이 한 자리에 앉아 있었다. ‘청정(廳政)하는 일이 성사되지 않았으니, 노론(老論)은 장차 실패할 것이다. 그러니 비망기(備忘記)가 만약 내려진다면 좋을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제가 궁액(宮掖)과 친척의 관계를 맺고 있었으므로 내간(內間)의 일을 저절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궁성(宮城)을 호위(扈衛)하는 일은

所買之處，譯官名不知張姓人家，使東宮廚房內人李氏，和飲食用之。譯官及內人，只聞世相之言，故不能詳知，而毒殺昭訓後，正植來傳世相之言曰：‘成事如計，果好矣。其藥有效，欲試他處，而有銀子千兩，然後可以用之，必須圖得。’云。身往洽家，以此意言及，仍覓銀二百兩。且聞尙吉家，銀一百兩、大戶紙十五卷、扇子三十柄，在於民澤家，仍往民澤家，與議行藥事，言及銀子、紙地、扇子先爲取用之意，民澤曰：‘尙吉所送，吾亦有用處，而君事如此，可先持去。’身即使奴子，傳送世相家，而謂世相曰：‘此亦足用耶?’世相曰：‘此外亦有他物，庶可用之。’身曰：‘須操心慎密爲之。’世相曰：‘吾已年老，經事且多，豈不善爲乎? 前用之藥，尚有餘，可以推移用之。’身與昌道、正植，嘗同坐語曰：‘聽政事不成，老論將敗。備忘若下則好矣。’此則身戚連宮掖，故內間事，自然聞之。宮城扈衛事，昌道來言：‘昌集、器之等以爲：「備忘若下，則卽爲扈衛宮城，使內外嚴截，且令拒塞疏爭紛紜之患。’身與諸賊輩，謀逆的

	<p>김창도가 와서 말하기를, ‘김창집(金昌集)·이기지(李器之) 등이, 「비망기가 만약 내려진다면 즉시 궁성을 호위하여 안팎을 엄하게 끊게 하고, 또 상소하여 시끄럽게 다투는 근심을 막아야 한다.」 하였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역적의 무리와 함께 모역(謀逆)한 것이 적실(的實)합니다.”</p> <p>하였다</p>	<p>實云云。”</p>
<p>경종 8권, 2년(1722 임인 / 청 강희(康熙) 61년) 5월 15일(기해) 2번째기사</p>	<p>역적 정우관(鄭宇寬)이 복주(伏誅)되었다. 정우관은 애초에 조흠(趙洽)의 초사(招辭)에서 나왔는데, 잡혀와 여러 번 공초(供招)하였으나 저뢰(抵賴)하였고, 중간에 갑자기 고변(告變)을 일컬으며 문목(問目) 밖의 흉패(凶悖)한 말을 많이 하였으나 일이 모두 터무니없는 것으로 귀착되었다. 다섯 차례 형문(刑問)을 받자 비로소 지만(遲晚)하여 납공(納供)하였는데, 그 결안(結案)에 이르기를,</p> <p>“동당(同黨)의 사람들이 이미 잡혀 들어갔으므로 저도 이미 잡혀들어가면 반드시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죽을 곳에서 살아날 계책을 꾸며 이것을 가지고 서덕수(徐德修)에게 의논하였더니, 서덕수가 말하기를, ‘네가 만약 갇힌다면 헛되이 죽을 수는 없으니, 차라리 고변(告變)하여 살아날 계책으로 삼으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비록 고변을 하고자 하더라도 고변(告變)할 자료가 없으니, 어찌하면 좋은가?’ 하였더니, 서덕수가 말하기를, ‘아무 조목(條目)에 연고를 핑계대어 훈장(訓將)을 잡아들인다면 거의 일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하므로, 제가 ‘어떤 연고를 빙자하여 핑계대면 붙잡아들일 수 있으니, 어찌 잘해 보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고는, 갇힌 뒤에 이르러 과연 ‘가기 이방(可欺以方)1176)’의 뜻으로 거짓말로 발고(發告)하였습니다. 의금부(義禁府)의 당상(堂上)을 두루 거론(擧論)한 것은 대개 가탁하여 몰아냄으로써 옥</p>	<p>○逆宇寬伏誅。 宇寬初出於趙洽招，被拿累招，抵賴，中間猝稱告變，多發問目外凶悖之說，事皆落空。 至被五次之刑，始遲晚納供。 其結案曰：“同黨之人，既已就拿，身已知被拿則必死，故敢爲死中求生之計，以此議于徐德修，則德修曰：‘汝若被囚，不可空死，寧爲告變，以爲圖生之計。’身曰：‘雖欲告變，無可告之資，奈何?’德修曰：‘某條托故，捉入訓將，則庶可生事。’身曰：‘憑托某故，可以捉入，豈不善爲之乎?’及被囚之後，果以可欺以方之意，誣罔發告，歷舉禁府堂上者，蓋爲假托驅逐，以爲緩獄之計。判義禁，是首堂上，金叅判，是知名之宰相故也。至於所告內官等，俱是知名內官，故果爲誣引，至於判付除拜等說，意在陷害內官，故做此誣上不道之</p>

사(獄事)를 늦추려는 계책으로 삼았던 것이었으며, 판의금(判義禁)은 수당상(首堂上)이었고 김 참판(金參判)은 이름을 아는 재상(宰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관(內官) 등을 발고(發告)한 데 이르러서는 모두 이름을 아는 내관들이었으므로 과연 거짓으로 끌어낸 것이며, 판부(判付)로 제배(除拜)하였다는 등의 말에 이르러서는 뜻이 내관들을 함해(陷害)하는 데 있었으므로 이런 윗사람을 속이는 부도(不道)한 말을 지어냈던 것입니다. 제가 이미 바른 대로 공초(供招)하였으니, 여러 역적들과 흉역(凶逆)을 모의(謀議)한 정절(情節)을 또한 어찌 감히 은휘(隱諱)하겠습니까? 저는 시골에서 올라와 장세상(張世相)의 집에 붙어 살았는데, 서덕수(徐德修)·이정식(李正植)·김창도(金昌道) 등이 장세상과 서로 친하게 지내며 왕래하였으므로 저도 또한 더불어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덕수와 김창도가 이정식의 집에 있으면서 저를 불렀습니다. 제가 과연 가서 보았더니, 이정식이 말하기를, ‘우리들의 일을 영공(令公)에게 속일 수 없다.’ 하고, 이어서 말하기를, ‘시사(時事)가 이와 같으니 주상(主上)께서 몹시 어려울 것이다. 주상께서 만약 살아 있다면 노론(老論)은 장차 죄다 죽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정식의 궤(櫃) 속에서 한 개의 봉(封)한 물건을 꺼내어 저로 하여금 장 지사(張知事)에게 전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제가 어떤 물건인지를 물어보았더니 그는 약물(藥物)이라고 하였는데, 종이를 겹겹이 싸서 봉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손으로 만져 보았더니 곧 환약(丸藥)이었는데, 크기는 큰 콩알만 하였고 개수는 수십 개쯤 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대궐 안의 장세상이 입직(入直)하고 있는 곳으로 들어가 사람이 없을 때를 기다려 전해 주었더니, 장세상이 말하기를, ‘누가 보냈느냐?’고 하였습니다. 제가 이정식의 무리가 보낸 것이라고 말하자, 장세상이 즉시 화가 난 표정으로 눈을 부릅뜨고 보더니 나오게 하였습니다. 어느날 장세상이 저에게 말하기를, ‘이번에 청정(聽政)하는 일을 노론(老論)이 봉행(奉行)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늘이 주는데도 받지 아니한 것이다. 장래에 노론은 반드시

說。身既已直招，與諸賊謀凶情節，亦何敢隱諱乎？身自鄉上來，寄托於世相家，而德修、正植、昌道等，與世相，相親往來，故身亦與之相親。一日，德修、昌道，在正植家，招身，身果爲進去，則正植曰：‘吾輩事不可欺此令公。’仍曰：‘時事如此，主上甚難。此主上若在，老論將盡死。’仍於正植櫃中，出一封物，使身傳給於張知事。身問其何物，則云是藥物，而重重以紙裹封。身以手捫之，卽是丸藥，而其大如大豆，數可數十許。身持入闕中世相入直處，待其無人傳給，則世相曰：‘何人送之？’身以正植輩所送言之，則世相卽爲目攝，使之出來。一日世相謂身曰：‘今番聽政之事，老論不爲奉行，此天與不取也。將來老論，必無遺種。若圖得備忘一張，卽爲宮城扈衛則好矣。纔以此事，言及于德修。’其後逢着德修輩於正植家，則德修輩以爲：‘扈衛事，領相及訓將，相議定計，已出中軍李森爲忠清兵使，以柳就章代之’云。身誣上不道，陷人惡逆，與諸賊謀逆的實云云。”

	<p>씨도 남지 않을 것인데, 만약 한 장의 비망기(備忘記)를 도모해 얻어 즉시 궁성(宮城)을 호위(扈衛)한다면 좋을 것이다. 이제 막 이 일을 서덕수에게 언급하였다.’라고 하였는데, 그 뒤 서덕수 무리를 이정식의 집에서 만났더니, 서덕수의 무리가, ‘호위(扈衛)하는 일은 영상(領相)과 훈장(訓將)이 상의하여 계획을 정하였는데, 이미 중군(中軍) 이삼(李森)을 내보내어 충청 병사(忠淸兵使)로 삼고 유취장(柳就章)으로 대신하게 하였다.’ 하였습니다. 제가 성상을 부도(不道)하게 무욕하고 다른 사람을 악역(惡逆)에 빠뜨리며 여러 역적들과 모역(謀逆)한 것이 적실(的實)합니다.”</p> <p>하였다.</p>	
<p>경종 8권, 2년(1722 임인 / 청 강희(康熙) 61년) 6월 21일(갑술) 3번째기사</p>	<p>사헌부(司憲府)에서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고, 또 아뢰기를,</p> <p>“국가의 저축이 빈 것이 근일(近日)보다 심한 적이 없는데, 절가(折價)1255)·방납(防納)의 폐단이 실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대개 외방(外方)의 유정지공(惟正之供)1256) 을 본곡(本穀)으로 하지 아니하고, 중간에서 이익을 탐내는 무리들이 주관(主管)하는 유사(有司)를 매개로 절가(折價)하여 미리 바치되, 만천(萬千)의 미곡(米斛)을 그가 스스로 조종(操縱)하고 농단(壟斷)하며, 수령(守令)이 된 자 또한 실어나르는 데 폐단을 덜 수 있는 것을 편리하게 여겨 구차하게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영상(嶺上)의 일곱 고을에서 가흥(嘉興)으로 쌀을 실어나를 적에 쌀로 바치는 경우는 언제나 두세 고을에 불과하니, 이와 같은데도 그 옛날 붉게 썩도록 넉넉하던 것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1년의 경비(軍費)가 항상 부족한 것을 근심하고 위태롭게 아침 저녁으로 지탱하기 어려운 형세가 있는 것은 반드시 이에서 말미암아 그러하지 아니함이 없으니, 일의 한심스러움이 극도에 이르렀습니다. 청컨대 세곡(稅穀)을 절가(折價)·방납(防納)하는 폐단을 일체 금지하여 막되, 만약 드러나는 바가 있으면 주관하는 당</p>	<p>憲府申前啓，又啓曰：“國家蓄積之空，未有甚於近日，而折價、防納之弊，實使之然。蓋方外惟正之供，不以本穀，居間牟利之輩，貪緣於主管有司，折價預納，而萬千米斛，渠自操縱龍斷，爲守令者，亦便其輸載之除弊，苟然從之。嶺上七邑之輸米於嘉興也，以米納者，每不過二三邑。若是而其可望昔日紅腐之殷乎？一年經費，常患不足，凜凜有朝夕難支之勢者，未必非職此而然，事之寒心極矣。請稅穀折價、防納之弊，一切禁塞，如有現發，則主管堂上罷職，幹事人囚禁科罪，當該守令亦一體罷職。” 竝不從，末端事，從之。</p>

	<p>상(堂上)은 과직하고 일을 맡은 사람은 수금(囚禁)해서 과죄(科罪)하며, 해당 수령 또한 일체로 과직하소서.”</p> <p>하였으나, 모두 따르지 않고, 말단의 일만 그대로 따랐다.</p>	
<p>경종 9권, 2년(1722 임인 / 청 강희(康熙) 61년) 8월 18일(신미) 1번째기사</p>	<p>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는데, 영의정(領議政) 조태구(趙泰耆)·제조(提調) 한배하(韓配夏)가 입시(入侍)하였다. 조태구가 이르기를,</p> <p>“어제 신이 김성절(金盛節)의 초사(招辭)를 보고 성궁(聖躬)에 독약(毒藥)을 시험하였다는 말에 이르러서는 마음이 흔들리고 뼈가 부스러짐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황천(皇天)이 도우시어 다행히 즉시 토하시었지만 혹 여독(餘毒)이 장부(臟腑)에 머물러 있으면, 신민(臣民)의 통박(痛迫)한 마음이 다시 어떠하였겠습니까? 의서(醫書)에 이르기를, ‘독을 마신 경우 비록 이미 3년이나 오래 되었더라도 다시 발생하는 근심이 있다.’고 하였으니, 해독(解毒)하는 약제(藥劑)를 복용(服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듣건대 ‘경자년(1316) 10월 사이에 성상께서 갑자기 크게 담수(痰水)를 토하시었는데, 거의 반 대야에 이르렀으며, 색깔이 몹시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달에 입직(入直)한 의관(醫官)의 일기(日記)에는 반드시 상고할 만한 것이 있을 것이니, 그 날짜에 당일(當日)의 수라간(水刺間)의 나인(內人)으로 김성(金姓)이라는 자를 조사하여 낸다면 어찌 알아내지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p> <p>하였다. 한배하가 이르기를,</p> <p>“그날 수라를 진어(進御)하신 뒤에 즉시 구토(嘔吐)하시었습니까?”</p> <p>하니, 임금이 이르기를,</p>	<p>○辛未/藥房入診, 領議政趙泰耆、提調韓配夏入侍。泰耆曰: “昨日臣見金盛節招, 至於上躬試毒之說, 不覺心掉骨折。皇天眷佑, 幸即吐出, 而或有餘毒, 留於臟腑, 則臣民痛迫之心, 當復如何? 醫書云: ‘飲毒者, 雖已三年之久, 有復發之患。’ 解毒之劑, 不可不用。聞庚子十月間, 上忽大吐痰水, 幾至半匳, 而色甚不好云。其月入直醫官日記, 必有可考, 以其日字查出, 當日水刺間內人金姓者, 則豈有不得之理乎?” 配夏曰: “其日水刺進御後, 卽爲嘔吐乎?” 上曰: “然。” 泰耆曰: “臣於嗣服之初, 以唐太宗簡出宮女事, 有所陳達矣。卽今宮中執事內人之外, 閒雜人, 亦必多矣, 若擇其謹慎者, 使治水刺之任, 其餘不緊者, 漸次簡出, 則其於防備隱伏之患, 不爲無助矣。” 上曰: “俞。” 退出後, 取考藥房日記, 則庚子十二月十五日藥房啓辭, 有昨日黃水吐出, 幾至一升許出示之事, 遂啓</p>

	<p>“그렇다.”</p> <p>하였다. 조태구가 이르기를,</p> <p>“신이 사복(嗣服)하시는 처음에 당(唐)나라의 태종(太宗)이 궁녀(宮女)를 가려 내보낸 일을 진달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궁중(宮中)에는 집사(執事)와 나인(內人) 외에 한잡인(閑雜人) 또한 반드시 많을 것이니, 만약 근신(謹慎)하는 자를 가려서 수라(水刺)의 임무를 다스리도록 하고, 그 나머지 긴요하지 않은 자는 점차로 가려 내보낸다면 그 은복(隱伏)하는 근심을 방지하는 데에 도움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의 이르기를,</p> <p>“윤희한다.”</p> <p>하였다. 물러나온 뒤에 약방일기(藥房日記)를 가져다 상고하였더니, 경자년 12월 15일 약방의 계사(啓辭)에, ‘어제 황수(黃水)를 토했는데, 거의 한 되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내어보였다.’는 일이 있으므로, 마침내 아뢰기를,</p> <p>“15일으로써 보면 성상께서 황수를 토하신 것은 과연 경자년 12월 14일입니다. 이로써 조사하여 상고하면 증거하여 핵실(覈實)할 수 있을 것입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p>	<p>曰：“以十五日觀之，則自上吐出黃水，果是庚子十二月十四日。以此查考，則可以憑覈矣。”傳曰：“知道。”</p>
--	---	---

	<p>“알았다.”</p> <p>하였다.</p>	
<p>경종 9권, 2년(1722 임인 / 청 강희(康熙) 61년) 8월 26일(기묘) 1번째기사</p>	<p>역적 김성절(金盛節)이 복주(伏誅)되었다. 이헌(李瀾)의 초사(招辭)에 이르기를,</p> <p>“철산(鐵山)에 정배(定配)된 죄인(罪人) 김시태(金時泰)가 평산(平山)의 적소(謫所)에서 두루 찾아보고 이르기를, ‘나는 몸을 숨기고 지휘하였으며, 김성절로 하여금 사이에 있으면서 사환(使喚)하게 하였다…….’ 하였습니다.”</p> <p>하였다. 국청(鞫廳)에서 이로써 문목(問目)을 내어 이르기를,</p> <p>“이른바 지휘(指揮)하였다는 것은 무슨 일이며, 사이에 있으면서 사환(使喚)하였다는 것은 무슨 일이나?”</p> <p>하니, 처음 초사(招辭)에서는 은휘하고 바른 대로 고하지 않았다. 또 이헌(李瀾)을 다시 추국한 초사(招辭)로써 추문(推問)하였더니 여전히 굳게 은휘하였다. 이헌과 면질(面質)시키자, 서로 쟁집(爭執)하여 끝내 귀일(歸一)되지 않았으나, 여러 흉적(凶賊)과 관련된 소위(所爲)가 서로 드러났으므로, 드디어 형문(刑問)하기를 청하였다. 한 차례 형문(刑問)하자, 비로소 모의에 참여하여 은을 모으고 궁금(宮禁)에 교통하였다고 납초(納招)하였다. 국청(鞫廳)에서 의계(議啓)하기를,</p> <p>“김성절이 이미 은을 모아 교통하였다고 하니, 결안 취초(結案取招)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가 참여하여 같이 일을 한 자가 김창도(金昌道)·정우관(鄭宇</p>	<p>己卯/逆盛節伏誅。李瀾招以爲：“鐵山定配罪人金時泰，歷見於平山謫所曰：‘吾則隱身指揮，使金盛節，居間使喚’云。”鞫廳，以此發爲問目曰：“所謂指揮者何事，居間使喚者何事？”初招，諱不直告。又以李瀾更推招辭推問，則如前牢諱。及與瀾面質，彼此相爭，終未歸一，而干涉諸凶之所爲者，互相現發，故遂請刑。刑問一次，始以參謀聚銀，交通宮禁，納招。鞫廳議啓曰：“盛節既以聚銀交通，承款狼藉。所當結案取招，而渠之所與同事者，昌道、宇寬輩也，所與交通者，乃是世相，則凶逆情節，必不止此。請更加嚴刑得情後，依法處斷。”施刑第三次，謀逆事承款，有曰：“張姓譯官買藥持來，金姓宮人試用上躬”云。內人查覈，則金姓多，別無明白現出之路，丁酉赴京譯官中，元無張姓人。以此更推，而不爲明白指告。又加刑一次，其結案曰：“聞徐德修之言，則丁酉年錦平尉使行時，器之父子，使譯官</p>

	<p>寬)의 무리이며, 참여하여 교통한 자가 바로 장세상(張世相)이었으니, 흥역(凶逆)의 정절(情節)이 반드시 여기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청컨대 다시 엄중하게 형문(刑問)을 더하여 실정을 알아낸 뒤에 법에 의하여 처단(處斷)하십시오.”</p> <p>하였다. 세 차례 형문(刑問)을 시행하자, 모역(謀逆)한 일을 승복(承服)하여 이르기, “장성(張姓)의 역관(譯官)이 독약(毒藥)을 사서 가지고 왔으며, 김성(金姓)의 궁인(宮人)이 성궁(聖躬)에게 시험하여 썼습니다…….”</p> <p>하였다. 나인(內人)을 사핵(查覈)하였더니, 김성(金姓)이 많아서 별로 명백(明白)하게 드러낼 길이 없고, 정유년(1320)의 부경 역관(赴京譯官) 가운데에는 원래 장성(張姓)의 사람이 없었다. 이로써 다시 추국(推鞠)하였으나, 명백하게 지목(指目)하여 고하지 않았다. 또 한 차례 형문을 다하자, 그 결안(結案)에 이르기, “서덕수(徐德修)의 말을 들으면 정유년에 금평위(錦平尉)1321)의 사행(使行) 때 이기지(李器之) 부자(父子)가 역관(譯官) 장판사(張判事)라고 일컫는 자로 하여금 독약(毒藥)을 사서 가지고 오게 하였는데, 그의 이름과 거주(居住)는 묻지 않았습니다. 이번 귀양갈 때에 마침 그때에 사행의 역마두(驛馬頭)였던 오성(吳姓)이라는 사람을 만나 물었더니, 이르기, ‘그 행차(行次)에 역관(譯官) 장성(張姓)은 단지 한 사람뿐이었으니, 만약 수역(首譯)에게 물으면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기지가 서덕수에게 이르기, ‘약의 일은 우리 아버지 또한 이미 알고 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이미 인군을 폐위(廢位)하는 비망기(備忘記)를 만들었으나, 지금은 일이 이미 여기에 이르렀으니, 오직 생사(生死)를 돌보지 않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그 약은 정우관(鄭</p>	<p>張半事稱號者，買藥持來，而其名與居住則不問。今番赴謫時，適逢其時使行驛馬頭吳姓人問之，則曰：‘其行譯官張姓，只是一人，若問於首譯，則可知。’器之謂德修曰：‘藥事，吾父亦已知之。’且言：‘已作廢君備忘。今則事已至此，惟當不顧死生而爲之’云云。厥藥，使鄭宇寬，入送於張世相，世相與水刺間次知金尙宮同謀，而金尙宮，多索銀貨，一次試用於上躬，旋即吐出。器之輩以爲：‘藥不猛毒，當更爲聚銀，買得他藥而來。’云。一日，往趙松家，逢鄭宇寬，宇寬以行藥事，言於身曰：‘此事喜之、器之，與雲澤、民澤，專爲主張，使吾爲傳給世相之階，吾安得不爲乎?’身問藥價何以收聚，則松以爲：‘錢仁佐以雲澤之腹心，積年參養，以灰金之請，爲統帥李壽民之軍官。庚子國恤初喪時，正木百餘同輸來，以訓局防納體除出用之，其不足之數，則柳星樞以新入，多有所賂於省行處。蓋其一生所願，在於平安兵使故也。正植，以昌集之言，誘星樞，前後所出甚多，且以平兵白時耆所出銀，充其不足之數’云。上年十</p>
--	---	--

宇寬)으로 하여금 장세상(張世相)에게 들여보내게 하였고, 장세상은 수라간(水刺間)의 차지(次知) 김 상궁(金尙宮)과 동모(同謀)하였는데, 김 상궁이 많은 은화를 요구하고는 한 차례 성궁(聖躬)에게 시험해 썼으나, 곧바로 토하여 냈습니다. 이기지(李器之)의 무리가 말하기를, ‘약(藥)이, 맹독(猛毒)이 아니니, 마땅히 다시 은화를 모아 다른 약을 사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루는 조송(趙松)의 집에 가서 정우관(鄭宇寬)을 만났는데, 정우관이 독약을 쓴 일을 저에게 말하기를, ‘이 일은 이희지(李喜之)·이기지가 김운택(金雲澤)·김민택(金民澤)과 전적으로 주장(主張)하고, 나로 하여금 장세상(張世相)에게 전해 주는 계제(階梯)로 삼았으니, 내가 어떻게 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하였습니다. 제가, ‘약값은 어떻게 거두어 모았느냐?’고 물었더니, 조송이 말하기를, ‘전인좌(錢仁佐)는 김운택(金雲澤)의 복심(腹心)으로서 여러 해동안 길렀는데, 회금(灰金)의 청탁으로 통수(統帥) 이수민(李壽民)의 군관(軍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자년(1322)의 국휼(國恤) 초상(國恤初喪) 때에는 정목(正木) 1백여 동(同)을 실어와서 훈국(訓局)의 방납체(防納體)로써 덜어내어 쓰고, 그 부족한 수량은 유성추(柳星樞)가 신입(新入)으로서 김성행(金省行)에게 뇌물(賂物)을 준 것이 많이 있었으니, 대개 그의 한 평생의 소원은 평안 병사(平安兵使)에 있었던 까닭이다. 이정식(李正植)이 김창집(金昌集)의 말로 유성추(柳星樞)를 유혹하여 전후에 낸 것이 매우 많았으며, 또 평안 병사 백시구(白時耆)가 낸 은화(銀貨)로 그 부족한 수량을 충당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에 두약(痘藥)을 구하기 위해 약방(藥房)에 들어갔더니, 김창집(金昌集)이 바야흐로 도제조(都提調)로서 납약(臘藥) 1323을 감제(監劑)하고 있었는데, 김성행(金省行)·김창도(金昌道)는 모두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녁에 김창집이 나올 때에 김창도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를 따라서 함께 교동(校洞)의 우소(寓所)에 가자.’고 하였습니다. 저도 같은 친족인데 끝내 말이

一月，爲求痘藥，入藥房，則昌集方以都提調，監劑臘藥，省行、昌道，皆已入。夕，昌集出來時謂昌道曰：‘汝隨我偕往校洞寓所。’身則同是一家，而終無所言，心竊怪之。其後身見金昌彥言此事，且曰：‘昌道近有殊常之事云矣，大監因此厚待而然耶?’昌彥曰：‘兄則尚不知昌道事耶? 近來時事罔涯，故爲大監，使昌道、禹洪采，入於張世相矣。’身曰：‘昌道人事無形，豈可任以此等事?’昌彥曰：‘爲大監，死亦不辭。’身曰：‘然則汝何不自爲?’昌彥曰：‘吾則方在職，勢難爲之，故使昌道爲之。’其後逢見昌道謂曰：‘此事成則利，而敗則爲逆，何不急速爲之，而如是綏綏耶?’一日，身往見昌集曰：‘聞昌彥之言，使昌道入於世相，此事甚危。大監何爲此耶?’昌集曰：‘吾則一濟謙，奔走職事，何能爲之? 昌彥使昌道，往來世相家，吾亦奈何?’又於十二月初三日，往見昌集曰：‘聞初六日大疏當入，時事必變云。若然則大監必先受禍，奈何?’昌集略不動色曰：‘今番則似無憂’云。身曰：‘雖因昌道，有所得聞於世相，若或蹉跎，豈

없으므로, 마음속으로 그욕이 괴이하게 여기었습니다. 그 뒤에 제가 김창언(金昌彦)을 만나보고 이 일을 말하고, 또 이르기를, ‘김창도가 요즈음 수상(殊常)한 일이 있다고 하던데, 대감(大監)이 이로 인하여 후대(厚待)하여 그런 것인가?’고 하였더니, 김창언이 이르기를, ‘형(兄)은 아직도 김창도의 일을 알지 못하는가? 근래에 시사(時事)가 어수선한 까닭에 대감을 위하여 김창도·우홍채(禹洪采)로 하여금 장세상(張世相)에게 들어가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이르기를, ‘김창도는 인사(人事)가 형편이 없는데 어찌 이러한 일을 위임(委任)할 수 있는가?’ 하니, 김창언이 이르기를, ‘대감을 위하여서는 죽음도 또한 사양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제가 이르기를, ‘나는 바야흐로 직임이 있어 형세가 하기 어렵기 때문에 김창도로 하여금 하게 하였다.’ 하였습니다. 그 뒤에 김창도를 만나보고 이르기를, ‘이 일은 성사(成事)되면 이롭겠지만, 실패하면 역적이 되는데, 어찌 급속히 하지 않고 이와 같이 늦추어 하는가?’ 하였습니다. 하루는 제가 김창집을 찾아가서 보고 이르기를, ‘김창언의 말을 듣건대 김창도로 하여금 장세상한테 들어가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 일은 몹시 위태로운데, 대감께서는 어찌 이런 일을 하십니까?’ 하니, 김창집(金昌集)이 이르기를, ‘나는 한결같이 김제겸(金濟謙)이 직사(職事)에 분주하니,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는가? 김창언(金昌彦)이 김창도(金昌道)로 하여금 장세상의 집을 왕래하게 하니, 나도 또한 어찌하겠는가?’고 하였습니다. 또 12월 초3일에 김창집을 찾아가서 보고 이르기를, ‘듣건대 초6일에 대소(大疏)가 들어가면 시사(時事)가 반드시 변할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대감(大監)께서 반드시 먼저 화(禍)를 받을 것인데, 어찌하겠습니까?’ 하였으나, 김창집은 조금도 안색(顔色)이 변하지 않은 채 이르기를, ‘이번에는 근심이 없을 듯하다.’ 하였습니다. 제가 이르기를, ‘비록 김창도(金昌道)로 인하여 장세상(張世相)에게 얻어 들은 바가 있다 하니, 만약 혹 차질(蹉跌)이 있으면 어찌 위태롭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 뒤로 여러 차례 왕래하였으나, 모두 종용(從容)하지 않았습

不危哉?’ 此後屢次往來，而皆不從容。十三日曉，往見昌集於依幕，慰其弟昌翁之喪，因曰：‘大監能記初三日吾言乎？昌道何能善探，而惟恃世相，自謂無憂，今何如？’昌集不答，因曰：‘汝見時泰乎？聞時泰之言，得弘述家銀給世相，方圖換局云，汝亦知之乎？’身曰：‘時泰與李明佐，爲弘述，雖有所圖，被罪入獄之人，何敢旋爲大將乎？大監亦勿生如此之念焉。’昌集曰：‘時泰丁寧言吾行未發之前，必復入云矣。今番事，朴尙儉輩從中爲之。若以此上聞，則當更有處分’云。同月初九日，往時泰家，鄭宇寬在座。時泰目宇寬而送之，仍噓歎歎息曰：‘無可奈何矣。世相俄送宇寬而言曰：『若得三千兩銀用之，則可以轉禍爲福』，而金省行與徐德修同事，而黃兵柳星樞所送銀六百兩及平兵銀子四千兩受來，而不爲多給世相之故，失誤事機，不能先制朴尙儉。已至於此，此際若得三千兩銀子，則可以周旋。’身曰：‘令監何不往問於弘述乎？’時泰曰：‘問於弘述，則以爲：『卽今可得七百兩，而其餘則難辦。』’身曰：‘若先

	<p>니다.</p> <p>13일 새벽에 김창집(金昌集)을 의막(依幕)에 가서 보고, 그의 아우 김창흠(金昌翕)의 상사(喪事)를 위로하고, 인하여 이르기를, ‘대감(大監)께서는 초3일에 한 제 말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김창도(金昌道)가 무엇을 잘 탐색하고 있다고 장세상(張世相)을 믿고 스스로 근심할 것이 없다고 하시더니, 이제 어떻습니까?’ 하니, 김창집이 대답하지 않고, 인하여 이르기를, ‘네가 김시태(金時泰)를 만나 보았느냐? 김시태의 말을 들으면 이홍술(李弘述)의 집에서 얻은 은화를 장세상에게 주어 바야흐로 환국(換局)을 도모한다고 하는데, 너도 또한 알았느냐?’고 하므로, 제가 이르기를, ‘김시태와 이명좌(李明佐)가 이홍술을 위하여 비록 도모하는 것이 있더라도 죄(罪)를 받고 옥(獄)에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감히 도로 대장(大將)이 될 수 있겠습니까? 대감(大監)께서도 이와 같은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하였습니다. 김창집이 이르기를, ‘김시태는 정녕(丁寧)나의 행차(行次)가 떠나기 전에 반드시 들어온다고 말하였다. 이번 일은 박상검(朴尙儉)의 무리가 중간(中間)에서 하는 것이니, 만약 이로써 임금에게 아뢴다면 마땅히 다시 처분이 있을 것이다.’고 하였습니다.</p> <p>같은 달 초6일에 김시태의 집에 갔더니, 정우관(鄭宇寬)이 자리에 있었는데, 김시태가 정우관을 눈짓하여서 보내고는 인하여 한숨을 쉬며 탄식(歎息)하여 말하기를, ‘어찌할 수 없다. 잠시 전에 장세상(張世相)이 정우관을 보내었는데, 말하기를, 「만약 3천 냥의 은화를 얻어 썼다면 전화위복(轉禍爲福)이 될 수 있었을 것인데, 김성행(金省行)이 서덕수(徐德修)와 같이 일하면서 황해 병사(黃海兵使) 유성추(柳星樞)가 보낸 은화 6백 냥과 평안 병영의 은자(銀子) 4천 냥을 받아 와서 장세상에게 많이 주지 않은 까닭에 사기(事機)를 잃어 박상검(朴尙儉)을 먼저 제어할 수 없었다. 이미 여기에 이르렀으나, 이 즈음</p>	<p>給千兩，則世相將何以爲之云耶？先探事機，然後可以圖之。’ 時泰曰：‘然矣。’ 時泰因往弘述依幕。 身翌日往見時泰，時泰曰：‘弘述之從孫李明佐，即其養孫之兄，而主管家事者也。 明佐以爲：「家有一千五百兩，而纔已散給於諸甥侄處，即今所餘者，只七百兩，而若復收合，則可充千金，使我親見世相，詳問曲折後，可以出給。」’ 身問於時泰曰：‘此物易於中間花消，將何以爲之耶？’ 時泰曰：‘必貞、石烈、與尙儉、有道，內外符同，世相若持銀貨入去，則緩頰者可以緩頰，抑制者可以抑制，事可成矣。’ 十一日，又往見時泰，問覓銀與否，則答曰：‘李明佐往見世相，使宇寬，持七白金，往遺世相’云。 十三日，身往新門外昌集依幕，見時泰，則時泰以爲：‘昭訓葬事，定於十四日，而世相十二日出往山所，還後可以知之’云。 是日，逢着宇寬於趙松家，則宇寬曰：‘諸大臣未發行之前，某條周旋，更可換局，姑宜遲發’云。 十四日，宇寬送人促世相還，而姑無好奇云，故昌集、頤命，十五日不得已發行。 十七日，宇寬告急</p>
--	---	--

에 만약 3천 냥의 은자를 얻는다면 주전(周旋)할 수 있겠다。」고 하였다.’ 하였습니
 다. 제가 이르기를, ‘영감(令監)은 어찌 이홍술(李弘述)에게 가서 묻지
 않으십니까?’ 하니, 김시태가 이르기를, ‘이홍술에게 물었더니, 말하기를, 「지
 금 7백 냥을 얻을 수 있지만, 그 나머지는 관비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하였습니
 다. 제가 이르기를, ‘만약 먼저 1천 냥을 준다면 장세상이 장차 어찌
 하겠다는 것인가? 먼저 사기(事機)를 탐지한 뒤에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하니, 김시태가 이르기를,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김시태가 이홍술의 의막(依
 幕)에 갔기 때문에 제가 이튿날 김시태를 찾아가서 보았더니, 김시태가 이르
 기를, ‘이홍술(李弘述)의 종손(從孫) 이명좌(李明佐)는 곧 그의 양손(養孫)의
 형(兄)이며, 집안 일을 주관하는 자이다. 이명좌가 이르기를, 「집에 1천 5백
 냥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여러 생질(甥姪)에게 나누어 주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단지 7백 냥뿐이나, 만약 다시 수합(收合)한다면 천금(千金)은 충당할
 수 있겠지만, 나로 하여금 장세상을 몸소 보고서 곡절을 상세하게 물은 뒤에
 야 내줄 수 있다」고 하였다.’ 하므로, 제가 김시태(金時泰)에게 묻기를, ‘이런
 물건은 중간에서 소모시키거나 쉬우니, 장차 어찌하겠는가?’ 하니, 김시태가
 이르기를, ‘필정(必貞)·석열(石烈)이 박상검(朴尙儉)·문유도(文有道)와 안팎으로
 부동(符同)하였으니, 장세상(張世相)이 만약 은화를 가지고 들어가면 온유한
 말로 달랠 사람은 온유한 말로 달래고 억제(抑制)할 자는 억제할 수 있게 하
 여야 일을 성취(成就)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11일에 또 김시태를 찾아가서 보고 은화를 구한 여부(與否)를 물었더니, 대답
 하기를, ‘이명좌(李明佐)가 장세상(張世相)을 찾아가서 보고 정우관(鄭宇寬)으
 로 하여금 7백 금을 가지고 가서 장세상에게 주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13
 일에 제가 새문[新門] 밖 김창집(金昌集)의 의막(依幕)에 가서 김시태(金時泰)
 를 만나보았더니, 김시태가 말하기를, ‘소훈(昭訓)의 장사(葬事)는 14일로 정

於時泰曰：‘銀子不送，事尙不成。尙
 儉、有道，有大作亂之勢，世相今方緩
 頰，加得銀子然後，可以爲之’云。
 身曰：‘金省行受黃兵許多銀子，用於
 何處，而不爲出給乎？今宜招致昌道，
 送言於省行，取用此銀好矣。’時泰送
 人招昌道，則昌道以摠戎廳銀子事，往
 門外尹愨依幕未還云。蓋昌道言：‘尹
 愨前已出銀三百兩之故，昌集卽爲啓下
 備局堂上，及愨遭臺評之後，昌道以銀
 文書磨勘事，出往依幕。’十九日，又
 往時泰家，則時泰不在，故轉往趙松
 家，招致宇寬，則宇寬往徐德修家矣。
 松因傳宇寬言曰：‘世相以爲：「數日
 內，必有處分，第待之」，仍索銀子之
 加送。仍記昨年四五月間，逢見趙松
 於松古前路，仍曰：‘近日何往乎？’松
 曰：‘爲壺洞將帥，往平兵久留而來。’
 身曰：‘因何事而往乎？’松曰：‘受得耆
 老所公事，貸出平兵銀四千兩，而與宇
 寬及徐允興，同事往來。’身曾知此
 狀，故及至十二月事出之後，仍問於松
 曰：‘平兵銀子，今在何處，而不得用於
 此時乎？’松曰：‘此銀已償前日貸用之
 物。’又曰：‘李正植主管黃州城役，而

하였으며, 장세상(張世相)이 12일에 산소(山所)에 나갔다가 돌아온 뒤에야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날 정우관을 조송(趙松)의 집에서 만났더니, 정우관이 이르기를, ‘여러 대신(大臣)들이 발행(發行)하기 전에 모조(某條)를 주선(周旋)하면 다시 환국(換局)할 수 있으니, 아직은 늦게 떠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14일에 정우관이 사람을 장세상(張世相)에게 보내어 돌아오기를 최촉(催促)하였는데, 아직 좋은 기별(奇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김창집·이명의(李明誼)이 15일에 부득이 길을 떠났습니다. 17일에 정우관이 김시태(金時泰)에게 급하게 고하기를, ‘은자(銀子)를 보내지 않아 일이 아직도 성사(成事)되지 않았다. 박상검(朴尙儉)·문유도(文有道)가 큰 변란(變亂)을 일으킬 형세가 있으므로 장세상이 이제 바야흐로 설득(說得)시키고 있는데, 은자(銀子)를 더 얻은 뒤에야 할 수 있다.’고 하므로, 제가 이르기를, ‘김성행(金省行)이 황해 병사의 허다한 은자(銀子)를 받아 어느 곳에 썼기에 내주지를 앓는가? 이제 마땅히 김창도(金昌道)를 초치(招致)해서 김성행에게 말하여 이 은화(銀貨)를 가져다 쓰는 것이 좋겠다.’고 하자, 김시태가 사람을 보내어 김창도를 초치하였더니, 김창도는 총융청(摠戎廳)의 은자(銀子)일 때문에 문밖의 윤각(尹愨)의 의막(依幕)에 가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대개 김창도가 말하기를, ‘윤각(尹愨)이 전에 이미 은화 3백 냥을 낸 까닭에 김창집이 즉시 비국 당상(備局堂上)에 계하(啓下)하였는데, 윤각이 대간(臺諫)의 논평(論評)을 받은 뒤에 김창도가 은화의 문서(文書)를 마감(磨勘)하는 일로써 의막(依幕)에 나갔다.’고 하였습니다.

19일에 또 김시태(金時泰)의 집에 갔으나, 김시태가 있지 않으므로 도로 조송(趙松)의 집에 가서 정우관(鄭宇寬)을 초치(招姪)하였더니, 정우관은 서덕수(徐德修)의 집에 갔으며, 조송이 인하여 정우관이 말을 전하기를, ‘장세상(張世相)이 말하기를, 「수일 안으로 반드시 처분이 있을 것이다」 하였으니, 기

自備局劃給關西遼軍木二十同，黃兵亦給米五十石、錢文五百兩，而正植多自中間花消，徐德修喪妻時，給三百兩，李濼赴謫時，給一百兩。如是消融，不得取用於此時，可勝歎哉?’ 松曰：‘出往楊州，見李宇恒，可以議事’云。大抵昌集，不信趙松，身亦以昌集之意，傳于宇恒之故，松頗有不悅之色。金濟謙每言：‘身可任此等事，而曾與三木相親，以此爲欠。’蓋三木者，李森之名破字也。身逢着宇寬於時泰座上之後，時泰始發腹心之言。二十日，世相使宇寬傳言：‘十八日，朴尙儉，有中間凶計，世相詭辭而止之。且行銀四百餘兩，不久必有處分’云，厥後果有宦妾之獄。二十三日赴謫時，寄托宇寬而去。蓋宇寬與世相所親紅袖輩，有相通之路，可以議事，而時泰赴謫時，身往見，問令監去後，吾無分錢可得之路，何以圖事乎? 時泰曰：‘頃日往見宇恒，則銀錢皆散給他人，宜徵捧以用云，而收合未易，士三者所收黃兵銀子，可以取用’云。士三者，省行之字也。身往訪省行，不得逢見，使金時鼎傳意，而亦不出給。身督令趙松，

다리라.’ 하고 인하여 은자(銀子)를 더 보내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인하여 작년 4, 5월 사이에 조송을 송고(松古)의 앞 길에서 만나 보고 인하여 이르기를, ‘요사이 어디에 갔었는가?’고 하자, 조송(趙松)이 이르기를, ‘호동(壺洞)의 장수(將帥)를 위하여 평안 병사를 찾아가서 오래 머물렀다가 왔다.’고 하므로, 제가 이르기를, ‘무슨 일로 인하여 갔었는가?’ 하니, 조송이 이르기를, ‘기로소(耆老所)의 공사(公事)를 받아가지고 평안 병사에게 은화(銀貨) 4천 냥을 대출(貸出)하러 정우관·서운흥(徐允興)과 같은 일로 왕래하였다.’고 한 일이 기억났습니다. 저는 일찍이 이 정상을 아는 까닭에 12월의 일이 발단된 후에 이르러 인하여 조송에게 물기를, ‘평안 병사의 은자는 지금 어느 곳에 있기에 이때에 쓸 수 없는가?’ 하니, 조송이 이르기를, ‘이 은화는 벌써 전일에 대출(貸出)하여 쓴 물건을 상환하였다.’ 하고, 또 이르기를, ‘이정식(李正植)이 황주성(黃州城)의 역사(役事)를 주관하였는데, 비국(備局)에서 관서(關西)의 요군목(遼軍木) 20동을 획급(劃給)하고, 황해 병사 또한 쌀 50석과 돈 5백 냥을 주었으나, 이정식(李正植)이 중간에서 많이 소모하였으며, 서덕수(徐德修)가 상처(喪妻)하였을 때에 3백 냥을 주고, 이헌(李濼)이 귀양갈 때에 1백 냥을 주었다. 이와 같이 다 써버려 이때에 가져다 쓸 수가 없으니, 어찌 탄식을 금할 수 있겠는가?’고 하였습니다. 조송이 이르기를, ‘양주(楊州)에 나가서 이우항(李宇恒)을 만나보면 일을 의논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저 김창집이 조송을 신임하지 않고, 저 또한 김창집의 뜻을 이우항에게 전한 까닭에 조송이 자못 기뻐하지 않는 안색(顔色)이 있었습니다. 김제겸(金濟謙)은 늘 저에게 말하기를, ‘이와 같은 일을 말길 만한데, 일찍이 삼목(三木)과 서로 친하여 이때문에 결점이 되었다.’고 하였으니, 대개 삼목이란 이삼(李森)의 이름을 파자(破字)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정우관을 김시대의 좌상(座上)에서 만난 뒤에 김시대가 처음으로 복심(腹心)의 말을 꺼냈습니다.

覓出銀子，則趙松覓給二百金於宇寬處。李濼招中，徐德修所謂身之有功之說，蓋指此事。昨年間，身見宇恒曰：‘昌道爲人虛疎，何可使喚於世相家乎?’宇恒曰：‘此外又有士夫之使喚於世相家者，卽禹洪采也。洪采則大監，亦愛其爲人矣。’以此言語，歸傳於昌集，則昌集曰：‘洪采往來世相家，頗有所傳，頓覺心豁’云。且聞李世福之言，則灰金使李崇祚之子，送書於弘述依幕，覓銀一百兩而去。大概錢仁佐、李崇祚、邢義賓、李德峻，若一捉問，則灰金行藥及所爲之事，可以一一現發。身既聞德修、昌道、正植、宇寬輩之言，與之酬酢，同參逆謀之罪，遲晚的實云云。”結案後更推，供辭曰：“內人則但知水刺間次知金尙宮，此外實無聞知之事。譯官則當初所告張哥，只憑傳聞，果未的知。元犯人，今始從實發告。上年頤命，自廣津入城時，往見，則喜之與渠家所親切譯官洪舜澤，同入後房密語。身自窗外入房之際，掠問則舜澤謂喜之曰：‘藥價不足，吾多自備添補’云，則喜之答曰：‘事成則君所自備之價，豈無報乎?’身

20일에 장세상이 정우관으로 하여금 전언(傳言)하기를, ‘18일에 박상검(朴尙儉)의 중간에 흥계가 있는 것을 장세상이 거짓말을 하여서 제지하였다. 또 은화 4백여 냥을 썼으니, 오래지 않아서 반드시 처분(處分)이 있을 것이다…….’ 하였는데, 그 뒤에 과연 환첩(宦妾)의 옥사(獄事)가 있었습니다. 23일 귀양갈 때에 정우관에게 부탁(付託)하고서 갔는데, 대개 정우관은 장세상이 친한 홍수(紅袖)1324의 무리와 서로 통하는 길이 있어 일을 의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시태가 귀양갈 때에 제가 찾아가서 보고, ‘영감(令監)이 간 뒤에 나도 분전(分錢)도 얻을 만한 길이 없으니, 어떻게 일을 도모하겠는가?’고 물었더니, 김시태가 이르기를, ‘지난번에 이우항(李宇恒)을 찾아가서 보았는데, 은전(銀錢)을 모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마땅히 징봉(徵奉)1325하여 쓰라고 하였지만, 수합(收合)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니, 사삼(士三)이 거두었던 황해 병사의 은자(銀子)는 가져다 쓸 수 있을 것이다.’ 하였으니, 사삼은 김성행(金省行)의 자(字)입니다. 제가 김성행을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김시정(金時鼎)으로 하여금 뜻을 전하게 하였는데 또한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송에게 은자(銀子)를 수선해 내도록 독촉하였더니, 조송이 2백 금을 정우관에게서 구해 주었습니다. 이헌(李憲)의 초사(招辭) 가운데 서덕수(徐德修)가 저에게 공이 있다고 한 말은 대개 이 일을 가리킨 것입니다.

작년 사이에 제가 이우항(李宇恒)을 보고 이르기를, ‘김창도(金昌道)는 사람됨이 허술하니, 어찌 장세상의 집에서 부릴 수 있겠는가?’ 하니, 이우항이 이르기를, ‘이 밖에도 또 사부(士夫)로서 장세상의 집에서 부리는 자가 있으니, 곧 우홍채(禹洪采)이다. 우홍채는 대감(大監) 또한 그 위인을 사랑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로써 돌아가 김창집에게 전하였더니, 김창집이 이르기를, ‘우홍채가 장세상의 집을 왕래하면서 자못 전한 것이 있으니, 마음이 활달하여짐을

開窓入坐，則喜之即止其說，面色如土。舜澤與身相知之間，而不交一言，即爲起去，身竊以爲殊常。其後逢見金昌道，則昌道曰：‘徐德修誠虛無人也。與喜之同謀，使洪哥譯官，買藥入送於張世相。’身以爲：‘吾頃往蓮洞，聞喜之、洪舜澤，以藥事密語，吾則意謂喜之，素尙醫術，故爲此買藥之說矣，今聞汝言，則果是洪舜澤買毒藥而來耶?’昌道曰：‘舜澤自前多所蒙德於此家，最爲親密之狀，舉世所共知。買藥者，非舜澤而誰也?’如是酬酢。今年身在謫所時，舜澤送勅回還之路，歷見身。身處有妙製純金圈子，舜澤欲得之，使同邑謫居譯官吳萬昌送言，渠又來見。語次間，言及買藥譯官，自捕廳窺伺之事，且曰：‘此事未知厄在何人，令輩必當憂悶矣。’舜澤變色起去，亦不言金圈之事。以此益驗前日所聞之不差云云。”

어느 곁에 깨달았다.’고 하였습니다. 또 이세복(李世福)의 말을 들으면 회금(灰金)은 이승조(李崇祚)의 아들로 하여금 서찰(書札)을 이홍술 이홍좌(李弘佐)의 의막에 보내어 은화(銀貨) 1백 냥을 찾아갔으니, 대개 전인좌(錢仁佐)·이승조(李崇祚)·형의빈(邢義賓)·이덕준(李德峻)을 한 번 잡아서 묻는다면, 회금(灰金)이 독약을 쓴 것과 도모(圖謀)한 일을 하나하나 드러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미 서덕수(徐德修)·김창도(金昌道)·이정식(李正植)·정우관(鄭宇寬)의 무리의 말을 듣고 함께 수작(酬酢)하였으니, 역모(逆謀)에 동참(同參)한 죄(罪)가 적실(的實)함을 지만(遲晚)합니다…….”

하였다. 결안(結案)한 뒤에 다시 추국(推鞠)하니, 공사(供辭)하기를,

“나인(內人)은 다만 수라간(水刺間)의 차지(次知) 김 상궁(金尙宮)만을 알 뿐이고 이밖에는 진실로 들어 아는 일이 없으며, 역관(譯官)은 당초에 고하였던 장가(張歌)는 단지 전해 들었을 뿐 과연 적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원범인(元犯人)을 이제 비로소 사실대로 발고(發告)하겠습니다. 지난해 이이명(李頤命)이 광진(廣津)에서 도성(都城)에 들어왔을 때에 찾아가서 보았더니, 이희지(李喜之)가 그의 집과 절친하였던 역관(譯官) 홍순택(洪舜澤)과 같이 뒷방으로 들어가 밀어(密語)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가 창 밖에서 방에 들어갈 즈음에 몰래 엿들었더니, 홍순택이 이희지에게 이르기를, ‘약값이 부족하므로, 내가 많이 마련하여 첩보(添補)하였습니다.’고 하니, 이희지가 대답하기를, ‘일이 성사(成事)되면 그대가 자비(自備)하였던 값을 어찌 보상하지 않겠는가?’고 하였습니다. 제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앉았더니, 이희지는 즉시 그 말을 중지하고 얼굴빛이 흙빛과 같았으며, 홍순택은 저와 서로 아는 사이인데도 한 마디 말도 나누지 않은 채 곧 일어나서 갔으므로, 제가 그욕이 수상(殊常)하게 여겼습니다. 그 뒤에 김창도(金昌道)를 만나 보았더니, 김창도가 이르기를, ‘서덕

	<p>수(徐德修)는 진실로 허무(虛無)한 사람이다. 이희지와 동모(同謀)하여 홍가(洪歌) 역관(譯官)으로 하여금 약을 사서 장세상(張世相)에게 들여보내도록 하였다.’고 하므로, 제가 말하기를, ‘내가 지난번 연동(蓮洞)에 가서 이희지·홍순택이 약(藥)에 대한 일로 밀어(密語)를 나누는 것을 들었는데, 나는 이희지가 본래 의술(醫術)을 숭상했었으므로, 매약(買藥)하는 말을 한 것이라고 여겼었다. 그런데 이제 너의 말을 들어보니, 과연 홍순택이 독약(毒藥)을 사온 것이었던가?’ 하자, 김창도가 이르기를, ‘홍순택은 전부터 이 집에서 턱을 입은 것이 많아서 가장 친밀한 정상을 온 세상이 모두 아는 터이니, 약을 사온 자가 홍순택이 아니고 누구이겠는가?’ 하며, 이와 같이 수작(酬酢)하였습니다. 금년에 제가 적소(謫所)에 있을 때에 홍순택이 칙사(勅使)를 보내고 돌아오는 길에 저를 찾아 왔었습니다. 저에게 교묘하게 제조한 순금 권자(圈子)가 있었는데, 홍순택이 얻고자 하여 같은 고을에 적거(謫居)하는 역관(譯官) 오만창(吳萬昌)으로 하여금 말을 건네게 하고, 그가 또 찾아와서 보았습니다. 말하는 사이에 매약(買藥)한 역관(譯官)을 포청(捕廳)에서 규사(窺伺)한다는 일을 언급하고, 또 이르기를, ‘이 일은 화액(禍厄)이 어느 사람에게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영공(令公)들은 반드시 근심하여 번민할 것입니다.’고 하자, 홍순택은 안색이 변하여 일어나 가면서도 금권(金圈)의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전일에 들었던 것이 어긋나지 않음이 더욱 증험되었습니다.”</p> <p>하였다.</p>	
<p>경종 10권, 2년(1722 임인 / 청 강희(康熙) 61년) 11월 5일(병술) 4번째기사</p>	<p>제주도(濟州島) 안에 크게 기근이 들어 영남미(嶺南米) 4천 석과 호남미(湖南米) 3천 석을 들여보내어 진휼하게 하였다. 명하여 진상마(進上馬)와 별어승마(別御乘馬)를 중지시키어 그 마료(馬料)를 분양(分養)하여 진자(賑資)로 보충하게 하였으니, 목사(牧使) 최완(崔煥)의 장청(狀請)으로 인함이었다.</p>	<p>濟州島中大饑，入送嶺南米四千石、湖南米三千石以賑之命停進上馬及別御乘馬，分養其馬料，移補賑資。因牧使崔煥狀請也。</p>

<p>경종 10권, 2년(1722 임인 / 청 강희(康熙) 61년) 11월 12일(계사) 2번째기사</p>	<p>이보다 앞서 심단(沈檀)이 역가(逆家)에서 몰입(沒入)한 재산(財産)과 가사(家舍)를 진휼청(賑恤廳)에 이송(移送)하여 기전(畿甸)의 민역(民役)에 보충하기를 청하여 윤허를 받았었다. 이에 이르러 진휼청에서 복주(覆奏)하여 내년 봄에 납부할 대동미(大同米)1474)의 절반을 건감(蠲減)하여서 그 몰입(沒入)한 재산이 설혹 부족하더라도 본청(本廳)에서 길거(拮据)하여 보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p>	<p>先是，沈檀請以逆家沒入財産、家舍，移送賑恤廳，充補畿甸民役，蒙允矣。至是，賑廳覈奏，蠲減明春所納大同米一半，而其所沒入財産，設或不足，自本廳拮据充補爲宜云，上允之。</p>
<p>경종 10권, 2년(1722 임인 / 청 강희(康熙) 61년) 12월 18일(기사) 1번째기사</p>	<p>임금이 관소(館所)에 거둥하니, 상칙(上勅)과 부칙(副勅)이 섬돌 끝까지 나와 맞이하였다. 동계(東階)·서계(西階)로 나누어 올라가 제배(除拜)하고 서로 읍(揖)하고 자리에 나아가 간략하게 노고를 위로하는 인사의 말을 하였다. 재삼다(茶)를 권하였으나, 군상(君喪)이라 하여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이어서 말하기를,</p> <p>“오래 앉아 계시면 노고를 드리게 되니, 청컨대 일어나 파좌(罷坐)하소서.”</p> <p>하니, 임금이 이르기를,</p> <p>“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마땅히 과하겠습니다.”</p> <p>하였다. 칙사(勅使)가 먼저 일어나니, 임금도 또한 일어나 나왔다. 칙사가 섬돌까지 전송하니, 임금이 여러 번 통사(通事)로 하여금 말하여 중지하게 하였는데, 칙사가 이르기를,</p> <p>“이 곳은 우리들이 주인(主人)이 되니, 반드시 섬돌 끝까지 전송하는 것이 마땅합니다.”</p>	<p>己巳/上幸館所，上、副勅沒階出迎。分東、西階升，除拜相揖而就位坐，略有勞慰酬酢之語。再三勸茶，則以君喪，辭而不受。仍曰：“久坐貽勞，請起罷。”上曰：“如是送語，當罷矣。”勅使先起，上亦起出。勅使送至階，上屢使通事，送言止之，勅使曰：“此處則俺等爲主人，當沒階送之。”遂沒階竚立，俟上出門，始還升。上還宮，王世弟於敦化門外，祇送祇迎。</p>

	<p>하고, 드디어 섬돌 끝에서 저립(佇立)하여 임금이 문을 나가기를 기다렸다가 비로소 다시 올라 갔다. 임금이 환궁(還宮)하니, 왕세제(王世弟)가 돈화문(敦化門) 밖에서 지송(祇送)하고 지영(祇迎)하였다.</p>	
<p>경종 10권, 2년(1722 임인 / 청 강희(康熙) 61년) 12월 28일(기묘) 2번째기사</p>	<p>대신(大臣)과 비국 당상(備局堂上)의 청대(請對)하여 입시(入侍)하였다. 우의정(右議政) 최석항(崔錫恒)이 인재(人才)의 별천(別薦)을 행하되, 내직(內職)으로는 시임(時任)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육경(六卿)·삼사(三司)의 장관(長官)과, 일찍이 비국 당상과 장임(將任)을 지낸 자와, 외직(外職)으로는 양도(兩都)의 유수(留守), 제도(諸道)의 감사(監司)·병사(兵使)·통제사(統制使)에게 모두 각각 3인을 천거하게 하고, 학행(學行)·재국(才局)·지략(智略)·담용(膽勇)으로 천목(薦目)을 삼을 것을 청하였다. 또 아뢰기를,</p> <p>“지난날 호조 판서(戶曹判書) 이태좌(李台佐)가 암행 어사(暗行御史)를 삼남(三南)과 양서(兩西)에 나누어 보내어 암행(暗行)하며 염문(廉問)하고, 도(道)에 감진사(監賑史)로 나가게 하기를 청하였는데, 신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방백(方伯)은 한 도의 진정(賑政)을 주관하는데, 또 어사(御史)로 하여금 겸하여 관장하게 하면, 권한이 나뉘어져서 전일(專一)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 수령이 진곡(賑穀)을 요리(料理)할 즈음에 만약 염찰(廉察)하는 일이 있게 되면 두렵고 꺼리어서 감히 손을 대지 못할 것이니, 우선 진정(賑政)이 끝나기를 기다린 뒤에 보내어서 그 이치(吏治)의 득실과 진정(賑政)의 우열을 살피게 할 것이며, 돌아오는 길에 군기(軍器)를 점시(點視)하며, 재주가 있으면서도 침륜(沈淪)1571) 된 사람을 찾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p> <p>하고, 또 아뢰기를,</p>	<p>大臣、備局堂上，請對入侍。右議政崔錫恒請行人才別薦，內則時任、原任大臣，六卿、三司長官及曾經備局堂上將任者，外則兩都留守、諸道監·兵使、統制使，皆令各薦三人，以學行、才局、智略、膽勇爲薦目。又奏曰：“頃日戶曹判書李台佐，請分送繡衣於三南兩西，暗行廉問，出道監賑，而臣意則不然。方伯主一道之賑政，而又令御史兼管，則權分而不專，且守令料理賑穀之際，若有廉察之舉，則畏憚不敢措手。姑待賑畢後發送，察其吏治得失、賑政優劣，而使於歸路，點視軍器，搜訪抱才沈淪之人宜矣。”又曰：“領中樞金宇杭所居亭舍，高絕多寒，不合老人居處。請下諭開釋，使之入城調息。國舅贈議政，雖非古例，而自先朝光城、驪陽，皆贈議政，已成近規。請贈慶恩府院君金柱臣議政。先朝渭陽之親，只有金錫衍一人，請加</p>

	<p>“영중추(領中樞) 김우항(金字杭)이 거처하는 정사(亭舍)는 아주 높고 몹시 추워서 노인(老人)이 거처(居處)하기에는 합당하지 못합니다. 청컨대 유시를 내려 개석(開釋)하셔서 도성(都城)으로 들어와 조섭하게 하소서. 국구(國舅)에게 의정(議政)을 추증(追贈)하는 것은 비록 고례(古例)가 아니지만, 선조(先朝)에서 광성(光城)1572) ·여양(驪陽)1573)에게 모두 의정(議政)을 추증하여 이미 근규(近規)를 이루었으니, 청컨대 경은 부원군(慶恩府院君) 김주신(金柱臣)에게도 의정을 추증하소서. 선조(先朝)의 위양(渭陽)1574)의 친척으로 단지 김석연(金錫衍) 한 사람만 있으니, 청컨대 우대(優待)를 더하소서. 서추(西樞)의 산질(散秩)로 비록 병들어 숙사(肅謝)는 하지 못하더라도 매달 늑록(廩祿)을 발급하고, 특별히 약물(藥物)을 내려 주시어 돈친(敦親)하는 덕(德)을 빛내소서. 영원 부부인(靈原府夫人)이 죽은 이래로 가사(家事)가 영락하여 궁핍을 면하지 못하고 있으니, 청컨대 월름(月廩)을 주소서.”</p> <p>하니,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p>	<p>優待。西樞散秩，雖病未肅謝，月頒廩祿，特賜藥物，以光敦親之德。靈原府夫人，喪禍以來，家事旁落，未免窮乏。請給月廩。”上竝從之。</p>
<p>경종 11권, 3년(1723 계묘 / 청 옹정(雍正) 1년) 2월 6일(병진) 3번째기사</p>	<p>동당 관시(東堂館試)는 으레 식당 도기(食堂到記)1634)가 3백 점에 준(准)한 자 50명을 취하여 왔는데, 작년 이후로 재유(齋儒)들이 흉소(凶疏)에 참섭(參涉)하였다 하여 일체 벌을 주었다. 성균관(成均館)에서 점수에 준하지 않은 자를 가려내어 관시(館試)에 응시를 허락하도록 품계(稟啓)하고 예조(禮曹)에서도 또 대신(大臣)과 의논하기를 청하였다. 이에 영의정 조태구와 우의정 최석항이 의논하여 이퇴기를,</p> <p>“그 계달에 의하여 변통(變通)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p> <p>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p>	<p>○東堂館試，例取食堂準三百點者五十人，而昨年以後，齋儒以其參涉凶疏，一切施罰。成均館請以未準點者，抄出許赴館試事，稟啓，禮曹又請議大臣。領議政趙泰耆、右議政崔錫恒議以爲：“當依其啓變通。”上從之。</p>

<p>경종 11권, 3년(1723) 계묘 / 청 옹정(雍正) 1년) 2월 11일(신유) 2번째기사</p>	<p>경상도(慶尙道)연일현(延日縣)임곡강(林谷江) 어구에서 어선(漁船)이 침몰하여 60명이 동시에 빠져 죽으니, 임금(上)이 본도(本道)에 명하여 홀전(恤典)을 거행하게 하였다.</p>	<p>慶尙道延日縣林谷江口，漁船敗沒，六十人同時渰死。上令本道行恤典。</p>
<p>경종 11권, 3년(1723) 계묘 / 청 옹정(雍正) 1년) 3월 11일(경인) 3번째기사</p>	<p>밤 4경(四更)에 임금이 친히 회맹제(會盟祭)를 단소(壇所)에 행하였다. 이틀 전에 전설사(典設司)에서 대차(大次)1665) 를 단(壇) 밖의 남쪽에다 동쪽으로 가깝게 서향(西向)하여 설치하고, 공신(功臣)의 막차(幕次)는 동남쪽에다 북향(北向)하여 설치하였으며, 찬만(饌幔)은 단의 동쪽에 설치하였다. 그리고 하루 전에 액정서(掖定署)에서 판위(版位)를 단 아래 한복판에다 북향하여 설치하고, 전의(典儀)가 모든 공신 및 배제관(陪祭官)의 자리를 판의 남쪽에다 북향하여 설치하였는데, 서쪽을 위로 하였으며 모두 매등(每等)마다 자리를 달리 하여 겹줄로 마련하였다. 【동반(東班)·서반(西班)의 신구 공신(新舊功臣) 및 적장(嫡長)과 중자(衆子)를 나누지 않고 작차(爵次)로 차례를 삼았으며, 종친(宗親)은 매품(每品)마다 반열 서쪽에 따로 자리를 설치하였다.】 또 전의(典儀)·알자(謁者)·찬인(贊引)의 자리를 동계(東階)의 서쪽에다 북쪽으로 가깝게 서쪽으로 향하되 북쪽을 위로 하여 설치하고, 장생령(掌牲令)이 대뢰(大牢)와 소뢰(小牢)와 【소·양·돼지이다.】 맹생(盟牲)을 【돼지이다.】 끌고 서소(誓所)로 갔다. 전사관(典祀官)이 재인(宰人)을 인솔하고 대뢰·소뢰를 상의(常儀)대로 도살하고, 맹생감(盟牲坎)은 단의 북쪽 임지(任地)에 설치하였는데, 바야흐로 깊이가 물건을 용납하기에 충분하였으며, 혈반안(血盤案)은 단 아래 서쪽에다 설치했다. 그날 아직 행사하기 전에 봉상시(奉常寺)의 관원이 올라가서 신위(神位)를 단상(壇上)에다 남향(南向)으로 하여 설치하였는데, 자리는 왕골로 하였다. 서문(誓文)은 신위의 오른쪽에 올려두고, 【점(坫)이 있다.】 향로(香爐)와 향합(香盒)을 초[燭]와 함께 신위 앞에 설치하였다. 그 다음에 생갑</p>	<p>夜四更，上親行會盟祭於壇所。前二日，典設司設大次於壇外之南近東西向，設功臣幕次於東南北向，設饌幔於壇東。前一日，掖庭署設版位於壇下當中北向，典儀設諸功臣及陪祭官位於壇南北向，西上，俱每等異位重行。 【勿分東西班新舊功臣及嫡長、衆子，爵次爲序，宗親每品，班西別設位。】又設典儀、謁者、贊引位於東階之西近北西向，北上。掌牲令牽大、小牢【牛、羊、豕。】及盟牲，【豕。】詣誓所。典祀官帥宰人，割大、小牢如常儀，設盟牲坎於壇北壬地，方深足容物，設血盤案於壇下之西。其日未行事前，奉常寺官，升設神位於壇上南向，席以莞。奠誓文於神位之右，【有坫。】設香爐、香盒，竝燭於神位前。次設牲匣，以西爲上，【先牛次羊次豕，竝藉莞席。】爵一在牲匣前，【有坫。】設尊於壇上東南隅北向，加勺</p>

(牲匣)을 서쪽을 위로 하여 설치하였으며, 【소를 먼저 하고 다음에 염소로, 그 다음에 돼지로 하되, 모두 왕골자리를 깔았다.】 작(爵) 하나가 생갑 앞에 있는데, 【점이 있다.】 준(尊)을 단상(壇上) 동남쪽 모퉁이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작떡(勺羶)을 덮었으며, 세(洗)는 동계(東階)의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하였다. 뇌(壘)는 세의 동쪽에 있는데, 작비(勺篚)를 얹어 세의 서남쪽에 있고 건(巾)으로 채웠다. 그리고 술잔을 씻는 비(篚)는 술잔으로 채웠다.

3각(刻) 전에 전사관(典祀官)이 재인(宰人)을 거느리고 맹생(盟牲)을 잡고 집사관(執事官)이 쟁반에 피를 담아 안(案)에 두었다. 2각(刻) 전에 모든 제관(祭官)과 배제관(陪祭官)·집사관(執事官)이 각각 그 복식을 갖추고, 【제관은 제복(祭服), 배제관은 조복(朝服)을 입었다.】 모두 외위(外位)로 나아가서 동서(東西)로 평상시의 의식(儀式)대로 나누어 섰다. 1각(刻) 전에 전의(典儀)가 알자(謁者)와 찬인(贊引)을 인솔하고 들어가서 단의 남쪽 배위(拜位)로 나아가 겹줄로 북향하고 서쪽을 위로 하여 네 번 절하고 나서, 본래의 위치로 갔다. 찬인(贊引)이 독서문관(讀誓文官)1666과 집사관을 이끌고 자리로 나아가자, 전의(典儀)가 ‘사배(四拜)’라고 말하고, 찬의(贊儀)가 큰 소리로 ‘사배’를 외치니, 독서문관 이하가 모두 네 번 절하였다. 【무릇 찬인의 노창(臚唱)은 모두 전의(典儀)의 말을 이어 받는다.】 찬인이 관세(盥洗)하는 위치로 이끌고 나아가서 손을 씻고 닦기를 마치고 나서 각각 그 자리로 나아갔다. 알자와 찬인이 모든 공신 및 배제관을 인도하여 들어가 자리로 나아가자, 집사관이 작세(爵洗)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술잔을 씻고 그 술잔을 다 닦은 뒤에 비(篚) 안에 담아서 이를 받들고 중계(中階)로 나아가서 준소(樽所)에 두었다. 전사관이 찬(饌)의 진설을 마치자 좌통례(左通禮)가 대차(大次)로 나아가서 중엄(中嚴)을 아뢰니, 찬례(贊禮)가 행사(行事)하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면복(冕服)을 갖추고 나오니, 찬례가 규(圭)를 잡을 것을 청하였으므로 도승지(都承旨)가 규를

羶, 設洗於東階東南北向。壘在洗東加勺, 篚在洗西南, 實以巾, 若爵洗之篚, 則實以爵。前三刻, 典祀官帥宰人, 割盟牲, 執事官以槃取血, 置於案前。二刻, 諸祭官及陪祭官、執事官, 各具其服, 【祭官祭服, 陪祭官朝服。】皆就外位, 分東西如常儀。前一刻, 典儀帥謁者、贊引, 入就壇南拜位, 重行北向西上四拜訖, 就位。贊引引讀誓文官及執事官就位, 典儀曰: “四拜。”贊儀唱四拜, 讀誓文官以下, 皆四拜。【凡贊引臚唱, 皆承典儀之辭。】贊引引詣盥洗位, 盥帨訖, 各就位。謁者、贊引, 引諸功臣及陪祭官, 入就位, 執事官詣爵洗位, 洗爵拭爵訖, 置於篚, 捧詣中階, 置樽所。典祀官進饌訖, 左通禮詣大次, 啓中嚴, 贊禮請行事。上具冕服以出, 贊禮請執圭, 都承旨進圭。贊禮導至版位北向立, 典儀曰: “四拜。”贊禮跪請四拜, 在位者同拜。【先拜者否。】贊禮導至盥洗位北向立, 贊禮請搯圭。上搯圭, 盥帨訖, 還執圭。贊禮導上陞自南階, 詣樽所西向立, 執樽者舉羶, 左承旨酌酒。右承旨舉酌, 受酒。贊

올렸다. 이에 찬례가 인도하여 판위(版位)에 이르러 북향하고 서니, 전의가 ‘사배(四拜)’라고 말하였다. 찬례가 꿇어앉아 사배하기를 청하고, 제 위치에 있는 자도 함께 절할 것을 청하였다. 【먼저 절한 자는 하지 않는다.】 찬례가 다시 인도하여 관세하는 자리에 이르러 북향하여 서니, 찬례가 규를 쫓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규를 쫓고 손을 씻고 닦기를 마친 뒤 도로 규를 잡았다. 찬례가 임금을 인도하여 남계(南階)로부터 올라가서 준소(樽所)로 나아가서 향하고 서니, 집준자(執樽者)가 떡(饗)을 들었고, 좌승지(左承旨)가 술을 따랐다. 이에 우승지(右承旨)가 술잔을 들어 술을 받았다. 찬례가 임금을 인도하여 임금이 신위(神位) 앞으로 나아가서 북향하고 서서 홀(笏)을 쫓고 꿇어앉으니, 제 위치에 있는 자도 모두 꿇어앉았다. 좌승지가 향(香)을 받들고 동부승지(同副承旨)가 향로를 받들어 꿇어앉아 올리니, 임금이 세 번 향을 사르고 향로를 신위 앞에 올렸다. 좌부승지(左副承旨)가 작(爵)을 올리니, 임금이 받아서 전헌(奠獻)하며 그대로 우부승지(右副承旨)에게 주어 신위 앞에 올렸다. 찬례가 임금을 인도하여 임금이 동계(東階)로부터 내려와서 제자리로 되돌아와 꿇어앉으니, 제자리에 있는 자도 모두 꿇어앉았다. 우승지가 혈반(血盤)을 올리니, 임금이 규를 쫓고 삼혈(敵血)하였고, 모든 공신도 또한 차례로 삼혈하였다. 삼혈이 끝나자 독서문관(讀誓文官)이 신위의 오른쪽으로 나아가 북향하고 꿇어앉아 서문(誓文)을 읽었는데, 이르기를,

“하늘이 우리 나라를 열면서 일찍부터 예의(禮義)를 본령(本領)으로 잡았고, 성신(聖神)이 교화를 넓히시어 이치에 크고 밝게 맞았다. 그리하여 강상(綱常)을 유지해온 지 어언 3백여 년, 군신(君臣)의 분의(分義)는 천지(天地)처럼 확연하여 위구(委裘)1667) 에도 아직까지 조회(朝會)하였고 노마(路馬)1668) 는 치열(齒列)이 없다. 그러나 과매(寡昧)에 이르러 흉역(凶逆)을 만났도다. 아! 저 늙은 역적들이 감히 군주의 권한을 침범하여 노가(魯家)1669) 와 진경(晉

禮導上詣神位前北向立，搢笏跪，在位者皆跪。左承旨奉香，同副承旨奉爐跪進，上三上香，奠爐於神位前。左副承旨進爵，上受而奠獻，仍授右副承旨，奠于神位前。贊禮導上降自東階，復位跪，在位者皆跪。右承旨進血槃，上搢圭敵血，諸功臣，亦以次敵血。訖，讀誓文官進神位之右，北向跪，讀誓文曰：

天啓我邦，夙秉禮義。聖神敷教，龐喆叶理。扶綱挈常，三百餘祀。君臣之分，截若天地。委裘尙朝，路馬無齒。逮于寡昧，值此凶燬。噫噫！老賊，敢干乾紀。魯家、晉卿，遞據三事。方予尸鬻，已懷不利。寧王赫臨，畏莫敢肆。予任不疑，渠益無忌。謂可同心，反蓄異志。陵土未乾，禍焰孔熾。侮予新卽，顛弄神器。祖唆其孫，父縱其子。族戚根盤，黨與碁置。太和是方，永貞敢擬。詆誣之辭，靡所不至。潛喉老將，易置副帥。約日陳兵，圖撼天位。推戴密議，狼藉掌字。廣聚銀貨，陰締婦寺。三手凶謀，次第竝

	<p>卿)1670) 처럼 번갈아 삼사(三事)1671) 의 자리를 차지하여 바야흐로 내가 시창(尸嘗)1672) 할 때부터 이미 불리(不利)한 생각을 품고 있었으나, 영왕(寧王)1673) 께서 혁림(赫臨)하고 계신지라 두려워 감히 방자하게 굴지를 못하였는데, 내가 신임하고 의심하지 않자 저들이 더욱 거리낌 없어서 말로는 동심(同心)이라 했지만 도리어 다른 뜻을 길러 왔다. 그리하여 능(陵)의 흙이 채 마르기도 전에 재앙의 불꽃이 크게 타올라 내가 즉위한 것을 업신여기고 왕의 자리를 마음대로 희롱하였으니, 할아버지는 손자를 사주하고 아버지는 자식을 조종하며, 족친(族親)이 뿌리를 박고 동당(同黨)이 바둑알처럼 깔렸었다. 태화(太和)가 바야흐로 한창인데, 영정(永貞)1674) 에다 감히 견주어 험뜯고 무함하는 말이 미치지 않는 바가 없었다. 물래 늙은 장수를 사주하여 부사(副師)를 바꾸어 두고는 날을 기약하여 군사를 동원해 천위(天位)의 동요(動撓)를 시도하였다. 추대(推戴)를 밀의(密議)한 것이 손바닥에 쓴 글자에서 낭자하게 드러났고, 은화(銀貨)를 널리 모아 은밀히 부시(婦侍)와 체결(締結)하여 삼수(三手)의 흉모(凶謀)를 차례로 시험하였다. 적전(赤箭)1675) 에 짐독(鳩毒)을 감추고, 현복(玄服)1676) 에 비수(匕首)를 싸기도 하였으며, 나를 혁(奕)1677) 처럼 보아 거짓 교지(教旨)로 초(草)하기까지 하였다. 안으로는 정신(鼎臣)1678) 이 턱을 움직이어 지시하고 밖으로는 장신(將臣)의 귀를 가려서 흉흉(凶凶)한 의기(意氣)를 감히 가리켜 일컬을 수가 없었다. 정반(庭班)1679) 을 갑자기 견어치우되, 한 사람이 외치면 천 사람이 응답하였고, 연명(聯名)한 차자(箚子)를 밤에 들이여 제 마음대로 조절(操切)하였다. 흉악한 족속의 방자한 난동이 망(莽)·조(操)·온(溫)·의(懿)1680) 와 같아서 조정 안의 급한 변란이 누란(累卵)의 형세보다도 위태하였으니, 아마도 신의 비호(庇護)가 아니었더라면 거의 나라가 유지되지 아니했으리라.</p> <p>하늘이 바야흐로 재앙을 뉘우치고 사람도 진언(進言)함이 있어서 탐색해 잡고</p>	<p>試。赤箭藏鳩，玄服衷匕。視予如奕，至草矯旨。內朶鼎頤，外掩鈴耳。凶凶意氣，莫之敢指。庭班倏輟，一唱千唯。聯箚夜入，操切惟意。族凶肆亂，莽、操、溫、懿。變急蕭牆，危甚卵累。倘微神庇，殆不國矣。天方悔禍，人有投甌。鈎捕按驗，蹤跡如是。奸情逆節，畢透無秘。妖腰亂頷，咸伏藁市。王法夫伸，人綱不墜。妖氣風掃，國勢山峙。實藉誠忠，可忘勞勩。疇封裂壤，用侈恩賜。勒之景鍾，藏諸金櫃。銅盤血盛，玄玷璧植。質彼蒼穹，誓此白水。舊德雲仍，亦造班次。與同休戚，靡贊終始。苟渝此盟，神降監止。</p> <p>讀訖，上俯伏與四拜，在位者皆拜。禮畢，贊禮導上還至幄次，釋圭，釋冕服。贊引引諸功臣及陪祭官，以次出，讀誓文官取誓文加於牲上，瘞于坎，填土。贊引引讀誓文官以下諸執事，俱復拜位，四拜訖，以次出。典儀率謁者贊引，亦四拜而出，典祀官遂撤饌而退，上始還宮。王世弟，亦隨駕參</p>
--	---	---

	<p>심문해 징험하니, 종적(蹤跡)이 이와 같았다. 그 간정(奸情)과 역절(逆節)이 완전히 드러나 숨겨진 것이 없어서, 요망한 무리의 허리와 머리가 모두 길거리에서 처단되어 왕법(王法)이 쾌히 베풀어지니, 인강(人綱)이 떨어지지 않았고, 요망한 기운이 바람에 소탕되었다. 국세(國勢)가 산악처럼 우뚝하게 섰으니, 이는 실로 성충(誠忠)에 힘입음이라, 그 노고를 어찌 잊으랴? 땅을 나누어 공로에 보답하고 은사(恩賜)를 넉넉하게 할 것이며, 다시 경종(景鍾)1681)에 새기고 금櫃(金櫃)에 간직해야 할 것이다. 동반(銅盤)에 피를 담고 현점(玄坵)1682)에 벽(璧)1683)을 세워 저 푸른 하늘에 약속하고 이 맑은 물에 맹세한다. 옛 장덕(長德)의 운잉(雲仍)1684) 또한 반차(班次)에 나와 더불어 휴척(休戚)을 함께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을 것을 다짐하니, 진실로 이 맹세를 변한다면, 신(神)께서 감지(監止)를 내리실 것이다.”</p> <p>하였다. 입을 마치고 임금이 부복(俯伏)했다가 일어나 사배(四拜)하였으며, 제자리에 있는 자들도 모두 절하였다. 예(禮)가 끝나니 찬례(贊禮)가 임금을 인도하여 임금이 도로 악차(輦次)에 이르러 규를 놓고 면복을 벗었다. 찬인(贊引)이 모든 공신과 배제관을 이끌고 차례대로 나가자, 독서문관(讀誓文官)이 서문을 가져다 희생 위에 놓고 구덩이에 묻은 뒤 흙을 채웠다. 찬인이 독서문관 이하 모든 집사를 이끌고 함께 배위(拜位)로 되돌아가서 사배한 뒤 차례차례 나갔다. 전의(典儀)가 알자(謁者)와 찬인을 인솔하고 또 사배한 뒤 나갔고, 전사관(典祀官)이 드디어 찬(饌)을 거두고 물러나니, 임금이 비로소 환궁(還宮)하였다. 왕세제(王世弟)도 또한 어가를 따라 제사에 참여하였다.</p>	<p>祭。</p>
<p>경종 12권, 3년(1723) 계묘 / 정 옹정(雍正) 1년) 4월 6일(을묘) 2번째기사</p>	<p>지평(持平) 황정(黃晟)이 소(疏)를 올려 시사(時事)를 논하고 분명한 전지(傳旨)를 내리어 국옥(鞫獄)을 빨리 완결지을 것을 청하였다. 또 이교악(李喬岳)이 선정(先正)을 무욕(誣辱)한 죄를 논하여 극변(極邊)으로 정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p>	<p>持平黃晟陳疏論事，請降明旨，亟完鞫獄。又論李喬岳誣辱先正之罪，宜投極邊。又言耽羅饑饉，無異癸甲之歲，宜令發倉賑飢，依甲寅別遣宣慰御史之</p>

	<p>“탐라(耽羅)의 기근(饑饉)은 계축년(1739)·갑인년(1740)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으니, 창고의 곡식을 풀어 기민(飢民)을 진휼함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갑인년의 선위 어사(宣慰御史)를 보냈던 예에 의하여 근시(近侍)를 보내어 시재(試才)하도록 하소서.”</p> <p>하고, 또 제도(諸道)에 수의(繡衣)(1741)를 빨리 보내기를 청하니, 임금의 우악한 비답을 내렸다.</p>	<p>例，遣近侍試才。且請速遣諸道繡衣，上優批答之。</p>
<p>경종 12권, 3년(1723) 계묘 / 청 옹정(雍正) 1년) 6월 5일(임자) 1번째기사</p>	<p>약방(藥房)에서 연일 입진(入診)하였다. 임금은 감수산(甘遂散)을 하루에 한 알씩 먹었다.</p>	<p>壬子/藥房連日入診。上進甘遂散日一丸。</p>
<p>경종 12권, 3년(1723) 계묘 / 청 옹정(雍正) 1년) 6월 11일(무오) 2번째기사</p>	<p>약방에서 또 입진하였다. 임금이 감수산(甘遂散) 3알을 더 복용하였다.</p>	<p>藥房，又入診。上加進甘遂散三丸。</p>
<p>경종 12권, 3년(1723) 계묘 / 청 옹정(雍正) 1년) 6월 19일(병인) 2번째기사</p>	<p>약방에서 입진하였다. 임금이 도인승기탕(桃仁承氣湯)을 복용했는데, 유의(儒醫) 이공윤(李公胤)의 말을 따른 것이다. 이공윤은 의술이 비록 조금 정밀하기는 했지만, 사람됨이 망령되고 패려하여 가까이할 사람은 못되었다. 또 감수산(甘遂散)이나 승기탕(承氣湯)은 준열(峻烈)한 약제로서 시험삼아 쓰는 것이 부당한데도 경솔하게 올리니, 식자(識者)들이 염려하였다.</p>	<p>藥房入診。上進桃仁承氣湯。用儒醫李公胤言也。公胤術業雖稍精，爲人妄悖，不可近。且甘遂散、承氣湯，是峻攻之劑，不當嘗試，而率爾進御，識者憂之。</p>
<p>경종 12권, 3년(1723) 계묘 / 청 옹정(雍正) 1년) 6월 21일(무진)</p>	<p>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다. 임금이 다시 도인승기탕(桃仁承氣湯)을 복용하였다.</p>	<p>藥房入診。上復進桃仁承氣湯。</p>

3번째기사	<p>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다. 도제조(都提調) 최석항(崔錫恒)이 아뢰기를,</p> <p>“금년 농사가 설혹 조금 낫다고는 하지만, 외방(外方)의 백성들은 10년 동안 연이어 굶주린 나머지 거의 죽을 뻔했다가 겨우 되살아났으니, 백성을 소요(騷擾)시키는데 관계되는 정사(政事)는 일체 정지한 뒤에야 여위고 병든 백성을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생전(長生殿)1827) 에서 황장목(黃腸木)1828)을 구할 경차관(敬差官)을 발송(發送)할 것을 계청(啓請)하였는데, 지금 이때 소요하게 함은 아마도 보호하고 진정시키는 도리가 아닐 듯하니, 양도(兩道)의 경차관은 우선 가을을 기다리게 하소서. 이외에 추쇄관(推刷官)1829)이 추쇄(推刷)하고, 징채(徵債)하는 것 등도 또한 모두 시행하는 것을 정지하여 휴식(休息)하는 뜻을 보임이 아마도 마땅할 듯합니다.”</p> <p>하니, 이광좌(李光佐)가 말하기를,</p> <p>“최석항의 말이 참으로 옳습니다. 만일 오래된 적곡(糶穀)과 묵은 포(布), 그리고 각종의 포흠(逋欠)을 우선 받아들이는 것을 정지하라고 특별히 비망기(備忘記)를 내리시어 진휼(軫恤)하는 뜻을 보이신다면, 성덕(聖德)에 빛이 있을 것입니다.”</p> <p>하였다.</p>	<p>藥房入診。 都提調崔錫恒奏曰：“今年穡事，設或稍勝，外方民生，十年荐飢之餘，幾死僅生，凡係擾民之政，一切停止而後，凋瘵之民，得以保存矣。長生殿啓請發送黃腸敬差官，而此時騷擾，恐非懷保鎮安之道。 兩道敬差，姑爲待秋， 此外推刷官推奴徵債等事，亦皆停行， 以示休息之意， 恐爲得宜。” 李光佐曰：“錫恒言誠是矣。 若以舊糶、陳布， 各樣逋欠， 姑許停捧， 特下備忘， 以示軫恤之意， 則於聖德有光矣。”</p>
<p>경종 13권, 3년(1723 계묘 / 청 옹정(雍正) 1년) 9월 16일(임진) 2번째기사</p>	<p>임금이 구선남극단(癩仙南極丹)을 복용하였는데, 이공윤(李公胤)의 의논을 따른 것이다. 이것은 약성(藥性)이 대단히 높은 약제(藥劑)인데 이름을 변경한 것이었다.</p>	<p>上進癩仙南極丹。 亦用李公胤議。 是峻劑，而變名也。</p>
<p>경종 13권, 3년(1723</p>	<p>임금이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재상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우의정</p>	<p>丙寅/上引見大臣、備局諸宰。 右議</p>

<p>계묘 / 청 옹정(雍正) 1년) 10월 20일(병인) 1번째기사</p>	<p>(右議政) 이광좌(李光佐)가 말하기를,</p> <p>“농사가 흉년이 들고 수재(水災)까지 있어 전답이 복사(覆沙)의 피해를 많이 입었으므로 굶주려 떠돌아 다니는 자가 벌써 많다고 하니, 듣건대 놀랍습니다. 청컨대 제도(諸道)의 방백(方伯)과 수령(守令)을 신칙하여 구활(救活)하는 방책을 미리 강구해서 때늦은 폐단이 없게 하소서. 또 길거리에서 죽은 사람이 있는 것을 보니 놀랍고 참혹스러움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적자(赤子)의 전련(顛連)1864) 이 이에 이르렀는데, 나라에서 능히 구제하지 못하니, 전하께서 들으시고 어떠한 생각이 일어나겠습니까? 부관(部官)이 대수롭지 않게 보고 즉시 거두어 묻지 않고 길거리에 버려 두었으니, 지금부터 돌아다니는 거지로서 벌거벗은 자는 해부(該部)에서 호조(戶曹)에 보고하여 빈 석[空石]을 넉넉하게 주고, 각 마을[里]로 하여금 간호하게 하되, 혹 병들어 죽으면 곧바로 깊이 매장하게 하고, 만약 잘 거행하지 않으면, 청컨대 부관(部官)의 죄를 논하소서.”</p> <p>하니, 임금의 그대로 따랐다. 또 진연(進宴)을 자전(慈殿)께 거듭 요청하여 명년 봄을 기다려 설행할 것을 진달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또 말하기를,</p> <p>“청(淸)나라에서 방물(方物)을 많이 감하였고, 사신(使臣)을 불러보고 특별히 유시(諭示)하고 증여(贈與)한 것이 늘 정해진 격식(格式)의 밖에서 나왔으니, 마땅히 별사(別使)를 보내어 은혜에 사례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절사(節使)를 보낼 날이 가까이 닥쳐와 형세상 그 전에 미치기 어렵겠으므로, 절사와 겸하게 하도록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별사를 보내지 않은 것은 끝내 흠절(欠節)과 궤전(闕典)에 관계됩니다. 이러한 일의 상황으로 자문(咨文) 하나를 지어 예부(禮部)에 보내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p>	<p>政李光佐言：“穡事失稔，水且爲災，田畝多被覆沙之害，飢饉流離者，已多，聞可驚心。請申飭諸道方伯、守令，預講救活之策，俾無後時之弊。且見道有死人，不勝驚慘。赤子之顛連至此，而國家不能救，殿下聞之，當作何如懷耶？部官視之尋常，不卽收瘞，棄置街頭。自今行乞之赤脫者，自該部報戶曹，優給空石，使各里看護，如或病斃，隨即深埋，而不善舉行，則請論部官罪。”上從之。又以進宴申請慈殿，待明春設行爲達，上許之。又言：“彼中多減方物，招見使臣，別諭別贈，出於常格之外。宜遣別使謝恩，而節使迫近，勢難及於其前，故以兼付節使爲定矣，不遣別使，終涉欠闕。以此事狀，作一咨文，送於禮部似宜矣。”上從之。</p>
--	---	---

	하니, 임금의 그대로 따랐다.	
경종 13권, 3년(1723) 계묘 / 청 옹정(雍正) 1년) 12월 2일(정미) 2번째기사	임금이 또 도인승기탕(桃人承氣湯)을 복용했다.	上又進桃仁承氣湯五貼。
경종 13권, 3년(1723) 계묘 / 청 옹정(雍正) 1년) 12월 6일(신해) 1번째기사	반궁(泮宮)1889) 에 황감(黃柑)을 하사(下賜)하고 잇따라 시사(試士)하여 이유태신(李裕身) 등 여섯 사람을 뽑았는데, 수석(首席)을 차지한 자에게는 급제(及第)를 내리고 나머지에게는 각각 분수(分數)를 주라고 명하였다.	辛亥/賜柑泮宮，仍試士，取李裕身等六人，命居首人賜第，餘各給分。
경종 14권, 4년(1724) 갑진 / 청 옹정(雍正) 2년) 2월 2일(병오) 2번째기사	사간원(司諫院) 【정언(正言) 조상경(趙尙慶)이다.】에서 전에 아뢰었던 일을 거듭 아뢰고, 또 다섯 가지 일을 새로 논계(論啓)하였는데, 그 첫 번째에는 논하기를, “여러 도(道)의 장문(狀聞)과 시종신(侍從臣)의 연주(筵奏)로 민사(民事)에 관계되는 것을 비변사에 내려보냈는데도 즉시 복주(覆奏)하지 않습니다. 청컨대 비변사 당상을 추고(推考)하소서.” 하고, 그 두 번째에는 논하기를, “지난해는 수재(水災)와 한재(旱災)로 인하여 농사가 큰 흉년이었는데도, 유사(有司)가 경비를 아끼고 급제(給災)를 많이 주지 않아서 소민(小民)의 원망 소리가 소란스럽습니다. 이제 전정(田政)이 이미 마감되어 다시 실패를 조사하기도 어려우니, 청컨대 재해(災害)가 가장 심한 고을은 봄에 바칠 대동미(大同米)를 두 말[斗]씩 감해 주고, 그 다음 고을은 한 말씩을 감하여 주게 하소	諫院【正言趙尙慶。】申前啓，且有新啓五事。其一論：“諸道狀聞、從臣筵奏，關係民事者，下備局，不卽覆奏。請推籌司堂上。”其二論：“去年水旱，穡事大歉，而有司恤費，多不給災，小民嗷嗷怨咨。今田政已勘，更難覈實，請尤甚災邑，春大同，減米二斗，之次邑減一斗。”其三論：“湖西水災尤酷，而有司以災結太過，方更行查。田案已勘，春耕已迫，苟欲加現實結，則不過還起於白地。焉有聖明在上，爲此罔民之舉？請亟寢湖西災結更查之命。”其四論：“湖南列邑設賑日，貸營衙門錢穀，取用過半，以其餘數給民，倍徵利殖，以充還報之本數，民皆

	<p>서.”</p> <p>하고, 그 세 번째에는 논하기를,</p> <p>“호서(湖西) 지방은 수재(水災)가 더욱 심하였는데, 유사(有司)가 재결(災結)이 너무 많다 하여 방금 재차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안(田案)이 이미 마감되고 봄갈이가 벌써 박두하였는데, 진실로 실지의 결수(結數)를 더 찾아 내려고 든다면 이는 백지에서 다시 <문제를> 일으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어찌 성명(聖明)이 위에 계신데 이처럼 백성을 속이는 일을 하겠습니까? 청컨대 호서 지방의 재결을 다시 조사하라는 명을 속히 정지하소서.”</p> <p>하고, 그 네 번째에는 논하기를,</p> <p>“호남(湖南)의 여러 고을에 진휼(賑恤)을 실시하던 날, 영문(營門)의 전곡(錢穀)을 꾸어다가 반이 넘게 가져다 쓰고 그 나머지 수량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는 그 이식(利殖)을 갑절로 받아들이 상환할 본수(本數)를 채운지라, 백성들이 다 흩어져 떠나버리고 남아 있는 자가 거의 없어서 형편상 이웃이나 친척에게 받아내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는 조세(租稅)나 조적(糶糶)1924)과는 차이가 있는 만큼 변통의 도리가 없을 수 없다고 하니, 청컨대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헛수가 오래 되어 바치기 어려운 자를 조사해 밝혀서 감하여 주도록 하고, 다른 도, 다른 고을에도 이러한 폐단이 있으면 또한 일체 감하여 주소서.”</p> <p>하고, 그 다섯째에는 논하기를,</p>	<p>離散，存者無幾，勢不得不侵及隣族。此與租稅、糶糶有間，不可無變通之道。請令道臣，查明年久難捧者蕩滌，他道他邑有此弊者，亦一體蠲減。”其五論：“頤命、昌集、健命等所居第宅，請令有司，速行撤毀，瀦其地，以快神人之憤。”上只從備局堂上推考、大同減半、湖南賑穀蕩滌之請。</p>
--	---	--

	<p>“이이명(李頤命)·김창집(金昌集)·이건명(李健命) 등이 살던 집을, 청컨대 유사로 하여금 속히 철거하고 그 자리에 웅덩이를 파게 하여 신명(神明)과 사람들의 울분을 시원하게 하소서.”</p> <p>하였다. 임금이 비변사 당상의 추고와 대동미의 감면과 호남 진휼곡(賑恤穀)의 탕감 등의 청만 따랐다.</p>	
<p>경종 15권, 4년(1724) 갑진 / 청 옹정(雍正) 2년) 8월 2일(임신) 4번째기사</p>	<p>임금의 병환이 계속 여러 날 동안 낫지 않아 수라(水刺) 올리는 것마저 싫어하였는데, 이에 이르러서는 또 한열(寒熱)의 징후가 있어 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고 약(藥)을 의논하여 시진탕(柴陳湯)을 지어 올렸다. 임금이 동궁(東宮)에 있을 때부터 걱정과 두려움이 쌓여 마침내 형용하기 어려운 병을 이루었고, 해를 지낼수록 깊은 고질이 되었으며, 더운 열기가 위로 올라와서 때로는 혼미(昏迷)한 증상도 있었다. 그래서 계속 국방(局方)에서 올린 우황 육일산(牛黃六一散)과 곤담환(滾痰丸) 등 하리(下利)의 약제(藥劑)를 복용하였으나 아무런 효험이 없었다. 그런데 사인(士人) 이공윤(李公胤)은 성질이 광망(狂妄)하였으나 의업(醫業)으로 명성이 있었는데, 그의 의술은 대체로 준리(峻利)2133) 를 위주로 하였다. 임인년(2134) 이후로 천거(薦擧)되어 약방(藥房)에 들어가 임금의 병환을 모시었는데, 이공윤이 스스로 말하기를 ‘도인승기탕(桃仁升氣湯)을 자주 복용하여 크게 탕척(蕩滌)해 내면 임금의 병환이 금방 나올 수 있다.’고 하여 그것을 시험해 보았지만 효험이 없었다. 그런데도 이공윤은 오히려 방자하게 노기 띤 눈으로 보면서 스스로 의술을 자랑하며, 다시 시평탕(柴平湯)을 의논하면서 대황(大黃)·지실(枳實) 등 추탕(推盪)2135) 하는 재료로 군약(君藥)2136) 을 삼아 계묘년(2137) 에 시작하여 올봄에 이르도록 계속하여 1백 수십 첩(帖)을 올렸다. 그러자 비록 임금의 체부(體膚)의 외형(外形)은 왕성하나 비위(脾胃) 등 내장이 허하였고, 음식을 싫어하는 날수가 오래 되어 마침내 한열(寒熱)의 증세가 발생하였다. 그런데도 이광좌(李光</p>	<p>上疾連日彌留，厭進水刺，至是，又有寒熱候，藥房入診議藥，進柴陳湯。上自在東宮，積憂畏，遂成難狀之疾，歷歲沈痼，火熱上升，有時昏迷。連服局方所進牛黃六一散、滾痰丸等下利之劑，猶未效。士人李公胤，性狂妄，業醫有名，而其術大抵以峻利爲主。壬寅後，薦入藥房侍疾，公胤自言，以桃仁升氣湯數服，大蕩滌之，上疾可立愈，試之無驗。公胤猶恣睢自衒，更議柴平湯，以大黃、枳實推盪之材爲君藥，自癸卯以後，至今春連進百數十貼。上雖體膚外旺，而脾胃內虛，厭膳日久，遂發寒熱之症。李光佐不能覺公胤之妄，反以大妃疾愈，歸議藥功於公胤，至請論賞，識者惜之。</p>

	佐)는 이공윤의 망령됨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대비(大妃)의 병이 나은 것도 그 의약(議藥)의 공을 이공윤에게 돌리고 논상(論賞)을 청하기까지 하였으니, 식자(識者)가 이를 애석하게 여겼다.	
경종 15권, 4년(1724) 갑진 / 청 옹정(雍正) 2년) 8월 3일(계유) 2번째기사	밤에 임금이 한열(寒熱)이 갑자기 심하여 약방 도제조(藥房都提調) 이광좌(李光佐) 등이 대조전(大造殿) 침실에 입진(入診)하고, 이튿날 아침에 의논하여 승양산화탕(升陽散火湯)을 지어 올렸다.	夜, 上寒熱猝劇, 藥房都提調李光佐等入診於大造殿寢室, 翌朝議進升陽散火湯。
경종 15권, 4년(1724) 갑진 / 청 옹정(雍正) 2년) 8월 16일(병술) 2번째기사	임금이 병환으로 침선(寢膳)이 날로 줄어들고 소변이 점점 단축되므로 약방(藥房)에서 약(藥)의 조제를 의논하고 시령탕(柴苓湯)을 올렸다.	上疾, 寢膳日減, 小便漸短, 藥房議藥, 進柴苓湯。
경종 15권, 4년(1724) 갑진 / 청 옹정(雍正) 2년) 8월 24일(갑오) 1번째기사	비와 눈이 내렸다. 임금의 환후(患候)가 피곤하고 위태함이 더욱 심하고 맥(脈)이 낮아져서 힘이 없었다. 4경(更)에 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여 삼다(參茶)를 올리고 물러나와서는 주원(厨院)2151) 으로 옮겨서 입직(入直)하기를 청하였으며, 사각(巳刻)에 다시 입진(入診)하였다. 임금이 병환이 있는 뒤로 여러 신하들이 성후(聖候)를 문안하면 임금이 번번이 응수(應酬)하여 대답을 하였는데, 이에 이르러서는 임금의 음성이 점점 미약하여졌다. 도제조(都提調) 이광좌(李光佐)와 제조(提調) 이조(李肇)가 미음(粥飲)을 진어하기를 권하였으나 모두 응답하지 않았으며, 세제(世弟)가 일어나서 청하매 임금이 비로소 고개를 들므로 미음을 올렸다. 제조 등이 물러나와 여러 의원(醫員)들과 약을 의논하였는데, 이공윤(李公胤)이 공언(公言)하기를, “삼다(參茶)를 써서는 안된다. 계지마황탕(桂枝麻黃湯) 2침만 진어할 것 같으면 설사는 금방 그치게 할 수 있다.”	○甲午/雨雪。 上候困殆益甚, 脈低無力。 四更, 藥房入診, 進參茶, 退而請移直廚院, 巳刻復入診。 上自有疾以來, 諸臣問聖候, 上輒有酬答, 至是, 玉聲漸微。 都提調李光佐、提調李肇, 勸進粥飲, 皆不答, 世弟起而請之, 上始舉首進米飲。 提調等退與諸醫議藥, 李公胤揚言: “參茶不可用。 若進桂枝麻黃湯二貼, 泄瀉可立止。” 遂煎入進服。 酉刻醫官入診, 退言: “症候比朝益危急。” 諸臣疾趨入熙仁門, 自內促提調入診, 李光佐等入侍, 上倚內侍, 眼深視瞋。 光佐問候, 上不答, 世弟泣曰: “急用參附。” 光佐進參茶, 上

	<p>하므로, 마침내 다려 올려 복용하였다. 유각(酉刻)에 의관(醫官)이 입진(入診)하고 물러나와 말하기를,</p> <p>“환후(患候)의 증세가 아침에 비교해 더욱 위급합니다.”</p> <p>하자, 모든 신하들이 회인문(熙仁門)으로 달려 들어갔고, 대내(大內)로부터 제조(提調)의 입진(入診)을 재촉하여 이광좌 등이 입시(入侍)하였는데, 임금이 내시(內侍)를 의지하고 앉아서 눈을 몹시 부릅뜨고 보았다. 이광좌가 문후(問候)를 하였으나 임금이 대답하지 않자, 세제(世弟)가 울면서 말하기를,</p> <p>“인삼(人蔘)과 부자(附子)를 급히 쓰도록 하라.”</p> <p>하였고, 이광좌가 삼다(參茶)를 올려 임금이 두 번 복용하였다. 이공윤(李公胤)이 이광좌에게 이르기를,</p> <p>“삼다를 많이 쓰지 말라. 내가 처방한 약을 진어하고 다시 삼다를 올리게 되면 기(氣)를 능히 움직여 돌리지 못할 것이다.”</p> <p>하니, 세제(世弟)가 말하기를,</p> <p>“사람이란 본시 자기의 의견(意見)을 세울 곳이 있긴 하나, 지금이 어떤 때인데 꼭 자기의 의견을 세우려고 인삼 약제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가?”</p> <p>하였다. 조금 지나자 임금의 안시(眼視)가 다소 안정되고 콧등이 다시 따뜻하여졌다. 세제가 또 말하기를,</p>	<p>再進服。李公胤謂光佐曰：“毋多用參茶。進吾藥而復進參茶，則氣不能運旋也。”世弟曰：“人固有立己見處，此何等時，必欲立己見，使不得用參劑耶？”少頃，上眼視稍定，鼻梁復溫。</p> <p>世弟曰：“予不解醫理，尙知參附能回陽矣。昨日用參旋停，想必以公胤言持難也。”二更，上氣息復微，光佐進參茶，上已不能飲，醫官以匙灌之。光佐請祈禱廟社，仍涕泣言：“臣愚迷昧症候，藥物多失宜，罪當萬死。”世弟曰：“聖上於余，情是兄弟，義兼父子，侍疾無狀，遽至於此，更何言哉？祈禱雖過時，宜速舉行。”祭官未及受香，而上屬纊。世弟稟大妃命，召錦平尉朴弼成、全城君混、礪山君枋、都事金後衍、主簿沈維賢，留門入侍，又令禮曹判書李眞儉，持《五禮儀》入侍。承旨朴乃貞，請宮城扈衛。中殿下教光佐，令咸原府院君魚有龜，起復入侍，光佐對曰：“國舅起復，非大臣可擅當，取東宮令旨。”中殿請于世弟，世弟以內教，下令政院起復。世弟顧禮官，問被髮當否，令儒臣，考古事議定。光佐令史官，書上大漸字，</p>
--	---	---

	<p>“내가 의약(醫藥)의 이치를 알지 못하나, 그래도 인삼과 부자가 양기(陽氣)를 능히 회복[回陽]시키는 것만은 안다.”</p> <p>하였다. 어제 쓰던 삼을 바로 멈추었던 것은, 생각건대 반드시 이공윤의 말 때문에 미루었던 것 같다. 2경(二更)에 임금의 기식(氣息)이 다시 미약하므로 이광좌가 삼다를 올렸으나 임금이 스스로 마시지 못하여 의관(醫官)이 숟가락으로 떠서 넣었다. 이광좌가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에 기도(祈禱)하기를 청하고 이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p> <p>“신이 어리석고 혼미하여 증후(症候)에 어두워서 약물을 쓰는 데도 합당함을 잃은 것이 많았으니, 그 죄는 한번 죽어 마땅합니다.”</p> <p>하였고, 세제는 말하기를,</p> <p>“성상(聖上)이 나에게 정(情)으로는 형제(兄弟)이나 의(義)로는 부자(父子)의 관계를 겸하였는데, 병환중에 모시기를 잘하지 못하여 갑자기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다시 무슨 말을 하겠는가? 기도는 비록 때가 지났으나 빨리 거행하는 것이 마땅하다.”</p> <p>하고, 제관(祭官)이 미처 향(香)을 받지도 못하였는데 임금이 그만 속광(屬纊)2152) 을 하였다. 세제(世弟)가 대비(大妃)에게 품지(稟旨)하여, 금평위(錦平尉) 박필성(朴弼成), 전성군(全城君) 이혼(李混), 여산군(礪山君) 이방(李枋), 도사(都事) 김후연(金後衍), 주부(主簿) 심유현(沈維賢)을 명소(命召)하여 유문(留門)2153) 입시(入侍)하도록 하고, 또 예조 판서(禮曹判書) 이진검(李眞儉)</p>	<p>周視外庭，乃臯復。</p>
--	--	------------------

	<p>으로 하여금 《오례의(五禮儀)》를 가지고 입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승지(承旨) 박내정(朴乃貞)이 궁성(宮城)을 호위(扈衛)하도록 청하자 중전(中殿)이 이광좌에게 하교(下敎)하여 함원 부원군(咸原府院君) 어유귀(魚有龜)를 기복(起復)2154) 하여 입시(入侍)하도록 하니, 이광좌가 대답하기를,</p> <p>“국구(國舅)의 기복은 대신이 독단(獨斷)하여 할 수 없는 것이니, 동궁(東宮)의 영지(令旨)2155) 를 취득함이 합당합니다.”</p> <p>하였다. 이에 중전(中殿)이 세제(世弟)에게 청하고, 세제는 내교(內敎)로써 승정원(承政院)에 영(令)을 내려 기복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세제가 예관(禮官)을 돌아보고 피발(被髮)2156) 하는 것의 마땅함과 마땅하지 않음을 물어보면서 유신(儒臣)으로 하여금 옛일을 상고하여 의논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이광좌는 사관(史官)을 시켜 ‘상대점(上大漸)2157)’의 세 글자를 써서 외정(外庭)에 두루 보이도록 하고 곧 고복(阜復)2158) 을 하였다.</p>	
<p>경종 대왕 묘지문[誌文]</p>	<p>지문(誌文)에 이르기를,</p> <p>“아! 거룩하신 우리 경종 덕문 익무 순인 선효 대왕(景宗德文翼武純仁宣孝大王)의 성(姓)은 이씨(李氏)요, 이름[諱]은 윤(昀)이고, 자(字)는 휘서(輝瑞)이니, 숙종 대왕(肅宗大王)의 장자(長子)이며 현종 대왕(顯宗大王)의 손자(孫子) 이시다. 처음에 숙종께서 오래도록 후사(後嗣)가 없음을 근심하셨는데, 희빈(禧嬪) 장씨(張氏)가 무진년(2193) 10월 28일에 왕을 탄생하니, 숙종이 매우 기뻐하시어 여러 대신을 불러서 이르시기를, ‘나라의 근본이 정해지지 않아서 인심이 매인 곳이 없었으니, 오늘의 큰 계책(計策)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하시고, 마침내 원자(元子)의 칭호(稱號)로 정하셨고, 세 살 때에 왕세자(王世子)로 책봉(冊封)되셨다. 네 살 때에 처음으로 《천자문(千字文)》을 배</p>	<p>誌文曰：</p> <p>於戲! 洪惟我景宗德文翼武純仁宣孝大王，姓李氏，諱【昀】字，【輝瑞】肅宗大王之長子，顯宗大王之孫也。始肅宗，久無嗣爲憂，嬪張氏，以戊辰十月二十八日誕王，肅宗喜甚，召諸大臣謂曰：“國本未定，人心靡係，今日大計，不在他也。”遂定號元子，三歲，封王世子。四歲始學《千字文》，肅宗親製序以授之曰：“儲宮方講習是書，</p>

	<p>있는데, 숙종께서 친히 서문(序文)을 지어 주며 이르지기를, ‘저궁(儲宮)2194) 이 방금 이 책을 강습(講習)하는데, 성품이 총명하여 심지(心智)가 날로 자라나니 학문에 뜻을 더함이 바로 멀지 않은 곳에 있다.’ 하였고, 인현 왕후(仁顯王后)께서 아들로 삼으시기를 한(漢)나라 명덕후(明德后)의 옛일과 같아서 2195) 자애(慈愛)와 효도(孝道)가 함께 매우 돈독하셨다.</p> <p>8세 때 입학례(入學禮)를 행하였는데, 그 주선(周旋)함이 모두 절도에 맞고 강(講)하는 음성이 크고도 맑아서 교문(橋門)을 에워싸고 듣는 인사(人士)2196) 들이 서로 경하(慶賀)해 마지 않았다. 이 해에 관례(冠禮)2197) 를 행하고 태묘(太廟)에 알현(謁見)하였으며, 대가(大駕)2198) 를 따라 영희전(永禧殿)2199) 의 수용(睟容)2200) 앞에 배례(拜禮)하고 영소전(永昭殿)2201) 을 배알(拜謁)하였으며, 인하여 사부(師傅)·빈객(賓客)과 춘방(春坊)2202) 의 요속(僚屬)들에게 명하여 매일 주연(胄筵)2203) 에 들어오도록 하여 《효경(孝經)》·《소학(小學)》·《삼강행실(三綱行實)》 등의 책을 두루 강론하였는데, 강관(講官)과 사부(師傅)가 심화(心畫)2204) 를 보이기를 청하자 크게 ‘효제충신(孝悌忠信)·예의염치(禮義廉恥)·경이직내(敬以直內)·의이방외(義以方外) 등의 글자를 써서 주었는데 신료(臣僚)들이 돌려가며 완상(玩賞)하였다. 이로 부터 학문이 날로 더욱 진보되었으며, 서연(書筵)에서의 문난(問難)이 보통 사람의 의사 밖에서 나오곤 하였다.</p> <p>일찍이 상(商)2205) 나라의 이윤(伊尹)2206) 이 태갑(太甲)을 동궁(桐宮)에 내쳤을 때 끝내 과오(過誤)를 고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였을 것인가를 물으셨고, 또 서문(序文)2207) 에 이른 ‘사람의 명(名)자를 욕되게 하지 말라.’고 한 명(名)자는 무슨 뜻인가를 물으셨으며, 또 한(漢)나라 때 사단(史丹)2208) 이 청포(靑蒲)2209) 에 엎드린 것이 왕씨(王氏)의 화(禍)2210) 에 기틀이 되</p>	<p>性既聰朗，心智日長，加意學問，正在匪遠。”仁顯王后子之，如漢明德后故事，慈孝俱甚篤。八歲行入學禮，周旋中節，講音洪亮，園橋人士，莫不相慶。是歲行冠禮，謁太廟，隨大駕，拜永禧殿睟容，謁永昭殿。仍命師傅、賓客與春坊僚屬，日入胄筵，遍講《孝經》、《小學》、《三綱行實》等書，講官、師傅，請見心畫，大書孝悌忠信、禮義廉恥、敬以直內，義以方外等字，與之，臣僚傳玩。自是，學問日益進，臨筵問難，出人意表。嘗問伊尹放太甲於桐，終不改過則如何，又問序曰：“無忝人之名，名字何義？”又問：“史丹伏靑蒲，基王氏之禍，疏廣、疏受，見幾而作。由是論之，史丹不如廣、受乎？”若此者多，雖自謂老師宿儒，皆歎其天縱不可及。講官嘗問：“《孟子》七篇，於何尤着力乎？”答曰：“自《梁惠王》至《盡心》，無非闡明義理，夫豈拈出某處，尤爲着力乎？”又問自期如何？答曰：“非曰能之，乃所願，則舜何人也，予何人也。”辛巳，仁顯王后昇遐，殯肆攀擗，哀動傍人，至發靑路次，</p>
--	--	---

었고 소광(疏廣)과 소수(疏受)2211) 는 기미를 보고 일어나 물러났는데 이로 말미암아 논한다면 ‘사단이 소광과 소수보다 못하다는 것인가?’ 하고 물었다. 이와 같은 것이 많았으니, 비록 스스로 노사 숙유(老師宿儒)라고 이르는 사람이라도 모두 하늘이 내신 분이어서 그를 미칠 수 없다고 감탄하였다. 그리고 강관(講官)이 일찍이 ‘《맹자(孟子)》 칠편(七篇) 중에 어느 부분에 더욱 착력(着力)하십니까?’ 하고 묻자, 대답하시기를, ‘양혜왕장(梁惠王章)2212) 에서부터 진심장(盡心章)2213) 에 이르기까지 모두 의리(義理)를 천명(闡明)하지 않음이 없는데, 어찌 어느 한 부분을 끌어내어 더욱 착력을 한다고 하겠는가?’ 하였고, 또 ‘스스로 어떤 사람이 되기를 기약하십니까?’ 하고 묻자, 대답하시기를, ‘능히 할 수 있다고는 말하지 못하지만 곧 원하는 바는 「순(舜)임금은 어떤 사람이며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신사년(2214) 에 인현 왕후(仁顯王后)께서 승하(昇遐)하시자 빈사(殯殮)에서 가슴을 치며 슬퍼하시어 곁에 있는 사람을 감동케 하였으며, 발인(發靚)할 때에 이르러서 애사(哀辭)를 받들고 노차(路次)에 오래도록 서서 애통(哀痛)하였고, 반우(返虞)2215) 하는 날에는 교외(郊外)에 나아가 모시고 돌아오시면서 곡성(哭聲)이 끊어지지 않으시니 길에서 보는 이들이 모두 기뻐하였다. 을유년(2216) 은 곧 숙종(肅宗)께서 즉위하신 지 31년이 되는 해이다. 왕께서 세 번 상소(上疏)하여 칭경(稱慶)하기를 청하였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전대의 역사(歷史)에는 의거할 만한 문헌이 있으며 오늘에 있어서는 꼭 행해야 할 예(禮)입니다.’ 하자, 숙종께서 비답(批答)하시기를, ‘상소 속의 사연이 비록 인자(人子)의 지극한 정성에서 나온 것이나, 돌아보건대 내가 무슨 마음으로 이 안락을 누리며 즐기는 일을 하겠느냐?’ 하였다. 당시 숙종께서는 학문을 좋아하시고 정사(政事)에 부지런하시다가 피로가 쌓여 병이 되어 한가한 곳에 나아가 조양(調養)할 것을 생각하고 계셨다.

久立哀慟，返虞日，出郊陪還，哭不絕聲，道路觀者皆悅。歲乙酉，卽肅廟卽位之三十二年也。王三上疏，請稱慶，有曰：“於前史有可據之文，在今日爲必行之禮。”肅宗答曰：“疏辭雖出人子之至情，顧予何心，作此豫大之事乎?”時肅宗以好學勤政，積勞成疾，思就閑調養。是年十月，有禪位之命，王驚惶罔措，連章固辭，召宮僚諭之曰：“達夜泣請，終不得回天，伏閣陳懇之外，更無他道。”將出閣門，時，天寒大雪，令去惟幕，肅宗曰：“爾之情事，不可不念。”遂勉從焉。後十二年丁酉，肅宗以五載沈綿，酬應漸難，依國朝故事，令王聽政代理，王又懇辭，不獲命，且以替勞之義，勉承命。群臣入朝稱賀，特令停鼓吹，裁決庶務，咸當於理。然皆一一上稟而後行，如史官傳批，亦詢政院，示不敢專也。首春下諭八路，勸農桑，百姓餓者，賑貸之，疾疫死者，收瘞之，每於諸路監司之辭去，輒召見勸勵，俾嚴黜陟，寒暑遣近侍，審獄放輕囚。宮墻頽圯，有潛入者，以無情而原之，刑曹據邀截公文律，論裂破書啓人罪至

	<p>이해 10월에 선위(禪位)의 명령이 있자 왕은 놀라고 황공하여 몸들 바를 몰라 하시면서 계속 글을 올려 굳게 사양하였으며, 세자궁의 요속(僚屬)을 불러서 유시(諭示)하기를, ‘밤새도록 울면서 칭하였으나 마침내 회천(回天)2217) 할 수 없었으니, 함문(閤門)에 엎드려 진간(陳懇)하는 이외에 다시 다른 방도가 없다.’고 하시고 장차 함문으로 나오려고 하셨는데, 그때 날씨가 춥고 많은 눈이 내렸지만 유막(帷幕)마저 제거하라고 명령하시니, 그제서야 숙종께서 이르기를 ‘너의 성심[情事]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하시고 마침내 애써 따르셨다.</p> <p>12년 뒤 정유년(2218) 에 숙종께서 5년 동안이나 병이 낫지 않고 끝으로 수응(酬應)이 점점 어려워지자, 국조(國朝)2219) 의 고사(故事)에 의거하여 왕에게 청정(聽政)을 대리(代理)하도록 명하니, 왕께서 또 간곡히 사양하였으나 윤희(允許)를 받지 못하셨다. 그리고 수고로움을 대신하겠다는 뜻으로 힘써 명령을 받드니, 여러 신하들이 조정에 들어와 칭하(稱賀)하였으며, 특별히 고취(鼓吹)2220) 를 정지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업무(業務)를 재결(裁決)하시니, 모두가 의리(義理)에 합당하였다. 그러나 모두 하나하나를 계품(啓稟)해 아뢴 뒤에 행하였으며, 사관(史官)에게 전하는 비답 역시 승정원(承政院)에 물어서 하셨으니, 이는 감히 독단하지 않음을 보여 주신 것이다.</p> <p>이듬해 첫봄에 팔도[八路]에 유시를 내려 농상(農桑)에 힘쓰도록 권장하시고, 백성들 중에 굶주리는 자에게는 진대(賑貸)하도록 하고 질병(疾病)으로 죽은 자는 시체를 거두어 묻어 주도록 하셨다. 언제나 제도(諸道)의 감사(監司)가 하직하고 임지로 떠날 때에는 번번이 꼭 불러서 보시고 힘쓰도록 경계하여 그들로 하여금 출척(黜陟)을 엄정하게 하도록 하셨고, 춥거나 더우면 근시(近</p>	<p>死，特以一罪不可用，比律減死焉。遇臣僚以禮待，宗親以恩，大臣歿，則必設次而哭，宗臣之喪，亦官庀喪葬，竝令仍給祿，以終三年。王弟延齡君冊蚤卒，王自製文以祭，有曰：“呼之不應，漠漠無聲，已矣於世，空想形儀。居諸如流，卽山有期。衿陽一夕，月色千秋。”實情到之辭也。肅宗違豫積十數年，王侍湯憂灼，始終如一。嘗移御慶德宮，王隨往，禮當祇迎坤殿，語宮官曰：“聖候未寧，異於他時，我當先入面候。”卽入闕問候，還出祇迎，倉卒周旋，允合情禮，左右相顧欽頌。及行幸溫泉，留王監國，王祇送于江頭，羽旄旣遠，猶竚立瞻望，焦憂形於外，都人觀者，皆嗟歎。庚子肅宗疾大漸，王涕泣皇皇，命禱廟社、山川。逮奉諱，禮官進嗣位節目，答曰：“天崩罔極之中，乃見此，人子情理，豈忍是哉？”百僚連日齊籲，始以上承慈教，勉許焉。王旣受寶踐阼，凡政令施措，一視代理時，而尤以開言路恤民隱，爲先務。至辛丑，王以未有嗣續，國勢孤危，冊封我殿下爲王世弟，所以重宗廟社稷也。世弟五上章</p>
--	---	---

侍)를 보내어 옥(獄)을 살피게 하고 가벼운 죄수는 방면(放免)하도록 하셨으며, 궁궐의 담장이 허물어져서 몰래 들어온 자가 있었는데 아무런 사사로운 뜻이 없었다 하여 용서해 주도록 하셨고, 형조(刑曹)에서 요절 공문률(邀截公文律)2221)에 의하여 서계(書啓)를 찢어 파괴한 사람의 죄가 사형(死刑)에 이른 것을 특별히 일죄(一罪)는 적용할 수 없다 하여 비율(比律)하여 사형을 감하도록 하셨다. 신료(臣僚)는 예(禮)로써 대우하시고 종친(宗親)에게는 은혜로 보살폈으며, 대신이 죽으면 반드시 위차(位次)를 설치하여 곡(哭)을 하였고, 종신(宗臣)의 상사(喪事) 역시 관가(官家)에서 모든 것을 도와서 장사지내고, 아울러 그대로 녹(祿)을 지급하여 삼년상을 마치도록 하셨다.

왕제(王弟) 연령군(延齡君) 이훤(李田)이 일찍 죽자 왕이 스스로 제문(祭文)을 지어 제사 지내셨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불러도 응답하지 않고 막연히 소리가 없으니, 끝이난 이 세상에서 공연히 의형(儀形)만을 생각하는구나. 가는 세월 흐르는 물 같아서 산으로 갈 날 기약이 있도다. 금양(衿陽)2222) 떠날 날이 하룻밤뿐인데 무정한 달빛은 천추(千秋)토록 비치리라.’ 하셨으니, 실제로 인정이 극도에 이른 말씀이었다. 숙종(肅宗)께서 위예(違豫)하신 지 십수년(十數年)이 되도록 왕이 친히 시탕(侍湯)하시면서 근심하고 애태우기를 시종(始終) 한결같이 하셨고, 일찍이 경덕궁(慶德宮)으로 이어(移御)하실 적에 왕께서 따라가 예절로서는 마땅히 지영(祇迎)2223) 하여야 하는데, 곤전(坤殿)께서 궁관(宮官)에게 이르시기를, ‘성후(聖候)의 편치 못하심이 다른 때보다 다르시니, 내가 먼저 들어가 면전(面前)에서 문후(問候)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시고, 곧 궐내(闕內)에 들어가 문후하시고 되돌아 나오시때 지영하시니, 창졸간의 주선(周旋)하심도 진실로 정례(倩禮)에 합당한지라 좌우(左右)에서 서로 돌아보며 흠송(欽頌)하였다. 온천(溫泉)으로 행행(行幸)하시게 되어서는 왕께서는 서울에 머물러 국사를 감독토록 하셨는데, 왕께서 강두(江頭)에

固辭, 王賜答慰諭, 勉之曰: “小心翼翼, 勤勤孜孜, 以副國人之望。” 時, 王上奉惠順大(妣) [妃], 思盡養志之孝, 景福堂在萬壽殿舊基, 王預爲之修營, 不煩有司, 易其扁曰景福殿, 及壬寅去喪, 奉大妃移御。 且欲一設宴上壽, 而母妃不欲, 則不敢強, 徐復乘間言, 屢而後得請, 以至供獻之物, 母妃念民力欲減, 則亦承順行之, 不久又開陳而復舊焉。 嘗推老老之恩, 民有高年者, 必惠養而且賜之爵, 麗祖墓, 儀物有缺, 則命守臣改之, 新羅王廟, 祀饗不虔, 則官其孫奉之, 祭鄭夢周之祠, 錄金宗瑞之後。 一日, 王下教于政院曰: “一自嗣位以後, 觀朝臣之所爲, 少無輔護國家之事。 言念時事, 不覺痛惋。” 仍命黜三司諸臣, 奪將臣之符, 遞相臣之職, 竝行竄逐。 俄而變書上, 告將相謀不軌, 王命有司, 悉按驗誅討。 嘗久旱, 親禱社壇, 却輦乘小輿, 烈日下曝, 侍臣迭諫, 世弟亦懇請, 終不聽, 徹夜露禱罷還。 仍坐殿錄囚, 猶不雨, 又禱于郊壇, 得雨後已。 翌年旱, 又親禱于社壇、農壇, 疏罪囚避正殿, 減膳撤樂, 至秋乃復。

	<p>나아가 지송(祗送)할 적에 우모(羽旄)2224) 가 이미 멀리 갔는데도 여전히 우 두커니 서서 바라보시며 그 초조하게 근심하는 빛이 밖으로 나타나니, 도성(都城)에서 보는 이들이 모두 차탄(嗟嘆)하였다. 경자년2225) 에 숙종의 병환이 크게 위중해지자 왕께서는 눈물을 흘리시고 황급해 하시며 종묘(宗廟)·사직(社稷)·산천(山川)에 빌도록 명하였으며, 승하(昇遐)하시게 되어 예관(禮官)이 왕위(王位)에 나아가실 절목(節目)을 올리자, 답하기를, ‘하늘이 무너지는 망극한 속에서 곧 이것을 보니 인자(人子)의 정리에 차마 이럴 수가 있는가?’ 하시다가 백료(百僚)들이 날마다 일제히 부르짖는지라 비로소 위로 자교(慈教)를 받을겠다고 억지로 허락을 하셨다. 왕께서 이미 어보(御寶)를 받아 즉위(即位)하셨으나 모든 정령(政令)과 시행 조치를 한결같이 대리 청정(代理聽政) 때와 같이 하시면서 더욱 언로(言路)를 열고 민은(民隱)2226) 을 구제하는 것을 급선무를 삼으셨다.</p> <p>신축년2227) 에 이르러 왕께서 사속(嗣續)이 없어 나라의 형세가 외롭고 위태하다고 여겨 우리 전하(殿下)2228) 를 책봉(冊封)하여 왕세제(王世弟)로 삼으셨으니, 이는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을 중하게 여긴 까닭이었다. 세제가 다섯 번 소를 올려 굳게 사양하매, 왕께서 비답을 내려 위유(慰諭)하고 또 권면하기를, ‘소심 익익(小心翼翼)2229) 하며 부지런히 하고 또 부지런히 하여 국인(國人)의 소망에 부응토록 하라.’고 하셨다. 당시 왕께서는 위로 혜순 대비(惠順大妃)2230) 를 받들어 모시면서 양지(養志)하는 효도를 다할 것을 생각하고, 경복당(景福堂)이 본래 만수전(萬壽殿) 옛터에 있었는데, 왕이 미리 이를 위해 손수 수영(修營)하시고 유사(有司)를 번거롭게 하지 않았으며 그 편호(扁號)를 바꾸어 경복전(景福殿)이라 하였다가 임인년2231) 상기(喪期)를 마치기에 미쳐서 대비(大妃)를 받들어 이 곳으로 이어(移御)하게 하였다. 또 한 번 잔치를 베풀어 상수(上壽)를 하려고 하셨는데, 모비(母妃)께서 하려 하</p>	<p>每謁太廟，雖雨雪不止，祧廟在後稍遠，而必步進。嘗於孝寧殿練祭改題主時，北向拱立，侍臣以時刻稍久，請俯伏不應，其敬謹如此。命立私親廟，定祝號、祭式。自王登極後，更來言追報事者，多涉越分，不惟不之採，輒斥遠之，及大臣禮官，裁酌而請之，乃從焉。王於爵賞，務愼惜，必遵舊例，罔及私昵。廟堂薦剗外，以三司擢承宣者，終王之世，亦不過若而人。王每以黨論爲深憂，凡章疏之涉於相排軋者，率以靜鎮爲務，略不示左右。嘗因早求言，教曰：“黨痼之禍，可勝言哉？甚至於一室之間，干戈相尋，噫嘻！情志之阻隔，胡至此極？卿等俱以世祿之臣，義同休戚，值此板蕩之秋，殫竭心力，夾輔王室，以慰祖宗陟降之靈，則乃祖乃先，必致悅豫，豈不竝受其福乎？”廷臣相與言曰：“承此教，而爲黨論，我卽匪人。”王性沈重寡言笑，接待臣隣，顏色溫然，而望之自然有敬畏之心。尤嚴於隄防，近昵有不佞者，痛誅，絕不少饒，宮禁肅如也。停良家女選充宮人之令，革貢物人科外責應之弊，諸路菑荒，則蠲常稅，西邑</p>
--	---	--

	<p>시지 않으시자 감히 억지로 하지 아니하셨고, 천천히 다시 틈을 타서 여러번 말한 뒤에 청하여 허락을 받았으며, 받들어 올리는 물품에 이르러서도 모비(母妃)께서 백성의 힘을 덜어 주고자 하시면 역시 <그 뜻에> 순응하여 받들어 행하였고, 오래지 않아 다시 개진(開陳)하여 전대로 회복하곤 하였다.</p> <p>일찍이 남의 늙은이를 내집 늙은이로 대접하는 은혜를 미루어 백성 중에 나 이 많은 이가 있으면 꼭 은혜를 베풀어 기르시고 또 벼슬도 주었으며, 고려 왕조(高麗王朝) 묘소(墓所)에 의물(儀物)이 결함이 있으면 수신(守臣)에게 개수(改修)하도록 명하였고, 신라 왕묘(新羅王廟)에 제향(祭享)이 경건(敬虔)하지 못하면 그 후손에게 벼슬을 주어 받들도록 하였으며, 정몽주(鄭夢周)의 사우(祠宇)에 치제(致祭)하고 김종서(金宗瑞)의 후손(後孫)을 채용(採用)하도록 하였다. 하루는 왕께서 승정원(承政院)에 하교(下敎)하시기를, ‘한번 왕위를 계승한 뒤로부터 조신(朝臣)들의 하는 바를 보건대, 조금도 나라를 돕고 보호하는 일이 없으니, 시사(時事)를 생각하매 나도 모르게 통완(痛惋)하여진다.’ 하시고, 곧 명령하여 삼사(三司)의 여러 신하들을 내치고 장신(將臣)의 부신(符信)을 빼앗으며 상신(相臣)의 직임을 바꾸고 아울러 찬축(竄逐)도 행하였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변서(變書)를 올려 장상(將相)이 불궤(不軌)2232) 를 꾀한다고 하므로 왕이 유사(有司)에 모두 안험(按驗)하여 토주(討誅)하도록 하라고 명하였다.</p> <p>오래도록 가뭄이 들자 친히 사직단(社稷壇)에 나아가 기도(祈禱)하실 적에는 연(輦)을 물리치고 소여(小輿)를 타시므로 뜨거운 햇별이 내려 쪼이는지라, 시신(侍臣)들이 번갈아 간하고 세제 역시 간곡히 청하였으나, 끝내 듣지 않으시고 밤이 새도록 노천(露天)에서 빌다가 과하고 돌아가셨으며, 인하여 정전(政殿)에 앉아서 녹수(錄囚)2233) 를 하였는데도 오히려 비가 오지 않자 다시</p>	<p>凋弊，則減田租，發常平之藏，俾糶都民，捐籍罪之產，以填畿賦。凡諸司、各營置差設舖，射利害民者，一切罷去。命卿宰、侍從、諸路使臣，薦進學行、才局、智略人，且以法久弊生，命輔臣商確，方欲大究軍民煩重之役，以盡其通變，而事未及就，甲辰七月感病，八月二十五日，大棄群臣于昌慶宮之別殿，在位四年，春秋三十有七。德壽無徵，神理謬錯。嗚呼痛哉！我殿下攀號莫及，與小大臣，議王功德，謹上諡曰：“德文翼武純仁宣孝。”廟號曰：“景宗。”陵曰：“懿陵。”以是年十二月十六日乙酉，葬王于楊州治南坐申向寅之原，卽新卜兆也。王妃沈氏，贈領議政青恩府院君浩之女，戊戌，以嬪薨，庚子追冊爲妃。繼妃魚氏，領敦寧府事咸原府院君有龜之女。嗚呼！王德宇渾厚，器度沈凝，在儲位三十一年，造詣已極高遠，而含晦章美，不見于外，處己應事，無大小無難易，渾然無聲跡之可尋，苟非深有得於涵養之工，何能及此？若不役志於外物，不嬰情於俗事，崇儉之德，懋實之政，在凡主固爲盛，於我大</p>
--	---	---

교단(郊壇)2234) 에 나아가 기도(祈禱)하고 비가 온 뒤에야 그만두었으며, 이듬해 또 가뭄이 들자 또 친히 사직단(社稷壇)과 선농단(先農壇)에 나아가 기도하셨고, 죄수를 가려서 줄이고 정전(正殿)을 피하였으며 찬선(饌膳)을 덜고 음악을 거두었다가 가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회복하였다. 매양 태묘(太廟)를 알현(謁見)하시고 아무리 비나 눈이 와도 그만두지 않았으며, 조묘(祧廟)2235) 가 뒤로 조금 먼 곳에 있었으나 반드시 걸어서 나아가셨다. 일찍이 효령전(孝寧殿)2236) 에서 연제(練祭)를 지내고 제주(題主)를 다시 할 적에 북쪽을 향하여 팔을 끼고 오래 서서 계시자 시신(侍臣)이 시각이 조금 오래 되었다 하여 부복(俯伏)하기를 청하였으나 응하지 않으셨으니, 그 경근(敬謹)하심이 이와 같았으며, 사친(私親)의 사당을 세우도록 명하고 축문(祝文)과 존호(尊號)와 제사의 의식(儀式)을 정하였다. 왕께서 등극(登極)하신 후로부터, 다시 와서 추급해 승보(崇報)하다는 일을 말하는 자가 많이 분수를 넘고 지나치면 오직 그것을 채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번번이 물리쳐서 멀리하셨다가, 대신(大臣)과 예관(禮官)이 재단하고 참작하여 청하면 그대로 따랐다. 왕께서 작상(爵賞)할 때에는 삼가고 아끼는 데 힘써서 반드시 구례(舊例)를 따르셨고 사사로이 친근한 자에게 미치는 바가 없었으며, 묘당(廟堂)에서 천거한 사람 이외에 삼사(三司)에서 승선(承宣)2237) 으로 발탁된 자는 왕의 세대를 마치도록 몇 사람에게 불과하였다.

왕께서 항상 당론(黨論)을 깊이 근심하시어 모든 소장(疏章)에 있어 서로 배알(排軋)2238) 하는 데 간섭된 것은 대체로 조용히 진정(鎮靜)시키는 데 힘써 조금도 좌우에게 보이지 않았고, 일찍이 가뭄으로 인하여 구언(求言)2239) 하는 하교(下教)에 이르기를, ‘붕당(朋黨)의 고질적인 화근(禍根)을 어찌 이룰 수 있겠는가? 심지어 한 집안 사이에도 방패와 창으로 서로 침해하니, 아! 인정(人情)과 지기(志氣)의 막힘이 어찌 이러한 극도에 이르렀단 말인가?

行，則尙其細者耳。 嗚呼！惟我肅宗大王，蚤夜憂勤，治定功成，躋一世於熙皞大猷之域者，殆五十年，此正平陂崇圮之會，而王以卓異之資，受精一之傳，善承謨烈，克紹志事，不言而教成，不動而化行，如風之偃草，若雨之潤物，庶幾乎媲美周成、康，軼漢文、景，而不弔于天，盛業未究，此一邦臣民所以抱窮天之哀，而懷沒世之思者也。 嗚呼！王深知我殿下聰明仁孝，有君人之度，早定位號，以係民望，入則相與問寢視膳，歡侍長樂，出則鳳輦在前，鶴駕在後，都人士女，填咽街巷，舉欣欣然有喜色而相告。 及至大漸之夕，自公卿百官，至輿僮下賤，莫不奔走悲號，如喪考妣，而其所恃而安然者，祇以元良豫建，神人有所托而然。 在昔宋臣贊其君仁厚之德，以爲社稷長遠，終必賴之。 今宗社有磐泰之安，寶祚綿億萬之期，使海隅含生，皆得以涵濡欣戴於仁化之初者，寔賴王光前垂後之盛烈洪休。 夫豈仁厚一德，所可倫擬也哉？ 嗚呼其盛矣！ 嗚呼其盛矣！

議政府左議政柳鳳輝撰，行副司果尹淳

	<p>경(卿) 등은 모두 대대로 녹(祿)을 받아 온 신하로서 의리상 휴척(休戚)2240)을 함께 해야 하는데, 이 판탕(板蕩)2241) 한 때를 만나 마음과 힘을 다하여 왕실(王室)을 협보(夾輔)해서 조종(祖宗)의 오르내리시는 영령(英靈)을 위로한다면 그대 할아버지 그대 선조가 반드시 기쁨을 이룰 것이니, 어찌 모두 그 복을 받지 않겠는가?’ 하셨는데, 조정(朝廷) 신하들이 서로 함께 이르기를, ‘이런 하교(下教)를 받들고도 당론을 일삼는다면 우리는 곧 사람이 아니다.’고 하였다.</p> <p>왕께서는 성품이 침중(沈重)하시고 말씀과 웃음이 적으셨으며, 신린(臣隣)을 접대(接待)할 때는 안색(顔色)이 온화하였는데도 바라보면 자연히 경외(敬畏)하는 마음이 있었다. 더욱이 제방(隄防)2242)에 엄중하시어 가깝게 모시는 자에 불령(不逞)한 사람이 있으면 깊이 주벌(誅伐)하고 절대로 조금도 용서하지 않으시니, 궁중[宮人]이 엄숙하였다. 양가(良家)의 여인(女人)을 뽑아서 궁인(宮人)에 충당하는 명령을 정지토록 하였고, 공물(貢物)을 바치는 사람에게 과외(科外)2243)의 책임을 지우는 폐단을 혁파하였으며, 제로(諸路)가 재해와 흉년이 들면 상세(常稅)를 덜어 주고, 서쪽 고을이 조폐(凋弊)하면 전조(田租)를 감해 주었으며, 상평창(常平倉)에 저장된 곡식을 풀어서 도성(都城)의 백성들에게 조곡(糶穀)으로 주었고, 적몰(籍沒)한 죄인의 재산을 덜어내어 기내(畿內)의 부세(賦稅)로 채웠으며, 모든 관사(官司)와 각영(各營)에서 차인(差人)을 두고 점포를 설치하고는 이익을 노려 백성을 해치는 것을 일체 혁파하여 제거하였다. 공경(公卿)과 재상(宰相)·시종(侍從), 그리고 제도(諸道)의 사신(使臣)에게 명하여 학행(學行)·재국(才局)·지략(智略)이 있는 사람을 천거하여 올리도록 하였으며, 또 법(法)이 오래 되면 폐단이 발생한다 하여 보신(輔臣)에게 그에 대한 확실한 상량(商量)을 명하여 바야흐로 군민(軍民)의 번중(煩重)한 부역을 크게 강구하여 모두 변통(變通)하려고 하셨는데, 일을 미처</p>	<p>書。</p>
--	---	-----------

성취하지 못한 채 갑진년(2244) 7월에 병에 감염되어 8월 25일에 창경궁(昌慶宮) 별전(別殿)에서 영원히 군신(群臣)을 버리시니, 재위(在位)하신 지 4년이며, 춘추(春秋)는 37세였다. 덕(德)이 있으면 수(壽)한다는 말도 징험할 수 없으니, 신(神)의 이치도 어긋남이 있나 보다.

아! 슬프도다. 우리 전하(殿下)께서 관(棺)을 부여잡고 부르짖으시나 미칠 길이 없어 대소 신료와 함께 왕의 공덕(功德)을 의논하고 삼가 시호(諡號)를 올리기를, ‘덕문 익무 순인 선효(德文翼武純仁宣孝)’라 하고, 묘호(廟號)를 ‘경종(景宗)’이라 하였으며, 능호(陵號)를 ‘의릉(懿陵)’이라 하였다. 그리고 이 해 12월 16일 을유(乙酉)에 왕을 양주(楊州) 치소(治所)의 남쪽 신좌(申坐)의 남쪽 신좌(申坐) 인향(寅向)의 언덕에 받들어 안장(安葬)하니, 곧 새로 고른 좋은택조(宅兆)였다.

왕비(王妃) 심씨(沈氏)는 증(贈) 영의정(領議政) 청은 부원군(淸恩府院君) 심호(沈浩)의 따님으로, 무술년(2245)에 빈(嬪)으로 흥서(薨逝)하여 경자년(庚子年) 2246)에 추책(追冊)하여 왕비(王妃)가 되었다. 계비(繼妃) 어씨(魚氏)는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함원 부원군(咸原府院君) 어유귀(魚有龜)의 따님이다. 아! 왕께서는 덕우(德宇)가 혼후(渾厚)하고 기도(器度)가 침응(沈凝)하여 저위(儲位)에 계신 지 31년에 조예(造詣)가 이미 지극히 높고 원대(遠大)하였다. 그러나 그 빛나고 아름다움을 감추고 밖에 드러내지 않았으며, 자기의 처신이나 사물에 대응하시는 데에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어렵고 쉬운 것이 모두 혼연(渾然)하여 소리와 자취를 찾을 수 없었으니, 진실로 함양(涵養)한 공부에서 깊이 얻은 것이 있지 않았다면 어찌 능히 여기에 이르렀겠는가? 심지(心志)가 외물(外物)에 빼앗기지 않고 성정(性情)이 속사(俗事)에 얽매이지 않으셨으니, 검소함을 숭상하는 덕과 실지에 힘쓰신 정치는 보통 임금에게 있어서

는 진실로 융성함이 되겠지만 우리 대행왕(大行王)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그것
썩은 미세(微細)한 것일 뿐이다.

아! 생각건대 우리 숙종 대왕(肅宗大王)께서는 밤낮으로 근심하고 근로하시어
정치를 안정시키고 공업(功業)을 이룩하여 온 세상을 빛나고 밝은 대유(大
猷)2247)의 영역(領域)에 오르게 하신 지 거의 50년이 되었으니, 이것은 바
로 평탄하면 가파름이 있고 높으면 반드시 무너지는 그런 시기인데도 왕께서
는 탁이(卓異)한 자질로 정일(精一)한 전통을 전수(傳受)하시어 계책(計策)과
공열(功烈)을 잘 받들고 지기(志氣)와 사업(事業)을 훌륭히 이루셨다.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교화(教化)가 이루어지고 움직이지 않아도 감화(感化)가 행하
여지기를 바람에 풀어 쓸어지듯이, 비가 만물을 윤택하게 해 주듯이 하여 거
의 주(周)나라의 성왕(成王)과 강왕(康王)에 짝할 만하고 한(漢)나라의 문제
(文帝)와 경제(景帝)를 능가하셨는데, 하늘이 돕지 않아 성업(盛業)을 다하지
못하셨으니, 이는 한 나라의 신민(臣民)이 하늘이 다하도록 슬픔을 안고 일생
을 마치도록 그리워할 바이다.

아! 슬프도다. 왕께서는 깊이 우리 전하(殿下)2248)의 총명(聰明)하고 인효
(仁孝)하심에 인군(人君)의 도량(度量)이 있음을 아시고 일찍이 위호(位號)를
정하여 백성들의 희망을 매어두게 하셨다. <궁중에> 들어가면 서로 함께 침
소(寢所)를 문안하고 어선(御膳)을 살피시며 장락궁(長樂宮)2249)을 환희 속
에 모셨고, 밖에 나가면 봉연(鳳輦)2250)은 앞에 있고 학가(鶴駕)2251)는
뒤에 있어 도성(都城) 사람과 사녀(士女)들이 거리와 마을을 가득히 메우고
지껄이며 흥흥연(欣欣然)2252)하게 즐거운 낮빛으로 서로 고하였다. 그리고
병세가 점점 더하여 위급한 밤에 이르러서는 공경(公卿)과 백관(百官)으로부
터 여대(輿臺)2253)와 하천(下賤)에 이르기까지 모두 달려와 슬피 울며 부르

	<p>짓기를 마치 고비(考妣)2254) 의 상(喪)과 같이 하였으며, 그래도 믿는 바 있어 안연(安然)하였던 것은 단지 원량(元良)2255) 을 미리 세움으로 해서 신인(神人)이 의탁할 바 있어 그랬던 것이다. 옛날 송(宋)나라의 한 신하가 그 임금의 인후(仁厚)한 덕(德)을 찬양(贊揚)하면서, 사직(社稷)이 장원(長遠)함을 마침내 꼭 그에게 의뢰(依賴)할 것이다 하더니, 지금 종사(宗社)가 반석과 태산같이 편안하고 보조(寶祚)2256) 가 억만 년(億萬年)을 뻗어갈 기약이 있어 해주(海隅)2257) 의 생민[생생]으로 하여금 모두 함유(涵濡)2258) 함을 얻어 즐거이 인화(仁化)의 시초를 떠받들게 한 것은 실로 왕께서 전대(前代)를 빛나게 하고 후세(後世)에 드리운 융성(隆盛)한 공열(功烈)과 큰 아름다움에 힘입은 것이었다. 대저 어찌 인후(仁厚)함이라는 한 가지 덕(德)으로만 비교할 바이겠는가? 아! 성대하시기도 아! 성대하시도다.”</p> <p>하였다. 의정부(議政府) 좌의정(左議政) 유봉휘(柳鳳輝)가 짓고, 행 부사과(行副司果) 윤순(尹淳)이 썼다.</p>	
<p>경종 대왕 행장(行狀)</p>	<p>행장(行狀)에 이르기를,</p> <p>“왕의 성은 이씨(李氏)요, 이름은 윤(昀)이며, 자는 휘서(輝瑞)이니, 숙종 대왕(肅宗大王)의 장자(長子)이며, 현종 대왕(顯宗大王)의 손자이다. 처음에 숙종께서 오래도록 후사(後嗣)가 없음을 근심하였는데, 후궁(後宮) 장씨(張氏)가 무진년(2327) 10월 28일에 왕을 탄생(誕生)하니, 숙종께서 매우 기뻐하시면서 여러 대신(大臣)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라의 근본이 정해지지 못해 인심(人心)이 매일 곳이 없었더니 오늘의 큰 계책이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하시고, 드디어 원자(元子)로 호(號)를 정하였으며, 3세 때에 왕세자(王世子)로 봉(封)하였다. 4세 때에 처음으로 주흥사(周興嗣)2328) 의 《천자문(千字文)》을 배웠는데 숙종께서 친히 서문(序文)을 지어 주며 힘쓰도록 하였고, 8</p>	<p>行狀曰：</p> <p>王姓李氏，諱【昀】字【輝瑞】，肅宗大王長子，顯宗大王之孫也。始肅宗久無嗣爲憂，後宮張氏，以戊辰十月二十八日，誕王，肅宗喜甚，語諸大臣：“國本未定，人心靡係，今日大計，不在他矣。”遂定號元子，三歲封王世子。四歲始學周興嗣《千字文》，肅宗親製序以勉。八歲行入學禮，周旋中節，講音洪亮，人士之園橋聽者，莫</p>

	<p>세에 입학례(入學禮)를 행하였는데 주선(周旋)함이 절도(節度)에 맞았으며 강(講)하는 음성이 크고 맑아서 교문(橋門)을 에워싸고 듣는 인사(人士)들이 서로 경하(慶賀)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p> <p>이 해에 관례(冠禮)를 행하고 인하여 태묘(太廟)를 배알(拜謁)하였으며, 두루 《효경(孝經)》·《소학(小學)》·《삼강행실(三綱行實)》 등의 여러 책을 강(講)하였는데, 강관(講官)과 사부(師傅)가 심화(心畫) 보기를 청하자 크게 ‘효제충신(孝悌忠信)·예의염치(禮義廉恥)·경이직내(敬以直內)·의이방외(義以方外)’의 열여섯 글자를 써서 보이니 필세(筆勢)가 뛰어나게 아름다워서 신료(臣僚)들이 서로 돌려가며 완상(翫賞)하였고, 이로부터 학문이 날로 더욱 진보(進步)되었으며, 서연(書筵)에 나아가 의란(疑難)의 질문은 사람들의 뜻밖의 것이 많았다. 일찍이 ‘이윤(伊尹)이 태갑(太甲)을 동(桐) 땅에 내쳤을 적에 끝내 허물을 고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였을 것인가?’를 물었고, 또 ‘사단(史丹)이 청포(靑蒲)에 엎드린 것이 왕씨(王氏)의 화(禍)에 기틀이 되었고 소광(疏廣)과 소수(疏受)는 기미를 보고 떠났는데, 이로 말미암아 논한다면, 사단이 소광과 소수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것인가?’ 하고 물었으며, 강관(講官)이 일찍이 ‘스스로 기약(期約)하심이 어떤 것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대답하시기를, ‘능히 할 수 있다고는 말하지 못하지만 곧 원하는 바는 「순(舜)임금은 어떤 사람이며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p> <p>인현 왕후(仁顯王后)를 섬기시매 자애(慈愛)와 효도(孝道)에 틈이 없었으며, 신사년(2329) 에 왕후의 병환이 위급하여지자 판서(判書) 민진후(閔鎭厚)가 초방(椒房) (2330) 의 가까운 친척으로서 입시(入侍)하였는데, 왕후께서 영결(永訣)하는 말씀이 있자 민진후는 엎드려 눈물을 흘렸으나 왕께서는 유독 슬픈 용태(容態)를 드러내지 않으시더니, 문 밖에 나오에 이르러서 갑자기 민진후</p>	<p>不相慶。是歲行冠禮，仍謁太廟，遍講《孝經》、《小學》、《三綱行實》諸書，講官、師傅，請見心畫，大書孝悌忠信、禮義廉恥，敬以直內、義以方外十六字以示，筆勢偉麗，爲臣僚所傳翫。自是學問日益進，臨筵問難，多出入意表。嘗問：“伊尹放太甲於桐，終不改過，則如之何？”又問：“史丹伏靑蒲，基王氏之禍，疏廣、疏受，見幾而作。由是論之，史丹不及廣、受？”講官嘗問自期如何？答曰：“非曰能之，乃所願則舜何人也，予何人也？”事仁顯王后，慈孝兩無間，辛巳，后疾瀕劇，判書閔鎭厚，以椒房之親入侍，后有永訣語。鎭厚伏而垂涕，王獨不露感容，及出戶，便持鎭厚手，大泣哀不能自止。及后昇遐，攀擗踰制，既啓柩，奉辭靈輿，久立路次，瞻望哀慟，迎虞遠郊，泊至宮，哭不絕聲，道路感歎。歲乙酉，爲肅宗卽位之三十一年，王三疏請稱慶曰：“於前(史) [史]，有可據之文，在今日，爲必行之禮。”肅宗答曰：“疏辭雖出人子至情，顧予何心，作此豫大之事？”時，肅宗以好學勤政，積勞成疾，思就閑頤養。是</p>
--	--	--

의 손을 잡고 크게 울며 슬픔을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였다. 왕후가 승하(昇遐)하던 날에 이르러서는 반호(攀號)2331) 하고 벽용(蹙踊)2332) 함이 예제(禮制)를 넘었고, 이미 계빈(啓殯)하고 발인(發靱)하자 영여(靈輦) 앞에서 애사(哀辭)를 받들고 오래도록 노차(路次)에 서서 바라보며 애통(哀痛)하였으며, 반우(返虞)할 때에는 멀리 교외(郊外)까지 나아가 맞이하러 궁중(宮中)에 이르도록 통곡하는 울음 소리가 끊어지지 않으니 도로에서 보고 모두 감탄(感歎)하였다.

을유년2333) 은 숙종(肅宗)께서 즉위하신 지 31년이 되는 해인데, 왕께서 세 번이나 상소(上疏)하여 칭경(稱慶)할 것을 청하시기를, ‘전의 역사(歷史)에 의거(依據)할 만한 문헌이 있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꼭 행하여야 할 예(禮)입니다.’ 하니, 숙종께서 답하시기를, ‘소장의 말이 비록 인자(人子)의 지극한 정에서 나왔으나, 다만 내가 무슨 마음으로 이런 안락을 즐기는 큰 일을 일으키겠는가?’ 하셨다. 당시에 숙종께서는 학문(學問)을 좋아하고 정사(政事)에 부지런하였던 탓으로 노고가 쌓여 병이 되었으므로 한가한 곳에 나아가 이양(頤養)2334) 할 것을 생각하였다. 이 해 10월에 장차 왕에게 전위(傳位)하려 하자, 왕께서 놀라고 황공해 하면서 눈물이 말을 따라 흘러내렸으며, 계속 글을 올려 굳게 사양을 하였으나 이미 거두어 들이는 명을 얻지 못하자 곧 세자궁(世子宮)의 요속(僚屬)들을 불러 유시(諭示)하기를, ‘밤새도록 울면서 청하였으나 끝내 성상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였으니, 지금은 오직 함문(閤門)에 엎드려 간절히 진달(陳達)함이 있을 뿐이다.’ 하시고 날씨가 춥고 많은 눈이 왔는데도 포장과 장막을 제거하라고 명하시니, 그제야 숙종께서 이르기를, ‘너의 정사(情事)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하시고, 마침내 앞서 내린 명령을 거두었다.

年十月，將傳位于王，王驚遑，淚隨言發，連章固辭，既不獲命，則召宮僚諭之曰：“達夜泣請，終不得回天，今惟有伏閣陳懇耳。”天寒大雪，令去帷幕，肅宗曰：“爾之情事，不可不念。”遂收前命。後十二年丁酉，肅宗疾彌甚，依國朝故事，命王聽政代理，王復懇辭。肅宗屢諭以替勞之意，始勉承命。群臣入朝稱賀，命停鼓吹。裁決庶務，咸當於理，然當事皆上稟而後行，示不敢專也。首春下諭八路勸農桑，百姓飢者賑贍之，流逋者資遣歸土，疾疫者給糧與藥，其有死者，令即收瘞。民有曉解醫方，能救人病，及捨私財瘞道殍者，許上聞施賞賚，其疫歿而只餘幼穉者，悉免其負逋。諸邑里有遭水火災，輒鑿庸停糶，又與之粟，俾奠厥居，燒死溺死壓死，及爲虎食死者，厚恤其家。嘗聞關西蝗，命降香虔祈。監司辭去，必引接，勉以嚴明黜陟，屢飭政曹，慎簡守令，寒暑遣近侍審獄，放輕囚。宮墻因雨頽圯，民有闌入者，法當死，以其無情，特原之。刑隸乘醉裂破書啓，該曹據邀截公文律，(蔽) [論] 以死，又特令比律

12년 뒤 정유년(2335)에 숙종께서 병환이 더욱 심해지자 국조(國朝)의 옛일에 의거하여 왕에게 청정(聽政)을 대리(代理)하도록 명하셨고, 왕께서 다시 간절히 사양하셨으나 숙종께서 여러번 노고(勞苦)를 대신하라는 뜻으로 교유(教諭)하시므로 비로소 힘써 명령(命令)을 받들었다. 그리고는 여러 신하들이 조정(朝廷)에 들어와 칭하(稱賀)하였더니 고취(鼓吹)를 정지하도록 명하였다. 여러 업무(業務)의 재결(裁決)이 모두 사리(事理)에 합당하였지만, 일을 당하면 모두 위에 품한 뒤에 행하시어 감히 마음대로 독단하지 않음을 보였다. 첫봄에 팔도[八路]에 유시(諭示)하여 농상(農桑)을 권장하셨고, 백성들 중에 굶주리는 자에게는 넉넉히 진대(賑貸)해 주도록 하였으며, 유폐(流逋)2336) 하는 자에게는 자산(資產)을 주어 향토(鄉土)에 돌려보내도록 하였다. 역질(疫疾)을 앓는 자에게는 양식과 약품을 지급해 주도록 하였고, 그 병으로 죽은 자가 있으면 곧 시신을 거두어 묻어 주도록 하였으며, 백성들 중에 의방(醫方)을 알아서 능히 사람을 병 중에서 구(救)해 주었거나 사재(私財)를 들여 도로에서 굶어 죽은 자의 시신을 묻어 준 사람이 있으면 위에 계문(啓聞)하여 시상(施賞)을 하도록 허락하였고, 그 역질에 휩쓸려 죽고 단지 어린이만 남은 자는 모두 그 부포(負逋)를 면제(免除)해 주도록 하였다. 그리고 모든 읍리(邑里)에 수재(水災)와 화재(火災)를 만난 사람이 있으면 매번 부역(庸)을 덜어주고 적미(糶米)2337)를 정지하면서 또 곡식을 주어서 안정(奠居)하도록 하였고, 소사(燒死)·익사(溺死)·압사(壓死)한 자 및 호식사(虎食死)한 자까지도 후하게 그 집을 구휼(救恤)하여 주도록 하였다. 그리고 일찍이 관서(關西) 지방에 황재(蝗災)가 있다는 보고를 듣고 향(香)을 내려 공경히 빌도록 명하였다.

감사(監司)가 하직하고 임지로 떠날 적이면 반드시 인접(引接)하고 그 출척(黜陟)을 엄정하고 분명히 하도록 권면하였으며, 여러번 정조(政曹)2338)에 경계하여 수령(守令)의 간택(簡擇)을 신중히 하도록 하였다. 춥거나 더우면 근

減死。 遇臣僚以禮， 待宗親以恩， 大臣沒則必設次而哭， 宗臣之喪， 亦官庀喪葬， 並給祿終三年。 嘗欲賜耆老宴， 有以元輔未葬爲言， 卽停之。 王弟延齡君田早卒， 王自製文以祭曰：“呼之不應， 漠漠無聲。 已矣於世， 空想(形儀) [儀形]。 居諸如流， 卽山有期。 衿陽一夕， 月色千秋。” 其詞情懇至如此。 每謁太廟， 雖值雨雪， 亦不廢， 祧廟在太廟後稍遠， 而必步進， 宮官、 師傅， 固請乘小輿， 不許曰：“肅敬之地， 其敢自便?” 肅宗違豫十數年， 王侍湯憂灼， 始終如一日， 嘗移御慶德宮， 王隨往， 坤殿繼至。 禮當在外祇迎， 語宮官曰：“聖候未寧， 異於他時， 我當先入候， 復出迎。” 倉卒周旋， 允合情禮。 及行幸溫泉， 留王監國， 王祇送于江頭， 羽旄旣遠， 猶佇立移晷， 焦憂形於色。 庚子夏， 肅宗疾大漸， 王涕泣皇皇， 命禱廟社、 山川， 逮奉諱， 禮官進嗣位節目， 答曰：“天崩罔極之中， 人子之情， 豈忍是?” 百僚連日齊籲， 答辭愈哀痛， 閱累日始勉許。 王既踐位， 凡諸政令， 一視代理時。 辛丑， 王以未有繼嗣， 國勢孤危， 冊我

시(近侍)를 보내어 옥에 갇힌 죄수(罪囚)를 살펴보게 하여 가벼운 죄수는 방면(放免)하도록 하였으며, 궁궐의 담장이 비에 허물어짐으로 인하여 백성이 마구 들어온 자가 있으면 법에 의하여 당연히 죽어야 하는데도 그 사사로운 뜻이 없다는 이유로 특별히 용서하도록 하였고, 형례(刑隸)2339)가 술김에 서계(書啓)를 짓고 파괴해서 해조(該曹)에서 요절 공문률(邀截公文律)에 의하여 사형(死刑)에 처하도록 한 것을 또한 특별히 비율(比律)하여 사형을 감해 주도록 명하였다.

신료(臣僚)를 예(禮)로써 대우하였고, 종친(宗親)은 은혜로써 대접하였으며, 대신(大臣)이 죽으면 반드시 위차(位次)를 마련하여 곡(哭)하였고, 종신(宗臣)의 상사(喪事)에도 역시 관가(官家)에서 상장(喪葬)을 갖추어 돕도록 하고 아울러 3년상(三年喪)을 마칠 때까지 녹(祿)을 지급해 주도록 하였다. 일찍이 기로연(耆老宴)을 베풀어 주려고 하는데 원보(元輔)2340)의 장사를 아직 지내지 않았다고 말하는 자가 있자 즉시 정지하였고, 왕제(王弟) 연령군(延齡君) 이현(李佃)이 일찍 죽으매 왕께서 손수 제문(祭文)을 지어 제사(祭祀)하기를, ‘불러도 대답이 없으니 막막하게 소리가 없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이 났는데 공연히 의형(儀形)만을 생각하네. 세월이 흐르는 물 같아 산으로 떠날 기약만 있구나. 금양(衿陽)으로 가는 것은 하룻밤뿐인데 저 달빛은 천추(千秋)토록 비치겠지’ 하였으니, 그 사어(詞語)의 정이 지극하고 간절함이 이와 같았다. 언제나 태묘(太廟)를 배알(拜謁)하는데 비록 비나 눈이 와도 폐하지 않았으며, 조묘(祧廟)는 태묘 뒤에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도 꼭 걸어서 나가셨고, 궁관(宮官)과 사부(師傅)들이 굳이 소여(小輿)를 타도록 청하여도 허락하지 않고 말하기를, ‘엄숙하고 공경히 해야 할 자리에 감히 스스로 편리함을 취하겠는가?’ 하였다. 숙종께서 위예(違豫)2341) 하신 십수 년 동안을 왕께서 시탕(侍湯)하시면서 근심하고 애태우기를 시종(給終) 하루같이 하셨으

殿下爲王世弟，世弟五上章固辭，王賜答慰諭曰：“小心翼翼，勤勤孜孜，以副國人之望。”王上奉惠順大妃，克盡孝養之方，營景福殿於萬壽殿舊基，壬寅去喪，奉大妃移御，仍欲設宴上壽，而母妃不欲，則亦不敢強，徐乘間爲言，屢以後始得請。至於供獻之物，母妃念民力欲裁減，亦承順行之，不久又開陳而復舊焉。推老老之恩，民有高年者，必惠養而賜之爵，麗祖墓缺儀物，命守臣改之，新羅王廟，祀典不備，官其孫以奉之。停良女選充宮人之令，革貢物人科外責應之弊，都民大悅。龍澤、天紀等，締結權貴子，陰圖不軌，事發，王命攸司按治，悉致於法。以畿內、湖西菑荒，特減常賦，以西邑凋弊，減三年田租。屬久旱，乘小輿，親禱于社壇，烈日下曝，侍臣迭諫，請用常乘，世弟亦趨進懇請，終不聽，徹夜露禱。既還，又坐前殿，竟夕錄囚，猶不雨，乃教于群臣曰：“旱氣孔酷，心如焚灼。其勿卜日，更禱郊壇。”群臣又迭諫，又不聽，得雨乃已。明年旱，復親詣社壇、農壇，再露禱，減膳撤樂，避正殿，至秋乃復。弘於聽

며, 일찍이 경덕궁(慶德宮)으로 이어(移御)하실 적에는 왕께서 따라가셨고 곤전(坤殿)이 뒤를 이어 이르렀다. 예절로 보아 마땅히 밖에서 공경히 맞아들여야 하는지라 궁관(宮官)에게 말하기를, ‘성후(聖候)의 편치 앎으심이 다른 때와 다르니, 내가 먼저 들어가 문후(問候)하고 다시 나와서 맞이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시니, 창졸간의 주선(周旋)도 진실로 모두 정례(情禮)에 합당하였다. 그리고 온천(溫泉)에 행행(行幸)하실 때에 이르러 왕이 도성(都城)에 머물러 국사(國事)를 감독하게 하였더니, 왕께서 강두(江頭)에 나아가 공경히 전송하시고 우모(羽旄)가 이미 멀어졌는데도 여전히 해 그림자가 옮겨지도록 우두커니 서서 계셨으니, 그 애태우고 근심하시는 빛이 얼굴에 나타났다.

경자년(2342) 여름에 숙종의 병환이 크게 위독하시자 왕께서는 체읍(涕泣)하시며 황황(皇皇)해 하시고 묘사(廟社)와 산천(山川)에 기도(祈禱)하도록 명하셨고, 휘(諱)2343) 하심을 받들게 되어서는 예관(禮官)이 사위(嗣位)의 절목(節目)을 올리자 답하기를, ‘하늘이 무너진 망극(岡極)한 속에서 인자(人子)의 정리에 어찌 차마 이를 하리오.’ 하셨으니, 백료(百僚)들이 계속 날마다 일제히 부르짖었으나 대답한 말씀은 더욱더 애통(哀痛)하셨으며, 여러날을 지내고 서야 비로소 억지로 허락하였다. 왕께서 이미 왕위에 오르시자 모든 여러 가지 정령(政令)을 대리(代理)하실 때와 한결같이 하였고, 신축년(2344)에 왕께서 후사(後嗣)를 이을 사람이 없어 국세(國勢)가 외롭고 위태롭다 하시어 우리 전하(殿下)를 책봉(冊封)하여 왕세제(王世弟)로 삼으시니, 세제께서 다섯 번이나 소장(疏章)을 올려 굳게 사양하며, 왕께서 비답을 내려 위유(慰諭)하기를, ‘조심하고 근신하며 부지런히 하고 부지런히 하여 국인(國人)의 소망에 부응토록 하라.’고 하셨다.

왕께서 위로는 혜순 대비(惠順大妃)를 받들어 효도로 봉양(奉養)하는 도리를

納, 凡有論奏, 無不開懷虛受, 識者頗恨其無良輔佐, 不能贊成至治也。然其不中理者, 亦未嘗苟循, 雖係尊奉私親, 宜爲常情所喜聞者, 苟越分限, 必斥絕不少假。痛革中外言利剝民之習, 諸司諸路, 設舖置差, 乘時留遷者, 一切罷去。崇儒重道, 褒尚賢士, 命卿宰、侍從、諸路使臣, 薦進人才, 又以法久弊生, 民役煩重, 令輔臣, 商確釐改, 而事未及就。王天性沈毅, 德容渾厚, 平居罕言笑, 人莫測其際。嚴於隄防, 近昵未嘗假以色辭, 服事左右者, 咸祗栗惴惴, 至其休沐日, 亦不敢橫於閭里, 於戚里貴近, 未嘗有私恩澤。粹然無嗜慾之累, 凡聲色游畋, 宮室花卉, 自古人君所不能灑脫者, 無毫髮役志。沖年遭罹不幸, 處變至難, 而泯然無聲跡之聞於中外, 人知其有聖德焉。然積年有疾, 寢以益痼, 知世弟英明, 嘗欲令代理國事, 因世弟懇辭而止。甲辰八月二十五日, 薨于昌慶宮之別殿, 春秋三十有七, 在位四年。自都中士民, 以至深山窮谷, 莫不奔走哀號, 如喪考妣。方寢疾, 臣僚入觀臥內, 見屏帳床褥, 皆樸素, 衣被無錦

	<p>홀륭히 다하였는데, 경복전(景福殿)을 만수전(萬壽殿) 옛터에 영조(營造)하시고 임인년(壬寅年)2345) 에 상(喪)이 끝나자 대비(大妃)를 받들어 이어(移御)하게 하였고, 바로 잔치를 베풀어 상수(上壽)를 하려고 하였으나 모비(母妃)께서 하고 싶어하지 않으시때 역시 감히 억지로 하지는 않았으며, 서서히 틈을 타서 말씀하기를 여러번 한 뒤에야 비로소 청원(請願)에 대하여 허락을 얻으셨고, 공헌(供獻)하는 물품에 이르러서도 모비께서 백성(百姓)의 재력(財力)을 염려하여 재감(裁減)하고자 하시므로 역시 순응하여 받들어 행하시고는 오래 되지 않아 다시 개진(開陳)하여 옛 그대로 회복하였다. 그리고 늙은이를 늙은이로 대접하는 은혜를 미루어서 백성에 나이 많은 자가 있으면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봉양하게 하고 벼슬을 주도록 하였으며, 고려 왕조(高麗王朝)의 묘소에 의물(儀物)이 결함(缺陷)이 있으면 수신(守臣)에게 명하여 개수(改修)하고 신라 왕묘(新羅王廟)에 사전(祀典)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있으면 그 후손(後孫)에게 벼슬을 주어 받들도록 하였다. 양녀(良女)를 뽑아 궁인(宮人)에 충당하는 영(令)을 정지하도록 하였고, 공물(貢物)을 바치는 자들에게 본래 부과된 이외의 물품을 독책하여 부응(副應)케 하는 폐단을 혁파(革罷)하니, 도성(都城)의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였다. 그리고 김용택(金龍澤)과 이천기(李天紀) 등의 권귀(權貴)한 집 아들과 체결(締結)하여 몰래 불괘(不軌)를 도모하다가 일이 발각되자, 왕께서는 유사(攸司)에게 명하여 조사해 다스려서 모두 법(法)에 맡기도록 하였다.</p> <p>기내(畿內)와 호서(湖西)에 재해와 흉년이 들었다 하여 특별히 상부(常賦)2346) 를 감해 주셨고, 서읍(西邑)이 조폐(凋弊)하였다 하여 3년 동안 전조(田租)2347) 를 감면(減免)해 주셨다. 오래도록 가뭄이 계속되자 소여(小輿)를 타고 친히 사직단(社稷壇)에 나아가 기도(祈禱)하였는데, 뜨거운 햇볕이 내려 쪼이는지라, 시신(侍臣)들이 번갈아 간하여 상승(常乘)2348) 을 쓰시도록</p>	<p>綺之屬，及喪，袞服無副，凡附於身者，多新製，其餘可知也。 以是年十二月十六日乙酉，葬王于楊州治南坐申向寅之原。 王妣沈氏，贈領議政青恩府院君浩女，早薨，繼妃魚氏，領敦寧府事咸原府院君有龜女。 嗚呼！王稟質既卓異，而受先王精一之傳，其所得於中者，既極其高明矣。 燕居而龍見，淵默而雷聲， 運至化於不言不動之際者，固非臣民所得以窺。 第以其著見於外者言之，尚務實之政，絕外誘之累，崇儉而從諫弗拂，恤民而留心革弊，是皆古昔帝王之盛節，而王即兼而有之，然此未足以爲大也。 惟其卽位初載，首決大策，以主鬯之重，託之介弟，不但志慮深遠，授受光明，卒之國家有盤石之安，社稷有靈長之休。 於是乎環東土數千里之內，含生之類，莫不陰受王之賜矣。 嗚呼！豈不休哉？</p> <p>吏曹參判兼大提學李德壽製進。</p> <p>景宗德文翼武純仁宣孝大王實錄卷之十五終</p>
--	--	---

청하고 세제(世弟) 역시 달려가 간곡히 청하였으나 끝내 듣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노천(露天) 아래에서 빌었으며, 이미 돌아오셔서서는 또 전전(前殿)에 앉아 저녁 때가 다 되도록 녹수(錄囚)를 하셨으며, 그래도 여전히 비가 오지 않자 곧 또 여러 신하들에게 하교(下敎)하시기를, ‘가뭄의 기운이 매우 심하니 이 마음이 타고 지지는 것 같다. 날을 가리지 말고 다시 교단(郊壇)에 나아가 비를 빌도록 하라.’ 하시므로, 여러 신하들이 또 번갈아가며 간하였으나 듣지 않으시고 비가 내린 뒤에야 그만두셨다. 이듬해 가뭄에도 다시 친히 사직단(社稷壇)과 선농단(先農壇)에 나아가 재차 노천 아래서 비를 빌었으며, 어선(御膳)을 감하고 풍악을 정지하게 하였으며, 정전(正殿)을 피하였다가 가을에 이르러서야 회복하였다.

받아들이는 아량이 넓으시어 무릇 논주(論奏)가 있으면 가슴을 열고 마음을 비워 받아들이지 않음이 없었는지라, 식자(識者)는 훌륭한 보좌(輔佐)가 없어 이상적인 정치를 도와 이루지 못하였음을 매우 한스럽게 여겼다. 그러나 사리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역시 일찍이 구차스럽게 따르지 않았으니, 비록 사친(私親)을 높이 받드는 데 관계되어 사람의 상정(常情)으로서는 의당 기꺼이 들을 일인데도 본래 분수와 한계를 넘으면 반드시 배척해 끊고 조금도 용서하지 않았으며, 중앙과 지방에서 이익됨을 말하면서 백성에게 가림 주구(苛斂誅求)2349) 하는 풍습을 통쾌히 개혁(改革)하셨고, 여러 관사(官司)나 제도[諸路]에서 가계를 설치하고 차인(差人)을 두어 기회를 틈타 무천(貿遷)2350) 하는 것도 일체 혁파(革罷)하여 제거하였다. 그리고 유도(儒道)를 숭상하고 중하게 여겨 훌륭한 선비를 포상(褒尙)하였으며, 공경(公卿)·재상(宰相)·시종(侍從)과 제로(諸路)의 사신(使臣)에게 명하여 인재(人才)를 천거해 올리도록 하였고, 또 법(法)이 오래 되어 폐단이 생겼거나 백성들의 역사(役事)가 번거롭고 과중한 것은 보필하는 신하로 하여금 여러 면으로 참작하여 헤아려서 고

	<p>치고 바로잡도록 하셨는데, 이 일은 아쉽게도 미처 성취하지 못하였다.</p> <p>왕께서는 천성(天性)이 침중(沈重) 홍의(弘毅)하고 덕용(德容)이 혼후(渾厚)하였으며, 평상시에 말씀과 웃음이 적어서 사람들이 그 변제(邊際)를 측량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제방(隄防)에 엄격하시어 가까이서 모시는 이들에게도 일찍이 안색과 언사에 용서함이 없어서 좌우에서 복종하여 섬기는 자들도 모두 공경하여 겁내며 두려워하였고, 그 휴목(休沐)2351) 하는 날에 이르러서도 역시 감히 여리(閭里)를 횡행(橫行)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척리(戚里)와 귀근(貴近)에게도 일찍이 사사로운 은택(恩澤)이 있지 않았고, 순수하여 기욕(嗜慾)의 누(累)가 없었다. 그리고 모든 성색(聲色)과 유전(游畋)과 궁실(宮室)과 화훼(花卉) 등 예로부터 인군(人君)이 깨끗이 벗어나지 못했던 것까지도 왕께서는 털끝만큼도 뜻을 빼앗긴 적이 없었다. 어린 나이에 불행함을 만나 변고에 대처하기가 지극히 어려웠는데도 잠잠하게 그 소리와 자취가 중외(中外)에 들림이 없었는지라 사람들이 성덕(聖德)이 있음을 알았다. 그러나 여러해 쌓인 병환이 있어 갈수록 고질로 굳어지자 세제(世弟)의 영명(英明)함을 아시고 일찍이 국사(國事)를 대리(代理)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세제의 간곡한 사양으로 인하여 중지되었다.</p> <p>갑진년2352) 8월 25일에 창경궁(昌慶宮) 별전(別殿)에서 홍서(薨逝)하시니, 춘추(春秋)가 37세였으며, 재위(在位) 4년이였다. 도성(都城)의 사민(士民)으로부터 깊은 산 궁벽한 골짜기에 이르기까지 모두 달려와 슬피 부르짖으며 고비(考妃)의 상사(喪事)와 같이 여기지 않는 자가 없었다. 바야흐로 병환중에 계실 때 신료(臣僚)들이 침소[臥內]에 들어가 보니, 병장(屏帳)2353) 과 상욕(床褥)2354) 이 모두 질박하고 검소하며 옷과 이불에 비단불이가 없는 것을 보았으며, 상사가 남에 이르러 곤복(袞服)의 여별이 없었고 여러 가지 몸에</p>	
--	--	--

부착한 것이 새로 지은 것이 많았으니, 그 나머지는 이를 미루어 알 만하였다. 이 해 12월 16일 을유(乙酉)에 대행왕(大行王)을 양주(楊州) 고을 남쪽 신좌(申坐) 인향(寅向)의 언덕에 안장(安葬)을 하였다. 왕비(王妃) 심씨(沈氏)는 증(贈) 영의정(領議政) 청은 부원군(淸恩府院君) 심호(沈浩)의 따님으로 일찍 홍서(薨逝)하였고, 계비(繼妃) 어씨(魚氏)는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함원 부원군(咸原府院君) 어유귀(魚有龜)의 따님이다.

아! 왕께서는 품질(稟質)이 이미 탁이(卓異)하신데다가 선왕(先王)의 정일(精一)하신 전교(傳敎)를 받아 중심에 얻은 바가 이미 극도로 고명(高明)하였다. 사사로이 기거함에도 용(龍)이 나타난 것 같고, 깊이 침묵하셔도 우레 소리가 나는 듯 하였으며,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가운데 지극한 감화를 운용하시는 것은 진실로 신민(臣民)이 엿보아 알 수 있는 바가 아니었다. 다만 밖에 나타난 것을 가지고 말한다면 실제에 힘쓰는 정치를 숭상하였고, 바깥 사물의 유혹을 단절하였으며, 검소한 것을 숭상하여 간함을 따르고 어기지 않았으며, 백성을 불쌍히 여겨 폐단을 혁파(革罷)하는 데 마음을 두셨으니, 이는 모두 옛날 제왕(帝王)의 성대한 절도였는데, 왕께서는 곧 겸하여 가지셨던 것이다. 그러나 이를 큰 것으로 여겨 만족하지 않으셨으며, 오직 그 즉위하신 첫 해에 먼저 큰 계책을 결정하여 주창(主鬻)의 중대한 일을 개제(介弟)2355)에게 부탁하셨으니, 이는 단지 그 뜻과 생각이 깊고 원대할 뿐만 아니라, 주고 받은 바의 광명(光明)함이 마침내 국가(國家)에 반석(盤石)과 같이 편안함이 있게 하였고, 사직(社稷)은 영장(靈長)2356) 하는 아름다움이 있게 하였다. 이에 온 동토(東土) 수천 리 안에 삶을 누리는 유(類)가 음(陰)으로 왕께서 주신 은혜를 받지 않은 자가 없다. 아! 어찌 아름답지 않겠는가?”

하였다. 이조 판서 겸 대제학(吏曹判書 兼大提學) 이덕수(李德壽)가 지어 바쳤다.

3. 영 조 실 록 <1> 기 사 자 료 집

영조실록 <1> 기사자료집 : 영조 즉위년 ~ 영조 16년 12월

출처	내용	원문
<p>영조 1권, 즉위년 (1724 갑진 / 청 옹정 (雍正) 2년) 9월 11일 (신해) 2번째기사</p>	<p>삼사(三司)에서 청대(請對)하였다. 처음에 성복(成服)한 후 5일이 되던 날 조정에서 바야흐로 복선(復膳)의 일로써 빈청(賓廳)에 모여 진계(陳啓)했는데, 대사헌(大司憲) 이명언(李明彦), 장령(掌令) 유시모(柳時模), 지평(持平) 이현보(李玄輔)·박윤동(朴胤東), 헌납(獻納) 이정걸(李廷傑) 등이 갑자기 역비(逆婢)를 조사하기를 청하여 함께(合啓)했다. 그러나 구례(舊例)에 의거하여 공제(公除)⁴⁵ 전에는 우선 정지하였는데, 물의(物議)가 이를 그르케 여기므로 인피(引避)하고 체직(遞職)시켜 줄 것을 계청(啓請)하니, 사임하지 말라고 비답(批答)하였으며, 옥당(玉堂)에서는 차자를 올려 출사(出仕)시킬 것을 청하였다. 이 명언은 이로 인하여 여러 대관(臺官)을 이끌고 잇따라 계청하여 그치지 아니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사헌부(司憲府)·사간원(司諫院)·옥당(玉堂)에서 서로 잇따라 면대(面對)를 요구했다. 이명언(李明彦)이 말하기를, “성상(聖上)께서 처음 보위(寶位)에 오르셨으니, 그 사정이 선왕(先王)께서 임시로 용서해 주던 것과는 도리(道理)에 있어서 전연 같지가 않습니다. 이 궁비(宮婢)는 선조(先朝)에 있어서는 난역(亂逆)한 적(賊)이 되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임금의 원수가 되니, 신(臣) 등이 반드시 토죄(討罪)할 뿐만 아니라, 또한 전하(殿下)께서 반드시 보복해야 할 일입니다. 청컨대, 독약을 시용(試用)한 궁비(宮婢)를 국청(鞠廳)에 회부시켜 흔쾌하게 나라의 법을 바로잡게 하소</p>	<p>원문</p> <p>三司請對。初，成服後五日，朝廷方以復膳事，會賓廳陳啓，而大司憲李明彦、掌令柳時模、持平李玄輔·朴胤東、獻納李廷傑等，忽以逆婢請查之合啓，依舊例公除前姑停，而物議非之，引避請遞，批勿辭，玉堂劄請出仕。明彦由是率諸臺，連啓不已，至是，憲府、諫院、玉堂相率求對。明彦曰：“聖上，初登寶位，與先朝之姑且涵貸，道理迥然不侔。此宮婢在先朝，則爲亂逆之賊，在今日則爲君親之讎，非但臣等之所必討，抑亦殿下之所必復。請查付行藥宮婢於鞠廳，夫正邦刑。”上曰：“先朝靳允，非姑涵貸，予答勿煩，亦非忘君親之讎也。”明彦曰：“逆婢在先朝，則事關聖躬，卽今，則殿下父兄之讎，不共戴天者也。大行</p>

	<p>서.”</p> <p>하니, 임금의 말하기를,</p> <p>“선조(先朝)에서 윤택하지 않으신 것은 우선 임시로 용서해 준 것이 아니고, 내가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대답한 것도 임금의 원수를 잊기 위한 것이 아니다.”</p> <p>하였다. 이 명언이 말하기를,</p> <p>“역비(逆婢)가 선왕에게 있어서는 성궁(聖躬)에 관계된 일이었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전하의 부형(父兄)의 원수로서 같은 하늘 밑에서 함께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대행왕(大行王) 때에 처음에는 출부(出付)하도록 허락하였다가 나중에는 ‘사실이 없다’느니 ‘마침내 없었다’느니 하는 하교(下敎)가 있었으므로, 중외(中外)에서 의혹스럽게 여겼던 것입니다. 역비의 정절(情節)은 적(賊)의 조사(招辭)와 약원(藥院)의 일기(日記)에서 죄다 드러났으므로 조사해 낼 길이 있습니다. 성상께서 그 의심이 가는 사람을 생각하셔서 유사(有司)에 회부시켜 한 차례 엄중하게 핵실(覈實)하게 하면 다시 유감이 없겠습니다.”</p> <p>하니, 임금의 말하기를,</p> <p>“선왕께서 일찍이 하교(下敎)하시기를, ‘무릇 적의 조사는 죽을 고비에서 살기를 구하는 일이 없지도 않으며, 혹은 터무니없는 말도 없지 않은 것이다. 어선(御膳)을 관장하는 궁인(宮人)이 그 얼마인지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터무니없는 말로써 조사해 낼 수 있겠는가?’ 하셨는데, 정녕하신 그 하교가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 임금의 원수는 비록 여대(輿臺)46) 들이라도 반드시 토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내가 비록 현명하지 못하나 어찌 이에 생각이 미치지 않겠는가? 선조(先朝)에서 조사하지 않은 것을 비록 예사람처럼 현명한 자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실정을 알아 내겠는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다.”</p> <p>하였다. 부수찬(副修撰) 이거원(李巨源)이 말하기를,</p>	<p>朝，初許出付，後有實無、終無之敎，此中外所以疑惑者也。逆婢情節，畢露於賊招及藥院日記，查出有路。自上思量其中疑似人，查付有司，一經嚴覈，則更無憾矣。”上曰：“先朝，嘗敎以凡賊招，或不無死中求生，或不無胡辭亂說。掌膳宮人，不知其幾人，豈可以胡辭亂說查出乎？丁寧此敎，至今在耳矣。君親之讎，雖與僿，亦知必討。予雖不明，豈不念及於此乎？先朝之所未查者，雖古人之明，何以斯得也？每聞此言，心焉如割矣。”副修撰李巨源曰：“行藥一節，自非胡辭亂說，脈絡蹊逕分明矣。”明彥曰：“此事，卽殿下不共戴天之讎，而連日合啓，只下勿煩二字之批，外議皆以爲未安矣。”上曰：“先朝答批，或曰無之，或曰實無。大哉王言，豈可以有爲無乎？周末文勝，我國亦然。今以先朝曰無之敎，卽日停啓，則豈不爲質耶？此事予不忍復提，今乃盡言之。三司若又爭執，中外將以予爲如何也？卿等歷事兩朝，而誠意猶未相孚，予甚愧焉。”胤東曰：“姓金者難查，則伊日掌膳宮人，一併查付宜矣。”胤東語</p>
--	--	--

	<p>“독약을 쓴 한 가지 일은 터무니없는 말이 아니고, 사건의 맥락과 지름길이 분명합니다.”</p> <p>하고, 이명언이 말하기를,</p> <p>“이 일은 곧 전하께서 같은 하늘 밑에서 함께 살 수 없는 원수인 것인데, 연일 함께(合啓)해도 다만, ‘번거롭히지 말라[勿煩]’는 두 자의 비답만 내리시니, 외의(外議)가 모두 미안하게 여깁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선조(先朝) 때의 비답에 혹은 ‘그런 일이 없다.’ 하고, 혹은 ‘실상이 없다.’라고 하였는데, 거룩하신 임금의 말씀이 어찌 있는 것을 가지고 없다고 하였겠는가? 주(周)나라 말엽에 질(質)보다 문(文)이 앞섰었는데, 우리 나라도 그렇다. 지금 선왕께서,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신 하교를 가지고 즉시 정계(停啓)한다면 어찌 질(質)이 되지 않겠는가? 이 일은 내가 차마 다시 제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지금 죄다 말하였다. 그런데 삼사(三司)에서 만약 또 다투어 고집을 한다면 중외(中外)에서 장차 나를 어떻게 여기겠는가? 경(卿) 등은 양조(兩朝)를 두루 섬겼으면서도 성의(誠意)가 서로 미덥지 않게 여기고 있으니, 내가 매우 부끄럽게 여긴다.”</p> <p>하자, 박윤동(朴胤東)이 말하기를,</p> <p>“김씨(金氏)의 성(姓)을 가진 자를 조사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지난날 어선(御膳)을 맡았던 궁인을 일제히 조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p> <p>하였다. 박윤동이 말하는 중에 ‘우리들[吾輩]’이라고 일컬었는데, 승지(承旨) 유수(柳綬)가 망발(妄發)했다고 배척하니, 박윤동이 마침내 인피(引避)하였으나, 사퇴(辭退)하지 말라고 비답하였다. 이거원(李巨源)이 말하기를,</p> <p>“옛날에 길분(吉玢)47은 13세의 아이로서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지금 역비(逆婢)는 오히려 편안하게 있는데, 전하께서는,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비답하시니, 신은 매우 의혹스럽게 여깁니다.”</p>	<p>次，稱吾輩，承旨柳綬斥以妄發，胤東遂引避，批勿辭。巨源曰：“吉玢，以十三歲兒，能復父讎。今逆婢尙偃息，而殿下以勿煩答之，臣竊惑焉。”上曰：“吉玢，有可以依據者，故擊登聞鼓，以復其讎，今無依據，將何以出付乎？”巨源曰：“此事何可謂之文具乎？文具之教，失言矣。”明彥曰：“巨源聽瑩誤達矣。”上曰：“俄者辭不達意，無惑乎聽瑩矣。”明彥曰：“殿下嗣服初政，中外拭目。昨以廓言路之意，賞承宣，而今日三司請對移時，始召見，聞者必以爲訑訑也。”上曰：“適值晝茶禮，又有兩殿問安，故自致差晚，方以爲歉。然陳戒之言，可不留意？”其後，上謂柳綬曰：“曾在先朝，逆婢但知其姓而無其名，故有問名之教。若果有之，先朝必出付矣。先朝以元無爲教，則死生有無，初非可論。既明知其元無，而尙在致疑中乎？先朝元無之教，今若置之可疑之地，則道理不是矣。臺臣既停啓，其人死生有無，今何可更論耶？”先是，申致雲等承望金一鏡、朴弼夢風旨，伏閣論金姓宮人事。大王大妃嘗謂淑明公主子沈廷輔</p>
--	---	---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길분은 그 때 근거할 만한 것이 있었으므로 등문고(登聞鼓)를 쳐서 그 원수를 갚았으나, 지금은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출부(出付)하겠는가?” 하였다. 이거원이 말하기를, “이 일을 어떻게 ‘문구(文具)’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문구라고 하신 하교는 실언(失言)하신 것입니다.” 하였는데, 이명언이 말하기를, “이거원이 귀가 어두워서 잘못 들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조금 전에 한 말은 의사가 전달되지 아니하였으니, 잘못 들은 것을 이상하게 여길 것이 없다.” 하였다. 이명언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사복(嗣服)하시고 첫 정사를 중외(中外)에서 눈을 씻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언로(言路)를 넓히시려는 뜻으로 승지(承旨)에게 상을 주셨는데, 오늘은 삼사(三司)에서 청대(請對)하고서 한참 후에야 비로소 불러보셨으니, 그 일을 들은 이는 반드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마침 주다례(晝茶禮)48) 가 있었고, 또 양전(兩殿)께 문안을 드린 까닭에 조금 늦었는데, 바야흐로 겸연(歉然)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진계(陳戒)한 말은 어찌 유념(留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그 후에 임금이 유수(柳綬)에게 말하기를, “일찍이 선왕조(先王朝) 때에 역비(逆婢)에 대해서는 다만 그 성(姓)만을 알고 그 이름은 없었다. 그래서 이름을 물어 보는 하교가 있었는데, 만약 과연 이름이 있었다면 선왕께서 반드시 조처하셨을 것이다. 선왕께서, ‘본래 그런 일</p>	<p>妻李氏曰：“宮中苟有可疑者，主上豈不許之，予亦豈不明查出付，而宮中實無其人，外廷猶持之不已，何也？”李氏即李眞儒之姑也。眞儒聞之，不復主張是論。明彥即眞儒血黨也。未必不聞此言，而今乃佯若不知，又復張大其事，公除之前，弁髦古例，或啓或對，以爲血戰之計，識者憂之。</p>
--	--	---

	<p>이 없었다.’고 하교(下敎)하셨으니, 사생(死生)과 유무(有無)에 대해서는 애당초 거론할 것이 못된다. 이미 본래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서도 아직까지 의심을 품고 있어야 하겠는가? 선왕께서 본래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한 것을 가지고 지금 만약에 의심을 그대로 품고 있다면, 이는 도리상 옳지 못하다. 대신(臺臣)들도 이미 정계(停啓)하였는데, 그 사람의 사생(死生)과 유무(有無)를 지금 와서 어찌 다시 논할 수 있겠는가?”</p> <p>하였다. 이보다 앞서 신치운(申致雲) 등이 김일경(金一鏡)·박필몽(朴弼夢)의 풍지(風旨)에 생각이 미쳐 복합(伏閣)49) 하여 김씨 성(姓)을 가진 궁인(宮人)의 일을 거론한 적이 있었다. 대왕 대비(大王大妃)가 일찍이 숙명 공주(淑明公主)의 아들 심정보(沈廷輔)의 아내인 이씨(李氏)에게 말하기를, “궁중(宮中)에 진실로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주상(主上)이 어찌 윤택하지 아니하였겠으며, 나도 어찌 분명하게 조사해서 출부하지 아니하였겠는가? 그러나 궁중에 진실로 그런 사람이 없는데 외정(外廷)에서 고집하여 그치지 않고 있으니, 무엇때문인가?”</p> <p>하였다. 이씨는 곧 이진유(李眞儒)의 고모이므로, 이진유가 그 말을 듣고는 다시 그 논의를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이명언(李明彦)은 곧 이진유의 혈당(血黨)이므로 그 말을 듣지 않았을 리가 없을 것인데, 지금 거짓으로 모르는 척 하며 또다시 그 일을 확대시켜 공제(公除) 전에 옛 관례를 무시하고 혹은 아뢰며, 혹은 대답하면서 혈전(血戰)의 계책을 삼고 있으니, 식자(識者)가 이를 걱정하였다.</p>	
<p>영조 1권, 즉위년 (1724 갑진 / 청 옹정 (雍正) 2년) 9월 24일 (갑자) 6번째기사</p>	<p>대사간(大司諫) 이명의(李明誼)가 상소하기를, “성상의 하유(下諭)가 정녕하여 심복(心腹)을 모두 털어놓았으므로 신하들이 환히 깨닫고 큰 의논을 즉시 중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 흉계(凶計)를 도모한 것중에 역비(逆婢)도 그 중에 끼었는데, 선왕(先王)의 비지(批旨) 중</p>	<p>大司諫李明誼上疏言：上諭丁寧，悉敷心腹，群下曉然，大論卽停。然三手凶圖，逆婢居一，而先朝批旨中，實無之敎，似指金姓宮人，</p>

	<p>에, ‘진실로 없었다.’라고 한 하교(下敎)는 김씨(金氏) 성을 가진 궁인(宮人)을 가리킨 듯하며, 어선(御膳)을 관장하는 사람도 아울러 없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무릇 어선은 반드시 주장하여 감독하는 자가 있고, 주장하여 감독하는 자는 각각 직속하는 날이 있으니, 굳이 누구누구를 막론하고 그 날짜에 누가 직속하였다는 것은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찍이 이것을 가지고 쟁집(爭執)하지 못하고 혼미한 상태에 두고서 좌우(左右)의 가까운 곳에 숨어 있게 하였으니, 벌이 소매 속에 있으면 반드시 사람을 쏘는 것처럼 요사스럽고 간악한 성품을 만에 하나라도 다시 부린다면 종사(宗社)의 근심이 사실상 제거되지 않을 것입니다. 신의 생각에 그때에 어선을 관장했던 자들은 다소(多少)를 불구하고 한결같이 물리쳐 내쫓아 화근(禍根)을 없애야 할 것으로 여깁니다.”</p> <p>하니, 비답하기를, “들으니, 가슴이 서늘해진다. 굳이 그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없는데, 또 어찌 이렇게까지 지나친 염려를 하는가?”</p> <p>하였다.</p>	<p>非謂掌膳人之竝無也。 夫君膳必有主監，主監各有直日，勿論某某，其日之有其人，從可推知，而曾不能以此爭執，一任混跡，潛處於肘腋。 蜂蠆在袖，毒必螫人。 妖惡之性，萬一復售，宗社之憂，實有未艾。 臣謂其時掌膳者，不拘多少，一併放黜，以除禍根也。</p> <p>批曰：“聞之心寒。 不必提起，又何過慮至此之極乎？”</p>
<p>영조 1권, 즉위년 (1724 갑진 / 청 옹정 (雍正) 2년) 9월 24일 (갑자) 7번째기사</p>	<p>대사헌(大司憲) 이명언(李明彦)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중략) 나라에 3년 비축이 없으면 나라는 나라 구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 지부(地部)70)의 세입(歲入)이 지출하는 데 부족하여 전후로 빌린 것이 쌀 4만 5천 석, 돈 7만 60냥, 무명 70동, 은 3천 냥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산(因山)의 경비와 칙사(勅使)를 접대하는 수용(需用)에 대해서 유사(有司)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른 채 오직 빌리기만을 청하고 있으니, 마치 추위에 떠는 걸인의 가계(家計)와 같습니다. 하관(夏官)71)의 봉부동목(封不動木)은 1천 동이 차지 아니하며, 양군색(兩軍色)에서 일상적으로 쓰이는 수는 무명 15동, 돈 2천 냥인데, 국휼(國恤) 후에 내수사(內需司)에서 계하(啓下)하여 이송(移</p>	<p>大司憲李明彦上疏略曰 (중략) 國無三年之蓄，國不爲國。 況今地部歲入，不足爲出，前後丐貸，至米四萬五千石、錢七萬六十兩、木七十同、銀三千兩，而因山之費、支勅之需，有司罔知所措，惟以乞貸爲請，有若寒乞兒家計。 夏官封不動木，不滿千同，兩軍色行用數，只木十五同、錢二千兩，而國恤後，內司啓下移送木三十同，錢三</p>

送)하게 한 무명이 30동, 돈이 3천 냥이었으나 아직 준송(準送)하지 못하였습니다. 선혜청(宣惠廳)은 남아 있는 쌀이 12만 9천 5백 석이고, 전미(田米) 1천 3백 석, 무명이 1천 7백 70동, 돈이 2만 3천 3백 냥입니다. 그런데 국홀에 지출(支出)할 수효가 쌀 5, 6천 석, 은 1천여 냥, 무명 40동, 돈 2만 수천 냥입니다. 그러니 옛사람이 이른바 애통하다는 것은 바로 헐후(歇後)하다는 말입니다.

구시(救時)하는 대책은 다만 용도를 조절하는 데 있고, 용도를 조절하는 방법은 또한 검소함을 숭상하는 데에 있습니다. 전하께서 만약 선왕(先王)의 검소한 뜻을 본받아 산릉(山陵)의 모든 제전(祭奠)에 힘써 간략하게 하신다면, 아마도 《주례(周禮)》의 ‘간소하게 한다’는 예의 뜻에 거의 부합할 것입니다. 삼가 듣건대, 등극(登極)하신 후에 동궁(東宮)에 속한 기인 공물(其人貢物)을 특별으로 감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누군들 성덕(盛德)을 우러러 보지 않겠습니까? 다만 명성 왕후(明聖王后)73) · 장렬 왕후(莊烈王后)74) 양전(兩殿)의 궁인(宮人)으로 각전(各殿)에 이속(移屬)시킨 자가 함께 2백여 명인데, 음식·의복·멜감 등은 그대로 두고 감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니, 원컨대, 자성(慈聖)에게 아뢰어 속히 처분을 내리도록 하소서. (중략)

千兩，時未準送。宣惠廳則留在米十二萬九千五百石、田米一千三百石、木一千七百七十同、錢二萬三千三百兩，而國恤應下數，至米五六千石、銀千餘兩、木四十同、錢二萬數千兩。

古人所謂哀痛者，直是歇後語。救時之策，只在於節用，節用之方，亦在於崇儉。殿下若能體先朝節儉之意，凡諸山陵祭奠，務爲省約，庶合於《周禮》殺禮之義矣。伏聞登極後，其人貢物之屬於東宮者，特命減除，孰不仰盛德？第明聖、莊烈兩殿宮人之移屬各殿者，合計二百餘人，宣飯、衣纒、柴炭，因循不減云。願稟慈聖，亟賜處分焉。(중략) 且山陵園頭之役，爲弊不貲。祭奠所用，不過沈生菜、眞·西果三四種，而民田五結之地，圍排糞土之役，殆遍列邑，捧納之際，賄賂公行。本邑鋤軍之定送，太僕馬匹之往來，俱爲弊端，又有雇軍給價，耗費無節。司圍署元貢外，量宜加數，同爲進貢，則民弊可以少紓矣。

批曰：“所陳亶出憂愛，予庸嘉尙。三軍門事，其來已久，似難猝變，而圍田事，疏辭得宜。令該曹稟處，以除一

<p>영조 1권, 즉위년 (1724 갑진 / 청 옹정 (雍正) 2년) 9월 25일 (을축) 2번째기사</p>	<p>이광좌(李光佐)가 임금에게 아뢰기를, “양역청(良役廳)은 신(臣)이 처음에 비국(備局)에서 여러 재신(宰臣)들과 강확(講確)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관(主管)할 당상(堂上)과 문무(文武) 낭청(郎廳) 각 한 사람씩을 차출(差出)했었는데, ‘양역청’으로 일컫게 되니 명호(名號)가 차츰 커졌습니다. 대체로 양역을 변통시키려면 신포(身布) 2필(疋)은 과중하니, 이제 만약 그 한필을 감하면 백성에게는 크게 다행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용도가 해마다 많아지고 달마다 더해가고 있으므로 1년의 세금으로 1년의 용도를 지탱할 수가 없으니, 나라에 일이 생기게 되면 더욱 손을 쓰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나라의 용도를 미리 헤아리지 않고 앞질러 한필을 감하면 나중에 반드시 명(明)나라 말기처럼 더 거두어들이는 폐단이 있게 될 것입니다. 대저 나라를 넉넉하게 하는 것은 오로지 용도를 조절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세종 대왕께서는 황희(黃喜)·허조(許稠)와 산릉(山陵)의 제사 때에 소찬(素饌)을 쓰기로 의논하여 정하였으니, 검소하고 간략하게 하려는 뜻이 이와 같았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크게 조절하고 줄여서 백성을 구제하고 나라를 살리는 방도를 삼으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재물을 착취하면 백성이 흩어지고 재물을 베풀면 백성이 모이는 것이다. 나라의 저축이 비록 바닥이 난다고 하더라도 백성이 가난한 것보다는 낫다.” 하였다.</p>	<p>分民弊。” 李光佐白上曰：“良役廳，臣初欲自備局，與諸宰講確，故差主管堂上、文武郎廳各一人，及稱良役廳，名號漸大矣。蓋良役變通，爲身布二疋之太重也，今若減其一疋，民之大幸也。然我國用度，歲加月增，一年所賦，不能支一年之用，國若有事，尤難措手。今不能預度國用，徑減一疋，則後必有明末加斂之弊矣。大抵裕國，專在節用。世宗大王與黃喜、許稠，議定陵祭素饌。儉約之意，有如此者。願殿下，大加節損，以爲救民活國之道。” 上曰：“然。財聚則民散，財散則民聚。國儲雖竭，猶勝於民貧也。”</p>
<p>영조 1권, 즉위년 (1724 갑진 / 청 옹정 (雍正) 2년) 9월 29일 (기사) 2번째기사</p>	<p>(중략) 박필몽이 또 말하기를, “궁인(宮人)의 일을 한결같이 아울러 내보내자고 한 요청은 하책(下策)에서 나온 것이니, 원컨대, 속히 윤택하여 따르도록 하소서.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보낼 수 없는 사유를 명백하게 하교(下敎)하소서.”</p>	<p>弼夢又言：“宮人事，一并放出之請，出於下策，願亟允從。如其不然，不當放出之委折，明白下教焉。” 上曰：“因金姓而盡黜掌膳者，事不明白，名</p>

	<p>하니, 임금의 말하기를, “김씨 성을 가진 자로 인하여 어선(御膳)을 담당했던 사람을 다 내쫓는다면 일이 명백하지 못하고 명분도 올바르지 못하다. 만약에 그 사람이 있었다면 선왕(先王)께서 어찌 조사하여 내쫓지 아니하였겠는가? 내쫓는 것이 비록 아름다운 일이기는 하나 그것은 명분이 없는 데에 가까운 것이다.” 하였다. 시독관(侍讀官) 성덕윤(成德潤)이 말하기를, “약이 어찌 공중에서 떨어졌습니까? 사람이 시켜서 행하였다면 어찌 어선을 담당한 사람 외에서 나왔겠습니까? 성상(聖上)의 하교 가운데 ‘죽음 가운데서 살기를 구하느라고 터무니없는 말을 했다. [死中求生 胡辭亂說]’는 여덟 자에 대해서 신은 의혹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임금의 말씀은 한 번 퍼지게 되면 사망에서 놀라 의혹을 품을 뿐만 아니라, 적당(賊黨) 가운데 그래도 남아 있는 여열(餘孽)이 인심(人心)이 안정되지 못한 때를 당하여 어찌 구실을 붙일 길이 없겠습니까? 그 한 마디 말씀은 다시 거두어 들이시면 매우 다 행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의 말하기를, “그것은 곧 선왕(先王)의 하교이니, 도로 거두어 들일는지의 여부(與否)는 이제 와서 논할 만한 것이 못된다. 선왕께서 이미 ‘없다’고 하교하셨으니 그 일은 난초(亂招)에 귀착되는 것이 옳다. 선왕께서 ‘없다.’고 하신 하교를 중하게 여겨야 하겠는가, 아니면 적(賊)의 조사를 중하게 여겨야 하겠는가?”(하략)</p>	<p>亦不正。 若有之，則先朝豈不查黜乎？ 放出雖美事，此近無名矣。” 侍讀官成德潤曰：“藥豈空中落來乎？ 人既使之行之， 則豈出掌膳之外乎？ 聖教中， ‘死中求生， 胡辭亂說’ 八字， 臣不勝訝惑。 王言一播， 不但四方驚惑， 賊黨猶有餘孽， 當此人心不淑之日， 豈無藉口之道乎？ 此一轉語， 還收幸甚。” 上曰：“此乃先朝下教， 則還收與否， 到今非所可論。 先朝既以無之爲教， 則此事歸之亂招可也。 以先朝無之之教， 歸重可乎？ 以賊招歸重可乎？”</p>
<p>영조 1권, 즉위년 (1724 갑진 / 청 옹정 (雍正) 2년) 10월 20일(경인) 1번째기사</p>	<p>이광좌(李光佐)가 또 아뢰기를, “혜민서(惠民署)는 도성(都城) 백성의 의약(醫藥)을 위해 설치한 것이고, 전의감(典醫監)은 조정의 신하들의 의약을 위해 설치한 것이니, 설치한 뜻이 어찌 매우 융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마는, 조정의 신하가 전의감(典醫監)의 약을 한 첩도 먹을 수가 없는데, 더구나 도성의 백성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인삼</p>	<p>光佐又啓曰：“惠民署，爲都民醫藥而設， 典醫監，爲朝臣醫藥而設。 設置之意，豈不甚盛，而朝臣不得服典醫一貼藥， 都民況可論乎？ 人蔘及唐材價， 自宜惠廳上下， 使久任掌之， 所謂久</p>

	<p>(人蔘)이나 중국 당대(唐材)의 값은 선혜청(宣惠廳)에서 조정하여 오래 구임(久任)시킨 자로 하여금 관장(管掌)하게 하는데, 이른바 구임은 제조(提調)가 사사롭게 친근한 자로 이를 삼아서 혜택을 얻게 하는 데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찌 백성들이 고생하여 모은 물건을 이와 같이 까닭 없이 낭비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만약 그 서명(署名)은 그대로 두고, 그 쓸데 없는 비용을 줄이면 좋겠습니다.”</p> <p>하니, 임금의 말하기를, “혜민서(惠民署)·전의감(典醫監)의 이름이 어찌 좋지 않은가?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너는 그 염소를 아끼는가? 나는 그 예(禮)를 아낀다.’ 하였으니, 훗날 만약 그 이름을 보존하게 된 효과로 인하여 혹 옛것을 회복하게 된다면 좋을 것이다. 3백 년 동안 전해 온 일을 갑자기 혁파(革罷)할 수는 없다. 의약(醫藥)을 담당하는 두 부서가 소속될 곳이 없다면 이 또한 구차한 일이다. 그리고 구임에 이르러서는 하루 아침에 파직시키는 것도 매우 가련한 일이니, 할 수가 없다. 묘당(廟堂)에서 참작하여 하는 것이 좋겠다.”</p>	<p>任，不過以提調之私昵爲之，使得沾巧。豈可使百姓粒粒皆辛苦之物，白地浪費，如此乎？今若仍其署名，而減其浮費則好矣。”上曰：“惠民、典醫之名，豈不好哉？孔子曰：‘爾愛其羊？我愛其禮。’他日若以存其名之效，而或復其舊則善矣。三百年流來之事，不可猝罷，而兩醫無屬處，亦爲苟簡。至於久任，一朝罷去，亦甚可矜，不可爲也。廟堂參酌爲之可也。”</p>
<p>영조 1권, 즉위년 (1724 갑진 / 청 옹정 (雍正) 2년) 10월 21 일(신묘) 1번째기사 대계의 첫머리와 끝부분만을 거론하게 한 것과 관련해 교리 이거원 등이 아뢰다</p>	<p>사간원(司諫院)에서 앞서 아뢰었던 것을 거듭 아뢰었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상식(上食)할 때가 이미 되었으니, 만약에 새로 아뢰는 것이 아니면 첫머리와 끝부분만을 거론(擧論)하라.”</p> <p>하였다. 그래서 대신(臺臣)이 이미 전개(傳啓)하였는데, 교리(校理) 이거원(李居源)이 아뢰기를, “비록 전에 아뢰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다 읽는 것은 대개 다시 그 사실을 살피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첫머리와 끝부분만을 거론하라는 하교로 인하여 대신(臺臣)이 성급하게 그 명을 받든 것은 상하(上下)가 모두 성실하지 못함을 면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상식할 때가 되었으면 조금 물리게 하거나 대청(臺廳)에 전개(傳啓)하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p>	<p>辛卯/諫院將申前啓，上曰：“上食時已及，如非新啓，則只舉首尾可也。”臺臣既傳啓，校理李巨源進曰：“雖是前啓，亦必盡讀者，蓋欲更審其事實也。今因只舉首尾之教，臺臣遽然承命，上下俱未免不誠。若值上食，則或使之小退，或使之傳啓於臺廳可矣。”上曰：“玉堂所達固好，而但登對臺臣，無退出傳啓之事，故不得爲之矣。”領議政李光佐曰：“玉堂之言，儘有所</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옥당(玉堂)에서 진달한 것이 진실로 좋다. 그러나 다만 등대(登對)한 대신(臺臣)들이 물러가거나 전계한 일이 없었으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이광좌(李光佐)가 말하기를, “옥당의 말은 진실로 식견이 있는 것입니다. 대계(臺啓)는 단지 첫머리와 끝부분만을 거론할 수가 없는 것이며, 등연(登筵)한 대관(臺官)으로 하여금 밖에 나가거나 전계(傳啓)하게 하는 것도 대각(臺閣)을 대우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이러한 때에는 비록 상식에 참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로 하여금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다 말하고 물러가게 하는 것이 아마도 불가(不可)함이 없을 듯합니다.” 하였다.</p>	<p>見。臺啓恐不可只舉首尾，使登筵臺官，出外傳啓，亦非待臺閣之道。如此之時，雖未參上食，仍使之盡所懷而退，恐無不可矣。”</p>
<p>영조 1권, 즉위년 (1724 갑진 / 청 옹정 (雍正) 2년) 10월 30일(경자) 2번째기사 선혜청에서 혼전와 능소에 대한 채소와 땀감의 공급에 관해 아뢰다</p>	<p>선혜청(宣惠廳)에서 아뢰기를, “혼전(魂殿)과 능소(陵所)에 3년 동안 채소와 땀감의 공급은 으레 호조(戶曹)에서 마련하여 경기 각 고을에 나누어 정했습니다, 그런데 기해년(179) 국휼(國恤) 때부터 경기 각 고을의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비로소 본청(本廳)으로 하여금 구관(句管)하여 값을 주게 하였습니다. 그 값은 본래 각 청(廳)과 각 군문(軍門)과 병조(兵曹)·호조(戶曹)에서 계품(啓稟)하여 취용(取用)하였습니다. 값은 쌀 3천 9백 30여 섬이니, 청컨대, 쌀과 무명·전문(錢文) 세 가지로 나누어 마련하여 참작해서 주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p>	<p>宣惠廳啓：“魂殿、陵所，三年內蔬菜、柴炭之供，例自戶曹磨鍊，分定於畿邑，而自己亥國恤，爲除畿邑之弊，始令本廳句管給價矣，價本，例自各廳·各軍門、兵·戶曹，啓稟取用矣。價米三千九百三十餘石，請以米木錢三分磨鍊，參量劃給。”上許之。</p>
<p>영조 2권, 즉위년 (1724 갑진 / 청 옹정 (雍正) 2년) 11월 4일(갑진) 1번째기사 호조에서 신설한 궁가의 경비에 관해 아뢰</p>	<p>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신설한 궁가(宮家)의 전답 백 결(結)은 원결(元結) 가운데 본방(本房)에서 망정(望呈) 한 뒤 정해 주고 은자(銀子) 4천 냥(兩)을 획급(劃給)하는데, 궁장(宮庄)이 갖추어지기 전에는 콩 1백 석(石)과 선혜청(宣惠廳)의 쌀 2백 석을 5년을 기한으로 수송하는 일을 일찍이 을해년(203)에 대신(大臣)들이 진달(陳達)해서 정식(定式)하였습니다. 이제 경의군(敬義君)이 이미 봉작(封爵)되었으니,</p>	<p>甲辰/戶曹啓曰：“新設宮家田畝二百結，元結中自本房望呈後定給，銀子四千兩劃給，而宮庄未備前，太一百石及宣惠廳米二百石，限五年輸送事，曾於乙亥年，大臣陳達定式矣。今敬義君，既已封爵，請依此舉行。”上曰：“新</p>

<p>다</p>	<p>청컨대, 이에 의해서 거행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의 말이 맞기를, “신실한 궁가는 비록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만 경비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은자는 2천 냥을 줄이고 쌀은 1백 석으로 줄여 수송하라. 결수(結數)에 대한 일은 훗날 연석(筵席)에서 하교(下教)하겠다.” 하였다.</p>	<p>設宮家，雖不可不念，經用亦不可不顧，銀減二千兩，米減百石輸送，而結數事，後日筵中，當下教矣。”</p>
<p>영조 2권, 즉위년 (1724 갑진 / 청 옹정 (雍正) 2년) 11월 5일 (을사) 1번째기사 사헌부에서 산릉의 선반미 징수의 폐단에 대해 아뢰다</p>	<p>사헌부 【지평(持平) 이현보(李玄輔)이다.】에서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산릉(山陵)의 선반미(宣飯米)204)는 기내(畿內)의 각읍(各邑)에서 전세미(田稅米)를 덜어내어, 매 삭일(朔日)에 재실(齋室)로 실어다 바칩니다. 그런데 비단 서울로 운반하는 데 폐단이 있을 뿐 아니라, 언제나 봉납(捧納)할 즈음이면 곧 하배(下輩)들이 조종(操縱)하여 들어가는 정채(情債)가 응당 봉납해야 하는 수를 거의 넘게 됩니다. 따라서 각읍에서는 부득이 백성들로부터 감절을 징수하여 목전에서 일을 일으키는 것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청컨대 지금부터는 수릉관(守陵官) 이하 원역(員役)의 요미(料米)를 광흥창(廣興倉)에서 반록(頒祿)하는 예(例)에 의해 마련하여 진배(進排)해서 기민(畿民)의 폐단을 제거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의 말이 그대로 따랐다.</p>	<p>乙巳/憲府【持平李玄輔。】申前啓，不允。又啓：“山陵宣飯米，自畿內各邑，除出田稅米，每朔輸納齋室，而不但輦運有弊，每當捧納之際，輒爲下輩操縱，所入情債，殆過應納之數。各邑不得已倍徵於民，以救目前之生事。請自今守陵官以下員役料米，自廣興倉，依頒祿例磨鍊進排，以除畿民之弊。”上從之</p>
<p>영조 2권, 즉위년 (1724 갑진 / 청 옹정 (雍正) 2년) 11월 17일(정사) 4번째기사 조태역이 유시모를 내지로 옮겨 제수할 것</p>	<p>조태역이 또 말하기를, “근래 들으니 달이 여귀성(與鬼星)을 범(犯)했다 합니다. 이 별은 일명(一名) 적시(積尸)라고 하는데, 접때 무인년(260)에 이 별의 빛깔이 붉어지자 여역(癘疫)이 크게 번져 조가(朝家)에서 여시(興尸)261)를 묻으라고 하기까지 하였습니. 지금 겨울인데도 이와 같이 따듯하니, 명년 봄에 여역(癘疫)이 있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일찍이 듣건대, 선묘조(宣廟朝)에 《벽은신방(辟瘟神</p>	<p>泰億又言：“近聞月犯與鬼星云。此星一名積尸。曩在戊寅，此星色赤，而癘疫大熾，朝家至令與尸而埋之。今冬日暖如此，明春有癘疫之慮。曾聞宣廟朝，有《辟瘟神方》，孝廟朝，亦嘗印布其書。蓋以諺文翻譯，使之</p>

<p>과 민진원을 중도 부처하는 것 등에 관해 아뢰</p>	<p>方》이 있었다 하고, 효묘조(孝廟朝)에도 또한 일찍이 그 책을 인쇄하여 반포했다 합니다. 대개 언문(諺文)으로 번역한 것은 쉽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고, 대황(大黃)·송엽(松葉) 같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으로 구제하여 백성들이 은혜를 많이 입었다 합니다. 옥당(玉堂)에 이 책이 있다고 하니, 팔도(八道)에 베껴 보내어 민간에 두루 보임이 어떠하겠습니까?”</p>	<p>易知，以大黃、松葉，易得之藥，爲之掾濟，民多蒙惠。玉堂有此冊云，謄送於八道，布示民間何如？”上從之。</p>
<p>영조 2권, 즉위년 (1724 갑진 / 청 옹정 (雍正) 2년) 11월 25일(을축) 1번째기사 사헌부에서 정동후와 김일경의 일과 관련해 그 날 복역했던 승지를 삭탈 관작할 것을 청하다</p>	<p>하고, 또 아뢰기를, “지부(地部)의 염분 선세(鹽盆船稅)는 원래 정액(定額)이 있어 파손되는 대로 대정(代定)하는데, 근래 경상사(京上司)·각궁(各宮)·외영문(外營門)·각군(各郡)이 대부분 다 사설(私設)하여 새로 만든 것들을 모점(冒占)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지부(地部)의 소속은 한결같이 파손된 뒤 다시 대신 충당할 길이 없으니, 청컨대, 지부(地部)로 하여금 낭청(郎廳)을 파견해서 적간(摘奸)하게 하고, 각처(各處)의 소속도 아울러 곧장 대정(代定)하도록 허락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아뢰 대로 하라. 말단(末端)의 일은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겠다.” 하였다.</p>	<p>又啓曰：“地部鹽盆船稅，自有定額，隨破代定，而近來京上司及各宮外，營門及各郡，率多私設，新造者無不冒占。由是，地部所屬，則一破之後，更無代充之路，請令地部，發遣郎廳摘奸，各處所屬，并許直爲代定。”批曰：“依啓。末端事，令廟堂稟處。”</p>
<p>영조 2권, 즉위년 (1724 갑진 / 청 옹정 (雍正) 2년) 11월 25일(을축) 4번째기사 호조에서 최규서에게 보내는 주육 등을 본읍에서 거행하도록 청하자 그대로 따르다</p>	<p>호조(戶曹)에게 아뢰기를, “봉조하(奉朝賀) 최규서(崔奎瑞)에게 매달 주육(酒肉)을 보내고 봄 가을의 세시(歲時)에 주급(周給)하라는 명이 있었는데, 봉조하가 지금 이미 하향(下鄉)했으니, 청컨대 본읍(本邑)에서 거행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의 그대르 따랐다.</p>	<p>戶曹啓曰：“奉朝賀崔奎瑞，有月致酒肉，春秋歲時周給之命，而奉朝賀今已下鄉，請令本邑舉行。”上從之。</p>

<p>영조 2권, 즉위년 (1724 갑진 / 청 옹정 (雍正) 2년) 11월 28일(무진) 3번째기사</p> <p>호조 판서 오명항이 산릉 원두의 일을 변통하는 것에 관해 아뢰다</p>	<p>호조 판서(戶曹判書) 오명항(吳命恒)이 아뢰기를, “산릉(山陵) 원두(園頭)의 일이 기민(畿民)의 고질적인 폐가 될까 염려하여 이미 변통(變通)이 있었기 때문에 수박 1개의 가미(價米) 3두(斗), 참외 1개의 가미 5두, 하루에 바치는 김치의 가전(價錢) 2냥(兩)을 호조(戶曹)에서 원두군(園頭軍) 등에게 갖가지 방법으로 추이(推移)해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참외·수박은 두 배의 값으로, 김치값은 전번과 비교해 더 후하게 쳐주니, 별감(別監) 등이 모두 값을 받고 진배(進拜)하기를 자원하였으므로, 일찍이 그 무리들이 담당하던 역(役)을 그대로 맡게 하는 것이 또한 불가한 것이 없겠고, 여러 사람의 의논도 모두 편하다고 하니, 이에 의거해 시행하겠습니다.”</p> <p>하였는데, 임금(上)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p> <p>하였다.</p>	<p>戶曹判書吳命恒奏曰：“山陵園頭事，爲慮畿民痼弊，既有變通，故西瓜一箇價米三斗，眞茈一箇價五升，一日供上沈菜價錢二兩，自戶曹，以園頭軍等各樣價，推移磨鍊。眞、西瓜則爲倍價，沈菜價比前亦優厚，別監等皆自願受價進排，故曾前渠輩所當之役，使之仍當，亦無不可，諸議皆以爲便，故依此施行矣。”上曰：“依爲之。”</p>
<p>영조 2권, 즉위년 (1724 갑진 / 청 옹정 (雍正) 2년) 12월 2일 (신미) 4번째기사</p> <p>내의 제조 이조가 능행을 정침할 것을 청하고 승선을 통의하지 않아 추문받은 일로 진달하다</p>	<p>내의 제조(內醫提調) 이조(李肇)가 구대(求對)하여 능행(陵行)을 정침(停寢)할 것을 청하고, 또 소선(素膳)을 봉진(封進)하라는 명을 정침할 것을 청하였으나, 모두 허락하지 않았다</p>	<p>內醫提調李肇求對，請寢陵幸，又請寢素膳封進之命，皆不許。</p>
<p>영조 2권, 즉위년 (1724 갑진 / 청 옹정 (雍正) 2년) 12월 3일 (임신) 1번째기사</p>	<p>. 이광좌 등이 힘써 소선(素膳)의 명을 환수(還收)할 것을 청하자, 임금이 갑인년(308)과 경자년(309)의 예(例)를 상고해 내어 거행하라고 명하였다. 이광좌가 진달하기를, “김일경(金一鏡)의 일이 나온 뒤로 신 등이 기화(奇貨)가 되어 징토(懲討)하지</p>	<p>光佐等，力請還寢素膳之命，命考出甲寅、庚子例舉行。光佐陳一鏡事出後，臣等爲奇貨，不能懲討，臣罪大矣。又言：“若見古今凡主處事，則柳鳳輝，</p>

<p>이의천의 소어와 관련해 삼상을 위유하다</p>	<p>못하였으니, 신의 죄(罪)가 큼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만약 고금(古今)의 보통 임금(君主)이 일을 처리한 경우를 본다면, 유봉휘(柳鳳輝)가 어찌 털끝만큼이라도 보전(保全)할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조태억이 말하기를, “교문(敎文) 가운데 ‘척련(戚聯)’이니 ‘내옥(內屋)’이니 하는 따위의 말은 더욱 괴이(怪異)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황잡(荒雜)하다. 왕언(王言)의 대찬(代撰)은 마땅히 사실에 의거해야 하는 법인데, 어찌 이와 같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후략)</p>	<p>豈有一毫保全之望乎?” 泰億曰: “敎文中戚聯、內屋等語, 尤怪異矣。” 上曰: “荒雜矣。 王言代撰, 當據實, 豈容若是?”(후략)</p>
<p>영조 2권, 즉위년 (1724 갑진 / 청 옹정 (雍正) 2년) 12월 6일 (을해) 1번째기사 약원에서 대왕 대비전에 아뢰어 소선을 봉진하라는 명을 정침할 것을 청하였으나 허락치 않다</p>	<p>약원(藥院)에서 구전(口傳)으로 대왕 대비전(大王大妃殿)에 아뢰어 소선(素膳)을 봉진(封進)하라는 명(命)을 정침(停寢)할 것을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또 구전으로 대전(大殿)에 아뢰어 전달한 것을 따라 환수(還收)할 것을 청하고 또 갑인년(327)의 예(例)를 끌어대어 말했으나, 비답을 내려 허락하지 않았다.</p>	<p>乙亥/藥院口傳, 啓于大王大妃殿, 請寢素膳封進之命, 不許。 又口傳啓于大殿, 請導達收還, 且引甲寅例爲言, 批許之。</p>
<p>영조 2권, 즉위년 (1724 갑진 / 청 옹정 (雍正) 2년) 12월 13일(임오) 6번째기사 부교리 이광보가 상소</p>	<p>부교리(副校理) 이광보(李匡輔)가 상소하기를, “신은 명(命)을 받들고 재실(災實)을 심핵(審覈)하였습니다. 대저 호남(湖南)의 좌도(左道)는 반은 산골짜기에 가깝고 반은 바닷가에 가까운데 전재(田災)의 참혹함은 산골짜기나 바닷가나 마찬가지로였습니다. 그리고 허다한 목화밭은 애당초 알맹이를 맺지 못하여 전혀 따낼 목화가 없었습니다. 논곡식은 바닷가의</p>	<p>副校理李匡輔上疏言: 臣奉命審覈災實。 大抵湖南左道, 一半近峽, 一半濱海, 田災之慘, 峽海同然, 而許多綿耕, 初不結穎, 全無摘取之花。 畝穀之歉, 海邑尤酷, 蟲損風</p>

<p>해 호남 좌도의 전제의 참혹함 등에 대해 아뢰다</p>	<p>고을이 더욱 흑심하였는데, 벌레 먹고 바람에 마른데다 겸하여 해일(海溢)까지 일어나 원래 거둘 것이 없었으며 낫을 댈 곳이 드물었습니다. 그리고 조가(朝家)에서 준 7천 결(結)이란 숫자는 본도(本道)의 실결(實結)의 10분의 1에도 차지 않았으니, 이것이 신이 제마음대로 주었다는 죄를 달게 뒤집어 쓰되 조가에서 원망을 초래하게 하지 않게 하려 했던 까닭입니다. 그런데 유사(有司)의 신하가 말을 늘어놓으며 방계(防啓)하고 억지로 실결로 돌리게 하였으니, 조가에서 경차관(敬差官)을 차견(差遣)한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하건대 신의 재결(災結)을 더 준 죄를 감정(勘定)하고 특별히 환실결로 돌리게 한 명을 정지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p>	<p>枯，兼以海溢，元無所收，罕有掛鎌之處，而朝家所給七千結之數，未滿本道實結十分之一。此臣所以甘被擅給之罪，而不欲爲朝家斂怨者也。有司之臣，費辭防啓，勒令還實，朝家差遣敬差之意安在？願勘臣加給災結之罪，而特寢還實之命。</p>
<p>영조 2권, 즉위년 (1724 갑진 / 청 옹정 (雍正) 2년) 12월 18일(정해) 2번째기사 대사헌 오명준이 이광좌를 비난하는 상소를 올리자 삭탈 관작하여 문외 출송하라고 명하다</p>	<p>대사헌(大司憲) 오명준(吳命峻)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전하께서는 영예(英銳)함이 너무 지나치시고 정신(精神)이 너무 드러나십니다. 지혜는 만물(萬物)에 두루 미쳐 홀로 온 세상을 휘잡으려는 기개를 가지고 계시고, 군하(群下)를 꺾고 복종시켜 맹자(孟子)의 변론(辯論)을 좋아하는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미 그에 장점이 있다면 어찌 손해나는 바가 없겠습니까? 함축(含蓄)한 것이 미진하여 사기(辭氣)가 간혹 편벽되고, 일에 따라 장소에 따라 병(病)이 되지 아니함이 없습니다. 너무 가볍고 너무 날카로우며 혹 신중함을 유지하는 데 부족함이 있고, 총명(聰明)이 너무 넓어 너무 미세하게 하는 데서 실수가 생깁니다. 비록 전날 산릉(山陵)의 승인(僧人)이 불에 타 죽었을 때의 홀전(恤典)을 가지고 말할지라도 해조(該曹)에 명하시면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또 액레(掖隸)를 시켜 안에서 부물(賻物)을 주게 하였는데, 다른 물건은 지나치게 많았으나 쌀·콩 몇 승(升)은 너무 보잘것없이 작았습니다. 천승(千乘)의 임금이 사람에게 부물을 주는 것이 이와 같다면, 이것은 바지를 아끼는 데366) 견줄 것이 아닙니다.(후략)</p>	<p>大司憲吳命峻上疏。略曰： 殿下英銳太過，精神太露，智周萬物，有獨馭一世之氣，折服群下，有孟子好辯之志，既有其長，那無其損？含蓄未盡，辭氣或偏，隨事隨處，無不爲病。太輕太銳，或欠持重，聰明甚廣，失之太細。雖以前日山陵僧人燒死時恤典言之，命于該曹足矣，又使掖隸，致內賻，他物太多，而米太數升，太零瑣。千乘之賻人如此，此非惜袴之比。(후략)</p>

<p>英祖 2卷, 卽位年 (1724 甲辰 / 청 옹정 (雍正) 2年) 12月 20 日(己丑) 3번째기사 내의원에서 복선을 청 하여 재차 아뢰자 억 지로 따르다</p>	<p>내의원(內醫院)에서 복선(復膳)을 청하여 재차 아뢰자, 억지로 따랐다.</p>	<p>內醫院請復膳, 再啓, 勉從。</p>
<p>영조 2권, 즉위년 (1724 갑진 / 청 옹정 (雍正) 2년) 12월 22 일(신묘) 4번째기사 대왕 대비전의 하교에 따라 약원에서 왕대비 전에 아뢰어 권도를 따를 것을 청하다</p>	<p>대왕 대비전(大王大妃殿)에서 언서(諺書)로 약원(藥院)에 하교(下敎)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왕대비전(王大妃殿)의 기운이 쇠잔하여 지탱하기 어려우니 권도(權道)를 따를 것을 청함이 마땅하다.” 하였다. 약원에서 왕대비에 아뢰어 권도를 따를 것을 청했지만, 허락하지 않았다.</p>	<p>大王大妃殿, 以諺書, 下教于藥院, 略曰: “王大妃殿, 氣敗難支, 宜請從權。” 藥院啓于王大妃殿, 請從權, 不許。</p>
<p>영조 3권, 1년(1725 을사 / 청 옹정(雍正) 3년) 1월 3일(임인) 8 번째기사 경기 감사 서명균이 상소하여 도내의 수미 를 2두씩 감하기를 청 하다</p>	<p>경기 감사(京畿監司) 서명균(徐命均)이 상소하여 말하기를, “도내(道內)가 흉년이 든데다가 또 산릉(山陵)의 큰 역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나라의 용도가 소모되고 줄어 비록 반조(半租)를 내리지 않는 못하더라도 수미(收米)를 양감(量減)하는 것은 결코 그만둘 수 없습니다. 경자년(庚子) 437) 국휼(國恤) 때에 고양(高陽)은 지방관(地方官)이 유독 봄의 수미 3두(斗)씩을 감해 주었으니, 지금은 도내(道內)를 통틀어 2두씩 감해야 마땅합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라.” 하였다. 무오일(戊午日)에 또 상소하여 신청(申請)하니, 임금이 특별히 따랐다.</p>	<p>京畿監司徐命均上疏言: 道內飢荒, 又當山陵大役, 今國用耗縮, 雖不能賜半租, 量減收米, 斷不可已。 庚子國恤時, 高陽以地方官, 獨減春收米三斗, 今宜通道內減二斗。 批令廟堂稟處。 戊午又上疏申請, 上特從之。</p>

<p>영조 3권, 1년(1725) 을사 / 청 옹정(雍正) 3년) 1월 26일(을축) 4번째기사 민진원이 영·호남의 재결을 논하고, 이어적 이 각 영읍의 조련 문 제를 아뢰다</p>	<p>(전략)“왜관(倭館)의 고공(雇工)은 의식(衣食)이 후하기 때문에, 서울 사람들이 많이 몰래 들어가 조정의 소식을 많이 전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자는 죄를 주고, 이후에는 몰래 들어가는 것을 엄금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석강(夕講)을 행하였다.</p>	<p>又奏：“倭館雇工，以衣食之厚，故京人多潛入，傳播朝奇。時留者罪之，此後宜嚴禁潛入。”從之。又行夕講。</p>
<p>영조 3권, 1년(1725) 을사 / 청 옹정(雍正) 3년) 2월 23일(신묘) 1번째기사 한식이어서 임금이 경 소전에서 친제를 행하 다</p>	<p>한식(寒食)이었다. 임금이 경소전(敬昭殿)에서 친제(親祭)를 행하였다.</p>	<p>辛卯/寒食。上親祭于敬昭殿。</p>
<p>영조 4권, 1년(1725) 을사 / 청 옹정(雍正) 3년) 3월 2일(경자) 3 번째기사 김창집·이이명·이건명· 조태채의 관작을 회복 하고 치제하다</p>	<p>“대순(大舜)742) 임금이 시골 가운데 살았어도 3년 만에 읍(邑)이 이룩되고 5년 만에 도회(都會)가 이룩되었다고 하니, 이것이 어찌 성인(聖人)이 스스로 수양한 성과가 아니겠는가? 내가 만약 스스로 수양하는 공부(工夫)가 있었다면 애당초 건저(建儲)한 뒤에 어찌 인심(人心)이 의심하고 미혹됨을 초래(招來)하였겠는가? 이것은 모두 내가 스스로 수양하는 공부가 전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옛말에 이르기를, ‘물건을 던져 쥐를 때려 잡고 싶지만 곁에 있는 그릇을 켤까 두려워한다.’고 하였다. 지난번에 이른바 폐립(廢立)과 찬역(篡逆)한다는 것이 미루어 말한다면 어느 지경에까지 이르렀겠는가? 스스로 그들이 위로 감히 말할 수 없는 처지에 꺾박하였음을 깨닫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릇을 깨뜨릴까 하는 마음이 없었겠는가? 저위(儲位)743) 가 이미 정하</p>	<p>“大舜處畎畝之中，三年成邑，五年成都，此豈非聖人自修之效乎？予若有自修工夫，則當初建儲之後，豈致人心之疑惑乎？此莫非予全無自修工夫而然也。古語曰：‘欲投鼠而忌器。’向來所謂廢立、篡逆云者，推而言之，至及於何地耶？自不覺其上逼於不敢言之地矣，何其無忌器之心也？儲位既定之後，事端層生，宮闈之間，亦生變怪者，皆由於不能自修之故也。東宮問寢視</p>

	<p>여진 뒤에도 사건의 단서가 겹겹이 발생하여 궁위(宮闈)744) 사이에서도 역시 변괴(變怪)가 발생한 것은 모두 스스로 수양을 잘하지 못한 데 연유한 까닭인 것이다. 동궁(東宮)이 문침(問寢)745) 하고 시선(視膳)746) 하는 외에 비록 조정에 대하여 간예(干預)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곁에서 모시며 제시 진달하는 일은 옛날의 역사에도 있었다. 나의 경우는 단지 사건이 자기에게 관계된다는 이유로써 감히 못한 바가 있었는데, 오늘날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말을 하게 되었다. 이것이 아무리 그때의 일의 형세가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실상 대행조(大行朝)의 건저(建儲)한 의도를 저버린 것이다.”</p>	<p>膳外，雖不干預朝廷，然侍傍提達之事，古史亦有之。予則只以事關自己，有所不敢，而至今日始言。是雖伊日事勢之不得已，而實有負於大行朝建儲之意矣。</p>
<p>영조 4권, 1년(1725) 을사 / 청 옹정(雍正) 3년) 3월 8일(병오) 2 번째기사 민진원이 전례, 3대신, 윤지술, 조성집, 호분위의 속목, 잠성 부부인 등에 대하여 논하다</p>	<p>“지난번에 호분위(虎賁衛)의 속목(贖木)847) 을 혁파(革罷)한 뒤에 진상(進上)은 줄어들지 않고 값은 내놓을 곳이 없어, 삼남(三南)의 경우는 선혜청(宣惠廳)에서 바꾸어다 봉진(封進)하며 경기(京畿)와 강원(江原) 두 도(道)의 경우는 본도(本道)에서 봉진하는데, 값을 장만할 수 없기 때문에 경기의 경우는 값을 각 고을에다 징수합니다. 강원도도 또한 경기의 예대로 나누어 징수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백성들이 불쌍하니 백성들의 재력(財力)을 조금이라도 펴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면제시켰다가 도로 바치게 하는 것은 애당초 덜어주는 뜻이 아니다. 경기(京畿)·강원(江原) 두 도의 진상(進上)을 우선 정지하도록 하며 풍년이 들기를 기다려서 다시 의논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p>	<p>又陳向來虎贖木革罷後，進上不減，而價無出處。三南則自宣惠廳質得封進，而京畿、江原兩道，則自本道封進，無以辦價，故京畿則徵價於各邑。江原道亦依京畿例分徵乎?” 上曰：“生靈可矜，不可不少紓民力。既除還捧，非當初蠲減之意。京畿、江原兩道進上，姑爲停止，待年豐更議可也。”</p>
<p>영조 4권, 1년(1725) 을사 / 청 옹정(雍正) 3년) 3월 11일(기유) 2 번째기사</p>	<p>임금이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무신(武臣) 최진한(崔鎭漢)이 청석동구(靑石洞口) 밖 금천군(金川郡)에다 독진(獨鎭)을 설립하도록 청하니, 묘당(廟堂)에 품지하여 처리하도록 명하였다. 종신(宗臣) 영원군(靈原君) 현(淸)이 종신으로 가난하여 의탁할 데 없는 자에게 선조(先朝)의 고사(故事)에 따라 종친부(宗</p>	<p>上御晝講。武臣崔鎭漢，請靑石洞口外金川郡，設立獨鎭，命廟堂稟處。宗臣靈原君淸，請宗臣貧寒無依者，依先朝故事，令宗親府精抄，窮春周急，</p>

<p>주강에서 무신 최진한이 금천군에 독진의 설치를 청하고, 종신을 구휼하다</p>	<p>親府)로 하여금 정밀하게 뽑아서 춘궁기(春窮期)에 급박함을 구휼(救恤)하도록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p>	<p>從之。</p>
<p>영조 4권, 1년(1725) 을사 / 청 옹정(雍正) 3년) 3월 12일(경술) 1번째기사 원주의 유학 이신방이 양역의 폐단과 사옹원 등의 제반 폐해를 논하다</p>	<p>원주(原州)의 유학(幼學) 이신방(李薰芳)이 상소(上疏)하여 양역(良役)866)의 폐단을 말하기를, “옛날에는 무학 군관(武學軍官)이나 기패관(旗牌官)은 삼청(三廳)867)의 중인(中人)·서얼(庶孽)이 하고, 평민(平民)은 신역(身役)에 들게 하고 속오군(東伍軍)868)을 겸행하도록 하였는데, 요즈음 부유한 백성들이 함부로 들어옴으로 인하여 삼청의 중인과 서얼은 나가서 한가히 놀기를 도모하여 첩역(疊役)과 족징(族徵)869)의 폐단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고, 또 사옹원(司饗院)에서 굶는 그릇을 당상관과 낭관이 지나치게 많이 나누어 가지게 되고, 사복시(司僕寺)의 초가미(草價米)870)도 제조(提調)가 사사로이 차지하며, 병조(兵曹)의 보병 번포(步兵番布)를 관원의 월봉(月俸)으로 소비하는 것이 많고, 호조(戶曹)와 선혜청(宣惠廳)의 은화(銀貨)·쌀(米)·콩도 사사로이 빌려 주는 것이 많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또 각궁(各宮)의 세금을 면제할 것과 각 관사(官司)의 둔전(屯田)을 혁파하도록 청하고, 또 돈의 폐단을 말하고 녹여 그릇 따위를 만들 것을 청하였으며, 또 수령을 자주 체임하는 폐단을 말하였고, 또 세력이 있는 집안에서 입안(立案)871)을 빼내도록 꾀하는 폐단을 말하니, 임금이 후하게 비답을 내리고, 인하여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지(稟旨)하여 처리하게 하였다.</p>	<p>庚戌/原州幼學李薰芳， 上疏言良役之弊以爲： 古則武學軍官旗牌官， 三廳中庶爲之， 平民則入於身役， 兼行東伍。 近因富民冒入， 三廳中庶， 圖出閒遊， 以致有疊役、族徵之弊。 又言司饗院燔器過多， 爲堂郎所分； 司僕寺草價米， 爲提調私占； 兵曹步兵番布， 多費於官員月俸； 戶曹、宣惠廳銀貨、米、太， 亦多私貸。 又請革罷各宮免稅及各司屯田， 又言錢幣， 請銷鑄器皿。 又言守令數遞之弊， 又言勢家圖出立案之弊， 上優批， 仍令廟堂稟處。</p>
<p>영조 4권, 1년(1725) 을사 / 청 옹정(雍正) 3년) 3월 12일(경술) 3번째기사</p>	<p>(중략) 민진원(閔鎭遠)이 말하기를, “숙종조(肅宗朝)에 고(故) 상신(相臣) 이유(李濡)가 징채청(徵債廳)을 관서(關西)에다 설치하도록 청하여 빚을 진 사람과 절족(切族)893)이 바쳐야 할 전곡(錢穀)에 대해서 영문(營門)에서는 별장(別將)을 정하여 수시(隨時)로 전관</p>	<p>鎭遠曰：“肅宗朝故相李濡， 請設徵債廳於關西， 負債人及切族處所捧錢穀， 自營門定別將， 隨時轉販， 穀則給糶取耗， 以爲漸次畢償之地。 臣在關西，</p>

<p>시민당의 조강·주강·석강에 나가고, 옥사와 관련한 이들에 대한 처벌을 논하다</p>	<p>(轉販)894) 하게 하되, 곡식인 경우는 환곡(還穀)을 주고 <10분의 1을> 이자로 받아 점차로 전부 갚게 하는 터전이 되도록 하였었습니다. 신이 관서(關西)에 있으면서 이 법을 준행하여 성과가 있었습니다. 청컨대, 해서(海西)로 하여금 모두 이 법을 시행하게 하여 관계되지 않은 사람에게 강제로 바치도록 한 물품은 역시 되돌려 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중략)</p>	<p>遵行此法有效。請令海西，并行此法，不干人處勒捧之物，亦令還給。”從之</p>
<p>영조 4권, 1년(1725) 을사 / 청 옹정(雍正) 3년) 3월 25일(계해) 7번째기사 민진원이 삼수(대급수·소급수·평지수)에 대하여 자세히 아뢰다</p>	<p>(중략) 그리고 약(藥)에 대해서는 이현(李瀾)의 초사에 이르기를, ‘이이명(李頤命)이 독약(毒藥)을 사가지고 와서 두 갈래로 나누어 주었는데, 한 파(派)는 서덕수(徐德修)에게, 한 파(派)는 이기지(李器之)·이천기(李天紀)의 무리였다.’고 하였으며, 서덕수의 초사에 이르기를, ‘은(銀) 3백 냥(兩)을 장세상(張世相)의 처소에 보냈는데, 장세상이 2백 냥으로 백망(白望)이 매수한 역관(譯官) 장씨 성(姓)을 가진 사람에게 샀다.’고 하였습니다. 서덕수가 이미 장씨 성의 역관에게서 샀다고 말하였다면 이는 정유년(979)에 사왔다고 하는 약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현의 초사에서 이른바 이이명이 가지고 와서 두 갈래로 나누어 준 가운데 한 파(派)의 서덕수에게 주었다는 것은 허망한 데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김성절(金盛節)의 초사 안에, ‘정유년 사행(使行) 때 이기지 부자(父子)가 역관 장판사(張判事)란 자를 시켜 <약을> 사가지고 왔다.’고 하였는데, 그 사행에는 원래 장씨 성의 역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장 역관이 사가지고 온 약을 김 상궁(金尙宮)과 함께 모의하여 일차로 시험삼아 사용하였더니 곧바로 누런 물을 토해내었다고 하였는데, 만약 누런 물을 토해낸 것이 장 역관의 약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장씨 성을 가진 그런 사람은 원래 없었으며, 만약 이이명이 사가지고 온 약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누런 물을 토해 낸 것은 경자년(980) 겨울에 있었고, 이이명의 사행은 신축년(981) 봄에 되돌아 왔습니다. 김성절의 초사에 또 이르기를, ‘누런 물을 토해낸 뒤에 이기지의 무리가 약이 맹렬하게 독하지 않다고 여겨 다시 마땅히 은(銀)을 모</p>	<p>’ 徐德修招曰：‘以銀三百兩，送世相處，世相以二百兩，買得於白望所買之譯官張姓’云。德修既曰買得於張姓譯官，則是指丁酉買來云云之藥也。然則瀾招所謂頤命持來，兩岐分給中，一派德修者，歸虛矣。金盛節招內，‘丁酉年使行時，器之父子，使譯官張判事者，買得持來’云，其行元無張姓譯官。又張譯買來之藥，與金尙宮同謀，一次試用，旋即吐出黃水云。若曰黃水吐出，由於張譯之藥，則張姓元無其人；若曰由於李頤命買來之藥，則黃水吐出，在於庚子冬，而頤命使行，辛丑春回還。盛節招又曰：‘黃水吐出後，器之輩以爲藥不猛毒，更當聚銀買得他藥’云，而其時器之隨其父赴燕，則此亦歸虛，張譯既無其人，故以此更推，則盛節又指洪舜澤，爲買藥譯官。舜澤，果是買藥之人，則初何以張姓人</p>

아 다른 약을 사와야 한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 이기지가 그의 아버지를 따라 북경(北京)으로 갔다면 이것 또한 허망한 데로 돌아갔으며, 장씨 성의 역관은 이미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추문하니, 김성질이 또 홍순택(洪舜澤)을 지목하여 약을 사온 역관이라고 하였습니다. 홍순택이 정말로 약을 사온 사람이었으면 처음에는 어떻게 장씨 성의 사람으로 현저하게 고발하였다가 뒤에 변경시켜 홍씨라고 하였겠습니까? 포도청(捕盜廳)에서 또 홍순택의 종 업봉(業奉)을 찾아내어 잘 달래 가르쳐서 자복을 받았는데 종으로서 주인을 증거대는 것은 원래 법전(法典)에서 금지하는 바이니, 이것도 오히려 이와 같이 하는데 다른 것이야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홍순택은 끝내 자복하지 아니하고 죽었으며, 그의 숙부(叔父) 홍성주(洪聖疇)까지 엄중한 형신(刑訊)으로 조사하고 추문하였으나 끝내 자복을 받지 못하였으니, 홍순택이 약을 사가지고 왔다는 말도 허망한 데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약을 목호룡은 작기가 소합원(蘇合元) 같다고 하였으며, 정우관(鄭宇寬)은 크기가 콩알만하다고 하였고, 업봉(業奉)은 크기가 계란만 하나 조금 작다고 하였으며, 목호룡은 빛깔이 푸르다고 하였고, 이영(二英)은 누른 빛깔이라고 하였으며, 업봉은 누르고 검은 빛깔이라고 하였으니, 똑같은 약인데 그 모양과 빛깔이 어찌 이와 같이 각기 다르겠습니까? 약에 관한 일이 이제야 거짓말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약을 사용한 한 조항은 이정식(李正植)의 조사 안에 ‘11월 무렵에 장세상이 말하기를, 「이소훈(李昭訓)이 독약(毒藥)을 마시고 바야흐로 목숨이 끊어지려고 한다.」 고 했다.’ 하였는데, 여기서는 이소훈은 11월에 죽었습니다. 서덕수의 조사에는 ‘6월 무렵에 은 3백 냥을 장세상의 처소에 보내어 그로 하여금 독약을 구하도록 하여 동궁(東宮)의 주방 나인(廚房內人) 이씨(李氏)를 시켜 음식에 타서 사용하게 하였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소훈이 6월에 죽었습니다. 6월과 11월은 이와 같이 서로 반대가 되며 더구나 신축년 6월에는 전하께서 바야흐로 잠저(潛邸)에 계셨는데, 어떻게 동궁(東

現告, 而後變爲洪耶? 捕廳又覓出舜澤之奴業奉, 教誘取服, 而以奴證主, 元是法典所禁。 此猶如此, 他尙何說? 舜澤終不服而死, 竝與其叔聖疇, 嚴刑究問, 而終不能取服, 則舜澤買藥之說, 亦歸虛矣。 且其藥, 虎龍則以爲小如蘇合元, 宇寬則以爲大如大豆, 業奉則以爲大如鷄卵而差小, 虎龍則以爲色青, 二英則以爲黃色, 業奉則以爲黃黑色。 同是一藥, 則其刑色何如是各異耶? 藥事於是乎落空矣。 其所謂用藥一款, 李正植招內, ‘十一月間世相曰: 「昭訓飲毒藥, 方欲絕命」 云。’ 是昭訓十一月死也。 德修招則六月間, 以銀三百兩, 送世相處, 使之圖得毒藥, 使東宮廚房內人李氏, 和飲食用之云, 是昭訓六月死也。 六月、十一月, 如是相反, 而況辛丑六月, 殿下方在潛邸, 豈有東宮廚房乎? 虛妄一也。 德修招, 則使世相, 以銀二百兩圖得毒藥。 是藥自世相圖得, 非自外送之也。 宇寬招, 則德修、昌道、正植, 於櫝中, 出一封物, 使渠傳給世相云, 是藥封, 故渠持入闕中, 待其無人, 傳給世相云。 是藥自外送之也。

宮)의 주방이 있었겠습니까? 허망한 것의 첫째입니다. 그리고 서덕수의 조사에는 ‘장세상을 시켜 은 2백 냥으로 독약을 구하도록 도모하였는데, 이 약은 장세상에게 구하도록 도모한 것이며 밖에서 보낸 것은 아닙니다.’ 하고, 정우관의 조사에는 ‘서덕수·김창도(金昌道)·이정식이 궤(櫃) 가운데서 한 개의 봉(封)한 물건을 꺼내어 그로 하여금 장세상에게 전해 주도록 하였다.’고 하였는데, 이 약은 봉하였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대궐 안으로 들어가 사람이 없는 틈을 기다려 장세상에게 전해 주었다고 하였으니, 이 약은 밖에서 보낸 것입니다. 두 사람의 조사가 이와 같이 서로 틀리니, 허망한 것의 둘째입니다. 그리고 이른바 약을 사용한 김 상궁(金尙宮)이 소훈(昭訓)의 이 궁인(李宮人)을 살해하였으나 끝내 그런 사람이 없었으니 허망한 것의 셋째입니다. 이른바 소급수(小急手)의 허망함은 알 수가 있으며, 이른바 평지수(平地手)에 이르러서는 처음에 국상(國喪)을 틈타 왕명을 위조(僞造)하여 폐출(廢黜)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써 고발하였으나 이 일을 주장한 사람은 지열(池烈)이었는데 자신이 죽은 지 이미 오래 되었으므로, 뒤에는 백열(白烈)이가 되었고 백열이 자복하지 않고 죽으니, 그 뒤에 또 갑자기 궁성(宮城)의 호위(扈衛)하는 일을 꾸며내어 은연중 이것으로 폐출하는 일을 증거대려고 하면서 당시의 군흉(群凶)들이 청정(聽政)하는 한 가지 일을 가지고 찬역(篡逆)하는 죄과(罪科)로 몰아넣었으니, 그 뜻이 여러 신하들을 터무니없이 모함하는 데 두었을 뿐만 아닙니다. 궁성을 호위하는 것으로 역적 모의를 하였다는 것은, 생각건대 어찌 다분히 변명을 해야겠습니까마는, 김창도 등의 조사에 ‘애당초 소론(少論)을 쫓아내어 들어올 수 없게 하고 또 소장(疏章)을 거절하고 막아버리려는 계획이었다.’고 하니, 본래는 역적 모의에 관계된 것이 아닌데 그 당시 국청(鞫廳)에서 기필코 역적 모의로 몰아넣으려 하니, 죄인들도 의향(意向)을 받들어 대부분 반역했다는 것으로 자복하여 이것으로 여러 대신들을 터무니없이 무함하려고 하였으니, 그 무리에게는 죽을 곳에서 도망갈 길을 찾는 계책이 되니 참으로

마음이 아플 만합니다. 그 사이의 절차(節次)는 이삼(李森)이 <외직(外職)으로> 나가 충청도 병사가 되었으며, 유취장(柳就章)은 중군(中軍)이 된 한 조항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삼이 충청 병사가 된 것은 실로 자신이 구한 데서 나온 것이니 이것은 온 조정에서 다 함께 아는 바인데, 이것이 역적 모의에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정말로 유취장을 중군으로 끌어다 함께 모의하려는 바탕으로 삼으려 하였다면 당연히 유취장과 미리 계획을 도모하고 정녕코 서로 약속한 뒤에야 이삼을 내보낼 수 있을 것인데, 어찌 이삼이 이미 나가고 유취장이 청축(請囑)하기를 기다린 뒤에 비로소 유취장을 차임(差任)하였으며, 또 어찌 곧바로 유취장을 평안 병사의 수망(首望)으로 주의(注擬)하였겠습니까? 엮어서 배치한 계책이 정말 이와 같았겠습니까? 유취장의 초사 안에 12월 초5일에 여러 대신(大臣)들이 이견명(李健命)의 집에 모여 호위하는 일을 모의하였다고 하였는데, 12월 초5일은 바로 이견명이 출강(出疆)982) 한 뒤였으니, 이것은 그 당시 국청에서도 허망함을 알고 다시 유취장에게 물으니 유취장이 즉시 그것은 속인 것이었음을 자복하였습니다. 이 한 가지 단서를 들면 다른 것은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궁성 호위에 대한 한 가지 일이 이와 같이 거짓말로 돌아갔으니, 이른바 평지수(平地手)라는 것이 허망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옥사(獄事)에서 가장 긴요한 것은 삼수(三手)에 벗어나지 않는데, 그 가운데 칼에 대한 일과 왕명을 위조(僞造)하는 일은 애당초부터 이미 귀착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저 무리들도 많은 지절(枝節)983) 들을 발생시킬 수가 없었으므로, 유독 약에 대한 일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3년 동안 기필코 단련(鍛鍊)시키려고 하여 전하께서 왕위를 계승한 뒤에도 오히려 김씨 성(姓) 궁인(宮人)의 일을 버리지 않았으며, 전하께서 실제로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으로 명백하게 하교(下教)한 연후에야 비로소 정계(停啓)하였으니, 이 한 가지 사항도 마침내는 허망한 데로 돌아갔으며, 그 사이 허다한 절막(節拍)이 허망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은(銀)을 모으는 한 가지 일은 저 무리들이 한 가지 큰 중요한 문제로 삼았기에 우선 신이 상세하게 아는 것으로 말하겠습니다. 우홍채(禹洪采)가 승복(承服)한 초사 가운데 황해도 병사가 성(城) 쌓을 물력(物力)을 얻으려고 청한 보장(報狀)984)을 김성행(金省行)의 말로 그의 할아버지 985)에게 제급(題給)을 받았는데, 서목(書目)에는 조송(趙松)이 어느 곳에서 성첩(成貼)986) 하였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은 더욱 매우 맹랑(孟浪)합니다. 그 당시 신이 유사 당상(有司堂上)으로 대죄(待罪)987) 하였기에 이 일을 상세히 압니다. 최초로 물력을 얻으려고 청하였을 적에 대신(大臣)이 지급할 물력이 없다는 것으로 걱정하였는데, 신이 생각하기를 북한산성(北漢山城)을 쌓을 때에 황해 병영(黃海兵營)의 물력을 빌려다 썼으니 그 댓가로 서남(西南)에서 쌀 수천 석(石)을 환산하여 거두고 이 쌀로써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니, 대신들이 훌륭하다고 칭찬하며 신의 말대로 제급(題給)을 허락하였습니다. 그 뒤에 또 물력이 이미 다 떨어졌다는 것으로 급히 보고하자 대신이 다시 신에게 물었는데, 신이 지금은 달리 지급할 재물이 없으니, 방제(防題) 외에는 다른 계책이 없다고 하자 대신이 신의 말대로 방제목(防題木) 20동(同), 쌀 수백 석(石)을 비록 지급하려고는 하였으나 실제로 나올 곳이 없었는데, 대신이 어떻게 제급을 허락하였겠습니까? 더구나 서목(書目)을 제송(題送)988) 할 때에는 반드시 당상관의 결재를 받아 여러 당상관에게 두루 보인 뒤에 돌려보내는 것은 비국(備局)의 규례(規例)입니다. 신이 어찌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할 이치가 있겠습니까? 다만 이 사건만으로 관찰하건대, 그 허망됨이 이와 같으니 다른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초사에 모두 은(銀)을 모아 국면(局面)을 바꾸려고 도모한다는 것으로 말을 하였으니, 대체로 국면을 바꾸려고 도모하는 것은 그 죄가 진실로 사형에 해당되지만, 이미 반역을 도모한 것이 아니면 자신이 직접 도모한 외에 그 실정을 알고 고발하지 않은 경우는 당연히 사형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각 사람들이 이렇

게 자복을 하면 혹시라도 살아날 방도가 있을 것으로 바라고 이에 여러 당상관의 의향을 받들어 더러는 사리에 맞지 않게 거짓으로 공초하였다가 승복(承服)한 뒤에 이르러서는 그 승복한 조건이 어떠한가는 묻지 않고 일제히 모두 반역을 도모한 데 함께 참여한 것으로 결안(結案)하여 조율(照律)하였으니, 이와 같은 옥사(獄事)의 체제는 전고(前古)에 없었던 바입니다.

그리고 신 등이 전후의 옥안(獄案)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니, 고발한 사람의 말이 비록 대단하게 어긋나고 착오된 것이 있어도 하나도 목호룡에게는 힐책하여 묻지 않고 다만 고발당한 자에게만 핍박하며 묻는 것으로 일을 삼아, 오늘에 한 문목(問目)을 첨가하고 내일에 한 문목을 첨가하여 좌우에서 번갈아 신문한 것이 그 단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으며, 또 듣건대 형옥(刑獄)의 참혹하고 악독함은 차마 보지 못할 부분이 있었으며, 또 주장(朱杖)으로 좌우와 전후를 찌르고 때려 형신을 받아 죽은 사람의 갈비뼈가 모두 부러졌고 창자가 겉으로 나오기도 하였으니, 옥사(獄事)를 다스리는 참혹하고 악독함이 이미 이와 같았다면 이 옥사에 말려든 자는 비록 입이 백개가 있더라도 그 누군들 벗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때문에 3년 동안 옥사를 다스리는 데에서 살아나온 자가 거의 없고 죽은 자가 40인이나 많은 데 이르렀으니, 고금(古今) 천하(天下)에 어찌 이와 같은 옥사가 있겠습니까? 선왕(先王)께서 이와 같은 것을 알고서 더러는 한재(旱災)로써 여러 죄수들을 석방하도록 명하기도 하고, 더러는 노론(老論)을 모조리 처치하려는 계책이라고 하여 엄중히 배척하셨으니, 양 대신(兩大臣)이 화(禍)를 당하였을 적에 또한 도로 거두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따라서 선왕(先王)의 본심(本心)은 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죽는 것을 불쌍히 여겼음을 볼 수 있는데, 군흉(群凶)들이 극력 다투며 맞붙어 싸우느라 마침내 살생(殺生)하기를 꺼리는 성덕(聖德)을 막아서 시행되지 못하게 하였으니, 슬픔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후략)

<p>영조 4권, 1년(1725) 을사 / 청 옹정(雍正) 3년) 3월 26일(갑자) 2번째기사 주장을 마치고 민진원 등이 신임 사화와 연 루된 이들에 대하여 논하다</p>	<p>. (중략) 민진원이 말하기를, “호우(湖右)는 곧바로 사대부(士大夫)가 살던 곳인데 지난번 흉당(凶黨)이 일 망타진하려는 계책을 만들려고 허위 비답(批答)을 창작해 내어 전파시켜 화 (禍)를 전가(轉嫁)시키는 계제(階梯)를 만들었는데, 황하신(黃夏臣)이 한번 보 았다는 것 때문에 잡아다 국문하여 곤장을 쳐서 죽게 하였으니, 마땅히 복관 (復官)시키고 증직(贈職)시켜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일찍이 내가 잠저(潛邸)에 있을 적에 황하신(黃夏臣)이 주원(廚院)의 낭관(郎 官)이 되었으므로, 그의 순박하고 근신함을 벌써 알았었다. 특별히 복관(復官) 시키고 증직(贈職)하도록 하라.” 하였다.(후략)</p>	<p>鎮遠曰：“湖右，自是士大夫所居，向 來凶黨，欲爲網打之計，創出僞批，而 傳播作嫁禍之階梯。黃夏臣以一見之 故，拿鞫杖斃。宜復官贈職矣。”上 曰：“曾在潛邸時，夏臣爲廚院郎，已 知其淳謹。特爲復官贈職。”</p>
<p>영조 5권, 1년(1725) 을사 / 청 옹정(雍正) 3년) 4월 8일(을해) 2 번째기사 비변사에서 사용원 시 산의 작별인에 대한 처벌을 논하다</p>	<p>비변사(備邊司)에서 아뢰기를, “사용원(司饗院) 초기(草記)로 인하여 어기(御器)를 번조(燔造)할 때 쓰이는 빨나무를 대는 시산(柴山)의 작별인(斫伐人)을 엄하게 처벌하라는 명을 내리 셨는데, 작별인은 원릉(園陵)의 수목(樹木)을 도둑질한 율(律)에 의거하여 감 단(勘斷)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어기(御器)를 번조(燔造)하는 일은 사체(事體)가 비록 중하기는 하나, 원릉에 견주어 오히려 가볍다. 또한 장석지(張釋之)1046) 의 정론(正論)이 있으니, 참작해서 개정(改定)함이 옳다.” 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원릉의 나무를 훔친 율도 도배(徒配)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니, 드디어 그대로 따랐다.</p>	<p>備邊司啓：“因司饗院草記，御器燔造 柴山斫伐人嚴處事，命下矣。斫伐人， 宜依盜園陵樹木律勘斷。”批曰：“御 器燔造，事體雖重，比園陵猶輕。亦 有張釋之正論，參酌改定可也。”復啓 言，盜陵木，律不過徒配，遂從之</p>
<p>영조 5권, 1년(1725)</p>	<p>남원(南原)의 유생 박시도(朴是道) 등이 상소하여 성당창(聖堂倉)에 세납(稅</p>	<p>南原儒生朴是道等，上疏言聖堂倉稅納</p>

<p>을사 / 청 옹정(雍正) 3년) 4월 17일(갑신) 2번째기사 유생 박시도 등이 세납의 어려움을 말하고, 동지 김시성이 호포제를 아뢰다</p>	<p>納)하는 괴로움을 말하고, 비국미(備局米)와 경진미(京賑米)를 포소(浦所)에 내보내라는 명을 도로 거두기를 청하였으며, 이어서 운봉 영장(雲峰營將)을 본부에 도로 설치할 것을 청하였다. 동지(同知) 김시성(金始聲)이 상소하여 사치를 금할 것을 청하였고, 또 양역(良役)의 백골 징포(白骨徵布)의 억울함과 각항(各項)의 투속(投屬)하는 폐단을 말하였으며, 또 통영(統營)이 전부 감소된 곳이 많음을 말하여 군액(軍額)을 양감(量減)해 줄 것을 청하였다. 이어서 호포법(戶布法)을 시행하기를 청하니,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겠다고 비답하였다.</p>	<p>之苦，請備局米、京賑米，還寢出浦之令，仍請雲峰營將，還設於本府。同知金始聲，上疏請禁奢侈，又言良役白骨徵布之冤，各項投屬之弊，又言統營全耗之夥，請量減軍額，仍請行戶布法，批令廟堂稟處。</p>
<p>영조 5권, 1년(1725) 을사 / 청 옹정(雍正) 3년) 4월 25일(임진) 4번째기사 함경 감사 유승이 친기위의 선발을 청하고, 이정주가 북관의 문제를 논하다</p>	<p>(전략)이정주(李挺周)가 아뢰기를, “북관(北關)의 삼황(蔘黃)1117) 등의 공물(貢物)은 고을의 대소(大小)에 따라 분정(分定)한 것이지만, 혹은 고을은 큰데 결(結)이 적은 경우가 있기도 하고, 혹은 고을은 작는데 결이 많은 경우가 있기도 하니, 백성들이 억울하다고 일컫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전결(田結)의 총수(總數)를 가지고 평균하여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고, 유승이 내려간 뒤에 장문(狀聞)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p>	<p>(전략) 挺周曰：“北關蔘黃等貢物，從邑大小分定，而或有邑大結小者，或有邑小結多者，民之稱冤固矣。以田結摠數，平均磨鍊宜矣。” 崇請下去後狀聞，從之。</p>
<p>영조 6권, 1년(1725) 을사 / 청 옹정(雍正) 3년) 5월 5일(임인) 1번째기사 경소전에서 단양절 제사를 지내다</p>	<p>임금이 경소전(敬昭殿)에 제사를 지냈는데, 오늘이 단양절(端陽節)이기 때문이었다.</p>	<p>壬寅/上祀于敬昭殿。以端陽節也。</p>
<p>영조 6권, 1년(1725) 을사 / 청 옹정(雍正) 3년) 5월 6일(계묘) 1</p>	<p>(전략)홍치중이 말하기를, “국가의 저축(貯蓄)이 탕갈(蕩竭)되어 전에는 진홀청(賑恤廳)에 수십만 석(石)을 보유하고 있던 것이 지금은 겨우 수만 석에 불과하니, 혹시 수재(水災)나</p>	<p>(전략) 致中曰：“國儲蕩竭，賑廳舊有數十萬石，今纔爲數萬石。脫有水旱，將何以賑濟乎？近來米賤云，如得</p>

<p>번째기사 지사 홍치중이 방만규의 상소와 공명첩에 관해 아뢰다</p>	<p>한재(旱災)가 닥친다면 장차 어떻게 진제(賑濟)할 수 있겠습니까? 근래 쌀값이 떨어졌다고 하니, 만약 공명첩(空名帖)1144 수천 장을 내면 수천 석의 곡식을 사들일 수가 있겠습니다.”</p> <p>하고, 시독관(侍讀官) 서종섭(徐宗燮)은 말하기를, “이것은 벼슬을 파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며, 더구나 백성들이 사기를 원치 않고 한정(閑丁)도 또한 많이 잃게 될 것이니, 다만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손해가 있게 될 것입니다.”</p> <p>하니, 임금(上)이 이르기를, “관직(官職)과 작위(爵位)가 명칭은 비록 같지만 일은 다르다. 이것으로 사들인 곡식을 경비(經費)로 쓰는 것은 진실로 안될 것이지만 진휼(賑恤)하는 자본으로 쓰는 것은 경비로 쓰는 것과는 다르니, 1천 장만 제급(題給)하는 것이 좋겠다.”</p> <p>하였다.</p>	<p>數千張空名帖，可糴累千石穀矣。”侍讀官徐宗燮曰：“此與賣官無異。況民不願買，而閑丁亦多見失，非徒無益，反有損矣。”上曰：“官與爵，名雖同，事則異。此用於經費，則固不可也，賑資則有異，只給千張可矣。”</p>
<p>영조 6권, 1년(1725) 을사 / 청 옹정(雍正) 3년) 5월 11일(무신) 6번째기사 사간원에서 이사상이 봉상·김수 등의 방형을 간하다</p>	<p>또 아뢰기를, “강계 부사(江界府使) 최필번(崔必蕃)은 과외(科外)의 초피(貂皮)와 인삼(人蔘)을 강제로 받아들여 서울로 실어 보냈는데, 간 곳이 명백하지 않으므로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필번을 파직시키소서.”</p> <p>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p>	<p>又啓曰：“江界府使崔必蕃，勒捧科外貂蔘，馱送京中，去處不明，人多致疑。請崔必蕃罷職。”不允。</p>
<p>영조 6권, 1년(1725) 을사 / 청 옹정(雍正) 3년) 5월 25일(임술) 2번째기사 사간원에서 이사상과</p>	<p>사간원(司諫院)1242) 에서 전일에 아뢴 것을 다시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이사상(李師尙)에 대한 논계(論啓)에 이르러서는 그 내용을 고치기를, “이 사상은 본디 음흉하고 사특한 사람으로 은밀히 흥적 임부(林溥)를 사주하여 무옥(誣獄)을 날조하였었는데, 그 일의 실정이 점차 드러나 간사한 정상이 발각되게 되자, 임연(林演)을 짐독(鳩毒)으로 살해하여 근본을 엄폐해 버렸습</p>	<p>諫院【獻納李倚天。】申前啓，不允。至師尙之啓，改其措語曰：“師尙本以凶譎陰慝之人，陰喉凶溥，構成誣獄，事情漸露，奸狀將發，則鳩殺林演，掩滅根本。曾忝嶺臬，當廚院移直之日，</p>

<p>광주 목사 이의저를 탄핵하다</p>	<p>니다. 일찍이 영얼(嶺臬)1243) 로 있을 적에 주원(廚院)1244) 에 이직(移直)하는 날을 당하여 멋대로 연회를 베풀고 풍악을 벌였으므로, 대간(臺諫)에서 준엄한 소장(疏章)을 올렸고 성고(聖考)께서 대단히 증오한 나머지 오랫동안 금고(禁錮)시키고 녹용(錄用)하지 않았었습니다. (중략) 또 아뢰기를, “광주 목사(光州牧使) 이의저(李宜著)는 부임한 처음에 주공(廚供)을 성대하게 진설하게 하고 나서 며칠 뒤에는 반수(盤數)를 줄이게 하고는 그 찬품(饌品)을 계산하여 전화(錢貨)로 값을 정하였는데, 1개월에 거두어 들인 것이 거의 수백 냥을 넘었습니다. 기타 백성을 침탈하여 자신을 살찌운 일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며, 그의 경내(境內)에 문간공(文簡公) 이민서(李敏敘)의 사우(祠宇)가 있는데 이의저가 군졸을 보내어 그 사우를 헐고 재목은 관가로 실어다가 마구(馬廐)를 지었습니다. 그가 탐욕을 부리고 정인(正人)을 해친 일에 대해 엄한 징벌이 없을 수 없습니다. 파직시키고 서용하지 마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게 하였다.</p>	<p>肆宴張樂，臺章峻發，聖考深惡，久錮不錄。(중략) 又啓：“光州牧使李宜著，莅官之初，盛設廚供，數日之後，卽減盤數，計其饌品，折以錢貨，一月之收，殆過數百，其他虐民肥己之事，不一而足。境內有文簡公李敏叙祠宇，宜著發軍曳倒，輸入官家，營作馬廐。貪婪毒正，不可不嚴懲，請罷職不敘。” 依啓。</p>
<p>영조 6권, 1년(1725) 을사 / 청 옹정(雍正) 3년) 6월 1일(정묘) 6번째기사 경기 감사 유명홍의 장계로 패선된 곡물 가운데 미수된 것을 탕감시키다</p>	<p>패선(敗船)된 곡물(穀物) 가운데 미수된 것을 탕감시키라고 명하니, 경기 감사(京畿監司) 유명홍(柳命弘)이 장계(狀啓)를 올려 청한 데에 따른 조치이다.</p>	<p>命蕩滅敗船穀物之未收者。 因京畿監司俞命弘狀請也。</p>
<p>영조 6권, 1년(1725) 을사 / 청 옹정(雍正) 3년) 6월 11일(정축) 1번째기사</p>	<p>태학생(太學生) 정유(鄭樛) 등이 상소하여 역적을 토죄하였는데, 임금이 노하여 귀양 보내라고 명하였다가 승선(承宣)1287) 이 신구(伸救)함에 따라 그 명을 도로 중지하였다. 그 상소의 대략에 말하기를, “아! 전하(殿下)께서 무함을 받은 것은 천고에 씻기 어려운 악명(惡名)이라고</p>	<p>丁丑/太學生鄭樛等上疏討逆，上怒竄之，因承宣伸救，還寢之。 其疏略曰：嗚呼！殿下之受誣，可謂千古難洗之惡名，而式至今日，終未見其洞然昭晰。</p>

<p>역적의 토죄를 간하는 태학생 정유 등의 상소문</p>	<p>할수 있는데, 오늘날에 이르도록 끝내 환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 등은 비록 미천한 위포(韋布)1288)의 신분이지만 또한 다같은 전하의 신자(臣子)이니, 어떻게 직분 밖의 일이라는 것으로 혐의스럽게 여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 과거 신축년(1289)에 저위(儲位)를 책립할 적에 일종의 흉역(凶逆)스런 무리들이 의혹과 분노를 크게 일으켰는데, 그때 유봉휘(柳鳳輝)가 이를 주창하고 군간(群奸)들이 이를 계승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위(儲位)의 건립을 논하면 반드시 '이는 폐립(廢立)하려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대리(代理)로 정사를 다스릴 것을 논하면 반드시 '이는 찬탈(篡奪)하려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의도가 '임금의 춘추(春秋)가 한창때이고 침선(寢膳)에 아무 탈이 없는데도 조정에 있는 여러 신하들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저군(儲君)을 끼고 폐립하고 찬탈하려는 것이다.'라고 여긴 것입니다.(후략)</p>	<p>臣等雖韋布之賤，亦一殿下之臣子也。其何敢以出位爲嫌，而不爲之一言哉？嗚呼！粵在辛丑建儲之日，一種凶逆之輩，大生疑怒，鳳輝倡之，群奸繼之。論建儲，則必曰是廢立也，論代理，則必曰是篡奪也。此其意蓋曰，君上春秋鼎盛，寢膳無愆，而在廷諸臣，無他端而挾儲君，爲廢立篡奪之事云爾也。(후략)</p>
<p>영조 6권, 1년(1725) 을사 / 청 옹정(雍正) 3년) 6월 21일(정해) 9번째기사 홍양의 나로도를 다시 태복시에 예속시키고 목관을 설치하다</p>	<p>홍양(興陽)의 나로도(羅老島)를 다시 태복시(太僕寺)에 예속시키고 목관(牧官)을 설치하였다. 나로도의 목장(牧場)은 폐지된 지 오래 되었다가 기해년(1366)에 특별히 제주도(濟州島)의 종마(種馬) 1백80여 필을 사들여 섬에 방목(放牧)하여 왔는데, 이때에 이르러 태복시의 계청(啓請)으로 인하여 이 명령이 있게 되었다.</p>	<p>復以興陽羅老島，屬太僕，設牧官。島廢牧場久矣。己亥別質濟州取種馬百八十餘匹，放島中，至是，因太僕啓，有是命。</p>
<p>영조 7권, 1년(1725) 을사 / 청 옹정(雍正) 3년) 7월 1일(병신) 7번째기사 장령 최도문이 역적의 토죄와 심수현·상주</p>	<p>장령(掌令) 최도문(崔道文)이 상소(上疏)하여 토복(討復)의 의리를 아뢰고, 또 심수현(沈壽賢)의 소어(疏語)를 헤아릴 수가 없다고 논하며 섬[島]에 안치(安置)하자고 아뢰는 것을 윤택(允許)할 것을 청하였다. 또 상주 목사(尙州牧使) 권부(權孚)가 첨정(簽丁)1399) 하고 돈을 징수(徵收)하여 탐도(貪饕)하는 형상과, 회령 부사(會寧府使) 이징휴(李徵休)가 흉당(凶黨)에게 아첨하여 아부하고 자부(子婦)를 박축(迫逐)한 죄와, 선공감역(繕工監役) 심여경(沈餘慶)은 박세당</p>	<p>掌令崔道文上疏，陳討復之義，又論沈壽賢疏語之叵測，請允島置之啓。又論尙州牧使權孚簽丁徵錢貧饕之狀，會寧府使李徵休諂附凶黨，迫逐子婦之罪，繕工監役沈餘慶稱以朴世堂門徒，廢卒哭後上食之事，請并刊版。又論</p>

<p>목사 권부 등을 탄핵하다</p>	<p>(朴世堂)의 문도(門徒)라 일컬으면서 졸곡(卒哭) 후에 상식(上食)하는 일을 철폐(撤廢)한 일들을 논핵하며 모두 사판(仕版)1400)에서 삭제할 것을 청하였다. 또 판윤(判尹) 권성(權暉)의 재주와 식견은 사무에 통달 숙련하였고, 수찬(修撰) 김진상(金鎭商)의 경학(經學)은 정밀하고 투철함을 논하면서 조신(朝臣)의 수위(首位)에 초치(招致)할 것을 청하니, 임금(上)이 단지 권부(權孚)의 일만 윤허하고 나머지는 모두 따르지 않았다.</p>	<p>判尹權暉之才識通鍊，修撰金鎭商之經學精透，請召致朝端，上只允權孚事，餘皆不從。</p>
<p>영조 7권, 1년(1725) 을사 / 청 옹정(雍正) 3년) 7월 19일(갑인) 1번째기사 오랜 가뭄을 근심하는 교서를 내리다</p>	<p>임금이 오래 가뭄을 근심하여 하교하기를, “아! 나라는 백성을 근본으로 삼고 백성은 먹는 것으로써 하늘을 삼는데, 백성이 먹을 것이 없으면 장차 어떻게 백성의 구실을 하며 나라가 백성이 없으면 장차 어떻게 나라의 구실을 하겠는가? 아! 8도(八道) 백성의 곤궁하고 초췌(憔悴)함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한데다 해마다 거듭 흉년이 들고 역질(疫疾)마저 겹쳤으며, 탐관오리(貪官汚吏)는 백성의 재물을 갈태질하는 것을 일삼아서 군포(軍布)와 신역(身役)을 죽은 사람에게도 함부로 징수(徵收)하고 있으니, 슬프도다. 백성[生靈]이 앞으로 어떻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다 봉당(朋黨)을 만들어 아부(阿附)하는 풍습이 요즘보다 심할 때가 없어서 나라의 일은 생각 밖에 두고 한 가지도 시행하거나 조처하는 일이 없으니, 이것이 누구의 허물이겠는가? 진실로 나의 허물이다. 생각이 이에 미치매 잠자리에 들어도 잠을 자지 못하겠고 밥상을 대하여도 밥맛을 모르겠다. 밤낮으로 기원(祈願)하는 바는 다만 금년의 농사가 조금이나마 풍년이 드는데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큰 가뭄이 흑심하여 삼남(三南)1508)의 농사는 이미 큰 흉년으로 판정이 되었다. 아! 백성들이 나의 덕이 부족한 탓으로 인하여 이런 참혹한 재해(災害)를 받았으니, 내가 흰 쌀밥을 먹더라도 어찌 편안하겠는가? 만약 한번 세찬 비가 쏟아지지 않는다면 죽음이 장차 다가올 것이니, 내 몸이 희생(犧牲)을 대신하여 직접 기도(祈禱)하는 일을 조금도 소홀히 할 수가 없</p>	<p>甲寅/上以久旱爲憫，教曰： 噫！國以民爲本，民以食爲天。民無食而將何以爲民，國無民，而將何以爲國乎？嗚呼！八路生民之困瘁，日以益甚，而連歲荐饑，加以疾疫，貪官汚吏，剝割爲事，軍布身役，侵徵白骨。哀嗟生靈，將何以保生耶？且朋比之習，未有甚於近日，國事置之度外，無一措施，是誰之愆？寔予之過。言念及此，當寢忘寐，當餐忘味。日夜所祈願者，惟在今年穡事之稍登，而亢旱斯酷，三南農事，已判大歉。吁嗟生靈，因予涼德，受此慘災，玉食奚安？若未一霽，大命近止。代犧親禱，其不可少忽。不卜日以今月二十一日，予當親禱于社壇。嗟爾近密之臣，代予草教，宜自政府，廣求直言，匡予不逮。言雖過中，予當嘉納。</p>

	<p>다. 좋은 날을 택하지 말고 이달 21일에 내가 마땅히 사직단(社稷壇)에서 직접 기도하겠다. 아! 가까이 있는 신하들은 나를 대신하여 교지(教旨)를 기초(起草)하되, 마땅히 의정부(議政府)로부터 널리 직언(直言)을 구하여 내가 미치지 못하는 점을 바로잡게 하라. 말한 것이 비록 중도에 지나친다 하더라도 내가 마땅히 가납(嘉納)하겠다.”</p> <p>하니, 승정원에서 청하기를, “대찬(代撰)하지 말고 상교(上教)로써 반포(頒布)하소서.”</p> <p>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p>	<p>政院請勿代撰，而以上教頒布，上從之。</p>
<p>영조 7권, 1년(1725) 을사 / 청 옹정(雍正) 3년) 7월 21일(병진) 1번째기사 사직단에서 기우제를 거행하다</p>	<p>임금이 사직단(社稷壇)에서 기우제(祈雨祭)를 거행하였다</p>	<p>丙辰/上行祈雨祭於社壇</p>
<p>영조 7권, 1년(1725) 을사 / 청 옹정(雍正) 3년) 7월 22일(정사) 4번째기사 민진원의 논핵으로 이 공윤을 변경으로 정배 하다</p>	<p>좌의정 민진원(閔鎭遠)이 아뢰기를, “이공윤(李公胤)이 죄를 당하였을 때에 대간(臺諫)에서 아뢴 조어(措語)에 ‘대행조(大行朝)께서 편찮으실 때에 약성(藥性)이 준극(峻劇)한 약제(藥劑)를 많이 썼으므로 마침내 망극(罔極)한 슬픔을 초래(招來)했다.’ 하니, 그 죄목(罪目)을 보면 매우 놀랍고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신(臣)이 약원(藥院)에 들어가서 일기(日記)를 상고하여 보니, 이공윤이 시킨 바의 약으로 전후(前後)에 진어(進御)한 것은 단지 도인승기탕(桃仁承氣湯) 두서너 첩(貼)뿐인데, 이것은 매우 준극한 약제는 아니며, 병세가 위독했을 때에 쓴 계지탕(桂枝湯)은 이것은 온열(溫熱)에 속하는 약제이니, 준극한 약제를 많이 썼다는 말은 거짓으로 돌아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다만 병세가 위독하실때에 소명(召命)이 있었는데 즉시 대령(待令)하지 못한 것은 매우 버릇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p>	<p>左議政閔鎭遠奏曰：“李公胤被罪時，臺啓措語，以大行朝違豫時，多用峻劑，竟致罔極之痛云。觀其罪目，極爲驚痛矣。臣入藥院，考見日記，則公胤所命之藥，前後進御者，只桃仁承氣湯數貼，而此非極峻之劑，大漸時桂枝湯，係是溫熱之劑，則多用峻劑之說，未免歸虛。但大漸時，有召命，而不卽待令者，極爲無狀，而周年島配，足懲其罪，似有參酌之道。”上曰：“孝廟朝，申可貴亦不免伏法。公</p>

	<p>년(周年)을 도배(島配)하였으니, 족히 그 죄를 징계하였을 것이므로 참작하는 방도가 있어야 할 듯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효종조(孝宗朝) 때에 신가귀(申可貴)도 또한 복주(伏誅)를 면치 못하였으니, 이공윤도 마땅히 일율(一律)1531) 에 두어야 하나 대신(大臣)의 아뢰는 바가 뜻이 또한 있으므로 마땅히 처음에 관하(判下)한데 의하여 아주 먼 변경(邊境)으로 정배(定配)하라.”</p> <p>하였다.</p>	<p>胤宜置一律，而大臣所達，意亦有在，依當初判下，極邊定配。”</p>
<p>영조 7권, 1년(1725) 을사 / 청 옹정(雍正) 3년) 7월 22일(정사) 7번째기사</p> <p>탄일에 올리는 방물 등을 삼남의 진휼 물자에 보충시키다</p>	<p>하교(下教)하기를,</p> <p>“삼남(三南)지방에 해마다 흉년이 거듭 들었는데 금년에 또 큰 흉년이 들었으니, 어찌 특별히 돌봐서 구휼하는 방도를 베풀지 않겠는가? 대전(大殿)의 탄일(誕日)에 올리는 방물(方物)과 두 동조(東朝)1532) 의 탄일(誕日)에 올리는 방물외의 각전(各殿)의 탄일의 물膳(物膳)은 봉진(封進)하지 말고 그 가미(價米)를 진휼(賑恤)하는 물자에 유치(留置)하여 보충(補充)하도록 하라.”</p> <p>하였다.</p>	<p>教曰：“三南連歲荐飢，今又大歉，豈無特施顧恤之道乎？大殿誕日方物及兩東朝誕日方物外，各殿誕日物膳，勿爲封進，以其價米，留補賑資。”</p>
<p>영조 7권, 1년(1725) 을사 / 청 옹정(雍正) 3년) 7월 25일(경신) 5번째기사</p> <p>민진원과 이의현이 청하여 사옹원 직장과 보사를 증원하고 주부는 감하다</p>	<p>사옹원(司饗院)에 직장(直長) 2명과 봉사(奉事) 4명을 증원(增員)해 두고 주부(主簿) 3명은 감원하도록 명하였다. 이보다 앞서 신축년(1537)에 관제(官制)를 변통(變通)할 때에 참하(參下) 5과(窠)를 다 주부(主簿)로 만들어서 아침에 임명했다가 저녁에 좌천(左遷)시키니 일이 대부분 소홀하기 때문에 좌의정 민진원(閔鎭遠)과 이조 판서(吏曹判書) 이의현(李宜顯)이 아뢰는 바로 인하여 이런 명령이 있게 되었다.</p>	<p>命增置司饗院直長二員、奉事四員，減主簿三員。先是，辛丑官制變通時，參下五窠，盡作主簿，朝除夕遷，事多踈忽，故因左議政閔鎭遠、吏曹判書李宜顯所奏，有是命。</p>
<p>영조 7권, 1년(1725)</p>	<p>(전략). 그리고 가만히 듣건대 지난번에 대내(大內)에서 여러 번 표지(標紙)를</p>	<p>竊聞頃者，自大內，屢降標紙，取入</p>

을사 / 청 옹정(雍正)
3년 8월 5일(경오) 2
번째기사
형정의 공평함과 진흥
정책에 관한 장령 최
도문의 상소문

내려 호부(戶部)와 군문(軍門)에서 전포(錢布)를 받아들이게 했으므로, 유신(儒臣)이 진계(陳戒)하였으나 도리어 미안한 분부로 위로하시니, 외간(外間)의 전설(傳說)에 혹 전하께서 급하지 않은 용도를 준비하시는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상(聖上)의 덕에 누(累)가 됨이 마땅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만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반성(反省)하셔서 속히 고치소서. 그리고 지난번 성상의 덕화가 다시 시작하는 시점에서 무함(誣陷)을 입은 두 선정(先正)이 이에 조두(俎豆)의 제향(祭享)을 회복하여 특별히 절혜(節惠)1553)의 은전(恩典)을 베풀면서도 신치운(申致雲)과 같이 선정(先正)을 욕하고 선현(先賢)을 해친 자에게 오히려 병예(屏裔)1554)의 형벌을 아끼시니, 이미 벽사위도(辟邪衛道)하는 도리에 미흡함이 있습니다. 또 성균관(成均館)과 사학(四學)의 상소에 대한 비답(批答)에서도 불평(不平)의 뜻을 현저하게 보이시어 사설(邪說)은 더욱 번져가게 하고 대의(大義)는 더욱 어두워지게 하였으니, 다만 전하께서는 통쾌한 처분을 내리셔서 사문(斯文)1555)을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그리고 백성이란 임금이 하늘처럼 여기는 바로 나라가 의지하는 바입니다. 우리 숙종(肅宗)께서는 즉위하시던 처음에 신해년(1556) 이상의 쌓여진 포핍(逋欠)을 특명으로 건감(蠲減)하고 탕척(蕩滌)하여 주셨으니, 흉년을 만나 궁핍한 사람을 진휼(賑恤)하는 성덕(盛德)이 어찌 전하께서 마땅히 계승하실 바가 아니겠습니까? 다만 원하건대 묘당(廟堂)에 굽어 물으셔서 1년의 포조(逋租)를 양감(量減)하여 백성을 구급(救急)하는 실제의 혜택을 보이시고 이밖에 영문(營門)의 환곡(還穀)이나 도민(都民)에게 징수할 채무(債務) 등의 일도 또한 마땅히 반행(頒行)하는데 있어 일분의 민폐(民弊)라도 덜어줄 것을 강구(講究)하게 하소서.”

하고, 또 말하기를,
“호부(戶部)의 수입되는 바가 그전에 비하면 크게 줄어졌는데도 그 비용은 공가(貢價)를 미리 받는 것보다 더함이 있으므로 실체는 쌓여진 고질이 되었으

戶部及軍門錢布。 儒臣陳戒，而反勤未安之教。 外間傳說，或疑殿下需不急之用，其爲累聖德，當如何哉？ 惟願殿下，反省而過改焉。 乃者聖化更始，被誣之兩先正，爰復俎豆之享，特加節惠之典，而如申致雲醜正毒賢者，尙靳屏裔之典， 已有歎於辟邪衛道之道。 且於館學疏批，顯示不平之意，使邪說益熾，大義愈晦。 惟殿下，快賜處分，以重斯文焉。 民者，君之所天，國之所依也。 我肅廟卽阼之初，辛亥以上積欠，特命蠲蕩。 遇荒賑乏之盛德，豈非殿下所當紹述者乎？ 惟願俯詢廟堂，量減一年逋租，以示急民之實惠，此外營門還穀及都民徵債等事，亦宜講究頒行，以除一分民弊。

又曰：
戶部所入，比前大縮其費，則有加貢受價預。 實爲積痼之弊，經用耗匱，職由於此。 雇價之費，出自兵部，而奸冒日滋，耗蠹益甚。 該掌本無重記，伸縮弛張，一委下吏舞奸之手。 臣謂貢物之不切於需用者，特加裁省，預受之價，亦宜隨用隨給，雇價分俵之際，所謂追後成冊，按名覈實，以澄奸濫之

	<p>니, 경비의 쓰임이 모두 없어지는 것도 이에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고가(雇價)의 비용은 병부(兵部)로부터 나오는데 간사(奸詐)한 것이 날로 번져서 소모됨이 더욱 심하나, 그 직무를 맡은 관사(官司)에는 본래 중기(重記)1557)가 없으므로 늘였다 줄였다 하고 늦추었다 당겼다 하는 것을 한결같이 하리(下吏)의 무문 농법(舞文弄法)하는 수법에다 맡겼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공물(貢物)이 수용(需用)에 절실하지 않은 것은 특별히 재량(裁量)하여 감해 주고 미리 받아들이는 공가(貢價)도 또한 용도에 따라 지급하며 고가(雇價)를 분표(分俵)하는 즘음에 이른바 추후 성책(成冊)한 것은 이름을 상고하여 사실을 조사해서 간사하고 외람된 근원을 맑게 하소서.”</p> <p>하고, 또 말하기를,</p> <p>“올해의 대단한 가뭄은 근래에 없던 바이니, 위로 어공(御供)의 복용(服用)으로부터 아래로 백관(百官)의 녹봉(祿俸)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모두 임시 방편으로 감면(減免)하게 하며 각 군문(軍門)과 아문(衙門)에 약간 남아도는 재력(財力)으로 진휼(賑恤)하는 밑천에 보충이 될 만한 것에 대해서는 모두 임시로 빌려 주게 하고, 호부(戶部) 공가(貢價) 외에 선혜청(宣惠廳)에 지급할 쌀도 진실로 급하지 않은 것은 임시로 정지하여 유치(留置)하게 한다면 더욱 황정(荒政)1558)에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송(宋)나라 효종(孝宗)이 말하기를, ‘진휼(賑恤)의 정책(政策)엔 사실을 캐내어 일찍 하는 것만한 것이 없다.’고 하였으니, 다만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p> <p>하니, 임금이 우악한 비답을 내려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였다.</p>	<p>源。</p> <p>又曰：</p> <p>今年亢旱，挽近所無。上自御供服用，下至百官俸祿，一皆權從減免，至於各軍門、衙門稍饒財力，可補賑資者，竝令權借，戶部貢價之外，惠廳支供之米，苟係不急，權令停留，則尤有裨於荒政，而宋孝宗之言曰：“賑政莫如得實而早爲。”惟願加意焉。</p> <p>上賜優批，令廟堂稟處。</p>
<p>영조 7권, 1년(1725) 을사 / 청 옹정(雍正) 3년) 8월 11일(병자)</p>	<p>장령(掌令) 박필정(朴弼正)이 상소하여 토역(討逆)·진대(賑貸)의 대책을 논하고, 또 말하기를,</p> <p>“내수사(內需司)의 재화(財貨)를 관장(管掌)하는 것을 환관 잡류(宦官雜流)로</p>	<p>掌令朴弼正，上疏論討逆、賑貸之策，又曰：</p> <p>內需司管財貨，不宜以宦官雜流處</p>

<p>2번째기사 토역, 진대의 대책, 내수사의 일에 관해 박필정이 상소</p>	<p>써 처리하게 하는 것은 마땅치가 않습니다. 의당 사대부(士大夫)에서 선발하여 그 관원(官員)으로 삼는 것을 한결같이 각 관사(官司)와 같이 한다면 거조(舉措)가 빛나게 밝고 법제(法制)가 두루 갖추어져서 그것이 성덕(聖德)에 도움이 되는 것이 어찌 적다고 하겠습니까? 또 듣건대, ‘외방(外方)에서 서로 소송(訴訟)하는 전답(田畓)이 대부분 내수사(內需司)에 들어간다.’고 하고 낙송(落訟)1591) 된 자는 짐짓 내수사에 납속(納屬)하게 하는 것은 아주 몹시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내수사는 그 받아들이는 것을 이롭게 여겨 헤아려 수세(收稅)하게 되니, 더욱 조가(朝家)에서 신칙한 뜻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원컨대 곧 조사해 내어 돌려주게 하소서.”</p> <p>하고, 또 액정서(掖庭署) 하례(下隸)의 무리가 야금(夜禁)을 범하면서 함부로 다니는 상황을 말하면서 엄칙(嚴飭)을 가할 것을 청하니, 비답(批答)하기를, “요즘의 일은 나의 뜻을 이미 유시(諭示)하였으니, 다시 무슨 많은 말을 하겠는가? 민사(民事)를 위하여 계책을 진달한 것은 진실로 매우 마땅한 일이니, 유의(留意)하지 않겠는가? 신칙(申飭)할 만한 것은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거행(舉行)하도록 하겠다. 내수사의 설행한 일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 되었으니, 이제와서 새삼스럽게 논할 수 없다. 또 내수사에서 원래 전답(田畓)의 세(稅)를 함부로 받아들인 일이 없으니, 그대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하였다.</p>	<p>之。宜選士大夫，爲其官員，一如各司，則舉措光明，法制周備，其有補於聖德者，豈淺鮮哉？且聞外方相訟之田畓，多入於內司云。落訟者之故爲納屬於內司，已是萬萬絕痛，而內司之利其所納，量打收稅，尤有乖於朝家申飭之意。願卽查出還給。</p> <p>又言掖隸輩犯夜橫行之狀，請加嚴飭，批曰：“近日事，予意已諭，更何多言，而爲民事陳策，誠甚得宜，可不留意？可以申飭者，令廟堂舉行。內司之設，其來已久，今不可創論。且內司元無田畓冒取之事，則無乃爾之誤聽耶？”</p>
<p>영조 7권, 1년(1725) 을사 / 청 옹정(雍正) 3년) 9월 10일(갑진) 3번째기사 내수사에서 고래의 눈을 징납하는 일로 경</p>	<p>경상 감사(慶尙監司) 조영복(趙榮福)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내수사(內需司)의 첩정(牒呈)에 고래[鯨魚]의 눈과 수염을 조금 보냈다는 일로 인하여 감세관(監稅官)을 형배(刑配)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고래의 눈은 다만 하찮은 물품이고 원래 긴급하게 쓰이는 것이 아닌데, 해궁(該宮)에서 감히 기한을 정하여 징납(徵納)하라는 뜻으로써 천청(天聽)을 번거롭게까지 하였으니, 더욱 몹시 외람되고 잔단 일인데도 전하께서 퇴척(退斥)하지 않으시</p>	<p>慶尙監司趙榮福上疏，略曰： 因內需司牒呈，以鯨魚眼鬚微送事，有監稅官刑配之命。鯨眼只是微細之物也，元非緊切之用，而該宮敢以刻期懲納之意，至煩天聽，殊極猥屑，而殿下不爲退斥，乃下此教。臣固知殿下之</p>

<p>상 감사 조영복이 상소</p>	<p>고 곧 이런 분부를 내리시니, 신은 진실로 전하의 뜻이 고래의 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가만히 하방(遐方)의 소민(小民)이 반드시 전하께서 한낱 고래의 눈 때문에 이런 처분이 있다고 할까 두렵습니다.”</p> <p>하니, 비답하기를,</p> <p>“감색(監色)의 무리들이 계하 공사(啓下公事)1670) 를 준행(遵行)하지 않기 때문에 선조(先朝)에서 판부(判付)한 것을 인용하여 징치(懲治)하게 한 것이고 고래 눈에 대한 일은 판부에서 거론하지 않았으니, 징납(徵納)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이에서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내가 어찌 하찮은 물품을 아까워서 이런 일을 하였겠는가? 고래의 눈을 본도(本道)에서 쪼개어 버리게 하여, 나의 뜻을 명백히 보이라.”</p> <p>하였다. 그때에 연일포(延日浦)에 백성이 세 마리의 고래[鯨魚]를 잡았는데 감세관(監稅官)이 궁차(宮差)에게 이익을 나누어 주지 않았으므로, 궁차가 돌아와서 내수사(內需司)에 호소하여 엄중한 분부가 있기까지 되었으니, 이런 까닭으로 조영복(趙榮福)의 상소가 이와 같았던 것이다.</p>	<p>意，不在於鯨眼，而竊恐遐方小民，必謂殿下，爲一鯨眼，有此處分也。</p> <p>批曰：“監色輩，不遵啓下公事，故引先朝判付，使之懲治，而鯨眼事，不爲學論於判付，則非徵納之意，於此可見。予豈惜微物而爲此舉乎？鯨眼自本道剖去，明示予意。”時，延日浦民，得三鯨魚，而監稅官，不與宮差分利，宮差歸訴於內司，致有嚴教，故榮福之疏如此。</p>
<p>영조 7권, 1년(1725) 을사 / 청 옹정(雍正) 3년) 9월 24일(무오) 4번째기사 전 만호 이태배가 열 가지 폐단을 상소</p>	<p>전(前) 만호(萬戶) 이태배(李泰培)가 상소하여 열 가지 일을 진달(陳達)하였으니, ‘1. 기강(紀綱)이 해이하여 없어진 것, 2. 기계(器械)가 쓸모 없이 된 것, 3. 향미(餉米)1686) 를 나누어 주는 것, 4. 진졸(鎭卒)이 요역(徭役)을 부담하는 것, 5. 시초(柴草)를 독촉하여 받는 것, 6. 왜인(倭人)이 곡식을 무역하는 것, 7. 송금(松禁)이 엄격하지 못한 것, 8. 색목(色目)을 바꾸어 정하는 것, 9. 전선(戰船)을 제도(制度)로 하는 것, 10. 좌수영(左水營)을 옮겨 설치하는 것’이었는데, 묘당(廟堂)에 명하여 품처(稟處)하게 하였다.</p>	<p>前萬戶李泰培上疏陳十事，一曰紀綱懈廢，二曰器械無用，三曰餉米分給，四曰鎭卒徭役，五曰郊草責納，六曰倭人買穀，七曰松禁不嚴，八曰色目換定，九曰戰船制度，十曰左水營移設，命廟堂稟處。</p>
<p>영조 8권, 1년(1725) 을사 / 청 옹정(雍正) 3년) 10월 23일(정해)</p>	<p>장릉(長陵)1777) 능 위에 불이 났다. 임금이 정전(正殿)을 피하여 감선(減膳)하고 조정(朝廷)과 시장(市場)의 일을 정지하게 하였는데, 변복(變服)과 철악(撤樂)의 절차가 없었던 것은 바야흐로 상중(喪中)에 있었기 때문이다. 잇달아</p>	<p>長陵陵上火。上避正殿減膳，停朝市，而無變服、撤樂之節。以方在諒闇也。仍命左議政閔鎮遠詣陵奉審。</p>

<p>2번째기사 장릉에 불이 나서 능관을 추고하다</p>	<p>좌의정 민진원에게 명하여 능(陵)에 나아가서 봉심(奉審)하게 하였다. 민진원이 아뢰기를, “능관(陵官) 두 사람은 모두 과거(科擧)에 응시하고 다만 가관 능졸(假官陵卒)만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변고가 발생한 것이니, 일이 몹시 해괴하고 한탄스럽습니다.” 하니, 임금(上)이 말하기를, “능관(陵官)의 죄는 어떤 율(律)에 해당되는가?” 하였다. 예조 판서(禮曹判書) 심택현(沈宅賢)이 말하기를, “전일(前日)에 순릉(順陵)1778)에 불이 났을 때는 능관만 추고(推考)하였습니다.” 하니, 임금(上)이 말하기를, “선조(先朝)에서 능관을 잡아다 추고(推考)한 것은 마침내 죽히 능졸(陵卒)의 의도하는 바만 이루어 줄 만한 까닭에 잡아오지 않은 것이다. 지금은 반드시 묘맥(苗脈)이 있는 일이니, 능졸을 나문(拿問)하고 능관(陵官)도 또한 나치(拿致)하여 추고(推考)하라.” 하였다. 민진원이 또 아뢰기를, “이번에는 내일 정과(庭科)도 또한 행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上)이 그대로 따랐다. 인하여 하교하기를, “먼 지방에서 온 거자(擧子)가 여러 날 유체(留滯)하고 있는 것이 민망스러우니, 정과(庭科)는 날짜를 택할 것 없이 28일로 설행(設行)하라.” 하였다.</p>	<p>鎮遠奏曰：“陵官二人，皆赴學，而只有假官陵卒，故作此變，事極駭惋矣。”上曰：“陵官罪當何律乎？”禮曹判書沈宅賢曰：“前日順陵失火時，陵官只爲推考矣。”上曰：“先朝以拿推陵官，適足以中陵卒之意，故不爲之拿矣。今則必有苗脈，陵卒拿問，陵官亦拿推。”鎮遠又奏曰：“今則明日庭科，亦不可以行也。”上從之。仍教曰：“遐方擧子，多日留滯可悶。庭科不卜日，以二十八日設行。”</p>
<p>영조 8권, 1년(1725) 을사 / 청 옹정(雍正)</p>	<p>(진략) 성상의 하교에 또 이르기를, ‘백성이 가난하여 의지할 곳이 없는 것은 내가 능히 구제하여 살게 하지 못한데 연유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 오</p>	<p>(진략)聖教又曰：“赤子之顛連，由予不能濟活。”嗚呼！今日民生之困瘁，</p>

<p>3년) 10월 29일(계사) 6번째기사 천등의 이변으로 인하여 정언 임주국이 상소</p>	<p>늘날 백성이 곤궁하고 초취(焦瘁)함을 그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해마다 거둬진 기근(飢饉)의 나머지에 삼남(三南) 지방이 더욱 혹심(酷甚)하여 절후는 추수(秋收)철에 이르렀는데도, 떠도는 사람이 길에 가득하여 그들은 장차 다 죽게 되었습니다.</p> <p>신이 듣건대 옛날 우리 숙종(肅宗)께서는 을해년(1792)·병자년(1793)의 큰 흉년 든 해를 당하여 특별히 내탕고(內帑庫)의 저장을 꺼내어 여러 고을의 진휼(賑恤)하는 자본에 도와 주셨고 친히 후원(後苑)의 상수리 열매를 몸소 주워서 도성(都城) 안의 굶주린 백성에게 주셨으니, 덕의(德意)가 융후(隆厚)하여 목숨을 온전히 살린 것이 실제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임진년(1794)에는 내탕고(內帑庫)의 은(銀) 수천여 냥(兩)을 꺼내어 구렁에 빠져 죽게 될 위급함을 구제하였고, 경자년(1795)에 <숙종께서> 승하(昇遐)한 뒤로는 대왕 대비(大王大妃)께서 수봉(數封)의 은자(銀子)를 빈청(賓廳)에 내어 주면서 이르기를, ‘선왕(先王)께서 앞으로 백성을 진휼한 자본을 대비하기 위하여 궁중(宮中)에 봉치(封置)한 것이다.’고 하셨습니다. 아! 선왕께서 백성을 무휼(撫恤)하시는 지극한 뜻은 비록 편찮은 병중에 있으면서도 이와 같이 간절하셨기 때문에 백성이 사랑하여 떠받들기를 부모(父母)와 같이 여겼으며, 오늘에 와서도 말이 선왕에게 미치면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신은 내수사(內需司)에 저축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컨대 전하께서는 창고를 열어 저축을 모두 꺼내어 유사(有司)에게 내어 주어서 백성을 진휼하는 자본으로 삼게 하소서.”</p> <p>하니, 비답하기를, “진계(陳戒)한 말이 진실로 매우 절실(切實)하니, 유념(留念)하지 않겠는가?” 하였다.</p>	<p>尙何言哉? 連歲荐飢之餘, 三南尤酷, 節屆西成, 流散載路, 其將盡劉。 臣聞昔我肅廟, 當乙丙大無之歲, 特發內帑之藏 以補列邑之賑資, 親拾後苑之橡, 以給都下之飢民。 德意隆厚, 全活實多。 又於壬辰之歲, 出內帑銀數千餘兩, 以救填壑之急, 庚子禮陟之後, 大王大妃出給數封銀子於賓廳曰: “先王爲備前頭賑民之資, 封置宮中。” 嗚呼! 我先王恤民之至意, 雖在違豫之中, 若是其切, 故民之愛戴如父母, 至今日語及先王, 莫不流涕。 臣未知內需所儲幾何, 而願殿下, 傾困倒儲, 出付有司, 俾爲賑民之資焉。</p> <p>批曰: “陳戒之言, 誠甚切實, 可不留念?”</p>
<p>영조 8권, 1년(1725)</p>	<p>부응교(副應敎) 이현록(李顯祿), 교리(校理) 이병태(李秉泰)·김용경(金龍慶), 수</p>	<p>副應敎李顯祿、校理李秉泰·金龍</p>

<p>을사 / 청 옹정(雍正) 3년) 10월 29일(계사) 7번째기사 논상을 제한하도록 대간들이 진계하다</p>	<p>찬(修撰) 권적(權晷) 등이 천둥의 재변으로 인하여 진계(陳戒)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내수사(內需司)의 설치하는 사실 궁중(宮中)과 부중(府中)이 일체(一體)가 되는 뜻에 불만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전부터 전해 오는 제도를 비록 혁파(革罷)하기는 어려울지라도 궁장(宮庄)의 등속(等屬)은 마땅히 일체 억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종신(宗臣)에게 자급(資級)을 올려 주는 것과 같은 일에도 이미 매우 분수에 지나침이 많았고, 성균관 유생(儒生)에게 급제(級第)를 내리는 일도 또한 제한(制限)이 없었으며, 요즘 주청사(奏請使)나 여러 역관(譯官)의 사물(賜物)을 받는 것도 예전에 비하여 증가됨이 있으며, 그저께 어의(御醫) 3명에게 논상(論賞)하는 일도 자못 명목이 없는데 가까우니, 이것은 신 등이 너무 외설(猥褻)된 것임을 걱정하는 바입니다.” 하니, 임금의 우악한 비답(批答)을 내렸다.</p>	<p>慶、修撰權晷等，因雷異陳戒，略曰：“內需司之設，實有歉於宮府一體之義。流來之制，雖難革罷，宮庄之屬，宜一切裁抑。至若宗臣陞資，已極猥多，泮儒賜第，亦無限節。比者奏請諸譯之受賜，視古有加，日昨御醫三人之論賞，殆近無名。此臣等所以憂其太褻者也。”上賜優批。</p>
<p>영조 8권, 1년(1725) 을사 / 청 옹정(雍正) 3년) 11월 2일(병신) 6번째기사 통영의 쌀을 진휼청에 내려 기민을 구제하다</p>	<p>통영(統營)에서 구관(勾管)하는 곡미(穀米) 1만 석(石)과 벼[租] 5만 석을 진휼청(賑恤廳)에 갈라주어서 기민(飢民)을 구제하여 살리라고 명하였다. 이때에 진휼청의 창고에 저축한 것이 탕진(蕩盡)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갈라서 이송(移送)하라는 명령이 있었던 것이다.</p>	<p>命統營勾管穀米一萬石、租五萬石，劃給賑恤廳，使之濟活飢民。時，賑廳庫儲蕩然，故有此移劃之命。</p>
<p>영조 8권, 1년(1725) 을사 / 청 옹정(雍正) 3년) 11월 4일(무술) 1번째기사 경상·전라·충청도의 재해 고을에 환곡을 감하다</p>	<p>경상(慶尙)·전라(全羅)·충청(忠淸) 3도(道)의 재해를 입은 고을에 금년의 환상곡(還上穀) 4분의 1은 정봉(停捧)하라고 명하였으니, 3도(道) 감사(監司)의 장청(狀請)을 따른 것이다.</p>	<p>戊戌/命慶尙、全羅、忠淸三道被災邑，今年還穀四分一停捧。從三道監司之狀請也。</p>

<p>영조 8권, 1년(1725) 을사 / 청 옹정(雍正) 3년) 11월 12일(병오) 9번째기사 선혜청 경비로 영남 전선 별향미를 내리다</p>	<p>선혜청(宣惠廳)에 명하여 영남(嶺南) 전선(戰船)의 별향미(別餉米) 1만 석(石)을 가져와 쓰게 하였다. 이때 선혜청의 경비가 부족하였으므로 선혜청 당상(堂上) 홍치중(洪致中)이 주청(奏請)했기 때문에 이런 명령이 있게 된 것이다.</p>	<p>命宣惠廳， 取用嶺南戰船別餉米一萬石。 時， 惠廳經用不足， 惠堂洪致中奏請， 故有是命。</p>
<p>영조 8권, 1년(1725) 을사 / 청 옹정(雍正) 3년) 11월 19일(계축) 4번째기사 경창미로 제주도를 진 휼하다</p>	<p>경창미(京倉米) 4천 석(石)을 운반하여 제주도(濟州島)를 진휼(賑恤)하라고 명하였다.</p>	<p>命運京倉米四千石， 賑濟州。</p>
<p>영조 8권, 1년(1725) 을사 / 청 옹정(雍正) 3년) 11월 24일(무오) 2번째기사 왕대비에게 드릴 삭선 값의 일부로 종묘를 개수하게 하다.</p>	<p>왕대비(王大妃)에게 드릴 삭선(朔膳)1839) 값의 쌀 중에서 병오년(1840)·정미년(1841) 양년조(兩年條) 1천여 석(石)을 도감(都監)에 내어 주어 종묘(宗廟)를 수개(修改)하는 역사에 보태도록 하고, 도감에서 가져다 쓸 해조(該曹)의 물건은 진자(賑資)할 때에 쓸 것을 명하였는데, 임금(上)이 자교(慈教)를 받들어 이런 명령이 있게 된 것이다.</p>	<p>命以東朝所入朔膳價米， 丙午、丁未兩年條千餘石， 出付都監， 以補太廟修改之役， 自都監取用該曹之物， 則用於賑資。 時， 上承慈教， 有是命。</p>
<p>영조 8권, 1년(1725) 을사 / 청 옹정(雍正) 3년) 11월 26일(경신) 2번째기사 내수사 등의 쌀을 삼 남 진휼미에 보충하다</p>	<p>내수사(內需司)·어의궁(於義宮)·창의궁(彰義宮)의 쌀 6백 석(石)을 삼남(三南)에 나누어 주어 진자(賑資)에 보충(補充)할 것을 명하였다.</p>	<p>命以內需司米、於義宮米、彰義宮來六百石， 分給於三南， 以補賑資。</p>
<p>영조 8권, 1년(1725)</p>	<p>금오도(金鰲島)에 백성이 들어가 경작하도록 명하였으니, 종부시 제조(宗簿寺</p>	<p>命金鰲島， 許民入耕。 因宗簿提調啓</p>

<p>을사 / 청 옹정(雍正) 3년) 11월 26일(경신) 5번째기사 금오도에 들어가 경작하게 하다</p>	<p>提調)의 계청(啓請)에 따른 것이다.</p>	<p>請也。</p>
<p>영조 8권, 1년(1725) 을사 / 청 옹정(雍正) 3년) 12월 6일(기사) 8번째기사 해서 어사 한덕진이 사옹원의 폐단을 아뢰다</p>	<p>해서 어사(海西御史) 한덕전(韓德全)이 돌아와 사옹원(司饗院)에서 연해(沿海)의 어부(漁夫)에게 해마다 은(銀) 3냥(兩)씩을 받아들이는 폐단을 아뢰니, 임금(上)이 본원(本院)과 묘당(廟堂)에서 서로 의논하여 변통(變通)할 것을 명하였다.</p>	<p>海西御史韓德全，歸奏司饗院沿海漁夫歲捧銀三兩之弊，上命本院與廟堂，相議變通</p>
<p>영조 9권, 2년(1726) 병오 / 청 옹정(雍正) 4년) 2월 5일(무진) 1번째기사 내수사에 귀속시키려 한 평안도 증산 땅의 폐언에 대해 말하다</p>	<p>임금이 소대(召對)를 행하고 이어 말하기를, “지난날 내수사(內需司)의 보고한 바로 인해 평안도(平安道) 증산(甌山) 땅의 폐언(廢堰)을 본관(本官)으로 하여금 측량하여 내수사에 귀속시키게 하고, 다시 내수사의 관원을 보냈다. 이제 평안 도신(平安道臣)의 장계(狀啓)를 보건대, 용강 현령(龍崗縣令) 조현명(趙顯命)이 사관(查官)이 되어 논보(論報)한 바가 있는데 누누이 논열(論列)해 말이 매우 격절(激切)하다고 하니, 혹시 나의 좌지 우지(左之右之)한 바가 있음을 염려한 듯하다. 조현명은 일찍이 궁료(宮僚)2011) 가 되었는데, 문의(文義)로 인해 문득 권권(眷眷)한 뜻이 있었다. 몸은 비록 밖에 있으나 마음은 나를 잊지 않으니, 도신(道臣)에게 분부하여 도로 백성에게 귀속시켜서 나의 뜻을 알게 하라.” 하였다.</p>	<p>戊辰/上行召對，因曰：“頃因內司所報，平安道甌山地廢堰，使本官打量，以屬內司，更遣內司官員。今見平安道臣狀啓，則龍崗縣令趙顯命，爲查官，有所論報，而縷縷論列，言甚激切，或慮予之有所左右。顯命曾爲宮僚，因文義輒有眷眷之意。身雖在外，心不忘予。分付道臣，使之還屬百姓，以曉予意。</p>
<p>영조 9권, 2년(1726) 병오 / 청 옹정(雍正) 4년) 4월 18일(경진)</p>	<p>북병사(北兵使) 이사성(李思晟)이 장계(狀啓)를 올려 청하기를, “북경(北京)에 자문(咨文)을 보내어 매년(每年) 개시(開市)하기를 의주(義州)나 중강진(中江鎭)의 예와 같이 두 나라의 접경한 지대에서 별도로 한 공한지(空</p>	<p>北兵使李思晟狀請，移咨北京，每年開市，如義州、中江之例，兩國接界之地，別定空閑一處，各自交易，供饋則</p>

<p>2번째기사 북병사 이사성이 국경에서 개시하는 일로 북경에 자문을 보내도록 청하다</p>	<p>閑地)를 정하여 각각 스스로 교역하게 하되, 공궤(供饋)2153)는 건물(乾物)로 지급하고 예단(禮段)은 정식(定式)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묘당(廟堂)에서 복궤(覆啓)하였으나 자문을 보내는 것은 사체(事體)가 중대하다 하여 허락하지 않았다.</p>	<p>以乾物給之，禮段則依定式施行。廟堂覆啓，以移咨體重，不許。</p>
<p>영조 9권, 2년(1726 병오 / 청 옹정(雍正) 4년) 5월 28일(기미) 1번째기사 여수현의 일·수진궁 차인 이동필·안주 목사 송택상을 논핵한 이광운의 상소</p>	<p>지평(持平) 이광운(李光運)이 상소(上疏)하여 말하기를, “순천(順天)의 여수면(麗水面)에 다시 한 현(縣)을 설치한 것은 곧 간사한 백성들이 백방으로 속인 소치이니, 청컨대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다시 상의 확정하여 종전대로 합속(合屬)하게 하소서.” 하고, 또 말하기를, “수진궁(壽進宮) 차인(差人) 이동필(李東苾)이 정주(定州)의 민전(民田) 5백 섬지기를 은닉(隱匿)하여 10년 동안 몰래 세(稅)를 받아 모두 제 개인의 주머니로 돌렸습니다. 그 정상과 곡절을 논하건대 결코 너그럽게 용서할 수 없으니, 마땅히 유사(有司)로 하여금 율(律)에 의하여 엄단하게 하소서.” 하고, 또 말하기를, “안주 목사(安州牧使) 송택상(宋宅相)이 맹산(孟山)의 읍기(邑妓)에게 빠져서 가고 올 때에 번번이 교자(轎子)를 타게 하여 도로(道路)에서 보는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지 않는 자가 없으며, 대소(大小)의 정령(政令)도 한결같이 그 말을 따라 하고 그외에 교생(校生)이나 원생(院生)들에게 뇌물을 받고 강(講)을 면제해 주며, 보용미(補用米)를 돈과 바꾸어서 사사로이 사용한 것이 모두 불법에 관계되니, 마땅히 사판(仕版)에서 삭제하는 율(律)을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후략)</p>	<p>己未/持平李光運上疏言： 順天之麗水面，復設一縣，卽奸民百般欺誣之致，請令廟堂，更加商確，依前合屬。 又言： 壽進宮差李東苾，隱匿定州民田五百石落，十年潛稅，盡歸私橐。論其情節，斷不可饒貸，宜令有司，依律勘斷。 又言： 安州牧使宋宅相，沈惑孟山邑妓，去來之際，輒使乘轎，道路觀者，莫不駭然。大小政令，一從其言，其他校院生之受賂除講，補用米之換錢私用，俱係不法。宜施削版之律。(후략)</p>
<p>영조 10권, 2년(1726 병오 / 청 옹정(雍正) 4년) 7월 7일(정유) 1번째기사</p>	<p>(전략) 신축년(2233)에 전하께서 정위(正位)2234) 하셨을 적에 춘궁(春宮)2235)의 공물인(貢物人)들이 때를 타 상언(上言)하기를, ‘3백 년 이래 세제궁(世弟宮)이 없었다가 이제야 비로소 있게 되었으니 세제궁의 공물인 12명을 더 두기 바랍니다.’라고 했었던 것을 전하께서 등극하신 뒤에 바로 재감</p>	<p>引辛丑例，又有加設。夫世子宮與世弟宮，其名雖殊，其爲春宮一也。貢人之憑藉上言，終至加設者，尤極無義。其人貢物，一名受價米爲一百十</p>

훈련 대장 장봉익 등
을 탄핵·세제공의 공
물인의 폐단에 관한
유점명의 상소

(裁減)하도록 하였던 것인데, 작년에 왕세자(王世子)를 책봉하고서 신축년의 사례를 들어 다시 더 두게 되었습니다. 대저 세자궁(世子宮)과 세제궁은 비록 그 명칭이 다르기는 하지만 똑같은 춘궁인데, 공인(貢人)들이 핑계하며 상언하므로 마침내 더 두게 된 것은 더욱 극도로 의의(意義)가 없는 일입니다. 그 공물인들이 1명마다 대가로 받는 쌀이 1백 10석(石)씩이 되어 합하여 헤아리면 그 수량이 1만에 가깝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각전(各廩)에서 진배(進排)하는 것을 한결같이 《대전(大典)》에 있는 원액(元額)대로 하고, 원액 이외에 더 둔 52명은 즉시 개혁하게 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성균관(成均館)의 초기(草記)2236)에 ‘각 고을에서 통용하고 있는 폐백(幣帛)은 거칠거나 가는 것이 일정하지 못하고 자[尺]수도 똑같지 않으므로, 본관(本館)의 주관(主管) 아래 저자의 상민(商民)들로 하여금 폐백으로 쓸 저포(紵布)를 무역(貿易)해서 마치도록 하여 각 고을에 반포하여 보내고서, 각 고을에서는 폐백 마련에 들어가는 지출을 대동미(大同米)2237)에서 회감(會減)해 내어, 본고을에서 뺏았을 내고서 저자의 상민에게 운반해 주도록 하되, 그 속에서 남게 되는 이익을 가져다가 본관의 비용에 보충한다.’고 했습니다. 폐백을 마련하느라 회감해 내는 쌀이 그만 원상납(元上納)의 대동미처럼 되어버리고, 뺏았도 또한 장차 민간에서 나오게 되고, 운반하여 바치는 동안에도 끼치는 폐단이 적지 않은데, 해가 오래된 뒤에는 또한 반드시 차츰 생기는 폐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서울 안의 모리배(牟利輩)들이 수십년 전부터 이 일을 경영해 오다가 이제야 비로소 확정하게 되었는데 각 고을에 폐해가 되고 소민(小民)들에게 해를 끼치게 됨이 이러합니다. 신의 생각에는 향사(享祀)에 쓰는 폐백을 각 고을에서 그전처럼 스스로 마련하게 하고 공물(貢物)로 설정(設定)하지 마는 것이 가할 듯합니다. 김우태(金遇兌)라는 사람이 공경(公卿)들의 문에 드나들고 서울과 외방(外方)속에 오가면서 관력(官力)을 빙자하여 곤궁한 백성을 박탈(剝割)하므로 중외(中外)의 민정이 질시하고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마

石零，合而計之，其數近萬。 臣謂各廩進排，一依《大典》所付元額，而額外加設五十二名，卽令革改可也。 成均館草記以爲，各邑所用幣帛，麤細不一，尺數不齊，自本館主管，分市民貿納幣帛紵布，頒送各邑，各邑幣帛所入，會減大同米，自本邑備納船馱價，運給市民，而取贏餘之利，以補本館之用”云。 幣帛會減之米，便成元上納之大同，船馱價，亦將出於民間，而運納之際，貽幣不訾，年久之後，亦必有層生之弊。 京中牟利輩，自數十年前，經營此事，今始得定奪，其爲弊各邑，貽害小民如此。 臣謂享祀幣帛，令各邑，依前自備，勿設貢物可也。 金遇兌爲名人，出入於公卿之門，往來於京外之間，憑藉官力，剝割窮民，中外民情，莫不疾怨。 宜令流配，以懲其罪。

批略曰：

訓將事，所論未免過中。 光運、齊恒等事，士夫廉節，豈容若是？ 其在勵末世之道，不可以已罷而止，并爲削職，承旨亦罷職不敘焉。 金翼亮事，爾言是矣，依施。 李緯事，已諭於筵中，

	<p>땅히 유배(流配)하여 그의 죄를 징계하게 해야 합니다.”</p> <p>하니, 비답에 대략 말하기를,</p> <p>“훈린 대장에 관한 일은 논한 말이 과중함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광운(李光運)과 이제항(李齊恒) 등의 일은 사대부(士大夫)로서 엄치와 지조에서 어찌 이와 같은 것을 용서하겠느냐? 그 말세(末世)를 격려하는 도리에 있어 이미 과직했다고 해서 그만둘 수 없으니, 모두를 삭직(削職)하도록 하겠다. 승지도 또한 과직하고 서용(敍用)하지 않아야 한다. 김익량(金翼亮)의 일에 있어서는 그대의 말이 옳으니 그대로 시행하겠다. 이재의 일은 이미 경연(經筵)에서 일렸었고, 사은 정사는 이미 변통하도록 명했다. 진배에 관한 일에 있어서는 이는 하나의 궁(宮)에만 더 진배하게 한 것이 아니다. 태학(太學)의 폐백의 일은 그대의 말이 합당하게 되었으니,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도록 하겠다. 김우태는 연한(年限)을 두지 말고 멀리 유배하여 징일 여백(懲一勵百)하는 뜻을 보여야 한다.”</p> <p>하였다.</p>	<p>謝恩正使，已命變通矣。至於進排事，此非一宮加進排者也。太學幣帛事，爾言得宜，今廟堂稟處。遇兌，勿限年遠配，以示懲一之意。</p>
<p>영조 10권, 2년(1726 병오 / 청 옹정(雍正) 4년) 7월 12일(임인) 4번째기사</p> <p>예조에서 대전·중궁전·세자궁의 방물과 물선을 준례에 의해 회복하게 하다</p>	<p>예조에서 계청(啓請)하기를,</p> <p>“앞으로의 탄일(誕日)을 시작으로 대전(大殿)·중궁전(中宮殿)·세자궁(世子宮)의 방물(方物)과 물선(物膳)을 준례에 의하여 옛날대로 회복하소서.”</p> <p>하니, 임금이 다시 내년 가을까지 기다렸다 품하도록 명하였다.</p>	<p>禮曹啓請前頭誕日爲始，大殿、中宮殿、世子宮方物、物膳，依例復舊，上命更待明秋以稟。</p>
<p>영조 10권, 2년(1726 병오 / 청 옹정(雍正) 4년) 7월 28일(무오) 2번째기사</p>	<p>정연 유겸명(柳謙明)이 상소하여 첫 머리에 토역(討逆)에 대한 의리를 진달하고, 그 다음에 논하기를,</p> <p>“송화(松禾)의 관리들을, 특별히 명하여 형장(刑杖)을 가해 추문(推問)하여 율(律)을 감단(勘斷)하도록 하시는 거조(舉措)가 계셨는데, 가만히 생각하건대</p>	<p>正言柳謙明上疏，首陳討逆之義，次言：</p> <p>松禾官吏，有特命刑推勘律之舉云。竊恐茲事，爲累於聖德。夫各宮奴子</p>

토역의 의리와 상채청
원당 혁파 등에 관한
정언 유점명의 상소문

이 일은 성상의 덕에 누가 될 듯 싶습니다. 대저 각 궁(宮)의 종들이 여리(閭里)에서 위세를 부리고 다닌 지가 또한 이미 오래이기에, 여리의 상한(常漢)들이 만일 마직(馬直)2257) 이란 이름만 들먹이면 어린 아이들의 울음을 멈추게 할 수 있어 그들의 위세가 두려움이 이와 같습니다. 시골 관리들이 어느 일로 인하여 도성(都城)에 들어오면 동서(東西)를 분간 못하고 걸어다니는 데도 겁을 내는데, 어찌 작당(作黨)하여 뛰쳐 나가 궁차(宮差)를 묶어 놓고 구타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내수사(內需司)에서 이런 미미한 일을 가지고 거짓 꾸며서 위에 진달하였음은 너무도 한없이 해괴하고 통탄스러운 일이니, 전하께서 다만 마땅히 그렇게 소란 피우는 폐단만 신칙하시고 물시(勿施)하셔야 합니다. 어찌 대리(大里)에 판하(判下)를 내려 형벌을 가하여 율(律)을 감단(勘斷)하게 할 것이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즉시 관리를 놓아 주게 하고 궁노(宮奴)들을 준엄하게 징계하도록 하여, 한편에만 치우치지 않는 덕을 보여 주시고 장래의 폐단을 막으소서.”

하고, 또 논하기를,
“묘당(廟堂)에서 상역배(商譯輩)들을 위하여 새로 상채청(償債廳)을 만든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건대 이 일은 사체에 해롭게 될 듯합니다. 상역배들은 방안의 벽(壁)을 문채 나게 수를 놓고 술과 고기를 마음대로 먹고 살면서도 포핍(逋欠)진 공채(公債)는 하나도 상환(償還)하지 않고 교묘하게 청탁을 하여 오직 미루기만 일삼는데, 묘당에서는 받아낼 방법이 없는 것 때문에 상채청을 두고서 부채자(負債者)들로 하여금 각각 10분의 1씩을 내도록 하여 본청(本廳)에 받아 놓고, 그것을 돌려 장사를 하여 이익을 내어 상환해 갈 수 있도록 계획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찮은 상역배들의 채무(債務) 상환 여부가 조정에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당당(堂堂)히 해야 할 위대한 조정이 이에 도리어 이 무리들을 위해 사사로운 계획을 하여 대신 상고(商賈)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의거할 데가 없는 것은 탕척(蕩濼)해 주고, 부요(富饒)한 자에게서는 독촉

之威行閭里，亦已久矣。閭里常漢，若聞馬直之名，則可止小兒之啼，其威勢之可畏如此。下邑官吏之因事入城者，不辨東西，行步跼蹐，豈有作黨突出，縛打宮差之理乎？內司之以此微細之事，誣飾上達，已極駭痛。殿下但當申飭其作挈之弊，而勿施之可也。何至於判下大理，使之加刑而勸律乎？伏願殿下，卽釋官吏，痛懲宮奴，以示無偏之德，以杜將來之弊。

又言：
廟堂爲商譯輩，新設償債廳。竊恐此舉，有損於事體也。商譯輩文繡屋壁，漿酒藿肉，公債逋欠，一不還償，巧於請囑，惟事延拖，而廟堂以其微出之無策，至設償債廳，使負債者，各出十分之一，納諸本廳，轉販殖利，以爲準償之計云。玄膺商譯輩之償債與否，何關於朝廷，而堂堂大朝，乃反爲此輩之私計，替行商賈之事乎？無依者蕩濼，富饒者督捧，而所謂償債廳，特令革罷焉。

又請移設分院，以除楊根民燔木呼冤之弊，又請申嚴船人梟示之律，俾絕漕米和水之奸。又請校院生徒、各邑官、

	<p>해서 받아 내야 하고, 소위 상채청이란 것은 특별히 혁파하도록 해야 합니다.”</p> <p>하고, 또 분원(分院)을 옮기어 설치하여 양근(楊根) 민생들이 번목(燔木) 때문에 원통함을 호소하는 폐단을 제거하기를 청하고, 또 선인(船人)들을 효시(梟示)하는 율(律)을 거듭 엄중하게 하여 조운(漕運)하는 쌀에다 물을 타는 간계(奸計)를 근절시키기를 청하고, 또 청하기를,</p> <p>“향교·서원의 생도(生徒) 및 각 읍관(邑官)·군관(軍官)과 각 영문(營門)의 아병(牙兵)은 그 액수(額數)를 정하여 한도를 넘지 못하게 하고, 소위 원당(願堂)2258 및 관청의 장인(匠人)들을 한결같은 예로 혁파하여 군액(軍額)을 보충하고, 백골(白骨)이 된 사람에게서 베[布]를 받아 내는 폐단을 제거하게 하소서.”</p> <p>하니, 우악(優渥)하게 비답을 내렸다.</p>	<p>軍官、各營門牙兵，定其額數，無得過限，所謂願堂及官匠人，一例革罷，以充軍額，俾除白骨徵布之弊，優批賜答。</p>
<p>영조 10권, 2년(1726 병오 / 청 옹정(雍正) 4년) 8월 14일(계유) 1번째기사</p> <p>민진원이 임금의 건강을 염려하여 소찬을 들도록 아뢰다</p>	<p>약방에서 입진(入診)하였다. 도제조(都提調) 민진원(閔鎭遠)이 말하기를,</p> <p>“삼가 듣건대 어제부터 소찬(素饌)을 드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지금은 성상의 체후(體候)가 회복되지 못하셨는데 10여 일을 소찬을 드신다면 손상을 가져 오게 되기 쉬울 것이니, 20일 이후부터 행소(行素)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이르기를,</p> <p>“3년 동안의 행소는 비록 하지 못하더라도 10여 일 동안의 행소를 어찌 할 수 없겠는가? 비록 경(卿)의 말이 이러하기는 하지만 18일부터는 소찬을 드는 것이 옳겠다.”</p> <p>하였다.</p>	<p>癸酉/藥房入診。 都提調閔鎭遠曰：“伏聞自昨進素饌云。 卽今聖侯未復，十餘日素饌，易致傷損，念後行素何如?” 上曰：“三年行素，雖不能，前期十餘日，豈不可爲乎? 雖卿言如此，自十八日，進素饌可也。”</p>
<p>영조 10권, 2년(1726 병오 / 청 옹정(雍正) 4년) 8월 20일(기묘) 4번째기사</p>	<p>분부하기를,</p> <p>“음복연(飲福宴)을 설행하지 않은 지가 이미 오래인데, 이번의 절목(節目) 내 용에 마련해서 입계(入啓)하였기에 이 한 때문에 부표(付標)해 놓았으니, 이 뒤로는 빼버릴 것을 분부한다.”</p>	<p>教曰：“飲福宴，不爲設行已久，而今此節目中，磨鍊以入，此一節付標。今後則拔去事分付。</p>

<p>음복연을 빼도록 하다</p> <p>영조 10권, 2년(1726 병오 / 청 옹정(雍正) 4년) 8월 25일(갑신) 1번째기사 경소전에서 대상제를 거행하다</p>	<p>하였다.</p> <p>임금이 경소전(敬昭殿)에 나아가 대상제(大祥祭)를 거행하였다. 2경(二更) 1점(一點)에 임금이 명정전(明政殿)에서 재실(齋室)로 나아갔는데, 찬례(贊禮)가 전도(前導)하였다. 판위(板位)에 나아가 임금이 서 있으니, 인의(引儀)가 창곡(唱哭)하매 임금이 곡을 마치고 물러나 재실로 들어와 담복(禫服)으로 갈아 입고 도로 판위에 나아갔다. 임금이 부복(俯服)하여 곡하다가 곡을 멈추고 사배(四拜)를 마치자 찬례가 전도하여 관세(盥洗)하고 존소(尊所)로 나아가니 승지(承旨)가 술을 따랐고, 찬례가 전도하여 영좌(靈座)앞으로 나아가니 향로(香爐)와 향합을 받들매 임금이 분향하고 관창(灌鬯)2274) 한 다음에 초헌례(初獻禮)를 거행하였다. 대축(大祝)이 독축(讀祝)을 끝내자 임금이 동계(東階)로 해서 내려와 판위(板位)로 돌아왔다.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민진원(閔鎭遠)과 좌의정 홍치중(洪致中)이 아헌례(亞獻禮)와 종헌례(終獻禮)를 끝내자 임금이 부복하여 곡하고 4배하고 나매 찬례가 제례가 끝났음을 아뢰었다.</p>	<p>甲申/上詣敬昭殿，行大祥祭。二更一點，上由明政殿，就齋室，贊禮前導。就板位，上立，引儀唱哭，上哭訖，退入齋室，改禫服，還就板位。上俯伏哭，止哭四拜訖，贊禮前導，盥洗，詣尊所，承旨酌酒，贊禮前導，詣靈座前，承旨奉香爐盒，上焚香，灌鬯後，行初獻禮。大祝讀祝訖，上降自東階，復板位。領府事閔鎭遠、左議政洪致中，行亞、終獻訖，上俯伏哭四拜，贊禮啓禮畢。</p>
<p>영조 10권, 2년(1726 병오 / 청 옹정(雍正) 4년) 8월 26일(을유) 3번째기사 의릉의 수릉관 시릉관 등에게 상을 내리다</p>	<p>전교하기를, “의릉(懿陵)의 수릉관(守陵官) 낙창군(洛昌君) 이탱(李槿)은 가자(加資)하고 안장 갖춘 내구마(內廐馬) 1필과 외거 노비(外居奴婢) 6명과 밭 50결(結)을 내리고, 시릉관(侍陵官) 김몽상(金夢祥)은 가자하고 안장 갖춘 내구마 1필과 외거 노비 4명과 밭 30결을 내리고, 참봉 권세룡(權世隆)·이익정(李益炡)은 아울러 6품으로 천전(遷轉)하여 각각 아마(兒馬) 1필씩을 내리고, 진지 충의(進止忠義) 조종유(趙宗裕)는 승진시켜 동반(東班)의 직을 제수하고, 주시관(奏時官) 이하 및 도설리(都薛里)2275) 이하와 반감(飯監)이하는 각각 차등이 있게 논상(論賞)하라.”</p> <p>하였다.</p>	<p>敎曰：“懿陵守陵官洛昌君槿加資，內廐馬鞍具一匹、外居奴婢六口、田五十結；侍陵官金夢祥加資，內廐馬具鞍一匹、外居奴婢四口、田三十結賜給；參奉權世隆、李益炡，竝六品遷轉，各兒馬一匹賜給；進止忠義趙宗裕，陞授東班職；奏時官以下、都薛里以下、飯監以下，各分等論賞。”</p>
<p>영조 10권, 2년(1726 병오 / 청 옹정(雍正) 4년) 10월 12일(경오)</p>	<p>(전략) 민진원이 말하기를, “친제(親祭)하는 의절(儀節)은 매우 번다하여 각실(各室)의 존소(尊所)에 나아갈 적에 더욱 시간을 지체하게 됩니다. 그 전부터 친제하게 될 적에는 제1</p>	<p>鎭遠曰：“親祭儀節甚繁，各室詣尊所之際，時刻尤爲遲延。自前親祭之時，特第一室奠爵，第二室以下，次次預斟</p>

<p>2번째기사 부묘 후 제전에 입실한다는 전교를 대신들이 만류하다</p>	<p>실(第一室)의 전작(奠爵)을 기다리다가 제2실(第二室) 이하는 차례차례로 미리 술을 따라 놓고 기다리게 되는데, 예절에 있어 조금도 방해로운 것이 없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사체로는 마땅히 직접 각실의 준소에 나아가서 술을 따라 전작해야 하나, 이렇게 하면 제례(祭禮)가 매우 지체되므로 이미 선조(先朝) 때부터 변통해서 하게 된 것이다. 진달한 말대로 하되, 미리 따를 때에 1잔은 따라서 머물러 놓았다가 준소에 나아간 다음에 1잔은 따라서 전작(奠爵)하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p>	<p>以待，其在禮節，小無所妨矣。”上曰：“事當躬詣各室尊所，斟爵以奠，而如是則祭禮太遲，已有先朝變通，依所達爲之，而預斟時，留置一爵所斟，詣尊所後乃斟一爵以奠可也。”</p>
<p>영조 10권, 2년(1726 병오 / 청 옹정(雍正) 4년) 10월 13일(신미) 1번째기사 부묘한 다음 작헌례를 거행하고 봉당·사치·음주의 3조목을 유지하다</p>	<p>(전략)술을 많이 마시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니, 아! 술은 맛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곧 실로 미치게 하는 약이다. 옛적의 대우(大禹)도 깊이 염려했던 일과 우리 열성(列聖)들께서도 경계를 남겨 놓은 것이 지난날에 소소(昭昭)2322) 하였으며, 우리 성고(聖考)께서 술을 경계한 윤음(綸音)도 지극하고 극진하게 되어 있건만 오히려 그전의 풍습을 고치지 못하므로 내가 일찍이 마음속으로 개탄스럽게 여겼다. 아! 사람의 천성(天性)은 진실로 본래부터 착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더러 기질(氣質)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또한 변화시켜서 착해지게 하려고 해야 할 것인데, 더구나 맑은 기질을 혼탁하게 만들고 아름다운 기질을 악하게 만드는 것이 술 때문이 아니고 무엇이었는가? 이제부터는 마땅히 더 자신들을 가다듬어 깊이 경계해야 하지 않겠는가? 아! 이 세 가지 조목 이외에도 어찌 말을 해야 할 것이 없겠는가? 마는, 편당하는 풍습이 없어진다면 공정한 도의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사치하는 풍습이 제거된다면 쓸데없는 허비가 자연히 덜어지게 되며 마구 마시는 폐해를 경계한다면 본성(本性)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국가의 일을 잘해 가게 될 수 있고 민생이 이를 힘입어 안정되어질 수 있으며 직무(職務)를 잘 닦아서 거행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p>	<p>(전략)一，戒崇飲。噫! 酒非佳味，乃實狂藥。昔大禹之深慮，我列聖之垂戒，昭昭于前。我聖考戒酒綸音，至矣盡矣，而猶未悛其舊習，予當慨然于中矣。噫! 性固本善，故雖或有氣質之不同，亦欲變化而爲善。況以清爲濁，以美爲惡，非麪蘖而何? 自今宜加自勵而深戒哉!(후략)</p>

	<p>이는 바로 오늘날의 급무(急務)인데, 요체(要諦)는 마음 하나에 달려 있고, 그렇게 해 가게 되는 근본은 또한 과인(寡人)의 몸에 달려 있다. 아! 내가 심학(心學) 공부에 있어서 또한 능히 하지 못했기에 이번의 이런 말은 말로만 가르침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내가 일찍이 깊이 싫어해 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 백관들을 칙려(飭勵)하는 것이다. 또 ‘심(心)’자 하나에 더 힘쓰는 것으로 따라서 자성(自省)하는 뜻을 보이는 것이니, 아! 그대들 대소의 신료(臣僚)는 나의 이런 분부를 체득(體得)하여 힘쓰고 또 힘쓰라. 이제 그 그림자를 관찰하면서 표상(表象)을 보습(補拾)해 가게 된다면, 내가 비록 부덕한 몸이기는 하지만 어찌 맹렬하게 반성하지 않겠는가? 모름지기 잘 알아차리어 나의 말에 어그러지지 않도록 하라.”(후략)</p>	
<p>영조 10권, 2년(1726 병오 / 청 옹정(雍正) 4년) 10월 23일(신사) 2번째기사 관중추부사 이관명을 인견하고 선운을 내리다</p>	<p>관중추부사(判中樞府事) 이관명(李觀命)이 그의 아우인 고 좌의정 이건명(李健命)을 이장(移葬)하기 위하여 청가(請假)하고 사폐(辭陛)하니, 임금(上)이 인견(引見)했는데, 이관명이 치지(致知)하고 격물(格物)하여 옳음과 그름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학문의 요체(要諦)가 됨을 진달하니, 임금(上)이 아름답게 받아들이며 선운(宣醞)2329) 하여 보냈다.</p>	<p>判府事李觀命，爲其弟故左議政李健命還葬，請假辭陛，上引見。觀命以致知格物，而明知是非，爲學問之要，陳達，上嘉納，宣醞而送之。</p>
<p>영조 10권, 2년(1726 병오 / 청 옹정(雍正) 4년) 11월 4일(임진) 2번째기사 이탄·정형익·김응복 등에게 선운을 내려 주다</p>	<p>임금이 동지 정사(冬至正使) 밀풍군(密豐君) 이탄(李坦), 부사(副使) 정형익(鄭亨益), 서장관(書狀官) 김응복(金應福) 등에게 선운(宣醞)을 내려 주고 전송하였다.</p>	<p>上引見冬至正使密豐君坦、副使鄭亨益、書狀官金應福等，宣醞而送。</p>
<p>영조 10권, 2년(1726 병오 / 청 옹정(雍正)</p>	<p>(전략) 민진원이 말하기를, “을해년(2357) 무렵에 신이 사관(史官)으로서 입시(入侍)할 적에 그 때의 대신</p>	<p>(전략)鎮遠曰: “乙亥年間，臣以史官入侍，其時大臣，備陳宮家折受之弊，</p>

4년) 11월 21일(기유)
1번째기사
주강에서 민진원이 색
옥에 대한 경계와 궁
가의 절수 폐단에 대
해 아뢰다

이 궁가(宮家)의 절수(折受)에 관한 폐단을 갖춰 진달하고, 이어 ‘이 뒤로는 영구히 절수하는 규정을 혁파하고 호조에서 은화(銀貨)를 일정한 격식대로 갈라 보내어 전답(田畓)을 매수(買受)하는 자본으로 삼도록 할 것’을 청하여 즉시 윤허를 받았는데, 그 뒤에 삼가 듣건대, 여러 궁가(宮家)들이 이미 호조의 은화를 받고도, 그 절수한 것을 그전대로 폐하지 않아서 민간의 폐해가 예전대로라고 했으니, 진실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이번에 새로 후궁(後宮)을 봉작(封爵)하셨으니 앞으로 분만(分娩)하신 다음에는 왕자(王子)나 옹주(翁主) 사이에도 또한 마땅히 궁가가 있게 될 것입니다. 신이 오래 시골에 있을 적에 매양 외방(外方) 백성을 만날 적이면 국가에 종사(蟲斯)2358)의 경사가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니다. 비록 어리석은 백성이라 하더라도 어찌 국가의 자손이 번성하는 것이 경사가 되는 줄을 알지 못하겠습니까마는 오히려 이러했으니, 대개 평소에 소민(小民)들이 절수에 있어 시달림이 이처럼 극도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어찌 민망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뒤로는 한결같이 선왕조(先王朝)에 정해진 격식을 준행하여 영구히 절수하지 말도록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가사(家舍)에 있어서도 신이 듣건대 선조조(宣祖朝)에는 왕자나 부마(駙馬)들의 궁가(宮家)가 모두 여염(閭閻)의 사대부(士大夫)의 집 모양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때의 궁가들이 지금도 많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 만일에 따로 중사(中使)를 내보내어 그 모양대로 지어 주도록 한다면, 사치스럽고 크게 할 염려도 없게 되고 또한 복(福)을 기르는 방도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의 이르기를,
“이는 좋은 말이다. 새 궁가는 으레 지부(地部)2359)에서 사 주는데 이번에는 본궁(本宮)으로 하여금 사도록 했더니 그 값이 천 냥(兩)이 되지 않았다. 이로써 본다면 약간 큰 것임을 알 수 있고 또 호조에서 으레 1백 석(石)의 쌀을 보내게 되는데 이번에는 보내지 말도록 했다. 내가 다른 일에 있어서는

仍請此後永罷折受之規，自戶曹以銀貨定式劃送，以爲田畓買取之資，卽蒙允可，而其後伏聞諸宮，既受戶曹之銀貨，而折受則依前不廢，民弊依舊云，誠爲慨然。卽今新封後宮，前頭分娩後，王子翁主之間，亦當有宮矣。臣久在鄉曲，每見外方之民，不願國家有蟲斯之慶。雖是愚氓，豈不知國家子姓蕃衍之爲慶幸，而猶尙如此，蓋可見常時小民之困於折受，至於此極矣。豈不可悶乎？此後則一遵先朝定式，永勿折受宜矣。至於家舍，臣聞宣廟朝王子、駙馬之宮，皆如閭閻士夫家制樣。其時宮家，至今多有存者。若別遣中使，依其樣造給，則可無侈大之患，而亦可爲養福之道矣。” 上曰：“其言好矣。新宮例自地部買給，而今番則使本宮買之，其價不滿千兩。以此見之，可知其小大矣。且自戶曹例送百石米，而今番則勿令移送矣。予於他事，則雖不能，而至於節約之道，則自陞儲之時，先爲留念。事之如前例者，行之而已，至於科外之事，豈爲之乎？” 鎮遠曰：“雖有前例之事，若關係民弊，或有妨經費，則停止亦宜

	<p>비록 잘하지 못하지마는 절약하는 도리에 있어서는 저위(儲位)에 오르게 될 때부터 먼저 유의해 왔다. 전례대로 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대로 할 뿐이거니와 과외(科外)의 일에 있어서는 어찌 해야 되겠는가?”</p> <p>하였다. 민진원이 말하기를, “비록 전례가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만일 민폐와 관계가 있거나 혹은 경비(經費)에 방해가 있는 것이라면 정지하는 것이 또한 합당합니다.”</p> <p>하니, 임금의 이르기를, “좋은 말이니, 마땅히 유의하겠다.”</p> <p>하였다.</p>	<p>矣。” 上曰：“其言好，當留意矣。”</p>
<p>영조 10권, 2년(1726 병오 / 청 옹정(雍正) 4년) 12월 10일(정묘) 2번째기사 환시와 액례들의 폐단을 지평 신노가 상소</p>	<p>지평 신노(申魯)가 상소하여, 공인(貢人)들이 거꾸로 매달린 것과 같게 된 것은 환시(宦侍)와 액례(掖隸)들이 정채(情債)를 조종(操縱)하는 소치 때문임을 논하고, 또 말하기를, “성상께서 지침(紙籤)2384 을 사하(斜下)하고 각사(各司)에 저장해 놓은 물건을 가져다가 쓰심은 좋은 도리가 아니니, 청컨대 모든 것을 승정원에 관유(關由)하소서.”</p> <p>하고, 또 양역(良役)의 고질이 된 폐해를 말하여 지폐법(紙牌法)을 시행하여 장정(壯丁)의 수를 바로잡기 청하고, 또 청하기를, “주전(鑄錢)하고 평적(平糶)하여 농민을 회복시키며 각 고을의 이노(吏奴)들을 모두 대오(隊伍)를 만들고 용복(戎服)을 갖추게 하여 봄과 가을에 무재(武才)를 시험보여 위급할 때에 쓰게 하소서.”</p> <p>하니, 비답하기를, “정채(情債)는 진실로 통탄스러움과 해괴함이 심한 일이니 따로 신칙(申飭)을 가하겠다. 금내(禁內)에서 쓰는 물건은 반드시 계하(啓下)를 한다면 어찌 허위(虛僞)가 난잡하게 될 것이 있겠느냐마는, 의논해서 해야 할 것에 있어서는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도록 하라.”</p>	<p>持平申魯上疏，論貢人倒懸，由於宦寺、掖隸操縱情債之致，又言自上以紙籤斜下，取用各司所儲之物，非善道，請皆關由喉院，又言良役痼弊，而請行紙牌法，槩括丁口，又請鑄錢、平糶，以蘇農民，各邑吏奴，皆令作隊，具戎服春秋試才，以爲緩急之用，批曰：“情債事，誠甚痛駭，另加申飭。內用之物，必爲啓下，則豈有虛僞之相雜乎？可以議處者，令廟堂稟處。”</p>

<p>영조 10권, 2년(1726 병오 / 청 옹정(雍正) 4년) 12월 29일(병술) 1번째기사 친히 정사하여 유승·홍용조·김치후·권엽·황재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p>	<p>하였다. 회정당에서 친정(親政)을 거행하여, 유승(兪崇)을 도승지(都承旨)로, 홍용조(洪龍祚)와 김치후(金致堧)를 승지(承旨)로, 권엽(權燦)을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황재(黃梓)를 교리(校理)로, 권적(權翥)을 대사간(大司諫)으로, 한이조(韓頤朝)를 헌납(獻納)으로, 신처수(申處洙)를 장령(掌令)으로, 박사성(朴師聖)을 교리로 삼았다. 정사(政事)가 끝나자 선온(宣醞)하도록 명하고, 시 1구(句)를 어제(御製)하여 입시(入侍)한 제신(諸臣)들에게 화답하여 올리도록 하였다. 【대백산사고본】</p>	<p>丙戌/行親政于熙政堂，以兪崇爲都承旨，洪龍祚、金致堧爲承旨，權燦爲工曹判書，黃梓爲校理，權翥爲大司諫，韓頤朝爲獻納，申處洙爲掌令，朴師聖爲校理。政畢，命宣醞，御製一句詩，使入侍諸臣廣進。</p>
<p>영조 11권, 3년(1727 정미 / 청 옹정(雍正) 5년) 1월 15일(임인) 1번째기사 종신 63인을 불러보고 술을 내리고 활을 쏘아 과녁을 맞추게 하다</p>	<p>임금이 영화당(映花堂)에 나아가 종신(宗臣) 63인을 불러보고 선온(宣醞)2421) 하며 사후(射候)2422) 하게 하였으니, 대개 새해의 문후(問候)에 사대(賜對)한 것이다. 회원군(檜原君) 윤(倫)은 나이가 92세이므로 임금이 특별한 예로 대우하니, 윤이 노래 1곡을 올리자, 임금이 시(詩)를 내리기를, “빨리 가는 광음 얼마나 바뀌었는지, 선묘의 왕손 오직 경만이 있네. 노쇠한 90 나이에든 근력 좋으니, 수성이 반드시 공의 뜰에 비추었으리.” 하였다. 윤이 매우 취하자, 그의 아들 함평군(咸平君) 이홍(李泓)으로 하여금 부축하고 먼저 나가도록 하였다. 이어 제종(諸宗)들에게 선온하기를 가족에 대한 예처럼 했는데, 영원군(靈原君) 이현(李櫛)이 잘 마시자 임금이 큰 잔으로 내리었다. 낭제 도정(琅瑤道正) 이담(李燦) 등이 과녁을 쏘아 맞추자 모두를 가자(加資)하도록 명하고, 이어 2품 이상에게는 표피(豹皮)를 내리며 당상(堂上) 이상에게는 녹비(鹿皮)를 내렸는데, 회원군 이윤에게는 특별히 내구마(內廐馬) 1필(匹)을 내렸다. 술이 거나해지자 전성군(全城君) 이혼(李混)이 서평군(西平君) 이요(李橈)로 하여금 거문고를 타게 하자고 청하였으나 임금이 윤택하지 않고 시 1수를 써서 내렸는데, 시에 이르기를,</p>	<p>壬寅/上御映花堂，召見宗臣六十三人，宣醞射候。蓋以新歲問候賜對也。檜原君倫，年九十二，上待以殊禮。倫獻歌一曲，上賜詩曰： 光陰倏倏幾乎更，宣廟王孫只有卿。 九耄衰年精力健，壽星必也照公庭。 倫，醉甚，使其子咸平君泓，扶而先出。仍宣醞於諸宗，如家人禮。靈原君櫛善飲，上以大盃賜之。琅瑤都正燦等，射候中，竝命加資，仍以豹皮賜二品以上，鹿皮賜堂上以上，而檜原君特賜內廐馬一匹。酒酣，全城君混，請令西平君橈，鼓琴，上不許，書下一詩。詩曰： 上元令節會宗英，佳氣瀼瀼日色明。 公等莫辭樽酒醉，一盃宮醞儘由誠。 仍命廣進。</p>

	<p>“상원(上元)2423) 명절의 종사들 모임에 아름다운 기상 넘치고 날씨도 좋네. 공들은 통술에 취함을 사양하지 말라, 궁중에서 빛은 한잔술이지만 다 정성이 담긴거네.” 하였다. 이어서 화답하여 글을 지어 올리라고 명하였다.</p>	
<p>영조 11권, 3년(1727 정미 / 청 옹정(雍正) 5년) 3월 2일(기축) 2 번째기사 홍성보가 앞으로 진상하는 일들에 있어서 반드시 참작하여 요량해서 할 것을 아뢰다</p>	<p>임금이 야대(夜對)를 행하여 《황명통기(皇明通紀)》를 진강(進講)하였다. 검토관 홍성보(洪聖輔)가 아뢰기를, “노주(潞州)에서 공상(貢上)하는 인삼(人蔘)을, 고황제(高皇帝)가 인삼은 구득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라 하여, ‘이 뒤로는 진공(進貢)할 필요가 없고 만일에 혹 써야 하게 되면 마땅히 사람을 보내어 스스로 채취(採取)하도록 하겠다.’하였으니, 이는 성덕(聖德)에서 나온 일입니다. 물종(物種)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헤아리지 않고 봉진(封進)하도록 독촉하면 매우 폐단이 있게 되니, 이제는 진상하는 일들에 있어서 반드시 참작하여 요량해서 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가납(嘉納)하였다. 검토관 황재(黃粹)와 참찬관 신방(申昉)이 글 뜻에 따라, 김조택(金祖澤)을 죄주어 내쳤음은 과중하게 된 것임을 논하고, 홍성보도 또한 이어서 진달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아니하였다.</p>	<p>上行夜對，講《皇明通紀》。檢討官洪聖輔曰：“潞州貢人蔘，高皇帝以爲，人蔘得之甚難，今後不必進貢，如或用之，當遣人自取。此聖德事也。不量物種之有無，督令封進，則極爲有弊，今於進上等事，必須參量焉。”上嘉納。檢討官黃粹、參贊官申昉，因文義，論金祖澤罪黜之過中，聖輔亦繼陳，而上不從。</p>
<p>영조 11권, 3년(1727 정미 / 청 옹정(雍正) 5년) 3월 9일(병신) 2 번째기사 민진원이 태묘의 신위위를 덮는 파의 색깔과 각 신위 독의 좌판등을 상소하다</p>	<p>(전략) 또 아뢰기를, “양남(兩南)에서 진상(進上)하는 청죽(靑竹)은 매우 민폐가 많기 때문에, 효종조(孝宗朝)에 연신(筵臣)이 그 수량을 감하기를 청했었는데, 효종께서 분부하시기를, ‘이는 비단 어약(御藥)에 쓰게 될 뿐만 아니라 사대부(士大夫)들 집에서 만일에 내국(內局)의 죽력(竹瀝)2526)이 아니라면 어떻게 다급한 병을 구료(救療)하게 되겠는가? 감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유전(流傳)되는 말이지만 성조(聖祖)의 아름다운 뜻을 대략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요사이 내관(內官)과 액례(掖隸)들이 더러더러 전죽(全竹)을 가져 가는데도 장무관(掌務官)이 금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컨대 이제부터는 엄중하게 과조(科條)</p>	<p>又奏曰：“兩南進上靑竹，民弊甚多，故孝廟朝筵臣，請減其數，孝廟教曰：‘此非但爲御藥所用，士夫家若非內局竹瀝，則何以救急病乎？不可減也。’此是流傳之說，而聖祖美意，概可想也。近者內官、掖隸輩，往往取全竹而去，掌務官不能禁。請自今嚴立科條，入啓重治。”上曰：“孝廟下教，誠至當矣。無論士夫、常漢，若非內</p>

	<p>를 세우고 입계(入啓)하도록 하여 무거운 죄로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효종께서 내리신 분부가 진실로 지당하다. 사대부나 상한(常漢)을 논할 것 없이 만일 내국의 죽력이 아니라면 어디에서 구해 쓰겠는가? 그러나 헛되이 소비해서는 안되니, 전죽을 가져 가는 자는 아뢴 대로 엄중하게 금단하라.” 하였다.</p>	<p>局竹瀝，則何以覓用乎？然不可虛費，全竹取去者，依所奏嚴禁。”</p>
<p>영조 11권, 3년(1727 정미 / 청 옹정(雍正) 5년) 3월 19일(병오) 1번째기사 왕세자가 입학했는데, 그 예와 절차</p>	<p>왕세자(王世子)가 입학(入學)하는데, 대제학 이의현(李宜顯)이 박사(博士)가 되고 진사(進士) 남유상(南有常)이 장명(將命)2554) 이 되었다. 왕세자가 문묘(文廟)에 나아가 작헌례(酌憲禮)를 마치고 나서 학생복(學生服)을 입으니 보덕(輔德)이 인도하여 명륜당(明倫堂)의 대문(大門) 동쪽에 세워 서향(西向)하게 하고 백비(帛篋)와 【저포(紵布) 세 필이다.】 주호(酒壺)와 【술 두 말이다.】 수안(脩案)을 【포(脯) 5정(脛)이다.】 왕세자의 서쪽에 진열하였으며, 북쪽을 향하여 곁줄로 서쪽을 상(上)으로 하여 사부(師傅) 좌의정(左議政) 홍치중(洪致中)·좌빈객(左賓客) 신사철(申思喆)·우부빈객(右副賓客) 황귀하(黃龜河)·대사성(大司成) 김취로(金取魯)·보덕 한이조(韓頤朝)·필선(弼善) 민응수(閔應洙)가 박사를 따라 공복(公服)을 갖추어 입으니, 집사자(執事者)가 인도하여 명륜당의 동계(東階) 위에 세워 서향(西向)하게 하였다. 장명자(將命者)가 나와 문 서쪽에 서서 동향(東向)하고 말하기를, “감히 행사(行事)를 진행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왕세자가 조금 앞으로 나가 말하기를, “모(某)가 선생에게서 수업(受業)하기 바랍니다.” 하였다. 장명자가 박사에게 들어가 고하니, 박사가 말하기를, “모(某)는 부덕(不德)한 몸입니다. 왕세자께서 욕됨이 없게 하소서.” 하였다. 장명자가 왕세자에게 나아가 고하니, 왕세자가 굳이 청하였다. 장명자가 들어가고하니, 박사가 말하기를,</p>	<p>丙午/王世子入學。 大提學李宜顯爲博士，進士南有常爲將命。 王世子詣文廟酌獻訖，服學生服，輔德引立於明倫堂大門東西向， 陳帛篋【紵布三匹。】酒壺。【酒二斗。】脩案【脯五脛。】於王世子西北向重行西上，傳左議政洪致中、左賓客申思喆、右副賓客黃龜河、大司成金取魯、輔德韓頤朝、弼善閔應洙，從博士，具公服，執事者引立於明倫堂東階上西向。 將命者出，立門西東向曰：“敢請事。”王世子少前曰：“某願受業於先生。”將命者入告，博士曰：“某也不德。請王世子無辱。”將命者出告，王世子固請。將命者入告，博士曰：“某也不德。請王世子就位。某敢見。”將命者出告，王世子曰：“某不敢以視賓客，請終賜見。”將命者入告，博士曰：“某也辭不得命，敢不從命？”將命</p>

“모는 부덕한 몸입니다. 왕세자께서 자리로 나아가소서. 모가 감히 뵈겠습니다.”

하였다. 장명자가 나가 고하니, 왕세자가 말하기를,
 “모가 감히 빈객(賓客)으로 여기지 않으니, 마침내 만나 주기 바랍니다.”

하였다. 장명자가 다시 들어가 고하니, 박사가 아뢰기를,
 “모가 사양해도 들어주지 않으시니, 감히 명령대로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장명자가 나와 고하니, 백비(帛篚)를 가진 집사자(執事者)가 백비를 들고 동쪽으로 향하여 왕세자에게 주니, 왕세자가 백비를 받아 들자, 박사가 동계(東階) 아래에 내려가 기다리며 서향하였고, 보덕은 왕세자를 인도하여 문으로 들어가 왼쪽에 섰다. 집사자가 주호(酒壺)와 수안(脩案)을 받들고 따라가 서계(西階)의 남쪽으로 나아가 동쪽으로 향하였고, 주호와 수안을 받든 집사가 왕세자의 서남(西南)쪽에 서서 동쪽을 향하여 북쪽을 상(上)으로 하였다. 왕세자가 꿇어앉아 백비를 올리고 재배(再拜)하자, 박사가 답배(答拜)하고 왕세자가 꿇어앉아 백비를 가져다 올리니, 주호와 수안을 받든 집사도 따라서 박사의 앞에 올렸다. 박사가 꿇어앉아 백비를 받아서 집사에게 주었고, 집사가 꿇어앉아 주호와 수안을 가지고 물러갔다. 보덕이 왕세자를 인도하여 양계(兩階)의 사이에 서서 북쪽으로 향하여 재배하고, 다시 인도하여 편차(便次)로 나가 있으면서 박사가 평상복으로 갈아 입고 당(堂)으로 올라와 자리에 나아가기를 기다렸다. 【명륜당의 동벽(東壁)으로, 서쪽으로 향하고 있는 곳이다.】 보덕이 왕세자를 인도하여 문으로 들어가되 서계(西階)로 해서 올라가 박사의 앞에 나아가니, 【임시로 차린 자리이다.】 집사자가 진강(進講)할 글을 【《소학(小學)》이다.】 박사의 앞과 【서안(書案)이 있었다.】 왕세자의 앞에 놓았다. 강서(講書)와 석의(釋義)가 끝나고 집사자가 서안과 서책을 거두매, 보덕이 왕세자를 인도하여 서계로 해서 내려와 편차(便次)에 나와 있다가 올

者出告，執篚者以篚東向，授王世子，王世子執篚，博士降俟于東階下西向，輔德引王世子，入門而左。執事者捧酒壺、脩案隨之，詣西階之南東向，捧酒脩者立於王世子西南東向北上。王世子跪，奠篚，再拜，博士答拜，王世子跪，取篚以進，捧酒、脩者，從奠於博士前。博士跪受篚，授執事者，執事者跪，取酒、脩以退。輔德引王世子，立於階間北向再拜，引出就便次，以俟博士改具常服，陞堂就坐。【在明倫堂壁西向。】輔德引王世子，入門陞自西階，詣博士前，【臨時設席。】執事者，置講書【《小學》。】於博士前【有案。】及王世子前。講書、釋義訖，執事者徹案及書，輔德引王世子，降自西階，出就便次，還宮如來儀。

	때의 의식(儀式)대로 환궁(還宮)하였다.	
영조 11권, 3년(1727 정미 / 청 옹정(雍正) 5년) 윤3월 11일(무진) 2번째기사 전성군 이혼 등이 대왕 대비께 진연하기를 청하는 상소를 하다	중신(宗臣) 전성군(全城君) 이혼(李混) 등이 상소하여, 동조(東朝)2590) 에 진연(進宴)하기를 청하니, 비답하기를, “술잔 올리는 예를 나의 성의가 부족한 것 때문에 윤희를 받지 못했기에 장차 다시 진달하려고 한다.” 하였다.	宗臣全城君混等上疏， 請進宴于東朝， 批曰：“稱觴之禮， 因予誠淺， 未蒙允許， 將欲更陳。”
영조 11권, 3년(1727 정미 / 청 옹정(雍正) 5년) 윤3월 16일(계유) 2번째기사 사헌부에서 세미에 물을 탄 선인과 부동한 이서·하례들을 감죄하도록 청하다	사헌부에서 【장령 김우철(金遇喆)이다.】 앞서 아뢰던 일을 거듭 아뢰었으나 윤희하지 아니하고, 또 아뢰기를, “세미(稅米)에 물을 탄 선인(船人)을 율(律)대로 처단하고, 부동(符同)한 이서(吏胥)와 하례(下隸)들을 한결같이 모두 엄중하게 감죄(勘罪)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에 앞서 세선(稅船)에서 쌀에 물을 타는 것을 거듭 엄중하게 금하여 거조(擧條)를 반시(頒示)하기까지 했었는데, 양근(楊根)의 선인(船人)이 또 다시 범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사헌부의 신하가 논계(論啓)하게 된 것이다. 임금이 처음에는 윤희하였다가 다시 사형을 감하여 절도(絶島)에 귀양 보내도록 명했으니, 대개 그들의 발선(發船)이 거조(擧條)를 반포하기 이전에 있는 때문이다.	憲府【掌令金遇喆。】申前啓， 不允。 又啓：“請稅米和水船人， 依律處斷， 符同吏隸， 一竝嚴勘。” 從之。 先是， 申嚴稅船和水之禁， 至於頒示擧條， 而楊根船人， 又有犯者， 故憲臣發啓。 上初命允許， 更命減死， 刑配絶島。 蓋以其發船， 在於擧條未頒之前故也。
영조 11권, 3년(1727 정미 / 청 옹정(雍正) 5년) 윤3월 16일(계유) 3번째기사 송수형이 호조의 수원 언전을 궁가 차인이 점유한 일과 연해의	지평 송수형(宋秀衡)이 상소하여, 호조(戶曹)의 수원(水原)의 언전(堰田)을 궁가(宮家)의 차인(差人)이 멋대로 점유(占有)한 폐해를 말하고, 또 연해(沿海) 고을들의 군향(軍餉)이 허술한 폐단을 말하여, 절반은 창고에 머물러 두는 법을 엄중하게 하기를 청하고, 또 추쇄관(推刷官)의 폐단을 논하니, 임금이 가납(嘉納)하였다.	持平宋秀衡上疏， 言戶曹水原堰田宮差橫占之弊， 又言沿海邑軍餉虛疎之弊， 請嚴折半留庫之法， 又論推刷官之弊， 上嘉納。

<p>군향이 허술한 폐단에 대해 상소하다</p>	<p>소대(召對)를 거행하여 명기(明紀)를 진강(進講)하였다. 검토관 홍성보(洪聖輔)가 섭이중(聶夷中)2608)의 시(詩)를 들어 권면하기를, “임금은 모름지기 가색(稼穡)2609)의 어려운 점을 알아야 합니다. 옛적에 임금이 친히 삼퇴(三推)2610)를 하게 된 것도 농사가 중요함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왕조(先王朝)에는 또한 빈풍 칠월시(飢風七月詩)2611)를 그림으로 그렸었는데, 금중(禁中)에 아직도 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또 가색의 어려운 점에 관한 시도 있고 연두(年頭)에 기곡(祈穀)하는 제사도 있었으며, 또한 일찍이 따로 윤음(綸音)을 내리셨는데 매양 ‘옥식(玉食)2612)을 해도 달지 않다.’고 분부하셨으니, 선왕(先王)께서 민생의 일을 진념(軫念)하시기를 이처럼 지극하게 했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선왕조(先王朝)에 과연 농상도(農桑圖)를 그린 일이 있었는데, 춘방(春坊)에서 들여온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밑에다 발문(跋文)을 붙였다가, 영중추부사 민진원(閔鎭遠)이 진언(進言)하는 말이 있으며 고쳐서 들여오매, 추모(追慕)하는 마음이 배나 더했었으니, 마땅히 춘궁(春宮)에 주어야 하겠다.” 하였다. 홍성보(洪聖輔)가 말하기를, “민간의 병폐와 고통을 모름지기 나이 어릴 때부터 일찌감치 알게 해야 하는 법인데, 세자(世子)께서 바야흐로 충년(沖年)의 시기에 있으면서 흑시라도 단청(丹青)의 채색(彩色)만 완호(玩好)하는 것으로 여기게 된다면, 전하께서 그림으로 그려 주게한 본뜻이 아니게 되니, 반드시 그림에 임하여 농사의 어려움을 알게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좋은 말이니, 마땅히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겠 (전략)6. 강계의 인삼(人蔘) 채취하는 일이니, 조가(朝家)에 진공(進貢)하는 것</p>	<p>行召對，講《明紀》。 檢討官洪聖輔，引聶夷中詩勉之曰：“人君須知稼穡之艱難。 自古有親自三推，俾知農事之重。 先朝亦畫《飢風》《七月》詩，未知禁中尙有之乎？ 又有稼穡艱難之詩，歲首祈穀之祭，亦嘗別下絲綸，每以玉食靡甘爲教。 先朝軫念民事，至於此極。” 上曰：“先朝果有農桑圖繪畫之事，而自春坊有所進，故其下有跋文矣。 閔領府事有所進言，改而入之，一倍追慕。 當給于春宮矣。” 聖輔曰：“民間疾苦，須自沖年早知之，而世子方在沖年，如以丹青彩色，只爲玩好之物，則非殿下畫給之本意。 必令臨畫而知稼穡之艱難焉。” 上曰：“好矣。 當依施焉。”</p> <p>(전략)其六，江界採蔘事也。 請朝家</p>
----------------------------	--	---

	<p>이외에 본읍(本邑)이 과외로 거두는 폐단을 한결같이 준엄하게 금단하기를 청합니다.</p> <p>(중략)</p> <p>8. 상원군(祥原郡)의 화전(火田)을 종부시(宗簿寺)가 절수(折受)하는 일이니, 해시(該寺)에 절수하게 하신 명을 파하기를 청합니다.”</p> <p>하니, 우악(優渥)한 비답을 내리고,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였다. 이어 이정박이 사본(寫本)을 만든 영액해방도(嶺陔海防圖)를 입계(入啓)하도록 명하였다. 대개 이정박의 상소 내용에 자신이 모사해 왔다고 했기 때 문이다.</p>	<p>進貢之外，本邑科外徵納之弊，一切痛禁。(중략) 其八，祥原郡火田宗簿寺折受事也。請罷該寺折受之命。優批答之，令廟堂稟處。仍命入廷樸所寫嶺陔海防之圖。蓋廷樸疏中，自謂摸來故也。</p>
<p>영조 11권, 3년(1727 정미 / 청 옹정(雍正) 5년) 5월 5일(경신) 4 번째기사</p> <p>통제사 이복연의 청으 로 직전동 궁가의 절 수를 중지하다</p>	<p>직전동(稷田洞) 궁가(宮家)의 절수(折受)를 중지하도록 명하니, 통제사(統制使) 이복연(李復淵)의 청을 따른 것이다. 일찍이 대신(臺臣)이 발계(發啓)하여 그 만두기를 청하였더니, 임금이 궁차(宮差)를 소환하며 타량(打量)하지 말도록 하였다가 이때에 이르러 중지시킨 것이다.</p>	<p>命罷稷田洞宮家折受。從統制使李復淵之請也。先是，臺臣發啓請寢，上召還宮差，勿令打量，至是罷之</p>
<p>영조 11권, 3년(1727 정미 / 청 옹정(雍正) 5년) 5월 13일(무진) 2번째기사</p> <p>양사에서 여러 역적들 의 죄를 다스릴 것을 청하다</p>	<p>(전략) 또 아뢰기를, “전라 우수사(全羅右水使) 정상주(鄭翔周)는 팔십 상노인으로서 곤외(關外)를 제어(制御)할 수 없으니, 청컨대 개차(改差)하소서.”</p> <p>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둔전(屯田)의 절수(折受)에 관한 일과 내시(內侍)를 잡아들여 조처하는 일을 정계(停啓)하였다.</p>	<p>(전략) 又啓言：“全羅右水使鄭翔周，八十篤老，不可制關，請改差。”上從之。屯田折受事、中官拿處事停啓。</p>
<p>영조 12권, 3년(1727 정미 / 청 옹정(雍正) 5년) 7월 18일(임신)</p>	<p>(전략)아! 통탄합니다. 예전부터 궁인(宮人)들이 혹 족속이라 핑계하여 여염(閭閻)의 어린아이를 금중(禁中)에 재우고 혹 대식(對食)2795) 을 핑계하여 요사한 여중이나 천한 과부와 안팎에서 교통합니다. 이것은 다 요사한 자에게</p>	<p>(전략)噫嘻痛哉! 自古宮人輩，或稱族屬，以閭閻小兒，宿留於禁中，或稱對食，與妖尼賤孀，交通於內外。此皆</p>

<p>1번째기사 기질을 변하고, 곤내를 화협하고, 동궁을 교양하는 등 열두 조목의 조현명의 상소</p>	<p>서 인연하고 간사한 자에게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그 출입의 방지를 준엄하게 하여 그 왕래하는 길을 끊으소서. 그리고서야 부정한 길을 막을 수 있고 뒷 폐단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습(近習)을 엄하게 다룬다는 것은 이러합니다(후략)</p>	<p>妖邪之所因緣，奸詭之所由售也。伏願殿下，峻其出入之防，絕其往來之路，然後曲逕可杜，而後弊可防矣。所謂操切近習者，(후략)</p>
<p>영조 12권, 3년(1727 정미 / 청 옹정(雍正) 5년) 7월 23일(정축) 4번째기사 태묘에 나아가 재숙하다</p>	<p>임금이 태묘(太廟)에 나아가 재숙(齋宿)2827) 하였다. 장차 기우제(祈雨祭)를 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가물어서 관원을 보내어 비를 빌게 한 것이 세 번인데 끝내 비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드디어 친히 빈다는 명이 있었고, 특별히 신칙하는 분부를 내려 집사(執事)들은 각별히 재계하고 목욕하고 경건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하고 묘정(廟庭)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은 다 재계하고 목욕하고 술을 금하고 담배를 금하게 하였다. 이날 임금은 연여(輦輿)를 타지 않고, 양산(陽傘)을 물리고 백관에게는 특별히 말을 타는 것을 허락하였으며, 막차(幕次)에서 밤을 지내고 재실(齋室)에 들어가지 않았다.</p>	<p>上詣太廟齋宿。將行祈雨也。時，天旱，遣官禱雨者三，而終未得雨，故遂有親禱之命。別下飭教，令諸執事，另加齋沐虔誠，凡出入廟庭之人，皆令齋沐禁酒禁烟。是日，上不御輦輿，却陽傘，百官則特許乘馬。經夜幕次，不入齋室。</p>
<p>영조 12권, 3년(1727 정미 / 청 옹정(雍正) 5년) 7월 24일(무인) 1번째기사 태묘에 들어가 기우제를 행하다</p>	<p>임금이 태묘에 들어가 기우제를 행하였다. 초헌(初獻)이 끝나고서 임금이 판위(板位)에 서서 예(禮)가 끝나기를 기다리는데, 승지(承旨) 송인명(宋寅明)이 잠시 앉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묘례(廟禮)는 엄숙하고 공경해야 하는데 어찌 감히 앉겠는가?” 하였다. 잠시 소차(小次)에서 쉬며 다음(茶飲)을 들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하늘의 감응이 막연한데 어느 겨를에 생각이 기갈(飢渴)에 미치겠는가?” 하였다.</p>	<p>戊寅/上入廟，行祈雨祭。初獻訖，上立於板位，以待禮畢。承旨宋寅明請暫坐，上曰：“廟禮肅敬，何敢坐乎?” 請暫憩小次，進茶飲，上曰：“冥應漠然，何暇念及飢渴乎?”</p>
<p>영조 12권, 3년(1727 정미 / 청 옹정(雍正) 5년) 7월 26일(경진) 4번째기사 비가 내려 재사에 드</p>	<p>이날 밤에 비가 내렸다. 신하들이 나아가 아뢰기를, “이러한 영응(靈應)을 얻어 단비가 크게 내렸습니다. 장전(帳殿)에서 밤을 새우시면 반드시 손상되실 염려가 있으니, 청컨대 재사(齋舍)에 드소서.” 하였다. 임금이 윤허하지 않았다. 신하들이 말하기를, “비를 얻은 뒤에는 반드시 친히 비실 것이 없습니다. 관원을 보내어 대행하게</p>	<p>是夜雨。諸臣進曰：“獲此靈應，甘霖大霑，帳殿徹夜，必有傷損之慮，請入於齋舍。”上不許。諸臣曰：“得雨之後，不必親禱。遣官攝行，亦有前例。”上曰：“先朝戊子，既詣壇所得</p>

<p>실 것을 건의하나 윤허하지 않다</p>	<p>하는 것도 전례가 있습니다.” 하니, 임금의 말하기를, “선조(先朝) 무자년(1834) 에 이미 단소(壇所)에 가셨는데 비를 얻었으므로 대신(大臣)이 기우제(祈雨祭)를 설행(設行)하지 말고 보사제(報謝祭)2835) 를 설행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으셨다. 이제 희생(犧牲)과 폐백(幣帛)이 이미 진설되고 정시(正時)가 다가왔으니, 어찌 거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p>	<p>雨, 故大臣請勿設祈雨祭, 行報謝祭, 而不爲允從。 今牲幣既陳, 正時已迫, 何可不行乎?”</p>
<p>영조 12권, 3년(1727 정미 / 청 옹정(雍正) 5년) 8월 23일(병오) 6번째기사 삼간택에 필요한 일을 준비하다</p>	<p>호조 판서(戶曹判書) 이태좌(李台佐)가 청대(請對)하여 아뢰기를, “삼간택(三揀擇)의 기일이 멀지 않으니, 별궁(別宮)의 처소를 품정(稟定)하려 합니다.” 하니, 임금의 말하기를, “어의궁(於義宮)으로 정하라.” 하였다. 이태좌가 또 말하기를, “삼간택 이튿날에 호조(戶曹)에서 으레 빈(嬪)의 본가에 쌀과 베를 보내는 것이 신묘년(1914) 의 《등록(騰錄)》에 실려 있으나, 일찍이 신해년(1915) 에 줄이라는 분부가 있었는데, 이제는 어느 전례를 따라야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의 신해년의 전례 【중미(中米) 1백 석(石)과 조미(糙米) 1백 석 중에서 각각 30석을 줄이고, 면포(綿布) 3백 필(疋) 중에서 각각 1백 필을 줄였다.】 를 따르라고 명하였다.</p>	<p>戶曹判書李台佐請對奏曰: “三揀擇期日不遠, 別宮處所, 欲爲稟定矣。” 上曰: “定於於義宮。” 台佐又曰: “三揀擇翌日, 自戶曹例送米布於嬪本家, 載在辛卯騰錄, 而曾在辛亥, 有減損之教。 今從何例乎?” 上命從辛亥之例。 【中米一百石、糙米一百石, 各減三十石。 綿布三百疋、正布三百疋, 各減百疋。】</p>
<p>영조 12권, 3년(1727 정미 / 청 옹정(雍正) 5년) 8월 27일(경술) 3번째기사 대왕 대비전의 하교에 따라 이듬해에 바칠 삼남 삭선의 반을 줄</p>	<p>임금이 대왕 대비전(大王大妃殿)의 하교(下敎)에 따라 당전(當殿)에 이듬해에 바칠 삼남(三南) 삭선(朔膳)을 반을 줄이라고 명하였다. 이에 앞서 동조(東朝)2927) 에서 병오년(1928) ·정미년(1929) 두 해의 삼남의 삭선을 반으로 줄이라는 명이 있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예조(禮曹)에서 내년 정월부터 규례대로 봉진(封進)할 것을 계청(啓靑)하니, 임금이 자교(慈敎)에 따라 내년 가을이 되기를 기다려 다시 여쭙라고 명하였다.</p>	<p>上以大王大妃殿下敎, 命減當殿明年所捧三南朔膳之半。 先是, 自東朝, 有丙午、丁未兩年三南朔膳減半之命, 至是, 禮曹啓請, 自明年正月, 依例封進。 上因慈教, 命待明秋更稟。</p>

<p>이라 명하다</p>		
<p>영조 12권, 3년(1727 정미 / 청 옹정(雍正) 5년) 8월 28일(신해) 7번째기사 흉년과 가뭄으로 공세 정지·군액 감소를 청하는 해남 현감 이수익의 상소</p>	<p>해남 현감(海南縣監) 이수익(李壽益)이 상소하여, 흉년이 들어 백성이 곤궁한 정상을 말하기를, “90일 동안의 큰 가뭄은 근래에 없던 것이므로 한 그릇의 물 값이 5전(錢)이고 사람과 말도 또한 많이 목말라 죽었습니다.” 하고, 이어서 공세(貢稅)를 멈추고 전재(田災)2932) 를 주고 군액(軍額)을 줄이기를 청하였는데, 임금이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였다.</p>	<p>海南縣監李壽益上疏，言歲飢民窮之狀曰： 九十日大旱，挽近所無，一椀之水，價直五錢，人馬亦多渴斃。 仍請停貢稅，給田災，減軍額。 上令廟堂稟處。</p>
<p>영조 13권, 3년(1727 정미 / 청 옹정(雍正) 5년) 9월 2일(을묘) 5번째기사 대비가 호남의 기민을 위해 삭선가미를 내려 진휼하게 하다</p>	<p>동조(東朝)2947) 가 호남(湖南)의 기민(飢民)들을 진념(軫念)하여 특별히 선혜청(宣惠廳)에서 납입한 삭선가미(朔膳價米) 2백 석(石)을 하사하여 진구(賑救)에 보태게 하였다. 이에 앞서 태묘(太廟)에 개수(改修)하는 역사(役事)가 있었는데, 동조가 경비(經費)를 진념하여 삭선가미를 하사하였었고, 이때에 이르러 또 이 명령이 있었다.</p>	<p>東朝軫念湖南飢民，特賜惠廳所納朔膳價米二百石，使之補賑。 先是，太廟有修改之役，而東朝爲軫經費，賜朔膳價米，至是又有此命。</p>
<p>영조 13권, 3년(1727 정미 / 청 옹정(雍正) 5년) 9월 9일(임술) 3번째기사 관례의 행사 일정이다</p>	<p>(전략) 주인이 왕세자를 인도하여 동서(東序)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또 왕세자의 예석(禮席)을 당(堂) 위의 서남쪽을 향하여 설치한다. 왕세자가 면복(冕服)을 입고 나와서 남쪽을 향하여 앉으면 사옹원 부제조(司饗院副提調) 【장계 도정(長溪都正) 이병(李棟)이다.】 가 예준탁(醴樽卓)으로 나아가 예주(醴酒)를 잔에 따르면 빈(賓)이 나아가 예주를 받아 왕세자의 연석 앞으로 가서 북쪽을 향하여 서서 축복하는 말을 한다. 【맛이 아름다운 예주(醴酒)를 꽃다운 제수(祭需)로 올리고 절하며 제사지내어 아름다운 상서(祥瑞)가 이르게 하라.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받아 장수(長壽)하여 잊지 말라.】 그리고 꿇어앉아 예주를 올리면 왕세자가 규(圭)를 꿇고 예주를 받아 제사지내고 나서 예</p>	<p>主人引王世子，適東序帷內，着絳紗袍以出。 賓進王世子席前東向立。 祝曰【以歲之正，以月之令，咸加爾服，以成厥德，萬壽無疆，承天之慶。】乃跪，冠，興復位東向立，主人引王世子，適東序帷內。 又設王世子禮席於堂上西南向。 王世子着冕服以出，南向坐，司饗院副提調【長溪都正棟。】詣醴樽卓，酌醴，賓進受醴，進王世子筵前</p>

	<p>주를 맞본다. 빈(賓)은 물러가 다시 위치로 돌아가고 왕세자는 연석에서 내려와 서쪽을 향하여 재배(再拜)하면 빈(賓)도 재배로 답한다. 필선(弼善)이 왕세자를 인도하여 서계(西階)로부터 내려와 층계의 동쪽에 서서 남쪽을 향하면, 빈(賓)이 조금 앞으로 나아가 자(字)를 올리면서 말한다. 【예의(禮儀)가 이미 갖추어졌으니, 좋은 달 좋은 날에 자(字)를 밝게 고하는 것은 군자(君子)에 있어 당연한 것이다. 이는 복을 받기에 마땅하니, 이 자(字)를 받아서 영원히 잘 보존하라. 전교(傳敎)를 받들어 자(字)를 아무라고 짓는다.】 왕세자가 재배(再拜)하고 말하기를, ‘모(某)가 비록 민첩하지 못하지마는 감히 삼가 받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나서 또 재배한다. 인의(引儀)가 빈(賓)·찬례(贊禮)의 주인(主人)을 인도하여 문으로 나간다.</p>	<p>北面立。祝曰【甘醴維厚，嘉薦令芳，拜受祭之，以定厥祥，承天之休，壽考不忘。】乃跪，進醴。王世子搢圭，受醴，祭醴，啐醴。賓退復位。王世子降筵西向再拜，賓答再拜。弼善引王世子，降自西階，立於階東南向。賓少進字之曰【禮儀既備，令月吉日，昭告厥字。君子攸宜，宜之於嘏。永受保之，奉教字某。】王世子再拜曰：“某雖不敏，敢不祇奉？”又再拜。引儀引賓、贊及主人出門。</p>
<p>영조 13권, 3년(1727 정미 / 청 옹정(雍正) 5년) 9월 9일(임술) 4번째기사 세자빈을 친영한 다음날 대전과 중궁전에 조현례를 행하게 하다</p>	<p>예조(禮曹)에게 아뢰기를, “세자빈(世子嬪)을 친영(親迎)2975) 한 다음날에 대전(大殿)과 중궁전(中宮殿)에 조현례(朝見禮)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대왕 대비전(大王大妃殿)과 왕대비전(王大妃殿)에 조현례를 행하는 조목에 대해서는 예문(禮文)에는 전거(典據)할 곳이 없습니다. 신해년(2976)의 《등록(騰錄)》을 가져다가 상고하여 보니, 먼저 대전과 중궁전에 대추·밤·포[楸脩]를 차린 폐백상을 올리는 예절(禮節)을 행하고 이어 대왕 대비전과 왕대비전에는 단지 전후 사배례(四拜禮)만을 행하였습니다. 지금도 이에 의거하여 행해도 되겠습니까?” 하니, 임금의 대답이 그리하라고 하였다.</p>	<p>禮曹啓言：“世子嬪親迎翌日，有大殿中宮殿朝見禮，而大王大妃殿、王大妃殿朝見禮一款，禮無所據。取考辛亥騰錄，則先行棗、栗、楸脩之禮於大殿、中宮殿，仍詣大王大妃殿、王大妃殿，只行前後四拜禮。今亦依此行之乎？”上可之。</p>
<p>영조 13권, 3년(1727 정미 / 청 옹정(雍正) 5년) 9월 12일(을축) 11번째기사 다시 제도에서 돈과 무명을 섞어 봉납하는</p>	<p>다시 제도(諸道)에서 전·목(錢木)3018) 을 반반씩으로 섞어 봉납(捧納)하게 할 것을 허락하였다. 이에 앞서 임금이 전화(錢貨)에 폐단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혁파(革罷)하려 하였었는데, 조정의 의논이 어렵게 여겼기 때문에 서울과 지방의 관부(官府)에 명하여 돈[錢]으로 봉납할 것을 허락하지 말게 하고 단지 민간(民間)에서 사사로이 쓰는 것만을 허락하였었다. 이때에 이르러 황해 감사(黃海監司) 김시혁(金始燠)이 백성들의 청원에 따라 장계(狀啓)를 올려</p>	<p>復許諸道錢木參半之捧。先是，上以錢貨有弊，擬將革罷，而廷議難之，故命京外官府，勿許捧錢，而只許民間之私用矣。至是，黃海監司金始燠，因民願狀請參半捧錢。左議政趙泰億、戶曹判書李台佐，繼陳只許私用，不許</p>

것을 허락하다

반은 돈으로 섞어서 봉납하게 해 줄 것을 청하였다. 그리고 좌의정(左議政) 조태억(趙泰億), 호조 판서(戶曹判書) 이태좌(李台佐)도 잇달아 ‘사사로이 쓰는 것만 허락하고 공적으로 쓰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 것은 장애되는 점이 많다’고 진달했기 때문에 이 명령이 있게 된 것이다. 이날 이태좌(李台佐)가 아뢰기를,
“만약 전폐(錢幣)를 혁파한다면 의당 저폐(楮幣)를 써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저폐의 편부(便否)에 대해 하문하였다. 조태억(趙泰億)이 말하기를,
“신도 아직 보지 못하였습시다만, 듣건대, 그 제도는 장지(壯紙) 한 장이면 여섯 조각을 낼 수 있고, 그 모양은 병조(兵曹)의 초료판(草料板)3019) 과 같아서 백관(百官)들의 능료(廩料)를 나누어 줄 적에 썼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래 쓰면 해져서 떨어지고 찢어지기 때문에 떨어지는 대로 다시 만들어야 하므로 결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고, 이태좌(李台佐)는 말하기를,
“이른바 조량목(助糧木)이라는 것은 바로 시장에서 쓰는 상목(常木)3020)인데, 신이 어릴 적에 본 바로는 길이나 너비가 너무 짧아서 세간에서 이른바 함산포(咸山布)라는 것과 같아서 오래 쓰면 거칠고 검게 되니, 이것은 사가(私家)에서 아침저녁으로 시장에서 쓰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다른 데에 쓸 수가 없습니다. 병진년3021)에 처음 소전(小錢)을 주조했는데 소전 네 푼이 대전(大錢) 한 푼의 값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저폐(楮幣)와 조량목(助糧木)은 내가 아직 보지 못했는데, 일단 돈을 사용한 뒤로 인심(人心)과 세도(世道)가 날로 점차 괴려(乖戾)되어가고 있으니, 이는 우물(尤物)이라고 할 수 있다. 돈을 혁파한다면 다른 화폐(貨幣)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으니, 마땅히 묘당(廟堂)에서 헤아려 의논하여 정하도록 하라.”

公用之多有窒礙，故有是命。是日，台佐奏曰：“若罷錢幣，則當用楮幣矣。”上問楮幣便否，泰億曰：“臣未及見之，而聞其制度，則壯紙一張，可出六片，其狀如兵曹草料板，而用之於百官頒料。若久用則弊裂，故隨弊隨造，決非久用之物矣。”台佐曰：“所謂助糧木，卽市上常木。臣幼時見之，則長廣甚短，如世所謂咸山布，而久用則麤黑，此不過爲私家朝夕市上之用，而不可他用。丙辰年間，始造小錢。小錢四分爲大錢一分之價云，”上曰：“楮幣與助糧木，予未及見，而一自用錢之後，人心世道，日漸乖謬，此可謂尤物。罷錢則他幣不可不用，當與廟堂，商確以定。”

	하였다.	
<p>영조 13권, 3년(1727 정미 / 청 옹정(雍正) 5년) 9월 20일(계유) 3번째기사 왕대비전에서 봉납한 쌀을 호남의 진휼에 보내게 하다</p>	<p>왕대비전(王大妃殿)에서 선혜청(宣惠廳)에서 봉납(奉納)한 쌀 2백 석을 내려 호남(湖南)의 진구(賑救)에 보태 쓰라고 명하였다.</p>	<p>王大妃殿，賜惠廳所納米二百石，命補湖南賑資。</p>
<p>영조 13권, 3년(1727 정미 / 청 옹정(雍正) 5년) 9월 20일(계유) 4번째기사 사헌부에서 북도 내노비의 신공을 징수하는 폐단을 없애기를 청하나 따르지 않다</p>	<p>양사(兩司)에서 전일에 합계(合啓)한 것을 다시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장령(掌令) 최집(崔集)이다.】 전일에 아뢰던 것을 다시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북도(北道)의 내노비(內奴婢)3090) 신공(身貢)에 대한 대가(代價)를 병조(兵曹)와 호조(戶曹)에서 반을 나누어 이송(移送)하게 하는 전례가 있는데, 처음에는 10동(同)에 불과했었습니다만, 임진년(3091)에 이르러서는 이미 20동(同)이 되었기 때문에 병판(兵判) 박연(朴筵)이 진달하여 이송하게 하지 말 것을 청하니 10동을 감하고 본수(本數)만 두도록 명하였습니다. 이는 실로 선조(先朝)에서 경비(經費)를 진념(軫念)한 성의(盛意)에서 나온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내노비의 수효가 해마다 불어나서 지금은 병조(兵曹)에서 이송한 것이 1백 30동(同)이나 되기에 이르렀고 탁지(度支)3092)도 그러한 관계로 경용(經用)이 날로 모자라고 있습니다. 듣건대, 노비의 신공(身貢)을 본도(本道)에서 1인당 12두(斗)씩을 거두어 들이고 있는데 각고(糶糶)3093)에 회부(會付)할 즈음에 백성들이 그 폐해를 받는다고 합니다. 당초에 상환(相換)하게 한 것은 이것이 변방(邊方)을 중히 여기는 뜻에서 나온 것이니, 변방의 방비에 여유가 있으면 경사(京師)로 실어 들여오는 것은 옛날에도 이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본도(本道)에서 징수하는 포목(布木)은 12두(斗)의 쌀을 포목 1필(疋)씩으로 쳐서, 덕원(德源) 이북은 선로(船路)에 장애되는 곳이 없고 안</p>	<p>兩司申前合啓，不允。 憲府【掌令崔集。】申前啓，不允。 又啓曰：“北道內奴婢身貢之代，自兵、戶曹有分半移送之例，而初則不過十同，至壬辰，已爲二十同，故兵判朴筵，陳請勿送，則命減十同，只存本數。 此實先朝軫念經費之盛意，而內奴婢逐年滋息，今兵曹所送，至於一百三十同之多，度支亦然，經用日縮。 聞奴婢身貢，自本道，逐名收捧十二斗，而會付各邑糶糶之際，民受其弊。 當初相換，寔出於重邊，而邊備有餘，則輸入京師，古有是例。 若令本道徵布，則十二斗米，可當一疋之布。 德源以北，船路無礙，安邊以南，不過五日之程，輸納其本司，則內司無替徵之弊，經費無移送之慮。 請自今內奴婢身貢，自本道徵布，直納本司，永廢兵、戶曹移送之例，以</p>

	<p>변(安邊) 이남은 불과 5일 노정(路程)이니 이를 본사(本司)로 수납(輸納)하게 한다면, 내수사(內需司)에는 체징(替徵)하는 폐단이 없게 되고 경비(經費)에는 이송(移送)하는 걱정이 없게 될 것입니다. 청컨대 지금부터는 내노비(內奴婢)의 신공(身貢)을 본도(本道)에서 포목으로 징수하여 맞바로 본사(本司)에 수납하게 해서 병조와 호조에서 이송하는 준례를 영원히 폐기하여 경비를 돌보게 하소서.”</p> <p>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p>	<p>恤經費。”不從。</p>
<p>영조 13권, 3년(1727 정미 / 청 옹정(雍正) 5년) 9월 29일(임오) 1번째기사 인정전에서 왕세자의 초계례를 보다</p>	<p>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왕세자(王世子)의 초계례(醮戒禮)를 보았다. 왕세자가 전정(殿庭)에서 사배례(四拜禮)를 행하고 서계(西階)로부터 올라와 들어오니, 상례(相禮) 윤대영(尹大英)이 전도(前導)하고 보덕(輔德) 조익명(趙翼命)과 필선(弼善) 이정필(李廷弼)이 좌우에서 보좌(輔佐)하였다. 왕세자가 좌석(座席)의 서쪽으로 나아가 남쪽을 향하여 서니, 사옹원 부제조(司饗院副提調) 평원 도정(平原都正) 이표(李標)가 술잔을 가져다가 술을 따라 가지고 나아가 왕세자 앞으로 나아갔다. 왕세자(王世子)가 몸을 굽혀 사배(四拜)한 뒤에 좌석에 올라가 꿇어앉아 규(圭)를 쫓았다. 표(標)가 술잔을 왕세자에게 드리니, 왕세자가 잔을 받았다. 사옹원 직장(司饗院直長) 송징태(宋徵泰)가 찬탁(饌卓)을 좌석 앞에 바치니, 왕세자가 제주(祭酒)3139) 하고 일어나 좌석에서 내려와 서남쪽을 향하여 꿇어앉아 술을 입에 댄 다음 그 술잔을 표(標)에게 주었다. 이어 사배하니, 송징태가 찬탁을 철거하였다. 윤대영(尹大英)이 왕세자를 인도하여 어좌(御座) 앞으로 나아가 동쪽을 향하여 꿇어앉으니, 임금이 명하기를, ‘가서 너의 배필(配匹)을 맞이하여 나의 종사(宗事)를 계승하되 엄하게 잘 거느리라.’ 하니, 왕세자가 아뢰기를, ‘신(臣) 아무는 삼가 교지(教旨)를 받들겠습니다.’ 하고, 이어 사배하였다. 그리고 나서 윤대영이 왕세자를 인도하여 서계(西階)로부터 내려와 나갔다.</p>	<p>壬午/上御仁政殿，見王世子醮戒之禮。王世子於殿庭，行四拜禮，陞自西階而入。相禮尹大英前導，輔德趙翼命、弼善李廷弼左右贊相。王世子就席西南向立，司饗院副提調平原都正標，取爵酌酒，進詣王世子前。王世子鞠躬四拜後陞席跪，搯圭。標以爵進王世子。王世子受爵，司饗院直長宋徵泰，薦饌卓於席前。王世子祭酒，興降席西南向，跪啐酒，以爵授標，仍四拜。徵泰撤饌卓，大英引王世子進御座前，東向跪。上命之曰：“往迎爾相，承我宗事，勗帥以嚴。”王世子曰：“臣某謹奉教旨。”仍四拜。大英引王世子，降自西階而出。</p>
<p>영조 13권, 3년(1727 정미 / 청 옹정(雍正)</p>	<p>이날 왕세자가 별궁(別宮)에 나아가 친영례(親迎禮)를 행하였다. 친영(親迎)하기 하루 전날에 전설사(典設司)에서 별궁 대문 밖에다 왕세자의 위차(位次)를</p>	<p>是日，王世子詣別宮，行親迎禮。親迎：</p>

5년) 9월 29일(임오)
2번째기사
왕세자가 별궁에 나가
친영례를 행하다

설치하는데, 왕세자가 명을 받고 나서 연(輦)을 타고 별궁으로 나아가니, 찬자(贊者)가 전안(奠鴈)3140) 하는 위치를 당중(堂中)에 북향(北向)하도록 설치하였다. 왕세자가 문 동쪽에 서니, 빈자(賓者)가 나아와서 아뢰기를, ‘감히 행사(行事)하기를 청합니다.’ 하고, 필선(弼善)은 꿇어앉아 왕세자에게 아뢰기를, ‘이것은 초혼(初婚)이니 교지(教旨)를 받들고 명을 받으소서.’ 하였다. 주인(主人)이 문 밖에 나아가 맞이하는데 동쪽을 향하여 재배(再拜)하니, 왕세자가 재배로 답하였다. 주인이 읍양(揖讓)하면서 먼저 문으로 들어가 왼쪽으로 가니, 장축자(掌畜者)가 기러기를 필선(弼善)에게 주고 필선은 꿇어앉아 왕세자에게 받들어 주었다. 왕세자가 기러기를 들고 문으로 들어가는데 오른쪽으로 들어갔다. 주인은 서계(西階)로부터 올라가고 왕세자는 동계(東階)로 올라갔다. 부모(傅姆)3141) 가 빈(嬪)을 인도하여 방(房)에서 나와 모(姆)의 동북쪽에 서서 남향(南向)하니, 왕세자는 위치에 나아가 북향하여 꿇어앉아 전안(奠鴈)하였다. 엎드렸다 일어나 재배(再拜)를 마치고 나서 내려와 나가니, 사복시첨정(司僕寺僉正)이 내문(內門) 밖에서 연(輦)을 탔다. 왕세자가 대문 밖으로 나아가 연을 타고 환궁(還宮)한 뒤에 통명전(通明殿)에서 동뢰례(同牢禮)를 행하였다. 이날 내시(內侍)가 빈(嬪)의 위치를 동궁(東宮)의 중문(中門) 안에 서 남쪽을 향하게 하여 설치하는데 저녁이 되려 할 적에 수규(守閨)가 동뢰례를 할 욕석(褥席)을 실내(室內)에 진설하였다. 왕세자의 욕석은 동쪽에 있어 서쪽을 향하게 하고, 빈의 욕석은 서쪽에 있어 동쪽을 향하게 하였다. 그리고 좌석의 남쪽에다 각각 배석(拜席)을 설치하였다. 땅거미질 무렵 장식(掌食)3142) 이 실내(室內)에 주탁(酒卓)을 설치하고 그 위에 두 개의 잔근(盞鬮)을 가져다 놓았다. 왕세자가 연(輦)에서 내려 들어가 함문(閤門) 밖 동쪽에서 기다리니, 빈(嬪)은 연에서 내려 위치로 들어가 수식(首飾)을 매만짐을 끝내자, 수규(守閨)가 빈을 인도하여 함문(閤門) 밖 서쪽으로 나아갔다. 왕세자가 빈(嬪)에게 읍하고 함문으로 들어가니, 수규(守閨)가 빈을 인도하여 따라서

前一日, 典設司設王世子位於別宮大門外。王世子既受命, 乘輦詣別宮。贊者設奠雁位於堂中北向。王世子立於門東, 賓者進曰: “敢請事。” 弼善跪白, 王世子曰: “以茲初昏, 奉教承命。” 主人出迎於門外, 東向再拜, 王世子答再拜。主人揖讓, 先入門而左。掌畜者以雁授弼善。弼善跪捧授王世子。既執雁入門而右。主人陞自西階, 王世子陞自東階。傅姆導嬪出房, 立於姆之東北南向。王世子就位, 北向跪, 奠雁, 俯伏與再拜訖, 降出。司僕寺僉正進輦於內門外, 傅姆導嬪, 守閨前引。出內門至輦後, 王世子舉簾以俟。姆辭曰: “未教, 不足與爲禮。” 嬪乘輦。王世子出大門外, 乘輦還宮。行同牢禮於通明殿。是日, 內侍設嬪次於東宮中門內西南向。將夕, 守閨設同牢褥席於室內。王世子席在東西向, 嬪席在西東向。各設拜席於座之南。初昏, 掌食設酒卓於室內, 置兩盞鬮於其上。王世子降輦, 入俟於閤外之東。嬪降輦, 入次整飾訖, 守閨引嬪, 詣閤外之西。王世子揖嬪入閤, 守閨引嬪從入。王

	<p>들어갔다. 왕세자가 빈에게 읍하고 실내(室內)로 들어가 좌석으로 나아가 서쪽을 향하여 서니, 빈도 좌석으로 나아가 동쪽을 향하여 섰다. 빈이 재배(再拜)하니, 왕세자도 재배하여 답하였다. 빈에게 읍하고 좌석으로 나아가니, 장찬(掌饌)3143) 이 찬탁(饌卓)을 들고 들어와서 왕세자와 빈의 좌석 앞에다 설치하고서, 장찬(掌饌) 2인이 잔(盞)을 가져다가 술을 따랐다. 한 사람은 꿇어앉아 왕세자에게 진헌하고 한 사람은 꿇어앉아 빈에게 진헌하였다. 왕세자와 빈이 함께 잔을 받아 제주(祭酒)하고 마시기를 끝내니, 2인이 그 잔을 다시 받아 찬탁에다 가져다 놓았다. 장찬(掌饌)이 함께 탕(湯)을 내어와 먹은 다음 끝내었다. 재윤(再醕)과 삼윤(三醕)도 모두 처음 하던 의주(儀註)와 같았다.</p>	<p>世子揖嬪入室，卽席西向立，嬪卽席東向立。嬪再拜，王世子答再拜，揖嬪就座。掌饌學饌卓，入設於王世子及嬪座前。掌饌二人，取盞酌酒，一人跪進于王世子，一人跪進于嬪。王世子及嬪，俱受盞，祭酒飲訖。二人進受盞，復于卓。掌饌俱進湯，食訖，再醕三醕，皆如初儀。</p>
<p>영조 13권, 3년(1727 정미 / 청 옹정(雍正) 5년) 10월 1일(계미) 2번째기사 나라의 경사로 인해 팔도 대동미의 삭감을 명하고 삼남은 더 많은 혜택을 주다</p>	<p>이날 임금의 여러 신하들에게 유시(諭示)하기를, “나라에 큰 경사가 있었는데도 백성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실로 백성과 함께 경사를 함께한다는 의의가 없는 것이다. 지난번 차대(次對) 때 이미 전세(田稅)를 견감시킬 것으로 하교(下敎)한 바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은택이 아래까지 미쳐갈 수 있겠는가?” 하였다. 영부사(領府事) 이광좌(李光佐)가 나아가 아뢰기를, “지금 국가(國家)의 저축이 탕갈되어 훈련 도감(訓練都監)의 군병(軍兵)들에게 급료를 지급할 수 없는 실정이고 공물가(貢物價)도 계속해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삼남(三南)의 대동미(大同米)를 만일 1두(斗)씩 감한다면 감하는 것이 3만 석(石)에 이르게 될 것이니, 깊이 헤아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남(三南) 가운데 더욱 극심한 고을의 분수재(分數災)를 처음에 허급(許給)했다면 실제의 혜택이 될 수 있었습시다만, 지금은 이미 절기(節期)가 늦어 실로 난처(難處)하게 되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극히 어리석으면서도 영묘(靈妙)한 것은 백성과 같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속일 수 있겠는가? 그리고 대동미의 견감을 삼남(三南)에만 시행한다면 나머</p>	<p>是日，上諭諸臣曰：“國有大慶，民不蒙惠，則實無與民同慶之意。頃日次對，已以田稅蠲減之意，有所下教，何以則惠能下究乎？”領府事李光佐進曰：“目今國儲蕩竭，都監軍兵，不能給料，貢物之價，亦不能繼給。三南大同，若減一斗，則所減將至三萬石，不可不深量矣。三南尤甚邑分數災，初若許給，則可爲實惠，而今已節晚，實爲難處矣。”上曰：“至愚而神者，莫如百姓，豈可欺乎？且大同之減，只行於三南，則五道之民，必將缺望，不可不均施。三南尤甚邑，大同限三年除減，五道尤甚邑，身貢身布，例減之外，減四分之一。”</p>

	<p>지 오도(五道)의 백성들이 반드시 서운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니, 고르게 시행하지 않을 수 없다. 삼남(三南)의 더욱 극심한 고을은 으레 감하는 신공(身貢)·신포(身布) 이외에 4분의 1을 감하게 하라.” 하였다.</p>	
<p>영조 13권, 3년(1727 정미 / 청 옹정(雍正) 5년) 10월 5일(정해) 4번째기사 조문명이 대동미를 견감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니 금년분의 모곡(穀)만 견감하기를 청하다</p>	<p>호조 참판(戶曹參判) 조문명(趙文命)이 상소하기를, “가례(嘉禮)가 있는 다음날 미포(米布)를 견감시키라는 명령이 있었으니, 이는 백성들과 경사를 함께한다는 성대한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저축이 탕갈되어 거의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니, 대동미(大同米)는 견감시킬 수가 없습니다. 각 고을의 조적(糶糶)을 파악하여 금년분의 모곡(耗穀)을 감하되 반을 감하기도 하고 3분의 1을 감하기도 한다면 백성들이 그 은택을 고루 입게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였다.</p>	<p>戶曹參判趙文命上疏言： 嘉禮翌日，有減米減布之命。與民同慶，甚盛意也。然國儲枵然，殆不成樣，大同不可減給。若就各邑糶糶，減今年之耗，或半或三之一，則民將均被其惠。 上令廟堂稟處。</p>
<p>영조 13권, 3년(1727 정미 / 청 옹정(雍正) 5년) 10월 10일(임진) 1번째기사 오명항이 경재 이하와 삼사에서 수령을 천거하게 하기를 청하다</p>	<p>(전략) 오명항이 또 아뢰기를, “우리 나라의 대동법(大同法)은 쌀을 거두어 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백성을 역사(役事)시키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침(陵寢)의 역사와 담지군(擔持軍)3218)에게 제급(題給)할 적에는 저축된 대동미(大東米)를 덜어 내어 매 1인당 각각 5승(升)씩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니, 고상신(故相臣) 김육(金堉)이 법을 만든 좋은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 이 법이 점점 폐기되어 대가(代價)를 주지 않고 백성들을 역사시키고 있습니다. 금후로는 일체 막으소서.” 하니, 임금이 신칙하여 엄중히 금지하게 하라고 명하였다.</p>	<p>(전략) 命恒又奏曰：“我朝大同法，既收其米，故不許役民，陵寢役事及擔持題給時，除出大同儲置米，每一人各給五升。故相臣金堉設法之美可知，近來此法漸廢，無價而役民。今後則請一切方塞。”上命申飭嚴禁。</p>
<p>영조 13권, 3년(1727 정미 / 청 옹정(雍正) 5년) 10월 13일(을미)</p>	<p>설서(說書) 이주진(李周鎭)이 상소하여 춘궁(春宮)을 교도(教導)하는 방도에 대해 논하기를, “복어(服御)와 기명(器皿)은 흑시라도 지나치게 사치하지 말게 하고, 유악(帷</p>	<p>乙未/說書李周鎭上疏，論教導春宮之道曰： 服御、器皿，無或過侈，帷帳、屏壁，</p>

<p>1번째기사 설서 이주진이 상소하여 동궁을 교육하는 방도를 아뢰니 그대로 따르다</p>	<p>幄)과 병벽(屏壁)은 비단과 무늬놓는 것을 일삼지 말게 하시며, 반드시 옛날의 저이(儲貳)3230)가 공경하고 효도하는 방법과 현비(賢妃)의 정순(貞順)한 행실을 골라 회화(繪畫)로 그려서 병장(屏障)을 벌려 세워놓고 아침저녁으로 보면서 반성하는 자료로 삼게 하소서.” 하고, 또 청하기를, “강규(講規)에 구애하지 말고 궁료(宮僚)들을 불러들여 토론하고 강확(講確)하게 하소서.” 하고, 또 청하기를, “강연(講筵)을 으레 사시(巳時)에 여는데, 겨울철에는 아침에 추우니 마땅히 오시(午時) 초각(初刻)으로 몰려 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옹게 여겨 받아들였고 시각은 몰려 정할 것을 허락하였다.</p>	<p>無事藻綵。必擇古儲貳敬孝之方及賢妃貞順之行，施諸繪畫，列于屏障，俾爲朝夕觀省之資。 又請勿拘講規，召入宮僚，討論講確，又請講筵，例在巳時，而冬節朝寒，宜選定於午初。上嘉納，時刻許令退定。</p>
<p>영조 13권, 3년(1727 정미 / 청 옹정(雍正) 5년) 10월 13일(을미) 2번째기사 경종의 《일기》를 살펴 보고 사관에게 경종의 검덕을 정확히 밝히게 하다</p>	<p>임금이 갑진년(3231)의 《일기(日記)》를 가져다 보고 분부하기를, “《일기(日記)》에 어공(御供)에 쓰는 기명(器皿)은 모두 은기(銀器)를 썼다는 말이 있는데 선조(先朝)3232)께서는 검덕(儉德)이 뛰어나시어 어공에 쓰는 그릇을 은보(銀寶)로 쓴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주서(注書)의 기록이 이와 같았으니, 이는 반드시 주서가 시골뜨기여서 자기(磁器)를 은기(銀器)로 잘못 안 것일 것이다. 이런 말이 국사(國史)에 기재되면 선조(先朝)의 검덕을 후세에 밝힐 수가 없으니, 이런 뜻으로 사관(史官)에게 분부하여 일기를 상세하게 기록함으로써 선왕(先王)의 검덕(儉德)을 밝히게 하라.” 하였다.</p>	<p>上取覽甲辰日記，敎曰：“日記中有御供器皿，皆用銀器之語，而先朝儉德出常，御供之器，未嘗用銀寶。注書所錄如此，此必注書鄉野，錯認磁器爲銀器也。此語載在國乘，則先朝儉德，無以明於後世。此意分付史官，詳錄日記，以昭先王儉德也。”</p>
<p>영조 14권, 3년(1727 정미 / 청 옹정(雍正) 5년) 11월 23일(을해) 2번째기사 빈궁이 홍역을 앓았을 때 수고한 약원 제신</p>	<p>빈궁(嬪宮)이 홍역(紅疫)을 앓았을 때에 약원 제신(藥院諸臣)의 노고를 생각하여 상(賞)을 내려 주었는데, 차등이 있었다. <그 약원 제신은> 약방 도제조(藥房都提調) 이광좌(李光佐) 【안구마(鞍具馬)와 표피(豹皮)를 내려 주었다.】， 제조(提調) 오명항(吳命恒)과 부제조(副提調) 정석삼(鄭錫三) 【각기 숙마(熟馬)와 녹비(鹿皮)를 내려 주었다.】， 사관(史官) 【승륙(陞六:7품 이하의 벼슬아치가 6품에 오르는 일)하였다.】， 춘방관(春坊官) 【각기 아마(兒馬)를 내려 주었</p>	<p>錄嬪宮疹患時，藥院諸臣之勞，賞賜有差。藥房都提調李光佐【鞍具馬、豹皮。】，提調吳命恒、副提調鄭錫三【各熟馬、鹿皮。】，史官【陞六。】，春坊官【各兒馬。】，醫官李燁【加資、熟馬、銀子。】，差備諸醫官</p>

<p>에게 차등있게 상을 내리다</p>	<p>다.】, 의관(醫官) 이엽(李燁)【가자(加資)하고 숙마(熟馬)와 은자(銀子)를 내려 주었다.】, 차비 제의관(差備諸醫官)【가자(加資)하고 녹비(鹿皮)를 내려 주었다.】, 장무관(掌務官)【혹은 준직(準職)3354) 하고 혹은 가자(加資)하였다.】, 의약(議藥)에 함께 참여한 여러 의관(醫官)【혹은 숙마(熟馬), 혹은 아마(兒馬), 혹은 현궁(弦弓)을 내려 주었다.】, 원역(員役)【쌀과 면포를 내려 주었다.】 이었다.</p>	<p>【加資、鹿皮。】, 掌務官【或準職、或加資。】, 同參議藥諸醫官【或熟馬、或兒馬、或弦弓。】, 員役【米、布。】。</p>
<p>영조 14권, 3년(1727 정미 / 청 옹정(雍正) 5년) 11월 26일(무인) 1번째기사 선혜청에서 국고 고갈로 금년의 삼남·경기 감영의 관수를 감하기를 청하다</p>	<p>선혜청(宣惠廳)에서 아뢰기를, “작년에 흉년으로 인하여 삼남(三南) 및 경기(京畿)의 용도(用度)를 이미 재감(裁減)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비록 약간 낫다고 하나 국고의 저축이 탕갈되었으니, 삼남 감영(三南監營)의 관수(官需)를 전년 그대로 모두 8분의 1을 재감하고 무릇 응당 지급할 것은 선가(船價) 이외에는 또한 8분의 2를 재감할 것이며, 경기는 감영의 관수(官需)를 전에 이미 재감하였지만 모든 잡비(雜費)도 또한 삼남의 규례에 의하여 8분의 2를 재감하여 절약하는 뜻을 보이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p>	<p>戊寅/宣惠廳啓曰：“昨年因歉荒，三南及京畿用度，既已裁減。今年雖曰稍勝，國儲罄竭，三南營、官需，請仍前並減八分之一，凡應下者，船價外亦減八分之二。京畿則營、官需，前已裁減，而凡雜費則亦依三南減八分之二，以示節損之意。”上從之。</p>
<p>영조 14권, 3년(1727 정미 / 청 옹정(雍正) 5년) 12월 1일(임오) 1번째기사 진연청에서 진휼청의 쌀을 획급하여 연수에 보충하기를 청하니 따르다</p>	<p>진연청(進宴廳)에서 아뢰기를, “진연(進宴)할 때에 모든 일을 갑진년(3362)에 이미 시행한 규례에 따라야 하는데, 그 《등록(騰錄)》을 상고해 본즉, 갑진년에는 선조(先朝) 정사년(3363)의 절손(節損)한 전례를 인용(引用)하여 외방에 나누어 복정(卜定)하는 폐단을 제거하고 진휼청(賑恤廳)의 쌀 1천 석을 획급(劃給)하여 연수(宴需)에 보충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도 또한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전례에 따라 획급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진휼청에서 쌀 8백 석을 획급하였다.】</p>	<p>朔壬午/進宴廳啓曰：“進宴時，凡事當遵甲辰已行之例，而取考騰錄，則甲辰引先朝丁巳年節損之例，除減分定外方之弊，而劃給賑廳米一千石，以補宴需。今亦宜令廟堂，依例劃給。”上從之。【賑廳劃給八百石。】</p>
<p>영조 14권, 3년(1727 정미 / 청 옹정(雍正) 5년) 12월 2일(계미)</p>	<p>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진연청등록(進宴廳騰錄)》을 상고해 본즉, 외조(外朝)의 명부(命婦)3365)</p>	<p>禮曹啓曰：“取考《進宴騰錄》，則外朝命婦減省，已有定式，而王妃母、公·翁主、王子夫人、大殿乳母，有參宴</p>

<p>3번째기사 진연에 참여할 대상을 정하다</p>	<p>는 감생(減省)하는 것으로 이미 정해진 규식(規式)이 있으나 왕비(王妃)의 모친(母親)과 공주(公主)·옹주(翁主)와 왕자 부인(王子夫人)과 대전 유모(大殿乳母)는 연회(宴會)에 참여하는 절목(節目)이 있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모두 마련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p>	<p>之節目。”上曰：“并勿爲磨鍊。”</p>
<p>영조 14권, 3년(1727 정미 / 청 옹정(雍正) 5년) 12월 11일(임진) 1번째기사 궁성에 입직한 군졸들 에게 옷과 약 등을 내 려 주라고 명하다</p>	<p>궁성(宮城)에 입직(入直)하는 군졸들에게 의자(衣資)와 약물(藥物)을 내려 주라고 명하였다. 이때에 일기가 심히 차가워 군졸 가운데 동상자(凍傷者)가 많으므로 이 분부가 있었다.</p>	<p>壬辰/命賜衣資藥物於宮城入直軍卒。時，天寒，軍多凍傷，故有是命。</p>
<p>영조 14권, 3년(1727 정미 / 청 옹정(雍正) 5년) 12월 25일(병오) 8번째기사 진상의 폐단을 막을 것을 하교하다</p>	<p>임금이 하교하기를, “진상(進上)에 봉진(封進)하는 물건을 선조(先朝)에서 이미 바로잡았으나, 그 폐단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자전(慈殿)께서 일찍이 하교하시기를, ‘녹포(鹿脯)한 가지로써 말하더라도 궁중(宮中)에 들어와서는 별로 쓸 데가 없고 외방에서는 폐단이 있으니 정지함이 마땅하고, 무릇 기타 모든 진상도 모두 반액으로 감하여 봉진하게 하라.’고 하셨다. 자전의 덕의(德意)가 이와 같으니, 그 양지(養志)하는 도리에 있어 진실로 우러러 본받음이 마땅하겠다. 삭선(朔膳) 및 정조(正朝)의 물선(物膳)을 주원(廚院)3395)에 물어보고 별단(別單)에 써서 아뢰도록 하라. 마땅히 표지(標紙)를 붙여 감제(減除)할 것이다.”</p>	<p>教曰：“進上封進之物，先朝既釐正，而其弊尙多。慈殿嘗下教曰：‘以鹿脯一事言之，內入則無用，在外則有弊，停之爲宜。凡諸進上，皆令減半封進。’慈殿德意如此，其在養志之道，固宜仰體。朔膳及正朝物膳，問于廚院，別單書啓。當付標減下。”</p>
<p>영조 15권, 4년(1728 무신 / 청 옹정(雍正) 6년) 1월 1일(임자) 2 번째기사</p>	<p>대사간 송인명(宋寅明)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오늘은 곧 정월(正月) 원일(元日)입니다. 천지(天地)에 있어서는 음기(陰氣)와 양기(陽氣)가 쇠잔하고 회복하는 운회(運會)가 있으며, 한 몸에는 공도(公道)와 사욕(私慾)이 사라지고 자라나는 구별(區別)이 있으니, 돌이켜 궁구한다면</p>	<p>大司諫宋寅明上疏，略曰： 今日，卽月正元日也。在天地有陰陽剝復之運，在一身有公私消長之別，反而究之，一理而已。陽與公爲剛爲善，</p>

<p>송인명이 정월 원일에 면계하는 소를 진달하다</p>	<p>한가지 이치일 뿐입니다. 양기와 공도는 강(剛)이 되고 선(善)이 되며 음기와 사욕은 유(柔)가 되고 악(惡)이 되니, 선왕(先王)이 양기를 부추기고 음기를 억누르며 성인(聖人)이 사욕을 버리고 천리(天理)를 보존하는 것은 똑같은道理입니다. 안으로는 궁첩(宮妾)과 성색(聲色)을 멀리하기가 지극히 어려우나, 멀리하지 아니하여 몸에 해로움이 됨을 안다면 반드시 참고 멀리하기를 마치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할 것이요, 밖으로는 공손하고 아첨하는 무리를 물리치기가 지극히 어려우나, 물리치지 아니하여 덕의(德義)에 누(累)가 됨을 안다면 반드시 결단하여 물리치기를 장차 더럽히는 것처럼 할 것이니, <선악(善惡)이> 서로 싸워 악을 머물러 둠이 없이 말끔히 사욕을 버려 반드시 없애기를 기필한다면, 성인(聖人)의 하늘을 본받는 일이 이에 완료될 것입니다.”</p> <p>하니, 대답하기를, “을사년(3401) 봄 호서(湖西)에 있을 때 세초(歲初)에 진계(陳戒)한 말은 지금까지 가상하게 여기고 있다. 삼원(三元)3402) 날에 또 면계(勉戒)하는 소를 진달했으니, 매우 가상하다. 어찌 유의(留意)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p> <p>하였다.</p>	<p>陰與私爲柔爲惡，先王所以扶陽而抑陰，聖人所以寡欲而存理，同一道也。內而便嬖聲色之至難遠也，而既知其不遠而爲累於身，則必忍而遠之，如不及焉，外而遜順諂佞之至難斥也，而既知其不斥而爲累於德，則必斷而斥之，若將浼焉，鑿戰相似，無所遲留，寡欲之至，必期於無，則聖人繼天之能事，於是乎畢矣。</p> <p>批曰：“乙巳春在湖西，歲首陳戒之言，尙今嘉之。三元之日，又陳勉戒之疏，深用嘉之。可不留意焉？”</p>
<p>영조 15권, 4년(1728 무신 / 청 옹정(雍正) 6년) 1월 5일(병진) 2번째기사 호조 판서 권이진이 제주의 공물 진상을 감제해 주기를 청하다</p>	<p>임금이 하교하기를, “제주(濟州)는 바다 가운데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인 만큼 무릇 방물(方物)의 진상(進上)에 있어 선조(先朝)에서 매양 진휼(軫恤)을 더하였고, 자성(慈聖)께서 반드시 감제(減除)하고자 하였으니, 그 양지(養志)의 도리에 있어 그 뜻을 봉승(奉承)함이 마땅하다. 탄일(誕日) 이외에 정조(正朝)와 동지(冬至)의 방물은 우선 감제하도록 하라.”</p> <p>하였다. 호조 판서(戶曹判書) 권이진(權以鎭)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이미 어량(漁梁)의 수세(收稅)를 혁파하시고, 또 탐라(耽羅)의 방물을 감제하셨으니, 참으로 거룩하신 일입니다. 옛날 천자(天子)의 음식과 의복의 수용(需用)은 산택(山澤)의 조세(租稅)로서 우인(虞人)에게서 나왔는데, 재</p>	<p>教曰：“濟州是絕海遠島，凡於方物進上，自先朝每加軫恤，慈聖必欲除減。其在養志之道，宜卽奉承。誕日外正朝、冬至方物，其令姑減。”戶曹判書權以鎭曰：“殿下既罷漁梁收稅，又減耽羅方物，盛德事也。古者天子膳服之需，以山澤之稅，出於虞人，財賦不與於此，漢之水衡、唐之少府，皆是職也。皇明光祿寺，有屬銀五十萬兩，以供天子一歲之衣食，天子欲用銀，則</p>

	<p>부(財賦)는 여기에 들지 않았으니, 한(漢)나라의 수형(水衡)과 당(唐)나라의 소부(少府)는 모두 이 직책이었습니다. 명(明)나라 광록시(光祿寺)는 지급된 은자(銀子) 50만 냥을 가지고 1년 동안 천자의 의복과 음식을 제공했으며, 천자가 은자를 쓰고자 하면 찬품(饌品)을 감하여 이것을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모두 선혜청(宣惠廳)과 호조(戶曹)의 재물을 통용하였는데, 지금은 원래 정해진 상공(常貢) 외에 점차 경용(經用)이 증가되어 비록 백향사(白香絲) 한 가지로 말하더라도 갑진년(3407) 이후에 궁중(宮中)에 들어간 수량이 3백여 근(斤)에 이르도록 많으니, 이 뒤로는 궁중에 들어가는 것이 만약 원공(元貢)의 수량을 초과하면 본조(本曹)에서 일에 따라 논계(論啓)함이 마땅합니다.”</p> <p>하였는데, 병조 판서(兵曹判書) 오명항(吳命恒)과 어영 대장(御營大將) 조문명(趙文命)이 모두 말하기를,</p> <p>“말이 나라를 근심하고 임금을 사랑하는 데에서 나왔으니, 충성과 질박(質樸)함이 가상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호조 판서(戶曹判書)의 말은 사리에 어두운 데에서 나왔다. 위로 두 동조(東朝) 3408) 를 모시고 있어 승순(承順)하고 봉양(奉養)하는 절차가 상용(常用)의 규례에서 초과하니, 호조 판서는 사세(事勢)가 어떠한지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 말이 질박하니, 어찌 유의(留意)하지 않겠는가?”</p> <p>하였다.</p>	<p>減膳品以用之。 而我國則皆以惠局戶曹財貨通用，即今元定常貢外，漸爲加用，雖以白香絲一節言之，甲辰以後，內入之數，至於三百餘斤之多，此後內入，若過於元貢，則本曹當隨事論奏矣。” 兵曹判書吳命恒、御營大將趙文命皆曰：“言出憂愛，忠可尙。” 上曰：“戶判之言，出於鄉閭矣。 上奉兩東朝，其所承順奉養之節，過於常用之例，戶判不知事勢之如何，而言則質樸，可不體念?”</p>
<p>영조 15권, 4년(1728 무신 / 청 옹정(雍正) 6년) 1월 26일(정축) 1번째기사 잡비를 일체 혁파하다</p>	<p>임금이 하교하기를,</p> <p>“옛날 효묘조(孝廟朝) 때에 일차(日次)의 향온(香醞) 3467) 은 오직 1병(瓶)을 올렸는데, 오늘날에 올리는 것은 네 갑절에 이르고 있다. 두 자전(慈殿) 이외에 5병씩 봉진(封進)하던 것을 일차(日次)와 명일(名日)을 물론하고 각기 2병을 감제(減除)하라.”</p>	<p>丁丑/教曰：“粵在孝廟日次香醞，惟進一瓶，今之所進，乃至四倍。 兩慈殿外，五瓶封進者，勿論日次名日，各減二瓶。” 上愛民節財用，凡係冗費，一切革罷。 酒房所進香醞，乃是三朝舊</p>

	<p>하였다. 임금이 백성을 사랑하여 경용(經用)을 절약하며 모든 잡비(雜費)를 일체 혁파하였다. 주방(酒房)에서 올리는 향온(香醞)은 삼조(三朝)에서 전래해 온 옛 규례인데도 특별히 양감(量減)하도록 명하였다.</p>	<p>例, 特命量減。</p>
<p>영조 15권, 4년(1728 무신 / 청 옹정(雍正) 6년) 1월 30일(신사) 1번째기사 대신·비국 당상이 호남의 절수, 공물 감생 등에 관해 진달하다</p>	<p>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불러 보았다. 영의정(領議政) 이광좌(李光佐)가 말하기를, “신이 상견례(相見禮)로 인하여 동궁(東宮)을 배시(陪侍)하였는데, 숙성(夙成)한 용모를 우러러보니 실로 성인(聖人)의 자질(資質)이었습니다. 이를 확충(擴充)시키고 기르는 것은 오로지 학문에 있으니, 강론(講論)을 권면하며 보필(輔弼)하고 인도(引導)함을 조금도 늦출 수가 없습니다. 고(故) 상신(相臣) 정태화(鄭太和)가 건의하여 11세 이전에는 품의(稟議)하지 말고 회강(會講)3470) 할 뜻으로 정식(定式)을 삼았는데, 지금도 이에 의하여 시행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회강은 거룩한 예절(禮節)인데, 어려서부터 하게 된다면 반드시 수렴(收斂)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1년 동안에 2, 3차 회강을 하되, 전례에 따라 품의하지 말고 정식에 의하여 명년부터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조 판서(吏曹判書) 이태좌(李台佐)가 말하기를, “호남(湖南)의 절수(折受)에 관한 일을 금번에 단호하게 시행하여 백여 년 동안 인순(因循)해 오던 폐단을 일조(一朝)에 바로잡았으니, 이로써 밀어 나간다면 우리 나라가 실로 소생(蘇生)의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이광좌는 말하기를, “공물(貢物)의 별단(別單)을 써 들인 후에 부첨(付籤)하여 감생(減省)한 것이 매우 많았습니다. 평·생선의 종류에 이르러서는 일체 감제(減除)하였는데, 이는 백성을 사랑하는 성의(盛意)에서 나온 것이니, 하해(河海) 같은 은혜가 어찌 아래로 가난한 백성에게 미치지 않겠습니까?”</p>	<p>辛巳/上召見大臣備堂。 領議政李光佐曰：“臣以相見禮，陪侍東宮，仰瞻岐嶷之表，實是聖人之姿。 擴充完養，專在學問，勸講輔導，不容少緩。 而故相臣鄭太和建白十一歲以前，勿稟會講之意，定式矣，既有定式，今亦依此施行乎？” 上曰：“會講，自是盛節，自沖年爲之，必有收斂之效。 一年之內，二三次爲之，循例月稟，依定式自明年舉行。” 吏曹判書李台佐曰：“湖南折受事，今番斷然行之，百餘年因循之弊，一朝釐革，推是以往，東國實有回蘇之望矣。” 光佐曰：“貢物別單書入之後，付籤減省者太多。 至於雉鮮之類，一併減除，此出於愛民之盛意，滲漉之澤，豈不下及於窮廬乎？” 上曰：“東朝特以愛民之意，減省物膳，此皆東朝之盛德也。” 台佐曰：“嶺南，本是文獻之方，黨論以後，不能隨才調用，實有淹滯之歎。 自今以後，自上擢用，則實爲聳動之方矣。” 上曰：“大臣有聞知者否？” 光佐曰：“趙德隣，</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동조(東朝)께서 특별히 백성을 사랑하는 뜻으로 물선(物膳)을 감제하셨으니, 이는 모두 동조의 거룩하신 은덕(恩德)이다.”</p> <p>하였다. 이태좌가 말하기를, “영남(嶺南)은 본래 문학(文學)을 숭상하는 곳인데, 당론(黨論)이 생긴 후로 재주에 따라 조용(調用)하지 못했으니, 실로 엄체(淹滯)의 탄식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성상께서 발탁하여 등용하신다면, 용동(聳動)하는 방책이 될 것입니다.”</p> <p>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이 들어서 아는 자가 있는가?”</p> <p>하자, 이광좌가 말하기를, “조덕린(趙德隣)은 산림(山林)에 은둔(隱遁)하여 주서(朱書)를 읽은 지 50년이 되었고, 김정(金晬)·권상일(權相一)·신정모(申正模)는 모두 경학(經學)으로 이름이 드러났으니, 등용할 만합니다.”</p> <p>하니, 임금이 옳다고 하였다.</p>	<p>林下讀朱書五十年，金晬、權相一、申正模，皆以經學名，可用也。” 上曰：“唯。”</p>
<p>영조 16권, 4년(1728 무신 / 청 옹정(雍正) 6년) 3월 16일(병인) 5번째기사 쌀값이 올라 강창미로 공가를 주고 군병의 내달 요미를 미리 주게 하다</p>	<p>판윤(判尹) 김동필(金東弼)이 청하기를, “도민(都民)에게 효유(曉諭)하여 경동하지 말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김동필에게 가서 타이르라고 명하였다. 김동필이 돌아와 아뢰기를, “신이 성상의 덕음(德音)으로 글을 지어 가로(街路)에 효고(曉告)하니, 백성들이 비로소 조정의 덕의(德意)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요스런 즘음에 쌀값이 뛰어올라 살아갈 길이 없을 듯하니, 청컨대 강창미(江倉米)로 공물가(貢物價)를 응당 주어야 할 자에게 나누어 주고, 군병(軍兵)의 다음달 요미(料米) 역시 미리주어 위안해 기쁘게 하여 진정시키는 도리로 삼아야 합니다.”</p> <p>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p>	<p>判尹金東弼請曉諭都民，使勿驚動。上命東弼往諭。東弼回奏曰：“臣以聖上德音，作文字，曉告街路，百姓始知朝廷德意。而騷擾之際，米價翔貴，恐無以保生，請以江倉米，分給貢物價應下者，軍兵來月料米，亦令預給，以爲慰悅鎮安之道。” 上從之。</p>
<p>영조 16권, 4년(1728</p>	<p>시신(侍臣)을 나누어 보내 소와 술을 가지고 가서 장단(長湍)·양주(楊州)·개성</p>	<p>分遣侍臣，持牛酒勞，問長湍、楊州、</p>

<p>무신 / 청 옹정(雍正) 6년) 3월 21일(신미) 4번째기사 장단·양주·개성부의 군병으로서 성밖에 이른 자를 위문하게 하다</p>	<p>부(開城府)의 군병(軍兵)으로서 성밖에 이른 자를 위문하게 하였다. 이여적(李汝迪)이 곡산(谷山)으로부터 장단(長湍)에 이르러 교귀(交龜)3581) 하고 군사들을 이끌고 빨리 달려 가장 먼저 성 밖에 이르렀다.</p>	<p>開城府軍兵，至城外者。 李汝迪自谷山至長湍交龜，仍引兵疾馳，最先至城外。</p>
<p>영조 16권, 4년(1728 무신 / 청 옹정(雍正) 6년) 3월 23일(계유) 11번째기사 김화구리를 호역을 면제해 주고 향장관으로 승차시키다</p>	<p>군중에 김화구리(金禾九里)란 자가 있었는데, 진산(珍山)의 군사이다. 늙고 몸이 약한데다 병이 있어 돌아가게 했더니, 즐겨하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우리 할아버지가 험천(險川) 싸움에서 죽었는데, 나라고 유독 할 수 없겠습니까?” 하였다. 강제로 가라 하니 분해서 눈물을 흘렸다. 바야흐로 모상(母喪)을 입고 있었는데, 고기를 권하자 말하기를, “우리 풍습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고, 끝내 듣지 않았다. 충효군(忠孝軍)으로써 급복(給復)3591) 하고 향장관(鄉將官)으로 승차시켰다.</p>	<p>軍中，有金禾九里者，珍山軍也。 老孱且病，令之歸，則不肯曰：“吾祖死於險川之戰，吾獨不能乎？” 強之則憤且泣。 方服母喪，勸之肉則曰：“吾俗不容。” 此終不聽。 以忠孝軍給復一結，陞差鄉將官。</p>
<p>영조 16권, 4년(1728 무신 / 청 옹정(雍正) 6년) 3월 26일(병자) 4번째기사 오명항에게 ‘지확공고’ 네 자를 써 주고 유시하다</p>	<p>임금이 손수 ‘지확공고(志確功高)’란 네 자를 써서 도순무사 오명항(吳命恒)에게 하사하고, 인하여 유시하기를, “이번 남쪽 적은 바로 하나의 추류(醜類)이니 어찌 왕장(王章)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다만 이 적은 온양(醜讓)해 온 지 이미 여러 해 되었고, 또 승평(昇平)한 지 오래여서 군사들의 싸움이 어떨지 몰랐으니, 내가 염려한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 경은 본래 문재(文宰)로서 무사(武事)를 익히지 않았는데도 밤중 장전(帳殿)에서 강개하게 가기를 청하였으니, 그 마음에 탄복하였고, 그 뜻이 가상하였다. 그래서 특별히 청한 바를 윤택하고 인해 상방검(尙方劍)을 하사하여 편의대로 일을 행하게 했지만 어찌 수일 사이에 연달아 첩보(捷報)가 올라올 줄 뜻했으랴? 지금은 역괴(逆魁)와 여러 적들이 차례로 죽임을 당했으니, 그 공이 일세에 빛나고 이름이 역사에 남는다고 하겠다. 응당 행하</p>	<p>上手書志確功高四字，賜都巡撫使吳命恒，仍諭曰：今茲南賊，卽一醜類，豈遁王章？而但此賊之其所醜讓，已有多年，且昇平日久，不知兵戰之如何，予之所以慮之者，正此耳。 卿本文宰，不閑武事，而半夜帳殿，慷慨請行，其心可歎，其志可尙。 特允所請，仍賜尙方劍，使之便宜行事，豈意數日之內，連上捷報乎？今則逆魁諸賊，次第就戮，可謂功耀一世，名垂竹帛矣。 凡諸應行之典，</p>

	<p>여야 할 모든 전례(典禮)는 개선(凱旋)한 후에 마땅히 거행하겠으나 먼저 몇 줄의 수서(手書)로써 내가 가상하게 여기는 뜻을 보이고, 이어서 또 네 자를 특별히 종이 끝에 써서 경의 언행(言行)이 서로 부합됨을 표한다. 인하여 생각건대, 해마다 기근이 든 나머지 이와 같은 병란(兵亂)을 만났으니, 우리 생령(生靈)들이 어찌 감당할 수 있겠는가? 경이 이미 순무사의 명호를 띠었으니 유민(流民)을 안집(安集)시켜 농사를 권하고 진휼(賑恤)하는 등의 일에 뜻을 두어 거행하되, 농량(農糧)과 종자(種子)가 어려운 자에게 면세(免稅)하는 일 같은 것은 내사(內司)에서 관리하는 것을 막론하고 편의대로 나누어 주라. 백성들 가운데 적을 붙잡아 바친 자가 있으면 등급을 나누어 즉시 계문(啓聞)하여 먼저 상을 줄 터전을 마련하라. 여러 날 노숙(露宿)하여 군병들이 반드시 많이 상했을 것이다. 생각이 이에 미치니 옥식(玉食)이 어찌 편하겠는가? 이런 뜻으로 장교(將校)와 군졸(軍卒)들을 위로하라.”</p> <p>하고, 또 유시하기를, “남쪽의 적보(賊報)가 또 이르렀으나, 경은 우선 호서(湖西)에 머물러 본도를 지휘하여 완전히 평정되기를 기약하라. 안성과 죽산의 싸움에서 한 병졸도 상하지 않았음을 내가 또 기뻐한다.”</p> <p>하였다.</p>	<p>旋凱後其當舉行，而先以數行手書，示予嘉尚之意，仍又四字，特書紙端，表卿言行之相孚焉。仍念連歲荐饑之餘，遭此兵刃，念我生靈，何以支堪？卿既帶巡撫之名，安集流民，勸農賑恤等事，着意舉行，而其若農糧種子之艱乏者，則免稅之類，勿論內司句管，便宜分給。而民人中捕納賊徒者，分等卽爲啓聞，以爲先賞之地。累日暴露，軍兵必多傷焉。言念及此，玉食奚安？以此意，慰勞將校軍卒。</p> <p>又諭之曰： 南報又至，卿姑留湖西，指揮本道，期於盡平。安城、竹山之戰，不折一卒，予又豫焉。</p>
<p>영조 17권, 4년(1728 무신 / 청 옹정(雍正) 6년) 4월 3일(계미) 9 번째기사 이종성·이광좌가 비용을 절감할 것을 아뢰다</p>	<p>옥당(玉堂) 이종성(李宗城)이 임금께 아뢰기를, “동조(東朝)에 진연(進宴)함은 전하께서 애일(愛日)3646) 한 정성으로 한 나라의 봉양을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3백 년 종사(宗社)를 전안(奠安)3647) 함이 대효(大孝)가 되는 것이니, 효도가 어찌 한때의 잔치하여 즐겁에 있겠습니까? 먼저 진연을 중지하고 이어 쓸데없는 비용을 절감(節減)하여 군신(君臣) 상하가 신칙하고 면려(勉勵)하며 경계하고 두려워하여 좋은 계획을 분발하여서, 억조 창생(億兆蒼生)의 기축(祈祝)의 정성을 저버리지 말게 하소서.”</p>	<p>玉堂李宗城白上曰：“東朝進宴，殿下以愛日之誠，欲爲一國之養。然奠安三百年宗社，爲大孝，孝豈在於一時燕樂乎？先罷進宴，繼減冗費，君臣上下，飭勵警懼，奮發良圖，以毋負億兆祈祝之誠。”領相李光佐曰：“蕞爾小醜，初不足深慮，而第畿內數萬兵、嶺南數萬兵，許久留屯，盡費饑民口吻中</p>

하고, 영의정 이광좌(李光佐)는 말하기를,
 “변변찮은 줌도적이 처음에는 깊이 염려할 것이 못되었으나, 기내(畿內)에 수만(數萬)의 군병(軍兵)과 영남(嶺南)에 수만 군병이 오래도록 둔쳐 머물러서 기민(饑民)이 먹을 것을 모두 소비하였습니다. 하물며 대군(大軍)이 지나가는 곳은 백성이 흩어져서 경작(耕作)의 시기를 놓치고 음려(陰沴)3648)의 기운이 위로 천화(天和)를 범하여 강역(疆域)이 무너져 어지러워서 국가의 명운(命運)이 장차 보전치 못할 처지입니다. 상란(喪亂) 뒤에 만약 잔치의 즐거움을 시작한다면 하늘이 굽어 보고 반드시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종사(宗社)를 안정시키는 것이 제왕(帝王)의 대효가 되고 한때의 잔치의 즐거움은 효도의 소절(小節)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중성의 말은 충고(忠告)에서 나왔으나 상수(上壽)3649)의 한 예절은 3년 3650)을 지낸 뒤에는 예법상 마땅히 곧 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동조(東朝)께서 하고자 하지 않으시어, 사변(事變) 뒤에 자교(慈教)가 근간(懇懇)하였으나, 나는 차마 뒤로 물리어 행할 수가 없다. 여러 신하들이 진달한 바를 동조께서 만약 아신다면, 반드시 불안하실 듯하다. 그러나 내가 사문 목목(四門穆穆)의 덕이 없으므로, 난적(亂賊)으로 하여금 스스로 왕장(王掌)3651)에 나아가게 하였으니, 그 원인을 구명(究明)해 본다면 곧 내가 덕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만약 이 일 때문에 또 상수(上壽)하지 않는다면 나의 마음에 부끄러울 것이니, 더욱 다시 어찌하겠는가?”
 하였다. 이중성이 말하기를,
 “지난번에 도적이 수급(首級)을 그릇 보고한 사람에게 효시(梟示)의 명을 내려 여러 승지(承旨)들이 청대(請對)하여 환수(還收)하게 한 것은 일이 진실로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듣건대, 그때 하교(下教)가 지극히 엄하여 승지로 효수(梟首)하라는 하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밀(近密)의 신하가 군상(君

物。況大軍所過，民物流亡，耕作愆期，陰沴之氣，上干天和，方域潰亂，國命將不保。喪亂之後，若動燕樂，則上天鑑臨，必不悅豫。宗社奠安，爲帝王大孝，一時燕樂，孝之小節也。”上曰：“李宗城之言，出於忠告，而上壽一節，過三年後，禮當卽行。東朝不欲爲之，事變之後，慈教懇懇，而予不忍退行。諸臣所達，東朝若知之，則想必不安。然予無穆穆四門之德，使亂賊自就王章，究厥所由，卽予涼德而然也。若以此，又不上壽，則予心慙惡，尤復如何？”宗城曰：“頃日誤告賊級人，有梟示之命，諸承旨請對還收，事固當然。而聞其時下教至嚴。有承旨梟首之教云。近密之臣，目見君上之過舉，繳還成命，或有語言薄過，自當優容，聖教迫切，有害辭令，殊非來諫之盛意。昔張思叔詬責奴僕，而猶以動心忍性，爲加勉之道，願深留聖意。”上曰：“承旨梟首事，元無此教。此時俞命凝刑殺之言，頗不切當，故辭令或過。而勉戒得宜，可不留意？”

	<p>上)의 잘못된 거조(舉措)를 눈으로 보고 성명(成命)을 작환(繳還)함에 있어 혹시 말이 조금 지나침이 있더라도 스스로 마땅히 너그럽게 용납하여야 할 것인데, 성교(聖敎)가 박절(迫切)하여 사령(辭令)을 해침이 있음은 정말로 간언(諫言)을 받아들이는 성대한 뜻이 아닙니다. 옛날에 장사숙(張思叔)3652) 은 노복(奴僕)을 꾸짖어 책망하면서도 오히려 마음을 움직이고 성품을 참고 견디어 더욱 면려(勉勵)하는 방도로 삼았으니, 원컨대, 깊이 성상께서 유의(留意)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승지를 효수하는 일에 대해서는 본디 이런 하교가 없었다. 그때 유명응(兪命凝)을 형벌하여 죽이라는 말이 매우 타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령(辭令)이 흑 지나쳤던 것이다. 그러나 면려하여 경계함이 마땅함을 얻었으니, 어찌 유의(留意)하지 않겠는가?”</p> <p>하였다.</p>	
<p>영조 17권, 4년(1728 무신 / 청 옹정(雍正) 6년) 4월 4일(갑신) 5 번째기사</p> <p>삼군문 군병 중 병들고 상한 자에게 약물을 제급하게 하다</p>	<p>임금이 삼군문(三軍門)3654) 의 군병이 한데서 거처하며 호위(扈衛)하므로 병들고 상한자가 많다 하여 의사(醫司)에 명하여 약물(藥物)을 제급(題給)하게 하였다.</p>	<p>上以三軍門軍兵，累日露處扈衛，多有病傷者，命醫司，題給藥物。</p>
<p>영조 17권, 4년(1728 무신 / 청 옹정(雍正) 6년) 4월 19일(기해) 1번째기사</p> <p>오명향이 돌아와 노포문을 올리고 헌픽례를</p>	<p>(전략) 임금이 환궁(還宮)하여 도순무사(都巡撫使)와 출정(出征)했던 중군 별장(中軍別將)에게 모두 선정전(宣政殿)으로 입시(入侍)하게 하라고 명하고, 출정했던 군졸들은 대궐 문 밖에서 호궐(犒饋)하라 명하였다. 임금이 궁궐을 나올 적에 광통교(廣通橋) 위에서 말을 정지시키고 두 승지(承旨)를 시켜 도성의 백성들을 위유(慰諭)하라고 명했는데, 만세 소리가 우렁차게 울리자 임금이 눈물을 흘렸다. 난리를 평정한 뒤 이제 처음으로 백성들을 대했기 때문이</p>	<p>上還宮，命都巡撫使及出征中軍別將，竝入侍宣政殿，出征軍卒，犒饋於闕門外。上之出宮也，駐馬廣通橋上，命兩承宣慰諭都民，聽山呼之聲，上爲之泣下。平亂後，今始臨民故也。上問安城及嶺南賊變時事狀，命恒對甚悉。</p>

거행하다

었다. 임금이 안성(安城)과 영남의 적변(賊變)이 발생했을 때의 사상(事狀)에 대해 하문하니, 오명항이 매우 상세하게 대답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안성·죽산 전투에서 참획(斬獲)한 것이 매우 많았는데, 경이 장계(狀啓)로 아 된 데에는 그 수효가 매우 적었다. 이는 공을 자랑하지 않으려는 마음인 것이므로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기고 있다. 대체로 나라에 역적이 나면 토벌해야 하고, 토벌하여 평정시켰으면 녹훈(錄勳)하는 것은 사리(事理)에 매우 분명하다.” 하니, 오명항이 말하기를, “신은 삼군(三軍)의 원수(元帥)로서 오래도록 머뭇거리면서 군대를 가지고 자신을 호위하게 하였을 뿐이니, 죄만 있고 공은 없습니다. 어떻게 무훈(茂勳)3742) 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신이 항상 장좌(將佐)들에게 ‘조정에서 기필코 강박하려 한다면 나는 마땅히 중이 되겠다.’고 했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선온(宣醞)3743) 하라고 명하고 스스로 한 개의 큰 술잔에다 술을 따루어 친히 내려 주며 이르기를, “경의 공을 가상하게 여겨 친히 한 잔을 내리는 것이니, 경은 중군 별장(中軍別將)과 함께 나누어 마시라.” 하니, 오명항이 말하기를, “성은(聖恩)이 이에 이르니, 황공스럽고 감격스러워 진달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늘의 신령이 돌보아준 바로서 군졸에 사상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모두가 성상의 인덕과 은혜가 미친 소치입니다. 신이 두 종사관(從事官)과 함께 이런 내용으로 군중에 효유(曉諭)했는데, 그때 군사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국가를 위하여 목숨바칠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은택이 사람들의 뺨골에까지 흡족하게 젖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자, 임금이 이르기를, “이것은 조종(祖宗)의 덕택이 사람들에게 깊이 배어들어간 소치이다. 나에게

上曰：“安、竹之戰，斬獲甚多，而卿之狀聞，其數甚少。不伐之心，予甚嘉尙。大抵國有逆則討之，討平則錄勳，事理明甚。”命恒曰：“臣以三軍之帥，許久逗留，擁兵自衛而已，有罪無功。豈膺茂勳？臣常語將佐曰：‘朝家必欲強迫，吾當爲僧。’云矣。”上命宣醞，自酌一大盃，親授之曰：“嘉卿之功，親賜一酌，卿與中軍別將，分飲。”命恒曰：“聖恩至此，惶感不知所達矣。天靈所暨，軍卒無一死傷，此莫非聖上仁恩所及。臣與兩從事，曉諭軍中，時，軍人輩，無不涕泣，願死國家，恩澤浹人肌骨，可知矣。”上曰：“此由於祖宗德澤，入人者深。予何有焉？”

	<p>어찌 그런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p>	
<p>영조 17권, 4년(1728 무신 / 청 옹정(雍正) 6년) 4월 22일(임인) 2번째기사 난역을 평정한 후 비망기를 내리다</p>	<p>(전략)듣건대, 안성(安城)·죽산(竹山)·청주(淸州)의 전투에서 시체가 온 들판에 가득 쌓였었다고 하는데, 그 더러운 기운과 피를 흘리고 죽은 시체가 반드시 평민(平民)들을 오염시키고 반드시 농작물을 해치게 될 것이니, 본 고을과 부근의 고을로 하여금 백성들의 힘을 번거롭게 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한 곳에 가두어 모아서 흙으로 덮게 하라. 군병(軍兵)들 가운데 칼에 상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 날 노숙(露宿)한 탓으로 건강이 손상되어 병든 사람들이 반드시 많을 것이니, 각 고을로 하여금 또한 방문(訪問)하여 병든 자에게는 의약(醫藥)을 지급하여 구제하여 주고, 죽은 자에게는 미포(米布)를 지급하여 구휼하게 하라. 그리고 왕자(王者)의 정치는 가까운 데부터 시작하여 먼데까지 미치게 하는 것이다. 이번 역적의 병란(兵亂)이 있는 뒤에 도성의 백성들 가운데 성 밖으로 떠돌면서 관금(關禁)에 곤란을 겪는 광경을 내가 친히 보는 것과 같다. 성문(城門)이 닫히고 나루터에 배가 끊겼을 때의 광경을 상상해 본다면 남은 회포가 안정되기 어렵다. 3일 전 군대를 위로하러 갈적에 길에서 서울의 사녀(士女)들을 살펴보고서 지난날의 돌이켜 생각해 보니, 나도 모르게 슬픈 감회를 금할 수 없었다. 나라에 바치는 정당한 공물(供物)은 감하더라도 백성에게 지급할 물건은 지체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을, 이를 맡은 신하에게 신칙하라. 그리고 응당 지급해야 할 공물(貢物)의 대가(代價)는 반드시 공법(公法)에 의거 차하[上下]3768) 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대가(代價)가 없는 역사(役使)가 없게 하라. 아! 한 사람이 안정된 처소를 얻지 못해도 그것이 나의 책임인 것인데, 하물며 이런 때를 당한 경우이겠는가? 국용(國用)을 절약하여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역시킬 적에는 농한기(農閑期)를 이용하라는 것은 공자(孔子)의 이른바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인 것이다. 따라서 이 두 글귀는 내가 엄격히 스스로 면려해야 될 것이지만 또한 어찌 상하(上下)가</p>	<p>聞安·竹，淸州之戰，積屍遍野云，穢惡之氣、塗刃之屍，必浸染於平民，必傷害于稼穡，其令本官及附近邑，勿煩民力，收聚一處而掩土。軍兵中雖不傷於鋒刃，屢日露處，傷病者必多，其令諸邑，亦爲訪問，病者給醫藥而救之，死者給米布而顧恤。且王者之政，自近及遠。今番賊亂之後，都民之宛轉城外，困於關禁之狀，如夫親覩。及其城門之閉，津渡之絕，想像伊時景象，餘懷難定。三昨勞軍之行路，觀京中士女，追惟向日，不覺愴然。惟正之供，雖減，及民之物，不可滯，申飭有司之臣。貢物應下之價，必須從公上下，無使小民，有無價之役焉。嗚呼！一夫不獲其所，是予之責，況值如此之時乎？節用愛民，使民以時，孔子之所以謂爲邦者。此兩句，是寡躬痛加自勉處，而亦豈無交勉之道乎？上自公卿大臣，下至微官庶僚，而擺脫舊習，去其奢靡，奔問之心，慷慨之志，恒存于一腔子，造次不忘於是，此豈非吾東否泰之一大機乎？</p>

	<p>서로 면려해야 될 도리가 없겠는가? 위로 공경(公卿)·대부(大夫)로부터 아래로 미관 말직의 서료(庶僚)에 이르기까지 구습(舊習)을 탈피하여 사치스러움을 제거하고 분문(奔問)하던 마음과 강개한 뜻을 항상 가슴속에 보존하여 잠시도 이 마음을 잊지 않는다면, 이것이 어찌 우리 동방을 비색한 운수에서 태평한 운수로 전환시킬 수 있는 하나의 큰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후략)</p>	
<p>영조 18권, 4년(1728 무신 / 청 옹정(雍正) 6년) 5월 2일(임자) 10번째기사 정제두가 양역 변동 방법과 정치하는 체례를 밝힐 일에 관해 아뢰다</p>	<p>임금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 우참찬(右參贊) 정제두(鄭齊斗)을 인견(引見)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卿)은 몸소 행하여 보람이 있는 것을 아뢰라.” 하니, 정제두가 말하기를, “경(經)에 ‘날로 새로워지고 또 날로 새로워진다.’ 하였습니다. 본령(本領)이 이미 서고 공부가 이어지면 천운(天運)이 쉬지 않고 일월(日月)이 바로 밝은 것과 같을 것이니, 그런 뒤에야 독실한 공부가 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마음에 새겨 잊지 않겠다. 어떻게 하면 조정(朝廷)의 기상이 탕평(蕩平)하고 백성이 생업에 안정하겠는가?” 하니, 정제두가 말하기를, “중정(中正)을 세워 탕평하면 어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습니까? 양역(良役)을 변동할 방법과 정치하는 체례(體例)를 밝히는 일 같은 것을 강구하여 시행하소서.” 하였는데, 선운(宣醜)3812) 하라고 명하였다.</p>	<p>上御熙政堂，引見右參贊鄭齊斗。上曰：“卿以躬行有效者，陳達。”齊斗曰：“經曰：‘日新又日新。’本領既立，工夫接續，則如天運不息，日月貞明，然後方爲篤實工夫。”上曰：“予當銘佩不忘。何以則朝象蕩平，生民安業？”齊斗曰：“建中蕩平，則豈有不可做之事？如良役變通之術，與明於治體者，講而行之。”命宣醜。</p>
<p>영조 18권, 4년(1728 무신 / 청 옹정(雍正) 6년) 6월 18일(정유) 3번째기사 서명균이 술을 많이 빚는 풍습에 대하여</p>	<p>형조 판서(刑曹判書) 서명균(徐命均)이 상소(上疏)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듣건대, 근래 도민(都民)의 살길이 점점 어려워져서 술을 팔아 생업으로 하는 자가 날로 더욱 많아지고 그 가운데에서 많이 빚은 자는 혹 1백 곡(斛)이 넘기도 하였으나, 시가가 뛰어올라 투구(鬪毆)하고 살상한다 합니다. 점차 금지하려고 신칙(申飭)하는 뜻으로 오부(五部)에서 감결(甘結)3888) 을 받았는데, 나라의 풍속이 두려워하고 와전되어 금란(禁亂)을 가탁(假托)하여 속이고</p>	<p>刑曹判書徐命均上疏，略曰： 聞近來都民，生理漸艱，販酒資業，日益繁滋，其中貯釀多者，或過百餘斛，市直踊貴，鬪毆殺傷。欲漸防禁，乃以申飭之意，捧甘五部，而國俗嚙訛，假托禁亂，誣脅索賂，窺捕其假托者數</p>

<p>아뢰다</p>	<p>협박하며 뇌물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가탁하는 자 두어 사람을 잡았더니, 바로 헌부(憲府)에서 내쫓긴 하인과 포청(捕廳)에서 물러난 군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뒤부터 술집에서 내기술을 마시는 일은 거의 그쳤는데 쌀가게에서 부르는 값은 갑자기 더하므로, 바야흐로 들어가 아뢰어 먼저 술 많이 빚는 자를 금하고 이어서 옛 제도를 더욱 밝히기를 청하려 하는데 승선(承宣)3889)이 문득 폐단을 끼친다고 말하니, 폐단을 고치려다가 도리어 백성에게 폐해를 가져온다는 뜻일 것입니다. 신의 벼슬을 삭탈하여 경망한 자의 경계가 되게 하소서.”</p> <p>하었는데, 비답(批答)하기를, “제작년 인정전(仁政殿)에서 진하(陳賀)할 때에 신하들에게 경계한 것이 세가지 있는데, 하나는 붕당(朋黨)이고 하나는 사치이며 술을 경계한 것도 그중의 하나이다. 이미 술을 경계하였는데 술을 금하는 것이 무엇이 이상한가? 이 때문에 도민을 침탈하여 원망을 위로 돌린다면 통탄함을 견딜 수 있겠는가? 그 현착(現捉)한 사람들을 각별히 두 차례 엄하게 형신(刑訊)하여 먼 지방으로 귀양보내고 사유(赦宥) 때에도 용서하지 말라.”</p> <p>하고, 인하여 포청을 시켜 엄담하게 하였다.</p>	<p>人，卽憲府黜隸捕廳退卒也。然而自是以後，酒家賭飲，幾乎屏息，米肆論價，頓然有勝，方擬入達，先禁其多釀者，仍請申明舊制，而承宣遽以貽弊爲言，意在矯弊，反致民害。乞削臣職，以爲妄率者之戒。</p> <p>批曰：“再昨年仁政殿陳賀時，戒臣僚者有三焉，一，朋黨，一，奢侈，而戒酒，亦在其一。旣戒酒焉，禁酒何怪？若因此而侵撓都民，歸怨于上，則可勝痛哉？其現捉諸人，各別嚴刑兩次，投諸遐裔，勿揀赦典。”因令捕廳訶察。</p>
<p>영조 18권, 4년(1728 무신 / 청 옹정(雍正) 6년) 7월 7일(병진) 3 번째기사 선운하고 사옹원으로 하여금 어공 등을 대 봉하지 말게 하다</p>	<p>정사(政事)가 끝나매, 이어서 선운(宣醞)하고 하교(下敎)하기를, “입시(入侍)한 신하들도 사옹원(司饗院)에서 생선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춘 일을 아는가? 고기 안에 뱀이 있다는 말은 매우 무리(無理)한데 차차로 와전하여 이런 간사한 말을 한 것은 모두 민심을 어지럽히려는 뜻이다. 사옹원에서 대봉(代捧)하기를 청하였는데, 마음에는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바야흐로 양동조(兩東朝)3909)를 모시므로 신중히 하는 도리로서 허락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당 태종(唐太宗)은 백성을 위하여 황충(蝗蟲)을 삼켰거니와, 이제 고기 뱃속에 참으로 뱀이 있더라도 씻고 삶아서 먹으면 어찌 황충을 삼키는 것보다 낫지 않겠는가? 백성을 위하여 의심을 타파하는 도리로서는 같은 예(例)로</p>	<p>政訖，仍宣醞，敎曰：“入侍諸臣，亦聞司饗院生鮮停捧之事乎？魚中有蛇之說，極爲無理，次次傳訛，有此邪說，莫非撓民心之意也。司饗院請代捧，心雖不信，而方侍兩東朝，其在慎重之道，不得不許，而唐太宗爲民吞蝗，今於魚腹，眞有蛇，洗滌烹飪而食之，則豈不愈於吞蝗乎？其爲民破疑之道，不可一例代捧，斷自御供爲始，勿爲代</p>

	대봉할 수 없으니, 단연코 어공(御供)부터 비롯하여 대봉하지 말라.” 하였다.	捧。”
<p>영조 18권, 4년(1728 무신 / 청 옹정(雍正) 6년) 7월 18일(정묘) 1번째기사 임금이 회맹제를 거행 하고 환궁하다</p>	<p>4경(四更) 초에 임금이 면복(冕服)을 입고 재전(齋殿)에서 걸어서 회맹단(會盟壇) 아래에 이르니, 왕세자가 먼저 나아가 지영(祇迎)하고 승지(承旨)·사관(史官)이 좌우로 나뉘어 입시(入侍)하였다. 임금이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 손을 씻고 관위(板位)에 이르러 북향하여 사배례(四拜禮)를 행하고, 전계(前啓)를 거쳐 단(壇)에 올라 관위에 꿇어앉아 세 번 향(香)을 올리고 천작(薦酌)하고, 중계(中階)를 거쳐 내려와 관위에 돌아와 북향하여 꿇어앉았다. 우승지(右承旨)가 혈반(血盤)을 받들어 바치니, 임금이 세 술 마시고 훈신(勳臣)들이 차례로 피를 마셨다. 축문(祝文)을 읽고, 읽는 것이 끝나니 임금이 사배례를 행하고, 예가 끝나고 걸어서 재전에 돌아왔다. 그 축문에 이르기를, “우리가 나라를 세운 것은 예의를 근본으로 삼았으므로, 교화하여 다스리는 것이 이미 밝아져서는 명분에 혼란이 없었습니다. 천강(天綱)·지기(地紀)가 각각 그 자리를 얻어 위아래가 함께 편안하고 은혜와 신의가 함께 지극하였습니다. 세교(世教)가 이미 쇠퇴하여서는 당의(黨議)가 갈라지니, 물처럼 깊고 불처럼 더워서 고질을 고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에 이르러 비색(否塞)한 운을 당하니, 칙려(飭勵)는 부지런히 하였으나 우리가 날로 어두워졌습니다. 효음(梟音)·경장(獍腸)3937) 을 가진 김일경(金一鏡)이라는 역적이 앞장서 흉악한 말을 하고 방자하게 터무니없이 속였습니다. 저 박필현(朴弼顯)과 이유익(李有翼)이 때를 타서 엿보아, 백성(百姓)을 속일 수 있다 하고 하늘을 속일 수 있다 하였습니다. 불쫓는 자가 많아지고 몰래 체결(締結)하여 계묘년3938)·갑진년3939) 부터 화란(禍亂)을 일으킬 마음을 빚어 왔습니다. 흉악(凶惡)한 글을 자주 걸어 먼저 거짓말로 현혹하고서, 영남·호서로 달려가서 악한 짓을 같이할 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폐고(廢錮)된 족속이 원망을 품고 어리석은 백성이 유혹당하여 경예(鯨鯢)3940)·망량(魍魎)3941) 이 앞뒤에서 도왔습니다.</p>	<p>丁卯/四更初, 上御冕服, 自齋殿, 步至會盟壇下, 王世子先詣祇迎, 承旨、史官分左右入侍。 上詣盥洗位, 盥手, 至板位, 北向行四拜禮, 自前階陞壇, 跪坐板位, 三上香, 薦酌降自中階復位, 北向跪。 右承旨奉進血盤, 上飲三匙, 諸勳臣以次飲血。 讀祝訖, 上行四拜禮, 禮畢, 步還齋殿。 其祝曰: 粵我立國, 禮義爲本, 化理既明, 名分無混。 天綱、地紀, 各得其位, 上下相安, 恩信交至。 世教既降, 黨議乃岐, 水深火熱, 痛疾莫醫。 逮于寡躬, 適丁否會, 飭勵雖勤, 倫彝日晦。 有賊曰鏡, 梟音、獍腸, 首倡凶言, 公肆譸張。 彼顯與翼, 乘時覬覦, 謂民可罔, 謂天可誣。 附麗寔繁, 陰交暗締, 醞釀禍心, 自癸甲歲。 屢掛凶書, 先售誑惑, 奔嶺走湖, 呼聚同惡。 廢族懷懟, 愚氓被誘, 鯨鯢、魍魎, 爲之先後。 麟、亮諸賊, 誰不絕痛? 若其窮凶, 徵、晟、賢、夢。 或躋顯秩, 或連肺腑, 始比淫朋, 終背君父。 表裏相和, 布置幾成, 禍機未發, 衆心數</p>

이인좌(李麟佐)·정희량(鄭希亮) 등 역적을 누가 매우 통탄하지 않겠습니까? 지극히 흉악한 자로 말하면 남태징(南泰徵)·이사성(李思晟)·심유현(沈維賢)·박필몽(朴弼夢)입니다. 중요한 벼슬에 오르기도 하고 왕실과 혼인하기도 하여, 처음에는 간사한 봉당을 맺고 나중에는 임금을 저버렸습니다. 안팎이 서로 화응(和應)하여 포치(布置)가 거의 이루어졌는데, 화기(禍機)가 나타나기 전에 못사람의 마음이 자주 놀랐습니다. 원로(元老)가 화기를 통촉하여 음도(陰圖)가 먼저 드러나니, 광봉(狂鋒)이 빨리 일어나 형세가 비바람처럼 급하였습니다. 호서 지방을 이미 잃고 경기 고을이 이어서 소요하니, 위험이 호흡하는 사이에 다가와 중외(中外)가 동요하였습니다. 원용(元戎)이 소매를 떨치고 일어나 부월(鈇鉞)을 잡고 출사(出師)하니, 용맹한 장수가 힘을 다하고 대신(大臣)이 기책(奇策)을 바쳤습니다. 임금의 정벌에 싸움이 없이 섬멸하고 소탕하니, 여열(餘孽)은 위세만 바라보고도 숨거나 사로 잡혔습니다. 두 장수가 성을 지키니 투구를 하사하고 유악(帷幄)에서 승부(勝負)를 결정하니 양책(良策)에 힘썼습니다. 순리를 따를 자를 물으며 역적의 모의를 고하고, 의리에 따라 분발한 사람이 손수 묶어서 도둑을 잡았습니다. 위란(危亂)에 임하여 적개(敵愾)한 것은 영남 고을의 신하들인데, 성적(成績)은 다를지라도 충성을 바침은 같았습니다. 요사한 기운이 깨끗이 없어지니 국운이 다시 창성하고, 남루(南樓)에서 헌부(獻俘)를 받으니 경복(慶福)이 그지없었습니다. 혁혁한 위령(威靈)이 굽어살피 말없이 안정시켰으니, 도리어 나에게 무슨 힘쓴 것이 있었겠습니까? 충량(忠良)이 정성을 다하였으니 칭찬할 것은 독실한 것입니다. 공로를 갚는 데에는 구전(舊典)이 있으니, 나누어 봉(封)하고 땅을 내려 선(善)을 표창하는 뜻을 보였습니다. 은례(恩禮)가 이미 흠족하고 정지(情志)가 서로 합하니, 영구히 편파(偏陂)를 없애고 함께 국사의 논의를 힘쓸 것입니다. 구덕(舊德)이 후손에게 끼치는 것도 또한 모두 모아졌으니, 하늘에 질정하고 저 백수(白水)에 신의(信義)를 걸겠습니다. 충성과 효성이 쇠퇴하지 않을 것이니,

驚。元老燭機，陰圖先露，狂鋒倏起，勢急風雨。湖關既喪，旬邑繼擾，危迫呼吸，中外震掉。元戎奮袂，仗鉞出師，虎將效力，蓮幕獻奇。王征無戰，鑿安掃竹，餘孽望風，載竄載馘。二帥衛城，爰賜兜鍪，決勝帷幄，密勿良籌。効順者誰，賊謀是告，奮義有人，手縛逋盜。臨危敵愾，嶺邑之臣，成績雖殊，輸忠則均。妖氛廓清，邦命再昌，南樓受俘，慶休無彊。赫臨陰隲，顧予何力？忠良致誠，嘉乃曰篤。報勞酬功，厥有舊典，疏封錫壤，用示彰善。恩禮既洽，情志交孚，永絕偏陂，共勉都兪。舊德遺昆，亦皆萃止，蒼穹可質，白水在彼。曰忠曰孝，無荒無墮，苟渝此盟，神其鑑茲。

【知製教尹惠教製進。】
祭畢，還宮。

	<p>진실로 이 맹세를 바꾼다면 신명은 이에 경계하소서.” 하였다. 【지제교(知製敎) 윤혜교(尹惠敎)가 지어 바쳤다.】 제사가 끝나고 환궁(還宮)하였다.</p>	
<p>영조 18권, 4년(1728 무신 / 청 옹정(雍正) 6년) 7월 19일(무진) 1번째기사 제공신에게 내리는 교서 및 어제 수서</p>	<p>임금이 익선관(翼善冠)·곤룡포(袞龍袍)를 갖추고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갔다. 해은 부원군(海恩府院君) 오명항(吳命恒)이 제공신(諸功臣)에게 내리는 교서(敎書)의 권축(卷軸)을 받들어榻前(榻前)에 바치니, 임금이 펴서 보고 나서 도로 내렸다. 부수찬(副修撰) 정우량(鄭羽良)이 동계(東階)에 서서 서향(西向)하여 교서를 읽었는데, 교서에 이르기를, “흉열(凶孽)이 제거되어 화란(禍亂)이 평정되었으므로 곧 큰 경사를 맞이하였고, 종사(宗社)가 안정되어 충로(忠勞)가 나타났으므로 모여 상법(常法)을 거행해야 하니, 안팎에서 주선한 것을 돌보아 드디어 18인의 위차(位次)를 정하였다. 근일의 변란을 말하면 참으로 전사(前史)에 없던 일이다. 흉악한 말로 터무니없이 속인 것은 대개 간사한 신하가 끼친 계책을 이어받은 것이고, 추악한 무리가 모인 것은 폐고(廢錮)된 족속의 사악한 마음을 몰래 부추긴 것이다. 통행하는 거리에 부도(不道)한 글을 걸고 은밀한 곳에서 군사를 연합하는 약속을 맺었다. 패란(悖亂)이 이러하고 배포(排布)한 것이 깊으니, 도하(都下)의 오랑캐가 몰래 숨어서 감히 내란을 꾀하고 호서·영남의 반역이 뒤따라 치열하여 문득 남방을 놀라게 하였다. 화기(禍機)가 호흡하는 사이에 다가와 국사(國事)가 철류(綴旒)3942)의 형세처럼 두려웠으나, 다행히 때때로 나는 유위(有爲)한 호걸이 임금이 분개하는 자를 정벌하는 노고를 다하였다. 원용(元戎)이 눈물을 흘리며 가기를 청하며 충담(忠膽)이 스스로 격동하고, 못 장수가 용맹을 부려 군진에 오르매 군세(軍勢)가 멀리 드날렸으며, 막중(幕中)에서는 두 종사관(從事官)이 협력하여 꾀하고, 행간(行間)에서는 교위(校尉)들이 힘을 다하였다. 대군(大軍)이 하늘을 따라 내려가는 것이 거의 설야(雪夜)에 달려가는 것과 같아서, 소추(小醜)가 위풍만 바라보고도 달아나고 이윽고 청</p>	<p>戊辰/上具翼善冠、袞龍袍，御仁政殿。海恩府院君吳命恒奉進諸功臣敎書卷軸于榻前，上披覽訖，還下。副修撰鄭羽良立於東階西向，宣讀敎書，敎書若曰： 凶孽夷而禍亂平，載迓洪慶，宗社安而忠勞著，合舉彝章，乃眷內外之周旋，遂定十八之位次。永言近日之變，實是前史所無。凶言譎張，蓋襲孽臣之遺計，醜類糾結，暗挑廢族之邪心。通衢掛不道之書，密地締連兵之約。悖亂若是，排布者深，輦轂之羞胡潛藏，敢圖內變，湖嶺之叛逆踵熾，奄驚南方。禍機迫於呼吸之間，國事凜乎綴旒之勢，幸有爲時出之豪傑，悉彈敵王愾之勞庸。元戎灑涕而請行，忠膽自激，群帥賈勇而登陣，軍勢遠揚，幕中則兩從事協謀，行間則諸校尉效力。大軍從天而下，殆同雪夜之馳，小醜望風而奔，俄奏清晝之捷，神功密贊，偉哉卻穀之能詩書，驚衛逾嚴，允矣西平之爲社稷。至於南冠之底滅，亦由邑</p>

주(淸晝)의 첩보(捷報)를 아뢰었으니, 신공(神功)을 가까이 도운 것은 시서(詩書)에 능한 극곡(郤穀)3943) 처럼 위대하고 경위(警衛)를 더욱 엄하게 한 것은 사직(社稷)을 위한 서평(西平)3944) 과 참으로 같았다. 남방의 구적(寇賊)이 섬멸된 것으로 말하면 또한 수령(守令)이 충성을 떨친 데에 말미암으니, 적진(賊陣)을 정탐하여 적의 음모를 격파하고 괴수의 목을 베고, 관군(官軍)을 멀리 두고 험한 데로 들어가 여孽(餘孽)을 잡았다. 혹 흉악한 자를 손수 묶어서 진장(鎭將)에게 바치기도 하고 혹은 급박한 정상을 직접 말하러 군문(軍門)에 나아가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다 충신(忠臣)·의사(義士)가 나라를 위하여 자신을 잊었기 때문에 난역(亂逆)한 자의 목과 요사한 자의 허리가 처참(處斬)된 것이다. 군사가 전쟁하지 않고도 요사한 기운이 아주 사라지고, 군사가 행군하지 않고도 군악(軍樂)을 울리면서 빨리 돌아왔다. 숙위(宿衛)하는 곳에서는 딱다기를 울리는 경보(警報)를 그치니 조야(朝野)가 안정되고, 반궁(泮宮)에서는 헌궤(獻馘)3945) 의 의식을 거행하니 사녀(士女)가 둘러서서 보았다. 신기(神祇)가 굽어살피 말없이 도운 것이라 할지라도 실로 싸우고 지키는 일에 인재를 얻은 데에서 힘입은 것이다. 난리가 일어난 처음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서늘하고 머리털이 서나, 오히려 곱(股肱)의 힘을 의지하여 다행히 번개 치고 천둥하는 듯한 맹렬한 형세를 얻어, 한수(漢水) 이남 대령(大嶺) 밖의 변방까지 다시는 교화가 막힐 염려가 없어졌으니, 황하(黃河)가 띠처럼 가늘어지고 태산(泰山)이 솟돌처럼 닳도록 변하지 않을 재서(載書)3946) 의 맹약을 어찌 늦추겠는가? 모토(茅土)3947) 를 나누어 봉(封)을 열어서 경사를 같이하고, 운대(雲臺)3948) 에 초상을 밝게 그려서 무궁(無窮)함을 분명히 보이며, 길일(吉日)을 잡아서 하늘에 고하고, 영단(靈壇)에 나아가 일을 행하니, 성대한 의식을 갖추어 거행하여 구법(舊法)을 준행하였다. 아! 군신(君臣)은 제회(際會)하기 어렵고 공업(功業)은 보수(保守)하기가 쉽지 않다. 비록 국난(國難)이 평정되었더라도 오히려 근심되는 기쁨이 많으니, 특

宰之奮忠，偵賊陣而伐謀，巨魁授首，懸官軍而入險，餘孽就擒。或有手縛凶殘而獻之鎭將，或有口陳急狀而詣於軍門，皆緣忠臣、義士之忘身，以致亂領妖腰之伏法。兵無血刃，而氛祲永消，士不行枚而鏜歌過返。周廬輟鳴析之警，朝野載安，魯泮學獻馘之儀，士女環觀。雖云神祇之垂臨，實藉戰守之得人，翻思亂離之初，至今心寒而髮豎，尚賴服肱之力，幸得電震而雷轟，漢水以南大嶺之隙，無復梗化之慮，黃河如帶泰山若礪，詎緩載書之盟？分茅土而啓封，嘉與同慶，煥雲臺之圖像，昭示無窮，涓吉辰而告天，就靈壇而將事，備舉縟儀，式遵舊章。於戲！君臣際會之良難，功業保守之不易。雖國難之已定，尚多憂虞之機罔，寵利而自安，益勉休戚之義。故茲教示，想宜知悉。【知製教趙遠命製進。】

禮訖，特命宣醞，引見諸功臣於宣政殿，慰諭，下御製手書曰：會盟禮成，頒軸已行，勳戚之臣，國之肺腑也。卿等或以本兵之長，慷慨請行，能成大功，或以搃兩局之兵，出則

별한 은총을 받는다 하여 스스로 편안하지 말고 고락을 같이하는 의리를 더욱 힘쓰라. 그러므로 이에 교시(敎示)하니, 잘 알아야 할 것이다.”

하였다. 【지제교(知製敎) 조원명(趙遠命)이 지어 바쳤다.】 예(禮)가 끝나고서 특별히 명하여 선온(宣醞)하고, 선정전(宣政殿)에서 공신(功臣)들을 인견(引見)하여 위유(慰諭)하고, 어제 수서(御製手書)를 내렸는데, 이르기를,

“회맹례(會盟禮)를 지내고 권축(卷軸)의 반포를 이미 행하였으니, 훈척(勳戚)의 신하(臣下)는 나라의 폐부(肺腑)이다. 경(卿)들은 혹 본병(本兵)3949)의 장(長)으로서 강개(慷慨)하여 가기를 청하여 능히 큰 공(功)을 이루기도 하고 양국(兩局)3950)의 군사를 총령(摠領)하여 나가면 왕성(王城)을 호위(扈衛)하고 들어오면 유악(帷幄)에서 찬책(贊策)하기도 하였고, 혹 아장(亞將) 또는 마병(馬兵)·보병(步兵)의 영장(領將)으로서 몸을 떨쳐 선봉을 담당하여 산동(山東)의 공을 이루었고, 혹 막부(幕府)에서 종사관(從事官)으로서 왕사(王事)에 힘을 다하였고, 혹 편비(編裨)로서 힘을 다한 것이 컸고, 혹 역적의 괴수를 잡아 바쳐서 국가가 힘입어 편안하게 하였고, 혹 순역(順逆)을 명쾌히 밝혀 밤을 새워 아뢰거나 자신이 영남 고을에서 앞장서 역적을 토벌하여 세상에 드문 공을 세웠으니, 세 등급의 이름이 있기는 하나 그 공은 마찬가지로이다. 이번에 운대에 초상을 그리고 철권(鐵券)3951)을 반사(頒賜)한 것을 어찌 다만 구례(舊例)를 따른 것이라 하겠는가? 단서 철권(丹書鐵券)3952)이 영화로운 것은 사실이거니와, 그 근본을 요약하면 한결같은 정성에 있다. 임금과 신하가 늘 전일의 마음을 간직하여, 위에 있는 자는 훈신(勳臣)을 보안(保安)하여 피를 마시고 맹약한 때를 잊지 말고, 아래에 있는 자는 조심하고 삼가서 게으르고 편안한 것을 경계한다면, 나라에 있어서나 집에 있어서나 무슨 어려울 것이 있겠는가? 이렇게 하고 나서야 국가가 길이 편안하여 만세에 공훈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정성스러운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니, 경들은 몸담고 경들은 몸받으라. 나도 마음에서 스스로 힘쓸 것이다. 임금과 신하가

扈衛王城，入則贊策帷幄，或以亞將，或以馬、步領將，奮身當先，成山東之功。或以從事幕府，竭力王事，或以編裨，效力大焉，或以捕納賊魁，使邦家賴安，或以快曉順逆，星夜登聞，或以身在嶺邑，挺身討賊，樹不世之功，雖有三等之名焉，其功則一也。今茲圖像雲臺，頒以鐵券，豈曰只循舊例？然丹書鐵券，榮則榮矣，要其本，在乎一誠。君臣恒存向日之心，在上者保安勳臣，勿忘敵血之日，在下者小心翼翼，戒乎怠逸，則於國於家，何有乎哉？若此而後，其能國家永安，垂勳萬世。是可謂誠矣，卿等其體哉，卿等其體哉。予亦自勉于中。君臣一堂，魚水、風雲，眷眷之心，成大禮，而猶且耿耿，以一箇誠字，相勉于卿等，藏諸勳閣，毋替予意。且卿等或文、或武、或蔭，士有本自世族，有起於寒微，其初則雖異，而及夫圖像麟閣之後，情若兄弟，義若朋友，豈有彼此哉？其若不然，豈曰誠乎？能守此誠，太平可期，未能守此誠，盟壇在彼，須體予諄諄丁寧之言。功臣等拜謝。上以李普燮獨未封君，

	<p>한 당(堂)에서 어수(魚水)3953) ·풍운(風雲)3954) 을 얻어 간절한 마음이 대례(大禮)를 치르고도 오히려 잊혀지지 않아서 일개 성자(誠字)로 경들에게 권면(勸勉)하니, 훈각(勳閣)3955) 에 간수하여 내 뜻을 잊지 말라. 또 경들은 혹 문관(文官) 또는 무관(武官) 또는 음관(蔭官)인데, 조사(朝士)에는 본디 세족(世族)인 자도 있고 한미한 집에서 일어난 자도 있으므로 처음에는 다를지라도, 인각(麟閣)3956) 에 초상을 그린 뒤에는 정의(情誼)가 형제와 같고 의리가 벗과 같으니, 어찌 피차가 다르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어찌 정성스럽다 하겠는가? 능히 이 정성을 지키면 태평을 바랄 수 있겠으나, 이 정성을 지키지 못하면 맹단(盟壇)이 저기에 있음을 생각해야 할 것이니, 내 간절하고 정녕한 말을 몸받아야 한다.”</p> <p>하니, 공신들이 배사(拜謝)하였다. 임금이 이보혁(李普爌)만이 봉군(封君)되지 않았다 하여 특별히 명하여 가자(加資)하고 봉군하게 하고, 또 명하여 회맹제(會盟祭) 때의 찬례(贊禮)인 좌참찬(左參贊) 김시환(金始煥)·예방 승지(禮房承旨) 이인복(李仁復)과 독서문관(讀誓文官)인 응교(應教) 이광보(李匡輔)에게 모두 가자하고 여러 승지(承旨) 이하에게 차등을 주어 상주었다.</p>	<p>特命加資封君，又命會盟祭時，贊禮左參贊金始煥、禮房承旨李仁復、讀誓文官應教李匡輔，并加資，諸承旨以下，賞賚有差。</p>
<p>영조 18권, 4년(1728 무신 / 청 옹정(雍正) 6년) 7월 27일(병자) 1번째기사 공미·공물 감축과 양역 등에 대해 전교하다</p>	<p>하교(下教)하기를, “아! 내가 덕이 없기 때문에 4년 동안 흉수와 가뭄으로 기근(饑饉)이 잇달아 올해에는 예전에 없던 역란(逆亂)을 겪었으니, 슬픈 우리 백성이 어떻게 견디겠는가? 옛말에 ‘군사를 일으킨 뒤에는 반드시 큰 흉년이 있다.’ 하였는데, 다행히 두 해가 큰 흉년에 이르지는 않아서 농사는 오히려 바랄 수 있으나, 그래도 불안한 것은 가을철이 아직 멀어서 그 사이의 흉수·가뭄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어찌 가을 곡식이 거의 익어가는데 찬 비가 장마를 이룰 줄 알았겠는가? 내가 덕이 없기 때문에 천심(天心)을 감동시키지 못하여 이 흉수·가뭄의 흉년을 가졌왔으니, 만약 칙려(飭勵)하는 일이 없으면 어떻게 하늘을 감동시키겠는가? 의당 내 몸부터 비롯해야 할 것이다. 두 동조(東朝)의 어공(御供)</p>	<p>丙子/教曰： 噫！因子涼德，四年之內，水旱饑饉連仍，今年則經古今所無之逆亂，哀我生靈，何以支堪？古語云：‘師旅之後，必有大歉。’幸而兩年，不至大歉，穡事庶猶可望，然猶耿耿者，秋序尚遠，其間水旱，未可料故也。豈意秋成幾報，冷雨成霖？因子否德，未能感格天心，致此極備，若無飭勵之事，何以格感？宜自寡躬始。兩東朝御供外，供米各</p>

	<p>이외의 공미(供米)는 각각 3분의 1을 줄이고 날이 개더라도 열흘 동안 공물(貢物) 가운데에서 진배(進拜)에 긴급하지 않은 것은 별단(別單)을 우선 줄이라는 뜻은 그저께 이미 하교한 것이 있었다. 주사(壽司)3969)의 당상(堂上)이 대신에게 나아가 의논하여 내일 안으로 써서 들이게 하라. 양역(兩役)에 관하여 의논드리는 문서도 일찍 초록(抄錄)해내어 비당(備堂)3970)과 대신들을 시켜 차대(次對)3971) 때에 품처(稟處)하게 하라.”</p> <p>하였다.</p>	<p>三分減一，雖日晴，限十日貢物中，不緊進排者，別單姑減之意，再昨已有下教。 壽司堂上就議大臣，明日內使之書入。 良役獻議文書，亦趁卽抄出，令備堂諸大臣，次對稟處。</p>
<p>영조 18권, 4년(1728 무신 / 청 옹정(雍正) 6년) 7월 29일(무인) 1번째기사</p> <p>공미를 절감하고 양역 변통에 관해 비당과 대신들이 품처하도록 하다</p>	<p>임금이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당상(堂上)을 인견(引見)하였다. 우의정(右議政) 오명항(吳命恒)이 말하기를,</p> <p>“공물(貢物)에 관한 일로 말하면 또한 좋은 방책을 얻지 못하였으나, 밖의 의논은 다 기인 공물(其人貢物)3972)의 일을 말하는데, 대내(大內)에 들어가는 것에는 지나친 것이 없지 않아도 견제되는 꼬투리가 있어서 줄이지 못할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재이(災異)가 이러하므로 못 견디게 근심스럽고 두렵다. 내가 덕이 없는 탓이므로 반성할 밖에 다른 도리가 없으니, 찬선(饌膳)을 줄이라는 분부에 내 뜻을 대략 보였다. 공물 가운데에 대내에서 긴급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혹 공인(貢人)이 감당하기 어려운 꼬투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니, 진배(進排)하는 수를 벌여 써서 들이면 아주 줄일 것은 아주 줄이고 임시방편으로 줄일 것은 임시 방편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p> <p>하였다. 오명항이 말하기를,</p> <p>“어공(御供)은 도총사(都摠使)·혜청(惠廳)3973)·호조(戶曹)에서 초록(抄錄)해내어 대신들과 상의한 뒤에 여쭙겠습니다. 또 어공 밖에도 공물의 명목은 매우 많으나, 도민(都民)이 이것으로 의지하여 사는데 이제 죄다 폐지하면 생업을 잃을 것이 염려스러우니, 만약 전혀 쓸데없는 것은 그 공급을 줄여서 그</p>	<p>戊寅/上引見大臣、備局堂上，右議政吳命恒曰：“以貢物事言之，亦不得善策，外議皆以其人貢物事爲言，大內所入，不無過節者，而必有掣肘之端，不能減去矣。”上曰：“災異如此，不勝憂懼。由予涼德，反求之外，無他道，減膳之教，略示予意。貢物中自內不緊者，亦有之，而或爲貢人難堪之端矣。若列書進排之數以入，則可以全減者全減，權減者權減。”命恒曰：“御供，都摠使、惠廳、戶曹抄出，與諸大臣相議後稟旨。且御供外，貢物名目甚多，然都民以此聊賴，今若盡罷，則失業可慮。若全無所用者，減却其供，以其所餘，補用經費似好。”上曰：“廟堂有司堂上句管，與戶判、惠堂相議，其可存可減者，議大臣處之。”命恒曰：“戶曹、惠廳敗船之數，</p>

	<p>남는 것을 경비에 보태어 쓰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묘당(廟堂)의 유사 당상(有司堂上)이 구관(句管)하여 호판(戶判)·혜당(惠堂)3974) 과 그대로 둘 것과 줄일 것을 상의하고 대신과 의논하여 처치하라.” 하였다. 오명항이 말하기를, “호조·혜청의 패선(敗船)된 수가 모두 4만 7천여 석(石)이고 이 밖에 군문(軍門)의 패선된 수도 많습니다. 9, 10월 이후 반급(頒給)할 녹봉(祿俸)이 떨어질 것이라 하니, 각도에 있는 곡물을 적당히 가져와서 눈앞의 급한 것을 구제하고 각도·각 군문의 남은 전화(錢貨)를 참작하여 가져와서 곡물을 사서 쓰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이조 참판(吏曹參判) 송인명(宋寅明)이 말하기를, “일체의 낭비를 엄금해야 할 것이니, 먼저 내주방(內酒房)부터 폐지하는 것이 좋겠고, 내외의 영선(營繕)도 폐지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주방은 전후에 이미 두 병(瓶)을 줄였으므로 이제 다시 줄일 것 없고, 긴요하지 않은 토목(土木)일은 처음부터 하지 않았으므로 신칙(申飭)할 것 없다.” 하였다.</p>	<p>合爲四萬七千餘石， 此外軍門敗船之數， 亦多矣。 九十月後， 頒祿當絕云， 各道所在穀物， 量宜取來， 以救目前之急， 各道、各軍門所餘錢貨， 參酌取來， 質穀用之似好。” 上從之。 吏曹參判宋寅明曰：“一切糜費， 宜痛禁， 先自內酒房， 罷之爲好， 內外營繕， 亦宜罷之。” 上曰：“內酒房， 則前後已減二瓶， 今不必更減， 不繫土木， 初不爲之， 不必申飭。”</p>
<p>영조 19권, 4년(1728 무신 / 청 옹정(雍正) 6년) 8월 15일(계사) 3번째기사 능단 사라의 폐해에</p>	<p>승지(承旨) 이중협(李重協)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신(臣)이 삼가 보건대, 전하의 어공 의대(御供衣櫛)·내입 주포(內入紬布)·어선 봉진(御膳封進)을 다 절감한 것은 대우(大禹)가 나쁜 옷을 입고 나쁜 음식을 먹은 덕과 같은데, 여염 사이에서는 사치가 날로 심하여 습속(習俗)이 이미 고질이 되었으니, 위형(威刑)으로 금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단 사라</p>	<p>承旨李重協上疏， 略曰： 臣伏見殿下， 御供衣櫛、內入紬布、御膳封進， 竝皆節減， 卽大禹惡衣非食之德。 而閭閻之間， 奢侈日甚， 習俗已痼， 有非威刑可禁。 綾緞紗羅， 本非</p>

<p>대한 승지 이중협의 상소문</p>	<p>(綾緞紗羅)는 본디 우리 나라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해마다 사행(使行) 때에 상방(尙方)4000) 의 어공(御供)에 들이는 것과 영문(營門)의 기치(旗幟)에 드는 것과 각사(各司)의 별구청(別求請)을 무역하는 이외에, 혹 금령(禁令)을 범하면 잠상률(潛商律)로 벌주어, 한편으로는 온 나라 안이 사치하는 풍습을 고치고 한편으로는 사상(私商)을 데려가는 간사한 짓을 막고 한편으로는 탁지(度支)4001) 의 경비를 보태게 하면, 한 가지 일을 행하여 세 가지 이득이 있을 것입니다.” 하였는데, 비답(批答)하기를, “네 말은 옳으나, 임금의 곤복(袞服)과 신하의 장복(章服)이 다 이 가운데에서 나오는 것이니, 일체 금하는 법을 시행하기 어렵다.” 하였다.</p>	<p>我國之產，年年使行，尙方御供所入、營門旗幟所入及各司別求請貿易之外，若或犯禁，施以潛商之律，一以革學國奢靡之風，一以防私商挾帶之奸，一以補度支經用之費，行一事而有三利焉。 批曰：“爾言是矣，而上之袞服、下之章服，俱此中出也，難施一切之法矣。”</p>
<p>영조 19권, 4년(1728 무신 / 청 옹정(雍正) 6년) 8월 17일(을미) 1번째기사 진연하는 일에 대해 하교하다</p>	<p>하교(下教)하기를, “진연(進宴)하는 일을 동조(東朝)에 아뢰었더니, ‘지극한 정성이 이러하니 따르겠으나 잔치에 드는 것을 절약해야 한다’고 분부하셨다. 본디 정한 날에 거행하되 되도록 절약한다면 세월을 아끼는 마음과 뜻을 기르는 도리가 모두 마땅할 수 있을 것이니, 이대로 거행하라.” 하였다.</p>	<p>乙未/教曰：“進宴事，陳達東朝，則教以至懇若此，當從之，而宴需，宜節約。仍以原定日行之，從以節約，則愛日之心、養志之道，俱得其宜，依此舉行。”</p>
<p>영조 19권, 4년(1728 무신 / 청 옹정(雍正) 6년) 8월 18일(병신) 1번째기사 진연의 준비에 대해 명령하다</p>	<p>진연(進宴) 때의 사화봉(絲花鳳)을 없애고 지화(紙花)로 갈음하고 한과(漢果)에는 칠하지 말라고 명하였는데, 자교(慈教)에 따른 것이다.</p>	<p>丙申/命祛進宴時絲花鳳、代以紙花，漢果勿柒，遵慈教也。</p>
<p>영조 19권, 4년(1728 무신 / 청 옹정(雍正) 6년) 9월 11일(무오)</p>	<p>풍원군(豐原君) 조현명(趙顯命)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대신(大臣)의 빈소(殯所)가 있는 곳이 근교(近郊)라고는 하나 치우치게 떨어져서 거의 절과 같고 또 그 집이 좁아서 관(棺)을 들여놓는 밖에는 빈의(殯</p>	<p>戊午/豐原君趙顯命上疏，略曰： 大臣停殯之地，雖曰近郊，所處荒絕，殆類寺刹，又其家舍狹隘，容棺之外，</p>

1번째기사

대신의 빈소가 떨어져 있고, 집이 좁아서 빈의를 이루지 못하는 사정을 말한 조현명의 상소문

儀)를 이룰 수 있는 자리가 하나도 없으니, 사체(事體)가 소략합니다. 예전에 완풍 부원군(完豐府院君) 이서(李曙)가 남한 산성(南漢山城)이 포위되었을 때에 죽었는데, 대가(大駕)가 환도한 뒤에 서울 집으로 반구(返樞)하도록 윤허하셨습니다. 이것은 특은(特恩)에 관계되므로 아래에서 감히 함부로 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전하께서 매우 슬피 여겨 특별히 성밖 여염집의 조금 넓은 곳을 골라 주어 빈소를 옮기게 하여 주신다면, 너그러이 돌보시는 은혜를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생각하건대, 진(晉)나라의 대부(大夫) 지도자(智悼子)의 상에 그 임금이 술을 마시고 음악을 연주하므로膳夫(膳夫) 두레(杜賁)가 계단을 급히 올라와 잔을 들고 예절에 의거하여 아뢰니 그 임금이 당장 명하여 음악을 끊고 음식을 거두고서 그 잔을 표창하여 두거(杜舉)라 하였는데, 이것은 천재(千載)의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번 진연(進宴)은 이미 내연(內宴)이라 하니 전하께서 몸소 즐기시는 것과 다르고 동조(東朝)께서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편안하지 못한 것이 있을세라 염려된다.’ 하셨으니, 예절에 어그러지는 봉양은 또한 전하께서 스스로 효사(孝思)를 다하시는 방도가 아닙니다. 일이 변례(變禮)에 관계되니, 또한 널리 물어 살펴서 처치하시기 바랍니다.”

하였는데, 비답(批答)하기를,
“이제 경(卿)의 소(疏)를 보니 더욱 마음 아프고 슬픈 것이 절실하다. 해조(該曹)를 시켜 문밖에 있는 사대부의 집을 사서 주라. 진연의 일은 생각하는 것을 숨김 없이 말하니 뜻은 아름답다마는, 인용한 옛일은 매우 가깝지 않다. 상수(上壽)하는 예는 임금이 잔치를 받는 예와 다르니, 조정에서 대신을 공경하더라도 태후(太后)의 소중함이 어떠하겠는가? 부묘(祔廟)4044 뒤에 동조에 상수하는 것은 조종(祖宗)께서 이미 행하신 일인데, 조정에 있는 신하들이 어찌 한 번 연례(宴禮)를 올리려는 마음이 없겠는가? 사체가 결코 이러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無一席可以成殯儀者，事體殊涉草率。昔者完豐府院君李曙，身沒於南漢圍城，大駕還都之後，許令返樞京第，此係特恩，有非自下所敢妄請者，而倘蒙殿下，深加哀惋，特令擇給城外閭舍稍寬處，使之移殯，則其於優恤之恩，庶幾有卒。抑惟念晉大夫智悼子之喪，其君飲酒樂，膳夫杜賁者，歷階揚觶，據禮而陳之，其君立命斷懸撤飲，旌其觶曰杜舉，此千載美節也。今此進宴，既曰內宴，則與殿下之躬自樂者有異，而自東朝言：“恐或有不能自安者。”非禮之養，亦恐非殿下之所以自盡於孝思者也。事係變禮，亦願博詢而審處焉。

批曰：“今觀卿疏，尤切傷悼。令該曹，買給門外士夫家。進宴事，有懷無隱，意則嘉矣，所引古事，大不襯着。上壽之禮，非人主受宴之比，朝廷雖敬大臣，太后所重何如哉？祔廟後，上壽東朝，祖宗已行之事，在廷臣僚，豈無一上宴禮之心乎？事體決不當如是也。”

<p>영조 19권, 4년(1728 무신 / 청雍正6년) 9월 16일(계해) 1번째기사 헌부에서 국옥에 관계되는 것을 엄중히 할 것을 아뢰다. 간원에서 주금을 지키지 않은 내자시 관원을 파직하도록 아뢰다</p>	<p>하였다. 헌부(憲府) 【장령(掌令) 허옥(許沃)이다.】 에서 전에 아뢴 일을 다시 아뢰고, 또 아뢰기를, “일이 국옥(鞠獄)에 관계되는 것은 더욱 엄중히 해야 할 것인데, 전 집의(執義) 임광(任珖)은 윤수(尹遂)의 일에 굳이 혼자 이의(異義)를 하여 방자하게 인피(引避)하였으니, 정태(情態)가 매우 통탄합니다. 성교(聖敎)에 엄히 배척하여 여정(輿情)을 시원하게 하셨더라도 벌은 파직(罷職)에 그쳐 징려(懲勵)할 만하지 못하니, 임광을 삭출(削黜)하소서. 상원 군수(祥原郡守) 신광택(申光宅)은 백성을 침학(侵虐)하여 자기를 살찌운 것이 날날이 들출 것도 없이 많으며, 읍기(邑妓)에게 혹하여 그 말대로 따르고 아객(衙客)을 놓아 양녀(良女)를 겁탈하며, 정령(政令)이 도리에 어그러지고 거조(舉措)가 해괴하고 어그러 집니다. 은산 현감(殷山縣監) 이재악(李載岳)은 탐욕이 그지없고 뇌물이 버젓이 행해지며, 접매 안무사(按撫使)가 순행하여 들렀을 때에는 그 용사(用事)하는 아객·읍기를 결장(決杖)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무리는 모두 자목(字牧)의 직임에 두어 백성에게 해를 끼치게 할 수 없으니, 신광택·이재악을 모두 파직하여 서용하지 말도록 명하소서. 은계 찰방(銀溪察訪) 박이문(朴以文)은 늙어서 귀가 어둡고 눈이 흐려 전혀 일을 보살피지 못하니, 개차(改差)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 임광·박이문은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간원(諫院) 【사간(司諫) 강필경(姜必慶)이다.】 에서 전에 아뢴 일을 다시 아뢰었으나, 윤희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주금(酒禁)을 신칙(申飭)한 뒤로 술집으로 이름난 것은 모두 술 빛는 일을 끊었으나, 송교(松橋) 근처 큰 술집 하나가 있는데 내자시(內資寺)에서 도장을</p>	<p>癸亥/憲府 【掌令許沃。】 申前啓， 又啓：“事關鞠獄， 尤宜嚴重， 前執義任珖， 乃於尹遂之事， 強爲崖異， 肆然引避， 情態絕痛。 聖教嚴斥， 雖快輿情， 罰止罷職， 未足懲勵， 請任珖削黜。 祥原郡守申光宅， 虐民肥己， 不一而足， 惑邑妓而惟言是從， 縱衙客而劫奪良女， 政令乖戾， 舉措駭悖。 殷山縣監李載岳貪饕無厭， 賄路公行， 向來撫使之巡過也。 至杖其衙客邑妓之用事者。 如此之類， 俱不可置之字牧之任， 以貽生民之害， 請申光宅、李載岳， 並命罷職不敘， 銀溪察訪朴以文， 年老隕眊， 全不省事， 請改差。” 不允。 任珖、朴以文事， 依啓。 諫院 【司諫姜必慶。】 申前啓， 不允。 又啓：“一自酒禁申飭之後， 酒家得名者， 舉皆絕釀， 而松橋近處， 有一大酒肆， 高揭內資寺踏印帖子， 稱以御供之酒， 使法府， 不得下手， 恣意買賣無所忌憚。 請內資寺當該官員， 爲先罷職， 書員， 令攸司囚禁科罪。” 依啓。</p>
---	---	---

	<p>찍은 첩자(帖子)를 높이 걸고 어공(御供)하는 술이라 칭하여 법부(法府)에서 손을 대지 못하게 하고 뜻대로 매매하여 꺼리는 것이 없으니, 내자시의 해당 관원을 먼저 과직하고 서원(書員)은 유사(攸司)를 시켜 가두고 죄주소서.” 하니, 아뢴 대로 윤택하였다.</p>	
<p>영조 19권, 4년(1728 무신 / 청 옹정(雍正) 6년) 9월 19일(병인) 1번째기사 양로하는 예를 시행하도록 양도의 유수와 팔도의 감사에게 하유하다</p>	<p>하교(下教)하기를, “두 동조(東朝)에 상수(上壽)하는 예는 이미 세월을 아끼는 정성을 이루었으니 자기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헤아리는 도리도 조금 펼 수 있을 것이다. 경전(經傳)에 실려 있는 양로(養老)하는 예는 국조(國朝)의 성전(盛典)이니, 80세 이상의 사대부와 90세 이상의 서민에게 해조를 시켜 술과 쌀과 어육(魚肉)을 후하게 제급(題給)한다는 뜻을 양도(兩都)4045)의 유수(留守)와 팔도의 감사(監司)에게 하유(下諭)하게 하라.” 하였다.</p>	<p>丙寅/教曰： 兩東朝上壽之禮，已成愛日之忱，庶可少伸絜矩之道。 經傳所載養老之禮，國朝盛典，士大夫年八十以上，庶民年九十以上者，令該曹，酒米魚肉，從厚題給之意， 下諭于兩都留守、八道監司。</p>
<p>영조 19권, 4년(1728 무신 / 청 옹정(雍正) 6년) 9월 19일(병인) 3번째기사 기강 확립과 기인 공물의 폐지에 대한 지평 이선행의 상소문</p>	<p>지평(持平) 이선행(李善行)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접때 전하께서 한사선(韓師善)에게 엄히 분부하실 때에 ‘존비(尊卑)’ 두 글자로 기강을 세우는 큰 근본을 삼았습니다. 만약 상사람이 조사(朝士)를 능욕하여서, 대간(臺諫)이 그 일을 논하여 준비에 질서가 없다고 한다면 신은 전하께서 보통 말로 간주하신 줄 확실히 압니다. 준비는 같아도 상사람에게 쓰면 폐단이 없는 줄 확실히 알겠으나, 궁비(宮婢)에게 쓰면 사단(事端)을 일으키는데, 전하께서 몹시 괴로워하시는 것은 과연 이 일에 있습니까? 과연 ‘존비’ 두 글자에 있습니까? 그 뒤 유신(儒臣) 정우량(鄭羽良)에 대한 비답(批答)에 명물(名物)을 인용하여 허물을 문식(文飾)하기를 마지않고 자용(自用)하는 기색이 사람을 천리 밖에 물리치셨으니, 성덕(聖德)의 흠이 되는 것이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조현명(趙顯命)이 상소하여 두거(杜舉)를 인용한 것은 임금의 인도하여 도리에 맞게 하려는 것이었는데, 전하께서는 그 말이 옳은 줄 모르시지 않으면서 장황히 비답하여 억지로 의리를 만들어 조현명의 말을 꺾고야 마셨습니다. 전하께서 전하의 학문이 없고 전하의 지업(志業)이 없어서 때때</p>	<p>持平李善行上疏，略曰： 向殿下嚴教於韓師善也，以尊卑二字，爲立紀綱之大柄。 設若常漢，凌辱朝士，而臺諫論其事曰：“尊卑無序。” 則臣決知殿下，看作尋常話也。 尊卑則同，而用於常漢，則決知無弊，用於宮婢，則惹起事端，殿下之激惱者，果在本事耶？ 果在尊卑二字耶？ 其後儒臣鄭羽良之批，引喻名物，文過不已，訑訑之色，拒人千里，其爲聖德之累，果何如哉？ 趙顯命疏，引杜舉者，欲引君當道也，殿下非不知其言之是也，而張皇爲批，曲成義理，屈顯命之言而後已。 若使殿下，無殿下之學問，無殿</p>

로 천둥처럼 진노하여 임금의 허물을 못 신하가 다 알 수 있게 하신다면 신은 근심할 것도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전하께서는 부드러운 모습이 매우 노하시지 않은 듯하고 문식하는 것이 잘못하시지 않은 듯하면서 자구(字句)를 잡아내어 동에서 노한 것을 서에서 나타내시니, 전하께서 못 신하를 꾸짖으시는 것은 잡을 자루가 있고 못 신하가 전하를 경계하는 것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단점을 감싸는 양책(良策)과 이기려고 힘쓰는 득계(得計)로 삼으시니, 신은 전하의 본원(本源)의 바탕과 강건(剛健)한 본성이 문변(文辯) 가운데에서 날로 사라지고 달로 사그라질까 염려됩니다.

이제 난역(亂逆)이 막 평정되어 근심거리가 눈에 넘치는데, 전하께서는 또한 스스로 거룩하게 여기고 스스로 만족하여 천고(千古)의 일을 가벼이 보고 태평을 꾸며 못 신하를 억누르면서 유식한 자가 남몰래 한탄하고 만백성이 서운하게 여기는 것을 아주 모르시니, 참으로 전하께서 이 마음을 길러 마지 않고 이 길에 따라서 행하신다면 하루에 세 번 어진이를 만나 날마다 경전(經傳)을 강독하더라도 남을 막는 지혜를 길러 그런 일을 수행하는 바탕을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일 것이니, 위태로운 인심과 희미한 도심(道心)을 정순(精純)하고 전일(專一)하게 하는 공부에 무슨 조금이라도 관계되겠습니까? 또 들건대, 접때 연중(筵中)에서 장렬 왕비전(莊烈王妃殿)의 기인 공물(其人貢物)4046) 을 폐지하라고 명하셨다 하니, 이것은 참으로 전하의 성덕(盛德)의 일입니다마는, 장렬 왕비 이후에 제전(諸殿)의 기인 공물을 마땅히 폐지해야 할 것인데도 폐지하지 않은 것이 아직 많습니다. 그날 입시(入侍)한 신하들이 이 성교(聖教)에 따라 이어서 폐지할 것을 청해야 옳는데, 두 중신(重臣)은 주인(主人)들이 생업을 잃는다고 말하여 폐지하도록 명하신 것도 아울러 망설였다 합니다. 이것은 궁중 용도의 여지를 만들어 전하에게 아첨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하에게 이러한 사람과 함께 잘 다스리려 하시는 것은 또 어려울 것입니다. 신은 그날의 두 중신에게 모두 종종 추고(從重推考)의 벌을 주

下之志業，而時有雷霆之震，日月之食，使群下，皆得而知之，則臣不必爲憂，而今殿下，則雍容不似盛怒，文飾不似過失，摘抉字句，怒東發西，殿下之責群下，則操之有柄，群下之規殿下，則乘之無間。以此爲護短之良策，務勝之得計，臣恐殿下本源之地、剛健之體，日消月鑠於文辯之中也。顧今亂逆初平，憂虞溢目，而殿下方且自聖自滿，輕視千古，粉飾太平，箝制群下，而殊不知有識竊歎，兆庶缺望，誠殿下，長此心不已，率此道以行，則雖三接龍象，日講經傳，而不過長禦人之智，而爲遂非之資耳，其於精一危微之工，有何一毫交涉乎？且伏聞向日筵中，命罷莊烈王妃殿其人貢物，此誠殿下盛德事，而莊烈王妃以後諸殿其人貢物，當罷而不罷者尚多。伊日入侍諸臣，因此聖教，繼請革罷可也，而兩重臣，至以主人輩失業爲言，竝與命罷者而持難云。此不過爲宮中用度之地，而求媚於殿下耳。殿下欲與此等人求治，其亦難矣。臣謂伊日兩重臣，竝加從重推考之罰，以懲今日逢迎之習焉。

	어 오늘날의 뜻을 맞추는 버릇을 징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였는데, 임금(大憲)이 대의(大意)는 옳다고 비답(批答)하였다.	上以大意則是，爲批。
영조 19권, 4년(1728 무신 / 청 옹정(雍正) 6년) 10월 8일(을유) 3번째기사 호조 판서 권이진이 상소하여 공물의 절약 등에 대해 말하다	호조 판서(戶曹判書) 권이진(權以鎭)이 상소하여, 공물을 더 쓰는 것을 바로잡아 고쳐야 한다는 것을 자세히 말하고, 또 대내(大內)에서 채소를 담그는 것이 1천 6백 바리나 되는 것을 절약하는 덕에 손상이 있다는 것을 말하였는데, 비답(批答)하기를, “공물을 올리고 내리는 데에는 본디 구규(舊規)가 있으니, 간사한 관리의 외람하고 교활한 것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어찌하여 반드시 이 일에 고집해야 하는가? 또 채소를 담근 것을 내농포(內農圃)4088)에서 각전(各殿)에 바치는 것은 요즈음 포전(圃田)이 줄었기 때문에 그 수가 전보다 매우 적으니, 절약에 관한 말은 잘 모른 뜻이다. 대저 시골 마을의 두어 식구의 가난한 집을 왕궁(王宮)에 견주어 헤아리면 모든 일에 경중이 있고 다소가 있을 것이니, 이것은 경의 생각이 치우치고 막힌 곳이다.” 하였다.	戶曹判書權以鎭上疏備言，貢物加用之宜釐革，又言大內沈菹一千六百之馱，有傷於節損之德，批曰：“貢物上下，自有舊規，當飭奸吏之濫猾。何必固執於本事，且沈菹內農圃之供各殿者，近因圃田減縮，其數比前甚少，節損之說，乃未詳之致矣。大抵以鄉里數口之寒屋，比諸王宮而量之，凡事有輕有重，有多有少，此卿偏滯處矣。”
영조 20권, 4년(1728 무신 / 청 옹정(雍正) 6년) 11월 8일(갑인) 1번째기사 왕세자가 진수당으로 옮겨 거처하다	왕세자가 진수당(進修堂)으로 옮겨 거처하였다. 이때 환후가 날로 위중해져가므로, 임금이 기품(氣稟)이 본디 청약(淸弱)하다 하여 삼다(蔘茶)를 쓰려 하였으나, 약원 제도들이 번조(煩燥)한 것을 염려하여 귤피죽여탕(橘皮竹茹湯)을 청하였는데, 끝내 결정하지 못하였다.	甲寅/王世子移住進修堂。是時，患候日就危重，上以氣稟之本來淸弱，欲用蔘茶，藥院提舉，多以煩燥爲慮，請用橘皮竹茹湯，終不定。
영조 20권, 4년(1728 무신 / 청 옹정(雍正) 6년) 11월 19일(을축) 4번째기사 약방에서 구전하여 상 선을 회복하기를 청하	약방(藥房)에서 구전(口傳)하여 상선(常膳)을 회복하기를 계청(啓請)하니, 비답(批答)하기를, “두 동조(東朝)께서 상선을 회복하시도록 여쭙어 윤희받았으나, 나는 소선(素膳)을 행한 지 오래지 않은데 정리(情理)가 어찌 차마 문득 상선을 회복할 수 있겠는가?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라.” 하였다.	藥房口傳啓請復常膳，批曰：“仰稟復膳於兩東朝，蒙允，而予則行素未久，情理豈忍遽復常膳乎？須勿過慮。”

<p>다</p> <p>영조 20권, 4년(1728 무신 / 청 옹정(雍正) 6년) 12월 7일(계미) 1번째기사 선혜청의 찬미를 내어 주어 재목을 나르는 백성의 힘을 감하게 하다</p>	<p>국장 도감(國葬都監)의 당상(堂上)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임금(上)이 하교(下敎)하기를, “선혜청(宣惠廳)의 찬미(饌米) 1백 석을 우선 내어 주어 재목을 나르는 품삯으로 삼아 조금이라도 백성의 힘을 느슨하게 하려 한다.” 하고, 또 말하기를, “국가에서 이러한 때에 한 번 백성을 움직이는 것이 어찌 안될 것이 있겠는가마는, 혹 난잡한 폐단이 있을까 염려되므로 백성을 움직이려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한 허다한 재목을 며칠 안에 나르기가 참으로 어려우니, 군문(軍門)의 전포(錢布)를 우선 대용(貸用)하고, 도감에서 인부를 고용해서 나르게 하되, 혜청(惠廳)에서 으레 내사(內司)로 옮겨 보내는 쌀이 있으니, 이것을 보태어 쓰도록 하라.” 하였다. 사신은 말한다. “임금의 말이 위대하다. 비통하고 애도하는 가운데에서도 백성을 사랑하여 경비를 아끼는 마음이 상장(喪葬)의 제구를 마련하는 데 유감이 없게 할 때에 애연(藹然)하니, 인자(仁者)에게 뒤가 있는 사리와 우리 나라가 바랄 수 있는 희망이 여기에 있겠다.”</p>	<p>癸未/引見國葬都監諸堂上，下敎曰： “宣惠廳饌米一百石，爲先出給，以爲輸運材木之雇價，欲寬一分民力。”又曰：“朝家如此之時，一番動民，何不可之有？而或慮有濫雜之弊，故不欲動民。第許多材木，實難輸運於數日之內，軍門錢布，先爲貸用，都監雇立人夫，使之輸運，而自惠廳，例有移送內司之米，以此添補用之可也。” 【史臣曰：“大哉！王言，雖於悲疚愴悼之中，愛民恤費之心，藹然於送死無憾之際，仁者有後之理，吾國庶幾之望，其在是歟。”】</p>
<p>영조 21권, 5년(1729 기유 / 청 옹정(雍正) 7년) 1월 5일(경술) 1번째기사 선혜청에서 산릉의 제전에 봉진하는 생물 아홉 종류의 마련에 대해 아뢰다</p>	<p>선혜청(宣惠廳)에서 아뢰기를, “국휼(國恤)의 발인(發引) 뒤 현궁(玄宮)을 내리기 전에 산릉(山陵)의 아침 저녁 제전(祭奠)에 봉진(封進)하는 생물(生物)을 각도(各道)에 분정(分定)하고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는 전례(前例)가 있습니다. 이번 왕세자(王世子)의 상(喪)에도 전례에 의거하여 아홉 종류를 마련하여 들이겠습니다.” 하니, 1미(尾) 외에는 모두 반으로 줄여 봉진하라고 명하였다.</p>	<p>庚戌/宣惠廳啓：“國恤發引後，下玄宮前，山陵朝夕祭奠封進生物，有分定各道，別單書入之例。今此王世子喪，依前例以九種磨鍊以入。”命一尾外，并減半封進。</p>

<p>영조 21권, 5년(1729 기유 / 청 옹정(雍正) 7년) 1월 5일(경술) 2 번째기사 이광좌가 전화의 폐단을 진달하다. 지중추 심단이 은결과 면세전을 사정하여 공가에 귀속시킬 것을 청하다</p>	<p>임금이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당상관을 인견(引見)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이광좌(李光佐)가 전화(錢貨)의 폐단을 진달하니, 임금이 영원히 혁파하는 것과 더 주전(鑄錢)하는 것 중에서 어느 쪽이 더 편리한가를 물었다. 사직(司直) 박사수(朴師洙)가 말하기를, “영상(領相) 외에 윤순(尹淳)·심단(沈檀) 같은 이는 모두 더 주전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말합니다마는, 거만(巨萬)의 재화(財貨)를 어찌 헛되이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신은 더 주전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혁파하지도 않고 주조하지도 않으면서 단지 채전(債錢)을 주지 않게 한다면 옳겠는가?” 하고, 사관(史官)을 보내어 외방(外方)에 있는 대신(大臣)과 유신(儒臣)에게 문의(問議)하라고 명하였다. 이광좌가 각 아문(衙門)과 군문(軍門)의 모든 수용(需用)에 관계되는 것을 돈으로 내어 주고, 외방의 돈이 많은 곳은 점차 곡식으로 바꾸도록 할 것을 청하니, 윤허하였다. 지중추(知中樞) 심단(沈檀)이 각도(各道)의 은결(隱結)4206 과 여러 곳의 면세전(免稅田)을 사정(查正)하여 공가(公家)에 귀속시킬 것을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여러 궁가(宮家)의 면세전(免稅田)은 본디 정해진 결수(結數)가 있으니, 각도로 하여금 낱알이 조사해 내고, 각 군문(軍門)의 면세전도 모두 한결같이 사정하여 일후(日後)에 품정(稟定)해야 마땅하다.” 하였다. 공조 참판(工曹參判) 조현명(趙顯命)이 말하기를, “신이 경악(經幄)에 있을 때 매년 선조(宣祖)께서 용만(龍灣)4207) 에 계실 때와 인조(仁祖)께서 남한 산성(南漢山城)에 계실 때의 일로써 진계(進戒)하였습니다. 전하께서는 시험삼아 생각해 보소서. 용만과 남한 산성에 계실 적에 아침 저녁의 어선(御膳)도 또한 능히 때맞춰 진어(進御)하지 못했는데, 후궁(後宮)·왕자(王子)·공주(公主)·옹주(翁主)에 대해서 어느 겨를에 생각이 미쳤겠</p>	<p>上引見大臣備堂。 領議政李光佐陳錢貨之弊，上問永罷與加鑄孰便，司直朴師洙曰：“領相外，如尹淳、沈檀，皆言加鑄不便，而鉅萬財貨，豈可空棄乎？臣以爲加鑄便。”上曰：“不罷不鑄，而但令不給債則可耶？”命遣史官，問議于在外大臣、儒臣。光佐請各衙門軍門凡干需用，皆以錢出給，外方多錢處，則漸次貿穀，允之。知中樞沈檀請各道隱結及諸處免稅田，查正屬公，上曰：“諸宮家免稅，自有定結，令各道，一一查出，各軍門免稅田，一并查正，日後稟定宜矣。”工曹參判趙顯命曰：“臣在經幄時，每以宣祖龍灣、仁祖南漢時事，進戒。殿下試思，龍灣、南漢時，朝夕御膳，亦未能以時進御，後宮、王子、公·翁主，何暇念及乎？唐玄宗避亂之時，皇子輩，至爭相奪食，願每以此，存諸聖心，於豐亨豫大處，預爲裁損。”上曰：“予平日之心，則朝夕數器療飢而止，衣亦不至於寒而已。齊太祖曰：‘使我三年爲國，當使珠玉如糞土。’ 簫道成亦能爲此言，用言之道，不以人廢之可也。”命申酒禁與漏戶之禁。又命各司草記稟</p>
--	--	--

	<p>습니까? 당(唐)나라 현종(玄宗)이 피난했을 때 황자(皇子)의 무리들이 심지어 서로 다투어 음식을 빼앗기까지 했다고 하니, 원컨대 언제나 이런 일을 성심(聖心)에 간직하시어 풍형 예대(豐亨豫大)4208) 한 곳에는 미리 재량하여 줄이소서.”</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나의 평일의 마음은, 조석(朝夕)은 몇 그릇으로 요기(療飢)만 하면 그만이고 입성 또한 추운 데 이르지 않으면 그만이라 생각하고 있다. 제(齊)나라의 태조(太祖)가 말하기를, ‘나로 하여금 3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한다면, 마땅히 주옥(珠玉)을 분토(糞土)처럼 여기게 하겠다.’4209) 고 했는데, 소도성(簫道成)이 또한 능히 이런 말을 했었으니, 말을 채용(採用)하는 도리란 그 사람의 인품 때문에 버리지 않는 것이 옳다.”</p> <p>하고, 주금(酒禁)과 누호(漏戶)4210) 의 금(禁)을 거듭 명하였다. 또 각사(各司)의 초기(草記)4211) 로써 품정(稟定)한 것과 탐전(榻前)에서 정탈(定奪)한 것을 모두 비국(備局)에 알리도록 명하였으니, 이광좌가 아뢰는 것이다.</p>	<p>定與榻前定奪者，并報備局，光佐所奏也。</p>
<p>영조 21권, 5년(1729 기유 / 청 옹정(雍正) 7년) 1월 10일(을묘) 1번째기사</p> <p>호조 판서 권이진이 권습을 엄중하게 금지할 것, 이조 판서 김동신이 공물의 폐단을 아뢰다</p>	<p>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당상관을 인견(引見)하였다. 호조 판서(戶曹判書) 권이진(權以鎭)이 임금에게 아뢰기를,</p> <p>“작년 연향(宴饗) 때 포도 6백 덩이에 돈 5백 냥을 썼습니다. 전하께서 진어(進御)하실 때 어찌 이와 같은 줄을 아셨겠습니까? 또 근습(近習)4223) 을 엄중하게 금지한 후에야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릇 궐중(闕中)에 진배(進排)하는 것들을 중관(中官)과 액례(掖隸)의 무리가 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점퇴(點退)4224) 한다 할지라도 각사(各司)에서는 오로지 비위를 거스리게 될까 두려워하여 감히 한 마디 말도 하지 못하고, 미봉(彌縫)하는 즘음에 소비되는 것이 매우 많습니다. 전하께서 만약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신다면, 마땅히 근습에서 시작하셔야 할 것입니다.”</p> <p>하고, 이조 판서(吏曹判書) 김동필(金東弼)은 말하기를,</p>	<p>乙卯/引見大臣備堂。 戶曹判書權以鎭白上曰：“昨年宴饗時，葡萄六百顆，用錢五百兩。 殿下進御之時，豈知如此乎？ 且嚴禁近習， 然後可以爲國。 凡進排于闕中者， 中官及掖隸輩， 雖多般點退， 各司惟恐見忤， 不敢一言， 彌縫之際， 所費甚多。 殿下若欲爲國， 則宜自近習始。” 吏曹判書金東弼曰：“昨年臣陳貢物加用之弊， 上令廟堂書入元貢定數。 及舉條之入也， 還寢書入之命， 又無變通之舉。 且尙方貂帽，</p>

	<p>“작년에 신이 공물(貢物)을 더 쓰는 폐단을 진달했더니, 성상께서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원공(元貢)의 정수(定數)를 써서 들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조(擧條)4225) 를 들일 적에 미쳐서는 써서 들이라는 명(命)을 도로 정지하셨고, 또 변통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또 상방(尙房)에서 초모(貂帽)를 만들어 들이는 것이 매우 많아 호조(戶曹)에서 그 값으로 지급하는 것이 많은 경우는 백금(白金) 8백 냥에 이른다고 합니다. 쓸데없이 소비하는 것이 이에 이르렀으니, 전하께서는 알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호판(戶判)의 말이 절실하니, 내가 마땅히 유의하겠다. 내가 평소에 과고(果苳) 등의 물건을 즐기지 아니하니, 한 가지 물건의 소비가 이 지경에 이른 줄을 어떻게 알겠는가? 일후에 만약 이와 같은 지나치게 소비하는 일이 있다면 계달(啓達)하는 것이 옳다. 이판(吏判)의 진계(陳啓)도 또한 매우 절실하니, 전에 내린 하교(下敎)에 의거하여 원공(元貢)의 정수를 써서 들이라. 초모(貂帽)의 일은 진달한 바가 참으로 좋으니, 마땅히 유념하겠다.”</p> <p>하였다.</p>	<p>造入甚多，戶曹給價，多至白金八百兩云。糜費之至此，殿下不可不知也。”</p> <p>上曰：“戶判之言切實，當留意。予居常不嗜果苳等物，而豈知一物之費，乃至是耶？日後如有此等濫費，啓達可也。吏判陳啓，亦甚切實，依前下敎，元貢定數書入。貂帽事，所達儘好，當留念。”</p>
<p>영조 21권, 5년(1729 기유 / 청 옹정(雍正) 7년) 1월 14일(기미) 2번째기사</p> <p>영의정 이광좌가 관서의 세미와 중방의 공제하는 물자 등을 말하다</p>	<p>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이광좌(李光佐)가 청대(聽大)하고, 입시(入侍)해서 말하기를,</p> <p>“조종조(祖宗朝)에서 관서(關西)의 세미(稅米)를 본도(本道)에 남겨 둔 것은 실로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임진년(4230)의 난리 때 평양성(平壤城) 안의 쌀이 18만 휘[斛]에 이르렀으므로, 이것으로 큰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세미(稅米)를 호조(戶曹)에서 발매(發賣)하는 것이 이미 폐습(弊習)을 이루었습니다. 지금 어영청(御營廳)에서 비록 내국(內局)4231)과 상방(尙方)4232)에서 무역(貿易)한 가은(價銀)의 대미(代米)라고 하면서 경사(京司)에 청하고 있긴 하지만, 이 길이 만약 한번 열리면 뒷날의 폐단을 막기 어려울 것입니다. 마땅히 도신(道臣)의 말을 따라 허락하지 않는 것이</p>	<p>行召對。領議政李光佐請對，入侍言：“祖宗朝關西稅米，留寘本道，實有深意。壬辰之亂，平壤城中米，至十八萬斛之多，以此大得力。近來稅米之自戶曹發賣，已成弊習。今御營廳，雖以內局、尙方貿易價銀代米，請得京司，若一開此路，後弊難防。宜從道臣言，勿許爲便。”允之。光佐又言：“吉禮時衣櫛條目極繁，喪禮大、小斂衾，皆以金綿爲之，金非襯身之物，恐</p>

	<p>편하겠습니다.”</p> <p>하니, 그대로 윤택하였다. 이광좌가 또 말하기를,</p> <p>“길례(吉禮) 때 의대(衣櫛)의 조목(條目)은 지극히 번잡(煩雜)하고 상례(喪禮) 때 대렴(大斂)·소렴(小斂)의 이불은 모두 금선(金線)으로 만드는데, 금(金)은 몸에 가까이 하는 물건이 아니니, 아마도 마땅한 바가 아닐 듯합니다. 지금 세속의 사치스런 풍속이 안에서는 귀근(貴近)에서 비롯되어 밖으로는 여항(閭巷)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사(法司)4233) 에서 능히 금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위에서 법을 제정하는 데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신이 일찍이 어선(御膳)을 내려 주심을 받았는데 가짓수가 대단히 풍성했습니다.”</p> <p>하고, 또 말하기를,</p> <p>“명선 공주(明善公主)와 명혜 공주(明惠公主), 그리고 상주(殤主)4234) 의 경우 지금까지도 여전히 공비(供費)를 두어 감(減)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묘(宗廟)와 영녕전(永寧殿)4235) 도 오히려 체천(遞遷)4236) 하는 예(禮)가 있고, 상제(殤祭)는 구근(久近)에 따라 예(禮)에 명문(明文)이 있으니, 두 공주는 여러 상주(殤主)와 더불어 모두 한 곳에 모아 공제(供祭)하는 물자를 조금 줄이고 그 나머지는 죄다 내수사(內需司)로 돌려야 할 것입니다. 유숙의방(劉淑儀房)의 경우도 또한 지금까지 감하지 않고 있으니, 그 신주(神主)를 여러 후궁(後宮)으로서 후사(後嗣)가 없는 신주와 더불어 한 곳에 같이 두고 그 제수(祭需) 물자를 조금 주고, 그 나머지는 내수사에 귀속시키는 것을 또한 두 궁방(宮房)의 예(例)와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내가 평일에 능히 몸소 본보기가 되지 못하였으니, 참으로 부끄럽다. 그러나 내가 일찍이 사치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습속(習俗)이 이미 고질이 되어 창졸간에 바꾸기 어려울 뿐이다. 내가 어려서부터 사치스럽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 문채(文彩)나는 옷이나 진귀한 노리개는 언제나 다른 사람이 혹</p>	<p>非所宜。今世侈風，內自貴近，外及閭巷。此非法司所能禁也，唯在自上立法。臣嘗蒙賜御膳品數太豐。”又言：“明善、明惠公主、殤主，至今猶存供費不減。宗廟永寧殿，尚有遞遷之禮，殤祭久近，禮有明文，兩公主與諸殤主，并聚一處，略除供祭之資，其餘盡歸之內司。劉淑儀房，亦至今不減，其主與諸後宮無後者之主，同寘一處，略給祭資，而其餘歸之內司，亦如兩宮例好矣。”上曰：“予平日不能躬率，固可愧。然予未嘗導之以侈，只是習俗已痼，難以猝變耳。予自幼不喜奢華，彩衣珍玩，每以他人之或見爲羞，蓋亦性癖適然。癸巳以奉安使，往沁都時，笠纓以皂色紬爲之矣。嘗聞宣祖朝，以綿布爲袴與袞。今番初喪所用金綿袞，非予意也。御膳，卿適觀謁聖時，諸宮家所進耳，常時則不如此矣。兩公主房，以有明聖大妃下教定限，故姑不敢議。劉淑儀房，心有所不忍。然亦豈長無限節耶？”命減禁中各處雇軍一百六十四名。兵曹既書入雇軍額數，上就禁中雇軍額內，參酌除減。仍命闕外禁軍猥多者，亦</p>
--	--	--

	<p>시 볼 것을 부끄러워하였으니, 대개 또한 성벽(性癖)이 마침 꼭 그러했던 것이다. 계사년(4237)에 봉안사(奉安使)로 심도(沁都)(4238)에 갔을 때 갓끈을 검은 색 명주로 하기도 했다. 그리고 일찍이 듣건대, 선조조(宣祖朝) 때는 면포(綿布)로 바지와 이불을 만들었다고 하였다. 이번 초상(初喪) 때 금선(金線)을 두른 이불은 나의 뜻이 아니었다. 그리고 어선(御膳)은 경(卿)이 때마침 알성(謁聖)(4239) 때에 본 것인데, 여러 궁가(宮家)에서 올린 것일 뿐이고 평상시에는 이와 같지는 않았다. 두 공주방(公主房)은 명성 대비(明聖大妃)의 하교(下教)로 한계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당분간 감히 의논할 수 없다. 유숙의방(劉淑儀房)의 경우는 마음속에 차마 하지 못할 바가 있다. 그러나 또한 어찌 길이 한절(限節)이 없겠는가?”</p> <p>하고, 금중(禁中) 각처(各處)의 고군(雇軍) 1백 64명을 줄이라고 명하였다. 병조(兵曹)에서 이미 고군의 액수(額數)를 써서 들이자 임금이 금중 고군의 액수 안에서 참작해서 덜고 감하게 하고, 이내 궐외(闕外) 금군(禁軍) 중에서 지나치게 많은 자를 역시 일체로 재량해서 줄이라고 명하였다. 금중 고군의 삶 중에서 비용을 줄인 수량이 일년에 약 면포(綿布) 4천여 필이나 된다고 한다.</p>	<p>一體裁減。 禁中雇軍價省費之數， 一年約爲綿布四千餘匹云。</p>
<p>영조 22권, 5년(1729 기유 / 청 옹정(雍正) 7년) 4월 22일(병신) 2번째기사</p> <p>동지사 윤순 등이 복명하다. 윤순이 조세·잠상의 폐해 등에 대해 아뢰다</p>	<p>동지사(冬至使) 윤순(尹淳)·조익명(趙翼命)·권일형(權一衡)이 복명(復命)하였다.</p> <p>윤순이 아뢰기를,</p> <p>“들은 바에 의하면 황제(皇帝)가 검은 것을 희다고 해도 군신(君臣)들 가운데 그 잘못을 바로잡아 주는 이가 없다고 하고 또 잘 살펴서 적발해 내는 것으로 아랫사람을 다스리기 때문에 대소 관원들이 단지 고알(告訐)하는 것을 능사(能事)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조세(租稅)는 4백만 석만 호부(戶部)로 납입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돈으로 만들며, 또 은화(銀貨)를 굶어모은 것이 내탕고(內帑庫)에 가득 차고 넘쳐서 밖에다가 쌓아두기에 이르렀는데, 밖에서 바라보면 마치 빙산(冰山) 같았습니다만, 거민(居民)들은 모두 빈곤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 말하기를, ‘위에서는 재물을 굶어모으고 아래에서는 백성이 흘</p>	<p>冬至使尹淳·趙翼命·權一衡復命。</p> <p>淳曰：“聞皇帝以黑爲白，則群臣莫能矯其非，明察摘發，以此御下，故大小官，只以告訐爲能事。 稅租只以四百萬石，入于戶部，餘皆作錢，且聚銀貨，內帑充溢，至於露積，自外望之，有若冰山，居民皆貧困。 問之則曰：‘財聚於上，民散於下。’云矣。” 又言：“潛商之弊，由於方物歲幣。 人馬到藩回還之際，恣意買賣，而團練使，是僉、</p>

	<p>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잠상(潛商)의 폐단은 방물(方物)과 세폐(歲幣)에 연유된 것입니다. 인마(人馬)가 심양(瀋陽)에 도착했다가 되돌아올 적에 멋대로 물품을 매매(賣買)하는데도 단련사(團練使)가 첨사(僉使)·만호(萬戶)의 부류들이어서 관질이 낮은 탓으로 탄압(彈壓)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령(會寧)에서 개시(開市)4554 할 적에 북도 평사(北道評事)가 검찰(檢察)하는 예(例)에 의거하여 평안 도사(平安都事)를 시종(侍從) 가운데에서 풍도와 역량이 있는 사람으로 차임하여 보낸다면 탄압하는 효과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의 이르기,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겠다.” 하였다. 또 진달하기를, “황주(黃州)의 성지(城池)는 유성추(柳星樞)가 병사(兵使)로 있을 적에 개축(改築)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성(本城)에는 예전에 참호(塹壕)가 있었습니다만, 세월이 오래되어 메워져 버렸으므로 백성들이 폐기된 참호 자리에 집을 지은 것이 많았습니다. 성은 있으나 참호가 없으면 어떻게 적을 방어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대로 참호를 파고 민가(民家)를 철거하여 성안으로 옮길 것을 수신(帥臣)에게 분부(分付)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의 이르기, “수신(帥臣)으로 하여금 참호를 복구하게 해야 한다.” 하였다.</p>	<p>萬戶之類，人微不能彈壓。依會寧開市北評事檢察例，平安都事，以侍從有風力人差送，則可有彈壓之效。” 上曰：“令廟堂稟處。” 又陳：“黃州城池柳星樞爲兵使時改築。而本城舊有塹壕，年久堙塞，民多作舍于廢塹中。有城無塹，何以禦敵？依前掘塹，撤移民家於城內事，分付帥臣宜矣。” 上曰：“使帥臣，復舊塹可也。”</p>
<p>영조 22권, 5년(1729 기유 / 청 옹정(雍正) 7년) 5월 1일(을사) 2</p>	<p>상참(常參)을 행하였다. 우의정 이태좌(李台佐)가 청하기를, “세자(世子)의 혼궁(魂宮)과 묘소(墓所)에 공상(供上)하는 물품은 3년을 기한으로 선혜청(宣惠廳)에서 진배(進排)하게 하고 기타는 호조(戶曹)와 선혜청에서 전대로 반씩 나누어 거행하게 하소서.”</p>	<p>行常參。右議政李台佐請，世子魂宮、墓所供上，限三年自惠廳進排，其他自戶曹及惠廳，依前分半舉行，允之。仍諭戶曹判書權以鎮曰：“戶判之</p>

<p>번제기사 상참을 행하다. 이태좌 등이 세자의 혼궁에 공상할 물품 마련 등에 대해 청하다</p>	<p>하니, 윤희하였다. 이어 호조 판서 권이진(權以鎭)에게 하유(下諭)하기를, “호판(戶判)을 체차(遞差)하고 다시 제수한 것은 도민(都民)의 원성(怨聲)이 하늘에 사무친다고 들었기 때문에 이 직임은 구임(久任)시킴으로써 민원(民怨)이 시일의 오렘에 따라 저절로 없어지게 한 것이다.” 하였다. 수어사(守禦使) 김재로(金在魯)를 폄출(貶出)하여 황해도 관찰사로 삼고 윤순(尹淳)을 수어사로 삼았으니, 군대를 거느리는 사람은 사체(事體)가 자별한 것이어서 전후로 특별히 효유하였는데도 끝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시임(時任) 감사(監司) 김시혁(金始爌)은 체직시켜 경직(京職)에 불이라고 명하였다. 사간(司諫) 윤동형(尹東衡)이 전에 아뢰던 것을 전하였으나 윤희하지 않았다. 정계장(鄭啓章)의 일에 이르러서는 답하기를, “아뢰 대로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유경유(柳慶裕)는 심술이 요악(妖惡)스럽고 행실이 음비(陰祕)스러워 임인년(1469)의 국청(鞠廳)에 잡혀 들어갔었는데, 그가 오서중(吳瑞鍾)과 난만(爛慢)하게 모의(謀議)한 정상이 환히 드러나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먼 변방에 정배(定配)한 것은 너무 늦추어 준 실수를 면할 수 없습니다. 그가 석방(釋放)된 뒤에 이르러서도 전의 습관을 고치지 않았었으니, 작년에 변란이 발생한 처음에 대계(臺啓)에서 도배(島配)하기를 청한 것은 의도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석방시키라고 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음흉하고 간사한 부류들은 결단코 쉽사리 소식(疏釋)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니, 유경유를 석방시키라는 명을 환수(還收)하소서.” 하였으나, 윤희하지 않았다.</p>	<p>許遞更除者，聞都民之怨聲徹天，故欲令久在此任，使民怨久而自消也。” 貶守禦使金在魯，爲黃海道觀察使，以尹淳爲守禦使，以將兵之人，事體自別，而前後別諭，終不上來也。 時任監司金始燠命遞付京職。 司諫尹東衡傳前啓，不允。 至鄭啓章事，答曰：“依啓。” 又啓：“柳慶裕處心妖惡，行已陰祕，壬寅入於鞠廳，其與吳瑞鍾，爛熯謀議之狀，昭不可掩。 而伊時邊遠定配，未免失之太緩，及其放送之後，舊習不悛，昨年變亂之初，臺啓島配，意有所在。 而曾未幾何，又命放送。 如此陰邪之類，決不可容易疏釋，請還收柳慶裕放釋之命。” 不允。</p>
<p>영조 22권, 5년(1729) 기유 / 청 옹정(雍正) 7년) 6월 20일(계사)</p>	<p>사옹원 제조(司饗院提調)도 아울러 추고하여 무겁게 다스리고 낭청(郎廳)은 나추(拿推)하라고 명하였는데, 감선(監膳)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고하기를,</p>	<p>癸巳/命司饗提調，并重推，郎廳拿推，以監膳無人故也。 教曰：“莫重御供，當日日晚後，始煩稟，前所未聞也。”</p>

<p>1번째기사 감선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사옹원 제조 등을 추고하여 다스리도록 명하다</p>	<p>“막중한 어공(御供)을 당일 늦게야 비로소 번거롭게 품달했으니, 이는 전에 듣지 못한 일이었다.” 하였다.</p>	
<p>영조 22권, 5년(1729 기유 / 청 옹정(雍正) 7년) 6월 20일(계사) 3번째기사 헌부에서 충민공 이봉상이 난을 당할 때 도망한 자를 나핵할 것 등을 아뢰다</p>	<p>헌부에서 【장령 허옥(許沃)이다.】 전에 아뢴 것을 다시 아뢰었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충민공(忠愍公) 이봉상(李鳳祥)이 해를 당할 적에 군관(軍官)들 가운데 적과 대응한 자는 복주(伏誅)되고 절의에 죽은 자는 포상(褒賞)되었으니, 난을 피해 달아남으로써 원수(元帥)를 저버린 자는 나핵(拿覈)하여 엄히 처단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이미 선한 자는 장려했고 악한 자는 징계했으니, 다시 거론하여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막중한 어공(御供)을 제때에 감선(監膳)하지 않고 서로 미루기만 하다가 늦게서야 비로소 품달했으니, 청컨대 주원(廚院)의 해당 제조(提調)도 아울러 파직시키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게 하였다.</p>	<p>憲府【掌令許沃。】申前啓，不允。又啓：“忠愍公李鳳祥之被害也，軍官之應賊者，伏法死節者，蒙褒，其奔竄逃亂負帥者，請拿覈嚴處。”批曰：“既已獎善懲惡，不必更提，以煩群心。”又啓：“莫重御供，趁未監膳，互相推諉，日晚始稟。請廚院當該提調，并罷職。”依啓。</p>
<p>영조 23권, 5년(1729 기유 / 청 옹정(雍正) 7년) 7월 1일(갑진) 2번째기사 갑진년에 임금을 무함한 심유현 등의 일에 관한 정언 민형수의 상소문</p>	<p>정언(正言) 민형수(閔亨洙)에게 삭출(削黜)하는 법을 시행하도록 명하였으니, 민형수는 전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민진원(閔鎭遠)의 아들이다. 그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아! 지난해의 흉악한 역적의 변고는 어찌 차마 말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변란은 발생하는 날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연유하는 바가 있어서 일어나는 것이니, 진실로 폐단의 근원을 뽑아 화근(禍根)을 끊지 못한다면, 한때 조금 안정된 것은 믿을 수가 없어서 앞으로의 근심이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대개 일찍이 거슬러 올라가 논한다면 갑진년(4699) 대상(大喪)을 당</p>	<p>命正言閔亨洙施以削黜之典，亨洙，前判府事鎭遠子也。上疏，略曰：嗚呼！去年凶逆之變，尙忍言哉？夫亂不生於生之日，必有所由起，苟不能拔本塞源，以絕禍根，則一時少定，有不足恃，而來頭之憂，有不可言。蓋嘗推溯而論之，則當甲辰之大喪也，未聞違豫之報，遽奉諱音。而藥院無侍藥</p>

했을 적에 편찮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는데, 갑자기 휘음(諱音)을 받들게 되었었습니다. 약원(藥院)에서도 시약청(侍藥廳)을 설치한 일이 없었고, 교문(敎文)에도, ‘한밤에 옥궤(玉几)에 기댔다(4700)’는 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 신민(臣民)들이 이르기를, ‘우리 임금께서 불행히 병이 없었는데 갑자기 흉서(夢逝)하셨다’고 하여 사모하여 통곡하며 망극(罔極)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갑절이나 더했었습니다. 그 뒤에 비로소 약원일기(藥院日記)를 볼 수 있었는데, 그 때의 증세를 자세히 기록하기를, ‘여러 달 동안 위중하시다가 탄 증세가 겹쳐 생겨서 마침내 승하(昇遐)하시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당초 여러 달 동안 위중하셨을 때에 온 나라 사람들이 승문(承聞)할 수 없었으므로 그 까닭을 알지 못했던 것인데, 약원일기(藥院日記)를 본 자가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이에 역적 심유현(沈維賢)이 선왕(先王)의 긴밀한 지친(至親)으로서, 감히 이런 시기를 틈타 차마 들을 수 없는 흉악한 말을 만들어 내고는 마침내 못 불령한 무리들과 협동해서 서로 선동(煽動)했는데, 그 말이 심유현에게서 나온 까닭에 기꺼이 듣고서 이를 믿어 따르지 않음이 없으니, 끝내 군사를 일으켜 격서(檄書)를 전파하는 의거(義舉)라고 자칭하기까지 했습니다. 천경지의(天經地義)4701)가 남김없이 멸절(滅絕)되어 을사년(4702) 봄에 이천해(李天海)의 일은 조짐이 이미 나타났습니다. 이때를 당하여 전하(殿下)께서 진실로 끝까지 구핵(究覈)을 가하여 죄다 주토(誅討)하고, 따라서 선왕의 환후의 시말을 들어 팔방(八方)에 효유(曉諭)하셨더라면, 인심을 안정시키고 역절(逆節)을 해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가령 한들의 악역(惡逆)들이 그 흉악한 계획을 부렸더라면 반드시 나라 절반이 불쫓아 것처럼 기세를 떨치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변란을 감단(勘斷)한 다음에 이르러 제일 먼저 친국(親鞠)하실 때에 약간의 복법(伏法)된 자들과 진중(陣中)에서 참수(斬首)된 자 외에는 전하께서 용서하시는 데 힘쓰시며 여러 차례 윤음(綸音)을 내리어 문득 그들의 마음을 위안

設廳之事，敎文有半夜憑几之語。一國臣庶，以爲吾王不幸無疾而暴薨，攀慕號痛，一倍罔極。其後始得聞藥院日記，詳錄其時症候，而累朔彌留，別症疊出，終至於不可諱。當初累朔彌留之時，域中不得承聞，未曉其故，而藥院日記見者，能幾人耶？於是，逆賊維賢，以先王肺腑之至親，敢乘此時，做出不忍聞之凶言，遂與群不逞之徒，雄唱雌和，互相煽動，以其言出維賢，無不樂聞而信從之，終至稱兵傳檄，自稱義舉。天經地義，滅絕無餘，而乙巳春天海之事，其兆已見。當其時也，殿下苟能窮加究覈，盡行誅討，仍將先王症候本末，曉諭八方，則人心可定，逆節可消。假令一二惡，逆逞其凶圖，必不至於半國，靡然鴟張若此也。及至勘亂之後，最初親鞠時，如干伏法者及陣上斬馘者外，殿下以涵貸爲務，屢降絲綸，輒欲慰安其心，至於本事，則每以不忍聞爲敎，而使不得提說。聖籌淵深，有不敢窺測，而以此凶徒增氣，略無畏縮之意，朝廷之上，亦未有二人爲殿下推本而明言之，上辨聖誣，下折奸萌者。彼凶之不復生心，有不

(慰安)하려고 하였고, 본사(本事)에 이르러서는 매양 차마 듣지 못하겠다고 하고 교하시면서 제기(提起)하여 말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성상(聖上)의 깊은 계책을 감히 추측(推測)해 볼 수는 없었습니다마는, 이 때문에 흉악한 무리들이 기세를 더하여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위축(萎縮)되는 뜻이 없었는데, 조정 안에서는 또한 한 사람도 전하를 위하여 근본을 추구(推究)해서 분명하게 말을 하여 위로는 성상의 무함(誣陷)을 변석(辨釋)하고 아래로는 간사한 마음의 싹을 꺾어버리는 자가 없었습니다. 저 흉도(凶徒)들이 다시는 판마음을 먹지 않으리라는 것을 기필할 수도 없고, 전하께서 효도하고 우애하시는 심덕(心德)과 천승(千乘)의 나라를 헌신짝처럼 버리려 하신 마음을 마침내 천하 후세에 폭백(暴白)할 수 없게 되었으니, 신민들의 분개하고 원통하여 죽고 싶어하는 정성이 어찌 한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충신과 의사(義士)로서 마음이 아프고 뼈에 사무치지 않는 사람이 없으며 한 하늘 아래에서 함께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신이 이런 때에 언관(言官)의 직책에 있으면서 어찌 명을 들은 즉시 달려나와서 극력 말을 하고 힘을 다해 논하여 전하께서 받으신 망극(罔極)한 무함을 남김없이 통쾌하게 풀어드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비록 성심(聖心)에 시원스럽지는 않더라도 또한 뒷날에 증거삼아 믿게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돌아보건대, 사사로운 분의에 구애되어 감히 염의를 무릅쓰고 조정에 나아갈 수가 없으니, 쥬문(闕門)을 바라보며 다만 통탄스러운 울음이 간절할 뿐입니다. 아! 신자(臣子)가 된 사람으로서 임금과 아버지가 무함받음을 목도(目覩)하고 한마디 말도 변명(辨明)하지 못하고 있으니, 신(臣)은 진실로 인륜에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하니, 임금이 하교(下敎)하기를,

“아! 흉악한 역적들의 지난해의 소위가 비록 극도로 흉악하였으나, 스스로 인륜을 간범(干犯)한 데 지나지 않는데, 어찌 차마 다시 제기(提起)할 수 있겠는가? 또 이미 왕법(王法)대로 복주(伏誅)하여 팔방에 선시(宣示)하였으면, 임금

可必，而殿下因心孝友之德，弊屣千乘之心，終無以自白於天下後世，臣民憤冤，欲死之忱，曷有其極？以故忠臣、義士，無不腐心痛骨，不欲戴天履地。臣於此時，職忝言責，豈不欲聞命奔走，極言竭論，使殿下所被罔極之誣，得以快釋無餘？雖或不概於聖心，亦可徵信於來後。而顧以私義迫阨，不敢爲冒沒趨朝之計，瞻望宸極，第切痛泣。噫！爲人臣子，目見君親之受誣，而俱不得出一言以辨明之，臣誠論常之罪人也。

上敎曰：“噫！凶逆輩，昨年所爲，雖極凶穢，不過自速干紀者，何忍更提？且旣伏王章，宣示八方，則誣上不道之罪，自可著矣，更何論哉？今觀正言閔亨洙疏本，意在爲父訟冤，更提此事。而至於因心孝友之德，弊屣千乘之心，終無以自白於天下後世等說，噫！凶賊不道之說，雖極痛心，於我何有？此乃可怒在彼者矣。欲訟本事，語多不擇，不可置之。亨洙削黜，此疏還給。”

	<p>을 무함한 부도(不道)한 죄는 자연히 드러난 것인데, 어찌 다시 논할 것이 있겠는가? 지금 정언 민형수의 소본(疏本)을 보건대, 아버를 위해 원통함을 호소하려는 뜻이 있어 다시 이 일을 제기한 것이다. ‘효도하고 우애하는 심덕(心德)과 천승(千乘)의 나라를 헌신짝처럼 버리려는 마음을 천하 후세에 폭백(暴白)할 수 없게 되었다.’는 말에 이르러서는 아! 흉악한 역적들의 부도한 말이 비록 극도로 마음이 아프겠지만,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겠느냐? 이는 곧 노여워할 점이 저들에게 있는 것이다. 본사(本事)를 호소하면서 말을 가려서 하지 않은 것이 많았으니, 그대로 둘 수 없다. 민형수를 삭출(削黜)하고, 이 상소를 도로 내주도록 하라.”</p> <p>하였다.</p>	
<p>영조 23권, 5년(1729 기유 / 청 옹정(雍正) 7년) 7월 28일(신미) 1번째기사 갑진년의 일로 이광좌 등의 징토를 청한 유엄의 상소</p>	<p>(전략)아! 통탄스럽습니다. 차마 말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전하께서 이러한 우애로 흉악한 역적들의 저러한 무욕(誣辱)을 받으셨으니, 통탄스럽고 절박하여 차마 들으실 수 없음을 곧 성상의 심정에 당연한 것입니다. 무릇 신자(臣子)가 된 사람으로서 누가 감히 차마 곧장 제기(提起)하여 우리 전하의 망극(罔極)하신 심정을 아프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진실로 관계되는 바가 지극히 중대합니다. 성공(聖躬)의 무함을 하루에 밝혀 내지 못한다면 신자(臣子)들의 하루의 죄가 증가하게 되고, 이틀에 밝혀 내지 못한다면 신자들의 이틀의 죄가 증가하게 되므로, 원통과 분개함이 극도에 달하여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 이천해가 저지른 일은 전감(前鑑)이 멀지 않은 것이었는데, 그뒤부터 전하께서는 애통하여 차마 듣지 못하시고, 군하(群下)들은 머뭇거리며 감히 말하지 못하고서 병어리처럼 덮어 두고만 있다가 지난봄의 변란을 순치(馴致)하게 된 것입니다. 아! 이는 어찌 성상을 무함하는 말을 멋대로 하고 있는데도 마침내 한 사람도 변백(辯白)하는 자가 없는 과실이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민형수(閔亨洙)가 근본에 소급(溯及)하여 극력 논하였음은 진실로 성상을 위하여 원통하고 분개하여 죽고 싶은 정성에서 나온 것이었습</p>	<p>噫嘻! 痛矣。 尙忍言哉? 以殿下若是之友悌, 受凶賊如彼之誣辱, 其痛迫不忍聞, 卽是聖情之所當然。 凡爲臣子者, 孰忍輒爲提起, 以疚我殿下罔極之情哉? 誠以所關係者, 至重至大。 聖躬之誣, 一日不白, 則增臣子一日之罪, 二日不白, 則增臣子二日之罪, 冤痛憤懣之極, 有不得不然故也。 噫! 天海之事, 其鑑不遠, 一自其後, 殿下則哀痛而不忍聞, 群下則囁嚅而不敢言, 喑啞掩抑, 馴致昨春之變亂。 嗚呼! 此豈非誣聖之說肆行, 而終無一人辨白者之過歟? 頃者閔亨洙之溯本極論, 實出於爲聖躬冤憤欲死之忱。 使其時居藥院者, 苟有一分秉彝之未泯者, 則無</p>

니다. 그때에 약원(藥元)에 있던 자 가운데 진실로 조금이나마 상도(常道)를 굳게 지키려는 마음이 없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면, 그 일에 대한 정실(情實)의 유무를 물론하고 곧장 마땅히 법을 위해 죄악으로 받아들이고 잘못을 인책(引責)하며 죄를 자복하기에 겨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감히 말을 하여 저뢰(抵賴)하고 있으니, 아! 그의 죄는 위로 하늘에 사무친다고 하겠습니까.

그 때의 조보(朝報)에 나온 바가 어떠했는지는 그대로 놓아 두고 논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3백년 동안 열성(列聖)들께서 승하(昇遐)하실 즈음에 모두 시약청(侍藥廳)을 설치하였으니, 무릇 것처럼 위급할 적에 누군들 분주하고 황급하여 겨를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를 가지고 자신을 해명(解明)하는 거리를 삼고 있으니, 과연 말이 되겠습니까? 만일 시약청을 그 때에 설치했었다면, 성상께서 병세가 위독해진 정상을 온 나라 사람들이 효연(曉然)하게 알지 못함이 없었을 것이고, 교문(教文) 내용에도, ‘밤중에 옥궐(玉几)에 기댔다.’는 말들이 없었다면, 당연히 사람들의 마음을 광혹(誑惑)케 하는 발단이 없었을 것입니다. 비록 한없이 흉악하고 극도로 포악함이 심유현(沈維賢)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감히 그런 간극(間隙)을 타서 백지(白地)에 망측(罔測)한 말을 용이하게 만들어 낼 수는 없었을 것이며, 가령 만들어 낸다 하더라도 어찌 능히 나라 절반의 흉역(凶逆)들이 붙좃아 끈이든 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약원(藥院)의 대신(大臣)으로서 심유현의 흉악한 말에 대해서는 대략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다가, 민형수가 통분을 참고 원통함을 품은 채 절박하여 어쩔 수 없이 한 말에 대해서는 도리어 부도(不道)하다고 배척했습니다. 그 사람의 말씨로는 이쯤이야 꾀이하게 여길 것이 없습니까마는, 다만 그가 그런 말을 하였을 때 이마에 땀이 솟지 않을 수 있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아! 저 흉악한 역적들의 소위는 스스로 천주(天誅)받을 짓을 한데에 지나지 않으니, 돌아보건대, 성덕(聖德)에 어찌 조금이라도

論其事之有情無情，直當爲法受惡，引過服罪之不暇。而尙敢以言語抵賴，嗚呼！其罪可謂上通於天矣。其時朝報所出之如何，姑寘勿論。我朝三百年，列聖昇遐之際，皆設侍藥廳，則凡其危急之時，孰不奔遑未暇？而今以此爲自解之具者，其果成說否乎？若使侍藥廳，設於其時，則聖疾大漸之狀，國人無不曉然知之，而教文中，亦無半夜憑几等語，則自可無誑惑人心之端。雖窮凶極惡，如維賢，必不敢得其間隙，容易做出，白地罔測之言，假令做出，豈能令半國凶逆之徒，靡然而聽信之乎？彼以藥院大臣，於維賢凶言，則略無片辭之卞明，於亨洙，忍痛含冤，迫不得已之言，則反斥之以不道。以彼口氣，此無足怪，而但不知說出此話時，能不泚頰否？噫！彼凶賊輩所爲，不過自干天誅，顧於聖德，豈有一毫所傷哉？可怒在彼，誠如備忘中辭旨，而然而古今天下，安有爲人臣子，目見君父之被誣罔極，而既不會出一語辨暴，并與他人之欲辨者，而呵禁之，使不得開口之理耶？其心所在，誠不可知矣。嗚呼！殿下之受誣於凶賊者，凡幾遭

손상될 것이 있겠습니까? 노여워할 것이 저들에게 있음은 진실로 비망기(備忘記) 가운데 사지(辭旨)와 같습니다마는, 고금 천하에 어찌 신자(臣子)가 되어 군부(君父)가 망극(罔極)한 무함을 받는 것을 직접 보고서도 일찍이 한마디 변백(辯白)하는 말을 하지 않고 아울러 다른 사람이 변백하려고 하는 것까지 가금(呵禁)하여 입을 열지 못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의 마음의 소재를 진실로 알 수 없습니다. 아! 전하께서 흉악한 역적들의 무함을 받으신 것이 무릇 몇 차례나 됩니다. 잠저(潛邸)에서 저위(儲位)에 들어오셨을 적에는 유봉휘(柳鳳輝)의 무함이 있었고, 대리(代理)하라는 명을 내렸을 적에는 조태구(趙泰耆)와 김일경(金一鏡)의 무함이 있었고, 봉전(封典)을 준청(準請)했을 적에는 목호룡(睦虎龍)의 무함이 있었고, 왕위(王位)에 등극하신 후에는 이천해(李天海)의 무함이 있었습니다. 한 고비에 한 고비를 더해 오다가 작년 봄에 방(榜)을 걸어 칭병(稱兵)함에 이르러서는 극도에 달하였으니, 앞으로 다시 어떤 모양의 변괴가 있을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곤양(昆陽)에서의 일을 가지고 보더라도 그런 무궁한 근심을 알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섬멸되지 않은 여당(餘黨)이 있다가 이유익(李有翼)이나 심유현(沈維賢)처럼 사납고도 교활한 자가 흉언(凶言)을 변개(變改)함이 없고 역심(逆心)을 옛날 그대로 가지고서 국가를 원수로 여기기를 그만두지 않는다면, 변란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을 어떻게 보장하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작은 일에 있어 참지 않으면 큰 계획을 어지럽히게 된다.’는 교훈에 깊이 치의(致意)하셔서, 역적들이 평정(平定)되어 염려할 것이 없다고 여기지 마시고, 요행히 안정된 것을 믿을 수 있다고 여기지도 마시고, 깊이 화란의 근원을 구명(究明)하고 더욱 징토(懲討)하는 법을 엄하게 하여 3백 년의 종사(宗社)가 무너지는 지경에 이르지 않게 하신다면, 신(臣) 또한 함께 다행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하교하기를,
“지금 윤섭의 소본(疏本)을 보건대, 민형수의 소어(疏語)를 주워 모은 것으로

矣。自潛邸而入儲位，則有鳳輝焉，代理命下則有泰耆、一鏡焉，封典準請，則有虎龍焉，正位宸極之後，則有天海焉。一節加於一節，以至昨春之掛榜稱兵而極矣，不知前頭，更有何樣變怪。雖以昆陽事見之，可知其憂之無窮。萬一有未殄之餘黨，桀黠若有翼、維賢者，鴞音無變逆腸，故在離國家無已，則安保其變亂之不復作也？伏願殿下，深致意於小不忍亂大謀之訓，勿以賊平爲無慮，勿以倖安爲足恃，深究禍亂之源，益嚴懲討之典，使三百年宗社，不至於顛隳之境，則臣亦與有幸矣。

上教曰：“今觀尹涉疏本，掇拾閔亨洙疏語，搆捏領府事又復至此。使涉苟有心也，豈忍提罔測之說，白地搆捏，一至此哉？此等之類，不欲深治，徒增乖激之氣，而於若此者，不可不嚴加痛斥。”命削黜。

	<p>서,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를 무함하기를 또 다시 이에 이르렀다. 윤섭이 진실로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찌 차마 망측한 말을 제기하여 백지(白地)에 무함하기를 한결같이 이에 이르는 것인가? 이러한 무리는 깊이 죄를 다스리고 싶지 않지만, 한갓 괴격(乖激)한 기미(氣味)만 더해지니, 이러한 자에 대해서는 엄하게 통척(痛斥)을 가하지 않을 수 없다.”</p> <p>하고, 삭출(削黜)하도록 명하였다.</p>	
<p>영조 23권, 5년(1729 기유 / 청 옹정(雍正) 7년) 윤7월 5일(정축) 1번째기사</p> <p>이태좌가 금위영·어영청과 관서의 돈·목면으로 곡식을 비축하도록 아뢰다</p>	<p>대신과 비국 당상(備局堂上)을 인견(引見)하였다. 좌의정 이태좌(李台佐)가 아뢰기를,</p> <p>“국가에 3년 쓸 저축이 없으면 나라가 나라답지 못하게 되므로, 신이 늘 곡식을 모아들일 방도를 진달했으나, 조가(朝家)에서 이미 주전(鑄錢)을 허락하지 않았으니, 달리 재물을 내놓아 곡식을 모을 방법이 없습니다. 병조(兵曹)의 봉부동(封不動)4754) 한 목면(木綿)이 단지 4백 동(同)이 있었는데, 조문명(趙文命)이 병조 관서로 있을 때 종합해 밝혀 비용을 절약하였으므로, 지금 병조에서 저축한 것이 1년 동안 수용(需用)할 것 이외에 나머지 수량이 1천여 동에 이르고, 금위영(禁衛營)과 어영청(御營廳) 양영(兩營)에 각각 수천 동이 있으며, 양영에서 1년 동안 상납받은 군포(軍布) 또한 6백여 동이 됩니다. 근래에 듣건대, 삼남(三南)은 쌀값이 매우 싸고 돈과 목면(木綿)이 더욱 귀하다고 합니다. 신이 생각하건대, 병조의 기병(騎兵)·보병(步兵)은 두서너 번(番)을 털어내어 금위영과 어영청 양영에서 작목(作木)한 것과 관서(關西)에서 올라오는 돈과 목면을 합계하면, 3천여 동이 될 것인데, 이를 가지고 곡식과 바꾼다면 7,8만 곡(斛)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 집니다.”</p> <p>하였는데, 이조 관서 조문명(趙文命)이 아뢰기를,</p> <p>“이는 곧 국가에서 큰 일을 베풀어 시행하는 것인데, 양 군문(軍門) 또한 어찌 인색하게 아낄 리가 있겠습니까?”</p> <p>하고, 우참찬 김동필(金東弼)은 아뢰기를,</p>	<p>丁丑/引見大臣、備堂。 左議政李台佐曰：“國無三年之蓄， 則國非其國， 臣每陳聚穀之道， 而朝家既不許鑄錢， 則無他捐財， 可以聚穀者。 兵曹封不動木， 只有四百同矣， 趙文命爲兵判時， 綜核節用， 卽今兵曹所儲， 一年應下外， 餘數至千餘同， 禁、御兩營， 各有數千同， 兩營一年軍布上納， 亦爲六百餘同。 近聞三南米直甚賤， 而錢木益貴。 臣意， 除出兵曹騎、步兵數三番， 與禁、御兩營作木者， 及關西錢木當上來者， 合計爲三千餘同， 以此換穀， 則可得七八萬斛矣。” 吏曹判書趙文命曰：“此是國家大設施， 兩軍門亦豈有慳惜之理乎?” 右參贊金東弼曰：“關西錢十萬兩， 既有上送之命， 以此付之惠廳， 分給賁人， 以其米移送賑廳， 則數三萬石之米， 不待作米換買， 而坐而得之矣。” 文命曰：“賁物米穀，</p>

	<p>“관서의 돈 10만 냥은 이미 올려 보내라는 명이 있었는데, 이를 가져다가 선혜청(宣惠廳)에 붙여 공인(貢人)들에게 나누어 주고는 그 대신의 쌀을 진휼청(賑恤廳)에 이송(移送)하게 한다면, 2,3만 석의 쌀은 작미(作米)나 환무(換買)를 기다리지 않고도 가만히 앉아서 얻게 될 것입니다.”</p> <p>하였다. 조문명이 아뢰기를,</p> <p>“공물 주인(貢物主人)4755)의 미곡(米穀)을 만일 조가(朝家)에서 모두 매수(買收)한다면 도성 안에 곡식이 귀해져 반드시 큰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또 국가의 체통으로 말하더라도 어찌 공물 연조(貢物年條)를 매수할 수 있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의 대답이 이르기를,</p> <p>“경외(京外)에 저축이 고갈된 것은 모두 모리(牟利)에서 연유한 것이다. 고(故) 판서(判書) 김석연(金錫衍)이 어영 대장(御營大將)으로 있었을 때에는 저축이 특히 넉넉했으니, 이는 귀신(鬼神)들이 실어다 주어서가 아니라 곧 잘 지켜서 이룬 것이다. 공물 주인의 미곡은 모두 매수하자는 것은 처음 듣기에는 좋은 듯했으나, 이조 판서의 ‘도성 안에 쌀이 없게 된다.’는 말이 진실로 옳으니, 병조의 목면 1천동을 양 군영(軍營)의 돈과 바꾸어 선혜청에서 쓰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p> <p>하였다. 이태좌가 나이 많음을 들어 누누이 간절한 심정을 진달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지극히 간절한 심정에서 나온 말인데, 대신들이 일제히 모였으니, 어찌 경(卿)의 뜻을 이루지 못하겠는가?”</p> <p>하였다. 지평 김권(金權)이 전계(前啓)를 전하였으나 윤택하지 않고, 김양호(金養浩)의 일만 아뢰는 대로 하라고 하였다.</p>	<p>若自朝家盡買，則都下穀貴，必致大狼狽。且以國體言之，豈可買貢物年條乎？”上曰：“京外儲蓄之竭，皆由於牟利。故判書金錫衍爲御將時，蓄積獨富，此非鬼運神輸，乃能守之也。盡買貢米事，初聞似好矣，吏判都下無米之說，儘然矣，以兵曹木一千同，換兩營錢，用於惠廳好矣。”台佐引年縷縷陳懇，上曰：“言出於至懇，大臣齊會，則豈不遂卿之志乎？”持平金權傳前啓，不允，金養浩事，依啓。</p>
<p>영조 23권, 5년(1729 기유 / 청 옹정(雍正)</p>	<p>주강(晝講)을 행하였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시독관 조적명(趙迪命)이 해서(海西)의 수재(水災)를 들어 수정(修省)에 힘쓰기를 바라니, 임금이 말하기를,</p>	<p>行晝講。講訖，侍讀官趙迪命，以海西水災，仰勉修省，上曰：“言甚切實</p>

<p>7년) 윤7월 16일(무자) 2번째기사 송인명이 북로의 전세, 도련포의 목장 혁파 등에 관해 아뢰다</p>	<p>“매우 절실한 말이다.” 하였다. 동지사(同知事) 송인명(宋寅明)이 아뢰기를, “《감란록(勘亂錄)》의 일로 품정(稟定)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적(諸賊)들의 흉악한 말이 모두 심유현(沈維賢)의 말을 빙자하고 있는데, 그대로 써야 하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송인명이 아뢰기를, “신이 북로(北路)를 갔다 온 뒤에 민간의 일로써 한 번 진달하고 싶었습니다. 덕원(德源)·고원(高原) 등지는 토질이 척박하고 본래부터 논이 적고 다만 원전(原田)4764 과 속전(續田)4765 만 있는데, 속전은 곧 화전(火田) 따위입니다. 해를 걸러 경작하므로 원전에 비할 수가 없어서, 일찍이 속6등전(續六等田)으로 전안(田案)에 등록했던 것입니다. 십수년 전에 6등 원전(六等原田)으로 시행하여 속전은 박토(薄土)인데도 원전의 세를 매겼기 때문에, 백성들이 감당하지 못하여 대부분 모두 목혀 버렸습니다. 마땅히 그전처럼 속6등전으로 녹안(錄案)하고, 속전으로 시행하여 백성들이 개간하여 살아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송인명이 또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전(前) 북평사(北評事) 서명빈(徐命彬)이 함흥(咸興) 도련포(都連浦)의 일로 상소하여 목장(牧場)을 혁파하기를 청하자, 태복시(太僕寺)의 복주(覆奏) 내용에 용마(龍馬)가 난다는 것과 태조 대왕(太祖大王)께서 말을 달리던 곳임을 들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용마에 관한 말은 본시 아득한 일이고 말을 달리던 장소는 원래 목장 안에 있지 않았습니니다. 대저 목장으로 인한 민폐가 이와같은 데 이르지 않았다면, 선왕조(先王朝)에서 어찌하여 근 50년이나 혁파하였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용마에 관한 말은 《용비어천가》를 보건대, 팔준마(八駿馬)의 하나가 도련</p>	<p>矣。” 同知事宋寅明曰：“以《勘亂錄》事，有稟定者矣。 諸賊凶言，皆憑藉於維賢之言， 以此書之乎？” 允之。 寅明曰：“臣於北路往返後，以民事欲一陳矣。 德源、高原等地，土品瘠薄，本來畜少，只有原田、續田，續田，卽火加耕之屬也。 間年起耕，不可比之於原田，曾以續六等田，入錄於田案矣。 十數年前，以六等元田，施行以續田，薄土而責原田之稅，民不能堪，舉皆陳棄。 宜令如前，以續六等錄案，以續田施行，使民得以開墾爲生。” 允之。 寅明又曰：“臣聞前北評事徐命彬，以咸興都連浦事，疏請罷牧場，太僕覆奏中，以產龍馬及太祖大王馳馬之場爲言云。 龍馬之說，本涉杳茫，馳馬之場，元不在於牧場中。 大抵牧場民弊，不至如此，則先朝何以近五十年革罷乎？” 上曰：“龍馬之說，以《龍飛御天歌》觀之，八駿之一，似出於都連浦矣。 雖然，苟利於民，則龍馬復產，豈有所惜？ 令太僕詳考，從前存罷事實，後日次對，稟處。” 寅明又曰：“聞道路所傳，則自內需司，用戶曹、惠廳錢貨矣。” 上曰：“此訛傳</p>
--	---	---

포에서 난 듯하다. 비록 그렇기는 하나 진실로 백성에게 이롭다면 용마가 다시 난다 하더라도 어찌 애석하게 여길 것이 있겠는가? 태복시로 하여금 종전에 보존하고 혁파한 사실을 자세히 고찰하게 하였다가, 후일의 차대(次對)4766) 때에 품처(稟處)하게 하라.”

하였다. 송인명이 또 아뢰기를,
 “항간에 전해지는 말을 듣건대, 내수사(內需司)에서 호조(戶曹)와 선혜청(宣惠廳)의 전화(錢貨)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와전된 말이다. 제신(諸臣)이 어떻게 알겠느냐? 금중(禁中)에 후포(幘布) 1건이 있는데, 이는 곧 선왕조(先王朝)에 만든 것으로서 해가 오래 되어 찢어져 버렸다. 한 번 열무(閱武)하려면 고치지 않을 수 없는데, 장차 반 동(同)의 베를 허비해야 한다고 한다. 옛날 한문제(漢文帝)는 백금(百金)의 허비를 아끼어 노대(露臺)를 쌓지 않았으니,4767) 비록 반 동의 베라도 낭비(濫費)할 수 없기 때문에 중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소회(所懷)가 있으면 반드시 진달해 주니 진실로 가상하게 여긴다. 내가 마땅히 그런 일이 있으면 고치겠고 없더라도 더욱 힘쓰겠다.”

하였다. 송인명이 또 아뢰기를,
 “옛날에 순(舜)임금이 칠기(漆器)를 만들자 간하는 사람이 7인이나 되었습니다. 우리 선조조(宣祖朝)에 황랍(黃蠟)을 간한 일로 보더라도, 옛적의 융성(隆盛)한 때에는 간하러 오도록 하는 덕이 이렷습니다. 이광덕(李匡德)은 조금 강직한 기개가 있고, 조현명(趙顯命) 또한 잘 간하였었는데, 지금은 벼슬이 높아져 점점 전과 같지 않습니다. 박사수(朴師洙)는 지금 이미 외방(外方)으로 나가버려, 군덕(君德)에 관하여 진계(陳戒)할 사람이 단지 이종성(李宗城) 한 사람만 있는데, 명리(名利)의 길에서 머뭇거리 하료(下僚)에서 넘나들고 있으며, 근래에 삼사(三司)에서는 말하기를 기휘(忌諱)하고 있습니다.”

也。 諸臣何以知之? 內有幘布一件, 乃先朝所造也, 年久破裂。 一欲閱武, 不可不改, 而將費半同布云。 昔漢文帝惜百金之費, 不築露臺, 雖半同之布, 不可濫費, 故中止。 然有懷必陳, 誠爲可嘉。 予當有則改之, 無則加勉也。” 寅明又曰: “昔舜造漆器, 諫者七人。 以我宣廟朝諫黃蠟事觀之, 古昔盛時, 來諫之德, 如此矣。 李匡德稍有直氣, 趙顯命亦能善諫, 而今則位高, 漸不如前。 朴師洙今已出外, 陳戒君德, 只有李宗城一人, 而逡巡, 名塗, 浮沈下僚, 近來三司, 以言爲諱矣。” 上曰: “當留意矣。”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유의하겠다.” 하였다.</p>	
<p>영조 23권, 5년(1729 기유 / 청 옹정(雍正) 7년) 윤7월 21일(계 사) 1번째기사 혼궁의 제수 경비로 선혜청과 호조의 돈을 쓰는 일에 관한 정도 은의 상소</p>	<p>정언 정도은(鄭道殷)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신이 풍문에 따라 대략 듣건대, 성상께서 선혜청(宣惠廳)과 호조(戶曹)의 돈을 들여오도록 명하신 액수가 매우 많다고 하니, 신은 지극히 개연(慨然)하여 근심되고 한탄스러운 마음을 감당하지 못하였는데, 막 경연(經筵)의 하교로 인하여, ‘이는 혼궁(魂宮)의 제수(祭需)에 관계된 것이다.’는 말씀을 삼가 듣고 알았습니다. 설사 많은 경비(經費)가 든다 하더라도 어찌 고석(顧惜)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마는, 다만 신이 여인(輿人)들의 말에서 알게 되었는데, ‘지난해 동짓달에 제수 돈으로 본궁(本宮)에 수납한 것이 2천 냥이고, 올봄에 또 1천 4백 냥을 들여왔으며, 오늘 또 5천 냥을 들여왔다.’고 합니다. 비록 내간(內間)의 공용(供用)이 어떠한 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마는, 1년도 되지 못하는 사이에 만 냥에 가까운 재물을 소비함은 너무 지나치지 않겠습니까?” 하니, 상례의 비답을 내렸다.</p>	<p>癸巳/正言鄭道殷上疏, 略曰: 臣因風傳, 略聞自上命入惠廳、地部錢, 厥數夥然, 臣不任慨然憂歎之至。纔因筵教, 始伏認此係魂宮祭需云。設有不貲之費, 夫豈有顧惜之心, 而第臣得於輿人之談, 則上年至月祭需錢之收納本宮者, 二千兩, 今春又入一千四百兩, 今日又入五千兩。雖未知內間供用之如何, 而未周歲之間, 費了近萬之貨, 不幾於太過乎? 賜例批。</p>
<p>영조 23권, 5년(1729 기유 / 청 옹정(雍正) 7년) 윤7월 25일(정 유) 1번째기사 북도 어사 이종성에게 북도의 수재 구휼책에 관해 별유를 내리다</p>	<p>북도 어사(北道御史) 이종성(李宗城)을 입시(入侍)하도록 명하여 별유(別諭)를 내리기를, “북로(北路)는 왕업(王業)을 일으킨 옛땅이므로, 조종조(祖宗朝)로부터 우리 선왕(先王)에 이르기까지 권고(眷顧)하심이 심상한 데에 견줄 바가 아니었다. 내가 사복(嗣服)한 뒤로는 덕으로 화육(化育)하지 못하였고, 혜택이 두루 미치게 하지도 못했었다. 4년 동안에 수재(水災)·한재(旱災)·풍재(風災)·상재(霜災)가 없었던 해가 없었는데, 올해의 북도 수재에 이르러서는 옛날에 없던 일로서, 그 장계(狀啓)를 보면, 마음이 상하게 되고 눈이 처참해진다. 옛사람들은 한 사람이 제곳을 얻지 못하게 되어도 마치 저자에게 매를 맞은 것처럼 부끄러워했는데, 하물며 수천 리 안의 민생들이 구렁에 나뉘듯 된 것이겠는가? 생각이 이에 미치니 식음(食飮)과 침면(寢眠)도 편치 않다. 이에 특별히 위유</p>	<p>丁酉/命北道御史李宗城入侍, 下別諭曰: 北路, 以興王舊地, 自祖宗朝暨我先王, 其所眷顧, 非比尋常。粵予嗣服之後, 德未能化育, 恩未能遍及。四年之間, 水旱風霜, 無歲無之, 至於今年, 北道水災, 亘古所無, 觀其狀聞, 傷心慘目。古人以一夫之不得所, 若撻于市, 況數千里生靈, 顛連於丘壑乎? 思之及此, 食息靡安。別遣慰諭, 安集御史李宗城, 慰撫勸集, 其他賑救</p>

	<p>안집 어사(慰諭安集御史) 이종성(李宗城)을 보내어 위무(慰撫)하고 권집(勸集)하게 하고, 이 이외에 진구(賑救)해야 할 일도 정녕하게 면유(面諭)하여 민생들을 구제하고 민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일들을 편의(便宜)하게 거행하도록 한다. 곡식을 옮겨 가는 한 가지 사항 또는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시급히 거행하도록 하겠거니와, 감영(監營)의 전포(錢布)와 북관(北關)의 내노비(內奴婢) 조(條)와 주창(州倉)에 올려다 놓은 것들도 일체 가져다 쓰되, 떠내려간 민가와 익몰(溺沒)한 민정(民丁) 또한 홀전(恤典)을 거행하여 내가 상심하고 참혹하게 여기고 있는 뜻을 알리도록 하라. 내가 비록 부덕(不德)하나, 조종조 및 우리 선왕께서 애호(愛護)하여 돌보시던 적자(赤子)들이 구렁에 나뒹굴게 되었는데, 구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지금 내가 측은하게 여기며 상심하는 뜻을 다 효유(曉諭)하지 못하고 어사에게 맡기어 보내니, 각기 이 분부를 체념(體念)하도록 하라. 군기시(軍器侍)에서 탄일(誕日)에 봉진(封進)하는 갑주(甲冑) 값도 특별히 정지하여 감해 주도록 한다.”</p> <p>하였다. 이종성이 아뢰기를, “남도(南道)의 11고을에서 사재감(司宰監)에 바칠 백대구어(白大口魚) 2천 7백여 미(尾)도 당면한 지금의 민생들 힘으로는 마련할 길이 만무한 형세이니, 관서(關西)의 전목(錢木)이나 혹은 감영(監營)의 저축으로써 추이(推移)하여 바치게 하고, 제읍(諸邑)에는 곧바로 감제해 줄 것이며, 회령(會寧)에서 개시(開市)4775) 할 때에 남관(南關)에 나누어 배정한 저구(狙口) 또한 다른 데에서 마련해서 쓰고 재해를 입은 고을에는 나누어 징수하지 말도록 하소서.” 하니, 모두 윤택하였다. 이종성이 또 돈을 주조해서 도신(道臣)에게 맡기어 민생을 구제하는 자금으로 삼기를 청하니, 임금이 아뢰기를,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겠다.”</p> <p>하였다.</p>	<p>之事，丁寧面諭，使可以濟民保民者，便宜行之。移粟一節，亦令廟堂，卽速舉行，至於監營錢布，北關內奴婢，州倉入上之類，一體取用，漂流民家滄沒民丁，亦命恤典舉行，示予傷慘之意。予雖涼德，使祖宗朝暨我先王愛恤之赤子，至於顛連而莫之恤乎？今予惻傷之意，未能悉諭，付諸御史而遣，其各體此教。誕日所封甲冑價軍寺所上者，特令停減焉。</p> <p>宗城曰：“南道十一邑所納司宰監白大口魚二千七百餘尾，卽今民力，萬無辦備之勢，請以關西錢木，或營儲，推移備納，諸邑，則直爲減除，會寧開市時，南關分定猪口，亦推移備用，被災邑則勿分徵。”并允之。宗城又請鑄錢，付之道臣，以爲救民之資，上曰：“令廟堂稟處。”</p>
영조 23권, 5년(1729)	지평 조한위(趙漢緯)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丙午/持平趙漢緯上疏，略曰：

<p>기유 / 청 옹정(雍正) 7년) 8월 4일(병오) 1 번째기사 유사의 경비를 원릉의 제수에 사사로이 쓴 일에 관한 지평 조한 위의 상소</p>	<p>“저번날 연신(筵臣)이 경비(經費) 수천 께미를 궁내(宮內)에 들여온 일을 간하 자, 성상께서 제수(祭需)에 쓸 것이라고 답하셨다고 합니다. 원릉(園陵)의 제 수는 옛날에도 있었던 것이지만, 유사(有司)에게서 가져다가 공급하였다는 것 은 듣지 못했는데, 지금 성상께서 창시(創始)하셨습니다. 이런 길이 한 번 열 려서 제한이 없게 된다면, 국가의 경비가 장차는 임금의 사사로운 용도(用度) 가 되어버릴 것이고, 국사(國史)에 찍어지고 초야(草野)의 사람들이 전과하여 장차 이를 가지고 전하를 기롱하게 될 것입니다. 신이 삼가 듣건대, 선왕조 (先王朝)에는 내수사(內需司)의 재화(財貨)가 유족(裕足)하여 더러 흉년을 당 하면 천금(千金)을 유사에게 내주어 진자(賑資)에 보태도록 했습니다. 지금 전 하께서는 도리어 유사에게서 가져다가 쓰셨으니, 선왕조의 일과 견주어 보아 어떻다고 하겠습니까? 들여간 전화(錢貨) 중에 아직 쓰지 않은 것은 도로 유 사에게 내주어 성덕(聖德)이 빛나게 하소서.”</p> <p>하고, 또 선혜청(宣惠廳)과 호조(戶曹)의 신하들이 봉승(奉承)하기에만 급급하 여 개진(開陳)하기를 생각하지 않았음을 논하니, 비답하기를, “이미 제수 때문임을 안 다음에도 이처럼 번거롭게 진달함은 미안하다.” 하였다.</p>	<p>頃日，筵臣以經費累千緡內入事，進 諫，則自上以祭需所用爲答云。園陵 祭需，古亦有之，而未聞取給於有司， 今聖上創之。此路一開，若無限節， 則國家經費，將爲人主之私用，國史書 之，野人傳之，將以此譏殿下也。臣 伏聞先朝內司，財貨有裕，或當荒歲， 則以千金出付有司，俾補賑資。今殿 下，乃反取用於有司，其視先朝事何如 也？所入錢貨之未及用者，願還付有 司，以光聖德。</p> <p>又言惠廳、地部之臣，汲汲奉承，不思 開陳，以既知祭需後，若是煩陳未安， 爲批。</p>
<p>영조 23권, 5년(1729 기유 / 청 옹정(雍正) 7년) 8월 15일(정사) 2번째기사 함경도의 수재로 인해 북도의 물선을 감해주 고 어사에게 치제하게 하다</p>	<p>함경도 관찰사(咸鏡道觀察使)가 장계(狀啓)하기를, “본도(本道)는 수재가 매우 참혹하여 떠내려가거나 익사한 사람이 1천 명에 가깝습니다.”</p> <p>하니, 임금이 크게 놀라서 측은하게 여겨 북도(北道)의 물선(物膳)은 내년 가 을까지 절반으로 감하여 봉진(封進)하되, 올해는 봉진하지 말도록 특별히 명 하였다. 이어 친히 제문(祭文)을 지어 내리고, 본도의 안집 어사(安集御史)에 게 단(壇)을 만들어 치제(致祭)하도록 명하였다. 또한 표류하여 죽은 사람의 건져낸 시신(屍身)을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매장하도록 명하고, 그의 처자와 가족(家屬)은 지방관(地方官)으로 하여금 돌보아 구제하도록 하였다.</p>	<p>咸鏡道觀察使狀啓，本道水災孔酷，漂 沒近千人。上大加驚惻，特命北道物 膳，限明秋減半封進，今年則勿爲封 進，仍親製祭文以下，命本道安集御 史，設壇致祭。且命漂死人屍身拯得 者，令道臣瘞埋，其妻子家屬，令地方 官顧恤。</p>
<p>영조 23권, 5년(1729</p>	<p>함경도 어사(咸鏡道御史) 이종성(李宗城)이 상소하기를,</p>	<p>咸鏡道御史李宗城疏言：</p>

<p>기유 / 청 옹정(雍正) 7년) 8월 19일(신유) 2번째기사</p> <p>함경도에 배정한 돈을 수재로 인해 징수하기 어려움을 이종성이 상소</p>	<p>“호조에서 혼궁(魂宮)의 제수(祭需) 값으로 본도(本道)에 배정한 돈이 2천 9백 냥(兩) 됩니다. 지금 재해를 입은 모든 곳의 의지할 데 없어 유리(遊離)하는 백성들은 직공(職貢)과 상역(常役)도 오히려 마련하여 바칠 수가 없습니다. 성상께서 불쌍히 여겨 심지어 탄일(誕日)의 진상(進上) 대가(代價)까지 면제해 주셨는데, 지금 수천 궤미의 돈을 조석(朝夕) 사이에 죽어가는 가운데 징수하는 것은 결코 왕정(王政)이 차마 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p> <p>하니, 비답하기를, “해조(海曹)로 하여금 종을 대로 품처(稟處)하도록 하겠다.”</p> <p>하였다.</p>	<p>戶曹以魂宮祭需價錢，分定於本道者，爲二千九百兩。目今被災諸處，顛連流離之民，貢職常役，尙無以備納。聖上矜恤，至免誕日進上價，今以數千貫錢，徵於朝夕濱死之中，決非王政所忍爲也。</p> <p>批曰：“令該曹從長稟處。”</p>
<p>영조 23권, 5년(1729 기유 / 청 옹정(雍正) 7년) 8월 20일(임술) 2번째기사</p> <p>금주의 편리 여부를 논의하여 금주령을 정지하도록 하다</p>	<p>석강(夕講)을 행하였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주금(酒禁)의 편리 여부를 하문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앞서 정석삼(鄭錫三)의 말을 듣건대, 술을 금단하는 것 때문에 민원이 적지 않다고 했었다. 듣건대, 호남 방백(湖南方伯) 이광덕(李匡德)은 엄중하게 금하므로 술을 빚는 일이 끊어졌다고 한다. 이광덕은 혹독하기 때문에 온 도(道)를 호령할 수 있지만, 나는 혹독하지 못하므로 명령이 시행되지 않아 술을 없애지 못하는 것이다.”</p> <p>하였는데, 검토관 유엄(柳儼)이 아뢰기를, “술이 비록 곡식을 허비하지만, 백성들이 살아가는 길이 또한 이를 힘입는 수가 많습니다. 또 오부(五部)에서 수색하여 고발할 때의 폐단이 매우 심하니, 이제부터는 단지 술주정하는 것만 금단하게 하고 수속(收贖)하지 말도록 하며, 술항아리를 수색해서 고발하는 폐단을 제거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p> <p>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주금을 없애고 술주정하는 것만 금하도록 하라.”</p> <p>하였다.</p>	<p>行夕講。講訖，下詢酒禁便否。上曰：“向聞鄭錫三之言，以禁酒事，民怨不少。聞湖南伯李匡德能嚴禁斷釀云。匡德以其酷，故能號令一道，而予則不酷，故令不行而不能去酒矣。”</p> <p>檢討官柳儼曰：“酒雖糜穀，而民之資生，亦多賴此。且五部搜告之弊滋甚，自今只設酗酒之禁，而勿爲收贖酒甕，搜告之弊，則祛之似好矣。”</p> <p>上曰：“勿去酒禁，而以禁釀爲令。”</p>
<p>영조 23권, 5년(1729 기유 / 청 옹정(雍正)</p>	<p>주금(酒禁) 때문에 하교(下敎)하기를, “대저 법령은 시행할 만한 것을 시행한 다음에야 백성이 따라서 시행하는 것</p>	<p>丁卯/以酒禁，下傳教曰： 大抵法令，以可行者行之，然後民乃從</p>

7년) 8월 25일(정묘)
1번째기사
술주정, 대량 양조, 사
대부가에서 술을 빚어
파는 것 등을 금하다

이니, 경사 대부(卿士大夫)들부터 시행한 다음에야 소민(小民)들이 따르는 것이다. 술로 인한 폐해를 잘 알고 있는 지 오래이므로, 병오년(4807)에 진하(進賀)받던 날 군신(群臣)을 경계한 세 가지 조목 중에서 한 가지 사항으로 작성했었던 것이다. 옛날 하(夏)나라 우(禹)임금도 술의 폐해를 말했었지만, 그래도 술을 제거하지 못했고, 상(商)나라와 주(周)나라에 이르러서도 어찌 술의 폐해가 큼을 알지 못했겠는가? 하물며 주나라에서 매토(妹土) (4808)의 백성들에게 경계했을 때에도 극직하게 권면하는 경계를 하였으나, 오히려 술을 제거하지 못했으니, 이는 원사(元祀) (4809)에 쓰이기 위해서이다. 말세(末世)에 이르러서는 술의 폐해가 더욱 심해졌으니 통탄스러움을 금할 수 있겠는가? 술의 이런 폐해를 제거하려면 마땅히 주나라 무왕(武王)이 크게 경계한 뜻을 분명하게 밝히고 외람되게 술을 빚는 짓과 술주정하는 폐해를 통렬하게 징계해야 할 것인데, 이렇게 하지 않고 사고 파는 것까지 금하고 있다. 지난해에 경연(經筵)에서도 하교했었지만, 국가에는 태상시(太常寺)와 주방(酒房)이 있고, 사대부(士大夫)들 또한 술을 빚어 제사에 쓰고 있다. 어리석은 소민(小民)들은 호구(糊口)도 겨우 이어 가고 있는데 어떻게 사온 술로는 제사지내지 않는 경계를 알 수 있겠는가? 국가와 사대부는 그대로 행용(行用)하고 있고, 서민에 이르러서도 비록 손님 대접하도록 허락하고 있지만, 이미 술을 사는 것을 금단하고 있는데, 이는 원사(元祀)에 쓸 술마저 금단하는 것이니, 이는 마침내 시행되기 어려울 것이다. 나의 뜻은 마침내 그렇게 여기지 않았으나, 제신(諸臣)들의 뜻은 반드시, '시행할 수 있다.'고 했었기 때문에, 시험삼아 시행해 보려고 했던 것인데, 전번에 형조 판서가 진달하는 말을 들어보건대, 과연 한 가지 폐단이 있었다. '지난날에는 술을 빚지 않던 무리들이 이로 인하여 이득을 얻게 되었고, 사대부들의 집과 세력이 있는 가문에서 이런 짓을 하는 폐단이 적지 않다'고 했으니, 이는 술을 빚어 생활하던 서민들이 도리어 피해를 받게 된 것이다. 요전에 비국(備局)에서 회계(回啓)한 내용에,

行, 自卿士大夫而行, 然後小民可從矣。酒之弊, 深知久矣, 故丙午受賀之日, 戒群臣三條中, 作爲一事矣。昔夏禹明言酒弊, 而猶未祛酒, 至於商、周, 豈不知此弊之大? 而況周之誥妹土之民, 諄諄勸戒, 而猶未能祛, 此則爲云祀矣。至於末世, 酒之弊尤甚, 可勝痛哉? 欲祛此弊, 當曉明周武大誥之意, 痛懲濫釀酗酒之弊, 而不此之爲, 竝禁買賣。若昨年筵中之教, 國有太常與酒房, 士夫亦有釀酒而享祀。蠢蠢小民, 糊口僅繼, 何知沽酒不祭之戒? 國與士夫則仍有, 至於匹庶, 雖許享賓客, 既禁沽酒, 此竝與元祀而禁矣, 此則終難行者矣。予意則終不然, 而諸臣之意, 必曰可行, 故欲試而行之矣, 頃聞秋判陳達, 果有一弊矣。往者未釀之類, 因此而取利, 士夫之家, 有勢之門, 其弊不貲云, 此資生之小民, 反受其害。日昨備局回啓中, 南草, 一微物, 非享賓客者, 而膏土沃田, 竝受此害也, 猶知禁令之終不可行置之。而酒則既許享賓客, 猶且禁釀, 而卿大夫則甚焉, 此《尚書》所謂不治其諸臣、百工之漚酒, 則民之漚酒, 不

‘남초(南草)는 한 가지 하찮은 물건으로서 빈객(賓客)을 대접하는 것도 아닌데, 기름진 땅과 비옥(肥沃)한 밭들이 모두 그로 손해를 받고 있으나, 오히려 금령(禁令)이 마침내 시행될 수 없음을 알고서 놓아 두었습니다. 술은 이미 빈객을 대접하도록 허락하면서도 오히려 또한 술을 빚는 것은 금단하고 있는데, 경대부(卿大夫)들은 심하게 빚고 있으니, 이는 《상서(尙書)》에 이른바, 「제신(諸臣)과 백공(百工)의 술에 빠지는 것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백성들이 술에 빠지는 것을 금단할 수 없다.」고 한 것과 같은 일입니다. 어제 형조 판서가 진달한 말에 따라 조용히 하교(下敎)하겠다는 뜻이 있었으므로, 술주정하는 것을 금단하는 것도 또한 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했었는데, 이는 목이 메어서 음식을 먹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또 면임(面任)으로 하여금 수색(搜索)하여 바치게 하는 것이 비록 이례(吏隸)들을 시키는 것보다 낫다고는 하지만, 면임이 부민(部民)들을 침학(侵虐)하는 일이 없을지 어찌 알겠는가? 무릇 그 일에 대한 권한을 잡으면 농간이 그 가운데 있기 마련이다. 이 뒤로는 면임들이 수색하여 바치게 하는 한 조항은 거행하지 말도록 하고, 만약 빙자(憑藉)하여 여리(閭里)에서 폐단을 끼치는 자가 있으면 법조(法曹)로 하여금 각별히 통렬하게 다스리도록 하되, 그 가운데 더욱 심한 자는 입계(入啓)하여 무거운 죄로 다스리도록 하라. 그리고 술주정하는 금령(禁令)을 거듭 밝히되, 범한 자에게 속전(贖錢)을 징수하지 말도록 하라. 술을 대량으로 빚는 부류들에 이르러서는 더러 1백 곡(斛)에 가깝도록 빚는다고 하는데, 이는 비록 면임(面任)이 없다 하더라도 대중의 눈에 띄게 마련이니, 어찌 속일 수 있겠는가? 다만 사대부 집에서 술을 빚어 제사에 쓰는 것은 예법에 당연한 일이지는 하나, 제사를 빙자하여 외람되게 술을 빚어 파는 것은 한갓 조가(朝家)의 법령만 어기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에 있어서도 자질구레함이 이보다 심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조가에서 이목지신(耳目之臣)을 둔 뜻이 어디에 있겠는가? 각별히 규찰(糾察)하여 바로잡는다면, 소민(小民)들이 외람되

可禁者也。昨因秋判之陳達，有從容下敎之敎，故使酒之禁，亦不爲焉云，此因噎而不食矣。且使面任搜納，雖曰愈於吏隸，面任之侵虐部民，焉知其無？凡事權在手，則弄在中矣。今後面任搜納一節，勿爲舉行，而若有憑藉作弊閭里者，使法曹，各別痛治，其中尤甚者，入啓重繩。而申明酗酒之禁，犯者勿爲懲贖。至於多釀之類，或近百斛云，此則雖無面任，衆目所覩，其可欺乎？但士大夫家，釀酒享祀，於禮當然，而憑其享祀，濫釀賣酒，此非徒違朝令也，其所屑於祀，莫此爲甚。此則朝家置耳目之臣，意安在哉？使之各別糾正，則小民濫釀，自此而不禁懲戢矣。當下戒酒之文，以飭其本，以此分付。

	<p>게 술을 빚는 짓은 이로부터 금단하지 않더라도 징계하여 그치게 될 것이다. 마땅히 술을 경계하는 글을 내리어 근본부터 신칙해야 하겠기에 이렇게 분부한다.”</p> <p>하였다.</p>	
<p>영조 24권, 5년(1729 기유 / 청 옹정(雍正) 7년) 9월 2일(계유) 2 번째기사</p> <p>이광좌를 인견하여 정미년 사화·신축·갑진년 이후의 일을 이야기하고 돈유하다</p>	<p>(전략)임금이 이르기를,</p> <p>“영상이 이미 조정(調停)해 가기로 승낙하여 나의 마음과 근력을 펴주게 되었다. 또 경은 약원(藥院)의 소임을 띠고 있어서 매양 나의 질병을 근심해 왔었으니, 경이 이제는 되도록 서울에 머물러 있으며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면 이는 곧 과인(寡人)의 몸을 보호해 주는 도리이다. 자신도 자기의 소유(所有)가 아니라는 의리를 가지고 통쾌하게 머물러 있기로 승낙하라.”</p> <p>하매, 이광좌가 아뢰기를,</p> <p>“소신(小臣)이 성상께서 이처럼 분부하시는 말씀을 받들었으니, 마땅히 삼가 아직은 머물러 있겠습니다.”</p> <p>하니, 임금이 이르기를,</p> <p>“아직은 머무른다고 대답하지 말고 흔쾌하게 머물러 있기로 승낙하라.”</p> <p>하매, 이광좌가 아뢰기를,</p> <p>“신이 마땅히 머물러 있겠습니다.”</p> <p>하였다.</p>	<p>(전략)上曰: “領相既許以調劑, 紓予心力。 且卿方帶藥院, 每以予疾病爲憂, 卿今勉從留京, 安予心, 則是乃保護寡躬之道也。 以身不自有之義, 夫許留在。” 光佐曰: “小臣伏承如許聖教, 謹當姑留。” 上曰: “勿以姑留爲對, 夫許留在。” 光佐曰: “臣當留在。”</p>
<p>영조 24권, 5년(1729 기유 / 청 옹정(雍正) 7년) 9월 9일(경진) 3 번째기사</p> <p>예조에서 혼동하여 호조에 넣은 향화인의 선세를 내주도록 청하다</p>	<p>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p> <p>“호남 어사(湖南御史)가 장청(狀請)한 것에 따라 여러 궁가(宮家)와 각 아문(雅門)에서 절수(折受)한 어염(魚鹽)을 전부 호조(戶曹)에 소속시켰는데, 본조(本曹)에서 관할하는 향화인(向化人)4875)의 선세(船稅)도 혼동하여 그 속에 들어갔으니, 호조로 하여금 내 주게 하시기 바랍니다.”</p> <p>하니, 윤허하였다.</p>	<p>禮曹啓: “因湖南御史狀請, 諸宮家、各衙門魚鹽折受, 全屬戶曹, 而本曹所管向化人船稅, 混入其中, 請令戶曹出給。” 允之。</p>

<p>영조 24권, 5년(1729 기유 / 청 옹정(雍正) 7년) 9월 19일(경인) 2번째기사 한성부에서 어물전 사람들이 염가로 억매하고 세를 거두는 폐단을 아뢰다</p>	<p>한성부(漢城府)에서 아뢰기를, “어선(漁船)이나 상선(商船)이 경강(京江)에 와서 정박하면 내외(內外)의 어물전(魚物塵) 사람들이 염가로 억매(抑買)하고 조금이라도 혹 논가(論價)하게 되면 난전(亂塵)하려는 것이라고 협박하게 됩니다. 경강의 백성을 뽑아서 정하여 이름을 ‘수세보민계(收稅補民契)’라 하고, 거둔 세는 응판소(應辦所) 및 각항(各項)의 방민(坊民) 역사에 보충하여 쓰게 하며, 객사(客使)가 왔을 때 방수(房守)로 들어가는 역사도 또한 병조(兵曹)에서 역가(役價)를 지급하게 할 것 없이 그들이 담당하여 어물전이 침략(侵虐)하는 폐단을 엄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비록 관원이 세를 받게 된다 하더라도 어물전이 침해하여 받기는 반드시 도로 전과 같게 될 것이다. 하물며 모리배들이 갖가지 부정한 길로 이전에 없던 일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은 어상(魚商)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욕심 내는 바가 따로 있으니, 어상들이 견딜 수 없는 일이 반드시 전보다도 많게 될 것이다. 단지 경강 백성들만 살찌게 하고 원망은 국가에 돌아오게 될 것이어서 외람되고 해괴스러우니, 시행하지 말라.” 하였다.</p>	<p>漢城府啓: “漁、商船到泊京江, 則內外魚物塵人, 廉價抑買, 小或論價, 脅稱亂塵。 請抄定江民, 名之以收稅, 補民契收稅, 補用於應辦所及各項坊民之役, 客使時入房守之役, 亦勿令兵曹上下役價, 使之擔當, 而嚴禁魚塵侵虐之弊。” 批曰: “官雖捧稅, 魚塵之侵捧, 必復如前。 況牟利輩百般曲逕, 欲創無前之事, 非爲漁商所欲在焉, 則漁商之難堪, 比前必多。 只肥江民, 而怨歸於國, 猥屑可駭, 勿施。”</p>
<p>영조 24권, 5년(1729 기유 / 청 옹정(雍正) 7년) 9월 30일(신축) 3번째기사 이집·정우량 등이 이세진의 일에 관하여 이야기하다</p>	<p>(전략) 이집(李堧)이 여러 궁가(宮家)와 각 아문(衙門)의 면세(免稅)에 관한 일을 아뢰니, 임금이 아뢰기를, “성균관(成均館)·충훈부(忠勳府)·종부시(宗簿寺)와 공상(供上)을 맡아 보는 아문 이외는 모두 마땅히 혁파해야 한다.” 하고, 또 분부하기를, “사옹원(司饗院)의 시산(柴山)은 그전과 달라졌으니, 묘당(廟堂)에서 시산을 가려서 주어 절수(折受)하도록 하고 긴요하지 않은 것은 혁파하라.” 하였다.(후략)</p>	<p>(전략)堧奏諸宮家、各衙門免稅事, 上曰: “成均館、忠勳府、宗簿寺及供上衙門外, 皆當革罷矣。” 又教曰: “司饗院柴山, 與前有異, 自廟堂擇給柴山而折受之, 不緊者革罷也。” (후략)</p>
<p>영조 24권, 5년(1729</p>	<p>상참(常參)을 행하였다. 우의정 이집(李堧)이 아뢰기를,</p>	<p>行常參。 右議政李堧奏: “咸興, 紅疫</p>

기유 / 청 옹정(雍正)
7년) 10월 1일(임인)
2번째기사
이집 등이 함흥의 홍
역 구제책, 액례들이
청대죽을 구득하는 폐
단을 아뢰다

“함흥(咸興)에 홍역(紅疫)이 퍼져 죽은 사람이 5백여 명이나 됩니다. 정해년(4909) 홍역 때의 예에 따라 의원을 보내어 약을 가지고 가서 구제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이집이 아뢰기를,
“어제 궁인(宮人)을 추천한 사람을 정배(定配)하라는 명이 계셨습니다. 김주정(金周鼎)은 숙질간으로서 부동(符同)하지 않았을 리가 만무하니, 일체로 정배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부교리 유엄(柳儼)이 아뢰기를,
“나라를 다스리는 길은 오직 궁금(宮禁)을 엄숙하고 맑게 하는 데에 달린 것입니다. 현종조(顯宗朝)에 양녀(良女)를 추천하는 것도 일체 금방(禁防)했었는데, 하물며 양반(兩班)의 딸이겠습니까? 신(臣)이 어제 비망기(備忘記)를 보고서 반가운 마음으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이 아뢰는 말이 진실로 적절한 것이나 궁중이 엄숙해지게 하는 도리는 한 가지만으로 족한 것이 아니니, 이로 인해 더욱 힘써 간다면 어찌 성상의 덕이 더욱 빛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 임금의 이르기를,
“잡아다가 추문하여 처치하라.”

하였다. 도승지 조현명(趙顯命)이 아뢰기를,
“액례(掖隸)들이 이장(移葬)할 때에 쓰는 편죽(編竹)을 내의원(內醫院)에서 구득하려 한다고 합니다. 청대죽(靑大竹)은 곧 어약(御藥)에 쓰는 것인데, 상장(喪葬)의 수용(需用)에 이용하려 했다가에 액례들의 이름을 사핵(查覈)해 내려고 하자, 장무관(掌務官) 이하가 죽기를 작정하고 버티면서 말을 하지 않았으니, 이로 미루어 보면 대단히 범람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몇 해 전에 판중추부사 민진원(閔鎭遠)이 청대죽 일을 가지고 진달했을 적에 성상께서, ‘다급한 병에 쓰게 되는 것을 어찌 전연 막아버릴 수 있느냐?’고 분부하시게 되자, 액례들이 승전(承傳)을 받들었다고 자칭하며 더욱 멋대로 구색(求索)하게

大熾，死亡至五百餘。請依丁亥紅疫時例，遣醫人持藥物往救。”允之。

堦曰：“昨有宮人所薦人定配之命。金周鼎以叔姪間，萬無不符同之理，請一體定配。”副校理柳儼曰：“治國之道，惟在肅清宮禁也。顯廟朝良女薦入，一切防禁，況兩班之女乎？臣昨見備忘，喜而不寐。大臣所達，誠得宜，嚴宮闈之道，不一而足，因此加勉，則豈不益光聖德乎？”上曰：“拿問處之。”都承旨趙顯命曰：“掖隸以遷葬所用編竹，求於內局云。靑大竹，乃是御藥所用，而乃欲覓用於喪葬之需，欲查出掖隸之名，則掌務官以下，抵死不告，推此可知其太橫。年前判府事閔鎭遠，以靑大竹事陳達，自上以急病所需，何可專塞爲教？掖隸輩自稱奉承傳，益肆求索云，人君言動之漸，不可不慎也。”上曰：“予只以有病者，則當給爲答。豈有奉承傳之理？令攸司科罪，此後求請者，一切禁斷。”正言俞健基傳前啓，不允。

	<p>되었다고 하니, 임금은 조짐이 되는 언동(言動)을 삼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이르기를,</p> <p>“나는 단지 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마땅히 주어야 할 것으로 답을 했던 것이다. 어찌 승전을 받들게 할 이치가 있겠는가? 유사(攸司)로 하여금 죄를 과(科)하게 하고, 이뒤로는 구득하려는 사람을 일체 금단하도록 하라.”</p> <p>하였다. 정언 유건기(俞健基)가 앞서 아뢴 일을 거듭 아뢰었으나, 윤희하지 아니하였다.</p>	
<p>영조 24권, 5년(1729 기유 / 청 옹정(雍正) 7년) 10월 6일(정미) 4번째기사</p> <p>약방 제조 김동필이 유천군 정이 빌려간 군문의 돈을 탕감해 주도록 아뢰다</p>	<p>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다. 제조(提調) 김동필(金東弼)이 아뢰기를,</p> <p>“숙종(肅宗)께서 편치 못하셨을 적에 유천군(儒川君) 이정(李滯)이 약을 의논하는 일로 같이 참여하여 여러 해를 약원(藥院)에서 직숙(直宿)했었습니다. 정은 집이 가난하여 도성(都城) 안에 집이 없었으므로, 연신(筵臣)이 진달한 말에 따라 군문(軍門)의 은(銀) 4백 냥(兩)을 꾸어주어 집을 사게 하도록 명했었는데, 정이 죽은 뒤에는 가난과 피폐가 더욱 심해져 아직도 상환(償還)을 못하고 있습니다.”</p> <p>하니, 임금이 이르기를,</p> <p>“유천군이 약원에 오래 있었음은 내가 목도(目覩)한 바인데, 시탕(侍湯)할 때에 의견이 맞지 않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노심(勞心)하다가 죽었었다. 선왕조(先王朝)에서 특별히 분부하신 뜻을 본받아 탕감해 주는 것이 가하다.”</p> <p>하였다.</p>	<p>藥房入診。提調金東弼曰：“肅廟朝違豫時，儒川君滯，以議藥同參，累年直宿藥院。滯家貧，城內無第，因筵臣陳達，命貸軍門銀四百兩買第。滯死後，貧弊益甚，尙未備償矣。”上曰：“儒川久在藥院，予所目覩，侍湯時以意見之不合，憂勞以死。仰體先朝特教之意，蕩減可也。”</p>
<p>영조 24권, 5년(1729 기유 / 청 옹정(雍正) 7년) 10월 10일(신해) 1번째기사</p> <p>비변사에서 패초를 어긴 비국 당상을 추고</p>	<p>비변사(備邊司)에서 아뢰기를,</p> <p>“빈칭(賓廳)으로 나와 모이는 일로써 명이 내렸는데도 본사(本司)의 당상(堂上)들이 하나도 와서 참여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조 판서 김시환(金始煥)·이조 판서 조문명(趙文命)·병조 판서(兵曹判書) 김동필(金東弼)·사직(司直) 심공(審珙)·우윤(右尹) 이진순(李眞淳)을 패초(牌招)하시기 바랍니다.”</p> <p>하니, 윤희하였다. 김시환 등이 재차 패초하여도 재차 어기자, 분부하기를,</p>	<p>辛亥/備邊司啓：“來會賓廳事命下，而本司堂上，無一人來參。禮曹判書金始煥、吏曹判書趙文命、兵曹判書金東弼、司直沈珙、右尹李眞淳請牌招。”允之。始煥等再牌再違，教曰：“次對命下教，停止前後所無被論人</p>

<p>하도록 아뢰다</p>	<p>“차대(次對)4918) 를 명한 뒤에 정지하게 되기는 전후에 없던 일이다. 논박을 입은 사람 이외에 아직 숙배(肅拜)하지 않은 사람들을 패초하라.” 하였으나, 제신(諸臣)들이 또 패초를 어기자, 분부하기를, “임금과 신하 사이는 부자간과 같은 것이다. 아버지가 정녕(丁寧)하게 분부하는데도 아들이 어찌 제 뜻만 고수(固守)할 수 있겠는가? 군신간에는 비록 의리를 주장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임금과 아버지는 똑같은 것이고, 충성과 효도도 또한 두 가지 이치가 아닌 것이다.” 하고, 또 분부하기를, “상기(上氣)하게 되는 증후(症候)는 비록 여러 해를 상심(傷心)해 온 소치이지만, 오늘날 더하게 되는 것은 진실로 세도(世道)를 깊이 개탄해 하는 데 말미암은 것이다. 갖가지 보양(補養)하는 방법이 심자(心字)를 벗어나지 않는데, 내가 비록 성실(誠實)하지는 못하지만 깊이 싫어하는 것은 형식이니, 이뒤로는 약원(藥院)이 문안하는 것도 또한 하지 말라.” 하였다. 이어 차대(次對)를 정지하고 제신(諸臣)들이 올라오기를 기다려 다시 품할 것이며, 비국(備局)의 당상으로 한 차례의 패초에 나오지 않은 사람은 추고(推考)하고 두 차례 패초해도 나오지 않은 사람은 파직하라고 명하였다.</p>	<p>外。〔未肅〕拜人牌招，諸臣又違牌，教曰：“君臣猶父子。父有丁寧之教，子焉敢守己志？君臣雖曰主義，君父一也，忠孝亦無二致。”又教曰：“氣升之候，雖積年所傷，今日所加，實由深慨世道。萬般補養，不出心字，予雖不誠，深惡者文具，今後則藥院問安，亦勿爲之。”仍命次對停，待諸臣上來更稟，備堂一牌不進人，推考，再牌不進人，罷職。</p>
<p>영조 24권, 5년(1729 기유 / 청 옹정(雍正) 7년) 10월 11일(임자) 1번째기사 비국의 당상들이 패초를 어긴일로 약원의 문안을 거부하다</p>	<p>약방(藥房)에서 아뢰기를, “약을 의논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만일 지금 약을 의논하기를 허락할 것이라면 어제 무엇하러 말을 했겠느냐? 목은 뿌리가 비록 천 가지 백 가지일지라도 협자(協字) 하나만 못할 것이다. 입진(入診)도 하지 말고 또한 문안도 하지 말라.” 하였다. 재차 아뢰었으나, 윤택하지 아니하였다.</p>	<p>壬子/藥房啓請議藥，批曰：“今若許議藥，昨何諭焉？陳根雖千百，不若一協字。勿爲入診，亦勿問安。”再啓，不允。</p>
<p>영조 24권, 5년(1729 기유 / 청 옹정(雍正) 7년) 10월 11일(임자)</p>	<p>좌의정 이태좌(李台佐)가 차자를 올려 사직하고, 또 논하기를, “어제 비국(備局) 당상(堂上)들이 패초(牌招)를 어긴 것 때문에 성상께서 마음에 근심하고 고달파하시어 심지어는 병이 더하다는 분부를 하시게 되었으니,</p>	<p>左議政李台佐上筭辭職，且曰： 昨以籌堂違牌，聖心憂惱，至有添病之教，此群下之罪也。然而鶴鳴子和，</p>

<p>4번째기사 이태좌가 약원의 문안을 거부하는 일로 차자를 올린다</p>	<p>이는 군하(群下)들의 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학(鶴)이 울면 새끼가 화답하게 됨은 기류(氣流)가 감동되지 않을 수 없어서이고, 위에서 주창하면 아래에서 호응하게 됨은 이치가 또한 당연히 그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마땅히 차분한 자세로 발동을 억제해 가고 화평한 마음으로 사물(事物)을 접응(接應)하여 밝은 임금들이 황극(皇極)을 세운 도리와 성인이 질병을 조심하던 방법의 두 가지가 행해지고 어그러지지 않게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일로 인해 격뇌(激惱)하시어 약원(藥院)에서 진후(診候)하는 것까지 또한 다시 손을 저어 물리쳐 버려 거조(舉措)가 적중을 잃게 되었으니, 듣는 사람들이 모두 놀라고 있습니다. 우매한 신(臣)의 고충(孤衷)에 잊혀지지 않기에 감히 스스로 숨기지 않고 말씀드립니다.”</p> <p>하니, 비답하기를, “차자 말단의 일에 있어서는 이미 오늘 대신과 제신(諸臣)들의 소청대로 윤택하기는 했거니와, 유익함이 없는 것은 진실로 비답에 말한 것과 같다.”</p> <p>하였다.</p>	<p>氣無不感，上唱下應，理亦當然。殿下當以靜制動，平心應物，使明王違極之道，聖人慎病之方，兩行不悖。而今乃因此激惱，至於藥院診候，亦復揮斥，舉措失中，聽聞俱驚。愚衷耿耿，不敢自隱。</p> <p>批曰：“筭末事，已許於今日大臣諸臣之請，而其所無益，誠若批旨矣。”</p>
<p>영조 24권, 5년(1729 기유 / 청 옹정(雍正) 7년) 10월 11일(임자) 5번째기사 김시홍의 일과 약원의 문안을 거부하는 일과 관한 사간 박필기의 상소</p>	<p>사간 박필기(朴弼琦)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액정(掖庭) 소속 김시홍(金時泓)이 지은 죄는 곧 한낱 자질구레한 일인데, 비국(備局) 당상(堂上)이 연석(筵席)에서 아뢰고 대신이 차자를 올려 논하여도 성상께서 마침내 개석(開釋)하여 들어주시기를 아끼고 계십니다. 작은 일에 있어 이러하니, 큰 일에 있어서도 또한 감히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의지하여 중히 여기며 신임(信任)하는 대신이 한 말에 있어서도 오히려 이러하시니, 미천하고 소원한 신하에게 말을 다 하도록 책할 수 있겠습니까? 또 형조(刑曹) 당상이 올린 상소에 있어서는 그욕이 개탄스러운 바가 있습니다. 그 말에 ‘구구(區區)한 잔경(殘景)4921)에 무슨 바라는 뜻이 있어서 한낱 액정 소속을 위하여 많은 말로 변명하는 데에 이르렀는가?’라고 하였으니, 이는 어찌 합당한 말이 되겠습니까? 만일에 액정 소속을 위하여 변명한 것이 바라는 뜻이</p>	<p>司諫朴弼琦上疏，略曰： 掖屬金時泓之有罪，卽一細事，備堂筵奏，大臣筭論，而聖上終靳開可。心事如此，大事亦敢推知矣。言出於倚重信任之臣，尙如此，其可責微賤疏遜之盡其言乎？且於秋堂之疏，竊有所慨者。其曰：“區區殘景，有何意望，而爲一掖屬，乃至於費辭分疏乎云者？此言奚宜也哉？若以分疏掖屬，爲有意望，則掖屬果是能副人意望者耶？至於藥院問安，亦勿爲之之教，尤是臣子萬</p>

	<p>있어 하는 것이라면, 액정 소속들이 과연 남들의 바라는 뜻에 부응(副應)할 수 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약원(藥院)에서 문안(問安)하는 것을 또한 하지 말도록 분부하신 것에 있어서는 더욱 신자(臣子)로서는 천번 만번 감히 들을 수 없는 일이니, 삼가 바라건대, 이 과중한 분부를 도로 거두시어 모두에게 고쳐진 일월(日月)을 우러러보듯 하게 해 주신다면 더 없이 다행하겠습니다. 또 ‘갓가지 보양(補養)이 심자(心字)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신 분부는 더욱 감명(感銘)되는 바가 있습니다. 전하께서 이미 ‘심자(心字)’ 하나로 갓가지 보양의 주체를 삼으셨고 보면, 전하께서 반드시 이미 본원(本源) 위에 나아가 실속 있게 공부를 하시어 참으로 그 공효(功效)를 아시게 된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거나 병을 다스림이 본시 하나의 도리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본원이 이미 바로잡아지고 희로(喜怒)가 스스로 맞아지게 되면 수화(水火)가 모두 조화를 이루어 갓가지 병이 자연히 제거되는 것이고, 진실로 능히 이렇게 해가면 천지(天地)가 자리잡히고 만물이 육성(育成)되는 공적(功績)이 점차 이루어지게 되며 화협(和協)의 공효도 또한 이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p> <p>하니, 이목지관(耳目之官)으로서 규정(糾正)하기를 생각하지 않았음을 들어 비답하였다.</p>	<p>萬不敢聞者，伏乞收還其過中之教，而使皆仰日月之更，不勝幸甚。且於萬般補養，不出心字之教，益有感焉。殿下既知一心字爲萬養之主，則殿下必已於本源上實下工夫，而真知其效矣。治心治病，本自一道，本源既正，喜怒自中，則水火交濟，萬病自除，苟能是也，位育之功，可以馴致，而寅協之功，亦不外是矣。</p> <p>以職在耳目，不思糾正爲批。</p>
<p>영조 24권, 5년(1729 기유 / 청 옹정(雍正) 7년) 10월 11일(임자) 6번째기사 부응교 이현모가 입진을 윤택하도록 상소하다</p>	<p>부응교 이현모(李顯謨)가 상소하기를, “약원(藥院)에 대해 비답하신 분부를 이처럼 통절(痛切)하게 하셨으니, 신자(臣子)된 사람으로서 누가 감격스러워 눈물을 흘리며 구습(舊習)을 고치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진실로 이런 마음이 없다면 이는 사람다운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군신(群臣)들을 책망하시려는 것 때문에 드디어 약원의 진후(診候)까지 받지 않으려고 하심은 어찌 성상께서 마음이 정당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입진(入診)을 윤택하여 질병을 조심하는 방도를 다 하시고, 오로지 독책(督責)하기만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p>	<p>副應教李顯謨上疏言： 藥院批旨，痛切至此，爲臣子者，孰不感激涕泣，思革舊習？苟無是心，是無人心者也。至於因其責群臣，而遂斲藥院之診候，則豈非聖心之失正者乎？願許入診，以盡慎疾之方，毋專以督責爲主。</p> <p>批曰：“昨今下教，寔由於痛慨世道，</p>

	<p>하니, 비답하기를, “작금(作今)에 내린 분부는 곧 세상의 도의를 통절하게 개탄했기 때문이었는데, 대신과 제신(諸臣)들이 굳이 청하는 것에 따라 이미 입진하도록 윤택했다. 권면하고 경계한 말에 있어서는 유의하지 않아서 되겠는가?” 하였다.</p>	<p>而因大臣·諸臣之固請，既許入診矣。勉戒之言，可不留意?”</p>
<p>영조 24권, 5년(1729 기유 / 청 옹정(雍正) 7년) 10월 11일(임자) 7번째기사 영의정 홍치중 등 제신들이 의관을 불러 진찰하도록 청하다</p>	<p>영의정 홍치중(洪致中)과 찬수청 당상(撰修廳堂上) 윤순(尹淳)의 청대(請對)하여 입시(入侍)하였다. 홍치중이 아뢰기를, “제신(諸臣)들이 잘못된 죄 때문에 성상께서 편치 못하신 중에도 진찰(診察)을 윤택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감히 청대하였습니다.” 하니, 임금(英祖)이 이르기를, “나도 역시 하루아침이나 하루저녁 사이에 얼음이 풀리듯이 환연(渙然)해질 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나는 다만 선천(先天)에 붙이면서 오래 되면 자연히 잊어버리게 되지만 바라고 있는 것이다. 비록 빙탄(氷炭)이라 하더라도 얼음이 숯불에 들어가 녹지 않고 숯불이 얼음에 있어도 꺼지지 않게 하는 것과 같이, 다만 조정의 분위기를 조정(調停)해 가고 국가 형세를 유지해 가기 위하여 스스로 괴로움도 잊어버리고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의 국가 사세가 외롭고 약해짐이 이에 이르렀는데도 가슴속에 그득하여 속에서 버티고 있는 것은 단지 하나의 사자(私字)로서, 군부(君父)도 내가 알 바 아니요 국사(國事)도 내가 알 바 아니라고 여기고 있으니, 군부 대접을 너무도 박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며칠 이래로는 현훈증(眩暈症)이 심해졌지만 어제는 또한 억지로 세수하고 머리 빗고 앉아서 기다렸는데 마침내 차대(次對)를 거행하지 못하게 되고, 아침 수라(水刺)도 오후에야 비로소 들었다. 대신과 대간(臺諫)이 이미 나왔는데도 차대를 거행하지 못한 것은 그전에 없었던 일이다. 약 먹는 것과 병 치료를 내가 장차 무엇하러 하겠는가? 후세에 반드시 내가 나라를 다스려 가지 못했다고 비웃게 될 것이고, 내가 또한</p>	<p>領議政洪致中、撰修堂上尹淳請對入侍。致中曰：“因諸臣之有罪，聖侯未寧中，不許診察，故敢求對矣。”上曰：“予亦非謂一朝一夕之間，可以渙然氷釋，而予則只望其付諸先天，久則自忘矣。雖曰氷炭，欲使氷入炭而不鑠，炭在氷而不熄，只爲調劑朝象，扶持國勢，自忘其苦而爲之耳。今日國勢，孤弱至此，而滿腔撐中者，只是一私字，而以爲君父非我所知，國事非我所知，待君父不已太薄乎？數日來眩暈忒甚，昨亦強梳洗坐待，而次對竟不得行，朝水刺午後始進御，大臣、臺諫既來而不得行次對，古未有也。飲藥醫病，予將何爲？後世必笑，予不能治國，而予亦豈有歸拜聖考之顏乎？崔命相疏，亦出於疑阻矣。”致中及都承旨趙顯命連請召醫官診察，不許。淳曰：“殿下雖以此等下教，爲警動群下之道，而群下雖緣一時悶迫，或有奉承者，亦</p>

	<p>어찌 성고(聖考)께 돌아가 뵈올 날이 있겠는가? 최명상(崔命相)의 상소는 또한 의조(疑阻)에서 나온 것이다.”</p> <p>하였다. 홍치중과 도승지 조현명(趙顯命)이 잇따라 의관(醫官)을 불러 진찰할 것을 청하였으나, 윤희하지 아니하였다. 윤순이 아뢰기를,</p> <p>“전하께서 비록 그렇게 분부를 내리시어 군하(群下)들을 경동(警動)시키는 도리를 하고 계시므로, 군하들이 비록 한때 민망하고 절박함에 따라 더러 그대로 받드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또한 구습(舊習)을 참으로 해소하게 된 것이 아니고 특히 잠시 동안 우선 그대로 받들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전하께서 지성으로 해 가신다면 어찌 변동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는 하루아침에 이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p> <p>하니, 임금이 이르기를,</p> <p>“군사를 일으켜 대궐에 침입하는 수가 옛적에도 또한 있기는 했지만, 어찌 지난해와 같은 적이 있었겠는가? 시험삼아 그 근본을 생각해 보라.”</p> <p>하였다. 제신(諸臣)들이 잇따라 진찰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비로소 윤희하였다. 홍치중이 재자관(賚咨官) 김시유(金是瑜)가 연경(燕京)에 갈 때 쓸 은(銀) 5백 냥을 백급(白給)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윤희하고, 다음에는 준례로 삼지 말도록 명하였다. 윤순이 진달하기를,</p> <p>“남한산성 밖의 거민(居民)들이 개간(開墾)한 곳은 화전(火田)과 다를 것이 없으니, 양외 가경전(量外加耕田)의 예에 의하여 세를 거두지 말고 본부(本府)에 소속하기를 바랍니다.”</p> <p>하니, 임금이 이르기를,</p> <p>“묘당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도록 하라.”</p> <p>하였다.</p>	<p>非舊習，眞能消融，特暫時姑爲奉承耳。殿下若以至誠爲之，則豈有不動之理？而此非一朝可致之事也。” 上曰：“擧兵犯闕，古亦有之，而豈有如昨年者乎？試思其根本。” 諸臣連請診察，上始許。致中以齋咨官金是瑜行彼中所費銀五百兩，請白給，允之，命後勿爲例。淳陳南漢城外居民起耕處，與火田無異，請依量外加耕例，勿稅而屬之本府。 上曰：“令廟堂稟處。”</p>
<p>영조 24권, 5년(1729 기유 / 청 옹정(雍正)</p>	<p>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고려사(高麗史)》는 누가 찬술(撰述)한 것인가?”</p>	<p>壬寅/行召對。 上曰：“《麗史》誰所撰也?” 檢討官申致謹曰：“我朝河東府</p>

<p>7년) 12월 2일(임인) 1번째기사 소대에서 《고려사》 에 관하여 하문하다</p>	<p>하매, 검토했던 신치근(申致謹)이 아뢰기를, “우리 나라의 하동 부원군(河東府院君) 정인지(鄭麟趾)가 찬술한 것입니다.” 하고, 시강관 이종성(李宗城)이 아뢰기를, “일찍이 옛적의 말을 들어보건대, 세종 대왕께서 정인지로 하여금 《고려사》 를 찬술하게 할 때에 자주 유자(柚子)와 정과(正果)를 내리셨었는데, 인출(印 出)했을 때에 미처 세종께서 하람(下覽)하시고는 유자와 정과가 아깝게 되었 다는 분부가 계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아뢰기를, “사형 죄수를 청단(聽斷)할 적에는 음악을 정지하고 소선(素饘)을 들게 되는 데, 음악을 정지하는 것은 좋지만 소선을 드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하매, 이종성이 아뢰기를, “이는 예문(禮文)에 없는 것입니다. 음악을 정지함은 마음을 맑히며 재계(齋 戒)하고자 하는 뜻일 것입니다.” 하였다.</p>	<p>院君鄭麟趾所撰也。” 侍講官李宗城 曰：“嘗聞古語， 世宗大王使鄭麟趾， 撰《麗史》時， 頻賜袖子、正果， 及其 印出， 世宗下覽， 有柚子、正果可惜之 教矣。” 上曰：“聽斷死囚， 停音樂進 素饘， 停音樂可也， 進素饘何如？” 宗 城曰：“此無於禮之禮也。 停音樂， 則 欲清心齋戒之意也。”</p>
<p>영조 25권, 6년(1730 경술 / 청 옹정(雍正) 8년) 1월 29일(무술) 2번째기사 중궁전이 흥진을 겪지 않았으므로 경덕궁으 로 이어하다</p>	<p>중궁전(中宮殿)이 흥진을 겪지 않았다 하여 약원(藥院)에서 탄 처소로 옮겨 피할 것을 계청(啓請)하였다. 이날 경덕궁(慶德宮)에 이어(移御)했는데, 승지 와 주서(注書) 각 2원(員), 병조의 당상과 낭관(郎官) 각 2원, 도총부(都摠府) 의 당상 각 2원씩 모두 분차(分差)하여 입직(入直)하게 하였다. 내금위(內禁 衛)의 3번(番)은 각기 그 번장(番將)이 인솔하고서 윤번으로 입직하도록 하고, 사은(謝恩)하는 인원(人員)은 대전(大殿)에 숙배(肅拜)한 뒤 이튿날 중궁전에 숙배하도록 하였다. 모두 신묘년(5029)의 예를 따른 것이다.</p>	<p>以中宮殿未經疹患， 藥院啓請移避別 處。 是日， 移御慶德宮， 承旨·注書 各二員、兵曹堂郎各二員、都摠府堂 上各二員、皆以分差入直除出。 內禁 衛三番， 各其番將領率， 輪回入直， 謝 恩人員， 大殿肅拜後， 翌日肅拜中宮 殿。 竝依辛卯年例也。</p>
<p>영조 25권, 6년(1730 경술 / 청 옹정(雍正) 8년) 2월 27일(병인) 2번째기사</p>	<p>임금이 회란(回鑾)하는 길에 이천(利川)의 행궁(行宮)에 이르러, 여주(驪州)·광 주(廣州)·양근(楊根)·이천 네 고을에는 특별히 민역(民役)을 감해 주고, 여주의 사서(士庶) 중에 70세 이상은 음식물을 내리고, 80세 이상으로 두 번 행행(幸</p>	<p>上回鑾， 到利川行宮， 驪、廣、楊、利 四邑， 特減民役， 驪州士庶七十以上 者， 給食物， 八十以上， 再經幸行者， 勿論士庶， 特加一資。 遣史官， 存問</p>

<p>돌아오는 길에 여주·광주·양근·이천 등에 민역을 감해 주다</p>	<p>行)을 겪은 사람에게는 사서인(士庶人)을 막론하고 특별히 한 자급(資級)씩을 가자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관(史官)을 보내어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정호(鄭濼)를 존문(存門)하게 하였는데, 이때 정호의 나이 90에 가까웠다.</p>	<p>判府事鄭濼，濼，時年近九耄。</p>
<p>영조 25권, 6년(1730 경술 / 청 옹정(雍正) 8년) 3월 26일(갑오) 3번째기사 대사성 이덕수가 약원의 비답을 보고 심장 화기를 다스리는 방도를 아뢰다</p>	<p>대사성 이덕수(李德壽)가 찬집(纂輯)에 관한 일로 입시(入侍)하여 임금에게 아뢰기를, “근대 약원(藥院)에 내리신 비답을 보았더니, ‘지극한 애통으로 심장이 후끈 거리고 화기(火氣)가 치받으며 해수(咳嗽)가 나오므로 깊은 밤에도 문을 열어 화기가 내린 뒤에야 비로서 취침(就寢)한다.’는 등의 분부가 있었기에, 대소(大小) 신료(臣僚)가 모두 근심하고 민망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원컨대, 입시할 때 한 말씀 올리고 물러나고자 합니다. 송(宋)나라 때 조형(晁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호(諡號)는 문원공(文元公)인데, 그 이름이 비록 《속강목(續綱目)》에는 보이지만 《명신록(名臣錄)》에는 실려 있지 않으므로 성명(聖明)께서 혹 기억하지 못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일생 동안 섭심(攝心)을 일삼아 나이가 아흔이 넘도록 병없이 살다 죽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마음을 모름지기 공중에 두고 무엇하나 집착하지 않도록 해야 운용(運用)이 원전(圓轉)하게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언뜻 보면 그다지 특이한 것이 없는 듯하나 실제로 정묘(精妙)함이 비할 데 없습니다. 대개 마음이란 것은 비유하건대, 탄환(彈丸)과 같은 것입니다. 탄환을 소반 가운데에 놓으면 그 굴러 움직임이 지극히 원활하지만 만일 소반 가운데 우묵하게 패인 데가 있으면 탄환이 그 속으로 들어가 한 곳에 박히게 되어 그만 원활이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마음도 또한 이와 같아 그 본체(本體)야 얼마나 원활하고 밝겠습니까? 그러나 미색(美色)을 보면 곧 미색에 얽매이게 되고 좋은 음식을 보면 곧 좋은 음식에 얽매입니다. 유독 음식과 여색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분노(忿怒)가 너무 지나치면 그 분노에 얽매이고 비애(悲哀)가 너무 지나치면 그 비애에 얽매이는데, 칠정(七情)에 끌림이 모두 그렇지 않음이 없어, 이에 마</p>	<p>大司成李德壽，因纂緝事，入侍白于上曰：“近見藥院之批，有至慟熏心，火升咳嗽，深夜開戶，火降始就寢等教，大小臣庶，莫不憂悶。願因入侍之時，粗效一言而退。宋時有晁迥者。諡爲文元公，其名雖見於《續綱目》，而不載於《名臣錄》，聖明或未記有矣。其人一生，以攝心爲事，年逾九十，無病而卒。其言曰：‘心要實在空中，不令着一物，庶運用得轉。’此言驟見之，則若無甚異，而其實精妙，無比。蓋心之爲物，譬如彈丸。寘彈丸於盤中，則其轉動極圓活，若使盤中，有凹陷處而丸入其中，則拘礙一方，便不能圓活自在矣。心亦如此，其體何等圓明？而見美色，則便爲美色所拘結；見美食，則便爲美食所拘結。不獨食色爲然，忿怒太過，則爲忿怒所拘結，悲哀太過，則爲悲哀所拘結，七情所牽，無不皆然，於是心之體，失其流動。自在晁迥之言，頗有得於伯程子《定性書》，此不但却病而增壽，學問之工，</p>

음의 본체가 유동(流動)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조형의 말은 자못 백정자(伯程子)의 《정성서(定性書)》에서 얻은 것인데, 이는 비단 병을 물리치고 수(壽)를 더할 뿐만이 아니라 학문 공부에도 또한 이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대저 ‘병(病)’이란 글자는 ‘疒’ 밑에 ‘丙’이 있는데, ‘丙’은 불로서 온갖 병이 모두 화(火)에서 생김을 말한 것입니다. 의가(醫家)에서 오행(五行)을 오장(五臟)에다 분배(分配)해 놓았는데, ‘화’는 마음에 배속했습니다. 마음이 능히 원활하게 엮매이는 곳이 없으면 ‘화’가 낮아져 기혈(氣血)이 고르게 되니, 조형이 수(壽)를 이룬 것이 또한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신이 지극히 황송한 일인 줄 압니다마는 청컨대 신이 몸으로 겪을 바를 진달하겠습니다. 신이 젊었을 때 우연히 당(唐)나라 때의 방외(方外)의 선비가 저술한 글을 구해 보았는데, 치병(治病)을 논한 곳에 이르기를, ‘마음을 양쪽 발에 쏟고 있으며 화(火)가 낮아져 병이 제거된다.’고 하였습니다. 신의 나이 스물 일곱에 아버지의 상사를 당해 애통해 하다가 병이 났는데, 매번 기(氣)가 오르면 얼굴과 이마가 불처럼 뜨거워지며 약을 먹어도 또한 효과가 없었습니다. 신이 시험삼아 그 방법대로 해 보았더니 마음은 하나인데 발은 둘이어서 한 마음을 두 발에다 나누어 붙일 수 없었습니다. 이에 마음을 하나의 발에다 쏟아 보아도 또한 아득하여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남을 시켜 왼쪽 발을 누르게 했더니 그 사람이 문지르고 혹은 손톱으로 후벼서인지 마음이 비로소 집중되었습니다. 한참 있다가 오른쪽 발로 옮겨 여러 날 동안 이렇게 하자 크게 효과를 보았습니다. 매번 열이 오를 때 곧 이 방법을 쓰면서 한 식경쯤 있다가 손으로 얼굴과 이마를 만져 보면 찬 것이 물과 같았는데, 대개 열이 모두 내려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날을 하지 않고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조형의 말과는 다른 것이고 완전히 방술(方術)에 관계된 것이지만, 신이 직접 경험한 것이기에 다시 이처럼 끝에 진달하는 것입니다. 한가로이 계실 때 혹시라도 시험해 보신다면, 열을 내리게 하는 공력이 마땅히 약을 드시는

亦無以過此矣。夫病之爲字，疒下有丙，丙，火也，言百病，皆由於火也。醫家以五行，分配五臟，而火則配於心。心能圓活，而無所拘結，則火降而氣血調，迥之致壽，不亦宜乎？臣極知惶恐，而請復以臣所身經者陳之，臣於少時，偶得唐世方外士所著書見之，其論治病有曰：‘注心兩足，火降而病除。’臣年二十七，遭父喪，哀疚成疾，每氣升，則面額烘熱如火，服藥亦不見效。臣試依其方爲之，則心一也而足爲二，以一心，不能分屬於兩足。於是注心一足，亦茫蕩不能溱泊。遂使人按左足，則以人之摩軋，或爬剔也，故心始溱焉。良久移之右足，如是數日，大見其效。每火升之時，輒行此法，移時以手自捫面額，則其冷如水，蓋以火盡降故也。此則行之不多日，而可見其效。此與晁迥言有異，全涉方術，而以臣所親自經驗，故復此尾陳。倘於燕處之時，或能垂試，則其降火之工，當有倍於服藥矣。”上曰：“勉戒之言，略而盡，當留念焉。足二心一之言，苟非身親經驗，則必不能說得如是襯着，可謂知心上工夫矣。”

	<p>것보다도 배나 나올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이르기를,</p> <p>“면계(勉戒)한 말이 간략하고 극직하다. 마땅히 유념하겠다. 발은 들이고 마음은 하나라는 말은 진실로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면 반드시 이처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니, 마음 공부를 안다고 하겠다.”</p> <p>하였다.</p>	
<p>영조 26권, 6년(1730) 경술 / 청 옹정(雍正) 8년) 5월 1일(무진) 5 번째기사</p> <p>자정에 창경궁에서 실 화로 사옹원 궁방 부 엿 등 49칸이 소실되 다</p>	<p>3경(三更)에 창경궁(昌慶宮)에서 잘못하여 화재(火災)가 일어나 사옹원(司饗院) 및 궁방(弓房)과 소주방(小廚房) 도합 49칸이 소실(燒失)되었다.</p>	<p>三更, 昌慶宮失火, 司饗院弓房、小廚 房合四十九間燒灰。</p>
<p>영조 27권, 6년(1730) 경술 / 청 옹정(雍正) 8년) 7월 6일(계유) 1 번째기사</p> <p>빈청, 옥당, 약방 등에 서 평상시의 식사의 회복을 청했으나 따르 지 않다</p>	<p>빈청(賓廳)에서 진계(陳啓)하여 상膳(常膳)을 회복하기를 청하고, 옥당(玉堂)에서 세번이나 차자(筵子)을 올리고, 약방(藥房)에서 세 번이나 계사(啓辭)를 올렸으나, 모두 따르지 않았다.</p>	<p>癸酉/賓廳陳啓, 請復常膳, 玉堂三筵, 藥房三啓, 皆不從。</p>
<p>영조 27권, 6년(1730) 경술 / 청 옹정(雍正) 8년) 8월 30일(병인) 1번째기사</p>	<p>(전략) 조문명이 주전(鑄錢)하는 일을 순문(詢問)하여 결심코 시행하기를 청하자, 이집이 말하기를,</p> <p>“재화(財貨)는 국가에 소중한 바로서 돈을 사용하여 온 지가 지금 거의 5백년이나 되었습니다. 돈을 혁파(革罷)한다면 그만이지마는, 그렇지 않다면 다</p>	<p>(전략)文命請詢鑄錢事, 決意行之, 堦 曰: “財貨, 有國所重, 用錢今幾五 百年。 革錢則已, 不然, 則更鑄之外, 無他策矣。” 寅明曰: “聞貢物主人之</p>

<p>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함에 권혁의 일과 돈의 주조 문제를 논의하다</p>	<p>시 주전하는 외에 다른 계책이 없습니다.” 하였다. 송인명은 말하기를, “공물 주인(貢物主人)5332) 의 말을 듣건대, 조정에서는 쌀 1섬[石]에 값[代錢]을 6냥(兩)으로 정하여 놓고 줄 때는 쌀로 주는데, 그것을 팔게 되면 2냥의 돈에 지나지 않으나, 나라에 바치는 물건은 모두 돈으로 대신 갖게 되니, 지탱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하고, 김동필(金東弼)은 말하기를, “백성은 풍년(豐年)이 든 것을 원망하니, 지금 쌀 10말[斗]의 값이 1냥입니다. 그리하여 서울과 지방의 백성들이 모두 견딜 수 없다고 하는데, 이는 돈이 귀한 까닭입니다.” 하니, 송인명은 말하기를, “2만의 생동(生銅)을 사들인 뒤에 그냥 방치되어 있으니, 이것으로써 먼저 돈을 주조(鑄造)하면 어찌 안되겠습니까?” 하고, 김재로는 말하기를, “돈을 주조한다면 1년의 축적(蓄積)을 감당할 것입니다.” 하였다. 조문명이 주전을 칫재의 묘모(廟謀)5333) 로 삼아 힘껏 청하자, 입시(入侍)한 비국 당상(備局堂上)들도 한 목소리로 따랐으나, 유독 김취로만은 불편(不便)하다고 말하고는, 대충 말하기를, ‘반드시 사주(私鑄)와 도주(盜鑄)의 근심이 있을 것이라.’ 하고 특별한 소견(所見)은 없었는데, 임금이 의심을 가진 채 윤택하지 않았다.</p>	<p>言，朝家折定米一石，代錢六兩，而每以米給之，賣之不過爲二兩錢。進排之物，皆以錢辦之，故難支云。”東弼曰：“百姓怨豐年，卽今米十斗，價直一兩。京外之民，俱不能堪，此錢貴故也。”寅明曰：“二萬生銅，質來空實，以此先鑄，豈不可乎？”在魯曰：“鑄錢，則一年蓄積當之矣。”文命以鑄錢爲第一，廟謨力請，而入侍備堂，同聲和之。獨金取魯言不便，而泛曰：“必有私鑄盜鑄之患。”而別無所見，上持疑不許。</p>
<p>영조 28권, 6년(1730) 경술 / 청 옹정(雍正) 8년) 10월 10일(을사) 1번째기사 사옹원에 명하여 내일</p>	<p>임금이 주원(廚院)5456) 에 명하여 내일부터는 소찬(素饌)을 올리라 하니, 약방(藥房)에서 구전(口傳)으로 아직은 상膳(常膳)5457) 을 드시다가 때가 임박해지면 소찬을 드실 것을 계청(啓請)하였으나, 임금이 윤택하지 않았다.</p>	<p>乙巳/上命廚院，自明日進素饌，藥房口傳啓請姑進常膳，臨時行素，上不許。</p>

<p>부터는 소찬을 올리게 하다</p>	<p>약방 제조 김재로(金在魯) 등이 청대(請對)하여 아직은 상선(常膳)을 드시다가 앞으로 봐가면서 소선(素膳)을 들기를 청하니, 임금이 한참 생각하다가 이르기를, “갑진년(5462)의 예대로 16일부터 소선을 들겠다.” 하였다. 좌의정 이집(李堧)과 우의정 조문명(趙文命)이 구대(求對)하여 상선을 들 것을 청하려 하였다가 임금이 이미 약원(藥院)의 청에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그만두었다. 김재로가 말하기를, “유생(儒生)으로서 권무 군관(勸武軍官) 5463)이 될 사람을 장신(將臣)이 친히 만나보기가 쉽지 않은데, 혹 부적합한 자가 잘못 뽑히면 일이 모람(冒濫)에 관계되니, 미리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뒤로는 장신이 권무 군관이 될 사람을 청하고자 하면 먼저 묘당(廟堂)의 대신들과 서로 의논한 후에 진달케 함이 좋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윤택하였다. 조문명이 말하기를, “도성(都城) 안에서 혹 채전(菜田)을 경작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나, 벼농사만은 전부터 금해 왔습니다. 지금도 전대로 일체 금해야 합니다. 또 장목전(長木廩)이 있는 까닭에 집을 팔려는 자가 모두 집을 뜯어 재목을 전포에 주고 터는 밭을 만들어 경작하고 있는데, 일찍이 대간(臺諫)의 계청으로 금하였지만 지금도 그 폐단은 그전과 같습니다. 각별히 신칙할 것을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김재로가 말하기를, “선혜청(宣惠廳)은 권설(權設) 5464)된 아문(衙門)이지마는, 상피(相避)의 법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므로, 이집이 말하기를, “도제조(都提調)는 아문을 포핍(褒貶)할 수 있는데, 어찌 상피가 없을 수 있겠</p>	<p>藥房提調金在魯等求對，請姑進常膳，觀來頭行素，上良久曰：“依甲辰例，自十六進素膳。”左議政李堧、右議政趙文命求對，欲請常膳，以上已從藥院之請，遂已之。在魯曰：“以儒生勸武者，將臣未易親見，苟或不似，而有誤入者，則事涉冒濫，不可不預加慎重。此後則將臣欲請勸武之人，先與廟堂大臣，講確然後始爲陳達好矣。”上許之。文命曰：“都城之內，或耕菜圃，不是異事，而禾穀自前禁斷。今亦依前一切禁之。且有長木廩之故，欲賣其家者，輒皆毀給其材，家垆則作爲耕種之田。曾因臺啓申禁，今則其弊如前。請各別申飭。”上從之。在魯曰：“宣惠廳，不可以權設衙門，無相避之法矣。”堧曰：“都提調褒貶衙門，何可無相避乎？”上從之。文命曰：“聞刑曹判書金取魯之言，泮人之所爲，極可駭矣。北部壯義洞邊，禁松之令不行，故使人審察，則泮人輩，亂斫生松，人欲捉之，以斧斫人，越城逃走，仍匿泮中。凡禁亂不敢入泮</p>
-----------------------	---	---

	<p>습니까?”</p> <p>하니, 임금의 그대로 따랐다. 조문명이 말하기를,</p> <p>“형조 판서 김취로(金取魯)의 말을 듣건대, 반인(泮人)5465)의 한 것이 매우 해괴하다 합니다. 북부(北部)의 장의동(壯義洞) 주위에 금송(禁松)의 정령(政令)이 행해지지 않기에 사람을 시켜 살펴봤더니, 반인의 무리들이 생솔을 함부로 베어가기에 사람들이 잡으려고 하니 도끼로 사람을 찍고 성을 넘어 도주하여 그대로 반촌(泮村) 안에 숨었는데, 모든 금란(禁亂)에도 반촌엔 감히 들어갈 수 없었기에 잡아 낼 길이 없다 하니, 참으로 민망한 일입니다.”</p> <p>하니, 임금이 대사성으로 각별히 신척할 것을 명하였다. 뒤에 재생(齋生)들이 이 일로 권당(捲堂)5466) 하니, 임금이 위유(慰諭)하기를,</p> <p>“이것은 여러 유생들을 성취시키기 위해서였다.”</p> <p>하니, 여러 유생들이 다시 들어갔다.</p>	<p>中。故無路提出，此誠可悶矣。”上命大司成，各別申飭，後齋生，以此捲堂。上慰諭曰：“此玉成諸生也。”諸生還入。</p>
<p>영조 28권, 6년(1730 경술 / 청 옹정(雍正) 8년) 10월 21일(병진) 2번째기사</p> <p>약방에서 대비와 임금이 상선을 회복할 것을 청하다</p>	<p>약방(藥房)에서 임금이 먼저 상선(常膳)으로 회복하여 동조(東朝)도 상선으로 회복하도록 우러러 권할 것을 계청하고, 또 내일의 삼우제(三虞祭)를 집행(攝行)할 것을 청하니, 답하기를,</p> <p>“동조께서 상선으로 회복하도록 할 일은 마땅히 우러러 아뢰겠지만, 나는 형편을 보아서 하겠다.”</p> <p>하였다.</p>	<p>藥房啓請先復常膳，仰勸東朝常膳，又請明日三虞祭攝行，答曰：“東朝復常膳，當仰稟，予則觀勢爲之。”</p>
<p>영조 28권, 6년(1730 경술 / 청 옹정(雍正) 8년) 11월 20일(을유) 1번째기사</p> <p>선비들에게 시험을 보여 수석을 차지한 허후에게는 직부 전시하</p>	<p>반궁(泮宮)5538)에 황감(黃柑)을 나눠 주고 선비들에게 시험을 보여 수석(首席)을 차지한 허후(許逅)에게는 직부 전시(直赴殿試)5539) 하게 하였다.</p>	<p>乙酉/頒柑于泮宮，試士，賜居首許逅直赴殿試。</p>

게 하다	<p>임금이 야대(夜對)에 나아가 《국조보감(國朝寶鑑)》을 강(講)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조종(祖宗)의 도(道)를 실추(失墜)하지 않는 길은 건극(建極)5553) 에 있고 건극의 도는 무편 무당(無偏無黨)에 있으니, 이 뜻을 군신 상하는 마땅히 척념(惕念)해야 할 것이다.” 하니, 승지 정우량(鄭羽良)이 말하기를, “전하의 마음은 비록 이러하시지만, 현재 효험(效驗)을 봄은 적고 폐단이 생기는 쉬워 스스로 꺾이기가 쉽습니다. 만일 굳게 지키고 흔들리지 않으시면 응당 처음에는 어렵고 결끄럽겠지만, 끝내는 쾌활(快活)하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나도 빠른 효과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시상(時象)을 조제(調劑)하기 어려움은 학문의 공부보다 어려우나, 끝까지 해 나가면 어찌 그 효과가 없겠는가? 피차(彼此)가 함께 공직(供職)치 않겠다 하여 성식(聲息)에 미치지 못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함께 조정에서 주선(周旋)하여 정의(情意)가 조금씩 통해가니, 이것이 그 효과이다.” 하니, 정우량이 말하기를, “신이 산릉(山陵)에 있을 때 당상(堂上) 신사철(申思喆)과 이진망(李眞望)이 다정하기가 평생지우(平生之友) 같은 것을 보니, 효과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정우량에게 묻기를, “효장 세자(孝章世子)의 묘(廟)에도 담제(禫祭)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입묘(入廟)는 마땅히 담제 뒤에 있어야 하는가?” 하니, 정우량이 명백하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임금이 중관(中官)5554) 을 시켜 가례(家禮)5555) 를 가져오게 하여 정우량에게 묻기를,</p>	<p>○上御夜對，講《國朝寶鑑》。上曰：“不墜祖宗之道，在於建極，建極之道，在於無偏無黨，此義君臣上下當惕念也。”承旨鄭羽良曰：“聖心雖如此，目下少見效而易生弊，自易撓攘。若堅守不撓，則自當始艱澁，而終快活矣。”上曰：“予非望速效。調劑時象之難，難於學問工夫，而終始做去，豈無其效乎？彼此不併供職之時，聲息不相及，今同周族於朝廷，情志稍通，此其效也。”羽良曰：“臣在山陵時，見堂上申思喆、李眞望，懽若平生，不可謂無效矣。”上詢於羽良曰：孝章廟，似有禫祀，入廟當在禫之後耶？”羽良不能明對。上命中官，持《家禮》來問于羽良曰：“中月而禫云者，何謂也？”羽良不能對。史官洪昌漢曰：“《喪禮備要》，爲東方禮家三尺。王家亦當遵用矣。”上曰：“其冊比《家禮》尤詳備，在潛邸時見之，闕內無印本矣。”命中官，頒柑橘一盤于諸臣。</p>
------	--	---

	<p>“중월이담(中月而禫)이라 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였으나, 정우량이 대답하지 못하였다. 사관(史官) 홍창한(洪昌漢)이 말하기를, “《상례비요(喪禮備要)》는 동방 예문가(禮文家)의 삼척(三尺)5556)입니다. 왕가(王家)에서도 마땅히 준용(遵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책이 가례(家禮)에 비교하여 더 상비(詳備)하였는데, 내가 잠저(潛邸) 때에는 보았으나 대궐 안에는 인본(印本)이 없다.” 하고는, 중관을 시켜 감귤(柑橘) 한 쟁반을 여러 신하들에게 나눠 주었다.</p>	
<p>영조 28권, 6년(1730) 경술 / 청 옹정(雍正) 8년) 12월 18일(임자) 2번째기사 이종성이 주금의 철회와 구임의 문제를, 탐관을 징계하는 문제 등 시폐를 논하다</p>	<p>(전략) 이종성이 말하기를, “현재 폐해를 구제하는 계책을 마땅히 내정(內政)을 닦고 외이(外夷)를 물리침을 선무(先務)로 하여야 하니, 삼남(三南)의 인심을 단단히 결합(結合)시키고 서북(西北)의 변무(邊務)를 강구한 후에야 일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심을 단단히 결합시키는 것이 비록 제일 급무이긴 하지만, 단단히 결합시키는 방법은 역시 재용(財用)을 넉넉히 하는 데에 있는 것이지 예사로운 책려(責勵)만으로써 목첩(目睫)의 위급을 구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옛날 사마광(司馬光)5597) 도 묘사(廟社) 제사(祭祀)를 줄이기를 요청한 말이 있었는데, 신이 이 말을 인용하면서 어찌 애통하지 않겠습니까마는, 한 기운이 감통(感通)하면 반드시 정례(情禮)에 크게 해로움은 없을 것입니다. 신은 종묘(宗廟) 제향의 절차도 마땅히 권의(權宜)에 따라 줄여야 된다고 여깁니다. 갑자년(5598) 이괄(李适)의 난(亂)5599) 때에 인목 대비(仁穆大妃)도 일시 궐공(闕供)한 일이 있었습니다. 비록 천승(千乘)의 나라에 태모(太母)5600)의 존엄으로써도 환란(患亂)을 만났을 때에는 역시 예절대로 공봉(供奉)을 할 수 없습니다. 신은 반드시 이것을 전감(前鑑)으로 삼아 자전(慈殿)의 공선(供膳) 절목(節目)도 의당 권의(權宜)에 따라 재감(裁減)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병자년(5601)에 남</p>	<p>宗城曰：“目今救弊之策，宜先內修外攘，而固結三南人心，講究西北邊務，然後可以爲之矣。固結人心，雖是第一急務，而固結之道，亦在於足財用，不可以尋常責勵，而可能救眉睫之急。昔司馬光有請減廟社祭之言，臣之引用此言，寧不哀痛，而一氣感通，必無大害於情禮。臣以爲宗廟祭享之節，亦宜權宜減省。甲子適變時，仁穆大妃，一時闕供，雖以千乘之國，太母之尊，若值患亂之時，亦不能供奉如禮。臣以爲必須監此，慈殿供膳之節，亦宜從權裁減。丙子圍城，御膳絕乏，適有一雉，落自空中，時人以爲奇。臣願以此爲監，常時御供，亦宜蠲減。壬辰播遷，輦次東坡，君臣上下，一日闕</p>

한산성(南漢山城)이 포위되었을 때 어선(御膳)이 떨어졌는데 마침 썩 한 마리가 공중에서 떨어졌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기이(奇異)하게 여긴 일이 있습니다. 신은 원컨대 이것을 거울삼아 평상시의 어공(御供)도 견감(蠲減)하시기를 바랍니다. 임진년(5602)의 파천(播遷) 때 어연(御輦)이 동과역(東坡驛)에 머물고 있으면서 군신(君臣) 상하가 하루 동안 궤식(闕食)했는데, 장단(長湍)에서 수라(水刺)가 마침 당도하니 여러 왕자들이 손으로 거친 여반(糲飯)(5603)을 움켜 먹었습니다. 이것으로써 살펴본다면 나라가 평안한 후에야 여러 궁가(宮家)도 평안하게 될 것이니, 신은 원컨대 이것으로 마음을 먹고 여러 궁가에서 절수(折受)하는 것을 모두 견과(蠲罷)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분발 진작할 방도를 생각해 보면 마땅히 재용(財用)을 저축하고 인심을 결합시키는 것으로써 근본을 삼아야 할 것이니, 근본이 서지 못하면 비록 단속하여 다스리는 말절(末節)에 잔달게 맞춰나가려 해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종묘의 제향(祭享)과 자전(慈殿)의 공봉을 신이 어떻게 감히 줄일 것을 청하겠으며, 또 어떻게 감히 어공(御供)을 줄일 것을 말하겠습니까마는, 신으로서 임진(壬辰)·병자(丙子)의 변란이 조석(朝夕)에 닥쳐 있다고 믿기 때문에, 만일 일이 발생하기 전에 충성을 다하지 않는다면, 후일 비록 온 집안이 순절(殉節)하더라도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전하께서 먼저 용도를 줄이시고 대신과 백관(百官)들을 칙려 하여 능히 직책을 다하지 못한 자가 있으면 명백히 견벌(譴罰)을 보이소서. 그렇게 해도 재용이 모이지 않고 국세(國勢)가 떨치지 않는다면 신은 청컨대 망언(妄言)의 주륙(誅戮)을 달게 받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종묘(宗廟)와 태후(太后)의 봉공(奉供)을 줄이라고 청한 사람을 만약 그 당시의 임금으로서 보게 되면 반드시 촉범(觸犯)(5604)이라 할 것이다. 내가 비록 덕이 없는 사람이지만, 어찌 유신(儒臣)의 말을 그르다고 여기겠는가? 유신의 말은 바로 나의 마음이고 나의 마음은 바로 유신의 말이다. 다만 실행하는

食，長湍水刺適到，諸王子手掬麤糲。以此觀之，國家安然後，諸宮亦安，臣願以此爲心，諸宮折受，并爲蠲罷。顧今奮發振作之道，宜以蓄財用結人心爲本，本若不立，則雖欲規規於治末，不可得也。宗朝之享，慈殿之奉，臣豈敢請減，亦豈敢曰蠲減御供，而臣則知壬丙之變，迫在朝夕，故若不先事效忠，則他時雖闔門殉節，豈有補哉？殿下，先自減省，飭勵大臣及百官，有不能率職者，明示譴罰。如是而財用不聚，國勢不振，則臣請伏妄言之誅焉。”上曰：“請減宗廟、太后之奉者，若使時君見之，必以爲觸犯。而予雖否德，豈以儒臣之言，爲非耶？儒臣之言，卽予之心也，予心，卽儒臣之言也。惟在行之而已。豈但體念者乎？”宗城又以西北兩道監、兵使，十年久任，西之江邊七邑、北之六鎮、三·甲守令，另擇之意，縷縷陳達，上并嘉納。

	<p>데에 있을 따름이다. 어찌 다만 체념(體念)할 뿐이겠는가?” 하였다. 이종성이 또 서북(西北) 양도(兩道)의 감사(監司)·병사(兵使)는 10년씩 오래 맡기고 서도(西道)의 강변 칠읍(江邊七邑)5605) 과 북도의 육진(六鎭)5606) , 삼수(三水)·갑산(甲山) 등의 수령은 특별히 가려 써야 한다는 뜻으로 상세히 진달하였는데, 임금이 모두 가납(嘉納)하였다.</p>	
<p>영조 28권, 6년(1730) 경술 / 청 옹정(雍正) 8년) 12월 29일(계해) 3번째기사 비변사에서 인삼에 다른 물건을 섞어 제조하는 것에 대해 사형할 것을 청하다</p>	<p>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약재(藥材) 중에서는 인삼(人蔘)이 가장 소중하기에 간계(奸計)를 써서 밀조한 자는 은전(銀錢)을 사주(私鑄)한 죄와 똑같이 다루어 왔지만, 근래에 법령이 해이하여 서울의 간사한 무리들이 마음대로 계(契)를 만들어 간혹 다른 물건을 섞어 아교로 붙여서 인삼을 만들어 이득을 독점하고 있으니, 참으로 매우 한심한 일입니다. 이 뒤로도 이러한 무리들이 만약 전일과 같이 인삼을 만든다면 일죄(一罪)5623) 로써 논죄할 것이며, 서북(西北) 지방의 인삼을 채취(採取)하는 곳에도 지방관에 분부하여 똑같이 엄중히 신칙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윤허하였다.</p>	<p>備邊司啓: “藥料中人蔘, 最爲要重, 用奸造成者, 與造銀錢之罪同。 而近來法令解弛, 京中奸細輩, 肆然設契, 間雜他物, 膠付造蔘, 以專其利, 誠極寒心。 此後此輩, 如或依前造蔘, 則論以一罪, 西北採蔘處, 分付地方官, 一體嚴飭焉。” 允之。</p>
<p>영조 29권, 7년(1731) 신해 / 청 옹정(雍正) 9년) 3월 21일(갑신) 1번째기사 조명익이 판부사 정호의 청렴함과 성천 부사 윤용의 청백을 아뢰다</p>	<p>판부사(判府事) 정호(鄭濞)에게 식물(食物)을 내리고, 그 아들 정희하(鄭羲河)에게 가까운 고을을 주어 봉양하기에 편리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승지 조명익(趙明翼)의 계사로 인해서였다. 조명익이 아뢰기를, “판부사 정호는 일찍이 선조(先祖) 때에 호연(浩然)하게 떠나 염퇴(恬退)한 한 절조는 옛사람도 하기 어려운 바로써 작록(爵祿)은 사양할 수 있으나 관득(辦得)은 더욱 어렵습니다. 하물며 지위가 수상(首相)에 이르러 집에 한 짐의 곡식이 없었으니, 만약 염리(廉吏)를 뽑는다면 그가 마땅히 첫째를 차지할 것이라는 것이 바로 한 세상의 공론입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성천 부사(成川府使) 윤용(尹容)은 그의 아버지 윤지인(尹趾仁)의 청백(清白)을 이어받았으니, 역시 장려해 탁용하는 가운데 들어야 합니다.”</p>	<p>甲申/命賜食物于判府事鄭濞, 其子羲河, 畀以近邑以便養。 因承旨趙明翼啓也。 明翼, 以“判府事鄭濞, 曾於先朝, 浩然而去, 恬退一節, 古人所難, 爵祿可辭, 辦得尤難。 況位至首相, 家無礪石, 若選廉吏, 此當居首, 乃一世公論也。” 又以成川府使尹容能繼其父趾仁之清白, 亦宜在於獎擢之中矣。” 上是之, 命銓曹陞用, 且有是命。</p>

	<p>하니, 임금의 옳게 여겨 전조(銓曹)로 하여금 승용(陞用)하게 하고, 또 이렇게 명한 것이다.</p>	
<p>영조 29권, 7년(1731 신해 / 청 옹정(雍正) 9년) 3월 23일(병술) 1번째기사 옹주의 죽음으로 슬프 하다</p>	<p>임금이 현기증이 있어 약원(藥院)에서 성심산(醒心散)을 올릴 것을 청하였다. 대개 옹주(翁主)의 참척(慘慼)5717) 을 막 꺾어 성상의 마음에 슬픔이 있어서였다.</p>	<p>丙戌/上以眩候，藥院請進醒心散。蓋以新經翁主夭感，聖心有疚也。</p>
<p>영조 29권, 7년(1731 신해 / 청 옹정(雍正) 9년) 4월 13일(을사) 1번째기사 진소하지 않고 대각이 함께한 일에 대해 재 상을 독책하다</p>	<p>내국(內局)에서 상후(上候)를 입진(入診)하고 자보(滋補)하는 약제(藥劑)를 올릴 것을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옛말에 이르기를, ‘만 가지 보약(補藥)이 모두 헛것이다.’라고 하였다. 시험삼아 오늘날의 시상(時象)을 보건대, 내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 이와 같으니, 목은 나무뿌리와 썩은 풀로 효과 보기를 바라다면 옳은 일이겠는가? 경들은 어찌하여 이 무리들을 조제(調劑)하지 않는가?” 하였다. 홍치중(洪致重)이 말하기를, “받들지 못한 것은 본래 여러 아랫사람들의 죄이니, 여러 아랫사람에게 죄가 있으면 죄를 줄 뿐이지 어찌 성심(聖心)을 번거롭게 성후(聖候)를 손상(損傷)하는데 이르게 하십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임금이 있고 신하가 있으면 의당 상(賞)이 있고 벌(罰)이 있게 마련인데 내가 일체 그냥 버려 두었다고 사책(史冊)에 쓴다면, 후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함께한 일은 진소(陳疏)해도 되는데 반드시 함께하여 과장하였으니, 그 뜻이 교밀(巧密)하였다. 이광운(李光運)·정홍제(鄭弘濟)가 홀로 마련한 것이 아니요 반드시 시킨 사람이 있을 것인데, 나는 그 마음이 무장(無將)5747) 이라고 생각한다. 폐함(閉閣)한 후에 감히 이러한 일을 한 것은 참으로 임금을 하찮게 본 것이다. 명 태조(明太祖)가 ‘신하로서 임금 보기를 원</p>	<p>乙巳/內局入診上候，請進滋補之劑，上曰：“古語云：‘萬般補藥，皆虛僞。’試看今日之時象，觸惱予心者如此，而欲望效於陳根腐草，其可乎？卿等何不調劑此輩也？”洪致中曰：“不能奉承，固群下之罪。而群下有罪，罪之而已，何至煩聖心而妨聖候也？”上曰：“有君有臣，當有賞有罰，而予一切置之，書之史冊，後人亦以予爲何如也？以合啓事疏陳可也，而必以合啓張大者，其意巧密。非李光運、鄭弘濟所獨辦，必有指使之人，予則以爲其心無將也。閉閣之後，敢爲此舉，眞視君若無者。明太祖以臣視君一言，黜孟子之享，剛大氣像，心常欽仰，使明祖，視今日群下，則俱難免無將之罪矣。”致中曰：“指使者現發，則雖加重辟，人君不當先加臆逆也。”時，上參用老少兩黨，</p>

	<p>수같이 한다’는 한 마디 말로써 맹자(孟子)를 출향(出享)하였으니, 그 강대(剛大)한 기상을 마음으로 항상 흠모하였는데 명 태조로 하여금 오늘날의 여러 신하를 보게 한다면, 모두 무장(無將)의 죄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p> <p>하였다. 홍치중이 말하기를, “시킨 자가 적발된다면 비록 중벽(重辟)5748) 에 처하더라도 임금은 먼저 억측을 가해서는 안됩니다.”</p> <p>하였다. 이때 임금이 노론(老論)·소론(少論) 두 당(黨)을 섞어 써서 시고 짚것을 조화했는데, 성의(聖意)가 금석(金石)처럼 굳었다. 그러나 혹 합계가 나온 뒤 그것으로 인해 계속해 발론함이 있을까 염려하여 상신(相臣)을 독책(督責)함이 이와 같았던 것이다. ‘명 태조를 흠양한다.’는 하교에 이르러서는 우연히 발론(發論)하여 한때 말한 실수에 불과했는데, 그후 한원진(韓元震)이 길가에 전해진 말로 상소하여 광구(匡救)하기에 이르렀고 말을 많이 부연(敷衍)하여 마침내 성상의 노여움을 크게 촉발시켜 과중(過中)한 처분이 있게 되었다.</p>	<p>調劑酸醎，聖意堅如金石。而或慮合啓發後，因而有繼發之論，所以督責相臣者如此。而至於欽仰明祖之教，偶然發之，不過一時辭令之失，而其後韓元震，以道路之傳，至於上疏匡救，語多推衍，終至大觸聖怒，致有過中之處分。</p>
<p>영조 29권, 7년(1731 신해 / 청 옹정(雍正) 9년) 4월 25일(정사) 1번째기사 대신과 비국 당상·영 접 도감 당상을 불러 보고 청 사신의 접대 를 의논하다</p>	<p>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영접 도감 당상(迎接都監堂上)도 역시 함께 들어와 도감의 접대하는 일로 진달하여 말하기를, “상칙사(上勅使)는 사람됨이 염간(廉簡)하여 요구하는 물건이 없고 단지 작은 머리빗 수십 개를 요구하면서 말하기를, ‘돌아가 아손(兒孫)들에게 주고자 한다.’하였습니다. 부칙사(副勅使)는 요구하는 것이 한정이 없고 모든 물건을 다 은(銀)으로 대신 주기를 원합니다.”</p> <p>하니, 임금이 웃으며 말하기를, “옹정(雍正)5754) 역시 은을 사랑했는데, 이 무리야 어찌 족히 말할 것이 있는가?”</p> <p>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청하기를, “인삼(人蔘) 2근(斤)과 백면지(白面紙) 수백 권을 몰래 부칙사에게 주어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p>	<p>丁巳/上引見大臣備局堂上。 迎接都監堂上，亦同入，陳都監接待事，以爲：“上勅爲人廉簡，於無所求，只索小梳數十箇曰：‘欲以歸遺兒孫。’ 副勅則需索無厭，凡物所需，皆願以銀代之矣。” 上笑曰：“雍正亦愛銀，此輩何足言也？” 諸臣請以人參二斤，白綿紙數百卷，密贈副勅，以悅其心。 上許之。 掌令李龜休申前啓，不允。</p>

	<p>하니, 임금의 허락하였다. 장령 이귀휴(李龜休)가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희하지 않았다.</p>	
<p>영조 29권, 7년(1731 신해 / 청 옹정(雍正) 9년) 6월 3일(갑오) 1 번째기사 가뭇이 심하니 신하들은 직언을 하라고 전교하다</p>	<p>(전략) 아! 슬프다. 우리 백성이 도대체 무슨 죄인가? 두 번이나 기우제(祈雨祭)를 올렸는데도 보잘것없는 정성이 감동시키지 못하여神明(神明)이 나를 돌보지 않고 명응(冥應)이 더욱 막막하니 마치 불에 타는 듯하다. 극진한 도리를 쓰지 않아서는 안될 것이니 마땅히 먼저 자신을 책하여 이 회포를 조금 펴는 바이다. 그리고 지금은 이미 상시(常時)와 다르니 피전(避殿)5819) 하는 거조는 논할 바가 아니요, 오늘부터 상선(常膳)을 감하고 본전(本殿)의 주방(酒房)을 정지하며, 시사(視事)와 법강(法講)은 오늘부터 정당(正當)의 월대(月臺)5820) 에서 시행하여 폄손(貶損)하는 뜻을 보일 것이다. 아! 너희 근밀(近密)의 신하들은 나의 이 초교(草敎)를 윤색(潤色)하고 의당 정부에서 널리 직언(直言)을 구하라. 내가 마땅히 가납(嘉納)할 것이요, 말이 비록 맞지 않는다 해도 죄를 주지 않을 것이니 시상(時象)을 험잡한 자는 바로 내 뜻을 저버린 것이니, 모두 자세히 알라.” 하였다. 정원에서 대초(代草)하지 말고 곧바로 비망(備忘)으로 반포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p>	<p>嗚呼! 顧予寡躬所倚恃者, 惟卿士暨民生, 而諸卿以時象爲重, 不恤眇予。生民則倒懸岌嶮, 而蘊隆之災又若是, 爲其君未能協我臣僚, 未能濟我蒼生, 豈徒無南面之樂, 他日將無歸拜列祖之顏。思之至此, 不覺呼咽。因予否德, 致朝象于此, 哀! 我元元, 亦獨何辜? 再薦牲幣, 微誠未格, 神不顧我, 冥應愈邈, 如焚如燠。其在靡不用極之道, 宜先責躬, 小伸此懷。而今既異於常時, 避殿之舉, 非所可論, 自今日減常膳, 停本殿酒房, 視事、法講, 自今日於正堂月臺爲之, 以示貶損之意。咨爾! 近密之臣, 潤予草敎, 宜自政府, 廣求直言。予當嘉納, 言雖不中, 予不爲罪, 而其挾雜時象者, 乃負予意, 咸須知悉。 政院請勿爲代草, 直以備忘頒布, 上從之。</p>
<p>영조 29권, 7년(1731 신해 / 청 옹정(雍正) 9년) 6월 3일(갑오) 5 번째기사 가뭇이 심하여 대신들</p>	<p>임금이 가뭇을 민망하게 여겨 송조(宋朝)의 연영전(延英殿)의 고사(故事)에 의해 대신과 비국 당상(備局堂上)이 와서 모일 것을 명하여 진구(賑救)할 계획을 상확(商確)하게 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건백(建白)한 것은 주전(鑄錢)하는 한 가지를 벗어나지 못하였는데, 의논도 일치되지 않았으며, 임금의 뜻 역시 어렵게 여겼다. 영성군(靈城君) 박문수(朴文秀)가 진달하기를,</p>	<p>上以憫旱, 命依宋朝廷英故事, 命大臣、備堂來會, 令商確賑救之策。諸臣所建白者, 不越乎鑄錢一事, 而議有參差, 上意亦難之。靈城君朴文秀陳貿穀爲先務, 蠲減大同, 亦爲儲蓄之</p>

<p>을 모아 진휼책으로 주전과 무곡에 대해 의논하다</p>	<p>“무곡(貿穀)이 급선무이며 대동미(大同米)를 견감하는 것도 역시 저축하는 방법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어공(御供)을 감하더라도 실효(實効)가 아니니 오직 진상(進上)을 제감(除減)해야만 쌀을 저축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신하들은 물러가지 말고 모두 빈청(賓廳)에 모여 곡식을 여유 있게 하는 대책을 강구해 아뢰라.” 하였다.</p>	<p>道。上曰：“雖減御供，亦非實效，惟除減進上，方可以貯米也。裕穀之策，其令諸臣勿退，皆會賓廳，講究以聞。”</p>
<p>영조 29권, 7년(1731 신해 / 청 옹정(雍正) 9년) 6월 4일(을미) 8번째기사 가뭄이 심하여 백성을 구제하는 대책으로 곡식을 저축하는 계책을 강구할 것을 전교</p>	<p>전교하기를, “가뭄이 이와 같으니, 어찌 삼농(三農)5825) 을 바라겠는가? 농사를 생각하면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다. 어제 비망기에서도 역시 하늘에 응답하는 것은 실제로 해야 한다는 뜻을 유지했었다. 오늘날 유유(悠悠)5826) 한 만사 가운데서 백성을 구제할 계책을 강구하는 것 만한 것이 없고, 백성을 구제하는 방도는 곡식을 저축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없다. 그런데 경외(京外)의 저축이 텅 비었으니, 비록 곡식을 저축하고자 해도 장차 어떻게 시행하겠으며 비록 감선(減膳)을 하더라도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금년 탄일(誕日)·동지(冬至)의 방물(方物)·물선(物膳) 가운데 동조(東朝)5827) 에 봉진(封進)하는 것이외에는 특별히 임시로 감해 그 가미(價米)로서 조금이나마 곡식을 저축하게 하여 위에서 감손(減損)하는 뜻을 보이라. 안으로는 대신 경재(卿宰)와, 밖으로는 도신(道臣)·수재(守宰)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곡식이 생기는 일이라면 어찌 내 뜻을 본받지 않겠는가?” 하였다. 이때 가뭄의 재변이 극심해서 임금이 백성을 걱정하고 돌보는 것이 애연(藹然)하게 지성에서 나와 어공(御供)을 감하고 여러 신하들을 신칙하는데 이르렀으니, 조정 신하들은 마땅히 마음과 힘을 다하여 임금의 근심을 덜어주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 여러 재상들이 헌의(獻議)한 것은 백관들</p>	<p>教曰： 亢旱若此，奚望三農？言念民事，罔知攸爲。昨日備忘，亦諭應天以實之意。而〔今〕日悠悠萬事，莫若講究救民之策，救民之道，亦莫先於儲穀。而京外蓄積枵然，雖欲儲穀，將何施焉，其雖減膳，又何益哉？今年誕日與冬至方物、物膳，東朝所封進者外，特爲權減，以其價米，少補儲穀，以示損上之意。內而大臣、卿宰，外而道臣、守宰，苟有生穀之道，豈不體予意哉？ 此時旱乾之災極矣。上之所以憂恤民生者，藹然出於至誠，至於減御供而飭群臣，則廷臣所當殫竭心力，以紓宵旰之憂。而其時諸宰之獻議者，不過曰減百官之祿也，省犧牲之料也，守令月廩之分半留儲也，鑄錢議之可行也，營</p>

	<p>의 녹봉을 감하는 것과 희생(犧牲)의 요(料)를 줄이는 것과 수령들의 월름(月廩)을 반으로 나누어 저장하는 것과 주전(鑄錢)하는 의논을 실천하는 것과 영진사(營賑使)를 보내자는 것에 지나지 않았으니, 그들이 말한 바가 거의 모두 용잡하고 잔달았으며 한 사람도 용도를 절약하고 사치를 없애자는 말을 하여 임금이 구조(救助)하려는 뜻을 돕지 못했다. 또한 자기부터 시작하여 그 사치하고 과장(誇張)하는 습성을 없애지 못했으니 진구(賑救)하는 계획이 끝내 효과가 없었고 한갓 태만하고 한만(閒漫)하여 세월만 보낸 데로 돌아간 것이 마땅하다 하겠다.</p>	<p>賑使之當送也。其所爲言，類皆冗瑣，未有一人能以節用祛奢之言，仰補求助之聖意。亦未能先自己始，以去其侈靡浮夸之習，宜乎賑救之策，迄無成效，而徒歸佗泄也。</p>
<p>영조 29권, 7년(1731 신해 / 청 옹정(雍正) 9년) 6월 10일(신축) 5번째기사 간원이 금주령을 더욱 엄하게 할 것을 아뢰 다</p>	<p>간원(諫院) 【정언(正言) 윤흥무(尹興茂)이다.】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희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곡식과 재물을 소모하는 것은 술의 피해가 가장 심한데 근래에는 금주(禁酒)가 해이해졌으니, 청컨대 단속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법이 사대부(士大夫)에게는 행해지지 않는데 반드시 상천(常賤)에게만 행하려고 하니, 나는 실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간관이 일찍이 세력 있는 자는 적발하지 못하고 범연히 엄하게 금지할 것을 청하니, 가히 근본은 버려두고 말단만 다스리는 것이라 하겠다.” 하였다. 윤흥무가 이에 인피(引避)하고 물러갔다.</p>	<p>諫院【正言尹興茂。】申前啓，不允。又啓言：“耗穀糜財，酒害最甚，近來禁酒弛緩，請飭之。”上曰：“法不行於士夫，而必行於常賤，予實痛之。諫官曾未能摘發，有勢力者泛請嚴禁，可謂捨本治末者也。”興茂於是，引避而退。</p>
<p>영조 30권, 7년(1731 신해 / 청 옹정(雍正) 9년) 7월 11일(임신) 3번째기사 비변사에서 삼남의 흉 년에 대한 대비책을 아뢰다</p>	<p>비변사(備邊司)에서 아뢰기를, “삼남(三南)의 농사 상황이 이미 큰 흉년으로 결판이 났습니다. 흉년을 대비하는 대책은 다만 곡식을 무역하는 길이 있을 뿐인데, 경사(京司)의 전목(錢木)5917 이 또한 텅 비어 저축된 것이 없습니다. 지부(地部)5918) 와 선혜청(宣惠廳)에 비축되어 있는 것으로 먼저 공가(貢價)를 지급하여 공인(貢人)의 다급한 것을 해소시켜 주고, 삼남 공곡(公穀)으로 상납할 것들을 우선 받아서 본도(本道)에 받아둘 것을 허락하여 천천히 조치를 의논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윤희하였다.</p>	<p>○備邊司啓言：“三南農形，已判大歉。備荒之策，惟有貿穀，而京司錢木，亦枵然無儲。以地部惠廳留儲者，先給貢價，以紓貢人之急，三南公穀之所上納者，姑許捧留本道，徐議措置。”上允之。</p>

<p>영조 30권, 7년(1731 신해 / 청 옹정(雍正) 9년) 7월 13일(갑술) 3번째기사 김상익이 태묘 제향 헌관 등을 파직하고, 술을 판 사대부집을 처벌하자 하다</p>	<p>사헌부 【지평(持平) 김상익(金尙翼)이다.】에서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시상(施賞)은 마땅히 소원(疏遠)하고 미천한 이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처벌은 마땅히 존귀(尊貴)하고 가까운 이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신(自身)이 향관(享官)5942) 이 되어 애당초 수향(受香)5943) 에 신중을 기하지 않고서 막중한 축문(祝文)을 추후에 배진(陪進)하게 하였으니, 전에 듣지 못하던 일입니다. 위질(位秩)이 약간 높다고 해서 단지 문비(問備) 박벌(搏罰)만을 베풀 수는 없는 일이니, 청컨대 그날의 태묘(太廟)·영녕전(永寧殿)·영희전(永禧殿) 세 군데의 헌관(獻官)을 모두 파직하라 명하소서. 나라의 기강이 점차 해이해지고 조정의 금령이 엄중하지 아니하여 사대부집에서 술을 팔아 이익을 독점하는 폐단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전석동(磚石洞)의 이진사(李進士) 집과 안국동(安國洞)의 김동지(金同知) 집에서는 제멋대로 술을 크게 빚어 온 세상의 이익을 굶어 모았습니다. 세밀하게 염방(廉訪)을 가한다면 낭자(狼藉)한 실태를 엄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청컨대 해부(該府)로 하여금 가장(家長)의 이름을 밝혀내어 형률에 따라 처벌을 내리게 하소서. 각사(各司)의 묘유(卯酉)의 법(法)5944) 은 다만 기회(期會)5945) 를 위해 분주(奔走)할 뿐만 아닙니다. 국가에서 관직을 설치하고 직무(職務)를 나눈 것은 각기 관장하는 바가 있어 크게는 판적(版籍)·전부(田賦)로부터 작게는 도로(道路)·택량(澤梁)에 이르기까지 그 명칭을 돌아보고 의미를 생각해 보면 직사(職事)를 수명(修明)하는 것이 아님이 없습니다. 청컨대 각사로 하여금 구전(舊典) 가운데서 응당 시행해야 할 조건들을 뽑아서 따로 준행하도록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세 건의 일은 모두 아뢴 대로 하라.”</p>	<p>憲府【持平金尙翼。】申前啓，不允。 又啓：“賞宜從疎賤始，罰宜從貴近始。身爲享官，初不致謹於受香，使莫重祝文，追後陪進，事未前聞。不可以位秩稍高，只施問備薄罰，請伊日太廟、永寧殿、永禧殿三處獻官，并命罷職。國綱漸弛，朝禁不嚴，士夫家賣酒權利之弊，愈往愈甚。所謂磚石洞李進士家、安國洞金同知家，恣意大釀，籠盡一世之利。細加廉訪，狼藉難掩。請令該府，現發家長名字，依律勘罪。各司卯酉之法，不特爲期會奔走而已。國家設官分職，各有攸掌，大而版籍、田賦，小而道路、澤梁，顧名思義，無非修明職事者。請令各司，撮其舊典中應行條件，另加遵行。”批曰：“三件事，并依啓。”</p>
---	--	--

<p>영조 30권, 7년(1731 신해 / 청 옹정(雍正) 9년) 7월 18일(기묘) 1번째기사 천릉 도감 당상이 구 대하니 임금의 소견하 다. 천릉에 관한 일들 을 의논하다</p>	<p>하였다. (전략) 또 예조 판서 신사철(申思喆)이 말하기를, ‘구릉(舊陵)을 계봉(啓封)한 뒤에 시위(侍衛) 【분병조(分兵曹)·분총부(分摠府) 당상관·낭청(郎廳) 각 2원, 대왕위(大王位) 선전관(宣傳官) 4원, 무겸(武兼) 8원, 위장(衛將) 2원, 왕후위 (王后位) 무겸(武兼) 4원, 위장(衛將) 2원은 본원(本員)으로 수효에 따라 정하 여 보내고, 대왕위의 금군(禁軍)은 30인이고 왕후위의 금군은 20인이며, 뒤에는 분승지(分承旨) 4원과 분주서(分注書) 2원이 수행한다.】를 임시로 차출하 고, 우제(虞祭)는 중(重)한 쪽을 먼저하는 예(禮)로써 마땅히 대왕위에 먼저 행해야 하며, 능을 열어 성빈(成殯)한 뒤에 아침·저녁의 제전(祭奠)에 생물(生 物)을 봉진(封進)하는 것에 있어서는 계축년(5965)의 전례에 따라 여덟가지 종류로 각도(各道)에 분정(分定)해야 합니다.’ 한 것으로 인해 임금이 말하 기를, “백성을 구휩하는 거룩한 뜻을 우러러 본받아 분정(分定)하지 말고, 단전(單 殿)에 진상(進上)하는 전례로써 봉진(封進)하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p>	<p>(전략)又因禮曹判書申思喆言：“啓舊 陵後侍衛，【分兵曹·分摠府堂郎各二 員、大王位宣傳官四員。武兼八員、 衛將二員、王后位武兼四員、衛將二 員以本員依數定送，大王位禁軍三十 人，王后位禁軍二十人，隨後分承旨四 員、分注書二員。】臨時差出，虞祭以 先重之禮，當先行於大王位，至於啓陵 成殯後，朝夕祭奠，封進生物，依癸丑 例，以八種分定各道。”上曰：“仰體 恤民之盛意，勿爲分定，以單殿進上例 封進可也。”</p>
<p>영조 30권, 7년(1731 신해 / 청 옹정(雍正) 9년) 7월 20일(신사) 5번째기사 예조에서 대왕 대비전 에 진상하는 동지와 정조의 방물은 권감하 지 말자 하다</p>	<p>예조에서 말하기를, “올해 주상의 탄신(誕辰)과 동지(冬至)의 방물(方物)·물선(物膳)을 동조(東朝) 에 진상하는 이외에는 권감(權減)5969 하라는 분부가 있으셨는데, 대왕 대비 전(大王大妃殿)에 진상하는 동지와 정조(正朝)의 방물로 전일에 권감하였던 것은 마땅히 준례와 같이 봉진(封進)하여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자성(慈聖)의 하교이니, 그대로 하라.” 하였다.</p>	<p>禮曹言：“今年誕辰，與冬至方物、物 膳，東朝所進外，有權減之命，而大王 大妃殿所進冬至·正朝方物之前所權 減者，宜如例封進。”上曰：“慈教也， 其仍之。”</p>
<p>영조 30권, 7년(1731 신해 / 청 옹정(雍正) 9년) 8월 7일(정유) 2</p>	<p>능(陵)에 거동할 때 각사(各司)에서 공인(貢人)에게 말을 요구하는 폐단을 금 할 것을 명하고, 대신(大臣) 이하의 배종(陪從)하는 자들은 스스로 밥을 지참 하게 하여 각사(各司)에 폐(弊)를 덜어주도록 하였다.</p>	<p>命禁陵幸時各司責馬貢人之弊，大臣以 下陪從者，令自持飯，以省弊各司。</p>

<p>번제기사 능 거동 때 각사에서 공인에게 말을 요구하 는 폐단을 금하다</p>		
<p>영조 30권, 7년(1731 신해 / 청 옹정(雍正) 9년) 8월 13일(계묘) 2번째기사 천릉하는 날 현궁을 열 때 친림하고 성복 에서 성빈까지 소찬할 것을 명하다</p>	<p>임금이 천릉(遷陵)하는 날에 현궁(玄宮)을 열 때 친림(親臨)하려고 하였다. 연신(筵臣)이 ‘지기(地氣)가 울적(鬱積)된 것이 백년이니 몸소 가보시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굳이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부인(婦人)의 일에 가까운 것이다.” 하였다. 또 성복(成服)한 뒤로부터 성빈(成殯)이 이를 때까지 소찬(素饌)을 올릴 것을 명함으로 인해 약원(藥院)의 여러 신하들이 누차 간쟁하였으나, 임금이 또한 허락하지 않았다.</p>	<p>上於遷陵日，欲親臨於啓玄宮時。筵臣，以地氣鬱積者，百年，不宜躬臨也，固請之，上曰：此近於婦人之事也，又以自成服後，限成殯，命進素饌，藥院諸臣，屢爭之，上亦不許。</p>
<p>영조 30권, 7년(1731 신해 / 청 옹정(雍正) 9년) 8월 19일(기유) 2번째기사 이보다 앞서 예조에서 천릉 의주를 올리다</p>	<p>(전략)그날 시간이 당도하면 내전(內殿)에서 별전(別殿)에서 망곡례(望哭禮)를 거행하고 소찬(素饌)을 들며, 능을 개봉하는 날로부터 현궁에 하관하는 그 이튿날에 이르러 평상시대로 회복한다. 조시(朝市)를 정지하고 가취(嫁娶)를 금하고 도살(屠殺)을 금하여 역시 능을 개봉하는 날로부터 현궁에 하관하는 날에 이르러 그치며, 우제를 지낸 뒤에는 혼백(魂魄)과 지방을 새 능의 정결한 곳에 묻는다. 대왕·왕후의 지방 서사관(紙勝書寫官) 각 1명, 【문신(文臣) 정3품(正三品)이다.】 개폐 봉관(開閉封官) 【집의(執義)이다.】 대왕의 지방 출납(紙勝出納) 대축 1명, 【문신(文臣) 4품 이상이다.】 왕후의 지방 출납, 【궁위령(宮闈令)이다.】 섭좌통례(攝左通禮) 각 8명, 섭사복시 정(攝司僕寺正) 각 2명, 향로(香爐)·향합(香盒)을 받드는 자 각 1명, 계빈(啓殯)을 고(告)하는 대축 각 1명, 【문신(文臣) 4품이다.】 애책(哀冊)을 받드는 자 각 2명, 재궁을 마주드는 자 각 2명 【무신(武臣) 4품이다.】 이다.” 하였다.</p>	<p>(전략) 其日時至，內殿行望哭禮于別殿，素饌，自開陵日，至下玄宮翌日而復常。停朝市，禁嫁娶，禁屠宰，亦自開陵日，至下玄宮日而止。虞祭後，魂魄紙勝，埋于新陵潔地。大王、王后紙勝書寫官各一、【文臣正三品。】開閉封官、【執義。】大王紙勝出納大祝一、【文臣四品以上。】王后紙勝出納、【宮闈令二。】攝左通禮各八、攝司僕寺正各二、奉香爐·香盒者各一、告啓殯大祝各一、【文臣四品。】奉哀冊者各二、昇梓宮者各二。【武臣四品。】</p>

<p>영조 30권, 7년(1731 신해 / 청 옹정(雍正) 9년) 9월 4일(갑자) 2 번째기사 천봉의 예가 유감이 없음을 하유하고 새 장릉에 거동할 기일을 정하라 하다</p>	<p>임금이 좌의정 이집(李堦)과 우의정 조문명(趙文命)을 소견(召見)하여, ‘천봉(遷奉)의 예(禮)가 처음에는 근심스러웠는데, 마침내 유감이 없었다.’는 뜻을 하유(下諭)하고, 또 하교하기를, “조금이나마 슬픈 마음을 펴는 것은 다만 복(服)을 벗지 않았을 때 새 능(陵)을 참배하는 데에 있으니, 새 장릉(長陵)에 거동할 기일을 정하라. 환가(還駕)하는 길에 사묘(私墓)에 들러 참배하려 하니 길을 넓게 닦지 않도록 하여 민폐(民弊)를 덜며, 호망(虎網)6041) 을 설치하지 말고 다만 환위(環衛)6042)를 굳게 하라. 내수사(內需司)의 쌀 1백 곡(斛)을 반급(頒給)하여 고양(高陽)·교하(交河)·양주(楊州) 세 고을의 군졸을 모집하여 길을 수선하는 이들에게 나누어 주라.” 하였다. 대개 거동이 겹쳤기 때문에 백성을 진휼하는 은혜를 보인 것이다.</p>	<p>上召見左議政李堦、右議政趙文命，諭以遷奉之禮，始焉爲憂，終乃無憾之意，又教曰：“少伸哀忱，惟在於服未除而謁新陵也，定新長陵，幸行之期。將於駕還之路，歷謁私墓，勿廣治道，俾省民弊，勿設虎網，只固環衛。頒給內司米一百斛，散與高、交、楊三邑之募軍治道者。”蓋以行幸稠疊，示恤民之惠也。</p>
<p>영조 30권, 7년(1731 신해 / 청 옹정(雍正) 9년) 9월 29일(기축) 1번째기사 각 영(營)에 호궤(犒饋)를 행할 것을 명하다</p>	<p>각 영(營)에 호궤(犒饋)6076) 를 행할 것을 명하였다.</p>	<p>己丑/命行各營犒饋。</p>
<p>영조 30권, 7년(1731 신해 / 청 옹정(雍正) 9년) 9월 29일(기축) 4번째기사 흉년이므로 경리청의 면포 3백 동을 기영(畿營)에 주어 진휼에 쓰라 하다</p>	<p>하교하기를 “몇 년 동안 조금 풍년이 든 끝에 이런 큰 흉년을 만났으니, 민생(民生)을 생각한다면 내가 먹고 자는 것이 어찌 편안하겠는가? 삼남(三南)에 대해서는 이미 획급(劃給)한 바 있지만, 기민(畿民)이 곤체(困悴)함은 근년보다 심한 적이 있지 않았으니, 경리청(經理廳)으로 하여금 면포(綿布) 3백 동(同)을 특별히 기영(畿營)에 주어서 백성을 진휼하는 데에 보태게 하라.”</p>	<p>教曰：“數年稍登之餘，值此大歉，言念民生，食息奚安？至於三南，則已有劃給者，而畿民困瘁，未有甚於近年。其令經理廳，綿布三百同，特經畿營，以補賑民。”</p>
<p>영조 30권, 7년(1731</p>	<p>임금이 대신(大臣)과 비당(備堂)을 인견(引見)하였다. 이보다 앞서 임금이 기</p>	<p>上引見大臣、備堂。先是，上憂圻民</p>

<p>신해 / 청 옹정(雍正) 9년) 10월 1일(신묘) 2번째기사 무명의 저장량이 모자라 경기 구휼을 1만 켈미의 돈으로 대신하게 하다</p>	<p>민(圻民)의 기곤(飢困)을 근심하여, 경리청(經理廳)의 포목(布木) 3백 동(同)을 획급(劃給)해 진자(賑資)에 보탬 것을 명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무명의 저장량이 모자라서 1만 켈미의 돈으로 대신할 것을 명하였다. 호조 판서 김동필(金東弼)이 그 지나치게 많은 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또 미리 다음해를 대비해야 된다고 말하니, 임금(上)이 말하기를, “널리 은혜를 베풀어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요(堯)·순(舜)도 오히려 어렵게 여겼다. 눈으로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내년의 계획을 위해 구제하지 않는 것은 왕정(王政)에 있어서 차마 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하고, 이어서 돈 1만 켈미와 강도(江都)의 쌀 7천 곡(斛)과 남한 산성(南漢山城)의 쌀 3천 곡을 경기에 줄 것을 명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또 거둬주금(酒禁)을 분명히 하여 소비를 줄이기를 청하니, 임금(上)이 말하기를, “술이 없으면 백성이 그 조상을 제사지내지 못할 것이니, 다만 그 더욱 심히 드러난 자만을 금하라.” 하였다.</p>	<p>飢困，命以經理廳木三百同，劃補賑資，至是以木儲艱乏，命以萬緡錢代之。戶曹判書金東弼力言其過多，且以豫虞嗣歲爲言，上曰：“博施濟衆，堯、舜猶病之。目見赤子將死，爲明年計而不救之，匪王政所可忍也。”仍命給錢一萬緡、江都米七千斛、南漢米三千斛于京圻。諸臣又請申明酒禁，以省糜費，上曰：“無酒則民不能祭其先，但禁其尤甚現發者也。”</p>
<p>영조 30권, 7년(1731) 신해 / 청 옹정(雍正) 9년) 12월 7일(병신) 3번째기사 사옹원에서 전라도의 생저가 작다 하여 돌려보내길 청하나 윤허하지 않다</p>	<p>사옹원(司饗院)에서 아뢰기를, “전라도에서 봉해 올린 생저(生豬)가 몸집이 작으니, 마땅히 되돌려 보내야 합니다.” 하니, 임금(上)이 말하기를, “이 시기에 어공(御供)도 오히려 줄여야 하는데, 하물며 납육(臘肉)6213) 이겠는가? 받들어 올리라.” 하였다.</p>	<p>司饗院啓言：“全羅道所封進生豬體小，當退送。”上曰：“此時御供猶減，況臘肉乎？其捧進也。”</p>
<p>영조 30권, 7년(1731) 신해 / 청 옹정(雍正) 9년) 12월 26일(을묘) 2번째기사</p>	<p>진위 겸 진향 정사(進慰兼進香正使) 양평군(陽平君) 이장(李樞)과 부사(副使) 이춘제(李春躋)와 서장관(書狀官) 윤득화(尹得和)가 사조(辭朝)하니, 임금(上)이 소견(召見)하여 위유(慰諭)하고 보냈다. 좌참찬(左參贊) 김재로(金在魯)가 또한 입시(入侍)하였는데, 김재로가 절손(節損)의 도리를 논하여 말하기를,</p>	<p>進慰兼進香正使陽平君樞、副使李春躋、書狀官尹得和辭朝，上召見，慰諭以遣之。左參贊金在魯亦入侍，在魯論節損之道曰：“《禮》有凶歲，祭以</p>

<p>사신 양평군 이장 등이 사조하다. 김재로가 제수 절감·진청의 상황을 아뢰다</p>	<p>“《예기(禮記)》에 ‘흉년든 해에는 하생(下牲)6236) 으로 제사지낸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흉년이 든 해를 당해서는 비록 제향(祭享)의 용도를 감쇄(減殺)하더라도 아마 불가함이 없을 듯합니다. 능침(陵寢)과 종묘(宗廟)의 제사는 조종조(祖宗朝)에 비하여 더 많아졌는데, 이밖에 여러 가지 향사(享祀)들이 거의 빈날이 없으니, 이로 말미암아 경비가 옛날보다 배나 증가된 것은 분디 그 형세가 그런 것입니다.”</p> <p>하고, 이어서 말하기를,</p> <p>“국상[國恤] 3년 동안의 제수(祭需) 가운데 인삼 정과(人蔘正果)의 소비가 매우 많으니, 무익한 것으로 유익한 것을 해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물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상께서 만일 하례를 변경하여 위로로 삼는 절차에 따라 특별히 영원히 폐지할 것을 명하신다면, 실로 성덕에 빛남이 있을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제수(祭需)에 대해서는 진실로 경솔하게 의논할 수 없으나, 인삼 정과를 감하는 것은 더욱 의리에 해롭지 않다. 인조조(仁祖朝)에서도 또한 채화(綵花)6237) 를 만들지 말 것을 명하였으며, 더구나 경휘전(敬徽殿)의 유지(遺旨)는 항상 검약에 있었다. 동조(東朝)께서 또한 인삼 정과를 긴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여 누차 절지(切至)한 하교를 받았으니, 이것은 마땅히 영원히 제거해야 할 것이다.”</p> <p>하였다. 김재로가 진청(賑廳)의 궁핍한 상황을 상세히 진달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경(卿)과 송인명(宋寅明)을 진청의 당상(堂上)으로 삼아야 내가 근심이 없게 될 것이다. 경은 모름지기 마음을 다해야 할 것이다.”</p> <p>하였다.</p>	<p>下牲之文。當此大歉，雖減殺祭享之用，恐無不可。陵寢、宗廟之祭，比祖宗朝加多，而此外諸般祀享，殆無虛日，由是而經費倍昔者，固其勢然也。”仍言：“國恤三年祭需中，人蔘正果，所費甚多，以無益害有益者，政指此等物。自上若依變賀爲慰之節，特命永罷，則實光聖德。上曰：“祭需，固不可輕議，而人蔘正果之減，尤不害義。仁廟朝，亦命去綵花，況敬徽殿遺旨，恒在儉約。東朝亦以人蔘正果，爲不緊，屢承切至之教，此當永除也。”在魯備陳賑廳匱乏狀，上曰：“以卿與宋寅明，爲賑堂，予可無憂。卿須盡心也。”</p>
<p>영조 30권, 7년(1731) 신해 / 청 옹정(雍正)</p>	<p>임금이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당상(堂上)을 인견(引見)하였다. 임금이 이미 궁액(宮掖)의 비용을 줄일 것을 명하고 어공(御供)으로부터 이하의 것도</p>	<p>丙辰/上引見大臣備堂。上既命減省宮掖之費，自御供以下，又飭諸宰，殫</p>

<p>9년) 12월 27일(병진) 1번째기사 임금의 절검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덕이 지극하고 극진하다</p>	<p>또한 여러 재신(宰臣)들에게 신칙(申飭)하여, 마음을 다해 백성을 살려서 나라의 근본을 튼튼히 하도록 하였는데, 사지(辭旨)가 측달(側怛)하여 심지어는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였다. 아! 이해의 흉년은 예전에 없던 바로써 백성이 장차 아침저녁에 구학(丘壑)에 빠져서 죽을 형편이었는데, 임금의 긍휼히 여기고 우민(憂悶)하는 바가 지극한 정성에서 나와, 진구(賑救)의 대책은 대동미(大同米)의 봉류(捧留)를 허락하는 데 이르고, 재생(裁省)의 조처는 어공(御供)의 제수(諸需)로부터 먼저 하였으니, 용도를 절약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덕이 지극하고 극진하다 하겠다. 그리고 소미(小米)로 옥식(玉食)을 대신하겠다는 하교와 여러 신하들에게 우리 백성의 목숨을 살리라고 효유(曉諭)하여 목소리와 눈물이 함께 나오는 데 이르른 것은 더욱 성의(誠意)의 도달한 바를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온 동토(東土) 수천리의 백성들이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다 성주(聖主)의 은혜였다. 아! 기록하다.</p>	<p>心活民，以固邦本，辭旨惻怛，至於淚下。噫！是歲之歉，振古未有，民將朝夕填丘壑，而上之所以矜恤憂悶者，出於至誠，賑救之策，至許捧留大同裁省之舉，先自御供諸需，節用愛人之德，至矣盡矣。若夫以小米代玉食之教，與夫諭諸臣活我民之命，以至聲淚俱發，尤可見誠意所到，而環東土數千里，民得以全保者，皆聖主恩也。於戲，盛哉！</p>
<p>영조 30권, 7년(1731 신해 / 청 옹정(雍正) 9년) 12월 27일(병진) 2번째기사 국청 죄수 윤수가 친상을 당하매 통부할 것인가를 논하다</p>	<p>판의금(判義禁) 김동필(金東弼)이 말하기를, “국청(鞠廳)의 죄수 윤수(尹邃)가 친상(親喪)을 당하였습니다. 전번에 성상의 하교로 인하여 이미 가식(家食)을 전달하였으니, 통부(通訃)를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였다. 영의정 홍치중(洪致中)·좌참찬 김재로(金在魯) 등이 말하기를, “국청 죄수로서 사형을 감면하여 정배(定配)한 자는 친상(親喪)에도 급유(給由)6238) 를 하지 않는데, 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부고(訃告)를 전달한다는 것은 후일의 폐단에 관련될까 두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렇게 여겼다.</p>	<p>判義禁金東弼言：“鞠囚尹邃遭親喪。向因上教既傳家食，則通訃爲可。”領議政洪致中、左參贊金在魯等言：“鞠囚之減死定配者，親喪亦不給由，在囚傳訃，恐關後弊。”上然之。</p>
<p>영조 30권, 7년(1731 신해 / 청 옹정(雍正) 9년) 12월 29일(무오) 1번째기사 임금이 계주문(戒酒文)</p>	<p>임금이 계주문(戒酒文)을 내리기를, “순후(醇厚)한 성품으로써 광패(狂悖)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술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마음은 본래 착한 것인데 공격하는 것이 많도다. 더구나 술이 또 뒤따라 해롭게 하는구나. 사람이 싫어하는 바는 악(惡)보다 심한 것이 없고 사람이 두려워하는 바는 적(賊)보다 심한 것이 없는데, 스스로 그 적을 불</p>	<p>戊午/上下戒酒文曰： 以醇厚之性，作狂悖之人，非酒而何？靈臺本善而攻之者衆。而況麴孽，又從而戕賊之。人之所惡，莫甚於惡，人之所畏，莫甚於賊，而自招其賊，自</p>

을 내리고, 내운을 줄여 먼저 하는 뜻을 보이다

러들이고 스스로 그 악을 만들어내니, 어찌 애석하지 않겠는가? 아! 신농씨(神農氏)가 농사짓는 것을 가르치고 수인씨(燧人氏)가 화식(火食)하는 것을 가르치니, 다만 사람의 봉양하는 바가 지극하고 극진하다. 또 어찌 백성이 하늘로 여기는 곡식으로써 사람을 빠뜨리는 기틀을 삼는 것인가? 옛과 이제의 경패(傾敗)를 날날이 기록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술로 인해서 사람을 상해하고 사람을 살해하여 부형(父兄)을 위태롭고 욱되게 하는 데까지 이르는데, 스스로 그것이 멸륜(滅倫)·패의(悖義)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도 한다. 아! 사람이 세상에 나서 비록 능히 그 도리를 다해서 그 아버지를 봉양하지는 못할지라도 어찌 구체(口體)의 욱심 때문에 그 아버지를 욱되게 할 수가 있겠는가? 더구나 인생 백년에 질병과 사고(事故)를 제하면 남는 시일이 오히려 적은데, 거기다가 또 광약(狂藥)6240) 을 멋대로 마셔 그 천성을 해치고 그 몸을 망치니, 어찌 서글픈 일이 아니겠는가? 더구나 술을 많이 빚는 피해는 재물을 축내는 데 이르고 술을 즐기는 해독은 가산(家産)을 기울게 하는데 이르게 된다. 그것을 금지하는 방도는 군사(君師)에게 있으니, 그것이 어찌 어렵겠는가마는, 그래도 지난(持難)하는 바가 있는 것은 대우(大禹)가 비록 의적(儀狄)6241) 을 소원히 하였으나 이미 술을 없애지 않았고, 성현(聖賢)이 예(禮)를 제정함에 있어 제사(祭祀)와 향음(鄉飲)에 모두 그 술을 허락하였기 때문이니, 이것이 술이 없을 수는 없는 점이다. 그런데 지금은 농사가 큰 흉년이 들므로 인해 모든 여러 가지 비용들을 아미 다 절감하였는데, 제한이 없는 소비가 이것보다 심한 것이 없다. 그러나 명령은 마땅히 먼저 해야 하고 법은 마땅히 뒤에 집행해야 한다. 먼저 술을 경계하는 글을 보이고 추후에 술을 많이 빚는 데 대한 금령(禁令)을 내릴 것이다. 아! 그대들 대소(大小) 신료(臣僚)들은 나의 이 뜻을 인식하여 술을 함부로 마시지 말고 국사(國事)에 마음을 다할 것이며, 아! 그대 소민(小民)들은 먼저 스스로 소요(騷擾)하지 말지어다. 만일 혹시 집에서 많은 술을 빚는다면 어찌 능히 숨길 수가 있겠으며,

釀其惡，豈不惜哉？噫！神農教稼，燧人教食，惟人所奉，至矣盡矣。又何以民所天之穀，作陷人之機乎？古今傾敗，歷歷可記。且以酒而至於傷人殺人，危辱父兄，不自覺其滅倫悖義之歸，噫！人生於世，雖未能盡其道養其親，豈以口體之慾，辱其親乎？況人生百歲，疾恙事故，餘日尚少，而又縱之以狂藥，戕其性滅其身，豈不悲哉？況多釀之弊，至乎耗財，嗜酒之害，至乎傾產。禁之之道，在乎君師，其何難也，而猶有所持難者，大禹雖疏儀狄，既不祛酒，聖賢制禮，祭祀鄉飲，皆許其酒，此酒之不可無者。而今因穡事之大歎，凡諸浮費，既皆減節，尾閭之費，莫甚於此。然令當先也，法當後也。先示戒酒之文，追下多釀之禁。咨爾！大小臣庶，體予此意，其勿縱酒，乃心國事，而咨爾！小民，其勿先自騷擾。若或多釀于家，豈能掩也，其將犯禁，豈曰無法？至於祭祀之享，糊口之資，予不禁焉。嗚呼！雖未能效古人紡績，教子遺善子孫之事，釀此狂悖之藥，陷我無辜之民者，國雖不禁，其於積善遺後之道，亦豈不大悖乎哉？言

	<p>장차 금령(禁令)을 범한다면 어찌 법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제사에 쓰기 위한 것이나 호구(糊口)를 위한 정도는 내가 금하지 않을 것이다. 아! 비록 능히 옛사람의 길쌈을 해서 자식을 가르쳐 자손들에게 선행(善行)을 끼쳐 준 일은 본받지 못한다지만, 이런 광패(狂悖)한 약(藥)을 만들어서 우리의 무고(無辜)한 백성을 빠뜨리는 자는 나라에서 비록 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선(積善)을 하여 후손에게 끼쳐 주는 도리에 있어 또한 어찌 크게 어긋나지 않겠는가? 폐부(肺腑)로부터 나오는 말이며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 모름지기 가슴 깊이 새겨서 큰 죄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다.”</p> <p>하였다. 이어서 하교하기를, “동조(東朝)에 진헌(進獻)하는 것 이외에는 내온(內醞)으로 봉(封)하는 것은 명년 가을까지 절반으로 줄여서 과인(寡人)으로부터 먼저 하는 뜻을 보이라.”</p> <p>하였다.</p>	<p>由肺腑，非以文也，其須服膺，莫陷大戾。</p> <p>仍教曰：“東朝進獻外，內醞所封，限明秋減半，以示先自寡躬之意。”</p>
<p>영조 31권, 8년(1732) 임자 / 청 옹정(雍正) 10년) 2월 22일(경술) 1번째기사</p> <p>주강에 나가니 지경연사 송성명이 봉상시의 공물은 재감하지 말자 하다</p>	<p>임금이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지경연사 송성명(宋成明)이 아뢰기를, “각사(各司)의 공물(貢物)을 재량하여 감해 주는 것은 실로 흉년에 경비를 줄이는 방법에서 나온 것인데, 태상(太常)6298)의 공물 같은 것에 이르러서는 바로 제사에 소요되는 바 사체(事體)가 중대합니다. 아마도 섞어서 재량하여 감하는 것은 적당하지 못한 듯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도록 하였다.</p>	<p>庚戌/上御晝講。 知經筵宋成明言：“各司貢物裁減，實出於荒歲省費之道，而至若太常貢物，乃是亨祀所需，事體重大。 恐不當混爲裁減矣。” 上令廟堂稟處。</p>
<p>영조 31권, 8년(1732) 임자 / 청 옹정(雍正) 10년) 3월 12일(기사) 4번째기사</p> <p>이판 김홍경이 칭병하여 도로 돌아가니 임</p>	<p>이조 판서 김홍경(金興慶)이 임금의 명을 받고 나오다가 신창현(新昌縣)에 이르러 상소(上疏)하여 병(病)이 들었음을 진달하고 바로 돌아가니, 비답(批答)하기를, “어제 경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기쁘고 위로가 되었는데, 지금 경의 상소를 보니 처음 생각과는 너무 어긋난다.”</p> <p>하였다. 잠시 후에 내주(內廚)의 음식을 보내게 하고, 인하여 16자(字)의 수찰</p>	<p>吏曹判書金興慶赴召，至新昌縣，上疏陳病徑歸，批曰：“昨聞卿來，心甚欣慰，今觀卿疏，大違初料。” 俄送內廚之饈，仍頒十六字手札，不必多諭，卿須體此。</p>

<p>금이 음식과 수찰을 보내다</p>	<p>(手札)을 내리면서 ‘많은 유시(諭示)가 필요 없으니, 경은 모름지기 이를 체득하라’하였다.</p>	
<p>영조 31권, 8년(1732) 임자 / 청 옹정(雍正) 10년) 4월 5일(임진) 3번째기사 지평 정희보의 상소에 따라 관동의 납월 공삼의 절반을 감하도록 명하다</p>	<p>관동(關東)의 납월 공삼(臘月貢蔘)의 절반을 감하도록 명하였는데, 지평 정희보(鄭熙普)의 상소를 따른 것이었다.</p>	<p>○命減關東臘月貢蔘之半，從持平鄭熙普之疏也。</p>
<p>영조 31권, 8년(1732) 임자 / 청 옹정(雍正) 10년) 5월 17일(계유) 2번째기사 활인서의 구료를 독려하고, 감선으로 진흙에 성심을 기울이는 뜻을 전교하다</p>	<p>전교하기를, “조정에서 활인서(活人署)를 설치한 것은 그 백성을 위하는 뜻이 융성하였다. 그러나 요즈음에는 이름만 있고 실상은 없어서 병이 들어 죽는 자가 많으니, 비국으로 하여금 약물을 제공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료(救療)하는 데 더욱 마음을 쓰게 하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어제 어사(御史)가 아뢰는 것을 들었는데, 만약 굶주려 죽은 시체를 보았으면, 음식이 어찌 목구멍에 내려가겠는가? 건량(乾糧)을 나누어 지급하는 것은 왕명을 부지런히 이행하는 데 불과하니, 이후로 설죽(設粥)한들 백성들이 장차 어떻게 지탱하겠는가? 백성들의 부모(父母)가 되어 만약 구제하고 살리지 못한다면, 아! 적자(赤子)들이 어느 곳에서 먹을 것을 바라겠는가? 서울의 양식도 이미 떨어졌지만, 지방에는 보리가 추수기에 접어들었으니, 떠돌며 빌어먹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에게 멀고 가까움을 참작해서 양식을 지급하여 길에서 굶주리는 것을 구제하도록 하고, 갈 수 없는 자에게는 장차 설죽(設粥)하여 먹이도록 하라. 이렇게 굶주리는 백성을 생각하면 어찌 차마 평</p>	<p>敎曰：“朝家之設置活人署，其爲民之意盛矣。近來名存實無，病死者多，令備局，題給藥物，使之加意救療。” 又敎曰：“昨聞御史所陳，若見餓殍，食豈下咽？乾糧分給，不過來旬，此後設粥，民將奚支？爲民父母，若不濟活，吁嗟！赤子，何處望哺？京糧已畢，外麥方登，流丐之欲還本土者，參以遠近，酌給糧資，以濟路飢，未能下往者，將設粥以饋。而念此饑民，何忍常供？限設粥間，每三日御米三升，除給賑廳，以補賑資，內下醬十甕，亦下賑廳，使之補用。噫！賑廳主管之臣，思予減膳之意，勸哉勸哉。”</p>

	상시처럼 이바지하게 할 수 있겠는가? 설죽하는 기간 동안 3일마다 어미(御米) 세 되를 진휼청에 덜어주어 진휼하는 자료에 보태게 하고, 대궐에서 장(醬) 10웅(甕)을 진휼청에 내려주어 보태어 쓰게 하라. 아! 진휼청에서 주관하는 신하는 나의 감선(減膳)하는 뜻을 생각하여 더욱 힘쓰도록 하라.” 하였다.	
영조 31권, 8년(1732) 입자 / 청 옹정(雍正) 10년) 6월 6일(신유) 6번째기사 예조에서 부묘 때 전례를 따라 권정례로 하자고 아뢰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부묘(祔廟)6370) 때 일찍이 효종(孝宗) 음복연례(飲福宴禮)는 신묘년(6371)의 하교(下教)로 인하여 대신에게 의논해서 권정례(權正例)로 하였으며, 그 뒤로는 모두 이 전례를 따랐습니다. 청컨대 이번에도 권정례로 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의 옳게 여겼다.	○禮曹啓言：“祔廟時飲福宴，禮曾在孝宗辛卯，因下教，議大臣權停，伊後皆遵此例矣。請今亦權停。”上可之。
영조 31권, 8년(1732) 입자 / 청 옹정(雍正) 10년) 6월 6일(신유) 7번째기사 기우해도 비가 안와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면서 남교에 우사를 지내게 하다	전교하기를, “희생(犧牲)을 대신하여 비가 내리도록 빌었으나, 미미한 정성이 이르지 않아 비가 내릴 뜻이 더욱 멀어진 듯하다. 저 농민(農民)을 생각하면 조처할 바를 모르겠다.” 하고, 이에 명하여 계해일(癸亥日)에 남교(南郊)에 대신을 파견하여 우사(雩祀)6372) 를 지내게 하고, 중신(重臣)을 파견하여 비가 내리도록 빌게 하였다.	敎曰：“代犧祈雨，微誠未格，雨意愈邈。念彼農民，罔知攸處。”仍命以癸亥南郊，遣大臣雩祀，遣重臣禱雨。
영조 31권, 8년(1732) 입자 / 청 옹정(雍正) 10년) 6월 12일(정묘) 3번째기사 가뭄으로 자책하면서	임금이 가뭄이 더욱 흑심하다고 하여 자신을 책망하는 전교를 내리고 감선(減膳)하고 저자를 읍기도록 명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석척 기우제(蜥蜴祈雨祭)6376) 가 비록 형식에 가깝다 하더라도 석척童子(蜥蜴童子)6377) 는 순양(純陽)이니 그 정성이 이르는 바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 격식과 차례에 구애하지 말고 전례대로 마련하여 행하도록 하라.”	上以亢旱愈酷，下責躬之教，命減膳遷市。又敎曰：“蜥蜴祈雨，雖近文具，童子純陽，其所誠格，異於他人。勿拘格次，依例設行。”

<p>감선하고 저자를 옮기며 석척 기우제를 지내게 하다</p>	<p>하였다.</p>	
<p>영조 31권, 8년(1732) 임자 / 청 옹정(雍正) 10년) 6월 14일(기사) 1번째기사 태묘에서 비를 빌고, 춘당대·경회루에서 동자 석척 기우제를 3일 동안 하다</p>	<p>대신(大臣)을 파견하여 태묘(太廟)에서 비를 내리도록 빌게 하고, 가선 대부(嘉善大夫)인 무신(武臣)을 나누어 파견하여 동자 석척 기우제(童子蜥蜴祈雨祭)를 춘당대(春塘臺)와 경회루(慶會樓) 못가에서 행하였는데, 무릇 3일 동안 하고서 그쳤다. 【춘당대(春塘臺)가 대궐 안에 있었기 때문에 헌관(獻官)과 감찰(監察)이 청양문(靑陽門) 밖에서 유숙(留宿)하고, 동자(童子) 1백 명은 예조와 형조의 낭관(郎官)이 거느리고 홍화문(弘化門) 밖에서 유숙하였다.】 이날 내려 쬐는 별이 대단하므로 임금이 특별히 어장(御醬)을 동자(童子)들이 기우하는 곳에 내렸는데, 대체로 장(醬)은 더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p>	<p>己巳/遣大臣，禱雨於太廟，分遣嘉善武臣，行童子蜥蜴祈雨祭於春塘臺及慶會樓池邊，凡三日而止。【春塘臺在禁中，故獻官、監察留宿於靑陽門外，童子一百名禮曹刑曹郎領率留宿於弘化門外。】是日，烈陽，上特下御醬於童子祈雨所，蓋醬，能禦暑故也。</p>
<p>영조 31권, 8년(1732) 임자 / 청 옹정(雍正) 10년) 6월 21일(병자) 2번째기사 기우제를 두루 행했는데도 비가 오지 않아 반성하며 자책하겠다고 전교하다</p>	<p>전교하기를 “희생과 폐백을 드리는 〈제사를〉 두루 거행하였는데도 신(神)이 우리에게 혜택을 내리지 않으니, 허물이 나에게 있다. 백성들에게 실로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양삭(兩朔)의 진선(進膳)은 특별히 봉진(封進)을 정지하도록 하라. 지금은 군병(軍兵)이 한데에서 밤을 세우는 것을 돌보아야 하니, 옛날 사람의 묵묵히 반성하는 것을 본받아 조용히 반성하며 자신을 책망하려 한다. 유사(有司)가 기도하는 것은 전례를 따라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p>	<p>敎曰：“牲幣遍舉，神不惠我，咎在寡躬。民實奚辜？兩朔之膳，特爲停封。今則顧軍兵暴露，效古人默省，靜以反求，有司之禱，遵例舉行。”</p>
<p>영조 32권, 8년(1732) 임자 / 청 옹정(雍正) 10년) 7월 5일(기축) 2번째기사 비변사에 명하여 권분(勸分)한 부민(富民)들에게 시상하는 절목(節目)을 논정(論定)하게 하였다. 1천 석(石) 이상인 경우, 【실동지(實同知)·첨지(僉知)는 그의 본품(本品)에 따라 승차(陞差)시키고 무음 초사(武蔭初仕) 가운데 상당(相當)하는데 따라 차제(差除)한다.】 5백 석 이상인 경우, 【통정(通政)·절충(折衝)은 교지(教旨)를 만들어 주어 사로(仕路)에 통할 수 있게 하되, 일찍이 당상의 품계를 받은 자는 가선(嘉善)을 제수하여 군직(軍職)에 붙여 주고, 일찍이 가선의 품계를 제수받은 자는 실동지에 차임한다. 1천 석과 5백 석을</p>	<p>비변사에 명하여 권분(勸分)6406) 한 부민(富民)들에게 시상하는 절목(節目)을 논정(論定)하게 하였다. 1천 석(石) 이상인 경우, 【실동지(實同知)·첨지(僉知)는 그의 본품(本品)에 따라 승차(陞差)시키고 무음 초사(武蔭初仕) 가운데 상당(相當)하는데 따라 차제(差除)한다.】 5백 석 이상인 경우, 【통정(通政)·절충(折衝)은 교지(教旨)를 만들어 주어 사로(仕路)에 통할 수 있게 하되, 일찍이 당상의 품계를 받은 자는 가선(嘉善)을 제수하여 군직(軍職)에 붙여 주고, 일찍이 가선의 품계를 제수받은 자는 실동지에 차임한다. 1천 석과 5백 석을</p>	<p>命備邊司，論定勸分富民施賞節目。千石以上【實同知、僉知從其本品陞差，武蔭初仕中，隨其相當差除。】五百石以上【通政、折衝教旨成給，俾通仕路，而曾受堂上階者，授嘉善付軍職，曾受嘉善階者，差實同知。無論千石、五百石，曾受納粟加設等資者，</p>

<p>하다</p>	<p>막론하고, 일찍이 곡식을 바치고 가설(加設) 등의 자급을 받은 자는 모두 그 본품(本品)에 따라 다시 정자(正資)로 고쳐 제수한다. 상한(常漢)이어서 사로를 허통(許通)시키기에 부당한 사람은 동지·첩지의 첩문(帖文)을 만들어 준다.】 1백 석 이상인 경우, 【판관(判官)·주부(主簿)·찰방(察訪) 가운데 가설첩(加設帖)을 만들어 주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은 다시 통덕랑(通德郎)·부사과(副司果) 등의 정직 교지(正職教旨)를 제수하고 아울러 10년을 한정하여 연역(煙役)을 부과하지 않도록 한다. 혹 첩문 가자(帖文加資)를 받기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역시 들어준다.】 50석 이상인 경우, 【납속 통정첩(納粟通政帖)을 지급하되 이미 통정이 된 사람에게는 가선첩(嘉善帖)을 지급하고, 첩문을 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10년을 한정하여 연역을 부과하지 않도록 한다.】 10석 이상인 경우, 【3년을 한정하여 연역을 부과하지 말게 하고 첩문은 서울에서 만들어 보낸다. 석수(石數)는 모두 피곡(皮穀)6407) 으로 숫자를 계산했는데, 쌀이나 돈을 낸 사람은 모두 피곡으로 환산한다.】</p>	<p>竝從其本品，改授正資。常漢不當通仕路者，成給同知、僉知帖文。】百石以上【判官、主簿、察訪中，加設帖成給不願者，改授通德郎、副司果等正職教旨，竝限十年烟役勿侵。其或願受帖文加資者亦聽。】五十石以上【給納粟通政帖，已通政者，給嘉善帖，不願帖者，限十年煙役勿侵。】十石以上【限三年烟役勿侵，帖文自亦成送。石數竝以皮穀計數，而有米錢者，皆以皮穀折計。】</p>
<p>영조 32권, 8년(1732) 입자 / 청 옹정(雍正) 10년) 7월 29일(계축) 4번째기사 기근·화재를 당한 대마도에 쌀 지급과 공작미의 요판을 논한 박사수의 진소</p>	<p>부사직(副司直) 박사수(朴師洙)가 진소(陳疏)하여 대마도(對馬島) 왜인(倭人)이 기근에 시달리고 또 화재(火災)를 만난 상황을 진달하고, 현묘조(顯廟朝) 경자년(庚子) 6432) 에 저들의 요청을 기다리지 않고 특명(特命)으로 쌀을 지급하게 했던 전례를 따를 것을 청하였다. 인하여 영영(嶺營)과 내부(萊府)에서 공작미(公作米)를 요판(料販)하여 이익을 늘리는 폐단에 대해 진달하기를, “지금처럼 진제장(賑濟場)을 설치해야 될 시기에 만일 전처럼 요리(料理)하면서 제 기한에 맞추어 수송하지 않는다면, 왜인들의 사세가 바야흐로 군색한 상황이어서 그들의 원망이 반드시 깊게 될 것이니, 의당 도신(道臣)에게 각별히 신칙하여 제때에 수송시키게 하소서.” 하고, 또 삼(蔘)과 동(銅)의 사의(事宜)에 대해 논하니, 비답하기를, “윗 조항에 관한 일은 속히 비국(備局)으로 하여금 즉시 전례를 상고하여 우선적으로 구처(區處)하게 하고, 도신(道臣)에게 분부하여 즉시 대마도로 보내</p>	<p>○副司直朴師洙疏陳對馬島倭，困於飢荒，又遭火災，請遵顯廟朝庚子不待彼請，特命給米之例，仍陳嶺營及萊府以公作米料販殖利之弊曰：“如今設賑之時，若或如前料理，未及趁限輸送，則倭勢方窘，其怨必益深。宜另飭道臣，刻期輸致。”且論蔘銅事宜，批曰：“上款事，亟令備局即考前例，先爲區處，分付道臣，即遣馬島。他餘事，令廟堂稟處。”尋因廟堂覆奏，命公作米不給倭館，留爲料販取利者，繩以臧律。</p>

	<p>게 하라. 기타 다른 일은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곧이어 묘당의 복주(覆奏)로 인하여 공작미를 왜관(倭館)에 지급하지 않고 유치시켜 요관함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자는 장률(贓律)로 다스리라고 명하였다.</p>	
<p>영조 32권, 8년(1732) 임자 / 청 옹정(雍正) 10년) 8월 8일(임술) 1번째기사 경휘전 고제 때 잔(盞)을 쓰고 작(爵)을 쓰는 문제</p>	<p>예조의 의주(儀註)에 경휘전(敬徽殿)에 고제(告祭)할 때 《오례의(五禮儀)》에 의거하여 잔(盞)을 쓰게 하였는데, 임금이 대상(大祥) 뒤 삭망(朔望)의 제례(祭例)에 의거하여 작(爵)을 쓰라고 명하였다.</p>	<p>壬戌/禮曹儀註，敬徽殿告祭時，依《五禮儀》用盞，上命依大祥後朔望例，用爵。</p>
<p>영조 32권, 8년(1732) 임자 / 청 옹정(雍正) 10년) 8월 10일(갑자) 1번째기사 임금이 부제(祔祭)를 행하고, 인정전에 나가 백관의 하례를 받고 반사하다</p>	<p>임금이 부제(祔祭)를 행하였다. 환궁(還宮)할 때 고취(鼓吹)하는 절차는 진실만 해 놓고 연주하지 않았다. 남은 슬픔이 다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백관의 하례(賀禮)를 받고 반사(頒赦)하였다. 그 사유문(赦宥文)에 이르기를, “상제(喪制)를 겨우 마치니 개연(慨然)해 하고 확연(廓然)해 하던 때도 문득 지나가고, 부례(祔禮)를 이루고 나니 이에 널리 고하는 교지(教旨)를 반포하게 되었다. 그러나 남은 슬픔이 가지지 않았으니, 무슨 마음으로 경하(慶賀)를 함께 할 수 있겠는가? 삼가 생각하건대, 경순 효인 혜목 선의 왕후(敬純孝仁惠穆宣懿王后)께서는 선조(先朝)의 치신(治臣)이었고 일국(一國)의 성모(聖母)이셨다(후략)</p>	<p>甲子/上行祔祭。還宮時，鼓吹之節，陳而不作。以餘哀未盡也。是日，上御仁政殿，受百官賀，頒赦。其文曰：喪制甫闋，奄過慨廓之辰，祔禮肇成，庸渙播告之旨。餘哀未已，同慶何心？恭惟敬純孝仁惠穆宣懿王后先朝亂臣，一國聖母，載物德厚，洽慈恩於群生，(후략)</p>
<p>영조 32권, 8년(1732) 임자 / 청 옹정(雍正) 10년) 8월 18일(임신) 1번째기사</p>	<p>예조에서 아뢰기를, “작년에 진곡(賑穀)을 보충하기 위하여 탄일(誕日)·동지(冬至)에 올리는 각도(各道)의 방물(方物)과 물선(物膳)을 특별히 권감(權減)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마땅히 전례대로 봉진(封進)하게 해야 합니다. 대비전(大妃殿)의</p>	<p>壬申/禮曹啓言：“昨年爲補賑穀，誕日、冬至各道方物物膳，特令權減矣。今年則當依例封進。大妃殿冬至、正朝方物，戊申權減後，尙未復舊，請依</p>

<p>예조가 청하는 탄일·동지의 방물과 물선 봉진에 대해 탄일 때는 정지하라 하다</p>	<p>동지·정조(正朝)의 방물은 무신년(645)에 권감하게 한 뒤 아직 복구(復舊)시키지 않고 있으니, 구례(舊禮)에 의거하여 봉진하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하교하기를, “금년의 농사가 또 다시 이와 같으니 탄일의 방물과 물선은 특별히 봉진하지 말게 하라.”</p> <p>하였다. 또 자성(慈聖)의 하교에 의해 전교(傳敎)하기를, “이제 막 큰 흉년을 겪었으니 민폐(民弊)를 돌아보아야 한다. 금년에도 또한 봉진하지 말게 하라.”</p> <p>하고, 이어 하교하기를, “자성의 하교가 이와 같으니 뜻을 봉양하는 도리에 있어 강청(強請)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p> <p>하였다.</p>	<p>舊例封進。”上敎曰：“今年穡事，又復若此，誕日方物物膳，特爲勿封。”</p> <p>又以慈聖之敎，敎曰：“纔經大歉，民弊可顧，今年亦勿封進。”仍敎曰：“慈敎如此，其在養志之道，有難強請矣。”</p>
<p>영조 32권, 8년(1732) 입자 / 청 옹정(雍正) 10년) 11월 4일(정해) 2번째기사 갑주 가미를 감면하여 기호에 주고 기호와 양남의 정조 방물을 정봉하게 하라</p>	<p>하교하기를, “작년에 큰 흉년이 든 끝에 금년이 또 이러하니, 아! 생민(生民)들을 어떻게 구제하여 살린단 말인가?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옥식(玉食)이 어찌 편안하라? 더구나 양복(陽復)6510)이 내일로 다가와 바로 하늘의 도(道)를 본받아 인(仁)을 행해야 할 때를 당해서야 말해 무엇하랴? 삼명일(三名日)6511)에 봉납하는 갑주 가미(甲冑價米)를 특별히 감면하여 기호(畿湖)에 나누어 주게 함으로써 내년의 진제(賑濟)에 보태게 하라. 그리고 기호(畿湖)와 양남(兩南)의 정조 방물(正朝方物)도 정봉(停封)하게 하고 그 가미(價米)를 진제에 보태게 하라. 수령과 도신들은 내가 정섭(靜攝)하고 있는 가운데 간절하게 생각하는 뜻을 몸받아 태만하거나 소홀히 함이 없도록 하여 작년에 겨우 살아난 우리 백성들을 구제하도록 하라.”</p> <p>하였다.</p>	<p>敎曰：“昨大歉之餘，今又如此，吁嗟生民，何以濟活？思之及此，玉食奚安？況陽復在明，正當體乾行仁之時乎？三名日所捧甲冑價米，特爲蠲減，分給畿湖，以補明年賑濟，而畿湖及兩南正朝方物，亦爲停封，以其價米，使之補賑。爲守令道臣者，體予靜攝中眷眷之意，其勿怠忽，濟我昨年僅活之民。”</p>
<p>영조 32권, 8년(1732) 입자 / 청 옹정(雍正)</p>	<p>임금이 강진현의 변고로 인해 특별히 자책(自責)하는 교서(敎書)를 내리고, 이어 감선(減膳)하라고 명하였다. 또 호남에서 진상(進上)하는 물선(物膳)은 맥</p>	<p>上因康津之變，特下自責之敎，仍命減膳。又命湖南進上物膳，限麥秋停</p>

<p>10년) 12월 10일(계해) 3번째기사 강진의 변고로 자책의 교서를 내리고 감선하며 진제책을 상의하느라 애쓰다</p>	<p>추(麥秋)까지 한도로 봉진을 정지토록 하였다. 이어 곧 대신(大臣)과 진청 당상(賑廳堂上)·탁지 장관(度支長官)을 불러 접견하고 진제책(賑濟策)을 상의하여 강구하느라고 새벽녘이 되어서야 파하였다.</p>	<p>封。仍召見大臣與賑廳堂上、度支長，講確賑濟之策，達曙乃罷。</p>
<p>영조 32권, 8년(1732) 임자 / 청 옹정(雍正) 10년) 12월 10일(계해) 5번째기사 연신의 청에 따라 백관의 녹봉을 감하게 하다</p>	<p>백관(百官)의 녹봉(祿俸)을 감하게 하였다. 이때 경비를 크게 줄였는데 연신(筵臣)이 을사년(6523)·병오년(6524)의 전례를 인용하여 감할 것을 청했기 때문에 따른 것이다. 1품은 감할 것이 쌀 3두(斗)에 콩 2두, 중2품 이상은 쌀 2두에 콩 2두, 정3품은 쌀 2두에 콩 1두, 6품 이상은 쌀 1두에 콩 1두였다. 참하(參下)와 잡직(雜職)은 감하지 않았다. 이어 내궁방(內弓房)과 상방(尙方)의 별조(別造)를 일체 아울러 정지하게 하였다.</p>	<p>命減百官祿。時經費大縮，筵臣引乙丙例請減，故從之。從一品，【米三斗太二斗。】從二品以上，【米二斗太二斗。】正三品，【米二斗太一斗。】六品以上，【米一斗太一斗。】參下及雜職不減。仍命內弓房、尙方別造，一併停止。</p>
<p>영조 32권, 8년(1732) 임자 / 청 옹정(雍正) 10년) 12월 11일(갑자) 1번째기사 반궁에 감귤을 반하하고 나서 이어 선비들을 시험보이다</p>	<p>반궁(泮宮)에 감귤(柑橘)을 반하(頒下)하고 나서 이어 선비들을 시험보였다.</p>	<p>甲子/頒柑于泮宮，仍試士。</p>
<p>영조 32권, 8년(1732) 임자 / 청 옹정(雍正) 10년) 12월 12일(을축) 2번째기사 제주를 구획하기 위해 호남의 곡식을 보내고</p>	<p>하교하기를, “제주(濟州)는 먼 바다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의 식량은 단지 조정의 구획(區劃)에만 달려 있을 뿐이다. 방금 진상물(進上物)을 가지고 온 사람의 말을 듣고 또 본주(本州)의 장문(狀聞)을 살펴보니, 매우 참혹하다고 할 만하다. 비국(備局)으로 하여금 제때에 즉시 구획하게 하라.” 하였다. 드디어 호남의 대동미 2천 석과 저치미 3천 석을 배로 운반하여 진</p>	<p>教曰：“濟州處於極海，民之仰哺，只在於朝廷之區劃，而纔聞進上領來人之言，又觀本州狀聞，可謂孔慘。其令備局，趁卽區劃。”遂以湖南大同米二千石、儲置米三千石，船運補賑。又以副校理沈聖希差遣本州御史，督運監</p>

<p>심성희를 어사로 파견하다</p>	<p>자(賑資)에 보태게 하고, 또 부교리 심성희(沈聖希)를 본주(本州)의 어사(御史)로 차견하여 운송을 독책하고 진구(賑救)를 감독하게 하였다.</p>	<p>賑。</p>
<p>영조 33권, 9년(1733) 계축 / 청 옹정(雍正) 11년) 1월 2일(갑신) 1번째기사 약원 도제조 서명균이 왕대비에 올릴 환약을 더 만들자고 청했다</p>	<p>약원 도제조(藥院都提調) 서명균(徐命均)이 동조(東朝)6538) 에 올릴 환약(丸藥)을 더 만들자고 청하니, 임금(上)이 말하기를, “예전에 만든 것도 아직 남아 있으니, 조금 큰 제사를 지낼 때까지 기다렸다가 재료를 취하여 넣도록 하라.” 하였다. 이는 그 약에 염소의 간(肝)이 들어가므로 이런 짐승 잡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서명균이 말하기를, “이는 곧 인자한 마음에서 우려난 것입니다.” 하였다.</p>	<p>甲申/藥院都提調徐命均請加製東朝進御丸劑，上曰：“舊製尚有餘，差待大祭後，取材製入。”蓋藥入羊肝，而不欲爲此宰殺也。命均曰：“此乃仁心所發也。”</p>
<p>영조 33권, 9년(1733) 계축 / 청 옹정(雍正) 11년) 1월 10일(임진) 4번째기사 도성의 쌀값이 등귀하고 품귀 현상이 일어나자 금주령을 거둬 내렸다</p>	<p>금주령(禁酒令)을 거둬 내렸다. 이때 도성(都城)의 쌀값이 뛰면서 품귀 현상이 일어났는데, 비국 당상(備局堂上) 김동필(金東弼)이 ‘곡식을 소비시키는 것으로 술보다 더 심한 것이 없으니, 엄중하게 금지할 것’을 청하자, 임금(上)이 그대로 따른 것이다.</p>	<p>命申禁酒令。時，都下米直踊貴，備堂金東弼言糜穀莫如酒，請嚴禁，上從之。</p>
<p>영조 33권, 9년(1733) 계축 / 청 옹정(雍正) 11년) 1월 17일(기해) 1번째기사 약원에서 입진을 청하니 거절하다</p>	<p>약원(藥院)에서 입진(入診)을 청하니, 비답(批答)하기를, “옛사람의 말에 ‘온갖 보양(補養)이 모두가 헛것이고 다만 마음을 맑게 하는 것이 요방(要方)이다.’ 하였다. 지금 나는 시상(時象)에 시달려서 그런 것이니, 다시는 약을 의논하지 말라.” 하고, 또 여러 대신(大臣)들이 시골에 있으면서 서울에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엄중한 하교(下敎)를 내렸다.</p>	<p>己亥/藥院請入診，批曰：“昔人有言，萬般補養皆虛僞，只有清心是要方。今予困於時象，勿復議藥。”又以諸大臣之在鄉不來，下嚴教。</p>
<p>영조 33권, 9년(1733) 계축 / 청 옹정(雍正)</p>	<p>약원 도제조(藥院都提調) 서명균(徐命均)과 제조(提調) 송인명(宋寅明)이 입시(入侍)하였다. 서명균이 약원에 내린 비답의 뜻이 중도(中道)에 지나친 점을</p>	<p>藥院都提調徐命均、提調宋寅明入侍。命均陳藥院批旨過中之失，上曰：</p>

<p>11년) 1월 17일(기해) 2번째기사 서명균 등이 약원에 내린 명이 지나치다 하고 승지 황정이 권영의 일이 지나치다 하다</p>	<p>들어 말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여러 신하들이 나의 병을 첨가시켜 놓고 곧 의원(醫員)으로 하여금 치료하도록 하느냐? 예로부터 약을 먹지 않은 자가 없으나, 다만 만석군(萬石君)6562)만이 먹지 않았다. 내가 어찌 지나친 일을 하기를 좋아할 리가 있겠는가?(후략)</p>	<p>“諸臣添予病，而乃使醫治之耶？自古無不服藥者，只有萬石君之不食而已，予豈樂爲過舉也?(후략)</p>
<p>영조 33권, 9년(1733) 계축 / 청 옹정(雍正) 11년) 1월 18일(경자) 2번째기사 약방에서 입진하고, 도제조 서명균 등이 의약을 청하였으나 불허하다</p>	<p>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다. 도제조(都提調) 서명균(徐命均) 등이 의약(議藥)을 청하였으나, 임금이 윤택하지 않았다. 환약(丸藥)을 들일 것을 청하였으나, 그것도 윤택하지 않았다.</p>	<p>藥房入診。 都提調徐命均等請議藥，上不許。 請進丸劑，又不許。</p>
<p>영조 33권, 9년(1733) 계축 / 청 옹정(雍正) 11년) 1월 18일(경자) 3번째기사 판부사 민진원과 이의현이 서울에 들어와 의약을 청하여 허락하다</p>	<p>판부사(判府事) 민진원(閔鎭遠)과 이의현(李宜顯)이 엄중한 하교로 인해 서울에 들어와서 금오(金吾)에서 왕명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임금이 기다리지 말고 입시(入侍)하라고 명하였다. 민진원이 말하기를, “어제 삼가 하교를 보건대, 신들 때문에 의약(議藥)을 윤택하지 않으시고 환약도 드시지 않으신다고 하오니, 신 등은 죽어도 여죄(餘罪)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하의 한 몸은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이 의지한 바요, 동조(東朝)6567)께서 부탁하신 바인데, 어찌 자신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십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卿) 등이 만약 깨달았다면 그것은 나에게 약을 의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하였다. 민진원이 말하기를,</p>	<p>判府事閔鎭遠、李宜顯因嚴教入京，待命於金吾，上命勿待命入侍。 鎭遠曰：“昨伏見下教，以臣等之故，不許議藥，不御丸劑，臣等死有餘罪，而殿下一身，是宗社所依，東朝所托，何自輕若是？”上曰：“卿等若覺悟，則是開予議藥之路也。”鎭遠曰：“臣等迷劣不覺，而豈可以議藥一節，使之開迷耶？與諸大臣力請，而終不回聽，則豈敢復以大臣自處乎？”上笑曰：“卿每以威臣自居，今日初聞大臣之稱，予豈不感動</p>

	<p>“신 등이 혼미하고 용렬하여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찌 약을 의논하는 한가지 일을 가지고 혼미해진 일을 열리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 대신(大臣)들과 극력 청했는데도 끝까지 들어주시지 않으신다면 어찌 감히 다시 대신으로 자처(自處)할 수가 있겠습니까?”</p> <p>하니, 임금(上)이 웃으며 말하기를,</p> <p>“경은 매양 척신(戚臣)으로 자처하였는데, 오늘에야 처음으로 대신(大臣)이라고 일컫는 말을 들었으니, 내가 어찌 감동하지 않겠는가? 환약은 마땅히 경을 위해 먼저 먹도록 하겠다.”</p> <p>하였다.</p>	<p>乎? 丸劑當爲卿先進矣。”</p>
<p>영조 33권, 9년(1733) 계축 / 청 옹정(雍正) 11년) 1월 19일(신축) 3번째기사 우의정 김흥경이 사죄 하고 의약을 드시기를 청하니, 윤허하다</p>	<p>우의정 김흥경(金興慶)이 나와 사죄하였다. 임금이 인견(引見)하였는데, 김흥경이 의약(議藥)을 허락해 줄 것을 청하니, 임금이 대신(大臣)을 공경한다는 뜻으로 윤허하였다.</p>	<p>右議政金興慶出謝。 上引見， 興慶請許議藥， 上以敬大臣之義許之</p>
<p>영조 33권, 9년(1733) 계축 / 청 옹정(雍正) 11년) 2월 16일(무진) 2번째기사 임금이 미역 6백 동과 장 20통을 두 진휼소 에 보내어 죽에 보태 게 하였다</p>	<p>임금이 미역 6백 동(同)과 장(醬) 20통(桶)을 두 진휼소(賑恤所)에 보내어 진휼소의 죽(粥)에 보태게 하였다. 또 어공미(御供米)에서 감한 것을 보리가 익을 때까지 수량을 계산해서 두 진휼소에 나누어 주어 간혹 밥을 해 주게 하고, 또 쌀 5섬과 장 5통을 병조에 하사(下賜)하여 문을 지키는 기병(騎兵)에게 나누어 주게 하였다.</p>	<p>上下藿六百同、醬二十桶于兩賑所，使補賑粥。 又命御供米所減者，限麥秋計數分給兩賑所，使之間間饋飯。 又下米五石、醬五桶于兵曹，使之分給守門騎兵。</p>
<p>영조 33권, 9년(1733) 계축 / 청 옹정(雍正)</p>	<p>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여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備局堂上)이 같이 들어 갔다. 임금이 말하기를,</p>	<p>藥房入診，大臣備堂同入。 上曰：“東朝軫念飢民，將以惠廳所進朔膳米，依</p>

11년) 2월 20일(임신)
4번째기사
대신과 비국 당상에게
선혜청에서 올릴 삭
선미를 내어 진휼을
돕게 하도록 명하다

“동조(東朝)께서 굶주린 백성을 염려하시어 장차 선혜청(宣惠廳)에서 올릴 삭선미(朔膳米)를 작년의 예(例)에 의하여 내주어 진휼(賑恤)에 필요한 물자를 돕게 하려고 하시니, 동조(東朝)의 은덕을 베푸는 뜻을 감히 따르지 않을 수가 없다. 마땅히 명례궁(明禮宮)에서 2백 섬을 내어다가 두 진휼소(賑恤所)에 나누어 주도록 하라.”

하였다. 판의금(判義禁) 김동필(金東弼)이 말하기를,
“작년에 이조 판서 조상경(趙尙綱)이 아뢰어 법을 지키지 않은 수령(守令)에 대해 금고(禁錮)시키는 연한(年限)을 곡식의 섬 수로 마련하라는 일을 성상의 하교에 의해 묘당(廟堂)에 나아가 상의했더니, 여러 의논이, ‘쌀 1백 섬 이상은 3년을 금고시키고, 2백 섬 이상은 5년을 금고시키고, 3백 섬 이상은 10년을 금고(禁錮)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는데, 이것을 법식(法式)으로 정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범한 바에 아마도 공사(公事)와 사사(私事)의 구분이 있어야 할 것 같다.”

하였다. 심수현(沈壽賢)이 말하기를,
“형률(刑律)에는 왕법(枉法)6638 과 불왕법(不枉法)이 있는데, 왕법에는 스스로 마땅히 시행해야 할 형률이 있으나 불왕법은 죄가 3천 리의 유배(流配)에 그칩니다. 지금 이렇게 품정(稟定)한 것은 그 뜻이 불왕법에 대해 본죄(本罪) 외에 이 형률을 가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로써 법식으로 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김동필이 말하기를,
“화속(火粟)6639 의 용처(用處)도 공용(公用)과 사용(私用)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하리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昨年例出給，俾補賑資，東朝德意，不敢不將順。當自明禮宮，出給二百石，分給兩賑所。”判義禁金東弼曰：“上年因吏曹判書趙尙綱所啓，不法守令，禁錮年限，以石數磨鍊事，依上教，就議廟堂，則諸議以爲：‘米一百石以上，三年禁錮；二百石以上，五年禁錮；三百石以上，十年禁錮宜當。’云，以此定式乎？”上曰：“其所犯，似有公私之分矣。”沈壽賢曰：“律有枉法不枉法，而枉法則自有當施之律，不枉法則罪止流三千里。今此稟定，意欲於不枉法，本罪之外，加以此律矣。”上曰：“以此定式可也。”東弼曰：“火粟用處，亦有公私之異，此則何以爲之乎？”上曰：“火粟當補公用，何私之有？”提調宋寅明曰：“關西、關東則守令初無月廩，而皆從火粟中出，勢難一例論之矣。”上曰：“然。”東弼曰：“錢布濫用者禁錮之法，當以地部詳定價，折米計贓乎？”上可之。戶曹判書金在魯曰：“禁錮年限，準期之後，不可直請蕩滌。歲抄書入時，以年限已準，措辭於罪目之下，以俟上裁爲好矣。”上從之。”

	<p>“화속은 마땅히 공용(公用)에 보태야 하는 것인데, 어찌 사용(私用)이 있을 수 있는가?”</p> <p>하였다. 제조(提調) 송인명(宋寅明)이 말하기를,</p> <p>“관서(關西)와 관동(關東) 지역에는 수령(守令)들이 애당초 월급이 따로 없고 모두 화속에서 나오고 있으니, 형편상 같은 예로 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p> <p>하니, 임금(君)이 그렇다고 하였다. 김동필(金東弼)이 말하기를,</p> <p>“전포(錢布)를 남용(濫用)한 자에 대해 금고(禁錮)시키는 법은 마땅히 지부(地部)6640) 에서 정한 값으로 쌀을 가지고 장물(贓物)에 대한 액수를 계산하리까?”</p> <p>하니, 임금(君)이 좋다고 하였다. 호조 판서 김재로(金在魯)가 말하기를,</p> <p>“금고의 연한은 기한이 된 후에 곧 바로 탕척(蕩滌)6641) 시킬 수는 없습니다. 세초(歲抄)6642) 를 기록하여 들일 때 그 연한의 만기가 된 것을 죄목(罪目) 밑에 기록하였다가 성상의 결재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p> <p>하니, 임금(君)이 그대로 따랐다.</p>	
<p>영조 33권, 9년(1733) 계축 / 청 옹정(雍正) 11년) 2월 25일(정축) 3번째기사 종친부에서 가난한 종신들의 춘궁기에 대한 대책을 호소하다</p>	<p>종친부(宗親府)에서 아뢰기를,</p> <p>“종신(宗臣) 중에서 매우 가난하고 곤궁한 자는 다만 누료(廩料)만으로 살아 가고 있는데, 바야흐로 춘궁기(春窮期)를 만났으니, 청컨대 해조(該曹)로 하여금 음식물을 주어 구제하게 하소서.”</p> <p>하니, 임금(君)이 그대로 윤허하였다.</p>	<p>○宗親府啓言：“宗臣之最甚貧窮者，只以廩料資生，而方當春窮，請令該曹，題給食物以濟之。”上允之。</p>
<p>영조 33권, 9년(1733) 계축 / 청 옹정(雍正) 11년) 2월 29일(신사) 2번째기사 좌의정 서명균과 호조</p>	<p>좌의정 서명균(徐命均)이 말하기를,</p> <p>“지난번에 초식(草食)을 먹고 초의(草衣)를 입어야 한다는 하교(下敎)가 있었으니, 마땅히 그 좋은 뜻을 받들어 순종하여 용도를 절약(節約)하고 줄이는 방법으로 삼아야 할 것인데, 작년(去年)에 재감(裁減)6652) 을 했더니 공인(貢人)의 무리들은 실직(失職)을 하였다고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금년에는</p>	<p>左議政徐命均曰：“頃有草食草衣之敎，當將順其美，以爲節省之道，而昨年裁減，貢人輩失業呼冤，今年則將分數裁減矣。”蓋以貢物裁減，有議大臣之敎也。戶曹判書金在魯曰：“昨年裁減，</p>

<p>판서 김재로 등이 공상하는 물품의 재감에 대해 논의하다</p>	<p>장차 형편에 맞게 재감할 것이나, 대개 공물을 재감하는 것은 대신(大臣)과의 의논하라는 하교가 있었습니다.”</p> <p>하고, 호조 판서 김재로(金在魯)가 말하기를,</p> <p>“작년에 재감한 것은 모두가 성상께 공상(供上)하는 물품이었습니다. 무릇 성상께 공상하는 등의 물품을 어떻게 재감할 수가 있겠습니까?”</p> <p>하니, 임금(임금)이 명하기를,</p> <p>“임금에게 공상하는 것에 수요(需要)되는 것은 별도의 단자(單子)에 기록하여 들여보내라. 지나친 경비에 가까운 것은 마땅히 재감할 것이다.”</p> <p>하였다. 시독관(侍讀官) 조명겸(趙明謙)이 말하기를,</p> <p>“지난번에 성상께서 초의를 입고 초식을 먹어야 한다고 하신 하교는 진실로 천년에 한번 있는 일입니다. 여러 신하들이 진실로 능히 이로 인해 분발한다면 당우(唐虞)6653)의 치세(治世)인들 어찌 만들지 못할 것을 근심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유사(有司)의 신하로서 임금의 몸에 관계되는 것을 가지고 어찌 감히 재감(裁減)하기를 청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찌 증자(曾子)의 양지(養志)하는 도리가 되겠습니까? 물품의 종류를 재감함에 이르러서는 진실로 용도를 절약(節約)하는 방법에 이익이 있다면 어찌 공인(貢人)들의 원망 때문에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유신(儒臣)이 진달한 것은 대체로 다 좋은 것이니, 마땅히 유의(留意)하겠다.”</p> <p>하였다.</p>	<p>皆御供物也。凡係御供等物，何可裁減乎?” 上命御供所需，別單書入。近於浮費者，當裁減矣。侍讀官趙明謙曰：“頃者聖上草衣草食之教，此誠千載一會也。群下苟能因此闡發，則唐、虞之治，何患不做? 今有司之臣，以關係上躬，何敢仰請裁減爲言，此豈曾氏養志之意耶? 至於物種裁減，苟有益於節省之道，則豈以貢人之怨，而不爲乎?” 上曰：“儒臣所達，大體儘好，當留意焉。”</p>
<p>영조 33권, 9년(1733) 계축 / 청 옹정(雍正) 11년) 3월 17일(무술) 1번째기사</p>	<p>약방(藥房)에서 들어와 진찰하였다. 하교하기를,</p> <p>“어제 길가에 굶주린 백성이 있는 것을 보고서 마음속으로 매우 불쌍하게 여겼는데 승지가 그에 대해 진달한 바가 있었으므로 그렇게 하게 하였다. 그뒤 다시 생각하여 보니 왕자(王者)가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는 본디 대체(大體)가</p>	<p>戊戌/藥房入診。教曰：“昨日路傍見飢民，心甚惻傷，承宣有所陳達，故可之矣。伊後思之，王者治國，自有大體，爲民賑濟，亦有輕重。徒區區於</p>

하교하여 선미를 진흥소에 나누어 지급하게 하다

있는 것이고 백성을 위하여 진구(賑救)하는 것도 경중(輕重)이 있었다. 따라서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애를 쓰면서 선후책(善後策)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것을 왕정(王政)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많은 백성을 애휼(愛恤)함에 있어 어떻게 보고 들은 것이 다른 것에 따라 한때의 은혜를 베풀 수가 있겠는가? 어제 거행하게 한 선미(膳米) 2백 포(包)를 내려주지 말고 두 곳의 진흥소(賑恤所)에 나누어 지급(題給)하여 진흥에 필요한 물자에 보태게 하라.”

하였다. 어제 환궁(還宮)할 때 대가(大駕)가 종루가(鍾樓街)에 이르자 진문(陣門)을 열고 죽을 얻어먹기 위해 나온 기민(飢民)들을 불러 위유(慰諭)하였다. 그리고 승지(承旨) 서종옥(徐宗玉)의 아뢰므로 인해 굶주린 백성에게 일순(一巡)의 양미(糧米)를 지급(題給)하게 함으로써 특별한 은혜를 보이게 했는데, 이때에 이르러 이런 하교가 있었으므로 전일에 내린 명령은 도로 정지되었다. 도제조(都提調) 서명균(徐命均)이 태복시(太僕寺)의 말 가운데 어승(御乘)에 쓸 만한 것은 단지 2필(匹)뿐이니 만부(灣府)6686)와 북병영(北兵營)으로 하여금 호마(胡馬)를 사서 올려 보내게 할 것을 청하였다. 서명균이 방금 태복제조(太僕提調)를 겸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뢴 것이다. 임금이 이르기를, “마정(馬政)은 옛날에도 중요하게 여겨왔는데, 우리 나라라고 어찌 말이 없겠는가? 제주(濟州)에서 나는 준마(駿馬) 가운데도 호마보다 나은 것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 나는 것을 버려두고 멀리 다른 지역에서 구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는 면주(綿紬)를 버리고 사라 능단(紗羅綾緞)을 구하는 것과 너무도 같다. 개시(開市)6687) 할 때에도 말을 사는 것은 금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길을 열어 놓아 국가에서 1필(匹)을 취하면 아래에서는 반드시 10필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국가에 금법(禁法)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위에서 범할 수 있겠는가? 수시로 사 오는 것은 비록 고례(古例)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안된다.”

目前，不思所以善後，奚曰王政？且愛恤元元，有何見聞之異，爲一時之惠？昨日舉條勿施，膳米二百包，分給兩賑所，以補賑資。”昨日還宮，駕至鐘樓街，開陣門，召入就粥飢民慰諭之。因承旨徐宗玉所奏，命給飢民一巡糧米，以示別惠，至是有是教，而還寢前命。都提調徐命均以太僕馬之入於御乘者，只二匹，請令灣府及北兵營，買進胡馬。命均方兼太僕提舉故也。上曰：“馬政古亦重之，而我國亦豈無馬乎？濟產之駿，亦有勝於胡馬者，何用捨我國之產，而遠求他域乎？殆同捨綿紬，而求紗羅綾緞也。開市時買馬有禁，今開此路，則國家取一匹，而自下必取十匹矣。且國有禁法，而何可自上犯之乎？無時買來，雖有古例，此則不可矣。”

<p>영조 33권, 9년(1733 계축 / 청 옹정(雍正) 11년) 3월 22일(계묘) 3번째기사 도제조 서명균이 중국 에서 사치품을 수입하 고 궁중이 사치하는 것을 금하기를 청하다</p>	<p>하였다. 약방(藥房)에서 들어와 진찰하였다. 도제조(都提調) 서명균(徐命均)이 말하 기를, “서장관(書狀官)의 장계(狀啓) 말단에 기재된 말은 진실로 옳습니다. 십수 만 냥의 은(銀)을 가지고 당물(唐物)6696) 을 무역하노라면 비용이 적지 않게 드 는데다 그에 따라 사치스런 풍속이 점점 성해져 여염(閭閻)에서 더욱 극심합 니다. 그리하여 의복과 음식이 남만 못한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있는 지경 이니, 이런 풍속은 엄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적으로 위에 있 는 사람들이 솔선수범(率先垂範)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성상께서는 복어(服 御)를 검소하게 하시므로 더 힘쓸 것이 없습니다만, 궁중(宮中)의 복식(服飾) 은 지나친 사치의 풍습이 없지 않은 듯하니, 특별히 신칙(申飭)하시어 아랫사 람을 교화시키는 근본으로 삼으소서.” 하니, 임금의 옳게 여겼다. 서명균이 또 말하기를, “여인(女人)들이 모여 있으면 으레 잔담 말이 많게 되고 또 낭비하는 폐단이 있게 되니, 궁인(宮人)에 딸린 사람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일절 이정(釐正)함 으로써 궁금(宮禁)을 엄숙하게 하고 쓸데없는 폐단을 줄이는 방도로 삼으소 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지난번에도 이정한 일이 있었으나, 다시 신칙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서명균이 말하기를, “여러 궁가(宮家)에 소속된 원액(員額)의 수효가 많아서 늙식(廩食)을 헛되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공주(公主)들 가운데 후사(後嗣)가 없는 제사는 수진 궁(壽進宮)의 전례와 같이 한 곳으로 모아 보낸다면 원액(員額)을 줄일 수도 있고 부식(浮食)을 제거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p>	<p>藥房入診。 都提調徐命均曰：“書狀官 狀啓末端語，誠然矣。 以十數萬兩之 銀，貿得唐物，爲費不貲，而侈風漸盛， 閭閻尤甚。 衣服飲食，恥不若人，嚴 禁此風則好矣， 而此專在上者之導 率。 聖上服御之儉，無以加勉，而宮 中服飾，恐不無侈靡之習，別爲申飭， 以爲化下之本焉。” 上可之。 命均又 言：“女人聚居，例多細語，且有浮費 之弊。 宮人所率之甚多者，一切釐正， 以爲肅宮禁省冗弊之地。” 上曰：“頃 有釐正之事，更當申飭矣。” 命均曰： “諸宮家所屬員額數多，空費廩食。 若 以諸公主無後之祭，會送一處，如壽進 宮例，則可以減員額，而祛浮食矣。” 上曰：“三公主宮，非爲其屬也。 明聖 王后嘗有教，故未能罷矣。”</p>
---	--	---

	<p>“세 공주의 궁(宮)은 거기에 예속시킬 수 없다. 명성 왕후(明聖王后)께서 일찍이 하교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폐지할 수가 없다.” 하였다.</p>	
<p>영조 34권, 9년(1733) 계축 / 청 옹정(雍正) 11년) 4월 16일(정묘) 2번째기사 장령 김정윤이 북도에서 봉진하던 연어를 궁차들이 돈으로 바치는 것을 금하기 청하다</p>	<p>장령 김정윤(金廷潤)이 상소하였다. 그 대략에 이르기를, “북도(北道)에서 연어(鱧魚)를 봉진(封進)하던 것을 궁차(宮差)6750) 와 감색(監色)6751) 무리들이 돈으로 대신 바치고 민간에 나누어 거둡니다. 청컨대 별도로 법식을 정하여 잡는 대로 나누어 쓰게 하고 돈으로 바치는 폐단을 엄히 더 금단하게 하소서. 안변(安邊)의 석왕사(釋王寺) 배[梨]는 곧 태조 대왕(太祖大王)께서 잠저(潛邸)6752) 때 친히 심으신 것이므로 진상(進上)하는 규례가 있었는데 배나무는 햇수가 오래되어 말라 죽고 승도(僧徒)들이 해마다 사서 바쳤으니, 마땅히 감해주는 방도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안변(安邊)의 동점(銅店)과 정평(定平)의 은점(銀店)은 마침내 성사(成事)하지 못하였으니 당초의 호조 낭청(戶曹郎廳)은 일을 잘못 도모한 죄로 견과(譴罷)를 실시하고 감색(監色)은 조사해 다스리게 하소서. 원산(元山)의 판재(板材)는 곧 북로(北路)의 수령(守令)들이 탐장(貪贓)하던 물건입니다. 또한 도신(道臣)에게 신칙하여 각별히 금단하게 하소서. 친기위(親騎衛)6753) 의 전마(戰馬)는 기유년(6754) 흥년에 어사(御史)에게 호소하여 팔아 먹고 개립(改立)하지 않은 것이 많이 있으니, 청컨대 본도에서 조사해 내어 개립하게 하소서. 육진(六鎭)의 수령은 마땅히 문무관(文武官)으로 돌려가며 차임(差任)해야 합니다. 종성 부사(鍾城府使) 이중술(李重述)은 구전(口傳)6755) 으로 차출(差出)되었는데도 아직 출숙(出肅)하지 않아 조령(朝令)이 지체되고 있어 신은 가만히 개연(慨然)하게 여깁니다. 북로의 수령과 변장(邊將)이 탐장하는 물건과 잠상(潛商)들의 왕래하는 길이 모두 정평(定平)의 장곡(長谷) 사이를 경유하는데 고산 찰방(高山察訪)이 30리 밖에 있으니, 어찌 능히 일일이 검찰(檢察)하겠습니까? 청컨대 도신에게 분부하여 이 길로 왕래</p>	<p>掌令金廷潤上疏, 略曰: 北道鱧魚封進, 宮差與監色輩, 以錢代捧, 分徵民間。請另令定式, 隨所捉分用, 而捧錢之弊, 嚴加禁斷。安邊釋王寺生梨, 卽太祖大王潛邸時, 親自種植者也。故有進上之規, 而梨樹則年久枯死, 僧徒逐歲貿納, 宜有減給之道也。安邊銅店、定平銀店, 畢竟無成, 當初戶曹郎廳謀事不臧之罪, 請施譴罷, 監色查治。元山板材, 卽北路守令貪贓之物也。亦令申飭道臣, 各別禁斷。親騎衛戰馬, 己酉凶荒, 呈于御史, 多有賣食, 而不改立者, 請令本道查出, 使之改立。六鎭守令, 宜以文武輪差。鍾城府使李重述以口傳差出, 而尙不出肅, 朝令稽緩, 臣竊慨然也。北路守令、邊將貪贓之物, 潛商往來之路, 皆由於定平長谷間, 而高山察訪在三十里外, 何能一一檢察乎? 請分付道臣, 往來此路者, 隨現屬公, 嚴加防塞。朝士之親年七十者, 勿敘三百里外, 而谷山府使趙傲則晏然冒</p>

하는 자는 나타나는 대로 속공(屬公)6756) 하게 하여 엄한 방색(防塞)을 더하게 하소서. 조사(朝士)들의 부모 나이가 70세가 된 자는 3백 리 밖에 서임(敍任)하지 말아야 하는데, 곡산 부사(谷山府使) 조경(趙敬)은 안연(晏然)히 무릅쓰고 부임하였으며 그의 동생 조담(趙淡)은 호읍(湖邑)에서 정체(呈遞)6757) 하였으니, 어떻게 그 의리를 지킴이 뒤섞였습니까? 청컨대 조경의 관직을 파하소서. 영원 부부인(靈原府夫人)은 유적(維賊)6758) 이 복주(伏誅)된 뒤로 강촌(江村)에 오두막집을 세로 얻었는데 무릎을 용납할 수 없으니, 마땅히 고희(顧恤)하는 은전(恩典)을 내려야 하겠습니까. 요즘 공사(公事)의 출납이 더러 지체됨이 있어 왕사(王司)의 파직 전지(傳旨)와 전조(銓曹)의 정사(政事) 취품(取稟)을 혹은 밤을 지나서야 비로소 내리시고 혹은 며칠을 지나서야 내리십니다. 청컨대 유념을 더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맨먼저 진달한 칙려(飭勵)하라는 일과 감해 주라는 일은 그대로 실시하겠다. 감색배(監色輩)를 조사해 다스리는 일은 도신(道臣)에게 분부하여 거행하게 할 것이며, 해조(該曹)의 낭관(郎官)은 금오(金吾)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겠고, 도신을 신칙하라는 일과 전마(戰馬)에 대한 일도 또한 본도로 하여금 그대로 시행하게 하겠다. 그런데 어사(御史)가 팔아먹는 것을 허락한 것은 사체(事體)가 미안하니 추고(推考)하겠고, 문무관으로 교체하는 일은 일찍이 칙려하였으나 다시 전조(銓曹)에 신칙하겠다. 중성 부사는 해조(該曹)로 하여금 엄하게 사조(辭朝)6759) 할 것을 독촉하게 할 것이고 잠상의 일은 비국(備局)에서 분부토록 하겠다. 형제간에 혹은 부임하고 혹은 부임하지 않은 것은 반드시 사유가 있을 것이다. 마땅히 대신에게 물어서 처리하겠다. 근래 정사(政事)를 날마다 열었으나 이목(耳目)의 신하들이 위패(違牌)6760) 를 일삼고 있고, 위에 있는 자는 날로 그 수응(酬應)을 일삼고 있어 다만 사체(事體)만 손상되므로 더러 유체(留滯)되는 것도 또한 처사를 신중히 하는 뜻에서 연유된 것이

赴, 其弟倓則呈遞湖邑, 何其處義之斑駁耶? 請罷趙敬之職。 靈原府夫人自維賊伏法之後, 貫得斗屋於江村, 無以容膝, 宜有顧恤之典。 近日以來, 公事出納, 或有稽滯, 王司之罷職傳旨、銓曹之政事取稟, 或經夜始下, 或過數日乃下。 請益加留念。

批曰: “首陳飭勵事、減給事依施, 監色輩查治事, 分付道臣舉行, 該曹郎令金吾處之。 申飭道臣事、戰馬事亦令本道依施, 而御史之許賣, 事體未安, 推考。 文武交差, 曾已飭勵, 更飭銓曹。 鍾城府使令該曹嚴督辭朝, 潛商事, 令備局分付。 兄弟之間, 或赴或不赴, 必有其由, 當問于大臣而處之。 近來政事之開, 無日無之, 耳目之臣, 違牌爲事, 在上者日事酬應, 徒傷事體, 或爲留滯, 亦爲持重之意。” 後因藥房入診, 都提調徐命均奏曰: “北關之以文吏差遣, 年前李德壽爲亞銓時陳稟者, 而畢竟只以韓師得爲甲山府使, 其後更不以文吏差遣, 蓋勢所難行故也。 大臣以諸道關帥必經六鎮守令, 然後始爲擬差事, 著爲掣令, 而中間此法已廢。 今若申明舊制, 以六鎮守令

	<p>다.”</p> <p>하였다. 뒤에 약방(藥房)의 입진(入診)으로 인하여 도제조(都提調) 서명균(徐命均)이 아뢰기를,</p> <p>“북관(北關)에 문관(文官)을 차견(差遣)한 것은 연전에 이덕수(李德壽)가 아전(亞銓)6761 이 되었을 때 진품(陳稟)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필경에는 단지 한사득(韓師得)만을 갑산 부사(甲山府使)로 삼았고 그 뒤에 다시 문관을 차견하지 않았던 것은 대개 형편이 실행하기 어려웠던 까닭이었습니다. 대신(大臣)이 여러 도(道)의 곤수(關帥)6762) 는 반드시 6진(六鎭)의 수령을 거친 다음에 비로소 의차(擬差)6763) 하여야 된다는 일을 조례(條例)로 만들었으나 중간에 이 법이 이미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만일 옛날의 제도를 거듭 밝혀서 6진의 수령으로 곤수의 계제(階梯)를 삼는다면, 앞으로 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의 그대로 따르고 잇따라 하교하기를,</p> <p>“근래에 영장(營將)을 허다하게 골라서 차임(差任)하지 않고 있는데, 무신(武臣)은 반드시 영장을 거친 다음에 곤수에 제수하는 일도 또한 신칙(申飭)하는 것이 옳겠다.”</p> <p>하고, 또 조경의 일을 물으니, 서명균이 말하기를,</p> <p>“곡산(谷山)은 내지(內地)이기 때문에 조경이 먼저 어미를 데리고 내려갔었는데, 그의 동생 조담이 옥천 군수(沃川郡守)가 되자 옥천에서 곡산까지의 거리가 3백 리 바깥이 되기 때문에 전례를 끌어 체차(遞差)할 것을 청하는 글을 올렸다 합니다.”</p> <p>하니, 임금의 말하기를,</p> <p>“그러하면 대관(臺官)의 상소는 사실과 달랐다.”</p> <p>하고, 또 분부하기를,</p> <p>“영원 부부인이 강교(江郊)에 있다고 들었으니, 해조(該曹)로 하여금 식물(食</p>	<p>爲關帥階梯，則將有其效矣。” 上從之，仍教曰：“近來營將多不擇差，武臣必歷營將，然後除關帥事，亦申飭可也。” 又問趙倣事，命均曰：“谷山是內地，故趙倣先爲將母下往，而其弟倣爲沃川郡守，沃川距谷山爲三百里外，故引例呈遞云矣。” 上曰：“然則臺疏爽實矣。” 又教曰：“靈原府夫人聞在江郊，令該曹食物輸送。”</p>
--	---	--

	<p>物)을 실어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p>	
<p>영조 34권, 9년(1733 계축 / 청 옹정(雍正) 11년) 4월 20일(신미) 2번째기사 조강에서 《예기》를 강하다가 여기서는 품 절과 의도를 강조하고 있다 하다</p>	<p>(전략)호조 판서 김재로(金在魯)가 흉년이 들고 세입이 감축되어 경비에 쓸 것이 모자라는 까닭에 백관(百官)에게 나누어 주는 녹봉(祿俸)과 군병(軍兵)에 게 흠어 주는 급료(給料)를 좁쌀로 등급을 나누어 참작해 바꾸어 지급하기를 청하니, 임금(上)이 말하기를, “오늘날 계속되는 기근(飢饉)이 여기에 이른 것은 곧 나의 박덕(薄德)한 소치 인데, 나누어 주는 녹봉을 좁쌀로 참작해 바꾸어 주는 것은 내가 매우 부끄러 워하고 있다. 그러나 궁부(宮府)가 일체(一體)인데 백관의 녹봉을 이미 삭감해 바꾸어 주는데 나만 홀로 쌀을 먹는 것을 어찌 참겠는가? 어공(御供)도 역시 좁쌀로 대신 하고 싶으나 국체(國體)에 관계가 있으니 어공미(御供米)는 가을 곡식이 익을 때까지 한정하여 특별히 5분의 1을 삭감하고 선반미(宣飯米) 이 하는 일체 참작해서 바꾸도록 하라.” 하자, 여러 신하들이 모두 어공미는 전에 이미 삭감해 줄었으므로 지금 또 삭 감할 수 없다고 우기니, 임금(上)이 말하기를, “하늘이 사람을 출생시킬 때에는 본래 귀천(貴賤)과 상하(上下)가 없는 것이 다. 임금이 자리를 만든 것은 대개 그 민생을 보안(保安)케 하기 위해서이다. 시절이 흉년이 들어 백성은 궁핍한데 혼자 부귀(富貴)를 누리다면 어찌 이런 이치가 있겠는가? 어공을 삭감하라는 명령은 실제로 나의 지극한 뜻이다.” 하였다. 김재로가 그래도 우기기를 그만두지 않자, 감진 당상(監賑堂上) 조현 명(趙顯命)이 말하기를, “오늘 성상의 분부는 진실로 나라를 흥기시키는 말씀으로 성덕(聖德)에 빛남 이 있으니, 대신과 탁지장(度支長)6776) 은 오직 마땅히 봉행(奉行)해야 할 것인데 하필 억지로 우기기만 합니까? 옛사람이 이르기를, ‘그 하는 바를 잘 추진할 따름이다.’ 하였으니, 성상께서 만일 이 마음을 잘 추급케 한다면 어</p>	<p>戶曹判書金在魯以歲荒稅縮，經用匱 乏。百官頒祿、軍兵放料，請以小米 分等參給，上曰：“今日之荐饑至此， 是予涼德之致。頒祿之參以小米，予 甚愧惡。宮府一體，百官之祿既已減 換，則予何忍獨享大米乎？御供亦欲代 以小米，而有關國體，御供米限秋成， 特減五分之一，宣飯米以下，一切參換 也。”諸臣皆以御供米，前既減省，今 不可又減爭之，上曰：“天之生人，本 無貴賤上下，而作之君師，蓋爲其保安 民生。歲饑民窮，而獨享富貴，寧有 此理？減供之命，實予至意。”在魯猶 爭之不已，監賑堂上趙顯命曰：“今日 聖教，誠興邦之言，有光聖德。大臣 及度支長，惟當奉行，何必強爭乎？古 人云：‘善推其所爲而已。’聖上若善 推此心，則豈不興邦乎？”上是之。在 魯請裁減供上物種，上許以東朝供上 外，並限今年，或停捧，或以次折半供 進。 【史臣曰：減供之命，實盛德事也。 大臣諸臣之爭者，雖出於事體之不可</p>

	<p>찌 나라를 흥기시키지 못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임금)이 옳게 여겼다. 김재로가 공상(供上)하는 물품을 재량하여 삭감할 것을 청하니, 임금(임금)이 동조(東朝)6777) 에 공상하는 것 외에는 모두 금년을 한정하여 혹은 바치는 것을 정지하고 혹은 차례로 반으로 줄여 진상할 것을 허락하였다.</p> <p>사신은 말한다. “공상(供上)을 삭감하라는 명은 실로 성덕(盛德)의 일이다. 대신(大臣)과 여러 신하들의 우기는 것이 비록 사체(事體)로 보아 그만둘 수 없는 처지에서 나왔으나, 조현명의 그 한 마디 말은 능히 인신(人臣)으로서 규간(規諫)하고 권면하는 의리를 얻어서 죽히 임금의 마음을 감동케 함이 있었으니, 아! 아름답다.”</p> <p>영의정 심수현(沈壽賢)이 ‘박찬신(朴贊新)이 흉서(凶書)를 보고도 곧바로 장문(將聞)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사실을 들으니 처음 요량(料量)했던 것과는 다르다.’ 하면서 신구(伸救)하여 아뢰고, 좌참찬(左參贊) 송인명(宋寅明)도 또한 ‘박찬신의 사서(私書)에 「처음에 박광익(朴光益)의 말을 들은 일이 없다.» 하니, 반드시 곡절(曲折)이 있을 것이다.’ 하였으며, 공조 판서(工曹判書) 박문수(朴文秀)는 ‘전라 감사 이성룡(李盛龍)이 박광익을 수금(囚禁)하지 않았고 질의 중을 구핵(究覈)하지 않았으니 마땅히 박찬신과 같이 아울러 나문(拿問)하여야 된다.’고 하니, 임금(임금)이 말하기를,</p> <p>“박찬신의 장사(狀辭)는 끝내 미심(未審)한 데가 있다. 이른바 흉서란 보기도 어렵고 보지 않기도 어렵다는 말이 어찌 진실로 해괴하지 않은가? 끝내 용서할 수 없으며, 도신(道臣)이 승도(僧徒)를 구핵하지 않은 것도 또한 완만(緩慢)하고 경솔한 데 관계되니, 과직(罷職)을 명하라.”</p> <p>하였다. 또 분부하기를,</p> <p>“지난번 유신(儒臣)과 헌신(憲臣)의 상소에 께서(掛書)했다는 말이 있었는데 어느 곳에서 들었는지는 알지 못하겠으나 마침내 이런 변고가 있었으니, 이와</p>	<p>已，顯命一言，能得人臣規勉之義，有足以感發君心，豈哉!”】</p> <p>領議政沈壽賢以朴贊新見凶書，不卽狀聞者，聞其事實，異於初料，伸救以奏。左參贊宋寅明亦以爲：“贊新私書，初無聞朴光益之語，必有委折。”工曹判書朴文秀以全羅監司李聖龍不囚朴光益、不究寺僧，宜與贊新竝爲拿問。上曰：“贊新狀辭，終有所未審者。所謂凶書，見之亦難，不見亦難之說，豈不誠怪駭？終不可容恕。道臣之不究僧徒，亦涉緩忽，命罷職。”又教曰：“向來儒臣、憲臣之疏，有掛書之言，未知先聞於何處，而終乃有此變，預播此等說者，亦殊常矣。”文秀曰：“若欲煽動人心，則當掛於場市，何可掛之於隱僻寺刹乎？此亦可疑矣。”時，一邊人以朴光益爲趙觀彬之妻族，疑觀彬陰嗾掛書，而使告於統帥之行，一以疑亂上心，一以賈禍一邊，故文秀以李聖龍不囚光益爲罪者，意有所在。上心亦以向來兩臣憂國慮患之言，反疑其先聞預播，文秀又以掛之於隱僻寺刹，可疑之說激之，其亦疑阻之甚矣。</p>
--	--	--

	<p>같은 말을 미리 퍼뜨린 것도 또한 수상하다.” 하니, 박문수가 말하기를, “만일 인심을 선동하려고 했다면 마땅히 <그 께서를> 시장(市場)에 걸었을 것인데 어찌 궁벽(窮僻)한 사찰(寺刹)에 걸었겠습니까? 이것도 또한 의심할 만합니다.” 하였다. 이때에 한쪽 사람들이 박광익이 조관빈(趙觀彬)의 처족(妻族)이라는 이유로 조관빈이 께서를 은밀히 사주(使嗾) 하고는 통제사(統制使)의 부임길에 알리게 하여 한편으로는 성상(聖上)의 마음을 의란(疑亂)시키고 한편으로는 한쪽 사람에게 화(禍)를 언도록 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였기 때문에 박문수가 이성룡이 박광익을 수금하지 않은 것으로써 죄를 삼은 것은 뜻을 둔 데가 있었고, 성상의 마음도 또한 지난번 두 신하가 나라를 걱정하고 환란(患亂)을 염려하는 말을 가지고 도리어 그들이 먼저 듣고 미리 퍼뜨린 것이 아닌가 의심하였는데, 박문수가 또 궁벽한 사찰에 걸어 둔 것이 의심할 만하다는 말로 격동케 하였으니 그 또한 의심케 하고 멀리하게 함이 심하였다.</p>	
<p>영조 35권, 9년(1733 계축 / 청 옹정(雍正) 11년) 7월 6일(을유) 2번째기사 임금이 복부에 편안치 못한 증세가 있었다</p>	<p>임금이 복부(腹部)에 편안치 못한 증세가 있었다. 약원(藥院)의 세 제조(提調)가 여러 의관(醫官)을 거느리고 들어가 진찰하였다.</p>	<p>上有腹部不平之候，藥院三提調率諸醫入診。</p>
<p>영조 35권, 9년(1733 계축 / 청 옹정(雍正) 11년) 7월 7일(병술) 1번째기사 임금이 복부에 편안치 못한 증세가 있었다</p>	<p>임금이 복부에 편안치 못한 증세가 더하므로 약원의 세 제조가 여러 의관을 거느리고 들어가 진찰하였다.</p>	<p>丙戌/上腹部不平之候有加，藥院三提調率諸醫入診。</p>

<p>영조 35권, 9년(1733) 계축 / 청 옹정(雍正) 11년) 7월 9일(무자) 2번째기사 임금의 증세가 완전히 회복되다</p>	<p>임금의 증세가 완전히 회복되었으므로 조정의 문후(問候)를 그만두라고 명하였다.</p>	<p>上候快復，命撤廷候。</p>
<p>영조 35권, 9년(1733) 계축 / 청 옹정(雍正) 11년) 7월 9일(무자) 4번째기사 예조에서 중궁전의 수 두가 회복되자 태묘에 고하고 교문을 반포하 다</p>	<p>예조에서 중궁전의 수두가 회복되었다 하여 무술년(6913) 홍진(紅疹)의 전례에 의해 태묘(太廟)에 고하고 교문(敎文)을 반포하며 진하(陳賀)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그리고 권정례(權停禮)로 하의(賀儀)를 거행하되 각도(各道)에다 방물(方物)이나 물선(物膳)을 봉진(封進)하지 말라 하고, 의정부와 육조에서도 또한 다만 표리(表裏)(6914) 만 올리게 하였다.</p>	<p>禮曹以中宮殿水痘平復，請依戊戌年紅疹例，告太廟頒敎陳賀，上允之而以權停禮行賀儀，各道方物物膳勿爲封進，政府六曹亦令只進表裏。</p>
<p>영조 35권, 9년(1733) 계축 / 청 옹정(雍正) 11년) 7월 16일(을미) 1번째기사 약방의 문안 계사에 대해 비답을 내리고 입진을 명하다</p>	<p>약방(藥房)의 문안 계사(問安啓辭)에 대해 비답(批答)하기를, “더위에 원기(元氣)를 손상시켜 바야흐로 탕제(湯劑)를 복용해야 하는데, 기쁨과 근심을 함께 할 신하가 군부(君父)의 처분에 불만을 품고 쌓여온 원한을 풀기 위해 감히 휴퇴(休退)한 대신을 쫓아내니, 이는 군부를 배반하고 처분을 저패(沮敗)시키는 것이다. 그 심사의 통탄스러움을 사람이면 누군들 모르겠는가? 약을 먹고 병을 치료하여 이런 무리를 통렬히 누우치게 함으로써 훗날 지하(地下)에 돌아가 선조를 배알(拜謁)할 명분을 세울 것이니 다음(茶飲)을 의정(議定)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입진(入診)하라고 명하였다.</p>	<p>乙未/藥房問安啓辭，批曰：“暑傷元氣，方服湯劑，而共休戚之臣，愠君父之處分，逞蓄積之狠毒，敢逐休致之大臣，此背戰君父，沮敗處分。痛矣其心，人誰不知？服藥治病，痛悛此輩，他日歸拜，不可不議定茶飲。”命入診。</p>
<p>영조 35권, 9년(1733) 계축 / 청 옹정(雍正) 11년) 8월 7일(을묘)</p>	<p>밤 4경(更)에 임금의 체후(體候)에 산기(疝氣)가 갑자기 심해졌다. 약원(藥院)의 세 제조(提調)를 불러 입진(入診)하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도제조(都提調)가 와서 만약 문안(問安)한다면 동조(東朝)께서 반드시 물어보</p>	<p>夜四更，上候疝氣猝劇，命召藥院三提調入診。上曰：“都提調來到，而若問安，則東朝必問知而貽慮。使之勿爲</p>

<p>8번째기사 체후에 산기가 갑자기 심해졌다</p>	<p>고 아시어 염려를 끼칠 것이다. 그러니 문안하지 말고 곧바로 합문(閣門) 밖으로 오게 하라.” 하였다. 대개 임금의 체후는 온 종일 장전(帳殿)에 있느라 풍한(風寒)의 외감(外感)으로 인하여 산기(疝氣)가 발작한 것인데, 날이 밝아서야 비로소 조금 나왔다.</p>	<p>問安，直來閣外。”蓋上候因鎖日帳殿，風寒外感，疝氣內作，平明始少勝。</p>
<p>영조 35권, 9년(1733) 계축 / 청 옹정(雍正) 11년) 8월 8일(병진) 1번째기사 임금의 병이 좀 안정되다</p>	<p>임금의 체후가 조금 안정되었다. 약방에서 재차 입진(入診)하였다. 도제조가 숙직하기를 청하였으나 임금이 허락하지 않고, 다만 부제조(副提調)만 본원(本院)에 입직(入直)하게 하였다.</p>	<p>丙辰/上候少安。藥房入診者再。都提調請直宿，上不許，只令副提調本院入直。</p>
<p>영조 35권, 9년(1733) 계축 / 청 옹정(雍正) 11년) 8월 9일(정사) 1번째기사 국청의 죄수 김원팔은 원범이니 형을 더하여야 한다 하다</p>	<p>약방에서 입진하였다. 도제조 서명균(徐命均)이 경기 감영(京畿監營)으로 하여금 메추리를 구하여 올리게 할 것을 청하였으나, 임금이 민폐(民弊)가 있다고 하여 그만두라 명하였다. (후략)</p>	<p>丁巳/藥房入診。都提調徐命均請令畿營，覓進鷓鴣，上以有民弊，命止之(후략)</p>
<p>영조 35권, 9년(1733) 계축 / 청 옹정(雍正) 11년) 8월 11일(기미) 1번째기사 임금의 환후로 국기일에 소식을 거행하기 어렵다고 하니 임금이 거절하다</p>	<p>약방에서 입진(入診)하였다. 도제조(都提調) 서명균(徐命均)이 임금의 환후가 회복되지 않아 국기일(國忌日)에 소식(素食)을 거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우려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명릉(明陵)에 대하여 사흘 소식(素食)하였다. 장릉(長陵)은 나에게 고조(高祖)가 되는데 재작년 뒤에 백년 뒤에서야 성조(聖祖)의 의관(衣冠)을 얻어 보게 되었으므로 또한 소식을 행하였다. 이날의 소식을 이제 어찌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는데, 대개 인현 왕후(仁顯王后)의 기신(忌辰)이 14일에 있기 때문이었다.</p>	<p>己未/藥房入診。都提調徐命均以上候未復，國忌行素之難仰奏，上曰：“予於明陵三日食素。長陵於予爲高祖，而再昨年後，則百年之後，得見聖祖衣冠，故亦行素矣。是日之素，今豈不爲乎?”蓋仁顯王后忌辰，在十四日也。</p>

<p>영조 35권, 9년(1733) 계축 / 청 옹정(雍正) 11년) 8월 13일(신유) 1번째기사 인현 왕후의 기일에 소식하기로 따르고 호 서의 흥년에 진휼하도 록 하다</p>	<p>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다. 봉조하 민진원(閔鎭遠)과 호조 판서 김재로(金在魯)를 같이 들어오라고 명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다시 인현 왕후의 기일(忌日)에 소식(素食)을 행할 수 없다는 뜻을 우러러 아뢰니, 임금이 민진원에게 말하기를, “내가 태어난 해에 성모(聖母)께서 복위(復位)되셨다. 아버이를 섬기는 도리는 얼굴을 뵈고 안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유달리 성모의 자애(慈愛)로운 은혜를 입어 슬픈 생각이 그치지 않는데, 어찌 차마 진찬(進饌)할 수 있단 말인가?” 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다시 진달하자 임금이 억지로 따랐다. 민진원이 죄는 중하고 은혜는 깊다며 죄를 감안하여 처단해 줄 것을 청하니, 임금이 위유(慰諭)하였다. 김재로가 기유년(6986)의 군포(軍布)를 쌀로 바꾸어 호서(湖西)의 흥년에 나누어 주어서 진휼(賑恤)한 것을 돈으로 환봉(還捧)하여 1만 3천 냥(兩)을 호조에 귀속시켰는데, 쌀로 바꾸어 올려 보내게 하여 핍절(乏絶)한 반록(頒祿)에 보충시킬 것을 청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p>	<p>辛酉/藥房入診，命奉朝賀閔鎭遠及戶曹判書金在魯同入。諸臣更以仁顯王后忌日，不可行素之意仰奏，上語鎭遠曰：“予之生年，聖母復位。事親之道，不在於承顏與否。偏荷聖母慈愛之恩，愴慕有不能自己，何忍進饌乎？”諸臣更陳，上強從之。鎭遠以罪重恩深，請蒙勘處，上慰諭之。在魯請以湖西己酉軍布作米之歉歲分賑，以錢還捧，一萬三千兩零，屬之地部，作米上送，以補頒祿之乏絶，上許之。</p>
<p>영조 35권, 9년(1733) 계축 / 청 옹정(雍正) 11년) 8월 18일(병인) 1번째기사 임금이 뜬을 떴다</p>	<p>임금이 뜬을 떴다. 처음에 약원(藥院)의 세 제조(提調)가 여러 의원을 거느리고 입진(入診)하여 벽적(癖積)6988)으로 증세를 잡고 뜬을 떼야 한다고 의논했는데, 이날 비로소 뜬을 뜬 것이다. 사신은 논한다. “제조 윤순(尹淳)은 직임이 보호하는 처지에 있어 약을 맛보고 조제(調劑)를 감독하는 것이 본래 그 임무이다. 그러나 계집종을 거느리고 직접 부엌에서 팽임(烹飪)6989) 하는 것을 감독하여 모든 것을 스스로 검찰(檢察)하니, 할팽(割烹)6990)을 가지고 임금 뵈기를 요구한다는 것에 가까운 것이 아니겠는가? 사람들이 비웃는 자가 많았다.”</p>	<p>丙寅/上受灸。初，藥院三提調率諸醫入診，以癖積執症，議以進灸，至是日始灸。 【史臣曰：提調尹淳職在保護之地，嘗藥監劑，固其任也，而率女奴，親監廚供烹飪，皆自檢察，得無近於割烹而要者歟？人多譏之。】</p>
<p>영조 35권, 9년(1733) 계축 / 청 옹정(雍正) 11년) 8월 18일(병인) 2번째기사</p>	<p>판부사(判府事) 이태좌(李台佐)가 차자(筵子)를 올려 조금 나왔을 때에 경계할 것을 진달하였다. 그 대략에 말하기를, “시저(匙箸)를 진어(進御)할 때 조금 구미를 돋구는 것을 더하여 중원(中元)을 충실하게 하지 않을 수 없고, 잠자리에 드실 때는 따로 적합한 절차로 야기</p>	<p>判府事李台佐上筵，陳少愈之戒，其略曰： 匙箸之進，不可不稍加滋味，使中元堅實。寢睡之時，不可不另爲節適，使</p>

<p>관부사 이태좌가 차자를 올려 조금 나왔을 때에 경계할 것을 진달하다</p>	<p>(夜氣)에 편히 쉬게 하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기(聲氣)를 마땅히 삼가시어 그 폭발하는 동작(動作)을 바람 불고 추울 때에는 기피(忌避)하시되 의지(意志)로 기질(氣質)을 통솔하고 안정된 것으로 충동하는 것을 제지하여 모든 법도가 영에 따르고 모든 나쁜 기운은 물러가게 하며, 저으기 의사(醫師)의 말을 듣고 또 일하시는 사이에 상고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런데 무릇 신이 조목별로 논한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않으시니, 무엇 때문에 전하께서 이와 같이 하시는 것입니까?” 하니, 답하기를, “차자 가운데 면계(勉戒)한 것을 유의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p>	<p>夜氣安息。 聲氣當慎， 其暴發動作， 當忌於風寒， 志以帥氣， 靜以制動， 俾百度從令。 群沴退聽， 而竊聽於醫師之言， 且稽於事爲之間。 凡臣之所條論， 一未之行， 何殿下之如此也？ 答曰：“筭中勉戒， 可不留意？”</p>
<p>영조 35권, 9년(1733) 계축 / 청 옹정(雍正) 11년) 8월 21일(기사) 1번째기사 임금이 연일 뜬을 뜨다</p>	<p>임금이 연일 뜬을 뜨니, 약방에서 잇따라 입진(入診)하였다. 부제조(副提調) 윤순(尹淳)이 황용(黃茸)의 맛이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약방에서 삶아 올리면 우러러 진어(進御)하실 것인가를 물으니, 임금이 말하기를, “송용(松茸)에 비하면 더욱 아름답다. 나는 비록 즐기지 않으나 동조(東朝)께서는 그것을 즐기신다.” 하고, 또 삶아 올리라고 명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좋은 진미(珍味)를 얻었을 적에 아버지가 즐기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서민(庶民)도 오히려 어려운 일이거늘 하물며 제왕가(帝王家)이겠는가? 우리 임금은 달효(達孝)라 하겠다.”</p>	<p>己巳/上連日受灸， 藥房連入診。 副提調尹淳聞黃茸味佳， 而自藥房烹進， 仰問進御乎， 上曰：“比松茸尤佳矣。 雖予不嗜， 東朝嗜之。” 命又烹進。 【史臣曰：得一味， 思親所嗜， 匹庶猶難， 況帝王家乎？ 吾君其達孝矣。】</p>
<p>영조 36권, 9년(1733) 계축 / 청 옹정(雍正) 11년) 11월 5일(임오) 1번째기사 국청 문제와 호포·결포·군포 등에 대해 논하다. 종친의 역할 범</p>	<p>(전략)임금이 말하기를, “왕자(王子)와 대군(大君)은 대신과 절석(絕席)하고 1품의 종신(宗臣)은 대신과 항례(抗禮)7107) 한다. 빈청은 비록 다른 사람이 감히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 내가 잠저(潛邸)에 있었을 때 빈청에 앉아 선은(宣醞)을 받았다. 또 종친부(宗親府)는 백사(百司)의 우두머리가 되어 왕자나 대군이 아니면 제조(提調)가 될 수 없었다. 지금은 먼 종친이 제조가 되었기 때문에 외조(外朝)에서 가볍게 보이지만, 사람을 가둘 수 있는 패(牌)는 왕자와 대군이 쓰는 것이다.</p>	<p>(전략) 上曰：“王子大君與大臣絕席， 一品宗臣與大臣抗禮。 賓廳雖稱他人不敢入， 予在潛邸時， 坐於賓廳， 而受宣醞矣。 且宗親府爲百司之首， 非王子大君不得爲提調。 今則遠宗爲之， 故外朝輕視之， 然其囚人之牌， 卽王子大君所用也。 海興之來坐大臣座， 誠</p>

<p>위에 대해 논하다</p>	<p>해흥군이 와서 대신의 자리에 앉은 것은 진실로 매우 농동(儻洞)하다. 겸종(僣從)을 가두는 것은 그래도 괜찮지만 서리는 곧장 가둘 수 없는 것이다.” 하였다. 서명균이 말하기를, “종친부는 진실로 소중한 바가 있지만 정부(政府)에 이르러서는 사체(事體)가 자별하니, 결코 그 서리를 가둘 수는 없습니다.” 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어째서 그러한가? 종친이 근래에 피연(疲軟)하기 때문이다.” 하자, 서명균이 말하기를, “더욱이 반행(班行)의 종반(宗班)이라 할지라도 혹 완홀(緩忽)한 일이 있으면, 정부에서 으레 마땅히 검칙(檢飭)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종친부는 정부에서 간섭할 바가 아니다.” 하였다. (후략)</p>	<p>甚儻洞。 囚其僣從猶可也， 書吏則不可直囚矣。” 命均曰：“宗親府固有所重， 而至於政府， 事體尤別， 決不可囚其吏矣。” 上曰：“豈其然乎？ 宗親近來疲軟故也。” 命均曰：“況於班行宗班， 或有緩忽事， 則政府例當檢飭矣。” 上曰：“不然。 宗府非政府之所干也。” (후략)</p>
<p>영조 37권, 10년 (1734 갑인 / 청 옹정 (雍正) 12년) 1월 20일(정유) 5번째기사 조현명이 도내의 농우(農牛)의 부족함을 상소하다</p>	<p>전라 감사(全羅監司) 조현명(趙顯命)이 도내(道內)에 농우(農牛)가 적다는 이유로 제주(濟州) 목장(牧場)의 소 1천여 두(頭)를 보내게 해 줄 것을 청하였다. 송진명(宋眞明)이 말하기를, “제주(濟州)의 소는 본디 1천 두에 불과한데 매년 빛같이 검은 소로 20두씩을 가려서 경사(京司)로 보내어 희생(犧牲)에 제공하고 있으니 사체상 옮겨다 지급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관서(關西)의 둔전(屯田)에 있는 소 1천여 두를 보내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p>	<p>全羅監司趙顯命以道內農牛鮮少， 請得濟州牧場牛千餘頭。 宋眞明曰：“濟州牛本不過千頭， 而每年二十頭， 以純黑者擇送京司， 以供犧牲， 事體不當。 移給請送關西屯田牛千餘頭。” 上可之。</p>
<p>영조 37권, 10년 (1734 갑인 / 청 옹정 (雍正) 12년) 1월 21일(무술) 3번째기사 걸치례의 ‘청(淸)’에</p>	<p>(전략)호조 판서 송인명(宋寅明)이 아뢰기를, “옛날 효종(孝宗) 초년에 선정신(先正臣) 송준길(宋浚吉) 등이 김자점(金自點)·심기원(沈器遠)이 조정을 탁란(濁亂)시킨 끝을 당하여 소명(召命)을 받들고 조정으로 나아가 정색(正色)하고 올바른 말을 아뢰어 청의(淸議)를 극력 유지했습니다. 그리하여 말하는 사람들이 국맥(國脈)이 이를 힘입어 유지되었</p>	<p>戶曹判書宋寅明曰：“昔在孝廟初， 先正臣宋浚吉等， 當自點、器遠濁亂之餘， 承召赴朝， 正色昌言， 力持淸議。 談者謂， 國脈賴而維持云。 近來俗習委靡， 士趨汚下， 是宜在上者， 惟恐淸</p>

<p>대해 의논하다</p>	<p>다고 했었습니다. 근래에는 습속(習俗)을 떨치지 못하여 선비들의 취향이 저속하기 짝이 없으니, 이때야말로 위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청론(淸論)이 행해지지 못할까 두려워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폐단을 미리 걱정하여 도리어 싫어하는 뜻을 내어보일 수가 있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내가 탁류(濁流)를 제거하는 청(淸)과 자신을 단속하는 청(淸)을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시 이비(似是而非)7272) 한 것을 증오하는 것이다.” 하였다.</p> <p>사신은 말한다. “청류(淸流)를 싫어하는 것은 진실로 임금의 큰 병근(病根)인데, 윤순(尹淳)을 진정한 청류(淸流)로 여기지 않은 것은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명철하였다고 할 수 있다. 윤순이 일찍이 약원(藥院)의 제거(提舉)로 있을 적에 어공(御供)하는 찬물(饌物)을 자기 집의 비녀(婢女)를 시켜 음식을 만들어 들이게 했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충애를 요구했다고 했으니, 청류(淸流)한 사람이 진실로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p>	<p>論之不行，何可預憂其弊，而反加厭惡也?” 上曰：“予非惡激濁之淸、律己之淸，但惡夫似是而非者。”</p> <p>【史臣曰：厭薄淸流，固上之大病根，而其不以尹淳爲眞淸者，可謂知人則哲也。淳嘗提舉藥院，御供饌物，使其家婢，烹飪以進。時人謂之割烹以要，淸者固如是乎?】</p>
<p>영조 38권, 10년 (1734 갑인 / 청 옹정 (雍正) 12년) 4월 23일(무진) 4번째기사 제주목에서 탕자를 봉진한 것이 규례가 아니었기에 목사 정도원을 종종 추고하다</p>	<p>제주목(濟州牧)에서 탕자[枳子]를 봉진(封進)하니, 대개 규례가 아니었다. 임금이 하유(下諭)하기를, “옛적에 공자(孔子)는 제철이 아니면 잡숫지 않았다. 탕자는 바로 불시(不時)의 과일이요 천신(薦新)의 물건도 아니니, 일이 외설(猥屑)스러운 바가 있고 한갓 민폐(民弊)만 끼쳤을 뿐이다. 주원(廚院)으로 하여금 하송(下送)하도록 하고 이뒤로는 다시 봉진(封進)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이어서 목사(牧使) 정도원(鄭道元)을 종종 추고(從重推考)할 것을 명하였다.</p>	<p>濟州牧封進枳子，蓋非例也。上下諭曰：“昔夫子不時不食。枳子乃不時之果，非薦新之物，則事涉猥屑，徒貽民弊。令廚院下送，此後勿復封進。”仍命牧使鄭道元從重推考。</p>
<p>영조 38권, 10년 (1734 갑인 / 청 옹정 (雍正) 12년) 5월 6일 (신사) 3번째기사</p>	<p>(전략)사신은 말한다. 대개 정축년(7469) 에 곡식을 운송(運送)한 이후로 중국인[唐人]으로 해로(海路)를 익히 알고 있는 자들이 해삼(海蔘)을 채취하기 위하여 매양 여름과 가을의 계절이 바뀔 때에 해서(海西)를 왕래하여 해마다 그렇게 하였는데, 오는 자들이 더욱 많아져서 배가 몇백 척이나 되는지 알 수</p>	<p>(전략) 【史臣曰：蓋自丁丑運粟之後，唐人之諳知海路者，爲採海蔘，每於夏秋之交，往來海西，歲以爲常，而來者益衆，不知爲幾百艘。地方守令、邊</p>

<p>황당선의 일을 숨긴 죄로 전 황해 병사 민사연을 파직시키다</p>	<p>없었다. 지방(地方)의 수령(守令)과 변장(邊將)들은 비록 축출하려고 하지만 저들은 수효가 많고 우리는 수효가 적으니, 혹 몰래 술과 양식을 주어서 그들을 달래어 떠나가게 하기도 하였으므로, 식자(識者)들이 이를 우려하였다.</p>	<p>將雖欲追逐，而彼衆我寡，或潛與酒糧，誘之使去，識者憂之。】</p>
<p>영조 38권, 10년 (1734 갑인 / 청 옹정 (雍正) 12년) 5월 11일(병술) 4번째기사 앞서 흉년으로 감한 공물가를 다시 회복시키다</p>	<p>비로소 공물가(貢物價)를 회복시켰다. 이보다 앞서 흉년(凶年)이 들므로 인해서 공물(貢物)의 값을 감하였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종전대로 회복하니, 호조판서(戶曹判書) 송인명(宋寅明)의 청에 따른 것이었다.</p>	<p>始復貢價。先是，因年荒，減買物之價，至是復舊，從戶曹判書宋寅明之請也。</p>
<p>영조 38권, 10년 (1734 갑인 / 청 옹정 (雍正) 12년) 5월 15일(경인) 7번째기사 영월 부사 권시경이 민폐로써 진전의 세금 부과와 옹주방 절수처의 측량 등을 아뢰다</p>	<p>영월 부사(寧越府使) 권시경(權始經)이 상소하여 민폐(民弊)를 말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상정(詳定)한 뒤의 모자른 전결(田結)은 마땅히 다른 고을의 전결로써 이획(移劃)해야 하고, 묵어서 버려진 토지는 마땅히 고을의 백성들로 하여금 세금을 감면해 주고 경작하게 해야 합니다. 옹주방(翁主房)의 절수(折受)7485) 하는 곳은 타량(打量)7486) 을 허락하지 말고 궁차(宮差)7487) 등을 모두 규포(窺捕)하여 엄중하게 다스리며 주원(廚院)에서 올리는 조판(槽板)도 또한 마땅히 정지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비답을 내려 가장(嘉獎)하고 절수처(折受處)의 타량(打量)을 중지할 것을 명하였으며, 그 나머지는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였다. 얼마 후에 또 하교하기를, “권시경(權始經)의 상소 가운데 목조(木槽)의 일은 비록 민폐(民弊)라고는 하지만, 그 명목이 자질구레하니, 추고(推考)하라.” 하였다.</p>	<p>寧越府使權始經上疏言民瘼，其略曰： “詳定後縮結，宜以他邑田結移劃，陳棄之土，宜令邑民減稅許耕。翁主房折受處，勿許打量，宮差等并窺捕嚴治，廚院所進槽板，亦宜停寢。” 上賜批嘉獎，命寢折受處打量，其餘令廟堂稟處。尋又下教曰：“始經疏中木槽事，雖云民弊，其名瑣屑，推考。”</p>
<p>영조 38권, 10년 (1734 갑인 / 청 옹정</p>	<p>. 화양정(華陽亭) 한 구역은 국초(國初)에 설치한 것인데 그 울짚[柵]을 높이고 도랑을 깊게 파서 사람들의 경작이나 목축을 금지한 것은 바로 망아지</p>	<p>(전략) 華陽亭一區，國初所設，而高深其柵溝，禁斷人耕牧者，乃所以重攻駒</p>

(雍正) 12년 6월 9일
(계축) 2번째기사
능침 근처의 수목을
함부로 벌채하는 일과
공인에 대한 침책 등
에 대한 여광현의 상
소

[駒]를 훈련시키는 일을 중요시한 까닭입니다. 근래에는 태복시(太僕寺)의 제원(諸員)의 무리가 화양정 뒤에 실가(室家)를 멋대로 지어 거의 백여 호(戶)나 되고 기름진 땅을 빙 둘러 쌓아 농사짓는 장소로 삼고 있으니, 마땅히 맨 먼저 제창한 사람을 적발하여 조속히 사변(徙邊)7546)의 형률(刑律)을 시행한 뒤 그 가옥을 철거하고 그 축조한 것을 헐어서 방목(放牧)의 장소로 삼게 해야 합니다.

국가(國家)의 수용(需用)을 시인(市人)과 공인(貢人)에게 많이 요구하게 되니 무릇 그들의 질고(疾苦)에 대해 마땅히 무휼(撫恤)을 가해야 하는데, 시민(市民)은 각사(各司)·군문(軍門) 및 여러 궁가(宮家)에서 억지로 매입하는 폐단이 그 단서가 하나뿐이 아닙니다. 공인(貢人)은 관원(官員)이 행차함이 있으면 건마(健馬)를 독촉하여 마련하게 하고 일이 있으면 불려서 사역(使役)을 담당하게 하니, 근자에 상점(床塵)을 휘철한 것과 장사하는 아이[賈兒]가 울면서 호소하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마땅히 비국(備局)으로 하여금 낭청(郎廳) 두 사람을 가려서 정하여 이 일을 전담케 하고 따로 엄찰(廉察)하여 발견되는 대로 논죄(論罪)하여야 합니다.

동몽 교관(童蒙教官)은 유액(誘掖)7547)의 도리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데, 매월마다 시강(試講)하는 법(法)이 매우 소홀(疏闊)해진 뒤로부터 교관(教官)의 구수(口授)가 점차 나태해지고, 과후(科後)에 고안(考案)하는 규정이 한번 폐지되고 나서부터 생도(生徒)의 학문을 조성함이 더욱 게으릅니다. 마땅히 재주와 학문을 갖춘 사람을 선택하여 교도(教導)의 뜻으로써 부여하며 월강(月講)의 법을 밝히고 고안(考案)하는 규정을 신칙(申飭)하여야 합니다. 무사(武士)가 적체(積滯)된 우환(憂患)이 요사이보다 심한 적이 있지 않은데, 해조(該曹)에서는 실로 추이(推移)하여 조서(調敍)하는 방도가 없습니다. 신은 생각하기를 매양 과방(科榜)이 나올 적마다 오군문(五軍門)으로 하여금 그 일방(一榜)을 들어서 모조리 분속(分屬)시켜 편비(偏裨)로써 명칭을 붙이고 꺾원

也。 近來太僕諸員輩，擅作室家于亭後，幾至百餘戶，環築膏沃之土，作為稼穡之場，宜摘發首唱之人，亟施徙邊之律，撤其家毀其築，俾爲放牧之場焉。 國家需用，多責於市人及貢人，凡其疾苦，宜加撫恤，而市民則各司、軍門及諸宮家勒買之弊，不一其端。 貢人則官員有行則責立健馬，有事則召執使役，近者床塵之撤毀，賈兒之泣訴者，此其證也。 宜令備局，揀定郎廳二人，專管此事，別爲廉察，隨見論罪。 童蒙教官，專責誘掖之道，而自夫逐月試講之法甚闊，而教官之口授漸怠，科後考案之規一廢，而生徒之造學益倦。 宜擇才學之人，畀以教導之意，明其月講之法，申其考案之規焉。 武士積滯之患，未有甚於近日，而該曹實無推移調敍之道。 臣以爲每科榜出，使五軍門舉其一榜，沒數分屬，名之以偏裨，隨闕舉用，則庶爲疏滯之一道。 批曰：“所陳竝依施。 其中備郎專管事，煩瑣難行。 童蒙教官事，更加另飭。 武科調用軍門事，前已下教，何必分屬？”

	<p>(闕員)에 따라 들어 쓰게 한다면 거의 적체를 소통시키는 한 방도가 될 것으로 여깁니다.”</p> <p>하니, 비답하기를,</p> <p>“진달한 바는 모두 아된 대로 시행하라. 그 중에 비국 낭청(備局郎廳)이 전적으로 주관하게 하는 일은 번쇄(煩瑣)하여 시행하기가 어렵다. 동몽 교관의 일은 다시 별도로 신칙을 가하라. 무과(武科)를 군문(軍門)에 조용(調用)하는 일은 앞서 이미 하교(下教)하였으니, 하필 분속시킬 것이 있겠는가?”</p> <p>하였다.</p>	
<p>영조 38권, 10년 (1734 갑인 / 청 옹정(雍正) 12년) 8월 6일 (기유) 2번째기사</p> <p>장릉을 참배하는 일을 9월로 미룰 것에 대해 하교하다</p>	<p>하유(下諭)하기를,</p> <p>“능(陵)을 참배하는 일은 중대하니, 예(禮)를 마땅히 조속히 행해야 하지만, 양조(兩朝)7664) 의 행행(行幸)한 시일(時日)로써 보면 백성을 위하는 성대한 뜻을 우러러 헤아릴 수가 있다. 지금 도로(道路)를 보고 수본(手本)7665) 을 살펴보며 화곡(禾穀)을 마땅히 아껴야 할 것이다. 이후에 예조(禮曹)로 하여금 다시 9월로 미루어 가려 뽑아서 아뢰게 하라.”</p> <p>하였다. 이때 임금이 장릉(章陵)7666) 을 참배하려고 하여 처음에는 8월로 날을 가렸다가 곡식을 상할까 염려하여, 이런 명령이 있었다.</p>	<p>下諭曰：“謁陵事重，禮宜亟行，而以兩朝行幸時日見之，爲民盛意，可以仰揣。今觀道路看審手本，禾穀宜惜。其令禮曹，更以九月推擇以啓。”時，上欲謁章陵，初以八月涓日，爲慮傷穀，有是命。</p>
<p>영조 38권, 10년 (1734 갑인 / 청 옹정(雍正) 12년) 8월 7일 (경술) 2번째기사</p> <p>신하들을 불러서, 기강의 약화와 당습의 고질화, 민들의 곤궁화 등에 대해 자책하다</p>	<p>임금이 시임(時任)·원임(原任)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을 소견(召見)하여, 기강(紀綱)이 갈수록 무너지고 당습(黨習)은 더욱 고질화되며 나라 일은 분산(分散)되고 생민(生民)은 곤궁하고 초췌한 것으로써 누누이 인구(引咎)하고 반복해서 뉘우쳐 자백하였다. 드디어 하교하기를,</p> <p>“아! 이것은 여러 신하들의 허물이 아니고 바로 나의 성의(誠意)가 미덥지 않아서이고, 나의 일을 처리함이 튼튼하지 않아서이고, 나의 백성을 사랑함이 실상이 없어서이고, 나의 강의(剛毅)7667) 가 충분하지 못해서이다. 근원이 맑으면 흐름이 깨끗하고 외표가 단정하면 그림자가 바른 법이다. 내가 능히 임금이 해야 할 도리를 다했다면, 어찌 이런 막다른 데까지 이르렀겠는가? 죄(罪)가 과궁(寡躬)에게 있으니, 몸을 꾸짖어 빌고 호소하기를 과궁이 하지 아</p>	<p>上召見時原任大臣。備堂，以紀綱之愈壞，黨習之益痼，國事之判渙，生民之困悴，縷縷引咎，反復誨責。遂下教曰：“噫！此非諸臣之過，卽予之誠意之不孚也，予之處事之不固也，予之愛民之無實也，予之剛毅之不足也。源清流潔，表端影直。予能盡爲君之道，豈至此極乎？罪在寡躬，責躬祈籲，非寡躬而誰？曩在戊申秋，因極備之災，減膳十日，而今者風旱，非比其</p>

	<p>니하고 누가 하겠는가? 지난 무신년(7668) 가을에 수한(水旱)이 너무 지나친 재앙으로 인하여 10일 동안을 감선(減膳)하였는데, 이번의 바람과 가뭄은 그때에 비교할 것이 아니다. 특별히 낭묘(廊廟)(7669)의 신하들을 모아서 바야흐로 상하(上下)의 칙면(飭勉)을 힘쓰니, 나 자신을 반성하며 자책(自責)하는 도리를 조금이라도 늦추어짐을 용납할 수가 없다. 내일부터 30일 동안 감선(減膳)하라.”</p> <p>하였다.</p>	<p>時。特會廊廟之臣，方務上下之飭勉，則反躬自責之道，不容少緩。其自明日，減膳三十日。”</p>
<p>영조 38권, 10년 (1734 갑인 / 청 옹정 (雍正) 12년) 8월 11일(갑인) 2번째기사 사헌부에서 소를 도살하여 시장에 판매한 천안 군수 김득대의 파직을 청하다</p>	<p>사헌부(司憲府) 【지평(持平) 유건기(俞健基)이다.】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휴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우금(牛禁)(7679)은 지극히 엄중한데도 천안 군수 김득대(金得大)는 도살을 낭자하게 하여 시장에 내다 팔았으니, 김득대를 마땅히 파직시켜야 합니다.” 하니, 그대로 윤휴하였다. 여선군(驪善君) 학(學) 및 종부시 제조(宗簿寺提調)의 계사(啓辭)는 정지하였다.</p>	<p>憲府【俞健基。】申前啓，不允。又啓曰：“牛禁至嚴，而天安郡守金得大屠肆狼藉，斥賣場市，得大宜罷職。”允之。停驪善君學及宗簿寺提調之啓。</p>
<p>영조 39권, 10년 (1734 갑인 / 청 옹정 (雍正) 12년) 9월 27일(기해) 1번째기사 어기를 도둑질한 궁녀를 특별히 사형에서 감형하여 섬으로 귀양보내라고 명하다</p>	<p>어기(御器)를 도둑질하여 팔아먹는 궁녀(宮女)가 있었는데, 일이 발각되었다. 법으로서는 사형에 처함이 마땅하였으나 특별히 사형에서 감등하여 섬으로 귀양보내라고 명하였다.</p>	<p>己亥/有宮女偷賣御器者，事覺，法當死，特命減死島配。</p>
<p>영조 39권, 10년 (1734 갑인 / 청 옹정 (雍正) 12년) 10월 15</p>	<p>임금이 춘당대(春塘臺)에 친림(親臨)하여 무예(武藝)에 입격(入格)한 장교(將校)와 사졸들에게 차등 있게 상을 내렸다. 오군문 대장(五軍門大將)에게 선은(宣醞)을 내리고 친히 별유(別諭)를 지어 군병을 애호할 것과 기율을 엄격히</p>	<p>上親臨春塘臺，頒武技入格將士賞賜有差。宣醞五軍門大將，親製別諭，以愛恤軍兵，嚴其紀律，無怠教習三者爲</p>

<p>일(정사) 2번째기사 춘당대에 친림하여 무 예에 입격한 장교와 사졸들에게 차등 있게 상을 내리다</p>	<p>할 것과 교습(敎習)을 게을리 하지 말라는 세 가지로써 면려(勉勵)하라는 내 용의 수서(手書)를 하사하였다. 이날 차가운 비가 종일 내리므로 여러 신하들 이 임금에게 환궁하기를 청했으나, 허락하지 않고 말하기를, “마땅히 사졸들과 더불어 감고(甘苦)를 함께 할 것이니, 어찌 혼자만 편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p>	<p>勉, 手書賜之。 是日, 冷雨終日, 諸 臣請上還宮, 不許曰: “當與士卒同甘 苦, 何可獨便?”</p>
<p>영조 39권, 10년 (1734 갑인 / 청 옹정 (雍正) 12년) 11월 5 일(병자) 4번째기사 군역을 정하는 것과 호적의 누락과 서원으 로의 피역 등에 대한 장령 윤지원의 상소</p>	<p>(전략)재물을 낭비함은 술보다 더함이 없으니 양주(釀酒) 규모의 크고 작은 것을 물론하고 판매의 행위를 일체 엄금할 것이며, 남초(南草)7766)의 해독 은 술에 비하여 더욱 심하니 과조(科條)를 엄중히 제정하여 시골에서는 심지 못하게 하고 점포에서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후략)</p>	<p>(전략)耗財濫費, 莫過於酒, 勿論大小 釀, 一禁沽賣之路。 南草之害, 比酒 尤甚, 嚴立科條, 使鄉不得種, 廛不得 賣。(후략)</p>
<p>영조 40권, 11년 (1735 을묘 / 청 옹정 (雍正) 13년) 1월 4일 (을해) 1번째기사 부상들로 인해 인삼 값이 등귀하여, 공인들 이 공물의 값을 올려 주기를 청하다</p>	<p>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備局堂上)을 인견하였다. 그때 부상(富商)들이 인삼 을 왜인(倭人)들에게 몰래 팔았기 때문에 인삼 값이 크게 뛰어올라서 인삼 1 냥이 쌀 2석 10두의 값에 해당하였는데, 공인(貢人)들이 상언하여 공물(貢物) 의 값을 올려 주기를 청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대신들이 이것을 진달하였는 데, 공조 참판 조현명(趙顯命)이 아뢰기를, “전부터 동래부(東萊府)에서 오로지 삼세(蔘稅)를 관장하기 때문에 잠상(潛商) 의 금지를 지극히 엄하게 하였으나, 요즈음 호조(戶曹)에서 세를 거둔 다음부 터 동래부에서 이권(利權)을 잃어버리자 잠상의 금지를 내버려 두어 도외시하 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 삼세를 전의 예대로 동래부에 주고 잠상들을 전관(專 管)하게 한다면 금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이어서 비국(備局)으로 하여금 공물의 값을 적 당히 올리게 하였다.</p>	<p>乙亥/上引見大臣、備堂。 時, 富商潛 賣人蔘于倭人, 故蔘價踴貴, 蔘一兩直 米二石十斗。 貢人等上言, 請增貢 價。 至是, 大臣陳達, 工曹參判趙顯 命奏言: “自前萊府專掌蔘稅, 故潛商 之禁極嚴, 近則自戶曹收稅, 萊府失 利, 潛商之禁, 置之度外。 今若以蔘 稅, 依前給萊府, 使之專管潛商, 則可 以禁矣。” 從之, 仍令備局量增貢價。</p>

<p>영조 40권, 11년 (1735 을묘 / 청 옹정 (雍正) 13년) 1월 4일 (을해) 2번째기사 안흥의 역사를 정파할 지의 여부에 대해 의 논하다</p>	<p>임금이 봉조하(奉朝賀) 이광좌(李光佐)·영돈녕 부사 정호(鄭濞)·찬성 정제두(鄭齊斗)·금평위(錦平尉) 박필성(朴弼成)에게 음식물을 하사하라고 명하였는데, 이는 대개 세수(歲首)에 노인들을 우대하는 특별한 은전이였다. (후략)</p>	<p>命賜食物于奉朝賀李光佐、領府事鄭濞、贊成鄭齊斗、錦平尉朴弼成，蓋歲首優老之特恩也。(후략)</p>
<p>영조 40권, 11년 (1735 을묘 / 청 옹정 (雍正) 13년) 1월 21 일(임진) 2번째기사 예조에서 원자궁의 공 상은 사면을 반포한 뒤에 즉시 올리게 할 것을 청하다</p>	<p>예조에서 계청(啓請)하기를, “원자궁(元子宮)의 공상(供上)은 기사년(724) 의 예에 의하되 반사(頒赦)한 뒤에 즉시 진공(進供)하게 하소서.” 하니, 이를 윤허하였다.</p>	<p>禮曹啓請：“元子宮供上，依己巳例，頒赦後卽爲進供。”允之。</p>
<p>영조 40권, 11년 (1735 을묘 / 청 옹정 (雍正) 13년) 3월 12 일(임오) 2번째기사 우의정 김흥경이 여러 번 상소하여 사직하였 으므로, 이에 비답하다</p>	<p>우의정 김흥경(金興慶)이 여러 번 상소하여 사직하였으므로, 임금이 비답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경이 처음에는 비록 상세하게 알지 못하였다고 하지만 이미 밝게 유지하는 말을 듣고서 즉시 들어와 사례하는 글을 올렸으니, 이재후(李載厚)가 경을 배척한 것은 스스로 경알(傾軋)하는 행위로 돌아갔는데, 어찌 경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서 한갓 염우(廉隅)만을 따르려고 하는가? 만 가지 보약(補藥)을 복용하는 것도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만 같지 못한데, 언제나 신하들의 사직 상소를 보면, 나는 마치 질병이 더해지는 것과 같다. 경이 약원(藥院)의 관직을 띠고 어찌 차마 이같이 할 수가 있는가?” 하였다.</p>	<p>右議政金興慶屢疏辭職，批略曰：“卿初雖未詳，既聞洞諭，卽入陳謝，則李載厚之斥，自歸傾軋，胡不諒此，徒循廉隅？萬般補劑，莫若心清，而每見辭疏，若添疾恙。卿帶藥院，何忍爲此？”</p>
<p>영조 40권, 11년</p>	<p>한성부(漢城府)에서 아뢰기를,</p>	<p>漢城府啓言：“江民之因有馬，應役於</p>

<p>(1735 을묘 / 청 옹정 (雍正) 13년) 12월 1일(병인) 2번째기사 한성부에서 마계의 문제점과 그 개선책을 아뢰다</p>	<p>“한강 주변에 사는 백성들은 말[馬]이 있기 때문에 공가(公家)에서 물건을 수송할 경우에 역(役)에 응해야 하는데, 대개 방민(坊民)들이 점차 줄어들고 그 역을 피하는 자가 많은 데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에 변통하여 마계(馬契)를 모으고 말을 빌린다고 이름하는데, 방민은 매년 1호(戶)에서 3백 전(錢)을 내고, 호조(戶曹)에서는 한 마리[駘]의 쌀에 각각 6승(升)을 지급하여 말을 빌리는 값을 보상하였습니다. 그 뒤에 태가(駘價)를 그 즉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호(役戶)가 날로 점차 줄어들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말을 빌리는 사람들이 도성 가운데 말을 가진 백성들을 유인하여 그 역을 분담하게 되니, 그 입마(立馬)하는 수가 한강 주변의 백성보다 갑절이나 되었습니다. 금년 봄에 본부에서 품의(稟議)하여 호진(戶錢)을 더 정하고 한결같이 가차(家次)에 따라 책립(責立)하였는데, 갑자기 호민(豪民)들이 소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도로 즉시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말을 빌리는 사람들이 근래 더욱 딱한 사정을 호소하지만, 이것을 선처할 방책이 없습니다. 내년부터 그들이 호소하는 바에 의하여 1년에 운송하는 바리를 1만 필로 정하고, 봄철과 가을철로 나누어서 쌀을 지급하되, 한결같이 양서(兩西) 지방에서 공물(貢物)을 운송하는 예대로 한다면, 호조에 있어서는 값을 지급하는 수량이 처음부터 손해되는 바가 없을 것이고, 공인(貢入)에 있어서는 말을 세우는 방도를 계속 보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니, 윤허하였다.</p>	<p>公輸者，蓋由坊民漸縮，避役者多。變作聚契，名以貫馬，坊民則一年戶出錢三百，戶曹則一駘米各給六升，以償貫價矣。後因駘價之不以時給，役戶之漸至日縮。貫馬人誘引城中有馬之民，以分其役，立馬之數，倍於江民。今春自本府稟議，加定戶錢，一從家次責立矣，遽因豪民作挈，旋即罷輟，貫馬人近益呼籲，而善處無策。自明年依渠輩所訴，一年運駘，定以萬疋，分春秋等給米，一如兩西貢物之例，在戶曹給價之數，初無所損，在貢人立馬之道，可得支保。”允之。</p>
<p>영조 41권, 12년 (1736 병진 / 청 건륭 (乾隆) 1년) 1월 10일 (을사) 3번째기사 경재로서 나이가 많거나 아버지가 있는 자</p>	<p>경재(卿宰)로서 나이가 많거나 아버지가 있는 자에게 음식물을 내려 주고, 동돈녕(同敦寧)8016 홍수렴(洪受濂)의 나이가 95세이고 전 감사(監司) 이기익(李箕翊)의 나이가 83세라 하여 가자(加資)하도록 명하였다. 대신(大臣)이 말한 때문이다.</p>	<p>賜卿宰年老與有親者食物。以同敦寧洪受濂年九十五，前監司李箕翊年八十三，命加資，因大臣言也。</p>

<p>에게 음식물을 내려 주다</p>		
<p>영조 41권, 12년 (1736 병진 / 청 건륭 (乾隆) 1년) 1월 22일 (정사) 7번째기사 야대에서 조태언과 박 필간의 상소가 서로를 비호·억제하여 옳지 못하다고 하다</p>	<p>임금이 야대(夜對)를 행하였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선온(宣醞)8026) 하고 임금이 이르기를, “조태언(趙泰彦)과 박필간(朴弼幹)이 서로 비호하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하니 모두 극도로 옳지 않으며, 박필간의 분별없이 혼동해 하는 말과 조태언의 논 의는 모두가 귀착(歸着)해 떨어짐이 없다.” 하였다.</p>	<p>上行夜對，講訖宣醞。上曰：“趙泰彦、朴弼幹之互相扶抑，俱極不是，而弼幹則混圖爲說，泰彦之論，皆無着落矣。</p>
<p>영조 41권, 12년 (1736 병진 / 청 건륭 (乾隆) 1년) 1월 24일 (기미) 1번째기사 청나라 사신이 와서 옹정 시호를 반포하다</p>	<p>청(淸)나라 사신 산질 대신(散秩大臣) 봉의공(奉義公) 같이산(噶爾散)과 두등 시위(頭等侍衛) 반장살(班長薩)이 와서 옹정(雍正) 시호(諡號)를 반포하였다. 임금이 모화관(慕華館)에 나아가 맞이하고, 먼저 인정전(仁政殿)으로 돌아와 조칙(詔勅)을 받는 의식을 행하고는 두 사신을 접견하고 차[茶] 대접하기를 전례와 같이 하였다.</p>	<p>己未/淸使散秩大臣奉義公噶爾散、頭 等侍衛班長薩來，頒雍正諡。上出迎 于慕華館，先還仁政殿，受詔行禮，接 見兩使，饋茶如例。</p>
<p>영조 41권, 12년 (1736 병진 / 청 건륭 (乾隆) 1년) 1월 27일 (임술) 1번째기사 합사해 대왕 대비전에 진연례 행하기를 청하 나 자전이 허락하지 않다</p>	<p>대신(大臣)이 경재(卿宰)를 거느리고 합사(合辭)하여 대왕 대비전(大王大妃殿) 에 아뢰어 진연례(進宴禮)를 행하도록 청하니, 자전(慈殿)이 언서(諺書)로 따 르기 어렵다는 뜻을 회답하여 내렸는데, 이로부터 빈청(賓廳)에서 날마다 두 차례씩 아뢰었으나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임금이 빈청의 대신을 인견(引見) 하고 자전의 뜻을 하유(下諭)하기를, “인선 왕후(仁宣王后)8029) 께서는 현종조[顯廟朝]를 당하여 한 번도 진연 (進宴)을 받지 않았으며, 장렬 왕후(莊烈王后)8030) 께서는 효종·현종 두 조 정을 거치면서도 진연을 받지 않으셨는데, 내가 무신년(8031) 에 마지못해 받 기는 하였다. 그러나 매년 「진연(進宴)」 두 글자를 들을 적마다 갑절이나</p>	<p>壬戌/大臣率卿宰，合辭啓于大王大妃 殿，請行進宴禮，慈殿以諺書，下答難 從之意。自是賓廳日再啓，終不許。 上引見賓廳大臣，下諭慈旨曰：“仁宣 王后當顯廟朝，一不受宴，莊烈王后歷 孝、顯兩朝，亦不受宴。吾於戊申， 不得已受之，然每聞進宴二字，一倍悲 愴爲教，決無回聽之望矣。” 【史臣曰：東朝稱觴，固聖孝之不可已</p>

	<p>슬픈 감회가 든다.’고 하교하셨으니, 결단코 마음을 돌려 들어줄 가망이 없다.”</p> <p>하였다.</p> <p>사신은 말한다. “동조(東朝)8032) 께 칭상(稱觴)8033) 하는 것은 진실로 성상의 효성으로 그만둘 수 없는 것이긴 하다. 그러나 성상께서 하루 세 번씩 문안드릴 즈음에 정성을 쌓아 진달하여 윤희(允許)를 얻는다면, 대신(大臣)과 유사(有司)는 단지 예(禮)를 갖추어 봉행(奉行)하는 것만이 타당할 뿐이다. 그런데 빈청(賓廳)에 모여서 논의하고 자전(慈殿)께 곧바로 아뢴다는 것은 그러한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찌 의리와 분수를 손상시킴이 있지 않겠는가? 대신이 된 자가 바른 도리로 임금을 잘 섬기지 못하고 오직 명령에 순종하고 비위를 맞추는 것으로 뜻을 삼아 갑자기 전에 없던 일을 새로 만들어서 뒷날의 폐단을 열게 하였으니, 한탄스러움을 금할 수 있겠는가?”</p>	<p>者，然聖上三朝之際，積誠開達，能得允許，則大臣、有司只當備禮奉行而已。會議賓廳，直啓慈殿，不但事無前例，豈不有傷義分乎？爲大臣者，不能直道事君，惟以承順迎合爲意，猝創無前之事，以啓日後之弊，可勝歎哉？】</p>
<p>영조 41권, 12년 (1736 병진 / 청 건륭(乾隆) 1년) 2월 6일 (경오) 1번째기사 빈청에서 자전에 진언하기를 계속 청하나 하답하여 허락하지 않는다</p>	<p>(下答)하기를,</p> <p>“기쁨을 표하는 방법이 어찌 진연(進宴)하는 데에만 있겠는가? 비록 오순(五旬)8042) 이라 하여 청한다 하더라도 들을 때마다 슬픈 감회가 더욱 새로워지니,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어찌 진연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는가?”</p> <p>하였다. 얼마 있다가 임금이 빈청의 대신을 불러 보고 전교하기를,</p> <p>“자전(慈殿)께서 나로 하여금 직접 유시(諭示)하게 하시니, 뜻을 받들어 따르지 않을 수 없다.”</p> <p>하므로, 여러 신하들이 명을 받고 물러났다.</p>	<p>庚午/賓廳每日再啓于慈殿，至是下答以表喜之道，豈在進宴？雖以五旬爲請，每聞之愴懷愈新，安予心豈不愈於進宴乎？既而上召見賓廳大臣，教曰：“慈殿俾予親諭，不可不將順矣。”諸臣承命而退。</p>
<p>영조 41권, 12년 (1736 병진 / 청 건륭(乾隆) 1년) 2월 10일 (갑술) 1번째기사</p>	<p>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備局堂上)을 인견(引見)하였다. 우의정(右議政) 송인명(宋寅明)이 아뢰기를,</p> <p>“능행(陵幸) 뒤에는 호사(犒土)8044) 하는 것이 전례인데, 거기에 쓰이는 소[于]가 수백 마리에 이릅니다. 바야흐로 만물이 발생(發生)하는 때를 당하여</p>	<p>甲戌/上引見大臣、備堂。右議政宋寅明言：“陵幸後，例當犒土，用牛至數百頭。方當發生之時，不可多屠殺，請以乾物給。”命軍門考例行之。左</p>

<p>능행 후 군사들에게 물품을 지급하고 무과 급제자에게 꽃·쌀 등을 내려주다</p>	<p>도살(屠殺)을 많이 하는 것은 불가하니, 청컨대 마른 물품을 지급하도록 하소서.”</p> <p>하니, 군문(軍門)에 명하여 전례를 상고하여 시행하게 하였다. 좌의정(左議政) 김재로(金在魯)는 아뢰기를,</p> <p>“병진년8045) 만과(萬科)8046) 의 무과 급제(武科及弟)의 연갑(年甲)이 다시 돌아왔으니, 청컨대 고(故) 판서(判書) 이광적(李光迪)의 고사(故事)에 따라 꽃을 내려 영화롭게 하소서.”</p> <p>하니, 임금(君)이 그대로 따르고, 또 쌀·고기·통술을 내려 주도록 명하였다. 이때 형관(刑官)이 민가[閭家]를 빼앗아 들어가 금법(禁法)을 범하는 일을 가지고 면전에서 아뢰면서 이야기가 분분하자, 예조 판서(禮曹判書) 김동필(金東弼)이 아뢰기를,</p> <p>“다스리는 도리는 대체(大體)를 유지하는 것이 귀중하니, 대체를 이미 얻게 되면 모든 세목(細目)은 저절로 펴집니다. 신이 선조(先朝)에 여러번 당후(堂后)8047) 로 입시하였는데, 차대에서의 주어(奏語)가 군덕(君德)과 시정(時政)에 관한 것이 아니면 바로 관방(關防)의 큰 계획이나 생민(生民)의 목은 폐단으로서 상하의 논설이 실질적인 일이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개 유사(有司)의 잔단 일을 가지고 번거롭게 연품(筵稟)까지 하는 데 이르고 있으니, 이는 국가에 보탬이 없고 한갓 사체(事體)만 손상시킬 뿐입니다.”</p> <p>하니, 임금도 그렇게 여겼다.</p>	<p>議政金在魯言：“丙辰萬科武及第年甲重回，請依故判書李光迪故事，賜花以榮之。”上從之，且命賜米肉尊灑。時，刑官以閭家奪入犯禁事面奏，辭說紛然，禮曹判書金東弼曰：“爲治之道，貴持大體，大體既得，萬目自張矣。臣於先朝，屢以堂后入侍，次對奏語，非君德與時政，卽關防大計，生民宿弊，上下論說，無非實事。今則以一有司微細之事，至煩筵稟，無補於國，而徒損事體耳。”上以爲然。</p>
<p>영조 41권, 12년 (1736 병진 / 청 건륭(乾隆) 1년) 2월 29일 (계사) 4번째기사 야대에서 윤용이 그 아버지 윤지만큼 청백</p>	<p>임금이 야대(夜對)를 행하기를 마치고 선은(宣醞)하였다. 임금이 참찬관(參贊官) 윤용(尹容)의 아버지 고(故) 판서(判書) 윤지인(尹趾仁)의 청백(淸白)함이 남보다 뛰어났다 하여 칭송하고 장려하기를 그만두지 않았으며, 인해서 윤용은 사람됨이 즐만하지만 세도(世道)에 구애되어 쓸 수 없다고 탄식하였다. 대체로 윤용의 종형(從兄) 윤연(尹筵)이 일찍이 무신년8077) 역적의 초사(招辭)에 나왔으므로 세상에서 막힌 바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하교가 있었다. 이날</p>	<p>上行夜對訖，宣醞。上以參贊官尹容之父，故判書趾仁淸白過人，稱獎不已，仍歎容爲人可用，而拘世道不能用，蓋容之從兄筵，曾出戊申逆招，爲世所枳，故有此教。是夜，下御題，夜對勝晝訪七律，命入侍諸臣及入直春</p>

<p>리가 아니며 세도에 구애됨을 탄식하다</p>	<p>밤에 ‘야대가 주방보다 낫다.’는 칠언 율시(七言律詩)를 어제(御題)로 내려 입시(入侍)한 여러 신하 및 춘방(春坊)에 입직(入直)한 기성관(騎省官)에게 지어서 올리도록 명하였다.</p>	<p>坊、騎省官製進。</p>
<p>영조 41권, 12년 (1736 병진 / 청 건륭(乾隆) 1년) 3월 19일 (계축) 2번째기사 민진원·이태좌를 화해시키기 위해 이들과 그 아들 민형수·이종성에게 선운을 내리다</p>	<p>기로소[耆社]의 신하 봉조하(奉朝賀) 민진원(閔鎭遠), 판부사(判府事) 이태좌(李台佐), 지사(知事) 이기익(李箕翊)을 회정당(熙政堂)에서 인견(引見)하였다. 임금이 《오례의(五禮儀)》의 향로의(享老儀)에 ‘여러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오면 찬자(贊者)가 일어나기를 청한다.’는 절목이 있다 하여 두 대신(大臣)에게는 각기 그 아들을 시켜 붙들고 들어오도록 명하고, 이기익은 액례(掖隸)8111) 로 하여금 붙들고 들어오게 하였다. 이에 민진원의 아들 민형수(閔亨洙)와 이태좌의 아들 이종성(李宗城)이 각기 그 아버를 부축하여 섬들에 올라 문에 이르자, 곡배(曲拜)하지 말도록 명하고 임금이 비로소 의자에 올라앉아 위유(慰諭)하고 관곡(款曲)하게 대접하였으며, 인해서 선운(宣醞)하였는데, 두 대신이 한 잔씩 마신 뒤에는 각기 그 아들로 하여금 대신 마시게 하니, 승지(承旨) 홍경보(洪景輔)가 아뢰기를, “오늘은 바로 성대한 거사입니다. 두 대신의 아들이 이미 함께 들어왔으니, 청컨대 따로 한 잔씩 내려 주소서.” 하니, 임금이 명하여 두 잔을 가져다가 그들로 하여금 마주 대하여 마시면서 유감을 풀도록 하고 이르기를, “어찌하여 서로 다투느냐?” 하자, 이종성이 취하여 아뢰기를, “민형수의 아버가 신의 아버와 함께 기로소에 들어갔으니, 신의 아버는 바로 그의 아버와 같습니다. 그의 상소에 신의 아버를 기롱한 말이 있었는데, 이는 불초(不肖)한 자식입니다.” 하고, 이에 ‘저 당(黨)’이나 ‘이 당(黨)’이니 하면서 서로 용권(用權)하였다고 배척하면서 서로를 양보하지 않았는데, 이종성은 이미 너무 취하여 더 마실</p>	<p>引見耆社臣奉朝賀閔鎭遠、判府事李台佐、知事李箕翊于熙政堂。 上以《五禮儀》《享老儀》， 有群老扶杖入，贊者請興之節，命兩大臣各使其子扶入， 李箕翊則令掖隸扶入。 於是，鎭遠之子亨洙、台佐之子宗城，各扶其父， 陞階至戶， 命勿曲拜， 上降椅立俟。 三臣入就位， 上始升椅坐， 慰諭款接， 仍宣醞。 兩大臣一爵之後， 各使其子代飲。 承旨洪景輔曰：“今日乃盛舉。 二大臣之子， 既同入， 請別賜一杯。” 上命取兩爵， 使之對飲以釋憾曰：“何爲相鬪耶？” 宗城醉曰：“亨洙之父， 與臣父同入耆社， 臣父卽其父。 渠疏有譏臣父語， 是不肖子也。” 於是， 以彼黨此黨， 互斥用權， 不肯相下， 而宗城業已醉甚不能飲， 遂命扶出， 命亨洙並飲兩爵曰：“一爵代宗城飲之。” 亨洙難之。 上命鎭遠勸之， 鎭遠曰：“臣本嗜酒， 臣當代臣子飲之。” 亨洙不得已盡飲二杯。 臨罷， 上命鎭遠、台佐， 進立椅前， 握手慰諭， 仍賜以文</p>

	<p>수 없으므로 마침내 부축하여 나가도록 명하고, 민형수에게 두 잔을 모두 마시도록 명하고 이르기를, “한 잔은 이종성을 대신하여 마시도록 하라.” 하였다. 민형수가 어렵게 여기자, 임금이 민진원에게 권하도록 명하였다. 민진원이 아뢰기를, “신이 본래 술을 좋아하니, 신이 신의 자식을 대신하여 마시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하니, 민형수가 어쩔 수 없이 두 잔을 모두 마셨다. 자리를 파(罷)함에 이르러 임금이 민진원·이태좌에게 의자 앞으로 나와서 서도록 명하고 손을 잡고 위유(慰諭)하고는 인해서 문피(文皮)를 내렸는데, 이기익에게도 내렸다. 세 신하가 물러나자 임금이 또 의자에서 내려와 전송하였다. 행 사직(行司直) 이의만(李宜晩)이 상소하여 늙고 병(病)이 들어 등대(登對)할 수 없다고 아뢰자, 임금이 부축하여 들어와도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고 비답하니, 이의만이 마침내 추후로 들어왔다. 임금이 위유(慰諭)하고 선온(宣醞)하고 문피(文皮)를 내리기를 모두 처음과 같이 하였다. 그리고 또 기해년(8112) 기로소의 여러 신하의 아들과 손자로서 사적(仕籍)에 있는 자는 각기 한 자급(資級)을 더하게 하고 자궁자(資窮者)8113) 는 아마(兒馬)를 내려 주도록 명하였다.</p>	<p>皮，竝及箕翊。 三臣退出，上又降椅送之。 行司直李宜晩疏言，老病不可登對，上批以扶入何傷，宜晩遂迫入。 上慰諭宣醞，賜皮竝如初。 又命己亥耆社諸臣子與孫在仕籍者，各加一資，資窮者賜兒馬。</p>
<p>영조 41권, 12년 (1736 병진 / 청 건륭(乾隆) 1년) 3월 26일 (경신) 2번째기사 이건명과 조태채의 추복과 이종성 등이 술에 취한 추태 등을 처리하자는 이광제의 상</p>	<p>(전략) 또 아뢰기를, “전장(銓長)이 하루에 세 번 〈패초(牌招)를〉 어기고 대궐 밖에 이르러 미품(微稟)8132) 한 것은 위로 은총만을 받은 것으로서 너무 거만한 데 관계되니, 마땅히 건책(譴責)하여 파면하는 벌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종성(李宗城)과 민형수(閔亨洙)는 〈임금이 내리신〉 은혜로운 술잔을 지나치게 마시고 서로 떠들면서 다투었으니, 간략하게나마 바르게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칙(上勅)8133) 이 자신의 목을 찌른 것은 곧 변괴(變怪)에 관계되니, 반송사(伴送使)는 그 관직을 파면함이 적당하겠습니다.”</p>	<p>(전략) 又言： 銓長之一日三違，到闕外微稟，仰恃恩眷，太涉慢蹇，宜施譴罷。 李宗城、閔亨洙過飲恩杯，互加喧爭，不可不略施規警。 上勅之自刎，係是變怪，伴送使宜罷其職。 時，吏曹判書李瑜爲承面諭，隨牌詣闕外，引疾徑退，故臺疏及之。 批曰：</p>

<p>소</p>	<p>하였다. 당시 이조 판서(吏曹判書) 이유(李瑜)가 면유(面諭)를 받들기 위하여 패초에 따라 대궐 밖까지 나아왔다가 병을 끌어대고 곧장 물러나갔기 때문에 대간(臺諫)의 상소에 언급되었던 것이다. 비답하기를, “맨 먼저 진달한 일은 당초에는 윤희를 아꼈다가 지금 시행하도록 허락한 것은 모두 의도한 바가 있다. 그리고 정관(政官)이 이미 실제로 병이 있었는데, 이 청은 지나치다. 이종성과 민형수의 일은 이미 우의정에게 유시(諭示)하였다.” 하였다.</p>	<p>“首陳事，當初斬許，今者許施，俱有意矣。政官既有實病，此請過矣。李宗城、閔亨洙事，業諭右相矣。”</p>
<p>영조 41권, 12년 (1736 병진 / 청 건륭(乾隆) 1년) 4월 12일 (병자) 1번째기사 넷째 옹주가 홍역을 앓다가 죽다</p>	<p>넷째 옹주(翁主)가 요사(夭死)하였다. 옹주가 홍역을 앓았는데, 병이 심해지자 의관(醫官)이 ‘여염(閭閻)의 아이들도 병이 있으면 친족(親族)의 집으로 옮겨서 피하게 하는 규정이 있다.’는 것으로 아뢰니, 임금(上)이 이르기를,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시행하지 말라.’고 하였다. 비록 종신(宗臣)의 집이라도 만약 어린 자식이 있으면 보내고 싶지 않다.”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새벽에 밀창군(密昌君)8161)의 집으로 내보냈는데, 겨우 금위영(禁衛營) 문 앞에 이르러 운명(殞命)하였다. 우의정(右議政) 송인명(宋寅明)과 약방 제조(藥房提調) 조상경(趙尙綱)이 청대(請對)하여 아뢰기를, “넷째 옹주가 당진(唐疹)으로 요사(夭死)하였으니, 동궁(東宮)을 신중히 보호하는 도리에 있어서 경덕궁(慶德宮)으로 이어(移御)하게 함이 적당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p>	<p>丙子/第四翁主夭。翁主患疹，疾劇，醫官奏以閭閻兒有疾，則移避親族家之規。上曰：“己所不欲，勿施於人。雖宗臣家，若有幼子，不欲送之。”至是，曉出送密昌君家，纔到禁衛營門前，隕命。右議政宋寅明、藥房提調趙尙綱請對言，四翁主夭於唐疹，其在慎護東宮之道，宜移御慶德宮，上從之。</p>
<p>영조 41권, 12년 (1736 병진 / 청 건륭(乾隆) 1년) 4월 24일 (무자) 4번째기사 야대 후 조명겸이 술을 경계할 것을 청하</p>	<p>임금이 야대(夜對)를 흥정당(興政堂)에서 행하였다. 강(講)하기를 마치고 선은(宣醞)하였는데, 검토관(檢討官) 조명겸(趙明謙)이 아뢰기를, “가만히 여항(閭巷)에 전해진 말을 들으니, 혹은 성상께서 술을 끊을 수 없다고들 한데, 신은 그 허실을 알지 못하겠지만 오직 바라건대, 조심하고 염려하며 경계함을 보존토록 하소서.”</p>	<p>上行夜對于興政堂，講訖宣醞。檢村官趙明謙言：“竊聞閭巷傳說，或謂自上不能斷飲，臣未知虛實，而惟願惕慮存戒焉。”上曰：“予於渴時，或飲五味子茶，人或疑以燒酒矣。”</p>

<p>니 오미자차를 마신 것뿐이라 하다</p>	<p>하니, 임금의 이르기를, “내가 목을 마를 때에 간혹 오미자차(五味子茶)를 마시는데, 남들이 간혹 소주(燒酒)인 줄 의심해서이다.” 하였다.</p>	
<p>영조 41권, 12년 (1736 병진 / 청 건륭(乾隆) 1년) 5월 29일 (임술) 4번째기사 송인명이 서인수에게 관직을 내릴 것을 청하니 그대로 따르다</p>	<p>(전략) 송인명이 또 동몽 교관(童蒙教官)을 가려서 차임하도록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윤순(尹淳)의 말이 당론(黨論)에서 나온 것이 아닌데, 한쪽에서 지나치게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의 이르기를, “윤순이 결단코 떠난 것은 지나치지만, 지키는 바는 그르지 않다.” 하였다. 송인명이 또 아뢰기를, “공인(貢人)으로 돈[錢] 6백을 받아야 할 자에게 쌀 1곡(斛)을 지급하는데, 쌀이 천하가 흉과 같아 1곡을 돈으로 환산하면 2백도 차지 않습니다. 청컨대 관서(關西)의 돈 10만 민(緡)을 가져다가 공민(貢民)의 급박함을 느슨히 하소서. 강서(江西) 등 다섯 고을은 본래 저축한 곡식이 없으면 산읍(山邑)의 곡식 또한 운반하기가 어려우니, 해서(海西)의 칙사(勅使)를 지공(支供)하고 남은 쌀 10만 석(石)을 획급(劃給)하게 한다면, 서울 안에 전황(錢荒)8267)의 폐단도 없어지고 공민(貢民)도 지탱할 수 있으며 해서의 곡식은 붉게 변질될 탄식이 없어지고 관서의 저축은 쌓이게 할 수 있습니다.” 하니, 임금의 여러 대신(大臣)과 경재(卿宰)에게 물었다. 김재로가 아뢰기를, “뒤틀날에 계속하기가 어렵고 10만 민(緡)은 너무 많으니, 짐작해서 가져다 쓰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니, 임금의 이르기를, “관서에 비치는 돈은 부비(浮費)8268) 에 불과할 뿐이다. 도성(都城)의 백성들이 오로지 공시(貢市)8269) 에만 의뢰하여 전황을 지탱하기 어려우니, 참으</p>	<p>(전략)寅明又請擇差童蒙教官， 上從之。 又言：“尹淳之言， 非出黨論， 而一邊過疑。” 上曰：“尹淳決去則過， 而所守不非矣。” 寅明又奏言：“貢人之當受錢六百者， 給米一斛， 而米賤如土， 一斛折錢， 不滿二百。 請取關西錢十萬緡， 以紓貢民之急。 江西等五邑， 素無儲穀， 山邑之穀， 亦難運致。 以海西支勅餘米十萬石劃給， 則都下無錢荒之弊， 而貢民可支； 海穀無紅腐之歎， 而關儲可積。” 上問諸大臣、 卿宰。 金在魯言：“後將難繼， 十萬太多， 宜斟酌取用。” 上曰：“關西置錢， 不過浮費耳。 都民專賴貢市， 錢荒難支， 誠非細憂。 卿之所達， 深知其源， 從便弛張， 其令小民蒙惠。”</p>

	<p>로 잔단 우려가 아니다. 경(卿)이 진달한 바는 그 근원을 깊이 안 것이니, 느슨히 하고 쟁기는 것을 편리한 대로 하여, 소민(小民)으로 하여금 혜택을 입도록 하라.”</p> <p>하였다.</p>	
<p>영조 41권, 12년 (1736 병진 / 청 건륭(乾隆) 1년) 6월 20일 (계미) 1번째기사 대신들과 인재 등용·각사 궁방의 차인이 민폐를 일으키는 일 등을 의논하다</p>	<p>(전략)송인명이 아뢰기를, “무신년8302) 이후로 각사(各司)·궁방(宮房)의 차인(差人)이 외방 고을에서 침범하여 소요를 일으키는 것을 일체 혁파하고 호조(戶曹)에서 거두어 바치게 하셨으니, 대단한 성덕(盛德)의 일입니다. 지금 전광도 도신(全光道道臣)이 보고한 것을 보니, 궁차(宮差)8303) 에 금령을 어기고 내려 보낸 자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p> <p>하고, 김재로는 아뢰기를, “이것은 절수(折受)8304) 를 모두 혁파하여 호조[地部]로 귀속하게 한 것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지하고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만, 일찍이 들으니, 외방 고을의 민폐가 차인(差人) 때보다 도리어 더 심하다고 합니다.”</p> <p>하니, 송인명이 아뢰기를, “신이 보상(輔相)의 직임을 욕되게 해 가면서 이미 백성들의 숨은 고통을 구제하지 못하고 대궐에서 크게 계모(計謀)하는 것이 궁차(宮差)를 다시 보내는데 불과하였다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지난번 규식을 정할 때에 이광덕(李匡德)이 ‘성상께서 이 일을 쾌히 시행하시면 처음에 바라던 것보다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고, 조현명(趙顯命)의 첩자(帖子)에 이르기를, ‘동짓날[至日]에 먼저 수발(垂紼)8305) 하셨으니 임금의 마음을 이미 알 만하다.’라고 하였으니, 대체로 이 두 사람은 외방 백성들의 고통이 궁차(宮差) 때문임을 깊이 알아서이다. 내가 비록 덕(德)이 적으나, 어찌 차인(差人) 무리의 명맥(命脈)을 돌보겠는가?”</p>	<p>(전략) 寅明曰: “戊申以後, 各司、宮房差人之侵擾外邑者, 一竝革罷, 而令自戶曹收捧, 甚盛德事也。 今見全光道臣所報, 則宮差多有違禁下送者矣。” 在魯曰: “此與盡罷折受, 歸諸地部者有異, 故寢而不行。 曾聞外邑民弊反有甚於差人時矣。” 寅明曰: “臣忝輔相, 既不能恤民隱, 屢覲訐謨, 不過復送宮差, 則何可使聞於人乎?” 上曰: “向於定式之時, 李匡德以爲: ‘自上快行此事, 有踰始望。’ 趙顯命帖子有曰: ‘至日先垂紼, 王心已可知。’ 蓋二人深知外民之苦宮差故也。 予雖涼德, 豈顧差人輩命脈耶?” 仍命推治內司首倡送差者。</p>

	하고, 인해서 내수사[內司]에서 차인을 보내도록 맨 먼저 주창한 자를 추국하여 다스리도록 명하였다.	
영조 42권, 12년 (1736 병진 / 청 건륭 (乾隆) 1년) 7월 13일 (을사) 1번째기사 약방 도제조 김흥경이 날이 더우니 알묘를 늦추자고 청하나 듣지 않다	약방 도제조 김흥경(金興慶) 등이 입진(入診)하여 날씨가 너무 무더우므로 알묘(斡廟)의 시기를 늦출 것을 청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乙巳/藥房都提調金興慶等因入診, 以日熱甚, 請退謁廟之期, 不從。
영조 42권, 12년 (1736 병진 / 청 건륭 (乾隆) 1년) 8월 10일 (신미) 1번째기사 김재로가 자전의 환후가 다 나왔으니 진연할 것을 청하니 따르지 않다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좌의정 김재로(金在魯)가 자전(慈殿)의 체후가 평복(平復)되었다 하여 진연(進宴)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자전께서 사양하기 때문에 주달하기가 어렵다는 것으로 윤택하지 않았다. 이때 예조에서 전례에 따라 진전(進箋)·방물(方物)·물선(物膳)에 대해 품지(稟旨)하니, 진전과 물선만을 허락하였다. 임금이 대전(大殿) 이하도 방물과 물선을 모두 정지하게 하였다.	辛未/上引見大臣、備堂。 左議政金在魯以慈候平復, 請進宴, 上以慈旨撝謙, 難於導達不許。 時, 禮曹例稟進箋、方物、物膳, 而慈殿只許進箋、物膳。 上命大殿以下方物、物膳并停之。
영조 42권, 12년 (1736 병진 / 청 건륭 (乾隆) 1년) 9월 17일 (무신) 2번째기사 야대를 행하고 술을 내렸는데 대신들이 밤 오경에 술자리를 파다	임금이 야대(夜對)를 행하고, 선온(宣醞)하였는데, 밤 오경(五更)에 가서야 파하였다. 이때 달빛이 대낮과 같았으므로, 여러 신하들이 어구교(御溝橋) 위에 모여 앉아 술을 가져다가 돌려가면서 마셨고 주거니 받거니 읊조리면서 새벽까지 이르렀다.	上行夜對, 宣醞, 五鼓始罷。 時, 月色如晝, 諸臣會坐御溝橋上, 取酒更酌, 酬詠至曉。

<p>영조 42권, 12년 (1736 병진 / 청 건륭 (乾隆) 1년) 10월 7일 (정묘) 3번째기사 야대를 행하고 선운을 내리다</p>	<p>임금이 야대를 행하고 선운(宣醜)를 내리면서 이르기를, “낮에 수괘(需卦)를 강하고 밤에 법운(法醜)을 하사하는 것은 수괘의 먹고 마 시면서 잔치를 베풀어 즐긴다고 한 뜻을 취한 것이다.” 하였다.</p>	<p>上行夜對，賜醜曰：“晝講需卦，夜宣 法醜者，蓋取飲食宴樂之義也。</p>
<p>영조 42권, 12년 (1736 병진 / 청 건륭 (乾隆) 1년) 11월 7일 (병신) 3번째기사 지평 이정보가 임금의 마음을 바꾸고 성실함 을 힘쓰게 하는 9조목 을 상소하다</p>	<p>(전략) 재용(財用)을 절약하여 민력(民力)을 퍼게 하는 데 대해 말하면서 백성 은 곤궁하고 재물은 고갈이 되었는데도 상하가 분수에 넘치게 사치스러운 폐 단을 통렬하게 진달하고 청하기를, “대수(代數)가 오래 된 제전(諸殿)에 공궤(供饋)하는 것, 후사(後嗣)가 없는 각 궁(各宮)에서 절수(折受)한 것, 교묘하게 만든 명목(名目), 부화(浮華)한 미문 (靡文) 등은 일체 혁파하여 백성들의 힘이 퍼지게 하소서.” 하고, (후략)</p>	<p>(찾기)</p>
<p>영조 42권, 12년 (1736 병진 / 청 건륭 (乾隆) 1년) 12월 11 일(경오) 1번째기사 감귤을 성균관에 내리 다. 유생의 시험에서 진사 이광의가 으뜸을 차지하다</p>	<p>감귤(柑橘)을 반궁(泮宮)8487) 에 반사(頒賜)하였다. 대제학 이덕수(李德壽)에 게 명하여 유생(儒生)들을 시험하게 하였는데, 진사 이광의(李匡誼)가 으뜸을 차지했으므로 급제를 내렸다.</p>	<p>庚午/頒柑于泮宮。 命大提學李德壽 試儒生，進士李匡誼居首，賜第。</p>
<p>영조 42권, 12년 (1736 병진 / 청 건륭 (乾隆) 1년) 12월 22 일(신사) 4번째기사</p>	<p>(전략)호조 판서 김동필(金東弼)이 말하기를, “대동법(大同法)을 창제(創制)한 처음에 각사(各司)의 상공(常供)에 관한 물종 (物種)을 숫자를 헤아려 공납(貢納)하게 하였으므로, 1년의 수용(需用)이 원래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4, 50년 이래 해마다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p>	<p>(전략) 戶曹判書金東弼曰：“大同創制 之初，各司常供物種，量數作貢，一年 需用，元無不足矣。 四五十年來，逐 年增減，元貢不足，物物皆然。 故自</p>

송인명이 비로소 등대하여 영백 문제와 대동법의 내용을 논의하다

하기도 했으므로, 원공(元貢)도 부족하고 물품마다 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호조에서 특별히 사들이는 것이 원공의 배나 되는가 하면, 혹 잇따라 흉년이 들 경우에는 선혜청(宣惠廳)의 원공은 임시로 감면시키는 것이 많은데 진배(進排)는 감하는 것이 없으므로, 그 수용(需用)에 부족한 값을 호조로 하여금 대체해서 감당하게 하고 있으니, 이는 실로 공납법을 만든 본의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마땅히 한결같이 모두 복구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공(元貢) 가운데 급하지 않은 물종(物種)은 각사의 부족한 물종으로 바꾸어 진공(進供)하게 함으로써 호조에서 따로 사들이느라고 더 쓰는 숫자를 제거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대신들에게 하문하였다. 우상과 좌상이 모두 그렇게 하는 것이 편하다고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선혜청에 임시로 감하여 준 것을 호조에서 대체하여 감당하는 것은 거의 자신의 살을 베어서 배를 채우는 것과 같다. 어공(御供)을 따로 사들이다는 것은 이웃 나라에 듣게 할 수 없는 일이니,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허락하여 시행하게 하라.”

하였다. 북관(北關)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으로 군포(軍布)·노공(奴貢)은 3분의 1을 감하게 하였다. 정언 송익휘(宋翼輝)가 인피(引避)하면서 말하기를,

“좌상의 차자에서 신이 윤봉조(尹鳳朝)에 대한 일을 논한 것 때문에 상당히 불평하는 뜻을 보였습니다. 윤봉조의 죄는 방만규(方萬規)가 상소하도록 교사(教唆)한 데에 있는데, 아직도 의심스러운 것인지 믿을 만한 것인지가 분명히 결말이 나지 않은 안건(案件)이니, 신도 반드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질언(質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방만규가 이미 복주(伏誅)되었는데, 여기에 참섭(參涉)했던 사람을 단지 했수가 오래 되었다는 것 때문에 준례에 따라 수용(收用)한다면, 물정(物情)을 평온하게 하고 인심을 열복(悅服)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제 방만규의 죄를 신원(伸冤)하고 방만규의 벼슬을 회복시킨다면, 윤

戶曹別貢者，有倍元貢，而或因連凶，惠廳元貢，多有權減，而進排則無減，故需用不足之價，使戶曹替當，實非作貢之本意。今宜一併復古，而元貢中不急物種，以各司不足物種，換作進供，以除戶曹加用別貢之數宜矣。”上詢大臣，左右相皆以爲便，上曰：“惠廳權減，戶曹替當，殆同割肉充腹。御供別貢，不可使聞於隣國，令廟堂許施。”以北關年荒，減軍布、奴貢三分之一。正言宋翼輝引避曰：“左揆筭本，以臣所論尹鳳朝事，頗示不平矣。夫鳳朝之罪，在於萬規疏之教唆，而尙爲疑信未了之案，臣亦不必質言，其必有是事。萬規既伏法而參涉者，徒以年久，循例收用，其可以平物情，服人心乎？今若伸萬規之罪，復萬規之官，則鳳朝事，亦可昭白而不然，依稀黯黶，固自如矣。承文提舉之不堪揀選，若如大臣之言，則卽今卿宰中，無故已經清顯，而猶未得兼者，亦可指數。何不并差而有所取舍耶？”上曰：“新入臺地，灑脫媿媿之風，極用嘉之。相筭本非過嫌者，勿辭。”翼輝申前啓，不允。金在魯退而陳筭引咎，上賜批

	<p>봉조의 일도 환히 씻길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하여 어물어물 애매한 상황이 진실로 그대로 있는 실정입니다. 승문원 제거를 세심하게 간선(揀選)하지 않는 것이 대신의 말과 같다면, 지금의 경재 가운데 아무 사고 없이 이미 청현직(淸顯職)을 지냈는데도 아직 겸임하지 못한 사람이 또한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들을 모두 차임하지 않고서 취사(取捨)하는 것이 있단 말입니까?”</p> <p>하니, 임금(임금이) 이르기를, “새로 대각(臺閣)에 들어와서 머뭇거리는 기풍(氣風)을 시원스럽게 벗었으니, 이를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정승의 차자는 지나치게 혐의할 것이 아니니, 사퇴하지 말라.”</p> <p>하였다. 송익회가 전계를 다시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김재로가 물러가서 차자를 진달하여 인구(引咎)하니, 임금이 위해(慰解)하는 내용의 비답을 내렸다.</p>	<p>慰解之。</p>
<p>영조 42권, 12년 (1736 병진 / 청 건륭(乾隆) 1년) 12월 25일(갑신) 2번째기사 태묘에서 납향을 거행하는데 고양이가 들어오니 묘사를 국문하게 하다</p>	<p>태묘(太廟)에서 납향(臘享)을 거행하였는데, 술잔을 올리려 할 때에 고양이가 갑자기 전중(殿中)으로 들어왔다. 헌관(獻官) 해흥군(海興君) 이강(李樞) 등이 상소하여 아뢰니, 묘사(廟司)를 나처(拿處)하라고 명하였다.</p>	<p>行臘享于太廟， 將獻爵， 有猫忽入殿中。 獻官海興君樞等疏聞， 命拿處廟司。</p>
<p>영조 43권, 13년 (1737 정사 / 청 건륭(乾隆) 2년) 1월 2일(신묘) 3번째기사 송지에게 《경국대</p>	<p>(전략)이어 선운(宣醞)할 것을 명하였다. 임금이 몸소 ‘새해에 한결같이 마음을 쓸 것은 풍년들기를 비는 것[新歲一心祝有年]’이라는 글귀를 쓰고, 입시한 여러 신하들에게 즉석에서 뒤이어 짓게 하니, 여러 신하들이 각기 칠언 절구(七言絕句)를 지어서 올렸다. 임금이 필묵(筆墨)을 하사하여 총애하였다.</p>	<p>(전략)仍命宣醞。 上親寫新歲一心祝有年一句， 命入侍諸臣， 卽席賡進， 諸臣各賦七言絕句以上， 賜筆墨以寵之。</p>

<p>전》을 가지고 입시하게 하여 농정의 급무와 민간의 질고 등을 상의하다</p>		
<p>영조 43권, 13년 (1737 정사 / 청 건륭(乾隆) 2년) 2월 3일 (신유) 2번째기사 강춘 감사 이중협이 하직 인사하니, 화전과 벌목을 금지하게 하다</p>	<p>강춘 감사(江春監司) 이중협(李重協)이 사패(辭陞)하니, 임금(上)이 인견(引見)하고 선유(宣諭)하였다. 승지(承旨) 조명신(趙命臣)이 말하기를, “관동(關東)의 화전(火田)은 경작(耕)이 산등성(山脊)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숲(叢)을 잇따라 연소(燒)시키고 있어 삼출(蓼朮) 8546)의 공납(貢納)이 거의 끊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택(川澤)을 막아 놓았기 때문에 뱃길(舟楫)이 통(通)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산허리(山腰) 이상(以上)에다 기경(起耕)하는 것은 금지(禁)시킴이 마땅(當)합니다.” 하였는데, 이중협(李重協)이 말하기를, “삼가(三) 엄중(嚴)히 신칙(申)함이 마땅(當)합니다.” 하니, 임금(上)이 이르기를, “화전(火田)을 금지(禁)하는 것보다는 의당(義當) 맹자(孟子)의 이른바 산림(山林)에 부근(斧斤)을 가지고 들어가서 베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말(言)처럼 하는 것이 옳(善)다. 근래(近來) 도신(道臣)이 당초(當)초에 들어가는 것을 잘 금지(禁)하지 않고 있다가 그들이 함부(含)로 마구(馬) 베기(背)에 이르러서는 이에 도리어 그것을 속공(屬公)하고 있으니, 공평(公)한 정사(政)가 아니다.” 하였다.</p>	<p>江春監司李重協辭陞， 上引見宣諭。承旨趙命臣曰：“關東火田， 耕至山脊， 故燒延林藪， 蓼朮之貢幾絕。 崩壅川澤， 舟楫之路難通， 宜禁山腰上起耕者。” 重協曰：“謹當嚴飭矣。” 上曰：“與其禁火田， 宜如孟子所謂斧斤不入山林則可也。 近來道臣初不能禁其入， 及其濫斫， 乃反屬公， 非公平之政也。”</p>
<p>영조 43권, 13년 (1737 정사 / 청 건륭(乾隆) 2년) 2월 14일 (임신) 4번째기사 세살인 세자가 《효경》을 읽고 글을 쓰다</p>	<p>임금(上)이 약원(藥院)에 명(命)하여 양정합(養正閣)에서 동궁(東宮)을 진찰(診)하게 하였다. 임금(上)이 당중(堂中)에 평좌(平坐)하니, 세자(世子)가 관복(冠服)을 갖추고 서안(書案) 아래에 시좌(侍坐)하였다. 이때 세자(世子)의 나이 3세였는데, 행동(行)거지가 의(疑)거하였다. 임금(上)이 궁관(宮官)에게 책자(冊子)를 올리도록 명(命)하여 읽기(讀)를 권(勸)하니, 한참(一)있다가 《효경(孝經)》을 펴고 ‘문왕(文王)’이란 글자(字)를 낭랑(朗)하게 송독(誦讀)하였다. 내시(內侍)가 지필(紙筆)을 내오니 큰 붓대(筆)를 잡고 ‘천지왕춘(天地王春)’이란 글자(字)를 썼다. 여러 신하(臣)들이 다투어 앞으로 나와서 하사(下)하여 줄 것</p>	<p>上命藥院， 診東宮于養正閣。 上平坐堂中， 世子具冠服侍坐書案下。 時， 世子年三歲， 動止疑然。 上命宮官， 進冊子勸讀， 良久， 展《孝經》， 琅然誦文王字。 內侍進紙筆， 握大管， 寫天地王春字。 群臣爭前請賜， 上曰：“汝指所欲與之人。” 世子指都提調金</p>

	<p>을 청하니, 임금의 이르기를, “네가 주고 싶은 사람을 가리키라.” 하니, 세자가 도제조(都提調) 김흥경(金興慶)을 가리켰다. 임금이 웃으면서 이르기를, “세자도 대신을 아는구나.”</p>	<p>興慶, 上笑曰: “世子亦知大臣矣。”</p>
<p>영조 43권, 13년 (1737 정사 / 청 건륭 (乾隆) 2년) 2월 17일 (을해) 2번째기사 성상이 비통을 앓아 황단의 친제를 정지할 것을 잇달아 청하니 윤허하다</p>	<p>약원(藥院)에서 입진(入診)하였다. 이때 임금이 여러 날 동안 비통(臂痛)을 앓았는데, 도제조 이하가 황단(皇壇)에 친제(親祭)하겠다는 명을 정지할 것을 청하였으나, 임금은 신기(神氣)의 상태를 살펴보고자 하고 하면서 윤허하지 않았다. 뒤에 대신이 잇따라 간쟁하니, 그제야 섭행(攝行)하도록 허락하였다.</p>	<p>藥院入診。時, 上患臂痛累日, 都提調以下, 請寢皇壇親祭之命, 上欲觀神氣進止, 不許。後大臣連爭之, 乃許攝行。</p>
<p>영조 43권, 13년 (1737 정사 / 청 건륭 (乾隆) 2년) 3월 2일 (경인) 1번째기사 비통 때문에 침을 맞았는데 2품 이상이 문안하다</p>	<p>임금이 비통(臂痛) 때문에 침을 맞았는데, 2품 이상이 문안(問安)하였다.</p>	<p>庚寅/上臂疼受鍼, 二品以上問安。</p>
<p>영조 43권, 13년 (1737 정사 / 청 건륭 (乾隆) 2년) 3월 3일 (신묘) 2번째기사 침을 맞다</p>	<p>임금이 침을 맞았다.</p>	<p>上受鍼。</p>
<p>영조 43권, 13년</p>	<p>임금이 내관(內關)·곡지혈(曲池穴)에 침을 맞고 이어 뜸을 뒀다.</p>	<p>○壬辰/上受鍼內關曲池穴, 仍受灸。</p>

<p>(1737 정사 / 청 건륭 (乾隆) 2년) 3월 4일 (임진) 1번째기사 침을 맞고 땀을 뜨다</p>		
<p>영조 43권, 13년 (1737 정사 / 청 건륭 (乾隆) 2년) 3월 5일 (계사) 2번째기사 침을 맞다</p>	<p>임금이 침을 맞았다.</p>	<p>上受灸。</p>
<p>영조 43권, 13년 (1737 정사 / 청 건륭 (乾隆) 2년) 3월 10일 (무술) 5번째기사 조상경이 수어청의 아 병 중에서 양병이 줄어들어 대책을 세우자고 청하다</p>	<p>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우의정 송인명이 말하기를, “신이 근래에 듣건대, 춘궁(春宮)에 입견(入見)하는 의관(醫官)들 가운데 사여(賜予)를 청하는 자가 많다고 합니다. 국조(國朝)의 예법은 매우 근엄한 것이인데, 이 무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런 일이 없다. 단지 지난번 의관들에게 희롱삼아 낙죽(酪粥)을 준 일이 있었고, 의관들 또한 감굴의 하사를 청하여 그 대답을 살펴보는 것을 보았는데, 이는 좋은 뜻이었다. 그러나 습관으로 굳어지기 쉬운 것이니, 경의 말이 옳다.” 하였다(하략)</p>	<p>上引見大臣、備堂。右議政宋寅明曰：“臣近聞，醫官之入見春宮，多有請賜予者。國朝禮法絕嚴，此輩豈宜若是？”上曰：“無有。但見頃者，戲與醫官以酪粥，醫官亦請賜柑，以觀其對，此好意也。然易以成習，卿言是矣。”(하략)</p>
<p>영조 43권, 13년 (1737 정사 / 청 건륭 (乾隆) 2년) 3월 26일 (갑인) 2번째기사 급제 이현필이 송인명과 친함을 믿고 임금의 과실을 지적하였는</p>	<p>(전략) 이어 눈물을 흘려 목이 메어 울며 말하기를, “내가 평일에 마음속에 맺힌 것이 있으면 털어버리지 못하였으므로, 근일에 목구멍에 환약만한 담(痰)이 엉겨 있다. 임금 노릇하기가 참으로 또한 괴롭다.” 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물러가고 난 다음 다시 입시한 승지 김응복(金應福)을 불러놓고 임금이 이르기를, “내가 지금까지 참아 온 것은 불평을 가슴속에 쌓아 두기 위해서가 아니었다.</p>	<p>(전략)仍流涕嗚咽曰：“予平日心有所結，則不能捨。近日喉中痰凝如丸，爲人君信亦苦矣。”諸臣既退，復召入侍承旨金應福，上曰：“予之忍耐至今，非爲蘊蓄不平也。聞烏鳶傷而鳳凰不至，非惜顯弼，欲惜眞箇直士。予亦豈無好名之心也？俄者略有下教，而有</p>

데 임금이 알았다

듣건대, 까마귀와 소리개가 상처를 받으면 봉황(鳳凰)이 오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이현필을 아껴서가 아니라 참으로 정직한 선비를 아끼고자 하는 것이다. 나 또한 어찌 이름 내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없겠는가? 잠시 전에 대략 하교했지만 모호하고 빠뜨린 점이 있었는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만일 이현필을 참으로 직언(直言)하는 선비로 여기고 나를 허물을 변명하는 사람으로 여기게 된다면 도리어 말하지 않는 것만 못하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하교하는 것이니, 기거주(起居注)는 그 일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라. 첫머리의 두 조항에 대해서 나는 소홀하게 여겼으나, 대신들은 자못 신중하게 보았다. 조신(朝臣)이 말하였으니 진실로 직언(直言)이 되겠지만, 이 말이 점차 옮겨져서 전파된다면 오히려 무궁한 근심이 있게 될 것이다. 이병태(李秉泰)의 말도 첫 번째는 옳았으나 두 번째는 옳지 않았었다. 더구나 지금의 사체는 전보다 크게 다른데 어떻게 감히 한번이 거론하여 언급할 수가 있겠는가? 나의 동생(同生)으로 출제(出題)한 것은 곧 경솔한 것이었는데, 호남의 유생들은 오히려 깊이 살펴보고 직언하려 했으니, 어찌면 지존(至尊)을 위하여 휘(諱)하는 의리가 그리도 없는가? 이들 무리가 반드시 옥하(屋下)에서 사스럽게 이야기하면서 항상 전설(傳說)했기 때문에 그러하였을 것이다. 내가 스스로 변명하려는 것이 아니고, 실은 세도(世道)를 깊이 생각해서인 것이다.

사친(私親)의 궁(宮)에 대한 일은 선조 때 태조(太祖)의 어필을 봉진한 것이 있었는데, 이를 옹주(翁主)에게 하사하자, 상신 서종태(徐宗泰)가 이로 인하여 진계(陳戒)했으므로 여기에 감동되어 마침내 하교했던 것이다. 이는 사친의 궁이 세 곳에 있었기 때문이었으나 이 또한 사친의 구궁(舊宮)이기 때문에 왕녀(王女)에게 하사하려고 했던 것이다. 속담에도 ‘노래가 아무리 좋아도 늘 들으면 싫증이 난다.’고 했는데, 이 일이 정대(庭對)하는 글에 오르기에 이르렀으니, 어찌 개연(慨然)한 일이 아니겠는가? 대저 음식과 여색은 사람의 본성(本姓)이니, 누구에겐들 없겠는가? 내가 젊었을 적에 오랫동안 시탕(侍湯)하

糶糊遺漏處，聞此者若以顯弼爲眞箇直言之士，而以予爲文過之人，則反不如舍默，故更此下教，起居注其詳錄焉。首言兩條，予則闕略，而大臣看得頗重。朝臣言之，固爲直言，而輾轉流播，猶有無窮之慮。李秉泰之言，一則可，再則不可。況今事體，大異於前，何敢每每提及乎？以予同生出題，直是率然，而湖南儒生猶且深看，雖欲直言，豈無爲尊諱之義乎？此輩必於屋下私談，常常傳說而然也。予非自卜，實深念世道耳。私親宮事，先朝有奉進太祖御筆，賜翁主者，而相臣徐宗泰因此陳戒，故感此而遂下教。蓋以私親宮有三處故也。然是亦私親舊宮，故欲以賜王女。諺云：‘歌雖好矣，常聽則厭。’此事至登庭對之文，寧不慨然？夫食色性也，人孰無之，而予少也，長時侍湯，住闕中，近感廣植之言。適有封爵產廳之設矣，六百宮人，猶不足之說，實非予心也。慈殿或抄入宮人，而每教曰：‘萬歲後，宜并放送。’顯弼亦必知宮人之屬於某殿，而猶爲此言乎？戶判及別軍職事，若謂宮中有私逕者然，誠可痛也。戶判之移

면서 췌내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근래 광식(廣植)의 말에서도 감동을 받았다. 마침 산실청(産室廳)을 설치하고 봉작한 일이 있었는데, 6백 명의 궁인(宮人)도 오히려 부족하다고 한 이야기는 진실로 나의 본심이 아니었다. 자전(慈殿)께서 혹 궁인을 초입(抄入)하게 하시면서도 매양 하교하시기를, ‘만세 후에는 마땅히 모두 방송하라.’고 하셨다. 이현필도 반드시 궁인이 어느 궁전으로 예속되었는가를 알았을 것인데, 오히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호판과 별군직에 대한 일을 마치 궁중에 사경(私徑)이 있는 것처럼 말하였으니, 진실로 통분스러운 일이다. 호판을 전조로 옮긴 것은 본래 특이한 일이 아닌 것이다. 그리고 별군직에 제수된 자가 또한 많았는데, 그 가운데 이세기(李世琦) 같은 자가 있었던 것은 반드시 그의 성이 이(李)이기 때문에 후궁의 족속이 되는 것으로 의심했겠지만, 마침 그의 거주지를 물어보았더니, 곧 강상(江上)에 사는 사람이었다. 송(宋)나라 때 왕소(王素)는 환관(宦官)이나 궁첩(宮妾)은 이름을 모르는 사람으로 쓸 것을 청하였었다. 아조(我朝)의 가법(家法)은 매우 엄중하여 전대(前代)보다 훨씬 뛰어난 때문에 원래 이런 폐단이 없었다. 내가 비록 부덕하다 하나,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 향낭(香囊)에 대한 일 또한 가소로우니, 풍원(豊原)이 이름 내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에 이런 말을 했던 것이다. 여항의 사람들은 의복이 아름답지 않으면 그 허물을 가모(家母)에게 돌리지만, 대내(大內)에서는 그렇지 않다. 각기 관장하는 곳이 따로 있기 때문에 중궁(中宮)은 알 바가 아니다. 더구나 향낭은 본래 상방(尙方)에서 직조(織造)하는 것이겠는가? 내가 처음에는 그 글을 향유(鄉儒)가 지은 것이라고 여겼었는데, 개탁하여 보니 곧 이현필이 지은 것이었다. 이는 오로지 교묘한 방법으로 과제(科第)를 점유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그의 심술(心術)을 볼 수가 있다.”

하였다.
(하략)

銓曹，本非異事，別軍職差授者亦多，而其中有李世琦者，必以其姓李，疑爲後宮之族，而適問其居住，乃江上之人也。宋王素請用宦官宮妾不知名者。我朝家法甚嚴，遠出前代，元無此弊。予雖涼德，豈有此乎？香囊事，亦可笑也。豊原以好名之故，乃有此言。閭巷之人，衣服不美，則歸咎家母，大內則不然，各有所掌，非中宮所知，況香囊本自尙方織造乎？予始以其文爲鄉儒，及坼見則乃顯弼也。此專出於巧占科第之意，可見其心術矣。”(후략)

<p>영조 43권, 13년 (1737 정사 / 청 건륭 (乾隆) 2년) 4월 3일 (신유) 3번째기사 견부가 마비되는 병을 앓고도 태묘의 하향 대제를 직접 행하겠다고 하다</p>	<p>이때 임금의 견부(肩部)가 마비(痲痺)되는 병을 앓고 있었는데, 오래도록 낫지 않았으나, 태묘(太廟)의 하향 대제(夏享大祭)를 직접 행하겠다고는 명을 내리니, 약방(藥房)에서 들어와 진찰하고 극력 섭행(攝行)하게 할 것을 명하도록 청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나의 병이 비록 완쾌되지 않았으나, 충분히 제사를 거행할 수 있다. 전일에는 직접 기우제(祈雨祭)를 행한 적이 많았다. 그때 온몸을 목욕을 하고 장전(張殿)에 거처하면서 유숙했었는데, 한여름철이었으나 몸이 서늘함을 느껴 후들후들 떨렀었다. 태묘의 경우에는 온실(溫室)에 거처하는 것이고 더구나 오늘날은 일기가 그다지 무덥지 않으니, 더욱 염려할 것이 없다.” 하고, 끝내 따르지 않았다.</p>	<p>時，上肩部麻痺之疾久未愈，而有太廟夏享親行之命。藥房入診，力請命攝，上曰：“予疾雖未快，足以將事。前日多親行祈雨祭，遍身沐浴，寢處帳殿，雖當炎節，體覺慄然振寒矣。太廟則處於溫室，況今日氣未甚熱，尤無所慮。”竟不從。</p>
<p>영조 43권, 13년 (1737 정사 / 청 건륭 (乾隆) 2년) 4월 18일 (병자) 1번째기사 왼쪽 팔뚝의 담핵으로 강연에 참여하기 어려웠으나 참여하다</p>	<p>임금이 주강을 행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오늘 좌담(坐榻)으로 나아가려 했으나 왼쪽 팔뚝의 담핵(痰核)이 갑자기 통증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미 강연(講筵)을 열었으니, 정지할 수는 없다. 약원(藥院)으로 하여금 승후(承候)하게 하라.” 하였다.</p>	<p>丙子/上行晝講。上曰：“今日將御坐榻，左臂痰核，忽然疼痛。既開講筵，不可停矣。其令藥院承候。”</p>
<p>영조 43권, 13년 (1737 정사 / 청 건륭 (乾隆) 2년) 4월 23일 (신사) 1번째기사 침을 또 맞다. 정후하는 대신들이 적었으므로 책망하여 꾸짖다</p>	<p>임금이 또 침을 맞았다. 정후(庭候)하는 반행(班行)이 매우 적었는데, 기전(幾甸) 가까이 있는 신하들도 올라오지 않았으므로 종종 추고(從重推考)하도록 명하였다. 사신은 말한다. “군신(君臣)은 부자(父子)와 달라서 진퇴(進退)는 반드시 의리에 의해 하는 것이니, 간혹 정세(情勢)나 병고(病故)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에 일이 있는 때라도 일일이 조정에 나올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근세(近世) 이래로 위에서는 속박해서 다그치는 것을 일삼고 아래에서는 명을 받들어 추주(趨走)하는 것을 공손함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달려가지 않으면 번번이 견책을 가하는데, 이는 실로 군하(群下)가 스스로 취한 것이</p>	<p>辛巳/上又受灸。以庭候班行甚少，在近畿諸臣亦不上來，命從重推考。 【史臣曰：君臣異於父子，進退必以義，或有情勢病故，則雖國家有事之時，不必一一赴朝，而近世以來，上以縛束馳驟爲事，下以承命趨走爲恭，一有未赴，輒加譴責，是實群下自取，可勝歎哉。】</p>

	니,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영조 44권, 13년 (1737 정사 / 청 건륭 (乾隆) 2년) 5월 8일 (을미) 1번째기사 약방에서 입진하다. 피 인(彼人)들을 연향에 접대하는 절차를 감하 지 말라 하다	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피인(彼人)들을 접대하는 것은 스스로 정해진 규칙이 있는데, 요즈음 연향 (宴享) 등의 일을 상역(象譯)8606)의 무리들이 주선하여 감제(減除)하고 자 신의 공으로 삼는다. 저들이 만약 스스로 감하였다면 가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스스로 감하기를 청하고 우리가 도리어 치사(致謝)한다면 일이 지극히 구차스럽다. 지금부터 연향에 접대하는 등의 절차를 감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乙未/藥房入診。 上曰：“接待彼人， 自有恆式，而近來宴享等事，象譯輩周 旋除減，自以爲功。 彼若自減則可矣， 不然而我自請減， 我反致謝， 事極苟 且。 自今宴享接待等節， 俾勿減焉。”
영조 44권, 13년 (1737 정사 / 청 건륭 (乾隆) 2년) 5월 18일 (을사) 1번째기사 임금이 팔이 아파 침 을 맞다. 간언하지 않 은 대간을 파직하라 하다	임금이 팔이 아파서 침(鍼)을 맞았다. 조정(朝廷)에서 문안을 하자 약방(藥房) 에서 입진(入診)하도록 명하고 물러갈 때에 이르러 하교하기를, “승정원(承政院)의 계달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으니, 간언(諫言)을 하지 않 은 대간(臺諫)은 계달한 대로 파직하도록 하라.” 하였다.	乙巳/上以臂痛受鍼。 朝廷問安， 命藥 房入診， 臨退， 教曰：“院啓不可不收 殺， 不言臺諫， 依啓罷職。”
영조 44권, 13년 (1737 정사 / 청 건륭 (乾隆) 2년) 5월 20일 (정미) 1번째기사 임금이 침을 맞다	임금이 침(鍼)을 맞았다.	丁未/上受鍼。
영조 44권, 13년 (1737 정사 / 청 건륭 (乾隆) 2년) 5월 21일 (무신) 1번째기사	임금이 침(鍼)을 맞았다.	戊申/上受鍼。

<p>임금이 침을 맞다</p>	<p>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다. 부제조(副提調) 유엄(柳儼)이 고양이 가족이 팔 아픈데 이롭다고 하여 임금에게 시험해 보도록 청하자, 임금이 이르기를, “내 일찍이 여러 마리의 고양이가 궁궐 담장 사이를 왕래하는 것을 보았는데 차마 그 가족으로 병을 치료하는 데 쓰지는 못하겠으니, 이 역시 포주(庖廚)를 멀리하는 마음이다.”</p> <p>하였고, 여러 번 청하였으나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주청사(奏請使) 서명균(徐命均)이 아뢰기를, “지금 이 주청문(奏請文)은 외의(外議)가 모두 간곡(懇曲)함을 위주(爲主)로 힘쓰라고 하였으니, 만약 동조(東朝)에서 기대(企待)한다는 뜻으로 말한다면 좋을 듯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번의 주청(奏請)이 사체(事體)가 비록 중하더라도 피국(彼國)은 명나라[皇明]와 다르니, 어찌 이런 것으로 중함을 빙자(憑藉)하겠는가? 다만 내 나이가 점점 많아지므로 기망(企望)이 매우 간절하다고 말하는 것이 가하다.”</p> <p>하였다. 서명균이 또 청하기를, “가까운 규례에 의하여 은 7만 냥을 가지고 갈 것이며, 또 들으니, ‘피국(彼國) 12왕(十二王)8647) 이 총리 예부(摠理禮部)로서 우리 나라 일을 관할하는데, 지난번 역관 이추(李樞)가 연경(燕京)에 갔을 적에 12왕이 불러보고 약삼(藥蔘) 2근을 요구했다.’고 하니, 아울러 가지고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p> <p>하자, 임금이 그대로 허락하였다.</p> <p>사신은 논한다. 주문(奏文) 중에 동조(東朝)의 요청으로 중함을 빙자(憑藉)하는 것은 한갓 사신(使臣)의 일이 이루어지지만 바란 것이며, 사체(事體)상 감히 못할 것에는 전혀 어두웠으니, 아주 무식하다고 말할 만하다. 명나라와 다르다는 하교는 즉히 대신으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알게 함이었다. 또한 근세</p>	<p>辛亥/藥房入診。副提調柳儼以猫皮利於臂痛，請上試之，上曰：“予嘗見，群猫往來宮墻之間，不忍用其皮治病，是亦遠庖廚之心也。”屢請終不許。奏請使徐命均曰：“今茲奏請文，外議皆謂務主懇切，若以東朝企待之意爲言，則似好矣。”上曰：“今此奏請，事體雖重，彼國異於皇明，何可以此藉重？只以予春秋漸高，企望甚切爲辭可也。”命均又請：“依近例，齎銀七萬以行。且聞，彼國十二王以摠理禮部，管我國事，而頃者譯官李樞之入燕也，十二王招見而求藥蔘二斤云，并宜齎去矣。”上許之。</p> <p>【史臣曰：奏文中藉重東朝之請，徒冀使事之得濟，全昧事體之不敢，可謂無識之甚。異於皇明之教，足令大臣知愧矣。且近歲有事於彼中，專用銀貨，爲竣事之地，襲成謬例。谿壑之欲莫充，有限之財將盡，苟如是，則一二譯舌齎貨來往足矣，焉用專對爲哉。】</p>
------------------	---	---

	(近歲)에 피중(彼中)에 일이 있으면 오로지 은화(銀貨)를 써서 일을 끝내는 바탕을 삼으니, 잘못된 규례를 답습하게 되면 시내와 구렁 같은 욕심을 채울 수 없고 한정이 있는 재물이 장차 바닥이 날 것이니, 진실로 이와 같이 한다면 한두 역관[譯舌]이 재화를 가지고 내왕하여도 충분할 것인데, 어찌 전대(專對)8648) 할 사람을 쓰겠는가?	
영조 44권, 13년 (1737 정사 / 청 건륭(乾隆) 2년) 6월 9일 (병인) 1번째기사 옹정을 부묘하는 칙사가 와 임금이 접견하고 다례를 베푼다	옹정(雍正)8664) 을 부묘(祔廟)하는 칙사(勅使)가 나오니, 임금이 모화관(慕華館)에 나아가 맞아들이고 인정전(仁政殿)에서 접견하여 다례(茶禮)를 베푼었다. 가정(家丁) 한 사람이 길에서 미친 병이 발생하였다는 말을 듣고 의원을 보내어 진찰하게 하고 약물(藥物)을 넉넉히 하사하니, 피인(彼人)들이 감격하였다.	丙寅/雍正祔廟勅來。 上幸慕華館迎入，接見于仁政殿，設茶禮。 聞家丁一人路得狂疾，遣醫診視，優賜藥物，彼人感之。
영조 44권, 13년 (1737 정사 / 청 건륭(乾隆) 2년) 7월 12일 (무술) 1번째기사 가뭄 때문에 사직에 친히 기도하겠다고 하자, 신하들이 섭행을 청하다	임금이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備局堂上)을 인견(引見)하였다. 오랫동안 가뭄였기 때문에 내일은 몸소 사직(社稷)에 나아가 기도한다는 것을 명하자, 좌의정 김재로(金在魯) 등이 약원(藥院)의 여러 신하들과 함께 대신(大臣)을 보내어 섭행(攝行)하도록 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내가 몸소 빌어야 반드시 비가 오고 대신이 대신 행하면 비가 오지 않는다고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해야 할 도리를 다하고자 할 뿐이다.” 하고, 끝내 윤허하지 않았다.	戊戌/上引見大臣備堂。 以久旱，命明日親禱社稷。 左議政金在魯等與藥院諸臣，請遣大臣攝行。 上曰：“非謂予躬禱而必雨，大臣替行而不雨也，惟欲盡在我之道而已。” 終不許。
영조 44권, 13년 (1737 정사 / 청 건륭(乾隆) 2년) 7월 15일 (신축) 3번째기사 임금이 태묘에 나가 기우한다고 명하다. 김	임금이 몸소 기도해도 비가 오지 않으므로 내일 다시 태묘(太廟)에 나아가 기도한다고 명하자, 좌의정 김재로(金在魯)가 약원(藥院)과 함께 청대(請對)하여 말하기를, “성상(聖上)께서 현기증 및 팔 부분에 환후(患候)가 있으니, 매일 계속 수고롭게 거동하는 것은 마땅하지 못합니다. 청컨대, 섭행(攝行)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上以躬禱未得雨，命以明日復祈太廟。 左議政金在魯與藥院請對言：“上有眩氣及臂部之候，不宜連日勞動，請攝行。” 上曰：“禱社而未得雨，則何不更禱於廟乎？況躬於社而攝於廟，在禮不可終不許。(하략)

<p>재료가 조현명에게 별을 더하자 하다</p>	<p>“사직(社稷)에 기도하여 비를 얻지 못하였다면 어찌 다시 종묘(宗廟)에 나아가 기도하지 않겠는가? 더구나 사직에는 몸소 행하고 태묘(太廟)에는 섭행하게 한다면, 예의(禮儀)에 있어서 옳지 못하다.”</p> <p>하고,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하락)</p>	
<p>영조 45권, 13년 (1737 정사 / 청 건륭(乾隆) 2년) 8월 9일 (을축) 1번째기사 민사(民事) 외에 공사(公事)는 승정원에 두게 하고 건양문을 폐쇄하다</p>	<p>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기를 계청하니 윤택하지 않았고, 여러 승지가 청대(請對)하였으나 윤택하지 않았으며, 민사(民事) 이외에 대소(大小)의 공사(公事)는 모두 정원(政院)에 머물러 두도록 명하였고, 이어서 건양문(建陽門)을 폐쇄(閉鎖)하라고 명하였다. 이조 판서 조상경(趙尙綱) 등이 청대하니, 임금 윤택하지 않고 이르기를,</p> <p>“지난 사첩(史牒)에 없었던 거조를 이제 몇 차례나 하였는가? 기유년(8729) 폐합(閉閣) 때에 여러 신하들이 이와 같이 하였고, 19일 하교 때에도 여러 신하들이 이러하였으며, 야반 통유(夜半洞諭) 때에도 여러 신하들이 이렇게 하였으니, 신하들에게 속임을 당한 것이 세 번이었고 신하들에게 모욕을 당한 것이 세 번이었다. 아! 내가 강한 도당(徒黨)에게 농락을 당한 것이 깊으니, 비록 신하를 대면하고자 하나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낀다. 신하가 비록 얼굴이 두텁다 하지만 어찌 감히 임금을 대하겠는가? 참으로 가소롭다.”</p> <p>하였다.</p>	<p>乙丑/藥房啓請入診，不許；諸承旨請對，不許。命民事外，大小公事竝留院。仍命閉建陽門。吏曹判書趙尙綱等請對，上不許曰：“往牒所無之舉，今幾度矣？己酉閉閣，諸臣若此；十九下教，諸臣若此；半夜洞諭，諸臣若此，見欺於臣者三，見侮於臣者三。噫！予於強黨，受弄深矣。雖欲對臣，自覺赧然。臣雖顏厚，何敢對君？良可笑也。”</p>
<p>영조 45권, 13년 (1737 정사 / 청 건륭(乾隆) 2년) 8월 9일 (을축) 4번째기사 약방에서 입진을 청하나 윤택하지 않다</p>	<p>약방에서 또 입진(入診)하기를 청하니, 답하기를,</p> <p>“아! 몇 번이나 나를 속였고, 몇 차례나 나를 곤란하게 하였으며, 몇 차례나 나를 농락하였는가? 약은 무슨 약이며 진맥은 무슨 진맥인가? 입진하지 말며, 문안도 하지 말라. 여러 신하들이 나를 보고자 하거든 능행(陵幸) 때를 기다림이 옳다.”</p> <p>하였다.</p>	<p>藥房又請入診，答曰：“噫！幾番欺我，幾番困我，幾番弄我？藥何爲也，脈何爲也？勿入診，亦勿問安。諸臣欲見予，則待陵幸時可也。”</p>
<p>영조 45권, 13년 (1737 정사 / 청 건륭(乾隆) 2년) 8월 9일</p>	<p>빈청(賓廳)에서 감선(減膳)의 명을 환수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이미 약원(藥院)에 유시하였는데, 다시 무엇을 달리 유시하겠는가?”</p> <p>하였다.</p>	<p>賓廳啓請還收減膳，上曰：“已諭藥院，更何他諭。”</p>

<p>(을축) 5번째기사 빈청에서 감선의 명을 환수하기를 청하나 윤희하지 않다</p>		
<p>영조 45권, 13년 (1737 정사 / 청 건륭 (乾隆) 2년) 8월 10일 (병인) 3번째기사 이광좌가 지나친 거조 를 거두고 어선을 드 시라고 상소하나 윤희 하지 않다</p>	<p>대죄신(待罪臣) 이광좌(李光佐)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삼가 듣건대, 성상께서 어선(御膳)을 드시지 않은 지 이미 여러 날이라고 하는데, 옥체(玉體)의 손상이 어떠하겠습니까? 신하된 자는 마땅히 만 번 죽어도 죄가 남지만, 전하께서 스스로 경솔히 하시기를 이에 이르시니, 장차 종묘(宗廟)와 태모(太母)를 어찌하시렵니까? 옛날 만석군(萬石君)8733) 이 밥상을 대하고도 밥을 먹지 않은 것은 집안 사람의 일에 불과했는데, 역시 잠깐 동안 먹지 않음으로써 그 마음을 경계한 것에 불과했었습니다. 당당한 만승(萬乘)의 임금으로서 온 천하의 모든 생물이 모두 교화(教化)를 입지 않음이 없으니, 형법(刑法)을 시행하는 바 그 교화를 따르지 않는 자가 있으면 왕법(王法)이 있습니다. 어찌 무상(無狀)한 신하로 인해 이와 같은 천고에 없는 지나친 거조를 하십니까? 바라건대, 다시 어선(御膳)을 드시겠다는 명을 내리시면 종사(宗社)와 백성들에게 다행이겠습니까.” 하니, 비답하기를, “이번 일은 고집한 바가 있으니, 결코 마음을 돌리기가 어렵다.” 하였다.</p>	<p>○待罪臣李光佐上疏, 略曰: 伏聞, 聖上不御膳已多日, 玉體之損傷, 當如何? 爲臣子固萬死有餘罪, 而殿下自輕至此, 將奈宗廟、太母何哉? 昔萬石君對案不食, 不過家人事, 而亦不過少頃不食, 以警其心而已。堂堂萬乘之主, 普天含生, 無非教化所被、刑法所行, 其有不率教者, 王法存焉。安有因臣子無狀, 乃爲此千古所無之過舉哉? 乞降復膳之命, 以幸宗社萬民。批曰: “今者此舉, 所執在焉, 決難回也。”</p>
<p>영조 45권, 13년 (1737 정사 / 청 건륭 (乾隆) 2년) 8월 10일 (병인) 4번째기사 친국하여 윤급·한익모 를 찬배하다. 김재로 등이 어선 들기를 청</p>	<p>임금이 진선문(進善門)에 나아가 친국(親鞫)하여 윤급과 한익모를 해남현(海南縣)으로 찬배(竄配)해 위리 안치[梟棘]하였다. 좌의정 김재로(金在魯) 등이 입시하니, 임금이 김흥경 등을 돌아보면서 소리를 높여 말하기를, “경들은 얼굴이 두텁다. 오늘 그래도 나를 볼 수 있겠는가?” 하니, 모두 말하기를, “신들이 무상하여 군부로 하여금 이런 일이 있도록 했으니, 다시 무슨 말을 아뢰겠습니까?”</p>	<p>上御進善門親鞫, 竄尹汲、韓翼謫於海南縣梟棘。左議政金在魯等入侍, 上顧興慶等厲聲曰: “卿等顏厚矣。今日乃能見予乎?” 皆曰: “臣等無狀, 致君父此舉, 更復何達?” 上曰: “諸臣困我, 將至餓死。今之諸臣, 逆賊乎, 忠臣乎?” 辭氣轉激。在魯等泣曰:</p>

<p>하다</p>	<p>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여러 신하들이 나를 곤란하게 해 장차 굶어 죽게 되었으니, 오늘의 여러 신하들은 역적인가 충신인가?” 하여 언성이 점차 격해졌다. 김재로 등이 울먹이며 말하기를, “이는 실로 신들의 죄인데 전하께서 어찌 이런 거조(舉措)를 하십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들은 왜 우는가? 만약 당습(黨習)에 가장 격심한 한두 사람의 목을 가져다 바치면 내 기분이 조금은 진정될 것이다. 조정에 가득한 신하들이 모두 임금을 배반하고 당에 힘쓰는 무리들이니 모조리 참(斬)한 후에야 이런 습성이 없게 될 것인데, 임금이 홀로 나라를 다스리겠는가?” 하니, 송인명이 말하기를, “괘히 다시 어선을 드시겠다고 허락하신다면 여러 신하들이 모조리 주륙(誅戮)을 당하더라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하자, 임금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나의 이런 거조가 옛 기록에 없는 것임을 어찌 내가 모르겠는가? 실로 군민(軍民)에게 임하고 선왕(先王)을 뵈면 면목이 없다.” 하였다. 어유귀(魚有龜)가 말하기를, “송나라 임금(8734) 이 대신(大臣)을 종처럼 꾸짖자 주자(朱子)가 분개했었는데, 오늘날의 거조는 어찌 전하께 바라던 바였겠습니까?” 하고, 삼사(三司)의 여러 신하들이 또 서로 연달아 진달하니, 임금이 눈을 감은 채 묵묵히 있으면서 오랫동안 아무런 발락(發落)이 없었다. 송인명이 말하기를,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어선(御膳)을 다시 드시는 것보다 급한 것이 없는데, 어찌 여러 사람들의 뜻을 윤택하지 않으십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此實臣等之罪，而殿下何爲此舉措也?” 上曰：“卿等何爲泣耶? 若以黨習最甚者一二人頭來獻，予氣可少定矣。滿廷之臣，皆是背君務黨之輩，盡斬之，然後可無此習矣。君父將獨自治國乎?” 寅明曰：“快許復膳，則諸臣雖盡戮，無所恨矣。” 上泣下漣然曰：“予之此舉，是往牒所無，予豈不知? 實無臨軍民，拜先王之顏矣。” 魚有龜曰：“宋君奴詬大臣，而朱子慨然。今日之舉，豈所望於殿下哉? 三司諸臣又相繼迭陳，上合眼拱默，久無所發落。寅明曰：“悠悠萬事，莫急於復膳，何不快允群情乎?” 上曰：“君父却食之時，尹汲輩晏然不動，予欲見其蒙頭而來。非特以讎代理三字也，借手褻胤命之觀厚，猶爲親問，況視君父楚越之輩乎?” 命拿入兵曹判書閔應洙，問闕中喧譁何不禁耶? 應洙俯伏請罪。 上曰：“此異干犯軍律，況是大司馬重任，特罷其職。” 命以金聖應代之，以具聖任代聖應爲訓將，以魚有龜代聖任爲御將。 在魯奏：“聖任之驟擢，乖用人之道。” 上曰：“武夫必不染於偏論，如欲爲國，用人何論驟陞</p>
-----------	--	--

“군부가 밥을 먹지 않고 있을 때 윤급(尹汲)의 무리는 편안히 있으면서 꿈쩍도 하지 않으니, 내가 그의 몽두(蒙頭)8735) 를 쓰고 오는 것을 보고자 한다. 비단 ‘대리를 원수로 여긴다.[讎代理]’라는 세 글자뿐만이 아니라 배운명(裴胤命)의 손을 빌린 이관후(李觀厚)도 오히려 친문(親問)하였는데 더군다나 군부를 초월(楚越)처럼 보는 무리이겠는가?”

하였다. 병조 판서 민응수(閔應洙)를 잡아들이라 명하여, 대궐 안이 시끄러운데 왜 금하지 않는가를 물으니, 민응수가 엎드려 죄를 청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군율(軍律)을 범한 것과는 다르다. 더구나 대사마(大司馬)8736) 는 중임(重任)이니, 그 직을 특과(特罷)하도록 하라.”

하고, 명하기를,

“김성응(金聖應)으로 대신하고, 구성임(具聖任)으로 김성응 대신 훈장(訓將)으로 삼으며, 어유귀를 구성임 대신 어장(御將)으로 삼으라.”

하니, 김재로가 아뢰기를,

“구성임을 갑자기 발탁하는 것은 사람을 쓰는 도리에 어긋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무부(武夫)는 반드시 편벽된 논의에 물들지 않을 것이니, 나라를 위하고자 한다면 사람을 등용함에 있어 갑자기 발탁함을 어찌 논할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봉조하(奉朝賀) 이광좌(李光佐)의 상소가 마침 이르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봉조하를 미워하는 일종의 무리들은 그 성(姓)을 떼어버리고 이름만 부르기도 하고, 혹은 단지 ‘광(光)’ 자만 부르기도 한다. 만약 그들과 같은 당(黨)이면 비록 역적이라 하더라도 성명(姓名)을 다 부르니 어찌 무상(無狀)하지 않은가? 이관후가 이른바 ‘호노 한복(豪奴悍僕)’이라 말한 것도 괴이할 것이 없다.”

乎?” 奉朝賀李光佐疏適至，上曰：“如李奉朝賀，一種憎嫉之徒去其姓而呼之，或只呼以光字。若渠同黨則雖是逆賊，稱姓名，豈非無狀乎？觀厚所謂豪奴悍僕云者，無足怪矣。” 召問事郎，命以朝者下教發問目，問尹汲、韓翼誓。在魯、寅明等以設鞠之萬萬過中，力陳不已。上曰：“今日何如是愛護耶？” 汲、翼誓俱以身病適重，未及待命納供，上曰：“汝輩爲偏論之時，氣甚踴躍，今日殿庭，一何低弱，而只稱病耶？尹汲則所犯非止一二，讎代理三字，亦極無識，而韓翼誓之疏，排布極密，必有指喉者矣。” 教曰：“噫嘻痛矣。渠起風浪，君父減膳，而佯若不知，恬然臥家，嗚呼！秉彝掃盡。此輩論以漢法，棄市何惜？又況甘心務黨，壞亂朝廷，其在嚴懲之道，當爲鞠問勘處，而今日所問，在於不胥命。其雖參酌，豈可輕勘？罪人尹汲、韓翼誓梟棘海南，即日押送。” 教曰：汝輩雖極無狀，姑使戴頭而往矣。”

하였다. 문사랑(問事郎)을 불러 명하기를,
 “아침에 하교한 것으로 문목(問目)을 내어 윤급과 한익모를 신문(訊問)하도록 하라.”

하니, 김재로·송인명 등이 국청(鞫廳)을 설치하는 것이 만 번 과중(過中)함을 힘껏 진달해 마지않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오늘은 어찌 이처럼 애호(愛護)하는가?”

하였다. 윤급과 한익모가 모두 마침 신병(身病)이 중하여 미처 대명(待命)하지 못했다고 납공(納供)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편벽된 논의를 할 때에는 활기차게 몹시 날뛰더니, 오늘 전정(殿庭)에서는 한결같이 기가 죽고 약해져 병만 일컫는가? 윤급은 범한 바가 한 둘이 아니며, ‘대리를 원수로 여긴다.[讎代理]’라는 세 글자 역시 아주 무식하다. 한익모의 소는 배포(排布)가 아주 치밀하니, 반드시 사주한 자가 있을 것이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아! 통분하다. 그들이 풍랑(風浪)을 일으켜 군부(君父)가 감선(減膳)을 하는 데도 모른 채하고는 편안히 집안에 누워 있었으니, 아! 인륜이 모조리 없어졌다. 이 무리들을 한(漢)나라의 법으로 논하자면 기시(棄市)8737) 하는 것도 무엇이 애석하겠는가? 또 더군다나 달가운 마음으로 당파에 힘써 조정을 무너뜨려 어지럽혔으니, 엄히 징계하는 도리에 있어서 마땅히 친히 국문해 감처(勘處)해야 한다. 오늘 물은 바는 대명(待命)하지 않은 데 있으니, 그것을 비록 참작하더라도 어찌 가볍게 감단(勘斷)하겠는가? 죄인 윤급과 한익모는 해남에 우리 안치[梟棘]하되 즉일로 압송(押送)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너희들이 비록 지극히 무상하나 우선은 목을 붙여두어 가도록 한다.”

하였다.

<p>영조 45권, 13년 (1737 정사 / 청 건륭(乾隆) 2년) 8월 10일 (병인) 5번째기사</p> <p>조현명 등의 관직을 삭탈하고 문외 출송하였다. 신하들이 어선 들기를 청하다</p>	<p>조현명(趙顯命) 등의 관직을 삭탈하고 문외 출송(門外黜送)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p> <p>“당시의 지우(知遇)가 다른 신하에 비할 바가 아니었는데 쾌히 붓을 놀려 이런 풍랑을 일으켰으니, 칙려(飭勵)함에 마땅히 이 사람을 먼저 해야 한다. 전(前) 풍원군(豐原君) 조현명은 특별히 삭출(削黜)을 시행하도록 하라. 옛날 일을 끌어들이어서 시끄러움을 일으키고 신축년(8738) 일을 호대(互對)해 풍랑을 일으켜 멋대로 욕을 해 스스로 무륜(無倫)으로 돌아갔으니, 어찌 한갓 금오(金吾)에 머리를 조아리게 할 뿐이겠는가? 조영국(趙榮國)·정이검(鄭履儉)은 모두 삭출하는 율을 시행하도록 하라. 윤급은 비록 무상하기는 하나 역시 악역(惡逆)은 아닌데 경(卿)의 반열과 3품에 있는 자들이 교장(交章)하고 잡란(雜亂)하여 군부(君父)로 하여금 지나친 거조를 하도록 했으니, 어찌 엄히 징계하지 않겠는가? 대명(待命)한 사람은 모두 삭출하라. 지난번 신축년에는 아직도 어렸었고 고대 입사(入仕)하여 바야흐로 참하(參下)에 있는 자도 역시 따라서 참여하여 오히려 혹 뒤질세라 염려했으니, 삭직에 그쳐서는 안 된다. 갑진년(8739) 이후 등과(登科)한 문신(文臣)으로 소(疏)에 참여한 자는 모두 나처(拿處)하라. 청의(淸議)가 비록 중하다지만 어찌 이런 기회를 타서 사람을 함정에 몰아넣겠는가? 조현명의 일로 교장(交章)한 세 승지(承旨) 및 유신(儒臣) 조명리(趙明履)·홍창한(洪昌漢)·서명신(徐命臣)을 모두 파직하라.”</p> <p>하고는, 임금이 마침내 일어나 옥교(玉橋)에 오르니, 여러 신하들이 옥교 앞에 둘러 서서 다시 어선(御膳)을 들겠다는 윤음(綸音)을 내리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p> <p>“서로 뒤따라 와도 도움이 되지 않으니, 물러가는 것이 좋다.”</p> <p>하니, 김재로 등이 간청해 마지않았다. 임금이 말하기를,</p> <p>“오늘의 여러 신하들이 당론(黨論)으로 조선(朝鮮)을 망치려고 하니, 내가 이미 결심하였다.”</p>	<p>削趙顯命等職，黜門外。上曰：“常時知遇，非比他臣，而快意下筆，致此風浪，其所飭勵，宜先此人。前豐原君趙顯命特施削黜。拖引昔年，釀成起鬪，互對辛丑，作成風浪，快意反辱，自歸無倫，豈可徒令泥首金吾？趙榮國、鄭履儉竝施削黜之典。尹汲雖無狀，亦非惡逆，則卿列三品，交章雜亂，致君父於過舉，豈不嚴懲？待命之人竝削黜。往者辛丑，尙在釋駟，釋褐屬耳，方在參下者，亦爲隨參，猶恐或後，不可削職而止。甲辰以後登科文臣參疏者，竝拿處。淸議雖重，豈可乘此而驅人？以趙顯命事，交章三承旨及儒臣趙明履、洪昌漢、徐命臣竝罷職。”</p> <p>上遂起立，乘玉橋，諸臣擁立橋前，請降復膳之音，上曰：“相隨無益，退去可也。”在魯等懇請不已，上曰：“今日諸臣，欲以黨論亡朝鮮，予心已決矣。”奉朝賀李光佐、李台佐自外入，進伏橋前涕泣曰：“殿下上承宗社，下奉慈殿，一身關係何如，而廢膳已多日，玉體必重損，不可一刻少遲。願亟許復膳，以副臣庶之望焉。諸臣雖極無狀，此時豈不感動乎？”上曰：今</p>
---	---	---

하였다. 봉조하(奉朝賀) 이광좌(李光佐)·이태좌(李台佐)가 밖으로부터 들어와 옥교 앞에 나아가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전하께서 위로는 종사(宗社)를 받들고 아래로는 자전(慈殿)을 받들었으니, 한 몸이 관계된 바가 어떠한데 어선을 드시지 않은 지 이미 여러 날이 되었습니다. 옥체(玉體)가 받드시 많이 손상되었을 것이니, 일각(一刻)이라도 지체해서는 안됩니다. 원하건대, 빨리 다시 어선을 드시기를 허락하시어 신하들의 바람에 부응하소서. 여러 신하들이 비록 지극히 무상하다지만 이런 때에 어찌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임금의 말하기를,
 “이제 경들을 보니, 내가 매우 부끄럽다.”
 하니, 이광좌 등이 울먹이며 청하기를 마지않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안에 들어가 다시 생각해 보겠다.”
 하므로, 삼사(三司)의 여러 신하들이 나아가 말하기를,
 “전계(前啓)는 비록 우선 결(闕)한다 하더라도 신들은 합사(合辭)하여 지나친 거조를 거두시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제 또 여러 신하에게 곤란을 받았으니 장차 이곳에서 밤을 지새워야 할 형세이다.”
 하니, 이태좌(李台佐)가 말하기를,
 “신이 비록 늙고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오히려 천성(天性)은 없어지지 않았으니, 마음이 초조하고 급박하여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오직 원하건대, 빨리 유음(兪音)을 내리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기구(耆舊)의 신하가 이처럼 간절하게 말하니, 내 마음이 도리어 불안하다. 모름지기 물러가 쉬도록 하라.”

見卿等，予甚愧矣。” 光佐等泣請不已，上曰：“入內當更思矣。” 三司諸臣進曰：“前啓雖姑闕，而臣等合辭，請反汗過舉矣。” 上曰：“今又受困，諸臣勢將經夜於此矣。” 台佐曰：“臣雖老病垂死，而猶有秉彝未泯，焦迫罔措。唯願亟下兪音。” 上曰：“耆舊之臣如是懃懇，予心還爲不安。須退而休息焉。” 在魯等又力請，上曰：“若斬彼此黨人頭來，予可進食矣。斯文是非，胡大事也，而偏論由此起矣？” 戶曹判書金取魯曰：“斯文與偏論，有何關涉乎？” 上震怒曰：“偏論果不由於宋時烈耶？” 命罷取魯職，以尹陽來代之。 上曰：“予心氣不寧矣。” 起入幕次，少定復出，乘輿還宮。 藥房以上候不平，啓請直宿，上命進粟米飲，不許直宿。

	<p>하였다. 김재로 등이 또 힘껏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이쪽저쪽의 당인(黨人)들의 목을 베어 오면 내가 밥을 먹겠다. 사문(斯文)의 시비(是非)가 무슨 대단한 일이기에 편벽된 논의가 이로 말미암아서 일어난단 말인가?” 하니, 호조 판서 김취로(金取魯)가 말하기를, “사문과 편벽된 논의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하매, 임금이 진노하여 말하기를, “편벽된 논의가 참으로 송시열(宋時烈)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고는, 김취로를 파직하고 윤양래(尹陽來)로 대신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내 심기가 편안치 않다.” 하고는, 일어나 막차(幕次)로 들어가 잠시 안정했다가 다시 나와 승여(乘輿)로 환궁하였다. 약방(藥房)에서 상후(上候)가 편안치 못한 것으로 직숙(直宿)하기를 계청하니, 임금이 속미음(粟米飲)을 올리라 하고, 직숙은 허락하지 않았다.</p>	
<p>영조 45권, 13년 (1737 정사 / 청 건륭 (乾隆) 2년) 8월 11일 (정묘) 1번째기사 백관이 진선하기를 세 번 아뢰나 윤허하지 않다</p>	<p>백관이 진선(進膳)하기를 정청(庭請)하니, 답하기를, “아! 조정 신하가 나를 이 지경이 되게 했으니, 다시 무어라 유지하겠는가?” 하였다. 다시 아뢰니, 답하기를, “이는 도리어 나를 피곤하게 하는 것이다.” 하였는데, 세번째 아뢰니, 답하기를, “유시할 것이 없다.” 하였다.</p>	<p>丁卯/百官庭請進膳，答曰：“吁嗟！廷臣使我至此，更何復諭。”再啓，答曰：“是反困我矣。”三啓，答曰：“無諭。”</p>
<p>영조 45권, 13년 (1737 정사 / 청 건륭 (乾隆) 2년) 8월 11일 (정묘) 2번째기사 약방에서 청대하니 지 금은 기운이 나서 진</p>	<p>약방에서 청대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은 기운이 다 나아서 진찰할 것이 없으니, 물러가게 하라.” 하였다.</p>	<p>藥房請對，上曰：“卽今氣盡愈無可診，退去可也。”</p>

<p>찰할 것이 없다고 물리치다</p>		
<p>영조 45권, 13년 (1737 정사 / 청 건륭(乾隆) 2년) 8월 11일 (정묘) 4번째기사 이병상·윤순·김상로·오원은 파직, 김취로는 공주로 찬축, 이종성은 삭출하다</p>	<p>이병상(李秉常)·윤순(尹淳) 등을 파직하고, 김취로(金取魯)를 공주(公州)로 찬축하였다. 하교하기를, “내가 이러한 때에 무엇을 아끼고 돌보겠는가? 성품이 본래 넓지 못하여 단지 당습(黨習)만을 생각하고 그 임금을 돌보지 않은 자는 이병상이요, 겉으로는 당이 없는 듯이 하면서 안팎이 같지 않고 어두운 곳에서 소란을 피운 자는 윤순이니, 아울러 파직하라. 그의 임금이 밥을 먹지 않고 있는데 중신(重臣)의 지위에 있으면서 지척(咫尺)의 승여(乘輿) 앞에서 눈물을 흘렸고 또 속였으니, 밤중에 생각해 보아도 파직은 너무 가볍다. 전 판서 김취로를 중도부처(中途付處)하도록 하라. 아! 기롱(譏弄)을 받았다는 등의 말로 그 임금을 헐박하였으니, 비록 지나간 일이라 하더라도 용서해서는 안 되니, 김상로(金尙魯)는 파직하라. 자신이 지우(知遇)를 받는 신하인데도 보답하기를 생각하지 않고 달가운 마음으로 당을 따르며, 또 그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았으니, 여러 신하들과 함께 혼동해 죄주어서는 안 된다. 전 참판 이종성(李宗城)은 삭출(削黜)하도록 하라. 처지가 어찌 다른 사람과 비교하겠는가만, 마음속에 죽대가 없어 오직 당파만을 안 자는 오원(吳瑗)이니, 파직시켜 스스로 면려하게 하라.” 하였다.</p>	<p>罷李秉常、尹淳等職，竄金取魯於公州。下教曰：“予於此時，有何顧惜耶？性本不廣，只思黨習，不顧其君者，李秉常也；外似無黨，表裏不同，暗地惹鬧者，尹淳也，并罷職。其君却膳，位在重臣，咫尺輿前，且涕且欺，中夜思之，罷職猶輕，前判書金取魯付處中道。噫！受譏等說，脅持其君，事雖往矣，不可假借，金尙魯罷職。身爲知遇之臣，不思報答，甘心逐黨，亦不思其父，不可與諸臣混罪。前參判李宗城削黜。地處豈比他人，而中無所執，惟黨是知者，吳瑗也，罷其職，使自勉。”</p>
<p>영조 45권, 13년 (1737 정사 / 청 건륭(乾隆) 2년) 8월 11일 (정묘) 5번째기사 봉조하 이태좌 등 백관이 어선 들기를 세</p>	<p>봉조하(奉朝賀) 이태좌(李台佐) 등이 백관을 거느리고 다시 어선(御膳)을 들기를 청하여 세 번 아뢰었으나, 허락하지 않았다.</p>	<p>奉朝賀李台佐等率百官，請復膳，三啓不許。</p>

<p>번 청하나 허락하지 않다</p>		
<p>영조 45권, 13년 (1737 정사 / 청 건륭(乾隆) 2년) 8월 11일 (정묘) 6번째기사 이광좌가 상소하여 어선 들기를 다시 청하다</p>	<p>대죄신(待罪臣) 이광좌(李光佐)가 상소하여 다시 어선을 들기를 청하니, 비답하기를, “어제 이미 유지하지 않았는데, 더군다나 매복(枚卜)8741) 이겠는가? 아! 경은 지금의 나랏일을 생각하여 나의 고심에 부응하라.” 하였다.</p>	<p>待罪臣李光佐疏請復膳，批曰：“昨既不諭，其況枚卜？嘻！惟卿顧今國事，副我苦心。”</p>
<p>영조 45권, 13년 (1737 정사 / 청 건륭(乾隆) 2년) 8월 11일 (정묘) 8번째기사 약방·종친·의빈이 청대하고 정원·삼사가 어선 들기를 청하나 윤택하지 않다</p>	<p>약방(藥房)에서 청대하기를 네 번 아뢰니, 답하기를, “인삼과 창출(蒼朮)을 먹어도 속이 편치 못하여 수라를 들 수가 없다.” 하고, 여덟 번 아뢰었으나 비답이 없었다. 정원에서 다시 어선을 들기를 계청하니, 답하기를, “이미 유지하였다.” 하고, 다시 아뢰었으나 비답이 없었다. 종친(宗親)·의빈(儀賓)이 다시 청대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우리 종신(宗臣)들은 모름지기 나를 곤란하게 하지 말라.” 하였다. 삼사(三司)에서 복합(伏閣)하여 다시 어선을 들기를 청하니, 답하기를, “이미 유지하였는데, 어찌 번거롭게 하는가?” 하였다.</p>	<p>藥房請對四啓，答曰：“參朮進御，而中氣不平，不得進御矣。”至八啓無批，政院啓請復膳，答曰：“既諭。”再啓無批。宗親、儀賓再請對，上曰：“惟我宗臣，須勿困我。”三司伏閣請復膳，答曰：“既諭，其何瀆焉？”</p>
<p>영조 45권, 13년 (1737 정사 / 청 건륭(乾隆) 2년) 8월 11일 (정묘) 9번째기사 영상 이광좌가 합문</p>	<p>영의정 이광좌가 곧바로 합문(閣門) 밖에 나아가 청대하니, 정원에서 아뢰기를, “영의정 이광좌가 상규(常規)를 돌보지 않고 문을 밀치고 곧바로 들어와 진현(進見)을 청하다가 물러나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하니, 답하기를,</p>	<p>領議政李光佐直詣閣外請對，政院啓曰：“領議政李光佐不顧常規，排闥直入，請進見而退伏死罪云矣。”答曰：“求入不已何也？”光佐以承傳色啓曰：“不進玉食，已四日矣。此實臣子半刻</p>

<p>밖에서 바로 들어오겠다 하니, 자전에게로 가겠다 하다</p>	<p>“들어오기를 구하여 마지않음은 무엇 때문인가?” 하니, 이광좌가 승전색(承傳色)을 통해 아뢰기를, “옥식(玉食)을 들지 않으신 지 이미 4일이나 되었으니, 이는 실로 신하들로서는 반각(半刻)도 참을 수 없는 때입니다. 조금 전에 문을 밀치고 들어가기를 청했으나 또 발락(發落)을 내리지 않아 일이 이미 급하므로 신이 승지·사관과 장차 죽음을 무릅쓰고 곧바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니, 임금의 말하기를, “이제 이에 이르렀으니, 작은 예절에 구애될 것이 있겠는가? 문을 밀치고 곧바로 들어오는 것이 비록 구례(舊例)가 있으나 내가 허락하지 않은 데 불과하니, 경의 마음대로 하라. 다만 경이 봉조하로서 들어온다면 이미 매복(枚卜)하였고, 영상(領相)으로서 들어온다면 사명(謝命)을 보지 못하였다. 비록 잠깐 동안이라 하더라도 군신이 서로 보는데 어찌 예모(禮貌)가 없을 수 있겠는가? 사명하지 않고 억지로 곧장 들어오고자 한다면, 나는 마땅히 자전(慈殿)에게로 가겠다.” 하였다.</p>	<p>不能忍之時，俄請排闥，又無發落。事已急矣，臣與承史，將冒死直入。” 上曰：“今至於此，何拘少節？排闥直入，雖有舊例，予不過不許，任卿爲之。但卿欲以奉朝賀入則才已枚卜矣，以領相入，則不見謝命矣。雖造次之間，君臣相見，何可無禮貌耶？不謝命而強欲直入，則予當入侍慈殿矣。</p>
<p>영조 45권, 13년 (1737 정사 / 청 건륭(乾隆) 2년) 8월 11일 (정묘) 10번째기사 이광좌를 소견하고 사언 어제를 보이다. 이광좌 등이 밤 3경에 관을 벗고 뜰에 섰리</p>	<p>영의정 이광좌가 사은(謝恩)한 후 청대하니, 합문을 열라고 명하고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 이광좌를 소견(召見)하였는데, 영부사(領府事) 이의현(李宜顯)·김흥경(金興慶) 등이 함께 입시(入侍)하였다. 이광좌가 말하기를, “어선을 물리친 지 이미 4일에 이르러 부득이 문을 밀치고 들어왔는데 특별히 입시를 허락하시니, 다행함을 어찌 다 아뢰겠습니까?” 하니, 임금의 말하기를, “나는 더 유시(諭示)할 것이 없는데, 이번에 청대를 허락함은 단지 이 글을 보여 주고자 했을 뿐이다. 경들은 보고 나서는 물러가는 것이 옳다.” 하고는, 인하여 사언 어제(四言御製)를 꺼내 보여 주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p>	<p>領議政李光佐謝恩後請對，命開閤門，御熙政堂，召見光佐，與領府事李宜顯、金興慶等入侍。光佐曰：“却膳已至四日，臣不得已爲排闥之舉，而特許入侍，喜幸何達？” 上曰：“予無可諭者，今此許對，只欲示此文而已。卿等見而退去可也。” 仍出示四言御製，其文曰： 往牒帝王，他無可欲，訪求無形，惟望久位，嗟予反此，由於苦心。昔者彼</p>

“사첩(史牒)의 제왕(帝王)은 다른 욕심이 없었고 무형(無形)을 방구(訪求)하면서 오직 오래 재위(在位)하기만을 구했었다. 아! 나는 이에 반(反)하여 고심하고 있다. 옛날 사람은 혼매(昏昧)하여 주색(酒色)으로 손상당했는데, 지금 나는 신하에게 곤란을 받아 손상당하고 있다. 지금 이 마음은 금석(金石)과 같이 굳었으니, 어제 대면(對面)한 것이 오히려 부끄럽다. 지금 함문(閤門)을 닫았는데 어찌 차마 다시 열겠는가? 아! 원보(元輔)들이 문을 밀치고 들어오려 하는데 신하들이 이에 이르러 어찌 상례(常例)에 구애되겠는가? 그 정성에 감동하여 함문을 열기를 명하였으나, 지나온 일을 생각하니 더욱더 부끄럽다. 세제(世弟)의 사위(辭位)를 지난번 내가 두 번이나 행했는데, 함문을 닫고 약을 물리친 일이 어찌 일찍이 있었던가? 세 번이나 유시해도 듣지 않았으니, 그런 신하는 알 만하다. 임금의 가린다는 전교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후일의 전교를 기다린다고 하였으니, 신하로서 어찌 차마 들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예사롭게 들어서 오직 편당을 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였다. 그 신하에게 모욕을 받고 그 신하에게 조롱을 당했으니, 오늘날 임금 노릇하기가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 죽어서 <선왕을> 뵈어도 할말이 없으며, 백성을 무슨 낮으로 대하겠는가? 음식을 물리쳐 당인(黨人)의 마음을 쾌하게 하는 것만 못하다. 죽어서는 신하의 죄를 아될 것이며, 글에 써서 여러 신하들에게 보이고 나는 오직 묵묵히 있을 것이다. 떨리는 마음으로 글을 쓰니, 겨우 글자 모양만 이루어졌다. 이 답답한 마음을 여기에 펼 뿐 어찌 거듭 다른 유시를 하겠는가? 사관(史官)으로 하여금 사첩(史牒) 첫머리에 크게 쓰도록 하라.”

하였다. 이광좌 등이 읽기를 마치고, 이광좌가 말하기를,
“오늘날의 신하들이 이 어제(御製)를 보면 그 누가 옛날 마음을 고치지 않겠습니까? 오직 원하건대, 수라를 빨리 드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제 자전(慈殿)께서 장탕(醬湯)을 권했기 때문에 부득이 조금 마셨으나, 오

昏, 所傷酒色, 今予所傷, 受困其臣。于今此心, 矢若金石, 昨日對顏, 尙爲赧然, 于今閉閣, 何忍復開? 吁嗟元輔, 其欲排闥, 人臣到此, 豈拘常例? 感動其忱, 閣雖命開, 追惟所經, 尤增自惡。 銅闥辭位, 往予再行, 閉閣却藥, 亦豈曾有? 三諭不聽, 其臣可知。 擇君之教, 猶不悚然, 待他日教, 臣豈忍聞? 聽若尋常, 惟恐不黨。 見侮其臣, 受弄其臣, 今日爲君, 豈不難乎? 歸拜無辭, 臨民何顏? 不若却食, 以快黨心。 歸奏臣罪, 書示諸臣, 我則惟默。 心眩手書, 字僅成樣, 敷此抑塞, 更何他諭? 其令史官, 大書史首。 光佐等奉讀訖, 光佐曰: “今日臣下, 見此御製, 孰敢不革舊心乎? 惟願亟進御膳焉。” 上曰: “昨日慈殿勸以醬湯, 故不得已少飲, 今日則水亦不入口矣。” 宜顯曰: “聞此下教, 不勝罔措矣。” 上曰: “今日之舉, 予豈樂爲? 昨年建儲後, 自謂政值泰運, 惟望肅清朝著, 貽謨後世, 今無可望矣。 予心已定, 此非一朝一夕之故也。” 興慶曰: “伏聞醫官所傳, 王世子勸進御膳之語, 不覺感泣。” 上嗚咽曰: “三歲

	<p>늘은 물조차 마시지 못하겠다.” 하자, 이의현이 말하기를, “이 하교를 들으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오늘의 거조를 내가 어찌 좋아서 하겠는가? 작년 건저(建儲)한 후에 스스로 태평한 운수를 만났다고 여겨 오직 조정이 숙청(肅淸)되어 후세에 훈모(訓謀)를 끼치기를 바랐었는데, 이제 가망이 없게 되었다. 내 마음은 이미 정해졌는데, 이는 일조 일석(一朝一夕)의 일이 아니다.” 하니, 김흥경(金興慶)이 말하기를, “삼가 의관(醫官)이 전한 바 왕세자(王世子)가 수라를 드시기를 권했다는 말을 듣고서 감읍(感泣)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하자, 임금이 오열(嗚咽)하면서 말하기를, “세 살 된 원량(元良)8744) 이 미음 들기를 억지로 권하였으니, 내가 어찌 차마 들지 않을 수 있겠는가만, 마음이 이미 굳게 정해졌기 때문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였다. 이광좌가 말하기를, “전하께서 매양 눈물을 흘리시니 참으로 민망합니다. 《주역(周易)》 건괘(乾卦)를 전하께서 어찌 강독(講讀)하지 않으셨겠습니까마는, 인군의 마음이 강건(剛健)한 연후에야 하늘을 본받아 도를 행할 수 있으니, 언어가 비통(悲痛)함은 임금의 도리가 아닌 듯 싶습니다. 이런 하교를 들으면 참으로 사람의 마음이 있는 자라면 그 누군들 징창(懲創)되지 않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근년에 경과 민봉조하(閔奉朝賀)가 치사(致仕)했을 때 내 마음으로는 지금 비록 허락하나 후에 만약 어려운 시기(時期)가 있으면 마땅히 다시 상신(相臣)에 제배(除拜)하려고 생각했었다. 오늘 조정을 두루 돌아보건대, 말길 만한</p>	<p>元良，強勸粥飲，予豈忍不御，而心已堅定，故不得從之。”光佐曰：“殿下之每每涕泣，誠爲悶迫。《易》之乾卦，殿下豈不講讀乎？人君之心剛健，然後可以體天行道，言語悲楚，恐非人君之道矣。聞此下教，苟有人心，孰不懲創乎？”上曰：“頃年卿與閔奉朝賀致仕也，予心以爲今雖許之，後若有艱虞之日，當復拜相矣。今日環顧朝廷，無可任者，心忽有覺曰閔奉朝賀今雖亡矣，卿則尚在，可倚仗者，非卿莫可，故首命枚卜。卿須體此意，與諸臣善爲國事。”光佐曰：“我國山川偏狹，黨禍數起，或逢否運，以至害國矣。夫黨人之心，譬如蓼蟲之習，辛猝難變，此人君但至誠擇人而任之，則自可調劑，若不率教，乃以刑法從事，何患國之不治，而反爲此過舉，豈不慨然乎？”仍力請復膳，夜至三鼓而終不許。光佐以御製納懷中曰：“臣等有罪，而尙不被誅，故聖心未解，惟當退俟誅戮矣。”遂趨下殿。宜顯以下皆隨下，免冠伏于庭。上傳教曰：“卿等何爲作此舉耶？”光佐曰：“臣等終未回聽，生亦何爲？敢相率請死。”上曰：</p>
--	---	---

	<p>사람이 없는데, 마음에 갑자기 깨닫기를 민봉조하는 지금 비록 죽었으나, 경은 아직 있으니 의지할 만한 자는 경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매복(枚卜)을 명한 것이다. 경은 모름지기 이런 뜻을 본받아 여러 신하들과 함께 국사를 잘 다스리도록 하라.”</p> <p>하였다. 이광좌가 말하기를,</p> <p>“우리 나라는 국토가 좁은데다 당화(黨禍)가 여러 차례 일어나 혹 비운(否運)을 만나 나라를 해치는 데에 이르렀습니다. 대저 당인(黨人)의 마음은 요충(蓼蟲)의 습성에 비유할 수 있어 갑자기 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는 임금이 지성(至誠)으로 사람을 가려 임명하면 스스로 조화되는 것이며, 만약 가르침에 따르지 않는 자는 형법(刑法)으로 다스리면 어찌 나라가 다스려지지 않을 것을 걱정하겠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이와 같이 지나친 일을 하시니, 어찌 개탄스럽지 않겠습니까?”</p> <p>하고는, 인하여 힘껏 거듭 수라를 들기를 청해 밤 3경(三更)이 되었으나, 끝내 운허하지 않았다. 이광좌가 어제(御製)를 품속에 넣으면서 말하기를,</p> <p>“신들에게 죄가 있는데도 아직껏 죽임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상의 마음이 풀리지 않은 것이니, 오직 마땅히 물러가서 주륙(誅戮)을 기다리겠습니다.”</p> <p>하고, 드디어 뜰로 내려가니, 이의현 이하가 모두 따라 내려가 관(冠)을 벗고 뜰에 엎드렸다. 임금이 전교하기를,</p> <p>“경들은 어찌 이런 일을 하는가?”</p> <p>하니, 이광좌가 말하기를,</p> <p>“신들이 성상의 마음을 마침내 돌리지 못한다면, 살아서 무엇하겠습니까? 감히 서로 이끌고서 죽기를 청합니다.”</p> <p>하자, 임금이 말하기를,</p> <p>“경들의 이런 거조를 보니, 감동함을 금하지 못하겠다. 경들은 올라오라. 내</p>	<p>“見卿此舉，不覺感動。卿等上，予當語卿。”光佐曰：“若不明賜兪音，則臣雖滅死於此，決不敢上矣。”上曰：“夜甚冷，卿等露伏已久，予心不安，當快許所請，亟宜上殿也。”諸臣遂以次上。上曰：“予心堅如金石，感卿等誠，不得已勉從矣。”光佐等同聲起伏曰：“此實宗社臣民之大幸，臣等親觀復膳然後，乃可退矣。”上遂命取御膳來，進訖，諭曰：“予累見欺於諸臣，故決定於心，今及勉回，欲與卿等更爲國事，誠苟且矣。從今諸臣能不復欺予耶?”光佐等曰：“爲臣子者，決不敢復爾矣。”上曰：“既復膳，他何諭乎?頃罷兩相，只爲國體，既知其心，復何相持?前左右相并絃用，明朝命招領相，使之卜相。”仍教曰：“噫!今茲之舉，所執固矣。半夜便殿，叩首中庭，難拂大臣國舅諸臣之意，舉示粥飲，上以慰列朝慈闈之心，下以副元良軍民之望。從此以往，若予初政，咨予大小臣僚，赫然精白，固我宗國。”光佐言：“金取魯有八十老母，遠離可矜念。”上特命有之。大司憲李春躋、大司諫申晚以合辭之無批，前席之</p>
--	---	---

	<p>가 경들에게 말하겠다.” 하였다. 이광좌가 말하기를, “만약 분명한 유음(兪音)을 내리지 않으시면 신들은 비록 이곳에서 죽더라도 결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밤 공기가 매우 차가운데 경들이 한데 엮드려 있는 지가 이미 오래이니, 내 마음이 편치 못하다. 청한 바를 쾌히 들어줄 터이니, 빨리 전상(殿上)으로 올라오라.” 하였고, 여러 신하들이 드디어 차례로 올라갔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 마음은 금석(金石)과 같이 굳은데 경들의 정성에 감동되어 부득이 억지로 따른다.” 하니, 이광좌 등이 같은 소리로 일어났다가 엮드려 말하기를, “이는 실로 종사(宗社)와 신민(臣民)의 큰 다행입니다. 신들이 직접 수라를 드시는 것을 본 연후에 물러가겠습니다.” 하자, 임금이 수라를 가져오라고 명하였다. 들기를 마치고 유시하기를, “내가 여러 차례 여러 신하들에게 속임을 당했기 때문에 마음을 결정했었는데, 이제 애써 돌려서 경들과 함께 나랏일을 하고자 하니, 참으로 구차하다. 이제부터 여러 신하들이 다시는 나를 속이지 않겠는가?” 하니, 이광좌 등이 말하기를, “신하된 자들이 결코 감히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다시 수라를 들었으니, 다른 것이야 무엇을 유시하겠는가? 지난번 두 정승을 파직시킨 것은 단지 국체(國體)를 위해서였는데, 이미 그 마음을 알았으니 어찌 다시 서로 버티겠는가? 전의 좌상(左相)·우상(右相)을 모두 서용(敍用)하고, 내일 아침 영상(領相)을 명초(命招)해 복상(卜相)8745) 하도록 하</p>	<p>闕啓，俱是前未有也，請遞職，并命勿辭。是筵，上語及輔導世子事曰：“宮中有茶食刻板之畫八卦者，予意常謂口嚼如何，未嘗進御矣。近者世子亦不食之，乳母問其故，答曰八卦不可食，其姿稟之英發如此。”</p>
--	---	---

	<p>라.”</p> <p>하였다. 인하여 전교하기를, “아! 이번의 일은 고집한 바가 있어서였는데, 밤중에 편전(便殿)의 뜰에서 머리를 조아렸으므로 대신과 국구(國舅) 등 여러 신하의 뜻을 거스르기가 어려워 죽을 먹어 위로는 열조(列朝)와 자전(慈殿)의 마음을 위로하고, 아래로는 원량(元良)과 군민(軍民)의 바람에 부응하였다. 지금 이후부터는 나에게 있어 처음 정사(政事)와 같으니, 아! 나의 대소 신료들은 결연한 마음으로 정진(精進)해 우리 중국(宗國)을 굳건하게 하라.”</p> <p>하였다. 이광좌가 말하기를, “김취로(金取魯)는 80세 된 늙은 어머니가 있어 멀리 떠나는 것이 불쌍합니다.” 하니, 임금이 특별히 사유(赦宥)하기를 명하였다. 대산헌(大司憲) 이춘제(李春躋), 대사간(大司諫) 신만(申晩)이 말하기를, “합사(合辭)에 비답이 없었고, 전석(前席)에서 꺾계(闕啓)한 것은 모두 전에 없던 일이니, 청컨대 체직하소서.”</p> <p>하니, 모두 사직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이 연석(筵席)에서 임금이 세자(世子)를 보도(輔導)하는 일에 대해 말하기를, “궁중(宮中)의 다식판(茶食板)에 팔괘(八卦)를 그려 새긴 것이 있는데, 내가 항상 어찌 먹을 수 있겠는가 여겨 일찍이 먹지 않았었다. 근래 세자 역시 그것을 먹지 않으므로 유모(乳母)가 그 까닭을 물었는데 답하기를, ‘팔괘는 먹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그 영리한 자품(姿稟)이 이와 같다.”</p>	
<p>영조 45권, 13년 (1737 정사 / 청 건륭(乾隆) 2년) 8월 12일 (무진) 2번째기사 임금이 좌상·우상을</p>	<p>임금이 좌상(左相)·우상(右相)을 진연(診筵)에 들어오도록 명하였는데, 김재로 등이 서계(書啓)하여 감히 나아가지 못할 의리를 진달하니, 답하기를, “아! 괴로운 마음을 억제하기 어려운데 억지로 다시 수라를 들었으니, 얼굴을 대하기가 부끄러운 자가 조정의 신하뿐이겠는가? 지난번 처분은 국체(國體)를 위함에 지나지 않았는데, 경들의 마음을 내가 이미 헤아렸다. 이런 때 도성</p>	<p>上命左右相同入診筵，在魯等以書啓陳不敢進之義，答曰：“噫！難抑苦心，勉強復膳，對顏赧然者，其惟廷臣乎。昨者處分，不過國體，卿等之心，予已量矣。此時出城，不亦過乎？却膳而</p>

<p>진연에 들어오도록 명하다</p>	<p>(都城)을 나가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겠는가? 수라를 물리쳤다가 다시 들고 임어해 보고자 하니, 허식을 조금 치워 버리고 즉시 함께 들어오라.” 하였다.</p>	<p>進膳，復臨而欲見，少損其文，其即偕入。”</p>
<p>영조 45권, 13년 (1737 정사 / 청 건륭(乾隆) 2년) 8월 14일 (경오) 1번째기사 수라를 들기 전에 밖의 신하로서 오지 않은 자들을 처벌하다</p>	<p>수라를 다시 들기 전에 밖에 있는 신하로서 오지 않은 자 가운데 근기(近畿)는 삭출(削黜)하고 기외(畿外)는 파직하라고 명하였다.</p>	<p>庚午/命未復膳前在外不來諸臣，近畿則削黜，畿外則罷職。</p>
<p>영조 45권, 13년 (1737 정사 / 청 건륭(乾隆) 2년) 8월 14일 (경오) 2번째기사 이광좌가 이춘제의 이조 참판 개차를 청하고, 세자 보필을 부탁 받다</p>	<p>(전략)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경에게 바라는 바는 오직 원보(元輔)의 자리에 있으면서 세도(世道)를 진정시키는 것이다. 반야(半夜)의 하교는 거의 고명(顧命)8754과 같았으니, 내 자신이 노고(勞苦)를 떠맡고 자손에게 편안함을 남겨 주려 한 것이며, 세자(世子)와의 상견례(相見禮)는 경을 머물러 두어 행하고자 한다. 지금은 비록 머리가 셋이고 팔이 여덟 개인 자라 하더라도 결코 경을 침해하지 못할 것이니, 경은 비단 나만 보필할 것이 아니라 원량(元良)을 보좌함을 중히 여겨야 한다. 내가 밥을 먹으면서 경에게 대접할 터이니, 경이 원량을 위해 떠나지 않고자 하거든 이 밥을 먹으라. 원량의 기질(氣質)이 특이하니, 내가 부탁할 데가 있게 되었다.” 하니, 이광좌가 말하기를, “신 역시 뛰어나게 영리한 모습을 보고 매양 목을 늘이고 태평 시대 보기를 축원하는 정성이 간절하였는데, 성상의 하교가 이와 같으니, 감히 생사(生死)로써 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정력이 미치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하였다. 임금이 수라상(水刺床)을 밀어 이광좌에게 주니, 이광좌가 신료(臣僚)들과 나누어 먹기를 청했다. 임금이 말하기를,</p>	<p>(전략)上曰：“予之所望於卿者，惟是居元輔而坐鎮耳。半夜下教，殆同顧命，予欲以身當勞苦，而以安逸貽子孫矣。世子相見禮，欲留卿行焉。今雖有三頭八臂者，決不敢侵卿。卿不但輔予，必以輔元良爲重也。予當進飯而饋卿，卿欲爲元良不去，則喫此飯也。元良氣質奇特，予有托矣。”光佐曰：“臣亦瞻岐嶷之表，每切延頸之忱，聖教如此，敢不生死以之？但恐精力不能逮矣。”上因推御飯案，與光佐，光佐請與僚臣分食。上曰：“卿先食，次及右相，又褻其餘而傳左相。卿等食此飯，豈忍忘諸？持其器分之子若孫，俾知今日賜膳分器之事，以世輔我子孫。”光佐曰：“殿下始下不忍聞</p>

	<p>“경이 먼저 먹고 다음에 우상(右相)에게 주고, 또 그 나머지를 싸서 좌상(左相)에게 전해 주라. 경들이 이 밥을 먹으면 어찌 차마 잊겠는가? 그릇을 가지고 자손들에게 나누어 주어 오늘 음식을 하사하고 그릇을 나눈 일을 알아서 대대로 내 자손을 보필하게 하도록 하라.”</p> <p>하니, 이광좌가 말하기를,</p> <p>“전하께서 처음 차마 듣지 못할 전교를 내리셨는데 또 동궁(東宮)을 보도(輔導)하라고 신을 만류하시니, 신이 비록 변변치 못하나 삼가 마땅히 심력(心力)을 다하겠으니, 원하건대, 전하께서도 분발하여 스스로 힘쓰도록 하소서.”</p> <p>하였다.</p>	<p>之教，又以輔導東宮勉留臣，臣雖無似，謹當竭其心力矣，亦願殿下奮勵自強焉。”</p>
<p>영조 45권, 13년 (1737 정사 / 청 건륭(乾隆) 2년) 8월 16일 (임신) 2번째기사</p> <p>강화 유수 조명익이 어선 들기를 상소하고 석고 대죄하는 정상을 진달하다</p>	<p>강화 유수(江華留守) 조명익(趙明翼)이 상소하여 다시 어선(御膳)을 들기를 청하고, 끝에 여사(閹舍)로 나가 석고 대죄(席藁待罪)하면서 음식을 폐하고 울먹이는 정상을 진달하였는데, 임금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직임을 살피라고 비답을 내렸다.</p>	<p>江華留守趙明翼上疏請復膳，尾陳其出居閹舍，席藁待罪，廢食涕泣之狀，上以寬心察任賜答。</p>
<p>영조 45권, 13년 (1737 정사 / 청 건륭(乾隆) 2년) 8월 28일 (갑신) 1번째기사</p> <p>조참을 받고, 신하들에게 지금부터 개벽이니 편당하지 말라고 유시하다</p>	<p>(전략)임금이 말하기를,</p> <p>“나의 이번 거조로 인해 만약 효과를 이룬다면 그 공이 어찌 무신년의 난을 감정(勘定)한 데 비하겠는가? 오늘 임금과 신하가 마음의 간곡함을 터놓고 말하는데, 어찌 유감을 푸는 일이 없겠는가? 내가 송(宋)나라 태조(太祖)가 술잔을 든 고사를 본받고자 하니, 경들은 사양하지 말라. 또 내 나이가 이미 많으니, 한 잔 술로써 경들에게 어린 세자를 부탁하고자 한다.”</p> <p>하니, 여러 신하들이 모두 목이 메여 눈물을 흘렸다. 술잔을 장차 돌리려고 하는데, 이종성(李宗城)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p> <p>“신이 아뢰 말씀이 있으니, 어배(御杯)를 멈추시기를 청합니다. 임금과 신하</p>	<p>(전략) 上曰：“因予此舉，若有成效，則其功豈比於戊申勘亂乎？今日君臣洞說心曲，豈可無釋憾之舉？予欲效宋祖杯酒故事，卿等莫辭焉。且予年已晚矣，欲以一杯，托三尺於卿等。”諸臣無不哽咽泣下。酒將行，李宗城前曰：“臣將有言，請停御杯。君臣之間，夫豈有憾，又何釋爲？臣不敢飲此杯矣，”上笑寢釋憾之教，仍謂諸臣曰：</p>

	<p>사이에 어찌 유감이 있겠으며, 또 무엇을 풀겠습니까? 신은 감히 이 잔을 들지 못하겠습니다.”</p> <p>하니, 임금이 웃으며 유감을 풀자는 하교를 정지시키고, 인하여 여러 신하들에게 말하기를,</p> <p>“물러가고자 하는 자는 이 술을 들지 말라.”</p> <p>하자, 이광좌 이하가 모두 부복(俯伏)하여 받아 마시고 일어나 절하였다. 사직(司直) 오광운(吳光運)이 나아가 말하기를,</p> <p>“임금과 신하가 한자리에서 술을 내려 마음을 씻으니, 마치 태화탕(太和湯)을 마신 듯합니다. 누군들 감동하여 뉘우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옛날에 가르침을 따르지 않은 자가 있다고 하여 요순(堯舜)이 어찌 일찍이 함문(閹門)을 단았으며 반경(盤庚)8779)의 대고(大誥)에도 또한 음식을 물리쳤다는 말을 들지 못하였습니다. 참으로 처치가 마땅하게 되고 법령에 믿음을 밝히면 인심이 저절로 복종하고 세도(世道)가 화평하게 됩니다. 이제 당습(黨習)이 고쳐지지 않는다 하여 갑자기 예사롭지 않은 지나친 거조를 하시니, 후세의 비웃음을 살까 염려 됩니다.”</p> <p>하니,(후략)</p>	<p>“有欲退者，勿飲此酒。” 光佐以下皆俯伏受飲起拜。 司直吳光運進曰：“君臣一堂，賜酒滌心，如飲太和之湯，孰不感悟？然古有不率教者，堯、舜何嘗閉閣，盤庚之大誥，亦未聞却食。苟能處置得宜，法令明信，則人心自服，世道和平。今乃以黨習之未革，遽作非常之過舉，恐不免貽笑來世。” (후략)</p>
<p>영조 45권, 13년 (1737 정사 / 청 건륭(乾隆) 2년) 8월 29일 (을유) 3번째기사</p> <p>주강을 마친 자리에서 어제의 당부를 신하들이 잊고 다시 편당할까 염려하다</p>	<p>임금이 주강(晝講)을 행하였다. 강을 마치고 임금이 말하기를,</p> <p>“어제 술을 마신 사람에게 두 마음을 갖지 말고 변치 말라고 서로 면려(勉勵)하는 것은 옳지만, 오히려 술이 깬 후에 반드시 내 말을 잊을까 염려가 된다. 오광운(吳光運)이 나에게 허물을 돌린 것이 참으로 옳다. 내가 한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모두 병어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현명하고 불초함과 일의 이치에 맞는 여부를 만약 아주 공평하게 논하면 내가 어찌 그르다고 하겠는가? 다만 우리 나라 사람의 성품은 조용히 있지를 못하니, 이후에 또 무슨 당(黨)이 나올지 모르겠다.”</p> <p>하였다.</p>	<p>上行晝講。講訖，上曰：“昨日飲酒之人，勿貳勿替，交相勉勵則可矣，猶恐酒醒之後，必忘予言。吳光運之所以歸咎於予者誠是矣。予非欲使一世人皆啞也，人之賢不肖、事之當理與否，若以至公論之，則予豈曰非乎？但我國人性，不堪寂寥，不知此後又生出何黨也。”</p>
<p>영조 45권, 13년</p>	<p>임금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 그대로 친정(親政)을 행하였다. 민응수(閔應</p>	<p>辛丑/上御熙政堂，仍行親政。以閔應</p>

<p>(1737 정사 / 청 건륭 (乾隆) 2년) 9월 16일 (신축) 1번째기사 친정을 행하여 민응수·이진순·정이검·정익하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p>	<p>洙를 관윤(判尹)으로, 이진순(李眞淳)을 동돈녕(同敦寧)으로, 정이검(鄭履儉)을 교리(校理)로, 정익하(鄭益河)를 수찬(修撰)으로, 윤순(尹淳)을 좌빈객(左賓客)으로, 이창의(李昌誼)를 정언으로, 오원(吳瑗)을 대사성(大司成)으로, 김상구(金尙耆)를 사서로, 서명신(徐命臣)을 부교리(副校理)로 삼았는데, 이조 판서 조현명(趙顯命), 병조 판서 김성응(金聖應)의 정사(政事)였다. 조현명을 수어사(守禦使)로 삼았으니, 비국(備局)의 천거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효렴(孝廉)을 만약 잘못 천거함이 있으면 도신(道臣)의 잘못인데 이번 친정(親政)을 당해 전혀 천거해 의망(擬望)하지 않았으니, 전관(銓官)을 추고하도록 하라.” 하였다. 정사를 마치고 선은(宣醢)하였다.</p>	<p>洙爲判尹，李眞淳爲同敦寧，鄭履儉爲校理，鄭益河爲修撰，尹淳爲左賓客，李昌誼爲正言，吳瑗爲大司成，金尙耆爲司書，徐命臣爲副校理。吏曹判書趙顯命、兵曹判書金聖應政也。以趙顯命爲守禦使，備局薦也。上曰：“孝廉若有誤薦，則失在道臣，而今當親政，全不舉擬，銓官推考。”政訖宣醢。</p>
<p>영조 45권, 13년 (1737 정사 / 청 건륭 (乾隆) 2년) 9월 20일 (을사) 2번째기사 패악한 예판 김취로의 삭적·병출을 청하는 장령 이우하의 상소</p>	<p>장령 이우하(李宇夏)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예조 판서 김취로(金取魯)의 추잡하고 패악한 성품과 탐욕하고 음란한 정상은 온 세상이 모두 놀라고 분하게 여기지 않음이 없습니다. 그가 신임하는 사나운 중 사봉(四奉)이란 자가 세도를 끼고 포학을 도와 함부로 폐를 끼치기 때문에 신이 형리(刑吏)를 보내어 잡아오게 했는데, 김취로가 옹호하여 숨기고는 끝내 내주지 않았습니다. 신은 동선(董宣)8817 과 이옹(李膺)8818)의 풍력(風力)에 미치지 못함을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며 어리석게 분노가 치밀어 나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취로는 본디 무뢰(無賴)하여 사람 가운데 끼지 못했으며, 추려(麤廬)함이 습관이 되고, 비패(鄙悖)가 성품을 이루어 탐장(貪贓)이 낭자해 원통함을 호소하는 소리가 길에 가득했습니다. 젊은 날에는 관서(關西)에서 아버지의 정사를 더럽혀 악취를 풍겼고, 중년에는 옥서(玉署)8819)에서 공의(公議)를 거스르다가 저지를 당했습니다. 연줄을 타고 요행한 기회로 외람되게 승반(崇班)에 올라 양전(兩銓)의 장(長)을 지내면서 호사스러움을 점차 멋대로 하고 탐욕스러움이 끝이 없었습니다. 이웃 집들을 모조리 차지하였고, 그의 사나운 중을 시켜서 뇌물받는 문호(門戶)의 관건(關鍵)</p>	<p>掌令李宇夏上疏，略曰：禮曹判書金取魯麤悖之性、貪淫之狀，舉世莫不駭惋，而其信任悍奴四奉者，挾勢助虐，豪橫貽弊。故臣發刑吏推捉，則取魯擁護隱匿，終不出給。臣固自愧於董宣、李膺之風力，而愚憤所激，不得不臚列焉。取魯本以無賴，不齒人類，麤厲爲習，鄙悖成性，贓穢狼藉，怨呼載路。少日關西，汚父政而貽臭；中歲玉署，枳公議而見沮，夤緣倖會，濫躋崇班，歷長兩銓，豪侈漸肆，貪饕無藝。隣里閭舍，盡歸所占，縱其悍僕，使作賂門，樞紐甚至於惠廳吏隸，收給三十緡繼于四奉家，月以爲常。不然則無端生事，罪除相繼，諸</p>

으로 삼았으며, 심지어는 혜청(惠廳)의 이례(吏隸)가 30민(緡)의 돈을 거두어 사봉(四奉)의 집에 주는 것이 매월의 상례(常例)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까닭 없이 일을 만들어 죄제(罪除)가 서로 잇달았으며, 여러 소관(所管)의 이례(吏隸) 역시 모두 이를 본받아 예채(例債)라 이름하였습니다. 곤수(閹帥)8820 이하에 대하여 심지어 그의 자(字)를 부르고 뇌물이 공공연히 행하여지니, 도로에 소문(所聞)이 파다하였습니다. 여염의 과부(寡婦)가 술을 팔아 부자가 되었는데 김취로는 재물이 많음을 이롭게 여겨 간통(姦通)하였으며, 그의 양자(養子)를 뽑아 장교(將校)로 삼았고, 역환(逆宦)의 호숫가 정자를 억지로 사들였으며, 고양(高陽)의 옥토(沃土) 15석(石)의 세(稅)를 백급(白給)해 '수통 과부(水桶寡婦)'라는 이름이 이미 동요(童謠)가 되었습니다. 태복시(太僕寺)의 말을 많은 숫자로 제급(題給)하고는 모두 사유(私有)로 돌렸으며, 또 그 집안에다 별도로 하나의 곡방(曲房)을 설치해 모든 기완(奇玩)의 물건을 모조리 쌓아두지 않음이 없었고, 나이 어린 미녀(美女)를 그 안에 많이 두고는 나이 20세가 넘으면 문득 문을 열어 내보냈으며 내보내는 대로 대신을 채워 욕망을 채운 후에야 그만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에게 있어서 오히려 작은 일입니다. 분원(分院)의 어공(御供) 어선(漁船)을 사사로이 함부로 차지하였는데, 숫자가 매우 많은데도 주랑(廚郎)이 세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지난날 견책(譴責)을 받고 귀양을 갔을 때는 태복시의 아전을 불러 교마(驕馬)를 책출(責出)하였는데, 여러 차례 되짜를 놓으니, 아전이 위령(威令)에 겁을 먹고 몰래 어승(御乘)의 교마(驕馬) 한 필을 바치자 비로소 안연(晏然)히 받았습니다. 부처(付處)하라는 명이 내린 후에도 성문 밖에서 머뭇거리면서 나라를 원망하는 말을 많이 하였으며, 금오랑(金吾郎)이 먼저 과천(果川)으로 가면서 즉시 따라오도록 했으나 끝내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유(赦宥)를 입기에 이르러서는 비로소 교외의 별장(別庄)으로 가면서 교자를 타고 사람을 물리치기를 조금도 황송하여 조심하는 기색이 없음을 눈이

所管吏隸，亦皆效之，名曰例債。 閹帥以下，至呼其字，苞苴公行，道路喧播。 閭巷寡婦，賣酒致富，取魯利其多財，與之相姦，取其養子，取爲將校，使之勒買逆宦之湖亭，沃土高陽十五石白給之稅，水桶寡婦之稱，已成童謠。 太僕之馬，多數題出，盡歸私藏。 且其家中，別設一曲房，凡所窮奢奇玩之物，靡不盛置，年少美女，多儲其中，年過二十，則輒開閣而放之，隨放隨代，滿慾乃已。 然此在渠，猶屬細故，分院御供漁船，私自冒占，厥數甚夥，廚郎不得徵稅。 向日譴謫之時，招致太僕吏，責出驕馬，而累次點退，則吏怯威令，竊納御乘驕馬一匹，則始乃晏然受之。 付處命下之後，逗遛門外，多發怨國之說，金吾郎先向果川，使即追到，而終不動聽。 及其蒙宥，始往郊庄，而乘驕辟人，少無惶蹙之色，有目皆覩，莫不憤惋。 臣謂亟命刊籍，亦卽屏黜，以示不與同中國之意。 四奉之四處私室，亦令籍入，令攸司譏捕，嚴刑絕島爲奴焉。 上不賜批，命留政院。

	<p>있는 자는 모두 보고 분개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빨리 삭적(削籍)하고, 또 즉시 병출(屏黜)하여 서울에서 함께 살 수 없는 뜻을 보이시고, 사봉(四奉)의 네 곳 사실(私室) 또한 적몰(績沒)해 들일 것이며, 유사(攸司)로 하여금 잡아들여 엄형(嚴刑)하고 절도(絶島)로 보내어 종을 삼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비답을 내리지 않고, 정원에 머물러 두라고 명하였다.</p>	
<p>영조 45권, 13년 (1737 정사 / 청 건륭(乾隆) 2년) 9월 27일 (임자) 3번째기사 태복시 주원의 낭관은 김취로와 인척이므로 다시 조사하자는 이우하의 상소</p>	<p>호군(護軍) 이우하(李宇夏)가 상소하여 이르기를, “신이 망령되게 한 소를 올려 김취로(金取魯)의 세 가지 일을 비방해 논한 데 대하여 엄히 조사하라는 명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태복시(太僕寺)와 주원(廚院)의 두 낭관은 모두 김취로의 인척(姻戚)이어서 그 위세를 두려워해 곧바로 진술하지 못하였으니, 아! 어찌 감히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어공선(御供船) 한 조항은 신이 일찍이 위어소(葦魚所)8828) 어부(漁夫)들에게 직접 들었는데 이제 그가 공초한 바는 분명 정상을 숨김이 있으니, 만약 다시 임자년(8829) 이후의 어관(漁官)에게 조사해 물으면 그 실상을 알 수 있습니다. 가교마(駕轎馬) 한 조항은 신이 상소를 할 때 마적리(馬籍吏) 이유창(李裕昌)을 불러서 물으니, ‘변마(邊馬) 1필을 곧바로 김포(金浦) 늑방교(勒防橋) 가에서 바쳤는데 변마는 교마(轎馬)와 서로 교대해 어승(御乘)에 쓴다.’고 하였으니, 다른 아전과 헌부의 노복(奴僕)들도 모두 참여해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복마(卜馬)의 첩(帖)을 주었다는 말은 어찌 속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태복마는 한번 나가면 원래 들어오는 규정이 없으니, 다시 바쳤다는 말 역시 아주 근거가 없습니다. 금오랑(金吾郎)의 공초에 이르러서는 바로 김취로의 전번 소 가운데 있는, ‘말에서 떨어졌다.’는 등의 말을 가지고 부합시켰습니다마는, 김취로는 성문 밖에서 유숙하여 원래 말을 탄 일이 없으니, 어찌 말에서 떨어져 다칠 수 있겠습니까? 아! 신의 전번 상소가 올려지기 전에 먼저 누설되어 김취로가 당로(當路)에 애걸하여 만류하고 두 번씩이나 그 집 사람을 보내어 조용히 말</p>	<p>護軍李宇夏上疏言： 臣妄陳一疏，刺論金取魯三件事，有嚴查之命，而太僕廚院兩郎，俱以取魯姻親，畏其威勢，不爲直陳，噫嘻！何敢若此哉？御供船一款，臣曾親聞於葦魚所漁人輩，而今其所供，明有隱情。若復查問於壬子以後漁官，則可得其實狀。賀轎馬一款，臣於封章時，招問馬籍吏李裕昌，則邊馬一匹，追納於金浦勒防橋邊，而邊馬轎馬，互相陞降於御乘云，他吏及憲隸亦皆參聽矣。今其卜馬帖給之說，豈非誣罔，而太僕馬一出之後，元無還入之規，則還納之說，亦極無據。至於金吾郎之供，乃以取魯前疏中墜馬等說，要爲符合，取魯經宿門外，元無跨馬之事，則安有墜傷乎？噫！臣前疏未徹而先泄，取魯乞哀於當路而挽之，再送其家人而緩頰，其縱恣艱窘之狀，令人羞愧矣。下臣</p>

	<p>하였으니, 그의 방자하고 곤궁에 처한 정상은 사람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신의 이 소를 내려 다시 그 실상을 구핵하게 하소서.”</p> <p>하니, 전교하기를, “이우하가 진달한 이유창을 해조로 하여금 사문(査問)하여 아뢰도록 하라. 예조 판서가 성문 밖에 나갈 때 말을 탔는지 가마를 탔는지도 나졸(羅卒)을 사문(査問)하여 아뢰고, 원소(原疏)는 정원에 머물러 두도록 하라.”</p> <p>하였다.</p>	<p>此疏, 更令究覈其實焉。 敎曰: “李宇夏所陳李裕昌, 命該曹查問以啓。 禮判之出門外時, 乘馬乘轎, 亦查問於羅卒以啓, 原疏留院。”</p>
<p>영조 45권, 13년 (1737 정사 / 청 건륭(乾隆) 2년) 윤9월 15일(경오) 1번째기사 궁부의 호사 금지, 포흠의 탕척, 비국 당상의 과도한 인원 등에 관한 오수채의 상소</p>	<p>교리(校理) 오수채(吳遂采)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근년에 전하께서 진언(進言)한 자를 위징(魏徵)8848) 으로서 포양(褒揚)하였고 호피(虎皮)를 내리셨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는 두 신하가 헌언(獻言)함이 한 번 부당함으로 인해 드디어 거듭 은점(恩點)을 아끼셨습니다. 신은 삼가 생각하건대, 위징에 비교한 것은 그의 말을 받아들임만 같지 못하며 호피를 내리심은 그 사람을 임용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고 여깁니다. 오늘날의 백성들 일이 참으로 애통(哀痛)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위로는 승여(乘輿)·복용(服用)·어공(御供)의 수용으로부터 아래로는 궁부(宮府) 내외의 호화스럽고 범람(泛濫)한 도구에 이르기까지 일체 재량(裁量)하여 덜어야 합니다. 여러 궁가(宮家)에서 전후(前後)에 절수(折受)한 모든 산전(山田)·해택(海澤)에 대하여 입안(立案)한 것은 모두 그 숫자를 참작하여 정해 주고 나머지는 모두 혁파할 것이며, 여러 빈어(嬪御)의 복식(服飾)·기완(器玩)을 멀리 연경(燕京)의 저자에서 무역해 오는 것은 엄중히 과조(科條)를 세워 통렬히 금지해야 합니다. 오래된 공상(供上) 가운데 아직도 명목(名目)이 남아 있어 예전대로 진배(進拜)하는 물건은 마땅히 그 경중(輕重)을 헤아려 유사(有司)에게 나아가 부탁하고, 오래된 환상(還上)과 여러 해 쌓인 포흠(逋欠)은 신축년(8849)·임인년(8850) 이전을 한정으로 하여 한결같이 탕척(蕩滌)해야 하며 호조(戶曹)·진청(賑廳)의 전세(田稅)와 대동미(大同米)를 내어 파는 규정을 엄히 신칙하여 혁파하소서.</p>	<p>庚午/校理吳遂采上疏, 略曰: 頃年, 殿下於進言者, 褒以魏徵, 錫以臯比, 而居無何, 二臣者因獻言, 一不當遂, 積靳恩點。 臣竊以爲擬魏徵, 不若納其說; 錫臯比, 不若用其人。 今日民事, 誠有哀痛者, 上自乘輿服用供御之需, 下逮宮府內外浮淫之具, 一切裁損。 若諸宮家新舊折受, 凡山田海澤之盡歸立案者, 酌定厥數, 餘悉革罷; 若諸嬪御之服飾器玩, 遠貿燕肆者, 峻立科條, 痛加止絕。 久遠供上之猶存名號, 如舊進排者, 宜量其輕重, 出付有司; 舊遠還上, 積年逋欠, 限辛壬以前, 一併蕩滌, 戶曹賑廳田稅大同出買之規, 嚴飭罷之。(후략)</p>

	(후략)	
영조 46권, 13년 (1737 정사 / 청 건륭 (乾隆) 2년) 10월 11 일(을미) 2번째기사 주원에 하교하여 감선 하게 하다	주원(廚院)8866) 에 하교하여 감선(減膳)하게 하였다	下教廚院減膳。
영조 46권, 13년 (1737 정사 / 청 건륭 (乾隆) 2년) 10월 12 일(병신) 2번째기사 감선하여 삼가는 뜻을 보이고자 하니 대소신 료도 면려하라고 하교 하다	하교하기를, “아! 내가 덕이 모자라고 배운 것이 적어 명령은 조정에 시행되지 아니하고 혜택은 백성에게 미치지 아니하니, 아! 어진 하늘의 면려하고 신칙함은 없는 달이 없는데, 하물며 지금 만물이 폐장(閉藏)될 때이겠는가? 날짜를 헤아려서 감선(減膳)한다는 것도 정성이 부족하여 오히려 부끄럽다. 고굉(股肱)의 대신 이 사(私)를 앞세우고 공(公)을 뒤로 미루는 것도 바로 내 자신의 허물이고, 가난한 백성이 거꾸로 매달린 듯한 질곡(桎梏)이 옛과 다름없는 것도 바로 내 자신의 허물이며, 감찰(監察)의 업무를 맡은 관원이 오로지 정목(政目)8867) 만 갖추는 것도 바로 내 자신이 흥금을 털어놓지 아니한 소치이고, 초야의 여 러 신하가 광유(廣諭)한 뒤에도 오히려 지체하며 배회하는 것 역시 내 자신이 신뢰감을 주지 못한 소치이며, 기강이 엄하지 못하고 풍습이 날이 갈수록 퇴 폐해지며 세도(世道)가 날이 갈수록 변하는 것은 모두 아랫사람의 과오가 아 니며 역시 내 자신이 신칙하고 격려하지 못한 허물이다. 지난날 내린 유시에 먼 곳에서 응하였는데도 이를 채택하여 시행한 것이 없으니, 그 연유된 바를 헤아려보면 내 자신이 아니고 누구이겠는가? 먼저 감선을 명하여 두려워하고 삼가는 뜻을 보이고자 한다. 대소 신료(大小臣僚)들은 나의 무능만을 말하지 말고 두려운 마음으로 면려하여 오늘의 형세를 만회하도록 하라.” 하였다.	敎曰：“噫！以予涼德寡學，命不能行於廷，惠不能及於民。嗚呼！仁天之勉飭，無月無之，況今閉藏之時乎？計日減膳，猶惡誠淺，股肱大臣，先私後公，卽寡躬之過；葺屋生民，倒懸若前，卽寡躬之過；耳目之官，惟備政目，卽寡躬無開襟之致；在野諸臣廣諭之後，猶且遲徊，亦寡躬不能孚之致；紀綱之不嚴，風習之日墮，世道之日渝，俱非在下之過，亦寡躬不能飭勵之過；往者之諭，遐方應旨，無所採施，究厥所由，非寡躬而誰？先命減膳，以示懷惕之意。咨大小臣工，莫曰寡躬之無能，惕然勵心，挽回時勢。”
영조 46권, 13년	(전략) 지금 전하께서는 바야흐로 편안한 마음으로 스스로 기뻐하시고 번민	

(1737 정사 / 청 건륭
(乾隆) 2년) 10월 14
일(무술) 1번째기사
미봉책을 쓰지 말고
시비를 분명히 해야만
당파가 없어진다는 이
석표의 상소

속에서도 만족하시면서 진실로 탕평(蕩平)이 되고 크게 보합(保合)을 이루었다고 여기시나, 다만 당파를 깨뜨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못신하에게 기만당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시니, 어찌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광유(廣諭)를 처음 내리시던 날에는 중외의 인심이 크게 진동하여 눈을 부비고 마음에 새겨 두루 목은 감정을 말끔히 씻어 없애고 국면을 새롭게 전개하는 공을 이 기회에 결단할 수 있으리라 여기지 아니함이 없더니, 막상 당하고 보니 승지가 소리 내어 읽고 백관은 네 번 절하고 물러가는 데 불과하였으며, 유시하신 내용 역시 전후의 사륜(絲綸)에서 이미 익히 말하고 익히 들었던 것에 불과하였을 뿐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거조는 천둥과 바람이 휘몰아치지 않은 것이 아니었으나 사람들이 복종하지 않으며, 말씀은 애절하게 거듭거듭 고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으나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 안타깝습니다. 전하께서 진실로 그 당시에 옥음(玉音)으로 조서(詔書)를 반포하시되 당론이 결국은 반드시 나라를 망하게 한다고 애통하게 말씀하시어 백관과 군민(軍民)으로 하여금 명확하고 상세히 듣게 하시었다면, 어찌 환하게 밝으며 깨끗하고 시원하게 되어 비록 평소에 과당적인 인습에 고질이 된 사람이라도 역시 어찌 마음을 뜯어고쳐 융합동화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한편으로는 각선(却膳)하시고 한편으로는 선은(宣醜)하시니, 존엄을 깎아내리는 거조가 하당(下堂)8881) 보다 심하며 유감을 풀라는 하교(下敎)가 애결에 가깝습니다. 전하께서 약하게 보이어 업신여김을 당하시는 것이 진실로 적지 아니하니, 한편에서 자신의 견해만을 애써 지키며 변화를 알려고 생각지 않는 것 또한 무엇이 괴이합니까? 이러한 정책으로 한다면 전하께서 비록 날마다 각선하시고 날마다 술을 내리신다 하더라도 당파를 제거하는 데 실상 보탬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한갓 전하의 위엄만 스스로 손상될 뿐이니, 신은 실로 개탄스럽습니다. 전하께서 지금 만약 더욱 확고한 마음을 가다듬으신다면, 지난날과 같이 모호한 미봉책을 쓰지 마시며, 지난날과 같이 중단하고 취소하지 마시고 옳고

(전략)今殿下方且恬然自喜, 懣然自得, 以爲眞蕩平大保合, 而殊不知不徒不能破黨, 愈見欺於群下, 寧不可惜哉? 當廣諭初下之日, 中外人心, 莫不赫然振勵, 翹心拭目, 消融滌蕩之化, 回斡旋轉之功, 可決於此機. 及其至也, 不過承旨宣讀, 百官四拜而退, 所諭者亦不過前後絲綸, 已熟言而熟聞之者耳. 是故舉措非不雷厲風飛而人不服, 辭旨非不丁寧惻怛而人不信, 惜乎! 殿下苟於其時, 渙發玉音, 以黨論之終必亡國, 哀痛而言之, 使百官軍民明聽而詳聞, 則豈不光明震燁, 灑落快活, 雖平日之痼於黨習者亦豈無改心革慮, 同歸鎔化, 而不此之爲, 乃反一邊却膳, 一邊宣醜, 貶尊之舉, 甚於下堂, 釋憾之教, 近乎哀乞. 殿下之示弱見侮, 固自不少, 而一邊之徒守己見, 不思知變者, 亦何足怪也? 由是道也, 殿下雖日日却膳, 日日賜酒, 實無補於祛黨之道, 而徒見其君威之自損耳, 臣實慨然. 殿下今若益勵堅確之心, 毋如前日之含糊彌縫, 毋如前日之消沮退轉, 明示是非, 而使群下咸知信服, 嚴立紀綱, 而使一世皆有勸畏, 發言則務乎簡

그름을 분명하게 드러내어 못신하로 하여금 모두 믿고 복종하는 것을 알게 하시며, 기강을 엄격하게 세워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모두 두려워하고 권면하도록 하소서. 말을 하는 데에는 간략하고 신중히 하도록 힘쓰시고 일을 처리하는 데에는 반드시 공평을 근본으로 하시어, 나의 속마음을 사람들이 엿보지 못하게 하며 나의 거조를 세상에서 감히 헐뜯지 못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뒤에 못신하 중에 감히 미련스럽게 뉘우치지 않고 파당적인 인습을 다시 싹틔우는 자가 있다면, 벌을 주어도 옳으며 죽여도 옳습니다. 이것은 이른바 한 사람을 벌주어 천하에 위엄을 보이는 것이니, 구구하게 음식을 절제하고 자질구레하게 술잔이 오고갈 필요가 없이 저절로 믿는 마음이 생기고 저절로 힘쓰고 닦이어 탕평의 기쁨에 이를 것이니, 오늘날 재액을 그치게 하는 방책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을 따름입니다.

지난번 윤급(尹汲)과 한익모(韓翼謨)가 서명(胥命)하지 않은 것이 어찌 죄가 없겠습니까마는, 액레(掖隸)를 몰래 보내어 간악한 일을 적발하는 것같이 한데 이르러서는 그것이 체면을 먼저 손상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였습니니다. 뿐만 아니라 역적을 다스리는 죄로써 다스리기까지 하였으니, 이것은 전하께서 형정(刑政)을 조심하고 삼가시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 혹시라도 달리 지극히 미워하는 바가 있어서 이 일을 빙자해 죄를 주었다면 이는 전하께서 양심을 속이고 신하를 속이는 것이니, 대성인(大聖人)의 공정한 마음으로 사물을 처리하는 도리가 어찌 이와 같단 말입니까? 비록 그들에게 죄가 있다 하더라도 석달 동안 귀양보냈으면 징계와 면려에 족한 것이니, 죄를 용서하여 방환(放還)하시는 명을 빨리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언(趙泰彦)의 죄는 진실로 성상께서 하교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찌 극형에 이르기까지 하며 섬에 안치하기에까지 이르겠습니까? 두루 생각건대, 우리 조종(祖宗)께서는 인후(仁厚)로 나라를 세우시어 직위가 삼사(三司)에 이른 자에게는 일찍이 함부로 형벌을 내린 적이 없었는데, 지금 전하께서는 조그마한 과실이 나

重, 度事則必主公平, 使吾之淺深, 人不得以窺測; 使吾之舉措, 世無敢以疵議。 然後群下其敢有頑然不悛, 復萌黨習者, 則誅之可也, 殺之可也。 是所謂刑一人而天下威者, 不必區區於飲饕之節, 屑屑於盃酒之間, 而自然孚感, 自然砥礪, 以底于蕩平之休。 今日弭災之策, 恐無過於此耳。 向來尹汲、韓翼謨之不胥命, 烏得無罪? 至於密送掖隸, 有若摘奸, 自不覺其先損體面, 而至於加之以治逆之律, 此則殿下不能審慎於刑政也。 若或別有所痛惡, 憑此而罪之, 則是殿下欺心而欺臣下也, 大聖人公心處物之道, 豈如是乎? 雖然, 三朔竄棘, 足以懲勸, 亟命宥還。 趙泰彦之罪, 誠如聖教, 然何至於正刑, 何至於鳥置也? 洪惟我祖宗仁厚立國, 位至三司者, 未嘗輕加刑戮。 今殿下少有違拂, 輒欲以桁楊刀鋸從事, 是萬世無窮之窮弊, 自殿下啓之, 爲殿下三司之臣者, 將何以措其手足乎? 伏願殿下更加三思而處之也。

批曰: “勉陳俱是, 豈可事往而不爲猛省焉? 噫! 深慨黨習之源, 初無舉先正, 而侮之者不亦誤聽乎? 尹汲、韓翼

	<p>뜻을 어기는 일만 있어도 번번이 형구를 가지고 종사하려고 하십니다. 이는 영원토록 무궁한 폐단을 전하께서 몸소 여시는 것이니, 전하를 섬기는 삼사의 신하들이 장차 어떻게 그 손발을 움직이겠습니까?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두 번 세 번 다시 생각하시어 처결하소서.”</p> <p>하니, 비답하기를, “힘써 진달한 말들은 모두 옳다. 어찌 지난 일이라고 하여 깊이 반성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아! 당슴의 근원을 깊이 개탄하면서 애초 선정신(先正臣)을 들추어 업신여긴 적이 없었으니 역시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윤급과 한익모의 일은 비록 무상(無狀)한 바가 있으나 아뢴 말도 옳으니, 두루 물어 처결하는 것이 마땅하다. 조태언의 일은 경솔하게 논의할 수 없다.”</p> <p>하였다.</p>	<p>謦事，其雖無狀，所陳是矣，當下詢處之。趙泰彥事，不可輕議矣。”</p>
<p>영조 46권, 13년 (1737 정사 / 청 건륭(乾隆) 2년) 10월 20일(갑진) 1번째기사 봉상시 제향의 제수 비용을 넉넉히 주고 첨정 신유한을 구임하게 하다</p>	<p>임금이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영의정 이광좌(李光佐)가 아뢰기를, “봉상시(奉常寺) 제향(祭享)의 제수(祭需)로 1년간 지출하는 비용이 매우 넉넉하지 못하니, 청컨대 술 빛을 쌀 35석과 밀 7석, 유과(油果) 만드는 데 쓰이는 기름과 꿀을 한 위(位)든 두 위든 가리지 말고 각각 1되씩 더 주소서.”</p> <p>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광좌가 연이어 아뢰기를, “봉상시 첨정(奉常寺僉正) 신유한(申維翰)은 직임을 잘 감당하고 있으니, 구임(久任)하는 게 옳습니다.”</p> <p>하니, 옳게 여겼다. 공조 참판 이종성(李宗城)이 제향(祭享)할 때의 관복은 정성껏 만들고 깨끗하게 하도록 청하니, 임금이 호조 판서와 제용감 제조(濟用監提調)로 하여금 가서 살펴보도록 하되 한결같이 친제(親祭)할 때의 제관(祭官) 수에 의거하여 헌관(獻官)과 당상관(堂上官)·당하관(堂下官)·전외 집사(殿外執事)의 4등급으로 나누어 정성껏 만들어 4개의 궤에 나누어 보관하였다가 때가 되기 전에 점검하고 살펴 길고 세탁하여 제향에 쓰도록 하라고 하였다.</p>	<p>甲辰/上引見大臣備堂。領議政李光佐奏：“奉常寺祭享所需，一年支用頗不贍，請加割酒米三十五石、麩麥七石、造果所需油蜜，勿計一位兩位，各加一升。”從之。光佐仍言：“奉常僉正申維翰能奉職，宜久任。”可之。工曹參判李宗城請祭享時冠服，精造致潔，上令戶判與濟用監提調往視，一依親祭時祭官數，獻官與堂上、堂下、殿外執事，分四等精製，分貯四櫃，前期點視，修補澣濯，以供享事。光佐又言：“湖西五邑、湖南十邑，被災最甚，雖在冬月，必有危急之民。請諭道臣，令於新年分糶前，方便救濟。”從之。</p>

	<p>이광좌가 또 아뢰기를, “호서(湖西)의 다섯 고을과 호남(湖南)의 열 고을이 재해를 입은 것이 가장 심하여 비록 겨울이라도 반드시 위급한 백성이 있을 것이니, 청컨대 관찰사(觀察使)에게 유시(諭示)하시어 재해의 조곡(糶穀)을 나누어 주기 전에 형편에 맞게 구제하라는 영을 내리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영조 46권, 13년 (1737 정사 / 청 건륭(乾隆) 2년) 11월 3일 (병진) 2번째기사 재변과 백성의 곤핍함을 아뢰고 경계할 것을 권하는 수찬 이정보의 상소</p>	<p>수찬 이정보(李鼎輔)가 상소하여 아뢰기를, “신은 이번 길에 삼남(三南)과 호남(湖南) 연해(沿海)를 두루 돌아보면서 27년 동안 15차례나 구휼(救恤)을 베풀었다는 사실을 알고 참으로 놀랍고 마음 아팠습니다. 영남(嶺南)에 이르러서는 동해(東海)에 적조(赤潮) 현상과 달성(達城)에 지진이 일어난 뒤부터 인심이 흉흉하여 진정할 수 없었으며, 신이 근시(近侍)의 반열에서 나왔다 하여 신의 말고삐를 붙들고 읍소(泣訴)하는데 그들의 굶주리고 곤핍한 형상은 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두루 통달하고 일을 익숙하게 아는 두 도(道)의 관찰사(觀察使)가 여섯 달 동안 인입(引入)하여 모든 사무가 적체되어 있으며, 호서(湖西)는 전임 관찰사를 경솔하게 갈아치워서 진휼하는 중임을 경험에 없는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삼남은 나라의 근본인데 여러 차례 큰 흉년을 겪고 있으니, 실로 작은 근심이 아닙니다. 서울에 도착함에 이르러서는 하늘의 재변이 매우 혹독하여 천둥 소리가 순음기(純陰期)에 잇달아 일어나고 금성(金星)과 목성(木星)의 살별이 연달아 태음(太陰)을 범하는가 하면 요괴스러운 바람이 땅을 휩쓸고 붉은 기운이 하늘에 뻗었으니, 이것은 음(陰)이 성하고 양(陽)이 쇠해지는 형상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전하께서는 두려워하시며 반성하고 힘쓰심이 며칠간의 감선(減膳)과 간략한 구언(求言)에 불과하시니, 이것으로 어떻게 재앙이 소멸해 그치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부교리(副校理) 오수채(吳遂采) 역시 상소하여 경계할 것을 아뢰니, 임</p>	<p>修撰李鼎輔上疏言： 臣於今行，歷遍三南、湖南沿海，二十七載之間，十五次設賑，已極驚慘。至於嶺南則東海波赤、達城地震之後，人心洶洶，莫可鎮定。以臣之出自遼班，擁馬泣訴，其饑困之狀，吁可感矣。兩道伯之周通諳練者，六朔引入，衆務積滯。湖西舊伯之徑遞，設賑重任，遽付生手。三南國之根本，而累經大無，實非細憂。及到洛下，天變孔酷，震虩之聲，洊作於純陰；金木之孛，連犯於太陰，怪風拂地，赤氣亘天。此莫非陰盛陽衰之象，而殿下恐懼修省，不過數日減膳，草草求言，此何以消弭災沴耶？ 副校理吳遂采亦上疏陳戒，上竝嘉納。</p>

<p>영조 46권, 13년 (1737 정사 / 청 건륭 (乾隆) 2년) 11월 4일 (정사) 1번째기사 제주도 감귤 공인 14 인이 익사했으므로 구 출하는 은전을 베풀다</p>	<p>금이 모두 가납(嘉納)하였다.</p> <p>제주도의 감귤(柑橘) 공인(貢人) 안만적(安萬赤) 등 14인이 배가 전복되어 물 에 빠져 죽었으므로, 구출하는 은전을 베풀도록 명하였다.</p>	<p>丁巳濟州貢柑人安萬赤等十四人， 船 敗滄死， 命行恤典。</p>
<p>영조 46권, 13년 (1737 정사 / 청 건륭 (乾隆) 2년) 11월 4일 (정사) 4번째기사 윤급 사건 등의 처리 가 합당하지 못했다는 부제학 김유경의 상소</p>	<p>부제학(副提學) 김유경(金有慶)이 상소하여 아뢰기를, “윤급(尹汲)·한익모(韓翼謨)를 즉시 대명(待命)하게 하지 않으심이 전하께서 국청(鞠廳)을 설치하여 친히 심문하시는 마당에 과연 합당하며, 조태언(趙泰 彦)이 두 글자로 처치(處置)한 것도 역시 나라의 형벌을 바로 잡는 데 과연 합당하다고 여기십니까? 전하의 명성(明聖)으로 그것이 지나치다는 것을 어찌 모르셨겠습니까마는, 단지 못신하를 위협 통제하여 감히 입을 열지 못하게 하 시니, 이는 권모 술수에 가깝고, 그것이 심학(心學)에 끼치는 해는 진실로 적 지 않습니다. 대신(大臣)을 욕하고 꾸짖기를 노예와 같이 하시니, 그것이 성 덕(聖德)에 끼치는 누(累) 역시 큼니다. 이미 죽은 선정신(先正臣)의 이름을 배척해 불려서 그의 허물을 책함을 드러내 보이는 등 갖가지 하자는 오로지 전하의 기질(氣質)이 아직 순화(純化)되지 않은 데 연유한 것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윤급 등의 일은 이미 하교하였다. 각선(却膳)하는 마당에 어느 여가에 권모 술수를 쓰겠는가?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어찌 ‘없다.’라고 말하며 힘쓰지 않 겠는가? 다른 일은 이미 유시하였고, 이석표(李錫杓)의 상소는 잘못 전해 들 은 것이다.” 하였다.</p>	<p>副提學金有慶上疏言： 尹汲、韓翼謨之不卽待命， 殿下以爲果 當於設鞠親問， 而趙泰彦之二字處置， 亦以爲果當於亟正邦刑耶？ 以殿下之 明聖， 豈不知其過當， 而只欲威制群 下， 使不敢開口， 是近於權數也， 其爲 心學之害， 誠不細矣。 詎叱大臣， 殆 同奴隸， 其爲聖德之累， 亦已大矣。 至於既骨之先正， 斥呼其名， 顯示咎 責， 種種疵累， 專由於氣質之未化。 批曰：“尹汲等事， 業已下教。 却膳之 時， 豈暇用權數？ 雖然， 豈曰無而不勉 焉？ 其他事業論， 李錫杓疏， 是傳聞之 誤也</p>
<p>영조 46권, 13년</p>	<p>임금이 영의정 이광좌(李光佐)를 인견하였다. 이때 날씨가 매우 추웠는데, 임</p>	<p>上引見領議政李光佐。 時寒甚， 上不</p>

<p>(1737 정사 / 청 건륭 (乾隆) 2년) 11월 9일 (임술) 2번째기사 영상 이광좌가 섭양에 소홀하지 말 것을 청하다. 복선을 명하다</p>	<p>금은 털옷을 입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솜옷 역시 너무 얇았다. 이광좌가 아뢰기를, “신이 비록 손으로 만져 보지는 못하였지만 매양 비올 때마다 항상 추워 보입니다. 잠시 겉으로 나타나는 병환이 없다고 하여 조심하고 섭양(攝養)하시는 방책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지 마소서.” 하였는데, 임금의 대답하기를, “천성이 너무 따뜻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까닭에 그렇다. 경은 비록 너무 얇다고 경계하지만, 부옥(蔀屋)에서 추위와 굶주림에 떨고 있는 정상을 생각하면 내 어찌 차마 혼자서 따뜻하게 지내고 혼자서 배부를 수 있겠는가?” 하니, 이광좌가 아뢰기를, “하늘의 뜻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성상께서 마음을 굳게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어찌 감선(減膳)하는 절도(節度)로써 천재(天災)에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대답하기를, “감선이란 단지 하늘을 모독하는 것임을 역시 알고 있다.” 하고, 복선(復膳)을 명하였다.</p>	<p>御毛衣，而絮衣亦太薄。光佐曰：“臣雖不得以手仰摩，每瞻望常若有寒意。勿以姑無形見之病，少忽慎攝之方。” 上曰：“性不喜太煖，故然矣。卿雖以太薄爲戒，每想蔀屋飢寒之狀，予豈忍獨煖獨飽乎？” 光佐曰：“天心之克享，惟在聖心操捨之如何。豈可以減膳之節，仰答天災乎？” 上曰：“亦知減膳之徒褻瀆耳。” 命復膳。</p>
<p>영조 46권, 13년 (1737 정사 / 청 건륭 (乾隆) 2년) 11월 10일(계해) 4번째기사 황감을 성균관 유생에게 반사하고, 시험을 보이니 윤득영이 장원 급제하다</p>	<p>황감(黃柑)을 성균관 유생(成均館儒生)에게 반사(頒賜)하고 홍문관 제학(弘文館提學) 윤혜교(尹惠教)에게 명하여 선비에게 시험을 보이게 하였는데, 윤득영(尹得英)이 장원에 뽑혔으므로, 급제(及第)를 내렸다.</p>	<p>頒柑于泮儒，命弘文提學尹惠教試士，尹得英居首賜第。</p>
<p>영조 46권, 13년 (1737 정사 / 청 건륭</p>	<p>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영의정 이광좌(李光佐)가 아뢰기를, “육진(六鎭)의 재해가 다른 도(道)에 비할 바가 아니어서 겨울 전에 이미 죽</p>	<p>上引見大臣備堂。領議政李光佐曰：“六鎭災荒，不比他道，冬前已有死亡</p>

<p>(乾隆) 2년) 11월 21일(갑술) 2번째기사 육진에 포항창과 관동의 곡식을 급수송하다. 귀향자의 처분을 논하다. 윤택징 등을 처벌하다</p>	<p>은 사람이 있다고 하니, 곡식을 옮겨서 구제하는 일을 일각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 영남(嶺南) 포항창(浦項倉)의 곡식 1만 5천 석과 관동(關東)의 곡식 6천 석을 급히 수송하여 보내라는 뜻으로 분부하심이 타당합니다.”</p> <p>하니, 임금의 윤허하였다. 우의정 송인명(宋寅明)이 아뢰기를, “해변 백성의 배와 그물로써 살아가는 자가 곳곳에서 침해를 당하고 납세(納稅)도 한정이 없어서 원망과 고통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니, 참으로 염려스럽습니다. 신이 일찍이 갑진년(8911)에 영의정이 정한 절목(節目)을 가져다 보니, 통제사(統制使)에게 행관(行關) 8912) 하여 경외 차인(京外差人)으로서 폐단을 만드는 자를 살피고 조사하여 본사(本司)에 보고하도록 하였는데도, 이제까지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꾸짖고 경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p> <p>하니, 이광좌가 아뢰기를, “중죄로 다스려 뒷날의 폐단을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제사(統制使) 윤택정(尹宅鼎)을 삭직(削職)시키는 것이 옳습니다.”</p> <p>하였는데, 임금이 윤허하고, 이어서 하교하기를, “기강이 조정에 행해지지 않으면서 멀리 미친 적은 있지 않았다. 오늘 차대(次對)에 영의정은 병이 있는데도 억지로 일어나 들어왔거늘 비국 당상은 많이 들어오지 않았으니, 바로잡고 경계하는 방도를 여기서 먼저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경들은 조정의 영(令)이 외방에서 시행되지 않는 것을 근심하지 말고 단지 조정의 기강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것이 옳다.”</p> <p>하니, 송인명이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참으로 옳습니다.”</p> <p>하였다. 임금이 하문하기를, “신치근(申致謹)이 계문한 바 향리(鄉里)에 내려간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는가?”</p> <p>하니, 송인명이 아뢰기를,</p>	<p>云, 移轉救濟, 不可一刻緩緩。嶺南浦項倉穀一萬五千石、關東穀六千石急速輸送之意, 分付宜矣。”上允之。</p> <p>右議政宋寅明曰: “海民之以船網爲生者, 處處被侵, 納稅無限, 不勝怨苦云, 誠可念矣。臣曾取甲辰領相所定節目, 行關統制使, 檢察京外差人作弊者, 報本司矣, 至今無一報, 宜施警責矣。”</p> <p>光佐曰: “不可不重勸, 以懲後習。統制使尹宅鼎宜削職。”上許之。仍教曰: “紀綱不行於朝, 而能及遠者, 未之有也。今日次對, 首揆則有病而強起入來, 備堂則多不來, 規警之道, 宜先乎此。卿等勿以朝令之不行於外方爲憂, 只觀朝綱之如何可也。”寅明曰: “聖教誠然。”上問曰: “申致謹所啓下鄉人, 何可以處之?”寅明曰: “臣欲重推矣。”上曰: “既曰嚴君綱, 則何可止於重推乎?”光佐曰: “却膳而廣諭, 廣諭而宣醜, 前後頒教, 至意藹然。臣子道理, 當盡棄舊習, 同心戮力, 而猶襲舊套, 下鄉不來, 誠可慨然。且其中有許多層, 或有牽於儕友, 不得自由者, 或有過守舊習以爲當然者, 或有原居鄉而勢難久留者。既無</p>
---	---	---

	<p>“신은 종종 추고(從重推考)로 다스렸으면 합니다.” 하였는데, 임금의 말하기를, “이미 왕명을 엄격히 한다고 하였으면 어떻게 종종 추고에 그칠 수 있겠는가?” 하므로, 이광좌가 아뢰기를, “각선(却膳)하신 후에 광유(廣諭)하시고 광유하신 뒤에 선운(宣醜)하시는 등 전후에 반포하신 하교의 지극하신 뜻이 너무나 간절하셨습니다. 신자(臣子)가 된 도리로서 구습(舊習)을 모두 버리고 마음을 합쳐 죽을 힘을 다하여야 마땅한데 도리어 옛날 방식을 답습하여 향리에 내려가 올라오지 않으니,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또 그들 가운데도 여러 계층이 있으니, 혹은 친구에게 이끌리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혹은 구습을 지나치게 지키면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혹은 원래 향리에 거처의 근거를 두고 있어서 형편상 오래 외지(外地)에 머물러 있기 어려운 사람이 있으므로, 이미 구별할 길이 없으니, 일률적으로 죄를 주는 것은 불가합니다. 제왕(帝王)의 도(道)는 널리 포용하는 것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니, 지금 만약 모두 관대하게 용서한다는 뜻으로 유시를 내리시고 그들이 올라오는 것을 기다려 각각 벼슬을 내리신다면 저절로 성덕의 감화 속에 깊이 젖어들 것입니다.” 하니, 임금의 말하기를, “진실로 식자(識者)가 있다면 어찌 오지 않겠는가? 그들이 하는 대로 맡기는 것이 옳다.” 하였다. 지평(持平) 정옥(鄭玉)이 전계를 거둬 아뢰었으나 윤희하지 않았고, 서명구(徐命九)를 체직(遞職)시키자는 청은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강릉 부사(江陵府使) 이봉익(李鳳翼)이 정사(政事)를 하리(下吏)에게 맡기어 백성들이 명을 감당하지 못하니, 청컨대 파직하소서.” 하니, 윤희하였다.</p>	<p>區別之路，則不可一例罪之也。在上之道，貴乎優游包容。今若以一併寬恕之意下諭，待其上來，各授以職，則自可涵泳於聖化中矣。” 上曰：“苟有識者，豈不來乎？任其所爲可也。” 持平鄭玉申前啓，不允。徐命九事，從之。又啓：“江陵府使李鳳翼委政下吏，民不堪命，請罷職。” 允之。</p>
--	---	--

영조 47권, 14년
(1738 무오 / 청 건륭
(乾隆) 3년) 1월 4일
(정사) 1번째기사
대신·비국 당상을 인
견하다. 좌상 김재로의
뜻을 윤택하여 면부하
다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우의정 송인명(宋寅明)에게 이르기를,
“오늘 경들을 소견(召見)한 것은 묘당의 계책을 위해서가 아니라 의도하는 바가 있어서이다. 각선은 곧 용렬한 임금도 하지 않는 것인데 하였고, 그 당시 경들에게 속아서 드디어 복膳(復膳)하게 되었었다. 내가 비록 유약하지만 태아(太阿)8928) 를 땅에 버리지 않는 것이다. 지난날 영상과 민진원(閔鎭遠)에게 밤중에 휴퇴(休退)를 윤택한 것을 경들은 모두 지나쳤다고 여겼었지만, 대개 당쟁을 멈추게 하는 방도에서 나온 것이었다. 각선할 때를 당하여 갑자기 생각이 떠올라 즉시 정승으로 제배(除拜)하여 원보(元輔)8929) 가 들어온 뒤에 마음이 조금 놓이게 되었었다. 좌상의 부모를 섬기는 마음은 진실로 불가할 것이 없으나, 내가 하교하기를, ‘사사롭게 수작하는 것은 비록 할 수 없더라도 다만 국사(國事)를 위해 함께 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혐원(嫌怨)을 품는 여지가 있도록 한 것이었는데, 그가 심단(尋單)함은 오히려 부모를 섬기는 데 지나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였는데, 뜻밖에 차자를 올려서 시상(時象)에 대해 언급하였다. 만일 반드시 체직되고 싶었다면, 오로지 부모를 섬기는 마음을 들어 간절하게 진달했어야 옳을 것인데, 이른바, ‘똑바로 보고 싶지 않다.’고 말한 것은 지극히 그른 것이다. 원보가 심단을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나 영상이 시애(撕捱)하고 있는 것이 이미 좌상으로 연유한 것이라면 어찌 좌상이 그르지 않겠는가? 재차 올린 차자에 이른바, ‘공공연하게 전해진 것이다.’라고 말한 것은 더욱 그른 것이다.”
하니, 송인명이 말하기를,
“원보가 심단한 것은 진실로 부득이한 것이었습니다. 좌상의 일 또한 무단히 인험한 것과는 다르지만, 차자 가운데 한 구절의 말은 진실로 지나친 것이었습니다. 이는 상대하지 않으려는 뜻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두루 여러 신하들에게 묻고서 전교를 쓰도록 명하였는데, 이

丁巳/上引見大臣備堂。 謂右議政宋寅明曰：“今日召見卿等， 非爲廟謨， 意有在耳。 却膳是庸君之所不爲， 而爲之矣， 其時爲卿等所欺， 遂至復膳。 予雖弱， 太阿不委於地。 昔當領相及閔鎭遠之半夜許休， 卿等皆以爲過， 而蓋出息爭之道。 當却膳之時， 忽然思得， 因卽拜相， 元輔入來後， 心乃少弛。 左相爲親之心， 則固無不可， 而予教以私酬酢則雖不可爲， 但於國事同做者， 使有用嫌之餘地矣。 其所尋單， 猶可謂爲親之過也， 不意筭子忽及時象。 若欲必遞， 則專以爲親之心懇陳可也， 所謂不欲正視云者極非矣。 元輔之尋單， 不是異事， 而領相撕捱， 既由於左相， 則左相豈不非乎？ 再筭所謂公傳云者尤非矣。” 寅明曰：“元輔尋單， 實不得已也。 左揆之事， 亦與無端引嫌有異， 而筭中一句語， 誠過矣。 此不過不欲相對之意也。” 上歷問諸臣， 命書傳教曰：
往者却膳， 往牒豈有？ 自爲過舉， 可見苦心。 在上者操太阿懲群下， 臣若無狀， 自有典憲。 噫！ 左揆之恒日秉公， 大小所知， 常時奏語， 亦無過偏， 頃者

	<p>르기를, “지난번에 각성한 것은 어찌 옛 사첩(史牒)엔들 있었겠는가? 스스로 지나친 거조를 한 것이었으니, 나의 고심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위에 있는 사람은 태아를 가지고 못신하를 징계하는 것이니, 만일 신하가 무상하다면, 저절로 전헌(典憲)이 있는 것이다. 아! 좌상이 평소 공정을 지켜 왔음은 대소의 사람들이 다 아는 바이고, 평소 진주(陳奏)하는 말 또한 지나치거나 치우침이 없었는데, 지난번의 차자는 어찌하여 이처럼 그릇되었던 것인가? 선주(宣酒)하고 사반(賜飯)한 뒤에 오히려 공사(公事)를 먼저 하지 않고 장황하게 탄 말을 늘어놓은 것은 부모를 섬기는 마음에 손상이 됨을 스스로 깨닫지 못한 것이었다. 지난번에 내린 비답은 경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향암(鄉闇)으로 처치한 대신(臺臣)은 오히려 중전(重典)으로 처치하려고 하는데, 그보다 몇 배나 되는 대료에게 만약 들리는 말이 없다면 장차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그 그릇됨을 엄중하게 보여서 신서(臣庶)들로 하여금 모두 임금의 고심을 알도록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였다. 당초에 임금이 파직하는 벌을 내렸는데, 송인명 등이 극력 청하여 고치니, 김재로(金在魯)가 듣고서 금오(金吾)에서 명을 기다리고 있으므로 임금이 하교하기를, “이제 와서 가차(假借)하는 것은 또한 예경(禮敬)에 흠이 되므로 특별히 윤택하여 면부(勉副)8930) 한다.” 하였다.</p>	<p>筭本，何若是謬乎？宣酒賜飯之後，猶不先公，張皇他說，自不覺有傷於爲親之心。頃者之批，謂卿心傷者也，處置鄉闇之臺臣，猶欲置於重典，挾他倍蓰之大僚，若無聞焉，其將奚謂？不可不嚴示其非，使臣庶咸知其君之苦心。上初施罷職之罰，寅明等力請改之。金在魯聞而胥命金吾，上教曰：“到此假借，亦欠禮敬，特許勉副。”</p>
<p>영조 47권, 14년 (1738 무오 / 청 건륭(乾隆) 3년) 1월 8일 (신유) 1번째기사 기곡제를 친행하다. 환</p>	<p>임금이 친히 기곡제(祈穀祭)를 행하였다. 환궁할 때에 영의정 이광좌(李光佐)가 혜정교(惠政橋)에서 지영(祇迎)하므로, 임금이 승지를 보내어 이광좌를 효유하여 거가(車駕)를 따르도록 하였으나, 이광좌가 정세와 병을 들어 간절하게 사양하며 명을 받들지 않고, 이어 관을 벗고 땅에 엎드려 죄주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도승지 김유경(金有慶)에게 명하여 전유(傳諭)하기를,</p>	<p>辛酉/上親行祈穀祭。還宮時，領議政李光佐祇迎于惠政橋。上遣承旨諭光佐，使隨駕。光佐以情病，懇辭不承命，仍免冠伏地請罪。上命都承旨金有慶傳諭曰：“今予駐輦，非使卿免冠</p>

궁 때 이광좌가 사직을 청하다. 김재로에게 서추 임명에 사은하라 하다

“지금 내가 연(輦)을 멈춘 것은 경으로 하여금 관을 벗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경이 만일 지금의 국사와 생민을 생각한다면 어찌 다시 정세를 말할 수 있겠는가?”
 하였으나, 이광좌가 땅에 엎드려 일어나지 아니하였다. 임금이 또한 김유경에게 명하여 관을 쓰도록 하였지만, 이광좌가 머리를 조아리며 고사(固辭)하였다. 또 사관(史官)에게 명하여 재차 전유하게 하고, 또 종백(宗伯)8931) 송진명(宋眞明)에게 명하여 전유하기를,
 “경은 각선하던 때를 잊어버렸는가? 만일 끝내 돌아보지 않는다면, 나는 회가(回駕)하지 않겠다.”
 하니, 이광좌가 부득이 명을 받들었다. 임금이 길에 연을 멈추고서 또한 관중추부사 김재로(金在魯)에게 하교하기를,
 “지난번에 경이 올린 차자는 비록 중도(中道)에 벗어난 것이었으나, 경이 상심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우하는 뜻에서 면부를 윤택했던 것이다. 서추(西樞)에 임명한 지 지금 며칠이 되었는데도 아직 임명에 사은(謝恩)하지 않고 있으니, 이 또한 마음이 미쁘지 않은 것인가? 다시 개의하지 말고 즉시 임명에 사은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날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 영의정 이광좌를 인견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좌상이 부모를 섬기는 마음으로 인해 갈등이 생기기에 이르렀으나, 경의 차자 내용은 지극히 온자(穩藉)하였다. 그가 비록 심각하게 인험하였으나, 경이 거취를 그와 똑같이 할 의리는 없는 것이다.”
 하였는데, 이광좌가 아뢰기를,
 “좌상이 신으로 연유하여 체직되었는데, 신이 홀로 태연하다면 이는 염치가 없는 것입니다. 신이 어찌 다시 정승의 직임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옛적에 임금이 마주 난간(欄干)에 임어하여 아홉 번 사명(使命)을 보낸 것도 오히려

也。 卿若念今國事生民，豈復言情勢乎？” 光佐伏地不起。 上又命有慶使之冠，光佐頓首固辭。 又命史官再次傳諭，又命宗伯宋眞明傳諭曰：“卿忘却膳時耶？終若邁邁，予不回駕。” 光佐不得已承命。 上駐輦路上，又下教于判府事金在魯曰：“頃者卿筭，其雖過中，知卿傷心，以禮許副。 西樞有命，今幾日矣，尚無謝命，此亦情志之不孚？勿復介意，其卽謝命。” 是日上御熙政堂，引見領議政李光佐。 上曰：“左揆因爲親之心，至生葛藤，而卿之筭辭，極穩藉矣。 彼雖深引，卿無去就與同之義。” 光佐曰：“左揆緣臣而遞，臣獨晏然，是無廉恥也。 臣豈可復行相職乎？古之臨軒九使，猶謂曠世絕榮，況臣乃蒙十餘遭恩召，而法駕久次於路左，臣罪尤難贖矣。” 上曰：“予之駐輦召卿，欲使萬民，知國家輔相之重矣。”

	<p>세상에 드문 대단한 영광으로 일컬어 왔는데, 하물며 신은 10여 차례의 은혜로운 소명(召命)을 받은데다가 법가(法駕)가 길에 오랫동안 머무르게 했으니, 신의 죄는 더욱 용서받기 어렵게 되었습니다.”</p> <p>하니, 임금이 이르기를,</p> <p>“내가 연을 멈추고 경을 부른 것은 만백성으로 하여금 국가에서 보상(輔相)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p> <p>하였다.</p>	
<p>영조 47권, 14년 (1738 무오 / 청 건륭(乾隆) 3년) 2월 29일 (신해) 3번째기사</p> <p>탁지의 경비가 모자라 선혜청의 곡식을 나누어 주자 하니 옳게 여기사</p>	<p>호조 판서 송진명(宋眞明)이 아뢰기를,</p> <p>“탁지(度支)의 1년 경비와 용도가 마땅히 11만 석(石)이어야 지탱하게 되는데, 올해의 세미가 6만 8천여 석에 불과하고, 또 두 차례 칙사가 겹쳐 왔으며, 또 옹주의 가례를 당했으니, 청컨대 우선 선혜청(宣惠廳) 쌀 3만 석을 한도로 나누어 주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p>	<p>戶曹判書宋眞明奏曰：“度支一年經用，當支十一萬石，而今年稅米不過六萬八千餘石。且兩勅疊到，又當翁主嘉禮，請以惠廳米限三萬石先割。” 上可之。</p>
<p>영조 47권, 14년 (1738 무오 / 청 건륭(乾隆) 3년) 2월 30일 (임자) 3번째기사</p> <p>금평위 박필성이 수연을 설행한다는 말을 듣고 장악원의 풍악을 내리다</p>	<p>임금이 금평위(錦平尉) 박필성(朴弼成)이 수연(壽宴)을 설행(設行)한다는 말을 듣고 장악원(掌樂院)의 풍악(風樂)을 내리었다. 박필성은 곧 효종(孝宗)의 부마로서 나이 90에 가까운데도 정력(精力)이 아직 왕성하므로 임금이 시(詩)를 지어 내려 칭송하고 연수(宴需)를 도와주고 법악(法樂)을 내리어 호사를 다하니, 한때의 경상(卿相)들이 연회에 가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시를 지어 찬미하니, 그 당세의 성사(盛事)로 전파되었다.</p>	<p>上聞錦平尉朴弼成行壽宴，命賜院樂。弼成卽孝廟駙馬也，年近九耄，而精力尙旺，上賜詩獎之，助其宴需，侈以法樂，一時卿相無不赴會，賦詩以美之，當世傳爲盛事。</p>
<p>영조 47권, 14년 (1738 무오 / 청 건륭(乾隆) 3년) 5월 19일</p>	<p>임금이 장차 태묘(太廟)에서 비를 빌려고 하자, 약방 도제조 김흥경(金興慶)·판중추 부사 김재로(金在魯)·우의정 송인명(宋寅明) 등이 한더위에 친히 비를 빌게 되면, 반드시 기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다 하여 극력 진달하니, 임금이</p>	<p>上將禱雨於太廟，藥房都提調金興慶、判府事金在魯、右議政宋寅明等力陳盛暑親禱，必有損傷之慮。上曰：“百</p>

<p>(경오) 3번째기사 태묘에서 친히 비를 빌려고 하자 신하들이 극력 만류하여 집행하게 하다</p>	<p>이르기를, “백관은 그래도 나무 그늘에 갈 수 있지만, 군병(軍兵)들은 노천(露天)의 폭양(暴陽)에 서 있어야 하니, 이것이 가엾다.” 하고, 대신이 집행(攝行)하도록 명하였다.</p>	<p>官猶就樹陰，而軍兵露立烈陽，是可矜也。”命大臣攝行。</p>
<p>영조 47권, 14년 (1738 무오 / 청 건륭(乾隆) 3년) 10월 15일(갑오) 1번째기사 1년 동안 경비로 쓸 공미(貢米)가 얼마인지 하문하고 근일의 저축을 한심해 하다</p>	<p>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고, 1년 동안 경비로 쓸 공미(貢米)가 얼마나 되는지 물었는데, 우의정 송인명(宋寅明)이 아뢰기를, “쌀이 14만 석(石)입니다. 면포(綿布)는 수량이 이보다 더한데, 합쳐서 24,5만 석이 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옛날에 유사(有司)의 신하들이 전곡(錢穀)의 수효를 아뢰지 않았던 것은 혹시 임금이 재용(財用)이 넉넉한 것을 알게 되면 도리어 예대(豫大)하는 일이 있을까 두려워해서인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한 문제(漢文帝) 때 저축이 쌓여 넘치면 가끔 천하의 조세(租稅)를 죄다 견감하는 일이 있었으니, 이것이 어찌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는가? 선혜청(宣惠廳)에서 아뢰는 월말(月末)의 문서는 항상 이런 뜻이 있는데, 근일의 저축은 진실로 한심하다.” 하였다.</p>	<p>甲午/上引見大臣備堂，問一年貢米經用爲幾何。右相宋寅明曰：“米爲十四萬石，綿布之數過此，合爲二十四五萬石也。”上曰：“古之有司之臣，不白錢穀之數者，或慮人主若知財用優裕，則反有豫大之舉，而予意則不然。漢文時儲積富溢，間有盡減天下之租，此豈不美乎？惠廳之奏月終文書，常有此意，而近日儲蓄，誠寒心矣。”</p>
<p>영조 47권, 14년 (1738 무오 / 청 건륭(乾隆) 3년) 12월 9일 (정해) 1번째기사 중전의 사친이신 잠성 부부인 이씨가 졸하니 복제를 논의하다</p>	<p>(전략)또 아뢰기를, “중궁전에서는 공제(公除)하는 날까지 소선(素膳)을 드시고, 세자궁(世子宮)에서는 성복(成服) 날까지 소선을 드십니다.” 하였다.</p>	<p>(전략)又啓言：“中宮殿限公除日，供素膳。世子宮限成服，供素膳。”</p>
<p>영조 47권, 14년 (1738 무오 / 청 건륭</p>	<p>임금이 소대를 행하고, 제도(諸道)에 분부를 내려 향음주례(鄉飲酒禮)를 거듭 밝히게 하였다.</p>	<p>乙巳/上行召對，下教諸道，申明鄉飲酒禮。</p>

<p>(乾隆) 3년) 12월 27일(을사) 1번째기사 임금이 소대를 행하고, 제도에 분부를 내려 향음주례를 거듭 밝히게 하다</p>		
<p>영조 48권, 15년 (1739 기미 / 청 건륭(乾隆) 4년) 1월 1일 (무신) 2번째기사 세수에 기곡(祈穀)하는 예를 정결하게 하라고 봉상 제조 박사정에게 하교하다</p>	<p>임금이 봉상 제조(奉常提調) 박사정(朴帥正)을 불러 하교하기를, “세수(歲首)에 기곡(祈穀)하는 것은 백성을 위하는 중대한 예(禮)이니, 모든 제물이 정결하도록 힘쓰게 하라.” 하니, 박사정이 말하기를, “예전에는 제조가 감독하여 봉진(封進)하는 규례가 없었습니다마는, 신(臣)이 성의(聖意)를 우러러 본받아 삼가 몸소 살피겠습니다.” 하였다. 박사정이 이어서 말하기를, “영월(寧越)의 호장(戶長) 엄흥도(嚴興道)의 후손이 영남(嶺南)에 있다고 하니, 마땅히 찾아서 거두어 써야 하겠습니다.” 하였다. 대개 엄흥도는 장릉(莊陵)9048) 이 승하한 때에 혼자 스스로 염습(殮襲)하고 재궁(梓宮)을 갖추어 장사를 지내 준 자였는데, 현종(顯宗) 때에 문정공(文正公) 송시열(宋時烈)이 이를 청하였으나, 있는 곳을 몰라서 드디어 그만두고 시행하지 못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박사정이 말하니, 임금이 윤허하였</p>	<p>上召奉常提調朴帥正教曰：“歲首祈穀，乃爲民之重禮， 粢盛庶品， 務致精潔。” 師正曰：“提調舊無監封之規，然臣仰體聖意，謹當躬視矣。” 師正仍言：“寧越戶長嚴興道後孫，聞在嶺南，宜訪問收用。” 蓋興道當莊陵昇遐時，獨自斂襲，具梓宮以葬者也。 顯宗時，文正公宋時烈嘗以是爲請， 而不知所在，遂寢不行。 至是師正以爲言， 上許之。</p>

<p>영조 48권, 15년 (1739 기미 / 청 건륭 (乾隆) 4년) 1월 6일 (계축) 4번째기사 밤에 소대하다. 검토관 오수채가 《대학연 의》를 읽다. 파할 때 감골을 내리다</p>	<p>다. 밤에 소대(召對)하였다. 유신(儒臣)인 검토관(檢討官) 오수채(吳遂采)가 《대학연의(大學衍義)》를 읽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연전에 보양관(輔養官) 이진망(李眞望)이 《소학(小學)》에 있는 성현의 아름다운 말을 초록(抄錄)하여 올렸으므로 원량(元良)에게 읽혔다. 지난번 원량이 저녁밥을 먹을 때에 내가 마침 원량을 불러오게 하였는데 입 안의 음식을 뱉어 내므로 옆에 있던 자가 물으니, ‘음식이 입에 있으면 뱉는다.’고 대답하였다. 능히 《소학》의 말을 거론하였으니, 참으로 기특하다.” 하자, 오수채가 말하기를, “동궁의 나이가 이제 겨우 다섯 살인데 이미 글을 읽고 몸소 행하는 보람이 있으니, 예지(睿知)가 보통보다 뛰어남을 상상할 만합니다.” 하였다. 오채수가 읽다가, ‘부모가 허물이 있으면’이라는 구절에 이르러 아뢰기를, “군신 사이는 부자 사이와 같으나, 간쟁(諫諍)할 때에는 임금과 아버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개 군신 사이에서는 의를 주장하므로 바른 것을 주장하여 범하는 것이 있을지언정 숨기는 것이 없는 것이니, 동렬(同列) 이하에 대해서도 감히 말할 수 없는 것을 감히 임금 앞에서 아뢰는 것은 다 임금을 사랑하는 정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夜召對。 儒臣檢討官吳遂采讀《大學衍義》。 上曰：“年前輔養官李眞望抄上《小學》聖賢微言， 令元良讀之。 向日元良夕食時， 予適命呼元良， 吐哺以出， 在傍者問之， 答曰：‘食在口則吐之。’ 能與《小學》， 語誠可奇也。” 遂采曰：“東宮年齡， 今纔五歲， 已有讀書體行之效， 可想睿知之出尋常也。” 遂采讀至父母有過句， 奏曰：“君臣猶父子， 而至於諫諍， 則君與父有異。 蓋君臣主義， 故以直爲主， 有犯無隱， 於敵以下， 不敢言者， 敢陳於君前者， 皆出於愛君之誠也。” 上曰：“然。 孝於親者， 必忠於君， 其心一也。” 遂采曰：“其心雖一， 其處義則不同。 臣之於君， 有不合則去， 數則斯辱之戒矣。” 上曰：“頃日豐原以營妓刷還事陳達， 其在勵廉恥之道， 不可不防閑， 而聞尙方、內局所屬， 亦有率畜者， 此其弊奚但營妓而已？” 參贊官李重庚曰：“官妓率畜， 誠非矣。 然年久之後， 男女嫁娶者， 亦不免刷還則可矜矣。” 上曰：“生產子女者， 已令勿論矣。 且侍從宣傳以上， 有賤產則許</p>
--	---	--

	<p>“그렇다. 어버이에게 효성한 자는 반드시 임금에게 충성할 것이니, 그 마음은 한가지이다.”</p> <p>하자, 오수채가 말하기를,</p> <p>“그 마음은 한가지일지라도 그 의리를 분별하여 지키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신하가 임금에게 대해서는 맞지 않으면 떠나고 잘못되면 욕된다는 경계가 있습니다.”</p> <p>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p> <p>“지난번 풍원(豐原)9049) 이 영기(營妓)를 쇄환(刷還)할 것을 아뢰었는데, 엄치를 힘쓰게 하니 도리로서는 막지 않을 수 없었지마는, 상방(尙方)9050)·내국(內局)9051) 소속도 첩으로 거느린 자가 있다 하니, 그 폐단이 어찌 단지 영기일 뿐이겠는가?”</p> <p>하니, 참찬관(參贊官) 이중경(李重庚)이 말하기를,</p> <p>“관기(官妓)를 첩으로 거느리는 것은 참으로 그룹니다. 그러나 헛수가 오래 지난 뒤에 혼인한 남녀도 쇄환을 면할 수 없다면 가엾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자녀를 낳은 자는 이미 논하지 말라고 하였다. 또 시종(侍從)·선전(宣傳) 이</p>	<p>令代口免賤，豈非法典乎？”重庚仍奏高城、龍安、奉化三邑戶長言，進上貿易及民少軍多之弊，上曰：“戶長雖微，既詢民瘼，何可置之？令備局問于本道。”臨罷，上下柑橘一盤，諸臣各納于袖。遂采仍奏成廟朝成希顏賜橘故事，上曰：“今聞儒臣言，予亦興感。筵臣誰有老親者乎？明日更當頒賜，其歸遺也。”臨罷，上下柑橘一盤，諸臣各納于袖。遂采仍奏成廟朝成希顏賜橘故事，上曰：“今聞儒臣言，予亦興感。筵臣誰有老親者乎？明日更當頒賜，其歸遺也。”</p>
--	---	--

	<p>상이 천첩(賤妾)에게서 낳은 자식이 있으면 천구(賤口)를 대신 세우고 천역(賤役)을 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찌 법이 아니겠는가?”</p> <p>하였다. 이중경이 이어서 고성(高城)·용안(龍安)·봉화(奉化) 세 고을의 호장(戶長)이 말한 진상(進上)을 위한 무역(貿易)과 백성이 적고 군사가 많은 폐단을 아뢰니, 임금의 말하기를,</p> <p>“호장은 미천할지라도 이미 민폐를 물었으니, 어찌 버려둘 수 있겠는가? 비국(備局)을 시켜 본도(本道)에 묻게 하라.”</p> <p>하였다. 과할 때에 임금이 감귤(柑橘) 한 반(盤)을 내리자, 여러 신하들이 각각 소매에 넣었다. 오수채가 이어서 성묘(成廟) 때에 성희안(成希顔)에게 감귤을 내린 고사(故事)를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이제 유신의 말을 들으니 나도 감동이 일어난다. 연신(筵臣) 중에서 누가 늙은 아버지가 있는가? 내일 다시 그 보낼 것을 마땅히 내리겠다.”</p> <p>하였다.</p>	
<p>영조 48권, 15년 (1739 기미 / 청 건륭(乾隆) 4년) 1월 14일 (신유) 1번째기사 당쟁의 실상에 대한 정언 홍정보의 상소문</p>	<p>정언(正言) 홍정보(洪正輔)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p> <p>“전하께서 매우 미워하시는 것은 당동 벌이(黨同伐異)이고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탕평(蕩平)입니다. 1백 년 동안 묵은 버릇이 이미 고질이 되어 하루 아침에 크게 바뀌어지기를 요구하기 어렵다면 여유를 두고 점점 물들여서 사라지기를 기다려도 본디 안될 것이 없습니다마는, 그 집안의 계책으로 삼아서 끝내 따르지 않는 자라면 참으로 이른바 굳이 친목하지 않는 자이니 성인이</p>	<p>辛酉/正言洪正輔上疏, 略曰: 殿下之所痛惡者黨伐也, 所欲致者蕩平也。 百年之宿習已痼, 一朝之丕變難責, 則優游漸漬, 以期消融, 固無不可, 而苟其作爲家計, 終始不服者, 眞所謂強不友者也。 雖使聖人當之, 亦當作</p>

	<p>말게 되더라도 강단으로 다스릴 것인데, 전하께서는 그러지 않고 처음에는 문을 닫고 그들이 스스로 따르기를 바라시고, 문을 닫아도 고치지 않으니 이어서 음식을 물리치시고, 음식을 물리쳐도 따르지 않았기에, 이런 천만 뜻밖의 거조(舉措)가 있으셨습니다. 신하로서 임금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본디만 번 죽여도 아까울 것이 없는데, 임금으로서 그 신하를 따르게 하지 못하고 어제와 같은 일을 하기까지 하셨으니, 또 그것이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십수 년 이래로 사대부의 풍습이 더욱 변하고 심술(心術)이 더욱 무너져 청탁(淸濁)이 중간에서 혼동되고 하찮은 일로 서로 다툽니다. 다들 당(黨)이 없다고 하나 실은 모두 당을 짓고 있어 예전에는 오히려 서녘이었던 것이 이제는 대여섯이 되어 가지가지로 온갖 궤이한 꼴을 보이니, 이들은 전하의 조정을 하나의 희극(戲劇) 마당으로 만들었습니다. 전하께서 지나친 거조를 하시면 조금 스스로 움츠러지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또 전의 버릇대로 따르니, 신은 오늘 이후에도 반드시 조금이라도 보람이 있지는 못하고 전하의 지나친 거조만 연장될까 염려됩니다. 오늘날의 계책으로는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가 있으면 명백히 그 죄를 바꾸어 그 나머지를 격려해야 하고, 또 연약한 조태언(趙泰彦) 같은 자를 법을 세우는 본보기로 삼아서는 안될 것입니다.”</p> <p>하였는데, 비답(妣答)하기를,</p> <p>“그 뜻이 처음 정사하는 때를 위한 것일지라도, 감히 대여섯이라는 따위의 말을 임금에게 다시 아뢰 수가 있는가?”</p>	<p>剛克，而殿下則不然，始則閉閣而欲其自服，閉閣而不改則繼之以却膳，却膳而不服，則乃有此千萬意外之舉。爲人臣子，不服君令者，固萬戮無惜，而爲人君不能服其臣，至爲昨日之舉，亦未知其何如也。十數年來，士大夫風習益變，心術益壞，涇渭中盪，蠻觸互爭。皆曰無黨，實則皆黨，昔猶三四，今爲五六，形形色色，百怪千態，此輩以殿下朝廷，作一戲劇之場。殿下有過舉，則稍自戢斂，不過數日，又循前套，臣恐今日以後亦未必有一分效益，而長殿下之過舉而已。爲今日之計，有不服令者，明正其罪，以礪其餘，又不可以如疲軟趙泰彦者，爲立法之芻蕘也。</p> <p>批曰：“其意則雖是，初政之下，敢以五六等說，更陳於其君乎？”</p>
<p>영조 48권, 15년 (1739 기미 / 청 건륭(乾隆) 4년) 1월 16일 (계해) 1번째기사</p>	<p>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다. 도제조(都提調) 김흥경(金興慶)이 말하기를,</p> <p>“날씨가 추워서 친경(親耕)하실 수 없겠습니다.”</p>	<p>癸亥/藥房入診。都提調金興慶言日寒不可親耕，上責以非禮。仍下教以親耕勸農之意，預飭諸道方伯守令。</p>

<p>약방에서 입진하다. 친경과 권농하는 뜻을 방백과 수령에게 신칙하게 하다</p>	<p>하니, 임금이 예(禮)에 어그러진다고 꾸짖고, 이어서 친경하고 권농(勸農)하는 뜻을 제도의 방백(方伯)과 수령(守令)에게 미리 신칙(申飭)하라고 명하였다.</p>	
<p>영조 48권, 15년 (1739 기미 / 청 건륭(乾隆) 4년) 1월 18일 (을축) 2번째기사 예조 판서 윤순이 친경의 그림을 올리니, 친경 때의 복색과 절차를 묻다</p>	<p>예조 판서(禮曹判書) 윤순(尹淳)이 청대하여 아뢰기를, “친경의 의주는 《오례의(五禮儀)》에 대강이 실려 있을 뿐이고 의거할 만한 다른 전고(典故)가 없으므로, 태상(太常)9072) 에 문의하여 겨우 두 그림을 만들어 재결을 앙퐁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림을 거두어 보았다. 윤순이 말하기를, “친경하여 쟁기를 다섯 번 미신 뒤에 대신(大臣)과 종신(宗臣)이 좌우에서 나란히 밭을 갑니다마는, 한 이랑 사이에 소 두 마리가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두 본(本)을 그렸는데, 하나는 짝지어 서서 나란히 가는 것이고 하나는 앞뒤로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짝지어 서고서야 나란히 가는 것이 될 수 있으니, 이것으로 의주를 정하도록 하라.” 하니, 윤순이 말하기를, “노주례(勞酒禮)에 경하(慶賀)하지 않고 상수(上壽)하지 않는다는 글이 있으며, 송(宋)나라의 《정화례(政和禮)》와 《대명집례(大明集禮)》를 상고하면 모두 경하와 사유(赦宥)를 하지 않는데, 아조(我朝)에서는 대개 드문 은전을 거행하기 때문에 경하를 아뢰고 선비를 시취(試取)합니다. 감히 위에서 재결하시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선농(先農)을 제사하고 친경한 뒤에 어찌 선사(先師)에게 예를 행하지 않겠는가? 선비를 시취하는 일은 이미 반포하였으므로 많은 선비를 속일 수 없는</p>	<p>禮曹判書尹淳請對奏曰：“親耕儀註，《五禮儀》只載大綱，無他可據之典故，問議太常，僅成兩圖，仰稟裁矣。”上取圖覽之。淳曰：“親耕五推後，大臣、宗臣左右耦耕，而一畝之間，難容兩牛。故摸寫兩本，一則雙立耦耕，一則先後成行矣。”上曰：“雙立而後，可成耦耕，以此定儀可也。”淳曰：“勞酒禮有不賀不上壽之文矣。稽諸宋之《政和禮》、《大明集禮》，俱不賀赦，而我朝則蓋以舉曠典，稱賀試士，敢請上裁。”上曰：“祀先農親耕之後，豈無展禮於先師乎？試士事，先已頒布，不可欺多士，況當謁聖年次？名之曰親耕後謁聖，以三月行焉。”親耕，舊例有大護軍侍衛之節。上問服色，淳對以無可據。上曰：“曾見摠府，有傳來甲冑而今則變爲貼裏。既稱將軍，何可着貼裏乎？左右衛將軍則具甲冑夾侍，上護軍依雲劍例，帽帶佩劍扶策，大護軍不可佩弓</p>

<p>영조 48권, 15년</p>	<p>데, 더구나 알성(謁聖)할 해를 당한 때이겠는가? ‘친경후알성(親耕後謁聖)’이라 이름하여 3월에 행하도록 하라.”</p> <p>하였다. 친경 때에는 전례에 대호군(大護軍)이 시위(侍衛)하는 절차가 있었는데, 임금이 복색을 물었다. 윤순이 의거할 만한 것이 없다고 대답하자, 임금이 말하기를,</p> <p>“전에 보니 총부(摠府)9073) 에 전해 오는 갑주(甲冑)가 있었는데, 이제는 칠릭[帖裏]9074) 으로 바뀌었다. 이미 장군(將軍)이라 칭하였으면 어찌 칠릭을 입을 수 있겠는가? 좌우위(左右衛)의 장군은 갑주를 갖추고 양편에서 시위하게 하라. 그리고 상호군(上護軍)이 운검(雲劍)의 예(例)에 따라 모대(帽帶)를 갖추고 검을 차고 책(策)을 잡으면, 대호군은 궁시(弓矢)를 차고서 편(鞭)을 잡을 수 없을 것이다.”</p> <p>하였다.윤순이 말하기를,</p> <p>“승지(承旨)가 전해 내리는 것은 외선온(外宣醞)이라 하고 중관(中官)이 전해 내리는 것은 내선온(內宣醞)이라 하여 찬품(饌品)이 각각 다른데, 어떻게 거행해야 하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외선온은 너무 소략하니 내선온으로 거행하되 주원(廚院)9075) 을 시켜 다례(茶禮)의 예에 따라 유밀과(油密果)는 제외하게 하고, 선온할 때에 대신(大臣)에게는 녹사(錄事)가 음식을 바치고 경재(卿宰) 이하에게는 서리(書吏)가 임시로 거행하고 기민(耆民)에게는 위졸(衛卒)이 자의(紫衣)·자건(紫巾)을 갖추고서 거행하는 것이 가하다.”</p> <p>하고, 또 하교하기를,</p> <p>“노주(勞酒) 때에는 마땅히 소를 잡아서 음식을 장만해야 하겠으나, 친경하여 농사를 권장할 때에 농우(農牛)를 죽일 수 없으니 돼지로 갈음하도록 하라.”</p> <p>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교서(敎書)를 반포하고 선온(宣醞)하였다. 교</p>	<p>矢，而執鞭矣。” 淳曰：“親耕田畔，不可無環衛矣。” 上曰：“設布帳可也。” 淳曰：“承旨所宣，爲外宣醞；中官所宣，爲內宣醞，而饌品各異，何以舉行乎？” 上曰：“外宣醞太略，以內宣醞行焉，而令廚院依茶禮例，除油蜜果。 宣醞時，大臣則錄事進饌，卿宰以下，書吏權行之，耆民則衛卒以紫衣巾行之可也。” 又敎曰：“勞酒當槌牛設饋，然親耕勸農，不可殺農牛，以猪代之。”</p> <p>丙子/上御仁政殿，頒敎宣醞。</p>
--------------------	---	--

<p>(1739 기미 / 청 건륭(乾隆) 4년) 1월 29일 (병자) 1번째기사 인정전에 나아가 친경 후에 교서를 반포·선운하고 노주례를 행하다</p>	<p>서에 이르기를, “왕은 이르노라. 천시(天時)에 따라 월령(月令)을 행하되 전사(田事)를 먼저 하니, 적전(籍田)에 가서 농사를 가르치되 경례(耕禮)를 크게 거행하였다. 그러므로 돌아와 정전(正殿)에서 연음(宴飲)하고 사방에 포고한다. 생각하건대, 이 어려운 농사는 실로 임금이 힘써야 할 바이다. 종사(宗祀)를 받들되 갖은 제물을 바쳐야 그 덕이 향기롭고, 민산(民產)을 다스리되 섬기고 기르는 물자를 주어야 먹을 것이 넉넉하니, 온갖 예(禮)의 용도는 여기에 힘입고 한 해의 일은 이에 따라 이루어진다. 대개 나라를 넉넉하게 하고 백성을 풍족하게 하는 것이 여기에 달려 있으니 반드시 부지런히 힘써서 거두어야 하는데, 밭에서 일하고 농사에 힘쓰는 것이 매우 고생스러우니 어찌 권장하는 방도를 늦추겠는가? 그러므로 예경(禮經)에 있는 친경(親耕)의 의례를 상고하였는데, 이는 본디 임금이 몸소 술선하는 교화를 위한 것이다. 대저 하(夏)·은(殷)·주(周)의 성세(盛世)에서는 모두 천하를 앞장서 이끌어 농사를 밝혔고, 한(漢)·당(唐)·송(宋) 같은 중치(中治)의 때에도 큰 근본을 능히 알아서 적전을 닦았다. 이는 다 나라의 중요한 것으로 누구나 때에 따라 행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아! 우리 국가는 더욱이 이 전례(典禮)를 숭상하였다. 열조(列朝)에서 몸소 경작하는 덕에 힘썼으니, 대개 옛일을 본떠 여러 번 거행하셨으나, 영고(寧考)9081)께서 예경의 글을 참작하고 그 의례를 갖춘 것을 탄복하고도 거행하지 못하셨다. 내가 부탁받은 책무를 맡아 뿌리고 거두려는 마음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여, 한 사람도 굶주리지 않게 하려 하고 도롱이를 입고 근로할 생각을 늘 품었다. 백무(百畝)의 밭을 잘 다스리지 못할까 염려하는 농부 중에서 누가 비단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는 사람의 불안함을 알겠는가? 새해 처음에 농사를 권장하는 말이 어찌 나의 걸치레이겠는가? 첫 신일(辛日)에 농사를 비는 예(禮)를 행하여 내가 바르고 밝게 하는데 어찌하여 재앙이 거듭 이르러 농사가 여러 번 흉년이 드는가? 농사를 이미 그르쳐 재삼(載芟)9082)</p>	<p>王若曰，順天時而行令，田事爲先，卽王籍而訓農，耕禮載舉。肆返飲於太寢，用播告于多方。念茲稼穡之維艱，實爲帝王之攸務。奉宗祀而供粢盛之備，厥德維馨；制民產而給事育之資，庶食斯奏，百禮之用是賴，一歲之功乃成。蓋裕國足民之在茲，必待勤勞而獲，而服田力穡之甚苦，詎緩勸課之方？爰稽禮經親耕之儀，寔本人君躬率之化。夫以夏、殷、周盛世，咸先率天下而明農，乃若漢、唐、宋中治，亦能知大本而修籍，斯皆有國之重，莫不以時而行。於赫我家，尤崇斯典，列朝務躬稼之德，蓋嘗倣古而累修，寧考酌禮經之文，幾歎具儀而未舉。逮予任付荷之責，靡懈肯播種之心，欲一夫之無飢，常懷襁褓之勤動。憂百畝之不易，誰知錦玉之靡安？首歲課農之音，豈予文具？上辛祔年之禮，以我齊明，奈何災沴之荐臻，而致年穀之屢歉？耕稼既失，久絕載芟之歌；捐瘠莫蘇，每多苦飢之歎。是予勤民之念，不足以迓天休；是予重農之方，不足以盡地利。永念民憂維棘，莫如躬服其勞。方春之布陽和，政急南畝之俶</p>
--	---	--

의 노래는 오랫동안 끊겼고, 버려져 여윈 자가 회복하지 못하여 괴롭고 굶주리는 한탄이 늘 많았다. 이는 내가 백성을 부지런히 근심하는 생각이 하늘의 복을 받을 만하지 못하고 내가 농사를 중히 여기는 방도가 땅에서 생기는 이익을 다할 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백성의 근심이 극심함을 오래도록 생각하더라도 내가 그 노동에 종사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

바야흐로 봄날이 화창하여 바로 밭에서 일을 시작할 때인데 더구나 동교(東郊)의 옛 의례가 있었던 곳이겠는가? 그래서 예조(禮曹)의 신하에게 하교하고 사농(司農)의 관속에게 분부하여, 늦벼·올벼 씨를 바치고 농구(農具)를 가리게 하되 길일은 원진(元辰)9083)에 잡고, 제단에 나아가 선농을 제사하되 음악은 태주(太簇)9084)에 맞추었다. 청굉(靑紘)9085)을 갖추고 새벽에 거가(車駕)가 떠나니 적전의 의례를 어기지 않았고, 검푸른 쟁기를 메우고 큰 고삐를 잡으니 신에 흠이 묻는 노고를 꺼리지 않았다. 나란히 밭갈 때에는 너희 공경(公卿)이 서로 자리잡고 쟁기를 밀 때에는 일곱 또는 아홉 번 하는 차례가 있었다. 옥좌에 앉아 뿌리고 심는 어려움을 염려하여도 예전에는 대궐에서 겨를이 없었으나, 현면(玄冕)9086)을 갖추고 농구를 잡고서 이번에는 밭에서 친경하였다. 봄에 무엇을 바라겠는가? 단지 사람의 일에 힘써 농사를 부지런히 할 뿐이다. 그래야 가을에 거둘 것이 있어 신륵(神廩)이 차서 겨울·가을 제사에 제물 바치는 것을 볼 것이고, 봄 제단 가에서 피꼬리가 울고 쟁기를 단 검푸른 끝채를 보고서 전준(典峻)9087)이 기뻐할 것이니, 백 년 동안 폐지되었던 전례(典禮)를 거행하는 것이 어찌 태평하고 안락한 뜻에서 나왔겠는가? 팔도의 못사람이 듣는 바를 용동(聳動)시켜 참으로 권하여 이끄는 뜻을 붙인 것이니, 한 번 밭가는 일이 끝나자 열 줄의 교서를 크게 편다. 아! 내가 이미 몸소 먼저 힘썼으니 조금이라도 버려두고 짓지 않음이 없도록 하라. 근검(勤儉)으로 나라를 이끌어 시초에 새롭게 교화하기를 힘쓰니, 효제(孝悌)하고 농사에 힘써 너희 풍속을 크게 바꾸기 바란다. 그러므로 이에 교시(教宗)하니

載。是月也親耒耜，況有東甸之舊儀？爰格宗伯之臣，分命司農之屬，獻種稷而簡時器，吉卜元辰；躋壇墠而祀先農，樂叶太簇。靑紘星駕，禮罔愆於稅田；黛耜洪縻，勞不憚於染屨。其耦則爾公爾卿之相亞，其推則或七或九之有倫。臨玉辰而軫播植之艱，昔靡違廈氈之上，儼玄冕而執錢鎛之具，今乃親溝塍之間。維春何求？只爲勉人工而勤樹藝，乃秋有穫，將見充神廩而供蒸嘗。傍靑壇而鷓鴣鳴，瞻紺轅而田峻喜。修百年之曠典，豈出豫大之圖，聳八域之群聽，實寓課率之意。一壤之耕纔訖，十行之綸誕敷。於戲！予旣躬先勞，罔或昏不作。勤儉率國，勵新化於一初；孝悌力田，期爾俗之不變。故茲教示，想宜知悉。【藝文提學尹惠教製進。】

宣教官李德重讀訖，上命侍衛諸臣皆坐宣醞。親耕時執事諸臣引籍田耕民、耆老于殿庭，行勞酒禮。登歌樂作，耆民、庶人各服親耕時服，以次入就拜位，無唱四拜訖，各就坐東西位，執事者【衛軍。】各排饌器於耆民、庶人之前。內資寺官酌酒【醴酒。】以授

잘 알아야 할 것이다.”【예문 제학(藝文提學) 윤혜교(尹惠教)가 지어 올렸다.】

하였는데, 선교관(宣敎官) 이덕중(李德重)이 읽었다. 끝나고서 임금이 시위(侍衛)하는 여러 신하들에게 명하여 다 앉게 하여 선은(宣醞)하고, 친경(親耕) 때에 집사(執事)한 신하들이 적전(籍田)에서 밭간 백성과 기로(耆老)를 전정(殿庭)에 인도하여 노주례(勞酒禮)를 거행하였다. 등가악(登歌樂)이 연주되기 시작하니, 기민(耆民)·서인(庶人)이 각각 친경 때의 옷을 입고 차례로 들어와 배위(拜位)에 나아가 창(唱) 없이 사배(四拜)하였다. 끝나고서 각각 동서위(東西位)에 가서 앉으니, 집사자(執事者)【위군(衛軍).】가 각각 기민·서인 앞에 찬기(饌器)를 벌여 놓았다. 내자시(內資寺)의 관원이 술【단술.】을 따라 집사자에게 주고 집사자가 잔을 돌리니, 기민·서인이 다 자리에서 비켜서 부복하고 꿇어앉아 잔을 받았다. 끝나고서 자리로 돌아가니 두 번째 잔을 돌리고 세 번째 술을 따를 때에 이르러서는 위의 의식과 같이 하였다. 조금 있다가 집사자가 찬기를 치우니, 기민·서인이 배위로 돌아가 창 없이 사배하였다. 끝나고서 좌통례(左通禮)가 동계(東階)로 해서 올라가 어좌 앞에 나아가 부복하고 꿇어앉아 예가 끝났음을 아뢰니, 【찬의(贊儀)가 또한 “예필(禮畢)”이라 창하였다.】 등가악이 그쳤다. 임금이 밭을 간 백성에게 먹인 음식을 가져오라고 명하여 친히 보고 말하기를,

“아주 박하지는 않다.”

하였다. 대비전(大妃殿)에서 떡 6가(架)와 술 20병(瓶)을 특별히 내렸는데, 임금이 백성에게 나누어 내리라고 명하고 말하기를,

“오늘의 이 성대한 행사에 너희들은 한껏 취하고 배불리 먹어야 한다.”

하고, 또 하교하기를,

“임금이 의지하는 것은 백성이고 백성이 의지하는 것은 먹는 것이니, 너희들은 오늘 취하고 배부른 것을 잊지 말고 부지런히 힘쓰라.”

執事者，執事者行爵，耆民、庶人皆離位俯伏跪，受爵訖，還復位，行二爵至三酌，如上儀。少頃，執事者撤饌器，耆民、庶人還就拜位，無唱四拜訖，左通禮陞自東階，進當座前俯伏跪，啓禮畢，【贊儀亦唱禮畢。】登歌樂止。上命取耕民饋饌，親覽曰：“殊不薄矣。”大妃殿特下餅六架、酒二十瓶，上命分賜民人曰：“今日是盛舉，若等須盡醉飽。”又教曰：“王者所依者民，民所依者食，若等毋忘今日醉飽，勤力農作。”又命入侍諸臣，盡醉極歡而罷。右相宋寅明引罪不出，至是以上親耕，出而從駕，仍參宣醞。寅明主蕩平之論，與李光佐意不合，竝相未幾，光佐遭彈迸出，寅明獨專廟謨。及傳位教下，光佐造朝，寅明托辭引入也。宗臣密昌君穢等進言：“殿下舉累朝未遑之典，而尚未上壽於東朝，臣民誠抑鬱，請陳稟東朝，少伸情禮。”大臣、禮官又相繼言之，上曰：“東朝謙抑，恐難得力矣。”

	<p>하고, 또 입시(入侍)한 여러 신하들에게 명하여 한껏 취하고 즐기고서 과하게 하였다. 좌상(左相) 송인명(宋寅明)이 인책하고 출사(出仕)하지 않았는데, 이때에 이르러 임금이 친경하기 때문에 출사하여 거가(車駕)를 따라가고 이어서 선은에 참여하였다. 송인명은 탕평(蕩平)의 논의를 주장하여 이광좌(李光佐)와 뜻이 맞지 않았는데, 함께 정승이 된 지 얼마 안 가서 이광좌는 탄핵을 받아 나가고 송인명이 혼자서 조정의 계책을 오로지 하였다가, 전위(傳位)한다는 하교가 내려졌을 때에 이광좌가 조정에 나아가니, 송인명이 핑계삼아 인퇴하였다. 종신(宗臣)인 밀창군(密昌君) 이직(李穡) 등이 나아가 말하기를, “전하께서 여러 조정에서 겨를이 없었던 전례(典禮)를 거행하였으나 아직 동조(東朝)9088) 에 상수(上壽)9089) 하지 못하셨으므로 신민이 참으로 억울하게 여기니, 동조께 여쭙어 정례(情禮)를 조금 펴소서.”</p> <p>하고, 대신(大臣)·예관(禮官)도 잇달아 말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동조에서 겸손하시니 힘을 얻기 어려울 듯하다.”</p> <p>하였다.</p>	
<p>영조 49권, 15년 (1739 기미 / 청 건륭(乾隆) 4년) 3월 10일 (병진) 2번째기사</p> <p>진연은 사체가 중대하다 하여 무명을 새로 장만하도록 명하다</p>	<p>호조에서 아뢰기를,</p> <p>“알성(謁聖)과 진연(進宴) 때에 막차(幕次)에 가는 것은 사약(司鑰)이 아람에 따라 새로 장만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병진년(9129) 이후로 막차에 공급하는 무명의 수가 매우 많았고 지난 가을에 새로 장만한 물건이 모두 있으니, 청컨대 그대로 쓰게 하소서.”</p> <p>하였으나, 임금이 진연은 사체(事體)가 중대하다 하여 새로 장만하라고 명하였다. 대개 막차에 가는 것은 그 비용이 매우 많은데도 일이 있을 때마다 새로 장만하였으나, 실은 전에 만든 것을 그대로 쓰고 새로 장만한 적이 없는데 액정서(掖庭署)의 이속들이 중간에서 값을 받아 죄다 사용으로 돌렸다. 그러</p>	<p>戶曹啓: “謁聖及進宴時, 幕次鋪陳, 因司鑰啓下, 有新備之命。 然而丙辰以後, 幕次所供綿布, 數極夥然, 而去秋新備之物俱在, 請仍用。” 上以進宴事體之重, 命新備。 蓋幕次鋪陳所費, 極浩大, 而每有事, 輒改備。 然其實仍用前造, 未嘗新備, 而掖屬輩, 從中受價, 盡歸私用。 故版曹經費, 由是大窘, 而御幕鋪陳之屬, 往往腐黑破裂, 所見駭異, 然上亦不問也。</p>

	<p>므로 판조(判曹)9130) 의 경비가 이 때문에 크게 군색하고 어막(御幕)의 까는 것들이 흔히 썩어 검고 깨지고 찢어져 보기에 해괴하였으나 임금의 묻지 않았다.</p>	
<p>영조 49권, 15년 (1739 기미 / 청 건륭(乾隆) 4년) 3월 29일 (을해) 2번째기사 단경 왕후를 부묘하지 못하였는데 하향 등을 당하여 실행할 것인지를 묻다</p>	<p>임금이 단경 왕후(端敬王后)를 미처 부묘(祔廟)하지 못하였는데 먼저 하향(夏享)·삭향(朔享)과 신천(親薦)할 때를 당하였다 하여 실행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모으게 하였다. 우의정 송인명이 의논하기를, “아직 시호를 칭하고 신주를 고치기 전이므로 종묘의 예를 쓸 수 없겠습니다. 외간의 의논은 문소전(文昭殿)의 옛 제도를 써서 어육(魚肉)을 익혀서 진설(陳設)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부묘의 예에 정성을 오로지해야 할 것이니 의절(儀節)에 관한 일은 미처 겨를이 없었더라도 불가하지 않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전혀 제향을 빠뜨릴 수 있겠는가? 하향은 실행하지 못하더라도 삭망(朔望)은 전례(奠禮)로 실행하라.” 하였다.</p>	<p>上以端敬王后未及祔廟，而先值夏享、朔享及薦新之節，設行當否，令收議。右議政宋寅明議曰：“未請諡未改主之前，不可用宗廟禮。外議以爲用文昭殿舊制，熟設魚肉似宜。臣意則當專誠於祔廟之禮，儀節間事，雖未及違，不爲不可。”上曰：“豈可全然闕享？夏享雖未行，朔望以奠禮設行。”</p>
<p>영조 49권, 15년 (1739 기미 / 청 건륭(乾隆) 4년) 4월 12일 (무자) 1번째기사 동조에 진연(進宴)하다</p>	<p>임금이 동조(東朝)에 진연(進宴)하였다. 대비(大妃)가 성품이 겸손하여 성대하게 즐기는 일을 좋아하지 않으므로 임금도 굳이 청하지 못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조정에서 청하기 때문에 비로소 애써 받으니, 못 신하가 상서하여 축하하였다.</p>	<p>○戊子/上進宴東朝。大妃性謙抑，不喜豐務之舉，上亦不能強請。至是，因朝廷之請，始勉受之，群臣上書稱賀。</p>
<p>영조 49권, 15년 (1739 기미 / 청 건륭(乾隆) 4년) 4월 16일 (임진) 1번째기사 나이가 70인 조신 등</p>	<p>나이가 70세인 조신(朝臣)과 나이가 80세이고 자손이 있는 사서(士庶)에게 연수(宴需)를 헤아려 주게 하였다. 임금이 동조(東朝)에 잔을 올리고 나서 은혜를 추시(推施)하여 이 명을 내렸다.</p>	<p>壬辰/令朝臣年七十、士庶年八十有子孫者，量給宴需。上既稱觴東朝，推恩施惠，下是命。</p>

에게 연수(宴需)를 헤아려 주게 하고 은혜를 추시하다		
영조 49권, 15년 (1739 기미 / 청 건륭(乾隆) 4년) 5월 20일 (을축) 2번째기사 군문에 명하여 죽을 장만하고 수가하는 군사들을 먹이게 하다	여러 군문(軍門)에 명하여 죽을 장만하고 수가(隨駕)하는 군사들을 먹이게 하였다.	命諸軍門設粥，饋隨駕軍兵。
영조 49권, 15년 (1739 기미 / 청 건륭(乾隆) 4년) 5월 23일 (무진) 5번째기사 친경한 적전(籍田)의 보리를 태묘(太廟)에 바치고 혜청(惠廳)에서 진상하는 것을 멈추라고 명하였다.	친경(親耕)한 적전(籍田)의 보리를 태묘(太廟)에 바쳤다. 또 동조(東朝)에 바치고 혜청(惠廳)에서 진상하는 것을 멈추라고 명하였다.	薦親耕籍田大麥於太廟，又命進獻東朝，停惠廳進上
영조 49권, 15년 (1739 기미 / 청 건륭(乾隆) 4년) 6월 11일 (병술) 4번째기사 야대를 행하다	임금이 야대를 행하였다. 선운(宣醞)9215) 하고 친히 오언 율시(五言律詩)를 지어 신하들을 시켜 화답하여 바치게 하였다.	上行夜對，宣醞。御製五言律詩，使諸臣和進。
영조 49권, 15년 (1739 기미 / 청 건륭(乾隆) 4년) 7월 12일 (병진) 1번째기사 야대를 행하고 선운하	임금이 야대를 행하고 선운(宣醞)하였다.	○丙辰/上行夜對，宣醞。

<p>다</p> <p>영조 49권, 15년 (1739 기미 / 청 건륭(乾隆) 4년) 7월 17일 (신유) 1번째기사 헌부에서 약원의 서약을 대내로 들여간 중관을 국문할 것 등을 아뢰다</p>	<p>헌부【장령 유건(柳謩)이다.】에서 전계를 다시 아뢰고, 또 아뢰기를, “약원의 서약(署藥)을 대내(大內)로 들여가는 것을 중관(中官)이 여러 번 위에서 분부한 것이라고 속였으니, 엄히 국문하여 정상을 알아 내소서. 감찰(監察) 원득문(元得文)은 시골의 비천한 자이니, 청컨대 태거하소서. 문화 현령(文化縣令) 목천수(睦天壽)는 마음이 혼란하여 전념하지 못하니, 파직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유건은 여러 번 대간이 되어 문득 사람을 논하였으나 실은 주견이 없고 흔히 남의 지휘를 받았으므로, 임금이 본디 경시하여 처음부터 가부를 말하지 않았다.</p>	<p>辛酉/憲府【掌令柳謩。】申前啓。又啓：“藥院暑藥之內入者，中官累次矯旨，請嚴鞫得情。監察元得文鄉曲卑賤，請汰去。文化縣令睦天壽昏憤不事，請罷職。”批以勿煩。謩屢爲臺諫，輒論人，然實無主見，多聽人指揮，故上素輕之，初不可否也。</p>
<p>영조 49권, 15년 (1739 기미 / 청 건륭(乾隆) 4년) 7월 29일 (계유) 1번째기사 광주 부윤 민통수가 상소하여 이광좌의 상소에 대해 변명하다</p>	<p>(전략)이광좌가 선신의 말을 듣고도 오히려 태연하게 끝내 상소하지 않았으니, 그 마음을 둔 바는 못사람의 손이 가리킬 만한 것(9246) 이 아니겠습니까? 그 수작하고 왕복한 실상은 절로 이처럼 엄폐할 수 없는데 도리어 신을 황당한 이야기로 돌리려 하니, 그 계책이 엉성합니다. 대개 당시에 수작한 것은 역변이 처음 일어났을 때에 있었으므로, 이형좌가 선신에 대하여 말한 것은 전에 상소하여 아뢰는 것에 그칠 뿐이 아니며, 또한 이형좌만이 그러하였을 뿐 아니라 그때의 한 무리가 대저 그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심(聖心)이 변하지 않고 징토가 엄하지 않았으니 반년 뒤에 다시는 이런 말을 듣지 못하였거니와, 이제는 모두 덮어 숨기려는 것입니까? 이광좌가 병환을 숨겨 어지럽게 만든 정상은 본디 회미해서 알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때 설정하지 않았을 뿐더러 주원(廚院)9247)에 이직(移直)한 것도 이미 망극한 지경에 이른 뒤에 있었고, 독삼차(獨蓼茶)로 말하더라도 다음(茶飲)이라고 소보(小報)에 쓰여져 나왔습니다. 선신이 성주(星州)의 적소(謫所)에 있을 때에 갑자기 국상(國喪)을 듣고 곧 주성(州城)에 들어가 그대로 머물러 성복(成服)할 즈음에 지난 조지(朝紙)를 얻어 보았더니 대점(大漸) 전일의 소보 가운데에 ‘다음을 하</p>	<p>使光佐聞先臣之言，而猶且落落，終不陳疏，則其心所在，豈非十手可指乎？其酬酢往復之實狀，不能自掩如此，而反欲歸臣於慌說，其於計疎矣。蓋當時酬酢，在於逆變初起之時，故衡佐之對先臣爲言者，不但止於前疏所陳，而亦不獨衡佐爲然，其時一隊，大抵如此。既而聖心無變，懲討不嚴，則一半年後，不復聞此等語矣，今乃欲一并掩諱耶？光佐諱疾致亂之狀，元非黯昧難知者也。其時不惟不設廳，其廚院移直，亦在於已到罔極地頭之後，至於獨蓼茶，亦以茶飲，書出於小報。先臣在星州謫所，猝聞國哀，卽入州城，仍留受服之際，得見過去朝紙，則</p>

였다.’는 등의 말이 있으므로, 선신이 궤이하게 여겨 ‘이것은 어떤 다음인데, 다명(茶名)을 쓰지 않았는가?’ 하였습니다.

을사년(9248) 조정에 돌아온 뒤에 내국(內局)에서 돌아와 신에게 말하기를, ‘성주에 있을 때에 소보 가운데에서 본 이른바 다음이라는 것은 이제 약원 일기(藥院日記)에서 상고하니 독삼차였다. 그때 소보에 다음(茶飲)이라고 한 것은 매우 궤이하다.’ 하였습니다. 대저 약원의 규례는 임금이 드시는 약은 소엽(蘇葉)·금은화(金銀花) 같은 것일지라도 반드시 그 이름을 쓰는 것인데, 이제 독삼차를 사용하고도 범연히 다음이라 칭하였으니,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렇게 하고도 ‘모두 조보(朝報)에 내서 온갖 사람에게 분명히 알렸다.’고 한 것은 누가 속이는 것입니까? 소보에 난 것이 이러하므로 서울에 있는 조사(朝士) 중에도 성후(聖候)가 독삼차를 쓰기에 이른 것을 모른 자가 있었습니다. 신이 기유년(9249)에 우연히 함원 부원군(咸原府院君) 어유귀(魚有龜)와 그때의 일을 언급했을 때에 어유귀가 슬피 말하기를, ‘그때 내가 사친(私親)의 복을 입었으므로 대궐 안에 출입하지 못하고 내간(內間)에서 전하는 것에 따라 성후가 위중함을 알기는 하였으나 조보에 쓴 것이 대수롭지 않으므로 드시는 약물은 막연히 몰랐는데, 하루는 삼차(蔘茶)를 달려 드셨다는 말을 듣고 내국(內局) 9250)에 물었더니 과연 그러하였다. 이어서 부부인(府夫人)을 재촉해 들어오게 하라는 명이 있으므로 못 견디게 놀라서 대궐로 달려갔는데, 이날 밤에 큰 슬픔을 당하였다. 내가 국척(國戚)으로서 서울에 있었는데도 알 수 없었으니, 중외(中外)에서 모르고서 놀라 의혹한 것이 마땅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우참찬 윤양래(尹陽來)도 일찍이 어유귀의 말을 친히 들었으므로, 무신년(9251) 이후에 안동 부사(安東府使)가 되어 그 이야기로 백성에게 효유(曉諭)하였다 합니다. 아! 그 숨긴 것이 삼차를 다음이라 하기에 이르러 국구(國舅)도 알 수 없었으니, 중외에서 모르고서 놀라 의혹한 것은 실로 사세가 반드시

大漸前日小報中，有進御茶飲等語，先臣怪之曰：“此何許茶飲，而不書茶名耶？”乙巳還朝後，嘗自內局歸，謂臣曰：“星州時所見小報中，所謂茶飲，今考藥院《日記》，則乃獨蔘茶也。其時小報之謂茶飲，極是可怪。”云。夫藥院規例，君父所進之藥，雖蘇葉、金銀花之屬，猶必直書其名，今用獨蔘茶，而泛稱茶飲，此何意耶？如此而曰皆出朝報，昭布萬目者，其誰欺乎？小報所出如此，故在京朝士，亦無知聖候之至用獨蔘茶者。臣於己酉，偶與咸原府院君魚有龜語及其時事，有龜感然曰：“其時吾持私服，不得出入闕中，因內間所傳，雖知聖疾之危重，朝報所書輕歇，凡所進藥物，漠然不知。一日得聞蔘茶煎進，問之內局則果然矣。仍有府夫人催入之命，不勝驚遑，奔詣闕下，是夜仍遭大感。吾以國戚在京，而猶不能知，宜乎中外之不知，而驚惑也。”右參贊尹陽來亦嘗親聞有龜言，戊申後爲安東府使，以其說曉諭民間云。噫，其所秘諱，至以蔘茶謂茶飲，國舅亦不能知，則中外之不知而驚惑，實是事勢之所必至。故先臣與臣兄之

그렇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신과 신의 형이 성무(聖誣)를 변명하려 할 때에 반드시 병환을 숨긴 일을 거론하여 말하는 것은 대개 흉악한 말의 근원을 갈라 부수어 중외의 사람마다 환히 알아서 의혹이 없게 하고 흉적이 감히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으니, 그 고심과 혈성은 아홉 번 죽어도 후회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광좌의 한 마디 말을 얻어내려 한 것으로 말하면 혹 그 사실이 분명히 나타나서 흉악한 무함이 통렬히 밝혀지기를 바란 것이었으나 마침내 얻어 낼 수 없었습니다. 그 실정을 알아보면 참으로 또한 슬픈데, 선신이 이 때문에 여러 번 미안한 하교를 받고 마침내 구천 아래까지 한을 품고 가게 되었고, 신의 형이 또 북으로 남으로 귀양가서 거의 장차 길에서 다니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신이 밤낮으로 매우 원통하여 하늘에 호소하여 마지않는 까닭인데, 저 이광좌가 전후에 스스로 변명한 상소에는 일언 반구도 이 일의 실제에 미친 말이 없고 다만 ‘숨기지 않았다.’ 하고 또 ‘미처 설청(設廳)하지 못한 것은 전하께서 아시는 것이다.’ 하여 반드시 갑작스러워서 겨를이 없었다는 빛을 보이려 하니, 이것은 마침 적기(賊氣)를 조장할 만한 것입니다. 지난 번 비지(批旨) 가운데에 ‘나를 무함한다.’라고 하신 말씀은 이광좌를 위로하는 데에서 나왔을지라도 이것은 실로 전하께서 우연히 하신 말씀일 뿐이니, 이광좌가 조금이라도 신하의 의리를 안다면 어찌 감히 다시 제기하여 버젓이 나타내어 말하여 마지않고 이제 또 마치 증거가 있는 듯이 벌여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대저 시약청(侍藥廳)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본디 저군(儲君)에게 품령(稟令)할 것이 아니므로, 기해년(9252) 대상(大喪) 때에 약원(藥院)의 신하들이 겨를 없이 갑작스러워서 미처 설청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대관(臺官)이 삭출하기를 계청(啓請)하니, 현묘(顯廟)께서 윤허하셨습니다. 진실로 설청하고 안하는 것이 동궁(東宮)에 관계된다면 대관이 어찌 감히 계청을 낼 수 있겠으며 현묘께서 어떻게 윤허하셨겠습니까? 그때의 사세는 그 미처 설치하지 못한 것이 괴이

欲辨聖誣，必舉諱疾事爲言者，蓋欲劈破凶言之源頭，使中外人人，洞然無疑，而凶賊者不敢復作，其苦心血懇，九死靡悔。至欲得光佐一言，或冀其事實明著，凶誣痛雪，而卒不可得。苟求其情，誠亦慙矣，而先臣以此，屢承未安之教，終至齎恨於泉下，臣兄又北謫南竄，殆將走道路而死。此臣之日夜痛冤，籲天而不止者，而彼光佐前後自辨之疏，了無片言半辭，及於本事實際，只曰不秘諱，又曰未及設廳，殿下之所知也，必欲示以倉卒未遑之色，此適足以增長賊氣。向來批旨中誣我之教，雖出於慰藉光佐，而此實殿下偶然之教耳。使光佐而少知人臣之義，安敢更提，而乃公言顯誦之不已，今又鋪張爲說，有若左契。夫侍藥廳之不設，本非稟令於儲君，故己亥大喪時，藥院諸臣蒼黃急遽，未及設廳之故，臺啓削黜，顯廟允從。苟設廳與否，關涉東宮，臺官何敢發啓，顯廟何以允從耶？其時事勢，無怪其未及設，而猶尚如此，今光佐之不設廳，豈殿下之所可知，而乃因一時之下教，隱然爲藉口之計，人之夔慝，一至此哉？至於臣兄前

	<p>할 것 없는 것이 오히려 이러한데, 이제 이광좌가 병환을 설칭하지 않은 것을 어찌 전하께서 아실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마는, 한때의 하교로 말미암아 던지시 구실로 삼을 생각을 하니, 사람이 매우 간사하기가 이 지경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신의 형의 전소(前疏) 가운데에 있는 말은 대개 이광좌가 숨긴 일 때문에 나온 것이니, 어느 신하가 감히 마음에 싹틔우고 입에 담을 자가 있겠습니까마는, 이광좌는 왕법(王法)을 가하지 않은 것을 마음 아프게 여깁니다. 그 크게 외치고 큰 소리로 꾸짖는 것은 오로지 임금이 말하는 자를 죽이도록 인도하여 자기의 분노 때문에 남의 입을 막으려고 힘쓰려는 것입니다. 그가 최초로 서계(書啓)할 때에 ‘조금이라도 신하의 마음이 있다면 어찌 감히 신에게 대하여 한 마디 말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하였으니, 이광좌가 어떤 사람이기에 전하의 신하가 감히 그에게 대하여 한 마디 말도 할 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구구한 흉악하고 더러운 몸으로 존귀한 신류(宸旒)를 외람되게 끌어대고 중대한 왕명을 함부로 칭탁하여 신하가 감히 한 마디 말도 자기에게 할 수 없게 하고, 조금만 거스르는 것이 있으면 문득 왕법을 가하려 하니, 고금 천하에 신하로서 교만하고 방자하며 참람하고 망령되기가 어찌 이처럼 심한 자가 있겠습니까?”</p> <p>하였는데, 소가 들어가니, 정원(政院)에 하교하기를, “외관(外官)이 어찌 감히 이러할 수 있는가? 그 소를 도로 주라.”</p> <p>하였다.</p>	<p>疏中語，蓋爲光佐諱疾而發，則有何人臣不敢萌心掛口者，而光佐乃以王章不加，爲之痛心，其胡叫大喝，專欲導君上以誅殺言者，務以逞己之憤，而箝人之口。若其最初書啓，乃以有一分臣子之心，何敢加一辭於臣身爲言，不知光佐是何人，而殿下臣子，乃不敢加一辭於其身耶？以渠區區凶穢之身，猥援宸旒之尊，妄托綸綍之重，欲使人臣不敢一言加己，少有拂忤，輒欲加以王章，古今天下，爲人臣而驕肆僭妄，寧有若是之甚乎？</p> <p>疏入，教政院曰：“外官何敢如是耶？還給其疏。”</p>
<p>영조 50권, 15년 (1739 기미 / 청 건륭(乾隆) 4년) 8월 13일 (정해) 1번째기사 고 상신 민진원·민통수와 원수가 된 사정</p>	<p>(전략) 민진원은 성정(性情)이 괴이하여 경망한 일이 많으니, 이것이 신이 민진원이 죄주기를 청한 대략입니다. 이것을 옆에서 도왔을 뿐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또 근거 없이 ‘병환을 숨겼다. [諱疾]’는 두 자를 만들어 내어 억지로 맞추고 법문(法文)을 굽혀서 죄에 빠뜨리는데, 시약청(侍藥廳)을 설치하는 일은 처음에는 차마 전례를 따르지 못하였고 나중에는 망극하여 겨를이 없었는데, 무슨 조금이라도 논할 만한 것이 있기에 오히려 이것에 대하여 말</p>	<p>(전략)鎮遠性情怪異，事多妄率，此臣請罪鎮遠之大略也。此可謂從傍贊助而已乎？今且白地創出諱疾二字，傳會文致設廳事，初則不忍於前例，末乃罔極而未遑，有何毫髮之可論，而尙欲於此而費辭乎？己亥諸臣不及設廳，亦可</p>

과 무함받은 점을 변명한 이광좌의 상소문

을 하는 것입니까? 기해년(926)에 여러 신하들이 미처 시약청을 설치하지 못한 것도 어지럽게 만든 방도라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마음 아픈 것은 다음(茶飲)에 관한 일입니다. 어찌 차마 제기하여 우리 성상의 마음을 슬프게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민형수 등은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니 마음 아픕니다. 그때 삼차(蔘茶)를 드신 것은 대점(大漸)의 전일에 있었던 일이므로 이때에는 속이 차서 꼭 죽게 되고 음식에 입을 댈 겨를도 없었는데, 소보(小報)를 써 가는 것까지도 모두 점검하고 지휘한 것으로 신을 책망하는 것이 사리에 그럴 듯한 말이겠습니까? 삼차이건 다음이건 물론하고 계사(啓辭)에 나온 것인데 등록(謄錄)에 실린 것에 잘못이 있다면 어찌하여 점검하지 않았느냐고 신을 책망하는 것은 괜찮겠으나, 이제는 성주(星州)에 있을 때에 얻어 보았다는 과거의 어떤 소보를 가지고 신의 죄를 채우려고 이토록 과장하는 것이니, 어찌 사리에 가깝겠습니까?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병환을 숨기고 어지럽게 만들었다.[諱疾致亂]’는 녀 자가 어찌 조금이라도 사람의 도리를 지닌 자가 마음 먹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신을 무함하려면 문득 감히 말할 수 없는 데를 끌어 대니, 왕강(王綱)의 손상이 다시 여지가 없습니다.”

하였는데, 비답하기를,

“이는 개의할 것도 못된다. 그가 경에게 마음껏 원한을 푸는 것은 상하가 모두 안다. 글로는 뜻을 다할 수 없으니, 같이 들어올 때에 면대하여 유시하겠다.”

하였다.

謂致亂之道乎? 最爲痛心者, 茶飲事也。何忍提起, 感我聖心, 而亨洙輩肆口說去, 實爲痛心。其時進御蔘茶, 乃在大漸前日, 此時燭灼萬死, 食不遑口, 小報謄去者, 竝責臣以點檢指揮, 乃近理之言乎? 勿論蔘茶與茶飲, 若是啓辭所出、謄錄所載, 有所誣誤, 則責臣以何不點檢云可也。今乃以所謂星州時所得見, 何許過去小報, 欲以實臣之罪, 譎張至此者, 其可近理乎? 誠可痛矣。諱疾致亂四字, 初豈有一分人理者, 所可萌心者哉? 欲陷臣身, 輒援不敢言之地, 王綱之墜損, 無復餘地矣。

批曰: “此不足介滯者, 其甘心於卿者, 上下共知。文不能盡意, 偕入之時, 其將面諭。”

<p>영조 50권, 15년 (1739 기미 / 청 건륭(乾隆) 4년) 8월 30일 (갑진) 3번째기사 홍정당에서 시임·원임 대신 등을 인견하다. 신하들이 교시를 청하니, 하교하다</p>	<p>임금이 홍정당(興政堂)에 나아가 시임(時任)·원임(原任) 대신(大臣)과 이판(吏判) 조현명(趙顯命)을 인견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모두 전후의 하교가 두렵고 떨린다 하여 완곡한 말로 인죄(引罪)하고 또 매우 괴로워하는 까닭을 명백히 하교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나는 못 신하를 볼 낫이 없으나, 자전(慈殿)께서 위안하여 화해시키므로 마지못하여 보는 것이다.”</p> <p>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성의(聖意)를 교시(教宗)하기를 간청하니, 임금이 비로소 하교하기를,</p> <p>“한(漢)나라 문제(文帝)가 측실(側室)의 아들이라는 말이 있지만 남월(南越)이 감동하여 제호(帝號)를 버리고 칭신(稱臣)하였다.9270) 한당(漢唐)부터 황조(皇朝)까지 오히려 숭봉(崇奉)하는 법이 있는데, 우리 나라는 가법(家法)이 엄정(嚴正)하기가 천고(千古)에 뛰어나므로 사친(私親)이라는 칭호가 있다. 내가 지나치게 높이는 일이 있으면 신하가 반드시 쟁론(爭論)하여 영화(榮華)가 되지 않고 도리어 모욕이 될 것이므로 내가 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 신하들의 성묘(省墓)에는 오히려 산소에 차릴 제물을 내리는데, 나는 사묘(私墓)에 전배(展拜)할 때에 제수(祭需)를 사사로이 장만하니, 세상에 어찌 나와 같은 자가 있겠는가? 산주(山主) 김성(金姓)인 사람에게 근년에 벼슬을 제수하라는 하교가 있었는데 영성(靈城)9271) 이 흥감(興感)한 말을 하니, 이종성(李宗城)이 무식하다고 하였다. 지금 사람들은 ‘사(私)’ 자(字)를 명의(名義)를 범하는 것으로 여기므로, 여러 신하들이 혹 존숭(尊崇) 등의 말로 나에게 아첨하더라도 내가 당(唐)나라 태종(太宗) 봉덕이(封德彝)를 꾸짖은 것처럼 할 것이지만, 묘소에 전배하는 예(禮)로 말하면 애소(哀素)를 주장 삼는 것인데</p>	<p>上御興政堂，引見時原任大臣及吏判趙顯命。諸臣皆以前後下教，惶恐震懍，巽辭引罪，且請明教激惱之由，上曰：“予無見群臣之顏，而慈教慰解，故不得已見之矣。”諸臣懇請聖意，上始教曰：“漢文有側室子之言，南越感動，去號稱臣。自漢、唐至皇朝，尙有崇奉之法，而我國則家法嚴正，迥越千古，故乃有私親之號。予若有過隆之事，則臣下必爭論，不爲榮而反爲辱，故予不欲爲。然諸臣省墓，尙有澆奠之賜，而予則於私墓展拜也，私備祭需，世豈有如予者乎？山主金姓人，頃年有除職之教，而靈城有興感之言，則李宗城以爲無識也。今之人以私字爲干犯名義，諸臣設或以尊崇等語諂予，予當如唐宗之責封德彝，而至於上墓之禮，以哀素爲主，而乃用順懷墓例耶？”判府事金在魯曰：“私墓儀註之不用黦袍，乃是泛用他墓之例，實非敢出於輕忽也。”上曰：“驕蹇之輩，於些小節目，亦欲得名字矣。”判府事徐命均曰：“自古人君，若於私親有過隆之舉，則臣下固有以死爭之者，而今殿下初無是事，有何可爭之事？況慢君侮君，是</p>
--	---	---

	<p>순회묘(順懷墓)의 전례를 적용하는가?”</p> <p>하였다. 판부사 김재로(金在魯)가 말하기를,</p> <p>“사묘의 의주(儀註)에 참포(黻袍)를 쓰지 않은 것은 우연히 다른 묘소의 전례를 쓴 것이니, 실로 감히 소홀히 한 데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교만한 무리가 사소한 절목(節目)에서도 명자(名字)를 얻으려 한다.”</p> <p>하였다. 판부사 서명균(徐命均)이 말하기를,</p> <p>“예전부터 임금이 사친에 대하여 지나치게 높이는 일이 있으면 신하 중에는 본디 죽음으로 다투는 자가 있었습시다마는, 이제 전하께서는 애초에 이런 일이 없는데 무슨 다툼 만한 일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임금을 업신여기는 것은 신하의 지극한 죄인데, 오늘날의 못 신하 중에 어찌 이런 일이 있겠기에 성교(聖教)가 이에 이르렀습니까?”</p> <p>하고, 조현명이 말하기를,</p> <p>“업신여기는 신하가 있다면 신들이 소리를 같이하여 토죄(討罪)할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人臣極罪，今日群下，寧有是也，而聖教乃至於此耶?” 顯命曰：“若有慢侮之臣，臣等當同聲致討矣。” 上曰：“其於傷名義何哉?” 顯命曰：“非兩臺之本情也。” 上又以金灘、金始煒等慢君之罪，反復下教。 夜深，諸臣始退出。</p>
--	--	---

	<p>“그 명의(名義)를 손상한다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p> <p>하였다. 조현명이 말하기를,</p> <p>“두 대간(臺諫)의 본정(本情)이 아닙니다.”</p> <p>하니, 임금이 또 김유(金澣)·김시위(金始煒) 등이 임금을 업신여긴 죄를 반복하여 하교하였는데, 밤이 깊어서야 여러 신하들이 비로소 물러나갔다.</p>	
<p>영조 52권, 16년 (1740 경신 / 청 건륭(乾隆) 5년) 9월 2일 (경오) 1번째기사 풍덕의 행궁에서 부사 이중태의 불법한 일에 대해 어사 김상적이 아뢰니 귀양보내다</p>	<p>임금이 풍덕(豐德)의 행궁(行宮)에 나아가 어사 김상적(金尙迪)을 불러서 풍덕에 대한 일을 하문하니, 김상적이 부사 이중태(李重泰)가 불법을 저지른 일 두어 가지를 진달하고, 아뢰기를,</p> <p>“이는 신이 들어서 아는 것이고, 직접 눈으로 본 것으로는 관주(官廚)에 소를 잡아 배열하여 놓은 것이 낭자하고 다담(茶啖)은 40여 그릇이나 되었는데, 이는 바로 대신과 명관(名官)으로서 대가를 수행하고 있는 자들에게 선물을 보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 어떤 여인이 자신의 남편이 구타당하여 장차 죽게 되었다고 울면서 추치(推治)하여 주기를 청하였는데도 물리치고 들어주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하였으니, 그의 죄가 큼니다.”</p> <p>하였다. 임금이 이중태를 잡아들이라고 명하고, 그 범 죄를 일일이 들어 책망하고 효시(梟示)하려 하였는데, 병조 판서 조현명(趙顯命)이 대신에게 순문(詢問)할 것을 청하였다. 대신에게 순문하니 모두 인구(引咎)하면서 그를 위해 친구(伸救)하니, 임금이 드디어 곤장(棍杖)을 집행하고 먼 지방에 귀양보내었다. 특별히 인평군(仁平君) 이보혁(李普赫)을 부사로 임명하였다. 이는 풍덕이 피폐한 고을이 되었는데 이보혁이 여러 번 주목(州牧)을 맡아서 잘 다스렸다는 명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명령이 있게 된 것이다.</p>	<p>庚午/上御豐德行宮， 召御史金尙迪， 問豐德事， 尙迪陳府使李重泰不法數事， 乃曰：“此則臣聞而知之者， 其目覩者， 官廚狼藉， 屠牛排列， 茶啖近四十器， 此乃送饋大臣， 名官之隨駕者。 又有一女人， 爲其夫被打將死， 泣請推治， 則却不聽曰：‘此非時也。’ 其罪大矣。” 上命拿入重泰， 將數其罪梟示之， 兵曹判書趙顯命請詢于大臣。 及問大臣， 皆引咎伸救， 上遂命決棍遠配， 特除仁平君李普赫爲府使。 蓋豐德爲弊邑， 而普赫累典州牧， 以善治名， 有是命。</p>
<p>영조 52권, 16년 (1740 경신 / 청 건륭</p>	<p>임금이 다시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갔는데 이는 어제의 시사(試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시사를 끝내고 여러 신하들에게 주찬(酒饌)을 베풀었다.</p>	<p>己丑/上復御春塘臺， 以昨日試射未畢也。 旣試射， 賜諸臣饌。 方命射帳，</p>

<p>(乾隆) 5년) 9월 21일 (기축) 1번째기사 다시 춘당대에 나아가 시사를 끝내고 과녁을 쏘라고 명할 적에 천둥과 우박이 내리다</p>	<p>바야흐로 과녁을 쏘라고 명할 적에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이 치면서 우박이 내렸으므로 드디어 첩시(撤試)하고 환궁(還宮)하였다.</p>	<p>忽天雷電雨雹，遂撤試還宮。</p>
<p>영조 52권, 16년 (1740 경신 / 청 건륭 (乾隆) 5년) 9월 26일 (갑오) 1번째기사 시독관 이종적이 피전하고 감선하고 자신을 책망하고 구언할 것을 진계하다</p>	<p>임금이 소대를 행하였다. 시독관 이종적(李宗迪)이 또 진계(進戒)하기를, “피전(避殿)하고 감선(減膳)하고 자신을 책망하고 구언(求言)하는 것이 비록 겹치레에 가까운 것 같지만 또한 그만둘 수 없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실정(實政)에 힘쓰지 않고 감선(減膳)에만 힘쓴다면 또한 무슨 이로움이 있겠는가? 왕년에는 각선(却膳)했었고 금년에는 석위(釋位)한다고 했는데도 신하들이 변동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으니, 음(陰)이 치성하고 양(陽)이 쇠미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였다. 이때 임금이 못신하들의 당습(黨習)에 대한 미움이 누적되어 모든 진계하는 말에 대해 빈번이 책망하는 하교를 내리는 것이 이와 같았다.</p>	<p>甲午/上行召對。侍讀官李宗迪又進戒曰：“避殿減膳，責己求言，雖近文具，亦不可已也。”上曰：“不務實政，徒事減膳，又何益乎？頃年却膳，今年釋位，而臣下不思變動，陰盛陽微，得不然乎？”時上積惡群下之黨習，凡於陳戒之言，輒下責教如此。</p>
<p>영조 50권, 15년 (1739 기미 / 청 건륭 (乾隆) 4년) 10월 14일(정해) 2번째기사 승지를 불러 자전(慈殿)의 위유 때문에 감선하라는 명을 거두다</p>	<p>이날 밤이 깊었을 때에 임금이 다시 승지를 불러 자전(慈殿)의 위유(慰諭) 때문에 감선(減膳)하라고 한 명을 거두었다.</p>	<p>是日夜深，上復召承旨，以慈殿慰諭，故特寢減膳之命。</p>
<p>영조 51권, 16년 (1740 경신 / 청 건륭 (乾隆) 5년) 3월 16일</p>	<p>임금이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대학연의보(大學衍義補)》를 강(講)하였는데, 역사치장(抑奢侈章)에 이르러 시독관(侍讀官) 서명신(徐命臣)이 말하기를,</p>	<p>丁巳/上行召對，講《大學衍義補》。至抑奢侈之章，侍讀官徐命臣曰：“東宮德性未定，知識漸進，禁奢崇儉，正</p>

<p>(정사) 1번째기사 소대를 행하다. 시독관 서명신이 동궁의 덕성을 검약하게 훈육할 것을 말하다</p>	<p>“동궁(東宮)은 덕성(德性)이 아직 정해지지 않고 지식이 점점 진취하니, 사치를 금하고 검약을 숭상할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무릇 부모가 된 백성이 사랑에 빠져 의복·음식의 처음을 경계할 줄 모르고 혹 사치를 다하고 공교하기를 극진히 하면 점점 버릇되어 천성처럼 되는데, 더구나 존귀한 임금이겠습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반드시 몸소 가르치실 것을 생각하여 의복·음식·기용(器用) 등의 물건을 엄하게 금방(禁防)하여 어린 나이의 기질(氣質)이 외물(外物)에 마음쓰지 않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p>	<p>其時也。 凡民之爲父母者，溺愛而不知戒，衣服飲食之微，或窮奢極巧，則馴致習與性成，況帝王之尊乎？願殿下必思身教，服食器用之物，嚴加禁防，無使沖年氣質，移心於外物也。” 上然之。</p>
<p>영조 51권, 16년 (1740 경신 / 청 건륭(乾隆) 5년) 6월 5일 (갑술) 4번째기사 야대를 행하다. 선운하고 삼고(三鼓)에 마친다</p>	<p>임금이 야대(夜對)를 행하였다. 선운(宣醞)9452) 하고 시각이 삼고(三鼓)가 되어서야 파하였다.</p>	<p>上行夜對。 宣醞，漏下三鼓乃罷。</p>
<p>영조 52권, 16년 (1740 경신 / 청 건륭(乾隆) 5년) 윤6월 7일(병오) 1번째기사 존호 도감에서 만드는 것 가운데 자전(慈殿)을 올리는 것 이외에는 간소하게 하라고 하교하다</p>	<p>하교하기를, “존호 도감(尊號都監)에서 만드는 것 가운데 자전(慈殿)에게 올릴 것 이외에 옥책(玉冊) 장식은 구리로 은을 대신하게 하고, 싸는 물건은 명주로 비단을 대신하게 하며, 삭금(削金)과 화금(畫金) 붙이는 일체 제거함으로써 후왕(後王)으로 하여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후세의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함을 알게 하라. 방물(方物)과 물선(物膳)도 더욱 절약해야 된다. 자전(慈殿)에서 또 백성을 위하라는 하교가 부지런하고도 정성스러우셨으니, 이것이 바로 양지(養志)하는 도리인 것이다. 서울의 육조에서 봉진(封進)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봉진을 정지하는 것을 허락한다.”</p> <p>하고, 경과(慶科)인 증광과(增廣科)를 고쳐 정시(庭試)로 설행하도록 명하였</p>	<p>丙午/教曰：“尊號都監造成中，慈殿所上者外，玉冊粧飾，以銅代銀，所裹之物，以紬代緞，削金畫金之屬，一切祛之，使後王知予以此爲後世法。 方物物膳，尤宜節約，而 慈殿又爲元元，下教勤摯，此正養志之道也。 京六曹封進外，竝許停封。” 命改慶科增廣，以庭試設行。 時上以大臣之言，命合慶爲增廣，已而又下教曰：“爲先則爲庭試，爲予則爲增廣，輕重倒置。” 命</p>

	<p>다. 이때 임금이 대신의 말에 의거하여 경사에 합당한 증광과로 할 것을 명하였는데, 조금 있다가 또 하교하기를, “선왕(先王)을 위해서는 정시(庭試)를 설행해야 하고 나를 위해서는 증광과(增廣科)를 설행해야 하는데 경중이 전도되었다.” 하고, 정시로 고치라고 명하였다.</p>	<p>改以庭試。</p>
<p>영조 52권, 16년 (1740 경신 / 청 건륭(乾隆) 5년) 9월 12일 (경진) 1번째기사 시강관 홍계유가 당나라 덕종이 오이 바친 사람에게 벼슬을 준 것의 시비에 대해 아뢰다</p>	<p>임금이 소대에 나아갔다. 시강관 홍계유(洪啓裕)가 글뜻에 따라 이르기를, “당(唐)나라 덕종(德宗)이 오이를 바친 사람에게 벼슬을 주려고 하자 육지(陸贄)가 진계(陳戒)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덕종이 그 말을 경시하고 벼슬을 주었으니 두 번 파월(播越)하는 어려움을 겪은 것이 또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옛날 내가 배종(陪從)하고 온천(溫泉)에 거둥하였을 때에 길에서 물건을 바치는 사람을 많이 보았는데, 이번 거둥에는 단지 한 촌구(村嫗)가 바치기를 청하였으나 내가 받지 않았다.” 하자, 홍계유가 아뢰기를, “만일 임금에게 바치는 정성을 가상히 여겨 물건을 받고서 상을 준다면, 이를 본받는 자들이 반드시 뒤를 이어서 나올 것인데, 어떻게 성심인지 거짓인지를 알수 있겠습니까?” 하였다.</p>	<p>庚辰/上御召對。侍講官洪啓裕因文義奏曰：“唐德宗欲官獻瓜之人，陸贄有所陳戒，而德宗輕屑官爵，其再蹈播越之難，不亦有所以乎？”上曰：“昔年予陪從溫幸也，路見獻物者衆。今於行幸，只有一村嫗請獻，而予不受矣。”啓裕曰：“若嘉其獻御之誠，受而賞之，則效之者必相續，安知其誠與僞也？”</p>
<p>영조 52권, 16년 (1740 경신 / 청 건륭(乾隆) 5년) 10월 13일(경술) 1번째기사 우의정 조현명이 약방 도제조로 출사하고, 이천 부사 이기진을 체</p>	<p>우의정 조현명(趙顯命)이 약방 도제조로 왕명을 받고 출사(出仕)하였다. 임금이 인견하고 시상(時象)을 조제(調劑)하는 책임을 가지고 면유(面諭)하니, 조현명이 감히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사양하였다. 그리고 이천 부사(利川府使) 이기진(李箕鎭)을 체직시키고 해조(該曹)로 하여금 식물(食物)을 넉넉하게 지급하게 하여 어미를 모시고 서울로 올라오게 할 것을 청하였다. 이때 이기진이 중신(重臣)으로서 결군(乞郡)하여 이천 부사가 되었는데, 미처 부임하기 전에 조현명이 지위가 드러난 사람으로서 구차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극력 머</p>	<p>庚戌/右議政趙顯命以藥房都提調，承命出仕。上引見之，面諭以調劑時象之責，顯命辭謝不敢當，請遞。利川府使李箕鎭令該曹優給食物，使將母上京。時，箕鎭以重臣乞郡，爲利川府使，未及赴，顯命以位著苟鞫，請留之甚力，上許之。</p>

직시키다	물게 할 것을 청하니, 임금의 이를 허락하였다.	
<p>영조 52권, 16년 (1740 경신 / 청 건륭(乾隆) 5년) 12월 3일 (기해) 1번째기사</p> <p>전 대사성 심성희가 김포 등 여덟 고을의 전결 세금을 면세시켜 줄 것을 청하다</p>	<p>전 대사성 심성희(沈聖希)가 본관의 물력(物力)이 조잔(凋殘)하다 하여 상소하여 김포(金浦) 등 여덟 고을의 전결(田結)에서 내는 세금을 도로 면세시켜 줄 것을 청하였는데, 비국(備局)에서 복계(覆啓)하니 그대로 허락하였다. 뒤에 호조에서 곤란하다고 복계한 것으로 인하여 정지하고 시행하지 않았다.</p>	<p>己亥/前大司成沈聖希以本館物力凋殘，疏請金浦等八邑田結出稅者，還爲免稅，備局覆啓，許之。後因戶曹覆難，寢不行。</p>
<p>영조 52권, 16년 (1740 경신 / 청 건륭(乾隆) 5년) 12월 20일(병진) 3번째기사</p> <p>강원 감사 정형복이 본도에 군액이 많음을 들고 세금 감면을 청하다</p>	<p>강원 감사 정형복(鄭亨復)이 상소하기를, “본도에는 양정(良丁)은 적은데도 군액(軍額)이 많아서 한 사람의 몸에 항상 두서너 가지 신역(身役)을 겸하고 있습니다. 묘당에서 이역(移役)시킬 때를 당할 적마다 번번이 반드시 본도에 획속(劃送)하고 있는데다가, 본도는 원야(原野)가 적고 산협(山峽)이 많아서 여러 궁가(宮家)와 각 아문(衙門)에서 절수(折受)한 화전(火田)이 각 고을에 널려 있으며, 전세(田稅)를 거두는 법규가 원전(原田)보다 무겁습니다. 그런데도 금년에 특별히 감면한 전세(田稅) 가운데 들어 있지 않으니, 묘당으로 하여금 품지하게 하여 다른 도의 군액을 이송시키는 것을 특별히 도로 중지하게 하고, 화전(火田)을 절수한 것도 원전의 예(例)에 의거하여 세금을 감면하게 하소서.” 하니, 비국에 내려 품처하게 하였다.</p>	<p>江原監司鄭亨復上疏言： 本道良丁少而軍額多，一人之身，常兼數三役。廟堂每當移役之時，輒必劃送於本道，而且本道原野少而山峽多，諸宮家各衙門火田折受，布在各邑，收稅之規，重於原田，而不入於今年田稅特減之中。乞令廟堂稟旨，他道軍額之移送者，特爲還寢，火田折受，依元田例減稅。 下備局稟處。</p>
<p>영조 52권, 16년 (1740 경신 / 청 건륭(乾隆) 5년) 12월 26일(임술) 2번째기사</p> <p>약방 도제조 김재로가 임금이 의자에서 평좌</p>	<p>약방 도제조 김재로(金在魯)가 임금의 오래 앉아 있는 데에 방해로움이 있을까 우려하여 의자를 만들어 평좌(平坐)하여 기대고 있을 것을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편하게 앉아 있을 적이 없다. 평생 꿇어 앉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평좌하면 도리어 불안스러움을 느끼게 된다.” 하였다. 임금이 타고난 성품이 검약하여 입은 의복이 투박한 빛깔이고 신도</p>	<p>藥房都提調金在魯慮上有妨久坐，請作椅子，平坐倚之，上不許曰：“予未嘗任便，平生習跪坐，故若平坐則反覺不安矣。”上素性儉約，所御衣服皆色淪，靴亦縫紉皆坼，至於器用之物，亦多破壞，而未嘗命改之也。</p>

<p>하여 편히 앉을 것을 아뢰니 따르지 않다</p>	<p>웨맨 곳이 모두 터져 있었으며, 심지어 기용(器用)의 물건도 파괴된 것이 많았으나. 일찍이 고치라고 명한 적이 없었다.</p>	
<p>영조 52권, 16년 (1740 경신 / 청 건륭(乾隆) 5년) 12월 29일(을축) 3번째기사 이격이 어떤 과부의 단자로 인해 여문표를 신문할 것을 청하다</p>	<p>장령 이격(李格)이 상소하기를, “다좌(茶坐)에 나아갔을 적에 어떤 과부가 단자(單子)를 올렸는데. 그 내용에 ‘남편의 아우 여문표(呂文杓)가 행실이 쾌악하다.’고 하면서 그의 죄상을 열거 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찰(監察)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였더니 여문표가 온갖 사악한 말을 다하고, 봉서(封書)로 고변(告變)하겠다고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청컨대, 포청(捕廳)에 이송하여 엄중히 신문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上)이 말하기를, “이는 익명서와 다름이 없는 것으로 국체(國體)에 관계되는 것이니, 물을 필요도 없다.” 하고, 그 봉서는 불사르고 그 사람은 포청에 구수(拘囚)하도록 명하였다.</p>	<p>掌令李格上疏言： 赴茶座始，有一寡女呈單以爲，夫弟呂文杓行已悖惡，臚列其罪狀，故使監察治之，則文杓極口肆惡，至發封書告變之語，請移送捕廳，嚴訊之。 上曰：“無異匿名，國體所關，不必問也。其書則付火，其人命捕廳拘囚。”</p>